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677-14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결정례집

| 군 인권정책 | 군 침해구제 | 군 차별시정 |

제1집
2017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결정례집

| 군 인권정책 | 군 침해구제 | 군 차별시정 |

제1집

2017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발간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 이후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마땅히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인권 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 곳곳에서 인권침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군인의 인권은 최근에 우리 위원회가 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군 인권과 관련해서 위원회 설립 이후 15년간 1,800여 건의 진정을 조사하여 의미있는 권고 결정을 하였으며, 방문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다양한 정책권고를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군내 가혹행위 사건에 대하여 인권교육 실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였고, 군대 내에서의 폭행 등으로부터 피해자 구제 및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2014년 9월 군인권팀을 신설하여 직권조사와 방문조사를 포함한 기획조사, 각종 진정사건 조사, 관련 법령·정책·제도·관행의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 국내외 협력사업 등 다양한 군 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 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9대 국회에서 윤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였음에도 이를 완결하지 못하였으나, 새정부 출범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국정과제로서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앞서 그간의 권고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결정 취지 및 시사점을 결정례집에 담아 병영문화 개선 및 유사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일선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 배포하여 군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군인권 결정례집은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2016년 말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군 인권 분야 결정으로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사례 총 121건을 인권정책분야(17건), 침해구제분야(90건), 차별시정분야(14건)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결정례집이 일선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은 물론 국방부 등 국가기관, 전문가, 군 인권 시민단체 및 활동가 등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널리 활용됨으로써 군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군 인권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 성 호**

일러두기

◉ 이 결정례집은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2016년 말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군인권 분야 결정으로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사례 총 121건을 인권정책분야(17건), 침해구제분야(90건), 차별시정분야(14건)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각 결정문의 앞부분에는 해당 결정사항 및 그 결정에 이르게 된 취지 등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하였습니다.

◉ 결정문은 원문 그대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사건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의 이름,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장소 등은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결정문의 별지에 기재된 관계법령 조문이나 관계인 진술 내용 등은 결정문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책의 지면관계상 부득이 생략한 점 양해 바랍니다.

대목차

제1편 군 인권정책분야

제2편 군 인권침해분야

- 행복추구권 침해(휴식권, 일반적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 ····· 149
- 인격권 침해(폭언, 모욕) ····· 225
- 신체의 자유 침해 ····· 255
- 폭행/가혹행위 ····· 301
- 개인정보/사생활 자유 침해 ····· 711
- 양심의 자유 침해 ····· 785
- 종교의 자유 침해 ····· 795
- 언론출판의 자유(알권리) 침해 ····· 807
- 직업의 자유 침해 ····· 817
- 환자보호 및 의료조치 미흡 ····· 833
- 교정/영창 ····· 949

제3편 군 차별행위분야

- 성별 ····· 1007
- 사회적 신분 ····· 1031
- 용모 등 신체조건 ····· 1049
-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 1057
- 성적 지향 ····· 1073
- 학력 ····· 1091
- 병력 ····· 1117

【 제1편 군 인권정책분야 】

1. 북파공작원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3

2. 삼청교육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10

3. 군복무 부적응병사 인권상황 개선권고 ·····16

4. 군복무로 인한 '이명' 피해자 대책 마련 등 권고 ·····29

5. 군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상황 개선 관련 정책권고 ·····45

6. 군 징계 영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53

7. 여군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59

8. 군형사소송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72

9.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79

10.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85

11.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89

12. 김성회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101

13. 징병검사자료의 복무기관 제공에 대한 의견표명 ·····114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128

15. 병영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대한 의견표명 ·····133

16. 퇴역처분 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07누28184호)에 관한 의견제출 ·····138

17. 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등(2008헌마638)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143

【 제2편 군 인권침해분야 】

행복추구권 침해(휴식권, 일반적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

1. 2006. 3. 23. 결정 05진인692, 05직인8, 05직인9, 05직인10병합
[사관생도 처우관련] ····· 151

2. 2006. 8. 10. 결정 06진인0950
[출타병 준수사항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 159

3. 2008. 5. 8. 결정 07진인190
[부당한 강제퇴교 형식 등에 의한 인권침해] ····· 163

4. 2007. 8. 13. 결정 07진인952
[유해농약작업 등에 의한 인권침해] ····· 171

5. 2008. 8. 28. 결정 08진인677
[부당징계 등에 의한 인권침해] ····· 175

6. 2008. 8. 7. 결정 08진인1451
[군내 차량구매 통제에 의한 인권침해] ····· 184

7. 2009. 7. 20. 결정 09진인2083
[기소휴직 중인 군 형사피고인 복직거부에 의한 인권침해] ····· 187

8. 2010. 7. 23. 결정 10진정2444
[본인 의사에 반한 부당한 퇴교조치] ····· 192

9. 2012. 3. 6. 결정 12진정329
[군대내 과도한 금연 강요] ····· 197

10. 2014. 11. 28. 결정 13진정8738
[군 부대 내 부당 처우에 의한 인권침해] ····· 206

11. 2016. 9. 28. 결정 16진정4707
[부당한 군기교육대 운영 등에 의한 인권침해] ····· 216

인격권 침해(폭언, 모욕)

1. 2006. 6. 7. 결정 06진인551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 227

2. 2012. 8. 16. 결정 11진정6250
[폭언 및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 235

3. 2015. 9. 2. 결정 15진정3029
[욕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 ····242
4. 2015. 9. 2. 결정 15진정4461
[군 지휘관에 의한 모욕 등] ····246
5. 2016. 11. 25. 결정 16진정2204
[징계조사 시 군 법무관의 인격적 모욕 등] ····250

신체의 자유 침해

1. 2005. 2. 28. 결정 04진인3966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257
2. 2007. 9. 11. 결정 07진인1637
[사망에 의한 인권침해] ····263
3. 2010. 5. 10. 결정 09진인4817
[상사의 폭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 ····284
4. 2016. 7. 20. 결정 16진정2056
[법정 내에서 부당한 포승줄 및 수갑 착용] ····292

폭행/가혹행위

1. 2003. 4. 21. 결정 01진인21
[군 의문사] ····303
2. 2006. 2. 13. 결정 04진인899
[신체의 자유침해] ····311
3. 2005. 6. 21. 결정 04진인2725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321
4. 2006. 12. 6. 결정 05진인543
[부대 내 사망사건과 관련한 인권침해] ····328
5. 2005. 2. 14. 결정 05직인2
[군훈련소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339
6. 2007. 1. 15. 결정 06진인2072
[폭행등에 의한 인권침해] ····349
7. 2008. 4. 3. 결정 07진인1943
[부실한 사망사건 조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362

8. 2007. 12. 18. 결정 07진인2631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 374
9. 2008. 4. 3. 결정 07진인4219
[생명권 침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 ····· 381
10. 2008. 8. 7. 결정 08진인232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 391
11. 2008. 9. 8. 결정 08진인912, 08직인4 등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직권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 ····· 398
12. 2010. 8. 23. 결정 10진정2135
[군대 내 사망으로 인한 인권침해] ····· 420
13. 2010. 7. 23. 결정 10진정4193
[군대 내 성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 430
14. 2010. 9. 1. 결정 10진정5608
[해병대 성폭행 피해자 보호조치관련 긴급구제] ····· 446
15. 2011. 3. 23. 결정 10진정7966·11직권1(병합)
[해병대 상습폭행 및 은폐사건 직권조사] ····· 450
16. 2011. 9. 19. 결정 11직권3, 11진정8 등 병합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 470
17. 2012. 4. 13. 결정 11진정3175
[해군 훈련병 사망사건] ····· 494
18. 2012. 4. 30. 결정 11진정3219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 ····· 505
19. 2011. 11. 2. 결정 11직권19, 11진정5886(병합)
[육군 ○○사단 이병 폭행·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 ····· 519
20. 2012. 6. 20. 결정 11직권24, 11진정6530(병합)
[군대 내 성추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 549
21. 2012. 12. 18. 결정 12직권12, 12진정5275(병합)
[육군 제00사단 총기사망사건 및 폭행·가혹행위 직권조사 등] ····· 573
22. 2013. 10. 31. 결정 12진정8373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해 상이에 대한 공상 불인정] ····· 592
23. 2014. 10. 6. 결정 12진정8711
[군대 내 가혹행위 및 조치 미흡] ····· 599
24. 2014. 4. 10. 결정 13진정3558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등 인권침해] ····· 607

25. 2014. 5. 1. 결정 13직권22, 13진정6159(병합)
[육군 제○사단 폭행 및 성추행 사건 직권조사] ····· 616
26. 2015. 11. 11. 결정 14직권12, 14직권13, 14진정6513, 14진정6623 등 8건(병합)
[군대 구타·가혹 행위 및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직권조사] ····· 627
27. 2014. 8. 1. 결정 14진정691
[군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 648
28. 2015. 11. 11. 결정 15진정2177
[의무소방원 근무시 선임들에 의한 괴롭힘 및 가혹행위] ····· 654
29. 2016. 7. 20. 결정 15진정7075
[과도한 얼차려로 인한 인권침해] ····· 664
30. 2016. 4. 6. 결정 16진정246
[군 수사관의 폭행 및 욕설로 인한 인권침해] ····· 669
31. 2016. 4. 6. 결정 16진정799
[군 선임장교의 후임장교에 대한 폭행 사건 은폐] ····· 677
32. 2016. 4. 6. 결정 16진정1243
[군부대내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 685
33. 2016. 7. 20. 결정 16진정3653
[학군단 간부의 상습적 폭언 및 폭행] ····· 691
34. 2016. 12. 27. 결정 16진정4867/4552/7897(병합)
[해병대 선임병의 취식 강요 등 가혹행위] ····· 698

개인정보/사생활 자유 침해

1. 2008. 12. 10. 결정 07진인1960
[부당한 처우에 의한 인권침해] ····· 713
2. 2009. 8. 24. 결정 08진인3904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의한 인권침해] ····· 717
3. 2009. 10. 26. 결정 09진인590
[의무사관 후보생 모집 신체검사 시 병력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 721
4. 2010. 4. 12. 결정 09진인2292
[국방부수사단 수사관의 성추행 사건 수사중 개인정보 유출] ····· 725
5. 2012. 12. 18. 결정 12진정721, 12진정1111(병합)
[군대내 스마트폰 앱 점검·삭제 등에 의한 인권침해] ····· 730

6. 2013. 7. 5. 결정 12진정8864, 12진정8907(병합)
[부사관에 대한 과도한 부채현황 조사] ····746
7. 2015. 6. 17. 결정 14진정3436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의한 인권침해] ····750
8. 2016. 8. 30. 결정 15진정9272
[관심장병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따른 인권침해] ····754
9. 2016. 12. 27. 결정 16진정3737
[장교 및 부사관 지원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761
10. 2016. 7. 20. 결정 16진정3851
[일기장 돌려보기 지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770
11. 2016. 12. 27. 결정 16진정6599
[사관생도 사생활 침해 사건] ····774
12. 2016. 11. 27. 결정 16진정6661, 16진정6992, 16진정7054, 16진정7056, 16진정7059, 16진정7060(병합)
[독신자 숙소 점검으로 인한 사생활의 자유 침해] ····780

양심의 자유 침해

1. 2013. 8. 27. 결정 12진정4227
[인격권 침해 등] ····787

종교의 자유 침해

1. 2008. 7. 17. 결정 08진인480
[종교의 자유 침해] ····797
2. 2010. 7. 23. 결정 10진정497
[군대 내 종교행사 참석 강요 등] ····801

언론출판의 자유(알권리) 침해

1. 2004. 7. 12. 결정 03진인5724, 04직인1(병합)
[군공사상자 처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809

직업의 자유 침해

1. 2007. 5. 28. 결정 06진인2994
[겸직불허 등에 따른 인권침해] ····· 819
2. 2007. 3. 5. 결정 06진인1959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 827

환자보호 및 의료조치 미흡

1. 2006. 5. 8. 결정 05진인3581
[군인의 의료접근권 침해] ····· 835
2. 2006. 12. 6. 결정 06진인989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 851
3. 2007. 7. 9. 결정 07진인895
[환자방치에 의한 인권침해] ····· 855
4. 2007. 7. 9. 결정 07진인1198
[의료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 862
5. 2008. 2. 13. 결정 07진인4881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 869
6. 2008. 8. 7. 결정 08진인167
[의료조치 소홀 등에 의한 인권침해] ····· 875
7. 2011. 5. 4. 결정 11진인1151
[군대 내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 883
8. 2012. 4. 13. 결정 11진정2707
[의료조치 소홀 등에 의한 인권침해] ····· 907
9. 2012. 11. 29. 결정 12진정4916
[군대 내 집단 구타 및 의료조치 미흡 등] ····· 921
10. 2013. 10. 31. 결정 13진정4463
[군의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 936

교정/영창

1. 2003. 2. 10. 결정 02진인1869
[군영창수감자의 인권침해] ····· 951

2. 2004. 2. 27. 결정 03진인6349
[시설 및 처우 관련 인권침해(육군교도소)] ····· 953

3. 2006. 1. 23. 결정 05진인2723
[부당한 징벌처분 등] ····· 956

4. 2011. 10. 12. 결정 11방문16
[2011년 군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 962

5. 2013. 6. 12. 결정 13진정2071
[영창 내 부당한 처우 등에 의한 인권침해] ····· 969

6. 2013. 11. 29. 결정 13방문11
[2013년 군 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 981

7. 2015. 12. 22. 결정 15방문7
[2015년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 985

8. 2016. 1. 27. 결정 15방문0000701
[2015년 국군교도소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 992

【 제3편 군 차별행위분야 】

성별

1. 2010. 5. 25. 결정 09진차773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 시 여성 및 신장 제한] ·····1009
2. 2011. 11. 25. 결정11직권20
[해사고등학교의 여학생 입학 제한] ·····1015
3. 2016. 12. 22. 결정16진정3437
[군장학생 선발 시 여성 배제] ·····1023

사회적 신분

1. 2003. 9. 8. 결정 03진차13, 03진차15(병합)
[군복무자의 민간의료시설 이용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권고] ·····1033
2. 2007. 3. 12. 결정 04진기320
[외국군소속부대 특수임무수행자 등 차별] ·····1038
3. 2014. 5. 22. 결정 13진정8588
[전문하사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 등의 지급배제] ·····1045

용모 등 신체조건

1. 2006. 7. 18. 결정 06직차6
[성별 및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신입생 모집 시 차별] ·····1051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1. 2006. 7. 18. 결정 04진차300
[학력 및 전과를 이유로 한 채용 시 차별] ·····1059
2. 2012. 10. 31. 결정 12진정7204
[불기소처분 경력을 이유로 한 군무원 채용 불허] ·····1066

성적 지향

1. 2006. 6. 26. 결정 06진차87
[군대내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1075

학력

1. 2010. 7. 29. 결정 10진정2424
[육군3사관학교 예비장교후보생 모집 시 전문대학 출신자 배제] ·····1093
2. 2013. 7. 8. 결정 12진정1923
[공군 학군사관후보생 과정 모집 시 학교별 학과 제한] ·····1099
3. 2013. 8. 14. 결정 12진정4562
[공군사관학교의 사관생도 학년에 따른 이성교제 금지] ·····1108

병력

1. 2012. 3. 21. 결정 11진정3045
[병력을 이유로 한 ROTC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1119

제1편 군 인권정책분야

1 북파공작원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거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북파공작원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세계인권선언 제1조, 헌법 제10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을 천명하면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국가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과거 북파공작원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서는 아니되고,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건 특수임무에 투입되었던 그들을 국익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외면하고 방기한다면 부도덕한 국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0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된 것) 및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파공작원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북파공작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북파공작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권고함.

Ⅰ. 검토배경

1. ○○부대 소속 등 북파공작원은 특수 임무를 띠고 ○○지역에 파견된 무장첩보원을 말합니다.

2. 당시 북파공작원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된 자로서 인권이 유린되는 혹독한 양성과정을 거친 후, 파견되었다가 사망·실종되거나, 생환하였다 하더라도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거나, 기타 양성과정만을 거치고 파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음지의 전사" 또는 "군번없는 전사"로 불리며 사회적응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3. 냉전시기에 요인암살, 납치, 테러 공작 등이 다반사로 행해진 것은 전세계 특수기관의 공통사항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가는 정전협정 위반을 들어 과거 북파공작원의 실체와 그 피해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히는데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4.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라도 과거 국가에 의해 인권이 침해된 피해자들에 대한 명확한 실체파악을 비롯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하는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권고합니다.

II. 북파공작원의 실체[1)]

1. 『북파공작원』이란 한국전쟁 중인 19○○년부터 19○○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 때까지 ○○지역에 파견되어 활동한 무장첩보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7·4남북공동성명 전까지 ○년 동안 파견된 공작원 가운데 실종자만도 ○명[2)]으로 추정되고, 19○○년까지도 양성훈련이 실시되었으며, 실종 북파공작원 ○명 중 수백 명 이상이 ○○에 생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북파공작원들은 한국전쟁 당시 남한의 빨치산처럼 ○○의 후방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양성되었으며, 적 생포 및 사살, 주요시설물 폭파, 적지에서 각종 테러를 통한 사회혼란 야기, 첩보수집 및 첩보망 구축 등이 주된 임무였다고 합니다.

3. 19○○년대 파견자는 조직편제나 운영이 다소 엉성하고 주로 ○○산부대 출신 등 대부분 월남한 ○○출신으로 이루어졌고, 1900년대 이후 파견자는 고아 등 무연고자, 범죄자 등으로 선발되었는데, 채용전담자가 대상자를 물색하여 일대일로 면담한 뒤 평생생활보장 등의 명목으로 채용되었으며, 그 후에는 고아나 전과자의 경우 파견후 전향하는 경우가 많아 북파공작원 선발대상에서 제외되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4. 북파공작원 채용시 계약기간을 3년 또는 4년 등 일정기간으로 정하였고, 상당한 보수가 지급되었으며, 작전성과가 뛰어날 경우 성과급도 지급되었으며, 계약기간이 끝나면 특채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비밀유지 각서를 쓰게 한 뒤에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 북파공작원 및 유족 관련단체는, 현재 『대한민국○○○공작○동지회』, 『○○참전국가유공자연대』 등 18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중에는 ○○첩보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단체도 1개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1) 김○○의원의 20○○년도 국감자료집1과 그동안의 언론보도 내용을 많이 참조하였다. 김○○의원은 ○○당 북파공작원 대책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20○○년 국정감사시에 이 문제를 거론한 뒤 북파공작원의 실상파악과 관련법령개정 등에 노력을 기울였다.

2) 김○○의원의 20○○년도 국감자료집1에 의하면, 북파공작원 실종자수는 모두 ○명인데 19○○~19○○ 사이 ○명, 19○○~19○○ 사이 ○명이라고 한다.

Ⅲ. 현재의 보상수준 및 생사확인 등

1. 보상경위

가. 2002년도 국정감사시에 ○○당 김○○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북파공작원관련 18개단체 등과 회의를 통해 보상금지급수준에 대한 의견수렴(당시 관련단체의 요구금액 최소 3억8천만원 ~ 10억원까지)을 하였고,

나. 2002. 01. 2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된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특수민원위로보상규정'을 의결한 후 기획예산처를 통해 1,3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 지급대상

가. 지급대상자는 19○○. 3월 부대창설이후 19○○년도 입대자까지 포함하되,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1) 6·25전쟁시기의 전시참전
(2) 휴전 후 준전시 특수임무수행기간
(3) 7·4공동성명 이전까지의 비전시 특수임무수행기간
(4) 19○○년까지의 안보대비 양성기간

나. 사망자와 상이자에게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금이외에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위로보상금지급신청이 접수되면, 과거 자료와 보관된 필름자료 등을 통해 부대원근무 확인을 하고 있으나, 자료가 워낙 오래되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3. 보상금액 산정

가. 보상금액산정은 생활지원금(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월 166,000원) + 임무수행성과금(1천만원) + 위로금(근무기간 *월 160만원정도 책정)로 되어 있고,

나. 실제로 20○○. 1.부터 대상자들로부터 위로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받아 20○○. 11. 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 현재까지 ○여명이 신청하여 ○명 정도가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지금까지 최고지급금액은 6,500만원입니다.

라. 그러나, 관련단체는 보상금책정에 있어서 기초생활생계비 기준으로 월 166,000원을 산정한 것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월 300,000원에 비해 너무 적고, 임무수행성과금도 큰 폭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 생사확인 및 통지문제

가. ○○임무수행 중 사망, 실종된 공작원들의 생사확인과 유족들에 대한 사실통지문제는 임무수행 중 이탈한 자도 행불로 처리되어 있어 행정자치부에 ○천명 정도를 소재확인하였으나, 1968년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고, 당시 부대원 중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그 중 10%정도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 또한, 이북에서 임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포로로 잡힌 자의 생사확인은 북파공작원의 실체를 인정해야 하므로 대북관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통일부 등을 통해 확인요청을 할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5. 추모사업

공작활동 중 사망·행불자에 대한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20○○. 3. 충혼탑을 건립(판교소재 정보사 자체 교육단 부지)한 후, 20○○. 11. 국가현충시설로 지정하여 국가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매년 6월6일 현충일날 참배행사시에 부대에서 행사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Ⅳ. 북파공작원 관련단체의 주장 및 요구

1. 당시 북파공작원 양성과정에서, 북파공작원들은 휴가·외출·면회금지 및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유린을 당하였고, 부대내에서 벌어진 인권유린행위와 사망자 등에 대한 불법적인 사후처리, 제대 후에도 국가기밀이란 이유로 자행된 협박·명예훼손 행위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피해자와 가해자 및 제3의 기관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북파공작원의 실체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국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기타 북파공작원의 사망·실종사실 통보, 생존공작원들의 거주지 파악, 분산·봉안된 공작원 위패의 집결·봉안, 북파공작원 묘지의 국립묘지화, 민간인 신분으로 파견된 자들에게 계급과 군번 부여 및 훈장 수여, 북파공작원의 국가유공자 등록, 북파공작원 관련단체를 국방부나 국가보훈처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인가 및 복지사업 지원, 후손들의 애국정신 고취를 위해 동지회관 건립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Ⅴ. 북파공작원에 대한 국가의 대응 노력

1. 국방부

북한에 생사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는, 북파공작원의 실체를 인정해야 하므로,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국익에 어긋나므로, 북파공작원 문제는 비공식적으로 조용한 보상이나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국가보훈처 및 국회

가. 국가유공자및예우에관한법률이 2002. 01. 26. 개정(2002. 03. 01.시행)됨에 따라, 민간인신분이더라도 부대원근무확인이 되면, 동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애국단체원'에 북파공작원을 포함시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 개정 전에는 19○○. 12. 31.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에 한하여 적용되었으나,

(2) 기간제한을 삭제하고 19○○. 1. 1. 이후에 동일한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 및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도 적용대상자에 포함(동법 제74조 제1항 제3호)시켰습니다.

나. 또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2001. 09.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동법 제2조제2호의 참전군인의 범위에 '19○○년 6월 25일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지역에 특수임무를 위해 파견되어 활동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를 포함시키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3. 국군정보사

가. 국방부 산하 국군정보사에서는 북파공작원 문제와 관련, 20○○. 10.부터 '민원발전위원회'를 구성, 현재까지 ○여건의 위로금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그밖에 충혼탑 건립(20○○. 10.), 6·25전쟁 중 활동한 자에 대한 참전증 수여, 무공훈장 찾아주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4. 사법부

서울행정법원 12부는 20○○. 2. 김○○가 북파공작원으로 훈련을 받다 장애인이 됐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며 의정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Ⅵ. 결 론

1.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

세계인권선언 제1조, 헌법 제10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을 천명하면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였으므로, 국가는 과거 북파공작원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건 특수임무에 투입되었던 그들을 이제는 국익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외면하고 방기한다면 부도덕한 국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2. 국가의 문제해결 방식의 소극성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0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 대상은 사망자와 상이자(장애등급 7급이내)입니다. 따라서, 실종자와 생존자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북파공작원은 그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사법적 구제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나. 특수민원위로보상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 각종 추모사업 지원 등은 단기적·잠정적인 것으로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다. 그리고, 국회에서 개정 시도를 한 바 있는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북파공작원을 참전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동법에 의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의료비감면,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양노시설에서 보호, 국립묘지 등에 안장, 고궁등의 이용시 무료이용 또는 할인, 7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소액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등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응분의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또한, 동법에서는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전쟁에 참전하지 못한 자(북파공작원 대부분)는 제외되는 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은 자명한 것입니다.

부득이 북파공작원을 참전유공자에 포함시키려면 입법기술적으로 동법의 부분개정이 아닌 전문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특별법 제정 권고

가.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과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및 특수위로보상규정에 따라 북파공작원중 일부가 그 수혜자가 되었고, 어느 정도의 보상과 함께 북파공작원의 실체가 사실상 인정된 점과

나. 북파공작은 민족분단과 냉전비극의 한 단면이고 북파공작원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에 의해 채용됨으로써 그 양성과정 및 공작임무수행 과정에서, 그동안 드러내 놓지 못하고 음지에서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인권유린 상황을 감안할 때,

다. 북파공작원 피해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북파공작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응분의 보상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국방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2003. 03. 10.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김창국 위 원 박경서 위 원 유 현 위 원 유시춘

위 원 조미경 위 원 김오섭 위 원 신동운 위 원 정강자 위 원 김덕현

2 삼청교육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거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삼청교육 관련자들의 피해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980년 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9.3.29. 법률 제4101호),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995.12.21. 법률 제5029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2000.1.12. 법률 제6122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2000. 1.12. 법률 제6123호),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01. 3.28. 법률 제6435호),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1996.1.5. 법률 제5148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2000.1.12. 법률 제6117호) 등과 같이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여러 종류의 특별법들이 제정되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모든 법적 구제수단을 차단당한 삼청교육피해자들을 위하여 삼청교육 피해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삼청교육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에 대한 구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권고함.

Ⅰ. 검토배경

1.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약칭 ○○○) 회장 전○○은 2001. 12. 17. 국가인권위원회에 대검의 삼청교육 수사에 대한 촉구와 더불어 진상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을 접수하여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 밖에도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총 6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으나, 대부분 19○○년대에 일어난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안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의 기간 도과로 인해 각하되었습니다.

2. 또한 ○○○ 회장 전○○은 2002. 11. 30. 삼청교육대피해자의명예회복및피해배상특별법안이 정부입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거, 당시 피해 현황 및 정부의 피해보상 추진과정을 검토하고, 피해자들의 요구 및 정부, 법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정부와 국회에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삼청교육 피해관련 특별법 제정을 권고합니다.

Ⅱ. 삼청교육 피해 현황

1. 19○○. 8. 4.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를 발표하고, '계엄포고령 제13호' 및 '삼청5호 계획'하에 전국 각지에서 ○명의 시민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 등급을 분류, ○명은 군사재판에 회부하였고 ○명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개 군부대에 설치한 삼청교육대로 분산 수용하여 강제적인 순화교육을 받게 하였습니다.

2. 군부대 내 순화교육 중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장파열, 뇌진탕, 질식사 등의 현장사망자 ○명, 후유증 사망자 ○명, 행방불명자 ○명, 정신질환자 등 각종 질환자 ○명과 당시 강제 연행된 피해자 ○명, 미성년자 ○명 그리고 순화교육 종료 후 재판없이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명 등이 현재까지 파악된 삼청교육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 현황입니다.

Ⅲ. 삼청교육 피해보상에 대한 정부의 조치

1. 1988. 11. 26. 노태우 대통령의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실시' 특별담화에 따라 동년 12. 3. 삼청교육대 피해보상 계획이 발표되고 국방부가 ○명의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바 있으나 보상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는 없었습니다.

2. 이후, 19○○. 1. 전국삼청교육피해자모임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에게 삼청교육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안의 입법청원을 하였고 동년 7. 부터 동년 11. 까지 3차에 걸친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 12. 15. 노태우 대통령은 삼청교육 피해자를 비롯한 국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집단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포괄적 입법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후속조치가 없었습니다.

Ⅳ. 삼청교육 피해관련 특별법(안)을 위한 입법 활동

1. 19○○. 11. 8. 제13대 국회에서 김○ 의원 외 34인이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130652)을 발의하고 제9차 국방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검토보고 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하였으나, 소위에서 보상입법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제13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 19○○. 11. 2. 제14대 국회에서 이○○ 의원외 94인이 제안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40127)이 국방위원회에 다시 회부되었고 19○○. 11. 4. 이○○ 의원외 61인이 발의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41295)이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19○○. 12. 5. 법안심사소위에서 삼청교육 사망자와 상이자가 아닌 단순 순화교육이수자(○명)도 삼청교육피해자로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자는 국방부의 의견으로 인해 법안이 계류 중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3. 19○○. 11. 11. 제15대 국회에서 임○○ 의원 외 73인이 발의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50247)이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 6. 16. 제16대 국회개원 이후 현재까지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 특별법안은 발의된 바 없습니다.

Ⅴ. 삼청교육 관련 쟁점

1. 피해자 요구사항

가. 삼청교육피해자 중 일부 현장사망자에 대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있었으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을 위하여 그 전 단계로서 삼청교육 전과정의 진상규명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19○○년 8월 국보위에 의해 자행된 삼청교육의 수많은 희생자와 유족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배상 및 명예회복과 함께 국가적 비극을 마무리하기 위해 삼청교육피해자의배상등에관한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삼청교육과 같은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의한 피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의 청구시효와 관련하여 예외적 적용을 해야 하며, 그러한 국가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공소시효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인권위원회 등 ○여개 인권·사회단체는 20○○. 3. 8.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 착수 등을 촉구하였으며 20○○. 5. 21. 국내 13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반인도적 국가범죄 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는 국회에 '반인도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을 입법 청원을 하였습니다.

라. 당시 삼청교육대에서 민간인을 폭행치사한 군인 7명이 군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소속부대 지휘관들에 의해 형집행이 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정부의 입장

가.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과 관련하여 정부의 재정부담능력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19○○. 당시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 그 최종 판단결과를 보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모아 처리방안을 결정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판결).

다. 19○○. 12.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하나의 법 속에서 종합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직언론인, 해직예비군중대장, 복직된 전교조 교사들의 해직기간 중 보상 문제 등과 함께 통합법으로 다루기로 하였으나 어떤 진전도 없었습니다.

Ⅵ. 법원의 판단

1. 청구시효 소멸

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19○○. 1. 이후에는 강박상태가 종료되어 정상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 판결).

나. 2002. 10. 서울지법 민사29부(곽○○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114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상시점이 ○○○ 전 대통령의 퇴임시기인 93. 2.이므로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했다고 하며 원고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서울지법 2002. 10. 24 선고, 2001가합○○○○ 판결).

2. 국가가 신뢰를 깨뜨린 데 대한 손해배상

가. 2001. 7. 대법원1부(주심 ○○ 대법관)는 삼청교육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청구시효는 비록 소멸되었으나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통한 대국민 약속을 이행치 않아 국가가 신뢰를 깨뜨린 점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개인당 200만~1000만원을 국가가 지급토록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98다○○○○ 판결).

나. 2002. 7. 부산지법 민사7부(○○○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50명이 국가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약속을 어겨 신뢰를 깨뜨리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청구권은 16대 국회개원 1년 후인 2001년 7월에서 2004년 6월까지 유효하다며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1000만~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2. 7. 3. 선고, 2002가합○○○ 판결).

다. 또한, 2002. 11.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 등 판사 2인)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16대 국회개원 1년여가 지난 때에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며, 이 사건 소는 그때로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1. 9. 15.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국가가 지급토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2. 11. 20. 선고, 2002나○○○○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2. 5. 17 선고, 2001가단○○○○ 판결).

Ⅶ.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1. 20○○. 9. 15. 결정에 의해 삼청교육 중 의문사한 자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한 것으로 공식 인정하였으며, 삼청교육 실시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조치를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2. 또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삼청교육으로 인해 의문사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Ⅷ. 결 론

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청교육 피해와 관련하여 정부는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을 통한 보상 확약 및 국방부의 피해자 신고·접수시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후속 보상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 그러나, 하급법원의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판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의문사 인정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 요청 등과 같이 삼청교육 피해의 구제조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3. 19○○. 12. 노태우 전 대통령이 80년 해직 언론인, 5공 시절 대량 해직된 예비군 중대장, 복직한 전교조교사와 함께 삼청교육 피해문제에 대한 통합 입법을 지시하였으나, 이는 입법 대상에 있어 각각의 성격 및 기준의 상이성 등으로 인하여 통합입법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4. 따라서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9. 3. 29 법률 제4101호),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995. 12. 21 법률 제5029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22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01. 3. 28 법률 제6435호),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1996. 1. 5 법률 제5148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2000. 1. 12 법률 제6117호) 등과 같이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여러 종류의 특별법들이 제정되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5. 모든 법적 구제수단을 차단당한 삼청교육피해자들을 위하여, 삼청교육 피해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삼청교육 전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에 대한 구제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주문과 같이 삼청교육 피해관련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는 바 입니다.

2003. 3. 10.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김창국 위 원 박경서 위 원 유 현 위 원 유시춘

위 원 조미경 위 원 김오섭 위 원 신동운 위 원 정강자 위 원 김덕현

3 군복무 부적응병사 인권상황 개선권고

▌결정사항 ▌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에게

[1] 군 징병검사단계에서 군복무 부적응[3]이 예견되는 자를 사전에 감별해낼 수 있도록 관할 병무청, 신병훈련소 및 보충대에 임상심리 전문가를 확충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과

[2] 군 복무기간 중에는 병사들의 군복무 부적응 원인해소를 위하여 병사들에 대하여는 고운말 사용 등을 장려하는 한편, 다양한 의사소통 창구를 활성화하고, 간부들에 대하여는 양성 및 보수교육 등 각종 교육 과정에 부적응 병사 상담 및 관리기법 이수를 제도화할 것과

[3] 기본권전문상담관의 경우에는 근무환경 및 신분을 보장하고 조기에 확대 배치하여 장병 기본권을 보장하게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게 하고 그 운영실태를 외부에 공개할 것과

[4] 비전캠프와 관련하여서는 예산지원 및 전문성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보호관심병사제도는 대상자 비밀보호와 보호자와 연계관리 등을 통하여 군내부의 노력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할 것과

[5] 전역단계에서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시 정신과 군의관 참여 등 전문성을 제고하고, '계속복무'로 결정된 병사들이 원할 경우 사회복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정신질환자 및 자살처리자[4] 등에 대한 전·공사상자 분류기준을 개정하여 숭고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각 권고

▌주 문 ▌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에게

1. 군 징병검사단계에서 군복무 부적응[5]이 예견되는 자를 사전에 감별해낼 수 있도록 관할 병무청, 신병훈련소 및 보충대에 임상심리 전문가를 확충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과
2. 군 복무기간 중에는 병사들의 군복무 부적응 원인해소를 위하여 병사들에 대하여는 고운말 사용 등을 장려하는 한편, 다양한 의사소통 창구

3) '군복무 부적응'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나, 적절한 용어을 쉽게 찾을수 없어 편의상 사용함을 밝혀둡니다.

4) 군에서 '자살'로 결정한 자 및 유가족 측에서 '자살'로 인정하지 않는 자를 포함함.

5) '군복무 부적응'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나, 적절한 용어을 쉽게 찾을수 없어 편의상 사용함을 밝혀둡니다.

를 활성화하고, 간부들에 대하여는 양성 및 보수교육 등 각종 교육 과정에 부적응 병사 상담 및 관리기법 이수를 제도화할 것과

3. 기본권전문상담관의 경우에는 근무환경 및 신분을 보장하고 조기에 확대 배치하여 장병 기본권을 보장하게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게 하고 그 운영실태를 외부에 공개할 것과
4. 비전캠프와 관련하여서는 예산지원 및 전문성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보호관심병사제도는 대상자 비밀보호와 보호자와 연계관리 등을 통하여 군내부의 노력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할 것과
5. 전역단계에서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시 정신과 군의관 참여 등 전문성을 제고하고, '계속복무'로 결정된 병사들이 원할 경우 사회복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정신질환자 및 자살처리자[6] 등에 대한 전·공사상자 분류기준을 개정하여 숭고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각 권고한다.

▮ 이 유 ▮

1. 검토 배경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06년도 까지 군관련 인권침해사건으로 접수한 372건 중 약 30%에 해당하는 102건이 군복무 부적응과 관련된 것이며, 육군의 경우 군복무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살 처리된 사고가 연평균 약 58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발생한 군무이탈 사고 중 64.2%에 달하는 697건이 군복무 부적응과 관련된 것이다.

나. 2005년도에 발생한 GP 총기사건이 군복무 부적응과 관련된 것으로 발표된 것을 볼 때, 군복무 부적응의 문제는 당사자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문제로서 부적응병사에 대한 대책이 곧 군 발전의 핵심적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과제로 '군복무 부적응 병사의 인권상황'을 선정하여 조사를 마쳤고 이 결과 등을 토대로 군전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

6) 군에서 '자살'로 결정한 자 및 유가족 측에서 '자살'로 인정하지 않는 자를 포함함.

2. 검토 근거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19조 1호에 그 업무로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및 제10호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 1항에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복무 부적응병사 인권상황 개선권고에 대하여 전항의 내용을 검토 근거로 삼았다.

3. 군복무 부적응에 대한 검토

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분석결과와 문제점

1) 유형별 분석

가)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06년까지 인권침해 관련 진정건수는 18,034건이며 이중 군 관련 진정건수는 372건으로 그 비중은 약 2.1%이며 372건에 대한 유형별 분석결과(진정요지 중복시 주된내용으로 분류)는 아래의 표(표 #1)와 같다.

〈표 1〉 위원회 군관련 진정사건 유형별 분석

구 분		사인규명 요구	가혹행위자 처벌 요구	의료권 침해	복무일반	교도행정	기타군사
계	372(건)	107	69	18	36	28	114
2006년	64	8	17	6	6	6	21
2005년	65	7	17	7	9	2	23
2004년	60	4	13	0	9	11	23
2003년	73	43	5	2	5	6	12
2002년	52	14	14	2	5	3	14
2001년	58	31	3	1	2	0	21

나) 총 372건 중 군대내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요구 107건(6.25.민간인학살 29건, 군의문사 27건 등 포함), 구타 및 가혹행위자 처벌요구 69건, 의료조치 미흡 18건, 복무규정 부당 36건, 교도행정 28건 및 기타군사 114건(삼청교육대/북파공작원 보상요구 26건 등)으로 나타났다.

2) 사인규명 요구 진정사건 분석

가) 총107건을 분석해보면 아래의 표(표 #2)와 같다.

〈표 2〉 사인규명 요구 진정사건 분석

구 분	총계(건)	군복무 부적응 관련					군복무 부적응 무관
		소계	구타 가혹 행위 원인	따돌림 등 원인	업무부담 원인	여친 등 기타	민간인학살, 의문사 등
계	107	41	12	5	13	11	66
2006년	8	8	1	2	3	2	0
2005년	7	6	2	0	2	2	1
2004년	4	4	1	0	1	2	0
2003년	43	9	2	1	4	2	34
2002년	14	8	3	1	2	2	6
2001년	31	6	3	1	1	1	25

나) 사인규명 요구 진정사건 중 군복무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사건은 총 41건으로 38.3%에 해당되고, 세부내용은 사망원인이 구타 가혹행위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건이 12건, 병영내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건이 5건, 업무부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건이 13건, 기타 11건 이다.

3) 가혹행위자 처벌요구 진정사건 분석

가) 총69건을 원인별로 분류해보면 아래의 표(표 #3)와 같다.

〈표 3〉 가혹행위자 처벌요구 진정사건 분석

구분	총계 (건)	군복무 부적응 관련						군복무부적응 무관
		소계	구타 및 가혹 행위로 자해시도	구타 및 가혹 행위로 정신질환 발병	구타 및 가혹 행위로 부대탈영	업무미흡 질타 등에 의한 부적응	명령부적응 등 기타	단순 폭행 등
계	69	61	7	40	6	4	4	8
2006년	17	16	2	10	2	2	0	1
2005년	17	16	3	9	1	1	2	1
2004년	13	10	1	6	2	0	1	3
2003년	5	5	1	3	1	0	0	0
2002년	14	11	0	9	0	1	1	3
2001년	3	3	0	3	0	0	0	0

나)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질환 및 부적응 증세를 보이고 있으니 가해자 처벌 등을 원한다는 진정은 총69건 중 61건으로 88.4%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군복무부적응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나. 육군 사고통계[7] 분석결과와 문제점

1) 최근 5개년 추세

5개년 평균 연 4,346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 4〉 육군 5년간 사고 추세

구분	평균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계(건)	4,346	4,905	4,581	4,507	4,079	3,660

2) '06년도 사고 계급별·유형별 분류

총 3,660건을 계급별·유형별로 보면 아래의 표(표 #5)와 같다.

〈표 5〉 육군 '06년 사고 계급별·유형별 분석

구분	계	총기	자살	군무이탈	폭행	기타군기	군용물	교통	화재	기타안전
계	3,660	1	66	1,085	776	753	255	683	4	37
간부	1,243	0	15	98	257	429	88	352	1	3
병장	340	0	1	11	141	65	50	63	1	8
상병	564	0	7	89	179	100	60	114	1	14
일병	735	0	19	367	125	86	38	96	1	3
이병	491	1	21	362	37	30	11	22	-	7
기타	287	0	3	158	37	43	8	36	-	2

7) 육군본부 발간 '06년 사고통계에 의함.

3) 부적응과 관련된 사고 분석

가) 자살사고

육군내 사망사고는 연 100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자살처리되는 사망사건수는 5개년 평균 년 58.2건이 발생하고 있고(표 #6 참조) '06년 들어 증가한 원인분석과 실질적인 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표 6〉 육군 자살처리사건 5년간 추세

구분(년)	평균	'02	'03	'04	'05	'06
계(건)	58.2	66	53	54	52	66

(1) '06년도 자살처리사건 원인별 분류

'06년도 자살처리된 건을 원인별로 보면 아래표(표 #7)와 같이 부대관계에 의한 경우가 43.9%나 되나 이들 대부분이 전공상분류기준에 의해 순직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표 7〉 육군 '06년 자살처리사건 원인별 분석

구분	계(명)	부대관계 (43.9%)					개인관계 (56.1%)					
		군의 통제성	업무 부담	선임 횡포	훈련 부적응	근무 부적응	가정 환경	염세 비관	허약 체질	여자 문제	채무 고민	성격 결함
인원	66	3	4	5	2	14	7	10	2	9	3	7
%	100	4.5	6.1	7.6	3.0	21.2	10.7	15.2	3.0	13.6	4.5	10.6

(2) '06년도 자살처리사건 복무기간별 분석

'06년도에 자살처리된 66건을 복무기간별로 보면 아래표(표 #8)와 같다.

〈표 8〉 육군 '06년 자살처리사건 복무기간별 분석

구분	계(명)	3월 미만	3월~6월	6월~1년	1년~1.5년	1.5년~2년	3년이상
인원	66	19	13	12	8	4	10

나) 군무이탈 사고

군무이탈 사고는 5개년 평균 연 1,042건이 발생하고 있다.

〈표 9〉 육군 군무이탈사고 5개년 추세

구분(년)	평균	'02	'03	'04	'05	'06
계(건)	1,042	1,099	1,040	1,010	978	1,085

(1) '06년도 군무이탈사건 원인별 분류

'06년도의 경우 원인별로 보면 아래표(표 #10)와 같이 군복무부적응에 의한 경우가 대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어 그 대책이 요구된다.

〈표 10〉 육군 '06년 군무이탈사고 원인별 분석

구분	계(명)	복무 부적응	처벌 우려	사적 제재	고참 횡포	선임 폭행	가정 문제	여자 문제	염세	향수	부채 문제	따돌림 등
인원	1,085	697	90	9	19	10	99	96	18	3	5	39
%	100	64.2	8.3	0.8	1.8	0.9	9.1	8.8	1.7	0.3	0.5	3.6

(2) '06년도 군무이탈사고 복무기간별 분석

'06년도에 군무이탈사고를 복무기간별로 보면 아래표(표 #11)와 같다.

〈표 11〉 육군 '06년 군무이탈사고 복무기간별 분석

구분	계(명)	3월 미만	3월~6월	6월~1년	1년~1.5년	1.5년~2년	2년이상
인원	1,085	209	329	353	103	33	58

다) 폭행사고

폭행 사고는 5개년 평균 연 1,094건이 발생하고 있다.

〈표 12〉 육군 5년간 폭행사건 추세

구분	평균	'02	'03	'04	'05	'06
계(건)	1,094	1,282	1,193	1,213	1,006	776

(1) '06년도 폭행사고 원인별 분류

'06년도 폭행사건을 원인별로 보면 아래표(표 #13)와 같이 사적 제재 및 고참의 횡포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표 13〉 육군 '06년 폭행사건 원인별 분석

구분	계	사소한 시비	사적 제재	고참 횡포	간부 갈등	음주	개인 감정	여자 문제
인원	776	378	91	120	23	69	81	14
%	100	48.7	11.7	15.4	0.3	0.9	1.0	0.2

(2) '06년도 폭행사건 복무기간별 분석

'06년도에 폭행사건을 복무기간별로 보면 아래표(표 #14)와 같다

〈표 14〉 육군 '06년 폭행사건 복무기간별 분석

구분	계	3월 미만	3월~6월	6월~1년	1년~1.5년	1.5년~2년	2년이상
인원	776	108	26	128	150	156	208

다. 실태조사[8] 결과 나타난 문제점

1) 실태조사 개요

2006. 7. ~ 9. 에 걸쳐 병무청, 육군훈련소, 육군 5개사단 등 총 7개부대를 방문하여 병사 940명, 간부 142명으로부터 설문조사한 자료와 면담자료, 그리고 문헌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설문도구는 군복무 부적응자 실태 설문지와 군복무 부적응 예비 척도, 그리고 표준화된 간이정신진단검사(Symtom Checklist-90-Revision : SCL-90-R)을 사용하였고, 면담도구는 반구조화 면접질문목록을 사용하였다.

2) 실태조사 내용

가) 징병단계 (병무청 및 육군훈련소)

(1) 병무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 인성검사는 적절한 배치와 입대 후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인성검사를 형식적 절차로 인지하여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검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으며 이로 인해 군복무 부적응자를 사전에 감별해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2) 검사실시자가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단일한 점수 커트라인 준거만 가지고 일괄적으로 판별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군 인성검사에서 가정문제 척도가 단지 정신병측면과 상관이 작다는 이유로 감별판단에서 제외되었고, 군 관련 특수내용척도(군 생활

8)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에서 200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을 발주받아 실시하였다.

준비도, 집합성향, 자기도피, 적개심표출, 신체증상, 반발척도) 결과를 판정시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3) '정밀진단요망' 해당자의 경우 한 두 시간의 간격을 두고 동일한 날에 동일한 검사를 두 번 실시함으로써 심리검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에 문제점을 갖고 있었으며, 2006년 조사당시 임상전문가가 병무청에는 없고, 육군훈련소는 심리검사의 전문훈련을 받은 기본권 상담관(상담심리사 1급자격증 소지자)을 감별업무에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4) 병무청에서는 인성검사만 실시할 뿐 지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육군훈련소는 지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단일한 점수를 준거로 판별하는데 이로 인해 경계선 지능의 병사들이 부대로 유입되어 군복무 부적응자 사전감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 복무단계

(1) 병사대상 설문결과

(가) 병사들 10명 중 1명 이상이 간이정신진단 검사에서 부적응 증상을 나타냈고, 그 이유로는 선임과의 갈등, 비합리적인 군대문화, 고된 훈련, 부당명령 등 주로 군대요소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나) 병사들의 절반 이상이 부대의 부적응병사 관리기법이 비효과적이라고 지각하였고, 특히 그 해결을 위해 '부대에 도움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부적응병사 문제에 대한 관리방법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2) 간부대상 설문결과

군복무 부적응 병사를 개인적으로 항상 관심을 두고 관찰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고, 징병단계에서 부적응이 예상되는 잠재 부적응자를 사전에 적극 감별하는 방안과 병사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부대배치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제안하였다.

다) 전역단계

(1) 현역복무 부적합심의

(가) 현역복무 부적합 처리절차는 소속부대장이 군복무 부적합자에 대하여 장관급 부대장에게 보고하고 장관급 부대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심의 부대장에게 보고하고 전역심의 부대장은 전역심사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나) 부적합 조사위원회 구성 및 전역심사시 군의관이나 의무대장이 참여하지만 정신과적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아 그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2) 심신장애 전역제도

(가) 군복무중 외상과 심신장애가 발생하여 더 이상 군복무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전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나) 군복무 부적응자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정신과 질환에 대한 '징병 신체검사 검사규칙'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표 #15)와 같다.

〈표 15〉 징병 신체검사 검사규칙 내용 (정신과)

질병· 심신장애 내용	정도 구분 /평가기준의 예
1. 기질성 정신장애 (치매, 섬망, 기억상실장애 및 그 밖의 인지장애, 일반적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등) 2. 물질관련장애 (정신활성물질의 복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태장애) 3. 정신분열병, 정신분열형 장애, 분열정동형 장애, 망상장애 4. 기타 정신병적 장애 5. 1형 및 2형 양극성 장애 6. 주요 우울장애 7. 그 밖의 기분장애 8. 신경증적 장애 9.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 증후군 (섭식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비기질성 성기능 장애등) 10.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성주체장애, 성적선호장애 등) 11.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 (IQ 테스트 또는 생활기록부 등 증빙자료와 정신과적 면담으로 군복무 적응가능성을 판단) 12.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 (전반적 발달장애, 학습장애, 운동기술장애, 의사소통장애, 주의력 결핍 및 파괴적 행동장애, 유소아기섭식장애, 틱장애, 배설장애 등을 말하며 이 경우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13. 신경정신과적 관찰(특정불능의 정신장애)	(7급)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3급) · 경도(진단을 내리기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 직업적 장애가 적은 경우) (4급) ·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5급) · 고도(1년 이상 치료경력이 있거나 1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자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그밖의 증빙자료로 입증된 사회부적응 행동이 있는자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해 충분히 많은 증상이 있거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에 따라 정도내용은 다소 상이. 위자료는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습관 및 충동장애, 성주체성장애, 성적 선호장애 등)의 예

(3) 전·공상 심의

(가) 군은 국방부 훈령인 '전·공사상자처리규정'에 따라 전·공상자에 대하여 각각 상이한 보상과 예우를 제시하고 있으며, 전·공상 판정은 소속 부대에서 '전·공상심의의 결서'를 작성할 때 기술하고 군병원의 의무조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수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전역심사위원회에서는 최종 전역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전역절차가 모두 끝나면 전·공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공상판정 여부가 결정되는데 전역 후 전·공상 심사위원회에서 '비전공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나) 전·공상분류기준표(표 #16)에 의하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해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이 선임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 부대측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도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적어 분류기준표 세분화를 통하여 사고자에 대한 국가의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표 16〉 전·공상 분류기준표

구분	기준번호	내용	비고
전사 및 전상	1-1	•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보훈대상 ※재해대상
	1-2	• 1-1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요양 중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전역된 사망자	〃
	1-3	•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거나 위험물 제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순직 및 공상	2-1	•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상이자	〃
	2-2	• 교육훈련 중 사고나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2-3	• 간첩의 신고 및 체포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2-4	• 군에서 공급한 음식물 중독으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출장 및 공용시간의 공무수행 중 매식 또는 부대장이 허가한 매식)	〃
	2-5	• 영내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발생으로 사망 또는 상이자(출장 및 공용시간의 공무수행 중 영외 취침포함)	〃
	2-6	• 영내 및 초소근무 중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2-7	• 출, 퇴근 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2-8	• 출장기간 공무수행 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2-9	• 전속파견 등의 명령을 받고 임지로 부임 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2-10	• 휴가, 외출, 외박허가를 득하여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 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2-11	• 소속관련 통제하의 행사참가, 체력단련, 기타 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2-12	• 휴가, 외출, 외박기간 중 강, 절도범 및 재해시 인명구조 등 사회공익을 위한 행위 중 사고(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구분	기준번호	내용	비고
	2-12-1	• 근무지대에서 공무수행 중 급사자 또는 급성질환으로 응급치료가 불가하여 그로 인한 사망, 상이자(무단이탈자 제외)	〃
	2-12-2	• 독신자 숙소 또는 관사에서 취침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 또는 사고자	〃
	2-13	•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사망 또는 상이자	〃
일반 사망 및 비전 공상	3-1	• 장난, 싸움 등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 사망 보상대상
	3-2	• 무단이탈 및 법령위반 등으로 구속 조사 중 질병 및 장해로 사망 또는 상이자	〃
	3-3	• 휴가, 외출, 외박기간 중 공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사망 또는 질병의 발생으로 사망 또는 상이자	〃
	3-4	• 당해 질병 발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사망 또는 상이자	〃
	3-5	• 영외거주자가 영외에서 공무와 관련 없이 개인용무 중 상해를 입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 또는 상이자	〃
	4-1	•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발생으로 인한 사망	※ 비해당
	5-1	•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 또는 상이자	〃

라. 군복무 부적응과 관련한 제도의 문제점

1) 기본권전문상담관제도

가) 육군은 인분사건 및 GP 총기사고 이후 병사들의 고충을 상담해줄 전문상담관을 전방 GOP 사단위주로 시범운영 중이며, 2006년까지 사단급에 130명, 2007년까지 연대급까지 400명을 배치한다고 한 바 있으나 2007년 8월 현재 육군 8개부대 16명, 해병대 2개부대 4명 등 총 20명을 운영하고 있다

나) 기본권 전문상담관이 지휘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사례가 적고 대부분 인사참모를 경유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신분이 1년단위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 신분보장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국방부내 인권교육 교육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이수할 필요가 있고, 부대배치 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이해증진 및 배치 후 병사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를 안내하는 창구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그 운영실적 및 성과 등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비전캠프

가) 육군에서 군복무 부적응자 및 자살우려자 등을 대상으로 사단급에서 실시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건전한 자아형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시켜 군복무 적응을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나) 3박 4일간 숙박형식으로 부대내 목사, 신부 등 군종장교 등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6년도엔 8,609명을 상대로 총 417회를 진행했으며, 이중 이병이 4,114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였다.

다) 비전캠프 1회 운영시 보통 60여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으나 그 해당부대 예산사정이 넉넉지 못하여 외부 전문가의 교육참여는 미미한 실정이며, 간부 자녀입소, 모범수료자 지휘관 표창 등을 통해 이미지 제고가 요구되며 수료자에 대한 추적관리 및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성과 등에 대한 외부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3) 보호관심병사 제도

가) 육군내에서 인명사고 사고예방대책의 하나로 병사의 신상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상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나) 선정기준은 학력(중퇴자), 가정환경(부모 이혼 등), 건강(지병, 신체허약), 입대전 경력(무직, 유흥업소), 복무자세(복무이탈, 잦은입원 등), 종교(사이비)등 6개 항목을 두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시 철저한 비밀보장과 가족들과 연계한 관리 등 그 내실있는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4. 결 론

위와 같이 군복무 부적응병사의 문제는 장병들의 인권과 복지의 증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하여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서 그 해결책 및 개선사항을 권고하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18.

위 원 정강자 위 원 신혜수 위 원 윤기원

4 군복무로 인한 '이명' 피해자 대책 마련 등 권고

▌결정사항▐

[1] 국방부장관에게, 군복무로 인한 이명(耳鳴) 피해에 대한 실상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2] 국가보훈처장에게, 이명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치료보상 및 국가유공자등록 등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우리나라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군 복무로 인한 이명 증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전체적인 피해 정도에 대해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군이명 피해자들 중 현실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바, 군 이명 피해의 입증에는 어려움이 큰 반면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

[2] 또한 추가적인 군 이명 피해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청력보존프로그램을 군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바, 적어도 이명/난청의 위험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포병 등 고위험군 부대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청각검사 및 측정결과 데이터의 보관·활용, 개인 청력보호구 착용 의무화, 피해예방 교육 등 방안을 매뉴얼화 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34조 제6항, 제36조 제3항

▌주 문▐ 1. 국방부장관에게, 군복무로 인한 이명 피해자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과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군 전역자들의 이명(난청 포함)피해에 대하여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이들의 피해실상을 확인 할 것.

나. 소음노출 평가 및 예방교육, 주기적 검사와 보호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추가피해를 예방할 것.

다. 각 군의 고소음 발생부대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소음측정 및 청력검사, 피해예방 교육, 관련 데이터의 보관 및 활용 등 관련 대응책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메뉴얼화 하여 시행할 것.

2. 국가보훈처장에게, 군이명 피해자 보상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군병원 진료기록이 없는 피해자의 실효적인 치료보상을 위하여 입증책임 완화 등의 방법을 마련할 것.

나. 상대적으로 높은 군 이명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을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명검사시 삶의 질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다. 국가유공자등록 청력검사에서 고주파영역에서 청력이 떨어지는 이명 피해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검사방법을 채택할 것.

▮이 유▮

I. 권고 배경

군이명피해자연대는 2010. 6. 3.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군생활로 인해 평생의 불치병인 이명이 발생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나 소음성 난청이 동반되어야만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여 신청자 대부분이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에서 탈락하고 있으니 군이명 피해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과 보상방법 및 예방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 위원회의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위 진정사건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나, 군 제대 후 귀울림병을 호소하는 국민이 다수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책적인 검토를 통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II. 검토기준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항, 제34조(사회보장) 제6항, 제36조(국민보건보호) 제3항

III. 군이명 피해자 현황 파악의 필요성

'이명'이란 외부에서의 자극 없이 소리를 느끼는 증상을 말하며 '군이명'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이명증상을 말한다. 우리나라 군이명 피해자의 현황에 대하여 국방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는 진행된 바가 없으나 외국의 군이명 피해자 조사와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군이명 피해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임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과 군이명으로 인한 2차피해(우울증)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함께 살피고자 한다.

1. 외국의 군이명 피해자 현황

가. 미국

제대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군이명 피해자 조사를 한 미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제대군인의 복무관련 장애중 이명이 9.5%의 비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는 6.6%의 난청이다.

〈표1〉 제대군인의 일반적인 복무관련 장애(미국)

장애	제대군인수	점 유 비
1. 이명	77,486	9.5%
2. 난청	54,450	6.6%
3.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33,129	4.0%
4. 요부 혹은 경부 염좌	30,086	3.7%
5. 건초염	29,079	3.6%
6. 무릎 굴곡장애	27,578	3.4%
7. 퇴행성 척추 관절염	25,682	3.1%
8. 당뇨병	23,508	2.9%
9. 일반 외상	20,089	2.5%
10. 외상성 관절염	18,334	2.2%
합계-가장 일반적인 장애	339,421	41.5%
종합 - 모든 장애	818,954	100.0%

출처: 미국 보훈부(FY 2009): http://www.vba.va.gov/REPORTS/abr/index.asp

나. 호주

호주의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의 전역 군인 권리보장법에 따른 장애신청의 상위 15개 질환에서도 1위인 변형성 관절증에 이어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이 2, 3위로 보고되고 있다.

〈표2〉 전역군인 장애신청질환(호주)

장 애	계	비율	통과	통과비율	기준미달건수
1. 변형성 관절증	2,810	20.9%	2,069	74%	741
2. 감각신경성 난청	2,147	16%	2,118	99%	29
3. 이명	2,010	15%	1,933	96%	77
4. 요추증	1,721	12.8%	1,423	83%	298
5. 일광성 각화증	981	7%	967	99%	14
6. 비흑색성 피부 악성종양	878	6.5%	868	99%	10
7.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803	5.9%	624	78%	179
8. 후천성 백내장	709	5.2%	707	100%	2
9. 허혈성 심장질환	675	5%	442	65%	233
10. 고혈압	654	4.9%	208	32%	446

※ 호주 보훈부[보훈심사위원회 발간 '주요질병의 합리적 심사기준 점검에 관한 연구(난청 이명) 표7에서 재인용]

다. 캐나다

캐나다에서 지급 승인된 전역군인의 장애인 연금 상위 10개 질환에서도 이명과 난청이 각각 1, 2위로 상위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3〉 전역군인 장애인 연금 질환(캐나다)

지급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장애	이명	난청	슬내 장애	외상후 스트 레스	요추 추간판 질환	만성 요통/ 염좌	공황 장애/ 불안 장애	평발	경추디 스크	만성 견관 절충돌

※ 캐나다 참전용사의 목소리
http://www.veteranvoice.info/db/general_info_more.asp?search_fd0=474

2.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

소음에 노출된 군인들의 이명증상이 확인되는 연구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문인석의 연구(Moon IS, Noise-induced hearing loss caused by gunshot in South Korean military service, Military medicine, 2007)에 의하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사격연습을 시행한 3,650명의 공군병사를 대상으로 사격 훈련 후 청력검사를 시행하였는바, 7명의 병사에서 소음성 난청(좌측 귀, 평균 33.1dB)이 발생하였고 10일간의 치료 후 청력은 치료시작 후 4일 ~ 72일 사이에 모든 환자에서 호전되었으나 이명은 개선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나. 장은철 등의 연구(장은철 등, 일개 공군부대의 소음 노출 작업자의 이명, 군진의학회지, 2004)에 의하면 일개 비행단 항공기 정비 작업자 4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바, 현 부서 근무 후 149명(33.2%)에서 이명을 경험하였으며, 그 중 56.2%는 양측 귀 모두에서 이명이 발생하였고, 14.4%에서는 수면장애를 겪었다. 난청은 113명(24.6%)에서 발생하였고 난청과 심한 이명을 16명(3.5%)에서 호소하였다.

다. 문성호 등의 연구(문성호 등, 0군단 지역에서의 소음성 난청 유병률 조사, 군진의학회지, 2006)에 의하면 1년 간 국군ㅇㅇ병원 이비인후과 내원 환자 중 사격으로 인한 난청 및 이명환자가 247명 (9.7%)을 차지하고 특정 포병대대 병사 327명을 대상으로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한 결과 37명 (11.3%)에서 소음성 난청을 보였다.

라. 윤성호, 유지영의 연구(윤성호, 유지영, 군 사격훈련시 병사들의 소음성 난청 발생에 대한 연구, 군진의학회지, 2006)에 의하면 사격장에 조교로 근무하는 38명에게 순음청력검사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바 이 중 7명(18.4%)이 이명을 호소하였고, 7명(18.4%)이 일시적 청력손실을 경험하였다. 이명이 발생한 7명의 청력검사역치(주파수별(125Hz - 8000Hz)로 순음을 들려주었을 때 각 주파수대에서 피검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나 말)가 이명이 없는 31명의 역치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마. 황성주·전태준의 연구(황성주·전태준, 귀 보호구의 착용이 소음성 난청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역학적 조사 연구, 군진의학회지)에 의하면 1991. 10. 30.~1991. 11. 05.까지 전차 승무병 162명, 포병 2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바, 소음성 난청은 전차병 8.6%, 포병 11.9%에서 발생하였으며 복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소음성 난청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 국가보훈처 연구 결과

국가보훈처가 2011. 6월 ~ 8월까지 진행한 군이명피해자연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명 관련 설문조사결과(총 3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그 중 설문완성도가 높은 295명분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표4〉 이명장애지수와 우울증상

이명의 영향		N(%)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우울증 점수)]		p-value
			20점이하(%)	21점이상(%)	
이명 장애지수	장애없음 (17점이하)	1 (0.3)	1(100.0)	0	〈 0.001
	경도장애 (18-37점)	9 (3.1)	9(100.0)	0	
	중도장애 (38-57점)	59(20.0)	52 (88.1)	7(11.9)	
	고도장애 (58점이상)	226(76.6)	98 (43.4)	128(56.6)	
이명 장애지수	57점이하	69(23.4)	62 (89.9)	7(10.1)	〈 0.001
	58점이상	226(76.6)	98 (43.4)	128(56.6)	

가. 이명장애와 우울증상과는 서로 높은 관련성을 보이며 고도의 이명장애가 있는 집단에서 우울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명장애와 우울증상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변수간의 인과관계 분석방법)결과 서로의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또한, 이명으로 인해 직업을 전환한 경험, 치료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우울증세가 나타나는 비율이 현저히 높고 우울증 발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소결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경우 이명이 보상을 받은 장애유형 중 1 -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사례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격훈련 등으로 인한 난청/이명 피해사실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의 군이명 피해자 모임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명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2차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건군 이래 2010년까지 일반병에서 장교까지 전역자는 약 16,778,160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명증상과 이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군복무로 인한 이명피해의 정도가 전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해 국가차원에서의 실태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실정이다. 이명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방안 등 대책 마련의 출발점은 정확한 이명 피해의 실태조사로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군 이명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군이명 피해자들이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나 현실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여 현행 구제제도는 실효적인 구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행 구제제도와 외국 구제제도를 비교한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기하기로 한다.

1. 현행 구제제도 개요

군이명 피해자들이 전역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방법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지원을 받는 방법이 있으나 전역자 전체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법」상 구제제도를 살펴본다.

가. 우리나라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禮遇)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軍警)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제도를 두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지원하고 있다(「국가유공자법」제1조). 국가유공자에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법」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인 공상군경(公傷軍警)이 포함되어(「국가유공자법」제4조) 군이명 피해자도 공상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여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 국가유공자 등이 되려고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2항).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구분하여 판정된다(「국가유공자법」제6조의4 제1항).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보상금, 보훈급여금 등 여러 혜택을 받게 되며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가계조사 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된다(「국가유공자법」제12조 제4항).

2. 이명상이를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가. 이명상이(耳鳴傷痍)를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4의 2. 귀의 장애 중 다. 준용등급 결정 2)의 기준인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등록요건인 7급이 인정된다.

나. 청력의 측정은 2012. 1. 30. 이전에는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1,000(b) 및 2,000(c) 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4분법(a+2b+c/4)으로 판정하였으나 2012. 1. 30. 이후에는 500(a)·1,000(b)·2,000(c) 및 4,000(d) 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3. 이명환자의 청각능력의 특성

가. 기존의 저주파영역 중심의 청력검사는 고주파영역에서 난청현상이 발생하는 군이명 피해자들의 청각능력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아 군이명 피해자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왔다는 비판이 있다. 2011년 연구 '고주파 난청과 이명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명환자 중 88%가 2kHz 이상 고주파에서 난청을 보이고 있다(Kim DK, Park SN, Kim HM, Son HR, Kim NG, Park KH, Yeo SW. Prevalence and significance of high-frequency hearing loss in subjectively normal-heraing patients with tinnitus.

Ann Otol Rhinol Laryngol, 2011). 김규상 등이 행한 2002년 연구도 '이명과 청력역치'에 의하면 이명증상이 있는 집단이 2kHz 이상 고주파 영역에서 청력역치가 현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명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이는 저주파영역에서는 난청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2kHz영역에서는 난청현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규상·정호근, 소음 노출 작업자의 이명의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산업의학회지, 2002).

나. 국가보훈처는 청각능력검사의 합리성제고를 위해 2012. 1. 30.부터 4000Hz인 고주파영역의 청력역치도 포함하여 청각능력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저주파영역 중심의 청력검사가 갖는 문제점을 다소 완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4. 외국의 난청/이명 장애판정기준

가. 난청 기준

군 관련 난청/이명의 평가 및 보상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호주, 캐나다, 미국 세 나라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2012. 1. 30.까지는 (500 + 1000 * 2 + 2000) / 4의 3구간 4분법으로 계산한 값을 양쪽 귀 상태에 따라 일률적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 데 반하여, 호주, 캐나다, 미국의 경우는 다각도에서 난청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호주는 난청 장애등급 결정에 있어서 합산한 청력역치값뿐 아니라 삶의 질 계수를 함께 고려하며, 캐나다는 순음청력역치 합산에서 100dB 이상이거나 특정음역 4kHz에서 50dB이상이면 장애로 판정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미국은 순음역치 평균, 어음(語音) 명료도 점수, 보조검사를 통한 양이 상태 검사를 통해 이 세 가지 사항을 조합한 표를 이용하여 장애율을 결정하고 있고 전반적인 난청뿐 아니라 어느 한 주파수에서 심한 난청이 있는 경우 혹은 어음인식점수가 매우 낮은 경우 등도 추가로 장애로 간주하고 있다.

〈표5〉 국가별 난청판정 항목과 기준비교

구분	판정항목	판정기준	비 고
호주	- 500, 1000, 1500, 2000, 3000, 4000(Hz)의 순음청력 역치별 청력손실계수 합산 (APHL) - 연령조정 (59세 이상) - 삶의 질 계수	- 난청 형태/양이의 APHL/삶의 질을 고려하여 최종장애등급 결정	호주보훈부 장애평가지침

구분	판정항목	판정기준	비 고
캐나다	- 500, 1000, 2000, 3000(Hz)의 순음청력역치의 합산(DSHL) - 4000 (Hz) 청력역치 - 삶의 질 평가	- DSHL이 양이의 하나에서 100 dB 이상 혹은 - 4000 Hz에서 양이에서 50dB 이상 ; 위의 조건이 되면 장애테이블에서 등급결정	장애자격심사지침 삶의질평가지침
미국	- 순음청력역치평균 ; 1000, 2000, 3000, 4000 (Hz) - 어음명료도점수(메릴랜드 CNC) - (보조검사 - Stenger 검사, 고막운동성검사, 등골근반사)	- 순음역치평균 / 어음명료도점수 / 양이 상태를 조합한 테이블로 장애율을 결정 ; 다음도 장애로 간주함. · 40dB이 한 주파수라도 존재 (500 Hz 포함) · 3개 이상의 주파수에서 26dB 이상인 경우(〃) · 어음인식점수가 94% 미만인 경우	제대군인보상처 (VBA) ; §4.85 청취감각장애 ; 청각심사 워크시트
한국	- 500, 1000, 2000(Hz)의 순음청력역치	(500+1000 * 2+2000)/4 의 3구간 4분법으로 계산한 값을 양이 상태에 따라 장애 등급 결정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이명 기준

다음으로 세 나라의 이명장애 판정기준을 살펴본다. 이 세 나라도 이명의 경우 질병 특성상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 정확한 판단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관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세 나라 모두 이명을 군복무 관련 질병으로 인정하는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난청이 동반되었을 경우에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것에 비하여 외국의 경우는 난청과 독립적으로 이명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 표는 호주, 캐나다, 미국 그리고 한국의 전역 군인 이명평가 항목 및 기준들이다. 호주의 경우 이명여부에 대해 의사가 참여한 구술심리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를 통한 삶의 질이 평가되었다. 실제로 이명은 역학적 특성상 단순한 크기를 파악하는 것보다도 크기와 형태가 같은 이명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이명의 심각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요소로 판단된다.

〈표6〉 국가별 난청판정 항목과 기준비교

구분	항목 (평가)		장애율 (%)	기준	비 고
호주	- 이명 유무 구술 심리 (의사참여) - 삶의 질 평가 (설문 조사-자유 선택, 비선택시 의학적 평균치 적용)	독립	0	이명이 없거나 간헐적인	호주 보훈부 장애평가 지침 (140p)
			2	약한 이명이 있지만 매일 발생하지는 않는	
			5	매일이명이 일어나지만, 많은 시간은 견딜 수 있는	
			10	심한 이명, 매일 발생하여 마스킹 장치가 필요한 거의 심각	
			15	매우 심각한 이명, 휴식을 방해하고, 집중력을 잃게 하며, 극단의 불편함을 야기, 주기적 수면에 방해, 매일 발생	
캐나다	- 이명 유무 구술 심리 (6개월 이상 이명을 경험한) * 복무시 소음노출 - 3000, 4000, 6000 (Hz) 중 하나에서 25 dB 이상의 청력 손실 - 삶의 질 평가 (설문)	독립	0	주당 1회 미만 돌발성	장애자격 심사지침 (기타장애-이명표 9-3)
			1	주당 1회 이상	
			3	일일 1회 이상	
			5	24시간 발행, 처방적 억제장치나 물리치료는 필요치 않음 비처방적 장치(예: 라디오) 사용이 필요할 수 있는 상태	
			10	24시간 발생. 의학적 처방을 받은 경험이 있는 상태	
미국	- 이명 유무 구술 심리 (州면허 Audiologist가 워크시트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구술 심리)	독립	10	이명에 관한 진술유무와 현재의 이명여부, 발병일자와 환경, 발병 후 생활환경등 관련 진술을 통해 판정	제대군인보상처 (VBA) 청각심사워크시트; 이명10% 장애등급 허가
한국	- 이명검사 (Tinnitogram)	조건	7 등급	- 3회 이상의 검사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가 검출 - 하나 이상의 귀에서 50dB의 청력장애의 난청 동반 - (이명에 반드시 난청이 50dB이 동반되어야 함. 이명 + 난청 혼합	국가유공자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5. 현 구제제도의 문제점

가. 현 구제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군이명 피해자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구제를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나. 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3028 사건 진정인이 국가보훈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건군 이래로 준용등급 7급(이명+난청 혼합법)이 포함되어 있는 상이등급 7급 302호 국가유공자는 총309명이다. 이 수치에는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명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 수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군이명으로 보상대상으로 인정을 받은 수가 전체 상이유형 중 1~3위를 차지한 점, 제대군인의 9.5%에 이명장애가 있다는 점, 캐나다의 경우 1년 동안 (09년부터 10년 사이)에 이명장애자가 1,933명이 확인된 점을 종합하면 건군 이래 약 17,000,000여 명이 전역한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수의 이명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사실상 거의 대부분 이명피해에 대해 치료 및 보상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7〉 청각상이로 인한 국가유공자등록인원수

별표3의 신체상이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등급별 인원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자	3급17호	·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7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자 · 두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자	175명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급94호	·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60dB 이상 골전도 30dB 이상의 하강(下降)이 있는 자 ·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7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221명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 1항38호	·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이상 하강이 있는 자	461명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급301호	·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222명

별표3의 신체상이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등급별 인원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급302호	·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309명
준용등급 7급(이명+난청혼합법)		·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해야 7급을 인정한다.	

※ 군이명피해자연대가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여 얻은 답변자료이다.

다. 군이명 피해자가 국가에 의해 현실적으로 구제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첫째 군부대의 특성상 군이명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접근이 어려워 이명피해가 군생활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의 어려움, 둘째 이명피해와 군생활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이명으로 인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점, 특히 이명증세가 있을 뿐 아니라 한쪽 귀 청력역치가 50dB이상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난청장애로 인한 산재보상 기준인 40dB보다 높은 점, 셋째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난청검사방법이 저주파영역(500, 1000, 2000Hz)으로 한정되어 있어 고주파영역(4000Hz이상)에서 난청현상이 특징적인 이명피해자의 난청을 잡아내기 어려웠던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구제제도는 앞의 검토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이명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개선 방안

가. 인과관계 입증 부분

군이명 피해자들이 이명피해가 군생활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명과 난청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 등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명/난청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쳐 병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1994년 이전에는 일부 진료기록 보존연한이 4년이어서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폐기되어 진료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혜택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치료혜택(「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을 받는데 필요한 입증의 정도에 대하여는 관련 군병원 진료기록이 없더라도 입증

책임의 정도를 완화시켜 실효적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예를 들면 인우보증을 입증방법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부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군이명을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 등록기준을 완화시키는 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완화내용으로는 현행의 이명/난청 동반규정에서 난청부분을 떼어내고 이명만으로 유공자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난청부분을 포함시키더라도 산업재해(업무상 질병)의 소음성난청 인정기준과 같이 청력역치를 40dB로 낮추는 방법 그리고, 호주 및 캐나다와 같이 이명검사에 삶의 질과 사회적 활동에 이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방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지원제도에 다양한 보상이 포함되어 재정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명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서 난청요건을 즉시 제외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기준과 같이 청력역치를 40dB로 낮추는 것과 이명검사 시 삶의 질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청력역치 검사 부분

이명환자들이 저주파영역에서는 정상의 청력역치를 보이더라도 고주파영역에서는 높은 청력역치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명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저주파영역 위주의 난청검사를 하는 것은 이명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왔다. 2012. 1. 30. 기준으로 고주파 영역인 4000Hz에서의 청력역치를 포함시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일부 제고하였으나 이명 증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4000Hz 이상의 고주파 영역 청력역치에 더 큰 가중치를 주는 방안, 6000 ~ 8000Hz이상의 초고주파영역의 청력역치를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 저주파영역과 고주파영역의 청력역치의 평균값이 아니라 고주파영역에서의 청력역치 값만으로 난청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이명상이를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V. 이명/난청 피해 예방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재도 군복무로 인한 이명/난청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 예방방안

마련이 이미 피해가 발생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방안 모색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산업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력보존프로그램의 개요를 살펴보고 복무중인 군인들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산업현장 청력보존 프로그램의 개요

가. 우리나라는 군인에 대한 종합적인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군인의 소음노출과 관련한 주기적인 청력검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현장의 소음노출 근로자에 대한 소음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및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시행은 군인의 청력보존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여 산업현장의 청력보존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본다.

나. 산업현장에서의 청력보존프로그램은 작업장에서 과다한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1983년부터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일일 8시간 평균 90dB를 넘을 때는 소음제어를 실시하고 85dB를 넘을 때는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소음수준이 90dB을 초과하는 사업장과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517조). 청력보존프로그램은 1) 소음측정, 2) 공학적 소음제어와 행정적 관리, 3) 청력보호구 착용, 4) 청력검사 및 의학적 판정, 5) 보건교육 및 훈련, 6) 기록보관, 7) 프로그램 효과 평가 등 총 7개의 요소로 종합 구성되어 있다(www.kosha.or.kr).

2. 군대에서 청력보존프로그램 적용이 갖는 의미와 한계

청력보존프로그램의 각 절차가 군대에 적용되었을 때 갖는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소음측정은 군대에서의 소음 등 이명/난청 발생 위험인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소음 발생원을 파악하여 이명/난청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군대의 경우 병과별 소음발생원의 특징이 뚜렷하므로 이의 실태파악을 위해서도 소음측정이 필요하다.

나. 공학적 소음저감 대책은 장기간 소음노출과 관련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것이다. 소음문제는 발생원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방법이며 산업현장에서는 소음의 발생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군대에서는 훈련과정에서

소음발생이 불가피하여 공학적 대책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청력보호구 착용은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앞에서 살펴본 황성주, 전태준의 '귀보호구의 착용이 소음성난청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역학적 조사연구' 결과가 보여준 바와 같이 귀마개를 사용한 포병 10명에서는 소음성난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귀마개를 사용하지 않은 병사 중에서는 12.4%의 인원이 소음성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그 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라. 청력검사는 이명과 난청을 예방하기 위한 병사들의 상태를 알려주는 기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병사들에 대한 이명/난청에 대한 교육은 병사들이 그 위험성을 인식케 하여 스스로 소음노출을 주의하게 하여 이를 예방하는 출발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기록보관과 효과평가는 예방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군복무로 인한 이명/난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청력보존프로그램을 군대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소음노출 측정 평가, 청력의 주기적 검사, 소음노출 예방교육, 공학적 개선 등의 소음노출 저감, 청력보호구 착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어도 이명/난청 발생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포병부대 등에 대한 소음측정, 고위험군 부대원 등에 대하여 입대 시, 제대 시, 매 1년마다 그리고 주요 훈련 직후 청각검사실시, 개인 청력보호구 착용 의무화, 부대원들에 대한 이명/난청에 대한 정기적 교육실시, 측정결과 데이터의 보관 및 예방대책 마련 시 활용방안을 매뉴얼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VI.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8.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김영혜 위원 홍진표 위원 장명숙

5 군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상황 개선 관련 정책권고

▌결정사항 및 요지▐

국방부장관에게, 군복무 부적응 병사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1]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확대 배치 및 전문성 강화,
[2] 간부의 군복무 부적응 병사 관리 및 상담 역량 제고,
[3] 선임병사 인권리더십 교육과정 마련,
[4]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조직 설치,
[5]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 감별 방안 강화,
[6]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관리와 비밀보장,
[7] 군복무 부적응 유발 요인 제거를 위한 병영문화 개선 등의 방안에 대하여 권고

▌참조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07. 12. 18. 군복무 부적응병사 인권상황 개선 권고 결정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제37조, 「세계인권선언」 제3조, 제8조, 제12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17조, 제18조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1.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연대급 부대에 2명 이상이 배치되도록 증원하고,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2. 군 간부에 대하여 부적응 병사 상담 및 관리기법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방법을 개선할 것,
3. 병장으로 진급하거나 병분대장으로 선발된 병사에 대한 '선임병사 인권리더십 교육과정'을 마련할 것,
4. '군건강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군복무 부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각종 심리·인성검사 도구의 개발과 관리, 군 적응장애의 진단기준과 상담치료 방안 마련, 군인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조직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5. 육군훈련소 및 신병보충대에 '진단캠프'를 설치하여 정밀진단과 집중관찰을 통해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조기에 감별할 수 있도록 할 것,
6.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입대부터 전역 시까지의 복무적합도 검사, 신인성 검사, 면담 관찰기록 등이 지휘관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록의 관리방법 및 비밀보장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할 것,
7. 군복무 부적응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군복무 부적응 병사의 정신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쉼터, 자기개발실, 상담실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권고 배경

가. 군복무 부적응은 당사자인 장병의 건강을 위협하고, 군복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므로 부적응 병사[9]를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한 관리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군 장병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07. 12. 18. '군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상황 개선권고'를 한 바 있고, 국방부도 군대 내에서 군복무 부적응자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여 왔다.

나. 그러나, 최근 군복무 부적응에서 비롯된 군대 내 폭행 등 가혹행위에 관한 진정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자살사고 및 총기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위원회는 군복무 부적응병사에 대한 계속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군의 개선상황을 확인하고자 2012년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위원회의 2012년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한 정책적인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9) 군복무 부적응자란 "군입대자 개인의 심리사회적 요인과 군대 조직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요인 간의 부조화로 인하여 개인의 안녕 및 군대와 일반 사회의 안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현재 나타내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자"로 정의된다.

II. 판단 기준 및 참고 기준

「헌법」제10조, 제12조, 제37조,「세계인권선언」 제3조, 제8조, 제12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9조, 제17조, 제18조를 판단기준으로 삼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2007. 12. 18. 군복무 부적응병사 인권상황 개선 권고 등을 참고하였다.

III. 판단

1.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확대 배치 및 전문성 강화

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운영의 문제점

국방부는 2007년부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를 도입하여 2012년 총 148명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각 부대에 배치하였고, 이를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2017년까지 연대급 부대에 각 1명을 배치(총 357명)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현재 1인당 연 평균 1,030여명(월 평균 90여명)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전체 장병 인원 대비 상담율은 2009년 6%에서 2012년 17%로 증가하는 등 장병들의 상담 수혜 범위가 확대 추세에 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가 2013. 4.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간부의 91% 및 병사의 63%가 이 제도가 병사들의 고충처리나 심리적 안정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간부의 90% 및 병사의 62%가 군대 사고 및 자살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간부의 87%가 부대 및 병력관리에 대한 지휘부담 경감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간부의 87.4% 및 병사의 68%가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위원회의 2012년 실태조사에서도 간부의 82%가 이 제도가 효과적이라고 평가하여 위 국방부의 설문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군복무 부적응 집단에 속한 병사의 45.5%가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면담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 인력의 수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 간부 전역자를 비롯하여 상담심리를 전공한 민간인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으로 채용되고 있는데, 임상심리사 이외에는 상담심리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제도가 없어 민간단체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 취득자나 실무경력자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므로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상담의 전문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나. 개선방안

연대급 부대의 병사가 통상 2,000여명인데, 이중 약 8%에 해당하는 160여명이 군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관리와 상담이 필요한 병사라고 볼 때(위원회의 2012년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유효 표본수 1,169명 중 7.9%인 92명이 군복무 부적응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적어도 한 달에 1회 정도의 집중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연대급 부대에 2명 이상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배치되어야 하고, 이에 조속한 인력 증원과 함께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간부의 군복무 부적응 병사 관리 및 상담 역량 제고

가. 간부의 군복무 부적응 병사 관리 및 상담 실태

병사의 심리·정신과적인 장애를 징병단계에서 단기간에 식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자대배치 이후에도 군복무 부적응 요인이 발생할 여지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일선 부대의 지휘관 등 간부들이 군복무 부적응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그들의 심리적 현상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보호관심병사'로 지정된 병사에 대한 정밀관찰과 '비전캠프 및 그린캠프'(군복무 부적응 및 자살우려 병사들의 안정적인 적응과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인성교육과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제도)에서 복귀한 병사의 적응을 위해서도 간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위원회의 2012년 실태조사 결과 군복무 부적응 병사의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입의 방법에 대하여, 조사대상 간부의 49.4%가 부적응자 사전식별 및 대처방안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20.7%가 지휘관의 관심 및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38.8%가 군복무 부적응 병사를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교육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개선방안

위원회는 2007. 12. 18. '군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상황 개선권고' 시에도 국방부장관에게 간부들에 대하여 부적응 병사 상담 및 관리기법 이수를 제도화할 것을 권고한바 있으나, 위와 같이 여전히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시금 군 간부에 대하여 군복무 부적응 병사 상담 및 관리기법 교육을 강화하고, 이러한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방법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덧붙여, 위 교육은 주입식, 암기식, 명령하달의 강의식 형태보다는 체험활동,

상호교류, 시연·실습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선임병사 인권리더십 교육과정 마련

가. 선임병사들에 의한 군복무 부적응 요인

위원회의 2012년 실태조사 결과 군복무 부적응을 나타낸 병사들은 부적응의 조직적인 원인으로 기수(계급)문화, 후임병의 잘못으로 선임병이 질책을 받은 경우 선임병 자신도 후임병에게 더 강도 높은 질책을 가하는 관행(속칭 '내리갈굼'), 가혹행위가 발생해도 실체가 드러나기 힘든 구조, 자율성 부족, 신고 후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 집단 매도될 우려, 불신감 등을 들었다. 이렇게 전입한 신병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시 부서 선임병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문화 등이 상존하고 있어 '간부보다 선임을 더 무서워하는 분위기'가 부대 내에 조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개선방안

이에 병사들이 병장으로 진급하거나 병분대장으로 선발되는 경우 인권친화적이고 선도적인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 우수 사례 전파 교육, 상대방 입장 고려하기 실습, 내리갈굼 및 악폐습 부당행위 근절 교육, 보호관심병사 등 부적응 병사 관리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임병사 인권리더십 교육'을 받도록 하여 선임병사들에 의한 군복무 부적응자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조직 설치

가.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지원체계 부재

국방부는 군복무 부적응자를 선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보호관심병사 제도, 비전캠프와 그린캠프, 자살예방프로그램, 복무부적합심사 등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고,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검사도구 및 관리매뉴얼 개발·보급 등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지원체계가 미흡하며, 아울러 안전한 군복무를 위한 신체건강 관리 의료서비스도 미흡하다.

특히, 입대 전에는 특별한 심리적 장애가 없었지만 군대라는 새롭고 특수한 환경 안에서 엄격한 규율과 통제, 자신의 업무수행능력 저조, 병사관계 갈등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적응장애에 대한 진단기준 및 치료에 대한 일관적인 지침이 없어 군복무 부적응 병사의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군 적응장애 병사들은 일반 정신의학 기준으로는 진단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군 적응장애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진단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 개선방안

따라서, 군복무 부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심리·인성검사 도구의 개발과 관리, 군 적응장애의 진단기준과 상담치료 방안 마련, 군인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적인 지원조직으로서 '군건강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5.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 감별 방안 강화

가. 징병신체검사 및 훈련소 단계에서의 진단 실태

병무청은 군복무 부적응 병사의 조기 감별을 위하여 2007년부터 징병신체검사에 임상심리사를 배치하고, 2010년부터 인지기능검사(58문항), 질병상태문진표(10문항)에 심리검사 항목(5문항)을 포함하였으며, 1차 심리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거나 신경정신과 징병검사 의사가 의뢰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2차 심리검사에서 정신과 징병전담의사가 면담을 통해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또한, 훈련소에서는 지휘관 관찰, 면담체크리스트(32문항), 자가진단표, 지능검사 등을 활용하여 우선 관리대상을 선정하고, 소대장이나 분대장의 관찰결과를 토대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면담을 추천하며, 주1회 병력 결산을 통해 A(자살우려자), B(사고우려자), C(기본관리대상) 급으로 훈련병을 관리하여 통상 2개 기수당 8명~12명을 가정으로 복귀조치하는 등 복무기피를 하는 병사와 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병사를 스크리닝 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 현역병입영 귀가자 현황을 보면 신경정신과적 사유로 인한 귀가자가 전체의 34.6%(전체 6,151명 중 2,129명)로 가장 많았고, 2011년 귀가자 중 현역 재판정율도 전체 56.1%에 비하여 정신과 관련 현역 재판정율이 80.9%에 달하는 등 가장 높았다. 이는 귀가 당시 질환이 경미했거나 군복무 기피를 위한 의증(꾀병)인 사람이 포함된 결과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정신과 진료 경력이 취업과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민간병원에서의 정신과 진단을 거부하거나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적절한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신과 질환은 다른 질환과는 달리 장기간의 관찰을 거쳐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현행과 같이 징병신체검사와 훈련소 단계에서 단일한 검사도구 결과와 짧은 시간 동안의 정신과 전문의 면담만으로 군복무 부적응 병사를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나. 개선방안

훈련소 단계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등 관련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하고 잠재적인 부적응 병사로 분류된 자들에 대해 집중관찰을 실시하는 '진단캠프'를 운영하여 징병신체검사 단계에서 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복무부적합 병사를 효과적으로 감별해 내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진단캠프'는 한정된 공간에서 다양한 평가자들이 집중적인 관찰을 실시하여 고의적으로 복무를 기피하려는 자들도 상당히 정확하게 감별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6.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관리와 비밀보장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하여 입대부터 전역 시까지의 복무적합도 검사, 신인성 검사, 면담 관찰기록 등의 자료를 전산화하여 지휘관에게 제공하고, 이에 병사가 군복무 중 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어떤 성격적 특징과 유형이 사고와 연관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군복무 부적응의 종류를 입대 전 개인 환경요인(가정불화, 빈곤, 여자관계, 게임중독, 자살시도 경험 등)과 부대 내 요인(구타·가혹행위, 왕따, 업무능력부족 등)으로 유형화하여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정보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이므로 관계자 외에 유출되거나 목적 외로 이용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록의 관리방법 및 비밀보장에 관한 매뉴얼을 만드는 등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7. 군복무 부적응 유발 요인 제거를 위한 병영문화 개선

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그동안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국방부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군복무 부적응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구타·가혹행위 등 병영 내 악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다수의 군복무 부적응 병사들이 한번 부적응자로 식별 되면 조직 내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힘들어 스스로 현역복무에서 이탈하려는 심리적 자포자기 현상이 생긴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대해 간부들은 군복무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대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보다 비전캠프 및 그린캠프 등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자대배치 후 군복무 부적응으로 식별되어 비전캠프 등에 입소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 입소시킨 사례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군대 내 군복무 부적응 유발 요인의 제거를 위하여 각 부대에 개인정비시간 및 휴식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쉼터 혹은 자기개발실 등을 마련하고 상담실의 환경적 여건도 개선하여 군복무 부적응 병사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3. 10. 14.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 원 김영혜 위 원 홍진표 위 원 장명숙
위 원 한태식 위 원 윤남근 위 원 김성영 위 원 곽란주
위 원 한위수 위 원 강명득

6 군 징계 영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결정사항▐

국방부장관에게, 군 징계 영창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영창처분이 필요한 경우와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영창처분에 대한 통합적인 징계양정규정을 마련할 것,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할 것, 영창수용 중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군율수련캠프'의 운영을 검토하고,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의 기준을 마련하며, 영창시설의 환경을 개선할 것 등을 권고

▌결정요지▐

[1]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영창처분을 방지하고 구타·가혹행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창처분이 필요한 경우와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고, 통합적인 징계양정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군 지휘관에 의한 자의적인 영창처분을 공정하게 심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3] 영창일수 동안 단순 구금 이외에 자기개발이나 심리치료·심리상담 등 인성교육, 일반병사와 통합한 재복무교육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설적 측면에서도 환경개선이 바람직함.

▌참조조문▐

「헌법」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제12조(신체의 자유)

「군인사법」제56조(징계사유), 제57조(징계의 종류),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제59조의2(영창의 절차 등), 제60조(항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군 징계 영창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1. 영창처분이 필요한 경우와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영창처분의 사유 및 양정에 있어 징계권자에 따른 차이를 없애기 위해 국방부 차원의 통합적인 징계양정규정을 마련할 것,
2.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영창처분을 받은 병사에 대하여 영창수용 중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군율수련캠프'의 운영을 검토하고, 피징계자 한 명당 수용거

실 면적의 기준을 마련하며, 구금 목적의 영창시설 환경을 개선할 것,
을 권고한다.

▮이 유▮

I. 권고배경

군의 징계 영창제도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대상자인 병사를 미결수용자 구금시설인 영창에 수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영장주의라는 헌법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방부는 2006년 「군인사법」개정을 통하여 징계사유의 명확성 강화, 영창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한 영창처분의 보충성 강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심사절차 마련, 징계입창자의 친족 등에 대한 영창처분 고지제도 마련,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혐의자의 진술권 보장,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 시 집행정지 효력 부여 등 영창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국방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징계입창자의 처우가 미결수용자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여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진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행 군 징계 영창제도와 관련한 법 규정 및 운영상황을 검토하고, 국방부 등 군 관계자와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 징계 영창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II. 판단기준

적법절차의 원칙, 영장주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제12조 및 제37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9조를 판단기준으로 하였다.

III. 판단

1. 자의적 영창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징계양정규정 필요

2006. 4. 28. 법률 제7932호로 개정된 「군인사법」(이하 "2006년 개정 「군인사법」"이라고 한다)은 그 이전 군인의 징계를 "군율에 위반하여 군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행한다고 규정하여 그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었던 문제를 보완하여 "직무상 태만, 품위 손상,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라고 징계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와 균형을 맞추었다. 또한, 영창처분의 절차에 관한 조항(제59조의2)을 별도로 신설하여 영창처분은 병에 대한 휴가제한 또는 근신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거나 군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신체구금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 결과 징계사유의 명확성 강화, 영창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한 영창처분의 보충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한편, 국방부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군인의 징계입창 사유 중 구타·가혹행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육군의 경우 2009. 1. ~ 2013. 6. 징계입창자 중 구타·가혹행위로 처분을 받은 병사가 46.3%(전체 59,866명 중 27,694명)에 이르고, 공군의 경우도 같은 기간 징계입창자 중 39.8%(전체 558명 중 222명)의 징계입창 사유가 '가혹행위'였다. 해군의 경우 같은 기간 '복종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입창이 38.0%(전체 5,889명 중 2,236명)로 가장 많았는데, '복종의무 위반'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폭행·가혹행위가 주요 내용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징계입창 시 가벼운 폭언, 폭행 등에 의한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상습적이고 상해를 동반한 폭행을 하였음에도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영창처분을 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른바 '영내부조리'(구타 및 가혹행위, 성추행 등)의 경우 영창처분과 형사처벌을 가르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유사한 사안을 두고도 어떤 부대는 영창처분을 하고, 다른 부대는 형사처벌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구타·가혹행위 피해 병사에게 불공정한 조치일 뿐 아니라, 영창제도가 형벌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 일반인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한, 군대 내 악습인 구타·가혹행위를 온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징계권자에 따른 자의적 영창처분을 방지하고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서는 영창처분이 필요한 경우와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영창처분의 사유 및 양정과 관련한 국방부 차원의 통합적인 징계양정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 강화

2006년 개정 「군인사법」은 영창처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의결 후 인권담당 군법무

관이 징계사유, 징계절차 및 양정의 적정성 등 적법성심사를 하여 그 의견을 징계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징계권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때 징계위원회의 의결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일 때에는 영창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등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인정한 의견인 경우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013. 9. 현재 총 192명의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연간 약 15,000건 이상의 영창처분 적법성심사를 하고 있고, 심사결과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비율은 60% 내외로서 약 40%의 의결에 대해서는 부적법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심사에 대해서 징계권자의 93% 이상이 그 의견을 존중하고 있어(아래 〈표〉 참조) 현행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영창처분 적법성심사는 준사법적 심사로서 일정 수준 실효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현황

연도	심사 요청수	인권담당군법무관 의견				징계권자 조치	
		적법	양정 부적정	징계사유 불해당	중대한 절차하자	의견 존중	의견 부존중
2009	14,437	8,758(61%)	5,484	103	92	13,299	1,138
2010	14,936	9,290(62%)	5,449	78	119	13,875	1,061
2011	16,964	10,549(62%)	6,223	95	97	16,197	767
2012	19,285	11,135(58%)	7,888	118	144	18,016	1,269

그런데, 현재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대부분 법무참모부 또는 법무실이 편성된 부대에 소속되어 있다.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군 지휘관에 의한 자의적인 영창처분을 공정하게 심사하고 통제하여야 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인사법」상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업무상 독립성을 명시하는 등 그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군율수련캠프의 운영 및 영창 시설 개선

징계입창자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엄격한 군기교육, 열악한 생활조건, 거실 내 정좌 자세 유지 강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방부와 각 군에서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1309호, 2011. 2. 14.

제정)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징계입창자에 대한 통일적인 처우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징계입창자에 대해서는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와 분리구금하고, 일부 소지물품의 휴대를 허락하며, 면회 시 군교도관이 참관하지 않고, 서신의 검열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거실 내 CCTV의 설치도 금지하는 등 미결수용자와는 다른 처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예산과 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징계입창자를 미결수용자와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지 못하고, 철조망 등 물리적 장애물로 둘러싸인 구금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되는 미결수용자와는 달리,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수용된 징계입창자의 경우 수용기간 동안 자신의 군율 위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복귀 후 부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반성, 체력단련, 정신교육 위주로 단조로운 일과표를 운영하고 있어 구금이라는 응보를 통한 개선 이외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영창과 유사한 교정구금(correctional custody)에 대하여 그 목적을 교정에 두고 상담을 비롯한 교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설기준으로는 피징계자 한 명당 약 2평의 공간을 제공하고, 강철로 된 유리창망, 담장, 콘서티나형 철조망(육각형 모양의 가시철선을 사용한 군사형 철조망), 경계탑과 같은 물리적인 장애물의 사용을 금지하며, 시설의 어떤 문도 잠그지 않도록 하고, 신체 구속 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창일수 동안 구금해 두는 것 이외 단조로운 일과를 개선하여 자기개발교육이나 심리치료·심리상담 등의 인성교육, 일반병사와 통합한 영외구보 및 제식훈련과 같은 재복무교육 등을 추진하는 '군율수련캠프'의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시설 측면에서는 별도의 영창시설을 마련하지는 못하더라도 피징계자 한 명당 수용거실 면적의 기준을 마련하며, 쇠창살과 같은 구금을 목적으로 한 장애물의 사용은 가급적 제한하는 등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13. 11. 28.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 원 김영혜 위 원 홍진표

7 여군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결정사항▐

국방부장관에게, 군 인력운용상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여군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인사운영 시스템을 확립할 것,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모성보호제도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체계를 보완할 것, 안전한 조직문화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 등을 강화하고, 여군의 고충처리 시스템을 보완할 것, 여군에 대한 차별인식 개선 사업을 강화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여군의 양적 확대 및 그에 따른 여군 관련 정책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편견, 인사상 차별과 불이익,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인하여 여군은 적지 않은 인권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2] 이에 여군이 군대 내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여군정책 수립 및 인권상황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여군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

▌참조조문▐

「헌법」제10조, 제11조·제32조·제34조·제36조, 「병역법」제3조, 「군인사법」 제45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32조, 「여성발전기본법」제5조·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23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제11조 1. 및 2.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여군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여군 인력 확대에 따른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군 인력운용에서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여군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합리적 인사운영 시스템을 확립할 것
2.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모성보호제도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체계를 보완할 것
3.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 방안 등을 강화하고, 여군의 고충처리 시스템을 보완할 것

4. 여군에 대한 차별인식 개선 사업을 강화할 것

▌이 유 ▐

I. 권고 배경

여군의 양적 확대에 따라 근무여건 개선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군에 대한 편견과 인사 상의 불이익,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성희롱 등 여군이 군대 내에서 다양한 인권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여군이 군대 내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군의 적극적인 여군정책 수립 및 인권상황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정책 검토를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2년도에 여군의 복무 및 모성보호 제도 현황, 고충처리제도 등 여군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전체 여군의 약 10.8%에 해당하는 86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역여군 70명, 제대여군 9명, 여군담당자 13명 등 총 92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진행하는 등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이하 '위원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군에 대한 여러 불합리와 편견이 존재하고 있고, 여군이 성희롱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여군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에 따라 정책권고를 하게 되었다.

II. 판단 기준

「헌법」제10조, 제11조, 제32조, 제34조, 제36조, 「병역법」제3조, 「군인사법」제45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2조, 「여성발전기본법」제5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23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제11조 1. 및 2.를 판단 기준으로 하였다.

III. 판단

1. 여군 현황 및 여군인권의 범주

가. 여군 현황

2013년 6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여군 총수는 8,258명으로 간부의 4.6%[10]를 차지하고 있는데, 군별 여군 인력 현황은 〈표 1〉과 같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7%, 부사관 정원의 5%까지 여군인력을 확충하도록 하였고, '국방개혁 기본계획 12-30'은 장교는 2015년까지, 부사관은 2017년까지 조기 달성하기로 하였다.

〈표 1〉 군별 여군 인력 현황(2013. 6. 기준)

구 분	총 계			육 군			해군(해병)			공 군		
	총계	장교	부사관	소계	장교	부사관	소계	장교	부사관	소계	장교	부사관
인 원	8,258	3,911	4,347	5,564	2,924	2,640	1,041 (281)	373 (101)	668 (180)	1,372	513	859

1989년 독립된 특수병과인 여군병과가 폐지되고 여군이 일반병과로 편입된 이후 육군의 경우 2000년 포병, 기갑, 방공, 군종 병과를 제외한 전 병과가 여군에게 개방되었고 2014년부터 모든 병과가 전부 개방될 예정이다. 그리고, 1997년 공군사관학교를 시작으로 사관학교에 여생도 입학이 허용되고, 1998년 결혼·출산이 허용되었으며, 2007년 기혼여성 모집제한이 폐지되는 등 여성에 대한 입대자격 제한이 완화되었다. 아울러, 2010년 여자대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ROTC)이 설치되었고 2014년부터 육군3사관학교도 여성에게 개방될 계획이다.

여군 인력 확대와 함께 1999년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되고 2000년 이후 여군들의 직업성을 보장하는 군 업무환경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성인지력 향상교육(2003), 성별영향평가제도 및 성군기사고 예방프로그램(2005), 탄력근무제(2007), 여성고충상담관(2008) 등의 여군관련 정책이 추진되었다.

나. 여군 인권의 범주

우리나라 군 제도는 남성 징병제를 기본으로 여성 지원제를 운영하고 있어 남성은

10) 2009년 기준 캐나다 17%, 뉴질랜드 17%, 미국 12%, 영국 9.5%, 호주 14% 등의 비율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병으로 입대하거나 부사관 또는 장교로 지원 입대하며, 여성은 부사관 또는 장교로 지원 입대한다.

한편, 병역의무 대상 여부나 군복무 동기와는 관계없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신분상의 지위는 성별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므로 남군과 여군 모두 인권 보장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여군은 헌법의 기본원칙인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모집, 교육, 배치, 승진 등 고용과 관련한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 평등권의 주체이며, 임신·출산 등 여성의 모성기능에 대한 보호는 '차별의 예외'에 해당한다. 더불어 국가는 모성보호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모성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와 종합적인 인권증진 대책 마련의 책임을 지닌다.

2. 여군 인권실태 및 쟁점

가. 군 조직문화와 여군에 대한 인식

2005년도 육군훈련소 인분사건과 전방사단의 GP 총기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병영문화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운영되고 군인권교육이 확대되었으며 인권관련 부서가 신설되는 등 가시적 성과도 있었으나, 그간 병사에게 집중되었던 군 인권정책은 이제 간부를 포함하는 구성원 전반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여군의 확대와 남녀통합군 체제로의 전환 노력은 여군의 전문성과 역할이 강화되었고 군대내 성평등의식을 촉진시키고 인권이 존중되는 합리적인 군대문화를 이끌어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과의 문호가 개방되었다고 하나 실질적인 선택의 폭은 여군에게 제한되어 있다는 응답이 61.9%였으며, 57%는 남군들이 여군이 자기의 부서에 배치되는 것을 꺼려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여군의 역할이 강조되고 늘어나고 있음에도 군이라는 조직 자체가 여군들과 통합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가 아직 부족하고 여군을 동등한 동료로 인정하는 인식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 여군 인력활용 실태

여성들이 군대에 지원 입대하는 것은 직업적 목표와 동기가 큰 의미가 있어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여군의 93%가 장기복무를 희망하고 임관했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육군의 2012년 장기복무선발 비율을 보면, 장교 27.4%(남군)와 17.6%(여군), 부사관 86.2%(남군)와 38.0%(여군)로 남녀 간에 다소 격차가 있어 직업 안정성에 대한 여군의 불안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업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은 실태조사 결과 48.8%의 여군이 '장기복무 전환이 남군이 더 쉽고, 여군이 더 까다롭다'고 응답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여군이 능력과 상관없이 병과 선택, 보직배치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과 선택의 범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2.5%가 남군에게 유리하다고 답변하여 남군과 여군에게 동등하다는 응답(21.4%)과 여군에게 유리하다는 응답(1.3%)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다. 특히 모든 병과의 여성 개방에도 불구하고 여군은 본인의 병과에 부합하는 업무에 배치되기 보다 행정업무 위주로 배치되는 경향이 있어 전문성을 강화할 기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접적(接敵)부대 제한 원칙이 여군에게 불리하고, 대대급 이하 부대까지 여군의 활용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6.3%, 현재의 제한 원칙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38.4%로 나타났다.

전투분야에 여군을 투입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군인은 모든 직위에 배치할 수 있다'는 원칙은 준수되어야 할 것이며 모든 병과가 여성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실제 보직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접적부대로의 여군인력 활용에 대하여 현행 제한의 폐지를 원하는 여군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제한 활용 기조를 재검토하여 일선 부대에서 실질적으로 여군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 여군의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 제도 활용 실태

2012년 말 기준 여군의 연령분포는 〈표 2〉와 같은데 이중 기혼 여군 수는 장교 1,414명, 부사관 1,448명으로 전체 여군의 약 34%이며, 부부 군인은 1,714명이고 이중 부부동거율은 약 66% 수준이다. 여군의 출산율은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 통계(1.30명)보다 높은 수준으로 2012년 기준 1.67명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군인 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554명, 805명, 804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남군도 2010년 19명, 2011

년 81명, 2012년 102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 여군 연령별 인원현황(2012. 12. 기준)

계	20세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8,354	137	5,486	2,438	276	17

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군은 모성보호 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생리휴가(69.7%), 육아시간(61.0%), 탄력근무제(53.6%), 불임휴직(42.8%), 육아휴직(30.3%) 등 순으로 어렵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모성보호 제도의 이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사상 불이익, 상급자 및 지휘관의 눈치 의식, 근무대체의 어려움 등이 모성보호 제도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21.2%가 병원 진료시 사생활 노출 및 부정적 인식을 우려한다고 답변하였고, 10.2%가 부인과 시설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여군의 인식은 부인과에 대한 진료가 다른 분야의 진료와 달리 성(性)과 관련하여 인식될 뿐만 아니라 사생활 노출 우려가 높고, 군 병원에서 같은 군인인 남성 군의관에게 부인과 진료를 받는 것이 거북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여군들이 부인과 진료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산부인과가 설치된 군 병원이 5개 소에 불과하고, 민간 산부인과 병의원도 거리상 제약이 있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라. 군대내 성희롱·성폭력 등 실태

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 발생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860명 중 11.9%인 102명이 직접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고 주변의 여군이 성희롱 피해를 겪은 것을 인지했다는 응답도 전체 응답자의 41.3%인 355명이었다. 아울러 응답자의 17.2%인 148명이 부대 내에서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을 인지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성희롱 피해경험에 대한 응답을 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벼운 신체접촉'(24.6%),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별명 사용'(20.2%), '섹시하다는 표현 등 성적 농담'(16.9%), '음담패설 등 짙은 성적 농담'(8.4%) 등의 순으로 피해경험이 많았으며, 성폭력에 해당하는 '본인이 원치 않는 행위 강요'등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도 있다.

이는 성희롱·성폭력이 회식 등 특정 장소나 특정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계급에 따른 위계질서

가 강조되고, 조직의 폐쇄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하겠다.

군은 군대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여성고충상담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실제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여성고충상담관에게 알렸다는 응답은 저조한 실정이다. 아울러, 성적 언동에 따른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군의 38.2%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식적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되는 사례에 비하여 알려지지 않은 실제 성희롱·성폭력 피해사례는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국방부는 2013년 7월 '성군기사고 예방 특별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성범죄 신고 및 상담 등을 통합한 '국방헬프콜(SOS) ☎1303'을 운영한다고 발표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의 내용 및 효율적인 교육운영 방식, 전담교관의 전문성 확보, 대상별 특성화된 교육 운영 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성범죄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지휘관의 부대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부대관리훈령」은 '성군기 사고'를 성을 매개로 한 군 기강 문란, 부대 단결저해, 군 위상의 실추를 초래하는 성범죄, 성희롱, 성매매 그 밖의 성군기 위반사고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관점이 아닌 군대의 질서를 중심으로 보는 시각에서 나온 개념으로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게 되므로 성 관련 문제를 군기와 연결하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성희롱은 권력관계에서 발생하고 여성에게 모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며 고용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여성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성차별[11]의 한 형태로서 규제됨을 고려해야 한다.

마.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발생 시 대처양식

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43%인 370명의 여군이 개인적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차별 상황 발생 시 대처양식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20.2%가

11) UN은 성희롱에 대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의 대표적 유형이자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상의 '여성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며,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약이 중시하고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명시함(1993. 12. 12. 총회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

그냥 참고 견디겠다고 응답한 반면에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4.0%는 문제를 제기해도 변화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앞으로 그냥 참고 견디겠다고 하였다.

또한, 성적 언동에 따른 피해를 경험한 338명 중 38.2%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거나 이후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행위자에게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응답은 35.7%, 가족, 친지 혹은 동료에게 알렸다는 응답이 7.1%, 부대 내 비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응답이 5.3%, 여성고충상담관이나 인권상담관에게 알렸다는 응답이 5.2%, 군 사법당국에 신고하고 조치를 취했다는 응답은 0.3%인 1건에 불과하였다.

고충처리 제도 이용 결과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의 불만족 이유를 살펴보면 고충문제에 대한 비밀보장이 잘 지켜지지 않고 군 지휘계통의 영향권 아래 있어서 상담 및 해결에 제한이 있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는 여군들이 군의 공식적인 조치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군인복무규율」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이나 집단서명 등의 방법으로 군 외부에 해결을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고충 발생 시 공식적인 군 내부의 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군이 외부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외국사례의 시사점

가. 여군인력 활용 현황 및 시사점

최근 여러 국가들이 전투분야에 여군을 투입하는 등 여군의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실제 캐나다,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국가는 모든 직위에 여군을 배치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의 국가는 여군의 배치에 일부 제한을 두고 있으나 점차 제한을 축소하고 있다.

아울러, 많은 국가들이 여군의 대안적 리더십 스타일의 수용, 성별 구분 없는 기본적 리더십 역량 도출, 성 중립적 임무 수행의 표준 제시, 성 차이점에 대한 지식 습득 및 논의 등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나. 고충처리제도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미군의 성폭력 방지 및 대응 정책을 살펴보면, SAPRO(성폭력 방지 및 대응국, the 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를 국방성에 설치하여 성폭행으로부터 군대문화 및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제도운영에 있어 군대 내부의

고위간부와 외부에서 연방정부의 타부처 및 정부 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며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익명으로 긴급한 상황을 전달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외부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24시간 무료전화 상담서비스인 Military One Source (MOS)를 개설하였다.

독일 연방군 내 성폭력 사고 사례는 매년 국방감독관이 파악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사단급 이상 기관에는 여성인 남녀평등특명관이 배치되어 여군의 인사 불이익, 성희롱, 가족과 군 직장 간 문제 등에 대하여 상담, 조정, 고충처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 모성보호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군의 모성보호는 그 나라의 모성보호제도를 적용받고 있어 사회 및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군의 임무수행과 예산소요에 따른 한계가 있다.

미국의 경우, 국방장관 직속으로 여군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여군 관련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고, 전체 시설 중 98%가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며, 유치원부터 12학년에 걸쳐 군인 자녀를 위하여 인성과 리더십 개발 교육, 예술, 스포츠, 여가활동 등의 과정을 포함한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육군 배우자의 취업 또는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육군 배우자 취업파트너십 제도와 온·오프라인을 통한 여군 멘토링·커뮤니티 등 여군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일·가정 양립제도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지휘체계 책임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있다. 아울러 근무지에서 가족 구성원 지원을 맡는 가족지원센터(FBZ)가 독일 내 지원네트워크, 군 의료시설 및 지역사회 내 지원기관과 연계하면서 군인 가족 해체의 방지 및 군인 자녀 심리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 여군 인권증진을 위한 방안

가. 여군 인력의 적극적 활용 및 개인의 역량을 고려한 인력운용

1) 여군 인력 확대에 따른 비전제시와 인력운용 개선

여군 인력이 장교 7%와 부사관 5%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여군의 복무여건이나 지위, 권한, 보직 등 실질적으로 여군의 활용에 대한 준비는 여군의 인력확대에 비추어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군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여성자원의 선발에만 치중할 뿐 군 조직에서 여군의 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여군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군인은 모든 직위에 배치할 수 있으며, 전·평시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원칙하에 남녀통합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군 인력규모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검토와 함께 여군인력이 군 조직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선발 및 운용을 포함한 여군 확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2) 여군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합리적 인사운영

개인의 역량을 고려한 인력운용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여군의 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의 문제는 병과, 보직, 조직생활, 전역 등 여군의 군대 생활과 직결되고, 나아가 군대의 사기와 조직 운영 및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본적으로 여군의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히 임신·출산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운영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군별, 병과별 등 상황과 여건에 따라 여군의 계급, 병과, 직렬 등에 부합하는 경력관리 모델을 세부적으로 개발하고 여군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인사운영 등을 위하여 여군 전담 인사담당관을 국방부 및 각 군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제도 및 보육제도의 개선

1)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의 이용 여건 개선

여군을 위한 모성보호 제도가 갖추어져 있고 이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모성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제도적으로 복귀 이후의 보직변경에 대한 우려 없이 여군이 필요한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대체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모성보호의 대상인 여군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도입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 및 육아휴직 사용 이후 업무재배치에 따른 여군의 고충 해소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2) 의료서비스 체계 보완

여군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부인과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여성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격오지 등에 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군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격오지 등에 민간 의료진의 순회 진료제도를 마련하거나, 부인과 진료와 관련하여 모성보호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민간 의료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제도를 정비하는 등 보완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예방 조치의 강화

1)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등 외형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군대 내에서 여성인력이 증가하는 추세와 군대내 성희롱·성폭력 현황 등을 감안하면, 군인권 향상을 위하여 내실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수적이고 외부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협조가 요구된다. 또한 군의 특성을 반영하고 대상별로 특성화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의식이 아닌 다양한 체험형 교육 방식을 도입하는 등 교육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체 전담교관을 양성할 경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양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군 스스로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장교 및 부사관 양성교육 과정에서 법정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초급간부 시절부터 성희롱·성폭력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기본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부대배치 이후의 단계에서는 간부·지휘관 등에 대한 보다 심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대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 강화

성희롱·성폭력이 회식 등 특별한 상황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며, 군기 위반의 관점으로 성(性) 문제를 바라보는 「부대관리훈령」의 성군기 관련 조항을 실질적인 피해자 인권보호 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이 부대내 계급관계를 기초로 발생하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점을 감안하여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철저한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헬프콜(SOS) ☎1303' 이외에 외부 민간 전문기관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독립적인 성희롱·성폭력 조사 체계를 마련하며,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피해자에 대한 치유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대내 성희롱·성폭력 현황에 대한 실상이 제대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으므로 연도별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현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라. 민간부문과의 상호 협력관계의 구축 및 고충처리 시스템 개선

1) 외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여군 인권상황이 양호한 선진 외국군 사례에서 주목되는 것은 군 내부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군과 민간의 상호 교류관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인데, 군 인권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외부기관이 상설화되어 있고,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외부 민간부문에서의 관심과 개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외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매뉴얼과 신고 후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 사후관리를 위한 로드맵도 정밀하게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군은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되어 있고 군 내부 사정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꺼려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여군의 인권과 관련하여 군 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자문기구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으며, 성희롱 등 발생 시 외부의 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하거나 해당 조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객관적 조사 등을 위하여 민간부문과의 상호교류 및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인복무규율」상 제한되어 있는 복무와 관련된 고충 해소과정에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상담, 지원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여군의 고충해결을 위한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

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여군들이 군대 내 고충처리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 및 군대 내 차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비밀보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책임 있는 고충처리를 위해서는 군대 외부의 전문적인 인력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민간전문가 출신의 여성고충상담관을 전담직으로 따로 두거나, 현재 운용중인 병영생활전문상담

관의 일부를 군단급 부대 단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배치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들이 전문적인 고충상담을 제공하고 책임 있는 고충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 여군에 대한 차별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군 내부적으로 여군보다 남군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있고 여군을 성희롱·성폭력 사고의 잠재요인으로 보는 시각이 일부 존재하고 있어 제도와 규정상 여군관련 다양한 정책 등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부대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여군을 동료 군인이 아니라 '여성'으로 인식하는 사례, 여군을 성희롱·성폭력 요인으로 보는 사례, 가임기 여군들이 암묵적으로 보직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례,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 여군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의 어려움, 의료시설 이용의 어려움 등 여군이 군 복무 중 느끼는 불이익과 비우호적 시선 등 여군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어 여군 관련 제도의 정착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급 지휘관과 장병들이 여군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휘관, 간부, 여군, 사병 등 대상별로 세분화된 인권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통하여 군대에서 여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여군에 대한 편견과 차별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이상과 같이 위원회는 여군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3. 10. 31.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 원 김영혜 위 원 홍진표 위 원 장명숙

8 군형사소송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회의장에게, 군사법원의 민간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은 헌법 제27조 제2항의 민간인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및 제12조의 영장주의의 원칙 등에 반하므로 군형사소송법에 대민간 강제처분을 위한 근거 조문을 신설할 것과 그 경우 민간법원의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례

▌결정요지▐

"군사법원의 민간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은 헌법 제27조 제2항의 민간인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및 제12조의 영장주의의 원칙 등에 반하므로 군형사소송법에 대민간 강제처분을 위한 근거 조문을 신설할 것과 그 경우 민간법원의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군사법원의 민간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은 헌법 제27조 제2항의 민간인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및 제12조의 영장주의의 원칙 등에 반하므로 군형사소송법에 대민간 강제처분을 위한 근거 조문을 신설할 것과 그 경우 민간법원의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Ⅰ. 검토배경

정부는 군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군사법원법을 폐지하고 군사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군형사소송절차를 현행 형사소송법에 맞추어 군형사소송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군형사소송법안(이하 '동법안'이라 함)을 국회에 제출하였던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의견조회를 요청하였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동법안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하와 같은 검토를 하였다.

Ⅱ. 검토 법안의 주요 내용

1. 제정이유

군사법원법을 폐지하고 기존 군사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형사소송절차를 현행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주요내용

동법안의 주요내용은 (1)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선임확대 등 피의자의 권익보호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 군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절차의 적법성 보장을 위하여 군검찰의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강화, (3) 재정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등이다.

Ⅲ. 검토 대상

헌법 제27조 제2항에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의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군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은 그동안 헌법 및 군형법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이외의 군 관련 범죄를 처리하면서 군인 등과 관련되어 있음을 이유로 군사법원의 영장에 의해 민간인에 대해서 압수·수색 등 대물적 강제처분을 법률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이 해왔다.[12)]

위와 같이 구체적인 법적 근거없이 관련 민간인에 대해서 압수·수색 등 대물적 강제처분을 해 옴으로써 인권침해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동법안은 이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법조문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의 군사법원과 동일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2) 현행 군사법원법 제258조, 제146조 제1항은 "군사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과, 군사법원법 제258조, 제149조 제2항은 "피고인(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해서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라고 있는 이 규정을 동법안에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군사법기관 등은 이러한 규정이 있으므로 대민간 강제처분이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Ⅳ. 검토기준

1. 검토기준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13], 16조[14], 제27조 제1항 및 제2항[15], 제37조 제2항[16], 제101조[17], 제110조 제1항 및 제3항[18]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1항[19]

2. 참고기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Human Rights Committee) 13[20]

---

13)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등)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4) 헌법 제16조(주거 보장)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15) 헌법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등)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16)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제한)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7) 제101조(사법권·법원조직·법관의 자격)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18) 제110조(군사재판)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19) ICCPR Article 14 para 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0) ICCPR General Comment No. 13. para. 4 : 본 위원회는 민간인의 재판을 위한 군사법원 및 특별법원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공정, 공평한 독립적인 재판 운영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 이 규약에서는 그러한 법원을 금지하지 않으나, 이러한 법원에 의한 민간인의 재판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여야 하며 제14조에 명시된 보장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Ⅴ. 검토 의견

1. 주요 검토 사항

군사법기관에 의한 대민간 강제처분(압수·수색)과 관련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 바, (1) 군사법원의 영장에 의한 대민간 강제처분(압수·수색) 그 자체가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는지 여부, (2) 군사법원의 성격상 군사법원의 대민간인 강제처분은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 (3) 헌법 제12조 영장주의의 해석상 군사법원의 대민간 강제처분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 (4) 민간인에 대한 군사법원의 강제처분이 제한되어야 한다면 수사·재판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하여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인가 등이 문제된다.

2. 검토

(1) 군사법원의 영장에 의한 대민간 강제처분인 압수·수색 그 자체가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는지 여부

민간인이 군사재판을 받지 않을 헌법 제27조 제2항의 기본권에는 군수사절차상의 압수·수색 등의 대물적 강제처분을 받지 않을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군검찰관이 청구하고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강제처분(압수·수색 등 대물적 강제처분을 포함)의 대상이 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군인 또는 군무원, 그리고 헌법 제27조 제2항에서 예외로 규정한 것을 구체화하여 입법한 현행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항과 군형법 제1조 제4항의 특정유형 범죄에 관련된 피의자 및 피고인으로서의 민간인을 말한다.

영장의 발부에 관한 재판도 엄연히 재판의 일종이므로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지 않는 민간인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동 조항에서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 군인 군무원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어떤 강제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군사법기관이 관할범죄의 피고인 혹은 피의자를 넘어 민간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그것이 군사법원의 관할범죄를 수사·재판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군사법원의 성격상 군사법원의 대민간인 강제처분은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

군사법원의 재판은 법원조직법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군사법원법이 정한 군판사에 의한 것이지만 헌법 제110조 제1항이 인정하는 특별법원[21]이며 이의 법적 성격은 특수법원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예외법원으로 이해하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군사법원을 특수법원으로 이해하는 견해는[22]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 사법에 관하여 일반적인 관할권을 가지는 최고법원 및 하급법원 이외에 특별한 신분을 가지는 자(군인, 군무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일 뿐 법원의 권한으로서는 일반법원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이 견해에 의하면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에서 "법관에 의한 영장의 발부"의 의미는 민간법원 뿐만 아니라 헌법이 허용하고 있는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에 의한 영장발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군사법원은 관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록 군사재판의 대상자(피고인, 피의자)가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등 대물적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군사법원을 예외법원으로 이해하는 견해는[23] 특별법원은 법원 권한의 제한, 관할대상의 특수성, 법원 존립의 임시성 등에 그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재판에 대한 최고법원에의 상소가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헌법이 규정하는 법관의 자격 내지 일반법원의 독립성에 관련되는 규정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하는 법원으로 파악한 입장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우리 헌법상 군사법원은 특정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하는 특수법원이 아니며 극히 예외적 영역에서 기능하는 예외법원이므로(즉, 군대 영역에서 기능하는 특별법원이므로) 군영역을 벗어난 압수·수색 등 대민간 강제처분은 우리 헌법이 본래적으로 예정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압수·수색 등 대민간의 대물적 강제처분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법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관한 법률적 규정이 필요하다

2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4, 1339면.

22) 한태연, 헌법학, 1977,법문사, 623면.

23) 박일경, 제6공화국 신헌법, 법경출판사, 1990, 537면 ; 문홍주, 제6공화국 한국헌법, 해암사, 1987, 583면 ; 구병삭, 신헌법학원론, 박영사, 1997, 1055면 ; 안용교, 한국헌법, 고시연구사, 1989, 984면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6, 971면.

고 한다.

따라서 군사재판에서 민간인을 재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군사법원은 성격상 예외법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군사법원의 영장으로 군영역을 벗어나 민간인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군사법원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헌법 제12조 영장주의의 해석상 군사법원의 대민간인 강제처분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

수사와 재판에서 헌법 제12조는 영장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바, 군사법원의 대민간 강제처분을 위한 영장도 바로 여기에 전면적으로 해당하는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군사재판의 재판권이 미치는 헌법 제27조 제2항의 예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인, 군무원 및 군사재판을 받는 민간인(군의 직접적 통제 하에 있는 민간인, 예컨대 병영 내에 있는 민간인)에 대해서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 군사법원의 판사에 의한 영장발부는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의 취지에 타당한 것이지만 민간인에 대한 군사법원의 영장 발부는 영장주의의 취지를 넘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헌법 제12조가 일반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영장 발부는 독립성이 강한 사법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전제되었고, 군사법원은 조직 운영 등에서 일반 법원과는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에서 '법관에 의한 영장' 발부의 전제는 '검사의 영장청구'인데 여기서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군검사의 경우는 민간검사에 비해서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즉 군사재판에서의 군검사는 상대적으로 일반 검사에 비해 독립성이 약하므로 이런 영장절차에 의해 민간인이 강제처분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소결

위와 같이 볼 때 군사법원이 민간인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하여 압수 수색 등을 하는 것은 군사법원의 재판 대상을 극히 한정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제2항의 취지나, 군사법원의 헌법상 성격, 나아가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의 일반논평 13에서도 "군사법원에 의한 민간인의 재판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시하고 있고, 미국의 군사법원의 관련규정도 군의 통제밖에 있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군판사의 영장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좋은 근거가 된다고 본다.

3. 민간인에 대한 강제처분의 방법론

군사법원의 대민간 강제처분이 제한되어야 한다면 군의 직접적 통제 밖에 있는 민간인 소지의 물건에 대한 강제처분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그 방법론으로는 군사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민간수사기관에 대하여 집행 촉탁을 하는 방법, 군사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민간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민간 수사기관과의 공조 집행을 하는 방법, 또는 다른 방법을 상정해 볼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민간법원의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민간인에 대한 강제처분에 관하여 군사법원의 권한을 배제한 헌법의 취지를 살릴 수 없고, 지속적으로 위헌 논쟁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Ⅵ. 결론(의견표명)

위와 같은 이유로 국회에 계류중인 군형사소송법안에 대하여 국회의장에게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2006. 6. 12.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조영황 위 원 최영애 위 원 김호준 위 원 정강자

위 원 김만흠 위 원 나천수 위 원 이해학 위 원 정인섭

위 원 최금숙 위 원 신혜수 위 원 원형은

9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방부장관에게, 국방부가 2008. 10. 31. 의견을 요청한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운동 및 접견 허용 시간에 대한 최소기준을 법률로 규정할 것 등의 내용으로 의견표명

▌결정요지 ▌

[1] 34조(운동 및 목욕) 및 제42조(접견) 운동 및 접견 허용 시간에 대한 최소기준을 법률로 규정할 것

[2] 제82조(보호실 수용) 및 제83조(진정실 수용) 보호실과 진정실을 통합하여 단기간 수용방식으로 운영할 것

[3] 제85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머리보호장비와 발목보호장비를 삭제하고, 보호침대와 보호복 등은 의료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그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4] 제94조(징벌의 종류) 신설되는 징벌의 종류 중 집필 제한(제10호), 서신수수 제한(제11호), 접견 제한(제12호), 실외운동 정지(제13호)는 삭제할 것

[5] 제97조(징벌위원회)와 관련하여 부당한 징벌의 최소화를 위해 징벌재심위원회 설치할 것

▌참조조문 ▌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37조,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1조, 제33조, 제37조

▌참조결정 ▌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06.06.12), 「행형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08.06.12)

▌주 문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국방부가 2008. 10. 31. 의견을 요청한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 함)」 제34조(운동 및 목욕) 및 제42조(접견)와 관련하여 운동 및 접견 허용 시간에 대한 최소기준을 법률로 규정할 것.
2. 법률안 제82조(보호실 수용) 및 제83조(진정실 수용)와 관련하여 보호실과 진정실을 통합하여 단기간 수용방식으로 운영할 것.

3. 법률안 제85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와 관련하여 머리보호장비와 발목보호장비를 삭제하고, 보호침대와 보호복 등은 의료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그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4. 법률안 제94조(징벌의 종류)와 관련하여 신설되는 징벌의 종류 중 집필 제한(제10호), 서신수수 제한(제11호), 접견 제한(제12호), 실외운동 정지(제13호)는 삭제할 것.
5. 법률안 제97조(징벌위원회)와 관련하여 부당한 징벌의 최소화를 위해 징벌재심위원회를 설치할 것.

▌이 유 ▐

Ⅰ. 의견표명의 배경

국방부는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08. 10. 31.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다.

법률안은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규정 신설, 신입자에 대한 고지 의무 신설, 귀휴 요건 완화, 특별 귀휴의 법적 근거 마련 등 군 교정 관계에 있어서 인권 보호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법률안 중 일부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 의견표명 내용과 법률안 제5조(인권의 존중) 및 군수용자의 인권 신장이라는 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거 검토하였다.

Ⅱ.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

법률안에 대한 판단은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37조,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하 '최저기준규칙'이라고 함)」 제21조, 제33조, 제37조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2006. 6. 12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08. 6. 12 「행형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참고하였다.

Ⅲ. 판단

법률안은 법무부가 전면 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8728호, 2007. 12. 21. 공포, 2008. 12. 22. 시행)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군 교정관계에 있어서 인권존중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인권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검토한 일부 조항들은 헌법의 기본권 조항, 피구금자 처우에 대한 국제적 기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수정되고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1. 법률안 제34조(운동 및 목욕) 및 제42조(접견)

수용자는 격리된 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는 「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실외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이며 가족·친구와의 접견은 수용자의 사회복귀 및 교화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최저기준규칙 제21조는 실외작업을 하지 아니 하는 모든 피구금자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7조는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신뢰할 만한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 6. 12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에서, 매일 적어도 1시간 이상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6. 12 「행형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에서, 수용자의 접견시간을 충분한 의사소통 보장을 위해 회당 10분이상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수용자가 매일 적어도 1시간의 적당한 실외운동과 10분 이상의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 시간을 법률로 정하여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법률안 제82조(보호실 수용) 및 제83조(진정실 수용)

법률안 제82조는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거나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수용기간을 15일 이내로 하여 매 7일간 연장할 수 있고 최장 3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장의 조치가 필요한 수준의 환자를 외래병원 이송이나 정신과 전문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한 처치를 하지 않고 장기간 보호실에 격리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한편, 법률안 제83조는 일정한 사유에 따라 24시간 이내의 진정실 수용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 6. 12「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에서, 장기간 격리구금을 초래 할 수 있는 보호실의 운영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단기간 수용으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진정실과 통합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장기간 격리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실은 폐지하고 극도로 흥분하여 소란을 계속하는 수용자들을 일반 수용자로부터 격리하여 단기간 수용하는 진정실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법률안 제85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머리보호장비'는 자살 및 자해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수용자가 계속 고성을 지르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호장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 6. 12「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에서, 현행의 '머리보호장비'와 동일한 장비라고 판단되는 '안면보호장비'에 대하여, 이는 장기간 사용시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장비이므로 폐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법률안 제82조에서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을때,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는 보호실에 수용하고 제83조에서는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때는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은 '머리보호장비'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발목보호장비'는 최저기준규칙 제33조에서 계구로도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족쇄에 해당되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보호대,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등은 교정시설보다는 정신병원 등의 보호시설에서 많이 사용되는 장비로서 보안상의 필요보다는 의사의 판단에 의한 의료적 목적에

의하여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최저기준규칙 제33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장의 명령에 의해 사용하고 이 경우 소장은 지체없이 의무관과 상의하고 상급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법률안은 현행 「군행형법시행규칙」에 위임된 보호장비의 종류 및 규격을 법률로 정하였으나 보호장비의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제85조 제3항). 그러나 보호장비의 사용절차에 대한 사항은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과 같이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므로 시행령에 위임하기 보다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법률안 제94조(징벌의 종류)

실외운동, 접견, 집필행위, 서신수수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2004. 12. 16. 2002헌마478결정 및 2005. 2. 24 2003헌마289결정 등 참조). 또한 징벌의 종류로서의 접견 과 서신수발 금지 및 작업의 금지는 1995년 「행형법」 개정시에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폐지되었던 사항이었으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징벌의 종류로 다시 부활하였고 이를 법률안이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자의 중요한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징벌'로 규정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그 행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되다.

따라서 징벌의 종류로서 집필 제한, 서신수수 제한, 접견 제한, 실외운동 정지를 규정하는 것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법률안 제97조(징벌위원회)

징벌위원회는 수용자의 징벌 여부와 그 종류를 심사, 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수용자가 징벌을 받게 되면 누진처우상 상당한 불이익을 받거나 귀휴나 가석방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는 등 수용자의 처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징벌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징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징벌재심위원회를 두어 수용자들에 대한 부당한 징벌의 구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08. 11. 27.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위원 유남영 위원 문경란

10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국방부가 2008. 11. 28. 제출한「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관살해죄 및 초병살해죄의 법정형을 적전·전시·평시 등에 따라 세분하여, 적전이 아니거나 평시의 경우 법정형의 사형을 제외할 것을 의견표명

▌결정요지▐

[1] 법률안 제53조 제1항의 상관살해죄의 법정형을 적전·전시·평시 등에 따라 세분하여, 적전이 아니거나 평시의 경우 법정형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가해자와 상관 사이에 실질적 명령복종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상관'의 정의 개념을 제한 할 것

[2] 법률안 제59조 제1항의 초병살해죄의 법정형을 적전·전시·평시 등에 따라 세분하여, 적전이 아니거나 평시의 경우에는 법정형에서 사형을 제외 할 것

▌참조조문▐

「헌법」제10조, 제11조, 제37조 제2항,「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6조 제1항, 제2항,「형법」 제250조 제1항, 제2항, '헌법재판소 2007. 11. 29. 2006헌가13 결정', '사형제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2005. 4. 6. 결정)'

▌주 문▐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2008. 11. 28.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1. 법률안 제53조 제1항의 상관살해죄의 법정형을 적전·전시·평시 등에 따라 세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적전이 아니거나 평시의 경우에는 법정형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가해자와 상관 사이에 실질적 명령복종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상관'의 정의개념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법률안 제59조 제1항의 초병살해죄의 법정형을 적전·전시·평시 등에 따라 세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적전이 아니거나 평시의 경우에는 법정형에서 사형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유 ▐

Ⅰ. 의견표명의 배경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2008. 11. 28.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 12. 3. 우리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위 법률안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1. 판단기준

「헌법」제10조, 제11조, 제37조 제2항,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6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50조 제1항, 제2항.

2. 참고기준

'헌법재판소 2007. 11. 29. 2006헌가13 결정', '사형제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2005. 4. 6. 결정)'

Ⅲ. 판단

1. 상관살해죄 법정형의 적정성(법률안 제53조 제1항)

정부는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53조 제1항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07. 11. 29. 2006헌가13)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안 제53조 제1항의 법정형에 사형 외에 무기징역을 추가하는 것으로 현행 군형법 제53조 제1항의 헌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가해자와 상관 사이에 명령복종관계가 있는지 여부, 전시와 평시라는 상황의 구분, 살해의 동기 및 정황·살해방식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양형이 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세분화하여 규정해야 한다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

며 우리위원회는 2005. 4. 6. "평시의 사형제도는 폐지하되, 전시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형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는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한 바 있다. 또한, 군형법 제2조 제1호 후단에서는 "명령복종관계가 없는 자간에서의 상계급자와 상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라는 '준상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어 상관살해죄의 대상이 실질적으로 명령복종관계가 없는 자에게까지 무리하게 확대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가해자와 상관사이 명령복종관계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과도한 형벌을 적용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설시하였다. 따라서 상관살해죄의 범죄객체인 상관의 개념을 실질적 명령복종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죄질과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성이 갖춰지도록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상관살해죄의 경우 적전·전시·평시 등에 따라 세분하여 법정형을 달리 규정함으로서, 범죄의 동기와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양형이 가능하도록 법률안 제53조 제1항을 수정하고, 가해자와 상관 사이에 실질적 명령복종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상관살해죄에 있어서의 '상관'의 정의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평시에 발생된 상관살해죄의 경우 법정형에서 '사형'을 배제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특히 생명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실현하려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초병살해죄의 법정형의 적정성(법률안 제59조 제1항)

현행 군형법 제59조 제1항 초병살해죄의 경우 상관살해죄와 달리 무기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조항 역시 전시와 평시 구분과 범죄 동기 및 범죄 정황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엄중한 형벌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

초병살해죄의 법정형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앞서 언급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초병을 살해한 책임이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다양한 동기와 행위태양의 범죄를 동일하게 평가하여 사형과 무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 원칙상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관살해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시의 경우에는 초병살해의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역시 법정형에서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사형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2008. 12. 22.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

위원장 안경환 위 원 최경숙 위 원 유남영 위 원 문경란

11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국방부가 2007. 1. 15. 입법 예고한 '군인복무기본법안'은 장병 기본권의 보장 및 복지수준의 향상, 병영문화의 개선·발전을 규정하고 있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장병의 기본권보장 보다는 군인의 의무를 규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군인의 기본적 권리보호를 위한 권리의 이행수단 및 제재수단이 미비하여 그 실효성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법률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결정요지▐

[1] 군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법적 지위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인의 인권보장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을 명시

[2] 인간의 존엄에 반하거나 직무상 목적과 관련이 없는 명령 및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명령 및 그 이행을 금지하도록 규정

[3] 군인의 적기 적시의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4] 군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시 권리구제절차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5] 군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법적 지위 및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에 따라 별도의 「장병인권에 관한 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바람직할 것이지만, 설령 군인의 자유와 권리 및 의무를 동시에 하나의 법률에 규정한다 하더라도 법률안에는 군인인권보호기본계획과 군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을 포함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2007. 1. 15. 입법예고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안」(이하 '법률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군인의 복무

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법률안 제8조 및 제9조)

법률안 제8조 제2항을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라 군인의 인권보장 정책 및 복무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민간의 폭 넓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법률안 제9조에 군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과 인권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명령복종 및 실행 의무(법률안 제12조)

법률안 제12조 제1항과 별도로 제2항을 신설하여 "모든 군인은 인간의 존엄에 반하거나 직무상 목적과 관련이 없는 명령 및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명령을 하거나 이에 복종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군인의 기본권보장과 제한

가. 군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법률안 제17조)

법률안 제17조 후문의 '기타 정당한 사유'는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진료(법률안 제20조)

법률안 제20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③ 군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기 적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휴가(법률안 제21조)

법률안 제21조 제1항 "군인은 매년 휴가를 받을 수 있다"를 "모든 군인은 여가 및 휴가를 가질 수 있다"로 수정하고, 동조 동항의 휴가제한 사유중 "5. 피의자, 피고인, 징계혐의자 또는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라. 고충처리제도(법률안 제24조)

법률안 제24조 제6항에 "군인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고충심사기관 이외에는 고충심사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마. 기본권 교육(법률안 제25조)

법률안 제25조 제1항에 "모든 군인은 헌법이 보장하고 이 법에 의해 구체화된 기본적 인권의 내용과 인권침해시 구제절차 등을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

도록 하고, 동조 제2항에 "국방부 장관은 군인의 인권의식, 군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시 권리구제절차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동조 제3항에 국방부 장관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되, "그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바. 집단행위의 금지(법률안 제28조)

법률안 제28조 제1항 집단행동 금지 사유중 "2. 군무에 영향을 줄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에 관련 사회단체 가입허가의 범위와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법률안의 구성과 체계

군인의 자유와 권리 및 의무를 동시에 하나의 법률에 규정한다 하더라도 법률안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에 대응한 군인인권기본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제3장의 군인의 의무에 대응한 군인의 인권보호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고 그 순서도 가능한 한 군인의 자유와 권리를 군인의 의무에 앞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고, 제4장의 제목 "군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한계"를 "군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으로 수정하고 제5장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된 제목에 따라 내용을 재구성하여야 하며, 법률안의 본문에서 열거한 권리의 이행수단 및 제재수단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유 ▐

Ⅰ. 의견표명의 배경

2005년 논산훈련소 인분사건 및 연천 총기사고 이후 군 외부로부터 장병 기본권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정부입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2006. 10. 국방부는 병영문화 개선차원에서 장병복무 및 인사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안」(이하 '법률안'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각 부처에 의견을 조회하고 당정협의를 마친 후에 2007. 1. 입법예고하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병인권의 보호 증진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를 연구·조사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였다.[24] 연구용역 결과에서 국방부가 마련

한 법률안이 “군인의 기본적 인권의 제한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명확하지 않아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게 되었다.

II. 법률안의 주요 내용

1. 제정이유

법률안은 군인의 법적지위와 권리 및 의무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군인으로서의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무형의 전투력 향상과 국민의 신뢰 확보로 선진 정예강군을 육성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2. 주요내용

동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1)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법률안 제6조 내지 제9조), (2)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등 사적 제재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법률안 제14조), (3) 법령이나 지휘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 병 상호간명령이나 지시 및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법률안 제15조), (4) 군인들의 건강 유지를 위한 진료 보장, 적절한 휴식을 위한 휴가 등 권리 보장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처벌, 훈계 등을 목적으로 영내대기를 금지하고(법률안 제20조 내지 제22조), (5) 군인은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당한 의견건의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법률안 제23조), (6) 근무여건·인사관리·건강관리·신상관리 등에 관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법률안 제24조), (7) 장병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한 상담과 교육을 위하여 전문상담관제도를 운영하고(법률안 제26조), (8) 국가 공무원의

24) 외국의 군 인사 및 복무 등을 연구·조사하기 위하여 「외국 군 인사·복무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실태조사」라는 과제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 이계수교수)에 의뢰하여 2개월간(2006.11. ~ 2006.12.)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신분과 군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제한 범위를 규정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지휘권이 보장되도록 규정(법률안 제28조 내지 제31조)하였다.

Ⅲ. 검토의견

1. 군인의 복무

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법률안 제8조 및 제9조)

법률안 제7조에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동법률안 제8조 제2항은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군인복무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및 장관급 장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률안 제9조에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1. 군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군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 및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 3. 군인복무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군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5. 군인복무정책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인복무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군대내에서 인권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군대 자체내의 의지라기보다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비판의 결과라 볼 수 있고, 헌법상 군대는 민간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라 군인의 인권정책 및 복무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민간의 폭 넓은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군복무의 문제는 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현재 군대의 인권문제를 군대 스스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동법률안에 따르면, 민간위원의 참여가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위원장이 국방부장관이고, 대부분 군대 내부의 인사로 구성될 것이라는 점과 법률안 제9조의 심의사항이 복무중심이라는 점에서 군대 내부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인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따라서 법률안 제8조 제2항을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라 군인의 인권보장 정책 및 복무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민간의 폭 넓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법률안 제9조

에 군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과 인권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명령복종 및 실행 의무(법률안 제12조)

법률안 제12조는 "부하는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 하여야 하며 명령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실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의 의무의 하나로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고 실행할 의무를 두고 있는 것은 과거에 적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부과하였던 점을 상기하면 진일보한 내용이라 할 수 있으나, 군인이 실제 임무수행과정에서 명령이 위법한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군 관련 법령, 인권에 관한 법, 전쟁법 등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위법한 명령인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군기문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위법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일단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사후적인 구제를 가능하게는 할 것이나 사전에 위법한 명령을 제어하는 장치로서는 부적절한 것이다.

동조항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방안의 하나로 단지 '위법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보다 좀 더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독일「군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제11조[25]에서 규정한 것처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존엄에 반하거나 직무상의 목적과 관련 없는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거나 "형사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명령에는 복종하여서는 안된다"라고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안 제12조 제1항과 별도로 제2항을 신설하여 "모든 군인은 인간의 존엄에 반하거나 직무상 목적과 관련이 없는 명령 및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명령을 하거나

25) 독일「군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제11조 (복종) ① 군인은 자신의 상관에게 복종해야 한다. 군인은 자신에게 내려진 명령을 최대한 충실하고 성실한 태도로 지체없이 수행해야 한다. 만약 명령이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거나 직무상의 목적을 위하여 내려지지 않은 것일 때에는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명령불복종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거나 직무상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명령이라고 착오하였을 때에는 그 착오가 회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당사자의 정황상 법적인 구제수단으로 대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경우에만 명령불복종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② 만약 명령이 형사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것일 때에는 그에 복종하여서는 안 된다. 형사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부하가 그 명령에 복종하였을 때에는 그가 명령에 의하여 형사범죄가 저질러진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당시 그의 정황에 비추어 형사범죄가 저질러진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이에 복종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군인의 기본권보장과 제한

가. 군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법률안 제17조)

법률안 제17조는 "군인은 헌법상 권리의 주체이며, 헌법과 법률,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 제17조 후문에 "헌법과 법률,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권리의 제한 사유로 헌법과 법률에 한정하지 않고 기타 정당한 사유를 포함하고 있다. 현대국가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기본권제한의 기준과 방법 및 한계를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기본권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함부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

즉,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국회입법)에 의하거나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타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군인의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기타 정당한 사유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법률안 제17조 후문의 '기타 정당한 사유'는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진료(법률안 제20조)

법률안 제20조 제1항에 "모든 군인은 전투력을 보존하고,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시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률안 동조 제2항에 "군은 의무체계를 선진화하여 장병들의 진료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 제20조에 규정된 진료권 보장 조항은 군 제대직후 위암으로 사망한 고 노충국 씨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한 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권고를 한 내용을 국방부가 수용한 조항으로서, 군인의 적기 적시의 의료접근권 보장의 핵심조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선언적 또는 프로그램적 성격의 규정만으로서는 군인의 인권 보호와 예방에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동 조항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안 제20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③ 군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기 적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휴가(법률안 제21조)

법률안 제21조 제1항은 "군인은 매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휘관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재난이 발생한 경우, 4. 소속대의 야외훈련, 평가, 검열 등이 실시중이거나 임박한 경우, 5. 피의자, 피고인, 징계혐의자 또는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 제21조 제1항에서 "군인은 매년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군인의 여가와 휴가는 인간의 존엄성 확보 차원에서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이지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률안 제21조 제1항 제5호는 지휘관이 휴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피의자, 피고인, 징계혐의자 또는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가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제한 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률안 제21조 제1항 "군인은 매년 휴가를 받을 수 있다"를 "모든 군인은 여가 및 휴가를 가질 수 있다"로 수정하고, 동조 동항의 휴가제한 사유중 "5. 피의자, 피고인, 징계혐의자 또는 환자로서 휴가를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라. 고충처리제도(법률안 제24조)

법률안 제24조는 군인의 고충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고충의 청구대상,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심사절차에 대한 시행령 위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조 제6항에 "군인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고충심사기관 이외에는 고충심사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의 고충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고충처리제도(법률안 제24조)는 이 법률안의 주요한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나 고충의 청구 대상을 근무여건, 인사관

리, 건강관리, 신상관리 등에 관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동법률안 동조 제6항은 군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군대 내부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도 군대 내부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규정되어 있다.

군대 내부의 문제는 그것이 지휘계통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군대 내부적인 것이지만, 또한 그것이 위법한 경우에 단순히 내부적인 차원을 넘어서 전체 국민의 관심사로서 공적인 문제이다.

률안 제24조는 군대내 자체의 고충처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점에서는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법률안 제24조 제6항의 규정내용이 고충처리를 특정기관에 한정하여 다른 통로의 이용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안 제24조 제6항에 "군인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고충심사기관 이외에는 고충심사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마. 기본권 교육(법률안 제25조)

군인의 기본권 교육에 대하여 법률안 제25조 제1항에 "국방부장관은 군인 등을 대상으로 군인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내용, 침해시 구제절차 등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규정한 교육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하여 실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 제25조에는 군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만 언급하고 있고, 인권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인권교육이 형식화될 소지가 있다.

인권교육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교육목표 및 방향을 명확히 하는 정책 수립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 있다.

또한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인권교육을 지양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계획을 매년 작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률안 제25조 제1항에 "모든 군인은 헌법이 보장하고 이 법에 의해 구체화된 기본적 인권의 내용과 인권침해시 구제절차 등을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동조 제2항에 "국방부 장관은 군인의 인권의식, 군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시 권리구제절차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동조 제3항에 국방부 장관은 각군 참모총장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되, "그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바. 집단행위의 금지(법률안 제28조)

법률안 제28조 제1항에서 "군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2. 군무에 영향을 줄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 3. 집단을 형성하여 상급자에게 건의 또는 항의하는 행위, 4. 집단으로 훈련을 거부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5. 기타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군의 기강을 문란 시키고,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군인은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사회단체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순수한 학술, 문화, 체육, 친목, 종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가입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단체가 군인의 의무와 충돌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탈퇴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범위를 별도로 정하며, 허가권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 제28조 제1항에서 군인의 집단행위 금지사유에 대하여 "1.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2. 군무에 영향을 줄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 3. 집단을 형성하여 상급자에게 건의 또는 항의하는 행위, 4. 집단으로 훈련을 거부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5. 기타 지휘권을 침해하거나 군의 기강을 문란 시키고,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위 집단행동 금지 사유중 "2. 군무에 영향을 줄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군무에 영향'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매우 애매하여 불확정적이고 군인의 행동을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인의 결사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될 것이므로 최소침해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3호 내지 제5호의 내용이 바로 군무에 영향을 주는 전형적인 집단적인 집단행동 유형에 해당하므로 굳이 제2호를 별도로 존치시킬 필요성에 대하여도 의문이 든다.

법률안 제28조 제2항에 군인은 사회단체에 가입할 경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 국방부장관은 그 허가의 범위를 정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허가권을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군인이 사회단체에 가입할 때 허가받도록 규정한 것은 군인의 집회·결사를 보장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한하더라도 그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집회·결사의 자유의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률안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고 판단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법률에서 그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시행령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동조 제3항에서 일정정도의 허가의 범위와 내용을 적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조 제3항에 사회단체의 가입시 허가의 범위를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명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한 것은 의회입법의 원칙 및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안 제28조 제1항 집단행동 금지 사유중 "2. 군무에 영향을 줄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에 관련 사회단체 가입허가의 범위와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법률안의 구성과 체계

법률안에 규정된 군인의 복무 및 권리보장에 관하여 위의 조문별 검토와는 별도로 법률안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구성이나 체계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안은 제1조에서 복무기간 중 군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과 보장해야 할 군인의 권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군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강한 군대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률안 제2장에서는 군인복무기본정책, 제3장에서는 군인의 의무, 제4장에서는 군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한계, 제5장에서는 기본권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4장에서는 복무규정에 대하여 별도의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안은 군인의 의무사항과 군인의 권리사항을 함께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의무와 권리를 하나의 법률에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은 군복무관계에서의 군인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의 자유와 권리 및 의무를 동시에 하나의 법률에 규정한다 하더라도 법률안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에 대응한 군인인권보장기본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제3장의 군인의 의무에 대응한 군인의 인권보호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담고 그

순서도 가능한 한 군인의 자유와 권리를 군인의 의무에 앞에 규정하고, 제4장의 제목 "군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한계"를 "군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으로 수정하고 제5장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된 제목에 따라 내용을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률안의 성격이 기본법이라 하더라도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안의 본문에서 열거한 권리의 이행수단 및 제재수단이 존재하여야 하고, 권리행사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26]에 장병 기본권의 보장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군인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병의 인권보호와 복지수준의 향상 등 병영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법률(안)의 구성과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따라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안」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07. 4. 23.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위 원 최영애 위 원 김호준 위 원 정강자

위 원 정인섭 위 원 최금숙 위 원 신혜수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26) 동법률 제32조 (장병 기본권 등의 보장) ④ 장병 기본권의 보장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2 김성회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군가산점제가 병역의무를 마친 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고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효과 또한 상당하여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크고, 협약 당사국에 대하여 차별 금지 및 시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며,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요체로 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사회공동체 모두가 부담하는 합리적이고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

▌결정요지 ▌

[1] '김성회의원안'은 가점대상자 범위는 지원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일부 여성을 제외하고는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 대다수의 여성과 장애인이나 신체상의 이유로 병역이 면제된 남성은 여전히 제외된다는 점, 사실상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1년 6월이상의 수형자, 고아, 혼혈인, 귀화자, 중학중퇴이하자 등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이들을 배제한다는 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일부 사람에게만 우대조치를 하는 것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병역의무 이행자 내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법이라 인정하기 어려움

[2] '김성회의원안'대로 가산점제를 적용할 경우 여성의 공직 진출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주며,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현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특히 상대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다른 직종보다 고용안정도가 높은 공무원 시험이 미세한 점수차로 합격 여부가 좌우되고[27] 공직채용 시험 경쟁률이 더욱 높아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산점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적용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여성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평등 효과가 큼

[3] '김성회의원안'은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않고 직무수행능력의 핵심요소라 할 수 없는 병역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만 달리 능력주의의 예외로 인정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없고, 공직 진출에 있어 대다수 여성이나 장애인 등의 기회균등 보장을 침해하며, 공직 채용시험 경쟁률이 높아가고 극소한 점수 차이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병역의무 이행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에 비해 공직 진입 기회를 박탈할 소지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에서 비가산점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함.

[4] '김성회의원안'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 및 「사회권규약」이나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의 차별금지 원칙 위반의 소지가 크므로 이 안의 군가산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국가를 비롯한 사회공동체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정책에 대하여 여성 대 남성, 신체 건강한 남성 대 그렇지 않은 남성과 같이 국민의 사적 이해간의 충돌을 빚게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자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모두가 부담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25조,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5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2,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4조1, 제7조, 제11조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5조 및 제27조1, ILO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제2조 및 제5조1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김성회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김성회의원안")에 대하여 국회의장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아 래

1. 김성회의원안의 군가산점제는 병역의무를 마친 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고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효과 또한 상당하여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크고, 협약 당사국에 대하여 차별 금지 및 시정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며,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요체로 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이 제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함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정책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것이기 위해서는 「헌법」이 보호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으며,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보편적이고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인 바,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전제에서 김성회의원안의 군가산점제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모두가 부담하는 합리적이고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27) 2006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7급의 합격선은 85.14였고, 9급은 84.00이었음.

▌이 유 ▐

Ⅰ. 개요

1. 의견표명 배경

국방부는 2008. 7. 김성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였다. 김성회의원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 제대군인 가산점제 도입을 핵심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검토하였다.

2. 의견표명 대상 법안의 주요내용

김성회의원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본 법안의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군 복무기간 동안의 희생에 대해 보상하고 제대 후 사회생활로의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원인이 된 평등권 침해 및 비례원칙 위반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동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김성회의원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지원에 따른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하 "병역의무 이행자")이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과한다(안 제74조의2 제2항).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계급·직급 및 직위와 그 밖의 채용시험 가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동조 제6항). 가점받아 합격한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동조 제3항). 채용시험 응시자 가점 부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동조 제4항).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호봉 또는 임금 산정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동조 제5항).

Ⅱ. 판단기준 및 헌법재판소 결정

1. 판단기준 및 참고기준

위원회는 김성회의원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25조,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5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과 같은 국내법과 함께,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제2조2,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조1, 제7조, 제11조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5조 및 제27조1, ILO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제2조 및 제5조1을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이들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해석지침이라 할 수 있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25,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8 등을 참고하였다(판단기준으로 사용한 법규정 및 조약 등의 내용은 〈별지1〉 참조).

2. (구)제대군인 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및 취지

헌법재판소는 1999년에 「(구)제대군인지원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 제대군인에게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시험, 교사임용시험, 공·사기업체 채용시험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이하 "종전 군가산점제")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1999. 12. 23. 98헌마363). 그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먼저 병역의무의 이행 및 그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성격의 일이고 그러한 의무 이행에 대하여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종전 군가산점제는 「헌법」 제39조 제2항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나 「헌법」 제32조 제6항의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 조항에 근거한 제도라 할 수 없고 단지 입법정책적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거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 경우 적용되는 엄격한 심사척도 기준에서 볼 때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하고 차별로 인한 불평등 효과가 극심해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하고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자를 실질적으로 배제한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성별이나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종전 군가산점제는 폐지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신설에 따라 채용시험 시 응시연

령의 상한 연장, 호봉이나 임금 결정시 군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반영 등의 의무복무 제대자 보상 정책이 새로이 마련된 바 있다(현행 병역의무자 지원정책에 관하여서는 〈별지2〉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6년에 종전 군가산점제와 유사한 제도인 (구)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산점제(이하 "종전 국가유공자가산점제)에 대하여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한 것이라 인정하면서도 공직시험 응시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6. 2. 23. 2004헌마675·981·1022(병합)).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의 위헌성이 그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다는 데 있기 때문에 가산점의 수치를 그 차별효과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로 낮추고, 가산점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위헌성을 치유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종전 국가유공자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는 〈별지3〉 참조).

종전 군가산점제와 종전 국가유공자가산점제는 취업 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우대 조치가 결과적으로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과 같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현저히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종전 국가유공자가산점제에 대하여 그 위헌성을 치유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과 달리 종전 군가산점제에 대하여서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군가산점제가 헌법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제도 자체가 가산점 미적용자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차별취급의 비례성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 그 취지라 할 것이다.

Ⅲ. 판단

1. 판단의 전제

김성회의원안은 제안이유에서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인데,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군 복무기간 동안의 희생에 대하여 보상하고 제대 후 사회생활로의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의무의 본질은 국가나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부담과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관철시킨다는 데에 있고, 병역의무의 이행은 의무자의 부담과 이에 따른 불이익을 통하여 실현되는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로서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인 바, 국민이 헌법상 기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국가가 그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삶의 중요한 시기에 국가에 징발당하여 대부분의 기본권 행사를 총체적으로 제약당하는 당사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은 희생의 성격을 갖는다 할 수 있다. 그 희생 덕분에 국민은 국가의 안녕이라는 공공재와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학업과 취업준비의 연속성 단절로 인하여 일정정도 사실상의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중요한 것은 병역의무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정책이 합리적이고 타당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첫째,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고 둘째, 특히 우리사회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으며 셋째, 병역의무 이행자 내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의 의미를 담고 넷째, 사회공동체 모두가 부담하는 방식이어야 하는 바, 김성회의원안의 군가산점제 또한 이러한 전제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김성회의원안은 이 안의 군가산점제가 종전 군가산점제와 달리 가산점 비율을 각 과목별 득점의 2% 내로 줄이고, 가산점 합격인원을 선발예정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가점부여 횟수 및 기간을 제한하는 한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나 지원에 따라 군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평등권 침해 및 비례원칙 위반을 해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인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을 기준으로 정립하고 있다. 비례의 원칙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어야 하며(방법의 적절성), 가능한 한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차별취급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는(법익의 균형성) 것을 내용으로 한다(헌법재판소 결정 1999. 12. 23. 98헌마363; 2000. 8. 31. 97헌가12; 2002. 4. 25. 98헌마425 등 참조). 이하에서

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김성회의원안의 군가산점제가 평등권 등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를 해소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또한 김성회의원안의 군가산점제가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일반 사기업체를 가점대상 기관으로 포함하지만, 군가산점제의 불이행에 대비한 이행확보수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민간부문에서의 실행여부가 불투명하고 종전 군가산점제 하에서 일반 사기업체가 이를 실행한 경우도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김성회의원안의 군가산점제는 공직을 포함한 공공부문에 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직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2. 군가산점 적용대상의 측면

김성회의원안의 군가산점제는 가점대상자 범위를 현역과 보충역, 지원에 따른 군복무를 포함하여 종전 군가산점제에 비하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일부 여성을 제외하고는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 대다수의 여성과 장애인이나 신체상의 이유로 병역이 면제된 남성은 여전히 제외된다. 병무청의 〈병무연보〉에 의하면, 2003~2007년까지 5년간 현역 및 보충역 처분을 받은 비율은 96% 정도로 전체 남성 중 대부분이 병역의무를 마친 자가 될 수 있다. 반면 전체 여성 중 지원에 의한 군복무를 마친 일부 여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여성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병역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4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내지 6급으로 등록된 사람을 비롯한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을 제1국민역 병역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 역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병역법」 제5조는 병역을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제2국민역이란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등이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은 김성회의원안의 적용대상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김성회의원안의 군가산점제는 사실상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1년 6월이상의 수형자, 고아, 혼혈아, 귀화자, 중학중퇴이하자 등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이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김성회의원안의 군가산점제가 공공분야에서 실시되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일부 사람에게만 우대조치를 하는 것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역의무 이행자 내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김성회의원안의 군가산점에는 병역의무 이행자와 미이행자를 달리 대우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여성과 장애인 등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사회권규약」이나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의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어느 분야보다 사회구성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공직에서 차별을 제도화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법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김성회의원안은 군가산점제가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 대부분 병역제도의 성격과 무관하게 직업훈련, 취업알선, 보험급여(실업수당, 의료보험)와 가족생계비 보조 등을 위주로 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군가산점제를 일부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연방법에 의하면 퇴역군인 우대조치(veteran's preference)로서 군가산점제가 적용되지만 여기서 '퇴역군인'은 통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베트남전과 같은 특정전투의 참가자로서 우리나라의 병역의무자와는 성격이 다르다. 미국이 퇴역군인에 대하여 일부 가산점제를 도입한 배경도 다수의 전쟁이나 전투를 치러온 나라로서 전시근무자나 전사상자에 대한 국가의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상황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특히, 대부분 외국의 경우 공무원채용은 우리와 같이 소수점 두 자리에서 합격선이 정해지는 필기시험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외국의 지원정책에 관하여서는 〈별지 2〉 참조).

3. 군가산점 적용 효과의 측면

김성회의원안은 이 안의 군가산점제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김성회의원안의 군가산점제가 적용될 시 효과를 분석하고 그 정도가 기본권 제한에 있어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김성회의원안의 군가산점제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대표적인 집단인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현실을 보면, 여성고용구조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고용현실이 열악하고 여성이 사회로 진출하는 데 있어 구조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의 공직 참여에 있어 현재의 상황이 종전 군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난 당시와는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실제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에 비하여 여전히 낮다. 또한 고위직으로 갈수록 남녀간 격차는 커져 2006년 국가 일반직 직급별 분포에서 6급 이하의 여성이 25.0인%

인 반면 5급 이상은 7.3%를, 지방직은 6급 이하가 34.1%인 반면 5급 이상이 4.5%를 차지하는 등 공직사회가 여전히 남성위주로 조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장애인의 실업률은 비장애인의 실업률에 비해 매우 높고, 월평균 소득은 비장애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직종 또한 단순노무직 등에 제한되어 있는 등 장애인의 고용현실 또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여성과 장애인의 고용현황은 〈별지4〉 참조). 이러한 현실에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게 될 경우 여성이나 장애인 등의 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객관적인 점수로 합격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다른 직종보다 고용안정도가 높은 공무원 시험에 있어 장애인과 여성이 공정하게 입직할 수 있는 영역과 기회가 상당히 좁아질 것이라 판단된다.

김성회의원안은 이 안의 군가산점제가 비례원칙 위반을 해소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가산점 비율이나 적용범위 조정 등이 어떠한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과목별 득점의 2%를 가산할 경우 여성의 공직 진출에 미치는 영향을 2006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7급의 경우 여성은 31.4%(135명)에서 22.0%(92명) 또는 19.6%(92명)로 감소한 반면, 가산점을 받은 군필 남성은 65.6%(282명)에서 78.0%(327명) 또는 80.4%(377명)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급의 경우, 여성은 58.8%(505명)에서 43.9%(366명)로, 군미필 남성은 2.4%(21명)에서 1.8%(15명)로 줄어든 반면, 가산점을 받은 군필 남성은 38.8%(333명)에서 54.3%(452명)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선영 외(2007), "군복무에 대한 사회통합적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9~30쪽 참조). 이러한 연구 결과가 여타 가산점 유형과 관련된 자료를 활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과목별 득점의 2% 가산점 적용에 따른 영향력이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2006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 적용을 시뮬레이션 한 국방부의 자료도 9급 행정직의 경우 여성은 -9.7%, 미필 남성 -1.5%가 된 반면 군필 남성은 +11.2%가 되었고, 7급 행정직의 경우는 각각 -10.0%, -3.2%, +13.2%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자료에서 보듯이, 과목별 득점의 2%를 가산할 경우 7급 공채에서 여성의 합격률은 10% 정도 감소하고 9급 공채에서도 15% 정도 감소하는 등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수점 두자리의 극소한 점수차로 합격 여부가 좌우되고(2006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7급의 합격선은 85.14였고, 9급의 경우에는 84.00이었음) 공직채용 시험 경쟁률이 더욱 높아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과목당 득점의 2%

가산점은 여전히 합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산점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적용범위를 제한하더라도 2% 내의 가산점 만큼, 그리고 가산점 적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선발예정인원 20% 범위 내의 여성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평등 효과가 크므로 기본권 제한에 있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김성회의원안은 가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호봉 또는 임금 산정 시 군복무기간 불산정 규정을 두어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이중으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종전 군가산점제가 폐지됨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양자는 대체할 성격의 조치가 아니라 판단된다.

4.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의 측면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은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의 요체이다. 이때 능력주의는 '여자·연소자 근로의 보호,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의 보장(「헌법」 제32조 제4항 내지 제6항)'이나 '여자·노인·신체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적 보장의무'(「헌법」 제34조 제2항 내지 제5항) 등과 같이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제한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결정 1999. 12. 23. 98헌마33; 2004. 3. 25. 2001헌마882; 2007. 12. 27. 2005헌가11 등 참). 김성회의원안의 군가산점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가산점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첫째,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않고 직무수행능력의 핵심요소라 할 수 없는 병역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병역의무 이행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목적은 전술한 바의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없으며 달리 능력주의의 예외로 인정할만한 정당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둘째, 공직 진출에 있어 대다수의 여성이나 장애인과 병역면제자 등의 기회균등 보장을 침해한다. 셋째, 공직 채용시험 경쟁률이 높아가고 극소한 점수 차이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병역의무 이행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에 비해 공직 진입 기회를 박탈할 소지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한편,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군가산점제를 적용하는 사기업체가 있고 공무원채용시험과 유사한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가 된다면, 비가산점 응시자의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인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은 직업행사에 대한 제한보다 엄격한 헌법적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결정례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할 때 김성회의원안의 군가산점제는 여성 및 장애인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는 불합리한 방법이고, 더욱이 당사자의 주관적 능력이나 의지로 극복하기 어려운 성별, 신체상태와 같은 사유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5. 군가산점제와 적극적조치의 관계

일부에서는 과거 여성채용목표제와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역차별의 시비가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군가산점을 적용하더라도 현행 장애인의무고용제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통하여 조정·보완될 것이므로 차별취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장애인의무고용제나 여성채용목표제 같은 적극적 차별수정조치(이하 "적극적 조치")는 헌법상의 실질적인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서, 과거 오랫동안 차별이 축적되어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차별을 시정하기가 어려워 구조적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임시적인 성격의 조치이다(적극적 조치는 〈별지4〉 참조).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일반권고 25를 통하여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적용은 비차별과 평등이라는 규범의 예외라기보다는 사실상 혹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수단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또한 적극적 조치는 역차별이 아니라고 밝히며 이의 실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더욱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채용목표제나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 이후에도 공직사회에서 여성의 고용 현실은 양성평등의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기준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정부기관이 1.60%, 공공기관이 1.96%, 민간기업이 1.51%로 의무고용 2%에 못 미치는 정도인 바, 적극적 조치가 군가산점제로 인한 피해를 보완할 것이라는 지적은 적극적 조치의 실행 배경과 목적, 구조적 차별시정의 필요성을 간과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6. 소결

이상을 종합하면,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지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병역의무 이행자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부담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김성회의원안의 군가산점제는 종전 군가산점제에 비해 차별취급의 정도를 완화했지만, 여성, 장애인, 병역면제자, 혼혈아나 중학중퇴이하자 등 우리사회에서 약자라 할 수 있는 이들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이들에 대한 불평등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채용 시험의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극소한 점수 차이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현실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볼 때 병역의무 이행자 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의 최소성 또한 위반해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 할 것이다. 공무담임권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 보장을 핵심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김성회의원안의 군가산점제는 능력주의와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공직취임에 있어 실질적으로 가산점 미적용자를 거의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여성, 장애인 등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민간부문에 적용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의 소지 또한 크다고 판단된다.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 18을 통하여 「사회권규약」이 성·장애·건강상태 등에 근거한 근로의 권리 행사를 훼손하거나 무효화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비차별과 동등한 고용보호 보장이 협약 당사국의 핵심의무에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근로의 권리와 관련해 당사국은 역행적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되며 역행적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동 조치가 모든 대안조치를 고려한 후에 도입되었으며 규약에 규정된 권리의 전체성을 고려하여 온당히 정당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사회권규약」을 비롯한 「여성차별철폐협약」, ILO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인권기준은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바, 김성회의원안의 군가산점제는 고용상 차별금지 및 그 시정을 협약 당사국에 요구하는 국제협약 또한 위반하는 것이다.

김성회의원안은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신성한 국방의무를 이행했다는 자긍심보다는 복무기간 동안 희생한 시간과 기회 상실로 인한 피해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의식"이 징집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및 좌절감과 무관하지 않고, 군가산점제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정책으로 간주되는 데에는 여타 적절한 대안정책이 부재한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종전 군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우리사회는 병역의무자 지원을 위한 방안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혜택 기간 확대,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및 보험료 대납, 대학 학자금 융자 법제화, 군복무 기간 중 취업준비를 위한 직업훈련이나 사회적응

을 위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군대내 학습 시스템 구축 및 취업지원체계 확립과 병영생활 개선, 장기적 검토 정책으로는 사병 급여의 현실화, 군복무 기간 단축, 모병제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를 비롯한 사회공동체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정책에 대하여 여성 대 남성, 신체 건강한 남성 대 그렇지 않은 남성과 같이 국민의 사적 이해간의 충돌을 빚게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자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모두가 부담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Ⅳ. 결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김성회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08. 9. 8.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위원 최경숙(불참) 위원 유남영 위원 문경란

위원 원형은 위원 김태훈 위원 윤기원 위원 정재근

위원 조 국 위원 황덕남 위원 최윤희

13 징병검사자료의 복무기관 제공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 5. 공익근무요원의 징병검사자료를 해당 복무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인권침해인지 여부에 대한 병무청 질의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복무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국한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표명

▌결정요지▐

[1] 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의 징병검사 관련 자료를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공익근무요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고, 설사 병무청장이 징병검사자료를 복무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복무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국한되어야 한다.

[2] 신상명세서의 내용(항목) 중 가족환경과 관련된 내용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자료(복무분야 지정, 근무지 배치 및 고충처리등)로 활용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2항, OECD,「프라이버시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제3항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 5. 공익근무요원의 징병검사자료를 해당 복무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인권침해인지 여부에 대한 병무청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징병검사자료를 복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의 징병검사 관련 자료를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공익근무요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복무기관에서는「병역법」상 공익근무에 해당하는 병종의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받으면 족하며, 공익근무요원의 질병이나 수형사실은 원칙적으로 복무기관에서 업무상 필요하다면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수집하는 것이 정보수집

및 수집정보의 관리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2.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경우

병무청장이 징병검사자료를 복무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복무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3. 신상명세서의 인권침해 여부

신상명세서의 내용(항목) 중 가족환경과 관련하여 가족의 질병, 양친관계, 가족구성과 개인의 특성과 관련하여 질병기록, 가출사실, 수형사실 등은 업무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문제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위 신상명세서의 내용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자료(복무분야 지정, 근무지 배치 및 고충처리 등)로 활용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복무기관장이 공익근무요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인적 사항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 유 ▐

Ⅰ. 검토배경

1. 병무청 질의

병무청은 2007. 5. 8. 공익근무요원 징병검사자료를 복무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하는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그 질의의 내용은 ① 공익근무요원의 징병검사자료(각종 질병, 수형사유 등)를 복무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제공하여 복무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경우 인권침해 여부와, ② 공익근무요원의 징병검사자료(각종 질병, 수형사유 등)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명시할 경우 인권침해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였다.

2. 관련 규정 개선 필요

한편 병무청의 질의와 별도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270호)(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에게 요구되는 신상명세서(별지 제2호(3-2) 서식) 항목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II. 검토기준

1. 검토기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참고기준

OECD, 「프라이버시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1980 ; 이하 「OECD 가이드라인」)

「OECD 가이드라인」상 개인정보보호 8가지 원칙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제3항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Ⅲ. 현황과 실태

1. 공익근무요원제도

가. 개 요

공익근무요원제도는 현역복무가 곤란한 보충역자원을 대상으로 병역형평성 확보 및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도록 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1995년에 도입된 대체복무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병역법」 제26조 이하 참조).

나. 복무기관 및 임무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 경비 분야에서는 청사·시설·설비 경비 및 방호와 방문자등 안내·계도 등, ② 감시 분야에서는 수원지 취·정수장 경계 및 감시, 하천 보호 및 감시, 산불 예방·진화 및 산지 정화, 공원·녹지감시, 정화 및 행락질서 계도 등, ③ 보호 분야에서는 문화재(궁·능 포함) 보호 및 안내, 청결유지, 교통질서

유지·계도(철도, 도로 등), 자동차 매연단속 및 계도 등, ④ 봉사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재가 독거 장애인 재활업무보조,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업무보조, 장애학생 학습활동 보조, 통학 등 이동보조 등, ⑤ 행정지원 분야에서는 일반행정·전산 등 업무보조, 우편물 발송, 도착 및 배달우편물 분류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다. 복무기간 및 지휘·감독

공익근무요원은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26개월, 30개월, 34개월을 복무하며 공익요원에 대한 지휘·감독·책임은 복무기관장, 외교통상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이 각각 진다.

라. 공익근무요원의 지위

공익근무요원은 경비, 감시, 보호, 봉사, 행정지원활동에 관련된 기관에서 근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반면에,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고(「병역법」 제31조 제4항), 병역의무자로서 복무기간중 공무를 수행하며, 복무기관장이 지휘·감독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휘·감독하며, 공익근무요원이 교육소집되어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다(「복무규정」 제3조 제1항).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과 관련해서는 그 기관의 근무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2. 징병검사 관련 자료 및 제공실태

가. 징병검사 관련 자료

병무청은 징병검사를 통하여 ① 질병명(각종 질병), 수형사실(형량, 형명, 형기 등), 혈액형, 학력, ② 기본적인 인적사항(주소, 연락처 등), 자격·면허, 신장·체중, ③ 성장과정, 인성검사, 신체등위 등 「징병검사예규」상 자료 등을 수집하게 된다.

나. 징병검사자료의 제공 실태

1) 개인별 신상정보 통보 (지방병무청장 → 복무기관장)

「복무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이 지정한 복무분야 범위

내에서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별 소요에 따라 복무기관을 지정하고 소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복무분야별 소요인원과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명부에 개인별 신상(학력, 전공학과, 자격·면허)을 비고란에 기재,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2) 근무지 배치전 신상명세서 제출 (공익근무요원 → 복무기관장)

「복무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신상명세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이를 복무분야 지정, 근무지 배치 및 고충처리 등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하도록"하고 있다.

3) 공익근무요원 징병검사 관련 자료 복무기관 제공 실태

징병검사 관련 신체적·정신적 특이사항 등 개인 신상정보는 불법 유출시 인권침해 소지 등을 고려하여 모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신상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복무기관장이 사고발생방지 등 복무관리에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요청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 징병검사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

복무기관장은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신상명세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이를 토대로 상담과 관찰을 통하여 복무분야 지정, 근무지 배치 및 고충처리 등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고예방 등 복무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징병검사 관련 자료를 제공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공익근무요원의 징병검사 자료는 보충역 판정과 관련된 신체·질병 등에 관한 특이사항이 기록되어 있어 이들 자료를 복무기관(4,700여개)과 공유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장치나 병역자료 관리 의식이 부족한 복무기관을 통하여 유출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목적외 사용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은 대부분 자기의 신체결함에 대하여 징병검사 자료인 질병(특히 비뇨기과 등 공개를 꺼리는 수치성 질환) 등에 관한 특이 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복무관리 효율성과 개인정보 제공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제공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Ⅳ. 검토의견

1. 징병검사자료 제공의 인권침해 여부

가. 질의 내용

병무청은 우리 위원회에 “공익근무요원의 징병검사자료(각종 질병, 수형사유 등)를 복무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제공하여 복무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경우 인권침해 여부”를 질의하였다.

나. 징병검사자료 제공의 근거

현재 공익근무요원제도의 근거법인 「병역법」에서는 징병검사자료를 복무기관에 제공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징병검사자료를 복무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인가가 문제이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OECD 가이드라인」에서 밝히고 있다시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수집목적이나 취지를 벗어나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복무기관장은 「병역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다른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여 수집목적에 한정하여 이용하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제3항은 제1항의 원칙에 대한 7가지의 예외를 인정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등).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수집·이용·제공되는지를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러한 정보처리의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병역을 위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수집된 것은 일차적으로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역종 판단을 위한 것이며, 정보주체 역시 이러한 수집목적에 동의하여 정보를 제공한 것인 반면에, 공익근무를 하는 것은 징병신체검사와는 또 다른 문제이므로 병무청이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안에서 병무청장이 보유하는 징병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당해 정보주체인 공익근무요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의 기관인 복무기관장에게 징병검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면 그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있게 되고, 그 제한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징병검사 관련 정보의 제공이 불필요하고 과다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고,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가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1) 제공목적의 정당성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복무기관에서는 그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복무기관은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수행 및 인사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정도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복무규정」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의 인도·인접이 완료된 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신상명세서(별지 제2호(3-2)서식)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이를 복무분야 지정, 근무지 배치 및 고충처리 등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복무규정」 제13조에서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이 지정한 복무분야 범위내에서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별 소요에 따라 복무기관을 지정하고 소집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복무분야별 소요인원과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명부에 개인별 신상(학력, 전공학과, 자격·면허)을 비고란에 기재,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복무기관의 인사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복무기관장이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수행 및 인사관리를 위하여, 병무청이 기본적 인적사항에 해당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정보제공의 필요성

그런데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징병검사 관련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이다. 현행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복무기관장은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신상명세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이를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병무청장은 징병검사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에 앞서 개별 복무기관장으로부터 징병검사 관련 자료의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공익근무요원의 징병검사 자료를 모든 복무기관(4,700여개)과 아무런 조건 없이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한편, 개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와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징병검사를 제한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매우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어떤 정보가 어떤 이유로 제공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정보제공의 최소성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제3항 제2호에서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복무규정」 제13조에서 “개인별 신상(학력, 전공학과, 자격·면허)”를 소집대상자명부의 비고란에 기재하여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기본적인 인적 사항 외에 학력, 전공 및 학과, 자격·면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취지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는 합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력, 전공이나 학과, 자격 및 면허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은 복무기관의 인력배치에 참고가 될 수 있어서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에 관련되는 사항이라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병역법」상 공익근무에 적합한 병종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복무기관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배정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받으면 족하며, 공익근무요원의 질병이나 수형사실은 원칙적으로 복무기관에서 업무상 필요한 한도에서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수집하는 것이 정보수집 및 수집정보의 관리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징병검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그 목적에 국한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이 정보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 근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은 수집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다. 특히 개인의 질병이나 수형기록은 개인에 대한 인격적 평가와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병역법」상의 판정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수집되었지만, 이 정보는 더 이상 복무기관에 제공될 수 없는 정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의 징병검사 관련 정보의 제공은 불필요하고 과다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4) 정보제공의 안전성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병무청장은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복무기관장)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제3항),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관 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제4항).

또한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분실, 불법적인 접근, 파괴, 사용, 수정, 공개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2. 법률적 근거에 따른 자료제공의 인권침해 여부

가. 질의 내용

병무청에서 우리 위원회에 질의한 내용 중 또 하나는 「복무규정」이 아닌 법률의 근거규정에 따라 징병검사자료(각종 질병, 수형사유 등)를 복무기관에 제공하게 되면 인권침해 여지가 반드시 없어지는가의 문제이다.

나. 자료제공의 근거법률

병무청이 징병검사자료를 복무기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가질 필요는 있을 것이나 법률의 근거에 따라 징병검사자료를 복무기관에 제공하였다고 하여 모든 인권침해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의 도출은 정보의 주체인 한 인간이 인격적 가치를 가지는 존재로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지며,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익근무요원은 개인정보에 관해서 자기결정권을 갖게 되며(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결정) 자신의 의지와 달리 수집 또는 이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며,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그 보호대상으로 하되,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병무청의 자료제공은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나 복무기관에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규정은 가능할 것이나, 불필요하게 과도한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병무청이 징병검사시 수집한 정보는 역종 판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사 징병검사자료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수형기록을 복무

기관에 제공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병역법에 의한 징병검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일반을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다면 이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 근거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고, 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복무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3. 신상명세서의 인권침해 여부

가. 신상명세서의 내용

「복무규정」 제11조 제1항에서는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의 인도·인접이 완료된 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신상명세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이를 복무분야 지정, 근무지 배치 및 고충처리 등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복무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신상명세서는 별지 제2호(3-2)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가정환경, 학력, 개인특성 및 참고사항으로 되어 있다.

나. 신상명세서의 항목

위 신상명세서의 내용은 복무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의 업무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인 사항이 대부분이므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환경과 관련하여 성명, 연령, 학력, 종교, 직장 및 직위는 물론이고 가족이 갖는 질병까지 기록하는 란을 둔 것은 복무와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공익근무요원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문제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다.

양친관계에서도 양친이 친부, 친모, 계부, 계모, 서모(첩), 양부모, 부모별거, 부모없음 등을 복무기관에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친부·친모와 그 친자녀로 구성된 이른바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한 편견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가족구성에서도 가족이 몇남 몇녀인지, 몇 대 독자인지, 고아인지 이복형제인지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병역의무수행중인 자에 대하여 파악해야 할 정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주거형태, 결혼관계, 생활정도나 월수입, 가옥의 평수 등도 요구될 수 없는 정보라 판단된다. 학력은 복무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정하게 필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중퇴 또는 미진학의 사유는 병역의무 수행과 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다.

개인특성으로서도 입원치료경력, 정신질환 유무, 각종 질병기록을 요구하고 특히 야뇨, 평발, 고혈압, 야맹, 청약 등의 질환 유무와 기호, 종교, 가출사례, 수형사실까지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복무기관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정보의 요구와 제공이라 할 수 있다. 복무기관이 근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공익근무요원의 동의를 통하여 복무기관이 수집할 수 있겠지만, 이 신상명세서를 통하여 요구하는 정보는 '공적영역'에서 당연히 인권침해라고 판단되어 삭제되고 있는 내용의 전형적인 예라 볼 수 있다.

또한 신상명세서의 상세한 정보가 복무기관에 보관될 경우 이러한 정보는 복무기관의 업무수행에 국한하여 이용되어야 할 것이고, 안전하게 정보를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는 그 분실 또는 불법적인 접근, 파괴, 사용, 수정, 개시 등의 위험에 대하여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함으로써 보호하여야 한다는 안전확보의 원칙(「OECD 가이드라인」)은 정보를 공유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위 신상명세서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자료(복무분야 지정, 근무지 배치 및 고충처리 등)로 활용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고,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명부(「병역법시행규칙」 제38조 별지 제36호 서식)에 기재되는 개인별 신상 정보만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신상명세서 또한 불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장이 공익근무요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정보의 내용과 범위 및 정보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병무청이 2007. 5. 공익근무요원의 징병검사자료를 해당 복무기관에 공유하는 것이 인권침해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07. 8. 16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위원 김호준 위원 정강자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사항 ▐

국회의장에게, 정부가 2012. 8. 24. 국회에 제출한「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미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묘지안장 규정' 및 억류지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유족을 '전몰군경 유족의 지위로 대우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

▌결정요지 ▐

[1]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은 북한 내에서 갖은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아 왔으며,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의 가족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2] 따라서,「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군포로의 명예와 유족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억류지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규정 및 그 유족들을 전몰군경 유족의 지위로 대우하도록 하는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

▌참조조문 ▐

「헌법」제10조·제11조,「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제118조·제120조

▌주 문 ▐ 국회의장에게, 정부가 2012. 8. 24. 국회에 제출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미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묘지안장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2. 억류지에서 사망한 국군포로 유족들 중 국내에 입국한 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이들을 '전몰군경 유족의 지위로 대우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 유▮

I. 의견표명 배경

국방부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바, 동 법률 개정안은 국군포로 및 억류지 출신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처우 등에 대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위 개정안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II. 판단기준

가. 「헌법」 제10조, 제11조

나.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118조 및 제120조

III. 판단

1. 국군포로 관련 인권상황

가. 한국전쟁 이후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는 북한 내에서 최하층인 적대계급으로 분류되어 전후 복구사업에 동원되거나 탄광에 배치되어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등 갖은 인권침해를 당해왔다.

나. 국군포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북한의 엄격한 계급제 신분사회와 연좌제로 인하여 대학 진학이나 취업과 승진, 군 입대, 당원 배제 등 갖은 차별을 받으면서 체제에 반하는 발언이나 비판을 할 경우 국가안전보위부에 잡혀가 실종되는 등 일상적인 감시와 처벌 속에서 생활했다.

다. 억류지 출신 포로와 그 가족들은 이런 일상적인 차별과 고통 속에 생활하다 1994년 조창호 중위의 귀환을 시작으로 억류지를 탈북하여 귀환한 포로는 80명(24명 사망, 56명 생존), 탈북한 억류지 출신 국군포로 가족들도 91가족 320여명(2012. 8.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 수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라. 이들은 국내에 정착하기까지 귀환과정에서 지출되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억류지 출신 국군포로 가족들은 북한 내에서 상대적

으로 교육받을 기회 차별로 인한 저학력, 탄광촌이라는 열악한 생활환경과 빈곤으로 인한 건강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해 일반 탈북자들 보다 취업 등 국내 정착과정에 가중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 따라서, 억류지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명예와 그 가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사망한 국군포로의 묘지안장 등에 관한 규정 신설의 필요성

가.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제118조 및 제120조에 따르면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석방되고 송환되어야 하고, 사망한 경우 분묘의 목록 및 묘지와 기타의 장소에 매장된 포로들에 관한 명세서는 그 포로들의 소속 국에 송부하여야 하며 본국의 희망에 따라 적절히 처리될 때까지 분묘 등록 기관이 보관하는 유골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제네바협약을 지키지 않고 국군포로를 강제로 억류하고 있으며, 억류지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해서도 분묘 등의 명세는 물론 유골조차 반환하지 않고 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는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교섭 및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금번 개정안이 15조의4(국군포로에 대한 예우)를 신설하여 억류지 사망 국군포로에게도 억류기간 중의 행적이나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를 법에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다.

라. 현행 법령상 유해로 송환된 국군포로의 경우에도 국방부의 6.25 참전 유공자 인정을 통해 국립호국원 안장은 가능하다. 그러나 안장을 위해서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국방부에 6.25참전 유공자 인정을 받을 때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6.25 전쟁에 참전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에 따라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마. 따라서 국내법령에 익숙하지 못하고 탈북하여 한국사회에 적응하기도 벅찬 억류지 출신 국군포로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유해로 송환되는 국군포로의 대우에

관한 규정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이를 법에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억류지에서 사망한 국군포로 유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개정 법률에 이들을 전몰군경 유족의 지위로 대우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의 필요성

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행방불명으로 처리되었던 국군포로들의 경우 1998년 4월 국방부 정책에 의해 '전사'로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남한에 있던 가족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전몰군경' 유족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받았다.

나. 그런데 전사로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억류지에서 남아 있었던 국군포로(북한에서 사망)가 결혼하여 생성된 가족이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하였을 때에는 전몰군경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전몰군경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물론 국가가 이들을 '전사'로 처리(사망시점은 1953년 휴전협정 이전의 실종시점임)한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반적인 적용은 곤란할 수 있다.

다. 억류지 출신 국군포로나 그 가족의 증언에 의하면 국군포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적대계급으로 분류되어 북한 내에서 온갖 인권침해를 받았던 이들의 인권문제는 남북분단의 상황에서 발생한 특수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만 이를 해결 할 수는 없으며, 결국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입법적인 조치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률의 입법취지는 남북분단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라. 따라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억류지에서 사망한 국군포로 유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착하기 위하여서는 특별법인 개정 법률에 이들을 전몰군경 유족의 지위로 대우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2012. 10. 11.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 원 김영혜 위 원 홍진표 위 원 장명숙

15 병영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사항 ▐

국방부장관에게, 병영 내 생활관(계단, 복도 등을 제외한다), 휴게실 및 병사식당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 장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률적 근거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

▌결정요지 ▐

[1] 병영내 특정장소의 경우 CCTV 설치로 인해 부대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생활관, 휴게실, 병사식당은 공적인 공간으로서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공간으로 CCTV로 인하여 활동 전반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군인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병영생활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병사들은 이를 회피할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 CCTV가 설치된다고 하여 범죄예방효과가 완전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여전히 단정할 수 없다는 점, 한편, 국방부는 소대단위의 침상형 생활관에서 분대단위의 침대형 생활관으로 점차 교체하고 있는 바, 이는 개인의 쾌적한 병영생활과 더불어 사생활을 더욱 보장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공익과 이에 따른 설치목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병사들의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침해 등 기본권제한이 적지 않다고 판단됨.

[3] 생활관, 휴게실, 병사식당을 제외하고 CCTV를 설치하려는 병영 내 특정 장소의 경우 상시적으로 인권침해를 예방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서, 예방적 인권교육만으로는 인권침해 방지에 한계가 있고, 안전사고 발생의 예방과 더불어 신속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CCTV의 설치만큼의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다만,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과도한 제한,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최소한의 정보수집, 수집된 정보의 목적범위 내에서의 이용 등 인권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더 나아가 병영내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법률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대한민국 헌법」제10조, 제17조, 제37조제2항, 제39조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세계인권선언」제12조,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7조

▌주 문▐ 국방부장관에게, 병영 내 생활관(계단, 복도 등을 제외한다), 휴게실 및 병사식당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 장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률적 근거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Ⅰ. 의견표명 배경

국방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병영(兵營) 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병생활 공간 내에 '안전사각지역용 CCTV'의 설치를 추진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인권침해 여부를 질의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부대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Ⅱ. 판단기준

「대한민국 헌법」제10조, 제17조, 제37조제2항, 제39조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세계인권선언」제12조,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제17조

Ⅲ. 판단

국방부는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 등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내는 생활관, 휴게실, 창고, 보일러실, 취사장, 위병소, 오물/오·폐수 분리수거장, 건물 내 사각지역 등이고, 실외는 탄약고, 무기고, 위병소, 울타리, 건물 사각지역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CCTV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없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1항 및 제2항, 이하 '법'이라 한다). 예외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주차장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외국인보호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등),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법 제25조제1항).

병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보호시설로 해당 군인 등 특정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어서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다(참고,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311 결정). 따라서 비공개 장소인 병영에 설치되는 CCTV는 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CCTV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병영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휘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병영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막는데 시간적·공간적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를 병영 내에 설치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있다. 병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또는 폭행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병사들을 무사히 사회에 복귀토록 하고,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사고발생시 증거자료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어서 그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병영내 특정장소의 경우 CCTV 설치로 인해 부대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병영시설 중 생활관(건물 자체가 아니라 복도, 계단을 제외한 침상 또는 침대가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휴게실, 병사식당은 사적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많이 부여되는 장소이다. 특히 생활관은 부대원들이 함께하는 내무생활의 주된 활동공간으로 전투준비, 여가활동, 휴식, 탈의, 취침 등 개인적 공간이자, 후임-선임, 동기간 등 부대원 상호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종합적 공간이다. 따라서 생활관은 부대원들의 공적 공간임과 동시에 병사 개개인의 사적 공간으로, 병영 내 다른 장소와는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휴게실은 부대원들의 휴식과 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적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병사식당은 부대원들의 식사 및 식사제공을 위해 식재료의 사전준비, 가공, 취사장·취사도구의 청소 등이 온종일 이루어지는 작업 공간임과 동시에 사적 공간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생활관, 휴게실, 병사식당은 공적인 공간으로서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공간으로 CCTV로 인하여 활동 전반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군인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병영생활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병사들은 이를 회피할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 CCTV가 설치된다고 하여 범죄예방효과가 완전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여전히 단정할 수 없다는 점, 한편, 국방부는 소대단위의 침상형 생활관에서 분대단위의 침대형 생활관으로 점차 교체하고 있는 바, 이는 개인의 쾌적한 병영생활과 더불어 사생활을 더욱 보장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공익과 이에 따른 설치목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병사들의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침해 등 기본권제한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생활관, 휴게실, 병사식당을 제외하고 CCTV를 설치하려는 병영 내 특정 장소의 경우 상시적으로 인권침해를 예방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서, 예방적 인권교육만으로는 인권침해 방지에 한계가 있고, 안전사고 발생의 예방과 더불어 신속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CCTV의 설치만큼의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과도한 제한,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최소한의 정보수집, 수집된 정보의 목적범위 내에서의 이용 등 인권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병영 내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법률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2015. 1. 29.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 원 김영혜 위 원 장명숙 위 원 유영하

16 퇴역처분 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07누28184호)에 관한 의견제출

결정사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퇴역 처분 취소소송 사건에 대한 재판이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헌법」 제11조가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관련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의견 제출

결정요지

국방부의 퇴역처분이 현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깊은 숙고 없이 관련법규에 따라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였으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의 제한을 위한 정당한 사유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병력에 따른 차별행위를 한 사실을 지적하여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함

참조조문

헌법제15조, 제11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위 제목기재의 소송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재판이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헌법」 제11조가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관련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다.

1.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07. 10. 5. 선고 2007구합3398 판결)은 다음과 같이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5. 11. 31.자 퇴역처분(이하 "이 사건 퇴역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가. 원심이 인정하는 사실관계

원심이 인정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현역 육군중령으로 복무하던 2002년에 유방암을 치료하기 위한 절제수술을 받은 후 암이 완치돼 소속부대로 돌아가 3년 동안 건강 및 체력상의 문제없이 항공(비행)업무를 포함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해왔다. 원고는 2005년 국군 논산병원에서 현역 간부 정례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국군 논산병원은 2005. 9. 8. 원고가 공중근무자 신체검사기준에 불합격하였다는 결과를 육군항공학교장에게 통보하였다.

2)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가 수술을 받게 된 유방암이 "유방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병명으로 진단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이러한 병력이 관련법규에 따른 퇴역사유(이 사건 퇴역처분 당시의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의 112. 나. (2)의 악성 종양인 "진행성 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퇴역처분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 위에서 이 사건 퇴역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1) 피고가 이 사건 퇴역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사건 퇴역처분 당시의 「군인사법 시행규칙」(2007. 8. 9. 국방부령 제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국민을 구속할 수 있는 대외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퇴역처분 당시의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심신장애등급 2급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병력이 원고의 건강상태 및 현대전의 양상 등에 비추어 원고가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퇴역처분 당시의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 및 동법 제41조 제3호가 정하고 있는 "전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이 사건 소송의 쟁점을 이 사건 퇴역처분이 위와 같은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인지의 여부에 두고 있다. 그리하여, 원심은 이 사건 퇴역처분의 위법성의 근거를 관련법규(이 사건 퇴역처분 당시의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의 문리해석과 위임입법의 법리에서 구하고 있다.

2. 이 사건 퇴역처분의 기본적 인권 침해

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구금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의 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 구제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제30조 제1항). 이러한 목적과 업무를 가진 위원회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원심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구체적으로는 직업종사의 자유),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구체적으로는 병력(病歷)에 의한 부당한 차별금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위원회는 피고가 이 사건 퇴역처분이 현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깊은 숙고 없이 관련법규에 따라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원심의 판단결과를 지지하면서 이에 부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퇴역처분을 하면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의 제한을 위한 정당한 사유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병력에 따른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볼 측면이 많음을 아울러 강조하고자 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

1) 이 사건 퇴역처분은 원고가 현역군인으로서 복무할 자유(현행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하나인 직업종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와 같은 직업종사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및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이 직업종사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그 정당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네 가지 기준이 적용됨)을 심사기준으로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등).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퇴역처분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면, 이 사건 퇴역처분은 구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가 실현하려고 하는 본래의 목적(업무의 적절성의 확보)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측면에서 볼 때 원고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법익간의 균형을 잃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퇴역처분은 원고의 병력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현역군인의 신분을 박탈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퇴역처분은 원고가 현재의 질병이 있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부적합"하거나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자"(이 사건 퇴역처분 당시의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41조 제3호 참조)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유로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과거의 병력이 퇴역사유(이 사건 퇴역처분 당시의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1호 별표 1)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조항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점(자의금지의 원칙)을 밝히면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0. 12. 14. 선고 99헌마 112 등).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와 같은 병력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에 아무런 건강상 및 체력상의 문제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퇴역처분은 과거의 병력이 현재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병력 그 자체만을 이유로 하여 이루어진 조치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종국적으로 박탈한다는 점에서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퇴역처분은 병력에 따른 자의적인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소지가 많다(「헌법」 제11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3) 결론적으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퇴역처분을 함에 있어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의 제한을 위한 정당한 사유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피고의 이 사건 퇴역처분은 원고의 병력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원고를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다.

3. 이 사건 소송의 정책적인 의의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이 사건 퇴역처분이 차별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이 사건 소송은 병력(病歷)에 의한 부당한 권리제한 내지는 차별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원심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유사한 병력(예를 들면, AIDS, 정신질환, 한센병 등)에 의한 개인의 권리제한과 차별행위를 판단, 시정하는 데에 있어서 선도적인 판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의 민주화의 결과로 공권력의 침해를 동반하는 전통적인 자유권

적 기본권의 영역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진전 속에서도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이 사건 소송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같은 정신질환, AIDS, 한센병 등의 병력에 의한 차별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양한 사유에 의한 부당한 차별이 알게 모르게 수없이 존재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병력 이외에 18가지의 차별 사유를 적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공공영역 및 사적영역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행위를 시정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여 사회의 민주적인 통합을 촉진하는 새로운 인권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행위의 개선은 법과 제도의 정비 및 공권력에 의한 집행과 함께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을 전반적으로 높임으로써 성취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의 이 사건 소송에 대한 판단이 이러한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8. 1. 28.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위 원 김호준 위 원 최경숙 위 원 유남영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위 원 조 국 위 원 황덕남

17 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등(2008헌마638)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등" 헌법소원 사건(2008헌마638)에 대한 재판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

▌결정요지 ▌

[1] 국방부는 2008. 7. 22. 각 군 본부 및 예하부대에 소위 불온서적 목록을 첨부하여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이하 "이 사건 지시"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지시에 따라 불온서적으로 분류되어 영내에 반입이 금지된 서적들을 보면, 대학에서 교재로 선정된 서적 및 사회·인문교양서로서 대중성이 확보된 소위 베스트셀러 서적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이 사건 지시가 꾀하고 있는 소위 불온서적 금지는 전근대적인 국가에 의한 국민의 사상통제의 대표적인 수단에 해당되고 기본적으로 어떠한 책을 선택하고 읽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성과 양심을 가진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므로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9조가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가운데 양심형성의 자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헌법」 제21조에 따라 인정되는 알권리에도 해당되고 법률유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이러한 자유와 권리의 영역에 있어서는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요청이 제복을 입은 군인의 신분보다 우선함.

[3] 국방부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지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시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가가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써만 이루어야 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정신이고, 이와 같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법률상의 제한은 단순히 법률상의 형식적인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어떠한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제한될 것인지를 명백하게 규정하여야 함을 의미하고고 이러한 원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위임을 할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4]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사실상 군인으로서 행하는 모든 행동에 대한 규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포괄적인 위임은 관련 법률조항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요구하고 있는 예측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군복무의 구체적 내용이 다양하고 변화의 폭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정신을 구현한 헌법 제37조 제2항과 헌법 제75조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매우 많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헌법」 제19조, 제21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군인사법」 제47조의2(복무규율)에 근거한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20282호) 제16조의2(“불온도서 등 표현물”), 국군병영생활규정(국방부 훈령 제600호) 제47조(“불온도서의 반입금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등” 헌법소원 사건(2008헌마638)에 대한 재판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

▌이 유▐

1. 국방부는 2008. 7. 22. 각 군 본부 및 예하부대에 소위 불온서적 목록을 첨부하여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이하 “이 사건 지시”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지시에 따라 불온서적으로 분류되어 영내에 반입이 금지된 서적들을 보면, 대학에서 교재로 선정된 서적 및 사회·인문교양서로서 대중성이 확보된 소위 베스트셀러 서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방부는 이 사건 지시 이전에도 관련규정에 따라 각급 부대별 지휘관의 책임 아래 장병의 정신전력강화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도서를 부대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여 왔다.

2. 이 사건 지시가 꾀하고 있는 소위 불온서적 금지는 근대 이후에 인간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의식이 제고되면서 사라져가고 있는, 전근대적인 국가에 의한 국민의 사상통제의 대표적인 수단에 해당된다.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도 소위 불온서적 금지는 일제시대의 식민지권력과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책을 선택하고 읽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성과 양심을 가진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9조가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가운데 양심형성의 자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헌법」

제21조에 따라 인정되는 알권리 즉,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하거나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유에도 해당된다. 어떠한 서적을 선택하고 읽는 것은 그 서적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외부적으로 실현하거나 표현하는 경우와 달리 거의 내심의 자유 영역에 해당되므로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와 알권리가 도출되는 헌법 제21조는 법률유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와 권리의 영역에 있어서는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요청이 제복을 입은 군인의 신분보다 우선한다.

3. 국방부는 「군인사법」 제47조의2(복무규율)("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에 근거한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20282호) 제16조의2("불온도서 등 표현물"), 국군병영생활규정(국방부 훈령 제600호) 제47조("불온도서의 반입금지") 등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지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시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써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정신이다. 이와 같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법률상의 제한은 단순히 법률상의 형식적인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법률조항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어떠한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제한될 것인지를 명백하게 규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위임을 할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관련 법률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994. 7. 29.선고 93헌가12).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군인사법이 언급하고 있는 않은 "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복무"라 함은 "어떤 직무나 임무에 힘쓰는 것"이며 "군인의 복무"는 "군대에 입대하여 제대할 때까지 군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인사법」 제47조의2

는 사실상 군인으로서 행하는 모든 행동에 대한 규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위임은 관련 법률조항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요구하고 있는 예측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군복무의 구체적 내용이 다양하고 변화의 폭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군인사법 제47조의2는「헌법」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군인의 복무"라는 범위 내에 영내생활을 하는 병사들이 군대내의 직무 및 군사보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어떠한 책을 읽고 어떠한 책을 읽지 말아야 하는 것까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정신을 구현한 헌법 제37조 제2항과 헌법 제75조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매우 많다고 판단된다.

5. 우리 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국가의 불온서적의 금지는 전근대적인 사상통제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이러한 국가에 의한 사상통제가 불식되도록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지시가 근거하고 있는 군인사법 제47조의2와 이에 근거한 하위법령이 헌법 제37조 제2항과 헌법 제75조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적 인권의 최대한 보장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의 요청에 부합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상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2009. 9. 14.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 원 최경숙 위 원 유남영 위 원 문경란

위 원 김태훈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위 원 황덕남

위 원 조 국 위 원 최윤희 위 원 김양원

제2편 군 인권침해분야

행복추구권 침해
(휴식권, 일반적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등)

1 05진인692, 05직인8, 05직인9, 05직인10병합 [사관생도 처우관련] 2006. 3. 23. 결정

국방부장관에게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퇴교생도 중 부사관으로 임관된 자의 처우가 다른 부사관과 봉급 등 각종 처우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 할 것과 사관학교 퇴교생도출신 부사관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피해회복 조치를 할 것을 각 권고

▌결정요지▐

사관학교 퇴교생들이 본인의 원에 의해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비록 그 의무복무 기간은 병의 의무복무기간과 같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부사관과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처우를 달리 하는 것은 헌법상 자의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서 이는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을 침해

▌참조조문▐

「병역법시행령」 제30조, 「군인사법」 제3조, 제6조, 제7조, 제44조, 제45조, 제52조, 「군인사법시행규칙」 제15조, 「군인연금법」 제2조 및 제31조,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 13

▌진정인▐ 정○○

▌피해자▐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퇴교생도

▌피진정인▐ 1. 국방부장관, 2. 각 군 참모총장

▌주 문▐ 국방부장관에게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퇴교생도 중 부사관으로 임관된 자의 처우가 다른 부사관과 봉급 등 각종 처우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 할 것과 사관학교 퇴교생도출신 부사관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피해회복 조치를 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인 주장 등

가. 진정인(육사 4년 퇴교, 1994. 전역)은 육사규정에 의거 중사 계급을 부여받고

현역과 동일한 26개월 복무를 하였으나, 예비군 편성에 있어 단지 중사라는 이유로 단기 하사관과 동일하게 45세까지 동원예비군으로 편성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사관학교를 퇴교하여 병 군번을 받고 중사로 임관한 후 26개월 의무복무기간 중, 급여의 경우 각종 수당을 제외한 중사 1호봉 40만원 정도를 받은 반면, 해군·공군사관학교 퇴교자는 다른 중사와 비슷한(일부 수당은 제외) 140여 만원 정도 급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가.항에 대한 실지조사 중 아래와 같이 사관학교 퇴교생도 처우에 문제점이 인정되어 2005.4.6. 제2소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1) 1996년 이후부터 2005년 4월까지 퇴교한 생도 중 현재 현역에 복무중인 자는 하사 정○○(육사3년 퇴교, ○사단 ○○연대 복무 중), 하사 강○○(육사 3년 퇴교, ○사단 본부 근무대 복무 중), 하사 엄○○(육사3년 퇴교, ○사단 수색대대 복무 중), 중사 정○○(공사4년 퇴교, 공군 제○○전투비행단 복무 중), 중사 문○○(해사○년 퇴교, 해군 ○함대 시설대 복무 중), 하사 이○○(해사3년 퇴교, 해군 ○○방어사령부 복무 중) 등이다

(2) 사관학교를 퇴교하여 부사관으로 임관한자 중 육군·공군사관학교 퇴교 후 하사로 임관된 경우, 병 급여 수준보다 조금 많은 10만원 정도 받고 있고, 휴가, 업무, 피복, 전역 후 예비군편성연령 등은 다른 부사관들과 동일한 반면(육군의 경우 특히 2003.7.1. 이전에 하사로 임관된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하사 1호봉 본봉을 반납한 사실이 있음), 해군사관학교 퇴교자의 경우 급여는 정근수당을 제외한 하사 1호봉 기준으로 약 100여 만원 정도 받고 있는 등 각 군별 봉급지급 기준 등 처우를 달리하고 있다.

2. 피진정기관의 주장

가. 육군·공군본부의 주장

사관학교 퇴교자중 하사로 임관한 경우 하사 1호봉(기본급여)을 지급하여 왔으나, 2003.5.31. 국방부에서 이들을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2003년 군인봉급표상의 기준금액(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 101,400원)을 지급하였고, 사관학교 4학년 퇴교자인 중사의 경우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전대로 군인봉급표상 중사 1호봉(육군 : 745,100원, 공군 : 1,4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해군본부의 주장

사관학교 퇴교자 부사관에 대해 하사, 중사 1호봉을 현재까지 지급하여 왔고, 2003.5. 국방부의 유권해석은 육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해군의 경우 육군에서 말하는 소위 일반하사 제도가 없었음.)하여, 현재도 종전대로 군인봉급표상 하사, 중사 1호봉을 지급하였다.

3. 인정사실

가. 육군사관생도 퇴교자 부사관 인사관리방침(01-10호, 2001.4.13)에 의하면, 육사 퇴교 후 부사관에 임용된 자는 단기복무 부사관에 준한 인사관리를 적용하고 있다.

나. 사관학교 퇴교생들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현역병 입대시 일반병과 동일하게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부사관으로서 임용은 퇴교생도가 지원하여 규정에 따라 그 필요성과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여 임용시키는 것이다

다. 국방부는 2003.5.17. 사관학교 생도로 교육 중 퇴교하여 부사관으로 임용된 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지원에 의한 부사관"이란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 중에서 임용되기에(「군인사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고) 사관학교 중퇴자가 부사관으로 임용을 되더라도 그 '원'을 "부사관 임용절차에 의한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한바 있다.

라. 2003.5.31. 육군본부에서 예하부대에 하달한 '사관학교 퇴교 후 부사관임관자 급여기준 지시'에 의하면, 퇴교 후 하사 임관자는 위 국방부 지침에 따라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관된 하사"로 적용됨에 따라 2003년 기준 하사봉급 73,900원(월)을 지급 시행할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육·해·공군 사관학교 퇴교자 현황

(1996년 이후 ~ 2005년 4월 현재)

각 군별 / 계 급		계	육군	해군	공군
합 계		118	64	25	29
전역자	소계	90	49	23	18
	중사	48	30	9	9
	하사	42	19	14	9
복무중	소계	28	15	2	11
	중사	11	3	1	7
	하사	17	12	1	4

바. 인사 등 처우 부분

(1) 사관학교 퇴교자에 대한 계급부여

각군별 / 퇴교학년	육 군	해 군	공 군	복무기간
4 학년	중 사	중 사	중 사	각군 공히 병의 복무기간과 동일하나, 임무는 간부임무 수행
3 학년	하 사	하 사	하 사	
2 학년	병	병	병	
1 학년				

(가) 1994년도에 전역한 진정인(정ㅇㅇ)은 육사4년 퇴교 후 중사계급을 부여받고 계급에 상응하는 업무를 부여 받았으나, 군번은 병과 동일한 군번을 받았으며 전역명령지도 부사관이 아닌 사병 인사명령호수로 발령되었다.

(나) 육군본부 인부11202-010009(2001.4.13)에 의거 육사 퇴교자에 대해서 계급, 군번, 인사 등의 지침이 마련되어 부사관과 동일하게 인사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다) 공군의 경우 사관학교 2학년 퇴교자부터 하사계급을 부여하고 있다.

(2) 사관학교 퇴교자중 부사관(하사, 중사) 임용자에 대한 복지관계가) 휴가

구분 / 군별	휴 가	휴가비(연가보상비)	100일 휴가
일반병	복무기간 중 총 40일 실시	휴가 급지별로 여비지급	4박 5일
육 군	연가의 개념 적용 1회 2박 3일	미지급	없 음
해 군	"	지 급	없 음
공 군	하사는 병과 동일하게 시행	지 급	4박 5일

(가) 사관학교 퇴교자의 경우 일반 사병과 같은 정기휴가(40일)가 아닌 연가의 개념을 적용하여 2개월에 2박 3일간의 외박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병에게 주어진 휴가일수(40일)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간부의 경우 휴가 미실시 부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가 지급되나 퇴교자 휴가미실시 부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음) 대부분이다.

(나) 간부들의 연가는 연가기간에 휴일이 포함되지 아니하나, 퇴교자의 경우 연가기간 내에 휴일도(사병의 정기휴가 기간에는 공휴일도 포함) 포함하고 있다.

(다) 퇴교자의 외박 시 휴가비는 지급되지 아니하고(사병들의 경우 휴가 시 급지별로 지급, 공군하사는 병과 동일) 있다.

(3) 피복지급 관계

구분 / 군별	피복 구매	피복구매권	기 타
육 군	자비구입(사관학교 입교시 지급받은 군복 1벌로 생활하고 있고, 계급장도 자비구입)	없 음	일부의 경우 보급관에게 사적으로 부탁, 속옷 등 소모품을 지원 받아 사용
해 군	피복구매권 제공		
공 군	피복구매권 제공		

(가) 각 군 간부들의 경우 피복구매권을 지급받고, 사병의 경우는 국방부 보급기준에 의거 피복을 지급받고 있으며, 93년도에 폐지된 육군 일반하사의 경우에도 당시 사병과 똑같이 보급품을 지급하였다.

(나) 해사 및 공사 퇴교자에 대해서는 간부 신분을 적용하여 피복구매권을 지급 후 개인적인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육사 퇴교자의 경우 계급은 간부이기 때문에 사병에게 지급되는 보급품을 수령할 수 없고, 처우는 일반하사 신분이므로 피복구매권이 지급되지 않는 등 각 군별로 상이하다.

(4) 신분증 및 의료보험관계

구분 / 군별	신 분 증	의료보험	기 타
육 군	신분증 미 발급되고 출입증으로 대체	미 혜택	영외거주 하사의 경우 의료보험증이 없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음
해 군	신분증 발급	발급	
공 군	신분증 발급	발급	

(가) 해군 및 공군에서는 사관학교 퇴교 후 부사관으로 임관된 자에 대해 간부 신분을 적용하여 신분증 및 의료보험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육군에서는 일반하사의 신분을 적용하여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고 출입증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의료보험료 문제로 의료보험증이 발급되지 않고 있고, 특히 영외거주 하사의 경우 외부 민간병원 진료 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요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 육군 일반병의 경우는 부대 내에서 외진으로 국군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증이 없어도 의료혜택을 받고(1993년말 폐지된 육군 일반하사의 경우 병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음) 있다.

(5) 급여 관련

(가) 급여 1호봉 비교(퇴교자 및 단기하사)

계급 / 구분	하 사	중 사	비 고
육군	101,400	745,100	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적용(2005년)
해군	1,028,250	1,161,260	육군지침미적용(호봉미적용)
공군	101,400	1,161,260	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적용(2005년)
단기하사	1,340,000	1,600,000	공무원법 호봉적용(호봉승급적용)

※ 단기하사·중사 봉급은 년 평균 기준
※ 원에 의하지 아니한 중사 봉급은 2005년 본봉기준
※ 병장 봉급 : 44,200원(상여금 : 65,580원)

(나) 각 군 공통으로 사관학교 퇴교 후 하사로 임관된 자에 대해서는 하사 1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일반하사 제도가 존재하였던 기간에도 하사 1호봉의 본봉을 지급하였음) 하였으나, 육군의 경우 국방부 인사 33140-2595 (2003.5.17)에 의거 사관학교 퇴교 후 하사로 임관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관된 하사인 일반하사로 신분 해석이 변경되어 2003.7.1. 이전 하사로 임관된 자에 대해서 이미 지급된 봉급(하사 1호봉)에 대해 반납 조치를 취하게 한 사실이 있다.

(다) 육군 및 공군의 경우 사관학교 퇴교 후 부사관으로 임관된 자는 소위 일반하사 및 병과 의무복무기간만 동일할 뿐 그들에게 부여하는 직책이나 수행업무, 근무 등에 있어서는 단기 부사관(4년)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하사로 임관되었을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해 영외거주를 허가하고 있으면서 급여는 일반하사의 급여(101,400원)를 지급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라) 또한 육군 및 공군의 경우, 사관학교 퇴교 후 하사로 임관된 자와 중사로 임관된 사람의 보수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약 7에서 11배 정도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다.

(마) 한편, 해군의 경우 일반하사는 육군에서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국방부의 유권해

석은 일반하사 제도가 있었던 육군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기존에 지급하던 대로 하사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

(6) 퇴교생도 업무수행 관련

군별 / 계급	임 무		육 군	해 군	공 군
	규 정	현 행			
하 사	분대장/ 신교대 교관	인사 행정관등 간부임무	단기부사관 간부임무 수행	육군과 동일	육군과 동일
중 사	분대장, 부소대장, 신교대 교관	작전과 교육담당관 인사과 경리담당관	단기부사관 간부임무 수행	육군과 동일	육군과 동일

(7) 예비군 훈련 및 편성관련

군별 / 계급	일반간부	사관학교 퇴교자
중 사	45세	45세
하 사	40세	40세
편 성	병의 편성기준 적용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편성)	일반간부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실시

(가) 간부에 대해서는 각 군 공통으로 계급정년까지 예비군에 편성하고 일반하사 및 병은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한다.

(나) 사관학교 퇴교 후 하사관으로 임관된 사람에 대해서는 간부의 개념을 적용하여 계급정년까지 편성 적용하고 있다.

4. 판단

가. 「병역법시행령」 제30조는 "각 군 참모총장은 사관학교 또는 단기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군인사법」 제3조에 부사관의 계급은 하사, 중사, 상사, 원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 제44조 및 제45조, 제52조에 의하여 그 계급에 상응한 예우와 보수 등에 있어 차이를 두지 않고 평등히 취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관학교 퇴교 후 부사관으로 임관된 경우, 간부직책을

부여받고 부사관의 임무를 수행하나 단지 복무기간이 일반 병의 의무복무기간과 같다는 이유로 각 군과 군내 부대별로 급여 및 처우 등에 있어 차별을 두고 있다.

다. 국방부의 유권해석에서 제시된 개념인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라는 것은, 상·병장에서 분대장(하사)을 활용하기 위해 군복무중인 병사에서 선발했던 시기에 존재하였던 일반하사(1993년 이후 폐지, 해군의 경우는 제도 자체가 없었음) 개념으로서, 사관학교 퇴교자인 경우는 원 신분으로 복귀(귀가)하여야 하나 본인의 원에 의해 부사관으로 임용된 것이고(「병역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육군규정116 「부사관 복무규정」 제6조제3항 및 동 규정118 단기부사관 보직관리에서 단기부사관과 동일한 보직관리를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국방부의 위와 같은 해석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사관학교 퇴교생들이 본인의 원에 의해 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비록 그 의무복무기간은 병의 의무복무기간과 같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부사관과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처우를 달리 하는 것은 헌법상 자의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서 이는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관학교 퇴교 생도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급은 부사관이지만 복무기간, 부여임무, 전역 후 예비군 편성연령 등을 일반병과 동일하게 할 경우는 별개의 문제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김호준 위 원 나천수 위 원 최금숙

2 06진인0950 [출타병 준수사항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2006. 8. 10. 결정

국방부장관에게 출타병 준수사항에 대한 서약서 집행사례를 확인 후 출타병 준수사항 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할 것과 이의 집행을 강제하여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사병이 출타시 자가운전, 오토바이 운전 및 동승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이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서 제한될 수는 있음.

그러나 사병의 출타 시 자가운전을 금지하는 근거법률을 「군인사법」 제47조의2에 터잡은 군인복무규율 제19조 내지 제23조의'명령'에서 찾아 볼 수도 있을지라도 출타 시에 자가운전 등이 군인의 복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피진정인이 사병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군인사법」 제47조의 2

▌진정인▐ 홍○○

▌피진정인▐ 국방부 장관

▌주 문▐ 국방부장관에게 출타병 준수사항에 대한 서약서 집행사례를 확인 후 출타병 준수사항 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할 것과 이의 집행을 강제하여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전역직전 전군에서는 사병 출타 시 '나는 자가운전 및 음주운전, 오토바이

운전 및 동승도 하지 않겠다. 위 사항 위반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라는 내용의 「출타병 준수사항」에 강제로 서명케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이는 개인선택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위헌적 문서 및 서명집행 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하여 주기 바람.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음

나. 피진정인의 주장

외출, 외박 및 휴가는 병영생활의 연장으로 각종안전사고 예방 및 군인의 본분에 위반되거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 군규정에 출타자 준수사항을 예시하고 있으나 집행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각급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자가운전 금지 및 처벌감수 서약 등은 병사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

3.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에 대한 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본 서약서의 집행을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타인이 불이익 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하며, 피진정인도 본 서약서의 집행을 거부한자나 집행을 거부한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례는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 출타병준수사항 및 그 서약서집행에 관한 국방부의 지침은 없으며, 각군의 경우 육군은 「육군규정」 제135(출타자 준수사항)에, 해군은 「해군규정」 제88조(외출·외박·휴가시 행동)에, 공군은 「공군규정」 제2-54(외출·외박·휴가자의 행동절차)에서 그 예시를 들고 있을 뿐 서약서 집행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다. 육군사관학교의 출타병준수사항 2번째 항목에는 '나는 자가운전 및 음주운전, 오토바이 운전 및 동승도 하지 않겠다'로 되어 있으며 하단에 '나는~위반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되어있다.

라. 국방부조사본부 출타병준수사항 3번째 항목에는 '출타기간중 차량 운전은 절대 하지 말 것-운전면허 취득 후 상당기간 운전을 하지 않아 감각이 둔하고 기량이 미숙하여 교통사고 발생율이 높기 때문이다. 오토바이 운전은 더 위험하므로 하지 말자'로 되어 있으며 하단에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라고 되어있다.

마. 국군기무사령부 출타병준수사항 내용 중에 '나는 외·특박(휴가)기간 중 차량 및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겠다'의 항목이 하단에 본인은 ~ 문제발생시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되어있다.

바. ○○대학교 법과대학 이○○ 교수는 자문에 대한 답변에서 '사병이 출타시 자가운전, 오토바이 운전 및 동승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이며, 이를 피진정인의 방식으로 준수사항을 의무지우고 서약을 강제하는 것은 사병이 갖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4. 판단

사병이 출타 시 자가운전, 오토바이 운전 및 동승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이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병의 출타 시 자가운전금지의 근거법률을 「군인사법」 제47조의2에 터 잡은 「군인복무규율」 제19조 내지 제23조의 '명령'에서 찾아 볼 수도 있으나 출타 시에 자가운전 등이 군인의 복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연유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5. 결론

사병의 출타 시 자가운전, 오토바이 운전 및 동승을 금지시키고 본 사항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받는 피진정기관의 행위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진정기관의 장에게 출타자 준수사항 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할 것과 이의 집행을

강제하여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1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김호준 위 원 최금숙 위 원 원형은

3 07진인190 [부당한 강제퇴교 형식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8. 5. 8. 결정

국방부장관에게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각급 사관학교의 생도규정 등의 규정에 대하여, 자퇴희망자에 대하여 퇴학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하여 그 진정성 등을 확인하여 자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과 금주·금연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학·휴가기간 등 교육 및 훈련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금혼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위 「3금제도」를 교육적으로 직접 필요한 경우만으로 완화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강제퇴교 규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사관생도가 자퇴를 원할 경우 규정에 따라 퇴학으로 처리된 결과 자신에 대한 도덕적,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된다면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퇴학처리는 해당 사관생도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2] 3금제도에 대하여

사관학교에서 자퇴희망자를 퇴학처리하는 것과 3금제도를 폭넓게 시행하는 행위는 사관생도의 헌법상의 권리(명예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따라서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는 자퇴희망자에 대하여 퇴학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하여 그 진정성 등을 확인하여 자퇴를 인정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3금제도를 주문과 같이 직접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참조조문 ▌

「헌법」 제10조 및 17조 등

▌ 진정인 ▌ 홍○○

▌ 피해자 ▌ 사관학교 생도 등

▌ 피진정인 ▌ 1. 육군사관학교장
2. 병무청장

▌주 문 ▐ 1. 국방부장관에게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각급 사관학교의 생도규정 등의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가. 자퇴희망자에 대하여 퇴학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하여 그 진정성 등을 확인하여 자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나. 금주·금연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학·휴가기간 등 교육 및 훈련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금혼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위 「3금제도」를 교육적으로 직접 필요한 경우만으로 완화하여 시행할 것

2. 진정인의 그 밖의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기각 및 각하한다.

▌이 유 ▐

1. 진정의 요지

가. 육군사관학교는 생도들이 개인사정 등으로 자퇴를 원할 경우 자퇴규정이 없다며 강제퇴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생도들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 간부들이 자퇴희망 생도들에게 "자퇴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생도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각급 사관학교는 생도규정에 따라 소위 '3금제도'라고 하여 금주, 금연, 금혼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 시 강제 퇴교시키고 있으며, 재시험 미통과자도 퇴교시키는 등 생도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다. 사관학교를 퇴교한 후 군복무 시 생도생활기간을 병역의무기간에 산입해주지 않는 것은 학력에 의한 차별이며, 병무청에서 퇴교생도를 상습병역회피자에게나 해당하는 '특별관리대상자'로 관리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육군사관학교내 자퇴희망자는 퇴학 처리되고 있으나 퇴학이라는 용어자체가 육사생도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할 뿐 퇴학사유에 대한 가치판단을 포함하지는 않고 있어 문제되지 않으며, 자퇴 희망자에 대하여 강압적으로 만류할 이유도, 그러한 사실도 없다.

2) 3금제도의 경우 미혼은 사관학교설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3조 ① 사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 일 것)에 따른 것이며, 금주 및 금연도 사관학교설치법에 근거한 학칙에 의한 것이다. 이 제도는 사관학교의 개교 이래 지속되어온 중요한 전통이고 상징으로 인권침해와 무관하다.

3) 사관생도가 정규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재수강이라는 기회를 부여한 후 재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으며 장교로 임관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지적 능력수준 및 기본 자질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재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관생도를 퇴교시키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와 무관하다.

4) 생도생활 기간을 병역의무기간에 반영하지 않는 점은 병역관련 정책상의 문제로서 대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고, 특별관리대상자제도는 일부 부유층 자제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1997년 이후 폐지되었다.

5) 한편 국방부에서는 2008. 4. 30. 「강제퇴학규정」은 '대상자의 명예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재적증명서 발급제도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하고 「3금제도」는 "입학 전 입시요강 등에 3금제도를 소개하고, 필요한 경우 합리적 절차를 통해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할 것이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답변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각급 사관학교는 사관학교설치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교칙인 「생도규정」에 '3금제도'를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자를 퇴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퇴희망자 및 재수강 미통과자는 '퇴학' 대상자로 하고 있으나 모집요강 등에 퇴교규정 및 3금제도에 대한 설명 및 언급은 없다.

나.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제적은 학칙에

의거 재학생 자격을 박탈하여 학적에서 제외시킨 것이고, 자퇴는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학적을 포기한 것이며, 퇴학은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을 박탈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다. 육군사관학교에서 ○○년도에 퇴교된 자는 13명(1.63%)이며 그 세부적인 사유는 자퇴(퇴교로 기록) 9명, 군기사고 등이 4명이고, 3금제도를 위반하여 퇴교된 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라. 해군사관학교는 4학년 2학기부터는 생도간의 경우를 제외하고 약혼을 허용하고 있으며, 공군사관학교는 4학년 2학기부터는 '보호자의 지병, 상대방의 유학, 가족의 이민,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생도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혼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경찰대학은 '음주'는 교내 및 제복 착용 시에만 제한하고 '흡연'은 1981년 개교 이래 불허하다가 1988년부터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하며 4학년이 되면 약혼을 허용하고 있다.

마. 외국 사관학교의 3금제도에 대한 육사 자체의 조사결과(육군화랑대연구소, 3금제도연구, 2002)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국가	음 주	흡 연	결 혼 (성관계)	비 고
미국	교내금지, 교외허용 3·4년은 교내 지정장소 가능	허용 (장소 제한)	21세 이상 결혼가능 교내 성관계 통제	
일본	교내금지, 교외허용 허가시 교내 가능	허용	허용(실질적 불가)	1학년은 불가
독일	교내금지, 교외허용 허가시 교내 가능	허용	허용	기혼자 입교가능
프랑스	허용	허용 (장소 제한)	허용	기혼자 입교가능
이태리	교내금지, 교외허용 교내 공식행사시 가능	허용 (장소 제한)	24세이상 결혼가능	
호주	허용(교내는 장소제한)	허용 (장소 제한)	허용	
중국	허용(훈련시 금지)	허용 (훈련시 금지)	금지	장소 제한
태국	불가	불가	불가	
한국	극히 제한적 허용 (공식행사 사전허가 등)	불가	불가	

위 조사결과에 의하면, 00년도 신입생도의 경우 70%정도가 음주 경험이 있고, 흡연은 15%내외가 경험이 있으며 00년도 졸업생도 20%정도가 금주규정을 위반한 경험이 있고 흡연은 5%내외, 성관계는 3%내외로 위반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4. 판단

진정인의 진정내용에 따라 사관생도에 대하여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인권침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 강제퇴교 규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진정인은 사관생도들이 자퇴를 원할 경우에도 강제퇴교(퇴학)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자퇴를 한 사관생도의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예권이란 소위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사회적 평가에 대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인이 주장한 대로 사관생도가 자퇴를 원할 경우 규정에 따라 퇴학으로 처리된 결과 자신에 대한 도덕적, 사회적 평가가 훼손된다면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퇴학처리는 해당 사관생도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퇴는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학적을 포기하는 것이고, 퇴학은 학칙위배 등의 징계사유 발생시 학생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을 의미하며 이러한 개념 규정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사관생도가 사관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는 해당 사관생도에 관한 도덕적, 사회적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따라서 사관생도들이 본인의 질병이나 가정의 생계유지 등 자의에 의해 학업을 중단하고자 했을 경우 사관학교에서 이들을 퇴학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자퇴를 하고자 한 사관생도들의 명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물론 사관생도들이 국비로 교육을 받고 있는 측면을 고려할 때 '자퇴'를 자유롭게 허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자퇴희망자를 파렴치한 행위자로 분류하여 불이익을 주는 지에 대하여

진정인은 사관학교에서 자퇴희망자를 파렴치한 행위자로 분류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육사 생도규정 제11장 포상 및 징계 항목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한 형태로 '파렴치한 행위를 한 자'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진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진정인의 위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3금제도에 대하여

사관생도는 학생과 군인의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고 입교 시 관련 학칙 등을 철저히 이행하겠음을 서약함으로 인하여 행정법상의 소위 특별신분관계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신분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관생도의 헌법상의 기본적인 인권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금주(No Drinking), 금연(No Smoking), 금녀(No Women)'라는 내용을 가진 소위 3금제도는 사관생도에게 청백한 수련기풍을 유지하고 절제와 극기를 미덕으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사관학교의 교육내용과 인격수양의 방안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에 있어서는 사관생도도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 헌법상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3금제도와 헌법상의 기본권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음주 및 흡연을 할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 내용으로, 금녀와 관련한 혼인권 또는 성적자기결정권도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 내용(헌법재판소 2003헌바457, 99헌바40, 2002헌바50 참조)으로 각각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3금제도에 따른 사관생도의 기본적 인권의 제한이 소위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경우에는 그러한 인권의 제한은 정당하지 않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관학교(특히 육군사관학교)의 경우에는 금연, 금주, 금녀의 범위가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범위(예를 휴가, 휴학, 교외 등) 및 개인적으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해군사관학교의 경우 참조)에까지 폭넓게 실시되고 있다. 3금제도의 이와 같은 폭넓은 적용은 소위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현재와 같은 3금제도는 사관생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3금제도는 사관생도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내로 제한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3금제도가 이와 같이 폭넓게 적용된 결과 사관생도들이 이를 규칙으로서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사관학교의 기본적인 교육방침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를 교육함에 있어서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중시하면서도 제복을 입은 시민

으로서 사관생도의 존엄과 가치 및 그 밖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장차 이들이 대한민국 국군의 장교로서 부대를 지휘, 운영함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을 아우르는 선진적인 병영문화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 재시험 미통과자 퇴교처리 규정에 대하여

진정인은 재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생도를 퇴학을 시키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시험 미통과자에 대하여 재수강으로 통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진정인의 위 진정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마. 생도생활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등에 대하여

진정인은 사관학교를 퇴교한 이후 군복무를 할 때에 생도생활기간을 병역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병역의무기간 불산입 제도는 병인사관리규정 제27조('사관생도 퇴교자가 군복무를 지원할 때는 부사관 또는 병으로 복무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도교육기간은 군복무기간에 가산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군인의 복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산입하는 조항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 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2004두14748). 아울러 진정인도 그 자신이 제기한 동일한 취지의 사건에서 패소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의 위와 같은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각하한다.

바. 병무청에서 사관학교 퇴교자를 특별관리대상자로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인은 사관학교 퇴교자를 특별관리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병무청은 특권 부유층 자제 등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1973년부터 특별관리대상자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1997. 5. 27. 이후 본 제도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제도가 이미 폐지된 이상 진정인의 위와 같은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관학교에서 자퇴희망자를 퇴학처리하는 것과 3금제도를 폭넓게 시행하는 행위는 사관생도의 헌법상의 권리(명예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 등)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는 자퇴희망자에 대하여 퇴학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하여 그 진정성 등을 확인하여 자퇴를 인정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3금제도를 주문과 같이 직접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39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4 07진인952 [유해농약작업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7. 8. 13. 결정

▌결정요지▐

국방부장관에게, 피진정인 등이 군복무중인 병사들에게 병역의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농약작업을 시키는 등 부당한 사역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및 21조

▌진정인▐ 김○○

▌피진정인▐ 1. 공군○○사령관
2. 공군참모총장

▌주 문▐ 국방부장관에게, 피진정인 등이 군복무중인 병사들에게 병역의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농약작업을 시키는 등 부당한 사역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0. 1. 29. 공군○○사령부에 배치되어 2002. 5. 21. 제대할 때 까지 약 2년 4개월간 유실수반(과수원 관리반)에 복무하면서 지속적인 농약살포작업 등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제대 후 2년 7개월이 지난 2004. 12. 20. 림프종 암 진단을 받고 기본적인 치료를 마친 후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기위해 피진정부대에 위 복무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피진정부대는 유실수병으로 근무한 복무사실을 부인하였고 특히, 피진정인 2)가 국가보훈처의 복무사실 확인요청에 유실수병으로 복무한 사실을 인정해주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정황상으로는 유실수 병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나 기록상으로는 '기지지원전대 지원대대 급양중대 급양병' 으로 복무한 사실만 확인된다.

3.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대학재학 중 입대하여 2000. 1. 29. 경남 ○○시에 소재한 공군○○사령부 기지지원전대 지원대대로 배치되었으나 유실수반 요원으로 선정되어 해당부대에는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약 2년 4개월간 과수원에서 농약작업 등 유실수 관리업무를 하다가 2002. 5. 21. 만기제대 하였다.

나. 진정인은 전역한지 2년 7개월이 지난 2004. 10. 경 가슴통증 및 호흡곤란을 느껴 000대학병원 혈액종양과에 입원하여 흉부에 17cm 상당의 악성 림프종을 발견했고 6개월간 항암치료를 받아 2007. 7. 그 크기가 3cm로 호전되었으나 현재도 통원으로 추적관찰중이다.

다. 진정인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위해 2007. 2. 피진정부대에 본인의 군복무기간인 약 2년 4개월간 지속적인 농약살포작업 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기관은 '기지지원전대 지원대대 급양중대 급양병'의 경력증명만 해주었다.

라. 진정인은 유실수반에서 같이 근무했던 박○○, 조○○의 인우보증을 받아 2007. 5. 부산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보훈청은 피진정기관에 진정인이 군 복무중 유실수반에서 농약작업 등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사실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피진정부대측은 "복무중 유실수 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농약에 과다 노출, 현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만 답변하여 부산지방보훈청은 본 사실확인 요청서 등을 근거로 동년 6. 15.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 해당 결정통지를 하였다.

마. 공군○○사령부 유실수반을 실제 관리하고 있은 담당자는 조사관의 실지조사 시 진술에서 "2000년도 기준으로 감나무 1,200주, 배나무 200주를 유실수반원 10~15명으로

관리하다가 2003년 11월경 운영을 중단했으나 2007. 1. 부터 수목관리상 아까워서 부대 결정에 따라 배나무 200주 및 감나무 200주를 다시 운영하고 있으며 농약작업 등은 본인 및 외부민간인력을 고용하여 하지만 기초작업은 때에 따라 약간의 병력지원을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진정인은 전입 후 제대까지 복무 중 지속적인 농약살포 작업 등을 했고 농약작업은 년 17회~20회 정도, 1회 살포시 살균제(포리담 등), 살충제(미믹 등), 제초제(대장균 등) 등을 5~6시간에 걸쳐 500ml 24~26병을 살포했으며, 농약작업 일지 등 관련기록 등은 2003년 운영중단시 폐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샤워 시설 등은 없었고, 현장에 수도시설이 있어 휴식 때나 작업 종료 후에는 깨끗이 씻을 것을 누차 강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국방부는 2003년도 연말연시 공직자 근무기강 감사를 통해 "공군○○사령부에서는 부대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수원 경작을 위해 기지지원전대 예하대대의 군무원 1명, 사병 9명을 차출하여 기지지원대대에 유실수반을 비편제로 편성/운영하고 있어 소속부대의 고유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공군○○사령관은 비 편제로 운영하고 있는 군무원 및 사병을 원소속부대로 복귀 및 위탁영농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피진정부대의 유실수반 운영의 부적절성을 확인하였고, 병사들에 대하여 병역의무외에 부당한 사역을 금지하도록 조치하여 공군○○사령부는 2003. 11. 경 과수원 경작을 중단 하였다가 2007. 1. 부터 군무원이 관리를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운영 중이다.

사. 공군본부 인사운영단 인사행정처 유공자 요건사실 확인담당자는 "김○○의 복무사실을 해당부대에 방문하여 일일이 확인 할수 없고, 인사기록 및 진료기록 등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위주로 확인한다. 진정인의 경우 정황상으로 보직은 별도로 두고 실제는 유실수 반에서 복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인이 복무 중 유실수반에서 유해농약작업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진정인의 복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진정인의 유실수반 복무 중 찍은 사진, 동료들의 보증서, 유실수반 관리담당자의 진술 등을 검토할 때 피진정부대내 유실수반은 1988년 부대가 경남 ○○로 이전시 기존에 있던 과수원을 인계받아 경작하여 왔고, 진정인은 이등병으로 부대배치 되어 병장으로 만기제대 할 때까지 약 2년 4개월간 유실

수반에서 근무하면서 봉지씌우기, 제초작업, 농약살포작업 등 유실수반 업무를 하였으며 특히, 복무기간 중 1회 작업시 약 5~6시간 소요되는 농약살포작업을 방제복 등 특별한 안전장비 없이 약 40회 실시하여 유해환경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하며, 피진정기관이 이와 같이 진정인에 대하여 부대임무와 상관없는 의무 없는 일을 부과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자기결정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 진정인 복무사항을 확인하여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국방부 '2003년도 연말연시 공직자 근무기강 감사결과' 등 위 인정사실과 같이 공군 ○○사령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유실수반을 운영하였고 진정인이 군복무 중 부대내에서 유해 농약작업을 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피진정기관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나아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권리에서 파생된 진정인의 자기정보 수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5. 결론

국방부는 병사들에 대하여 부대임무 외에 부당한 사역을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대내 과수원을 보유하고 있는 부대의 경우 진정인이 소속했던 부대와 같이 음성적으로 과수원 등을 운영하면서 병사들에게 유해한 농약작업 등을 시킬 가능성이 있고, 조사결과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므로 진정인에게 병역의무와 특별히 관련 없는 유해한 농약작업 등을 시켰음에도 그 복무사실을 인정해 주지 않는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가기결정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자기정보 수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8. 1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정강자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5 08진인677 [부당징계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8. 8. 28. 결정

▌결정요지▐

육군참모총장에게, ○○군단장으로 하여금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징계조치하게 할 것과 피진정인 2로 하여금 탄약관리 등 부대안전관리 대책을 보다 철저히 시행하여 장병 사고예방에 힘쓰게 할 것을 권고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진정인▐ 한○○

▌피해자▐ 故 한○○

▌피진정인▐ 1. 국방부장관
2. 이○○
3. ○○○
4. 최○○
5. 고○○
6. 이○○

▌주 문▐ 1. 육군참모총장에게, ○○군단장으로 하여금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징계조치하게 할 것과 피진정인 2로 하여금 탄약관리 등 부대안전관리 대책을 보다 철저히 시행하여 장병 사고예방에 힘쓰게 할 것을 권고한다.

2. 수사 및 재판 사실 미통지와 관련된 피진정인 2에 대한 진정, 진단서 허위발부 및 폭행사건 합의 종용부분과 관련된 피진정인 3에 대한 진정, 피진정인 4, 5, 6에 대한 진정을 기각하고, 피진정인 1에 대한 진정을 각하한다.

▌이 유 ▐

1. 진정의 요지

가. 피해자는 ○○○○○보병사단에서 이등병으로 복무 중이던 2006. 5.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연필꽂이를 던져 선임병의 이마에 열상을 입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벌금형의 선고는 이병 급여를 고려해 볼 때 너무 무겁다. 아울러 부대 측에서 이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피해자가 2007. 1. ~ 2.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하여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런데 부대장인 피진정인 3이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6주 진단의 상해를 2주 진단의 상해로 처리 하였고 피해자가 구타당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 및 목격자를 징계하였다.

다. 위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3, 4는 사건을 은폐하려고 가해자 측과 합의를 종용하였다. 피전정인 3은 피해자가 치료 후 부대에 복귀하자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어 피해자의 부대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라. 피진정인 3이 2007. 7. 28. 성과제 외박 대상자 중에서 피해자만을 임의로 제외시키자 피해자는 “친구가 사망하여 외박이 필요하다.”는 허위보고를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3은 피해자를 밤 10시 경에 불러 질책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허위사실을 실토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었다. 피진정인 3은 2007. 7. 31. 위 허위보고 사건이 일단락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 징계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대해 큰 반감을 갖게 된 피해자는 근무일지에 ‘대장 개새끼’라는 유서형식의 글을 남기고 총기로 자살을 시도하여 입원 중이던 같은 해 9. 14. 사망하였다.

마. 피해자 사망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에게 대원 및 탄약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인 피진정인 2가 피진정인 3 등을 징계조치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명예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국방부장관)

병사에 대한 벌금액 과다부과는 군사재판의 양형에 관한 재량이므로 판단하기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폭행당한 사실을 지휘계통으로 보고하지 않는 것이 추가 사고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방해가 되었다면 피해자의 보고의무 위반도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2007. 11. 징계대상에서 구타 피해자를 제외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폭행피해자가 징계를 받는 불합리한 점은 시정될 것으로 본다.

2) 피진정인 2(이○○, ○○○○○보병사단장, 소장)

피진정인 3이 당해연도 진급심사대상자였으나 진급에 불리한 보직으로 전환시켜 진급에서 누락시킨 대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경고를 하였다.

3) 피진정인 3(○○○, 당시 ○○○○○보병사단 헌병대장, 현 ○○군단헌병대 수사과장, 소령)

피진정인 3은 2007. 1. ~ 2. 피해자가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은폐한 적이 없다. 피진정인 3이 애초에 2주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은 피해자가 입었던 봉와직염이 통상 2 ~ 3주 입원으로 완치되는 병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처부위가 덧나 결국 피해자는 6주간 입원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지휘계통으로 보고하지 않아 일벌백계 차원에서 징계조치한 것이며,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는 당사자간에 이루어 진 것이다. 대원 교육 시 피해자 실명을 거론한 것은 대원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심의절차 없이 피해자를 성과제 외박 대상자에서 제외시킨 것은 오류임을 인정한다. 피해자를 질책한 사실은 있으나 욕설 등은 하지 않았다.

4) 피진정인 4(최○○, ○○○○○보병사단 헌병대 행정관, 상사)

피진정인 4는 피해자 부모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하여 "합의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답하였을 뿐이다. 부대 측에서 수사사항을 부모 측에 통지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원치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통보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피진정인 4는 위 사건으로 인해 군단 헌병대장의 서면경고 조치를 받았다.

5) 피진정인 5(고○○, ○○○○○보병사단 헌병대 소대장, 소위)

피진정인 5가 부임을 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부대원들에게 열쇠관리법 등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였다. 사고 당일 피해자를 근무열외 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무조정을 실시하지 못했다. 피진정인 5는 위 사건으로 인해 사단장 서면경고 조치를 받았다.

6) 피진정인 6(이○○, ○○○○○보병사단 헌병대, 이병)

피진정인 6은 실탄보관함 열쇠를 일체 양도하면 안 되지만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소지하고 있던 실탄보관함 열쇠를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은 비위를 인정한다. 피진정인 6은 위 사건으로 인해 사단장 서면경고 조치를 받았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

1) 당시 담당수사관

부대 측에서 피해자의 6주 입원 사실을 2주 진단으로 끊어 수사를 진행한 것은 수사 개시를 위한 것이며, 위 사건은 합의가 이루어져 수사가 종결되었다.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직권남용 및 (정신적)가혹행위 혐의로 형사적 처벌을 검토해 본 것은 사실이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형사적인 접근은 하지 않았다.

2) 합의에 응한 폭행 가해자 부모

가해자인 아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 부모 측과 합의를 하였으나 부대로부터 합의를 권유받은 적은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6. 5. 10. 군○○○○○보병사단 위병소에서 경계근무 중 선임병인 상병 송○○으로부터 차량번호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과 함께 조롱을 당하여 이를 참지 못하고 위 선임병에게 연필꽂이를 집어던져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이 상해사고에 대하여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위 선임병은 해당 부대에서 영창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부대 측은 피해자가 이 사실을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치 않아 수사진행사항 통보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부모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2006. 12. 17. ~ 2007. 2. 6. 병장 서○○으로부터 청소상태가 미흡하다는 이유 및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너 같은 것을 죽여도

우리 집이 잘 사니까 돈으로 때울 수 있다."고 협박당하였다. 며칠 후 폭행당한 피해자의 상처가 심해지자 가해자인 서ㅇㅇ은 피해자를 데리고 소대장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계단에 부딪쳐 부상을 입었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2007. 2. 12. 국군ㅇㅇ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다. 그 후 사단헌병대는 병원으로부터 피해자의 2주 진단서를 발급 받아 가해자 서ㅇㅇ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검찰부에 송치하였다. 그런데 2007. 3. 4. 가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들 사이에서 부대의 개입이 없이 합의가 이루어져 사단 검찰부는 가해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을 하였다.

라. 피해자는 부상을 치료하고 2007. 4. 13. 부대로 복귀하여 위와 같은 폭행사실을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휴가제한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목격한 선임병 5명도 폭행을 목격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가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피진정인 3은 분대장들을 관사로 불러 이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전입한 이후 선임병에게 하극상을 하였으므로 앞으로 피해자를 성과제 외박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마. 피해자는 성과제 외박을 다녀온 지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진정인 5에게 외박을 요청하여 2007. 7. 26. 외박대상 명단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피진정인 3은 피해자가 2회에 걸쳐 폭행사고에 연루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육군규정 148 제32조(성과제 외출 외박)에 따른 심의회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를 성과제 외박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를 인지한 피해자는 2007. 7. 27.(금) 친구가 자살을 하여 외박을 나가고 싶다고 보고를 하였으나 이 보고가 허위임이 밝혀져 피진정인 3이 피해자를 취침시간인 22:00 경 대대장실로 호출하여 질책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위 내용이 허위임을 피해자 스스로 말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진정인 3은 2007. 7. 31.(화) 간부회의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할 것을 피진정인 4에게 지시하였다.

바. 피진정인 5는 징계회부가 결정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근무에서 열외 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징계위원회가 바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원래의 계획대로 피해자를 실탄이 지급되는 경계근무에 투입하였다. 한편 해당 부대에서는 피진정인 5가 소대장으로 부임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 부대원들에게 무기고의 실탄과 열쇠의 관리방법 및 총기사고의 예방 등에 관하여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였다.

사. 피해자는 징계를 당할 것을 알면서 2007. 7. 31. 15:45분 경 위병소 근무를 위해 후임병인 피진정인 6과 함께 총기를 휴대한 후 근무신고를 하고 도보로 위병소에 도착하여 전임근무자인 병장 이○○ 및 일병 장○○와 근무교대를 한 후 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07. 7. 31. 16:00 ~ 17:00 경 위병소에서 후임 근무자인 피진정인 6에게 "자살하면 어떨까? 우리 한번 시험해 보자. 안 죽은 사람이 미운 대장 얼굴 때리는 거다."라는 말을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6에게 "날씨도 더운데 열쇠를 왜 차고 있어? 벗어."라고 하여 피진정인 6이 탄약보관함 하단 열쇠를 벗어 놓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근무일지에 "씨발 대장 개새끼. 너 두고 보자. 행보관님 미안해요."라는 메모를 남긴 뒤 탄약보관함에 보관 중인 15발들이 탄창을 꺼내 자신의 K-1소총에 삽탄 후 자신의 턱 밑에 총구를 대고 실탄 1발을 발사하였다. 함께 근무를 선 후임병인 피진정인 6이 이 사실을 목격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7:08 경 해당 부대에서 헬기를 이용해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피해자를 처음 진료한 신경외과 대위 강○○은 피해자가 수도병원 도착 당시 턱밑에서 좌측 전두부를 관통하는 총상을 입었고 뇌손상 및 두개골 골절상 등 상해정도가 심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진단하였다. 피해자는 계속 치료를 받다가 2007. 9. 14. 뇌손상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은 피해자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아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아. 사고현장에서 발사된 탄피의 발사흔과 피해자의 지급총기에서 시험발사된 발사흔이 동일하고, 피해자의 우측 손등에서만 뇌관화약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진정인 6에게서는 동일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추진제 화약성분은 피해자의 피복 55점, 전투화 36점과 피진정인 6의 피복 4점, 전투화 10점에서 검출되었다.

자. 국방부 훈령 제702호 '사고처리신상필벌기준' 및 육군규정 189 '징계규정'에 따르면, 부대 내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1차, 2차, 3차의 지휘·감독 책임을 묻고 있다. 위 사건에서 있어서는 1차 책임은 소대장인 피진정인 5, 2차 책임은 행정보급관인 피진정인 4, 3차 책임은 헌병대장인 피진정인 3에게 있다. 이에 따라 ○군단 헌병대에서는 피진정인 5, 6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의뢰를 하였으나 징계권자인 사단장은 해당 부대 징계간사의 의견에 따라 이들을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복종의무 위반으로 서면경고 조치를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4에 대해서는 ○군단 헌병대장이 직접 서면경고조치하고 사단장에게 징계의뢰는 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3에 대해서는 ○군단 헌병대에서 징계권자에게 징계의뢰를 하였고 해당 부대 징계간사는 피진정인 3을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위반, 재량권 남용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징계권자인 사단장(사건 발생이후 부임)은 피진정

인 3에 대하여만 징계간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2007. 11. 19.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 대신 서면경고조치를 취하였다.

4.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진정인이 진정한 각각의 사항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벌금액 과다부과 및 수사사실 미통지의 부분에 대하여

이 사항은 피해자의 재판을 진행한 군사법원의 양형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액 과다부과와 관련된 피진정인 1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1항 7호에 따라 각하한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군사재판을 받게 배경 및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을 동의하지 아니하여 부대에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대에서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이와 같이 통보하지 아니한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지적한 피진정인 2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1항 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타살의혹의 부분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타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 6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부대 측의 진단서 허위발부 및 폭행사건 합의 종용 부분에 대하여

위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부대 측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폭행사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고 피해자 및 가해자의 부모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진단서 허위발부 및 폭행사건 합의 종용부분과 관련된 피진정인 3에 대한 진정 및 폭행사건 합의 종용과 관련된 피진정인4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1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피진정인 3 등이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제공했는지의 여부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부대에 전입한 이후 선임자들에게 수회 폭행과 폭언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고 군사법원에 회부되었다. 이와 같이 정신적으로 위축되어 불안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여 탈영이나 자해 또는 기타 정신적인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대와 병사를 관리를 지휘관의 책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3은 폭행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마치고 복귀한 피해자에 대하여 바로 폭행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휴가 5일을 제한하는 징계를 가하고 모든 분대장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하여는 앞으로 성과제 외박을 보내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언명을 하였다. 피진정인 3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성과제 외박을 다녀온 지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피해자가 2회에 걸쳐 폭행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규정에 따른 심의회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성과제 외박을 금지하였다. 피진정인 3의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심한 위축감과 고립감을 주었을 것이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친구가 사망했다는 허위보고까지 했을 것을 판단된다. 피진정인 3이 피해자의 허위보고를 듣고 취한 조치 역시 심리적으로 위축·고립되어 있는 피해자를 더욱 고립되게 한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피진정인 3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하여 그 자신에 대하여 총격을 가하여 자살을 감행하도록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해자가 자살을 하기 직전에 근무일지에 피진정인 3에 대한 반감을 적어 놓은 부분을 보면 충분히 짐작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3의 위와 같은 조치는 부대와 병사를 관리하는 지휘관의 성실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 4, 5의 행위는 피진정인 3의 경우와는 달리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게 된 직접적이거나 중요한 계기 내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실탄 및 열쇠보관함 관리지침에 의하면, 열쇠는 실탄을 사용하여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체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소대장 및 지휘관 등은 이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해당 부대는 진정인 5가 부임한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교육훈련을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훈련 소홀이 위와 같은 총기사고가 발생하게 된 하나의 원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피진정인 4, 5 등이 피해자의 사망을 방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배경과 원인을 가진 피해자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지휘책임(제1차, 제2차, 제3차)을 져야할 피진정인 3, 4, 5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서면경고를 받았다.

피진정인 4, 5에 대한 이와 같은 조치는 이들이 피해자의 자살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한 책임이 크지 아니하므로 서면경고만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진정인 3의 위와 같은 행위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 3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 피진정인 2의 조치는 부대장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된다.

마.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3은 위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서면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피진정인 3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해당부대의 상급지휘관인 수도군단장이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해당부대의 지휘관인 피진정인 2는 탄약관리에 대한 교육훈련을 포함하여 부대안전관리 대책을 보다 철저히 시행하여 추가적인 사망사고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39조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8. 2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6 08진인1451 [군내 차량구매 통제에 의한 인권침해] 2008. 8. 7. 결정

▌결정요지▐

육군참모총장에게, 간부 차량운행 제한 규정의 정비 및 초급간부에 대한 차량 소유 및 운행 제한을 중지할 것을 권고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진정인▐ ○○○

▌피진정인▐ 육군참모총장

▌주 문▐ 육군참모총장에게, 간부 차량운행 제한 규정의 정비 및 초급간부에 대한 차량 소유 및 운행제한을 중지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이 근무하는 ○○○사단(00사단)에서는 육군규정에도 없는 사단규정을 근거로 근무경력에 따라 차량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 즉 부사관의 경우 근무경력이 8년, 장교의 경우 근무경력이 4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개인 차량 구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타 부대의 경우 갓 들어온 직업군인도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것에 비해 20사단에서는 이를 불허하며 진정인에게 차를 팔라고 강요하고 다음에 또 그러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준다고 한다. 보안상 특별한 이유가 없이 경력에 따라 차량 구입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차량 구입제한은 바뀌어야 한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군 사령부 예하 각 부대의 차량보유 관련근거 및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군 사령부, ○사단, ○사단, ○사단, ○사단, ○○사단 및 ○○사관학교, ○○사관학교 등은 차량보유에 대한 제한이 없다. 반면 ○○○○사령부, ○○○○사령부, ○사단, ○사단, ○○사단, ○○사단, ○○사단, ○○사단, ○○사단, ○○사단 등은 지침 및 내규를 근거로 근무경력에 따라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제출 자료를 종합하면 진정인 주장과 같이 ○○사단의 경우 사단내규에 따라 부사관은 근무경력이 8년, 장교의 경우 4년이 경과해야 차량 구입이 허용되고 있음이 인정된다.

4. 판단

직업군인의 경우 개인차량은 단순히 출·퇴근용 이외에 휴가나 휴일에는 사적인 개인생활을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개인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써 제한하여야 하나, 개인차량 소유 및 운행을 사단규정, 학교내규, 지침 등으로 제한하는 등 법률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제○○사단의 경우 차량 소유 및 운행을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업무로 보아 교통사고가 날 것이 예상되어 차량 소유를 간부 초임자에게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위 간부 또는 장기 복무자, 결혼한 간부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차량소유와 운행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보아 사고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면에서 그 합리성을 찾을 수 없다. 또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 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 소유 및 운행 허가에 대하여 부사관 초임자의 경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부대부터 근무경력이 4년~9년이 경과하면 허가하는 부대도 있는 등 그 운영에 있어 일관성 및 합리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직업군인인 진정인에게 초급간부라는 이유로 개인

차량 소유 및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나 법적인 근거 없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및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육군참모총장에게 간부 차량운행 제한 규정의 정비 및 초급간부에 대한 차량 소유 및 운행제한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8. 8. 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7 09진인2083 [기소휴직 중인 군 형사피고인 복직거부에 의한 인권침해] 2009. 7. 20. 결정

▌결정요지▐

육군참모총장에게 진정인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및 제15조, 제27조

▌진정인▐ 김○○

▌피진정인▐ 육군참모총장

▌주 문▐ 육군참모총장에게 진정인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육군 부사관으로서 2008. 12. 3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2009. 3. 26.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군 검찰의 항소로 현재까지 복직되지 못하고 다른 영리활동도 하지 못한 채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진정인의 행복추구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군인사법」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는 봉급의 반액만 지급하며,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소된 진정인에게 휴직명령을 내리고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며,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진정인에 대한 복직명령은 불가하다.

3.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진정인은 육군○○사령부 ○○여단본부(통신병과)에서 근무하던 중 2008. 12. 31.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의 사기행위를 했다는 죄로 기소되어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 및 제49조 제2항에 따라 동 일자로 휴직되었다. 그 후 진정인은 2009. 3. 26. ○○군단 보통군사법원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009. 4. 2. ○○군단 보통검찰부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진정인에 대한 재판이 계류되어 있다.

나. 진정인은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2008. 12. 31. 기소이후부터 현재까지 휴직상태로 봉급의 50%를 지급받고 있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제1항 진정요지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무죄를 선고받은 후 항소기간 도중에 복직이 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기소휴직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면,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은 임용권자가 재량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부사관 등에 대하여 휴직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 제2항은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을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휴직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공소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피진정인은 기소된 진정인에 대하여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휴직명령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소휴직제도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으로 하여금 계속 공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무나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방지하고, 한편 피고인인

군인에게도 공무담당의 의무를 일시적으로 해제하여 소송담당자로서 공판과정에서 변론 준비 등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 자신을 보호하게 하기 위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므로 기소된 군인을 휴직시킬지의 여부는 사안별로 범죄의 직무관련성 및 중대성, 유죄판결의 개연성과 당사자의 계속적 직무수행 시 공정성과 위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다(헌법재판소 2006. 5. 25.결정, 2004헌바12, 대법원 1999. 9. 17.선고, 98두15412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내린 직위해제와 관련된 사안임).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관련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진정인을 복직하여도 기소휴직제도의 본래의 목적이 손상되지 아니할 수 있는 때에는 진정인을 복직시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

진정인에 대한 형사판결문 등을 토대로 진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본다. 우선 진정인에 대한 기소는 진정인의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와 관련되어 있으며 진정인은 병과가 통신이므로 금전적인 사고를 유발할 업무상의 위치에 있지도 않다. 또한 진정인에 대한 제1심 재판과정에서 범죄사실에 관련된 증거가 모두 상세히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의 주장 또한 충분히 심리되었고 그 결과 진정인이 계류중인 재판을 방어하는 데에 있어서 큰 노력을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반면 현재 진정인은 휴직상태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진정인이 휴직을 계속 유지함으로 인하여 확보되는 공공의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계속적인 휴직명령은「군인사법」등 관련규정을 적용함에 있어「헌법」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여 필요이상으로 재량권을 행사한 행위에 해당하여「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헌법」제1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로부터 연유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진정인의 복직명령권자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복직시키는 명령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기소휴직 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복직되지 못한 공군소속의 직업군인이 제기한 진정사건(06진인2994)에서 2007. 5. 28. 공군참모총장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권고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2009. 5. 27. 국방부 공고 제2009-61호로 기소휴직 후 확정판결 전이라도 복직이 가능하도록「군인사법」관련규정의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최윤희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헌법

가.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다.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2.「군인사법」

가. 제48조 (휴직) ②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나. 제49조 (휴직의 기간) ②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으로 한다.

3.「군인사법시행령」

가. 제54조(복직 및 권리회복) ①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되었던 자가 그 휴직의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②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공소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8 10진정2444 [본인 의사에 반한 부당한 퇴교조치] 2010. 7. 23. 결정

▌결정요지▐

육군부사관학교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이 사건 퇴교조치 명령을 철회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심의 할 것과 피진정인 5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및 제15조

▌진정인▐ 류○○

▌피진정인▐ 1. 성○○
2. 박○○
3. 윤○○
4. 이○○
5. 김○○
6. 한○○
7. 김○○
8. 정○○

▌주 문▐ 육군부사관학교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이 사건 퇴교조치 명령을 철회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심의 할 것과 피진정인 5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군 예비역으로 2010년 전반기 육군부사관과정에 2010. 3. 18. 합격하여 훈련 중 단순 감기증상으로 치료 중이었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의 어머니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자진퇴교서를 작성하여 부대에 제출하므로,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강제 퇴교시켰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2010. 3. 18. 육군부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양성 ○교육대 ○중대 ○소대에 배치되었는데, 같은 달 훈련 중 다른 교육생 보다 뒤쳐지고 취침시간에 취침을 하지 않고 우는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었고, 관찰 및 면담을 실시한 결과, 동료 교육생들과 공동생활을 하기 힘들어하고, 돌발행동 등 단체생활에 적응하기 곤란해 보였고, 이어 진정인의 모친과 통화한 결과, 진정인이 과거 정신 병력이 있었다는 것과 2009. 3월경 여군학사장교 입교 시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퇴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010. 3. 22. 진정인을 의무대에 입원시켜 관찰한바, 자신의 질병치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타인의 질병관계에 신경을 쓰고, 의무병, 교도대원들과 '땅따먹기' 게임을 하는 등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임에 따라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병원에 후송하여 진단한바, 조울증 의증 증세가 보였으며, 진정인의 어머니와 통화한 바, 예전에 정신질환을 앓았으나 다 낳은 것 같았는데, 다시 증세가 발병된 것 같다고 하고, 같은 달 24. 07:50경 어머니가 학교에 도착하여 진정인을 무작정 데리고 가려 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신속한 퇴교조치를 위하여, 진정인에게 퇴교를 희망하는 본인 진술서를 쓰도록 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쓰다가 찢어버리고 퇴교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 머뭇거리자 진정인의 모친이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진정인을 대신하여 진술서를 써 제출하였고, 진정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므로, 퇴교심의 및 건의 등 지휘 및 행정절차를 밟아 본인 희망을 이유로 하는 퇴교명령을 내리고, 2010. 3. 25. 진정인에 대해 퇴교 조치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소명서, 육군부사관학교장이 제출한 인사명령서, 후보생 퇴교건의서, 훈육심의의결서, 지휘관의견서, 진정인의 신상명세서, 관심후생 면담 및 관찰결과, 진정인 어머니 작성의 본인진술서 및 동의서, 육군

부사관학교 교육훈련예규,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지조사결과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진정인은 2010. 3. 18. 육군본부 인력회득과의 입교명령에 의거 육군부사관학교에 입교하여, 동 학교 양성 ○교육대 ○중대 ○소대에 배치되었고, 동 소대 훈육관인 피진정인 8은 같은 달 20. 교육훈련 중 진정인 다른 교육생 보다 뒤처지고, 취침시간 중 취침을 하지 않고 우는 등의 이상행동을 발견하고 정밀관찰 및 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진정인이 동료 훈련생들과 생활하기 힘들어하고, 돌발행동을 하는 등 단체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 보임에 따라, 보호자인 진정인의 모친 박○○(57세) 통화한 바,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는 사실과 2009. 3월경 여군학사장교 입교 후에도 위와 같은 병력을 이유로 퇴교 조치된 사실을 인지하였다.

나. 이에 따라, 간호장교 대위 송○○는 2010. 3. 22. 진정인을 동 학교 의무대에 입원시켜 관찰할 바, 정신과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논산병원에 후송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였고, 그 결과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진정인이 조울증 의증 증세가 보이므로, 정밀감정을 위해 ○○병원에 최종 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육군부사관학교에서는 이를 진정인의 모친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진정인의 모친이 2010. 3. 24. 07:50경 육군부사관학교에 급히 도착하여, 진정인을 최대한 신속히 귀가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자, 피진정인 8은 육군부사관학교「교육훈련예규」에 의거 퇴교조치가 비교적 손쉬운 단순 서면심사를 방법을 택하여, 진정인에게 퇴교를 희망하는 본인 진술서를 쓰도록 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쓰다가 찢어버리고 명확한 퇴교의사를 밝히지 않자, 진정인의 모친이 진정인을 대신하여 “개인 심경변화 및 부모님의 요청으로 인해 임관 불 희망을 신청합니다.”라는 취지의 ‘본인진술서’를 작성하고, 본 문서에 진정인의 성명을 적고 허위로 서명을 하여 피진정인 8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진정인 8은 위 ‘본인진술서’를 중대장인 피진정인 7에게, 피진정인 7은 이를 양성 2교육대장인 피진정인 5에게 전달하였고, 피진정인 7, 8은 2010. 3. 24. 09:00경 위 전달과정에서, 진정인이 본인진술서를 쓰지 않아 진정인을 대신하여 어머니가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이를 보고 받은 피진정인 5는 별다른 설명 없이 행정보급관을 통해 인편으로 위 본인진술서, 진정인의 신상명세서와 진정인이 조울증의증, 심심장애, 부모님 요청 등에 의해 퇴교함이 상당하는 취지의 의견을 기재한 지휘관의견서를 육군부사관학교 교육단 정작과장인 피진정인 4에게 송부하였다.

마. 당시 교육생 퇴교 및 심의 시 동 학교 교육단 퇴교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맡아 회의를 주관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퇴교 건의 업무를 담당하던 피진정인 4는 피진정인 5에부터 송부 받은 진정인의 퇴교 건은 본의희망에 의한 것이기에 육군부사관학교 「교육훈련예규」 제33조에 의거 퇴교절차 상 관련 서류상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훈육심의의결서 및 후보생 퇴교건의서를 작성하여 교육단장인 피진정인 1의 결재를 받아 육군부사관학교 참모부 교무과에 퇴교 건의를 하였다.

바. 이에 퇴교건의를 접수받은 훈련지원장교 피진정인 3은 2010. 3. 24. 오후 소속 교무과장 및 교수부장의 결재를 받아 진정인에 대해 본인 희망을 사유로 교육생 퇴교 명령발령을 부관과에 통보하였고, 피진정인 행정보급관 피진정인 6은 부관과장인 피진정인 2와 최종적으로 육군부사관학교장인 소장 김ㅇㅇ의 결재를 받아 2010. 3. 25. 퇴교명령(인사명령'후보생' 부사관 제ㅇㅇ호)을 발령하였다.

4. 판단

가.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로써 모든 국민은 그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비록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이러한 권리와 자기책임의 원리로부터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연유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 5. 27. 97헌마137, 1990. 9. 10. 89헌마82, 2004. 6. 24. 2002헌가27)

나. 이 사건 피진정기관인 육군부사관학교는 진정인의 심심박약 및 자질부족 등 이유로 교육훈련 부적격 조치를 취하려하였다면, 육군부사관학교 「교육훈련예규」 제33조 및 동 학교 행정예규 112- 30조의 규정에 정한 퇴교심의 절차에 따라 전문의사의 진단 및 소견, 당사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학교교육운영위원회에서 적절한 심사를 거쳐 퇴교 조치를 취하여야 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인의 어머니에 의해 대리 작성된 본인진술서에 의거하여 퇴교명령을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와 같은 퇴교명령 과정에서 대리 작성된 본인진술서를 피진정인 7과 8이 피진정인 5에게 전달하면서 그 작성경위를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5는 이를

알고도 피진정인 4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면서 그 사정을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서면 심사절차에 따라 이하 관련 피진정인들이 관련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마치 본인희망에 의한 것처럼 부적절하게 퇴교명령을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라. 따라서, 위 피진정인 중, 피진정인 5는 육군부사관학교「교육훈련예규」제33조 및 동 학교 행정예규 112- 30조의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퇴교조치 절차를 위반하고, 이하 관련 피진정인들이 이에 대한 확인과정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적절하게 퇴교 조치를 함으로써,「헌법」제10조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연유하는 진정인의 자기결정권과, 같은 법 제1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이 사건에 대한 조치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피진정인 4등 퇴교심의 및 건의, 그리고 인사명령 계통에 있었던 대부분의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퇴교 조치함에 있어 당시 관련 서류가 대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에 그 주의의무의 소홀함에 대하여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고, 또한 피진정인 7, 8의 경우에도 그 작성경위를 피진정인 5에게 보고했던 점에서 책임을 묻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나, 당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피진정인 5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크다 할 것이므로, 소속 기관장에게 인사상의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진정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조치를 살펴보면, 진정인의 퇴교조치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하자는 명백히 진정인이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 의해 작성된 서류에 근거한 것으로 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육군부사관학교는 해당 명령을 철회하고, 재심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황덕남 위 원 한태식

9 12진정329 [군대내 과도한 금연 강요] 2012. 3. 6. 결정

▌결정사항▐

[1] 국방부장관에게, '금연부대'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지휘관들이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2] ○○○사령관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

[3] ○○부대장에게, 장병들에 대한 강제 금연조치를 해제하고 흡연을 이유로 징계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금연부대 운영은 인센티브 부여 등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피진정인이 소속부대 장병들에게 일률적으로 금연서약서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부대 내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 등 조치를 취하여 장기간 흡연을 금지한 행위는, 비록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운영과정 상 정도를 지나쳐 결국 지휘권을 남용한 것이며 소속부대 장병들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참조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7조, 「군인복무규율」 제19조·제22조 제1항

▌진정인▐ ○○○

▌피진정인▐ ○○○

▌주 문▐ 1. 국방부장관에게, '금연부대'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지휘관들이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2. ○○○사령관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3. ○○부대장에게, 장병들에 대한 강제 금연조치를 해제하고 흡연을 이유로 징계처분 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부대장인 피진정인은 부대원들의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국방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금연부대를 운영함에 있어 장병들에게 권장의 수준을 넘어 강제적으로 금연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에는 휴가 및 외출을 금지하는 등의 징계처분으로 장병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국방부의 '2011년도 군 건강증진 추진 계획'과 '2011 금연 희망부대 파악'공문에 따라 이에 신청하여 금연집중관리부대로 지정되었다. 이후 금연교육, 진료, 홍보 및 토론회 등 자율적 금연운동을 추진하였고, 2011. 10. 13. 육군 '전체금연부대'로 재지정되어 추가적인 성과평가 및 기량대회 등을 거치는 등 금연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과 소통을 하였다.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하던 흡연을 2012. 1. 1. 종료하고 전 부대원에 대한 금연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전 부대 금연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4항과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고, 금연지시를 위반한 장병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군인복무규율」제23조(복종 및 실행) 규정에 따라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으로 징계한 것이다.

개인의 기호품을 강제로 억압할 필요는 없으나, 흡연이 개인에게 해가 되고, 사회적으로도 금연을 정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구와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평화와 인권문제까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금연은 필수라고 판단하고, 지휘관으로서 관련규정 내에서 정당한 명령으로 금연 운동을 추진하였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부대 중 희망부대를 '전체금연부대'로 선정하여 지휘관을 중심으로 흡연과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육군훈련소 훈련병은 오래전부터 사실상 금연을 해오고 있으므로, 퇴소 후 야전부대에서도 금연을 시행하면 장병 흡연율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지휘관 의견서, 금연부대 지정 관련 공문, 금연부대 관련 추진계획 보고서, 금연운동 활성화 추진방안, 금연교육 관련 계획서, 금연 및 우수부대 선발결과서, 금연서약서, 금연관련 징계의결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협회(민간단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11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아 금연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방부에 희망부대를 파악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국방부 ○○○과는 2011. 4. '2011년 금연희망(전체금연, 집중관리) 부대 파악(지시)'라는 문서를 육군본부 등에 하달하였고, 육군본부 ○○○과는 같은 문서를 예하 각 군사령부 및 각 사단 등에 하달하였다. 위 문서에 의하면 육군의 경우 '집중관리부대(53개)'는 현재 흡연율의 50% 감소, '전체금연부대(22개)'는 전체흡연율 5%이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 진정인이 부대장으로 있는 ○○부대는 연대급 규모의 부대로 2011. 4. 금연부대 지정을 요청하여 선정된 후 2011. 7. ○○처에서는 흡연자에 대하여 흡연 적발 시 벌금(간부 5,000원, 병 500원) 집행 및 금연침 시술 등의 계획서를 지휘관인 피진정인에게 보고하였고, ○○처는 자진신고 및 손 검사(냄새) 등의 계획서를, ○○대는 금연포기나 불희망 시 가족동의서를 제출토록 하는 계획서를, ○○대는 병사들의 담배와 라이터 회수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예하부서(대)가 각 '전원금연 개시계획서'를 보고 및 제출하였다.

라. ○○부대 인사처는 2011. 7. '단 금연운동 지침'을 시행하면서 2011. 8. 1.부로 부대 내 전지역(울타리 내)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각 흡연 장소 폐쇄, 재떨이 철거 및 PX내 담배판매 금지를 실시하였다.

마. ○○부대 지원과는 2011. 12. 30. '흡연자 처벌기준 확립'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기안하여, 병사에 대하여 흡연 1회 적발 시 '포상휴가증 회수, 3개월간 포상휴가권 박탈, 1개월간 출타금지', 흡연 2회 이상 적발 시 '3개월간 출타금지, 정기휴가를 제외한 모든 출타금지' 등의 처벌기준을 마련하였다.

바. ○○부대 △△대대 장병 약 450명은 2011. 8. 1. 금연서약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후 소속 병사 7명에게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각 근신 7일, 휴가제한 3일 등의 징계처분한 사실이 있고, △△대 등 지휘부의 장병 약 58명은 2012. 1. 1. 금연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사. 2011. 12. 22. 작성된 ○○부대의 '금연 및 종교활동 우수부대 선발결과' 문서에 따르면 병들의 경우 9개 부대 중 6개 부대가 금연성공 100%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판단

가. 이 사건 관련 기본권에 대하여

개개인이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법 또는 사회적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즉 일반적 자기행동결정권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 자기행동결정권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서 파생되는 기본권이며, 또한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가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 영역에 해당하여, 타인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형성할 권리라고 본다면,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에 관련된 기본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장병들이 흡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 결정, 즉 흡연권은 헌법상 자기행동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권리이다.

나. 금연이 장병들의 자발적 의사인지 여부

피진정인은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소속부대 장병들의 금연이 금연교육과 홍보, 인식전환 노력과 소통을 통하여 진정인 등 장병들이 스스로 적극 동참한 결과라고 해명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정인을 비롯한 간부 및 병사 약 490여 명이 거의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금연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부대 울타리 내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점, 금연율이 100%라고 보고한 예하부대가 총 9개 중 6개에 이르는 점, 금연서약을 어길 경우 벌금을 걷거나 냄새 검사를 하고, 가족에게 통지하는 등의 일정한 제재 방침을 마련하고 있는 점, 실제 흡연을 이유로 9차례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자에게 근신, 휴가제한 등의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장병들의 금연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국방부와 ○○○협회의 금연 관련 계획에 의하면, 군 장병에 대한 금연 사업은 금연클리닉운영, 보조제, 교육지원, 성공자 포상 등 장병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 형식으로 계획된 것이나, 피진정인은 이를 포상이 아닌 불이익을 주는 방법 등 강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금연 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법률 등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하다. 금연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각호에 위 법에서 위임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군부대 내 시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한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연시설을 지정할 정당한 권한을 법률에서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있어서, 흡연으로 인하여 타인의 혐연권과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흡연 장소를 분리하고자 하는 목적이지, 혐연권을 이유로 흡연권 일체를 부인하려는 취지가 아니며, 흡연자는 금연시설로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다른 장소에서 흡연을 하거나, 금연구역에 머무는 시간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과도한 흡연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지만, 피진정인이 영내 생활관, 무기고 등 필요한 장소에 대한 합리적 제한이 아니라, 24시간동안 부대 내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행위는 법적인 근거 없이 흡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라. 금연 명령의 적성성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흡연으로 적발된 장병을 복종의무위반으로 징계처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군인복무규율」 제19조의 '명령'은 상관이 부하에게 발하는 직무상의 지시를 말하고, 제22조 제1항에선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자기 권한 밖의 사항 등은 명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명령의 범위를 직무상의, 법규 및 상관의 정당한 명령 이내에서, 자기 권한 내의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비춰볼 때 군 본연의 임무 특성에 따른 전시, 훈련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평시 장병들의 흡연과 그 직무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행동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일반인은 물론 군 장병에게도 차별 없이 보장하고 있으므로, 장병들의 적정한 흡연행위에 대한 제한은 군 지휘관의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마. 소결

금연부대 운영은 본래의 취지대로 성공한 장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소속부대 장병들에게 일률적으로 금연서약서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부대 내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장기간 흡연을 금지한 행위는, 그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운영과정에서 정도를 지나쳐 결국 지휘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는 소속부대 장병들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 원 장주영 위 원 윤남근

[별지] 관련규정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
3.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교사)
7.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8.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10.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1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13.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1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청사
16.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 ① 공중이용시설중 청소년·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사
2.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3. 제6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중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무실·회의장·강당 및 로비
2.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객석,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3.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의실,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
4.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
5.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의 현관 및 로비
6.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7.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람석 및 통로
8.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및 사무실
9.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공항·여객선터미널·역사 등의 승객 기실 및 승강장,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승강장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10. 제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의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
11. 제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2. 제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심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3. 제6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4. 제6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청사의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군인복무규율」

제19조(명령) "명령"이라 함은 상관이 부하에게 발하는 직무상의 지시를 말하며, 발령자의 의도와 수명자의 임무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제22조(발령자의 책임) ① 발령자는 건전한 판단과 결심하에 적시 적절한 명령을 내려야 하며,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기 권한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된다.

10 13진정8738 [군 부대 내 부당 처우에 의한 인권침해] 2014. 11. 28. 결정

▌결정사항▐

[1] 피진정인 소속 부대장에게, 피진정인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OOO사령관에게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의 휴가, 외출, 외박 등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

▌결정요지▐

[1] 피진정인이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지 못한 부대원들에게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진정인 및 소속부대원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됨

[2]「장병 태권도 업무 지침」은 OOO사령부 소속부대원 전원에 대하여 적법한 근거 및 사유 없이 태권도 단증 미취득 시 포상휴가 및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병사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되므로 동 지침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0조,「군인복무규율」 제42조,「부대관리훈령」 제397조

▌진정인▐ ○○○

▌피진정인▐ ○○○

▌주 문▐ 1. 피진정인 소속 부대장에게, 피진정인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사령부에게,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의 휴가, 외출, 외박 등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은 각 기각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사령부 교육훈련단 제○○예비군관리연대 ○대대 소속 행정병인 진정인은 대대장인 피진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못한다며 모욕적인 말을 하였으며, 결산회의에서 병사들에게 강제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하였고 빨리 말하지 않으면 발언시간을 1분씩 늘리겠다며 스트레스를 주었다.

나. 피진정인은 태권도 단증이 없는 병사들의 포상휴가와 외출·외박을 제한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태권도 단증이 없는 병사들에게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은 2013. 10. 14. 대대장으로 보직한 후 행정병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어 “너 일 이 정도로 밖에 못하겠냐?”, “니가 행정병 맞느냐?”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진정인은 목소리가 크고 경상도 억양이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오해했을 수는 있으나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진정인은 결산 중에 장병들 신상면담의 기법 중 하나로 5분 스피치라는 명목 하에 어떤 주제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한 적 있다. 통상 면담을 하면 간부가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물어보고 교육할 것만 교육하는 등 제한이 있어 들어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취지였으나, 의도하지 않게 병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다.

2) 피진정인은 연대 인사지침과 ‘13년도 장병 태권도 업무지침에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와 관련하여 ‘병은 1~3개월 지연진급 적용(지휘관 재량), 각종 포상휴가 및 외출·박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기휴가 이외의 출타는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 있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병사들이 오해를 하여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못했을 수는 있을 것 같다.

다. 관계인의 진술요지

1) ○○○사령부의 의견

현재 국방부는 훈령으로 전 장병이 태권도를 수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태권도 목표수준 유지를 위해서 제한사항을 두고 있다. 이에 OOO사령부는 법적 휴가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07년도 ~ '13년도까지 각종 포상휴가 및 외출·외박을 제한하고 있으나, 종교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한사항을 두지 않으면 장병들이 태권도 수련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며, 제한을 두지 않고 합격자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특혜를 원하는 장병들만 태권도 수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목표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국방부의 의견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취득 시까지 각종 포상휴가 및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것은 「군인복무규율」 제42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출·외박 또는 휴가를 일시 보류할 수 있는 자인 기타 지휘관이 일시 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볼 수 없다.

3) 부대원들의 진술

해당 부대원들의 진술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문답서, 국방부, ○군본부, ○○대사령부 및 ○○○사령부 교육훈련단의 태권도 업무 관련 지침, ○대대 9월·10월·11월 현역병 출타·종교활동·복지시설 이용 현황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2013. 5. 10. ○○○사령부 교육훈련단 제○○예비군관리연대 ○대대에 전입하였고, 피진정인은 같은 해 10. 14. 위 부대 대대장으로 전입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같은 해 11. 일자불상경 진정인에게 "군대가 중요하냐, 할머니가 중요하냐, 이럴거면 군대는 왜 왔냐?"라고 하였고, 진정인을 포함한 병사들에게 업무에

실수가 있을 시 "너 일 이 정도로 밖에 못하겠냐?", "니가 행정병 맞느냐?", "찐빠(실수를 하였을 때 어리석다는 뜻의 용어)"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결산 회의 중 부대원들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듣기 위하여 부대원들에게 자유롭게 발언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사령부는 '13년도 장병 태권도업무 지침에 따라 장병들에게 태권도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위 지침에는 병사의 경우 '①병장 1~2개월 지연진급 적용(지휘관 재량), ②각종 포상휴가 및 외출·박 제한'이 기재되어 있으며, '본 지침에 따라 계급별(개인) 유단 미취득시 제한사항을 강력히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의 '13년도 군 태권도 업무지침에는 태권도 무단자에 대한 제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본부의 '12년도 장병 태권도 활성화 업무지침 시달에는 태권도 승단 시 각종 포상 및 특전 기회 우선부여하고, 병의 경우 포상휴가 및 외출·박을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마. 피진정인은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에게 규정된 정기휴가 이외의 출타는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대대 소속 병사들은 2013. 10. 14.부터 11. 26.까지 포상휴가 3건, 외출·외박 7건을 사용하였고 이 가운데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가 사용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바. 피진정인은 포상휴가 및 외출·외박 제한 이외에 자의적으로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지 못한 부대원들에게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사. 피진정인이 대대장으로 전입오기 전인 2013. 9. 1.부터 10. 13.까지 태권도 단증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병사들은 복지시설을 1회 이용하고, 종교활동에 3회 참여한 것이 확인되나, 피진정인의 전입 직후인 2013. 10. 14.부터 11. 26.까지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는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였다.

아. 국방부는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취득 시까지 각종 포상휴가 및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경우 「군인복무규율」 제42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출·외박 또는 휴가를 일시 보류할 수 있는 자인 기타 지휘관이 일시 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볼 수 없어 「군인복무규율」에 반한다는 의견을 2014. 11. 10.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다소 강경한 언행을 표출하고, 결산 회의 시 일정시간 동안 발언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인을 포함한 부대원들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는 있으나, 더 나아가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태권도 교육은「부대관리훈령」에 따라 부대원들의 강인한 전투체력을 유지하며 부대원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부여하여 군의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부대차원의 교육으로, 이는 적의 도발 등 전시상황에 적진에 침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군대 내의 필수적인 교육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훈령은 태권도를 필수 교육과목으로 채택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태권도 교육 시행' 자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부대 전투력 강화차원에서 태권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태권도 단증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부대원들에게 태권도 단증 취득에 대한 의무까지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령부가 소속 부대원들이 적절한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상을 시행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대원들의 책임범위에서 벗어난 부분, 즉 태권도 단증 미취득에 대해서 개별적인 책임을 묻고 이에 대한 조치로 휴가 등의 행정적인 제재를 가한 것은 태권도 교육의 장려를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방법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군인복무규율」은 지휘관이 부대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 부대원의 외출·외박 및 휴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환자', '형사 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혐의자', '기타 지휘관이 일시 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시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혜택을 주는 것과는 달리, 취득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각종 포상휴가 및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것은 위 규정

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령부는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에 대한 휴가 및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취지의 지침을 하달하였고 피진정인 소속부대는 이를 시행하고 있는 바, ○○○사령부의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에 대한 휴가 및 외출·외박 제한제도 자체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인정사실 마.와 같이 피진정인이 태권도 단증 미취득 시 출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의 포상휴가 또는 외출·외박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진정인이 해당 지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포상휴가 또는 외출·외박을 제한받았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1) 복지시설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여부

피진정인은 소속 병사들의 오해로 인하여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소속 부대원들은 일관되게 피진정인이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의 대대장 전입 이전과는 달리 대대장 전입 이후인 2013. 10. 14.부터 11. 26.까지 소속부대원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바 결국 이러한 결과는 피진정인의 복지시설 이용 제한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속 부대원들의 일반적인 행동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법한 근거와 함께 이에 대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태권도 단증 취득의 의무도 없는 소속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단증 미취득'라는 사실상의 이유를 들어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였으며, 피진정인의 이러한 제한은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에게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부대원들의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2) 종교활동 참여 제한으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

피진정인은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지 못한 부대원들에게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지 못한 소속 부대원들은 피진정인이 전입한 2013. 10. 14.부터 11. 26.까지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종교의 자유는 어느 누구나 자신의 종교활동을 하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않을 자유가 보장되는 절대적인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다. 비록 피진정인은 종교활동까지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소속 부대원들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이러한 취지의 지시를 전달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며, 군과 같은 상명하복이 엄격히 적용되는 조직문화에서 소속 대대장이 이러한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고 한다면 소속 부대원들은 종교활동에 대한 심리적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2013. 10. 14.부터 11. 26.까지 한명도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진정인은 종교활동 제한에 대한 적법한 근거도 없이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하에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에 대하여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것이다.

라. 조치의견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지 못한 부대원들에게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진정인 및 소속부대원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 소속 부대장에게 피진정인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에 대한 포상휴가 및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부대에서의 실질적 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기각함이 적절하다. 그러나 ○○○사령부의 '장병 태권도업무 지침'은 ○○○사령부 소속부대원 전원에 대하여 적법한 근거 및 사유 없이 태권도 단증 미취득시 포상휴가 및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병사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되므로 ○○○사령관에게 동 지침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면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OOO사령관에게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 부대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기

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2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영하 위 원 이선애 위 원 최이우

[별지] 부대원들의 진술

1. ○○○의 진술

피진정인은 대대장실에서 결산 시 진정인이 조금만 잘못해도 “이러면 찐빠지” 하며 자주 ‘찐빠(실수를 하였을 때 어리석다는 뜻의 용어임) 찐빠’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2013. 10. 14. 이전에는 태권도 단증이 없더라도 진급만 누락되었고, 복지시설 이용은 허용되었으나 현재는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외출, 외박, 복지시설 이용, 포상휴가가 금지되고 있다. 이는 연대장 지시사항으로 상병 8호봉부터 병장까지 진급누락이 되면 외출, 외박, 포상휴가를 못나간다고 들었다.

참고인은 2013. 11. 10. 피진정인에게 병장 ◉◉◉의 복지시설 이용 현황이 기재된 ‘생활반장 일지’ 검사를 맡았는데, 피진정인은 “태권도 단증도 없는데 무슨 복지시설이냐”면서 태권도 단증이 없으면 복지시설을 이용 금지한다는 내용을 전파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참고인은 그럼 “이등병, 일병도 금지시킵니까”라고 질문하자, 피진정인은 태권도 단증이 없으면 이등병이든 일병이든 금지시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3. 11. 11. 이후부터 12. 4. 현재까지 태권도 무단자는 외출, 외박, 복지시설 이용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2. □□□의 진술

참고인은 피진정인이 인격모독 및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태권도 단증이 없는 병사들에게 포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가족 외박, 친구 면회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주말에 복지시설, 종교활동을 못하게 하였으며 이는 이병부터 병장까지 모든 병력에게 적용되었다.

참고인은 태권도 무단자로서 2013. 11. 중순이후 복지시설을 가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였으며, 태권도 무단자는 11월 중순 이후로 상급부대인 사단에서 받은 휴가자를 제외하고 한명도 포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종교활동을 하는 자인데 태권도 무단자라는 이유로 종교활동도 가지 못하였다.

3. ●●●의 진술

피진정인은 병사들이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맘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였다. 피진정인은 병사들에게 직접적으로 욕을 하는 것은 아니었고, ‘이런 콩가루 부대가 다 있나’라는 등의 말을 하는 정도였다. 이전 대대장은 병사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었는데 피진정인은 그런 태도가 전혀 없어 병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태권도 단증을 따지 못하면 외출이나 휴가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술인도 휴가를 신청할 자격은 되었으나 당연히 나가지 못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

4. ■■■의 진술

참고인은 피진정인이 병사에게 직접 욕을 하는 것을 본적은 없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병사가 해놓은 일이 자신의 맘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화를 내면서 "씨발" 같은 말을 하기도 한다.

병사들은 태권도 단증을 따지 못하면 포상휴가, 외출·박, 복지시설 이용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며, 주말에 허용되는 종교 활동도 하지 못한다. 또한 병사들은 11월부터 포상이나 외박, 외출, 복지시설 이용, 종교활동이 불허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였음.

참고인은 본래 종교활동을 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복지시설은 자주 이용했는데 현재는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의 진술

피진정인은 말투가 무뚝뚝하고 자주 짜증을 내는 스타일이다. 참고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군대가 중요하냐, 할머니가 중요하냐, 이럴 거면 군대는 왜왔냐'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으나 직접적인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

참고인은 태권도 단증 미취득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단증이 없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병사를 위해 복지시설에 가서 라면 이나 과자류를 사다주는 심부름을 해주기도 하였다.

11 16진정4707 [부당한 군기교육대 운영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16. 9. 28. 결정

▌결정사항▐

[1] 국방부장관에게, 각 군의 '얼차려 규정[1]'에 얼차려 시행 시기를 명확히 하고, 각 부대 얼차려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병사들의 휴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

[2] 육군 00사단장에게, 피진정인 2를 경고 조치하고, ○○봉사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규율위반 병사들을 '○○봉사대'라는 이름으로 주말에 집합시켜 얼차려를 시행한 행위는 병사들의 휴식권을 침해한 것임

▌참조조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 금지) 및 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 육군 규정 120 "얼차려규정" 제46조(얼차려), 해군규정 2-1-6 "군기교육" 제67조의2 군기훈련, 공군규정 2-24 "사랑의 벌" 제49조의3

▌진정인▐ ○○○

▌피해자▐ 1. ○○○, 2. ○○○, 3. ○○○, 4. ○○○
5. 00사단 000연대 병사들

▌피진정인▐ 1. ○○○, 2. ○○○, 3. ○○○, 4. ○○○, 5. ○○○

▌주 문▐ 1. 국방부장관에게,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각 군의 '얼차려 규정'에 얼차려 시행 시기를 명확히 하고, 각 부대 얼차려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병사들의 휴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육군 00사단장에게,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2를 경고 조치하고,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봉사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 라, 마항은 각 기각한다.

---

1) 육군- 얼차려 규정(육군규정 120), 해군- 군기교육(해군규정 2-1-6), 공군- 사랑의 벌(공군규정 2-24)

▌이 유 ▐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소속부대 대대장으로서 2016. 3. 일요일에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부대 밖 관사로 담배를 가져오라고 하고, 피해자 1에게 부대 운영비로 족발, 순대를 구입하여 부대 밖 관사로 가져오라고 하였으며, 기타 회식 강요, 성과 상여금 거출, 화투놀이 등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피해자 1에게 2015. 9. 전술훈련평가 및 2016. 5. 유격훈련 중 병사들 앞에서 "니가 병사냐?"며 모욕적 발언을 하고, 피해자 2에게 2016. 4. 사무실에서 수첩을 던지고 책상을 치면서 폭언을 했으며, 피해자 3에게 2015. 6. 볼링장에서 '건방지다'며 슬리퍼로 머리를 폭행하였다.

다. 피진정인 3은 부대 안에 보행금지구역을 설정한 후 병사들(피해자 5)이 위반하면 위법적으로'ㅇㅇ봉사대'라는 군기교육대에 입소시키고, 주말에는 강제로 동아리 활동을 실시하여 병사들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 4는 2016. 5. 피해자 4가 무전기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4의 머리를 폭행하였다.

마. 피진정인 5는 피진정인 4의 폭행 행위에 대하여 은폐하려 하였으며, 위 진정요지를 포함하여 부대 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의 주장

1) 피해자 1(본부중대장)의 주장

피진정인 1.로부터 2016. 3. 일요일에 전화를 받고 대대장 방에 있던 담배를 부대 밖의 관사에 가져다 준 적이 있고, 2016. 4. 피진정인 휴가기간 중 순대 등을 사오라고 하여 부대 밖 관사에 사다 준 적이 있으며 여러 부당한 지시를 받고 강요당하였다.

피진정인 2가 2015. 9. 연대전술훈련 평가 중 병사들 앞에서 장교 신분인 본인에게

소리를 질러 지휘관으로서 수치심을 느끼고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다. 2016. 5. 유격훈련 중에도 "니가 병사냐?"고 하여 지휘하고 있는 병사들 앞에서 간부로서 모욕을 당하였다. 적절한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

2) 피해자 2(군수과장)의 주장

피진정인 2와 배차 문제로 혼선이 발생하였는데 야간에 전화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었다. 다음날 아침 간부회의에 갔는데 피진정인 2가 본인에게 수첩을 던진 바 있다.

피진정인 2가 피해자 1에게 병사들 앞에서 '니가 그러고도 장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 1이 사단장과의 대화에 글을 올리고 싶다고 한 적이 있다. 적절한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

3) 피해자 3(0중대장)의 주장

피진정인 2에게 2015. 봄 경 볼링장에서 머리를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

4) 피해자 4(동원훈련과 병사)의 주장

피진정인 4에게 2016. 5. 말 무전기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과 뒤통수를 폭행당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5와 면담 시 피진정인 4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바 있다.

5) 피해자 5(소속부대 병사들)의 주장

- 피해자들은 샛길로 다니는 행위, 생활관에서 라면을 취식하는 행위, 국기강하식 때 경례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의 사유로 ○○봉사대에 입소하게 되어 휴무일인 토요일에 배수로 정비, 잡초 제거, 취사장 청소 등을 하였다.
- 위 행위들이 규율에 저촉된 행위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다른 병사들도 하는 행위라서 무의식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한 적도 있다. 또한 규율 위반자 모두가 ○○봉사대에 입소하는 것도 아니어서 입소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하고 입소기간도 1주, 3주 등 각기 달라 명확한 기준이 없이 정해지는 것 같다.
- 주말에 집단으로 입소하여 군기교육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말 휴식시간이 날아가고 계획된 외출·면회 등을 통제당하는 것도 부당하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 1의 주장

진정요지 가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진정인

의 주장을 일정 부분 인정하며 대대장직에서 보직해임되어 현재 사단에서 대기하면서 자숙하고 있다.

2) 피진정인 2의 주장

피해자 1, 2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언행이 있었다면 사과를 표한다. 피해자 2에 대하여는 배차 신청한 것을 처리해 주지 않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2가 변명하여 수첩을 던지고 책상을 친 사실이 있다.

피해자 3에 대하여는 볼링장에서 신발로 머리를 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사과하였다. 피해자 3에게 재차 사과의 마음을 표한다.

3) 피진정인 3의 주장

보행금지구역 설정은 2015. 5. 피진정인 5가 연대장으로 부임한 후 '용사들 제식이 불량하다. 주도로를 이용해서 제식 대열을 맞추어 다니도록 하라'고 지시하여 연대장의 주무참모로서 이를 중대장들에게 강조하고, 용사들에게도 설명 후 시행한 것이다.

○○봉사대(주말 군기교육대)는 2012년 이전 연대장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근거는 육군규정 120 얼차려 규정이며, 다른 부대에서 시행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주말 동아리 활동은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다.

4) 피진정인 4의 주장

피해자 4의 근무가 태만하여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연대장에게 서면경고를 받았다. 유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5) 피진정인 5의 주장

피진정인 4의 폭행사건은 피해자 4와 면담을 통해 피해당사자 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한 것이며, 부대관리에 평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육군규정 120(얼차려 규정), 해군규정 2-1-6(군기교육), 공군규정 2-24(사랑의 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도 ○○○시 소재 육군 00사단 000연대 2대대 대대장으로서

2016. 3.경부터 본부중대장인 피해자 1에 대하여 담배, 간식 심부름, 회식 강요, 성과상여금 거출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의 행위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진정을 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전인 2016. 7. 8. 피진정인 1.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후 국방부 조사본부에 피진정인 1의 비위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할 것을 통보하였다. 피진정인 1은 사단의 감찰조사 후 2016. 7. 15. 대대장직에서 보직해임되어 현재 사단본부에 대기발령 중이다.

다. 피진정인 2는 2015. 6. 연대전술훈련 및 유격훈련 시 피해자 1에게 면박을 준 사실이 있고, 2016. 2.경 배차를 해주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2에게 수첩을 던진 사실이 있으며, 2015. 6. 볼링장에서 피해자 3에 대하여 '건방지다'며 슬리퍼로 머리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

라.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5가 2016. 5. 연대장으로 부임한 후 '용사들 제식이 불량하다. 큰 도로로 제식을 맞춰 다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행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시행한 사실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토요일에(09:00~12:00) ○○봉사대에 입소하도록 하고 있다.

마. ○○봉사대 운영은 전임 연대장 때인 2012.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6. 1. ~ 7.간 입소자는 143명으로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월	인원	입소사유	부과벌칙
1월	3명	음주 후 휴가복귀, 베레모 미착용	1주~4주 배수로 정비, 잡초 제거, 청소 등
2월	6명	규정시간 외 냉동식품 취식, 이동로 미준수	
3월	1명	지시불이행	
4월	58명	군기본자세불량(중대장 건의), PC방 사용시간 미준수, 식기세척 불량 등	
5월	14명	군기본자세 불량(국기강하), 행정관 건의	
6월	28명	생활관 복도 욕설(당직사관 적발), 라면취식, 샛길 이용 (인사과장 적발), 중대장 건의	
7월	33명	결식(중대장 건의), 근무규정 미준수(작전과장 건의) 등	
계	143명		

바. 2013. 11. 21. 작성된 「○○봉사대 운영 강조지시」에는 법령, 규정, 지시를 위반한 용사 중 경미한 위반자를 대상으로 얼차려 대신 자유시간에 봉사활동을 부여함으로서 근무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입소 시 해당 주는 외출·외박·휴가·면회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사. 피진정인 3이 전임 인사과장에게 업무를 인계받은 '인사과장 인수인계서(2015. 11. 9.)'에는 ○○봉사대 운용에 관하여 연대 군 기강 확립 일환으로 규정 및 지시사항 미준수, 두발·경례 불량 등 군 기강 미흡으로 적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휴일간 봉사 및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기 위해 추진하며, 입소대상은 징계위원회 회부대상자는 아니지만 군기강 미흡으로 연대 간부들에게 지적당한 인원을 그 대상으로 하며 토요일에 3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적발된 자는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여 그 내용을 통해 불합리하게 적발된 인원을 구제하도록 하고 있다.

아. 피진정인 3은 ○○봉사대 운영근거를 육군규정 120 '얼차려 규정'을 들고 있으나 얼차려 규정에는 그 시행시점이나 피진정 부대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휴일에 집합식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금지 규정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과도한 얼차려와 관련된 진정사건(16진정0124300, 15진정0707500)에 대하여 사단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시행시 유의사항 교육 등을 각 권고한바 있다.

자. 피진정인 3은 '2016 연대 동아리 운영계획'에 따라 매주 토요일(09:00~12:00) 연대 전 병력이 참여하는 동아리 활동(당구, 야구 등 12개) 을 시행하다가, 주말에 간부들이 출근하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2016. 7. 15. 부터는 자율적으로 참여 및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차. 피진정인 4는 피해자 4가 2016. 5. 경 훈련시간에 무전기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4의 머리와 뒤통수를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고 이후 연대장(피진정인 5)에게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카. 피진정인 5는 2016. 5. 00사단 000연대장으로 부임한 이후 "군 기강 확립을 위해 병사들이 영내에서 제식을 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4의 폭행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 면담을 통해 처벌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2016. 6. 8. 피진정인 4에 대하여 서면경고 조치한 바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에게 한 행위는 업무 외적인 시간에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를 한 것으로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이하 군인지위법) 제13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위반한 것이며, 피해자 1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1이 진정원인 사실로 인하여 보직해임 되는 등 이미 인사상 불이익 처우를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거쳐 군수사기관에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바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피진정인 2가 피해자 1, 2에게 폭언을 하고, 피해자 3에게 폭행을 한 행위는 「군인지위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동료의 존중 의무를 위반하였고, 나아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 1, 2의 인격권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 3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부대 사단장으로 하여금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경고조치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1) 보행금지구역 설정 및 운영의 적절성 여부

연대장이 병사들을 대상으로 영내에서 제식을 하도록 지시한 부분은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휘권의 영역으로 보이며 특별히 과도하다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예비군 및 간부들, 조교인 병사들의 경우 보행금지구역 통행이 가능하나, 그 외 일반 병사들의 통행만 금지되어 있다는 점, 보행금지구역 입구에 안내판 등이 부착되지 않아 단순한 부주의로도 적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행금지구역 설정과 운영에 관련하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주말 ○○봉사대 운영의 적절성 여부

얼차려는 육군규정(120) 상 피교육자들이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과 정신수양·행동숙달·체력단련 등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

진정인 3은 ○○봉사대가 '얼차려 부여'의 일종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봉사대'를 주말에 시행함으로써 입소자들의 휴식·외출·외박·면회 등이 제한되어 실질적인 휴식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 얼차려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명칭에 '봉사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주말에 집단적으로 입소하고 있어 입소자들이 '군기교육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안내 등이 부족하여 결국 적발하는 간부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운영될 소지가 있어 징벌에 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고, 지휘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부대의 ○○봉사대는 얼차려 규정을 과도하게 확대 적용하여 병사들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육군 얼차려규정(해군- 군기교육, 공군- 사랑의 벌)에는 그 시행시점과 휴일 시행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행 시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부대의 경우 얼차려 규정에 따라 ○○봉사대 입소자가 월요일에 적발될 경우 그 대상자는 토요일 입소 시까지 1주일 내내 부담을 가지고 생활할 가능성이 크므로 얼차려의 시행은 가급적 적발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같은 맥락에서 주 단위로 대상자를 모아서 주말에 집합 형식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병사들의 휴식권 보장차원에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국방부장관에게는 각 군의 '얼차려 규정'(해군- 군기교육, 공군- 사랑의 벌)에 그 시행 시기를 명확히 하고, 각 부대 얼차려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병사들의 휴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고, 피진정부대의 사단장에게는 성취감의 고취라는 '얼차려 규정'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시행하도록 현행 ○○봉사대 운영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한편, 피진정인 3이 주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개선되었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피진정인 4의 행위는 육체적인 고통을 가했다는 측면에서 「헌법」 제12조에서 부여하는 피해자 4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진정원인 사실로 인하여 피진정인 4가 서면경고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으므로 별도의 권고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 관련

피진정인 5가 피진정인 4에 대하여 서면경고 조치로 끝내고 이를 무마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고, 관리감독 책임 부분에 대하여는 보행금지구역 및 ○○봉사대 운영 개선 등 위 진정요지 다항 관련 권고를 통해 전반적인 부대 운영을 개선토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9. 2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정상환 위 원 이은경 위 원 장애순

인격권 침해

(폭언, 모욕)

1 06진인551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6. 6. 7. 결정

▌결정사항▐

폭언 등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육군 제○사단 ○○연대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고,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주의조치 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대간부들을 대상으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 1의 폭언, 수면권 제한 행위를「헌법」제10조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제10조,「군인복무규율」제15조,「국방부훈령」제487호

▌진정인▐ 배○○(피해자의 아버지)

▌피해자▐ 배○○(육군 제○사단 ○○연대 ○○중대, 예비역 일병)

▌피진정인▐ 1. 이○○ (제○사단 ○○연대 ○○중대, 행정보급관, 원사)
2. 김○○(제○사단 ○○연대 ○○중대, 중대장, 대위)
3. 정○○(제○사단 ○○연대 ○○중대, 주임원사, 원사)
4. 선○○(제○사단 ○○연대 ○○중대, 연대장, 대령)

▌주 문▐ 1. 폭언 등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육군 제○사단 ○○연대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고,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주의조치 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대간부들을 대상으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기타 나머지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피해자가 육군 제1사단 15연대 본부중대에 근무중이던 2005. 12.경 피진정인 1)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아침일과 중 쓰러져 함구증 등 전환장애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공상처리와 피진정인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원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1) '05. 11. 7. 연대훈련중 텐트에서 피해자가 쌀을 잘 들지 못한다는 이유로, '05. 11. 24. ○○중대 창고에서 피해자가 물품정리를 빨리 안한다는 이유로, '05. 11. 28. ○○중대 물품보관실에서 피해자가 탁자이동시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05. 11. 30. 행정반에서 피해자가 방한장갑을 지정된 곳에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진정인 1)에게 욕설, 협박 및 폭행을 당하였음.

2) '05. 11. 24 ~ 12. 2. ○○중대 행정반 상황근무 후 근무취침을 하려하면 피진정인 1)인 원사 이○○이, 피해자인 이병 배○○을 깨워서 일을 시키는 관계로 피해자자 취침을 제대로 못했고, 식사시간에 식사하러 가려하면 "밥은 나중에 먹고 일을 먼저하라" 고하여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인권침해를 당하였음.

3) 피해자에 대한 공상처리와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요함.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진정인 주장 1)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 1)의 주장

'05. 11. 7. RCT훈련 중 피해자가 쌀을 들지 못하여 "배○○ 이것도 못들면 어떻게 하노" 라고 하였지 구타 한 사실이 없으며, '05. 11. 24 및 '05. 11. 28. 물품정리 및 탁자이동시에도 구타사실이 없음.

다만 '05. 11. 30. 피해자가 방한장갑 정리를 제대로 해놓지 않아 장갑을 집어 던진 것은 사실이나, 얼굴에 던지지는 않았고, 이로인해 피해자가 눈물을 흘려 "다음에 잘하

면 되지 않느냐"고 교육지도한 사실이 있음.

평소 피해자를 포함한 대원지도시 "뭐 이따위로 하느냐?, 이따위로 해서 군생활 제대로 하겠느냐 ?, 나이값도 못하느냐 ?" 등의 질책을 한 것은 사실이며 이런 말들이 듣기에 따라서는 욕설로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함.

2) 진정인의 주장 2)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 1)의 주장

피해자가 취침시 깨웠다는 것은 잘 모르겠으며, 다만 전투태세훈련시 근무취침이 보장되었어야 하나 보장되지 못한 것은 인정함. 또한 '05. 11. 21. ~ 11.30. 사이에 상황병의 휴가로 피해자가 3교대가 아닌 2교대 근무를 임했고 힘든 근무시간을 헤아리지 못한 것은 책임을 느낌.

일을 먼저하고 식사를 나중에 하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즉시 보고해야할 일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밥을 먹으러 가려할 때 "하던일을 종결시키고 밥먹으러 가라"고 한적은 있음.

나) 피진정인 2)의 주장

'05. 11. 말쯤 피해자가 잘 씻지 못한 모습으로 근무하는 것을 몇회 목격했고 늦잠을 자서 씻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점심식사 했냐는 물음에 못 먹었다는 답변을 해, 빨리 먹고 오라고 한 사실이 있음

중대장으로서 지휘관심을 경주하여 문제병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의 수면보장이 안되거나 업무적 스트레스를 받고 했던 부분에 대하여 지휘조치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을 느낌.

3) 진정인의 주장 3)에 대하여

본건으로 주임원사 및 연대장에게 관리책임 및 지휘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다. 관계인의 진술

1) 동기생 ○○○ 일병

피해자가 오전에 취침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잠을 자지 않고 업무하는 것을 수회 보았고, 본인 생각으로는 10번의 취침기회가 있다면 4회는 정상적으로 잠을 잤고, 3번

은 축소해서 잦고, 3번은 거의 못잔 것으로 생각됨.

또한 일자 불상일에 피해자가 “행보관으로부터 이새끼야 그딴식으로 하려면 때려쳐 너따윈 필요없다 는 말을 들고 울었다” 고 했으며, ’05. 11. 21 ~ 23경 에 행보관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울고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답답하고 분하여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됐다”는 말을 한적이 있음

2) 동기생 ○○○ 일병

피해자가 “행정보급관으로부터 욕설 및 질책을 받아 업무에 부담이 되고 힘들다“ “힘들어서 보급병 그만두고 다른데로 가고 싶다, 야간에 상황근무 후 주간에 취침을 제대로 못하여 피곤하다, 근무 취침시 업무 관련하여 깨운적이 있다”

“업무나 지시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행보관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뒤통수와 등부분 및 어깨를 몇차례 맞았다”고 한적이 있음

행보관은 성격이 매우 급하고 직선적이며 큰소리로 “야, 이 새끼야 군생활하기싫어?, 똑바로 안해?” 등의 욕을 하는 등 성격이 다혈질임

3) 행정병 ○○○ 상병

’05. 11. 22. 아침에 사단 준비태세 비상시 배 일병이 후반야 근무 후 취침을 못한 것을 목격하였음.

’05. 11. 30. 방한장갑 사건시 행보관이 언성을 높여 질책했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으며 방한장갑을 던진 것은 사실이나 날아가는 상황을 보지못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았는지는 모르겠음.

4) 군종병 ○○○ 일병

피해자가 행정병으로 처음 왔을때 참 잘 웃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으나 쓰러지기 며칠 전부터는 미소가 사라지고 많이 힘든 표정이었음.

5) 전역자 ○○○

피진정인 1)은 성격이 급하고 직선적이며 업무에 욕심이 많아 행정병의 업무미숙시 큰소리로 “야 자식아, 야이 새끼야” 등 욕설을 들었지만 본인은 감정없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군복무중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음

3.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에 대한 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대학교 ○○대학원 조교로 재직중, 동료들 보다 약 5년 늦은 26세의 나이로 '05. 7. 19. 육군 306보충대(의정부)에 입대하여 '05. 8. 26. 육군 ○사단 배치 후 '05. 9. 28. 부로 ○○연대 ○○중대 행정보급병(이등병)으로 근무를 하였다.

나. 피해자는 '05. 12. 2. 08:00. 아침체조 중 쓰러졌고 사단의무대 및 국군양주병원을 거쳐 현재 ○○대 ○○○○병원 정신과병동에 입원중이다.

다. 피해자는 말을 못하고 있으며 수기로 부모에게 의사표현을 하고 있고 진정인은 피해자의 비망록 및 수기내용을 정리하여 피해사실을 특정하였다.

라. 피해자의 동료들은 피해자가 피진정인 1)로부터 질책당한 후 우는 모습, 잠을 못자고 일하는 모습, 밥을 못 먹었다는 피해자의 말 등을 직접 보고 들었다.

마. 피진정인 1)도 "뭐 이따위로 하느냐 ?, 이따위로 해서 군생활 하겠느냐 ?, 나이값도 못하느냐 ?"등의 질책을 한 사실과 이와 같은 말이 이등병인 피해자가 듣기에 욕으로 들릴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일을 마무리하고 밥을 먹어라'고 말한것과 장갑을 던지자 피해자가 운 사실을 인정하였다.

바. 실지조사시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 피해자가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답변은 없었다.

사. 피해자는 3교대 상황근무를 해오다 휴가자 발생으로 2교대 상황근무를 했고 사고 직전 한달간 19일의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부대에선 '06. 1. 9. 상황병 운용제도를 폐지하고 당직사관 및 당직부사관 근무체제로 변경하였다.

아. 국군양주병원 정신과 ○○○ 군의관은 당시 피해자는 발성기관에 이상이 있어 말을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신체적검사, 심리평가, 함구증 및 이상보행(총총걸음)등을 보여 '06. 1. 3. (의증)전환장애로 진단 하였다.

자. 국군양주병원 치과 ○○○ 군의관은 '06. 1. 3. 피해자의 악관절 디스크가 약간 밀려 있어 내장증으로 진단하였으며 이는 외상과 관련이 있을수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피해자자 또한 양측 측두부 촉진시 동통행동을 보여 근막동통증후군 진단을 했고 이는 계속된 스트레스로 진행된다고 답변하였다.

차. 연세대학병원 정신과 ○○○ 교수는 우울성 장애 진단을 하였고 피해자는 현재 호전증세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카. '06. 2. 3. 국군양주병원은 피해자 부모의 요청에 따라 의무조사를 실시하고 3군 사령부에 심신상실에 의한 전역심사를 요청했으며 3군 사령부는 '06. 2. 15. 국방부훈령 제590호인 장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98-라 에 따라 피해자를 전역명령 하였다. (사병인 사명령 제43호).

타. '06. 4. 27.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선 7급으로 공상심의 하였고 5. 1.자로 가족에게 심신장애전역자(병) 보상통보를 하였다.

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결과 피해자가 입대전에 정신질환을 앓은 사실은 없었다.

하. 소속사단 헌병대에서 '06. 1. 3.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에 피진정인1)의 폭행부인 진술의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폭행부인 진술이 '진실반응'으로 나왔으며('06. 1. 9), '06. 1. 13. 사단장은 피해자가 아직 말을 못하니 치료되면 대질신문 등 보강조사 후 사실이 입증될시 해당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06. 2. 15. 전역조치됨에 따라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 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4. 판 단

가. 관련규정

「헌법」제10조, 「군인복무규율」제15조, 「국방부훈령」 제487호

나. 구타의 인정여부

1) 「국방부훈령 제487호」에서 구타란 '고의로 주먹·발·손바닥·팔꿈치·머리 등 몸 또는 막대기·야전삽·총기 등의 도구로 타인을 가격하여 통증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군의관이 내장증, 근막동통증후군으로 진단한점, "피해자가 행보관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뒤통수 및 어깨를 몇차례 맞았다"는 말을 들은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구타행위를 직접 목격한 자가 없고 행보관 역시 구타를 강력 부인하며,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의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피진정인이 구타사실 없다고 진술한 것이 진실임)등을 고려할 때 진정내용과 같은 구타행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

다. 폭언, 수면권제한 등 인격권 침해여부

피해자가 피진정인 1)에게 질책당한 후 우는 모습이 목격된 것이 2회, 밥을 못먹었다는 말을 직접 들은 것이 2회, 잠을 못 자고 일하는 것이 목격된 것이 2회, 사고 한달전 야간 상황근무를 19회 실시하고도 근무취침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점, 관계인들이 피진정인1)이 성격이 매우 급하고 직선적이 큰소리로 "야 새끼야! 군생활 하기 싫어, 똑바로 안해" 등의 말을 하며 다혈질이라고 한점, 피진정인 1) 도 "뭐 이따위로 하느냐, 이따위로 해서 군생활 하겠느냐, 나이값도 못하느냐" 등의 질책을 한 사실과, 이런 질타가 듣기에 따라 욕으로 들릴수 있음을 인정한점, 피해자에게 "일을 마무리하고 밥을 먹어라"라고 말한 것을 인정한 점, 본인의 성격이 다혈질이며, 피해자에게 장갑을 던진 사실과 질타시 본인 앞에서 피해자가 운 것을 인정한 점, 상황근무의 과도함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 볼때 피진정인 1)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공상처리 요구와 관련하여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서 '06. 4. 27. 피해자에 대한 공상심의결과 공상으로 의결(인사근무처 보건과-492) 하였는바 이 부분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마.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조치 요구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1)은 위 다.항의 판단과 같이 인권침해행위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피진정인 2)는 중대장으로서의 지휘책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3), 4)는 직접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연대책임을 묻기에 적절 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가. 폭언등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1), 2) 의 인사권자인 육군 제1사단 제15연대장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구타 등 나머지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김호준 위 원 나천수 위 원 최금숙

2 11진정6250 [폭언 및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2012. 8. 16. 결정

▌결정사항▐

해군참모총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해자가 피진정인 1 등에게 자신이 기자임을 밝혔고, 피진정인 1도 이를 이미 인지하였던 사정을 고려할 때, '결혼을 했는지' 등을 물은 피진정인 1의 언행은 불필요하게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개인정보를 대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정체성에 대한 위축을 불러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피해자의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 진정인 ▌ 조○○

▌ 피해자 ▌ 정○○

▌ 피진정인 ▌ 1. 홍○○ 2. 강○○ 3. 장○○ 4. 정○○ 5. 김○○ 6. 신○○

▌주 문▐

1. 해군참모총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 '다'에 대한 진정부분은 이를 각 기각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피해자는 '○○○○○' 기자로 2011. 11. 7. 16:00경 ○○해군기지건설반대 단체회원 4명이 ○○○○마을 해군기지사업단 내로 진입하는 것을 동행 취재하고자 뒤따라 들어갔다가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재발방지 등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 4는 피해자가 명함을 주며 '○○○○○' 기자 신분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앞을 가로 막고 핸드폰 사용을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귀가하려고 하였음에도 피진정인 1, 2, 3은 경찰에 인계한다면서 피해자를 해군기지공사장 부지 내에서 부당하게 억류하고 피해자를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으로 데리고 가서 18:07경 경찰에 인계할 때까지 약 2시간 가량 무단으로 억류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피진정인 1은 당시 피해자가 기자라고 신분을 밝혔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아가씨 누구야? 어디서 왔어?"라고 반말을 하고, 심지어 "또 들어 왔어! 겁대가리가 없는 아가씨네"라고 조롱하였으며, "아가씨야, 아줌마야, 결혼은 했어?"라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하여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다.

다. 피진정인 5는 피해자에게 "완장 왜 찼어? 벗어! 또 들어왔나? 카메라 못 쓰게 해"라고 반말과 고성을 지르면 강압적으로 대하였고, 피진정인 6은 "아줌마 누구야, 북에서 내려왔어! 북에서 내려온 기자야!", "미친 년, ×× 년, ○같은 년", "저년이 동영상 다 올린 것 아냐! 저년이 삼거리에서 밤에 술 쳐 먹고 소리 지른 년이네"라는 모욕적인 말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및 피해자 피해자들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

1) 피진정인 1 홍○○(대령, ○○해군기지사업단 계획통제실장)

본인은 사업부지 내에 무단침입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보니 피해자와 피진정인 4가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피해자는 수개월 전부터 ○○마을에 거주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사업부지 내에 무단 침입한 사례가 있어 평소 안면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에게 불법 취재를 허용할 수 없다고 고지하였으며, 몇 개월 동안 ○○마을에 머물러 있길래 결혼여부를 확인하고자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질문을 한 것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고, 이외 다른 폭언 등 강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 2 강○○(소령, 민원담당), 피진정인 3 장○○(중사, 공보담당)

본인들은 ○○기지사업단 사무실 근무 중인 2011. 11. 7. 16:00경 공사현장에 무단침입한 남자 4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보니 피진정인 1, 2가 이에 대응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이미 3차례에 걸쳐 무단침입한 사례가 있는 ○○○○○ 기자여서 상부지시에 따라 경찰에 인계하기로 하였다.

이 때, 피진정인 6이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왔는지 등의 상호 대화를 하였고, 경찰에게 인계하기 위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공사장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경찰이 도착하지 않아 112에 전화하여 경찰에 빨리 와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이후에도, 경찰 도착이 지연되어 계속 독촉하였고, 피진정인 4에게 피해자를 경찰에 인계하도록 한 후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당시 피해자에게는 경찰에 인계될 것을 설명해 주었으며, 이 과정은 억류 상황이 아니었다.

3) 피진정인 4 정○○(상사, 해군기지사업단 토지보상담당)

본인은 2011. 11. 7. 오후 신원불상 남자 4명과 피해자가 기지 내로 진입하는 것을 보았고, 진정외 남자 4명은 너무 빨리 ○○해안가 쪽으로 달려가 제지하지 못하고, 20~30미터 뒤이어 따라오던 피해자를 붙잡고 누구인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사업단에 허가를 받았는지, 또한 군 차량과 작업인원을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해도 되는지를 거꾸로 물어보았다.

피해자는 앞서 들어간 사람들을 취재하려고 들어 왔고 정식으로 취재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여, 취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진 촬영한 것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경찰이 바로 올 예정이니 전화를 자제하고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한참 후, 경찰이 도착하여 본인과 피해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무단침입으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급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짜증을 내며 서명을 거부하였고, 이에 출동경찰관은 서명거부로 기록한 후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피해자를 현장에서 귀가 조치하였다.

4) 피진정인 5 김○○(상사, 해군○○기지사업단 계획통제실 근무)

당시 피해자가 이전에 경찰에서 나눠 준 보도완장을 차고 있어 "이건 왜 차고 있어요? 경찰청 보도완장 아닌가요?"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답이 없었고, 서로 반말과 고성을 지른 적이 없다.

5) 피진정인 6 신○○(원사, 해난구조대 구조작전대대 ○작전대)

본인은 해군○○기지사업단 파견근무 중인 2011. 11. 7. 16:00경 무단침입한 남자 4명을 더 이상 기지에 진입을 못하도록 하다가 경찰관에게 신병을 인계하였고, 이후 16:10경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어디서 왔어요?"라고 질문을 하자 "기자예요"라고 하여 "기자가 왜 해군기지사업단 내에 불법으로 무단침입을 하느냐"라고 했고 피해자는 기지사업자체가 불법이므로 기지 내 출입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참 어이없는 기자네"라고 하면서 지나갔을 뿐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들

1) 진○○(경사, ○○경찰서 ○○파출소)

본인은 ○○경찰서 ○○파출소 순찰근무 중인 2011. 11. 7. 오후 최초 해군 관계자로부터 무단침입한 성명불상 남자 4명의 신병을 인수하라는 112신고를 접하고, 위 남자 4명의 신병을 넘겨받아 ○○경찰서에서 신원을 확인한 후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를 붙잡아 보호하고 있으니 신병을 인수하라는 신고를 받고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피해자의 신병을 인수하였다. 당시 해군 관계자가 피해자를 체포하여 인계한 것인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자이고 신원이 확실하여 현행범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이 있다.

2) 강○○(경위, ○○경찰서 정보계장)

본인은 ○○경찰서 정보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1. 7. 16:00경 청년 대학생 4명과 피해자가 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 해안가로 무단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당시 취재기자 연행은 예민한 상황이어서 ○○해군기지사업단 소속 홍보담당인 피진정인 3에게 언론기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하자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여 피진정인 측이 풀어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와 통화하여 보니 그 때까지도 풀어주지 않은 상황을 알게 되었고, 이후 ○○파출소 직원이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해자의 진술서 등 제출자료, 피해자에 대한 전화통화조사보고,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 진○○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참고인 강○○의 진술서, 해군기지사업단이 제출한 민원처리부, 채증자료, ○○경찰서가 제출한 정보상황일지, 경비상황일지, 통고처분 출동경찰관의 진술서 및 동인(同人)이 정식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 진술조서, 주거침입 수사보고서, 112순찰근무일지, 범칙금 발부대장 등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기자로 2011. 11. 7. 16:00경 ○○해군기지건설반대 단체회원 이○○ 등 4명이 ○○○○마을 해군기지사업단 내로 무단 침입하는 것을 동행 취재하고자 위 기지사업단 관계자의 사전협의 등 승인 없이 뒤따라 들어갔고, 피진정인 4는 2011. 11. 7. 16:10경 위 이○○ 등 4명의 20~30미터 후방에서 중턱에 있는 ○○○ 바위 해안가 쪽으로 진입하던 피해자를 발견, 피해자를 붙잡아 제지하고 경찰에 신병인수를 요청하였다.

나. 피진정인 1, 2, 3이 2011. 11. 7. 16:50경 순차적으로 합류하여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어서 피진정인 5, 6도 합류하여 잠시 머무른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신병인수가 늦어지자 피진정인 2가 재차 경찰에 독촉하여 피해자의 신병을 인수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경찰서 ○○파출소 경찰관 진○○ 등이 2011. 11. 7. 18:10경 해군기지공사현장 정문 앞에 이동되어 있던 피해자의 신병을 피진정인 4로부터 넘겨받아 현장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무단침입)의 규정을 적용하여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귀가시켰다.

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마을에 오래 기간 체류하는 것이 궁금하여 피해자의 결혼여부를 물어 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라. 나머지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 및 욕설을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관련 피진정인들이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현행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은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214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이라 할지라도 현행범인이 범한 범죄가 경미한 경우에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체포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통상 사법경찰관리 등 법집행공무원이 강제수사를 함에 있어서 상당성의 원칙, 즉 수사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사건 피진정인들은 사법경찰권을 가진 자들이 아닌바, 위와 같은 경미사범에 관한 체포요건을 명확히 인지할 신분적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이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4가 2011. 11. 7. 16:1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피해자를 붙잡아 대기시키다가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신병을 인계한 행위는 경찰관의 늦은 출동에 기인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는 불가피한 경우로서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경우라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 항 관련

위 인정사실 다와 같은 피진정인 1의 발언은 당시 피해자가 피진정인 1등에게 자신이 기자라는 신분을 밝혔고, 피진정이 1도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 1은 피해자를 취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적 지위를 갖는 개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적인 관계에 있는 개인으로 취급한 것으로, 불필요하게 사생활에 관한 개인정보를 대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인격적 정체성에 대한 위축을 불러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1의 부적절한 언행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나머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하여 폭언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주장은, 위 피진정인들이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1의 현 소속기관장에게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가', '다'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1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 원 김영혜 위 원 윤남근

3 15진정3029 [욕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15. 9. 2. 결정

▌결정사항▐

육군 제0사단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할 것과,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이 제0사단 0연대 0대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소속 대대 간부들에게 평소에 "이 새끼, 저 새끼, 야 새끼야!"라는 식의 폭언을 하고, 특히 전입신고 과정에서 복장과 태도에 문제가 있는 간부에 대해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무슨 쓰레기 왔냐?"라는 등의 욕설 행위는 군대 내에서의 구타·폭언 기타 가혹행위 등을 금지한 「군인복무규율」 제1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군인복무규율」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진정인▐ ○○○

▌피진정인▐ ○○○

▌주 문▐ 1. 육군 제0사단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할 것과,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육군 제0사단

0연대 0대대장인 피진정인은 2015. 3월말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한 상태에서 전입신고

를 하는 하사 김○○에 대하여 “무슨 쓰레기가 왔냐? 이 새끼 저 새끼” 등의 폭언을 하는 등 평소 소속 대대 간부들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이 소속 대대 간부들에게 한 달에 책 2권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게 하고, 독후감을 발표하도록 지시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은 2015. 3월말 대대 전입신고를 하는 하사 김○○이 당시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베레모를 똑바로 쓰지 않는 등 복장이 불량하며 경례 자세가 맞지 않아 똑바로 하라고 하였으며, 전입 면담 시 건들거리는 모습이 건달 같다고 하였다. 지휘관으로서 훈련 때나 사고예방을 위해 정신 똑바로 차리자는 의도에서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기강을 바로 세우고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질책성 발언이었을 뿐, 개인적인 감정을 싣거나 미워서 인격모독을 한 적은 없다.

2) 대대 간부들의 교양 함양과 자기계발 시간 선용을 위해 대대 모든 간부들에게 한 달에 책 2권을 읽으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1·2·5운동(1주 1선, 1달 2독, 1일 5감)의 일환으로서 상급부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다. 다만, 독서에 대한 간부들의 관심이 매우 저조하여 간부들에게 독서노트를 쓰고 매월 말에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누가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서 질책을 하거나 강요한 적은 없으며, 매주 금요일에 독후감을 발표하도록 해서 독서를 장려하였다.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능력개발을 위한 장려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지 강제하지 않았으며, 독서 발표 우수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들(제0사단 0연대 0대대 소속 간부 25명)의 진술서, 제0사단에서 제출한 육군본부 ○○○○과-241(2015. 1. 22.)호의 ‘15년 감사나눔 운동 추진 계획 하달(대대급 종결)‘ 공문, 제0사단 0연대의 ’간부 독서토론회 계획 보고‘ 공문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중령)은 2013. 12. 10.부로 제0사단 0연대 0대대장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간부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2014. 8월경 전임 사단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전 간부들에게 이러한 언행을 사과하는 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인은 2015. 3월말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한 상태에서 대대 전입신고를 하는 하사 김ㅇㅇ에 대하여 복장과 태도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쓰레기 왔냐?"라고 하는 등 폭언을 하며 전입신고를 세 차례에 걸쳐 다시 하게 하였고, 이외 평소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속 대대 간부들에게 "이 새끼, 저 새끼, 야 새끼야!"라는 식의 욕설을 자주 하였다.

다. 육군본부는 2015. 1. 22. '행복나눔 125' 운동으로 一日一善(하루에 1회 선행), 一月二讀(한 달에 2권의 양서 읽기), 一日五感(하루에 5가지 감사)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육군 예하 부대에 하달하였고, 피진정인은 위 실천계획에 근거하여 소속 대대 간부들에 대하여 한 달에 책 2권을 읽고 독후감 2건을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전체 74명 간부중 57명(77%)에게 독후감을 받았으며, 이를 매주 금요일 상황평가 회의 시 발표하도록 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이 제0사단 0연대 0대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소속 대대 간부들에게 위 인정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 특히 전입신고 과정에서 복장과 태도에 문제가 있는 간부에 대해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이는 군대 내에서의 구타·폭언 기타 가혹행위 등을 금지한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1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사항으로는,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육군 제0사단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할 것과,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이 소속 간부들에 대하여 독후감 제출 및 발표를 하도록 한 것은 육군본부의 '행복나눔 125' 운동 실천계획에 근거한 지시인 점, 독후감을 제출하지 않은 간부를 확인

하고 질책하는 등 이를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9. 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 원 윤남근 위 원 최이우

4 15진정4461 [군 지휘관에 의한 모욕 등] 2015. 9. 2. 결정

▌결정사항▐

해군참모총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 대대장이 정당하게 발급받은 군의관의 소견서를 가지고 체력검정 일시보류를 요청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인정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제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임

▌참조조문▐

군인복무규율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부대관리 훈령 제17조(병영생활 행동강령), 해군 체육업무 관리 규정 제13조(체력검정)

▌진정인▐ ○○○

▌피해자▐ ○○○

▌피진정인▐ ○○○

▌주 문▐ 해군참모총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해군 제○함대 ○○○○대대장인 피진정인은 201×. ×. ×. 위 대대 소속 부사관인 피해자(진정인의 남편)가 함정 수리 중 낙상으로 인하여 허리와 다리를 다쳐 치료중이어서 체력검정을 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발부받아 지휘관 확인 서명을 받으러 오자, 피해자에 대하여 윗몸일으키기 등 체력검정을 받지 않을 경우 제대를 하라고 강요하였으며, 윗몸일으키기를 하다가 죽으라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원사, 상사 등 고참급 부사관들이 군의관 소견서를 이유로 계속해서 체력검정 예외 처리를 요구한다면 그 영향이 부대 전반에 파급되어 부대원의 10% 이상이 체력검정을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방부대로써 전투력을 유지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과거 예외자 인원을 볼 때 향후 동일한 예외처리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과 부사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부족, 부대 전투력 유지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로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부적절한 말을 하게 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내용 녹음파일, 피해자 개인신상기록부, 군의관의 피해자 관련 소견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참고인들의 진술,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해군 체육업무 관리규정, 2015년 장병 체력단련 지침 및 체력검정 계획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남편인 피해자는 부사관(상사)으로서 201×. ×. ×. 해군 제○함대 ○○○○중대에 전입하여 이 사건 당시 ○○○○대대에 근무하고 있었고, 피진정인은 위 ○○○○대대의 대대장(중령)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이후 201×. ×. ×. 해군본부로 전속되었다.

나. 피해자는 201×. ×.경 군함 수리 중 떨어져 허리디스크 및 무릎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 4차례 입원하여 치료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모두 공상처리되었으며, 201×. ×. ×. 국군○○병원 군의관으로부터 “추간판 탈출증에 따른 요추 통증 및 하지 방사통으로 인하여 구보 및 반복적인 운동으로 병변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체력검정은 삼가도록 반드시 부대조치를 바란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진정인은 201×. ×. ×. 체력검정 일시 보류자 신청을 하기 위해 위 군의관 소견서를 가지고 진정외 장○○과 함께 피진정인의 집무실에 찾아온 피해자에 대하여 “제대해야지. 왜 남아 있어.”, “어디 아프고, 어디 아프고, 그럼 왜 군을 하는 거냐 이거지. 빨리 나가야지.”라고 말하였고, 허리 통증으로 윗몸일으키기 면제를 요청한 피해자와 진정외 장○○에 대하여 “여기서 하다가 죽어. 하다가 죽으면 좋을 것 같애.” 라고 말하였으며,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박○○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허리가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정 하다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죽으라 그랬어. 그러면 국립묘지는 가지 않냐고.” 라는 발언을 하였다.

라. 이 진정사건이 제기된 이후 해군 제○함대 보통검찰부는 201×. ×. ×. 피진정인을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로 기소하였고, 해군 제○함대 보통군사법원은 201×. ×. ×. 위와 같은 표현은 일응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언사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공연성이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음을 이유로 피진정인에게 무죄를 선고(사건번호 : ○○○○고○)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한편, 해군 제○함대사령부는 201×. ×. ×. 피해자가 피진정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이 「군사보안업무 훈령」 및 해군참모총장 지시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서면경고 조치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제23조의2 및 국방부 훈령인 「부대관리 훈령」 제17조는 군대 내에서 폭언, 모욕 등 인격모독을 금지하고,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피진정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기는 하나,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피진정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에 살펴본바, 피진정인은 대대장으로서 부대 내 전투력을 유지하고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하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그러한 차원에서 소속 부하가 체력검정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정당하게 발급받은 군의관의 소견서를 가지고 체력검정 일시보류를 요청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위 제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해군참모총장

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9. 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 원 윤남근 위 원 최이우

5 16진정2204 [징계조사 시 군 법무관의 인격적 모욕 등] 2016. 11. 25. 결정

▌결정사항▐

육군 제00사단장에게, 피진정인에게 경고 조치하고,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군 법무관이 징계 조사를 하면서 조사대상자에게 욕설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임

▌참조조문▐

「군인복무규율」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병영생활 규정」 제43조(병영생활 행동강령)

▌진정인▐ ○○○

▌피해자▐ ◇◇◇

▌피진정인▐ △△△

▌주 문▐ 1. 육군 제00사단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다항은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군기 위반) 등의 징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한 바 권리구제를 요청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징계장교 및 검찰관이 별도로 있고, 징계사건에 대하여 강제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직접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징계 조사 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반말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간 끌고 있어 쌍놈이", "야 이 바보야", "나 빼고 다 남탕이야", "너가 찜했냐", "모텔을

가도 어쩌면 그렇게 후진 데를 가냐", "걔가 꼬리 친 것 같더라", "생리하는 거 확인했냐?",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주워 먹어?"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인격모욕을 하였으며, "죽을래, 말 안하면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우리가 우습게 보이냐?", "징계위원회에서 CCTV 보여줄까?", "진짜 죽일 놈, 형편없는 놈 되고 그래야 옷 벗을래?" 라고 하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

다. 징계사건에 대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가 갔던 음식점과 투숙했던 모텔 CCTV 영상을 불법적으로 입수하고, 이를 징계위원들에게 직접 보여줌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제00사단을 비롯한 제0작전사령부 지역 내 사단에는 징계장교가 따로 편제되어 있지 않고, 제00사단 법무병과의 인력난으로 인하여 참모업무와 관련이 있는 징계업무를 법무참모가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징계사실 조사나 수사와 관련한 부분은 해당 부서 내 업무분장과 관련한 사안으로 참모 책임 하에 결정되는 사안이다. 또한 육군「징계규정」제9조 규정에 따라 성폭력 등에 해당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여성 법무관이 징계간사를 맡는 것이 원칙인 점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조사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조사 답변 시 시간을 많이 끌었다고 질책한 적은 있으나 욕설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본인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함에 따라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답변을 유도하였던 것이다. 피해자는 증거가 확실함에도 본인의 비위 행위에 대해 뉘우치지 않아 징계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될 것 같아 모든 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라는 뜻에서 한 이야기였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징계심의대상 사실에 대한 사실인정과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 모두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의하도록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상 징계위원들은 위 영상자료를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피해자 징계혐의 조사 당시 녹음파일, 육군규정 180(징계 규정), 징계의결기록, 피해자 진술서 및 진술조서, 징계 혐의 관련 참고인 진술서, 징계혐의 입증자료(위병소 출입기록), 피해자 관련 CCTV 영상, 근무기강 확립 및 부대 운영 지침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8. 3. 1. 장교로 임관하여 2015. 7. 17.부터 2016. 2. 25.까지 제00사단 000연대 통신중대장으로 근무하였다. 2016. 2. 26. 피해자는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 등의 혐의로 보직해임되었고, 2016. 3. 4. 품위유지의무 위반(성군기 위반) 등으로 제00사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임이 결정되었다.

나. 피해자는 2016. 2. 25.과 2016. 3. 2. 총 2회에 걸쳐 법무참모실에서 피진정인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 위반) 등 징계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

다.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을 확인한 결과 2016. 2. 25.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시간끌고 있어 쌍놈이”, “야 이 바보야”, “나 빼고 다 남탕이야”, “너가 찜했냐”, “모텔을 가도 어쩌면 그렇게 후진 데를 가냐”, “개가 꼬리 친 것 같더라”, “생리하는 거 확인했냐?”,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주워 먹어?”, “죽을래, 말 안하면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우리가 우습게 보이냐?”, “징계위원회에서 CCTV 보여줄까?”, “진짜 죽일 놈, 형편없는 놈 되고 그래야 옷 벗을래?”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이 징계사건에 대하여 권한 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직접 조사를 한 것이 인권침해라는 진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육군「징계규정」상 성폭력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여성 법무관을 징계간사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만 있을 뿐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주장과는 별개로 피진정인이 조사를 담당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진정인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은 징계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및 답변을 이끌어 내고,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질책을 하였을 뿐 욕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위와 같이 욕설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2016. 2. 25. 조사 당시 이미 녹음파일 등의 증거에 의해 피해자의 성군기 위반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가 인정되고 있었고, 피해자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겠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굳이 위와 같이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피진정인은 사실관계 확인 및 자백 유도를 위하여 해당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질문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은「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진정인이 2016. 11. 9.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25.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정상환 위 원 이은경 위 원 장애순

신체의 자유 침해

1 04진인3966 [직권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2005. 2. 28. 결정

업무착오로 진정인의 국선변호인 선임사실을 진정인과 헌병대장에게 송달·고지하지 않고, 진정인의 변호사접견 요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사에게 접견요청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 단서에 규정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과 절차에 대해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육군 제○군단 법무참모에게 피진정인 이○○에 대하여 서면경고 조치할 것과,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헌법」 제12조제4항 및 「군사법원법」 제62조·제309조, 「군사법원사무규칙」 제15조 등 관련규정과 절차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함

[2] 육군 제○군단 헌병대장에게 피진정인 이○○에 대하여 서면경고 조치할 것과, 변호인선정 확인, 변호인접견 요청 시 관련조치, 제반사항 기록유지 등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참조조문 ▌

「헌법」 제12조 제4항, 「군사법원법」 제62조·제309조, 「군사법원사무규칙」 제15조

▌ 진정인 ▌ 유 ○○

▌ 피진정인 ▌ 1. 이○○(제○군단 헌병대 형무담당관, 중사)
2. 장○○(동 군단 보통군사법원 군판사, 대위)
3. 이○○(동 군단 군사법원 법원서기, 중사)
4. 오○○(동 군단 감찰부 감찰장교, 소령)

▌주 문 ▌ 1. 육군 제○군단 법무참모에게,
가. 피진정인 이○○에 대하여 서면경고 조치할 것과,
나.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헌법」 제12조 제4항 및 「군사법원법」 제62조·제309조, 「군사법원사무규칙」 제15조 등 관련규정과 절차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하고,

2. 육군 제○군단 헌병대장에게,
   가. 피진정인 이○○에 대하여 서면경고 조치할 것과,
   나. 변호인선정 확인, 변호인접견 요청 시 관련조치, 제반사항 기록유지 등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3. 진정인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고, 진정요지 다. 라.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군단 영창 수용 중, 피진정인 1.에게 변호사 접견을 요청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나. 진정인은 2004.9.21. 재판 시 피진정인 2.에게 "군생활 하기 싫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과중한 징역형(1년6월)을 받았다.

다. 진정인이 항소포기서에 지장을 찍을 때 피진정인 3.등이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는 말을 해 주지 않아 항소를 못했다.

라. 진정인은 피진정인 4.에게 내무생활 부조리를 신고하였으나 아무 조치가 없었고, 이후 멀쩡한 자신을 일동병원 정신과에 입원시키려고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헌무반장 중사 이○○)

(가) 2004.9.14. 진정인으로부터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군사법원에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문의하였으나, 이후 공판 전까지 국선변호인 선임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

(나) 공판1일 전인 같은 달 20. 19:07경 진정인이 "내일 재판인데,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했다. 변호사 면담은 언제 시켜 주냐?"고 하기에 "군사법원에 통보했는데, 별다른 얘기가 없다."고 답변 및 통상 재판당일 변호사가 접견한다는 생각에 별도의 연락은 취하지 않았다.

(2) 피진정인 3.(법원서기 중사 이○○)

(가) 국선변호인 선정 후 변호인에게 선정결정문은 통보하였으나, 헌병대장과 피고인에 대해서는 업무착오로 송달·고지하지 못했다.

(나) 관할관 확인결재일인 같은 달 22. 제○군단 헌병대 영창 내 진정인에게 확인서 등본을 전달하면서 항소여부와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음을 설명하자, "나는 이런 것 필요 없다. 빨리 꺼져 버려라."면서 확인서 등본을 찢어버렸다.

(3) 피진정인 4.(감찰장교 소령 오○○)

진정인이 선임병들의 괴롭힘과 부대생활의 불만사항을 감찰부에 신고하였으나, 확인결과 진정인의 충동적이고 도발적 행동에 기인한 내용들이어서 조사가치가 없다고 판단 종결하였다.

다. 참고인(○군단 검찰수사관 상사 박○○, 헌병대 작전과장 대위 백○○)

2004.9.22. 진정인을 찾아가 항소여부를 물어보자, "항소 같은 것을 뭐하러 하냐."면서 항소포기서에 직접 서명무인을 하였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변호인 접견권 침해 주장)

(1)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3.4.15. 군 입대 후 ○기갑여단 1○○기보대대에 근무 중, 2004.9.21. 제○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 9.23. 육군교도소, 10.13. ○○교도소를 거쳐 12.13.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나) 제○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004.9.10. 검찰부로부터 진정인에 관한 공소제기 즉시 공소장부본과 '변호인선임에 관한 고지서'를 헌병대에 전달하고, 같은 달 13. 변호사 류○○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결정하였다.

(다) 이후 군사법원 실무담당자인 피진정인 3.은 2004.9.18. 11:25 공판기일과 변호인선정 결정문을 국선변호인(변호사 류○○)에게 팩스로 송달하였으나, 헌병대장과 진정인에 대하여는 업무착오로 국선변호인 선임사실을 송달·고지하지 못 하였다.

(라) 「군사법원사무규칙(대법원규칙)」 제15조에는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교도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사법원실무제요(육군군사법원, 2002.3.31 발행)에는 '국선변호인 선정결정등본을 선정된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헌병대 형무담당관인 피진정인 1.은 2004.9.14.과 재판전날(9.20) 등 2회에 걸친 진정인의 변호인접견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여부 확인과 해당 변호인에게 접견신청 통보 등 업무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제○군단 보통군사법원 실무담당자인 피진정인 3.은 진정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이 선정·결정되었음에도 업무착오로 헌병대장과 진정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임사실을 송달·고지해 주지 아니하여, 「헌법」 제12조 제4항[2] 단서에 규정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고,

(나) 피고인의 신병관리 실무담당자인 피진정인 1. 역시 진정인의 2회에 걸친 변호사 접견 요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군사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여부와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진정인의 변호인 접견요청사실을 국선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헌법」 상 보장된 진정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선고형량이 과중하다는 주장)

(1) 인정사실

제○군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중령 김○○)에서는 2004.9.21. 진정인에 대한 2004고○○ 군무이탈사건에 대하여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9.22. 관할관(중장 김○○)이 선고형량을 원판결 그대로 확인하였다.

---

2) 「헌법」 제12조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2) 판단

선고형량이 과중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항소절차 미고지 주장)

(1) 인정사실

(가) 제○군단 보통군사법원 공판조서(2004고○○ 군무이탈)에 의하면, 재판장이 진정인에 대하여 상소기간과 상소군사법원을 고지하였다.

(나) 또한, 진정인은 항소포기와 관련한 문답서(2004.11.11)에서 "저는 항소도 안 하겠다고 말했으며, 그러자 헌병대 작전과장과 군검찰부 상사가 항소포기서 양식을 가져왔기에 즉시 이름을 적고 무인을 하여 항소를 포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진정인이 직접 항소포기서에 서명무인을 하였다는 참고인 박○○과 백○○, 진정인 자신의 진술, 공판조서, 항소포기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항소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주지 않아 항소포기서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에 대하여(부조리신고에 대한 미조치 및 강제입원추진 주장)

(1) 인정사실

(가) 제5군단 감찰부 내부공익신고 접수처리부에 의하면, 진정인이 헌병대 징계입창 직전인 2004.7.2. 14:00경 감찰부에 찾아와 '입창조치에 대한 억울함'을 제기, 감찰부는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진정인의 충동적·도발적 행동에 기인한 허위사실로 확인·종결처리 하였다.

(나) 현역복무부적합전역심사결과(2004.8.6) 자료에 따르면, 소속대에서는 진정인을 징계입창경력(3회)과 그때마다 헌병대에서 난동행위 등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 대상자로 보고하였으나, ○군사령부에서 '군병원 후송조치(추가관찰) 후 부적응 지속 시 재심의' 하는 것으로 '부결' 조치하였다.

(다) 이후 소속대가 군병원입원을 추진하였으나 정신병이 아니어서 입원할 수 없다

는 군병원측 입장에 따라 진정인을 직접 관리하던 중, 진정인이 8.18. 후임병 구타 후 비무장 탈영하였다가 3일 만에 체포되었다.

(라) 진정인의 동태상황부에 따르면, 육군교도소 입소당일 세면대 파손 및 거실내 난동을 비롯하여 ○○교도소로 이송된 후에도 횡설수설, 고성방가, 자해, 시설물손괴 등 계속적인 이상행동을 보였다.

(마) 이후 진정인은 2004.10.27. ○○시 ○○병원 정신과(의사 강○○) 진료결과, 망상·폭력적인 행동·불명·과잉행동 등의 증상이 있어 '정신분열병'의 병명이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동년 12.13.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이 주장하는 피진정인 4. 오○○의 '내무부조리 신고 미조치'와 진정인에 대한 소속대의 '군병원 강제입원 추진행위'는 관련규정에 의한 각 정당한 업무행위로서,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가. 진정요지 가.와 관련된 피진정인 이○○과 이○○의 행위는 업무착오와 업무미숙에 기인한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한 인권침해행위로서 향후 재발방지와 관행개선 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에 대한 경고 및 직원교육 실시를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다. 진정요지 다. 및 라.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28.

국가인권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호준 위 원 이홍록 위 원 나천수

2 07진인1637 [사망에 의한 인권침해] 2007. 9. 11. 결정

피해자는 군 장성사칭 및 유사군복 착용 혐의로 군 수사관에 의해 경찰관서로 연행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경찰에게 신병이 인도되던 중 사망한 형사피의자인바 신병 인도 과정에서 경찰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경고조치를 취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수사관련 직원들에 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및 권한, 이에 따른 국가기관 상호 간의 신병인수절차에 관한 소정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피진정인 이○○ 등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비록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의 피의사실에 비추어 이를 수사할 권한은 없었으나, 당시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가 불명한 경미범죄자인 관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는 있었다고 보이지만 체포를 계속할 권한은 없으므로 체포 즉시 경찰에 연락하여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신병을 인수하러 올 때까지 체포하고 있거나 최소한 가까운 경찰관서로 데리고 가 경찰관서에 신속히 인도하여야 함.

[2] 피해자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군사법경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의 신분으로서 체포하였다고 보는 경우임.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피의자인 피해자를 체포할 권한이 있을 뿐, 그 체포를 계속할 권한이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현행범인의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임의수사로 볼 수 있는 임의동행 및 증거물의 임의제출 요구나 피의사실 조사 및 사실상의 검증절차 등은 권한 밖의 행위로써 위법·부당한 것임은 너무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한의 한계 및 절차를 오인하여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하고, 이러한 임의동행을 전·후하여 일정하게 피해자의 피의사실에 대한 사실상의 조사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법경찰관리인 피진정인 송○○ 등에게 신병인계를 신속하게 하지 못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3] 피진정인 송○○은 피진정인 이○○과 마찬가지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그 권한의 한계를 오인하여 오히려 피진정인 이○○에게 법적근거도 없는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부당한 형사계 사무실 내에서의 조사행위를 방치하였음은 물론, 주민조회를 통하여 피해자가 사기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임을 발견하였다면 자신이 직접 검거절차를 진행한 후 경찰관서의 내부업무분장에 따라 경제팀으로 인계하였어야 할 것이나 피진정인 이○○에게 신병을 인계할 것을 권유하는 등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됨.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판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진정인 이○○과 송○○은 각 군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자신들의 직무범위와 권한의 한계를 위반하여「형사소송법」제212조 및 제213조, 그리고「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3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신병인수 절차를 위반함으로써「헌법」제12조에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 및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4] 가혹행위 여부 등 변사사건 처리상 관련한 진정에 대해서는「형사소송법」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신체수색도 체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기 등을 압수하고 증거를 은닉하거나 손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허용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강력범죄 혐의자도 아니어서 흉기를 소지했을 개연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청산염와 같은 독극물을 소지했을 것을 예상하여 압수수색을 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당시 피해자의 피의사실의 경중에 비추어 자해를 예비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만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헌법」第12條,「군사법원법」제43조, 제44조,「군형법」제1조,「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군복 및 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법위에 관한 법률」제9조,「형사소송법」제212조, 제213조, 214조, 제216조,「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2조,「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31조

▌진정인 ▌조○○

▌피해자 ▌조○○

▌피진정인 ▌1. 이00
2. 고00
3. 진00
4. 송00
5. 홍00
6. 김00

▌주 문 ▐ 1. ○○○○사령관 및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이○○과 송○○에 대하여 각 경고조치할 것과 소속 수사업무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및 권한, 이에 따른 국가기관 상호 간의 신병인수절차에 관한 소정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2007. 4. 26 군 장성을 사칭하였다는 혐의로 군수사관에게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에 대한 진상규명 및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한다.

가. 군수사관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말을 바꾸어 임의동행을 하였다고 하는 등 신병확보과정이 불투명하다.

나. 군수사관은 ○○경찰서에서 민간인인 피해자를 불법조사하고, 성명불상 경찰관은 이를 방조하는 등 상호 신병인수 및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다. 경찰과 군은 피해자가 스스로 독극물을 먹고 자살했다고 하고 있으나 첫째, 군과 경찰이 피해자를 체포하여 50여분 간 세워 놓고 조사하고, 소지품 확인 및 안전조치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둘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혹행위로 추정되는 상처가 있고, 셋째, 피해자의 지갑에 현금과 신분증이 없고 ○○중앙대학병원에 피해자 사체인계 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넷째, 경찰서 내부 조사실의 CCTV녹화기록만 공개하고 정작 중요한 복도 및 로비의 CCTV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다섯째, 피해자의 유품인 수첩, 휴대폰, T-money card를 다시 달라고 하는 등 조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및 변사사건처리에 의문이 있다.

2. 당사자 지위

진정인은 피해자의 딸이고, 피해자는 군 장성사칭 및 유사군복 착용 혐의로 군 수사관에 의해 경찰관서로 연행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경찰에게 신병이 인도되던 중 사망한

형사피의자이다.

피진정인 이○○, 고○○, 진○○은 ○○○○사령부 헌병단 수사과 소속 군 사법경찰관 및 사병으로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관서로 연행하여 조사하고 신병인도 업무를 수행했던 자들이고, 피진정인 송○○, 홍○○은 사건 당일 ○○경찰서 형사과 및 수사과의 당직근무자로서 위 이○○ 등의 피해자에 대한 신병인수 업무를 안내 및 담당하였던 경찰관들이며, 피진정인 김○○는 피해자에 대한 변사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이○○

가) 피진정인 이○○은 군 관련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군 사법경찰관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어 군수품 단속 및 계몽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나) 2007. 4. 24. 군수품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및 계몽활동을 하다 유사군복을 착용하고 기무사령부 장군을 사칭하는 자가 있다는 풍문을 듣고 관찰하던 중, 같은 달 26. 14:00경 ○○구 한강로 3가 소재 '세계군장백화점'에서 유사군복 차림의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다) 대면 당시 피해자에게 신분을 밝히고 유사군복 착용 및 구매여부를 문의하자 피해자가 관련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있던 계급장 등을 꺼내 보여주었고,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주민등록증은 없다면서 소장계급장에 정복 차림의 사진을 부착하여 위조한 제00사단 000연대 부대출입증을 제시하였으며, 이어 피해자에게 임의의 동의를 얻어 피해업소에 전화를 하여 장군을 사칭한 혐의사실, 피해자의 소지품 확인, 불법 구매한 군복을 회수하였고, 같은 날 14:10경 군 차량을 이용 ○○경찰서로 임의 동행하였다.

라) 같은 날 14:40경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도착하여 피진정인 송○○에게 유사군복을 착용한 채 장군을 사칭하면서 차량 정비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용의자를 인계하러

왔다고 하자 위 송○○이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물어 본 후, 주민조회를 통하여 피해자가 2002. 4. 25.부로 00경찰서에서 사기혐의로 지명 수배되어있고, 과거 전과가 2범임을 알려주며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위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때 피해자의 신병이 경찰 측에 인계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마) 당시 검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피진정인 송○○의 협조를 받아 피해자에게 장군 군복류 구매경위, 군 경력,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소장계급장과 기장, 30년 휘장 등을 스스로 유사군복에 부착하여 보여 줌에 따라 운전병 상병 전○○으로 하여금 이를 촬영하도록 하였으며,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질문과 확인을 피해자가 물 마시는 시간, 화장실 이용 시간을 포함하여 약 50여분 간 하였는데, 이는 조사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이후 위 송○○의 부탁을 받고 협조차원에서 경제팀으로 신병을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다.

2) 피진정인 고○○

2007. 4. 26. 피진정인 이○○을 지원하라는 부대의 지시를 받고 동인과 함께 장군 사칭자인 피해자를 대면하였는데, 당시 위 이○○이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관련 내용을 물어보자 피해자가 스스로 유사군복 구매 및 착용을 인정하고 군복의 자진반납 의사를 표명하여 경찰서로 동행하였고, 본인은 군복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지인 고○○을 찾아가 군복을 임의제출 받아 회수하고는 부대로 복귀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폭행 등 인권침해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3) 피진정인 진○○

가) 당시 군 헌병단의 차량운전병으로 근무하였는데, ○○경찰서로 이동할 때 피해자가 순순히 차량에 탑승하였고, ○○경찰서 형사과에 도착하여서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대기하였다

나) 피해자가 형사과 사무실에서 5~6회 정도 물을 마시고, 화장실에 갈 때 뒤따라가 지켜보았고, 이후 경제팀 사무실로 이동하기 위해 형사과 사무실을 나왔을 때 및 피해자가 갑자기 화장실로 갈 때도 지켜보았는데, 피해자가 대변을 본 후 세면대 수돗물을 2~3회 마신 다음 경제팀 앞 의자에 앉아 있다가 호흡을 크게 내쉬며 쓰러져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가는 것을 보았다.

4) 피진정인 송○○

가) 2007. 4. 26. 14:40경 피진정인 이○○이 피진정인 진○○과 함께 장군을 사칭하는 용의자의 신병을 인계한다고 하여 담당부서인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로 인계를 하라고 하였으나 신원확인도 하고 보고서도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형사과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빈자리에 앉아 용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장군 계급장을 부착하게 하고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해 조회를 하니 수배된 사실이 확인되어 체포자인 위 이○○에게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담당부서인 경제팀으로 신병을 인계할 것을 재차 권유하였으나 피진정인 이○○은 이를 듣지 않고 ○○○○사령부 헌병단 사무실에 전화보고를 하고, 약 40여 분간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는 등 머물러 있다가 경제팀으로 피해자의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데리고 나가던 중 피해자가 독극물을 먹고 사망하게 된 것이다.

다) 당시 피진정인 이○○이 본인에게 신병을 인계하였다고 하나 본인은 형사과 소관업무가 아닌 사기 사건의 용의자를 인계받을 이유가 없고, 특별사법경찰관리인 군 수사관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를 체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되어 피해자의 수배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본인이 직접 피해자를 체포하지 않은 것이다.

5) 피진정인 홍○○

가) 당시 경제팀 당직근무 중이었는데, 피진정인 이○○이 혼자 들어와 군 장성을 사칭하면서 차량수리비 30만원을 주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서 소장계급장이 달린 베레모, 소장 계급장, 위조된 피해자의 군신분증, 수첩, 지갑, 휴대폰, 비타민약 등을 당직데스크 책상에 올려놓았다.

나) 이에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니 화장실에 있다고 하고,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서를 본인에게 주면서 사기로 수배도 되어 있다고 하여 수배내역을 확인하려고 전산실로 갔다가 사무실로 돌아 온 사이, 피진정인 이○○도 수배내역을 확인하고자 형사과 사무실로 갔다 오더니 "조○○가 이상하다. 병원에 데려가야 겠다"라고 하여 경제팀 사무실 앞에 나가 보니 피해자가 고개 숙인 채 눈을 감고, 입에서 침을 흘리고 있어서 흔들어 보았지만 반응이 없어서 긴급히 119로 신고를 하였다.

다) 피해자를 태우고 119구급차에 동승하여 중대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약 30분 후에 피진정인 이○○과 대령 군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장교가 응급실로 찾아와 '기소중

지자 검거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신병인수증을 써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신병을 정확히 인계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를 거절하였다.

6) 피진정인 경감 김○○

가) 본인은 피해자의 변사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장인데, 피해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당시 우측 귀 아래 목 부위에서 피하출혈이 발견된 것은 외력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 변사가가 후송된 중대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입한 주사(심장을 강하게 뛰게 하는 작용을 하는 약을 투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의사의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사건발생 직후 ○○경찰서의 CCTV녹화기록을 확인한 결과, 형사과 폭력팀에 설치된 CCTV는 정상 작동되어 유족 등에게 이를 공개하였으나 경찰서 1층 복도 및 로비에 설치된 CCTV는 2007. 4. 22.까지만 녹화가 되어 있고, 이후에는 고장이 나 녹화가 안 되어 공개하지 못한 것으로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숨기려는 것은 아니다.

다) 피해자의 신원은 경찰서에서 이미 확인된 상태였고, ○○ 중대병원 응급실의 의료기록차트에도 '조○○'로 정확히 기입되어 있는 상태로 ○○ 중대병원에 인적사항을 불분명하게 알려 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유품을 4일이 지나서 유가족에게 다시 보내 달라고 한 것은 변사자의 정확한 과거 행적수사를 위해 요청한 것이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본 피해자의 변사사건 사인은 청산염 중독으로 감정되었고,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 CCTV자료 등 현재까지 수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사과정의 가혹행위는 없었으며, 피해자는 피진정인 이○○이 2007. 4. 26. 15:40경 경제팀으로 데리고 나가던 중 화장실에 들러 소지하고 있던 청산염을 먹고 나와 경제팀 앞 대기실 앞에서 갑자기 쓰러져 같은 날 15:51경 119구급차로 ○○ 중대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고, 위 병원 담당의사에 의해 같은 날 16:47경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4. 관련법령

붙임자료 참조

5. 인정사실 및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임의동행 등 조사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위 4.항의 관련법령, 군수사관인 피진정인 이○○, 고○○(이하 '피진정인 이○○ 등' 이라함) 그리고 사법경찰관인 피진정인 송○○의 진술서 및 문답서, 피해자에 대한 변사사건 수사기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이○○ 등은 「군사법원법」 제43조에 따른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범죄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으로서 「군형법」 제1조 제4항에 정한 적용범죄 및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동 법이 정한 군복의 절도 및 강도, 장물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 받은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인 이○○ 등은 2007. 4. 26. 13:30경 서울 ○○구 한강로 1가 소재 '세계군장백화점'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임의의 질문을 통하여 「군복 및 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군복 및 군용장구 착용 등에 대한 피의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군 장성사칭 사기혐의에 관한 피의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같은 날 13:40경 군 관용차량을 이용 ○○경찰서로 임의 동행하였고,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동 경찰서 피진정인 송○○에게 피해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해 피해자의 군 경력, 가족사항 및 인적사항, 유사군복 및 계급장의 구매 및 사용 경위, 장군사칭 혐의 등에 관하여 질문하고, 또한 피해자에게 계급장을 부착하여 유사군복의 착용의 재현을 요구하고 동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장면을 피진정인 상병 진○○으로 하여금 사진을 찍게 하는 등으로 사실 확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 이○○은 2007. 4. 27. ○○○○사령부 헌병단장 및 사령관에게 50대 민간인이 사복차림에 소장계급장이 부착된 베레모를 착용, 장군을 사칭하면서 서울 ○○ 부근 군장점에서 흑색조끼를 외상 구매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여오다가 탐문·잠복수사 중이던 ○○○○사령부 헌병에게 2007. 4. 26. 14:00경 검거되었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다.

라) 피진정인 이○○은 피진정인 송○○의 도움을 받아 2007. 4. 26. 14:00경 서울 ○○구 한강로 3가 소재 세계군장백화점 내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피해자를

검거하였음을 ○○경찰서장에게 보고한다는 취지의 일명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마) 피진정인 송○○은 피진정인 이○○이 비록 군사법경찰관이지만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이던 피해자에 대하여 체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인 검거자인 피진정인 이○○에게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피해자가 사기혐의자였던 관계로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으로 신병인계를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이○○이 이러한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동의도 없이 약 45분 간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판단

피진정인 이○○ 등은 2007. 4. 28. 13:00경 서울시 ○○구 한강로 3가 소재 '세계군장백화점' 내에서 군 장성을 사칭하며 유사군복 및 계급장 등을 착용 및 소지하고 사기행각을 벌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자 민간인 신분이었던 관계로 조사권한이 없어 경찰관서로의 임의동행을 하였고, 특히 피진정인 이○○은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도 조사가 아닌 내부보고 및 단속업무를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단순히 사실 확인만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위 인정사실 및 관련법령과 같이 피진정인 이○○ 등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군인사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범한 죄에 관하여 수사할 수 있고, 또한 일부 「군형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

피진정인 이○○ 등이 비록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동 특별법은 군복의 절도 및 강도, 장물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 피해자가 범한 「군복 및 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민간인 군복착용금지) 및 제2항(유사군복 착용금지)의 위반 범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는 수사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피진정인 이○○ 등은 피해자가 민간인이었던 관계로 수사권한이 없어 피해자의 유사군복 착용 및 장군사칭 사기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임의의 동의를 받아 이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물을 제출받았을 뿐 만 아니라, ○○경찰서로 임의 동행하였으며,

동 경찰서에서 위 피의사실을 일부 재현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하여 조사 등 수사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에 임의동행하거나 증거물을 임의제출 받는 행위, 또한 사실조사를 위한 질문 등을 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적법한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이 행할 수 있는 광의 및 협의의 의미에서 명백히 조사 및 수사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 이○○ 등이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병확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상급지휘관에게는 잠복 수사 중 군 장성 사칭 사기 및 유사군용 민간인 범죄자를 "검거" 하였다고 보고하고, 또한 2007. 4. 26. 14:40경 신병인계에 관련하여 당시 특별사법경찰관인 피진정인 이○○의 수사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잘 알지 못하던 피진정인 송○○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에도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검거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는 자신의 주장과도 상당부분 불일치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자신들의 행위가 단순한 확인행위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피진정인 이○○ 등이 민간인에 대한 정당한 수사권한이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관서로 임의 동행한 행위부분에 있어서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경미범죄자라도 주거가 불명인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2조 및 제214조의 규정을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가 비록 벌금 10만원이하의 경미범죄자이었지만 위조된 군부대출입증을 제시하였고, 기소중지자로서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일반 사인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사인이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할 의무를 따로 정하여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피진정인 이○○ 등이 피해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 행위를 임의 동행한 것으로 법률상 단순 착오한 것이라고 볼 수 도 있을 것이나,

피진정인 이○○ 등이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전·후 과정을 놓고 볼 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들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고, 피해자에게 범행을 재현하게 하고 사진촬영을 하는 등으로 피의사실에 대하여 실제적인 조사·신문 등의 수사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수사행위와 피해자에 대한 체포행위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따로 분리하여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동인들의 일련의 행위들이 법률적용의 단순착오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피진정인 송○○은 피진정인 이○○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피해자에 대한 체포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곧 바로 동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신병을 신속히 인계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전에서 약 40여 분간 위법·부당하게 피해자의 신병을 장기간 관리하면서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묵인한 책임이 상당부분 있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 이○○ 등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관서로의 임의동행 및 증거물의 임의제출 그리고 일정한 조사행위와 피진정인 송○○의 방조행위는 「군사법원법」 제43조 및 제44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법률」 제9조,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군사법경찰관으로서 관련 직무의 범위를 위반하였을 뿐 만 아니라 「헌법」 제12조에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같은 법 같은 조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병인수절차에 대하여

1) 인정사실

피진정인 이○○ 및 송○○의 진술서 및 문답서, ○○경찰서가 제출한 변사사건 수사자료 및 형사과 사무실 CCTV녹화자료, 그리고 동 CCTV녹화자료에 대한 녹취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이○○이 2007. 4. 26. 13:30경 서울시 ○○구 한강로3가 소재 '세계군장백화점'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동인의 군 장성사칭 사기 및 유사군복 등 군용장구 착용 등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한 후, 경찰관서에 피해자를 인계하고자 같은 날 14:10경 상병 전○○이 운전하던 군 수사용 차량에 태워 같은 날 14:40경 피진정인 송○○이 당직근무 중이던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임의 동행한 사실이 있다.

나) 당시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의 CCTV 녹화기록에 의하면, 피진정인 이○○은 최초 방문목적을 묻는 피진정인 송○○에 대하여 군 장성사칭 사기 및 유사군복 착용 피의자인 피해자의 신병인계도 하고 자신의 기관에 필요한 사실 확인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피진정인 송○○은 피진정인 이○○에게 피해자를 수사과 경제팀으로 신병 인계할 것을 안내하였지만 피진정인 이○○이 형사과 사무실에 피해자를 동행하여 들어 왔다.

다) 또한, 피진정인 송○○은 피진정인 이○○이 사병 진○○의 피해자에 대한 감시

및 보조 하에 장군복류 구매 경위, 착용 및 사칭관계, 군복무 및 가족사항 등을 조사하고, 심지어는 유사군복 착용을 재현하고 사진을 촬영하였음에도 이를 묵인·방조하고, 피해자에 대한 주민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피진정인 이○○에게 담당부서인 수사과 경제팀으로의 신병인계를 계속 요구하였으며, 특히 위 조회 과정에서 피해자가 2002년 경남산청경찰서로부터 별건 사기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 수배된 기소중지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진정인 이○○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민간인에 대한 체포 등 수사권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동인에게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라) 그리고 피진정인 이○○이 같은 날 15:26경 피진정인 송○○의 요청에 따라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로 피해자의 신병을 인계하기 위하여 나올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신병을 실질적으로 조사·관리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마) 피진정인 이○○은 피진정인 송○○이 주민조회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하고, 지명수배된 기소중지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서'를 자신에게 작성하도록 하였을 때, 피해자의 신병이 피진정인 송○○에게 인계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피진정인 송○○의 부탁을 받아 편의 상 수사과 경제팀 피진정인 홍○○에게 데려다 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바) 피진정인 송○○은 자신은 담당부서인 경제팀으로의 신병인수를 위해 단지 신원확인 및 검거보고서 작성을 도와주었을 뿐 피해자의 신병을 직접 인계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피진정인 홍○○은 피해자가 자신의 경제팀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고 중간에 화장실에 들렀다가 변사사건이 발생한 것이어서 피진정인 이○○으로부터 피해자의 신병을 인수받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의 변사사건 발생 후, 피진정인 이○○으로부터 신병인수서의 발급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관련 피진정인들은 상호 피해자의 신병인수절차 및 그 사실여부에 대하여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212조 및 제213조에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인도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

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1조 제2항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체포자로부터 그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 및 체포의 일시·장소·사유를 청취하여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현행범인을 체포 또는 인수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판단 가.항에서 살펴보았듯이 피진정인 이○○ 등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비록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의 피의사실에 비추어 이를 수사할 권한은 없었으나, 당시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가 불명한 경미범죄자인 관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는 있었다고 보이지만 체포를 계속할 권한은 없으므로 체포 즉시 경찰에 연락하여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신병을 인수하러 올 때까지 체포하고 있거나 최소한 가까운 경찰관서로 데리고 가 경찰관서에 신속히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가사 위와 같은 피진정인 이○○ 등의 피해자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군사법경찰관이 아닌 일반 사인의 신분으로서 체포하였다고 보는 경우이다. 피진정인 이○○ 등은 피의자인 피해자를 체포할 권한이 있을 뿐, 그 체포를 계속할 권한이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현행범인의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임의수사로 볼 수 있는 임의동행 및 증거물의 임의제출 요구나 피의사실 조사 및 사실상의 검증절차 등은 권한 밖의 행위로써 위법·부당한 것임은 너무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한의 한계 및 절차를 오인하여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하고, 이러한 임의동행을 전·후하여 일정하게 피해자의 피의사실에 대한 사실상의 조사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법경찰관리인 피진정인 송○○ 등에게 신병 인계를 신속하게 하지 못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피진정인 송○○은 피진정인 이○○이 설사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일반 사인의 위치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해 인도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임의동행의 형식을 통해 피해자의 신병을 인계하려는 의사를 피력하였더라도 이를 바로 잡아 신속히 「형사소송법」 제212조 및 제213조, 그리고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포자인 피진정인 이○○으로부터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피해

자의 신병을 인도받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피진정인 송○○은 피진정인 이○○과 마찬가지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그 권한의 한계를 오인하여 오히려 피진정인 이○○에게 법적근거도 없는 '기소중지자 검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부당한 형사계 사무실 내에서의 조사행위를 방치하였음은 물론, 주민조회를 통하여 피해자가 사기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임을 발견하였다면 자신이 직접 검거절차를 진행한 후 경찰관서의 내부업무 분장에 따라 경제팀으로 인계하였어야 할 것이나 피진정인 이○○에게 신병을 인계할 것을 권유하는 등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판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피진정인 이○○과 송○○은 각 군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자신들의 직무범위와 권한의 한계를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212조 및 제213조, 그리고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1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신병인수 절차를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조에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 및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가혹행위 여부 등 변사사건처리의 문제점 여부

진정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위 진정요지 다.항과 같이 피진정인들이 체포 및 조사 중 가혹행위 및 신병관리 소홀 등 변사사건처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경찰서의 변사사건 수사기록 및 CCTV녹화기록 등 자료에 의하면,

첫째, 체포 및 조사, 그리고 신병인수과정에서 피진정인 이○○ 등과 피진정인 송○○ 등이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관련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체포 및 조사, 그리고 최초 변사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군장백화점' 주인 강경서 및 '○○공업사' 주인 김○○도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둘째,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의 CCTV녹화기록에서도 피진정인 이○○이 피해자가 자리에 앉지 않고 선 채로 조사에 응하다가 수시로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될 뿐 언어적·신체적 강압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셋째,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발견된 피하출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사 김○○의 소견 및 부검기록, ○○ 중대병원의 담당의사 장○○의 소견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망 직전 ○○ 중대병원의 응급치료 중 심폐소생을 위해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이라는

약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사바늘 자국임을 확인하고 있고 이외 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고 간과 폐에 울혈이 심한 점으로 보아 청산염에 의한 독극물 중독사인 것으로 밝히고 있는 점,

넷째, 피해자의 신원은 당시 ○○경찰서에게 이미 확인된 상태에서 ○○ 중대병원에 호송되어 동 병원의 의료기록차트에 '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망확인 후, 영안실 존안 시 영안실 직원의 단순 실수로 피해자의 시신을 '조○○'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점,

다섯째, ○○경찰서 경비과 상황실 경위 허장용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사건 발생 당시 동 경찰서 형사과에 설치된 CCTV는 정상 작동되어 유족에게 공개하였으나, 1층 복도·로비에 설치된 CCTV는 사건 발생 이전인 2007. 4. 22. 작동이상으로 상황실에 화면만 출력되고 녹화저장이 안되어 공개하지 못한 것으로 관련 변사사건 경위를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여섯째, 변사자의 유품인 휴대폰, 교통카드 등을 4일 후 유가족에게 요구한 이유에 대하여는 이 건 변사사건을 수사담당한 피진정인 김진서가 피해자의 정확한 과거 행적 수사에 필요하여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점,

끝으로, 피해자의 체포 및 신병인수 인계에 따른 소지품 확인 등 신병관리 소홀에 대하여는, 피진정인 이○○ 등은 피해자를 임의동행 하기 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수첩, 지갑, 핸드폰, 유판씨 3개, 타이레놀 3개, 봉지약(간질환치료제) 3개, 교통카드, 소장계급장 3개, 베레모, 기장, 지휘관 휘장 등을 확인하고는 군 장성사칭 및 유사군복 착용 혐의에 해당하는 소장계급장 등에 대하여만 임의제출을 받아 강제로 신체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진정인 송○○은 신병인수를 받은 상태가 아니어서 자신 또한 체포 등에 따른 신체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가사 당시 피진정인 이○○ 등이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면,「형사소송법」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이는 체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기 등을 압수하고 증거를 은닉하거나 손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허용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강력범죄 혐의자도 아니어서 흉기를 소지했을 개연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청산염와 같은 독극물을 소지했을 것을 예상하여 압수수색을 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피진정인 송○○이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온 피해자를 인계받을

때 체포에 수반되는 자해의 위험성 등의 판단에 따라 수갑 및 포승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당시 피해자의 피의사실의 경중에 비추어 자해를 예비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만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판단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내용 중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 및 「헌법」 제12에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의 장인 ○○○○사령관 및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이○○과 송○○에 대하여 각 경고조치를 취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수사관련 직원들에 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및 권한, 이에 따른 국가기관 상호 간의 신병인수절차에 관한 소정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서는 사실이 아니거나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9. 1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별지] 관련 법령

1.「헌법」 第12條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③逮捕·拘束·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者의 家族등 法律이 정하는 者에게는 그 이유와 日時·場所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⑦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2.「군사법원법」 第43條 (軍司法警察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軍司法警察官으로서 犯罪를 搜査한다.〈改正 1994.1.5, 1999.1.21, 2000.12.26〉

1. 憲兵科의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과 法令에 의하여 犯罪搜査業務를 管掌하는 部隊에 소속하는 軍務員으로서 犯罪搜査業務에 종사하는 者
2. 法令에 의한 機務部隊에 소속하는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 및 軍務員으로서 保安業務에 종사하는 者
3. 國家情報院職員으로서 國家情報院長이 軍司法警察官으로 指命하는 者
4. 檢察搜査官

第44條 (軍司法警察官의 搜査限界)

軍司法警察官은 軍事法院管轄事件을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搜査한다.〈改正 1994.1.5, 1999.1.21, 1999.12.28〉

1. 第43條第1號에 規定된 者는 第2號 및 第3號에 規定하는 罪외의 罪
2. 第43條第2號에 規定된 者는 刑法 第2編第1章 및 第2章의 罪, 軍刑法 第2編第1章 및 第2章의 罪, 軍刑法 第80條 및 第81條의 罪와 國家保安法, 軍事機密保護法,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 및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國家保安法에 規定된 罪를 범한 者가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에 規定된 罪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에 規定된 罪
3. 第43條第3號에 規定된 者는 國家情報院法 第3條第1項第3號 및 第4號에 規定된 罪

3.「군형법」 第1條 (被適用者)

①이 法은 大韓民國의 領域內外를 不問하고 이 法에 規定된 罪를 犯한 大韓民國軍人에게 適用한다.〈改正 1975.4.4〉

②前項에서 軍人이라 함은 現役에 服務하는 將校, 准士官, 副士官 및 兵을 말한다. 다만, 轉換服務중인 兵은 제외한다.〈改正 1970.12.31, 1983.12.31, 1999.2.5, 2000.12.26〉

③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軍人에 準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改正 1963.12.16, 1970.12.31, 1973.2.17, 1975.4.4, 1981.4.17, 1983.12.31., 1993. 12.31, 2000.12.26〉

1. 軍務員
2. 軍籍을 가진 軍의 學校의 學生·生徒와 士官候補生·副士官候補生 및 兵役法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軍籍을 가지는 在營中인 學生
3.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罪를 犯한 內外國人에 대하여도 第3項과 같다.〈改正 1981.4.17〉

1. 第13條第2項 및 第3項의 罪
2. 第42條의 罪
3. 第54條 내지 第59條의 罪
4. 第66條 내지 第71條의 罪
5. 第75條第1項第1號의 罪
6. 第77條의 罪
7. 第78條의 罪
8. 第87條 내지 第90條의 罪
9. 第13條第2項 및 第3項의 未遂犯
10. 第58條의2의 未遂犯
11. 第59條第1項의 未遂犯
12. 第66條 내지 第70條와 第71條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

13. 第87條 내지 第90條의 未遂犯

⑤ 第1項 내지 第3項에 規定된 者가 軍服務中이나 在學 또는 在營중에 이 法에 정한 罪를 犯한 때에는 轉役·召集解除·退職 또는 退校나 退營후에도 이 法을 適用한다.〈新設 1963.12.16.〉

4.「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第3條 (軍用物犯罪에 대한 刑의 加重)

① 軍用物에 관하여 刑法 第2編第38章 또는 第41章의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1년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다만, 軍用物中 軍糧·軍服等 및 軍用油類에 관하여는 集團的 또는 常習的으로 犯行하거나 物品價額이 10萬원 이상이거나 1,000킬로그람 이상의 物品 또는 10드람 이상의 油類인 때에 限하여 이를 適用한다.②前項의 罪에 대하여는 20萬원 이하의 罰金을 併科할 수 있다.

5.「군복 및 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6.「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법위에 관한 법률」 第9條 (軍司法警察官吏)

①「군사법원법」 第43條第1號 및 第46條第1號에 規定된 軍司法警察官吏로서 地方檢察廳檢事長의 指名을 받은 者는「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規定된 犯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한다.〈改正 1981.12.31, 1987.12.4, 2006.7.19〉

②「군사법원법」 第43條第2號 및 第46條第2號에 規定하는 軍司法警察官吏로서 地方檢察廳檢事長의 指命을 받은 者는「군사기밀보호법」에 規定하는 犯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한다.〈新設 1981.12.31, 1987.12.4., 2006.7.19.〉

7.「형사소송법」 第212條 (現行犯人의 逮捕)

現行犯人은 누구든지 令狀없이 逮捕할 수 있다.

第213條 (逮捕된 現行犯人의 引渡)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 아닌 者가 現行犯人을 逮捕한 때에는 卽時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吏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②司法警察官吏가 現行犯人의 引渡를 받은 때에는 逮捕者의 姓名, 住居, 逮捕의 事由를 물어야 하고 必要한 때에는 逮捕者에 對하여 警察官署에 同行함을 要求할 수 있다.
③削除〈1987.11.28.〉

第214條 (輕微事件과 現行犯人의 逮捕)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該當하는 罪의 現行犯人에 對하여는 犯人의 住居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 限하여 第212條 내지 第213條의 規定을 適用한다.〈개정 1973.1.25, 1980.12.18, 1995.12.29〉

第216條 (令狀에 依하지 아니한 强制處分)
①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第200條의2·第200條의3·第201條 또는 第2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束하는 경우에 必要한 때에는 令狀없이 다음 處分을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 他人의 住居나 他人이 看守하는 家屋, 建造物, 航空機, 船車內에서의 被疑者 搜査
2. 逮捕現場에서의 押收, 搜索, 檢證
②前項第2號의 規定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被告人에 對한 拘束令狀의 執行의 境遇에 準用한다.
③犯行中 또는 犯行直後의 犯罪 場所에서 緊急을 要하여 法院判事의 令狀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令狀없이 押收, 搜索 또는 檢證을 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事後에 遲滯없이 令狀을 받아야 한다.〈新設 1961.9.1〉

8.「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법에 의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05.8.26〉
②법에 의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리(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9.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1조

제31조 (현행범인의 체포) ①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체포자로부터 그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 및 체포의 일시·장소·사유를 청취하여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③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신설 1988.4.2, 1996.12.31〉

④제23조제5항·제6항 및 제23조의2의 규정은 현행범인을 체포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6.12.31〉

3 09진인4817 [상사의 폭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10. 5. 10. 결정

○군 제○○전투비행단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조사자의 인격권의 존중 및 압수수색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피진정인은 당시 진정인을 피내사자의 신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참고인과의 연락 등 공적인 조사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충실히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말에 기초하여 수차례에 걸쳐 폭언을 반복적으로 한 행위는, 군 수사조직의 상급조사자로서 사적관계를 넘어서 공무수행 중에 비롯된 것이고, 또한 이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보아도 과도한 것으로써 진정인에게 인격적 수치심과 모멸감 준 것으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2]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수사관 사칭 혐의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동의나 관련 압수영장 없이 임의로 헌병대대 행정실로 송부된 진정인의 헌병신분증을 가져갔다가 2주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위 행정실로 다시금 돌려준 행위는 「군사법원법」 제231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의 수사권한의 한계를 일탈하여 관련 법률에 정함이 없는 위법·부당한 수사행위를 한 것으로써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군사법원법」 제229조 및 제231조

▌ 진정인 ▌ 전○○

▌ 피진정인 ▌ 이○○

▌주 문 ▌ ○군 제○○전투비행단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조사자의 인격권의 존중 및 압수수색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제○○전투비행단 체력단련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1. 5. 오전 부대 인근에서 발생한 체력단련장 근무자인 진정외 캐디 박○○의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선의로 가해자와의 합의를 도와주게 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에게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이 새끼, 임마, 이 자식" 등의 폭언을 하여 수치심을 주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동의도 없이 우편으로 송부된 진정인의 헌병신분증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09. 11. 5. 오전 제○○전투비행단 체력단련장에서 근무하던 캐디 박○○가 위 부대 앞 삼거리에서 소속 부대원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소속부대 헌병대 중사 이○○에게 사건 신고를 하였다. 신고 당시 담당수사관인 중사 이○○이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 입건될 수 있으니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합의를 보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권유를 하고, 교통사고 가해자도 합의를 원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인 박○○ 또한 합의를 원하는 가운데, 사건 당일 저녁 교통사고 피해자 박○○의 부탁을 받았다. 이를 체력단련장 소장에게 보고하고, 피해자와 함께 가해자의 집에 찾아가 250만원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런데 평소 자신에 대하여 불만이 있던 피진정인이 변호사법 위반 및 수사관 사칭 등의 혐의로 진정인을 3차례나 불러 조사하고, 조사과정에서 전화상으로 반말은 물론 "이 새끼, 이 놈, 이 자슥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폭언을 하여 인격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다.

2) 위 혐의와 관련하여 헌병대에서 3차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정인은 관련 혐의에 대해 억울해 하며 헌병신분증의 재발급을 위해 헌병대대 행정계에 반납하였다고 해명하였는데도, 피진정인은 "중간에 신분증을 가지고 갔는지 어떻게 아느냐? 정확하게 조사하라."라고 담당수사관이 중사 이○○에게 지시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인 본인에게 아무런 사전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진정인의 신분증을 부당하게 가져갔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제○○전투비행단 기지지원전대 헌병대대 이○○)

2009. 11. 5. 07:55경 충남 ○○시 ○○면 소재 ○○초등학교 앞 교차로 상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도하던 중이었다. 같은 달 6. 담당수사관 중사 이○○으로부터 교통사고 가해자인 진정외 하사 남○○이 진정인이 사고당일 교통사고 가해자 부친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헌병수사관 행세를 하며 수사기관에 교통사고 피해자 박○○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하여 250만원에 합의를 하였는데도 형사 입건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사건담당 수사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

그 후 교통사고 피해자 박○○가 사고발생 직후 교통사고 가해자 측과 250만원에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헌병의 초동수사 단계부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을 거부하여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진정인의 도움을 받아 교통사고 피해자 박○○의 조사협조를 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이 자신은 합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말대꾸를 하여 진정인에게 "야 임마, 니가 가해자 부친에게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합의를 주선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데, 이 놈, 웃기는 놈 아니야? 니가 뭔데 권한도 없이 조사중인 사건에 끼어들어 합의를 봐? 그리고 무슨 큰소리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새끼."라고 말을 하고, 재차 "야! 니가 합의 보는데 갔었다며 자슥아."라고 전화상으로 말한 사실이 있다. 이는 진정인의 언행이 오만하고 불순하여 선배로서 꾸지람을 주려고 그랬던 것이다.

당시 진정인의 헌병수사관 사칭 혐의에 대한 내사과정에서 조사목적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9. 11. 중순 경 헌병대대 행정실에서 진정인의 헌병신분증을 가져와 확인한 후 되돌려 준 사실이 있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전화통화 녹취자료, 피진정인의 진술서,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이 제출한 신호위반 교통사건 수사보고서, 사건송치서, 위원회의 실지조사 결과보고서, 참고인 하사 서○○ 및 중사 조○○에 대한 전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11. 5. 07:55경 충남 ○○시 ○○면 소재 ○○초등학교 앞 교차로상에서 진정외 하사 남○○의 차량이 공군 제○○전투비행단 체력단련장 캐디로 근무하던 교통사고 피해자 박○○의 차량에 충격을 가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헌병대 중사 이○○에게 사고신고를 하였다.

나. 진정인은 위 교통사고 담당 수사관인 중사 이○○으로부터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합의를 보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았고, 교통사고 가해자 및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는 가운데, 교통사고 피해자 박○○의 부탁을 받고 사건 당일 교통사고 가해자의 집에 찾아가 가해자의 부친과 250만원에 합의를 하도록 도와주었다.

다. 2009. 11. 6. 헌병대 수사계장인 피진정인은 중사 이○○으로부터 가해자 하사 남○○이 사건당시 진정인을 헌병 수사관인 것으로 알았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시에도 진정인을 부친에게 수사계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음에도 진정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 사건이 무마되는 줄 알고 합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민원을 보고 받았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변호사법위반 및 수사관 사칭혐의에 대하여 내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후 동 혐의에 대하여 수사하였는데, 특이사항이 없어 내사 종결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위 교통사고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박○○가 가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헌병대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2009. 11. 11.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합의를 도와주었으니 교통사고 피해자 박○○가 수사계에 와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통화 중 진정인이 자신은 합의과정에 단순 참여한 것으로 관련사항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이놈, 이 자식(자슥), 이 새끼.” 등 수차례에 걸쳐 훈계조의 폭언을 하였다.

마. 2009. 11. 13. 피진정인은 우편으로 행정계에 송부된 진정인의 헌병신분증을 수사업무에 참조한다며 임의로 가져갔다가 확인하고 2주 후인 같은 달 말경 수사계 병장 박○○로 하여금 되돌려주도록 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의 폭언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변호사법위반 및 수사관 사칭 혐의에 대하여 내사하면서, 군 선배로서 훈계하려는 목적에서 질책성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당시 진정인을 관련 혐의에 대한 피내사자의 신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참고인과의 연락 등 공적인 조사협조를 요청하였던 것이고, 이에 충실히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말에 기초하여 수차례에 걸쳐 폭언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는 군 수사조직의 상급조사자로서 사적관계를 넘어서 공무수행 중에 비롯된 것이고, 또한 이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보아도 과도한 것으로써 진정인에게 인격적 수치심과 모멸감 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군사법원법」제229조(준수사항)에 규정된 인권존중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인의 신분증을 가져간 행위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수사관 사칭 혐의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동의나 관련 압수영장 없이 임의로 2009. 11. 13. 헌병대대 행정실로 송부된 진정인의 헌병신분증을 가져갔다가 2주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위 행정실로 다시금 돌려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군 수사관으로 필요한 수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군사법원법」제231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1항에 따르면,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강제처분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하고, 제2항에는 수사에 관하여는 관공서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조사자 소유의 중요 신상자료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당시 피진정인이 수사의 필요에 의하여, 영장 없이 진정인의 신분증을 압수하려고 하였다면, 위의 같은 법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피조사자의 임의 제출에 의해 압수하거나, 같은 법 제255조 및 제256조에 의한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와 같은 범죄현장 및 범행의 직후의 압수 등의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 하였다.

피진정인이 위와 같이 진정인의 신분증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군사법원법」제231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의 수사권한의 한계를 일탈하여 관련 법률에 정함이 없는 위법·부당한 수사행위를 한 것으로써 이는「헌법」제12조 제1항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조사자의 인격권의 존중 및 압수수색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조국 위 원 김양원

[별지] 관련규정

1.「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군사법원법」

제229조 (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찰관·군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제231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시행일 2000·5·1]]
② 수사에 관하여는 관공서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55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32조의2, 제232조의3, 제238조 또는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9·12·28] [[시행일 2000·5·1]]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박 또는 차량안에서의 피의자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관할보통군사법원군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개정 94·1·5]

제25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99·12·28, 2008.1.17]

②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③ 검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7]

제257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기타의 자가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4 16진정2056 [법정 내에서 부당한 포승줄 및 수갑 착용] 2016. 7. 20. 결정

[1] ○○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2] ○○지방법원 ○○지원장에게 재판 참석 수용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법원관리대원은 청사 출입자의 인격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진정인이 군복 차림으로 포승줄을 풀지 않고 수갑을 매단 채 선서를 하게 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피진정인 2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인격권이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

「헌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80조,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군수용자 계호근무 훈령」

▌진정인 ▐ ○○○

▌피진정인 ▐ 1. ○○○(○○교도소 교도관)
2. ○○○(○○지방법원 ○○지원 법원보안관리대 경위)

▌주 문 ▐ 1. ○○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지방법원 ○○지원장에게 재판 참석 수용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

1. 진정의 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16. 3. 21. 진정인을 호송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도착한 뒤 법정 내에서 계호, 선서하는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줄을 풀어주지 않았고, 피진정인 2는 이를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이 인격적 굴욕감을 느꼈다.

나. 피진정인 1은 2016. 3. 21. 진정인을 ○○교도소에서 호송하기 이전 진정인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였음에도 제공하지 않아 진정인의 법원 내 이동과정에서 얼굴이 노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1) 2016. 3. 21. 309호 출정 시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선서하는 모습을 어머니와 친구 ○○○, ○○○, ○○○ 등이 뒤에서 지켜보았다.

2) 303호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포승줄까지 풀어줄 것으로 알았는데, 한쪽 수갑만 풀어주어 포승줄에 수갑을 매단 채 기록을 작성하였다. 303호에서 309호로 이동할 때는 수갑 가리개를 덮었으나 가리개 안에서 수갑이 포승줄에 덜렁덜렁 매달려 있었다.

3) 309호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20명씩 불려나갈 때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에 서 있었다. 선서하라고 하여 오른손을 들다 보니 포승줄에 달려있는 수갑과 왼손이 오른손으로 딸려갔다. 포승줄은 진홍색이었고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목격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의 주장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법원 도착 후 직원의 안내를 받고 303호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진정인이 재산목록 서류를 작성해야 했으므로 수갑을 풀어주고 포승줄은 해제하지 않았다. 이는 피진정인 2가 수갑만 풀어주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309호로 이동한 뒤 피진정인 2에게 "포승줄을 풀어야 되느냐?"고 다시 물었으나 피진정인 2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두었다.

(2) 법정에서 보호장비를 풀어줘야 한다는 규정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날은 피진정인 2가 괜찮다고 해서 풀어주지 않은 것이다. 보호장비 해제는 교도관 책임이지만 법정에서는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이 마스크를 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마스크가 없어 지급하지 않았다. 마스크는 수용자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수용자가 착용할 경우 제지하지 않는다. 향후 교도소에서는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별도 구입하여 수용자가 요구할 경우 지급할 계획이다.

2) 피진정인 2의 주장

가) 2016. 3. 21. 309호 법정과 복도를 오가며 재판 준비와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재판준비 장소인 303호에는 간 사실이 없고, 따라서 303호에서 피진정인 1에게 '수갑만 풀어주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나) 309호에서 피진정인 1이 법관 출입구 쪽으로 다가와 "포승줄을 풀어줘야 하느냐?"고 물어 "당연히 풀어줘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피진정인 1이 당황스런 표정을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다) 진정인은 포승줄을 풀지 않은 채 수갑 가리개를 덮고 선서하였다. 법원 경위는 소란행위 등을 제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수용자의 보호장비 해지에 대해 직접 관여할 수 없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의 모)

2016. 3. 21. 진정인과 함께 안양지원 309호실에 앉아 있었다. 민간 교도소 수용자는 포승줄과 수갑을 풀고 선서했고, 진정인은 포승줄에 묶인 채 선서했다. 재판 끝나고 나갈 때 포승줄에 묶인 채 헌병들이 데려갔다. 진정인은 군복을 입었고, 포승줄 색깔이 붉은 빛이어서 금방 눈에 띄었다.

2) ○○○(○○교도소 교도병)

가) ○○지원 303호 도착 후 피진정인 1이 수갑과 포승줄을 풀라고 지시하였으나, 옆에 있던 성명 불상 법원 직원이 "포승줄은 풀 필요가 없다."고 말하여 풀지 않았다.

군 수용자의 경우 수갑과 포승줄이 이중포박이어서 푸는데 3분 정도 소요된다.

나) ○○지원 309호에서 피진정인 1이 피진정인 2에게 뭐라고 물어보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다) ○○교도소 출발 직전 피진정인 1이 마스크가 있는지를 찾아보다가 없다고 해서 그냥 출발하였다.

3) ○○○(○○지원 재산명시 실무관)

2016. 3. 21. 13:10부터 303호에서 공익요원 2명과 함께 200여명 가까이 되는 채무자들의 재산목록을 제출받고 있었다. 교도관들과 동행한 수용자들은 상황을 고려해 가장 먼저 처리하였다. 당시 매우 바쁜 상황이어서 진정인이 포승줄을 하고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만약 알았더라도 해지하라고 말할 권한이 없다.

4) ○○○(○○지원 청원경찰)

당일 법원 검색대 근무 중 육군 헌병이 도착하여 재산명시 사건이라고 하여 준비장소인 303호실로 안내하였다. 303호 법정에서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니 포승을 풀어주라고 말하였는데, 당시 피진정인 1은 "포승이 수갑 안쪽으로 묶여 있어 풀기 힘들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럼 수갑만이라도 풀어주라'고 말하고 근무지인 검색대로 복귀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진술, 참고인 진술, ○○지방법원 ○○지원 309호 CCTV 사본, ○○교도소 수용자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육군 제○○사단에서 군복무 중 사기 등의 혐의로 2015. 7. 17. 구속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7. ○○교도소에 입소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진행 중인 2016. 4. 28. ○○교도소로 이송됐다.

나. 진정인은 군 입대 이전 3,200만 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으로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2016. 3. 21.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고 이에 피진정인 1은 교도헌병 3명과 함께 진정인을 경기도 이천 소재 ○○교도소로부터 ○○지원까지 호송하였다. 피진정인 1은 ○○교도소 관행에 따라 진홍색 포승줄과 수갑을 연결하는 이중포박을 실시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교도소 출발 직전 마스크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고, ○○

교도소는 본 진정이 제기된 이후 출정 수용자용 마스크를 구입하여 수용자가 요구할 경우 지급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 1은 ○○지원 도착 직후 청원경찰의 안내를 받아 재산명시 재판 준비 장소인 303호 법정으로 이동하였는데, 이곳에서 진정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수갑을 해지하였으나 포승줄은 풀어주지 않았다. 이 때 피진정인 2는 309호 법정에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 피진정인 1은 13:25경 진정인의 손목을 수갑 가리개로 덮은 채 303호에서 309호로 이동하였는데 이 때 진정인의 수갑은 오른쪽만 풀어진 채 포승줄에 매달려 있었고, 진정인보다 먼저 309호 법정에 들어온 ○○교도소 수용자는 포승줄을 해지한 상태였다. ○○교도소 교도관은 13:49경 선서 준비를 위해 수용자의 수갑을 풀어주었으나 피진정인 1, 2는 ○○교도소 수용자 수갑 해지 장면을 지켜보면서도 진정인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4:15경 1차 호명된 20명이 선서를 할 때 진정인은 포승줄에 묶인 채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였다.

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판사는 진정인의 수갑과 관련 아무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14:16 경 재판이 종료되자 피진정인 1은 교도헌병과 함께 진정인을 법정 밖으로 호송하였다.

4. 판단 및 조치

가.「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나.「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5조는 수용자를 군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할 경우 수갑과 포승의 사용을 명시하고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80조는 공판정에서 신체 구속의 원칙적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군수용자 계호근무 훈령」도 재판에 임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보호장비 해제를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 1이 309호 법정 입실 전후 진정인의 포승줄과 수갑을 해지하지 않은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피진정인 2가 309호 법정에서 피진정인 1과 대화를 나누고, ○○○ 교도소 수용자의 수갑 해제 모습을 곁에서 나란히 살펴보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피진정인 1, 2가 진정인의 보호장비 해제에 대해 의논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두 사람의 구체적 진술이 상반되고 피진정인 1, 2가 업무상 지휘 관계가 아니라는 점, 보호장비 해제는 원칙적으로 교도관의 소관업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2에게 보호장비 미해제의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다만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법원관리대원은 청사 출입자의 인격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진정인이 군복 차림으로 포승줄을 풀지 않고 수갑을 매단 채 선서를 하게 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피진정인 2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인격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진정요지 나항의 경우, 피진정인 1이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고, 본 건 진정 이후에 ○○교도소에서 수용자 마스크를 구입하여 요청하는 수용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7. 2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정상환 위 원 이은경 위 원 장애순

[별지] 관련 규정

1.「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5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이송, 출정, 그밖에 군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군 수용자를 호송할 때 수갑/포승을 사용한다.

3.「형사소송법」

제280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군수용자 계호근무 훈령」

제142조(법정근무자 유의사항)
재판에 임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재판이 종료되는 즉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판진행 중 도주 등의 우려가 현저한 수용자는 사전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장비를 사용한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도록 할 것

5.「법원조직법」

제55조(법원보안관리대)
①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

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주거나 주려고 하는 경우
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제58조 (법정의 질서유지)

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한다.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 금지 또는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6.「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법원보안관리대원의 주의 의무)

법원보안관리대원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 청사출입자의 인격이 부당하게 훼손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폭행/가혹행위

1 01진인21 [군 의문사] 2003. 4. 21. 결정

군 의문사 진정사건에 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수사개시를 의뢰하고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인권교육의 실시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 故 이○○은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사단에 근무하다가 신병위로휴가를 나왔다가 책을 사기 위해 외출을 한 뒤 투신하여 사망한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에게 피진정인 소령 윤○○의 군형법 제62조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 개시할 것을 의뢰하고, 피진정인 중령 김○○, 대위 정○○ 및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보병 제○○사단 제○○○연대 제○대대 장병에 대한 인권교육 및 육군본부 전공사상자심의위원회의 전사망심사결과피해자에 대한 자해자살 판정사항을 재심의 할 것을 권고하고, 복무부적응장병에 대한 실질적인 복무부적응지원대책 및 군사망사고 발생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함.

Ⅰ. 검토배경

▌**진정인** ▐ 이○○

▌**피해자** ▐ 故 이○○

▌**피진정인** ▐ 보병 제○○사단 제○○○연대 소령 윤○○ 외 다수

▌**피진정인의 감독기관** ▐ 국방부장관

▌**주 문** ▐ 1. 국방부장관에게 피진정인 소령 윤○○의 군형법 제62조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것을 의뢰한다.

2. 국방부장관에게 피진정인 중령 김○○, 대위 정○○ 및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보병 제○○사단 제○○○연대 제○대대 장병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국방부장관에게 육군본부 전공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전사망심사결과 피해자에 대한 자해자살 판정사항을 재 심의할 것을 권고한다.

4. 국방부장관에게 복무부적응장병에 대한 실질적인 복무적응지원대책을 마련할 것과, 군사망사고 발생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 故 이○○은 2000. 10. ○○.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사단 제○○○연대 제○대대 본부중대에서 근무하다가 2001. 2. ○○. 신병100일 위로휴가를 나온 당일 책을 사기 위해 외출을 한 뒤 인근 주공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진정인은 아들이 휴가를 나와서 자살할 이유가 없으며, 군복무중에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우울증 등 복무부적응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조치의 미흡과 병력관리를 소홀히 한 부대에 책임이 있으며, 군 수사기관에서 사망동기를 축소·은폐하고 있으므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의 색출과 아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여 주고 관련자의 처벌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1) 피해자에 대한 중대장 대위 정○○, 소대장 중위 김○○, 병장 김○○ 등 상급자들의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현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다.

(2) 피해자가 2000. 12. ○○.부터 2001. 2. ○○. 휴가를 나와 사망한 날까지 보병 제○○사단 제○○○연대 제○대대 제○중대 및 본부중대에서 복무하던 중 상급자들의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우울증의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의 적절한 의료조치미흡과 병력관리소홀 등 직무를 유기하여 발생한 사망사고이다.

(3) 피해자가 상급자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병 제○○사단 헌병대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개인적 원인에 의해 단순히 자살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 사망의 동기를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하였다.

나. 피진정인

(1) 2001. 2. ○○.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징계 및 기소유예처분, 2001형제○○호, 2001. 6. ○○.)을 받은 병장 김○○ 외에는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자는 없으며, 피해자는 단순히 개인적 원인에 의하여 자살을 한 것이다.

(2) 피해자는 부대 전입 당시부터 말이 없고 소극적이었으며 다른 사람이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 등 군복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보였고, 2000. 12. ○○.경 ○○중대에서 본부중대로 보직을 조정하여 보호관심사병으로 관리하였으며, 보직조정 이후에도 복무부적응 현상을 보여 2001. 2. ○○. 연대의무대를 거쳐 국군○○통합병원 정신과에서 외래진료를 받게 하는 등 보호관심사병으로 특별관리하고 정상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3) 보병 제○○사단 헌병대는 사고지 관할부대인 보병 제○○사단 헌병대에서 수사 후 이첩한 사건을 접수하여 폭행피의자 김○○와 목격자 전○○ 등에 대한 진술서 및 설문수리를 통하여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 고의적으로 사건을 조작하거나 은폐할 목적으로 수사를 한 적은 없다.

3. 인정사실

가. 피해자에 대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

(1) 피해자는 2000. 10. ○○. 육군에 입대, 같은 해 12. ○○. 보병 제○○사단 제○○○연대 제○대대 ○중대에 전입하여 근무하다가 2001. 2. ○○. 신병 100일 휴가를 나온 당일 10:30경 ○○광역시 ○○구 ○○동 소재 자가 인근 주공아파트에서 투신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2) 피해자 소속 ○중대 행정보급관 상사 곽○○, 병장 이○○, 병장 박○○에 대한 각 문답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부대에 전입한 직후인 2000. 12. ○○. 4km 급속행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속 ○소대장이었던 중위 김○○(2001. 6. ○○. 교통사고로 사망)은 신체가 허약하여 행군 중에 쓰러져 낙오한 피해자를 강제로 이끌고 완주시킨 사실이 있고, ○소대장 김○○의 피해자에 대한 관찰 및 면담기록에 의하면, 급속행진 다음날인 12. ○○. 사단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입실을 원하였으나 “이등병이 입실을 희망한다고 입실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군의관이나 소대장이 판단해서 입실을 시키는 것이다”며 입실을 불허하고 “앞으로 열심

히 군 생활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아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 부모님에게 한번 면회 오도록 권유하겠다. 집 전화번호가 맞느냐."등을 물어도 피해자가 계속 답변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소대장이 군기교육을 위해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를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15회 정도 실시 후 얼차려를 거부하여 중대 행정보급관에게 인도된 사실이 있다.

(3) 중대 행정보급관 곽○○ 상사는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고 상관지시에 불응하여 자신에게 넘겨진 2000. 12. ○○. 피해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였으나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아 ○중대장 직무대리인 이○○ 대위에게 보고하여 간부들이 모여 피해자에 대한 처리문제를 논의한 결과 영창을 보내자는 의견과 대대장에게 지휘보고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대대장에게 보고하되 부모와 만나 대화를 한 후에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당일 15:00경 피해자의 집에 전화를 걸어 다음날인 12. ○○. 피해자의 부모에게 부대로 면회 오도록 하였고. 이에 ○중대장 취임식이 있던 12. ○○. 부대를 찾아온 피해자의 부모는 중대장실에서 대대장 및 중대장과 면담한 후 통상적으로 신병은 외박이 안 되는데 대대장의 허락을 받고 특박 1일 외박을 나왔으며, 진정인은 장시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는 "자꾸 묻지 마세요."라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4) 2000. 12. ○○. ○중대장으로 부임한 대위 홍○○의 진술에 의하면, 부임 당일 피해자의 부모 면회시 피해자를 지켜본 결과 여느 신병과 달리 불안정한 느낌을 받아 피해자가 외박에서 돌아온 다음날 면담한 결과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복무부적응상태가 보기드믄 신병으로 군생활 적응의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하였으며, 그날 저녁 무렵 갑자기 중대장실로 들어와 "저 영창 가겠습니다. 이때까지 많이 참았습니다."라고 흥분한 상태로 말하는 등 불안한 상태를 보였으며, 그날 밤 23:00경 대대장이 부대 순찰을 나왔다가 피해자에 대한 소대장의 관찰기록을 읽고 피해자를 면담한 후 대대장 짚차에 태워 본부중대로 데리고 갔으며 다음날짜로 본부중대 소속 통신병으로 보직 변경한 사실이 있다.

(5) 당시 본부중대 근무자 병장 김○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병장 김○은 2001. 1.중순경 위병소 경계근무를 위한 복장준비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내무반에서 전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폭행하였고, 위병소 근무 중 전투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구타하는 등 초병근무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

(6) 당시 본부중대 근무자 병장 김○○에 대한 문답서 및 고소고발사건처분통지서에

의하면, 병장 김○○는 2001. 2.○○. 20:30경 본부중대 내무반에서 '불러도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2회 구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진정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뒤인 2001. 4. ○○. 군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제○○사단 보통 검찰부는 같은 해 6. ○○. 기소유예 처분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같은 해 7. ○○ 재정신청을 하자 고등군사법원은 같은 해 11. ○○. 기각 결정한 사실이 있다.

(7) 당시 대대장 중령 김○○, 작전장교 소령 윤○○, 병장 김○○, 최○○, 최○○에 대한 각 문답서에 의하면, ○대대 작전장교 소령 윤○○은 2001. 2. ○○. 폭행유발자라는 이유로 대대상황실에 입창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 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작성하지 않자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대수송부에 있던 5/4톤 군용차량의 폐타이어(무게 26kg, 지름 88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씌우고 연병장으로 데리고 나가 2시간여 동안 구보를 시킨 사실이 인정되며 위 윤○○의 진술도 이에 부합된다. 한편 당시 대대상황실에 함께 입창대기 중이었던 병장 김○○, 최○○, 최○○의 진술에 의하면, 위 윤○○은 피해자의 목에 폐타이어를 씌우고 손바닥과 지시봉(길이 1.5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 3회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것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점에 대해서 위 윤○○은 기억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8) 당시 본부중대장 대위 정○○ 및 본부중대 소속 병장 김○에 대한 각 문답서에 의하면, 대위 정○○는 2001. 1.말 경 피해자가 수양록을 작성하지 않고 선임병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중대장과 연병장 등에서 '엎드려뻗쳐', 근거리왕복운동(일명 선착순)을 시켰고, 2001. 2. ○○.~2. ○○. 사이에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황실에서 벽과 30cm 정도 거리를 두고 장시간 서있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관심사병에 대한 지휘관의 적절한 조치유무 및 병력관리소홀 여부

(1) 진정인 및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 편○○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초·중·고교 전 학년을 개근할 만큼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었으며 침착하고 과묵한 성격으로 공부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여 친구들과 잘 어울렸으며, 보병 제○○사단 신병교육대 소대장 중위 김○○ 및 병장 박○○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체격이 왜소하고 시력이 나쁘다는 사실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 내무생활이나 교육훈련 당시에도 별 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당시 ○중대 행정보급관 상사 곽○○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입시에는 신상에 관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는 편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말이 없고 부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병장 염○○, 이○○ 및 김○○에 대한 각 문답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말이 없고 선임병이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는 등 항상 고독해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당시 대대장 중령 김○○ 및 본부중대장 대위 정○○에 대한 각 문답서에 의하면, 대대장 중령 김○○은 2000. 12. ○○. ○중대장 취임식날 부대에 면회온 피해자의 부모와의 면담에 이어 그 다음날인 12. ○○. 밤 야간순찰시 피해자와 면담결과 및 소대장의 피해자에 대한 관찰의견서 등에 의해 피해자가 군생활 적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날 밤 피해자를 직접 중대본부로 데리고 갔으며, 본부중대장 대위 정○○는 피해자가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고의적으로 업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1. 1. ○○.경 대대장에게 징계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고, 피해자의 신병100일 위로휴가도 군복무 부적응을 이유로 연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진정인의 진술서, 대대장 중령 김○○ 및 본부중대장 대위 정○○에 대한 각 문답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1. 2. ○○. 병장 김○○로부터 구타를 당한 이후 구타유발자로 징계입창대기 중이던 2001. 2. ○○. 피해자를 연대의무대에 가 입실을 시킬 때까지 정신과 진료 등의 의무 진료는 취하지 않았고, 연대의무대 및 국군○○병원의 외래환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1. 2. ○○. 연대의무대에서 진료를 받고 부대생활부적응으로 인한 심적 압박이 큰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2001. 2. ○○. 국군○○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통해 우울증세를 보인다는 진단을 받고 추후 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필요하면 치료할 예정으로 당일 연대의무대로 복귀한 사실이 인정된다.

(5) 대대장 중령 김○○, 작전장교 소령 윤○○ 및 본부중대장 대위 정○○의 문답서에 의하면, 중대장 대위 정○○는 피해자 이병 이○○의 전입100일은 2001. 1. ○○. 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로휴가를 보내지 않은 것이며, 대대장 중령 김○○은 2001. 2. ○○.경 부연대장 중령 최○○이 피해자를 위로휴가 보낼 것을 지시하자 피해자를 휴가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지시에 따라 휴가명령의뢰를 하였고, 중대장 대위 정○○는 휴가출발 당일인 2001. 2. ○○. 10:00경 휴가출발 지휘관확인서를 작성하여 대대 인사과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군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하였는지 여부

2001. 5. ○○. 보병 제○○사단 헌병대 수사관 준위 지○○이 같은 사단 검찰부에 송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 일체에 의하면, 피해자는 타살혐의점이 없고 평소 내성적인

성격과 경미한 신경쇠약증, 우울증 및 허약한 체질 등으로 인한 자신감의 결여로 군복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4. 판 단

이상의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가. 피해자가 보병 제○○사단 제○○○연대 제○대대에 근무 중이던 2001. 1.부터 2001. 2.까지의 기간 중 피진정인 소령 윤○○, 대위 정○○, 병장 김○○, 병장 김○은 우울증 등 군복무부적응증세를 보이던 피해자의 선임병에 대한 불손한 태도 및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각 위 3.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진정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한편 피진정인 소령 윤○○의 행위는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가혹행위의 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중령 김○○ 및 대위 정○○는 각각 당시 피해자의 대대장과 중대장으로서 군인복무규율 제15조제2항 및 군사고예방규정 제36조(자살사고예방), 제37조(구타 및 가혹행위사고예방)에 따라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폭언 및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군사고예방규정 제7조에 의거 각급 지휘관은 관할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하여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군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우울증 및 허약한 체질 등으로 인한 자신감의 결여로 군복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으로 수사를 종결 하였는바,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만 피해자의 사망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관련자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군수사기관의 의견서에는 신경쇠약, 우울증이 사망동기로 명시되어 있고, 위원회의 조사결과 피해자는 군입대 초기이고 군생활 적응정도가 떨어져 지속적인 조력이 요망되는 보호관심사병으로 분류된 사병임에도 불구하고 선임병들의 따돌림과 구타, 지휘관들로부터 훈육의 한도를 넘는 과도한 기합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한 절망감으로 우울증세를 보인 점을 감안하면, 국방부 훈령 제392호 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순직 또는 일반사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군 입대 초기의 장병은 외부와의 단절감과 정체성의 결여, 소외감,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불안감, 업무부담감 등 극심한 스트레스상황에 노출되어 군복무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적응장애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복무부적응장병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군사망사고처리에 대하여 군수사 과정상의 폐쇄성, 수사의 불성실, 유족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배제 등으로 유가족이 수사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독립된 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가. 피진정인 소령 윤○○의 행위는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가혹행위의 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수사의 개시를 의뢰하기로 한다.

나. 피진정인 중령 김○○, 대위 정○○는 각각 피해자의 대대장과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피진정인 중령 김○○, 대위 정○○ 및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제○대대 장병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다. 피해자에 대한 전공사상자 재심의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육군본부 전공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타비전공사 중 자해자살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하고, 복무부적응장병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군사망사고 발생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3. 4. 21.

국가인권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 유 현 위 원 조미경 위 원 신동운

2 04진인899 [신체의 자유침해] 2006. 2. 13. 결정

피해자가 군 복무 중 상습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질환증세를 보임을 인정하여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게 예비역 병장 엄○○을 「형법」, 「군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례

▌결정요지▐

[1] 피해자가 군 복무 중 상습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질환증세를 보임을 인정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피해자의 정신질환증세에 대해 전·공상 재심의 할 것과 파견병력관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2] 육군참모총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게 예비역 병장 엄○○을 「형법」 제26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군형법 제62조 위반혐의로 고발함

▌참조조문▐

「형법」 제122조, 제26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군형법」 제62조,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진정인▐ 김○○

▌피해자▐ 조○○

▌피진정인▐ 1. 육군○○사단 통신대대 중계중대 예비역 병장 엄○○
2. 통신대대장 중령 양○○
3. 통신대대 중대장 하○○

▌주 문▐ 1.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가 군 복무 중 발생한 상습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질환증세에 대해 전·공상 재심의 할 것과, 파견병력관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마련 등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육군참모총장에게 중령 양○○, 중대장 대위 엄○○, 정○○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한다.

3. 검찰총장에게 예비역 병장 엄○○을 「형법」 제260조(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폭력 등),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위반혐의로 고발한다.

▌이 유 ▐

1. 진정 요지

가. 피해자는 2003. 8월경부터 9월29까지 ○○○중계소 파견기간 중 선임자 병장 엄○○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1) 2003.9.15. 속옷을 자주 갈아입지 않는다고 엎어치기를 당하여 앞 치아 2개 완전 탈구 및 어금니가 깨졌으며,

(2) 거의 매일 2~5회 등 파견기간 동안 수회 가혹행위 및 폭행을 당하였고, 병영생활 행동강령 암기강요 및 피해자의 지적사항 미숙지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3) 책으로 폭행당해 안경이 파손되었고, 사탕을 입에 가득 넣어 녹을 때까지 손도 못 대게 하였으며,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도록 강요하는 등 성폭력을 당하였고, 하계 주기표(명찰)를 달지 않았다고 인간이하의 취급, 늑골3개골절상 등 각종 가혹행위와 구타를 당하였다.

나. 이러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 중계소 파견기간 동안 선임병에 의해 상습적으로 자행 되었으나, 중·대대장은 군종참모 등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사건을 은폐·축소하였다.

다. 피해자는 전역 후 정신질환 증세가 발생, 정신과 진료를 하였던 바, 군 생활 중 폭행 및 가혹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므로 공상처리를 원한다.

2. 피진정인 주장

육군 ○○사단 통신대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간부들은 대대장 중령 양○○, 중대장 대위 하○○, 소대장 중위 엄○○이고, ○○○ 중계소에서 2003.8.1~9.29까지 ○○통신단 ○○대대 중위 정○○, ○○사단 통신대대 예비역 병장 엄○○ 외 3명 등인 바,

가. 통신대대장은 2003년 10월초에 구타 및 가혹행위를 인지하였고, "이미 합의가 끝난 부분이다. 또한 부모가 요구하는 치료부분에 대해 조치를 하였다. 그러므로 군에

서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고 양 당사자의 합의 문제이며, 징계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파견병력을 관리하는 부대에서 책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중대장 대위 하○○은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 2003.9.17. 최초 인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미 합의가 끝난 부분이다. 그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을 하였다.

다. 예비역 병장 엄○○은 "이미 합의가 끝난 것인데 왜 자꾸 피곤하게 하냐, 피해자(조○○)가 잘못하여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군에서 안 맞아 본사람 없다. 그리고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은 이미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예비역 병장 엄○○,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및 참고인 각 진술서, 피해자 진단서, 병원관련기록, 성인심리 평가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고발생지역인 ○○○중계소는 ○○통신단 ○○대대에서 원주 일대 FM / VHF 중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단 통신병 4명이 중계소에 3개월 단위로 파견되어 사단자체 무선중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피해자 조○○는 2003.7.31. 임무 교대한 ○○사단 중계중대 병장 엄○○(조장)외 3명조에 포함되어 복무하였다.

나. 병장 엄○○은 피해자 조○○에게 2003.8.3. 파견 4일째 되던 날 최초로 '씻지 않았다'고 주먹 및 책으로 머리가격, 손으로 뺨을 수회 폭행 하였고, 2003년 8월 중순경 "관물정돈 불량"을 이유로 책으로 머리 5회, 손으로 뺨 20여대 및 약 20여분 간 머리박기 등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경이 파손되었다.

다. 2003년 8월 부터 여름이라서 그런지 손바닥만한 나방이 근무지인 중계소안에 많아 병장 엄○○이 잡으라고 하여 잡는 과정에서 눈에 나방가루가 많이 들어가 눈에 손을 댈 수가 없었고, 또한 잡지 못할 경우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

라. 2003년 8월 말경 예비역 병장 엄○○은 피해자에게 병영생활 행동강령 미 숙지이유로 뺨 40여대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지적사항(4~5개)에 대한 미숙지로 구타하였으며, 2003년 9월 초순경 전파사항 미실시 및 식사교대지연이유로 책으로 머리 5회, 손으로 뺨 20여대, 머리박기 상태에서 발로 옆구리 4~5회 폭행 하였다.

마. 또한 같은 무렵 병장 엄○○의 강압으로 맨소래담 로션을 눈 주위(3회) 및 성기에 1회 발랐고, 약 5회 정도 사탕을 한입 가득 물게 하고 사탕이 다 녹을 때까지 손을 못 대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위 엄○○이 피해자를 구타하다가 손목이 삐었다는 이유로 손목과 발목에 지압 및 마사지를 강요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부대 복귀 시까지 맨소래담 로션을 눈 주위에 바르는 행위를 여러 차례 강요받았다.

바. 2003.9.10.에는 ○○사단 통신대대장 양○○은 추석 전 중계소 방문 시 구타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 있었으나, 피해자는 엄○○의 강요에 의해 충치로 부었다고 허위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2003.9.15 시간미상경 엄○○은 피해자를 골탕 먹일 목적으로 VHF실에서 속옷을 갈아입지 않는다고 레슬링하는 자세로 허리를 잡고 들어 올리다 놓쳐 입부분이 바닥에 부딪쳐 치아 2개 손상(상악 좌우측 중절치 완전탈구, 상순내측 점막열창)과 어금니 반쪽에 상해를 당하였으나, 병장 엄○○이 2003.9.15. 18:00경 "치아 2개가 빠진 사실에 대해 서로 레슬링하면서 장난을 치다가 빠졌다"고 소대장 엄○○, 중대장예비역 하○○에게 허위로 보고하였고, 같은 날 19:00경 중계소 소대장이 ○○사 통신소대장에게 피해자의 치아 2개가 빠진 사실을 통보하자, 치료를 당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2003.9.16. ○○대대 군의관도 장난치다가 다친 것으로 보고받아 중계소 순회진료 시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도록 권유하였으며, 2003.9.17. 자대중대장의 지시로 소대장이 민간 ○○치과에서 의치(앞니 2대) 조치하였고, 치료비 12만원은 소대장 자비로 부담하였는바, 당시 소대장은 피해자와의 면담과정에서 잦은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을 처음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예비역 병장 엄○○은 2003.9.21. 피해자가 근무하는 무전실에 찾아와 '내가 왜 치료비(치아)를 전부부담 해야 하냐, 부담할 수 없다, 너 나중에 서울 가서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며 강압적인 말과 손바닥으로 머리 5회 등 폭행하고, 2003년 9월 중순경 기상이 느리다는 이유로 전투화 발로 가슴을 2회 구타하고, 일자미상 경 지시봉으로 발바닥을 가격하고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한 후 주먹으로 턱을 여러 번 때렸으며, 전투화로 정강이를 1회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자. 2003.9.23. 피해자가 중계소 소대장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병장 엄○○으로부터 그동안 구타 및 가혹행위를 많이 당하여 힘들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면서 구타 현장 목격을 위해 소대장에게 순찰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2003.9.23. 23:00경 중계소 소대장이 야간순찰 중 근무지에서 "○새끼"라고 욕하는 소리와 구타장면 현장을 목격하

였으며, 다음날 중계소 소대장으로부터 구타사실을 통보받은 ○○사 통신소대장은 중대장에게 보고 후 중계소에 올라가 가해자 및 피해자를 완전군장 얼차려 시킨 후 구타사실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차. 2003.9.27. 피해자는 부대(○○사단 통신대대)에서 구타사고를 미온적으로 처리하자 사단 군종병에게 구타사실을 유선으로 상담하면서 조속한 구제를 요청하였고, 군종병은 군종참모에게, 군종참모는 다시 통신대대장에게 구타사실을 통보하였는바, 2003.9.28. 통신대대장 지시를 받은 중대장이 중계소를 방문하여 구타사고 현장을 확인한 후 단순 구타로 보고하면서 다음날 구타자는 헌병대에 구속수사의뢰하고 구타당한 자는 원인제공 관계를 확인하여 영창조치토록 대대장에게 보고하였으나, 대대장이 사건을 확대시키지 말고 자대징계처리토록 지시하면서 주임원사에게 병장 엄○○과 피해자를 자대 복귀하도록 지시를 하였다.

카. 2003. 9. 29~10.12 대대장의 지시로 중대장은 중대징계결과 구타 및 가혹행위 혐의로 영창 15일을 결정하여 대대장에게 보고하였으나 대대장이 다시 근무소홀로 징계서류를 재작성하여 휴가제한을 각각 5일로 처리할 것을 지시하자, 중대장은 징계처리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서류상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을 은폐 및 축소 조작하여 휴가제한 5일로 재 작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대장은 구타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진술을 강요하면서 "구타사실 발설 시 너도 영창간다"고 한 사실이 있으며, 부대 복귀 후 헌병수사 시까지 당사자는 내무반을 분리 편성했지만 거의 함께 생활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였다.

타. 2003. 10. 13.에야 통신대대장 중령 양○○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헌병

대장에게 수사의뢰를 하였는바, 최초 구타사실 인지 후 중대장에 의해 26여 일간, 대대장에 의해 16일간 단순사고로 은폐·축소되었다.

파. 헌병대 수사결과 병장 엄○○이 상습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치아 2개 파절로 4주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되어 가해자 엄○○은 2003. 10. 18. 구속되고 중대장 대위 하○○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조치되었다.

하. 헌병대 수사진행중 수사관이 합의를 보면 좋겠다는 말에 2003.10.16. 통신대대장이 양가 부모를 불러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금액차이로 합의가 결렬(피해자 부모는 최초 5,000만원을 요구)되었다가, 2003. 10. 22. 최종 900만원에 합의하였는바, 합의과정에서 대대장, 주임원사가 피해자에게 "부모님께 말씀드려 빨리 좀 합의해라" 등 합의를 종용

한 사실도 있었다.

거. 2003.10.22일자 합의서는 "가해자 엄○○ 및 피해자 조○○는 2003년 8월 중순부터 9월 15일까지 ○○시 ○○면 ○○리 소재 ○○○중계소에서 파견되어 근무 중 가해자가 후임병인 피해자의 군기를 잡을 목적으로 수회 폭행 및 가혹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치아(앞니) 2개를 손상케 하는 등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부분을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상호 원만히 합의하고 차후 본건으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겠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양가 부친이 합의 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다.(현재 피해자의 부모는 당시에 부대에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치아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과 그 외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내용은 부정확하게 설명하여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

너. 합의 이후인 2003.10.24. 사건을 송치받은 군 검찰은 쌍방간 사전 합의되었고, 헌병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진술에 의거하여 가해자만 조사하고 차후 재차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징구한 후 사건을 종결, 11.1. 기소유예로 엄○○을 석방(구속 15일)하였고, 중대장 하○○은 사단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2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사단장의 감경조치로 근신 10일로 최종 결정되었다.

더. 이후 피해자의 부친은 2003.12.18. 합의 시 약속했던 위로휴가 지연, 보직조정 미실시, 치료미흡 및 합의 시 미확인된 피해사항 추가 발견 등으로 국방부 민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1군 감찰부에서 이첩 받아 조사를 실시 한 결과, 2003.12.11. 서울 ○○구 소재 ○○○○정형외과의원 의사 박○○ 진단서 소견에 늑골골절(7·8번) 및 우측 족관절 건초염 진단을 받았고, 2003. 12.12. 서울 ○○구 소재 ○○○안과 의사 김○○ 진단서에 의하면 원발성 개방우각 녹내장 진단 등이 추가 확인되어 당시 군사령관은 가해자 엄○○을 재구속, 재수사를 강력히 지시하였으나 「군사법원법」 제245조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동일범죄에 대하여 다시 구속하지 못 한다"는 법무참모의 법해석(추가발견 사안도 포괄적 합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에 따라 추가 재수사 없이 영창 15일 처분을 하였고(엄○○은 2004.1.19. 전역), 피해자에 대하여는 군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대대장은 보직해임 후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인사소청과 항고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소대장은 견책처분 후 항고신청으로 불문처분을, ○○중대장과 ○○○중계소 소대장은 책임을 통감하며 처벌을 수용하여 중대장 하○○은 보직해임 및 근신 10일, 소대장은 견책(징계유예 3월)의 처분을 실시하였다.

러. 대대장은 인사소청 심의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유는 파견병력관리 책임소재에 대한 「군인사법」 관련 규정상 명확하게 정한바가 없고, 피 파견부대에서 생활기록부 관리 등 실질적인 신상관리를 한다는 점을 들어 피 파견부대장에게 지휘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국방부 훈령」 제702호 사고처리기준에 의거 중대한 사고 또는 경미한 사고 시 3차 지휘관은 문책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소대장은 구타사실 인지 후 즉시 보고하였고, 소대장으로서 치료, 교육 등 적법조치를 취하여 1차 징계 시 무혐의 처리된 점 등을 고려 불문으로 감경처리가 되었다.

머. 2004.4.13. 피해자의 부친은 피해자가 원상태로 제대하여 정상생활을 할 수 있게 귀가 조치할 것(의병전역 및 보훈대상자 지정), 피해보상, 가해자 및 관계지휘관 강력처벌, 통합병원 후송치료 불가시 원하는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다시 제기한 민원을 육군본부 법무감실에서 검토 한 결과에 대해 민원을 다시 제기하였다.

버. 육군본부에서는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의병전역 및 보훈대상자는 현재 나타난 병명(녹내장)으로는 적용이 곤란하고, 심신장애자로 전역 시 개인적으로 국가보훈처에 신청하면, 공무로 인한 상이 및 장애등급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며,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가해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등 적법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국가배상 책임소재는 희박하나 다만,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피해부분에 대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추가 피해보상은 가능하며, 가해자 및 관계지휘관들의 처벌요구와 관련해서는 군 당국은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이미 전역하였고, 지휘관들에 대하여도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대대장 양○○에 대하여 당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였는지 여부는 중대장 하○○ 등의 진술결과에 따라 가능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뿐이지 피해자가 고소 등 형사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별도의 추가 징계조치는 불가하며, 피해자 치료와 관련해서는 국군통합병원 및 ○○○○병원에서의 치료가 조치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2004. 12. 9. 민원 회신하여 종결처리 한 적이 있다.

서. 2004. 1. 12. ○○○○ 안과 의사 홍○○의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의 녹내장 의증은 외상 후에 생길 수도 있고, 그 전부터 선천적일수도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바 있고, 피해자가 군생활 중 받았던 상습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전역 후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진료(2005. 4. 4~7. 1)를 받은 ○○대학교의과대학○○○○병원 정신과 담당의사 고○○의 진단서에 의하면, 2005. 7. 1. ○○대학교 의과대학 임상심리학교실에서 실시한 심리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피해자의 질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우울증이며, 스트

레스요인은 군 입대 후 파견근무 중 반복적으로 당한 신체적 구타와 연관될 것으로 추정하고 향후 약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

어. 이사건과 관련한 관계자 문책 내역을 살펴보면

(1) 예비역 병장 엄○○은 2003.10.16. 구속된 후 2003.10.22.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 2003.11.1.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구속 15일만에 석방되어 자대 복귀되었고, 2003.12.23. 추가 구타사실이 확인되어 자대에서 영창 15일 처분 받았다.

(2) 대대장 중령 양○○은 2003.12.24. 보직해임과 성실의무위반으로 견책처분 되었으나 2004.1.5. 보직해임된 것에 대한 인사소청 및 징계에 대한 항고신청 한 결과를 2004.2.10.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04.4.8. 국방부 인사소청 결과를「군인사법」상 파견병력관리 책임소재 불명확 하고, 피 파견부대에서 생활기록부등은 관리한다는 점 등, 피 파견부대장(○○대대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 국방부훈령 제702호 사고처리기준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경미한 사고 시 3차 지휘관은 문책범위 초과한다는 점을 들어 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 예비역 중대장 대위 하○○은 2003.12.24.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12.24. 감봉2월(⅓감액)이 결정되었으나 사단장 감경조치로 근신 10일로 결정(2003.12.26)되자, 이후 2003.12.26. 보직해임 및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4) 소대장 중위 엄○○은 2003.12.26. 성실의무위반으로(지휘감독소홀)견책처분을 받고 2004.1.7. 항고하여 구타사실 인지 후 즉시보고, 치료, 교육 등을 실시한 사실이 참작되어 불문으로 감경조치 되었다.

(5) ○○대대 ○○○중계소 소대장 정○○는 2003.12.24. 견책(징계유예 3개월) 처분을 받고 이를 수용하였다.

4. 판단

가. 군 당국은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서 이미 양 당사자간에 2003.10.22.에 합의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2003.9.15. 이후 발생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고 포괄적 합의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서 문안에 의하면 2003년 8월 중순부터 9월 15일까지 발생한 구타 및 가혹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인정사실에서 적시된 9. 15이후 확인된 구타 및 가혹

행위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

나. 아울러 소견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현재 정신장애는 군복무 중 발생한 구타 및 가혹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상군경으로서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 군 당국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인 엄○○은 형사처벌(기소유예), 징계입창 등의 처벌을 받았고, 대대장 중령 양○○ 등 지휘관은 징계처분(인사소청결과 일부 지휘관은 무혐의) 등의 조치를 받았으므로 추가 재 징계는 불가 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1) 가해자 엄○○의 경우 기소유예 형사처벌은 2003.10.22. 양 당사자간 합의(2003.9.15까지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의거하여 조치된 것이고, 조사결과 추가로 확인된 2003.9.15이후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에 대하여는 행정벌인 징계입창 15일을 처분받았을 뿐이므로 징계 외는 별도로 「형법」 제260조(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야간, 폭행),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의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의 현 상태(정신과적 치료필요)를 감안할 때 추가로 확인된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는 법규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2) 한편 대대장은 위 인정사실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2003. 9. 27 군종참모로부터 사실을 인지하고 중대장에게 확인지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견병력을 교체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하였고, 지휘관으로서 구타사고 인지 후 사건을 은폐·축소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지휘책임이 있어야 마땅하지만,

금번 구타 및 가혹행위의 악성사고에 대해 사고예방소홀부분관련 성실의무위반으로 견책처분을 받았고, 인사소청을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이미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행정적 책임 유무에 대한 판단이 이미 이루어졌고, 관련법령상 파견병력 관리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피진정인을 「형법」 제122조에 규정된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처벌하기는 곤란하다는 판단되고,

다만, 장병인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대대장 양○○, 대위 엄○○, 정○○에게 자체인권교육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중대장 예비역 대위 하○○의 경우는 위 인정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보고를 통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마땅하

지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보직해임과 근신 10일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전역을 선택하였는바, 추가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소대장 중위 엄○○은 2004.1.7. 징계항고 결과 구타사실 인지 후 소대장으로서 치료, 교육 등 적법 조치한 점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되었고, ○○대대 ○○○중계소 소대장 정○○는 견책(징계유예 3개월)처분을 받고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각 추가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1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김호준 위 원 나천수 위 원 이해학

3 04진인2725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2005. 6. 21. 결정

군복무 중 선임자의 가혹행위에 대해서 가해자들의 폭행혐의를 관계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하도록 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해서 직권으로 전·공상 심의를 할 것과 병영 내 가혹행위를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피해자는 전역 시까지 부대 내에서 선배들에 의해 구타, 폭언, 따돌림, 왕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가혹행위의 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선임자의 가혹행위에 대해서 가해자들의 폭행혐의에 대해 해군참모총장과 검찰총장에게 수사개시를 의뢰하고,

[2] 피해자의 현재 정신장애는 군복무중 당한 구타 등 가혹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상군경으로서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해서 직권으로 전·공상 심의를 할 것과 병영 내 가혹행위를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참조조문▐

「헌법」제12조,「군형법」제62조

▌진정인▐ 손○○(피해자의 형)

▌피해자▐ 손○○

▌피진정인▐ 해병 ○사단장 등

▌주 문▐ 1. 해군참모총장에게 중사 유○○, 황○○, 이○○, 최○○의, 검찰총장에게 예비역 하사 이○○, 변○○의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 수사의 개시를 의뢰한다.

2.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전·공상심의를 할 것과, 해병대 병영내의 폭행·욕설 등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 유 ▐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1999년 1월경 해병대하사로 임관, 2003년 1월경 전역을 하였는바,

가. 복무 중 선배 하사관들에게 몽둥이와 전투화발로 머리 등을 폭행당하고 거의 매일 욕설과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을 당하였다.

나. 전역 후에도 폭행에 대한 악몽과 불안증세가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외상후성 정신장애를 갖게 되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1) 피해자는 해병○사단에 전입 후 1999.6.~7.사이 선배인 중사 유○○, 하사 이○○로부터 "○새끼 똑바로 해라"는 등의 욕설과 암기강요를 당하였다.

(2) 1999.8.부터 2000년 8월까지 중사 유○○, 하사 변○○, 하사 이○○ 등으로부터 "조심해라, 생활 잘 해라, 병신 똑바로 하지 않으면 ○새끼 죽여 버린다"라는 협박을 당하였다.

(3) 2000.6.부터 같은 해 8월 사이 선배인 하사 변○○이 소대 선임 하사실에서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넘어뜨린 후 전투화 발로 머리, 뒤통수, 옆구리, 가슴 등을 수차례 구타하여 피해자는 수시로 머리가 아프고, 군 생활이 두려웠으며, 선배들이 무섭고, 가끔 어지러운 증세가 발생하였다.

(4) 2000. 9월경 ○○도 전입 후 2001. 9월부터 같은 해 10월경 하사 이○○으로부터 똑바로 하지 않는다고 소대 선임하사 실에서 몽둥이로 머리를 2~3대를 구타당하여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정신이 어지러워 두통, 어지러움, 악몽(선배들이 때리고 협박하는 꿈)등이 심해졌다.

(5) 2002. 1월 부터 2003.1.8. 전역까지 하사 최○○, 이○○이 수시로 가래침을 뱉고 "똑바로 해라 병신새끼"라는 욕과 함께 주위 동료들에게 왕따 등 따돌림을 당하도록 하였다.

(6) 피해자는 휴가 중 집에서 죽고 싶다는 말을 수회 했고, 전역 후에도 꿈속에서

선배들이 자신을 구타하고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등 매사에 불안해하는 등 과민반응으로 자다가 어머니와 형을 갑자기 폭행하는 등 과민반응 증세를 보이고 있다.

나. 피진정인 주장

1999. 1. 8.~2000. 8월까지 해병○사단 ○연대 ○대대 ○중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간부들은 중대장 대위 이○○, 행정관 상사 조○○, 중사 유○○, 하사 김○○과 전역자 하사 변○○ 등이고, 2000.9월 부터 2003.1.8월까지 해병○여단 ○연대 ○대대에서 근무한 간부들은 행정관 상사 박○○, 중사 황○○, 하사 이○○, 최○○, 이○○, 김○○, 박○○와 전역자 하사 김○○, 이○○ 등인 바,

(1) 현재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군 생활을 잘못하여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구타 및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2) 현재 전역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업무에 대해 미숙하여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폭언과 구타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인정 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각 진술서, 피해자 진단서, 참고인 확인서(경찰), 병원 관련기록, 임상심리검사2회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기초사실

(1) 피해자는 1999.1.부터 2000.9.까지는 해병 ○사단 ○연대 ○대대(경기도 ○○ 소재)에서, 2000.9.부터 2003.1.8.까지는 해병 ○여단 ○대대(인천시 ○○도 소재)에서 각각 군 복무를 하였다.

(2) 군형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공소시효는 「군사법원법」 제291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며, 「군인사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시효는 2년으로 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1999.1.부터 2003.1.8. 전역 시까지 부대 내에서 선배들에 의해 구타, 폭언, 따돌림, 왕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진정인 개개인 별로 살펴보면,

(1) 예비역 하사 이○○은 2001.9. 일자미상 오전 일과 중 피해자가 상관이 지시한

것을 잘못하고 평상시 내성적인 성격에 병사들 교육훈련도 잘못시켜 소대 선임하사실에서 몽둥이로 이마를 1~2회 폭행하여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여 휴식을 취하라고 지시하였고, 또한, 일자불상경 병사교육훈련을 잘못하여 전투화로 복부를,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였고, 여러 번 욕을 한 적이 있고, 그 후 부대의 선배들에게 구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피해자가 많이 힘들어 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2) 해병○여단 ○대대(현 ○○교도소 수용 중)예비역 하사 김○○은 2000.9부터 2003.1월 사이 피해자는 주로 선배들에게 많이 혼나고 수없이 불려 다녔으며, 또한 예비역 이○○ 하사가 구타와 심한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

(3) 예비역 하사 변○○은 1999.1월부터 2000.9월중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군 생활 잘해라, 조심해라, 병신 죽여 버린다"라는 폭언으로 모멸감을 느끼도록 한 사실이 있고, 잘하라고 타이르듯이 손바닥으로 툭하고 건드리고, 전투화 신은 발로 툭하고 때린 적은 있지만 감정을 가지고 때린 적은 없다고 스스로 진술하였다.

(4) 당시 ○소대 선임하사로 근무(1999. 1~2000. 9.)한 중사 김○○(현 해병○사단 ○연대 ○대대 ○중대 근무)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동료하사관들이 욕을 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은 없으나 피해자가 해병대 하사관으로 근무하기에는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욕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만,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예비역 하사 변○○이 소대 선임하사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을 여러 번 목격 할 때마다 이상한 분위기와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5) 해병○사단 ○연대 ○대대에서 피해자와 같이 근무(1999. 1~2000. 9.)한 중사 유○○(현 해병○사단 정보참모실 지역 및 기상 담당)은 피해자가 기본적인 업무수행도 못하여 '야 임마, 너는 새끼야 애들도 다 한다. 너는 내가 지시했는데도 왜 안했어. 너 쌔끼야 이런 식으로 할려면 다시 2소대로 돌아가'라는 식으로 욕을 한 적이 있고, 주·야간 근무 시 브리핑 연습을 많이 시켰으나 때린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6) 해병○여단 ○대대(현 해병○사단 ○연대 ○대대 군수지원담당관)중사 황○○은 2000. 9월부터 2001. 11월 사이 피해자는 평소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선배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왕따를 당했고, 또한 상호미상 단란 주점에서 음주 후, 새벽에 BOQ옆 장촌 교회 뒤쪽에 집합시켜 "군생활 똑바로 해라"라며 때리려는 흉내만 내고 겁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7) 해병○여단 ○대대 화기중대 하사 김○○은 당시 2001년까지 부대 내에 구타가 심해 정신이 없었고, 당시선임 하사 김○○은 교육차원으로 간부연구실에서 집합을 많이 시켰고, 피해자는 타 선배들에게 많이 구타당했다고 진술하였다.

(8) 해병○여단 ○대대 ○중대 중사 이○○은 일시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군 생활 및 훈련준비를 못해 큰소리로 심한 욕설과 화를 많이 냈었다고 진술하였다.

(9) 위 같은 부대 화기중대 중사 최○○는 13개월 근무 도중에 피해자의 업무미숙에 대해 인해 욕설과 폭언을 많이 하였고, 중간정도 지났을 때는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10) 해병 ○사단 ○연대 ○대대 당시 피해자의 중대장 소령(진) 이○(현 해병대사령부)은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당시 보고를 받았다면 조치를 했을 것이나 간부들끼리 구타 및 가혹행위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혀 알 수가 없으며,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11) 당시 행정보급관 상사 조○○(현 해병○사단 ○연대 ○대대 근무)은 선배 부사관들이 똑바로 하라고 욱하는 성격에서 욕 하거나 진짜 욱하는 성격에서 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가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러한 일련의 가혹행위와 피해자의 정신장애증세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살펴보면,

(1) ○○○경찰서 ○○ 파출소 순경 구○○는 2003.12.16. 01:50경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바, 진정인(피해자의 형 손○○)의 눈과 목에 상처가 있었고, 피해자는 "해병대 개새끼들 다 때려 죽여 버리겠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자신의 귀에 도청장치가 되어 있고, 해병대 선배들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TV에서 감시하고 있다며 분노와 적개심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상황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2004.7.1.)하여 제출하였다.

(2) ○○병원 정신과 담당의사(의사번호 제○○호)문○○은 2004. 6. 8. 인권위 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 시 피해자는 이자극성, 긴장된 정동, 충동적 행동, 불면 및 악몽 등의 주증상을 보여 환자를 면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소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2005.2.25. 담당의사 문○○이 2차례(2004.7.10, 12. 11)에 걸쳐 의뢰한 ○○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임상심리학교실에서 실시한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병은 외상후성 정신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로 환자의 상태를 종합해 보면, 현증상은 병전의 기능에 비하여 현저히 저하되고 군복무시의 사고경험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강력히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타인/부모를 폭행하거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혹은 우울증세에 수일간 빠져드는 삽화를 보이고, 향후에도 지지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었다.

(4) 피해자의 모친 송○○는

(가) 피해자가 군입대한 후 전화가 왔는데 해병대는 군기가 세고 선후배 관계도 무섭다는 내용과 군 생활을 잘못하여 선배들에게 많이 맞아 고생했다는 말을 수차례 하였고,

(나) 2003.1.8. 전역한 후 함께 생활하던 중인 2003.10.경 식당일을 마치고 10:30경 귀가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머리, 가슴, 배, 목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하고, 2003.12.16. 새벽에 갑자기 TV에서 선배들이 나를 체포하러 온다고 하면서 형(손○○)를 약 10여 분간 구타하며 난동을 부려 파출소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수회 맞아 서울 ○○구 ○○동 소재 ○○신경외과에(면허번호 제○○호, 의사 안○○의 진단서) 총 3회에 걸쳐 입원한 사실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1999. 1.부터 2003.1.8. 전역 시까지 부대 내에서 선배들에 의해 구타, 폭언, 따돌림, 왕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피진정인 예비역 하사 이○○, 변○○ 등은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타 피진정인 중 중사 유○○, 황○○, 이○○, 최○○는 욕설 등 폭언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또한 위 행위는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가혹행위의 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아울러, 소견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현재 정신장애는 군복무중 당한 구타 등 가혹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상군경으로서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한편, 피해자의 소속 중대장 등 지휘관들은 보고받지 못하여 비록 구타 등 가혹행위사실에 대하여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

자는 군복무기간 중 가혹행위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휘관으로서의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나, 「군인사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그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06. 21.

국가인권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호준 위 원 나천수 위 원 이해학

4 05진인543 [부대 내 사망사건과 관련한 인권침해] 2006. 12. 6. 결정

[1] 국방부장관에게, 육군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에 피해자의 '사망구분'에 관한 안건을 재상정하고 사망원인에 대하여 재심의할 것을 권고한 사례

[2] 대한변호사협회에, 위 1.의 주문내용 관련하여 피해자 및 진정인이 입은 피해의 구제를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한 사례

▌결정요지 ▐

[1] 신병으로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던 망자로서는 선임병들의 연속되는 가혹행위와, 이를 시정하여 주지 아니하는 중대장 등 지휘관의 직무태만행위로 인하여 인내하기 힘든 고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그에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국방부훈령 제392호「전공사상자 처리규정」제3조 및 육군규정 제167호「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규정」제3조 내지 제4조 소정의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 즉 자해에 의한 자살이기보다는 업무수행과 내무생활과정에 선임병의 연속되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됨으로, 망자의 사망구분은 '자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순직'에 가깝다고 할 것인 바, 「○○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가 위와 같은 선임병의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망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자의 사망구분을 '자살'로 심의·결정하자, 육군참모총장이 동 위원회 결정대로 망자를 '자살'로 확정하여 유가족인 진정인에게 통지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명예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2] 따라서 순직에 해당된다는 요지의 진정부분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진정인 및 망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피진정인 육군참모총장의 감독기관인 국방부장관에게, ○○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에 망자의 사망구분에 대한 안건을 재상정하여 망자가 선임병의 인권침해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포함하여 재심의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진정인 및 망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국가인권위원회법」제4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인 및 망자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함

▌참조조문 ▐

「헌법」제10조, 「병영생활 행동강령(육군 일반명령 03-21호)」,「전공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 훈령 제392호)」제3조,「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규정(육군규정 제167호)」제3조 내지 제4조,「육본 위원회 규정(육군규정 제2호)」제12조 등

▌진정인 ▌ 김○○(피해자 부친)

▌피해자 ▌ 故 김○○

▌피진정인 ▌ 1. 국방부 장관
2. 육군참모총장
3. 중령 장○○(당시 육군 제○○사단 ○○연대 1대대장)
4. 대위 김○○(당시 육군 제○○사단 ○○연대 ○대대 ○중대장)

▌주 문 ▌ 1. 국방부장관에게, 육군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에 피해자의 '사망구분'에 관한 안건을 재상정하고 사망원인에 대하여 재심의할 것을 권고한다.

2. 대한변호사협회에, 위 1.의 주문내용 관련하여 피해자 및 진정인이 입은 피해의 구제를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3. 진정요지 '가' 및 '나'에 대해서는 각 기각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이하 "망자"라 함)는 2005.2.26. 육군 제○○사단 ○○연대 ○대대 ○중대(이하 "○중대"라 함)에서 군 복무중에 사망하였는 바,

가. 군 수사기관이 망자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판정하면서 망자가 189센티미터 높이의 화장실에서 10센티미터의 세수대야를 밟고 올라가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망자의 키가 181센티미터이고 전투화의 높이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고려할 때 납득이 가지 않으며,

나. 부대 내 선임병의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으므로, 군 복무 중 억울하게 사망한 부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사병관리를 잘못한 부대 지휘관 등 관련자를 처벌해야 하며,

다. 부대 내 선임병의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순직에 해당됨에도 군 당국이 사망구분을 '자살'로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 본 사망사건을 조사한 바, 최초 사고현장 목격자 및 병사 등 참고인 진술, 현장상황, 망자 시체 검시조서 및 군의관 검안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보고서, 지문·필적 등의 감정결과보고서, 유서내용 등을 종합하여 망자의 사인을 망자의 의사에 의한 자살로 판명하였다.

(2) 당해 사망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대대장·중대장이 부대관리를 잘못한 부분과 선임병들이 망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이 밝혀져 이들에 대해 징계조치 등의 적절한 불이익 처분을 하였다.

3. 인정사실

가. 타살 의혹 관련

(1) 군의관 ○○ ○○○가 2005.2.25. 작성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에 의하면, 망자는 같은 달 25. 06:55에 ○중대 막사 화장실에서 목이 졸려 '심폐정지'로 사망(추정)하였다.

(2) 제○○사단 검찰관 ○○ ○○○이 ○○ ○○○을 참여케 하고 작성한 '검시조서'에 의하면, 2005.2.25. 06:08경 ○○ ○○○이 화장실내에서 전투화 끈으로 목매어 늘어져 있는 사체를 발견하고, 끈을 칼로 잘라 사체를 내린 후 소속대 군의관 및 의무병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사단 의무대로 후송하였으나, 후송 직후인 같은 날 06:59경 사단 의무대 군의관 ○○ ○○○가 사망을 확인하였고, 목에 전투화 끈 굵기 정도의 줄로 조인 흔적이 있는 점, 타박상 등 방어흔적으로 보이는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 등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나, 사체를 부검하여 사인을 규명한 후 유족에게 인도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망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목에 나타난 색흔 외에 방어손상 및 저항손상과 같은 폭력의 근거 또는 사인이 될 수 있는 손상을 보지 못하는 등 타살의 가능성을 고려할 만한 소견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4)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의 2005.3.25.자 감정결과통보에 의하면, 망자의 '유서 필적 감정' 결과 망자의 필적과 동일하게 감정되었다.

(5) 망자의 유서에는 '내가 못나서 삶을 포기한다. 나약한 말이라고 하지만 이 방법만이 가장 편하다 생각한다. 군대에 온 게 가장 큰 실수다.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매일매일 욕·갈굼·인격 모독을 받는데 질렸다. 나의 자살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싫다. 단지 나 개인이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여 도저히 나갈 방법이 없다. 부모님께 제일 미안하다. 외동아들 하나인데, 부모님 정말 미안합니다'라는 요지가 기재되어 있다.

(6)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육군 전사망심의위원회는 2005.5.20. 망자의 '사망구분'을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한 '자살'로 심의·결정하였다.

나. 선임병에 의한 가혹행위 관련

(1) 망자와 같은 부대에 근무한 ○○ ○○○, ○○ ○○○, ○○ ○○○, ○○ ○○○, ○○ ○○○, ○○ ○○○(전역)의 진술에 의하면, 망자는 2004.8.12.에 입대하여 같은 해 10.18. ○중대로 전입한 이래 2004.10월부터 사망한 하기 직전인 2005.2월까지 선임병인 위 ○○ ○○○ 등으로부터 아래표와 같이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가해자	일시·장소	가해내용
○○ ○○○	2004.10월말 내무반	- 망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새끼야, 개쓰레기 같은 새끼, 내가 네 친구냐'며 욕설
	11.3. 유격장	- 유격 훈련 중 '75번 올빼미' 구령을 더듬거리며 복창하는 것을 따라하며 모욕
	2005.1.10. 각개전투교장	- 유격 훈련 중 구령·복창·복명시 말을 더듬었다는 이유로 '이 새끼 말을 왜 더듬어'하면서 흉내를 내는 등 모욕
	1.4. 내무반	- 불침번 근무시 졸다가 다음차례 근무자를 깨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내무반에서 59분 참선과 반성문 5장 작성 강요
	2월초순경	-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잘 좀 하라'며 폭언하면서 말 더듬는 것을 흉내를 내며 모욕
	2.10. 중대막사 앞	- 내무반 총기 현황판 날짜가 틀린다는 이유로 반성문 30장 작성 강요(망자 포함 다수사병에게)
○○ ○○○	2004.11.26. 분리수거장	- 100일 휴가 복귀시 '사제물건과 양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너희들 미쳤냐'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 생각이 있는거냐, 없는거냐'고 모욕(망자와 ○○ ○○○에게)
○○ ○○○	2004.11.26. 막사 뒤편	- 100일 위로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사제물건인 '가그린'를 사가지고 왔다며 '야 이새끼야 너 미쳤냐'며 모욕(망자와 ○○ ○○○에게)

가해자	일시·장소	가해내용
	12월 중순 야외휴게실	- 총기 손질용 수입포를 잘라 놓지 않고 총기에 공이를 결합하지 않았다며 '똑 바로 안할래,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공이를 망자에게 던져 폭행
	2004년말 ~2005년초 분리수거장	- 쓰레기통을 벽에 던지면 욕설하고 망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으면서 손바닥으로 망자의 얼굴을 툭툭 두어차례 때림 - 화장실 연탄을 갈다가 연탄을 깨는 실수를 하자 뒤통수를 때리는 등 수시로 주먹으로 툭툭 침
	2005.1월초순 내무반	- 망자 관물대 좌우명 기록란에 '당한 만큼 갚아주자'라고 써 놓았다는 이유로 '네 머리에는 뭐가 들었기에 이런 거 써 놓았냐, 고참 엿 먹일려고 하느냐'며 모욕
	1월 초순경 중대 건물 앞	- 판초우의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십새끼야, 미쳤냐 지금 게기는거냐, 라고 모욕하면서 전투모로 망자를 2~3회 때렸음
	1월 중순 내무반	- 5분대기조 파견근무시 졸았다는 이유로 욕설 - 불침번 근무시 근무자를 잘못 깨웠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똑바로 안할래, 짬밥 동구멍으로 쳐먹었냐,라고 하는 등 모욕
	2월 중순 자동화 사격장	- 조포 훈련중에 '장비 검사를 제대로 못하냐, 제대로 하라, 이 새끼야'라며 모욕
	2.21. 내무반	- 담배를 통제한다며 하루 5개피씩 피우라고 담배갑에 숫자로 표시하는 등 강요
○○ ○○○	2005.1월초순 내무반	- 망자 관물대 좌명 기록란에 '당한만큼 갚아주자'라고 써 놓았다는 이유로 '씨발새끼 써 놓은 것 봐라, 개념없네, 당장 고쳐라'고 하며 모욕
	2.20. 내무반	- 일석 점호시 웃었다는 이유로 '너 씨발 나보고 왜 웃냐'며 모욕
	1월 중순 각개전투교장	- 조포훈련중 '가로할 때 손잡이'란 구호를 더듬으면서 하자 '가..가.. 가로 할때 손잡이'라고 흉내를 내며 모욕
○○ ○○○	2005.1.25. 감악산 일대	- 혹한기 훈련시 야간에 텐트를 치는데 지주대를 제대로 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이씨발놈아 제대로 잡지 안을래'라고 모욕 - 훈련을 마치고 부대 복귀시 수통을 분실하자 '야 이 씹새야 너 영창갈래'라고 모욕
○○ ○○○	2.25. 내무반	불침번 근무시간에 담배를 피웠다고 '니가 정신이 있냐, 에이- 씨'라고 하면서 질책하고 '내일보자'며 압박감을 줌

(2) 망자와 입대동기인 ○○ ○○○의 진술에 의하면, 망자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선임병들로부터 매일 심한 욕설을 들었고, 망자는 평소 활발하게 생활하다가도 선임병들이 있는 내무반에만 들어가면 멍하니 앉아서 선임병의 눈치만 보는 등 불안한 증상을 보였다.

(3) 망자와 같은 부대에 근무한 ○○ ○○○의 진술에 의하면, 망자는 2005.1월초

위 ○○○에게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내가 너를 괴롭힌다고 소원수리를 써서라도 나를 다른 곳을 보내주면 안되겠냐' 라고 하기에, 위 ○○○은 망자에게 '차리리 선임병이 괴롭힌다고 소원수리를 써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라고 반문하자, 망자는 '아 모르겠다. 미치겠다. 담 넘어 탈영하고 싶다'라는 신세 한탄을 하였다.

다. 보호관심병사인 망자에 대한 중대장 등 지휘관이 한 조치 관련

(1) 2005.2.18.부터 같은 달 19.에 걸쳐 실시한「○중대 부대 정밀진단결과」에 의하면, 망자는 '100일 휴가시 미복귀 충동'과 '자살충동 및 탈영 충동' 등이 있다는 사유로 '보호관심병사(A급)'로 지정되었다.

(2) 망자가 근무한 부대의 포반장인 ○○ ○○○, 지휘관인 중대장 ○○ ○○○, 대대장 ○○ ○○○의 진술을 종합하면, 위 ○○○은 2005.2.20.경 망자가 야외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간부연구실에서 면담을 하였는데, 면담당시 망자가 '집으로 보내달라'고 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그 내용을 중대장 ○○ ○○○에게 보고하였더니, 망자에게 사병 1명을 붙여 관찰하도록 지시하였는데, 당시 중대전술훈련 중이어서 중대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3) ○○ ○○○으로부터 망자에 대한 면담결과를 보고받은 중대장 ○○ ○○○은 망자를 직접 면담하였는데, 망자에게 '왜 울었냐? 내부반에서 누가 갈구었느냐?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어디 아프냐?'고 물었더니 망자는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하면서도 '집에 가고 싶다'고 하기에 훈련이 끝나고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였는데, 망자가 '운전병을 하고 싶다'고 하기에 운전병은 안되고 취사장·매점판매병·당번병은 어떠냐고 의중을 물었더니, 망자가 계속 운전병을 하고 싶다고 주장하기에 '대대장에게 보고는 하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라'고 한 후 면담을 끝냈다.

(4) 2005.2.21. 중대장 ○○ ○○○으로부터 망자와의 면담결과를 보고받은 대대장 ○○ ○○○은 위 ○○○에게 망자를 관찰한 인원을 붙여 집중 감시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외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선임병 및 지휘관 등에 대한 징계 관련

(1) 제○○사단 ○○연대 등의 징계기록에 의하면, 제○○사단 ○○연대 연대장은 2005.4.18. 중대장 ○○ ○○○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중대원 신상파악 및 보호관심병사에 대해 확인·조치해야 하나 미온적 조치

- 망자가 사망전 관심병사로 선정된 이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하나 관리를 소홀하였고, 특히 말더듬과 중대내 최연소자이며 면담시 엉뚱한 면이 있어 특별관리를 요하는 면담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가 미흡하였으며, 보호관심병사 A급으로 선정한 후에도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실질적인 상향식 신상결산 보고내용 미흡

- 중대내 보호관심병사로서 특별 관리가 필요하나 소대장과 중대장만 보호관심병사로 관리하였고, 중·소대장 상호간 의사소통이 차단되어 관심병사 현황을 미숙지하였으며, 선임병의 폭언·욕설 등 미인지 및 미조치하여 망자를 사망케 하였음

○ 자살 징후 발견을 위한 식별 및 의사소통 노력 미흡

- 신상관련자료 및 상향식 신상결산·관찰을 통하여 자살우려자 식별·관리를 하여야 하나 미흡하였고, 특히 간부들의 경각심 미흡으로 중대 보호관심병사A급으로 선정 후에도 관리가 미흡한 사실이 있음

(2) 제○○사단 ○○연대 연대장은 ○○ ○○○에 대해 포반장으로서 보호관심병사인 망자에 대한 신상파악을 소홀히 하였고, 상향식 일일결산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복무 부적응자인 망자에 대한 경각심이 미흡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제○○사단 ○○연대 ○대대 ○중대 중대장 ○○ ○○○은 2005.4.29. 망자에게 욕설 등을 한 ○○ ○○○과 ○○ ○○○은 각각 영창 15일을, ○○ ○○○은 영창 8일을, ○○ ○○○과 ○○ ○○○은 각각 휴가 3일 제한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4) 군 검찰 사건송치기록에 의하면, 군 검찰관은 망자가 사망하기 전인 2005.2.13.에 전역한 선임병 ○○ ○○○에 대해서는 2005.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 및 모욕죄명으로 사건을 ○○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다.

(5)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방검찰청은 2005.7.29. 위 ○○○의 상습강요 등의 사건에 대해 일부는 '공소권 없음'으로, 일부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6)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제○○사단 사단장은 2005.4.13. 대대장 ○○ ○○○에 대해 지휘·감독책임을 물어 '경고' 처분을 하였다.

4. 판 단

가. 관련규정

「헌법」 제10조, 「병영생활 행동강령(육군 일반명령 03-21호)」, 「전공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 훈령 제392호)」 제3조, 「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규정(육군규정 제167호)」 제3조 내지 제4조, 「육본 위원회 규정(육군규정 제2호)」 제12조 등

나. 판 단

(1) 타살 의혹 부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의관 ○○○가 망자는 부대막사 화장실에서 목이 졸려 심폐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 점, 망자의 목에 전투화 끈 굵기 정도의 줄로 조인 흔적이 있고 타박상 등 방어흔적으로 보이는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망자의 목에 나타난 색흔 외에 방어손상 및 저항손상과 같은 폭력의 근거 또는 사인이 될 수 있는 손상을 보지 못하는 등 타살의 가능성을 고려할 만한 소견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피력한 점,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가 망자의 유서 필적 감정 결과 망자의 필적과 동일하게 감정한 점, 망자의 유서에 선임병의 인격모독 등 심한 횡포 때문에 자살하게 되었다는 요지의 내용이 기재된 점, 달리 망자가 타살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자가 타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선임병 및 지휘관에 대한 처벌 부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자에게 욕설 등의 인격모독 행위 등을 한 ○○ ○○○ 등은 각각 영창 8일부터 영창 15일, 휴가제한 3일에 이르는 징계를 받았고, 전역한 ○○ ○○○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습강요) 위반 및 모욕죄의 혐의로 ○○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으며

부대관리 등을 소홀히 한 대대장 ○○○는 '경고'를, 중대장 ○○○은 '견책'을, 포반장 ○○○은 '근신 5일'의 징계를 이미 받았으므로, 이에 추가하여 징계조치를 하도록 하는 시정권고 등의 조치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순직' 해당 부분

육군 일반명령 03-21호인 「병영생활 행동강령」에 의하면, 분대장을 제외한 사병 상

호간에는 명령이나 지시·간섭이 금지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및 가혹행위도 금지되며, 폭언·욕설·인격모독 등 일체의 언어폭력도 금지되어 있으며

국방부 훈령 제392호인 「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3조, 육군규정 제167호인 「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규정」 제3조 내지 제4조 및 육군규정 제2호인 「육본 위원회 규정」 제1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본부에 설치된 전사망심의위원회(현역 장교로 구성)는 군 복무 중 사망한 자를 사망원인에 따라 적과의 교전행위로 인한 사망은 전사, 교육훈련 기타 공무로 인한 사망은 순직, 공무외 사고로 인하여 생긴 사망 즉 공무수행과 관련 없는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은 일반사망,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망은 변사,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 즉 자해로 인한 사망은 자살로 각각 구분(다시 25개 기준에 따라 세분화)하여 심의·결정하고 있으며

유족 등은 동 심의위원회의 '사망구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갖추어 동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자 외에 변사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본부의 '보훈수혜 일람표 및 수속절차'에는 자살자의 경우 사망위로금 500만원과 장제비 25만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반면에, 순직자는 장제비 25만원과 사망 당시 보수월액(병의 경우는 중사 1호봉 보수월액 기준)의 36배에 해당하는 사망보상금을, 일반사망자는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자는 2005.8월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수료한 후 2004.10월에 자대 배치를 받아 생활하면서 사망 직전인 2005.2.20.에 이르기까지 약 4개월 동안 ○○ ○○○·○○ ○○○ 등 다수의 선임병으로부터 업무수행과 내무생활 과정에 상시적으로 폭언·질책 등의 가혹행위를 받아온 바

위 ○○ ○○○ 등 선임병의 가혹행위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징계·훈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허용되는 정도를 넘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고

일반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사회에서의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망자는 위와 같은 선임병의 폭언·질책 등 가혹행위로 말미암아 고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개연성이 높은 점

중대장 ○○○·대대장 ○○○ 등 지휘관은 망자가 선임병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가혹행위를 당하였음에도 망자 또는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을 다른 부대로의 전출명령 등 가혹행위의 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사병들에 대한 교육 및 생활지도를 통하여 부대 내의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병들을 관리하면서 군 생활 적응을 도와 자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중대장 ○○○ 등이 직무태만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이후 망인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탓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점,

판례도 의무경찰이 상급자들의 질책과 언어폭력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되었고, 우울증의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의무경찰의 사망은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해당하며, 의무경찰의 자살은 그에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점(대법원 2004.5.14. 선고 2003두13595),

망자가 군 입대 전에 정신과적 질환이 발병되어 치료를 받은 전력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군 복무중에 입대 전 정신과적 질환이 발현되어 자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망자에게 선임병의 가혹행위 이외에 자살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대한지 얼마 경과되지 아니한 신병으로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던 망자로서는 위와 같은 선임병들의 연속되는 가혹행위와, 이를 시정하여 주지 아니하는 중대장 등 지휘관의 직무태만행위로 인하여 인내하기 힘든 고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그에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국방부훈령 제392호「전공사상자 처리규정」제3조 및 육군규정 제167호「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규정」제3조 내지 제4조 소정의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 즉 자해에 의한 자살이기보다는 업무수행과 내무생활과정에 선임병의 연속되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됨으로, 망자의 사망구분은 '자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순직'에 가깝다고 할 것인 바,

「○○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가 위와 같은 선임병의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망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자의 사망구분을 '자살'로 심의·결정하자, 육군참모총장이 동 위원회 결정대로 망자를 '자살'로 확정하여 유가족인 진정인에게 통지한 행위

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명예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된다.

5. 결론

가. 따라서 순직에 해당된다는 요지의 진정부분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진정인 및 망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피진정인 육군참모총장의 감독기관인 국방부장관에게, ○○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에 망자의 사망구분에 대한 안건을 재상정하여 망자가 선임병의 인권침해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포함하여 재심의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아울러, 진정인 및 망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국가인권위원회법」제4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인 및 망자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한다.

다. 타살 의혹이 있다는 요지의 진정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망자가 타살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1호에 의거 기각하기로 한다.

라.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 등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요지의 진정 부분에 대해서는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 등이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3조에 의거 기각하기로 한다.

마.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5 05직인2 [군훈련소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2005. 2. 14. 결정

군훈련소 인분사건의 직권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과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병영 일반에서의 인권의식향상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제도 개선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군훈련소 인분사건 직권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과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병영일반에서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방부가 발표한 개선조치와는 별도로 병영문화의 대대적 개혁으로 군인도 「헌법」 상의 기본권 향유대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군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가 필요하므로 군 간부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과목 필수화, 신병, 특기병, 수송병, 특전사 교육훈련기관 등에 인권과목 개설 운영, 군 병영에 대한 인권교육과정 개설 실시 및 인권옹호를 고급 군 간부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설정하여 군병영내에서 간부와 사병이 함께 인권을 생각하고 보장하는 병영문화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이고,

[2] 병영시스템의 운영에 있어 감찰·기무·헌병 등의 내부통제장치는 인권침해행위의 예방·적발도 적절히 기능하여야 하고, 소원수리제도는 당초 취지대로 익명성이 보장되어 자유로이 진술할 수 있도록 불시·무작위 실시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사고발생시 지휘계통에 따른 집단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한 비밀주의 및 은폐시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조치, 보고, 감독 등에 대한 업무수행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과 대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병영시스템이 바뀌어야 하고,

[3] 상관의 직무상 위법한 명령에 대해 부하들의 시정 건의 및 적극적 보고조치 의무화, 단체기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명문화, 장병들의 인권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할 인권보호관제도 설치 운영,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허용되도록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권고함

▌참조조문 ▌

「헌법」 제10조

▌ **피해자** ▌ 군훈련소 ○○중대 훈련병 192명

▌ **직권조사대상자** ▌ 군훈련소 훈련소장

▌주 문 ▐

국방부장관에게,

1. 장교 및 부사관 양성·보수교육과정에 인권과목을 필수화하고, 각 군 신병교육기관 및 부대에 대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군 대내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
2. 감찰, 기무, 헌병 등 내부통제장치를 장병들의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적발에도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군의 소원수리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3.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부하들의 시정 건의 및 적극적 보고조치의 의무화 규정, 단체기합의 폐지 등 장병에게 보장되어야 할 구체적인 인권내용, 장병들의 인권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할 인권보호관의 설치·운영, 지휘상관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의 합리적 범위 규정을 신설하고,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외부에 알리는 것을 허용하는 등 외부통제장치 방안이 포함되도록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 유 ▐

1. 조사 개요

가. 직권조사 실시배경

2005.1.10. ○군훈련소 중대장이 훈련병에게 인분취식을 강요한 가혹행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게 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군 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자체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당사자들의 지위

(1) 피해자 : ○군훈련소 ○○연대 ○○중대 훈련병 192명은 ○군훈련소 신병교육 3주차 과정(2005.1.10.)에서 발생한 인분 가혹행위사건의 피해자들이다.

(2) ○군훈련소 : 소장 허○○은 사건 당시 ○군훈련소장이고, 소령 남○○는 사고 중대 교육대장이며, 대위 이○○은 사고 중대인 ○○중대장이고, 대위 정○○는 당시

정훈교육을 담당하였고, 상사 이○○은 당일 연대훈련병 감독관으로 편성이 되었고, 원사(진)사○○은 ○○중대 행정보급관이고, 상사 김○○, 중사 박○○, 김○○, 정○○은 각 ○○중대 소대장들이고, 병장 전○○, 문○○, 상병 성○○, 이○○, 일병 김○○, 송○○, 정○○, 유○○은 각 ○○중대 분대장들이다.

2. 인정사실

피해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및 진술서, ○군훈련소 ○○연대 ○○중대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들의 진술조서, 국방부 자체조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건경위

(1) 2005.1.9. 저녁 ○군훈련소 ○○연대 ○○중대 중대장 대위 이○○은 소속 중대 훈련병을 집합시켜 화장실 청결유지 교육을 직접 실시하였고, 같은 해 1.10. 08:50경 화장실 사용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라고 다시 지시하였으며, 같은 날 10:00경 화장실 청결상태를 확인한 후 이 시간이후 화장실 배설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은 인분을 먹이겠다고 경고하였다.

(2) 위 이○○은 같은 날 15:40경 화장실 청결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배설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소속 중대 분대장 8명에게 훈련병 전원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를 각각 지정한 후에 훈련병을 가르치고 있는 ○군훈련소 정훈장교 대위 정○○에게 중대장 특별교육을 위해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같은 날 15:45경 당일 오전에 경고를 했던 사항에 대해 실천을 한다면서 화장실 인분 뒤처리를 하지 아니한 훈련병은 자수하라고 하였으나 자수하는 병사가 나오지 않자, 소속 훈련병 192명 전원(배식지원 13명, 입실1명 제외)을 화장실로 통하는 복도에 일렬종대로 정열시킨 후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한 인분을 각자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집게 하여 중대점호사전에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3) 위 이○○은 같은 날 16:00경 중대점호사전에 집결한 훈련병들에게 2차례에 걸쳐 인분을 집었던 오른손가락 5개 모두를 입에 넣도록 강요하여 훈련병들이 손가락을 입에 넣게 하였고, “무슨 맛이냐”라고 질문을 하여 훈련병들이 똥맛이라고 대답하자 “그것은 전우의 피맛이다.”라고 말하였고, 16:30경 훈련병들에게 다시는 화장실 배설물을 뒤처리하지 아니하여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경고한 다음 중대 내무반에서 정훈수업을 계속

받도록 하였다.

(4) 위 이○○은 같은 날 20:00경 구급법 CBT 수업 및 다음 날 20:00경 행군 CBT 수업시간에 자신의 가혹행위 사실에 대하여 중대 훈련병 전원에게 사과하였다.

나. 사건인지 후 상급부서에 미보고

(1) 사건발생 당시 훈련병들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었던 정훈장교 대위 정○○는 중대장 대위 이○○에게 "훈련병들에게 무슨 교육을 했느냐"고 물었고 이에 "똥을 먹였다"라는 대답을 들었으나, "장난으로 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중대장의 가혹행위에 대하여 상급부대에 지휘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중대장 대위 이○○은 훈련병들에게 인분 가혹행위를 한 후에 중대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정훈장교에게 자신의 자식을 강하게 훈련시켜달라는 훈련병 부모의 편지를 보여준 후 "화장실 배설물을 제대로 처리할 것을 수차례 강조하였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방금 전에 중대 소속 훈련병들에게 화장실 뒤처리가 되지 아니한 인분을 먹였다"라고 말하자, 이에 대하여 정훈장교는 중대장에게 "잘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군훈련소 ○○연대 ○○중대 행정보급관 원사(진) 사○○은 위원회 1차조사시에는 사건이 발생한 2005.1.10. 오후에는 운전면허 학원에 갔었기 때문에 인분사건 발생 사실에 대하여 당일에는 알 수 없었고, 사건발생 5일 후인 1.15.에야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2차 조사 시에는 인지시점을 1.12.로, 3차 조사 시에는 사건발생 다음날인 1.11. 오전으로 각 번복 진술하였으며,

같은 중대 1소대장 상사 김○○은 사건당일 저녁 외박에서 귀대하는 도중에 소대 선임 분대장의 보고로 가혹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중대장과 인분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중대 2소대장 중사 박○○은 1.12. 훈련병들에 대한 구급법 강의 중에 "똥도 먹었었는데 구강대 구강 구급법 실습을 못하겠습니까"라는 훈련병의 이야기를 듣고 인분 가혹행위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중대 3소대장 중사 김○○과 4소대장 중사 정○○은 사건발생 4일 후인 1.14.에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또한 행정보급관 원사(진) 사○○, 1소대장 상사 김○○ 및 2소대장 중사 박○○은 인분 가혹행위 사건을 인지한 후 바로 중대장 이○○에게 사안이 중대하니 바로 상급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으나, 중대장이 자신이 알아서 한다고 말하여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며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상급부서에 지휘 보고한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중대장 이○○은 위원회의 조사 시 행정보급관 원사(진) 사○○과 1소대장 김○○에게 사건 당일 저녁에 인분 가혹행위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행정보급관을 포함하여 ○○중대 소대장중 어느 한사람도 사건이 중대하니 상급부서에 보고하라는 건의를 한 사실이 없고 만약 부하들의 건의가 있었다면 상급부서에 지휘 보고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군훈련소 ○○연대 ○○중대 소속 분대장 8명은 사건 당일 중대장 이○○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중대점호사전 등 사건현장에서 훈련병들을 통제하였으며, 같은 중대 기간병 20명 전부는 인분 가혹행위 사건에 대하여 사건 당일 저녁에 알게 되었다.

다. 상급부서 등의 사건발생 미인지

(1) 소원수리 시 미신고

○군훈련소에서는 감찰부 주관으로 훈련병들로부터 퇴소 전에 훈련기간 중 발생한 구타·가혹행위 및 개선요망 사항 등에 대하여 소원수리서를 제출받는 익명의 신고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연대 ○○중대 훈련병 30여명은 2005.1.15. ○군훈련소 내 신축식당에서 타 중대 훈련병들과 함께 실시된 소원수리서 작성 시 인분 가혹행위 사건에 대하여는 아무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소원수리서 작성 직전에 ○○중대 중대장 및 소대장이 가혹행위를 은폐하려는 목적 등으로 훈련병에게 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소원수리 작성 직후에 중대장 대위 ○○○이 훈련병들을 직접 면담하여 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지휘계통을 통한 사건인지 여부

(가) ○군훈련소 3교육대장 소령 남○○는 사건당일인 2005.1.10. ○군훈련소에서 실시된 교관 워크샵에 참가한 관계로 인분 가혹행위 사건 발생시 3교육대장실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당일 워크샵이 끝난 후 21:00경 3교육대로 복귀하여 일직사관(2소대장 중사 박○○)에게 특이 보고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없다고 하여 언론보도 이전에는 사건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연대 연대장 대령 이○○도 연대 내 일일교육결산 등 연대 내 훈련병들에 대한 교육 및 특이사항을 매일 확인하고 있었음에도 인분 가혹행위 사건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사건당일 ○○연대 일직사령은 22:00~22:30사이에 야간 순찰을 하였으나, 인분 가혹행위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

지 못하였다.

(나) 일일명령으로 편성되는 연대 교육감독관은 당일 교육훈련에 대해 현장지도확인을 통해 교육감독결과를 작성하여 연대장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사건 당일인 2005.1.10. 연대 교육감독관으로 편성된 인사기록관 상사 이○○은 교육훈련현장 확인 시 중요과목위주로 감독을 하라는 지시에 따라 ○○연대 ○○교육대 종합각개훈련장은 현장 순찰하여 확인하였지만 ○○육대 정신교육장은 확인감독한 사실이 없어 인분 가혹행위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군훈련소 본부주임원사 오○○는 매주 각 연대 주임원사 회의를 개최하여 훈련소장 지휘방침, 각 연대 훈련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으나, 회의에 참석하는 ○○연대 주임원사로부터 인분 가혹행위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사건발생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연대 주임원사 오○○은 매주 수요일 연대소속 각 중대 행정보급관 회의를 통해 각종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공식적으로 보고받고 있으며, 매일 오전·오후 각 중대 순찰을 통해 행정보급관들로부터 개인적인 애로사항을 비롯한 사소한 일 등까지도 듣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중대 행정보급관이 자신에게 인분 가혹행위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아니한 이유를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으며 언론보도 이후에야 인분 가혹행위 사건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원회가 실시한 ○군훈련소 내 타 부대(○○, ○○연대) 훈련병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연대 ○○중대의 인분 가혹행위 사건에 대하여 언론보도 이전인 2005.1.16. 일요일 종교행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훈련병도 다수 확인되는 등 피해훈련병과 분대장, 소대장 등 230여명이 언론보도 이전에 인분 가혹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나 ○군훈련소의 사고예방기능을 수행하는 감찰, 기무, 헌병에서는 언론보도시점까지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감찰, 기무, 헌병 모두 인력부족을 호소하였으며 감찰은 소원수리 업무, 기무는 고위 군 간부의 동향관찰, 헌병은 범죄사건 수사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여 인분 가혹행위 사건을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유사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

위원회가 실시한 피해 훈련병 전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군훈련소 훈련과정에서 이 사건(인분 가혹행위)과 타 중대의 분대장들에게 욕설을 들은 외에 다른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군훈련소의 타 부대 소속 훈련병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및 ○군훈련소 헌병대 징계입창기록 등에 의하면, ○○연대

○○중대 이외의 타 중대 분대장이 훈련병들에게 화장실 용변을 처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 인분을 먹인다고 교육한 사례 및 조교, 교관 등으로부터 훈련과정에서 욕설 등 폭언을 들었다는 다수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그 밖에 침을 뱉은 훈련병에게 그 침을 먹도록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된 사례, 후임병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행위가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 및 상당한 수의 병사들이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로 처벌받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마. ○군훈련소의 훈련병 인권보호방안

○군훈련 소장 허○○은 2004.10.28. 부임이후 훈련병 인격존중과 기본권 보장, 사고 및 비리척결, 교육훈련 철저, 기간장병 사기앙양 및 기강확립을 지휘방침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기존 퇴소전일 실시하던 소원수리를 퇴소 1주일 전에 실시하여 소원수리를 통해 제기된 식사·세면시간 부족, 내무반 추위, 욕설 및 폭언, 군의관 및 의무병 불친절 등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여 훈련병들이 시정된 사항을 알고 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교육훈육체계 정립을 위해 매일 교육현장을 감독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상향식 교육 일일결산체계 및 일일순찰체계를 시행하였으며, 기강 확립과 훈련병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교육대장, 중·소대장을 대상으로 교관 워크숍을 실시하고, 중대 및 교육장 출입문 입구·화장실 등에 마음의 소리 건의함, 훈련소 내 중대막사 앞에 우체통을 설치하여 훈련병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다.

바. 국방부의 인분 가혹행위 사건 관련 조치사항

사건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로는 ○군훈련소장에 대하여는 ○군참모총장 구두경고, ○○연대장 대령 이○○와 ○○교육대장 소령 남○○에 대하여는 교육사 징계위 회부, 사고 중대장에 대하여는 2005.1.20. 긴급체포, ○○연대 지원과장 소령 심○○, 교육과장 소령 김○○, 정훈장교 대위 정○○ 및 ○○중대 분대장 8명은 ○군훈련소에 그 처리를 위임하였고,

제도개선 조치로는 구타·가혹행위 및 병영부조리 근절, 중대장, 교관, 조교요원의 인성검사 및 자질향상 등 교육훈련기관 쇄신을 위하여 전군 신병교육기관 48개 부대를 정밀 점검하였으며, ○군본부 감찰감(중장)을 위원장으로 인사근무, 교육훈련, 감찰, 법무, 헌병 등 준장을 위원으로 하는 ○군 인권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군 인권개선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군훈련소 등 병영내에 인권전문상담실 설치 및 인권보장교육을 강화하며, 인분 가혹행위 사건과 같은 인권피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휘계통과는 별도로 군 최고책임자에게 즉시 보고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3. 판단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군훈련소에서 중대장이 소속 훈련병들에게 인분을 입에 넣도록 강요한 행위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조사결과 그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가. 인권의식부재의 병영문화

(1) 이 사건 중대장이 인분을 먹이겠다고 공언하고 시행한 점, 타 중대에서도 분대장이 훈련병들에게 화장실 불결사항 적발시 인분을 먹이겠다고 경고한 점, 침을 뱉은 훈련병에게 그 침을 먹게 한 행위 등 유사한 가혹행위사례가 확인되는 바, 이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다는 그릇된 병영문화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더욱이 한 사람의 훈련병이 실수한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에 책임이 없는 대다수의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단체기합을 행한 것은 사실상 가혹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현재 군에서 '얼차려' 등의 이름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기합의 불합리한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정훈장교, 행정보급관, 소대장, 분대장 등의 군 간부들은 사건 발생 직후에 이를 인지하고도 상급부대 보고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 이는 이 이사건 가혹행위와 같은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서, 지휘관들의 인권의식 부족을 알 수 있다.

(3) 또한 192명에 달하는 훈련병들 역시 인분을 쥐었던 손을 입에 넣게 하는 가혹행위를 당하고도 자신들의 잘못으로 그런 처벌을 받았다고 다수가 인식하는 등 인권의식이 결여된 그릇된 군기확립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

나. 인권침해 예방이 어려운 병영시스템

(1) 지휘보고계선의 절대시 등 군내부의 경직적인 관념과 관행으로 인해 직속상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사관, 분대장 등이 고발을 기피하거나 드러내기가 곤란한 실정이고, 특히 훈련소 본부와 연대 주임원사 회의체제 등의 다양한 채널의 가동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후 10여일이 경과되도록 가혹행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 군은 사고발생시 상급 지휘·감독자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사회적 파장을 이유로 문책과 처벌을 행하는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바, 평소 사고예방 및

제도개선, 교육훈련에 대한 확인노력 여부를 검토한 후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장병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조치해주고는 현 소원수리 제도는, 결과에 따른 문책성 후속조치의 실시로 인해 지휘관들이 소원수리를 전후하여 사전, 사후 통제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어 소원수리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4) 감찰·기무·헌병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고위 군 간부들의 비위사실 중심으로 활동함으로서 이사건과 같이 피해 훈련병을 포함하여 적어도 230여명이 알고 있는 사실을 사건발생 10여일이 지나도록 인지하지 못하는 예방감시기능의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다. 외부통제 장치의 부재

사회와 격리되어 있고 보안을 강조하는 군의 특성상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먼저 인지하기는 곤란할 뿐 아니라, 군인복무규율 제25조 제4항은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복무관련 고충사항을 외부에 요청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군 내부절차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 외부통제장치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사건의 경우와 같이 가혹행위사실을 서신을 통해 외부의 언론에 알리는 신고행위가 현행 군인복무규율 위반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라. 시설 등의 문제

○군훈련소는 점진적으로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시설이 기존 시설의 노후가 심하여 화장실 수압이 약하거나 수시로 고장이 발생하는 등 문제 발생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으며, 빠듯한 훈련병 교육일정과 훈련병에 대한 훈육, 교육지원업무 및 교관업무의 겸임으로 인해 분대장 및 소대장의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가. 따라서 ○군훈련소 인분사건 직권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과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병영일반에서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국방부가 발표한 개선조치와는 별도로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1) 병영문화의 대대적 개혁으로 군인도 「헌법」 상의 기본권 향유대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군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관학교, 부사관학교, 학군단 등 군 간부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과목 필수화, 신병, 특기병, 수송병, 특전사 교육훈련기관 등에 인권과목 개설 운영, 군 병영에 대한 인권교육과정 개설 실시 및 인권옹호를 고급 군 간부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설정하여 군병영내에서 간부와 사병이 함께 인권을 생각하고 보장하는 병영문화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이다.

(2) 병영시스템의 운영에 있어 감찰·기무·헌병 등의 내부통제장치는 인권 인권침해 행위의 예방·적발도 적절히 기능하여야하고, 소원수리 제도는 당초 취지대로 익명성이 보장되어 자유로이 진술할 수 있도록 불시·무작위 실시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사고발생시 지휘계통에 따른 집단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한 비밀주의 및 은폐 시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조치, 보고, 감독 등에 대한 업무수행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과 대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병영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3) 상관의 직무상 위법한 명령에 대해 부하들의 시정 건의 및 적극적 보고조치 의무화, 단체기합 금지 및 위반시 처벌 명문화, 장병들의 인권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할 인권보호관제도 설치 운영,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허용되도록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하여야 한다.

나.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14.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최영도 위 원 최영애 위 원 김호준 위 원 정강자

위 원 김덕현 위 원 이홍록 위 원 김만흠 위 원 나천수

위 원 정인섭 위 원 최금숙

6 06진인2072 [폭행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7. 1. 15. 결정

피해자가 군부대내에서 가혹행위 등에 의해 사망한 바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인이 실질적인 권리구제조치를 받을수 있도록 진정인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에서 사망자가 사망에 이르게된 원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심의 할 것을 권고하고, ○○기계화보병사단 ○○여단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 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약 9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사망자를 괴롭힌 행위는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로서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한 '인격권' 및 헌법 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2] 자체징계위원회를 열어 피진정인 일부에 대하여 각각 영창 12일 및 영창 7일의 조치를 하였고, 지휘감독체계에 있는 피진정인은 사단장으로부터 서면경고와 '감봉3월' '유예'결정을, 피진정인 4)도 '경고'의 처분을 받은바 자체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함.
2) 여단 징계위원회는 피진정인 2)가 사망자에 대한 직접적 지휘관계가 아닌 점, 피진정인 5)는 면담 및 생활기록부 기록을 적절히 한점, 피진정인 6)은 직속상관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물은 바 없음. 그러나, 피진정인 5)는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휘관리하는 소대장인데도 가혹행위를 인지 및 예방하지 못한 점, 피진정인 6)은 가혹행위가 주로 피진정인 6)이 일과 중 주로 위치하고 직접 관리 및 통제하는 차량호에서 발생했고, 사망자에 대하여 일과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생활하며 관리하는 간부인 점 등을 고려 볼 때 피진정인 5) 6) 이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보여지는 바 피진정인 5) 6)에 대하여 관리감독 소홀책임을 물어 경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3] 사단헌병대 및 사단검찰부는 피진정인 7) 8) 9)에 대하여 형법324조의 강요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한바 있으나, 피진정인 7) 8) 9)의 행위는 국방부훈령 제702호「사고처리신상필벌기준」및 군형법 상 가혹행위(제62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도 수사상 일관되게 상대적으로 엄격한 구속요건을 요구하는 강요만을 수사하고 군인인 피진정인 7) 8) 9)에게 직접적용되는 군형법상 가혹행위 및 국방부훈령 상 가혹행위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군 수뇌부의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의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함. 아울러 중대장인 피진정인 3)은 사고당시 초소일지를 보관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당해연도가 바뀌지도 않은 2006. 9.에 이를 소각하였으며, 해당 기갑 여단장은 사단헌병대 수사가 종결(2006.8.24)되지도 않은 2006.7.20. 자체징계를 마무리 하

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하겠다는 행위로 판단함

[4] ○○본부는 2006.11.9. 사망자에 대한 전사망심의를 하여 자살로 결정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구타 및 가혹행위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의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음. 사망자는 선임병들에 의해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폭언, 질책, 가혹행위를 당하여 고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나, 피진정인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을 하지 못한 것이 인정되므로 사망자에 대하여 전공상심의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함

▌진정인 ▌ 이○○ [피해자의 아버지]

▌피해자 ▌ 故 이○○

▌피진정인 ▌ ○○기계화보병사단장

1) 김○○ (○○○대대 대대장, 중령)
2) 강○○ (○○○대대 주임원사, 원사)
3) 이○○ (○○○대대 1중대장, 대위)
4) 김○○ (○○○대대 1중대 행정보급관, 상사)
5) 편○○ (○○○대대 1중대 소대장, 중위)
6) 박○○ (○○○대대 1중대 정비반장, 중사)
7) 조 ○ (○○○대대 1중대, 예)병장, ○○시)
8) 최○○ (○○○대대 1중대, 예)병장, ○○도)
9) 노 ○ (○○○대대 1중대, 예)병장, ○○시)

▌주 문 ▌ 1.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인이 실질적인 권리구제조치를 받을수 있도록 진정인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2. 국방부장관에게 ○○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에서 사망자가 사망에 이르게된 원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심의 할 것을 권고하고,

3. ○○기계화보병사단 ○○여단장에게 피진정인 5) 6)에 대하여 경고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피해자가 2006. 6. 18. 경. 가혹행위 등에 의해 사망한 바 타살의혹 규명 및 구타 등 가혹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계자 처벌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1) 피해자의 사망은 자살이 아닌 타살이며
2) 사망원인은 피진정인 7) 8) 9)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기인하고
3)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 못한 피진정인 1)내지 6)도 그 책임이 있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1) 진정인 주장 1)에 대하여

심도있는 조사를 통해 자살결론을 내렸으며, 사고장소 내·외부에 다툼의 흔적이 없는 점, 시체부검결과 등을 종합해 볼때 타살이라 볼수 없으며, 다만 사망자가 장갑차 조종 및 정비능력 미흡관계로 간부들에게 소총수로 보직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와중에 피진정인 7) 8) 9)로부터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을 당해 군생활에 회의를 느껴 자살했다고 본다.

2) 진정인 주장 2)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 7)은 폭언 등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제주지검에서 강요·폭행과 관련하여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진정인 8)은 폭언 등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헌병대 영창 12일의 자체 징계를 받았고, 군검찰에서 강요·폭행과 관련하여 이미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진정인 9)는 폭언 등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휴가제한 5일의 자체 징계를 받았고, 군검찰에서 강요·폭행과 관련하여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진정인 주장 3)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은 사단장 서면경고를 받았고, 피진정인 3) 4)는 여단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피진정인 2) 5) 6)은 혐의 사실이 없어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다.

3. 관련 법령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타살의혹 관련

1) 피해자는 사고당일 경계근무를 위해 17:00경 이○○ 외 15명과 함께 ○○○ ASP 중대 행정반에서 당직사관 하사 엄○○에게 근무투입신고 후 경계근무에 임했고, 같은 근무조 이○○, 표○○은 이동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 아무 일 없었다고 진술하며, 근무를 인수인계했던 임○○, 박○○ 조○○ 등도 사망자와 아무 일 없이 인수인계를 하였으며, 당시 거수경례를 위해 얼굴을 쳐다본 사실이 있고 얼굴 등에 맞은 흔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17:40경 후임근무자 이○○과 같이 9초소에 도착하여 주간근무자였던 임○○, 이○○과 인수인계를 한뒤 근무를 하고 19:05경 야간 밀어내기 근무자인 김○○, 박○○이 근무지에 도착하여 인수인계를 한 후 11초소로 출발하여 11초소에서 전 근무자인 고○○, 조○○을 밀어내기 시켜주고 이○○과 근무중 19:30경 이○○에게 12초소에 순찰일지를 갖다 놓고 오라고 한 사실이 있다.

3) 이○○은 12초소에 순찰일지를 갖다 놓고 오는 도중 총성을 들었고, 11초소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것을 최초로 목격 하였다.

4) 보고를 받은 중대장이 의무병을 데리고 현장에 도착 맥박 등을 확인하였으나 맥박은 없었고, 체온이 남아있어 부대 AMB를 이용하여 ○○주시 소재 민간병원인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병원은 바로 사망진단을 내려 부대측은 시신을 국군일동병원으로 이송했고 유가족은 이를 화장하였다.

5) 부대 헌병대에서는 경계근무에 투입했던 자들의 진술서, 사고장소 내외부에 다툼의 흔적이 없는 점,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등을 근거로 자살결론을 내렸다.

6) 사망자가 사용하던 수첩에는 '개취급을 당하고 서럽게 울던 날 나는 내 삶의 모든 희망을 버렸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개취급'에 대하여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인 서술은 없다.

7) 유가족은 사망자의 얼굴이 부어있던 점, 사입구가 사출구보다 큰 점, 혈액에서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은 점, 손에서 뇌관화약반응이 없는 점, 총기 및 탄창에서 지문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자살이 아니며, 근무투입 후 근무일지에 서명한 글씨체가 사망자의 필체와 동일하지 않다며 사망원인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유가족 의문사항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망자 얼굴이 부어있던 것은 구타의 흔적임	촉진상 안와골과 비골 골절이 느껴졌으며 이는 총상의 외력에 의한 변형으로 판단됨	접사의 경우 가스폭풍에 의하여 창구에 파열상을 보이며, 사입부는 접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나, 접사가 아닌 경우는 탄환의 직경보다 작음.(본건은 접사로 처리되었음)
사입구가 사출구보다 큰 것이 이상함	현장상황에 따라 다르며,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사진판독 가능한 8건의 두부총창사를 분석한 결과 사입구가 큰 예가 3차례 있음	
혈액 유전자형 미검출 된 것이 이상함	현장혈액은 기온, 토양, 세균등에 의해 오염될 경우 검출되지 않으며 2006년도에 1건의 사례가 있음	혈흔의 양이 극미량이거나 부패 및 오염되어 있는 경우 분석이 불가능할수 있음.
사망자 손에서 뇌관화약 반응이 없는 것이 이상함	현장상황에 따라 반응이 없는 경우 있으며 2006년도 16건중 2건에서 검출되지 않은 사례가 있음	탄피방출구의 방향과 방아쇠를 파지 및 격발한 손이 반대방향일 경우 검출 되지 않을 수 있음
총기 및 탄창등에서 지문이 검출되지 않은 것 이상함	증거물 재질 및 현장상황에 따라 검출되지 않을수 있고 연구소 증거물 24건중 23건이 불검출됨	총을 닦는 총강유가 기름막을 형성하는 상태가 되면 지문이 형성되지 않거나 있어도 불량한 지문이 됨.
근무일지 글씨체가 사망자 필체가 아님	한글자모의 특징, 자획구성과 필순필압, 방향, 각도, 간격, 접촉, 기필과 종필부분의 특징, 획의 직곡선특징등으로 볼때 동일필적으로 사료	제시된 증거물만으로는 개인필적의 희소성있는 특징과 변화범위 및 필법의 고의적 은폐여부 등을 분석할수 없으 므로 감정불가함

나. 피진정인 7)의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1) 헌병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피진정인 7)은 2005.10월부터 전역하기 전인 2006.5월 중순까지 약 9개월 동안 매일 2회씩 차려자세를 20분 동안 시켜놓고 약 300회에 걸쳐

"씨발새끼, 개새끼야"라는 욕설과 고함을 질러 사망자를 놀라게 하여 주눅이 들게 하는 등 욕설과 폭언을 반복하였고, 일과시간 후 야간에 생활관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욕설과 폭언을 했으며,

2) 사단 헌병대는 피진정인이 2005년 12월말 피해자에게 연병장 100M를 왕복4회, 50M를 수십 회 반복시키고, 장갑차에 오르내리기를 수 회 강요하고, 장갑차 방수카바를 폈다 접었다 하는 일 등을 시킨 사실을 인정하여 006.6.3. 기 전역한 피진정인 7) 관련 사건기록을 제주경찰서에 강요(형법 제324조)혐의로 사건을 이첩하였다.

3) ○○지검은 ○○경찰서로부터 사건(06형제19769)을 송치받아 수사 후 2006. 12.15. '강요죄[3]의 구성요건 중 의무없는 일을 한 것은 인정되나 폭행 이나 협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7)에 대하여 강요·폭행 관련 무혐의 처분하였다.

4)「군형법」제63조(가혹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다'로 되어있고「국방부훈령」제487호(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지침)엔 '가혹행위라 함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그 개념이 정의되어 있다.

5) ○○지검은 피진정인에 대하여 강요·폭행에 대하여 수사한바 있으나 군형법 62조에 의한 가혹행위에 대하여는 수사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 군형법 1조 제5항은 군형법의 피적용 범위를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한 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6) 진정인은 피해자가 '06. 4. 휴가를 나와 왼쪽턱이 아프다며 경북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두통이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고, 군복무 중 수면부족상태이며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증상을 밝힌바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영내에서 "피진정인7)이 빨리 제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피진정인 7)의 구타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 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다. 피진정인 8)의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1) 헌병수사기록, 실지조사 시 문답서 등에 의하면 피진정인 8)은

가) 같은부대 후임인 조○○은 피진정인 8)이 2006.1중순. 소속대 차량호에서 사망자에 대하여 "자기 할일도 못하는 새끼가 후임병들 하고 담배피고 있냐고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3) 강요(형법제324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나) 같은 부대 후임인 표○○은 피진정인 8)이 2006.1말. 09시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사망자에 대하여 혹한기 훈련을 제대로 준비 안한다며"10분동안 차려자 세를 시켜놓고 야 새끼야 니가 일병 몇 개월인데 그런 것도 모르냐고 욕을 하였다"하고 또한 사고전날인 2006.6.17. 잠을 뒤척이며 잔다고 "예전엔 취침군기가 있었다 씨발 새끼야 긴장하고 조심해라라고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같은부대 후임인 송○○은 피진정인 8)이 2006.3중순. 소속대 차량호에서 사 망자 때문에 선임병에게 대신 욕먹었다는 이유로 "약 10분간 차려자세를 시켜놓고 큰소리로 개새끼야 씨발놈, 씨발새끼, 야 개새끼야라는 욕을 하였다" 하고 또한 2006.4중순 17시경 사망자가 장갑차 방수카바를 잘못 씌웠다는 이유로" 약 15분간 차려자세를 시켜놓고 같은 똑같은 욕을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라) 같은부대 후임인 장○○은 피진정인 8)이 2006.6.8. 08시경 차량호에서 사망자에 대하여 배터리 결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10분정도 차려자세 시켜 놓고 병신같은 새끼 니가 제대로 하는게 뭐가있냐 라며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표○○, 송○○, 장○○등에 의하면 피진정인 8)은 사고 이틀 전인 2006.6.16. 15시경 소속대 차량호에서 사망자가 장갑차 공구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씨발놈, 씨발새끼, 이제 어떻게 할꺼냐 ? 니네집 돈 많냐 ? 그러면 니돈 가지고 사서 써라" 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조종수들에게도 "한번만 걸리면 죽는다"라는 욕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날 일에 대하여 목격자들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 머리가 뽑힐 정도였다(송○○)" "옆에서 지켜 보던 제가 짜증날 정도였다(안○○)"

"사망자가 처음부터 자살할 생각이 없었는데 피진정인 7) 8)이 너무 갈구어 자살결심을 하고 이번 건으로 또 갈굼을 당하자 자살한 것 같다(장○○)"고 진술하였다.

바) 피진정인 7)도 조사관 전화조사시 "피진정인 8)이 이○○머리통을 때려, 이○○가 왜 때리냐고 했다가 피진정인 8)이 더 혼냈다는 말을 피진정인 8)에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진정인 8)은 위원회 출석조사시 폭행사실 등을 부인했지만 "○○의 경우 욕을 먹고 죽으려 했다면 나도 벌써 죽었을 것이다. 나는 맞으면서 군생활 했다"고 진술하였다.

2) 피진정인 3)은 위 '마)' 사건과 관련 2006.7.5 피진정인 8)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영창 12일 결정을 했고 피진정인 8)은 영창생활 후 2006.10.11. 만기제대 했으며, 사단검찰부에서는 2006.10.9. 폭행 및 강요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했으나 직권

남용 및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대하여는 수사한바 없다.

라. 피진정인 9)의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1) 헌병수사기록, 실지조사시 문답서 등에 의하면 피진정인 9)는

가) 송○○, 조○○은 피진정인 9)가 2006.3초. 14시경 소속대 차량호에서 사망자 때문에 피진정인 8)에게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5분간 차려자세를 시켜놓고 야 이새끼야 그런것도 못하냐 라며 폭언을 하였다"하고 그 횟수는 피진정인 8)에게 질책 당할 경우로 일주일에 2회정도 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표○○은 피진정인 9)가 2006.3월경 생활관 밖으로 데리고 나가 약 3회정도 갈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진정인 3)은 위 '가)' 사건과 관련 피진정인 9)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영창 7일로 결정을 하였으나 허리디스크가 있어 휴가제한 5일로 대체 징계를 하였고, 피진정인 9)는 2006.11.24. 만기제대 한바 있으며, 사단검찰부에서는 2006.10.9. 폭행 및 강요행위 관련 혐의 없음 처분을 했으나 직권남용 및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대하여는 수사한바 없다.

마. 피진정인 7) 8) 9)에 대한 자체징계 및 수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	순번	행 위	징계	수사	비고
피진정인 7)	1	'05.11.초순경 군대선임임을 내세워 방수카바를 접었다 폈다하는 일을 시킴.	사고전 전역하여 자체징계 없음	○	제주지방검찰청 강요/폭행 혐의 없음
	2	'05.12.초순경 군대선임임을 내세워 내무반 침상에 10여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앉혀놓고 개새끼 쌍욕을 함.		○	
	3	'05.12.초순경 군대선임임을 내세워 연병장에서 나는 할 수 있다 30회 외치게 함.		○	
	4	'05.12.초순경 군대선임임을 내세워 축구골대를 4회 돌고 오도록 함.		○	
	5	'05.12.경 군대선임임을 내세워 장갑차 위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10여회 시킴.		○	
	6	'06.1.말경 군대선임임을 내세워 10여분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세워놓고 쌍욕을 함.		○	
	7	'06.1.말경 군대선임임을 내세워 15분여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세워놓고 쌍욕을 함.		○	
	8	'05.10.부터 '06.4.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오후에 군대선임임을 내세워 움직이지 못하게 세워놓고 쌍욕을 함.		○	
	9	'05.8.말부터 '06.4.초까지 피해자가 착용한 모자를 손으로 치거나 앞이마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함.		○	

대상자	순번	행 위	징계	수사	비고
	10	'05.12.말 18시경 생활관에서 20분동안 차려자세 시켜놓고 야 개새끼야 장갑차일지 똑바로 적지못하냐며 욕을 함.		×	처분
	11	'06.1.말 10시경 차량호에서 20분동안 차려자세 시켜놓고 세차똑바로 하라며 씨발새끼, 개새끼라는 욕설과 폭언을 함.		×	
	12	'06.3.초순 오전과 오후 2회 차량호에서 조종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10~15분간 차려자세 시켜놓고 개새끼 씨발새끼 미친놈 이라는 욕을 함.		×	
피진정인 8)	13	'06.1중순. 소속대 차량호에서 자기할일도 못하는 새끼가 후임하고 담배피고 있냐고 고함 및 욕을 함 .	×	×	사단검찰부 강요/폭행 혐의없음 처분
	14	'06.1말. 09시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혹한기 훈련을 제대로 준비 안한다며" 10분동안 차려자세 시켜 놓고 야 이새끼야 개새끼야 그런것도 모르냐고 욕을함.	×	○	
	15	'06.3.중순, 소속대 차량호에서 조종이 미숙하다며 10분 간씩 수회 차려자세 시켜 놓고 씨발새끼등 욕을 함	×	○	
	16	'06.6.17. 생활관에거 예전엔 취침군기가 있었다 씨발 새끼야 긴장하고 조심해라라고 욕을 함.	×	×	
	17	'06.3중순. 소속대 차량호에서 선임병에게 사고자 대신 욕먹었다는 이유로 약 10분간 차려자세 시켜놓고 큰소리로 개새끼야 씨발놈, 씨발새끼 등 욕을 함.	×	×	
	18	'06.4중순 17시경 차량호에서 사망자가 방수카바를 잘못 씌웠다는 이유로 약 15분간 차려자세시켜 놓고 똑같은 욕을 함.	×	○	
	19	'06.6.8. 08시경 차량호에서 배터리 결합을 제대로 못한다며 10분정도 차려자세 시켜 놓고 병신같은 새끼 니가 제대로 하는게 뭐가있냐며 욕을함.	×	○	
	20	'06.6.14. 17시경 차량호에서 방수카바 제대로 씌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려자세 시켜놓고 10분간 욕을 함	×	○	
	21	'06.6.16. 15시경 차량호에서 사망자가 장갑차 공구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씨발놈, 씨발새끼, 이제 어떻게 할꺼냐 ? 니네집 돈 많냐 ? 니돈 가지고 사서 써라" "한번만 더 걸리면 죽는다" 라는 욕을 함.	영창 12일	○	
	22	이○○ 머리통을 때리자, 이○○가 왜 때리냐고 하여 더 혼냈다.	×	×	
피진정인 9)	23	'06.3초순. 14시경 차량호에서 사망자 때문에 피진정인 8)에게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5분간 차려자세 시켜 놓고 야 이새끼야 그런것도 못하냐며 폭언을 하였다"하고 그 횟수는 피진정인 8)에게 질책 당할 경우로 일주일에 2회정도 였다	×	○	
	24	'06.3월경 생활관 밖으로 데리고 나가 약 3회정도 갈굼을 하였다	×	○	
	25	피진정인 7)8)의 욕설사항을 지휘보고 안함	(영창7일) -휴가5일		

바. 피진정인 1)내지 6)의 관리감독 책임관련

1) 피진정인 1)은 사망자의 대대장으로서 2006.6.28. 사단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고, 피진정인 2)는 대대주임원사로서 본건관련 자체조사 및 징계받은 사실이 없다.

2) 피진정인 3)은 사망자의 중대장으로서 사망자를 보호관심병사로 선정하여 수시로 면담 및 기록관리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2006.7.20. 여단징계위원회에서 '감봉3개월' 결정되었으나 징계권자인 여단장이 3개월 유예 한 사실이 있고, 사망자가 조종수라는 보직에 적응하지 못하여 소대장등을 통하여 보직조정 신청한 것을 적절히 조치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사고 당시 사고자가 작성한 초소 근무일지를 보관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6.9. 이를 소각한 사실이 있다.

3) 피진정인 4)는 사망자의 중대행정보급관으로서 사고 전 부모님등과 전화통화 등을 통한 신상파악 및 사전사고예방 교육을 소홀히 한 점 등이 확인되어 2006.7.20. 여단징계위원회에서 '근신10일' 결정되었으나 징계권자인 여단장이 경고로 감경 하였다.

4) 피진정인 5)는 사망자의 소대장으로서 헌병대로부터 조사받은 결과 면담 및 생활기록부 기록을 적절히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는 받지 않았으나 소대장으로서 가혹행위부분에 대하여 인지 및 예방을 하지는 못했다.

5) 피진정인 6)은 헌병대 조사는 받고 징계받은 사실은 없으나, 조사관의 실지조사결과 일과시간(09:00~17:00)만 보면 사망자는 장갑차 조종수인 관계로 보병인 피진정인 5)보다, 정비반장인 피진정인 6)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한바 욕설 등 가혹행위가 대부분 일과 중 차량호에서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였다.

6) 국방부훈령 제702호「사고처리신상필벌기준」및 ○○규정 189「징계규정」은 구타 및 가혹행위로 1명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1, 2, 3차 지휘/감독책임을 묻고 있다.

사. 전공사상자 심의 관련

1) 국방부훈령 제392호「전공사상자처리규정」제3조는 사망을 전사, 순직, 사망(일반사망, 변사 및 자살)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25개 유형으로 세분(전공사상분류기준)하여 그 심의는 각군본부에 위임하고 있다.

2) ○○본부 인사행정처 인사처리과는 2006.11.9. 사망자에 대한 전사망심의를 하여 자살(전공사상분류기준 5-1) 결정 후 유족에게 통지하였다.

3) 대법원 판례(대판2003두13595)의 경우 우울증으로 인해 사망한 의무경찰에 대하여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실이 있다.

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정(05진인543)에서는 사망원인 등을 충분

히 반영치 않고 행한 전사망심의에 대하여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자살이 아닌 타살인지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해자가 당일 근무지에 입소도 안했고, 생활관 근처에서 선임병의 구타 등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나, 근무 전 같이 식사를 했던 병사, 근무를 같이 했던 병사, 근무지에서 인수인계한 병사 등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당일 근무초소에 입소를 안했다거나, 근무 직전에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군부대수사기록, 피진정인 진술서, 참고인 진술 및 설문서, 부검결과,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답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답변서 등을 검토해 볼 때 타살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나. 피진정인 7)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사단헌병대에서 피진정인 7)에 대하여 사망자에 대한 강요(형법324조)혐의로 ○○경찰청에 이첩하였고, ○○지방검찰청은 이를 송치 받아 수사결과 형법 324에 의한 강요혐의는 없는 것으로 처분 한바 진정원인에 대하여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위 인정사실을 검토해 볼 때 피진정인 7)이 약 9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사망자를 괴롭힌 행위는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라 판단되고, 대법원 판례도(대판79도2221) '중대장이 선임하사관을 완전군장 차림으로 2시간 이상 연병장에서 구보하게 하여 도중에 졸도까지 하게 한 것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바 있으며, 국방부훈령 제487호「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지침」에서도 가혹행위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라고 한바, 피진정인 7)이 사망자에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로서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한 '인격권' 및 헌법 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 피진정인 8) 9)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피진정인 3)은 자체징계위원회를 열어 피진정인 8) 9)에 대하여 각각 영창 12일 및 영창 7일의 조치를 하였고, 사단헌병대에서는 협박 및 폭행사실을 밝힐 수 없다는 이유

로 형법 324조의 '강요'에 관하여 사단검찰부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사단검찰부에선 최종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는바 진정원인에 대하여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피진정인 8) 9)가 사망자를 괴롭힌 행위는 대법원 판례(대판 79도2221) 및 국방부훈령 제487호「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지침」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로서 사망자의 인격권(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함) 및 헌법 12조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라. 피진정인 1)내지 6)의 지휘/감독 책임

1) 피진정인 1)은 사단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고, 피진정인 3)은 여단징계위원회에서 '감봉3월' '유예'결정을, 피진정인 4)도 '경고'의 처분을 받은바 자체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2) 여단 징계위원회는 피진정인 2)가 사망자에 대한 직접적 지휘관계가 아닌 점, 피진정인 5)는 면담 및 생활기록부 기록을 적절히 한점, 피진정인 6)은 직속상관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물은 바 없으나, 피진정인 5)는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휘관리하는 소대장인데도 가혹행위를 인지 및 예방하지 못한 점, 피진정인 6)은 가혹행위가 주로 피진정인 6)이 일과 중 주로 위치하고 직접 관리 및 통제하는 차량호에서 발생했고, 사망자에 대하여 일과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생활하며 관리하는 간부인 점 등을 고려 볼 때 피진정인 5) 6) 이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보여지는 바 피진정인 5) 6)에 대하여 관리감독 소홀책임을 물어 경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마. 부대의 사고처리 태도

1) 사단헌병대 및 사단검찰부는 피진정인 7) 8) 9)에 대하여 형법324조의 강요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한바 있으나, 위 인정사실 '나''다''라'를 살펴보면 피진정인 7) 8) 9)의 행위는 국방부훈령 제702호「사고처리신상필벌기준」및 군형법 상 가혹행위(제62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도 수사상 일관되게 상대적으로 엄격한 구속요건을 요구하는 강요만을 수사하고 군인인 피진정인 7) 8) 9)에게 직접적용되는 군형법상 가혹행위 및 국방부훈령 상 가혹행위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군 수뇌부의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의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한다.

2) 중대장인 피진정인 3)은 사고당시 초소일지를 보관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당해 연도가 바뀌지도 않은 2006. 9.에 이를 소각하였으며, 해당 기갑 여단장은 사단헌병대 수사가 종결(2006.8.24)되지도 않은 2006.7.20. 자체징계를 마무리 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하겠다는 행위로 판단한다.

바. 전공사상자 심의관련

1) ○○본부는 2006.11.9. 사망자에 대한 전사망심의를 하여 자살로 결정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구타 및 가혹행위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의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2)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사망자는 선임병들에 의해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폭언, 질책, 가혹행위를 당하여 고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나, 피진정인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을 하지 못한 것이 인정되므로 사망자에 대하여 전공상심의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6. 결론

군대를 믿고 자식을 군에 보냈다가 선임병 등의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게 된 피해자의 유족들이 실직적인 권리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구조가 필요한 상황이고, ○○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사망자에 대한 전사망심의를 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의 가혹행위 등 사망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진정인 5) 6)에 대하여는 지휘/감독 책임을 물은바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15.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7 07진인1943 [부실한 사망사건 조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8. 4. 3. 결정

[1] 국방부장관에게 전·공사상자 분류기준 등을 개정하고 육군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피해자의 피해사실 및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순직여부에 대하여 재심의 할 것을 권고한 사례

[2] 육군○○사단장에게 군부대 내부적 원인 등에 의해 병사가 사망하는 유사사고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해당 간부들에 대하여 지휘책임을 물을 것과 진정인 등 유가족에게 피해자의 사망경위 및 의문점 등을 소상히 설명해 줄 것을 권고한 사례

[3]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차원에서 국가상대 손해배상 등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한 사례

▌결정요지 ▐

[1] 피진정인 5, 6, 7, 8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행위는 국방부훈령 제487호「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지침」에 의할 때에도 가혹행위(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선임병들인 피진정인 5, 6, 7, 8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질책을 한 행위는「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2] 진정인 등의 유가족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수사상의 의문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을 당연한 권리가 있으므로, 피진정인 1 등이 진정인 등의 유가족이 제기한 의문점에 대하여 그 동안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제21조에서 도출되는 알 권리에 따라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진정인 ▐ 이○○ [피해자의 아버지]

▌피해자 ▐ 故 이○○

▌피진정인 ▐ 1. 육군○○사단 헌병대장
2. 조○○
3. 권○○
4. 배○○
5. 박○○
6. 봉○○

7. 정○○
8. 신○○

▌주 문 ▐ 1. 국방부장관에게 전·공사상자 분류기준 등을 개정하고 육군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피해자의 피해사실 및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순직여부에 대하여 재심의 할 것을 권고한다.

2. 육군○○사단장에게 군부대 내부적 원인 등에 의해 병사가 사망하는 유사사고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해당 간부들에 대하여 지휘책임을 물을 것과 진정인 등 유가족에게 피해자의 사망경위 및 의문점 등을 소상히 설명해 줄 것을 권고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차원에서 국가상대 손해배상 등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4. 나머지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

1. 진정의 요지

피해자 고(故) 이○○은 육군 ○○사단 ○○연대 ○대대 ○중대에서 복무 중 2006. 12. 2. 피진정인 5와 함께 해안감시초소 경계근무를 서던 도중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복무하는 동안 선임병인 피진정인 5 내지 8 등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며 피해자가 타살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대 헌병대는 형식적인 수사로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타살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의 사망원인 등을 명확히 알고자 하는 진정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에 따라 피진정인들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육군○○사단 헌병대장)

유가족에 대한 사망사건 설명회를 2007. 1. 25. 실시하였으나 자식을 잃은 부모 입장에서 수사 결과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하여 성심껏 수사를 하였고 수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탄약휴대량에 대하여 : 사단지침에 1인당 ○○발(○발들이 탄창 ○개)을 휴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해당 연대장이 사고예방차원에서 거치용 탄창에는 첫발에 공포탄을 휴대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1인당 ○○발을 휴대하였다.

나) 사고당시 피해자와 같이 근무를 섰던 선임병인 피진정인 5의 오른손에서 뇌관화약반응이 나온 점에 대하여 : 피진정인 5가 후송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신체에 나타나는 표피박탈에 대하여 : 표피박탈은 후송과정에서 길이 험하여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진정인 5에 대하여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점에 대하여 : 수사당시 착안하지 못하였으나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2) 피진정인 2(조○○, 육군 ○○사단 중대장)

사건 발생 시 순찰을 마치고 중대장실에서 취침준비 중이었는데 부소대장의 전화보고를 받고 사고를 인지하였다. 즉시 피해자 후송 및 상황조치를 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관심병사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간 부대 내 생활태도 등을 보았을 때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관심병사에서 제외시켰다.

3) 피진정인 3(권○○, 소대장)

사건발생시 전반야 근무 후 부소대장에게 임무를 인계하고 소대장실에서 취침 중이었으나 병사들이 깨워 사고를 인지하고 상황을 조치하였다. 피해자는 전입 초기 관심병사로 선정하였으나 100일 휴가 복귀 후 적응이 된 것으로 판단되어 관심병사에서 제외하였다.

4) 피진정인 4(배○○, 부소대장)

사건발생 시 근무지 순찰 중 피해자를 최초로 발견하게 되었으며 즉시 중대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 사고현장에서 구급차까지 피해자를 등에 업고 후송하였다. 부소대장으로서 피해자와 수시로 면담을 하였으나 고민사항을 털어놓지 않고 잘 지낸다는 이야기만 하여 근무환경이 힘들어 고민하고 있었는지 잘 몰랐다.

5) 피진정인 5 내지 8(선임병)

가) 피진정인 5(박ㅇㅇ) : 사고 당시 피해자와 사고초소에서 둘이서 근무할 때 선임 근무조장이었다. 사고발생 시 근무지 초소 안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총소리가 나는 것은 몰랐으나 무엇인가에 의해 잠에서 깨어나 보니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 바로 부소대장이 나타나 같이 피해자를 발견했으며 이후 후송을 도왔다. 피해자에 대하여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피해자가 다른 분대원과 식사하여 혼낸 적이 있고, "근무 중 존다", "행동이 느리다", "선임보다 늦게 일어난다" 등의 질책을 한 사실이 있다. 사고발생 시 근무지에서 자고 있었던 탓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였다.

나) 피진정인 6(봉ㅇㅇ) : 2006. 8.부터 분대장이 된 후 피해자와 같은 조가 되어 야간근무 등을 나갔다. 근무 철수 후 내무반에서 자려고 자리에 누우면 피해자는 그때까지도 혼자서 세면하러 돌아다니거나 담배를 피우러 돌아다녀 "빨리 안 해"라는 등의 질책을 한 사실이 있고, 총기함 열쇠를 잘 관리하지 않아 "너 뭐하는 새끼야?" 라고 혼낸 적이 있으며 근무지에서 너무 졸아 일부러 재워 준 적도 있다. 한번은 피해자가 너무 풀어지는 것 같아 근무지에서 "너 뭐하는 새끼냐? 근무지에서 최소한의 행동은 해라" 고 혼낸 사실이 있으나 구타는 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7(정ㅇㅇ) : 근무 시 피해자가 졸고 있어 "근무지에 자러왔냐"고 질책할 때 피해자가 "정상병님은 근무지에서 졸아본 적 없습니까?" 라고 대든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니가 조는 것 지적했다고 나에게 대들 수 있냐 ? 앞으로 고참들에게 혼나더라도 먼저 죄송하다고 하면 무시할 고참은 없다"고 말해준 적 있으나 구타 등 가혹행위는 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 8(신ㅇㅇ) : 피해자가 수색정찰 시 순찰로를 이탈하여 위험한 철다리를 넘으려고 하여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큰 소리로 지적해 준 사실이 있으나 혼을 내거나 구타 등 가혹행위는 하지 않았다.

다. 관계인의 주장요지

1) 이ㅇㅇ(사단 법무참모)

사망사고의 경우 통상 징계규정 등에 따라 관련 간부들에 대하여 지휘책임을 묻고 있다. 이 사건 당시 관련 간부들에 대한 지휘책임은 일부 필요했다고 판단된다.

2) 동료 병사

가) 동반 입대자 황○○ : 피해자가 군생활 하면서 평소 힘들다는 식의 투정과 고민을 수시로 하곤 했다. 피해자는 특히 사고 10일 전 쯤 "이러다가 큰 일 날 것 같다"는 말을 하였으나 평상시와 같은 불평으로 알고 그냥 넘어갔다. 피해자는 선임병과 관련한 불만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1) 피진정인 5에 대하여 : 피해자가 다른 분대의 분대원과 식사했다고 질책하며 "분대 개편 해야겠다"고 나무랬다.

(2) 피진정인 6에 대하여 : 중대장이 근무지에 순찰을 와서 피진정인 6에게 "사격대회에 나가라"는 말을 하자 피진정인 6은 싫은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한 화풀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통신장비 기록을 똑바로 안하면 찢어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혼을 냈다고 하였고, 총기열쇠 관리 부실과 관련하여 소대원 앞에서 공개적인 질책을 하였다.

(3) 피진정인 7에 대하여 : 피진정인 7이 근무지에서 졸았다고 혼낸 것에 대해 피해자가 말대꾸를 했다고 다시 혼난 적이 있다.

나) 선임병 김○○ : 2006. 9. 분대가 개편된 이후 선임병들은 피해자가 행동이 느리다는 등의 이유로 질책을 많이 했다. 그때마다 피해자는 "군 생활 힘들다. 나는 체질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봉○○, 정○○이 싫다"며 분대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 동기 설○○ : 동반 입대한 황○○이 피해자와 친하게 지냈으나 황○○도 일병이라 내무생활에 힘든 때여서 피해자가 맘 놓고 의지할 곳이 없었을 것이다. 선임이었던 피진정인 5, 6, 7, 8이 모두 군 생활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보복심리로 피해자를 포함한 후임들에게 여러 가지 악습 및 폐습을 행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라) 동기 최○○ : 자신도 근무지에서 선임병에게 뺨도 맞고 화이바로 맞은 일이 있다. 선임들은 근무지에서 졸리면 자고 후임에게 순찰자 감시 등을 시키며, 내무실에서 선임이 녹차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 녹차를 타다 줘야 하는 등의 내무 부조리가 심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헌병 사건기록,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본적인 인정사실

1) 피해자는 2006. 6. 2.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후 같은 해 7. 11. 같은 사단 ○○연대 1대대 2중대로 전입하여 일병으로 진급하였다. 피해자는 2006. 12. 1.(금) 17:00경 소대원들과 같이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생활관 등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22:25경 해안경계근무를 위해 선임병인 피진정인 5와 같은 조가 되어 각각 탄창 2개와 세열수류탄 1발을 지급받고 근무에 투입되었다. 그 후 피해자는 22:25경 ○초소에 도착하여 근무를 선 다음 23:25경 ○초소로 출발하여 23:40경 ○초소에 도착하여 전임근무자인 황○○ 및 염○○과 근무교대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00:45경 다시 ○초소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근무를 서고 있던 피진정인 7 및 강○○과 근무교대를 하였고, 01:53경 다시 ○초소로 이동하여 근무를 섰으며 02:40 ○초소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2) 부소대장인 피진정인 4는 사건 당일 02:20경 통신병 일병 김○○와 함께 후반야 순찰 중 피해자가 근무를 서고 있던 ○초소 후방 3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총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피진정인 4는 휴대폰으로 소초 상황실에 확인할 것을 지시한 후 작전상황으로 판단하고 총기에 실탄을 장전한 후 ○초소에 도착하였다. 그 때 피진정인 4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한 피진정인 5를 만나 총소리를 들었는지를 물었으나 피진정인 5는 이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후임 근무자인 피해자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피진정인 4, 5가 함께 주변을 찾아보던 중 초소 옆 바닥에서 이마에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휴대폰으로 중대장인 피진정인 2에게 보고를 하였다. 피진정인 2는 위와 같이 사고관련 전화보고를 받고 소초까지 후송하라는 지시를 한 후, 119구급차를 불러 사고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통문으로 유도하였다. 피진정인 4는 피진정인 2로부터 피해자를 후송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등에 업은 상태로 소초로 후송하던 중 피진정인 2가 유도한 대로 119 구급차가 나와 있어 피해자를 인계하였다. 피진정인 2는 피해자를 삼척의료원까지 후송해 줄 것을 부탁한 후 중대로 복귀하여 총기 수거 등 상황을 조치하였다. 이와 같이 후송이 된 피해자는 2006. 12. 2. 03:47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의료원 응급실 당직의사 황○○의 진술).

3) 피해자의 사체에서 턱밑 바로 밑에서 이마 좌측 눈썹 위 부위로 관통된 두부관통총창이 발견되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현장에서 발사된 탄피의 발사흔과 피해자의 지급총기에서 시험발사된 발사흔이 동일하며, 피해자의 좌·우측 손바닥에서

뇌관화약 성분이 검출되었고 선임병인 피진정인 5의 오른손 손바닥에서도 화약성분이 검출되었다. 위와 같은 총상 이외에는 그 밖의 외력에 의한 상처나 독극물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인은 두부관통 총창사인 것으로 감정되었다(이상은 해당부대 헌병대의 조사결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총기, 뇌관화약성분, 추진제 화약검출 등에 대한 감정결과,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함).

4) 피진정인 1 등은 진정인을 포함한 피해자의 유가족에서 수사결과에 대하여 설명은 하였으나 유가족이 제기한 여러 가지 의문점(아래 표 참조)등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은 한 적이 없다.

5) 국방부훈령 702호「사고처리신상필벌기준」및 육군규정 189「징계규정」은 부대 내 사망사고발생 시 1, 2, 3차 지휘·감독책임을 묻고 있으며 1차 책임은 소대장이 된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사단 헌병대는 피해자가 소속된 ○○연대로 아래와 같이 비위자 통보를 작성하여 통지하였다.

비 위 자	비 위 내 용	해당부대 조치	규정상
중대장 대위 조○○	• 중대장으로서 중대원들에 대한 신상파악 미흡 • 중대원간 욕설 등 병영생활행동강령 위배사례 근절 미흡 • 총기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지휘책임 • 사고현장 보존조치 부실	없 음	지휘책임
소대장 소위 권○○	• 소대장으로서 소대원에 대한 신상파악 미흡 • 소대원간 욕설 등 병영생활행동강령 위배사례 근절 미흡 • 총기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지휘책임	없 음	지휘책임
부소대장 하사 배○○	• 부소대장으로서 소대원에 대한 신상파악 미흡 • 소대원간 욕설 등 병영생활행동강령 위배사례 근절 미흡 • 총기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지휘책임	없 음	지휘책임
분대장 병장 봉○○	• 피해자가 행동이 느리고 근무지에서 자주 졸았다는 이유로 “행동을 빨리빨리 안하냐 ?, 너 계속 졸래” 등 질책성 지적 • 총기함 열쇠관리를 제대로 안한다는 이유로 “너 뭐하는 놈 이냐 ”등 폭언성 질책 • 장비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도대체 뭐가 그리 힘드냐 ?, 왜 똑바로 안하냐 ?” 등의 질책	영창 7일	영창 대상
근무조장 병장 박○○	• 너는 왜 다른 분대원과 식사하냐 ? 분대 개편해야 한다고 질책 • 사고발생시 현장근무태만	영창 14일	영창 대상
분대원 상병 정○○	• 피해자에게 “야 너 근무지에 놀러왔냐 ?” 지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들자 대들었다고 질책	불 문	특별한 규정없음
분대원 병장 신○○	• 피해자에게 순찰로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질책	불 문	특별한 규정없음

이에 따라 ○○연대에서는 피해자와 함께 초소에서 근무를 섰던 피진정인 5, 6은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07. 1. 16. 대대에서 각각 영창 7일, 영창 14일의 징계를 받았으며 그 밖의 피진정인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6) 육군본부 인사처리과에서는 2007. 3. 8. 국방부훈령 제392호「전·공사상자 처리 규정」에 따른 전·공사상 분류기준표에 따라 피해자를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진정인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2007. 5. 10. 사망보상금(500만원)을 지급하였다.

7) 우리 위원회 조사에 앞서 ○○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여 해당 부대에 "피신청인(육군 제○○보병사단장)은 고(故) 이○○ 일병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재통지하고 부대관리와 사고예방활동을 위한 대책수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라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육군○○사단은 "본 사망사건 수사는 우리 사단 뿐 아니라 육군본부의 육군○○단 예하 제○수사대의 지원을 받아 수사를 이미 종결한 사항이고 최소한 육군본부 차원에서 처리할 사안으로 사단급 부대에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수용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나. 타살의 주장에 관하여

진정인은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의문사항을 제기하면서 피해자가 타살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군부대 수사기록, 피진정인 진술서, 참고인 진술 및 설문서, 부검결과 및 위에서 인정된 기본적인 인정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사고현장은 외부침입이 어려운 지형을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진정인 5가 서로 다툰 흔적이 없는 점, 부검결과 사인과 연관되는 외부 손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손에서 뇌관화약반응이 나온 점 등을 보면, 진정인이 제기한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의문사항은 기존의 수사결과에 배치되지 않으며 이러한 의문사항을 근거로 피해자가 타살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아래 표 참조 : 아래 표에서 조사결과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임).

유가족 등 의문사항	부대측 답변	수사기록	조사결과
선임병 손에서 뇌관화약 반응이유	후송중 신체적 접촉에 의함	뇌관화약 이유 없음. 신체접촉 수사	관계인 진술상 부대설명 인정됨
개인휴대 30발외 1발의 출처	연대장이 공포탄 1발 지급	연대장 조치	부대설명 인정됨
피해자 표피박탈 사유	후송중 나무 등에 긁힘	명확한 기록 확인 안됨	후송로 험함 (부대설명 인정됨)
선임병이 총소리 못들었다고 하는 이유	파도소리가 심할 때 안 들림	명확한 기록 확인 안됨	파도소리 심함 (부대설명 인정됨)
야광탄 위에 보통탄 삽탄 이유	병사들이 살상용인지 정확히 모르고 뜨겁다고 인식함	명확한 기록 확인 안됨	
피해자 양손에 피가 묻은 이유	후송 중 피가 목부위 에서 아래 양팔로 흘렀음	명확한 기록 확인 안됨	부대설명 인정됨

나아가 그 밖에 달리 피해자가 타살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이에 관한 헌병대의 수사결과는 피해자가 01:53경 선임병인 피진정인 5와 ㅇ초소에 도착하여 근무 중 피진정인 5가 초소 안에서 졸고 있는 사이에 초소 밖에서 근무를 서면서 탄입대에 휴대하고 있던 2번째 탄창을 꺼내어 맨 위에 있던 예광탄을 보통탄으로 순서를 바꾼 후 총기에 결합되어 있던 1번째 탄창과 교체한 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총구를 턱밑부위에 밀착시키고 실탄을 발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의 주장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해자가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여 사망사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피진정인들의 진술 및 참고인인 동료병사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선임병들인 피진정인 5, 6, 7, 8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 등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신체적인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는 없다.

4.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5, 6, 7, 8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지나친 질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였거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은 인정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우선 피진정인 5, 6, 7, 8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행위는 국방부훈령 제487호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지침」에 의할 때에도 가혹행위(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선임병들인 피진정인 5, 6, 7, 8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질책을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정인 등의 유가족은 「헌법」 제21조에서 도출되는 알 권리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수사상의 의문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을 당연한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피진정인 1 등이 진정인 등의 유가족이 제기한 의문점에 대하여 그 동안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것은 진정인의 위와 같은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이상과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취할 구제조치를 살펴본다.

가. 우선 피진정인 5 내지 8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침해정도에 따라 영창 등 자체적인 징계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의 지휘관인 피진정인 2, 3 등에 대한 지휘책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 2는 피해자의 중대장으로서, 피진정인 3은 피해자의 소대장으로서 부대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지휘책임이 추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군인복무규율 제25조 3항은 "상관은 부하가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하의 고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군사고예방규정 제30조, 34조 및 36조에는 각급 지휘관은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행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특히 상급자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 내무부조리 척결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활동, 전입신병에 대한 융화대책 및 보호... . 총기 및 실탄관리상태 수시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을 적극 이행하여야한다", "부하 장병에 대한 철저한 신상파악으로 자살 우려가 있는 장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집중관찰 및 ... 가치관·인생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군내 규정들이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간부들은 병사들에 대하여 면담 등 여러 경로 등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해소해 주어야 하고 병영생활지도기록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는 달리 피진정인 2, 3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군번줄을 우편으로 지인에게 보내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임병들인 피진정인 5 내지 8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언 등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파악하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대에서는 피진정인 2, 3에 대하여 아무런 지휘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러므로 해당부대에서 피해자의 중대장과 소대장인 피진정인

2, 3에 대하여 부대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지휘책임을 묻는 것이 이와 같은 사건사고를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인권침해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전·공사상 재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통상 육군본부는 전·공사상심의시 분류기준표(5-1)에 따라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한 경우는 "자살"로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5, 6, 7, 8 등의 지속적인 언어폭력, 피진정인 2, 3의 부대관리 소홀 등이 피해자의 사망의 직접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으므로 피해자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와 동일한 배경에서 위원회에서는 이미 2007. 12. 18.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군복무부적응병사 인권상황 개선 권고"시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사실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및 자살처리자 등에 대한 전공사상자 처리규정상 분류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이미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전·공사상자 분류기준 등이 개정되고 육군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피해자의 피해사실 및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순직여부에 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5. 결론

이 사건의 진정내용 중 피해자의 사고경위 및 유족들의 궁금증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고, 전·공사상 심사 부분은 진정인의 명예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머지 진정내용 중 타살의혹에 대한 부분은 진정인의 주장 이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병 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기각할 것을 결정한다. 아울러 이상과 같은 구제조치와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진정인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권고, 요청한다.

2008. 4. 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8 07진인2631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7. 12. 18. 결정

검찰총장에게, 피해자 故 홍○○에 대한 폭행혐의로 피진정인 김○○외 2명을 각 수사의뢰하고, 국방부장관에게, 군병원에서 발행되는 퇴원환자정보기록지에 대하여 소속부대 지휘관 및 군의관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육군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피진정인들의 검찰수사결과 및 피해자의 피해사실 등을 반영하여 공상여부 를 재심의 하게 할 것을 각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피진정인 김○○, 배○○, 신 ○이 피해자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농후하고, 부대측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료조치를 실시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에 대한 전공상여부는 피해자가 군복무중 인권을 침해당한 사실과의 이과관계 등을 검토하여 재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

「헌법」 제10조, 제12조, 군인복무기본법 제20조

▌ **진정인** ▌ 홍○○ (피해자의 부친)

▌ **피해자** ▌ 故 홍○○

▌ **피진정인** ▌ 1. 김○○
2. 배○○
3. 신 ○
4. 조○○
5. 이○○
6. 정○○
7. 심○○

▌ **주 문** ▌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김○○, 배○○, 신 ○을 피해자 故 홍○○에 대한 폭행 혐의로 각 수사의뢰한다.

2. 국방부장관에게, 군병원에서 발행되는 퇴원환자정보기록지에 대하여 소속부대지휘관 및 군의관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육군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피진정인들의 검찰수사결과 및 피해자의 피해사실

등을 반영하여 공상여부를 재심의 하게 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가. 피해자 故 홍○○은 2005. 4. 13. 입대하여 육군 ○포병여단 ○○대대에 근무하면서 선임병인 피진정인 1. 김○○, 2. 배○○, 3. 신 ○ 으로부터 지속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병이 발병하여 2005. 5. 29. 국군○○병원 정신과에 입원했는데 당시 포대장인 피진정인 4. 조○○은 지휘관으로서 구타 및 가혹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나. 국군○○병원 정신과 군의관인 피진정인 5. 이○○은 피해자가 완치 되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퇴원시켜 건강상태를 악화시켰고, 후임 포대장인 피진정인 6. 정○○ 및 소속부대 군의관인 피진정인 7. 심○○은 피해자에 대한 외래진료를 보내지 않은 책임이 있다.

다. 이와 같이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는데도 부대측의 관리소홀 및 의료조치 미흡으로 피해자가 정신병의 후유증을 안고 2007. 4. 12. 전역한 후, 2007. 7. 20. 집에서 투신자살 하게 된 것은 피진정인들의 잘못이므로 이들의 책임을 묻고 싶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김○○(선임병)

머리를 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포 방열시 자꾸 혼자만 편 하려고 하여, 포의 균형이 안 맞는 위험한 상황이 될 뻔하여 조심하라고 주위를 주는 차원에서 방탄헬멧을 두 대정도 때린 것이다.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2년이 지난일로 잘 기억나지 않는다.

2) 피진정인 2. 배○○(선임병)

피해자가 빨래를 즉시 하지 않고 숨겨놓는 등 잘못한 일이 있으면 타일러 주려 했고,

본인이 분대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기에 우리 분대원이 잘못하여 타 분대 선임들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했었다. 진정인 측에서 본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2년이 넘은 일로 하나하나 잘 기억나지 않고, 만약 그랬더라면 피해자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가르쳐 줄려고 한 것일 것이다.

3) 피진정인 3. 신 ○(선임병)

피해자는 워낙 말수가 적어 대인관계에서 많이 힘들어 했고, 구타 및 가혹행위는 없었다. 행정보급관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관찰을 하고, 보고도 했지만 피해자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다.

4) 피진정인 4. 조○○(전임 포대장)

포대장 할 때 피해자가 이등병으로 전입을 와 11개월 정도 같이 생활하다가 2006. 4. 20경. 후임포대장에게 인계했으며, 병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피해자는 체격이 왜소해 155견인포 부대의 특성상 적응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구타나 가혹행위 부분에 대하여 면담 등을 수시로 했는데 피해자자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했으며, 내무부조리 예방을 위해 마음의 편지, 부대 정밀진단 등을 실시하였는데 피해자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5) 피진정인 5. 이○○(국군○○병원 정신과 군의관)

2006. 7. 7. 피해자를 퇴원시킨 경위는 입원시 사이코틱한 모습이 있어 입원시켰으나 그런 모습이 사라져 퇴원시킨 것이다. 퇴원 후 부대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경과관찰이 중요한 요소이었으며 퇴원 후 외진을 오면 부대 적응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진료를 해주려 했었는데 외진을 오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6) 피진정인 6. 정○○(후임포대장)

2006. 4. 20. 포대장 부임시 피해자를 일병으로 만났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6. 5. 29. 피해자를 국군○○병원에 입원시켰으며 퇴원 후 부대적응시간이 필요했고, 관심병사여서 근무를 제외시켜준 사실이 있다.

퇴원 후 외진을 실시하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가 포대장 및 군의관에게 가지 않겠다고 하여 실시하지 않은것이지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복무당시 여러 병영악습을 겪었을 수 있으나 지휘관으로서 많은 개선노력을 하여 현재 병영악습은 전혀 없다.

7) 피진정인 7. 심○○(소속부대 군의관)

퇴원직후 피해자와 면담할 때 대화가 원활히 되어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국군○○병원 외진은 본인이 가기 싫다고 하여 실시치 못한 것이며, 퇴원환자건강정보지를 보지 못해 외진이 꼭 필요한 사항임을 몰랐는데 알았더라면 본인이 가기 싫다고 했더라도 외진을 보냈을 것이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故 홍○○은 2005. 4. 13. 입대하여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를 수료하고 같은 해 5. 23. 육군 ○포병여단 ○○대대 ○포대에 배치되었고, 군복무 중인 2006. 5. 29.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국군○○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였다가 2006. 7. 7. 증세호전을 이유로 소속부대로 복귀하여 약 10개월의 잔여복무기간을 복무한 후 2007. 4. 2. 만기전역 하였고, 이 후 2007. 7. 20. 자택에서 투신 사망하였다.

나. 진정인은 피해자의 정신병 발병 사유에 대하여 피진정인 김○○, 배○○, 신 ○의 구타 및 가혹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 김○○, 배○○, 신 ○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료기록에 발병원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가 2005. 5. 23. 부대배치 되었을때 피진정인 김○○은 피해자의 분대장으로서 피해자와 약 5개월간 생활하다가 2005. 10. 20. 만기 전역하였고, 같은 배○○는 피해자와 약 7개월간 생활하다가 2005. 12. 15. 만기 전역하였으며, 같은 신 ○은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2006. 5. 29. 당시 같이 생활하던 자이며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2006. 7. 7. 이후에도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다가 2006. 9. 6. 만기 전역했으며, 피해자는 이후 약 7개월이 지난 2007. 4. 12. 만기 전역하였다.

라. 진정인이 참고인 김○○, 이○○(피해자의 군생활 동료)와 직접 전화통화하여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이가 홍○○의 머리, 배, 뺨 등을 많이 때렸다", "거의 완전히 사람 진짜로 숨 못쉬게 했다", "후임들 있는데서 군화발로 차고 했다", "왕따를 시킨 셈이다", "구타 현장을 2~3회 목격했고 나도 같이 맞았다", "자다가 깨워서 원산폭격 시킨 일도 있다", "걸렸으면 영창 갈 사람들이다", "정신병원에 간 원인은 거의 피진정인 때문이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의 전화조사시 참고인 김○○, 이○○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정인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가 국군○○병원 퇴원시 작성된 '퇴원환자 정보기록지'에는 "퇴원 1주일 후 외진이 필요하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추가적인 외진을 실시되지 않았고, 진정인이 제출한 피해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살펴보면 2000. 1.부터 입대전인 2005. 4.까지 5년간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거나 하는 기록은 없으며, 2003. 3. 11.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장병신체검사 결과에도 피해자의 정신과 상태는 '정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 피해자 근무당시 병영환경은 소속부대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병영저변 부대정밀진단결과(2006. 12.)' '막내는 항상 제일먼저 일어나 환복하고 침구류를 정리한다', '막내는 항상 기상시간에 맞추어 커텐을 걷는다', '물을 마실 때 상병 이상은 컵없이 먹어도 되나 상병 이하는 컵으로만 먹는다', '식사시 상병이하는 식탁에 팔을 받치지 못한다', '상병 5호봉 이하는 전화받을때 정자세로 받는다', '야간에 선임 깨울때 본인의 관등성명을 대어야 한다', '상병 이상만 겨울철 목도리 착용 가능하며 건빵에 우유를 타먹을 수 있다', '상병이상은 배식량을 조절할 수 있느나 일이병은 주는대로 먹는다' 등과 같은 병영악습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 피해자는 만기전역 후 자택 인근 한식당에서 서빙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07. 5. 23. 정신질환증세를 보여 진정인이 ○○대병원 신경정신과에 진료를 시켰고 진정인은 담당 의사인 김○○ 교수가 "군병원에서 10개월간 방치되었던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하나, 조사관의 전화조사시 김○○ 교수는 "진정인이 본인에게 부대측에 과실이 있음을 말씀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으나, '10개월간 방치되었다'는 말은 아버님의 주장일 뿐이고 그것을 본인이 판단할 부분은 아니며, 정신병은 하루 아침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의 인과관계 등으로 서서히 발생하는 것이고 본인은 당시 증세 및 향후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과거의 치료가 적절했는지 등은 판단할 수 없으며, 당시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진정인은 가정형편상 입원이 어렵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피해자의 소속부대 및 국군○○병원은 피해자에 대한 전공상여부를 심의한 결과, 복무 중 가혹행위 부분 및 적절하게 의료조치가 진행되지 못한 점을 반영치 못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비전공상' 결정을 하였다.

4. 판단

가. 선임병의 구타행위 등이 있었는지 및 지휘감독 소홀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 김○○이 피해자에 대하여 "머리를 때렸다", "배도 많이 때렸다", "후임들

있는 곳에서 군화발로 차고 그랬다", "걸렸으면 영창갈 사람이다", "2~3회 직접 목격했다"는 참고인 진술이 있는 점, 같은 배ㅇㅇ에 대하여도 "군화발로 많이 차는 것을 보았다", "머리를 때렸다"는 참고인 진술 및 피진정인 본인도 "2년이 지난일로 하나하나 기억나지 않고, 만약 그랬더라면(때렸더라면) ㅇㅇ이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가르쳐 줄려고 한것일 것이다"라고 폭행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점, 신 ㅇ에 대하여도 "야 씹새기, 개새끼 등 쌍스런 욕을 하고 막 소리지르고 했다", "피해자가 정신병원 간 이유는 거의 신 ㅇ 때문이다", "작업 같은 것도 따돌림 시켰다"는 참고인 진술이 있는 점 및 피해자 군복무 당시 소속부대에 병영악습이 있었던 점, 병영악습에 피해자가 노출되었을 수 있음을 지휘관이 인정한 점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피진정인 김ㅇㅇ, 배ㅇㅇ, 신 ㅇ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사항에 대하여 지휘관이었던 피진정인 조ㅇㅇ, 정ㅇㅇ은 병영악습 예방활동에 주력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하여도 애로사항 청취 면담을 한 점, 마음의 편지, 부대 정밀진단 등을 통해 병영악습 예방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휘감독 소홀책임을 묻기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의료접근권 침해여부에 대하여

2005년도 국가인권위원회「군대내인권상황실태조사」결과를 보면 병사들은 선임병의 눈치(38.2%), 간부들의 눈치(15.4%) 및 약해보이기 싫어서(12.2%)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의료조치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병영문화를 감안하여 국방부는 현재 제정중인 군인복무기본법 제20조에 "모든 군인은 전투력을 보존하고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시에 진료 받을 수 있다. 군은 의무체계를 선진화 하여 장병들의 진료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사들이 적극적으로 진료를 요구하지 못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군인의 의료접근권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본 진정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첫 입원은 적극적 치료를 위한 조치였음에도, 2007. 6. 23. 약물 부작용 때문에 약물치료를 중단했고, 같은 해 6. 26. 임상심리 평가보고서에 "현저히 자기몰입이 있어 심한 경우 현실 경계를 상실하고 자폐적인 연상활동도 나타날 수가 있어보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해 6. 28. 경과기록지에는 만성적 우울감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도 일주일 후인 7. 4. 퇴원을 상신 한 것은 완치가 된 상태에서 퇴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담당 군의관이 피해자를 퇴원시킨 후에도 외래진료를 통해 계속하여 진료를 할 계획이 있었던 점, 퇴원조치도 의료과정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점, 퇴원여부는 환자에 대한 치료과정·질환의 진행 및 치료정도·앞으로의 치료계획과 환경 등을 종합해 의학적으로 판단 할 사안 이라는 점 을 감안할 때, 이 진정사건에서 퇴원조치 자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퇴원 1주일 후, 필요한 외진이 실시되지 않은 부분은 담당 정신과군의관도 "퇴원 후 외진은 꼭 필요한 경우였다"고 진술하고, 대대 군의관도 "상급부대의 외진요구사항을 알고 있었다면 본인이 외진을 거부 했더라도 꼭 보냈을 것이다" 라고 진술하는 것을 보았을 때 환자 퇴원시 유의사항 등이 소속 부대측에 충분히 전달되어야 하나 퇴원환자 건강정보지가 지휘관에게만 전달되고 군의관이 이 내용을 알지 못해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군 의무관리체계의 문제로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이 사건 진정내용 중 피진정인 김○○, 배○○, 신 ○이 피해자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농후하고, 부대측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료조치를 실시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에 대한 전공상여부는 피해자가 군복무중 인권을 침해당한 사실과의 이과관계 등을 검토하여 재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1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정강자 위 원 신혜수 위 원 윤기원

9 07진인4219 [생명권 침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8. 4. 3. 결정

[1] 국방부장관에게 전·공사상자 분류기준 등을 개정하고 ○○본부 전·공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피해자의 피해사실 및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순직여부에 대하여 재심의 할 것을 권고한 사례

[2]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차원에서 국가상대 손해배상 등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한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 2 내지 7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힌 행위는 국방부 훈령 제487호「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가혹행위(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 · 정신적 고통과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에 해당되어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한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지침」

▌진정인▐ ○○○(피해자의 아버지)

▌피해자▐ 故 ○○○

▌피진정인▐ 1. ○○수사단장 및 ○군단 헌병대장
2. ○○○
3. ○○○
4. ○○○
5. ○○○
6. ○○○
7. ○○○

▌주 문▐ 1. 국방부장관에게 전·공사상자 분류기준 등을 개정하고 ○○본부 전·공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피해자의 피해사실 및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순직여부에 대하여 재심의 할 것을 권고한다.

2.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차원에서 국가상대

손해배상 등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3. 나머지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

1. 진정의 요지

피해자 고(故) ○○○은 육군 ○○○여단 ○대대 ○중대에 복무하는 도중 피진정인 2 내지 7 등으로부터 욕설 및 폭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또한 진정인 2, 3 등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적성에 맞지 않는 상황병의 보직을 피해자에게 부여하고 업무에 빨리 적응하지 못한다고 다그치기만 할 뿐 피해자의 고충사항을 전혀 해결해 주지 않았다. 그 결과 피해자가 2007. 3. 12. 부대화장실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 되었으나 입원 중이던 2007. 3. 26. 사망하였다. 피해자가 목을 맨 상태를 발견한 피진정인 2, 3 등은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 부대에서도 진정인 등의 유가족에게 사고경위에 대한 여러 의문점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타살의 의혹이 있으므로 이 사건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및 관계인들의 주장

1) ○○수사단장 및 ○군단 헌병대장

감식과정에서 진정인이 해당 부대를 몇 차례 방문하여 여러 가지 의견교환 과정을 거쳤고 2007. 7. 3. 수사결과 설명회 및 2007. 7. 12. 민원에 대한 서면회신으로 유가족 측이 가지고 있는 아래와 같은 의문점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였다.

가) 화장실 손잡이 잠금장치 등에 대한 지문감식이 미흡했다는 의문에 대하여 : 수사과정에서 현장에서 취득한 증거물들과 여러 가지 사건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수사하였으며, 결코 현장증거를 훼손하거나 감식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다. 잠재

지문 13개 등에 대하여 감정한 결과 특이소견이 없었으며, 과학적으로 판독불가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었다.

나) 목을 맬 때 사용된 야상끈이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는 의문에 대하여 : 피해자 소속 부대의 경우 대부분 병사들이 야상끈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망 당시 피해자는 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의 신병교육대(ㅇㅇ사단)에 확인해 본 결과 교육대에서 야상끈을 수거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어 위 야상끈이 피해자 본인의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피해자의 의복에 이물질이 묻은 것으로 볼 때 피해자를 먼저 실신시킨 뒤 자살시도로 위장하는 과정에서 바닥의 이물질이 묻은 게 아니냐는 의문에 대하여 : 위 이물질은 피해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묻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의사체를 이용하여 유족들과 같이 실험한 결과에서도 자살시도로 위장하려면 최소 2~3명의 공범이 있어야 하나 당시 부대원 동선을 확인한 결과 의심할 수 있는 부대원은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발견된 장소의 부근을 면밀히 관찰하였으나 싸운 흔적이나 방어흔이 없었다.

라) 삭흔에 대한 의문에 대하여 : 피해자가 타살되었다면 피해자의 목을 앞에서 눌렀거나 뒤에서 잡아당겨졌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사체에는 아래에서 위로 사상방향으로 압흔이 나타났다. 이러한 삭흔은 타살의 삭흔으로 볼 수 없었으며 삭흔이 1개로 정연하고 주변에 방어흔 등이 일체 없이 깨끗한 것으로 보아 타살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피진정인 2(ㅇㅇㅇ, 중대장)

피해자가 소초에서 근무하였는데 중대행정병(작전화학병)이 필요하여 피해자의 보직을 중대로 변경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처음에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였으나 이후 잘 해보겠다고 하여 보직을 확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지휘관인 자신이 피해자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행정병으로 선발하였고 ,관심을 주어야 할 병사임에도 이를 위한 면담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 피해자에게 자살징후가 식별되었으나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책임감을 느낀다.

3) 피진정인 3(ㅇㅇㅇ, 중대행정보급관)

병사들이 실수할 때 호되게 호통치는 것이 본인의 스타일이다 보니 병사들 입장에서는 야속하게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업무를 꼼꼼하게 빨리 처리하려다 보니 대원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병력관리 및 신상파악을 좀 더 세밀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이 있다. 자신이 피해자의 응급조치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피해자의 구강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4) 피진정인 4(○○○, 분대장)

선임병들이 피해자에게 폭언 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간부들에게 적절한 보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

5) 피진정인 5(○○○, 운전병)

이 사건 사망사고는 과중한 업무부담 및 본인과 피진정인 6의 습관적인 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

6) 피진정인 6(○○○, 행정병)

사고 당일 오전에 피진정인 3과 함께 대대에 갔다가 10:00경 복귀하여 중대장의 대대회 참석 스케줄을 운전병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질책한 사실이 있으나 부대내 구타 등 가혹행위는 일체 없었다.

7) 피진정인 7(○○○, 행정병)

사망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잘하라는 취지로 폭언 및 질책은 하였으나 구타 및 가혹행위는 없었다.

8) 육군 ○군단 법무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대장에 대한 보직해임, 행정보급관에 대한 견책, 가해병사에 대한 휴가제한 등의 조치는 관련 징계기준에 따라 적절히 책임을 물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가혹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수사되어 관련 병사들에게 형사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된다.

3. 인정사실

가. 기본적인 인정사실

진정서, 헌병 사건기록,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06. 8. 육군에 입대 후 ○○○여단 소초에 배치되어 생활하다가 2006. 11. 9. 중대행정병 5명 중 4번째 후임병으로 보직을 받았다. 피해자는 2007. 3. 12. 13:00경 중대 본부 화장실 문틀에 야전상의 끈으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입원 중이던 2007. 3. 26.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사망하였다.

2) 피해자의 사고당일 행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06:15: 세면 후 피진정인 6과 함께 아침식사를 마치고 같이 중대 행정반에 도착

나) 08:00경: 피진정인 3에게 업무가 미숙하다는 지적을 받음.

다) 10:00경: 대대교육장교로부터 특급전투원 집체교육기간이 10일에서 2박 3일로 줄었으니 그 계획을 통보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외출 중이던 피진정인 3에게 전화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묻자 피진정인 2가 기상하면 이후 조치하자는 말을 들었음.

라) 10:50경: 피진정인 3이 부대에 복귀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문의였으며 위와 같은 답변을 들었음.

마) 11:45경: 피진정인 6으로부터 중대장이 14:00에 대대회의에 가야하는데 왜 그 사항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을 들음.

바) 12:01경: 상급부대인 대대 군수과 ○○○에게 방독면 저시력자 안경보유현황을 파악하여 12:30분까지 보고하라는 전화를 받고 피진정인 6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그걸 왜 나에게 말하냐"며 피해자를 질책했음.

사) 12:12경: 각 소초 상황병에게 전화로 현황파악 요청을 했으나 소초 근무자들로부터 10분내에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음.

아) 12:46경: 피진정인 3이 사무실로 들어 왔을 때 특급전투요원 교육일자 조정에 대하여 다시 질문을 했으나 피진정인 3으로부터 피진정인 2가 일어난 이후에 조치하자는 답변을 들음.

자) 12:50경: 피진정인 6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나갔으나, 13:06경 피진정인 5에 의해 화장실 상단 문틀에 목이 매여 있는 채로 발견됨.

3)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부검을 한 다음 "사체에 외력이나 반항흔이 전혀 없고, 삭흔이 의사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형태인 갑상연골 상방 V자 형식으로 형성되어 있고, 머리에 구타흔적이나 골절 등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전형적인 의사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하여 진정인을 포함한 유가족들은 타살의 의혹과 관련된 의문사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부대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유가족 등 의문점	부대답변	수사기록	유족설명	조사결과
화장실 출입문 손잡이 감식 ?	•화장실 출입문 감식을 하여 문틀 및 벽면에서 지문채취 하였으나 손잡이는 채증할 사항 없었고 국과수 감정결과 특이소견 없어 유족에게 설명하였음.	기록됨	설명함	부대설명 이해됨
야상끈 출처 및 근거는 ?	•본인 것(대부분 병사 보유 본인 것 없고 신병 수거 안함)	기록됨	설명함	부대설명 이해됨
야상끈으로 54cm 목을 맬수 있는지 ?	•끈을 문틀에 건 후 다리는 방열판을 딛고 고개를 문틀 밑에 위치시킨 후 막매듭 가능함.	기록됨	설명함	부대설명 이해됨
사망자 목격방향 맞는지 ?	•재연결과 최초 발견상황과 일치	기록됨	설명함	부대설명 이해됨
끈이 한번에 끊어지는지?	•재연결과 한번에 끊어짐	기록됨	설명함	부대설명 이해됨
실신을 위장한 것 아닌지 ?	•가변광원채취 결과 격투 및 방어흔 없음	기록됨	설명함	부대설명 이해됨
경량철골 굴곡관계 설명요망	•철골을 사망자가 손으로 잡고 있다가 손을 놓으면서 하중에 의해 생긴 것으로 추정.	기록됨	설명함	부대설명 이해됨
사망자 의복 이물질 사유?	•후송 중 묻은 것으로 추정	기록됨	설명함	부대설명 이해됨
삭흔의 형태가 맞는지 ?	•압흔이 아래서 위로 발생하고 1개로 정연하며 방어흔 등이 없어 스스로 맨 것으로 추정	기록됨	설명함	부대설명 이해됨
발 디딤판 족적이 나오는지 ?	•확인, 사망자 것으로 추정	기록됨	설명함	부대설명 이해됨

4) 피해자는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기 이전에 피진정인 2 내지 7로부터 다음과 같은 욕설과 폭언을 매우 빈번하게 들었다.

가) 피진정인 2 : 사고 2일 전인 2007. 3. 10. 피해자가 멍하니 있는 행동을 관찰하였음에도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너 그러다 자살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면담을 통해 고충을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한 2007. 2.경 피해자가 대대장의 전화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피해자를 추궁하며 “씨발”이라고 한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인 3 : 사고 당일 08:00경 중대 행정병 전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중대에 온지 얼마나 되었는데 아직도 똑바로 못해? 잘 좀 해라”며 공개적으로 질책한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인 5 : 2007. 1.부터 사고발생 시까지 피해자에게 상황일지 누락 및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 등으로 4차례에 거쳐 “야 씨발, 왜그리 실수를 하냐?, 씨발, 빨리 안 나오

고 뭐하냐 ? 한번 더 이런 일 생기면 되질 줄 알아라" 등 폭언 및 욕설을 하였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상황일지 기록을 누락하면 "야 씨발 ○○○ 왜 자꾸 실수하냐"고 욕설하고, 취침준비가 늦으면 "장난까냐? 씨발, 빨리 취침 준비 안 해"라고 욕을 했다. 또한 이동 중 군가 소리가 작다고 "야! ○○○ 목소리 크게 안 하냐, 미쳤냐"고 하고, 식사시간이 늦다고 "씨발, 빨리 안 나오고 뭐하냐"며 욕설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업무를 임의로 처리했다며 "야 씨발 너는 왜 니 맘대로 일하냐?한 번 더 이런 일 생기면 되질 줄 알아"라고 욕을 한 사실이 있다.

라) 피진정인 6 : 사고 당일 11:45경 "중대장이 14:00에 대대 회의에 가야 하는데 왜 보고를 안했냐?"고 피해자를 질책하고 12:10경 피해자가 방독면 안경파악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고 짜증 섞인 소리로 질책 하는 등 2007. 1.부터 사고일까지 약 2개월 넘게 매일 2차례 이상 욕설 및 폭언 및 갈굼행위를 하였다.

마) 피진정인 7 : 피해자가 2007. 3. 9. 13:05경 3월 중대 외박보고와 관련하여 자신의 업무가 아님에도 중대장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대대에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막사 좌측 옆에서 "너 요즘 도대체 왜 그러냐?" "좆나 씨발" 등의 욕을 하였다.

5) 피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지속적 언어폭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과 너무 다른 분위기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이를 피진정인 4 등에게 간접적으로 표출하였으나 이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였다. 특히 사고 당일 피진정인 3이 여러 사람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목하여 질책한 것이 피해자에게 결정적 좌절감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는 육군표준인성검사를 통해 여러 특성이 노출되었으나 해당부대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려차원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사망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주요한 원인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던 피진정인 2, 3, 4의 무관심, 무책임, 방임과 피진정인 5, 6, 7의 습관적인 언어폭력 등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된 상황 하에서 입대 이전 사회에서 인정 받아왔던 상황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한 피해자가 결국 심리적, 정서적으로 주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대학교 ○○○ 교수의 심리적 부검결과에 의함).

6) 해당 부대에서는 간부인 피진정인 2, 3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계조치를 취하였다.

가) 피진정인 2에 대하여 : 피해자의 보직 후 부적응에 대한 적극적 지휘조치 미흡, 중대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활동 미실시, 부대진단 미실시 등 지휘감독 소홀 및 근무태만과 병사에게 속옷 세탁 지시 및 병사 담배 착취 등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한 보직해임 및 감봉 2개월의 징계조치를 취하였음.

나) 피진정인 3에 대하여 : 업무처리가 미흡한 병사들에게 큰 목소리로 “야 이놈아” 라고 호통을 치고 부대일지 작성 및 결재를 누락시키고 사고현장에서 응급조치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견책의 조치를 하였다.

7) ○○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위 기준에 따라 2007. 9. 13. 피해자에 대하여 자살로 심의하여 진정인 등의 유가족에게 통지하였다.

8) 이 사건은 우리 위원회 조사에 앞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하였는데 타살의혹에 대하여는 타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부대측 부실수사 주장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피진정인 2가 병력관리를 소홀하게는 하였으나 응급조치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해당부대에 권고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나. 타살의혹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현장 및 피해자의 신체 전반에 격투 또는 방어흔이 없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소견 결과 삭흔(削痕)이 전경부에서 후두부쪽으로 사상(斜上)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어 전형적인 의사(縊死)로 판단된 점, 발견 당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살아있는 사람의 목을 매어 자살로 위장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타살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 또한 부검 및 감식과정에서 유가족 측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식을 담당했던 ○○수사단 예하 ○수사대에서 2차례 가족을 만나 설명을 하고 최종적으로 공문을 통하여 8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으며, 현장감식에 대한 19가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해당 부대에서 유가족에게 사망사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 피진정인 2 내지 7의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2 내지 7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힌 점이 인정된다. 한편 이러한 욕설 및 괴롭힘 이외에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육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구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2 내지 7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힌 점은 인정된다. 한편 이들이 피해자를 타살하였거나 그 밖에 구타 및 육체적인 가혹행위를 한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진정인 2 내지 7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행위는 국방부 훈령 제487호「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가혹행위(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 · 정신적 고통과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에 해당되어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한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피진정인 2 내지 7의 위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진정인을 위하여 취해야 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해당 부대차원에서는 간부들인 피진정인 2, 3에 대하여 감봉 및 견책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고, 피진정인 4 내지 7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따라 휴가제한 등의 조치를 이미 취하였으므로 피진정인 2 내지 7에 대하여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통상 ○○본부 전·공사상심사시 분류기준표(5-1)에 따라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자살"로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2 내지 7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당하였고 피진정인 2, 3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부대를 관리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국가가 모든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동일한 배경에서 위원회에서는 이미 2007. 12. 18. 국방부장관 등에게 "군복무부적응병사 인권상황 개선권고"시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사실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및 자살처리자 등에 대한 전공사상자 처리규정상 분류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이미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전·공사상자 분류기준 등을 개정하고 ○○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의 피해사실 및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순직여부에 대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5. 결론

이 사건 진정내용 중 피해자의 전·공사상 심사 부분은 피해자의 명예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제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하고, 피진정인 2 내지 7의 욕설 등의 가혹행위에 대한 책임부분은 해당 부대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징계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나머지 진정내용은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할 것을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10 08진인232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2008. 8. 7. 결정

육군 ○포병여단장에게 유사행위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4 및 6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과 피진정인 2 및 3에 대하여는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피해자 조사를 실시한 피진정인 2가 근무대원이 있는 지휘통제실에서 피해자와의 면담을 실시한 점, 피진정인 3이 가해자인 피진정인 1 및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공공연한 장소인 행정반 등에서 실시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 2 및 피진정인 3의 행위는 피해자의 면담내용을 다른 대원들에게 공개되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함.

[2] 피해자는 일반 병사로서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는 피진정인 1의 가혹행위 등을 시정하고자 하는 통상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4와 피진정인 6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을 하고 대원들의 체육활동 시간에 완전무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보하도록 한 것은 군 지휘관에게 인정되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4와 피진정인 6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참조조문▐

「헌법」 제17조, 육군 징계규정

▌ 진정인 ▌ 조○○(피해자의 아버지)

▌ 피해자 ▌ 조○○

▌ 피진정인 ▌ 1. 정○○
2. 이○○
3. 이○○
4. 김○○
5. 김○○
6. 박○○

▌주 문 ▐ 1. 육군 ○포병여단장에게 유사행위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4 및 6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피진정인 2 및 3에 대하여는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1 및 5에 대한 진정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

1. 진정의 요지

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포병여단 ○대대 1포대에서 복무하던 중 선임병인 피진정인 1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피해자는 피진정인 1의 가혹행위 정도가 심해져 2007. 3. 18. 당직사관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주임원사인 피진정인 2 및 행정보급관인 피진정인 3이 위 사실을 조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당직사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대원들에게 공공연히 알려지게 되어 피해자의 군 생활이 더 힘들게 되었다.

나. 포대장인 피진정인 4 및 대대장인 피진정인 6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지휘계통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한 징계처분을 하였다. 피진정인 3, 4의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아울러 후임 포대장인 피진정인 5 및 대대장인 피진정인 6이 피해자에 대하여 현역복무부적합처리를 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정○○, 당시 피해자 소속부대 선임병, 현재 전역)

피해자에게 폭언을 했으나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부대로부터 정상적인 조사를 받고 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았다.

2) 피진정인 2(이○○, 당시 피해자 소속부대 주임원사, 현재 급양관리관)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구타사실을 보고했을 당시 부대는 야외훈련 중이었고 잔류책임자였던 피진정인 2가 지휘통제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그 당시 지휘통제실에는 근무대원들이 있었으나 이들은 유리가림막으로 나뉜 맞은 편 장소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피진정인 2와 피해자가 면담한 사실은 알았더라도 그 면담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

3) 피진정인 3(이○○, 당시 피해자 소속부대 행정보급관)

피해자는 피진정인 3이 비번이었던 일요일 날 당직자에게 선임병으로부터 가혹행위 당했다는 피해사실을 보고했다. 그 후 피진정인 3이 출근하여 보니 피진정인 2도 이미 위 내용을 알고 있었다.

4) 피진정인 4(김○○, 당시 피해자의 포대장, 현재 ○대대 군수과장)

피해자에 대한 징계결정은 징계권자인 피진정인 4가 결정하였고 이 사실은 대대장에게 지휘보고 시 보고되었다.

5) 피진정인 5(김○○, 당시 피해자 소속부대 후임 포대장)

피해자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결정은 관련 규정과 근거 자료에 따라 적절하게 처분한 것이다.

6) 피진정인 6(박○○, 당시 피해자 소속부대 대대장, 현재 여단 교훈참모)

피해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현역복무부적합 결정은 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적절히 조치한 것이다.

다. 참고인인 피해자의 동료병사(장○○, 이○○)의 주장요지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차량정비 시 스패너 인치를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혼내고 "어이 없네. 씨발새끼. 나랑 해보자는 거냐?" 등의 폭언을 하였다.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빨래(양말, 속옷)를 시킨 것을 목격하였으나 빨래가 누구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피해자가 당직자에게 피해사실을 보고한 것을 다른 대원들도 모두 알고 있었고 피진정인 1도 이를 알고 나서 "너희들 그런 식으로 군 생활해서 잘 되나 보자."라고 말하며 강한 불만을 표현하였다.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군가를 외우라고 명령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외우지 않자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심하게 혼낸 적이 있고, 자체 조사과

정에서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요즘 개는 주인도 무냐?”라고 말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6. 12. 10.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군수학교 교육을 받고 2007. 2. 26. ○포병여단 ○대대 1포대(강원도 ○○)에 배치되어 생활하면서 피진정인 1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1) 피진정인 1은 2007. 2. 28. 10:00경 차량정비 도중 피해자가 장비명칭을 모른다는 이유로 “아! 이 새끼, 또 열 받게 하네.”라고 폭언을 하고 스패너로 머리를 툭툭 쳤다.

2) 피진정인 1은 2007. 3. 17. 21:00경 피해자가 생활관에서 군가 외우는 것을 쉬었다 하면 안 되느냐는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장난도 가지가지 해야지? 나랑 지금 해보자는 거냐? 씨발놈아! 이 새끼 아주 존나 개념 없네.“ 라고 폭언을 하였다.

3)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게 2007. 3. 18(일). 09:00 경 군가를 못 외운다고 폭언을 하였으며 빨래 및 군장을 세탁하라는 사적인 지시를 하였다. 그리고 피진정인 1은 같은 날 11:00경 군가점검 시 피해자가 군가를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야 ! 이 새끼야 ! 내 말이 말 같지 않느냐? 장난으로 보이냐?”라고 폭언을 하였다.

나. 진정인이 근무한 해당부대는 2007. 3. 6.부터 3. 21.까지 야외훈련 중이어서 부대에는 주임원사인 피진정인 2가 이등병 및 잔류인원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피진정인 1은 휴가복귀자로 이와 같은 훈련기간 도중에 부대에 남아있었다. 피해자는 2007. 3. 18.(일) 오전에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폭언을 당하고 나서 같은 날 11:00경 공중전화로 진정인에게 그동안의 피해사실을 밝히고, 당직자를 찾아가 평소 피전정인 1이 피해자를 괴롭혀 왔음을 보고하였다. 진정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지인인 ○사단 ○참모에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다. 피진정인 3은 2007. 3. 19(월)에 출근하여 ○사단 ○참모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불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도중에 상급자인 피진정인 2의 요청으로 피해자를 인계하였다. 피진정인 2는 피해자를 지휘통제실로 데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때 지휘통제실에는 당직병사 네 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피진정인 2가 위와 같이 조사를 끝낸 후 피진정인 3이 행정반에서 추가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당시에 행정반에는 행정병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과정 중 피진정인 1도 피해자가 폭언 등을 신고한 사실을

인지하고 2008. 3. 19. 21:00 경 피해자에게 “요즘 개는 주인도 무냐?”라고 말하였다.

라.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진정인 1의 폭언 등의 사실을 신고한 이후에도 피진정인 1이 계속하여 폭언을 하고 괴롭히자 이 사실을 다시 진정인에게 전화로 알렸고, 진정인은 2007. 3. 19(월). 훈련 중이던 피진정인 6에게 전화하여 이럴 수 있느냐며 항의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6은 “부대에 복귀하여 잘 처리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고 답변한 후 부대에 복귀한 다음 날인 3. 22(목). 피진정인 4에게 “본 건은 개인 고민사항 보고체계가 잘못되었으니 진술서를 받아 피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마. 피진정인 3 및 4는 2008. 3. 2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진정인 1에 대하여 복종의무위반(폭행·가혹행위)을 이유로 휴가제한 5일 처분을 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도 피해사실을 일일결산시에 분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성실의무위반(허위보고)으로 근신 5일 및 얼차려(완전군장 도보) 처분을 하였다.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따라 피해자는 동료 대원들의 휴식시간인 오후 5시 경에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보한 사실이 있다.

바. 피해자는 징계처분을 받고 2007. 4. 19.부터 4. 23.까지 첫 휴가를 다녀왔고 해당 부대의 포대장은 피진정인 4에서 피진정인 5로 바뀌었다. 피해자는 휴가 복귀 후 나무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자해를 시도하여 피진정인 5가 군의관 진료를 받게 한 후 2007. 5. 5. 진정인을 부대로 불러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5는 피해자를 부대 심리치료프로그램인 비전캠프(2007. 5. 14.부터 5. 16.까지)에 입소시키고, 비전캠프 수료시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국군○○병원 정신과에 입원시킨 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절차를 진행하였다. 2007. 6. 14. 피진정부대의 상급부대인 ○군사령부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육군규정 102 상근예비역 인사관리규정 제58조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결정을 하고 2007. 6. 15. 전역처분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전역을 한 후 민간병원에서 우울장애 치료를 받고 있다.

4. 판단

가.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

피진정인 1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머리를 때린 행위, 휴식이 보장되어야 할 생활관 등에서 군가 암기를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빨래를 시킨 행위 등은 피해자를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들게 한 가혹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 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 및 「헌법」 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의 위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하여 해당부대 차원에서 이미 징계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들이 피해자 상담내용의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는지 여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최초로 피해자 조사를 실시한 피진정인 2가 근무대원이 있는 지휘통제실에서 피해자와의 면담을 실시한 점, 피진정인 3이 가해자인 피진정인 1 및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공공연한 장소인 행정반 등에서 실시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 2 및 피진정인 3의 행위는 피해자의 면담내용을 다른 대원들에게 공개되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는 피진정인 2 및 피진정인 3에 대하여 부대를 관리함에 있어서 병사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정성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진정인 1이 행한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분대장 등의 지휘체계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 3. 22. 근신 5일과 얼차려(도보5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징계처분의 원인은 피해자가 분대장이 일일결산을 할 때 위와 같은 구타 및 가혹행위를 말하지 않은 것이 허위보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병인 피해자가 분대장(병장)에 의해 행해지는 공식일과인 일일결산 시에 같은 내무반에 기거하고 있는 피진정인 1의 위와 같은 비행을 보고하리라고는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육군본부는 2007. 11.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을 개정하면서 구타 및 가혹행위의 피해자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진정인 1의 가혹행위를 수인하다가 부대훈련기간 도중에 가혹행위가 심하여지자 분대장 등이 훈련으로 부대 내에 부재하여 해당부대의 당직자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와 같은 보고 이후에도 피진정인 1의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일반 병사로서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는 피진정인 1의 위와 같은 가혹행위 등을 시정하고자 하는 통상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4와 피진정인 6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을 하고 대원들의 체육활동 시간에 완전무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보하도록 한 것은 군 지휘관에게

인정되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4와 피진정인 6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는 피진정인 4와 피진정인 6에 대하여 재발방지차원에서 징계권 행사를 신중히 하도록 주의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현역복무부적합심사의 적정성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전역결정은 관련 육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결정이 적법하므로 이 부분의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항의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8. 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11 08진인912, 08직인4 등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직권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 2008. 9. 8. 결정

[1]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의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자 인권교육을 정례화할 것을 권고한 사례

[2] ○○지방경찰청장에게, 가. 사. 사건과 관련하여 구타·가혹행위와 성추행 행위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가-1. 사건에 있어 지휘·감독자에 대한 지휘·감독책임을 물을 것과, 가-3.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의병전역을 심의할 것과, 바. 사건과 관련하여 간부에 의한 구타·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3] ○○지방경찰청장에게, 나. 다. 사건과 관련하여 구타·가혹행위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과, 특히 다. 사건과 관련하여 ○○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가해자에 대해 징계조치하게 할 것, 지휘·감독자와 감찰조사자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 및 보호수경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 할 것을 권고한 사례

[4] ○○지방경찰청장에게, 구타·가혹행위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과 특히, 라.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경비계장 및 감찰조사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5] ○○지방경찰청장에게, 마. 사건과 관련하여 구타·가혹행위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과 초소 근무환경 개선 및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전·의경 담당자 및 경비계장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를 한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함.

[2]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웃지 말라는 부당한 간섭을 하고 화장실로 불러내어 질타하고, 임의로 대원들을 집합시켜 "미싱"이라는 가혹행위를 하며 욕설을 한 사실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대를 관리하는 간부 및 조사를 관장하는 감사부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면서 사건을 축소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 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함.

[3] 조사과정에서 경비계장이 대원들을 교육하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간접적으로 지칭하며 "부모에게 일러바치는 사람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감찰조사에서 피해자의 환부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의 환부에 관하여 찰과상에 불과하다고 한 것

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축소 보고한 것으로 판단함.

[4] 전·의경 담당자는 선·후임대원 사이의 폭행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원들간의 추가적인 갈등 및 문제에 대한 확인이나, 추가적인 사고 예방활동 등을 하지 않았고, 대원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정신과 진료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근무환경이 더욱 열악한 초소로 배치하고, 더구나 치료 중에 직권면직을 종용한 것은 피해자에게 보장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함.

[5] 가해자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게 한 후 여자 성기모양의 그림을 그린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수치심 및 거부감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사 건▐ 08직인04·08진인1891(병합), 08직인05, 8직인06·08진인0912(병합), 08직인07·08진인0313(병합), 08직인08·07진인4333(병합), 08직인09, 08직인10

▌사건명▐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직권조사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의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자 인권교육을 정례화할 것을 권고한다.

2. ○○지방경찰청장에게, 가., 사. 사건과 관련하여 구타·가혹행위와 성추행 행위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가-1. 사건에 있어 지휘·감독자에 대한 지휘·감독책임을 물을 것과, 가-3.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의병전역을 심의할 것과, 바. 사건과 관련하여 간부에 의한 구타·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3. ○○지방경찰청장에게, 나., 다. 사건과 관련하여 구타·가혹행위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과, 특히 다. 사건과 관련하여 ○○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가해자에 대해 징계조치하게 할 것, 지휘·감독자와 감찰조사자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 및 보호수경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 할 것을 권고한다.

4. ○○지방경찰청장에게, 구타·가혹행위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과 특히, 라.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경비계장 및 감찰조사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5. ○○지방경찰청장에게, 마. 사건과 관련하여 구타·가혹행위의 실질적인 예방활동

을 강화할 것과 초소 근무환경 개선 및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전·의경 담당자 및 경비계장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가-3., 라., 마. 사건에 있어 가해자들의 구타·가혹행위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

1. 직권조사와 제도개선 권고 배경

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2005년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전문가 토론회 및 관련 사건조사를 통하여, 2007년 초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제도개선 권고"를 하였고, 이후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인권친화적 근무환경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에서는 전·의경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특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수시로 보도하고 있다.

나. 이에 위원회는 전·의경 부대 내에서 구타·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로 보이는 여러 익명의 진정인에 의한 진정 및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2008. 4.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조사결과, 2007년 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제도개선 권고"를 한 부분에 대하여 경찰청 자체적으로 마련한 전·의경 관리 개선책 및 관련 지침의 이행이 철저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개별 진정사건에 관한 권고 외에도 구타·가혹행위와 관련된 전·의경 당사자 및 관계자들의 의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예방지침 등이 철저히 준수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의경 및 전·의경을 관리하는 관계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정례화 할 것 등을 권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2. 직권조사 사건별 조사결과 및 판단

가-1.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중대(사건번호 08직인04)

1) 사건개요

가) 피해자: ○○○

나) 가해자: 이○○, 한○○, 이○○, 김○○, 유○○ 등

다) 지휘·감독자: 중대장 ○○○, 소대장 ○○○, 소대부관 김○○

라) 사건요지

피해자는 2008. 4. 5. 06:50경 마을버스에 올라타 버스 기사를 위협하여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KBS 방송국 정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 사실에 관하여 MBC 9시 뉴스데스크 등에서는 피해자가 "군 생활 중 괴롭혀 온 선임대원의 이름을 공개하기 위하여 그랬다."고 보도하였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그 원인이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2006. 10. 23. 군 입대하여 2006. 12. 15.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중대 2소대에 배치되어 신고식을 하면서 선임대원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고무줄로 얼굴을 맞는 가혹행위를 당하여 고충처리반에 제보한 적이 있다. 이후 3소대로 옮겨 근무 중 선임대원들의 구타·가혹행위가 이어지자, 휴가 중이던 2008. 4. 5. 위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피해자는 2008. 6. 4.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기동대에 배치되어 복무 중이다.

나)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혹행위를 하였다

(1) 가해자 이○○은 같은 부대 중대기율 및 무전대원인바, 2008. 4. 3. 16:00경 ○○○○구 ○○○○역 근처 길가에서 상황대비를 마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폴리스라인 설치장비를 늦게 반납하였다는 이유로 "또라이 같은 새끼 언제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제 가져 오냐."는 말과 함께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내리치면서 "아 씨발 꺼져."라고 욕설하였다. 가해자는 2008. 2. 하순경 20:30경 및 같은 해 3. 초순경 20:30경 복도와 탈의실 앞에서 손가락을 튕겨 피해자의 귓불을 폭행하였다.

(2) 가해자 한○○은 같은 부대 운전병으로 2007. 12. 중순경 시간불상경 ○○ ○○○구 ○○○에 있는 ○○○○은행 앞 길가에서, 어떻게 변제하겠다는 말없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원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 가해자는 2007. 12. 중순경 시간불상경 ○○ ○○○구 ○○○○에 있는 ○○캐피탈 앞에서 피해자에게 일명 "피보기게임"(가위바위보를 하여 지는 사람이 과자를 사기로 하였는데, 가해자 본인이 지면 게임을

다시하고 상대방인 피해자가 지면 과자를 사게 함)을 하자고 하여 20,000원 상당의 과자를 구입케 하였으며, 2007. 12. 하순경 시간불상경 ○○ ○○○에 있는 ○○○○ 당사 앞에서 피해자에게 5,000원 상당의 공중전화 카드를 사달라고 하여 받은 뒤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3) 가해자 이○○, 김○○은 2008. 3. 29. 20:20경 부대 세면장 앞 복도에서 샤워를 하러 뛰어가다가 미끄러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무릎으로 치게 되었는데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십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구타하였다. 가해자들은 2007. 1.부터 2007. 4.까지 숙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쥐고 중지를 내밀어 새의 부리모양을 만들어 피해자 턱 부분을 수회 구타하였다.

(4) 가해자 유○○은 2008. 3. 2.부터 30.까지 시간불상경 4생활실에서 군기를 잡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후임대원들에게 "바닥돌리기"(생활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치약을 짜서 바닥에 떨어뜨린 뒤, 걸레로 바닥을 문질러 닦는 행위)와 "걸레짜기"(걸레를 세탁하여 바닥에 펼쳐놓고 까치발을 하고 쪼그려 앉아 솔을 이용하여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걸레를 한쪽방향으로 쓸어내는 행위)를 시키라고 지시한바 있다.

(5) 해당 부대에서는 후임대원들이 "바닥돌리기" 또는 "걸레짜기"를 할 때 선임대원들이 뒤에서 발로 차 후임대원들이 중심을 잃고 쓰러진 일이 있으며, 선임대원들이 후임대원들에게 "땡겨"(양반다리 형태로 앉아 목을 뒤로 제치고 팔은 앞으로 쭉 내미는 자세)와 "잠깨스"(버스 안에서 휴식 중 의자에 등을 기대지 않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대기하는 자세)라는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 부대는 대원들간에 비공식적 계급구조(막내→쫄짱→받대기→바짱→챙)를 만들어 선임대원이 후임대원의 기율을 잡는데 악용하고 있었으며 이 구조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예를 들면, 수경을 중간기수인 일명 "받대기"로 취급하여 휴식시간에 생활실에서 책을 못 보게 함)으로 확인되었다.

다) 부대측 간부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1) 피해자의 직속상관인 ○소대부관 김○○은 구타 등 자체사고 예방의 책임이 있는데도, 2007. 6. 20. 20:00경 ○생활실에서 동료대원 안○○이 한○○ 등을 상대로 "군기 좀 잡겠다. '바닥돌리기' 등을 빡세게 시키겠다."는 위법한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하였고, 2008. 3. 2.부터 같은 달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가해자 유○○이 피해자 및 타 대원들에게 "바닥돌리기"를 시키겠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하였으며, 2008. 4. 3.

14:30경 ○○ ○○역 주변의 기동버스 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이○○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며 "씨발놈, (내가) 내일 휴가를 안 나가면 죽여버리겠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감찰에서는 가해자들에 대하여 조사하여 영창 15일의 조치 및 타부대 전출조치를 하였다. ○○지방경찰청 ○○수사대는 이 사건을 수사하여 가해자들을 폭행 등의 혐의로, 소대부관 김○○에 대하여 직무유기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소대장 및 중대장 등에 대한 지휘·감독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또한 기동대장 ○○○ 총경은 이 사건 이후 구타·가혹행위 예방 등을 위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산하 ○○개 중대에 대하여 대원관리 실태를 점검 하는 중이라고 하였다.

3) 판단

가)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은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를 한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나) 전·의경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하여 관리자들의 부단한 지휘·감독과 면담 등의 노력이 필수적인데 이 사건에서는 관계 간부들이 이를 게을리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지휘·감독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지방경찰청장에게 구타·가혹행위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지휘·감독자에 대하여 지휘·감독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가-2.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중대(사건번호 08직인04)

1) 사건개요

가) 진정인: 서○○(가명)

나) 피해자: 김○○, 황○○, 안○○

다) 가해자: 서○○, 김○○, 김○○

라) 사건요지

진정인은 ○○지방경찰청 제○기동대에 근무 중인 자로서, 2008. 2. 11. 위원회에 피해자들이 선임대원들로부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

다. 그러나 진정인이 가명으로 확인되어 진정을 각하하고, 직권조사(사건번호 08직인04)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인정사실

가) 가해자인 선임대원 서○○은 피해자인 후임대원 김○○에게 진압복 등을 빨래하도록 시키고, 2007. 여름경 3소대 생활실에서 일·이경 10여명에게 "머리박아"를 시키고, 위 기합 중에 쓰러지면 관물대에 다리를 올리게 하여 넘어지면 다시 "귀잡고 엎드려"(일명 "귀뚜라미")를 총 40분 간 시켰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나) 가해자 김○○은 일자불상경 피해자인 후임대원 황○○ 및 타 대원들에게 고무줄을 늘여서 얼굴에 튕겨 맞추어 폭행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다) 가해자 김○○은 피해자인 후임대원 안○○ 및 타 대원들에게 평소 폭언과 욕설을 자주 하였고 훈련 중 잘못했다고 "선착순"을 시키고 목소리가 작으면 화를 내었으나, 폭행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라) 제○기동대 감찰은 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작하기 전인 2008. 2. 12. 자체 조사에서 가해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여, 2008. 2. 20. 가해자들에 대하여 불문조치 결정을 내리고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기재의 사실로 인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4) 소결

○○지방경찰청장에게 구타·가혹행위의 실질적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가-3.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중대(사건번호 08직인04)

1) 사건개요(사건번호 08진인1891)

가) 진정인: ○○○(피해자의 부친)

나) 피해자: ○○○

다) 가해자: 이○○, 이○○, 김○○, 신○○

라) 사건요지

위원회가 2008. 4. 3. 위 직권조사를 결정(사건번호 08직인04)하여 조사 중 2008. 5. 30. 같은 부대에 관련된 진정(진정사실 발생은 2008. 3.경)이 위원회에 제기되었다(사건번호 08진인1891). 위원회는 이 사건을 위 직권조사 사건에 병합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해자 ○○○는 2007. 12. 27. 입대하여 2008. 2. 19.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중대에 배치되어 복무 중, 가해자인 선임대원들로부터 구타·가혹행위를 당해왔다. 진정인은 같은 해 4. 15. 11:00경 화장실에서 혼자 면도기로 왼쪽 손목을 자해하여 "내말 따위 아무도 안믿어."라는 내용의 혈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6. 면회 온 진정인에게 그 혈서를 보여주었으며, 같은 해 5. 22. 경찰병원 정신과에 입원되어 같은 해 7. 31. 퇴원후 통원 치료중이다. 피해자는 의병전역을 원하고 있다.

나) 가해자들의 가혹행위 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해자인 선임대원 이○○, 이○○은 2008. 3. 20. 14:30경 ○소대 버스 내에서 훈련을 잘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씹새끼", "좆같은 놈"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구타하고, 2008. 3. 22. 15:00경 ○소대 1생활실 내에서 피해자가 건성으로 대답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새끼" 등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2) 가해자 김○○은 2008. 3. 초순경 22:30경 ○소대 1생활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생활실로 들어온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에 눕게 한 후 "깨끗이 샤워했어?", "야 참기름 좀 가져와봐.", "남자는 군대 와서 이러면서 남자가 되는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기도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해 3. 초순경 15:00경 ○○ ○○○구 ○○○에서 근무를 하던 중 ○소대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구타하였으며, 같은 해 3. 20. 시간불상경 중대 훈련을 하던 중 구보를 하던 피해자가 대열에서 뒤처지며 뛰지 못하자 계속 뛸 것을 강요하며 피해자의 등과 뒤통수를 2~3회 구타하였다.

(3) 가해자 신○○은 2008. 3. 22. 19:00경 ○○중대 세면장에서 피해자에게 훈련을 잘 받으라고 교양하던 중, 피해자가 짝다리를 짚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다) 부대측은 2008. 4. 15. 가해자 이○○, 이○○에 대하여 공적제재 하였으나 피해자가 추가 피해사실을 고지하여, 재조사를 통해 가해자들에 대하여 1차 지휘·감독자인 ○소대부관은 계고, 2차 지휘·감독자인 ○소대장에 대하여는 특별교양 조치를 하고, ○○ ○○경찰서에 형사고발 하였으며, 위 경찰서는 2008. 7. 20. ○○ ○○지방검찰청에 이 고발사건을 송치하여 현재 수사 중(2008형제50773)이다.

3) 판단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구타·가혹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지휘·감독자가 구타·가혹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부단한 지휘·감독과 대원들과의 면담 등의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가해자들의 구타·가혹행위 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피해자의 상태 및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병전역 심의를 할 것과 구타·가혹행위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 ○○경찰서 가혹행위 사건(사건번호 08직인05)

1) 진정개요

가) 진정인: 익명
나) 피해자: ○○○
다) 가해자: 이○○
라) 사건요지

익명의 진정인은 2008. 1. 14. 위원회에 대하여 ○○○○경찰서 방범순찰대 선임대원들의 후임대원들에 대한 구타·가혹행위가 심하므로 조사를 원한다는 진정을 하였다.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고 직권으로 조사하기로(사건번호 08직인05) 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2007. 10.경 입대하여 같은 해 12. 7.부터 근무하면서 가해자로부터 수시로 구타·가혹행위를 당해오다 2008. 2. 초순경 이를 부대측에 알려 자체 조사를 받고 현재는 ○○ ○○경찰서에 근무 중이다.

나) 가해자는 피해자의 선임대원으로 2008. 1. 중순경 오후경 방범순찰대 세면장 내에서 피해자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삐리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폭행하고, 같은 달 중순경 23:00경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군가, 부대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 암기사항을 1시간 30분 가량 암기한 후 검사를 받도록 하고, 같은 달 29. 세면장 내에서 "야 이 삐리한 새끼야. 눈깔이 그 지랄 하니까 쳐 맞는 거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4회 폭행한 후,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5~6회 폭행하였고, 물피티(소대원들이 출동하여 마시는 페트병 40여개 분량의 물을 취침시간에 정수기를 통하여 받도록 하여 결국 취침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시킨 사실이 있다.

다) 해당 부대는 전 대원이 부대 대기하는 날에 대원 고충면담을 실시하는데, 후임대원들이 면담하고 있다는 것을 선임대원들이 알 수 있는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후임대원들의 면담 시간이 길어지면 구타·가혹행위 등의 피해사실을 직원에게 말하는 것으로 의심 받아 대원들에게 왕따가 되기 쉽기 때문에, 고충면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 해당 부대는 위원회 조사전·후로 위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소대장, 소대부관 및 당직자에 대하여 계고 등의 처분을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영창 및 전출 조치하였다.

3) 판단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부대는 위원회 조사를 계기로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여 내부 부조리를 다수 해소하였다고 하나, 선임대원들이 후임대원에게 물피티 및 암기사항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상존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소결

○○지방경찰청장에게 물피티, 암기사항 강요 등의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다. ○○ ○○경찰서 가혹행위 사건(사건번호 08직인06)

1) 사건개요(사건번호 08진인0912)

가) 진정인(피해자): 김○○

나) 가해자: 이○○

다) 지휘·감독자: 중대장 김○○, 행정소대장 김○○, 소대장 강○○, 소대부관 강○○, 당직소대장 이○○

라) 감찰조사자: 부청문관 ○○○, 조사담당자 ○○○, ○○○

마) 사건요지

진정인은 2008. 3. 20. 위원회에 진정하였는바(사건번호 08진인0912), 위원회는 이를 위 직권조사 사건(사건번호 08직인06)에 병합하여 조사하기로 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해자 김○○은 2007. 9. 13. 군 입대하여 2007. 11. 2. ○○ ○○경찰서 방범순찰대에 배치된 후, 같은 달 3. 가해자로부터 "소대를 떠나 취사병을 지원했다가 다시 돌아왔으니 한 달 동안 웃고 다니지 말라."는 부당한 지시 등을 받았고, 2008. 1. 31. 20:00경 생활실에서 피해자의 보호수경(신임대원의 조기적응 유도역할)인 최○○의 로션을 찾아내지 못해 가해자로부터 화장실로 불려가 "왜 니가 아버지 물건을 적극적으로 찾지 못하냐?"는 질책을 당하고, 다음 날인 2. 1. 세면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대원들은 전날 밤에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있었던 위 사건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가혹행위인 "미싱"(가-1.사건의 "바닥돌리기"와 유사한 것으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앞으로 전진하며 솔을 한쪽방향으로 돌리며 바닥을 청소하는 방법)을 당하며, "이게 다 김○○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 새끼 너 빨리 안해?"라는 욕설을 듣게되어, 그 순간 피해자는 위 경찰서를 뛰쳐나와 같은 날 13:20경 위 경찰서 앞 도로로 뛰어들어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

나) ○○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2008. 2. 1. 사고당일 사고 직전 피해자와 함께 "미싱"을 하였던 대원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미싱"을 한 장소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나무란 사실 및 사고 전날 밤 가해자가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 질타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관계자에 대한 아무런 문책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같은 부대 대원인 이○○, 이○○, 조○○은 부대 자체 조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를 화장실로 불러낸 사실을 목격하거나 들은바 없다고 하였으나, 위원회 조사에서 가해자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나무란 사실이 있고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3) 판단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웃지 말라는 부당한 간섭을 하고 화장실로 불러내어 질타하고, 임의로 대원들을 집합시켜 "미싱"이라는 가혹행위를 하며 욕설을 한 사실은 피해자가 충동적으로 밖으로 뛰쳐나가 버스에 충돌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을 조사한 ○○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피해자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 가해자가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내어 질타한 사실 및 피해자가 버스와 충돌하기 직전에도 세면장에서 "미싱"을 하면서 욕설 등을 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결과 대원들은 대부분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이 사실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대를 관리하는 간부 및 조사를 관장하는 감사부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면서 사건을 축소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 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지방경찰청장에게 구타·가혹행위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과, ○○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조치하게 할 것과 지휘·감독자와 감찰조사 관계자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 보호수경 제도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라. ○○ ○○경찰서 구타·가혹행위 사건(사건번호 08직인07)

1) 사건개요(사건번호 08진인0313)

가) 진정인: 김○○(피해자의 모친)
나) 피해자: ○○○(○○경찰서, 現 ○○경찰서 근무중)
다) 가해자: ○○○ 등
라) 지휘·감독자: 경비계장 ○○○, 전·의경담당 이○○
마) 감찰조사자: 부청문관 이○○, 조사담당자 ○○○
바) 사건요지

진정인은 2008. 1. 25. 청와대에 제기한 민원이 위원회로 이첩되어 진정으로 접수(사

건번호 08진인0313)되었고, 위원회는 이를 위 직권조사 사건(사건번호 08직인07)에 병합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2007. 11.경 입대하여 2007. 12. 7. ○○ ○○경찰서 경비교통과에 배치되어 가해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를 당하다 2007. 12. 26.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말하여 부대에서 조사를 받고,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았으며, 현재는 경기 ○○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다.

나) 가해자들의 가혹행위 사실을 살펴보면

(1) 가해자인 선임대원 ○○○는 2007. 12. 10. 11:00경 무기고에서 피해자가 생활실 정돈을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정강이 등을 폭행하고, 같은 해 12. 14. 19:00경 외부에 있는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많이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턱을 폭행하고, 같은 해 12. 21.부터 26.까지 생활실에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밟고 머리를 폭행하였으며, 샤워장에서 평소 동작이 빠르지 못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에 물을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폭행하였고, 헬스장에서 운동 중 피해자의 숨소리가 크다고 따귀를 때리고, 줄넘기를 멈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명치 등을 폭행하였다.

(2) 가해자 ○○○은 2007. 12. 15. 15:00경 세면장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및 얼굴과 가슴을 폭행하고, 같은 해 12. 20. 21:00경 생활실에서 피해자가 침구를 잘 펴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폭행하고, 같은 해 12. 22.부터 24.까지 생활실에서 피해자의 양반다리를 한 다리의 높이가 다르다고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라가 발로 밟고, 휴지걸이가 삐뚤어져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복부를 폭행하였으며, 휴게실에서 피해자의 가슴, 머리 및 얼굴을 폭행하였고 같은 해 12. 26. 08:30경 생활실에서 피해자가 서장의 컴퓨터를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폭행하였다.

(3) 가해자 ○○○은 2007. 12. 11. 19:00 생활실에서 피해자의 휴식군기가 빠졌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폭행하고, 같은 해 12. 17. 19:00경 "도로교통법 규정을 외우지 못하면 각오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폭행하고, 같은 해 12. 20. 16:00경 생활실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벽에 붙어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복숭아뼈와 정강이를 폭행하고, 같은 해 12. 23. 21:00경 대답할 때 정자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폭행하였다.

다) 해당 경찰서에서는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요구 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는, 2008. 1. 10. 징계결정(관리자 이○○ 계고, 가해자 ○○○ 영창5일, 가해자 ○○○ 영창 5일, 가해자 이○○ 근신 5일) 하였으며, 수사과에 수사의뢰 조치한 뒤, 수사과는 2008. 2. 21. ○○지방검찰청 ○○지청에 이 사건을 송치하였다(가해자들은 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짐).

라) 조사과정에서 경비계장이 대원 교육시 "스무살 넘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모두 일러바치고, 수첩에 적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니 아버지가 나를 옷 벗기려고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경비교통과 조사 및 감찰조사시 부대측은 피해자 환부를 사진촬영한 사실이 없고, 가해자에 대한 자체 징계과정에서 징계간사인 부청문관은 징계위원이 피해자의 상처의 정도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상해로 전치 3주 진단이 나온 피해자의 상태를 경미한 찰과상이라고 보고하였다.

3) 판단

가)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구타·가혹행위를 한 것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관한 재판이 종결되어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조사과정에서 경비계장이 대원들을 교육하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간접적으로 지칭하며 "부모에게 일러바치는 사람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 감찰조사에서 피해자의 환부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의 환부에 관하여 찰과상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축소 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가해자들의 가혹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되었으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각하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구타·가혹행위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과 특히, 라.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경비계장 및 감찰조사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하게 할 것을 권고한다.

마. ○○ ○○경찰서 의경 가혹행위 사건(사건번호 08직인08)

1) 사건개요(사건번호 07진인4333)

가) 진정인: 이○○

나) 피해자: 이○○(진정인의 아들)

다) 가해자: 최○○ 등

라) 지휘·감독자: 경비계장 ○○○, 전·의경 담당자 ○○○

마) 사건요지

진정인은 2007. 11. 5. 위원회에 진정하였는바(사건번호 08진인4333)위 직권조사 사건(사건번호 08직인08)에 병합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2006. 3.경 입대하여 2006. 5. 19. ○○경찰서 기동타격대에 배치되어 선임대원들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 등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2007. 5.경 의병전역 처리되어 현재까지 치료중이다.

나) 가해자인 선임대원 최○○은 피해자가 평소 근무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소를 똑바로 하지 않으며, 암구호를 외우지 않아 생활실에서 수시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새끼, 저새끼"라고 욕을 하였다. 2006. 8.경 주차장 뒤편에서 피해자의 제안에 의한 소위 "맞짱"이라는 피해자와 가해자 쌍방간의 폭행사건이 있었다.

다) 가해자인 선임대원 ○○○은, 피해자가 내무생활을 잘못하는 행동을 보이면 피해자에게 "야 임마! 이 새끼야! 너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냐?"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질책하였다.

라)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가해자인 선임대원 ○○○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폭행하고 목을 감아 졸렸다고 주장하나 가해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마)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진정인의 진정을 접수받아 수사과에 수사의뢰 하였고, 수사과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지휘를 받아 가해자의 가해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바) 피해자가 해당경찰서 근무시 경찰서측은 전·의경 담당을 서로 미뤄 서무를 겸직하던 자가 전·의경 관리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가해자 최○○ 간의 쌍방폭행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생활실내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 등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이들을 형식적으로 화해시킨 후 사건을 종결시켰고, 피해자가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진료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근무환경이 더 열악(4명이 3교대 근무를 하며, 1주일 1회 정도 정식 야간수면을 함)한 인근 초소근무로 피해자를 발령하였다.

사) 피해자에게 정신적 이상증세가 있음을 인지한 진정인은 경찰서측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병원치료 등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서측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줄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전역신청에 동의해 줄 것을 종용하여 진정인의 동의에 의하여 피해자는 2007. 4.경 직권면직된 후 현재 정신과 통원치료 중이다.

3) 판단

가) 가해자 ○○○, ○○○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해당 경찰서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폭행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폭언 등을 들은 것은 사실로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

나) 전·의경 담당자는 선·후임대원 사이의 폭행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원들간의 추가적인 갈등 및 문제에 대한 확인이나, 추가적인 사고 예방활동 등을 하지 않았고, 대원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정신과 진료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근무환경이 더욱 열악한 초소로 배치하고, 더구나 치료 중에 직권면직을 종용한 것은 피해자에게 보장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가해자들의 가혹행위 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가 종결된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고, ○○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구타·가혹행위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과 초소근무자의 휴식시간 보장 등 근무환경 개선 및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전·의경 담당자 및 경비계장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바. ○○ ○○경찰서 간부의 폭행사건(사건번호 08직인09)

1) 사건개요

가) 진정인: 익명

나) 피해자: 이 ○, ○○○
다) 가해자: ○○○, ○○○
라) 사건요지

익명의 진정인은 2008. 4. 2. ○○ ○○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피해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구타·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다.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고 직권으로 조사하기로(사건번호 08직인09)하였다.

2) 인정사실

가) 가해자 ○○○는 해당 부대 소대부관으로서 2007. 12.경 부대 간담회가 있던 날 당직을 서면서 대원들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생활관을 방문해 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이 설 등의 뺨을 1회씩 때렸다.

나) 가해자 ○○○은 피해자 ○○○에 대하여 2008. 4. 2. 10:00경 행정반 및 5층 체력단련실에서 압수된 핸드폰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심한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5회, 목을 3회, 낭심을 1회, 머리를 3회 폭행하고, "엎드려 뻗쳐"를 20여분간 시켰다.

다) 부대측은 2008. 4. 17. 가해자 ○○○에 대하여 견책 및 타부서 발령하였고, 가해자 ○○○에 대하여 감봉 1개월 및 타서 발령 처분하였다.

라) 해당 부대는 최근 선임대원이 후임대원에 대하여 "딱밤" 150대 폭행, 설탕물 취식 강요, 경찰단봉으로 머리를 50여회 폭행하여 해당 선임대원이 영창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판단

가해자들의 위 구타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라)기재 사실의 해당 선임대원은 해당 후임대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지방경찰청장에게 간부들의 대원들에 대한 구타·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사. ○○지방경찰청 ○○기동대 성추행 사건(사건번호 08직인10)

1) 사건개요

가) 진정인: 익명

나) 피해자: ○○○, ○○○, ○○○ 등

다) 가해자: 이○○

라) 사건요지

익명의 진정인은 2008. 4. 16. 위원회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성희롱 등을 당하고 있으니 조사를 원한다는 진정을 하였다.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고, 직권으로 조사하기로(사건번호 08직인10) 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해자 ○○○는 입대하여 생활 중 2008. 2.경 생활실에서 가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수치심에 부대를 떠나 생활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으며, 또 다른 피해자 ○○○, ○○○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다.

나) 가해자인 선임대원 이○○은 피해자 ○○○에 대하여 2008. 2.경 생활관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피해자가 지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사타구니 안쪽에 볼펜으로 5cm 크기의 여자 성기모양의 그림을 그린사실이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 ○○○에게도 일자불상경 몸에 그림을 그려준다고 제안한 후 피해자 ○○○의 낭심 부위에 여자 성기모양의 그림을 그린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 ○○○에 대하여는 2008. 2.경 생활관에서 치약을 짜서 피해자 ○○○의 엉덩이에 바른 사실이 있고 2008. 3.중순경 21:00경 생활관에서 손으로 피해자 ○○○의 얼굴을 폭행하여 안경을 파손한 사실이 있으며, 2008. 2. 초순경 기동버스 내에서 훈련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의 머리를 2~3회 때린 사실이 있다.

다) 부대측은 가해자에 대하여 영창 15일 처분을 하고, 지휘·감독자에 대하여 계고 등의 조치를 하였다.

라) 해당부대에서는 최근 선임대원이 점호시 구령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후임대원의 얼굴을 10여회 폭행한 사건, 선임대원에게 불손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후임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가해 선임대원들을 영창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판단

가) 가해자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게 한 후 여자 성기모양의 그림을 그린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수치심 및 거부감을 느끼기에 충분하고,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보장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이에 대한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가해자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되나 피해자들이 더 이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해당 부대에서 지휘·감독자에 대한 지휘·감독책임을 물었는바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지방경찰청장에게 성추행 행위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3. 위원회의 기존 권고에 따른 경찰청 이행사항

위원회는 2007년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제도개선 권고"를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경찰청이 이행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부 항 목	이 행 사 항
과도한 출동 최소화	주 5일제 도입	근무시간 총량제시행(2007. 6. 13.)
	휴일 사전예고제 시행	전·의경 적정근무시간 지정시행(2007. 6. 13.)
	과다 출동 통제시스템 마련	전·의경 근무관리 시스템 시행(2007. 8. 6.)
복무부적합자 및 부적응자 관리 실효성 대책 마련	부적합자 입대전 실질적 검진체계 마련	전경-병무청에 임상심리사 11명 채용(2007. 4.) 의경-정신과 전문의 심사관 참여제 시행(2007. 3.)
	부적응자 관리 매뉴얼 마련	부적응자 관리요령 상세화 작업 검토 진행중
	경찰병원진단서직권면직서류 인정	병무청과 협의사항으로 검토중임
	직권면직 심사단계 축소	첨부서류 16종에서 8종으로 간소화(2007. 8.)
	전문심리상담제 도입	여경 인권상담관 배치 등 진행중
내무생활문화 개선 등	내무생활 운영매뉴얼 마련	신임대원 길라잡이 발간 및 배포 등 진행(2007. 5.)
	전·의경 관리요원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기동업무수당 신설 등 처우개선책 검토중
인권침해 구제 시스템 개선	소원수리제도 실효성 확보	사이버 소원수리 진행 등
	외부기간 진정권 보장	군인과 달리 도심에 근무하고 있고 외출외박이 많아 외부기관 진정권 제한되지 않음
인권교육 강화	인권교육 실질적 시행	인권강사단 구성 2007년 133회 1.6천여명 실시
	정훈교육에 인권교육 반영	전투경찰순경관리규칙 개정으로 수용함(2007. 9.)

구 분	세 부 항 목	이 행 사 항
의료권 보장	공익의무관 및 의무실 배치	경찰병원 및 협력병원으로 양질의 외부진료 가능
	전·의경 국군병원 활용	〃
	외부 전문병원 의료비 지원	경찰병원 100%, 민간병원 촉탁 및 공상시 100%
	민간 상해보험제도 도입	보험사측 거부
생활실 등 시설개선	노후건물 단계적 시설개선	2008년도 68억 예산확보 시행중
	침대형 생활실 도입	
식사 및 교통비 현실화	식당에 영양사등 배치	예산낭비 문제, 교육이수자 활용중
	급식비 상향조정	2008년 5,000원→5,186원 증액
	전·의경 TMO 적용	군에서 불허 여비 현실화 검토 중
가해자 신상 필벌 등	구타자 형사고발 정례화	전투경찰순경 관리규칙 개정으로 수용(2007. 9.)
	구타 및 사망사건 상급부대 조사	2007년부터 형사입건 처리하고 있음
	사고 없는 부대 인센티브 부여	사고 없는 부대 부대격려금 지급 등 예정
징계제도 합리화	전·의경 영창제 폐지	위헌성 인정하나 현실적 대안 고민 중
	징계대상자 항고권 부여	전투경찰순경 관리규칙에서 인정
	지휘·감독자 획일적 문책 완화	자체 적발시 감경조치 하고 있음.

4. 종합판단

가. 구타·가혹행위 발생원인에 관하여 위원회가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왜곡된 조직문화

많은 간부 및 선임대원들은 부대내 기강 및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참대원 및 후임대원들에게 최소한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원들간의 공식적 계급구조가 아닌 비공식적 계급구조를 만들어 이를 선임대원들이 후임대원의 기율을 잡는데 악용하고 있었으며 이 구조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주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가-1.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중대 사, 다. ○○ ○○경찰서 가혹행위 사건 등).

사건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왜곡된 조직문화에 익숙해진 가해대원들은 특별한 죄책감 없이 자신의 행동이 부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가-2., 3.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사건), 또한 신입대원의 조기 부대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보호수경"제도가 실질적으로는 신입대원이 선임대원의 물품을 챙기고 사역을 하는 등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다. ○○ ○○

경찰서 가혹행위 사건).

2) 형식적 부대관리

부대관리에 전념해야 할 간부들이 잦은 인사이동 및 시험 준비 등으로 부대관리에 전념치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하여 간부들은 선임대원이 부대를 지휘하는 것을 선호하고 이 과정에서 선임대원에 의한 후임대원에 대한 업무지시와 폭언 등이 일부 묵인되고 있었다(가.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사건 및 나. ○○ ○○경찰서 가혹행위 사건)

이러한 부대관리 체계에서 간부들은 후임대원들과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면담을 하고 있지 않아 구타·가혹행위 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가.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사건 및 나. ○○ ○○경찰서 가혹행위 사건). 또한 구타·가혹행위가 발생하면 일벌백계하여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이를 자체적으로 종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다. ○○ ○○경찰서 가혹행위 사건, 라. ○○ ○○경찰서 구타·가혹행위 사건 등).

3) 시위진압 등 격무로 인한 피로누적

대원들은 출동이 잦고 언제 휴식할 수 있을지 몰라 심신이 많이 지쳐 있다. 이로 인해 대원들의 외출, 외박이 통제되면서 이에 스트레스가 심한 선임대원들이 후임대원들을 제재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여가활동 없이 부대에 대기하면서 예기치 못한 성추행 사건 등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가.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사건, 사. ○○지방경찰청 ○○기동대 성추행 사건).

4) 간부들의 대원들에 대한 존중의식 부족

간부들은 대원들에 대하여 대부분 "야"라고 부르고 있다. 위 호칭에는 아무런 인격적 대우나 존중의 의미가 없어 부대원이 아닌 하나의 부하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이러한 의식에서 대원들이 간부에 대한 결례가 있으면 이를 용납하지 못하고 폭행으로 표출된 사례도 조사되었다(사. ○○ ○○경찰서 간부의 폭행사건).

5) 그 밖에 40여명이 함께 사용하는 생활실 등 근무환경의 열악함 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다. ○○ ○○경찰서 가혹행위 사건 등).

나. 위와 같은 원인을 검토해본 결과,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안은 경찰 지휘부, 전·의경 관리 담당자 및 관계자들이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구타·가혹행위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을 정례화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원들이 원활한 구타·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창구마련 및 이를 활성화 할 것과 최근 들어 문제시 되고 있는 성희롱 및 성폭행 예방교육이 더불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국방부에서는 2007년 군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군인권교육 규정 및 성희롱 및 성폭행 예방지침 등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군대내 사건·사고는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아울러 위원회가 2007년에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제도 개선 권고"를 실시하여 경찰청 측에서 많은 제도개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제도 및 규정의 미비보다는 경찰 지휘부 및 간부들이 관련 규정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고, 전·의경 당사자 및 실제 전·의경을 관리하는 실무자들의 의식의 전환을 위해 정례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전·의경 인권상황 및 관련 제도·관행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45조 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 및 일부 지방경찰청장들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8. 9. 8.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위 원 최경숙〈불참〉 위 원 유남영 위 원 문경란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위 원 황덕남 위 원 조국〈불참〉 위 원 최윤희

12 10진정2135 [군대 내 사망으로 인한 인권침해] 2010. 8. 23. 결정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한 사례

▌결정요지 ▌

[1] 부대 대대장 중령 이○○, 중대장 신○○, 소대장 중위 이○○ 등 지휘관(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신상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와 이하 분대장 병장 조○○ 등 10여 명의 소속 부대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언 등의 부적절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로부터 보호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의 사망사고에 상당한 정도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써, 이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및 같은 규율 제24조 제3항(고충처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병간의 폭언 등 부당한 사적 제제 금지와 이에 대한 지휘관 및 상관의 지도·감독 및 부하의 고충 파악·해결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2] 현행 군의 각 법령은 비전공사망으로 분류되는 자살 사고자의 경우 공상인정과 보상체계가 대단히 열악한 현실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속 부대장 등의 관리부실 및 소속 부대원들의 폭언 등 가혹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끼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등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 등 관련 소송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참조조문 ▌

「헌법」 제12조, 「군인복무규율」 제15조 및 제24조 제3항

▌ 진정인 ▌ 송○○(피해자의 아버지)

▌ 피해자 ▌ 故 송○○

▌ 피진정인 ▌ 임○○

▌주 문 ▌ 1.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2. 진정요지 중 사건은폐 및 편파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2010. 4. 14. 07:55경 전방 철책선 경계근무 중, 원인불상의 총기사고로 가슴 2발, 허벅지 1발, 손가락 1발의 총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유서가 없고 피해자가 사망 직전 가족과 일상적인 통화를 하였으며 다수의 총상을 입은 것으로 볼 때, 소속 부대원에 의한 타살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은 겉으로는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하나 사건 은폐 및 편파수사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동수사과정에서부터 참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의 보장 및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본인은 제○군단 헌병대장으로서, 본 총기사망 사건의 수사지휘를 총괄하였는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 초기부터 현장감정 및 부검과정에 유족을 입회시켰다. 특히 부검과정에는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팀의 집도 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부장 서○○ 박사를 입회시켰으며, 공개적으로 중간수사결과 및 최종수사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진정인 등 유족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명하고 최대한 보완수사를 하여 2010. 7. 9. 제○사단 헌병대에서 관할 검찰단에 사건을 이송하도록 지휘하였다. 수사 초기부터 타살, 자살, 안전사고 등 제반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 가능성에 대한 원인 및 동기를 파악하고자 총기, 피복 등 현장 증거물에 대한 감정의뢰, 다 연발 및 오발 가능성 확인을 위한 총기 발사시험, 동반근무자 및 지휘관계자에 대한 거짓말탐지 및 최면조사, 민간인 목격자 탐문조사, 수사촉탁, 알리바이 수사, 현장수색, 사이버 및 통신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총 동원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던 것으로 진정인 등 유족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자살을 예단하여 조사하거나 이를 상부에 보고한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제○군단장이 제출한 중요사건 보고서(1보~15보), 제○군단 헌병대 수사경과 브리핑 자료 및 최종 수사설명회 자료, 피해자 생활지도기록 및 新인성검사 결과자료, 동반근무자인 상병 홍○○ 및 이병 김○○의 진술조서 및 진술서, 부소초장 중사 김○○ 등 부대관계자들의 진술조서 및 진술서, 민간인 목격자 ○○의 진술조서, 현장검증 및 사체검안 시 촬영한 사진자료, 비리행위자 징계자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소속 부대원 47명에 대한 설문조사자료 및 실지조사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9. 12. 15. 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고, 2010. 1. 22. 제○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로 전입되어 같은 해 4. 1. 일병으로 진급하여 위 소대 유탄수로 복무하다가 2010. 4. 14. 05:30경부터 08:00경까지 ○○도 ○○군 ○○읍 ○○리 소재 위 부대 ○○○초소(GOP)에 상병 홍○○ 및 이병 김○○와 GOP 주간경계근무조로 투입되어 초소 외부에서 대공 및 측방 경계근무 중, 같은 날 07:55경 가슴 등 4개소에 K-2 소총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다.

나. 당시 ○○○초소 내에 근무하던 상병 홍○○는 총성 약 4발(연발)을 청취한 직후, 위 초소 창문을 넘어가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고 지혈 등 응급조치를 하고, 2010. 4. 14. 08:01경 이병 김○○는 인터컴으로 초소 상황실에 보고하였다. 동 보고를 받은 부소초장 중사 김○○은 같은 날 08:03경 후번근무자 본부분대장 등 4명과 함께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고 총기의 조정관을 안전에 위치시키는 한편, 이병 김○○에게 신속히 인터컴으로 구급차를 요청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어 같은 날 08:12경 대대 군의관 중위 이○○이 현장에 도착하여 지혈 등 응급조치를 하며 구급차량으로 사단 의무대로 긴급 후송하였다. 같은 날 08:40경 사단 군의관 대위 이○○이 피해자에게 강심제를 투여하고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같은 날 09:15경 사단 구급차량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하며 국군○○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하여 재차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같은 날 11:03경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동 병원 군의관이 확인하였다.

다. 사건발생 직후 제○군단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속 군단 헌병대장인 피진정인을 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여 사건수사를 총괄 지휘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육군수사단 광역수사대 제○지구 수사대에 현장감식을 의뢰하여 2010. 4. 14. 16:50~21:30 진정인 등 유가족 3명을 입회시킨 가운데 현장감식을 실시하고, 같은 달

16. 15:45경~16:20 유가족 3명이 동반근무자 상병 홍○○ 등 6명을 대상으로 개인면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같은 달 18.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을 피해자의 숙부 등 유가족 2명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부장 서○○, 그리고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총기감식과장 임○○을 입회시킨 가운데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군의관 대위 최○○의 집도 하에 실시하였다. 또한 유가족과 합의하에 같은 달 19. 08:30경 국군○○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룬 후 같은 날 11:50경 ○○화장장에서 화장하고 피해자의 유골을 제○군수지원사령부 ○○보급대대 제○봉안소에 봉안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총기, 피복 등 현장 채취 증거물에 대한 감정, 총기 '앙등현상', 다연발 및 오발 가능성 확인을 위한 총기 발사시험을 국방과학수사연구소(ADD)에 의뢰하고, 동반근무자 등 핵심참고인들을 대상으로 거짓말탐지조사 및 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휘관계자, 민간인 목격자 탐문조사, 관계기관 수사촉탁, 부대원 전원에 대한 알리바이 조사, 사이버 및 통신수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분대장 이상 지휘자(관)들을 대상으로 신상관리 및 지휘감독 소홀 여부 및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부당하게 폭언 및 질책을 가한 상병 홍○○ 등 10여 명의 소속 부대원들에 대한 병영부조리를 적발하는 등 타살, 자살, 안전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 요인별 사망원인 및 동기수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0. 7. 1. 진정인 등 유가족 및 외부전문가들이 입회한 가운데 "피해자가 GOP투입 전 소속대로부터 정밀한 신상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되었고, 평소에도 지휘관(자)으로부터 특별관리가 되지 않았으며, 선임병 등으로부터 욕설, 질책 지적을 자주 당해 오던 중, 근무지(○○○초소)에서 탄창교체 결합, 장전 등 안전조치를 해제하고 방아쇠울을 오성신호탄 손잡이에 걸어 스스로 격발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동 수사결과를 직할 수사기관인 제○사단 헌병대에 넘겨 2010. 7. 9. 관할 군 검찰단에 송치하였다.

마. 제○군단 헌병대의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소속 부대 대대장 등 지휘관(자)들과 선임 장병들의 지휘감독 소홀 및 폭언 등 비리행위에 대하여, 제○사단장은 「육군규정」 180(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대대장 중령 이○○에 대하여 2010. 6. 23. 서면경고, 중대장 대위 신○○에 대하여 2010. 6. 7. 보직해임 및 견책, 소대장 중위 이○○에 대하여 같은 날 보직해임 및 근신 7일, 중대행정보급관 상사 안○○에 대하여 2010. 6. 23. 견책 등 징계조치하고, 분대장인 병장 조○○ 등 다수의 선임 장병들에 대하여는 2010. 6. 3. 각 영창, 휴가제한 등의 인사 조치를 하였다.

바. 육군수사단 광역수사대 제○지구대 감식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국가인권위

원회의 사건현장에 대한 실지조사결과에 의하면, 사고 장소는 ○대대 ○초소 서북방 약 200미터 지점에 위치한 ○○○호 고가초소(2층 블록 슬라브, 가로 242㎝×세로 242㎝ ×높이 510㎝)로, 1층은 빈공간이고, 2층은 경계초소로 사용 중이고, 초소 남 방향에 출입문이 위치하고, 북 방향으로 개방형 청문, 서·동 방향으로 창문이 각각 있다. 북 방향 개방형 창문에는 초소 근무자 총기 2정(K-201 일병 송○○, K-2 상병 홍○○)이 북 방향을 향해 거치되어 있었고, 사고총기(K-2 이병 김○○)는 서남 방향 초소 난간에 있는 오색신호탄 발사대 3개 중 맨 좌측 발사대에 총기 멜빵이 고리가 걸린 상태로 조정간은 안전, 방아쇠울에 안전고임목이 연결된 채 발견(조정간 및 안전고임목은 소속대 부초소장 중사 김○○이 안전조치 차원에서 사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총기에는 실탄 총 15발 중, 7발(예광탄 3발, 보통탄 4발)이 삽탄되어 있고, 난간 바닥에 탄두조각 5개, 변사자 전투조끼 및 요대 1개가 있으며, 피해자 발견 출입문 입구주변으로 다량의 혈흔이 있으며, 1층 바닥지면에 보통탄피 6개, 2층 오색신호탄 발사대 맨 좌측덮개 플라스틱 내에 보통탄피 1개 등 탄피 7개가 발견되었다. 이후 지면 풀숲에서 탄피 1개가 발견되어 총 8발이 발사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2층 난간지면에 3~4발의 탄착점이 발견되고, 이어 좌측 쇠 난간에 관통된 흔적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출혈이 뒤쪽 문 및 옆면 벽에 다수 발견되었다. 사체검시 및 검안 결과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의 전면 좌측 유두 상단 6㎝, 유두 하단 9㎝지점, 우측 대퇴부 부위에 각 1개소씩 삽입구(가로 0.7㎝×세로 0.7㎝) 총 3개소가 있고, 우측 엄지 손바닥 부위에 관통흔적 1개소가 있으며, 피해자 후면 좌측 등 부위 1개소, 후면 허리부위 1개소, 대퇴부 후면부위에 각 사출구 3개소가 발견되었으며 좌측 겨드랑이 주변에 내부 출혈흔적이 관찰된 것 외에 타인과 다투었다고 볼 만한 방어흔적 등이 관찰되지 않았다.

사. 제○사단 ○○연대 ○대대장 중령 이○○, ○중대장 대위 신○○, ○소대장 중위 이○○, 행정보급관 상사 안○○, 부소대장 중사 김○○, 본부분대장 하사 이○○, 부중대장 중위 문○○, 포반장 하사 홍○○ 등 지휘관 및 지휘자 8명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피해자에 대한 신상관리, 총기관리, 순찰 등 근무상황 대한 대면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신상관리 및 감독사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부대 전입 후 2010. 4. 1. 실시한 군 인성검사 결과 복무적합도 검사 결과에서 “부적응 위험으로 현재 정신과적 문제가 의심되고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며 군 생활에 어려움에 예상되고 자살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대장 중위 이○○이 이를 중대장 및 대대장에게 세부진단내용을 생략한 채 단순한 복무 부적응으로 보고하고, 피해자가 군 규정

상 GOP 근무 부적응 병사에 해당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배제 등 특별 관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GOP에 투입하였다. 피해자는 부대 전입 후, 상병 홍○○ 등 선임대원 10여 명에게 총 50여 차례에 걸친 질책 및 폭언을 지속적으로 들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대장 등 지휘관들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분대장 병장 조○○ 등은 상향식 일일 결산 시 병역부조리가 잔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지휘계통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기관리 및 경계근무 순찰업무와 관련하여, 대대장 등 군 지휘관들은 부대원들을 경계근무에 투입함에 있어 총기에 대한 관리의무를 철저히 교육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상병 홍○○, 이병 김○○ 등이 경계근무 중 유탄발사기 탑재 K-2 소총이 무겁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의 총기가 아닌 이병 김○○의 일반 K-2소총을 임의로 사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계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탄약을 관리함에 있어 총탄을 탄창에 삽탄 시 맨 위쪽에 예광탄 3발을 넣어야 하나 피해자가 맨 밑에 예광탄을 넣어 관리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고 장소인 ○○○초소의 외각벽면에 “죽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살려 줘”라는 비관성 문구가 적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고, 상병 홍○○에 의하면, 주간경계근무 중에는 대대장 이하 군 지휘관들이 한 번도 순찰하면서 근접하여 근무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 사고 당시 동반근무자 및 소대원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면조사 및 설문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동반근무자 상병 홍○○, 이병 김○○는 2010. 4. 14. 05:25경 ○○초소에 투입, 선임자인 홍○○는 전방감시를 전담하고, 후임자인 피해자와 김○○는 30분 단위로 외초근무를 교대하여 후방감시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소총(K-201 유탄발사기)이 무겁다는 이유로 소초 내 거치대에 거치시킨 뒤, 이병 김○○의 총기를 받아서 외초 근무를 하였다. 같은 날 07:55경 외초 근무지에서 ‘바바바방’하는 총성을 듣고 상병 홍○○가 초소 출입문을 열고 초소 밖으로 나가려는데 피해자의 하체에 출입문이 막혀있고, 바닥에 피가 보여 좌측 창문을 열고 나가 지혈 등 응급조치 및 상황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상병 홍○○는 평소 근무 중 피해자에 대해 질책 및 폭언을 다수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병 김○○는 자신의 총기를 피해자에게 건넬 시 안전장치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총기

를 단순히 건넨 것이며, 경계근무 시 상병 홍○○와 다투거나 기합을 받은 등 특별한 상황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고부대 소대원 상병 및 병장 24명, 일병 및 이병 23명 등 총 47명을 상대로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무기명 설문을 실시한 결과, 9명이 피해자에 대해 선임사병들이 업무소홀, 침낭 등 물건분실 등을 이유로 훈계차원에서 폭언 등 질책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고, 10명이 부대생활 중 본인의 경우 사적심부름, 폭언, 기합, 따돌림 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일정정도 음성적으로 사병 간 금지된 괴롭힘(일명 '갈굼')은 잔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판단

가. 피진정인의 사건축소 및 은폐 등 부당수사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타살가능성이 농후함에도 자살로 예단을 하여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려고 하는 등 부당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이 본 사건을 자살로 예단하여 제○군단장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수사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고, 타살, 자살, 안전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각 요인별 사망원인 및 동기수사를 실시하고, 진정인 등 유가족에게 수사과정 및 수사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피해자의 사망 전 행적, 내무반 생활 등 신상관계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본 건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의 사망원인과 지휘감독 의무 등 대하여

1) 직접적인 피해자 사망원인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으로 타살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동반근무자들에 대한 진술조사, 총기발사시험, 현장감식 및 부검결과 등에 의한 피해자의 사망위치 및 탄착점, 삽입구 및 사출구의 위치, 탄피가 발견된 위치, 혈흔의 분출 위치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소속대로부터 정밀한 신상관리 등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평소 선임병 등으로부터 욕설, 질책 등 지적을 자주 당해 그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심신불안 상태에서 GOP에 투입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그 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총기를 장전하고 조정간의 위치를 점사 등으로 변경하고, 방아쇠 안전고임목을 해체하는 등 3중의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이어 이병 김ㅇㅇ의 탄장을 빼고, 자신의 탄장(예광탄이 하단에 위치)으로 갈아 끼운 상태에서 총기의 방아쇠울을 오색신호탄 발사대 고리에 걸은 채, 총신을 잡아 당겨 최초 1~2발이 발사 된 후, 앙등효과로 인해 연속 발사되어 총기사출구가 지면으로 향하면서 차례로, 가슴 2발, 허벅지 1발, 철 난간 1발, 콘크리트 바닥에 4~5발 등 총 8발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건 당시 후방 약 240여 미터 지점에서 논두렁 포크레인 작업을 하던 민간인 참고인 ㅇㅇ이 "피해자가 혼자 있었고, 이어 총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나더니 피해자가 쓰러졌다."라는 목격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제3자에 의한 타살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수사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의 지휘감독 소홀 등 간접적인 사망원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지조사결과 및 제ㅇ군단 헌병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첫째, 피해자가 2009. 12. 15. 입대하여 2010. 1. 22. 사고부대에 전입하였을 때, 소속 부대 지휘관들은 신병교육대에서 피해자에 대한 군 인성검사에서 피해자가 상하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전반적인 적응에 어려움'이 있고 '우울증 증세(C급)'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병영생활지도기록부'상에 기재하여 소속 부대에 송부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신상파악을 소홀히 하여 특별관심사병으로 선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둘째, GOP 경계근무병으로 근무하려면, 제ㅇ사단의 관련교육 지침에 의거, 신입 이등병의 경우 총기·탄약 안전교육 및 경계근무 요령 등 집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또한 소속 중대에서 집체교육(3박 4일)후 소초에서 동화교육(2주간)을 실시하고 정밀면담을 실시하여야 하나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셋째, 이후 2010. 2. 28. 소속부대에서 실시한 피해자에 대한 육군 '新인성검사' 시에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왔으나 같은 해 4. 1. 실시한 결과에는 급격히 복무부적응 상태를 보이는 '복무부적합, 자살위험(B급)'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GOP 투입을 중지하고 재분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넷째,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 위험 증상이 피해자의 수동적인 근무자세 등으로 표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선임사병 10여 명이 지속적으로 폭언, 질책, 집합 등 일명 '갈굼'이라는 사적 제재를 가하여 피해자의 스트레스 등 심적 부담이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다섯째, 총기관리 및 순찰 등 복무관리에 있어서도 타인의 총기사용, 예광탄 등 총탄의 부실삽탄, 주간근무 시 순찰 미실시, 초소 외벽 내 비관적인 문구작성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시정하거나 예방하지 못하였던 점,

여섯째, GOP 경계근무의 특성 상 보초근무를 하는 장병이 항시 실탄을 휴대하는 관계로 지휘감독의 사각지대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현재 사고부대의 ○○초소의 근무 환경 상 초소 내 근무자와 외부 근무자와 벽으로 완전 차단되어 2~3인 1조 근무 수칙이 제대로 이행되기 힘든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속부대의 대대장 등 지휘관(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신병관리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선임병들의 폭언 등 가혹행위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고부대 대대장 중령 이○○, 중대장 신○○, 소대장 중위 이○○ 등 지휘관(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신상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와 이하 분대장 병장 조○○ 등 10여 명의 소속 부대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언 등의 부적절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로부터 보호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의 사망사고에 상당한 정도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써, 이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및 같은 규율 제24조 제3항(고충처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병간의 폭언 등 부당한 사적 제제 금지와 이에 대한 지휘관 및 상관의 지도·감독 및 부하의 고충 파악·해결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조치의견에 대하여

1) 피해자 소속 대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피해자 소속 대대장 등 관련자들의 지휘감독 소홀 및 피해자에 대한 폭언 등의 부당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정한 정도로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 책임이 작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바, 이들의 책임정도가 「형법」 상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힘든 가운데 위 인정사

실 마항과 같이 제○사단장이 위 대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미 징계 등 인사 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 등 유가족의 권리구제에 대하여

현행 군의 각 법령은 비전공사망으로 분류되는 자살 사고자의 경우 공상인정과 보상체계가 대단히 열악한 현실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속 부대장 등의 관리부실 및 소속 부대원들의 폭언 등 가혹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끼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등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 등 관련 소송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등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진정요지 중 사건은폐 및 편파수사 부분에 대하여는 위 같은 법 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황덕남 위 원 한태식

13 10진정4193 [군대 내 성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2010. 7. 23. 결정

국방부장관에게 본 진정사례를 전파·교육하고,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해군참모총장에게 피진정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의뢰하고, 해병대사령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보직조정 등 적절한 신변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

[1] 이 진정사건의 강제추행 행위는 동종의 남성이 자신의 신분적 우월성을 이용하여 신체의 내밀한 부위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혓바닥을 이용하여 타액을 전가시켜 혼용하게 하고, 은밀한 부위를 노출시키고 만지고 잡아 쥐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사회상규 및 일반인의 입장에서 받아들기 힘든 선량한 성도덕의 혼란을 일으킴과 동시에 인격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신체상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임.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상대방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함은 물론, 같은 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임

[2] 피진정인이 관사로 복귀하던 중 참모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명령과 위협으로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뽀뽀 해 달라. 안아 달라."며 신체접촉을 요구하다 강제로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핥았으며, 입술을 깨물고 빠는 등 키스를 하였고, "목욕탕을 가자, 키스를 해 달라."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차량 뒤 좌석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음경을 위아래로 흔들고 음낭을 조여 잡아 항거불능하게 한 상태에서 혁대를 풀어 옷을 벗기고 자신의 음경을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고 만지게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30여분 간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92조2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안전을 각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결정(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포함) ▌

헌법재판소 1990. 9. 20.선고 1989헌마82결정

▌참조조문 ▌

「헌법」 제10조, 제2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군형법」 제92조2

▌진정인 ▌황○○

▌피해자 ▌이○○

▌피진정인 ▌오○○

▌주 문 ▌1. 국방부장관에게 본 진정사례를 전파·교육하고,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해군참모총장에게 피진정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의뢰한다.

3. 해병대사령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보직조정 등 적절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4.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가. 피해자는 진정인의 아들로, 해병대제○○사단 참모장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2010. 7. 9.(금) 23:55경 참모장인 피진정인이 ○○소재 군 휴양소인 ○○회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모는 관용승용차를 타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뽀뽀 해 달라. 안아 달라."라며 신체접촉을 요구하였고, 강제로 피진정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핥고 입술을 깨물고 빠는 등 키스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만류로 간신히 위병소를 통과해 관사에 이르렀으나 피진정인이 또다시 피해자에게 "목욕탕에 가자. 키스를 해 달라."라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차량 뒤 좌석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음경을 위아래로 흔들고 음낭을 조여 잡아 항거불능하게 한 상태에서 혁대를 풀어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음경을 비비고 만지게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다.

나. 이에 피해자는 피진정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는 등 매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바 위 진정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하여 피진정인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의 권리구제를 해 주길 바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요지

1) 피해자는 2009. 12.부터 해병대제00사단 본부대대 운전병으로 근무하였으며, 2010. 7. 6.부터 피진정인인 참모장(5호차)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보직 명령을 받을 무렵 수송관 중위 정ㅇㅇ은 피해자에게 "참모장 조심해라. 참모장이 약간 이상한 기질이 있는 것 같은데, 너 병장 이ㅇㅇ를 아냐? 개 빨게 벗기고 안마시키고 주무른 적이 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려고 장난하는 줄 알았다.

2) 피해자는 2010. 7. 9. 21:05경 관용승용차량에 양주 한 박스 싣고 가서 ㅇㅇ회관에서 회식중인 피진정인에게 양주 3병을 전달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0. 7. 10. 00:40경 피진정인을 태우고 위 회관을 출발하여 관사로 귀대하던 중, 피진정인이 해병대제ㅇㅇ사단 제ㅇㅇ대대 인근 내리막길 노상에서 차량을 찻길 한 가운데 세우도록 지시하고 하차한 후 위 차량 뒤 도로바닥에 주저앉아 피해자를 옆에 앉히고 "우리 ㅇㅇ이 여자처럼 이쁘게 생겼네. ㅇㅇ아 나한테 뽀뽀 한번 해 줄래? 볼에다 말고 입에다 뽀뽀 해줘라."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사고를 걱정하고 차량에 승차할 것을 권유하며 머뭇거리자 피진정인이 자신의 입술에 뽀뽀하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그 위압에 눌려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하겠다며 가볍게 입술에 갖다대자 그 순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강압적으로 피진정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밀어 넣어 윗 이빨과 아랫 이빨을 훑고 빠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ㅇㅇ아 너 입술 너무 달콤한데, 우리 ㅇㅇ이 입술이 여자 입술처럼 얇아서 더 부드럽고 너 혀가 너무 맛있는 것 같다. 근데 우리 이러다가 게이나 호모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당황해 하며 여기는 위험한 곳이니 차량에 탑승하여 속히 귀대할 것을 권유하자 "차에 탈 테니 한번만 더하자, 아까 느껴봤던 것을 다시 느껴보고 싶다."라며 키스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뽀뽀만 할 것이냐고 하니까 그래 뽀뽀만 한다며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가 뽀뽀를 하자 피진정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누르고, 왼손은 피해자의 뺨을 잡아 강하게 밀착시켜 혀를 밀어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입을 굳게 다물자 피진정인이 이빨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어 입을 강제로 벌리도록 하고, 이에 혀를 넣어 입안을 핥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번갈아 가며 핥고 빠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

3) 이후 피해자가 피진정인을 간신히 밀쳐내고 부축하여 차량에 승차시킨 후 치밀어

오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참고 운전을 하여 ○○ ○○사거리 부근에 도착하였다. 이 때, 피진정인이 "○○아 잠깐만 갓길에 차 좀 세워라. 이야기 좀 하자. 아까 우리 ○○이가 해줬던 키스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 그러니 차 좀 세워라. 어 근데 여기 근처에 모텔들 있는데 우리 근처에 가서 쉬다 갈래?"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참모장님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진정인이 차량을 '○○모텔' 건너편 갓길에 세우고 뒷좌석으로 오라고 명령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뒷좌석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조수석 뒷좌석에 앉힌 다음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어 피해자가 떨어뜨리려고 하자 힘을 주어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다물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을 혀로 핥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번갈아 가며 빨고, 이어 혀를 입에 밀어 넣고 피해자의 혓바닥을 잡아당기고 깨물고 빠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

4) 이어 피진정인은 키스행위를 마치고 입맛을 다시더니 멍하니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금 사단본부 관사로 운행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운전석으로 돌아가 운행하여 해병대제00사단 입구 해병대 '○○교회' 앞을 지날 때 "○○아 아까 내가 했던 행동이 미안해서 너랑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교회 쪽으로 차를 세워봐라. 얼른!"이라고 지시하며 ○○교회 공사장 안쪽으로 차를 세우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진정인은 "○○아 라이트 끄고, 시동 끄고 나서 내 옆으로 잠깐 와봐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뒷좌석에 걸터앉자 "너는 내가 왜 좋니?"라고 대답을 강요하여 피해자가 분노와 수치심을 억누르고 "참모장님이 군복을 입고 있을 때는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사복을 입고 있을 때는 아버지 같고 인간적인 면모가 느껴져 좋다."라고 대답하자 "아버지니까 고추도 만져볼 수 있겠네?"라고 하더니 오른손을 피해자의 성기부분 위쪽에 얹어 놓고, 피해자가 엉덩이를 빼자 벨트를 잡아 당겨 끌어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헤집고 팬티 속에 있는 음경을 꽉 쥐고 위 아래로 세게 흔들어 발기시키려고 하여, 피해자가 뿌리치려고 하자 "가만히 안 있어! 해병이. 해병은 그러는 게 아니다. 가만히 있어봐라."라고 명령하고, "어 우리 ○○이 발기되었네. 그리고 물도 나온다. 네가 발기되니까 나도 발기 되었다. 봐봐 하하하! 우리 ○○이도 내 꺼 한 번 만져볼래? 내 꺼도 물 나와서 팬티가 조금 척척하다."라고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괜찮아. 이왕 한 김에 키스까지 하자."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경을 아플 정도로 꽉 쥔 상태에서 왼손은 피해자의 벨트를 풀어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뒷좌석에 가로 누우면서 음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그 통증에 따라 눕도록 하여, 피해자가 뒷 유리창과 운전석 머리베개를 잡고 버티자 오른손으로 고환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는 엉덩이와 항문을 문질러 피해자가 불쾌감과 수치심에 눈물을 흘리며 피진정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손을 잡자 더욱 피해자

의 고환을 세게 잡아 눌러 꼼짝을 못하도록 하고, 이어 음경을 잡고 위아래로 계속 흔들고, 왼손가락으로 항문을 비벼대고, 피해자가 너무 아파 버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피진정인의 몸 쪽으로 자꾸 밀착되자 입술을 빨고 피진정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와 피진정인의 성기를 맞닿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 이어 피진정인이 "ㅇㅇ아 나 너무 흥분된다. 너는 어떠냐? 나랑 같이 한번 할까?"하여 피해자가 "참모장님 싫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행위는 아버지 차원을 넘어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라고 하니까 피진정인이 음경을 잡고 있던 손을 풀고 일어나더니 "그렇게 이상하냐? 나는 네가 너무 사랑스럽고 아들 같아서 그런 느낌으로 한 건데 네가 하기 싫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면 그냥 들어가자 미안하다."라고 하고 옷매무새를 고쳐 입었다.

5) 2010. 7. 10. 02:35경 ㅇㅇ교회를 빠져나와 위병소를 지나 공관 쪽으로 도착할 무렵 피진정인이 아내의 전화를 받았는데 하나도 술에 취하지 않은 듯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통화를 마쳤다. 이후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목을 주무르면서 "ㅇㅇ아, 얼른 목욕탕 쪽으로 후진해라. 이건 명령이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후진하여 독신자숙소(BOQ)건물 입구 초목 한가운데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가 목욕탕에 안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그럼 목욕탕에 안 가는 대신에 그냥 한번 가슴 따뜻하게 안아보자. 그리고 키스 한 번만 해보자.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딱 한 번만 안아보자. 그러면 바로 집에 들어 갈 거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엉거주춤 안는 포즈를 취하자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바지 뒤쪽 벨트를 잡아 껴안고, 다른 한손으로는 벨트 앞부분을 풀어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음경을 마구 흔들어 대고, 귓가에 입을 대고 "우와 우리 ㅇㅇ이 또 발기 됐구나? 물도 나온다. 내가 너 고추에 키스해 줄까? 그리고 물 빼줄까? 그럼 우리 ㅇㅇ이도 내 꺼 물 빼줄 수 있냐?"라며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이와 같이 계속되는 피진정인의 강제추행에 더 이상 제지할 만한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자포자기 상태에서 밀랍인형처럼 가만히 있었더니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손을 이끌어 자신의 팬티에 넣어 음경을 잡고 앞뒤로 왔다갔다하면서 발기를 하도록 하고, 피진정인의 고환을 주물럭거리게 하고,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음경을 부여잡는 등 강제추행을 하고, 속칭 계간에 이르는 상황의 직전까지 도달하였다. 이때 마침 차량 앞으로 SUV형 승용차가 지나가 독신자숙소 앞 주차장에 정차한 후, 동 차량 운전자가 차에 내려 SM5 차량 앞을 이상한 듯 주시하자 피진정인이 당황해 하며 행동을 멈춘 사이 옷매무새를 얼른 고쳐 입고 재빨리 운전석 쪽으로 옮겨 타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진정인을 관사에 하차시켜 귀가시킨 후 수송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6) 피해자는 더 이상 살 이유와 가치가 없고 우여곡절로 전역하게 된다고 하여도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적응할 자신이 없고, 나중에 결혼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정신적 수치심에 자살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수송반에 도착하여 노끈과 커터칼을 찾아 수송반 화장실에 들어가 목을 매어 자살할지 손목을 그어 자살할지 고민하였다. 그러다가 어머니와 가족들이 생각나 눈물을 흘리며 한참 동안을 울다가 다시 부대 뒷산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끈을 매달아 목을 매어 자살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인사 차 전화하고 산에 올라가 나뭇가지에 목을 매었는데, 순간 숨이 막혀오면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지는 가운데 갑자기 나무가 부러져 흙바닥을 굴러 떨어져 망연자실 흙바닥에 누워 한참 동안 울었고, 홀로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자살하지 못하였다.

7) 피진정인은 2010. 7. 10.(토) 09:10경 및 7. 11.(일) 21:30경 두 차례나 특정한 행선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호출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어 시내 및 외곽 드라이브를 한다면서 "○○아 어제 너랑 키스했던 것과 어제 너랑 했던 그 것 오늘 생각해 보니 너무 좋았고 행복했던 것 같다. 우리 ○○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고, 어머니에게 관련 사실을 말했는지를 물어보고, 자살을 하려고 한 경위를 캐물으며, 군대 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너도 죽을래?"라고 위협하는 등 비밀유지를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순간 위험을 느낀 나머지 어머니에게 비염관계로 힘들다고 말한 것인데, 이를 어머니가 오해한 것 같다며 피진정인을 안심시키고, 가족과의 만남 등 외부연락을 위해 ○○통합병원 진료를 부탁하였다.

8) 2010. 7. 12. 07:25경 피진정인이 비서실을 통해 피해자의 비염수술을 위해 ○○통합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비염수술을 위한 ○○통합병원 진료 건과 관련하여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았다며 질책하는 수송담당관 상사 나○○ 등 수송반 간부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또한 같은 날 13:15경 본부대대장 소령 임○○에게 구두로 피해사실을 말하고, 소속 수송소대 간부들의 관찰 및 동행 속에서 내무생활을 하다가 2010. 7. 13. 09:55경 국군○○통합병원에 도착해 오전 진료를 받고, 곧이어 동 병원에 도착한 어머니와 가족들이 외부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겠다고 부대 측에 요구하여 4박 5일간의 청원휴가를 받고 같은 날 16:55경 가족과 함께 부대를 나오게 되었다.

9) 이 사건 직후 피진정인이 위협 및 비밀유지를 강요하는 등 제2차 피해가 우려되고,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도저히 용납이 안 되므로, 피진정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하

며, 본 사건을 기회로 군대 내 성폭행사건이 근절되기를 희망한다. 향후 피진정인을 상대로 민·형사 상 소송을 진행할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률구조를 알선해줄 것을 희망한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07. 12. 1. 대령으로 진급하여 2009. 12. 17.부터 해병대 제00사단 참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0. 4.~5. 경 정보참모 중령(진) 정○○과 회식을 할 때, 위의 정○○ 중령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밝은 표정으로 방향 전환을 말하고, 목소리가 맑아 호감을 갖게 되어, 2010. 7. 6. 운전병으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2)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반에서 2병 정도 되는데, 2010. 7. 9. 21:30경 ○○ ○○식당에서 해병동기생 최○○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셨다. 이후 고교동창생인 김○○(○○증권 근무)가 아는 지인들과 ○○회관에서 회식을 하고 있는데 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택시를 타고 동 회관 숙소에 찾아가 위 김○○를 포함한 5~6명의 동행인들이 주는 맥주 2잔을 받아 마시고, 위 지인들과 양주 3병을 돌려가며 빠른 시간 내에 나누어 마신 관계로 많이 취한 상태였다.

3) 당시 위 김○○의 전화를 받았을 때, 비서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관용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양주 한 박스를 가져오도록 하였던 관계로, ○○회관에서 회식을 마치고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관사로 귀가하였다. 귀가 당시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여서 귀가 중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다가 입술이 닿은 것과 피해자의 고추를 만져보자고 하여 고추(음경)를 만진 기억은 어렴풋하게 나나 어디서 어떤 경위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4) 2010. 7. 10. 09:20경 일어나 어젯밤 일을 생각해보니 어렴풋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기억이 있어 미안하다고 생각되어 특별한 행선지 없이 피해자를 만나 알아보려고 만났는데, 피해자의 표정이 밝았고, 어제 뽀뽀한 것이 어땠냐고 물으니까 아버지처럼 느껴졌다고 대답하여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2010. 7. 11. 오후에는 ○○도에서 자전거를 타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였는데, 이 때에도 피해자의 표정이 밝아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같은 날 21:00경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유○○ 중령의 안내로 피해자의 어머니와 통화하였는데, 어머니로부터 피해자가 비관자살을 시도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잠시 후 경위를 알아보려고 5호 차량을 불러 피해자를 만났다. 2010. 7. 11. 21:30경 피해자를 만나 혹시 뽀뽀한 것 때문에 자살을 하려한

것이냐고 하니까 피해자가 지나간 일이라며 별것 아닌 듯 말하고, 자신이 어머니에게 힘들다고 한 것은 비염 때문이라며 비염수술을 받게 해 달라고 하여 병원치료를 약속하고 헤어졌다. 당시 피해자를 만난 것은 2010. 7. 9. 귀가 당시 뽀뽀를 한 것 같은데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고 무언가 피해자에게 술김에 상처를 준 것 같아 괜찮은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다.

5) 본인은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피해자의 주장처럼 강제로 입술을 깨물고, 모텔에 쉬었다 가자거나 엉덩이와 항문을 문질렀다는 등의 진정내용은 본인의 인격상 인정할 수 없고 뭔가 과장된 것 같다. 그러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마당에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은 없다.

6) 2010. 7. 9. 새벽 귀가 후 아내에서 물어 보았더니 귀가 중 나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하여, 핸드폰에 찍힌 아내의 핸드폰 전화번호 통화시간을 확인해 보니 2010. 7. 10. 00:48분으로 14초간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아내의 증언에 따르면 2010. 7. 10. 01:00경이 좀 못 되어 집에 도착하였다고 하는바, 피해자의 주장처럼 2010. 7. 10. 02:00경을 넘어 귀가한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니 무엇보다도 먼저 병원치료를 도왔으면 하고, 또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겠으며, 피해자 측과 조속히 합의를 하였으면 한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

1) ○○○(대령, 해병대제00사단 부사단장)

2010. 7. 12. 17:20경 본부대대장으로부터 최초 사건경위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실체를 확신할 수 없어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어머니와 통화하여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피해내용을 확인하였다. 피해자 어머님이 일단 피해자를 ○○병원에서 진료를 시켜달라고 하고, 피진정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청원휴가를 허락하였다. 2010. 7. 13. 20:00경 사단장이 외부일정을 마치고 복귀한 즉시 공관으로 올라가 보고하였고, 피진정인 본인에게는 2010. 7. 14. 06:50경 지금까지의 상황을 전달하고, 피진정인에게 일단 이○○의 가족을 만나 볼 것을 권유하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부대에서 은폐하려고 한 바는 없고, 단지 성추행 사안인 만큼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려고 했고,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라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더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단장님께의 보고가 다소 지연된 것이다. 이 사건 인권위 조사통보 후, 곧바

로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되었고, 해군참모총장은 2010. 7. 16.부로 참모장 보직해임과 동시에 인권위 조사가 끝난 후 군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2) ○○○(중령(진), 해병대제00사단 정보참모)

피해자는 정보참모실(2호 차량) 운전병으로 2009. 12. 중순부터 2010. 7. 초까지 근무하였다. 2010. 4.경 사단 ○○회관에서 참모장인 피진정인 주재의 정보참모실 격려 회식을 한 후 복귀하면서 2호 차량에 피진정인이 탑승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운전병이 운전을 잘 하니 자신의 5호 차량(참모장) 운전병으로 보직조정을 원하기에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반대를 하였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탑재계통으로 참모장 운전병을 찾는데 '이○○'도 포함이 되었다기에 사단 지형을 잘 아는 피해자는 외부운행이 많은 합동신문조 운전병으로 임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면서 반대한 적이 있다. 그러나 2010. 7. 6. 정보참모실 행정관이 피진정인으로부터 피해자를 5호 차량 운전병으로 보낼 것을 지시받았다기에 상급자인 참모장의 지시를 거듭 거부하기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보직변경 신고를 받고 5호 차량 운전병으로 보낸 사실이 있다.

3) ○○○(중령, 해병대제00사단 헌병대장)

2010. 7. 9. 23:40경 지인들과 ○○회관에서 회식을 하고 숙소 2층 계단을 내려오던 중, 술에 취해 계단을 내려가던 피진정인을 만나 인사를 하였는데, 피진정인도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였다. 당시 위 회관에 올 때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기에 집에 있던 아내에게 차량을 가지고 회관으로 오라고 하였는데, 2010. 7. 9. 23:32경 어디쯤 오느냐고 확인을 하니 갈산사거리 쯤에 오고 있다고 하여, 위 40분경 기다리려고 나가다가 피진정인을 숙소 2층 계단에서 만난 것이다. 당시 피진정인은 술에 취했으나 계단을 혼자 내려가 현관에 대기시켜 놓은 차량을 곧바로 타지 않고 로비에 서서 친구 분과 10여 분 간 대화를 하다가 차량을 타고 출발하였고, 본인은 곧이어 이미 도착해 있던 아내의 차량을 이용해 집에 갔는데, 당시 출발시간은 23:50경에서 24:00경 사이로 자정이 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상사, 해병대제00사단 본부대대 수송소대 수송담당관)

2010. 7. 12. 07:10경 비서실 원사(진) 황○○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외진 계획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불러 그 경위를 묻자 피해자가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여 일단 일조점호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 공구실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로부터 피해상황을 듣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지휘계통인 수송행정관인 상사 강○○ 및 수송소

대장 중위 정○○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최초 피해자에게 들은 내용은 2010. 7. 9. 새벽 귀가 중에 피진정인이 제00포대 인근, ○○사거리 인근, ○○교회 주변 및 BOQ 앞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뽀뽀를 한다면서 혀를 입에 넣어 남녀사이 같은 키스를 수차례하고, 차량 뒷좌석에서 바지에 손을 넣어 음경을 만지고,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음경도 만져보라고 하는 등 자위를 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 산에 올라가 자살을 시도하려 하였으며, 이후 피진정인이 별다른 목적지 없이 같은 달 10. 및 11. 피해자를 불러내어 차량운행을 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할 줄 알았는데 어제 어땠냐고 물어보고, 뭘 고민하느냐고 하여 모욕감을 느껴 화제를 돌리고자 비염문제로 ○○통합병원에 외진을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었다.

5) ○○○(중위, 해병대제00사단 본부대대 수송소대장) 등 하사관 다수

피진정인의 전임 운전병이었던 병장 이○○로부터 근무 당시 피진정인이 공관에 불러서 갔더니 안마를 하라고 하고, 더우니깐 팬티만 입고하라고 하였고, 자신의 볼에다 뽀뽀를 하라고 시켰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 피해자는 항상 밝고 명랑하였고, 성실하게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였던 운전병으로 병사들과도 잘 지냈는바, 고위 장교를 상대로 허위의 진정을 할 병사로 보이지 않는다.

6) ○○○(예비역 병장, 전임운전병)

본인은 해병대제00사단 참모장 운전병으로 1년 6개월간 근무를 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위 기간 중 모신 4명의 참모장 중 전역 무렵 6개월간 운전병으로 근무한 바 있다. 2009년 추석 때, 피진정인과 밖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관사에 들어왔는데, 사모님도 출타 중이라 계시지 않아 TV도 보고 같이 술 한 잔 더 먹고 자고 가라고 하여 마음 편하게 누워 있다가 땀이 나서 팬티바람으로 함께 있었고, 피진정인이 피곤해 하는 것 같아 안마를 해 주자 곧 잠이 들어 내무반으로 온 사실이 있다. 또한 어느 때인가는 피진정인이 술에 취해 "○○야! 뽀뽀 한번하자."라고 하여 한 번 볼에다 뽀뽀를 한 적이 있었으나, 이는 피진정인이 아버지 같이 인성이 후덕하여 그랬던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불쾌한 감정을 가진 바는 전혀 없다.

7) ○○○, ○○○(각 상병, 해병대제00사단 본부대대 전임운전병)

피해자 이전에 피진정인의 운전병으로 각 2010년 5월 및 같은 해 6월초부터 7월초까지 각 한 달 간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근무 중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고, 피진정인이 마음에 안 들어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 근무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2호차(정보참모)를

운행할 때 피진정인이 자기를 마음에 들어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또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너와 끝까지 가고 싶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도 피진정인을 아버지처럼 생각한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의 사건경위서 및 진술서, 진정인이 제출한 소견서(○○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문답서, 해병대제00사단 관련 참고인들의 각 진술서, 문답서, 전화통화조사보고서, 해병대제00사단장이 제출한 당사자 인사기록카드 및 병적기록부, 전현직 운전병 개인신상기록부 및 면담기록부, 위병소 출입기록, 해군차량운행증, 피해자관련 면담 및 조치사항, 위병소 CC-TV녹화기록, 해병대사령관 인사명령서 제000호,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지조사보고서 및 피해자대면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1985. 3. 28. ○○사관학교 39기로 훈련을 받고 소위로 임관하여 해병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2007. 12. 1. 대령으로 진급하여 해병대제00사단 ○○연대 연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9. 12. 17.부터는 해병대제00사단본부 참모장실에 전입하여 참모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0. 4.경 ○○소재 '○○회관'에서 같은 사단 정보참모 중령(진)정○○과 격려회식을 하고 동인의 2호 차량에 동승하여 사단 관사로 귀대하다가 동 차량의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인지하였다. 피진정인은 이 때 피해자의 밝은 성격과 목소리, 그리고 성실한 운전태도에 호감을 갖고 피해자를 자신의 5호 차량 운전병으로 근무하도록 할 것을 결심하였다.

다. 피해자는 2009. 6. 8. 해병교육훈련단에 지원 입대하여 기본교육을 받고, 2009. 8. 21. 해병대제00사단 본부대대로 전속되어, 행정차량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18. 정보참모 2호차 운전병으로 보직을 받아 맡은 임무에 충실하여 모범해병 포상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던 중 2010. 7. 6. 피진정인의 지시에 따라 참모장실 5호 차량 운전병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10. 7. 9. 20:30경 사복차림(빨강색 티셔츠와 검정색 바지 착용)으

로 ○○ ○○식당에서 자신의 해병동기생 최○○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시던 차에 고교동기생 김○○로부터 지인들과 회식을 하고 있으니 '○○회관'으로 인사차 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1:09경 해병대제00사단 비서실 행정관 상사 황○○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복차림으로 비서실에 소장하고 있던 양주 1박스를 받아 관용승용차량에 싣고 위 회관으로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21:20경 피진정인의 관용차량에 양주 1박스를 싣고 위 회관으로 출발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회관'으로 출발한 시간에 택시를 타고 '○○회관'에 도착하여 동 회관 2층 숙소에 올라가 위 김○○ 등의 일행 5~6명과 소량의 맥주와 준비해 간 양주 3병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나누어 마셨다. 이후 2010. 7. 9. 23:40경 숙소를 나와 위 김○○와 함께 동 회관 로비에서 서서 10여 분 간 인사를 하다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SM5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 55경 해병 00사단 영내에 있는 관사로 출발하였다.

바. 이후, 피해자는 피진정인을 태운 동 차량을 운전하여 약 52분이 경과한 2010. 7. 10. 00:47경 해병대제00사단 위병소를 통과하였고, 같은 날 01:00경 영내 피진정인의 관사 앞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도록 하였다. 위 귀가 도중 피진정인은 위 피해자의 진술 2)~5)항까지의 내용과 같이 ○○회관을 나와 50여 미터가 이격된 해병대제00사단 제00대대 도로 상에서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강제로 키스를 하고, ○○ ○○인근 '○○모텔' 건너편 갓길에 정차하게 한 후 SM5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해병대제00사단 앞 '○○교회' 앞 공사장에 차를 세우게 한 후 위 차량 뒷좌석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음경을 만지고 팬티를 벗기고, 위병소를 통과하여 영내 독신자숙소 주차장 앞에 정차한 후 위 차량 뒷좌석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음경과 음낭을 앞뒤로 잡아 흔드는 등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피해자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반에서 2병인데 이날따라 평소 주량을 넘어 술을 마셔 많이 취했던 관계로 어렴풋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다 자신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에 닿고, 피해자에게 고추를 만져보자고 하고, 피해자의 음경을 만진 기억은 나나 어떤 경위로 어느 장소에서 그렇게 하였는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이 진정사건이 발생한 이후 해병대제00사단장은 진정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해자에 대한 병원치료를 위해 피해자를 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하고, 휴가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해병대 사령관의 보고를 받은 해군참모총장은 2010. 7. 16. 피진정인을 보직해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후 군 검찰에서 조사를 착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5. 판단

가. 이 진정사건 관련 기본권 등에 대하여

이 진정사건의 강제추행 행위는 동종의 남성이 자신의 신분적 우월성을 이용하여 신체의 내밀한 부위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혓바닥을 이용하여 타액을 전가시켜 혼용하게 하고, 은밀한 부위를 노출시키고 만지고 잡아 쥐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사회상규 및 일반인의 입장에서 받아들기 힘든 선량한 성도덕의 혼란을 일으킴과 동시에 인격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신체상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상대방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함은 물론, 같은 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 9. 20.선고 1989헌마82결정).

이와 같이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하나의 행위로부터 유발되는 관련 기본권의 침해에 따른 해악이 깊어 단순한 신체에 대한 물리적 폭행에 따른 피해행위에 비하여 쉽게 회복하기 힘든 인간의 정신적인 인격형성의 가치관을 뿌리 채 파괴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입법적 대책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두어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고, 단체생활에서의 고도의 질서유지가 필요한 군인의 경우에는「군형법」제92조 내지 같은 법 제92조8까지의 관련조항을 두어 엄히 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진정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다 자신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에 닿았고, 피해자의 고추를 만져보자며 피해자의 음경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외 추행사실 및 경위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진정사건과 관련된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피진정인의 진술에 비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 상 실제로 겪어보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사실이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최초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상사 나○○ 등의 증언과 이후 피해자가 위원회에 제출한

사건경위서 및 위원회 조사관의 대면조사보고서 등에 나타나는 일관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부분 진실에 부합된다고 보인다.

둘째, 피진정인은 당시 술에 취해 구체적인 경위 및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관' 출발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다소 취한 듯이 보이기는 했으나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위 회관 2층 회전계단을 걸어내려 왔고, 이후에도 10여 분 간을 로비에 서서 고교동창생 김○○의 배웅을 받고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후 위병소 통과 시까지 무려 52분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취중에 수면을 취하지 아니하고 2010. 7. 10. 00:48경 아내의 귀가를 확인하는 핸드폰을 받아 14초간 통화를 한 사실, 그리고 장소를 옮겨가며 총 4회에 걸쳐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피해정황에 비추어보면, 피진정인이 당시 의식을 잃고 기억을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피진정인의 귀가 행적 및 차량운행에 관한 현장 실지조사 및 위병소 CC-TV 화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당시 차량운행 시간이 심야시간대로 다른 차량의 운행이 현저히 드물고 도로 상황에 익숙한 피해자의 운전경험으로 보아 무정차시 30분 이내로 목적지인 관사에 도착하였을 것이나, '○○회관'에서 2010. 7. 9. 23:55경 출발하여 해병대제00사단 위병소에 2010. 7. 10. 00:47경 도착하여 약 52분이 소요되어 약 20여 분이 지체되었고, 위병소에서 관사까지는 1~2분밖에 소유되지 않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1:00경 도착하여 약 10여 분간 지체된 정황으로 보아 피해자의 주장에 상당부분 부합한다.

넷째, 피진정인은 사건 다음 날 아침 단순히 뽀뽀를 하였던 어렴풋한 기억날 뿐인데도 특별한 행선지 없이 2010. 7. 10. 09:20경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의 반응을 살피는 등 과도하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2010. 7. 11. 21:30경에는 피해자의 부모와의 통화 시 스스로 책임을 느낀다고 하거나 병원치료를 적극 주선하는 등 과도하게 반응하는 점으로 보아 피진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다섯째, 피해자가 운전병으로 평소 매우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모범적인 병영생활을 해 왔다는 참고인들의 증언 및 피진정인이 2010. 4. 경부터 피해자의 이러한 성실한 태도와 밝은 성향에 대해 특별한 호감을 느끼고 자신의 운전병으로의 발탁을 모색하다가 같은 해 7. 6. 전격적으로 보직명령을 내린 사실, 피진정인이 술에 취한 경우 평소 자신과도 가벼운 신체접촉을 가졌다는 전임운전병인 이○○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일반인의 통념에 모범적인 병영생활을 해 왔던 피해자가 상관인 고위 장교를

대상으로 병사의 위치에서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든 반면 피진정인의 경우에는 동성간의 신체접촉을 유발할 만한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여섯째, 사건 이후 피해자가 그 수치심과 모멸감을 못 이겨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려 한 정황, 2010. 7. 14.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정신과 전문의 허○○이 피해자에 대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병적 장애'로 최소 수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임상적 소견을 한 사실로 보아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가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뽀뽀를 하고 음경을 만지는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고만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판단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주장요지 2)~5)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진정인이 관사로 복귀하던 중 참모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명령과 위협으로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뽀뽀 해 달라. 안아 달라."며 신체접촉을 요구하다 강제로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핥았으며, 입술을 깨물고 빠는 등 키스를 하였고, "목욕탕을 가자, 키스를 해 달라."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차량 뒤 좌석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음경을 위아래로 흔들고 음낭을 조여 잡아 항거불능하게 한 상태에서 혁대를 풀어 옷을 벗기고 자신의 음경을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고 만지게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30여분 간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92조2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안전을 각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진정사건 조치의견에 대하여

1) 피진정인에 대한 조치

피진정인은 지난 25년간 국가를 위해 성실히 근무해 왔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강제추행의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해명하고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보직 해임을 당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해병대의 고위급 장교로서 병사 및 하급 장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와 지위를 이용하여 병사인 피해자의 인격권, 성적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안전이라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힘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책임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 측 또한 가해자인 피진정인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고 친고죄인 점을 고려하여,

해군참모총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

군형법」 제92조2의 규정에 정한 소정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의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에 대한 조치

이 사건 피해자는 인격적 정체성 및 성적자기결정의 존엄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라 현재 수 주간의 정신과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으며, 군 당국에 의한 제2차 피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해병대사령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보직조정 등 신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권고하고,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민·형사상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국방부에 대한 조치

이 사건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반병사에게 국가기관의 최고위급 지휘관이 부당한 지시 및 명령을 통하여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이에 따라 군복무 의무를 수행해야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심각한 염려와 불신을 발생하게 한 사건이므로,

국방부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속 군 기관에 본 진정사례를 전파 및 교육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황덕남 위 원 한태식

14 10진정5608 [해병대 성폭행 피해자 보호조치관련 긴급구제] 2010. 9. 1. 결정

국방부장관에게 관할 군 병원장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히 민간위탁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피해자의 피해상태가 군에 대한 극도의 심리적, 정신적 불신 및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특성으로 보아 자해, 자살기도 등 제2차 피해가 상당한 정도로 우려되어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라고 보인다. 또한 「군인복지기본법」 제12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민간병원에서의 위탁진료가 필요하거나 적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 「헌법」 제10조의 규정에서 연유하는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참조조문 ▌

「헌법」 제10조, 「군인복지기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진정인 ▌ 이○○(피해자의 변호인)

▌ 피해자 ▌ 이○○

▌ 피진정인 ▌ 해병대사령관

▌주 문 ▌ 국방부장관에게 관할 군 병원장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히 민간위탁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변호인인바, 피해자는 해병 ○사단 본부대대 운전병으로 복무 중, 2010. 7. 9. 저녁 참모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성폭행을 당해, 그 후유증으로 자살기도를 하고, 군에 대한 극도의 불신상태에서 민간병원 정신병동에 입원치료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사령관은 소속 부대 또는 군 병원에 복귀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휴가명령 만료시점까지 복귀하지 않을 시에는 탈영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 등 가족들은 2010. 8. 10. 해병대사령관 및 수도통합병원장에게 제2차 피해예방 및 신뢰관계에 있는 의료진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위해 민간병원 위탁진료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하여 휴가 만료시점인 2010. 9. 1.(수) 20:00경까지 군으로의 복귀만을 요구하고 있어, 불가피한 근무지이탈에 따른 불이익 조치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이 극히 염려되고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 7. 23. 해병대사령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보직조정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취지를 살려 피해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민간병원 위탁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구제조치를 해 주기를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기관 및 관계기관의 주장

1) 해병대사령부(의무과장 중령 최○○)

현재 피해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모든 휴가기간 총 30일이 경과하였고, 소속부대 또는 수도통합병원으로의 미 복귀 시에는 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2) 수도통합병원(진료부장 대령 홍○○)

국방부 훈령인 「국방환자관리규정」에 의거 피해자의 질병은 군 정신과 의료수준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여 외부 민간위탁진료가 안 되는 사안이므로, 속히 군 병원으로 복귀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상태에서 민간위탁진료가 가능하려면 위 훈령권자인 국방부장관(상급기관)의 지시가 불가피하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공소장, 피해자 진단서(○○○○병원 정신과 진단), 10진정0419300사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기록 및 권고결정문, 「군인복지기본법」

및 동 법 시행령, 국방부「국방환자관리규정」등 관련규정, 위 권고 결정 이후 위원회의 해병대사령부 및 국군수도통합병원 관계자들과의 전화통화 등 협의사항 보고자료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인복지기본법」제12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는 "의료지원은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장관 훈령인「국방환자관리규정」제44조(위탁진료의 범위)에 의하면, "군 병원 입원환자로서 군병원 진료능력이 초과되어, 군병원장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한 환자 및 상급의료 기관으로 이송 중 상태가 위급하여 응급처치가 요구되는 환자, 다만 군 병원 진료능력 초과여부는 국군수도병원의 진료능력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또한 "즉각적인 의료지원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거나 치료 후 불구가 될 수 있는 응급환자인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진료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상태에 딱히 위의 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다소의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첫째, 피해자는 해병대 제○사단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0. 7. 9. 자정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참모장인 오○○ 대령으로부터 강제로 키스를 당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친 강제추행을 당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 7. 23. 가해자에 대한 수사의뢰,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보직조정 등 적절한 신변보호조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등의 내용을 권고하였고, 이에 군 검찰이 위 혐의를 인정해 2010. 8. 12. 가해자를 구속기소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명백히 군 지휘관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가 기인된 사실, 둘째, 피해자는 피해 직후 ○○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의 제1차 진단을 거쳐 현재 ○○대학 서울○○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셋째,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이후,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증인신문을 하던 중 과 호흡으로 인한 발작을 일으켜 의무대로 후송된 바 있고, 담당주치의가 "환자는 외상과 관계된 군 관련 자극에 극히 민감한 상태로 현 상태에서 군 복귀 시 군대와 관련된 자극에 대한 과도한 노출로 상기 증상의 약화 및 자해, 자실시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보인 사실, 넷째,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당시에도 담당조사관에게 자신이 해병대 고위 장교의 성폭행 사실을 외부로 누설함에 따라 명예와 위계를 존중하는 해병대의 특성 상 위협을 가할 우려가 염려된다며 극도의 불안 및 공포감을 호소했던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피해상태가 군에 대한 극도의 심리적, 정신적 불신 및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특성으로 보아 자해, 자살기도 등 제2차 피해가 상당한 정도로 우려되어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라고 보인다. 또한 「군인복지기본법」 제12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민간병원에서의 위탁진료가 필요하거나 적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 「헌법」 제10조의 규정에서 연유하는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국방부장관에게, 국방부 훈령인 「국방환자관리규정」 제44조(위탁진료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피해자에게 민간위탁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구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 원 최경숙 위 원 유남영〈불참〉 위 원 문경란

15 10진정7966·11직권1(병합) [해병대 상습폭행 및 은폐사건 직권조사] 2011. 3. 23. 결정

해군참모총장에게,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할 것,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직무감찰과 징계 등 조치할 것 및 병영 내 관행 개선을 통한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가해자들에 대하여 재조사와 책임에 상응하는 사법처리를 할 것 및 피해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대한변협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

▌결정요지 ▐

[1] 가해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타·가혹행위는, 사적 제재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위 피해자들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

[2] 해병대 내에서 극심한 구타·가혹행위가 사병간에 광범위하게 반복적·관행적으로 발생한 데에는,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관용적인 잘못된 병영 문화와 지휘·감독자들의 관리 부실에 상당한 원인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재발 방지와 관행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참조조문 ▐

「군인사법」 제47조의2(복무규율), 「군인복무규율」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군사고 예방 규정 제37조(구타 및 가혹행위 사고예방)

▌주 문 ▐

1. 해군참모총장에게,

가.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해병○사단장과 ○연대장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과, 이 사건 관련자 1~11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통하여 폭행사건을 축소·은폐·지연 처리한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각 권고한다.

나. 재발 방지를 위한 관행 개선을 위하여,

첫째, 해병대원과 지휘관 및 간부들에 대하여,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인권교육

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둘째, 해병대원간 '기수열외'를 금지하고, 그 가해자 및 관련자들에 대하여 엄격히 처벌하는 관련지침을 마련할 것,

셋째, 구타·가혹행위 사건 발생 시, 이를 자체 식별 및 인지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지휘관에 대해서는 해당 건에 대한 관리책임을 면책하나, 이를 은닉하고 부당하게 처리한 지휘관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등의 현실적인 구타·가혹행위관련 지휘책임원칙을 수립할 것,

넷째, 당직근무 시 사병들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과 환자발생 시 발병경위를 의무기록에 철저히 기재·관리하도록 할 것,

다섯째, 향후, 해병대 내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제도적 개선을 위해 해병부대에 대하여, 해군본부, 국가인권위원회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진단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해병대사령관에게,

가. 가해자 1∽8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사법처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나. 피해자 1∽7에 대하여,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직 조정 및 치료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3.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1, 5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이 유▮

1. 직권조사의 배경

가. 2010. 12. 31. '해병대에 입대한 신병이,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선임병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여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대간부들이 단순 구타 사건으로 축소·은폐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되었다.

나. 이 사건 접수 직후, 진정인 대면조사 및 기초자료를 검토한 결과, ① 천안함 사건 이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순수한 피해자 및 다수의 국민의 뜻에 반하고, ② 일반부대와 달리 해병대에서는 아직도 공공연히 선임병들의 후임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상습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③ 이러한 범죄행위가 조직의 안정과 군기유지라는 이유로, 소속 간부들에 의하여 단순 사고 및 구타사건으로 은폐·축소되고 있고, ④ 본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의 폭행사건이 단순 사건으로 처리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 정도가 크고 그 예방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3항에 의거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2. 가해자 등 관련자 현황

가. 가해자

1) 가해자 1 : 상병 △△1(○연대 ○○대대 ○중대)
2) 가해자 2 : 병장 △△2(위 같은 소속)
3) 가해자 3 : 상병 △△3(위 같은 소속)
4) 가해자 4 : 일병 △△4(○연대 ○○중대)
5) 가해자 5 : 상병 △△5(위 같은 소속)
6) 가해자 6 : 상병 △△6(위 같은 소속)
7) 가해자 7 : 병장 △△7(○연대 ○○대대 ○○중대)
8) 가해자 8 : 일병 △△8(위 같은 소속)

나. 피해자

1) 피해자 1 : 이병 □□1(○연대 ○○대대 ○중대)
2) 피해자 2 : 일병 □□2(위 같은 소속)
3) 피해자 3 : 일병 □□3(위 같은 소속)
4) 피해자 4 : 일병 □□4(위 같은 소속)
5) 피해자 5 : 이병 □□5(○연대 ○○중대)
6) 피해자 6 : 이병 □□6(위 같은 소속)
7) 피해자 7 : 이병 □□7(위 같은 소속)

다. 지휘·감독 책임 관련자

1) 관련자 1 : 중령 ☆☆1(○연대 ○○대대 대대장)
2) 관련자 2 : 대위 ☆☆2(위 같은 대대 ○중대 중대장)
3) 관련자 3 : 상사 ☆☆3(위 같은 중대 행정관)
4) 관련자 4 : 중위 ☆☆4(위 같은 중대 ○소대 소대장)
5) 관련자 5 : 대위 ☆☆5(위 같은 대대 2010. 8. 14. 당직사령)
6) 관련자 6 : 대위 ☆☆6(위 같은 연대 ○○중대 중대장)
7) 관련자 7 : 상사 ☆☆7(위 같은 중대 행정관)
8) 관련자 8 : 원사 ☆☆8(위 같은 중대 행정관)
9) 관련자 9 : 하사 ☆☆9(위 같은 중대 분대장)
10) 관련자 10 : 대위 ☆☆10(위 같은 연대 ○○대대 ○○중대 중대장)
11) 관련자 11 : 상사 ☆☆11(위 같은 중대 행정관)

3. 당사자 및 관련자 등의 주장요지

가. 피해자들의 진술요지

1) 피해자 1(이병 ㅁㅁ1, ○연대 ○○대대 ○중대)

가) 가해자 1의 구타·가혹행위 관련

(1) 피해자는 소속부대 전입 후 선임병들에 의해 군기잡기 등의 이유로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해왔다. 그러던 중 2010. 8. 14. 22:00경 내무반에서 소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해자 1이 군기를 잡는다면서 피해자를 이층 침상에 매달리도록 한 후, 피해자의 복부·가슴 등 온 몸을 주먹, 발, 무릎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및 흉골 골절, 요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중상을 입혔고, 다음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병장 △△2 등 선임병들은 소대원들을 소집해 피해자가 축구하다 다친 것이라고 말을 맞추고, 소대원들에게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강요하였다.

(2) 사건 발생 후, 소속 부대 간부인 행정관 ☆☆3, 중대장 ☆☆2, 대대장 ☆☆1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도, 피해자에게 사건축소를 강요한 후 이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뒤늦게 알렸고, 또한 위 사실을 사단장과 헌병대에 알리지 않고 가해자 1에게 영창 10일의 행정처분만 하였다.

나) 가해자 2의 구타·가혹행위 관련

(1) 가해자 2는 2010. 7.~8. 초순 경 근무 중 내무반에서, 체스터(관물함) 정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내무반 구석까지 몰고 가면서 2~3회 구타하였으며, 청소 점검 시 청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앉아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폭언을 하며 자신의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회 구타하였다.

(2) 가해자 2는 위 같은 시기에, 피해자가 세면장과 화장실에서 청소할 때 "너 청소하는 것 제대로 배웠냐?"고 질책하면서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화장실의 더러운 모래가 피해자의 입에 들어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고, 이어 내무반에서도 구타하였다.

(3) 가해자 2는 위 같은 시기에, 일명 '인계'(사제양말은 언제부터 신을 수 있고, 햄버거 먹을 때는 고기를 빼고, 국에 밥을 말아먹는 것은 언제부터 가능하다는 등의 기준)라고 하여, 자신은 밥을 낮게 쌓고,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사병들에 대해서는 밥을 높게 쌓아 짧은 시간 내에 다 먹도록 강요하였다.

(4) 가해자 2는 2010. 7. 중순~8. 초순 경, 당시 일병 ㅁㅁ2가 ○○대대 ○중대에서 불침번 상황근무를 하던 중, 당직 상황근무자만 깨우고 대대 입초근무자 등을 깨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5~10분간 위 ㅁㅁ2의 뺨과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구타하였다.

(5) 가해자 2는 위 같은 시기에 세탁실에서, 주먹으로 일병 ㅁㅁ4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복부를 5~6회 구타하고, 위 ㅁㅁ4가 다른 곳을 보자 "딴 데 쳐다보게 돼있냐, 어디 쳐다보냐 미친놈아."라면서 계속 구타하는 등 평상시 걸핏하면 손찌검을 하였다.

다) 가해자 3의 구타·가혹행위 관련

가해자 3은 피해자에게 "너 옛날에 왔으면 죽었다. 내 별명이 구타 저변돌이다."라고 협박을 하고, 종종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두 눈덩이를 콕콕 찌르거나 발로 가슴을 밀어 차곤 하였다.

2) 피해자 2(일병 ㅁㅁ2, 위 같은 중대)

가) 2010. 8. 14. 아침 식사 후에 ○○해수욕장에서 전투 수영을 하고, 같은 날 17:00

경 귀대하여 저녁식사를 한 후 통제형 순검준비를 위해 청소하던 중, 가해자 1이 박스를 치우지 않았다며 이병 ㅁㅁ1과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 순검 이후 소등하고 보자고 하였다.

나) 소등 후, 가해자 1이 이병 ㅁㅁ1과 피해자를 철재침상에 매달리게 한 후 주먹으로 가슴을 수차례 구타하였고, 만두가 올 때까지 질책을 받다가 만두를 먹고 취침하였다. 이후 위 ㅁㅁ1이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 호송되었고, 2010. 9. 초순 경 중대장이 불러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피해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다) 2010. 7.말 쯤 K2 소총을 생활관에 두고 3분대에 갔다가, 가해자 1에 의해 한 손으로 소총을 들고 엎드려뻗쳐 얼 차례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외 다른 선임병들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은 없다.

3) 피해자 3(일병 ㅁㅁ3, 위 같은 중대)

가) 피해자는 처음에 ○○대대 ○중대 ○소대 ○분대에 배치되었다가 이병 ㅁㅁ4와 함께 ○분대로 조정되었는데, 2010. 7. 말경 통화교육이 끝나고 대답을 하던 중, 가해자 1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5~6회 때려 기절한 적이 있고, 이외에도 실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리곤 하였다.

나) 2010. 7.경 위 ㅁㅁ4가 가해자 1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가해자 1에게 끌려가 오랜 시간 철봉에 매달려 있는 가혹행위를 당하고, 이로 인하여 위 ㅁㅁ4의 손에 수포가 생긴 것을 본 사실이 있으며, 자대 배치 직후 가해자 1이 위 ㅁㅁ4에게 총기명칭을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잘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ㅁㅁ4에게 총기를 들고 '쪼그려앉아'를 시킨 것을 본 사실이 있다.

4) 피해자 4(일병 ㅁㅁ4, 위 같은 중대)

가) 2010. 7. 8. ○○대대 ○중대 ○소대 ○분대에 배치되었는데, 가해자 1의 지적사항이 많아 ○분대로 변경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이불을 잘 개지 못하거나 실수한 것이 발견될 경우, 가해자 1은 바로 충고를 하다가 감정이 북받치면 1~2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찼고, 한 번은 부소대장 000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에게 운동장 뛰어 돌기 3회, 팔굽혀펴기 50회, 철봉 매달리기 10분 등의 얼 차례를 시킨 적이 있으며, 병기수입 시 이석하였다는 이유로 총구를 양손으로 머리 위에 든 상태에서 쪼그려 뛰기를 50회 정도 시킨 적도 있다.

나) 복무 중 가해자 1에게 암기사항을 숙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혼났는데, 가해자 1은 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찼고, 이외 선임병들의 구타 사실에 대해서는 대답하고 싶지 않다.

5) 피해자 5(이병 ㅁㅁ5, ㅇ연대 ㅇㅇ중대)

가) 가해자 4는 피해자가 자대배치를 받은 후 하루도 빠짐없이 갖가지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해왔는데, 평상시 청소 불량 등 사소한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검지와 중지 사이에 모나미볼펜, 수성펜, 보드머커펜, 가위(강도가 높은 순서)등을 끼고 꽉 잡은 후, 끼운 물건을 약하게 혹은 세게, 빠르게 돌려, 그 후유증으로 피해자의 양쪽 검지의 해당 부위 뼈가 돌출되었다. 가해자 4는 조별과업 후, 조식·중식·석식 후 수시로, 초소근무지나 ㅇ연대 건물 복도 끝 전화박스, 쉼터, 생활실 등에서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가슴, 복부를 때리고, 심지어는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때리기도 하였다.

나) 특히, 가해자 4는 2010. 12. 26. ㅇㅇ중대 쉼터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구타하였고, 피해자가 맞을 때 아파 상체를 숙이고 소리를 내면 더 많이 때렸다. 위와 같이 구타를 당한 후 통증이 심해 숨쉬기도 불편하였으나, 3일간 참다가 과업을 나가 뜀박질을 하던 중 힘이 들어 선임병 ㅇㅇㅇ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자, 위 ㅇㅇㅇ이 소대반장 하사 ☆☆9에게 위 사실을 말하였고, 의무중대 입실 후 해군ㅇㅇ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늑골 골절(좌측 2번)로 6주 진단을 받고 입실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다) 당시 소대반장인 하사 ☆☆9가 행정관이나 의무중대장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여, 피해자는 겁을 먹고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의무중대장이 계속 폭행사실을 캐물어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행정관 상사 ☆☆7에게 알려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2010. 1. 10. ㅇ연대 ㅇㅇ중대장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느냐고 물었으나, 중대 복귀 후에 기수열외가 걱정되고, 지금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선임들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고 있어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으며, 가해자 4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6) 피해자 6(이병 ㅁㅁ6, ㅇ연대 ㅇㅇ중대)

가) 평상시 가해자 5, 6으로부터 음식물 강제취식 강요(일명 '악기바리'), 변기 걸레를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고, 2010. 7. 21.경에는 위 가해자들이 화장실 청소 불량, 탁구장 내 컴퓨터 위 먼지제거 불량을 이유로 피해자를 연대 보급창고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 가슴을 수차례 폭행하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때렸다. 피해자가 맞을

때, 통증으로 허리를 구부리거나 얼굴을 돌리면 더 강하게 구타를 하여 부동자세로 관등성명을 대도록 하였고, 이 날 당한 폭행으로 피해자의 입안이 터져 피가 났으며, 이틀 후부터 피해자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의식소실(기절)이 발생하여 의무실에 입실하였다.

나) 피해자는 ㅇ연대 ㅇㅇ중대 행정관인 ☆☆8(관련자 8, 현 연대 주임원사)에게 최초 폭행 피해 사실을 말했으나, 위 ☆☆8이 원만한 처리를 약속하면서 위 가해자들에게 직접 구두로만 훈계를 하는 바람에 위 가해자들이 "너 찔렀냐?"라면서 더욱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의식소실로 입실하였을 때 의무중대장과의 진료 상담 중에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이 인지되어, 위 가해자들에 대하여 사후에 징계영창 조치하고, 위 가해자들을 타 대대로 전출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다) 가해자들에 대한 해병ㅇ사단 헌병대 조사 과정에서, 폭행사건에 대한 관련 기준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후임인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묻고 있는데, 이럴 경우 대부분의 폭행 피해자는 낮은 계급의 사병들이어서 보복이 두렵고,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생각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7) 피해자 7(이병 ㅁㅁ7, ㅇ연대 ㅇㅇ중대)

가) 가해자 7은 피해자가 조리실에 배치된 직후인 2010. 10. 19. 19:30경, 피해자가 선임기수를 못 외운다는 이유로 따귀를 셀 수 없이 때리고, 피해자가 조리식단 메뉴를 외우지 못한다고 정강이로 대퇴부를 5회 폭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리를 저는 것을 본 중대선임 병장 ㅇㅇㅇ이 가해자 7에게 더 이상 때리지 말하고 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왕복달리기, 쪼그려 뛰기를 시키고 온 몸을 폭행하였다.

나) 가해자 7의 지시를 받은 가해자 8은, 2010. 10. 19. 피해자에게 소보로 빵 5개를 10분 안에 먹을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먹지 못하자 따귀를 20대 정도 때렸으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가슴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때린 다음 철모로 얼굴을 5~6회 구타하였으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뒤에 대퇴부를 4회 폭행하여 피해자가 다리를 절자 그 다친 곳을 재차 폭행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일병 ㅇㅇㅇ에게 업혀 응급실에 입실한 후에 폭행경위를 의무관에게 말하였다.

다) ㅇㅇ중대 행정관 ☆☆7 상사(관련자 7)와 ㅇㅇ대대 ㅇㅇ중대 행정관 ☆☆11 상사(관련자 11)가 의무실에 찾아와, 위 폭행 사건에 대하여 '고소까지는 하지 말고 영창 정도로 끝내면 어떻겠냐'고 설득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 8은 휴가제한 5일, 가해자 7은 영창 15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나. 가해자들의 진술요지

1) 가해자 1(상병 △△1, ○○대대 ○중대)

가) 2010. 7~8월경 현 ○사단장이 새로 부임하고 새로운 훈련프로그램(컴벳워리어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훈련이 강하게 실시되었는데, 후임병들이 잘 따라오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차에, 청소상태도 엉망이어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 1, 2를 약 15회 정도 폭행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다음날 피해자 1이 아프다고 하여 사실대로 간부들에게 보고하려 하였으나, 중대원들이 일이 커진다고 하며 만류하고 두렵기도 하여, '피해자 1이 축구하다 다쳤다'고 허위 보고하였다.

나)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껏해야 머리박아 상태에서 군화발로 머리를 때리는 정도였고, 2010. 7~8월경 피해자 3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복부를 다섯 대 정도 때렸더니 피해자 3이 기절하였다가 깨어난 적이 있었다.

다) 자신도 후임병 때 많이 맞았고 그 때 코를 맞아 지금 좀 삐뚤어져 있는데, 본인의 한 기수 후임병도 선임병에게 맞아서 늑골이 골절된 적이 있었으나 그냥 축구하다 다친 것이라고 말하고 참고 지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해병의 전통으로 알고 있다.

라) 통상 간부들도 위생점검을 하다가 다친 멍 자국을 보면 구타 등으로 난 상처임을 짐작하지만, 일이 복잡해지는 것이 귀찮아 운동하다 다친 것이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곤 하였다.

2) 가해자 2(병장 △△2, 위 같은 중대)

가) 자신도 후임병 때, 선임병들에게 머리를 쥐어 박히거나 빰을 맞고 조인트를 까이는 정도의 폭행을 당한 적은 있으나, 가해자 1처럼 후임병을 침상에 매달리게 한 후 폭행을 하거나, 그런 정도의 폭행을 당한 적은 없다.

나) 평소 후임병들이 실수를 하면, 후임병들을 불러 훈계하거나 타이르고 잘못 된 점을 가르쳐 주나, 간혹 감정이 통제되지 않은 경우에 화가 나서 몇 차례 '툭툭'치거나 쥐어박는 정도로 때린 적이 있을 뿐이다.

3) 가해자 3(상병 △△3, 위 같은 중대)

자신은 후임병들의 군기를 잡는 위치에 있어 군기를 좀 잡는 편이지만, 무작정 때리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는데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 간혹 주먹으로 몇 대 치는 정도이고,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을 정도로 과도하게 때린 적은 없었다.

다. 지휘·감독 관련자들의 진술요지

1) 관련자 1(중령 ☆☆1, 해병 ○사단 ○연대 ○○대대 대대장)

가) 2010. 8. 15. 오후 당직사령 대위 ☆☆5으로부터, 피해자 1이 풋살(축구의 일종) 경기를 하다 상호 충격에 의해 부상을 입어, 위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병원 진료결과, 복부혈종으로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군의관 소견을 받고 위 피해자를 입실조치하였다. 그런데 같은 달 17. 중대장이 대대장실에 찾아와, 위 피해자가 운동 중 다친 것이 아니라 같은 달 14. 22:00경 가해자 1에게 가슴부위를 6~7회 구타당한 것이라는 수정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고 중대장, 행정관 등에게 관련자들을 상세하게 조사할 것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같은 달 17.~19. 관련자에 대한 면담 결과, 최초 인지한 구타사항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대장에게 서면보고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 부모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였다. 같은 달 22. 위 피해자의 부친이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계속해서 아프다고 하여, 구급차로 위 피해자를 서울삼성병원으로 호송하여 X-ray촬영을 한 결과, 피해자의 복부·흉부 등에 이상은 없고 안정을 취하여야 한다는 진료의사의 소견을 받았으나, 피해자 부모가 다른 병원에서의 재진료를 강력히 원하여 ○○ 소재 혜민병원으로 위 피해자를 다시 후송하여 MRI 촬영을 한 결과, 같은 해 9. 2. 다발성 늑골 골절, 중골 골절, 요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다) 이후 위 피해자를 ○연대 의무실에 입실시키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다가, 위 피해자 부모의 요구로 아산 소재 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핵의학검사를 한 결과 혜민병원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고, 같은 해 10. 11.~12. 15.간 8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병가조치를 해 주었다. 같은 해 9. 2.~9. 8. 위 피해자의 부친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타사실이 최초 인지한 것보다 심하다'는 말을 하였고, 같은 달 9. 위 피해자와 군의관을 대대장실로 불러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 하도록 하여, 이를 의무담당관 중사 ○○○가 정리하여 보고함으로써, 피해 사실이 최초 인지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 이에 최초 인지한 상태에서 처리한 가해자 1에 대한 영창 15일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되어 위 가해자에 대한 추가 조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나, 피해자 부모와 통화한 결과 사건 확대를 원하지 않고 위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타 부대 전출을 원하여, 이를 약속하고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당시 이는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 하에 위 피해자와 위 가해자의 부모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될 것으로 보아 그렇게 한 것이며, 피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2) 관련자 2(대위 ☆☆2, ○○대대 ○중대 중대장)

가) 2010. 8. 15. 19:15경 피해자 1이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후송 전 군의관 진찰 시 축구하다가 다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같은 달 16.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비밀면담을 요청하여 면담한 결과, 가해자 1의 구타로 가슴에 타박을 입었다는 말을 들었으나, 간호장교가 환자의 절대안정이 필요하니 병동으로 신속히 복귀하라는 권유를 하여, 더 이상 자세한 피해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나) 같은 달 17. 대대장(관련자 1)에게 최초 보고 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한 후 보고하겠다고 하였으나, 같은 달 21. 위 가해자의 부모가 '진료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위 피해자의 부모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같은 달 23. 대대장의 지시에 의거 위 가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영창 15일의 징계 처리하였다. 그런데, 위 피해자의 부친이 민간병원 진료를 요구하여 ○○삼성병원 및 혜민병원 등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위 피해자가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이 확인되고, 같은 해 9. 9. 의무담당관 ○○○ 중사가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를 보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대대장에게 수시로 위 사건을 헌병대수사관에게 통보하여 법적 처리를 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대대장이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여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다) 같은 해 8. 20. 위 피해자와 통화 중, "상병 △△1이 처음엔 축구했다가 다쳤다고 했다가 사실대로 다 말했다. 그런데 그대로 말하면 상병 △△1은 구속되고, 조금 진술을 바꾸면 영창행인데, 수근이 생각은 어떠니"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라) 당시 이외에 ○중대 내에서 사병들 간에 발생한 폭행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소대장이나 분대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가 없고, 다만 2010. 12.경 이병 ○○○이 폭행을 당해 가해자 3명을 영창 등 징계조치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관련자 3(상사 ☆☆3, ○○대대 ○중대 행정관)

가) 2010. 8. 15. 피해자 1이 응급실로 후송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이동하여 경과를 확인하였는데, 위 피해자의 복부에 혈전이 있으나 안정가료만 취하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군의관 소견을 들었다. 이후 위 피해자에게 사고 경위를 확인하자, '풋살 경기를 하다 가해자 1의 팔꿈치에 부딪쳐서 다쳤다'고 하여 부대에 복귀한 후 관련자들을 조사하였으나, 다 같이 '풋살 경기를 하다가 위 피해자가 다쳤다'고 진술하여 대대장

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나) 같은 달 17. 위 피해자가 중대장에게 전화로 면담을 요청하여 중대장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가해자 1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부대로 복귀하여 가해자 1을 조사한 결과, 위 가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가슴을 6~7회 폭행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같은 달 21. 양측 부모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부모가 치료만 잘 해 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여, 같은 달 23. 위 가해자 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영창 15일의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런데, 같은 달 24. 위 피해자의 부친이 군병원의 치료가 소홀하다면서 민간병원 진료를 요구하여, 민간병원에서 피해자를 진료 받게 한 결과, 처음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 소재 혜민병원 등에서 재진료를 받게 한 결과, 다발성 늑골골절이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와 대대장에게 법적 처리를 요구하였다. 또한 피해자 측의 지나친 요구가 계속되자 대대장이 위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여 확인해 보니, 기존에 인지한 피해 사실과 다르고 해당 사건이 축소되었음을 알게 되어 대대장에게 헌병대에 통보할 것을 재차 건의하였으나, 이후로는 대대장이 직접 관리한다고 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4) 관련자 4(중위 ☆☆4, ○○대대 ○중대 ○소대 소대장)

가) 2010. 8. 14. 발생한 피해자 1의 폭행 피해 사건에 대하여 같은 달 15. 중대장으로부터 전화상으로 통보받았고, 본인은 부대 과업수행 및 유격훈련 준비로 인해 사건에 관여하지 못했다. 당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중대장과 행정관이 소대원들을 조사하였으며, 같은 달 23. 가해자 1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 영창 15일의 징계 처분을 결정하고 같은 달 26. 위 가해자를 입창 처리하였다.

나) 위 피해자의 폭행 피해 사건 이후, ○중대 ○소대에 구타 사건이 더 있었는지 소대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위 사건 외에도 경미한 구타 사건이 여러 건 더 있었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소대 일부 인원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파악하였다. 피해자 1에 대한 폭행 사건을 조사하면서 가해자 1이 피해자 2를 함께 구타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가해자 1이 징계처분을 받아 입창되었기에 위 가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 당시 구타사건의 중심에는 가해자 1, 2, 3이 있었고, 피해자 2, 3, 4도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을 피해자 1의 추가 진술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당시 ○소대 ○분대장

하사 ○○○은, '과업시간에 행동이 느리고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가해자 1이 피해자 3과 피해자 4의 머리를 쥐어박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5) 관련자 5(대위 ☆☆5, ○○대대 2010. 8. 14. 당직사령)

가) 본인은 2010. 8. 14. 대대 당직사령으로, 중사 ○○○, 하사 ○○○, 하사 ○○○과 당직근무를 했다. 당시 오전과 오후에는 상황유지 및 206초소 근무교대로 대대 상황실에서 근무하였고, 상황에 따라 대대 순찰을 실시하였으며, 당일 22:00경 소등 이후에는 대대통합당직제도 시행에 따라 중사 ○○○, 하사 ○○○, 하사 ○○○은 철수하고, 당직사령 단독으로 익일 01:00경까지 근무했다. 소등 방송 이후에 대대 주둔지 외곽을 40분 동안 순찰하고 복귀하여 대대 상황병에게 특이사항을 확인하였으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다. 당시 23:10경부터 23:29경까지 ○○중대, ○중대, ○○중대, ○○중대, ○○중대 순으로 내무실 등을 순찰하였으나, 구타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는바, 구타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나) 당시 해병○사단은 2010. 8. 8.까지는 중대별 당직사관, 당직부관이 당직 근무를 하였으나, 같은 달 9.부터 사단장 지시에 의해 대대급 단위 통합당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2:00경 소등 이후부터 익일 01:00경까지 혼자서 당직근무를 섰던 것이다.

6) 관련자 6(대위 ☆☆6, ○연대 ○○중대 중대장)

가) 피해자 5가 2010. 12. 26. 연대 공사를 하던 중 철근작업을 하다 안전사고를 당하여 늑골골절상을 입었고, 평소 선임인 가해자 4로부터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행정관 상사 ☆☆7 주관하에 위 가해자에 대한 자체 군기교육(봉사활동 및 얼차려)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나) 본인은 2010. 11. 23.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훈련 증원작전에 참여하였다가 28일 복귀하였고, 당시 상사 ☆☆7로부터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을 구두 및 관련 자료를 통해 보고받은 후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자체군기교육 조치를 지시하였다.

다) 이 사건은 욕설 등 단순한 괴롭힘인 줄 알았는데, 이는 당시 작성된 위 피해자의 진술서 기재사항(2010. 12. 26. 12:40경 쉼터에서 위 가해자로부터 주먹으로 가슴을 6~7회 구타당하여 피해자가 늑골 골절을 입은 사실)을 자세히 보지 못하고 판단한 것으로 잘못처리 된 것 같다.

라.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중위, ○○대대 의무소대장 군의관)

2010. 8. 15. 19:20경 의무병으로부터 복부 진통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의무실에 도착하여 피해자 1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열이 38도이고 복부를 손으로 만졌을 때 상복부 반발 압통이 있어, '폭행을 당했냐'고 물어보았더니, 선임자 1인과 같이 와서 그랬는지 '축구하다 다쳤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통상 군의관들이 환자들과 얘기를 많이 하다보면 처음에는 축구하다 다친 것이라고 하면서 맞은 사실을 부인하나, 나중에 폭력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 피해자의 경우도 그랬다.

2) ○○○(중위, ○연대 의무중대장 군의관)

2010년 4월말에 발령 받아 ○연대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현재까지 폭행과 관련된 상해 사건이 10여건 정도 발견되었다. 군의관은 환자의 치료가 주요임무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환자의 발병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것도 의무관의 임무이다. 통상, 낮은 계급의 사병 환자들의 상해 중 고막 천공, 대퇴부 파열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은 구타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군병원 및 민간병원 진단서, 사건 진술서, 피해자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가해자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지휘감독 관련자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참고인 ○○○ 등에 대한 문답서, 직권사건에 대한 실지조사 보고서, ○사단장 간담회 보고서, 해병 ○사단이 제출한 □□1 구타 사건 조사자료, ○○대대 지휘보고서, 피해자 □□1에 대한 의무기록, ○○대대·○○중대·○○대대 구타사건 관련 징계기록과 징계처리표(2010년), ○연대 의무대 환자발생보고서와 의무기록리스트(2010년), 피해자 및 가해자들에 대한 면담관찰기록부와 개인신상기록부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연대 ○○대대 피해자 1, 2, 3, 4에 대하여

1) 피해자 1은 2010. 5. 31.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받은 후 같은 해 7. 16. 해병○사단 ○연대 ○○대대 ○중대에 전입하여 복무하던 중이었다. 분대 선임병 가해자 1은 같은 해 8. 14. 22:00경 소등 후 생활실에서, 일병 ○○○에게 망을 보도

록 한 후 분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소 훈련태도 및 청소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1, 2를 이층 침상난간에 매달리게 한 뒤, 위 피해자들의 복부, 가슴 등 온몸을 주먹, 발, 무릎으로 10회에 걸쳐 마구 폭행하고, 피해자 1이 호흡곤란과 고통으로 몸을 뒤틀자 맞을 때 움직였다는 이유로 계속 무릎과 발로 복부를 폭행하였으며, 이어 손바닥으로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뒤꿈치로 허리 부위를 내리찍는 등 30여분에 걸쳐 폭행을 하였다.

2) 위와 같은 폭행의 결과로 피해자 1이 고통을 호소하자, 2010. 8. 15. 18:30경 가해자 1, 2, 3의 주도하에 위 피해자가 축구(풋살 게임)를 하다 다친 것으로 입을 맞추어 중대장 등 지휘관에게 허위 보고하고, 가해자 1이 피해자 1을 연대 의무실로 호송하였으며, 응급진료가 필요하다는 군의관의 진단에 따라 같은 날 19:40경 위 피해자를 해군 ○○병원 응급실로 호송하였다.

3) 2010. 8. 17. 피해자 1이 관련자 2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병원을 방문한 관련자 2, 3에게 가해자 1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관련자 2, 3이 가해자 1을 조사한 결과, 위 가해자로부터 '청소 불량을 이유로 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6~7회 구타하였다'는 진술을 들었으며, 관련자 2는 같은 달 20. 위 피해자와 "상병 △△1이 처음엔 축구하다 다쳤다고 했다가 사실대로 다 말했다. 그런데 그대로 말하면 △△1은 구속되고, 조금 진술을 바꾸면 영창행인데, ○○이 생각은 어떠니."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고, 관련자 3은 피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대대장인 관련자 1에게 보고한 후, 관련자 2, 3은 같은 달 23. 가해자 1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4) 피해자 1의 부모는 군 병원의 치료가 소홀하다면서 민간병원에서의 진료를 요구하였고, 위 피해자가 같은 해 9. 1. ○○ 소재 혜민병원 등에서 MRI 및 핵의학검사를 받은 결과, 다발성 늑골(좌측 2, 3, 6, 7, 8, 9, 우측 5, 6, 7) 및 중골 골절, 요추부 염좌 및 좌상 등으로 5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중상해 진단을 받았다.

5) 같은 해 9. 초경, 관련자 1은 피해자 1의 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이 축소되었다는 항의를 받은 후 같은 달 9. 대대 군의관 중사 ○○○을 통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1의 피해사실을 파악하였고, 사실관계를 알게 된 관련자 2, 3으로부터 헌병대 수사 등의 추가조치를 건의 받았으나, 이미 가해자 1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졌고, 당사자들의 부모가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6) 같은 해 9. 초순 관련자 1, 2, 3, 4 등은 피해자 1의 구타사건을 자체 조사하면서,

피해자 1이 제출한 자필진술서 등을 통해, 같은 해 7.~8.경 가해자 1, 2, 3 등이 피해자 2, 3, 4에게 크고 작은 구타·가혹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이러한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 1의 부모가 같은 해 12. 3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연대 ○○중대 피해자 5, 6, 7에 대하여

1) 피해자 5 관련 사실

가) 2010. 5. 21. ○연대 ○○중대에 전입하여 복무하던 피해자 5는, 전입 초기부터 가해자 4로부터 다음과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 가해자 4는 청소 불량 등의 사소한 이유로 모나미볼펜, 가위 등을 위 피해자의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우고 이를 꽉 잡은 후 돌리는 가혹행위를 하여, 그 후유증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검지부위 뼈가 돌출되는 상해를 입히고, 조별과업 후나 식사 후 등 수시로, 초소 근무지·○연대 건물 복도 끝 전화박스·숨터·생활실 등에서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가슴, 복부를 때리거나, 숟가락으로 정수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나) 같은 해 12. 26. 14:40경 위 가해자는 ○○중대 숨터에서, 위 피해자가 정리정돈 등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6~7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좌측 2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는 해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위 피해자는 당시 피해 사실을 선임병 ○○○을 통하여 소속 분대장인 관련자 9에게 알렸으나, 관련자 9로부터 구타 사실을 소속 중대장 등에게 말하지 말 것을 요구받고, 철근작업 중 다친 것이라고 피해 사실을 숨겼다가, 입원치료 중 위 피해자의 상해 상태를 이상히 여긴 의무중대장 중위 ○○○의 문진과정에서 구타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위 ○○○가 당시 ○○중대 행정관인 관련자 7에게 위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관련자 7은 위 피해자와 위 가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구타 사실 일부를 확인하는 진술서를 받았으나, 위 피해자가 부대 작업 중 늑골 골절상을 입었고 위 가해자가 욕설을 한 정도의 경미한 사안으로 파악해 중대장인 관련자 6에게 구두 보고한 후 위 가해자에게 자체군기교육을 실시하였다. 관련자 6은 당시 작성된 위 피해자의 진술서 기재사항(2010. 12. 26. 12:40경 숨터에서 위 가해자로부터 가슴을 6~7회 주먹으로 구타당하여 피해자가 가슴뼈 골절을 입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2011. 1.

10.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개시 당일, 위 관련자 6은 위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가해자에 대한 다른 처벌을 원하는가를 물었고, 위 피해자는 기수열외 등을 우려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으나, 같은 달 12.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과의 대면조사과정에서 그 의사를 바꾸어 위 가해자에 대한 적법한 처벌을 희망하였다.

2) 피해자 6 관련 사실

가) 피해자 6은 ㅇ연대 ㅇㅇ중대 전입 직후부터, 가해자 5, 6으로부터 강제음식취식, 변기 청소 걸레를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2010. 7. 21. 연대 보급창고에서 위 가해자들로부터, 화장실 등의 청소 불량을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당하였다.

나) 위 피해자는 위 피해사실을 당시 ㅇㅇ중대 행정관인 관련자 8에게 이야기했으나, 관련자 8이 가해자 5, 6에게 구두경고만 하여 위 가해자들에게 더욱 폭행 등의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스트레스로 의식소실이 되어 입실하였고, 의무중대장 ㅇㅇㅇ와의 진료 상담 중에 피해사실을 말하여, 뒤늦게 위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영창 및 타 대대 전출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해병사단 헌병대 조사 중, 처벌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기수열외 등의 피해를 당할까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3) 피해자 7 관련 사실

가) 피해자 7은 ㅇ연대 ㅇㅇ중대에 전입하여 조리실에 배치된 직후부터, 조리실 선임병인 가해자 7로부터, '선임기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뺨을 맞고, '조리식단표를 암기하지 못한다'고 발로 대퇴부를 5회 폭행당하였으며, 다른 선임병이 폭행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조리실에서 왕복달리기, 쪼그려뛰기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나) 2010. 10. 19. 가해자 8은 피해자 7에게 소보로 빵 5개를 10분 안에 먹을 것을 강요하고, 위 피해자가 먹지 못하자 따귀를 20회 정도 때렸으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는 발로 가슴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폭행의 결과로 대대 의무실에 입실되어 폭행 경위를 의무관에게 말하였으나, 관련자 7, 11이 의무실에 찾아와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까지는 하지 말고 영창정도로 끝내면 어떻겠냐'고 위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관련자 10은 중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자 8에게는 휴가제한 5일, 가해자 7에게는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5. 판단

가. 군의 구타 및 가혹행위 금지 관련 규정

별지 참조

나. 해병 ○사단 ○연대의 구타·가혹행위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과 같은 가해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타·가혹행위는, 사적 제재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위 피해자들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 이와 같이 선임병들의 후임병들에 대한 구타·가혹행위가 소속 부대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해당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축소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가해자들 또한 후임병으로 복무하였을 때 선임병으로부터 같은 형태의 구타·가혹행위를 받아 왔던 관계로, 폭언이나 폭행·기합 등의 가혹행위, 상해 정도가 경미한 폭행 행위는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이를 참고 견디는 것이 '해병의 전통'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적인 구타·가혹행위를 피해자들이 지휘자 등 상급자에게 발설할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공공연히 기수열외(일명, '기수빼기')를 하는 등 사병 간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팽배한 점,

둘째, 사고 부대의 지휘·감독자(관)들 또한, 부대의 명예훼손 및 불이익을 우려해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아예 묵인하고, 구타·가혹행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피해자 등의 신고로 가혹행위 등이 인지된 경우에도 상급 부대에 지휘보고를 누락하는 한편, 잔뜩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선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묻거나 피해자의 처벌 요청을 만류하여, 구타·가혹행위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자체적인 교육 및 징계처리를 통해 경미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한 점,

셋째, 현 해병○사단장이 2010. 6. 25. 부임하고, 같은 해 8. 9.부터 중대급 당직사관 및 부관으로 운영하던 상황근무제체를 대대급 단위의 통합 당직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22:00경 소등 이후부터 익일 01:00경까지는 대대통합 당직사관 1명이 당직 근무를 하여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일과 후 취약시간대에 대한 병력통제 및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대 내의 구타 등 군기 사고가 증가(2010년 기준, 부임 전 11건에서 부임 후 42건)하게 된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넷째, 해병○사단장 및 ○연대장은 구타·가혹행위가 발견되어 사건화 된 경우, 대체

로 가해자인 사병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였지만, 지휘·감독책임자인 간부들에 대해서는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지침」에 의거하여 구타·가혹행위의 발생 및 인지 경위, 대처상황 등을 고려한 지휘감독책임을 묻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연대 내에서 구타·가혹행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점,

다섯째, 해병○사단 ○연대 의무대 환자발생보고서 및 의무기록리스트(2010년)에 의하면, 고막천공 30여 건과 이외에 비골골절, 대퇴부 파열, 늑골 골절, 안면부 및 정강이 타박상 등이 250여 건에 이르고, 담당 군의관의 진료상담 경험 등을 근거해 볼 때 상당수 후임 피해 사병의 경우에는 구타·가혹행위를 당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함에도, 의무실의 '환자접수부, 진료부, 환자보고서' 상에 상해 환자의 발병 경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등 그 관리가 부실한 점 등이 있었다고 보인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해병○사단 ○연대 내에서 극심한 구타·가혹행위가 사병 간에 광범위하게 반복적·관행적으로 발생한 데에는,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관용적인 잘못된 병영 문화와 지휘·감독자들의 관리 부실에 상당한 원인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및 관행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2조 제4항,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가. 해군참모총장에게,

1)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해병○사단장과 ○연대장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과, 이 사건 관련자 1~11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통하여 폭행사건을 축소·은폐·지연 처리한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위와 같은 구타·가혹행위 등의 재발 방지 및 잘못된 병영문화 등의 관행 개선을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병대사령관에게,

1) 가해자 1∽8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근거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사법처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해자 1∽7에 대하여, 해당 부대 내에 존재하는 기수열외 등의 관행에 의해 제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보직 조정 및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다.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1과 피해자 5는 위 피해 사실을 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2011. 3. 2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 원 장주영 위 원 윤남근

16 11직권3, 11진정8 등 병합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2011. 9. 19. 결정

[1]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인권상황 및 관련 제도·관행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 사례

가.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정비하고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나. 전·의경 대원을 포함하여 지휘요원에 대한 정례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전·의경의 인권보호 및 합리적 부대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를 정비할 것

다. 전·의경 대원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 등 신상관리를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고자 및 피해자가 보복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직변경, 분리조치 등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

라. 전·의경 복무 중 사망사고 발생 시 객관적인 조사 및 사망원인에 대한 의문점 해소를 위하여 유가족대표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운영할 것

마. 전·의경 대원들의 복무부적응·부적합 등 구타 및 가혹행위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소원수리, 설문, 과학적 심리·인성 검사 등 다양한 접근방안을 활성화하고, 부대원들이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심리전문가를 채용·배치할 것

바. 전·의경 직권면직제도와 관련하여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취지에 맞게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위 규칙인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23조 제1항의 규정을 일관성 있게 개선할 것

사. 전·의경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관행 개선을 위하여,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할 것

아.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보호와 향상 및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감이 높은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고 현행 전·의경 제도는 폐지할 것

[2] 국방부장관에게, 현행 전·의경 제도를 폐지함에 있어, 경찰청의 경력(警力)운용 계획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것을 권고한 사례

[3]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의경 제도 폐지추진에 따른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업경찰관 인력증원을 적극 지원할 것을 권고한 사례

[4]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의경제도 폐지에 따라 국민의 인권보호와 향상 및 국민에게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감이 높은 직업경찰관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피해자가 선임대원들로부터 수차례 구타를 당했고,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을 부대에 신고하였음에도 중대장 등 지휘요원들은 이러한 구타·가혹행위 사실을 알고서 묵인·방조·축소 처리하였는바, 이러한 선임대원 및 지휘책임자들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또한 이 사건 피해자 등 후임대원들이 선임대원들로부터 수차례 구타를 당하였고, 이러한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을 부대에 신고하였음에도 중대장 및 지휘요원들은 이를 알고도 묵인·방조·축소 처리하였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관행 및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2] 전·의경제도를 폐지할 경우 그동안 사회적 안정에 큰 역할을 한 경찰력의 축소로 치안에 불안요인이 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필요한 최소한의 경찰력을 증원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전의경 제도는 관련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찰청과 국방부도 전·의경제도의 폐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전·의경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국민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기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높은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여 책임적인 법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전·의경 당사자 및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함.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사 건▐ 11직권300, 11직권500, 11직권600, 11진정800

▌사건명▐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인권상황 및 관련 제도·관행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정비하고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나. 전·의경 대원을 포함하여 지휘요원에 대한 정례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전·의경의 인권보호 및 합리적 부대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를 정비할 것

다. 전·의경 대원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 등 신상관리를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고자 및 피해자가 보복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직변경, 분리조치 등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을 마

련할 것

라. 전·의경 복무 중 사망사고 발생 시 객관적인 조사 및 사망원인에 대한 의문점 해소를 위하여 유가족대표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운영할 것

마. 전·의경 대원들의 복무부적응·부적합 등 구타 및 가혹행위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소원수리, 설문, 과학적 심리·인성 검사 등 다양한 접근방안을 활성화하고, 부대원들이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심리전문가를 채용·배치할 것

바. 전·의경 직권면직제도와 관련하여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취지에 맞게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위 규칙인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23조 제1항의 규정을 일관성 있게 개선할 것

사. 전·의경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관행 개선을 위하여,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할 것

아.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보호와 향상 및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감이 높은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고 현행 전·의경 제도는 폐지할 것

2. 국방부장관에게, 현행 전·의경 제도를 폐지함에 있어, 경찰청의 경력(警力)운용 계획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것을 권고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의경 제도 폐지추진에 따른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업경찰관 인력증원을 적극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의경제도 폐지에 따라 국민의 인권보호와 향상 및 국민에게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감이 높은 직업경찰관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5.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들의 구타·가혹행위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

Ⅰ. 직권조사와 제도개선 권고 배경

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2007년 실태조사, 2008년 직권조사를 통해 전·의경에 대한 구타·가혹행위 예방을 위하여 정책 권고를 하였고, 이후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인권친화적 근무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의경 선임병들의 후임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이러한 악습적 행위가 조직의 안정과 군기유지라는 이유로, 지휘책임자 들에 의해 묵인·방조 또는 은폐·축소 의혹이 있는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나. 최근 전·의경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의 정도가 크고, 그 범위가 넓으며, 전·의경 인권침해의 예방적 가치 및 사회적 관심이 높다고 보임에 따라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전·의경 관련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2011. 1. 10.과 같은 달 27.「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조사결과, 2007년 및 2008년 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제도개선 권고'를 한 부분에 대하여,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전·의경 관리 개선책 및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철저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전·의경 관리와 관련된 관행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구타·가혹행위와 관련된 전·의경 당사자 및 관계자들의 의식 전환을 위한 인권교육,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예방대책 시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피해자 보호 및 신입대원 등 복무부적응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전문상담 강화 등을 비롯한 현행 전·의경 관리와 관련된 관행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권고 외에도 전·의경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위하여, 궁극적으로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Ⅱ. 진정 및 직권조사 사건별 조사결과 및 판단

1. ○○지방경찰청 의경 백혈병 사망사건(11직권300, 11진정800 병합)

가. 사건개요

1) 관련부대 : ○○지방경찰청 교통경비과 기동0중대

2) 진 정 인 : 박○○

3) 피 해 자 : 故박○○

4) 피진정인

가) ○○지방경찰청 교통경비과 기동0중대 중대장 김○○, 같은 전임중대장 전○○, 이하 같은 중대 0소대장 윤○○, 같은 전임소대장 이○○, 0소대 부관 이○○, 같은 전임부관 백○○(이상 지휘책임자 6명)

나) 같은 중대 의경 김○○, 김○○, 윤○○, 이○○, 이○○, 이○○, 정○○, 조○○, 최○○, 최○○, 홍○○(이상 가해자 11명)

5) 진정 및 사건요지

가) ○○지방경찰청 교통경비과 기동0중대 소속 故 박○○ 의경(이하 '피해자'라 함)은 2009. 4. 2.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한 후, 같은 해 5. 7. ○○○○기동대 0중대에 배치되었는데, 선임병들은 배치된 첫날 피해자가 경례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구타하고, 경찰버스로 데려가 발로 짓밟고, 피해자를 보일러실에 하루 종일 가둬두거나, 물을 못 마시게 했고, 방패로 이마를 내려치고 밥을 늦게 먹으면 구타하였다.

나) 위와 같은 가혹행위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2009. 12. 21. ○○대병원에서 백혈병(혈액암) 진단을 받고, ○○성모병원에 입원 치료 중 2010. 6. 30. 사망하였고, 이에 대하여 ○○성모병원 담당의사 이○○ "갑자기 생긴 스트레스가 이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확인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가해자 및 지휘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및 재발방지를 원한다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되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위원회는 동 진정사건의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원인 및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 진정사건 조사외에 직권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

가해 선임병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혹행위를 하였다.

연번	일 시	장 소	가해대원	피해대원	구타 및 가혹행위
1	'09.5.21 20:40경	기동0중대 2소대 내무반 안	이○○	고 박○○, 이○○	기동0중대가 안면도 꽃박람회에서 귀소한 첫날 일석점호를 준비하며 피해자들이 번호를 늦게

연번	일 시	장 소	가해대원	피해대원	구타 및 가혹행위
					한다고 가해자는 2층 침상을 잡고, 한쪽발로 고 박○○의 가슴을 7-8회, 이○○의 가슴을 5회 정도 밀어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음.
2	'09.5.21 21:30 - 23:30	기동0중대 2소대 내무반안 커튼 뒤 공간	최○○	고 박○○, 이○○	일석 점호에서 실수한 사실과 다음날 아침에 중대장 신고식과 관련하여 교육 겸 신고식 연습차 가해자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발로 정강이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이○○를 20-30회, 같은 고 박○○를 30-40회에 걸쳐 폭행하였음.
3	'09.5.하순 일자 미상 20:00경	기동0중대 2소대 내무반 안	최○○	고 박○○, 이○○	피해자가 청소를 똑바로 하지 않고 시위현장에서 실수한 부분을 꼬투리 잡아 가해자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약 40대, 주먹으로 가슴을 약 10회 폭행하였음.
4	'09.6. 초순경 일자 미상	당진 현대제철 시위진압상황대기 중인 기동0중대 2소대버스 내	최○○	고 박○○, 이○○	암기사항을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손바닥으로 각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15회 정도 폭행하였음.
5	'09.6. 초순경 일자미상	기동0중대 2소대 버스 내	최○○	고 박○○, 이○○	시위출동장비(진압장구)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해자는 2소대 버스 뒷자리에서 손바닥으로 각 피해자들의 뺨을 1-2회씩 주먹으로 가슴을 3-4회 폭행하였음.
6	'09.6.초 일자 미상 20:00경	기동0중대 2소대 내무반	최○○	고 박○○, 이○○	내무반 청소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주먹으로 가슴을 2-3회 정도 폭행하였음.
7	'09.6초순 일자 미상 12:30경	당진 현대제철 상황 대기중 기동0중대2소대 버스 내	최○○	고 박○○, 이○○	당진 현대제철 상황대기중 점심식사를 빨리하라는 취지로 가해자가 손바닥으로 각각 피해자 등의 얼굴 1-2회 폭행하였음.
8	'09.6.10 시간 미상	기동0중대 2소대 내무반	최○○	고 박○○, 이○○	공식적인 면회 외출을 나가는 피해자 고 박○○, 같은 이○○에게 "우리는 훈련을 하는데, 니들은 면회 나가냐"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3-4회 차례씩 폭행하였음.
9	'09.6. 중순경 일자 미상	기동0중대 2소대 버스 내	최○○	고 박○○	○○시 소재 대산 화물연대 시위진압 당시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얼굴을 5-6회, 발로 정강이를 5-6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음.
10	'09.6-7경 일자 미상 15:00경	기동0중대 2소대 버스 내	최○○	고 박○○, 박○○, 조○○, 이○○, 노○○	2소대 막내급 대원들을 집합시켜 암기사항을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3-4회씩 각 폭행하였음.

연번	일 시	장 소	가해대원	피해대원	구타 및 가혹행위
11	'09.7.초순 일자 미상 08:00경	기동0중대 2소대 버스 내	최○○	고 박○○, 이○○, 노○○, 이○○, 조○○, 이○○ 등	기동0중대가 시위진압 출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원들이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나무로 만든 상황판(두께 약 1cm)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2-3회씩 폭행하였음.
12	'09.7.경 일자미상	평택시○○자동차 시위상황대기중 기동0중대 2소대 버스 내	홍○○	고 박○○, 진○○, 최○○ 등 2소대 후임 다수	암기사항을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2소대 대원 고 박○○, 최○○, 진○○, 노○○ 등 후임자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3-4회 정도 폭행하였음.
13	'09.7.중순 일자 미상 19:00	기동0중대 2소대 버스 내	최관섭	고 박○○, 이○○ 등 막내급 2-3명	취사반에서 식판을 깨끗하게 세척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동 버스로 고 박○○와 이○○ 등 막내급 2-3명 정도를 불러서 각각 가슴 4-5회,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5-6회 정도 폭행하였음.
14	'09.7.중순 일자 미상 16:00경	기동0중대 2소대 버스 내	최○○	고 박○○	부대생활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박○○를 2소대 기대마(전경버스)로 불러 10여분에 걸쳐 교양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정도 폭행하였음.
15	'09.7. 일자미상	기동0중대 2소대 내무반	홍○○	고 박○○	홍○○가 샴푸, 수건, 속옷 등 세면도구 금액 미상의 물품을 지위를 이용하여 갈취하였음.
16	'09.8.초순 일자 미상 14:00경	기동0중대 2소대 버스 내	조○○ 김○○	고 박○○, 이○○, 이○○, 이○○	가해자 김○○, 조○○는 공동으로 수경 이○○의 빨래를 피해자들이 건조대에 건조시켜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버스 의자에 앉혀놓고 주먹으로 가슴을 4-5회, 손바닥으로 얼굴을 5-6회씩 도합 30여분에 걸쳐 폭행하였음.
17	'09.9.초순경 일자미상	기동0중대 3소대 버스 내	이○○	고 박○○	기동0중대 막내급 후임병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대건물 공터에 성명미상의 후임병들을 집합시키고, 가해자의 발로 피해자 박○○를 수회 폭행하였음.
18	'09.9.30 16:00경	기동0중대 2소대 버스 내	김○○	고 박○○, 윤○○	○○시 소재 ○○천 둔치에서 다중범죄진압훈련과정에서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고,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2-3회씩 폭행하였음.
19	'09.9.말 일자미상 19:00경	기동0중대 2소대 버스 내	김○○	고 박○○, 정○○	부대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고 박○○, 같은 정○○을 땡겨자세로 앉혀놓고 주먹으로 가슴, 복부, 허벅지, 옆구리 등 40-50여회 씩 폭행하였음.

연번	일 시	장 소	가해대원	피해대원	구타 및 가혹행위
20	'09.10. 초순경, 일자 미상	기동1동대 2소대 버스 내	최○○	고 박○○	피해자 고 박○○의 후임 정○○이 생활을 잘못한다며 피해자를 2소대 버스로 불러 부대 생활에 대한 교양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정도 폭행하였음.
21	'09.10.중순 일자 미상 12:00경	기동0중대 취사반	이○○	고 박○○, 윤○○, 진○○, 명○○	중대 소대 내무반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왜 청소 지적이 나오게 했냐!, 죽을래"라는 등 욕설을 하며 허벅지 1회, 주먹으로 어깨 부위 2회씩 폭행하였음.
22	'09.11.하순 일자 미상 22:00경	기동0중대 본부소대 내무반	이○○	고 박○○, 장○○	일석점호시 번호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2회 폭행하였음.
23	'09.12.초순 일자미상 07:30경	기동0중대 보일러실문앞	김○○	고 박○○, 명○○, 조○○, 이신	일조 점호시에 자세가 불량하였다며 가해자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2-4회 정도씩 폭행하였음.
24	'09.12. 7경 일자미상	기동0중대 본부소대	정○○	고 박○○	피해자 고 박○○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다녀와 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 니 짠밥에 죽을 먹냐 미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의 머리를 1회 양 주먹으로 팔을 3-4회 가량 폭행하였음.
25	'09.12. 7경	기동0중대 취사반	이○○	고 박○○	고 박○○가 병원에 다녀와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후라이팬을 집어던지고, 아픈 사람이 너뿐이냐, 주는 대로 아무거나 처먹어라 욕설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음.
26	'09.12. 9 09:00경	기동0중대 행정반 사무실	윤○○	고 박○○	기동0중대 하반기 사격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반장 백관기가 화를 내고 나가자, 선임이었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뺨을 2-3회 폭행하였음.

2) ○○지방경찰청 조치사항

○○지방경찰청은 기동0중대 소속 피해자 구타 및 가혹행위 등과 관련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하였고, 조사결과 구타 및 가혹행위 등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이 사건의 폭행·가혹행위자 11명에 대해 상습폭행,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2011. 1. 27.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지휘감독자 6명에 대하여는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면 「전투경찰순경관리규칙」 및 「전경구타및가혹행위근절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한 후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을 위한 직무고발

또는 징계조치하고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진상조사를 하지 않거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 하면서 폭행 등 사고 경위를 축소 처리하여 가해대원들을 가벼운 징계처분에 그치게 하는 등 구타 근절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사유로, 위 같은 날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다. 판단 및 조치

1)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선임대원들로부터 수차례 구타를 당했고,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을 부대에 신고하였음에도 중대장 등 지휘요원들은 이러한 구타·가혹행위 사실을 알고서 묵인·방조·축소 처리하였는바, 이러한 선임대원 및 지휘책임자들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현재 진정관련 가해자 및 지휘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종결 처분되었으므로, 본 사건의 진정요지 중 가해자 및 지휘요원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 등 후임대원들이 선임대원들로부터 수차례 구타를 당하였고, 이러한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을 부대에 신고하였음에도 중대장 및 지휘요원들은 이를 알고도 묵인·방조·축소 처리하였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 관행 및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지방경찰청 000전경대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11직권500)

가. 사건개요

1) 관련부대 : ○○지방경찰청 000전경대

2) 피 해 자 : 홍○○, 정○○, 변○○, 안○○, 손○○, 이○○(이상 복무이탈자), 김○○, 강○○, 김○○, 강○○, 전○○, 김○○(이상 12명)

3) 가해자 : 김○○, 김○○, 이○○, 류○○, 장○○(이상 5명)

4) 사건요지

○○지방경찰청 000전경대 소속 이경 홍○○ 등 6명은 2011. 1. 23. 부대 내에서

구타·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날 04:45경 부대의 근무지(숙소)를 집단 이탈하여, 원주의 한 PC게임방에서 이메일을 통해 자대배치를 받은 직후 선임들로부터 주먹 등으로 수차례 구타를 당하였고, 부대 내에서 암기 강요 등 각종 가혹행위 악습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방경찰청 112센터에 구타·가혹행위 피해를 신고하여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

가해선임병들은 피해자들에 다음과 같은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

연번	일 시	장 소	가해대원	피해대원	구타 및 가혹행위
1	'10.12.2. 16:00경	본부 생활실	류○○	안○○	발령 첫날 짐을 빨리 풀어 정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등 부위를 2회 폭행
2	'10.12.2. 19:00경	○○아래 정원 흡연장소			흡연장소에서 담배를 피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발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폭행
3	'10.12.3. 오전경	샤워장			옷을 빨리 벗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우측 팔을 1회 폭행
4	'10.12.26. 19:00경, '10.12.27. 19:00경	○○ ○○읍 소재 '한정식당'	이○○		담배를 사야 한다며 체크카드를 강제로 빌려감
5	'10.12.2. 19:30경	○○아래 정원 흡연장소	김○○		담배를 피우면서 발을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왼쪽 발을 1회 폭행
6	'10.12.13. 09:00경 20:00경	취사장	김○○	손○○ 등 동기 11명	먹다 남은 연두부를 강제취식하도록 하여 구토를 하도록 가혹행위를 가함
7	'11. 1. 2. 19:30경	○○ ○○군 소재 ○○장 여관 301호	장○○	손○○	늦게 자신의 거실에 왔다는 이유로 맨발로 복부를 2회, 주먹으로 가슴과 팔을 3회 폭행
8	'10.12.2. 19:30경	○○아래정원 흡연장소	김○○	변○○ 등 동기 12명	담배를 강제로 피게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각(정자세)을 제대로 잡기 않는다며 주먹으로 복부와 가슴부위를 4회,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
9	'10.12.2. 16:00경	본부생활실	류○○		첫 자대배치 직후 짐을 늦게 푼다며 주먹으로 오른쪽 팔 부위와 가슴부위를 4회 폭행
10	'10.12.3. 20:00경	본부생활실	류○○		침상에 앉아 군가를 외우는데 각을 잡고 똑바로 앉아 있지 않는다며 좌측 종아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

연번	일 시	장 소	가해대원	피해대원	구타 및 가혹행위
11	'10.12.6. 20:00경	세면장	류○○		세면 시 한 번에 런닝과 티셔츠를 벗자 "니가 뭔데 옷을 한 번에 2개씩 벗냐."면서 주먹으로 등 부위를 3회 폭행
12	'10.12.중순 시간미상경	○○지구대 사무실	김○○	강○○	쳐다보는 것이 마음에 안든다며 뺨, 가슴을 3회 폭행
13	'11. 1. 2. 오후경	○○ ○○군 소재 ○○장모텔 302호	김○○		조용한 것도 아니고 활발한 것도 아니고 중간으로 어정쩡하다는 이유로 턱을 때리고 돈과 담배를 빼앗음
14	'10.12.22. 19:30경 '11. 1. 4. 02:00경	○○ ○○군 소재 ○○장모텔 303호	이○○	강○○	친구사진을 빼앗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우기면서 가슴을 1회 폭행
15	'10.12중순 13:00경	중대 식당	이○○	전○○	점식 식사 중 "잠깐 나와, 안경을 벗어"라고 한 후 주먹으로 뺨과 목을 1회 폭행하고 담뱃불을 얼굴에 집어 던짐
16	'11. 1. 4. 02:00경	○○ ○○군 소재 ○○장모텔 303호	강○○	김○○	족구를 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명치부분을 폭행
17	'11. 1. 4. 02:00경	○○ ○○군 소재 ○○장모텔 303호	이○○ 강○○	이○○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뺨을 1회 턱을 3회 폭행

2) 000전경대 시설 및 인력관리 등

가) 000전경대는 단독청사로 1층은 식당, 행정실, 직원생활실(기율실 공용), 대장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2층은 전경 생활실 3개소(복층 철재침실구조로 약 40여 명씩 수용), 화장실, 샤워실, 세면실, 창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생활실이 전반적으로 정리정돈이 잘 안되어 있고, 샤워실, 세면실 등은 관찰창문이 없는 등 밀폐되어 있어, 음성적인 구타·가혹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나) 000전경대는 이경 48명, 일경 37명, 상경/수경 5명 총 90명으로 신임대원이 편중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 이경급 신임대원 간 군기잡기 등 내부부조리가 상존할 구조적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계급별 쏠림현상은 2010. 9월경부터 시작되었고, 이즈음부터 직원이 8명(중대장 1, 소대장 2, 소대부관 2, 차량반장 1, 중대부관 1, 행정관 1)으로 축소되어 주간에는 중대장, 행정관, 일근근무자가 행정관리를 하고, 3개 생활실 등 전경관리를 당직부관 1명이 09:00경부터 13:00경까지, 당직관 1명이 13:00경부터 18:00경까지 하고, 야간에는 18:00경부터 익일 01:00경까지 당직부관이, 01:00부터 09:00경까지는 당직관이 전경관리를 도맡아 옴에 따라 실질적인 동행동숙의 전경관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특히, 2010. 12. 2. 3196기(무단이탈자 6명 기수) 이경 변○○을 비롯한 12명의 대원이 000전경대로 일시적으로 전입하여, 갑자기 많은 대원 관리에 업무과중이 있었고, 000전경대로 전입 즉시 ○○지방경찰청에서 대원들을 방범활동에 투입하라는 지시에 따라 전입한 다음날인 12. 3.부터 이동방범근무에 투입되어 이들에 대하여 신임대원 전입교육인 부대적응 2주 과정 및 심리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지휘요원은 각 대원들의 특성(가정환경, 성격, 소질,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이들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실질적인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형식적인 부대관리 등

가) 000전경대는 중대장 등 지휘요원들이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인권교육, 소원수리, 개별면담 등 실시해 왔으나, 이 사건에서는 전경대원 간 구타 및 가혹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사항이 미미하고 형식적이며, 또한 구타 등 가혹행위가 발생하여도 가해대원에 대해 「전경구타및가혹행위근절규칙」 등에 따른 발생보고, 징계 등의 처리를 하지 않고, 내부 공적제재(교양조치)의 형식으로 소극적으로 축소처리하고, 단 한 건도 지휘자 등에 대하여는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은 사례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또한 2010. 12월 부대 자체의 '생활문화 자가진단 결과'를 보면, 잔존하는 악습유형으로 신임대원 적응 기간 중 상급자의 허락 하에 화장실 이용 및 물먹기, 생활실 대기 시 정자세로 앉아있기, 소대원간의 대화 금지하고, 점호 시에는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게 하는 행위(일명 '정면뚫기'), 관등성명 시 목소리를 크게(악을 써서)하는 행위가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구두주의 및 교양조치만 하였을 뿐 이에 대한 공적제재 및 시정조치를 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다.

다) 특히, 000전경대 중대장, 소대장, 행정반장 등은 2011. 1. 23. 6명의 전경대원들이 ○○도 ○○ 구제역 방역근무 시 지휘자 1명의 관리 하에 숙영지를 4인 1실의 사설모텔로 정하여 대원들을 생활하게 하면서, 별도의 일석점호, 불침번, 명확한 근무계획의 수립 없이 경력을 운영하여, 위와 같은 숙영지에서 대원 간 금품갈취, 폭행, 집합 등 구타 및 가혹행위가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위와 같은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던 이경 김○○이 자신의 아버지의 지인을 통해 중대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중대장이 이를 2011. 1. 9. 확인하고, 같은 달 12. 추가피해자들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보고 및 징계 등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아 같은 달 23. 피해대원 6명이 제2차 피해를 우려해 집단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4) 관계기관 조치사항

가) 경찰청

(1) 경찰청은 2011. 1. 28. ○○지방경찰청 000전경대 집단탈영 사건에 대해, 탈영한 대원 6명은 전입 이후 암기사항을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선임인 가해대원들로부터 수차례 구타를 당했으며, 2010. 12. 24.부터 ○○지역 구제역 이동통제소 지원 근무 도중, 구타·가혹행위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지휘요원이 제대로 조치를 해 주지 않아 부대에 복귀할 경우 보복이 두려워 탈영한 것이라고 발표하고, 이에따라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작전전경계장에 대해 징계,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000전경대 배속서)에 대해 경고하고, 000전경대를 해체하였다.

(2) 또한 경찰청은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2011년 전·의경 생활문화 개선 대책으로 전·의경을 보호·관리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없는 지방청의 전·의경 부대를 관리 능력이 있는 지방청으로 이동 배치 하기로 하여, ○○지방경찰청의 전·의경 중 1/3을 다른 지방청으로 이동 배치하고, 2011. 1.26 ~ 27 경찰청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특별점검팀 편성, 전국 신임대원들을 상대로 소원수리 실시, 피해사례 심층조사, 경찰청 소속 특명점검단(감찰단)을 상시 운영하고, 피해신고를 112로 단일화, 2012년 이후 전·의경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나) ○○지방경찰청

(1) ○○지방경찰청은 2011. 3. 22. ○○지방경찰청 000전경대 중대장 경감 정○○에 대해, 중대내 발생한 구타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 원인, 피해정도, 처벌의사 유무를 불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고, 부대 자체회의를 수차 개최하면서 지휘요원들로부터 상부에 보고할 것을 건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책 받을 것이 두려워 "요즘 시기가 좋지 않으니 나중에 보고하자. 72시간 이내에 자체적발을 해야 직원이 다치지 않는데 이미 72시간이 지났으니 자체적으로 해결하자."라고 묵살하였고, 신임대원이 전입하여 부대 적응기간(2주) 중 지휘요원들은 대원과 함께 동행동숙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구타·가혹행위를 미연에 예방치 못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였다며 그 책임을 물어 해임[2011. 3. 15. ○○지방검찰청 ○○지청 형사입건(불

구속)]하였다.

(2) 또한, ○○지방경찰청은 같은 000전경대 1소대장 경위 정○○, 1소대부관 경장 김○○, 2소대부관 경장 최○○, 중대부관 경사 이○○, 행정관 경장 김○○에 대해서는 신임대원 부대조기적응 교육기간 및 ○○ 구제역 파견근무기간 중 7~42회 구타, 가혹행위 발생 및 보고 누락 등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같은 000전경대 2소대장 경위 박○○에 대해서는 신임대원 부대조기적응 교육기간 및 ○○ 구제역 파견근무기간 중 총 12회 구타, 가혹행위 발생 및 보고 누락 등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같은 000전경대 차량반장 경사 허○○에 대해서는 신임대원 부대조기적응 교육기간 및 ○○ 구제역 파견근무기간 중 총 18회 구타, 가혹행위 및 무단이탈 발생에 따른 책임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2011. 2. 피해대원 12명중 이경 김○○·강○○·김○○·김○○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이경 전○○·김○○·홍○○·안○○·이○○·변○○·정○○·손○○에 대해서는 교통보도대로 각 본인 희망에 따라 전출 조치하였다.

(4) 가해대원 14명에 대해서는 2011. 1. 28.자로 각 타부대로 전출 및 아래와 같이 형사고발, 영창, 근신 및 기율교육 등의 조치를 하였다.

연번	기수	계급	성 명	입대	전입일	전출서	조치결과		비고
							처분일자	처분내용	
1	3195	이경	강○○	‘10.09.13	‘10.11.02	서울○○서	11. 1.29	구속 (검찰항소)	형사고발
2	〃	〃	이○○	〃	〃	서울○○서	11. 1.29	구속 (검찰항소)	형사고발
							11. 4. 7	영창 15일	
3	3186	상경	류○○	’09.12.14	‘10.01.29	서울○○서	11. 4.22	영창 15일	형사고발 (고소취하)
4	3189	일경	김○○	‘10.03.22	‘10.05.12	서울○○서	11. 5. 6	영창 15일	형사고발 (벌금 100만원)
5	3190	〃	이○○	‘10.04.19	‘10.06.09	서울○○서	11. 5. 6	영창 5일	형사고발 (기소유예)
6	〃	〃	권○○	〃	〃	서울○○서	11. 5. 6	영창 7일	형사고발 (기소유예)
7	〃	〃	홍○○	〃	〃	서울○○서	6월초	징계예정	
8	3194	〃	박○○	‘10.08.09	‘10.09.30	서울○○서	11. 5. 4	영창 7일	
9	3194	〃	김○○	〃	〃	서울○○서	11. 5. 6	영창 3일	

연번	기수	계급	성 명	입대	전입일	전출서	조치결과		비고
							처분일자	처분내용	
10	3189	〃	김○○	'10.03.22	'10.05.12	서울○○서	11. 5. 4	근신 3일	
11	3193	〃	장○○	'10.07.12	'10.08.27	서울○○서	11. 4.26	기율교육	
12	3192	〃	백○○	'10.06.14	'10.08.05	서울○○서	11. 4.28	불문조치	참고인으로 조사
13	3190	〃	윤○○	'10.04.19	'10.06.09	서울○○서	11. 4.27	불문조치	피해대원 번복
14	3195	〃	정○○	'10.09.13	'10.11.02	서울○○서	11. 5. 4	근신 5일	

다. 판단 및 조치

1) 위 인정사실과 같이, 다수의 후임대원들이 선임대원들로부터 수차례 구타를 당했고,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을 부대에 신고하였음에도 중대장 등 지휘요원들은 이러한 구타·가혹행위 사실을 알고서 묵인·방조·축소 처리하였는바, 이러한 선임대원 및 지휘책임자들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현재 가해자 및 관련 지휘책임자들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징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또는 종결된 경우이므로, 이들의 책임을 묻는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하되, 중대장 등 지휘요원들의 형식적인 대원면담 및 관리, 동행동숙원칙 미 준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신고를 인지하고서도 문책 받을 것이 두려워 축소·은폐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 관행 및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중부경찰서 의경 사망사건(11직권600)

가. 사건개요

1) 관련부대 : ○○중부경찰서 119방범순찰대 0소대

2) 피 해 자 : 故 심○○

3) 사건요지

피해자는 2010. 2월 입대해 소속 ○○경찰서에 4월에 전입했으며, 복무적응장애(우울증)로 같은 해 5월부터 2개월 동안 병가를 낸 이후 또다시 7월부터 최근까지 휴직하고

이날 귀대를 앞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2011. 1. 25. 09:00경 집근처인 웨딩홀 주차장 담장 옆 높이 3m 나무에 노끈으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주차장 관리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언론보도를 통해, 피해자의 유서가 없고, 사망의 원인에 대하여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위원회는 위 사건이 피해자의 소속부대인 119방범순찰대 내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인정사실

1) 피해자는 2010. 2. 25. 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4. 1. ○○중부경찰서 119방범순찰대 0소대에 배속되었다. 피해자는 2010. 4. 9. 체육대회 중 축구하면서 다리 부상을 입었고 같은 해 5.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다리 골절 수술을 위해 청원휴가를 받았으며 경찰병원 정신과 진료결과 부대생활의 적응장애가 있다는 소견이 있어 같은 달 27.부터 7. 24.까지 부대 부적응으로 청원휴가, 같은 해 7. 25.부터 2011. 1. 25. 적응장애 치료로 휴직한 뒤 집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2) 피해자는 2010. 5. 1. 08:00경 빨래에 사복을 감춘 뒤 ○○중부경찰서 1층 교통안전계 앞 화장실에서 깁스를 풀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중부경찰서를 빠져나가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나, 같은 달 2. 07:00경 경남 ○○시 소재 친구의 집 앞에서 0소대장 경위 서○○에게 검거되었고, 중대장 경감 한○○는 피해자의 상태로 미루어 강력한 영창 등 조치가 오히려 피해자의 특수한 심리상태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약 15일간 매일 반성문을 작성케 하는 등 근신 2주, 외출·외박 6개월간 정지 등 자체 공적제재조치를 취하였다.

3) 피해자는 2011. 1. 25. 부대복귀를 위해 이발을 한다고 집을 나선 뒤 같은 날 09:00경 집근처인 웨딩홀 주차장 담장 옆 높이 3m 나무에 노끈으로 목을 매 사망하였고, 이를 위 주차장 관리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는 사망원인을 수사한 후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의사(목맴)로 확인되었고, 현장상황, 사체의 상황, 유족의 진술, 발견자 진술, 관련자(부대원)들의 진술 등으로 볼 때, 변사자는 휴직을 마치고 부대복귀를 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적 압박감 등을 느끼고 목을 매어 자살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피해자의 사망에서 타살이나 범죄와의 연관성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며 2011. 2. 27. ○○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하였다.

4)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동기 문희성 등은 선임들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중부경찰서가 2011. 1. 26.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자체 실시한 6개월 미만 대원 31명에 대하여 구타 및 가혹행위 여부에 관한 소원 수리를 받았으나, 구타 및 가혹행위를 호소하는 대원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는 부대 부적응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던 중 부대복귀를 앞두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 달리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구타 및 가혹행위 등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Ⅲ. 전·의경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검토

1. 구타 및 가혹행위 문제

가. 전·의경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구타 및 가혹행위는 지휘요원이 전·의경 부대생활을 피상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관계로, 후임대원이 주로 선임대원으로부터 생활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악습이 반복·잔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타·가혹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아 근절의지가 부족하고, 소원수리 등 전·의경 인권보호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시 결과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축소·은폐 경향)이다. 이런 이유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되어, 국민의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할 뿐 아니라 자살, 탈영과 같은 제2의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표 1〉 연도별 전·의경 주요 사고발생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5년 평균
구타·가혹행위	228	115	93	61	69	113.20
복무이탈	158	86	68	33	23	73.60
대민사고	21	23	13	9	10	15.20

* 자료 : 경찰청 제출 현황

〈표 2〉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비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5년 평균 처리비율
구타 및 가혹행위	형사 입건	구 속	0	4	1	1	0	1%
		불구속	8	64	40	14	64	34%
	징계	중징계	0	0	0	0	5	1%
		영 창	184	37	43	40	4	54%
		근 신	31	7	9	6	1	10%

* 자료 : 경찰청 제출 현황(형사입건 대상자는 전원 징계조치 병행되어 '징계' 항목에서는 제외)

나.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의 적발건수를 보면, 2006년도 228건에서 2007년도 115건, 2008년 93건, 2009년 61건, 2010년 69건 등 전체 건수로 보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형사입건수는 2008년 41건, 2009년 15건, 2010년 64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1. 1. 경찰청이 전국의 전·의경부대 6개월 미만 복무 대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구타 및 가혹행위자 적발건수(직무고발 19명, 징계 90명, 공적제재 및 교육 164명, 총273명)를 보면, 전·의경부대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각 지방청별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관련 소원수리 처리현황〉

(기간: 2011. 1.26 - 1.27)

구분	소원수리 대상 인원	참여인원	불참 인원	구타 및 가혹 행위 신고 인원	가해대원 수	피해대원 수
계	5,822	4,634	1,188	365	332	362

* 자료 : 경찰청 제출 현황

〈표 4〉 전·의경 인권침해 소원수리 처리기준 결과〉

계	직무 고발	징계	공적제재 및 교육	불문조치(97명)			
				입증불가	피해경미	기처분	전역자
370	19	90	164	80	4	5	8

다. 2011. 1월 경찰청은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며 여러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구타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전·의경 폭행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구타 및 가혹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심리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되며, 자살과 탈영 등 제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 만 아니라 폭력의 대물림 내지 학습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라. 따라서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당국, 지휘관, 전·의경 관리 담당자 및 관계자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집행이 되어야 하며,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구타 및 가혹행위 예방 및 인권교육을 정례화, 신고자 비밀보장, 피해자에 대한 이중피해 예방을 위해 분리조치, 보직변경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위원회가 2007년, 2008년 직권조사를 통해 전·의경에 대한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정책 권고를 하였고, 경찰청에서는 신상면담제도 개선, 지방청별 교육 실시, 감찰단 상시 운영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타사건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바 경찰당국, 지휘관 및 간부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구타 및 가혹행위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 복무 부적합자 및 부적응자 문제

가. 복무 부적합자 직권면직제도 및 부적응자 관리시스템 문제

1) 지원복무로 충원되는 의경의 경우,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을 의사 등 전문가가 실시하지 아니하고 지원자 자신이 선택한 병원에서 발행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의존하게 되고, 인성검사의 경우도 비전문가에 의해 대부분 형식적으로 실시되어 정신과 분야 등과 같이 외형상 증상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감별 능력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표 5〉 연도별 전·의경 정신과 치료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명	526	529	480	514	431

* 자료 : 경찰청 제출 현황

2) 위와 같이 입대가 제한되어야 할 복무 부적합자가 입대하여 결국 부대생활중 급격한 환경변화로 질환이 재발되고, 이로 인한 당사자 인권문제는 물론 동료들의 인권문제(동료대원들의 불안 요인은 물론 경찰병원 의료인력 부족으로 1명의 전·의경이 정신과에 입원시 동료대원 1명도 정신병원 병동에 함께 입원하는 등) 및 지휘관들의 지휘부담

으로 작용하게 되며, 위 1사건(11직권600)에서와 같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이슈화되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또한 과거 병력이 재발되거나, 복무중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 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30조, 제36조 내지 제36조의3 및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23조에 따라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3심제인 동 제도는 절차의 복잡성과 시일과다 소요로 제도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결국에는 직권면직 되더라도 시일이 과다하게 경과되어 부적응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등 새로운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4) 현재 육군은 전문진료과가 있는 국군병원 모든 과에서 신체검사의 등급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의경의 경우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는 국립병원장(경찰병원 포함) 또는 국군병원장이 판정한 진단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 규칙인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23조 제1항에서는 경찰병원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법령체계 및 관계자들의 업무수행의 일관성 등을 위하여 동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신임·전입 대원 및 부적응자 상담관리 등 운영문제

1)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73조에 따라 관심요구 전·의경의 사전파악 및 특별관리 등 제반 사고요인 제거를 위하여 1·2차 감독자(부관, 소대장)는 각각 월 1회 이상(금년 3월부터 주 1회 이상으로 개선), 3차 감독자(중대장)는 월 1회 이상 '신상면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휘관에 의한 신상면담만을 의존하고 있는 현 제도는 전문상담능력에 대한 전문성의 한계, 대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에 따른 실효성의 문제,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 시 지휘책임이 병행되는 지휘관에게 솔직한 진술이 가능한지의 문제, 부적응자의 경우 자신상황에 대한 진술시 부적응자로 낙인, 일명 '왕따' 가능성이 있을수 있는 문제 등의 현실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특히, 자대 배치 다음날부터 신임대원이 선임대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상황임에도 지휘관에게는 구타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형식적인 면담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실질적인 면담권 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3) 결국 전·의경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심리 및 심리치료를 위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상담심리 전문가가 특정대원들에 대한 집중상담을 통하여 애로 및 문제점을 지휘관에게

건의, 복무 부적응자를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복무 중 사망자(자살자) 문제

1) 전·의경의 복무중 사망(자살)사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했다가 사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남겨진 가족에게는 큰 충격과 심각한 휴유증을 남기는 등 가족의 고통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표 6〉 연도별 전·의경 자살자 현황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0년 평균
자살	11	8	11	6	7	5	6	6	4	2	6.60

* 자료 : 경찰청 제출 현황

2) 그런데 앞서 살펴본 ○○지방경찰청 소속 박○○ 의경 사건(11직권300)의 경우와 같이 군복무 중 사망사고에 대한 경찰조사가 충실하지 못하여 단순 사망사고로 처리하였다가 부모의 이의제기 등으로 사망 전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복무 중 사망사고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 경찰과 유가족대표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복무 중 사망사고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전·의경제도 폐지에 관하여

가. 전·의경제도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1) 국방부는 2007. 12. 18. 병역제도 개선에 따라 병 복무기간 단축(24개월→18개월)에 따른 현역자원의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연 20%씩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12년 폐지예정이었으나 2008. 9월 제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008~2011년간 전·의경 18,191명을 감축하는 대신 경찰관 4,866명을 충원하기로 하고 2012년 이후의 전환인력 규모는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2) 그러나 국방부는 2011. 3. 21. 병 복무기간 조정(18개월→21개월)에 따라 일부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치안력 확보를 위해 의경은 2015년까지 지원 예정(2015

년 이후는 향후 안보환경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판단)이며, 전경은 지금까지 현역병입영자 중 강제로 차출하여 지원함으로써 병역의무자 및 부모들의 불만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폐지하고 본인이 지원하는 의경으로 전환하여 배정할 계획이다.

3) 경찰청도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도 전·의경을 폐지하고 비교적 전문성이 높은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직업경찰관으로의 대체가 전제되지 않고 무작정 전·의경을 폐지하는 것은 엄연히 전·의경이 치안력의 상당부분을 감당해 오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치안공백의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할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입장이다.

나. 전·의경제도의 문제

1) 현행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 규정에 의하면, 전투경찰은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전투경찰순경(전경)과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전투경찰순경(의경)으로 구분되며, 전경의 주임무는 대간첩작전(대비정규전, 국가중요시설방호, 요인 및 신변보호, 작전상 취약요소제거 및 경비임무수행)이며, 의경의 주임무는 시위진압, 범죄예방순찰, 교통, 유치장근무 등 치안보조업무수행이다.

2) 전경의 경우 현역군인이 되기 위해 육군에 입대 했는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육군훈련소에서 전경으로 강제 전환복무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의경은 본인의 의사에 따를 것이기는 하나 실제 교통단속 등 일선 경찰업무 보다는 시위진압부대 등에 배치되면서 부담의 가중으로 복무 부적응자 발생이유가 되기도 한다.

3)「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하면 전·의경의 주임무가 대간첩작전의 수행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시위진압 등 경찰의 보조인력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은 법의 합목적성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4) 실제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위해 차출된 전경의 교육훈련의 내용을 보면, 군훈련소 공동교육 5주, 중앙경찰학교 교육기간 1주(2011년 4월부터 지방청별로 3주 교육)가 전부인데, 실제로 평상시 훈련이 군대와 같이 대간첩 작전을 위한 도심지 작전, 경계 대테러교육 등 군사훈련이 아닌 시위진압 훈련을 하는 것은 제도적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2010년 12월말 전·의경 인력현황

구 분	계	작 전 전 경			의 무 경 찰			
		인원(명)	비율(%)	전경대(개)	인원(명)	비율(%)	기동대(개)	방순대(개)
계	22,292	5,434	24	32	16,858	76	70	81
경찰청	32	1	3		31	97		
경 대	163	36	22		127	78		
교육원	45	0	0		45	100		
중 앙	31	4	13		27	87		
수연원	1	0	0		1	100		
병 원	4	0	0		4	100		
서 울	8,233	1,183	14	10	7,050	86	35	31
부 산	1,449	180	12		1,269	88	2	10
대 구	765	59	8		706	92	1	6
인 천	855	72	8		783	92	3	5
광 주	543	35	6		508	94	1	4
대 전	479	33	7		446	93	1	3
울 산	357	28	8		329	92	3	
경 기	2,607	745	29	4	1,862	71	9	10
강 원	659	207	31	1	452	69	2	2
충 북	418	85	20		333	80	1	2
충 남	532	290	55	2	242	45	2	
전 북	687	199	29	1	488	71	2	2
전 남	933	609	65	4	324	35	1	1
경 북	922	363	39	2	559	61	2	3
경 남	1,006	343	34	2	663	66	5	1
제 주	974	810	83	6	164	17		1
중앙교육생	10	10	100		0	0		
훈련소교육생	482	142	29		340	71		
경찰대졸업자	105	0	0		105	100		

* 자료: 경찰청 제출 현황

5) 한편, 그동안 직업경찰관들의 업무를 전·의경들이 특별한 노동력의 대가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이를 대행하게 함으로서,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직업경찰관의 근무환경 개선 및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순기능 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반면에 복무군인의 신분이라는 이유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방적 수인을 강요하기에는 국가와 사회가 이미 성숙되어 있고, 정부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할 시기가 도래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다.

6) 경찰청은 2011. 1. ○○지방경찰청 의경 사망사건과 ○○지방경찰청 000전경대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집단이탈 사건 이후, "2012년 이후 전·의경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국방부도 전·의경제도의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7) 따라서 전·의경제도를 폐지할 경우 그동안 사회적 안정에 큰 역할을 한 경찰력의 축소로 치안에 불안요인이 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필요한 최소한의 경찰력을 증원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전의경 제도는 관련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찰청과 국방부도 전·의경제도의 폐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전·의경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국민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기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높은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여 책임적인 법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전·의경 당사자 및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전·의경 인권상황 및 관련 제도·관행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본 직권조사 사건과 병합된 구타·가혹행위 진정부분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19.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 원 장향숙〈불참〉 위 원 김영혜 위 원 홍진표

위 원 김태훈 위 원 최윤희〈불참〉 위 원 김양원 위 원 장주영

위 원 한태식 위 원 윤남근 위 원 양현아

17 11진정3175 [해군 훈련병 사망사건] 2012. 4. 13. 결정

▌결정요지 ▐

해군참모총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1] 해군기초군사교육단의 교육훈련 실태에 대한 특별 진단을 실시하고 인권친화적인 교육훈련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훈련병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원수리 제도 및 병영생활상담관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

[3] 훈육요원들에 대하여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결정요지 ▐

[1] 피진정인들은 관련 교육훈련계획표에 정한 일과시간 기준을 위반하고, 합리적인 훈련방법의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부대관리를 함으로써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보장되는 피해자 및 동료 훈련병들의 인격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2] 신병교육대의 훈육요원들은 교육훈련 목적의 얼차려 기준을 위반하여, 하루 총 2~3시간씩 얼차려를 부과하고, 교육과정에서 일상적으로 고성과 욕설, 신체적 유형력 행사 등을 가하여 훈련병들이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피해자를 비롯한 동료 훈련병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

「헌법」 제10조·제12조, 「군인복무규율」 제15조·제25조

▌ **진정인** ▌ 이○○

▌ **피해자** ▌ 故 이○○

▌ **피진정인** ▌ 1. 이○○ 2. 최○○ 3. 김○○ 4. 김○○
5. 강○○ 6. 김○○ 7. 고○○ 8. 김○○

▌ **주 문** ▌ 해군참모총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1. ○○교육단 훈련프로그램에서 교육일과의 자의적 운영, 식사 및 샤워시간의 과도한 통제,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 부과, 폭언·폭행·가혹행위에 의한 훈육방법 등 교육훈련 실태에 대하여 특별 진단을 실시하고 인권친화적인 교육훈련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훈련병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원수리 제도 및 병영생활상담관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
3. 훈육요원들에 대하여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2011. 4. 24. 입대하였는데, 기초군사교육단에 배속되어 훈련을 받은 4일 만인 동년 4. 29. 09:00경 부대 근처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바, 훈련과정 중 폭언, 구타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의혹이 있으므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를 바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해자는 TV방송 프로그램의 라면 끓이기 대회에 출연하여 상을 받은 적이 있고, 평소 가정이 어려운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도와주어 주변에 친구가 많을 정도로 정서적인 어려움이 없이 자라왔으며, 대학교 조리학과 1학년을 마치고 해군에 자원입대하였다.

2) 사망통보를 받고 2011. 4. 30. 해군교육사령부를 방문하여 대원들과 대화중 한 훈련병이 울면서 "2011. 4. 29. 새벽 피해자가 (조교에게) 많이 맞았다"라고 했으며, 또 다른 훈련병은 "조교들이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허리를 군화발로 차고 밟는 등 구타를 한다"는 진술을 들었다. 또한 피해자가 입대하던 날 색이 섞인 신발을 신고 왔다는 이유로 조교가 피해자에게 심하게 기합을 주었고, 4. 28. 24:00경에는 이발을 하던 조교가 피해자를 때렸다는 소문이 있다고 들었다.

3) 피해자에 대한 사체검안 시 피해자의 팔, 다리에 골절상이 있고 얼굴 등 앞 면부는 깨끗하나 뒷부분 좌측 허리부분에 타원형의 파란 멍 자국이 있었고 훈련 중 하루 취침시간이 2~4시간 밖에 안 되는 점, 얼차려를 받은 문제점 등이 있었으나 헌병대 수사과장

및 수사관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타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는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군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 같으니, 위원회에서 진상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2), 3)

본인들은 피해자의 훈련을 지휘 감독하는 소속부대 지휘간부들인데, 진정인은 피해자가 가입소 훈련 중 조교들로부터 구타 및 기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병대에서 수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해자 외 다른 훈련병을 대상으로 일부 군홧발로 미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자에 대해 징계조치가 취해졌다. 피해자의 등 부위에 멍 자국이 있었다는 것은 추락 사망 시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곤란할 것으로 생각한다.

2) 피진정인 4)

본인은 2011. 4. 28.부터 4. 29.까지 당직소대장으로서 당직자 7명이 순찰근무를 하였는데, 순찰 중 훈련병을 구타한 사실은 없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동료 훈련병들로부터 2011. 4. 28. 24:00경 이발을 하던 성명불상 조교가 심하게 때렸다고 하지만, 헌병대 수사결과 그 당시 조교가 아닌 교관 2명이 위치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아닌 다른 훈련병에 대해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진바 진정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피진정인 5), 6), 7), 8)

본인들은 이발특기병으로 근무하는 병사들로, 2011. 4. 28. 19:00경부터 24:00경까지 신병교육대 목욕탕에서 신병 00기 800여 명에 대해 입교이발을 실시하였다. 당시 이발특기병 4명이 작업보조원 6~7명을 지원받아 많은 신병을 대상으로 이발준비교육(모발채취, 커튼보 착용, 세면장소 이동방법)을 시키는 과정에서 큰 목소리를 내도록 한 적은 있으나 훈련병들을 구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

해군 0함대 소속 김○○(○○기지), 박○○, 윤○○, 황○○(○기지전대), ○○방어사령부 소속 서○○(헌병사), 장○○(○○경비정편대), ○○○○작전사령부 소속 권○○(○○함), 최○○(○○함), 최○○, 오○○(○○함) 등 이상 피해자의 동료 훈련병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가입소 기간 중 훈련 상황에 대하여

동료 훈련병들은 가입소 기간 중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려 이를 알기 어려웠고, 동료들과 대화할 시간적, 마음적 여유가 없었으며, 하루 일과를 신상기록 작성, 신체검사, 물품 지급, 생활교육을 받고, 나머지 대부분은 항상 대기시간으로 보냈다. 취침시간은 통상 24:00~익일 01:00경에 잠자리에 들어 04:45경기상하여 수면시간이 부족하였고, 특히 불침번을 서는 날에는 취침시간이 2시간 밖에 되지 않아 힘들었다. 또한 많은 훈련병이 식당을 사용하다 보니 늦게 식사하는 경우에는 식사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샤워시간 또한 부족하여 비누칠을 하기도 힘들었다.

당시 소대장 등 조교들이 군기유지 및 정신교육을 이유로 훈련병들에 대해 잦은 얼차려(엎드려뻗쳐, 팔 굽혀펴기, 무릎앉아, 쪼그려 뛰기,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서기 등)를 하루 통산 2~3시간 정도 받아 피로가 누적되었고, 소대장 등 조교들은 훈련기간 동안 매일 훈련병에게 반말은 기본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새끼, ×새끼, ××새끼, 죽고 싶냐, 꺼져버려라. 쓰레기 같은 새끼들" 등 심한 욕설을 하였다.

특히, 피해자 사망사건 발생 이후, 소대장, 교관, 조교들은 '피해자의 기수(00기)는 쓰레기야'라는 등 감정적으로 얼차려를 주고 침상 등에 발을 올려놓고 하기 등 규정에 위반된 얼차려를 하였다. 일부 훈련병은 얼차려 시 태도 불량으로, 또는 대기시간 중 잡담을 하다 발각되면 교관, 조교들로부터 손과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구타당하고, 발로 차고, 심지어는 엎드려뻗쳐 상태에서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2) 피해자에 대한 구타 가혹행위 목격 등 인지여부에 대하여

사망사건 발생 전 날인 28. 24:00경 이발 대기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소대원 전원 어깨동무하고 쪼그려 앉은 뒤 얼차려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해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을 적은 없다. 당시 훈련병들 사이에 "어떤 애가 혼나서 울었다"라는 식의 입소문은 있었으나 그 당사자가 피해자라거나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

3) 사건 발생 후 부모님 면담 시 대화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 부친이 "어떻게 훈련 중 아들(피해자)이 탈영을 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묻고,

피해자의 구타 등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대로 말해 달라"고 하여, 장○○와 최○○이 "어제 이발 중 교관에게 혼나 울고 있던 아이가 ○○(피해자)인 것 같다"라는 추측성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피해자의 부친이 면담 당시 조금이라도 단서가 될 만한 것이나 소문이라도 들은 것이 없냐고 하여, 조금이라도 돕고자 교관이 누군가를 때렸는데 그게 이○○(피해자)가 아닌가 하여 말씀을 드렸고, 부친이 "그럼 그게 이○○일 수도 있겠네?"라고 하여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 이러한 대화내용이 "이○○가 이발 당시 맞았다는 소문을 들은 동기가 있다"라고 전언된 것이라 생각되고, 피해자가 직접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은 목격한 사실은 없었다.

사건 발생 직후, 동료와 대화과정에서 "이○○가 이발 당시 맞았다는 소문이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부모님 면담과정에서 소문이라 할지라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가 이발 당시 맞았다는 소문을 들은 동기가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4) 헌병대 및 군 검찰 조사과정에 대하여

사건 발생 후, 헌병대와 군 검찰에서 3~4회의 조사를 받았는데, 그 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타 가혹행위를 알고 있는지, 부모님에게 대화하였을 때에 사실대로 말한 것인지를 조사 받았고, 모두 직접 목격한 바는 없고 소문을 듣고 추측성 발언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내용과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및 대면조사보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들의 진술서 및 대면조사보고서, ○○교육사령부가 제출한 변사사건 발생보고, 피해자에 대한 검시조서, 사망진단(시체검안)서, 현장감식보고서, 사망현장 아파트 CC-TV녹화기록, 변사(투신 자살추정)사건조사결과보고 등 수사기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변사사건의 개요 및 진정의 경위

1) 피해자는 2011. 4. 25. ○○ 00기로 ○○교육사령부 기초군사교육단 신병교육 0대대 0중대로 가입영한 첫날 부대편성, 인성검사, 행정서류작성 등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음 날인 4. 26. 00:15경 취침하고, 같은 날 03:30경 기상하여 03:45경부터 04:40경까지 불침번 근무 후, 05:10경 기상하였다, 4. 27.에는 00:30경 취침하고, 같은 날 05:00경 기상하여 체력검사, 입단식 행사 준비 등 교육훈련을 마치고 24:00경 취침하였다.

2) 피해자는 다음 날인 4. 28. 05:00경 기상하여 의류대 작업, 체력검정, 이발, 입단식 준비 등 교육훈련을 마치고 4.29. 01:00경 취침하였다가 03:45경부터 같은 소대원과 불침번 근무를 한 후, 같은 날 04:40경 전체 기상하여 부대편성 시 필요한 개인생활 기록부를 배부 받은 후, ○○ 0관 앞에 집합하라는 담당 소대장 중사 김○○의 지시가 있었으나 이후 집합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05:17경 시설전대 위병소를 통해 부대를 이탈하였다.

3) 피해자는 같은 날 08:32경 ○○아파트 6-7라인 현관 앞 노상에 쓰러진 채 최초 발견자 관리소장 김○○에게 발견되어 119구급자로 ○○병원 경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2:17경 '개방성골반 골절, 혈복강 기흉 등'의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4) 피해자의 변사사건에 대한 ○○교육사령부 헌병대는 현장 감식, 사체 검시, 이탈 경로(아파트CC-TV녹화기록 확인), 최초 발견자 및 동료 훈련병 등 주요 참고인, 입영 후 병영부조리,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거짓말탐지조사, 최면수사, 현장재현, 신병양성훈련 실태, 피해자의 입대 전 병력 등 신상을 수사한 결과, 피해자가 4. 25. 15:00경 ○○ 기초군사교육단에 입영하여 4. 29. 08:32경 사망하기까지 간부 및 교관 등의 직접적인 구타가혹행위는 없었으나, 수면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신병대대의 일과진행과 교육요원들의 위압적인 교육방법에 따른 심리적 위축 등 부적응이 피해자로 하여금 부대를 이탈하게 한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되었을 개연성은 있다고 보이나 사망의 원인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판단불가'로 보고 투신자살로 내사 종결하고 이후 장례를 치렀다.

5) 피해자의 부친인 진정인은 사건발생 당일인 2011. 4. 29. 교육대대장의 연락을 받고, 부대를 방문하여, 당시 피해자와 같은 생활실을 이용하던 훈련병 13명을 생활실에서 대면하여, 피해자의 사망경위에 대해 물어 볼 때는 동료 훈련병 최○○ 등이 "피해자가 교관에게 구타를 당하여 슬피 울었다", "사건 전일 밤 이발을 하였는데, 그 때 맞은 것 같다"라는 대답을 하였는데, 군 헌병대 조사결과에서는 이들이 피해자가 맞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고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타·가혹행위는 없다고 수사결과를 밝히자,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2011. 6. 7. 국가인권위원회에 동료 훈련병들에 대한 확인조사 등 진상규명을 원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피해자와 동료 훈련병들의 일과진행 및 교육실태에 대하여

1) 일과진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동료 훈련병들은 2011. 4. 25.(월) ○○신병 00기로 ○○교육단에 가입영하여, 소대편성을 받고, 개인별 예치금거출, 인성검사, 개인신상기록부 등 행정서류를 작성한 후, 소대별 생활관으로 이동하여 개인침대 및 관물함을 지정받고, 중앙통로에 집합하여 개인 일용품 및 피복을 받은 후 복장착용법, 차렷자세, 경례 및 호명법 등 기본교육을 받고, 개인세면 및 점호를 취한 뒤 4. 26. 00:15경 취침하였다. 2011. 4. 26.부터 4. 29. 피해자가 부대를 이탈한 4일 동안 매일 05:00 전에 기상하여 침구류 정리 및 아침인원 점검을 시작으로 경례법, 신체검사, 신상기록 작성, 면담, 모포 및 관물함 정돈법 교육, 소지품 거출, 입단식 준비, 생활반 청소, 샤워 등 개인세면 후 00:30경 점호 후 취침하였다. 이와 같은 일과진행과정에서 피해자의 1일 취침시간은 길게는 4시간 40분, 짧게는 2시간 30분 정도이다.

이는 신병대대 교육지침서 및 교육훈련계획표에 최소 7시간 30분에서 8시간은 취침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교육단에서는 소속 지휘관 등 교육담당간부들이 자의적으로 기상시간을 앞당기고 취침시간을 늦추어 불침번이 없는 통상의 훈련기간 동안 피해자를 비롯한 동료 훈련병들이 평균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도록 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다. 또한 훈련병들은 교육훈련과 잦은 얼차려가 있었으나 샤워시간(세면시간) 10분으로 제한하여 하도록 하여, 이를 초과할 경우 샤워를 중지시키고 15분~20정도 가슴 높이의 벽에 발을 올리고 엎드려뻗쳐를 받아 땀범벅이 된 채 취침하여 고통스러웠다고 증언하고 있고, 많은 훈련병이 식당을 이용하다 보니 식사시간이 부족하여, 식사를 마치지도 못하고 잔반처리를 하고 집합하고, 훈련 중 마실 물이 없어 화장실 물을 먹은 것이 허다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볼 경우,

이 사건 ○○교육단의 피진정인들은 관련 교육훈련계획표에 정한 기상 및 취침시간, 식사 및 세면기간 등 일과시간 기준을 위반하고, 합리적인 훈련방법을 넘어서 자의적으로 부대관리를 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보장되는 피해자 및 동료 훈련병들의 인격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교육집행 실태에 대하여

○○교육단의 신병교육 훈련지침서에 의하면, 교육훈련 및 내무생활에 대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구타 및 가혹행위 예방 및 군기 확립을 위해 교육목적 달성 및 교정을 위하여 일체의 육체적 접촉 및 감정표현을 금지하고 체력단련 차원에서, 훈련 1주차의 경우 팔굽혀 펴기(30회), 쪼그려 뛰기(20회), 민첩성 기르기(20분), 팔 벌려 높이뛰기(50회), 단독군장 보행 및 구보(1.5㎞), 과목관련 얼차려(30회) 등 6개 얼차려 종목 및 횟수를 입소시점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증감시켜 시행하도록 하고,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연속 부과를 금지하고, 환자는 얼차려 대신 다른 교정 가능 방안을 마련·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훈육요원(훈련소대장, 교관, 조교)들이 이러한 지침을 위반하여 얼차려(기합)를 주고,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소대장 중사 김○○이 4. 27.(수) 19:00경 0대대 0중대 0소대 훈련병들이 세면장에서 늦게 샤워를 했다는 이유로 다리를 벽에 올리게 한 뒤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0소대 훈련병 김○○이 자신은 0소대원이 아니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정신 나간 새끼 아니냐"면서 발로 얼굴을 찰 듯이 시늉을 하다가 어깨를 발로 1회 차 넘어뜨린 사실

(2) 훈련교관 하사 권○○는 4. 28. 20:00경 세관 1층 목욕탕에서 훈련병 이발통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웃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 금○○, 우○○에게 엎드려뻗쳐 상태에서 두 다리를 탈의실 옷보관함에 올리고, 드러누워 양발 및 머리 들기, 뒤로 취침 앞으로 취침 등 약 10~15분간 기합을 주고, 훈련병 금○○이 올린 다리가 내려왔다는 이유로 우측 군홧발로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한 사실

(3) 훈련교관 하사 천○○는 4. 28. 22:00경 세관 1관 1층 목욕탕 밖 생활관 대기실에서 소대별 이발대기 인원 통제업무를 수행하면서 잡담하거나 웃는 등 대기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0중대 0소대원 총원(피해자 포함 62명)을 대상으로 앉았다 일어서기, 어깨동무하게 한 후 앉은 상태에서 오와 열 맞추기, 무릎앉아 대기 기합을 20~30분간 주고, 같은 날 23:20~23: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6중대 6소대와 7소대 훈련병들에게 쪼그려 뛰기 기합을 주고, 훈련병 조○○에게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너 이 새끼"라며 군홧발로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같은 김○○에게 무릎이 아프다며 잠시 쉬고 있는 것을 보고 "넌 뭐 하냐, 개새끼가 정신 못 차리네, 그 지랄 할 거면 당장 집으로 꺼져라"라며 군홧발로 어깨를 1회 걷어차고, 같은 이○○이 평소 지병으로 더 이상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 새끼도 미쳤네”라고 욕설하고 군홧발로 어깨를 1회 차 넘어뜨리고 “이 개새끼, 너도 집으로 꺼져라, 여기가 니네 집이냐, 정신머리가 썩었다”며 재차 군홧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찬 사실

(4) 훈련조교인 상병 양○○는 4. 28. 23:30경 세병관 목욕탕에서 0중대 0소대원 총원에게 엎드려뻗쳐 기합을 시키고, 훈련병 김○○이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가슴을 수회 걷어찬 사실

(5) 훈련교관 중사 김○○은 4. 29. 06:30경 신병대대 내 광장에서 0중대 0소대 훈련병 강○○이 군화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자 “장난하냐”며 우측 주먹으로 턱 부위를 2회 구타한 사실

(6) 가입영 기간 중 훈련소대장, 교관, 조교 등 대부분의 훈육요원들이 훈련병들이 집합이 늦거나 잡담을 하거나 예의 및 차렷 자세 등을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할 때마다 과도하게 얼차려를 부여하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리거나 “야 이 ××놈아,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 빙신 같은 개새끼, 멍청아, 이 새끼, 생각이 없냐, 개념이 없다, 개쓰레기들, 뒈지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압적인 자세로 교육을 시켜 온 사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교육단의 신병교육대의 소대장, 교관, 조교 등 훈육요원들은 교육훈련 목적을 위하여 규정한 얼차려 기준을 위반하여, 하루 통상 총 2∽3시간 가량의 얼차려를 부과하고, 다리를 올려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변형된 형태의 얼차려를 시키고 교육과정에서 일상적으로 고성과 욕설, 신체적 유형력 행사 등의 폭행을 가하여 훈련병들이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를 비롯한 동료 훈련병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에 대한 폭언 및 구타·가혹행위 여부

위 인정사실 과 판단 및 ○○교육사령부 헌병대 및 검찰단의 수사기록, 위원회의 동료 훈련병들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1) 피해자는 2011. 4. 28(목) 야간에 세병 1층 대기실에서 인원파악 시 0중대 5소대 훈련병들과 함께 있었으며, 위 대기과정에서 교관 하사 천○○가 소대 총원에 대하여 어깨동무 후 발 바꿔 쪼그려 뛰기를 약 10분~15분간 시킨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불려나가 훈육요원에게 맞는 것을 목격한 진술이 없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교관 하사 권○○가 사물함 뒤편으로 불러 얼차려를 주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개별

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2)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검시결과, 우측 팔 및 양측 대퇴부, 양 다리는 모두 골절되어 있는 상태로 우측가슴과 팔, 등 부위에 수개 부위의 멍과 찰과상이 관찰되었으나 이는 외부의 심한 충격과 골절로 인해 혈액이 순환되지 않아 생긴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군의관 대위 강○○과 ○○○○병원 담당의사 성○○의 소견이나 진정인 등 유가족이 부검을 원하지 아니하여 부검을 하지 않으므로 멍 자국의 명확한 발생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위 동료 훈련병인 최○○, 장○○, 장○○이 진정인 등 유가족 면담 시 발언한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명확한 목격사실 없이 피해자가 아닌, 훈련기간 중 울고 있던 훈련병이나 이발 과정에서 얼차려 및 폭행을 당한 훈련병이 있었다는 사실만 유가족 면담 시 말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최○○ 등 동료 훈련병들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감추려 하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

5. 조치의견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단은 훈육요원들 훈련병들에 대해 과도하게 수면시간을 통제하는 부분, 폭언 및 폭행 사실에 대하여, 관련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단장은 2011. 7.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피진정인 1. 대대장 소령 이○○에 대해서는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으로 '엄중훈계'하고 피진정인 2. 중대장 대위 최○○, 피진정인 3. 중사 김○○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견책'을, 피진정인 4. 당직사관 상사 김○○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발병인 피진정인 5, 6, 7, 8,에 대하여는 각각 품위유지 위반으로 '엄중훈계'한 사실이 있다. 위 피진정인들은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들의 잘못된 부당행위는 다분히 ○○교육단의 잘못된 교육훈련의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피진정인들 및 관계 훈육요원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훈련병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군참모총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 원 장주영 위 원 윤남근

18 11진정3219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 2012. 4. 30. 결정

▌결정사항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지원을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

▌결정요지 ▌

[1] 피진정인 4, 5, 6은 피해자에게 욕설과 규정외 얼차려, 폭행 및 폭언 을 했음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는바,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私的) 제재를 금지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함.

[2] 피진정인 1, 2, 3은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피해자의 신상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구타·가혹행위 등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자유를 침해함.

[3] 현행 군 법령상 자살의 경우 공상 인정과 보상체계가 매우 열악하나, 이 사건에서 소속 부대의 관리부실 및 부대원들의 가혹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므로,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 등 소송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함.

▌참조조문 ▌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15조

▌ 진정인 ▌ 임○○

▌ 피해자 ▌ 1. 故 최○○ 2. 최○○

▌ 피진정인 ▌ 1. 김○○ 2. 김○○ 3. 반○○ 4. 김○○
5. 신○○ 6. 이○○ 7. 권○○

▌주 문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2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지원을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피해자 1은 2011. 2. 7. 군 입대 후 2011. 4. 8. 제0사단 0연대 0대대 0소초(GOP)에 전입하여 근무하던 중, 2011. 5. 30. 05:20분경 위 소초 00번 날개진지에서 자신의 K-2 소총을 발사하여 두부관통총창으로 사망하였다.

피해자 1은 사망 직전인 2011. 5. 28. 피해자 1의 부친인 피해자 2와 전화통화를 할 때, 선임병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과 얼차려를 받았고, 심지어는 조인트를 맞는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견디기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한 사실이 있는바, 피해자 1의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및 권리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김○○(대위, 제0사단 0연대 0대대 0중대장)

사고 2달 전쯤인 2011. 3. 24. 0중대장으로 배치되었고 실질적인 지휘책임자이나, 통상 작전지휘는 2중대장이 담당하는 이중체계로 중대관리를 하고 있어, 밀착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신병이 전입 오면, 의무중대장, 대대주임원사가 최초 면담을 담당하고, 소속 중대장과 행정관이 다시 면담하여 소대를 분류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소초장과 부소초장이 면담을 하여 관심사병 여부를 식별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 1은 언행, 가정 및 학업 생활, 신병교육대 교육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살기도 경험이 없는 등 특이사항이 없어 'C급 관심사병'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였다.

피해자 1은 김○○ 이병과 동반입대를 하였고, 전입 후 실시한 '新인성검사'에서도 정상으로 나와 우울증 및 스트레스 검사를 하지 않았다.

평소 부대관리를 위해, 상향식 일일결산을 하여 왔는데, 구타 가혹행위 및 성군기위

반 등 병영생활강령 위반사항을 체크하고, 애로 건의사항, 과업평가 및 과업준비 등을 점검하고 있고, 각 초소장의 지휘 하에 분대장은 분대장 관찰일지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점검 및 관찰 시 피해자 1에 대한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신체검사는 병사들에게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어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1에 대해서는 2011. 4. 9. 전입 시, 그리고 5. 20. 면담을 중대장실에서 각 30분 정도 한 사실이 있고, 마음의 편지 및 소원수리는 피해자 1이 전입하기 직전 실시되어 피해자 1이 근무하던 중에는 실시하지 않았다.

중대 지휘관으로서 열심히 병사관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망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2) 김○○(중위, 제0사단 0연대 0대대 0중대 0소초장)

피해자 1은 2011. 4. 8. 자대배치 후 전령(통신병)으로 임무수행 하였고, 이후 4분대로 보직하여 GOP 경계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같은 해 5. 7. 2분대로 보직을 조정하여 동반입대병인 김○○ 이병과 같은 생활관으로 편성하여 서로 의지가 되도록 배려하였다. 피해자 1은 행동이 느리고 말투가 어눌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소속 분대장은 근무지에서 많이 조는 모습이 있다고 하였으나 적발된 적은 없었다.

피해자 1과는 대기근무지와 소초장실에서 면담을 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오며가며 마주치면 이야기도 많이 하였고, 면담 간 구두를 통한 교우도식(sociogram, 인간관계 상황도)을 실시하였으나 싫어하는 선임병이나 후임은 없다고 하는 등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았다.

피해자 1이 군장검사 시 슬리퍼를 신고 나와 선임병의 지적을 받고 군화로 갈아 신고 나온 것으로 들었으나 이는 사망사고 발생 후에 알게 된 사실이고, 당시 각 분대장들이 하루에 한번 씩 소초장에게 보고하는 상향식 일일결산에서도 별다른 보고내용이 없었으며, 특히 신○○ 상병에 의한 피해자 1에 대한 구타행위에 대해선 아는 바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었다.

피해자 1은 사망당일 김○○ 병장과 함께 근무하였으며, 주간근무로 전환 시 김○○ 병장이 00번 진지진입을 피해자 1에게 지시하였고, 근무교대 중에 진지에서 총기를 발사하여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

3) 반○○(병장, 제0사단 0연대 0대대 0중대 0소대 0소초 분대장)

본인은 0소초 분대장으로 일일결산을 소속 분대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면담을 실시하여 수행하였고, 특이사항이나 환자발생시 기록을 하고 소초장에게 보고를 하였으며, 평소 피해자 1은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등 사소한 실수가 잦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선임병들에 의한 피해자 1에 대한 구타 가혹행위 등은 알지 못했다.

2011. 5. 28. 23:00경 피해자 1과 후반야(통상 야간 12시 이후) 근무를 서는 중 피해자 1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없다고 했고, 5. 29. 05:00경 피해자 1과 함께 진지에서 근무를 서던 중 피해자 1이 졸고 있어, 이를 지적하였더니 피해자 1이 "긴장이 풀려서 잠시 졸았는데 다시 실수 안 하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을 뿐 폭언 등 구타·가혹행위를 한 적은 없다.

4) 김○○(병장, 0중대 0소대 0소초)

2009. 10. 20. 군 입대하여 사고당시 병장으로 피해자와 분대는 다르지만 2생활관에서 같이 생활하였다.

2011. 5. 29. 22:25경 GOP 초소 근무를 위해 피해자 1과 함께 간인탄약고에서 실탄을 지급받고, 안전점검을 한 후, 22:40경 0소초 00초소 대기초소에 도착하여 가지고 간 음료수 등을 같이 먹었고, 00:05경 00번 교차초소에서 순찰일지에 사인하고 상황실에 전화하고, 이어 00번 초소에서 순찰일지에 사인을 하고, 01:29경 00번 초소에 도착하여 근무를 하다 02:00경 교대근무자인 상병 신○○과 이병 최○○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02:10경 42번초소로 이동하는 등 위와 같은 형태로 03:35경 출발, 04:00경 00번 고정초소에서 상병 신○○과 이병 최○○에게 인수인계를 받고 초소내부에서 피해자 1과 함께 경계근무를 하다, 해가 떠오르는 시간이 되어 05:10 ~ 05:15경 근무를 위해 "○○야, 날 밝았으니 날개진지 잡아라(근무해라)"라고 하였더니 피해자 1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날개진지 외초근무를 섰는데, 약 5분 후에 총소리가 "퓽"하고 1발 났다.

총소리를 듣고 밖을 나가 보니 피해자 1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고, 머리, 코, 입, 귀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땅바닥에도 피가 많이 있었다. 순간적으로 겁이나 어떻게든 일어서게 하려고 하였는데, 너무 무겁고 미동이 없어 인터컴을 통해 상황실에 "(피해자 1이)이상하다. 피가 난다"고 정신없이 소리를 쳤다. 이에 곧바로 상병 신○○이 옆 초소에서 뛰어오고, 이어 철책점검자 하사 안○○, 소초장 및 군의관 등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위 경계근무 중, 00번 초소에서 22:50경 피해자 1이 암구호를 몰라 방탄헬멧을 1회 밀친 적이 있고, 03:35경에는 피해자 1에게 다른 초소로 출발해야 하니 이동 준비를 하라고 하였으나 시간이 되었는데도 준비를 하지 않고, 꾸물거려 "야 ×× 빨리 하라고 이야기 안 했냐"라고 신경질적으로 질책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구타 등 괴롭힌 사실은 없었다.

평소 피해자 1은 이병인데도 불구하고 집합 시에 옷을 늦게 입고, 점호 시 체육복으로 환복을 느리게 하고, 청소할 때도 멍하게 있는 등 부대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는 편이었다.

2011. 5월 초순경 생활관에서 주특기인 81밀리 박격포 제원에 대한 기초적인 것을 물어보았는데,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 "야 ×× 니는 공부 안하고 뭐 하냐"라고 질책을 한 적이 있고, 또한 5월 중순경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은 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침대에 앉아 쉬고 있어 "야 ×× 너 뭐하냐. 다를 청소하는 것 안 보이냐. 청소해라"라고 질책을 한 한 사실이 있고, 또한 5월 말경 생활관에서 피해자 1에게서 땀 냄새가 많이 나서 "야 너 몸에서 ×같은 냄새가 난다. 좀 씻어라 ××아"라고 질책을 한 적이 있었고, 이외 부대근무 중 피해자 1에게 약 6회 정도 통상적인 지적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이외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한 사실은 없다.

2011. 4월경 후임관리를 잘하라고 일병 이○○에게 생활관에서 3분 정도 쪼그려 앉기를 시킨 적이 있고, 같은 해 5월경 생활관에서 조○○ 일병과 최○○ 이병, 김○○ 이병이 군기가 빠지고 행동이 느려서 1분대 후임병 관리를 잘하라고 쪼그려 앉기를 시킨 적이 있고, 이후에도 한 번 더 일병 조○○과 이병 최○○, 이병 김○○에게 쪼그려 앉기를 시켰으며, 같은 해 5월 중순경 일병 조○○을 화장실 앞에서 후임병 관리를 잘하라면서 장난식으로 가슴을 2대 때린 적이 있다.

본인은 평상시 후임병에게 지적할 때 화가 나면 "××,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라고 말한 적이 많았고, 일병 이○○ 등에게 피해자 1이 실수를 많이 하고 지적을 많이 받는 것을 보고 후임병 관리 좀 잘하라고 한 것이 내리갈굼(괴롭힘)이 된 것 같아 반성하고 있다.

5) 신○○(상병, 제0사단 0연대 0대대 0중대 0소초)

본인은 2009. 12. 7. 입대하여 2011. 3. 24. 0소초에 전입하여 근무하였는데, 피해자 1이 GOP근무 시 야간 감시 장비를 자주 놓고 오고, 소지하는 가방을 챙기지 않고, 일지

기록 하는 펜을 잃어버리고, 개인 총기를 놓고 오고, 근무시간에 대답을 못할 정도로 멍하게 있었던 관계로 선임병들에게 자주 지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으나 선임들이 실수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얼차려를 주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2011. 5. 20. 피해자 1과 후반야 근무를 서고 있는데 피해자 1이 근무 중 졸고 있어서 "근무 중 자면 안 되지"라고 주의를 준 적이 있고, 또한 같은 해 5. 21. 피해자 1과 후반야 근무를 서는 도중 또 다시 피해자 1이 졸고 있어서 주의를 준 후, 많이 피곤하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조금 피곤하다고 해서 피해자 1을 대기초소에서 좀(1시간)을 쉬게 하였다. 이후 근무지에서 복귀를 하여 5. 22. 06:30경 분대장인 병장 반ㅇㅇ에게 피해자 1이 초소에서 많이 졸고 있어서 대기포로 빼서 쉬게 해 줄 것을 건의한 적이 있다.

같은 해 5. 22. 피해자 1과 후반야 근무에 투입되어 근무를 하였는데, 익일인 5. 23. 02:00경 피해자 1이 졸고 있어서 주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10분 간격으로 계속 졸고, 04:00경 대기초소에서 또 다시 졸고 있어 발로 피해자 1의 우측정강이를 1회 차며 일어나라고 했는데도 일어나지 않아 피해자 1의 방탄헬멧을 2회 손바닥으로 때리고 우측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어 05:00경 초소에서 피해자 1이 또 졸고 있어서 짜증이 나서 발로 2대 정도 정강이를 차고 주의를 주었는데도 5분 정도 후에 또 졸아서 잠을 깨우려고 쪼그려 앉기를 3~4분가량 시켰으나 재차 코를 골며 졸아 팔굽혀펴기 25회 정도 시켰다. 그런데도 또 졸고 있어서 머리박기를 5분가량 시켰다. 이에 피해자 1이 죄송하다고 하여 힘든 이유를 물어보았으나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며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말하여 고치라고 한 적이 있다.

2011. 4월 중순 16:00경 생활관에서 피해자 1이 의자 정리를 하는 시간에 다른 소대의 의자 정리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에 침낭을 끼우고 피해자 1의 팔 상박부위를 약 3회 때린 적이 있고, 같은 해 5월 중순 15:00경 피해자 1에게 장난권투를 하자고 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1의 옆구리, 팔 부위를 약 15회 때린 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 1을 구타하고 얼차려 준 것을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이유는 보고해도 서로에게 좋을 게 없고 피해자 1을 보는 이미지도 안 좋게 될까봐 보고 안했던 것이다.

6) 이ㅇㅇ(상병, 0중대 0소대 0소초)

본인은 2010. 10. 12. 입대하여 상병이며 피해자 1이 2011. 4. 6. 전입하여 처음에는 2생활관에 배치를 받아 잘 몰랐으나 2~3주 후 1생활관으로 배치를 받아 처음 근무 첫 사수(선임병)로 근무하였다. 선임들 이야기가 근무지에서 자꾸 존다는 말을 들었으

나, 본인과 근무할 때는 졸지 않았다. 그러나 00번 진지에서 근무할 때, 피해자 1이 총을 놓고 나가 "×× 니 총이 제2의 생명인데, 저딴 식으로 버리고 다니냐. 개새끼야 정신 좀 차려라"라고 한 사실이 있다.

2011. 5월 중순 야간근무가 있어 피해자 1이 대기포 근무 중이어서 속옷(하의 5개, 상의 5개) 세트와 수건 2개를 세탁하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고, 5월 중순 11:00경 화장실에서 피해자 1과 소변 오래보기 시합을 하다가 피해자 1이 웃어 무릎으로 피해자 1의 허벅지를 2~3회 때린 적이 있었다.

2011. 5월 중순 취사장 청소를 하는 날인데 피해자 1이 멍하게 있어 화를 내면서 "니 선임들은 취사장 청소하는데 너는 옆에서 쳐보냐"고 질책을 한 적이 있고, 2011. 5월 중순 생활관에서 피해자 1이 근무 나갈 때 옷을 침상위에 올려놓고 옷걸이에 안 걸고 나가 "야 이 새끼야, 정신 줄 팔고 다니지"라고 하고, 또한 옷 정리가 안 되어 있어 발목을 툭 친 적이 있고, 2011. 5월 중순 상병 신○○이 피해자 1과 근무 갔다 와서 피해자 1이 가방을 놓고 왔다면서 나에게 질책을 해서 피해자 1을 불러 담배를 피우면서 "야 ×× 나에게 피해주지 말라"라고 한 적이 있고, 또한 평소 생활관에서 피해자 1이 2살 많았지만 "이 시키야"라고 약 10회 정도 말한 사실이 있다.

평소 병장 김○○가 피해자 1이나 후임들이 실수하면 수시로 후임병 교육을 잘하라고 욕을 하여, 처음에는 참고 넘겼으나, 2011. 5월 중순경 병장 김○○가 '애들 교육을 안 시킨다'고 생활관에서 일병 조○○과 함께 "야 ××새끼들, 후임관리 잘하라. 개새끼들 교육 안 시키느냐"라고 욕을 하며 쪼그려 앉아 있기를 5~10분 정도 시키고, 식사기간 중에도 욕을 들어, 차츰 후임들이 잘 못하면 본인도 후임병들을 심하게 대한 것 같다.

병장 김○○는 2011. 5. 1.경 다리를 다친 본인 대신 근무를 서게 되자 "아 ×× ×같다. 내가 왜 너 근무 들어가야 되느냐. 이 병신새끼야 너 근무 안 들어가서 좋겠다"라고 폭언을 하고, 후방근무지에서 근무를 설 때에는 작은 실수를 하면 뒤통수를 때리곤 하였으며, 또한 2011. 5월 피해자 1이 전입 왔을 때, 잦은 실수를 하자 잠을 자는 본인을 깨워서 "××새끼야 애들 저딴 식인데, 교육 안 시키느냐"라고 강요하고, 일병 조○○의 경우에는 화장실 앞에서 가슴을 2대 때리는 것을 본 적도 있었다.

다. 참고인들

1) 김○○(이병, 위 같은 소초, 피해자 1 동반 입대병)

2011. 5. 27. 생활관에서 피해자 1을 봤는데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있었고 대기포

작업을 하다 다쳤다고 했다. 2011. 5. 28. 흡연장에서 피해자 1이 와서 힘들다고 하여, 뭐가 힘드냐고 물으니 “그냥 힘들다”라고 하여 자꾸 물어봐도 “그냥 힘들다”라고 대답하였고, 또한 5. 29. 17:30 군장 검사시 피해자 1이 슬리퍼 신고 군장검사 받으러 나와 선임병들이 농구장 쪽에서 피해자 1을 불러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다.

평소 병장 김○○는 후임병들에게 귀찮게 하며 까다롭게 굴었고, 부를 때도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하였으며, 본인도 김○○ 병장 때문에 내리갈굼을 당한 적 있다.

2) 조○○(일병, 0중대 0소대 0소초, 군종병)

2011. 5. 29. 17:00-17:15경 피해자 1이 군장검사 때 슬리퍼를 신고 왔길래 “슬리퍼를 신고 온 행위는 싸가지가 없어 보인다.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라”라고 지적을 한 사실이 있고, 근무 중 상병 신○○이 야간 감시장비를 두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1에게 2~3회 지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2011. 5월 중순경 오후 생활관에서 병장 김○○가 후임들 관리를 잘못 했다는 이유로 본인과 일병 이○○에게 욕을 하면서 쪼그려 앉기를 2~3분 정도 시키고, 2011. 5월 중순경 화장실 앞에서 위 같은 이유로 본인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2~3회 때린 사실이 있고, 병장 김○○는 평상시에도 인상을 쓰면서 후임들을 똑바로 관리하라고 강요하였다.

근무 중, 병장 김○○가 피해자 1에게 근무를 똑바로 서라고 인상을 쓰면서 지적하는 것을 5~6회 목격했고, 또한 욕설을 하면서 근무지에서 졸지 말라고 5~6회 지적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3) 최○○(이병, 위 같은 소초)

피해자 1이 긴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 풀어 주려고 노력했는데, 상병 신○○과 일병 이○○이 2011. 5월 중순경 생활관 및 담배 피는 곳에서 피해자 1가가 선임에게 경례를 하지 않은 것과 군장검사 시간에 복장불량 등 이유로 “똑바로 해라 새끼야. 깜빡깜빡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긴장을 해. 니가 못하면 맞선임이 힘들어 하니깐 잘해”라고 질책을 하곤 하였다.

4) 문○○, 박○○(이병, 위 같은 소초 피해자 1의 후임병)

2011. 5월 말 일자불상 경 피해자 1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 자신에게 화가 난다, 건망증이 심해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 사망 전에 피해자

1이 손목에 붕대 또는 파스 같은 것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작업하다가 다친 것으로 알고 있다.

2011. 5. 29. 17:00경 군장검사 시 20명 가량의 부대원이 모인 장소에 피해자 1이 슬리퍼를 신고 나온 것에 대하여 선임병들이 생활관에서 질타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나 욕설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평소 일병 이○○이 피해자 1에 대해 자주 질타하는 편이었으며, 5월 일자불상 경 피해자 1에게 "근무가야 되니까 대신 세탁기 좀 돌려 달라"라고 하여 속옷 등을 대신 세탁하도록 한 적이 있었고, 이때, 피해자 1이 "이○○ 성격이 제일 더럽다"고 말했던 적이 있으며, 병장 김○○는 평소 자주 욕설을 하고, 후임병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질타하곤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내용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의 부친이 제출한 동료대원들의 서신,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들의 진술서 및 이들에 대한 대면조사보고서, 제0사단장이 제출한 피해자의 군복무기록 및 면담관찰기록부, 0소초 경계작전명령서 및 상황일지(2011. 5. 24.~5. 30.), 0소초 총기사고 상황보고, 피해자 외래진료기록지, 新인성검사결과자료, GOP대대 안전진단결과(2011. 5. 6.~8.), 0중대원들에 대한 설문지, 제0사단 헌병대가 제출한 변사사건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조사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기초사실

1) 피해자 1은 2011. 2. 14. 군 입대하여 2011. 4. 8. 제0사단 0연대 0대대 0중대로 전입하여 소속대 GOP 0소초 81mm 탄약수로 복무하던 중, 2011. 5. 29. 21:50경 후반야 야간경계근무를 위해 생활관에서 기상하여 병장 김○○ 등 9명과 함께 같은 날 22:50경 42초소에 도착하였다.

2) 피해자 1은 익일 2011. 5. 30. 00:25경 병장 김○○와 ○○초소로 함께 이동하여 합동근무 후, 밀어내기식 근무방식에 따라 같은 날 02:00경 ○○초소로 이동하여 대기

하다 같은 날 04:02경 다시 ○○초소에 도착하여 소초 내 합동근무를 하였고, 같은 날 05:07경 병장 김○○가 피해자 1에게 외초 근무지로 가서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해자 1은 외초 근무 중인 같은 날 05:20경 입 부위에 총상을 입은 채 병장 김○○에 의해 최초 발견되었다.

3) 당시 병장 김○○는 00초소 내부에서 근무서고 있던 중, 초소 밖에서 1회 총성을 듣고 밖으로 나가보니 외초근무지에 있던 피해자 1이 상체를 모래주머니에 기대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머리와 귀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 초소 내 인터컴(음향 신호/통신기)으로 상황을 전파하였고, 이후 오전 전반야 근무 인솔자인 하사 안○○ 등 6명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2011. 5. 30. 05:22경 0중대장 대위 김○○가 연대본부에 사고상황을 보고하고 구급차와 응급헬기 요청하였고, 같은 날 05:38경 소초장인 중위 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현장상태를 확인하던 중, 같은 날 05:40경 연대 구급차가 도착하여 군의관인 중위 문○○가 진찰한 바, 피해자 1은 이미 호흡, 맥박이 없었으나 심폐회생을 위하여 응급조치(가슴마사지, 기도삽관, 수액투여, 애프레프린 주사 4회)를 실시하였다.

4) 곧이어 같은 날 06:20경 도착한 헬기에 탑승시켜 피해자 1을 국군○○병원으로 긴급후송을 하였고, 위 병원 대위 조○○이 40분 가량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를 하였으나, 피해자 1은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07:22경 두부관통총창에 의한 중중 뇌손상으로 사망판정을 받았다.

5) 사건발생 직후 제0사단 헌병대와 검찰은 2011. 5. 30. 오전 ○○병원 응급실에서 육군수사단 제0지구 수사대장 등 7명의 주관으로 육군○○병원 대위 조○○, 유가족 등 총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피해자 1의 사체에 대한 검시 및 검안을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 사고현장인 00초소 부근 외초근무지에서 현장감식을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유족의 동의를 얻어 2011. 5. 31. 국군○○병원 부검실에서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법의감식관 대위 강○○의 집도로 부검을 실시하고, 사체를 피해자 1의 부친인 피해자 2 등 가족에게 인계하였다.

6) 제0사단 헌병대와 검찰은 사망현장에 대한 현장감식 및 총기, 혈흔 등 유류품에 대한 감정, 피해자 1의 사체에 대한 검안 및 부검결과 등에 근거하여, 입안의 입천장에 사입구와 머리부위를 관통하는 한 군데의 사창관이 관찰되며, 사입구 주변의 매흔 및 소염기흔이 발견됨에 따라 접사로 보이고, 왼쪽 이마부위 경계부에 불규칙한 파열상인 5×10㎝의 사출구가 관찰되고, 양쪽 눈거풀결막과 가슴안과 배안의 주요 장기가 빈혈상으로 관찰되는 등의 생활반응이 관찰되는 점, 심장혈 및 위 내용물의 약독물화화적 검사

에서 약독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기타 사인과 연관될 만한 특별한 기계적 손상 및 외상 방어흔적, 억압흔적이 관찰되지 않은 점, 피해자 1의 피복에서만 추진제 화약성분과 방탄헬멧에서 예광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 1의 사인은 피해자 1 자신의 K-2 소총을 이용하여 자살한 두부관통총창사인 것으로 판단하고, 2011. 10. 25. 내사 종결하였다.

7) 또한 제0사단 헌병대와 검찰은 피해자의 소속부대 간부 및 병사 등 46명을 대상으로 설문수리 및 면담결과 폭행·가혹행위 등 내무부조리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 결과를 근거로 제0사단은 상병 신○○에 대해서 초병상해 및 폭행혐의로 2011. 7. 18. 구속기소하여 2011. 10. 19.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중대장 대위 김○○, 소초장 중위 김○○, 분대장 병장 반○○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각 견책, 근실 5일, 휴가제한 5일의 징계를, 병장 김○○, 일병 이○○ 등 8명의 선임병들에 대해서는 폭행가혹행위의 책임을 물어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 영창, 근신, 휴가제한 등의 징계조치를 취하였다.

나. 구타·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1) 피해자 1에 대한 피진정인들의 구타·가혹행위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진정인	일시 및 장소	내 용	관련증거
병장 김○○	'11, 5월 초순경 생활관	주특기 제원을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는 공부 안하고 뭐 하냐"라고 폭언 및 질책	피진정인참고인 진술
	'11. 5월 중순경 생활관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않고 쉬고 있다는 이유로 "선임병들은 청소하는데 넌 쉬고 있냐, 야 ×× × 같네"라고 폭언 및 질책	피진정인 참고인 진술
	'11. 5월 하순경 생활관	피해자에게 몸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야 너 몸에서 ×같은 냄새가 난다. 좀 씻어라 ××아"라고 폭언 및 질책	피진정인 참고인 진술
	'11. 5. 29. 22:50경/ 5.30. 03:30경 00초소	피해자가 암구호를 모른다는 이유로 방탄헬멧을 1회 밀쳐 폭행하고, 초소 간 이동준비가 느리다는 이유로 "야 ×× 빨리 하라고 이야기 안 했냐"라고 질책	피진정인 진술
상병 신○○	'11, 5, 23, 02:00-05:00경 00초소	피해자가 근무 중에 졸았다는 이유로 전투화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방탄헬멧을 2회 때렸으며, 다시 졸아 전투화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2회 때렸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존다는 이유로 쪼그려앉기 3-4분, 팔굽혀펴기 25회, 머리박기를 5분 가량 시키는 등 폭행 및 가혹행위	피진정인 진술 피해자의 검안기록
	'11. 4월 중순	피해자가 의자 정리를 하는 기간에 다른 소대의 의자 정리를 도	피진정인

피진정인	일시 및 장소	내 용	관련증거
	16:00경 생활관	와주었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에 침낭을 끼우고 피해자의 팔 상박부위를 약 3회 폭행	진술
	'11. 5월 중순 15:00경 생활관	피해자에게 장난권투를 하자고 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팔 부위를 약 15회 때려 폭행	피진정인 진술
일병 이○○	'11. 5월 중순 11:00경 화장실	피해자와 화장실에서 소변 오래보기 시합을 하다가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때려 폭행	피진정인 진술
	'11. 5월 중순 생활실	야간근무가 있어 피해자가 대기포 근무 중이어서 속옷(하의 5개, 상의 5개) 세트와 수건 2개를 세탁하라고 사적 심부름 강요	피진정인 참고인 진술
	'11. 5월 중순경 취사장 / 생활관 등	피해자가 취사장 청소 시 멍하게 있다는 이유로 "니 선임들은 취사장 청소하는데 너는 옆에서 쳐보냐"고 질책하고,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옷 정리를 잘 안한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정신줄 팔고 다니지"라면서 피해자의 발목을 쳐 때리고, 피해자로 인해 신○○ 상병에게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야 ×× 나에게 피해주지 말라"라고 한 적이 있고, 평소 생활관에서 장난치듯이 피해자가 나이가 2살 많은데도 가끔 "이 시키야"라고 약 10회 폭언과 질책	피진정인 참고인 진술

2) 피해자 1외의 기타 구타·가혹행위 등 피해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해자	피해자	일시 및 장소	내 용	관련 증거
병장 김○○	일병 이○○	'11. 5. 1. 근무지	다리를 다친 이병 이○○ 대신 근무를 서게 되자 "아 ×× ×같다. 내가 왜 너 근무 들어가야 되느냐. 셋터 조심해서 타야지 이 병신새끼야 너 근무 안 들어가서 처 좋겠다"라고 폭언을 하고, 패바(후방)에서 근무를 나가서 작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구타	피해자 진술 가해자 일부시인
		'11. 5월 취침시간 생활관	전입 온 후임병들이 실수하자 강제로 깨워"××새끼야 애들 저딴 식인데, 교육 안 시키느냐"면서 폭언 및 강요	피해자 진술 가해자 일부시인
	일병 이○○, 일병 조○○	'11. 5월 중순경 생활관 등	후임병들에 대한 교육을 안 시킨다고 생활관에서 일병 이○○과 일병 조○○에게 "아 ××새끼들 계급 먹고 후임관리 잘 해라. 개새끼들 교육 안 시키냐"라고 폭언을 하고, 쪼그려 앉아 있기를 5~10분 정도 시키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 과정에서 폭언	피해자 진술 가해자 일부시인
	일병 조○○	'11. 5월 화장실 앞	후임병 관리를 잘 안한다는 이유로 가슴을 2~3대 때려 폭행	참고인 목격진술 가해자 일부시인 피해자 진술

다. 지휘 감독 등 부대관리 등에 대하여

1) 피해자 1이 2011. 4. 8. 소속부대에 전입하여 2011. 5. 30. 사망하기까지 이 사건 지휘·감독 책임자들인 피진정인 1, 2 등은 총 7회 걸쳐 피해자에 대한 개인면담을 실시하였으나 피해자 1이 약간 행동이 느리고 말투가 어눌하며, 체력적으로 부담되는 내성적인 병사로 관심사병 'C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였으나 특별한 애로사항을 발견치 못하였고, 부대순찰 및 일일결산 등을 통해서도 피진정인 3에게 피해자에 대한 특이한 사항을 보고받지 못하였으며, 또한 분대장인 피진정인 3은 평소 피해자가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등 사소한 실수가 잦았고, 근무지에서 조는 등의 상황을 알고 있었으나, 동료 선임병들이 피해자에 의한 대한 구타·가혹행위 및 폭언 등의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당시 피해자 1의 소속부대는 일일결산의 경우, 피진정인 3이 분대원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피해자 1의 근무기간 중에는 마음의 편지 등 소원수리를 실시한 적은 없었다.

3) 제0사단 0연대 0대대가 2011. 5. 6.~8.까지 3일간 소속 중대 소초에 대하여 실시한 'GOP 대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0소초의 경우, 일상적인 작업, 복무여건 등에 관한 애로사항이 있을 뿐, 구타·가혹행위 등 부대부조리와 관련된 사항이 식별된 사항은 없었다.

5. 판단 및 조치

가. 구타·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피진정인 4, 5, 6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규정 외 얼차려, 폭행 및 폭언 등을 한 행위가 인정되고, 피해자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지휘감독 등 부대관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나.항 및 다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4. 8. 소속부대에 전입하여 2011. 5. 30. 사망하기까지, 피진정인 4, 5, 6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생활관 및 근무지 등에서 구타·가혹행위 및 폭언 등 질책을 받아 왔고, 특히, 선임병들에 의한 '내리갈

굼(후임병 괴롭히기)'이라는 사적 제재에 따른 병영악습이 있었으나, 피진정인 1, 2, 3이 면담관찰, 부대순찰, 그리고 일일결산 등 부대관리를 함에 있어 관련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상급부대의 안전진단에서도 특이사항을 발견되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진정인 1, 2, 3 등 지휘관(자)들이 부대관리에 있어 지휘감독 소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부실한 신상관리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가혹행위 등의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군인복무규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같은 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조치의견에 대하여

1)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가.항의 7)과 같이 제0사단장이 이미 형사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 등 유가족의 권리구제에 대하여

현행 군의 각 법령은 비전공사망으로 분류되는 자살자의 경우 공상인정과 보상체계가 대단히 열악한 현실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속 부대장 등의 관리부실 및 소속 부대원들의 폭언 등 가혹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끼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등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 등 관련 소송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 원 장주영 위 원 윤남근

19 11직권19, 11진정5886(병합) [육군 ○○사단 이병 폭행·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 2011. 11. 2. 결정

[1] 국방부장관에게, ○군 내 사망사고 예방 및 장병 인권보장과 병영문화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

가. 소원수리, 병영관리시 제보자 비밀 보장 및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나. 병 분대장의 선발 기준 및 교육 강화, 병 분대장의 얼차려 권한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

[2] 육군 ○○사단장에게,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

가. 구타·가혹행위 관련 가해자와 지휘감독책임자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행정상 조치

나. 병사 및 지휘관들의 인권인식 개선을 위하여, 병사 및 지휘관의 부대배치 및 임명 등 병영생활의 각 단계별로 인권교육 정례화

[3]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 1의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결정요지 ▐

[1] 피해자 1의 주장 가운데, 폭언·부당한 얼차려·가혹행위는 다수 목격자와 가해자 진술이 있어 사실로 인정되고 가해자 1, 2의 구타·가혹행위와 피해자 1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움. 가해자들의 구타·가혹행위는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한 것임. 또한 해당 중대장과 대대장도 지휘관으로서의 지도·감독 및 부하의 고충 파악·해결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2] 사건의 발생원인과 관련, 분대장 교육 등 관리가 미흡하고 분대장의 얼차려의 집행이 규정과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선임병은 후임병을 복종의 대상이자 지시대상으로 인식하는 관행이 온존함. 그럼에도 병영 내 악습을 간부들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방임하는 등 군 운영 전반이 법치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하고, 피해사실에 대한 비밀보장 및 신병보호 등 권리구제 체계가 미흡하고 부실하게 운영되었으며, 복무부적응자에 대한 식별 노력과 관리가 부실하였던 점 등이 주요원인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15조제1항·제2항, 「군사고 예방 규정」 제3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에 관한 규정」 제3조·제5조, 「구타·가혹행위자 및 관련자 처벌에 관한 사항」

▌진정인 ▌ ○○○

▌피해자 ▌ ○○○ 등 12명

▌가해자 ▌ ○○○ 등 8명 ※ 지휘·감독책임 관련자 ○○○ 등 6명

▌주 문 ▌ 1. 국방부장관에게, 군내 사망사고 예방 및 장병 인권보장과 병영문화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마음의 편지' 등 소원수리, '병력 일일결산' 등 병영관리시 제보자의 비밀 보장 및 신상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

나. 병분대장의 선발 기준 및 교육을 강화하고, 병분대장의 얼차려 권한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육군 ○○사단장에게,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구타·가혹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 1 ~ 8과 지휘감독책임자 1 ~ 6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사 및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것

나. 병사 및 지휘관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병사 및 지휘관의 부대배치 및 임명 등 병영생활의 각 단계별로 인권교육을 정례화 할 것

3.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 1의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및 직권조사의 배경

'피해자 1은 2011. 8. 26. 자대배치 받은 두 달 만에 사망하였는바, 선임병에 의한 구타 및 가혹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1과 유족이 사망 전 부대에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부대에서는 경미한 구타사건으로 처리하고, 피해자 1을 다른 중대로 배치하였으나 재차 가혹행위를 당해왔다'는 진정이 제기되었고, 위원회의 기초조사 결과 추가적인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직권조

사를 개시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등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1) 피해자 1의 가족(부친 ○○○, 모친 ○○○, 외삼촌 ○○○)

가) 피해자 1이 2011. 9월경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부대에서 고참에게 맞는다고 하소연하였다.

나) 피해자 1이 2011. 10. 1. 첫 외박을 나왔을 때 얼굴에 맞은 흔적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다음 날 부대에 복귀하기 싫은 것이 역력했으며 양쪽 정강이에 작업하다고 다쳤다는 상처가 남아있었다.

다) 피해자 1이 2011. 10. 4. 19:00경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와 모친이 "오늘도 맞았니"라고 묻자 "응. 아직도 맞아"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

라) 관련자 2인 ○중대장이 2011. 10. 5. 1 피해자 1의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이병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병장 2명이 피해자 1을 포함하여 이병들을 때렸는데 경미한 수준이라고 한 적이 있고, 피해자 1의 부친이 잘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마) 관련자 2가 2011. 10. 6. 피해자 1의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이병들을 격주간 외박을 보내겠다"고 했으며, 이날 저녁 피해자 1이 자살하고 싶다고 피해자 1의 모친에게 전화로 말을 하였고, 같은 달 11. 피해자 1이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본부중대로 발령난다고 하니 동료병사들이 불쌍한 눈으로 쳐다봤다고 얘기하였다.

바) 피해자 1의 모친이 2011. 10. 16. 07:50경 경찰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보니 피해자 1이 목을 매어 있었고, 양쪽 정강이에 찰과상과 아문 상처가 있었으며 오른쪽 가슴에 사각형 모양(주먹의 모양과 비슷함)의 멍자욱이 있었다.

사) 헌병대 수사관과 수사과장이 가해병사가 가혹행위 사실을 일부 시인했고 자료도 있어 구속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 피해자 1의 중고등학교 동창(○○○, ○○○)

가) 2011. 10. 1. 피해자 1이 외박을 나와 만났을 때, 피해자 1의 뺨이 빨갛게 부어 있어, 이유를 묻자, "외박을 나오기 전 뺨을 맞았다"라고 하였다. 가해자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으나 "쳐다본다고 맞고, 안 쳐다본다고 맞고, 대답하였다고 맞고, 대답하지 않았

다고 자주 맞았다"고 하였다.

나) 날짜 불상경 "피해자 1의 대학교 여자 선배가 면회를 왔는데, 고참이 '따먹고 싶다'라는 음담패설을 하면서, 소개시켜 달라고 하고, 이유 없이 때렸다"고 말하였고 또한, 술을 마시면서 "힘들어 죽겠다, 선임이 쓰레기다"라는 말은 하였으나 고참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다.

다) 피해자 1은 "십자인대파열로 의가사 제대를 하고 싶다"면서 "소주병으로 자해를 하였으나 무릎만 부었다"고 한 적이 있다.

라) 위 진술과 별개로 친구 8명이 익명으로 피해자의 사망 전 피해자 1에게 들은 내용을 피해자1의 부모에게 전달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힘들다, 맞을 것 같다", "집에 가고 싶다, (부대)들어가기 싫다"라고 말하고, 맞지 않을 방법을 고민하고, "한두 시간 폭행은 기본이다"라고 하였다.
- "안 맞는 날은 더 이상한 날이다, 타 부대 가고 싶다, 앞이 안 보인다, 생일날 멍석말이 한 친구는 다리를 쩔뚝거린다. 음대출신에게 음을 들려주고 못 맞추면 때리고, 철모에 술을 따라 원샷 시킨 후, 구타한다"라는 말을 하였다
- 선임들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하루도 안 맞은 날이 없다, 여자 친구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서 폭행하였다, 이유 없이 맞았다"라는 말을 하였다.
- 군 입대 후, 말이 없어지고, 선임 눈치를 보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 첫 외박 나와 "선임이 주먹으로 때렸다"고 하였고, 참고인이 면회를 가니, 선임 눈치를 많이 보는 태도를 보였고, "십자인대파열로 의가사 제대를 하고 싶다"면서 "자해를 하였으나 무릎만 부었다"고 하였다.
- 여자선배 면회시, 가지고 싶다고 모욕을 주고, 구타까지 당했다고 하였다.

3) 피해자 1의 대학교 동기(○○○, ○○○, ○○○, ○○○)

가) 피해자 1은 학교생활을 할 때,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항상 쾌활하고 밝았으며, 친구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지 않는 등 친구관계가 원만하고 좋았다.

나) 피해자 1이 2011. 10. 15. 외박을 나와 ○○시 ○○서림 앞에서 만나 당구, 호프, 노래방 등을 거쳐 헤어졌는데 학교생활 때와 달리 표정이 매우 어두웠고, 군 생활이 힘들다는 말을 토로하였고,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대대)가 악폐습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고 하였다. 외박 나오기 전에 목 부분을 맞았다고 하였고, "하루라도 안 맞으면 이상하다. 어떻게 하면 안 맞고 하루를 보내야 되는지 그 생각만 한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긁으면(소원수리) 안 되느냐고 하니까 소원수리를 하면 부대에서 다 알게 되고 왕따를 당해 더 힘들다고 하였다.

다) 피해자 1은 선임이 군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해서 술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철모에 소주 3병 반을 부어 원샷으로 마시게 하고, 이어 한 번 마셨는데, "더 못 먹겠다"고 하니까 맞았다고 하였다. 당시 전입 동기로 음대출신이 있었는데, 선임이 박자를 맞추라고 하였는데 못 맞추자 때렸다고 하고, '생일빵', '전역빵'이라고 하여 모포를 말아 구타를 하고, 이로 인해 한 전역자는 다리를 절며 부대를 나간 적이 있다고 하였다.

라) 당시 피해자 1은 "부대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또 맞을 것 같아 싫다"는 말을 수차례 하였고, "타 부대로 전출가고 싶다"는 말도 하였다.

마) 피해자 1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선임들이 때리는 이유는 특별히 없고 눈을 마주쳐도 때리고, 눈을 안 마주친다고 때리고, 목소리가 크다고 때리고, 작다고 때리고, 하루도 안 맞는 날이 없다"고 하였으며 선임들이 CCTV가 없는 곳에서, 점호 시간 후 불을 끈 상태에서 때린다고 하였다.

바) 피해자 1의 평소 학교생활, 성격으로 보아 자살할 이유가 없고, 부대생활이 대단히 힘들었던 같았다.

4) 피해자 1의 대학교 여자선배 등(○○○, ○○○)

가) 2011. 9. 25. 자대 배치된 후 피해자 1을 면회 갔었다. 당시 치킨 2마리를 가지고 갔으나, 많이 먹지 못하고 반 이상이 남아 ○○○이 남은 치킨을 선임들한테 갖다 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1은 "그런 사람들 갖다 줄 필요 없다"며 휴지통에 버렸다.

나) 면회실 안에는 피해자 1의 선임으로 보이는 병사가 여자 친구와 만나고 있었고 대화 내용을 서로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이 피해자 1에게 선임들이 잘 해주냐고 묻자 피해자 1은 "선임들이 아주 잘 해준다"고 대답하였으나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피해자 1이 ○○○에게 전화하여 선임이 잘 해준다는 얘기는 모두 거짓이라고 말하였다.

다) 한참 후에 피해자 1이 ○○○에게 재차 전화하여 선임들이 옆에 있는데 ○○○을 소개시켜 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통화를 한바 있다.

라) 피해자 1은 훈련소 시절에 ○○○에게 보낸 편지에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군생활이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내용이 있어서 ○○○는 피해자 1이 군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면회 당시 피해자 1의 표정이 어두웠으나 이병 때라 힘든 시기일 것이라고 추측했을 뿐 별다른 이상한 점은 느끼지 못했다.

마) 2011. 10. 1. 피해자 1이 외박 나와 ○○○를 카페에서 만나서 동료가 말을 알아듣지 못해 피해자 1도 선임에게 같이 맞았다는 말을 하였다.

바) 피해자 1의 100일 휴가 때 대학 친구들과 바다에 가자는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고, 평소 친구들도 많았고 성격도 좋았는데 갑자기 자살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나. 가해자들의 진술요지

1) 가해자 1 : ○○○(병장, ○대대 ○중대 분대장)

가) 피해자 1은 처음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많이 존다거나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 1이 '해리성 기억상실증'을 앓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머리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작업이나 근무간 "항상 조심하라"고 하였다. 본인은 충성마트 통제를 한 적이 없는데 피해자 1이 충성마트를 못 가게 한다고 다른 중대원에게 얘기한 사실이 있다.

나) 피해자 1이 2011. 9월 하순경 총기시건을 잘못한 일이 있어 엎드려뻗쳐를 약 1~2분 정도 시킨 적이 있으나 악의적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고 장난 식으로 한 것이다.

다) 피해자 4인 ○○○ 이병이 2011. 10 초순경 점호간 졸아 목덜미와 왼쪽 뺨을 4~5회 툭툭 치며 졸지 말라고 지적해준바 있다.

라) '마음의 편지'는 주 1회 정도 실시하며 조치는 잘되는 편이라고 생각되고, 간부 면담은 분대장이 보고한 인원을 중대장이 면담하거나 중대장이 직접 면담하기도 하였다.

마) 일일결산은 저녁 점호간 점호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생활관에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이 식별되면 관찰일지에 기재하였다.

바) 부대 악습으로는 후임들에게 청소와 빨래를 도맡게 하며 임무분담제로 정·부를 정하여 청소하게 되어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일빵'은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이거나 특별한 기억은 없다. '전역빵'은 2011. 8월경에 전역한 ○○○ 병장에게 모포를 말아 중대원들이 구타한 적이 있다. 본인이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 가해자 2인 ○○○ 병장이 피해자 1이 불침번 근무시 졸은 사실이 있어 지적했다는 것을 그 날 아침 알았다.

아) 피해자 4. ○○○ 이병이 외박준비가 미흡하여 피해자 2. ○○○ 이병과 피해자 3. ○○○ 이병이 맞선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머리박기를 시킨 적이 있지만 악의는

없었고 시간도 길어봤자 2~3분 내외였다.

자) 피해자 1이 무릎을 자해한 사실을 2011. 9월 하순이나 10월 초순경에 알고, 2~3일 후에 중대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다. 피해자 1에게 물어봤을 때는 운동하다 다쳤다고 대답했다.

2) 가해자 2 : ○○○(병장, ○대대 ○중대)

가) 피해자 1에게 2011. 9. 28. 고폭탄 사격에 대해 가르쳤지만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다 외워라 그 거 하나 외우는 게 그렇게 힘드냐"라고 하였다.

나) 피해자 1이 2011. 10. 6. 불침번 근무시 졸다가 다음 근무자를 깨우지 않아 생활관에서 베개를 침상에 던지고 "이등병이 어떻게 몰래 잘 생각을 하냐, 시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왜 잤냐" 라고 5분정도 말하다가 "넌 그냥 자라"라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 1에게 악의적으로 손을 댄 적이 없다.

다) 가해자 1이 피해자 1과 피해자 4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것을 보았고 2011. 10. 16. 헌병대 조사시 피해자 1을 구타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수사관이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에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

3) 가해자 3 : ○○○(병장, ○대대 본부○중대)

약 1년 전(2010.9~10월경) 일병으로 복무 시 당시 이병이었던 같은 중대 ○○○의 가슴, 어깨를 주먹으로 2회 때린 사실이 있고, 후임들에게 욕설 등 언어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때린 이유와 어떤 욕설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으나, 이 행위가 지휘관에게 적발되어 이에 대한 책임으로 정기휴가 5일을 감하는 징계를 받은바 있다.

4) 가해자 4 : 병장 ○○○(○대대 ○중대)

2011. 10. 14. 오전 ○○○ 이병이 야간근무 투입 간 불침번이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투입 준비를 하지 않고 취침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같은 날 08:20경 위 ○○○에게 "너 꺼져! 그렇게 졸리면 생활관 가서 자."라고 말을 했는데도 대답이 없어 뺨을 2회 구타한 사실이 있다. 평소 동기들이나 후임들에게 욕설을 장난 식으로 하곤 하였는데, 이 번 일을 계기로 욕을 하는 나쁜 버릇을 고치도록 하겠다.

5) 가해자 5. 상병 ○○○(○대대 본부중대)

가) 본인이 피해자 9. ○○○ 일병에게 업무시정 요구로 “이 새끼야” 라고 4~5회 한바있고 같은 소속 가해자 3. ○○○ 병장은 분대장 자격으로 후임들에게 여러 시정사항에 대해 지적을 하였다.

나) 상향식 일일결산은 매일 21시경 시행하나 분대장과 분대원들이 편안히 담소 나누는 정도이며 결산시에 특이사항을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생일빵’은 본적도 한 적도 없다. ‘전역빵’은 8월경에 마지막으로 봤고 점호 이후에 불을 끄고 모포를 씌우고 한다. 단순한 앙금풀기다.

다) 과거에는 후임병들은 냉동식품을 못 먹게 하거나 활동복 지퍼를 못 올리게 하는 악습이 있었지만 현재는 없어졌으며 근무 등의 이유로 결원이 발생 시 일병 등이 청소를 한다.

라) PC방 이용시 후임들이 눈치를 봤지만 지금은 없어졌고 마음의 편지는 주1회 실시하며 당직사령이 통제한다.

6) 가해자 6. 상병 ○○○(○대대 ○중대)

가) 2011. 10. 1. 아침식사 후, 생활관에서 피해자 7. ○○○ 이병에게 평상 시 말끝을 흐리거나 목소리가 작은 것을 교육하였으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이 개새끼야. 이 시발놈아, 미쳤냐”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를 박으라고 하자 5초 가량 박다가 더 이상 하지 않아 위와 같은 욕을 하고 다시 박으라고 하였는데, 계속 안 박아 주먹으로 머리 옆 부분을 3회 구타하고, 다시 박으라고 하였음에도 박지 않아 “그냥 너 할 거 해라.”라고 보낸 사실이 있다.

나) 전역자, 생일자를 구타하는 악습은 ○중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7) 가해자 7. 일병 ○○○(○대대 본부중대)

가) 피해자 6. 이병 ○○○이 2011. 8월말에서 9월초 경 대대 행정반 등에서 선임을 보고 말을 하지 못하는 등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 본인을 쳐다 볼 것을 강요한 사실이 있고, 9월 초경 3-4일 동안 위 ○○○의 이름을 3-4번씩 7-8회에 걸쳐 계속 부르면서 관등성명을 말하게 한 사실이 있다.

나) 본인은 2011. 10. 10. 00:00부터 익일 02:00경 사이 탄약고 근무를 하고, 피해자 1은 같은 시간 대대불침번 근무를 하였는데, 피해자 1이 후번 근무자를 깨우지 않고

취침을 하여 ○중대장이 이를 발견하여 깨워서 약 20분 늦게 근무 철수를 하였는데, 피해자 1이 사과도 하지 않아, 아침 07:00경 통합막사 앞에서 "너 때문에 근무를 20분 더 섰다, 뭐라고 하고 싶은데 너도 이미 혼났을 것 같아 참는다."라고 혼을 낸 적이 있다.

다) 평소 중대장 등 간부들은 후임이 사소한 잘못을 하면, 후임병을 지적하지 않고, 분대장, 최고선임들을 불러 "후임병 관리 똑바로 하라."라고 혼을 내는데, 그러면 분대장이나 최고 선임이 중간선임을 불러 질책을 하고, 중간선임이 후임을 불러 질책하는 '내리갈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라) 본인은 2011. 4월부터 6월경 전역자에게 폭언을 듣고, 머리, 팔 등을 폭행당한 적이 있고, 선임들이 사소한 잔심부름(PX 물건사오기, 물 떠오기 등)이 많았고, 과도하게 관물대 정리를 요구 당한 적이 있었는데, 현 대대장이 부임한 후로 많이 없어졌다.

마) 일명 '생일빵'은 없었고, '전역빵'의 경우, 2011. 8월경 점호 끝나고 전역자에게 모포를 덮어 1분에서 30초 동안 주먹과 발로 막 때리고, 이어 준비해 둔 과자 등 먹을 것을 먹고 파티를 한 것이고, 그리 괴롭히는 것은 아니었고, 다리를 절며 전역한 선임은 없었다.

바) 본인은 부대 전입 후 3번 술을 먹었는데, 한 번은 부대 회식 때 소주 한잔씩 동료병사들과 먹었고, 8월 하계휴양 때 맥주 40캔을 전 병력이 나누어 먹었으며, 추석 때 차례지내고 매실주를 한 잔씩 마신 것 외에는 술을 먹은 적이 없다. 철모에 술을 부어 먹은 사실은 전혀 없다.

8) 가해자 8. 일병 ○○○(○대대 본부○중대)

가) 2011.9월경 손가락으로 후임병의 몸을 찌르면서 '관등성명 어디다가 팔아먹었어?'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장난을 친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나) 과거에는 여러 병사의 세탁물을 한명의 병사가 모아 세탁하는 관행이 있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얼마 전부터 개인피복은 자기가 직접 세탁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다. 지휘·감독 책임 관련자들의 진술요지

1) ○○○(중령, ○대대 대대장)

가) 피해자 1에 대한 신병관리에 대하여, 여단 및 대대 주임원사의 피해자 1에 대한 신상면담자료에 의하면, 입대 전 피해자 1이 부모와 일부 불화가 있어 가출 1회, 해리성

기억상실증 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보호관심사병 'B'급으로 분류되어 보고되어, 2011. 9. 6.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피해자 1이 자신의 대학 전공을 살려 상담병으로 활동하기를 원하여, 차후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1의 전입 당시 신병훈련소에서 1차 신인성검사 시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은 알지 못했고, 2011. 10. 12. 대대병력결산 시 ○중대장 대위 ○○○이 피해자 1이 선임병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고 하고, ○○과 2·4종 업무 공석예정임을 알고 보직변경를 원한다고 하여, 즉시 개인면담을 실시하여 당일 오후 보직변경 인사명령을 내렸다.

피해자 1의 경우, 최초 보호관심사병 'B'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였으나, 2주 후 병력결산 시 잘 적응하는 것 같아 2011. 9. 22. 'C'급으로 재조정하였고, 이 번 사망사건이 발생하기 까지 소속 ○중대장 등 간부들로부터 피해자 1에 대한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 자살발언, 자해 사실 등을 보고 받지 못해 알지 못하였다. 사고 발생 후, 구타 관련 사실은 ○중대장에게 알아보고, '○중대장 조치사항'을 작성하게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2011. 10. 3. ○중대장이 피해자 1의 부친의 부탁으로 군 전역장교 ○○○(대위 전역)을 통해 중대 내 구타사실이 있으니 조치해 달라는 말을 듣고, ○중대장이 이병 5명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 1가 피해자 1의 부친이 비밀유지를 원하고, 동료 이병들이 구타·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면담과정에서 피해자 1에 대한 경미한 구타 사실만 발견되어, 최종적으로 사실 확인 후 대대장에게 보고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 1의 보직변경은 구타·가혹행위 때문이 아니라, ○중대장이 2011. 10. 7. 피해자 1과 면담과정에서 의사를 확인을 하고, 같은 날 대대병력결산 시 이를 보고받고 당일 면담하여 보직변경을 승인하였던 것이다.

나) 부대관리와 관련하여, 마음의 편지 등 소원수리는 여단 주관 하에 주 1회 대대병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대대자체에서도 한 달에 1회 실시하고 있으며 2011. 6. 부임 후, 소원수리를 통하여, 장거리 휴가출발을 고려한 신고시간 조정, 충성마트 에어컨 설치, 체육기자재 구입, 후임병 위주로 일을 하여 임무분담제 실시, 욕설하지 않기 등을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신상필벌을 원칙으로 폭언 및 구타 사건으로 징계조치를 30여건 하였고, 포상도 30여건 하였다. 간부들이 병사들에게 폭언 등 욕설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4. ○○과장 대위 ○○○에게 2011. 7. 경고장을 발부하였고, 또한 전역한 전 동원과장 대위 ○○○, 예비군지휘관인 ○○○동대장인 5급 ○○○에게 같은 이유로 경고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으며 병사들 간의 욕설, 머리박기 등 기합, 구타, 전역빵, 청소 및 빨래시키기 등 병영악습은 부임 이후 많이 줄어 든 것으로 알고 있다. 1회성

악습으로 '전역빵'은 2011. 9. 28. 병장 황○○에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관련자 2.인 ○중대장이 피해자 1에 대한 구타사실을 신속히 보고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중대장이 자체조사를 하면서 관련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문제점도 있어 보인다. 이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과도한 가혹행위가 부대 내에 있는 것은 아니다.

2) ○○○(대위, ○중대 중대장)

가) 피해자 1의 신병관리에 대하여, 피해자 1은 2011. 9. 7. 중대로 전입되어, 보호관심병사 등급 'B'급으로 분류되었으며, 신병관리기간 중, 3-4회 면담을 실시하였고, 면담결과 피해자가 행정병을 희망하고, 상담병을 해 보고 싶다고 하였고, 모친이 비밀유지를 당부하면서 해리성 기억 상실증 병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당시 피해자 1은 이병 때의 어리숙한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중대 60미리 부포수로 보직을 주었다.

2011. 10. 6. 야간 당직근무 중, 같은 달 7. 02:00경 피해자 1이 대대불침번 근무를 이탈하여 취침하는 것을 적발하고, 근무태만으로 진술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이후 1~2시간 후, 피해자 1이 갑자기 중대장실을 찾아와 상담병 활동을 보고한다고 하면서, 본부중대 ○○○(현역복무부적합 준비 중으로, 피해자 보다 선임임)을 면담내용을 보고하여 이등병의 위치에서 할 일은 아니나 사기진작을 위해 잘했다고 칭찬을 하자 피해자 1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과 계원자리로 보직변경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2011. 10. 12. 대대병력결산 시, 대대장에게 피해자가 구타당항 사항을 보고하지 않고 보직 변경 건을 보고하여 ○○과장 면담, 대대장 면담을 시켜 당일 저녁 보직변경 승인을 해 주었고 중대 병력결산 시 분대장 등 소속 병사들로부터 피해자 1이 자신의 무릎을 자해하였다는 말을 보고받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 중대원들은 매일 21:00경 일석점호를 하고, 22:00경 취침을 하는데, 당직사령에 의해 통제되고, 나머지 간부들은 퇴근하며 소등 이후, 생활실에서 일명 '전역빵'을 한다거나 병간 회식을 하였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

나) 구타·가혹행위 인지 및 조치 경위에 대하여, 2011. 10. 3. 당직근무 중, 피해자 1의 부친의 지인(○○○, 예비역 대위출신)이 전화하여 "피해자 1이 매일 구타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중대 내에 가혹행위가 있다고 한다. 나도 중대장을 해 보아 아는데, 애들은 과장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고 조치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여 알게 되었다. 이에

곧바로 중대 이등병 5명에 대해 3명, 2명씩 따로 불러 확인해 보았으나 구타·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당일 저녁 피해자 1의 부친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사실확인을 위해 2011. 10. 3. 저녁 때 이병들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는데, 피해자 1은 가해자 1. ○○○ 병장이 피해자 4. ○○○ 이병을 구타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고, 자신은 가해자 2. ○○○ 병장이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고 하면서 익명성을 보장해 달라고 하였다.

2011. 10. 4. 이등병 간담회를 한다고 하고, 개별면담을 하였는데, 이 때 ○○는 가해자 1. ○○○ 병장이 폭언을 하였으나 맞지는 않았다고 하고, 나머지 3명은 구타·가혹행위가 없었다고 하고, 피해자 1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가해자 2. ○○○ 병장이 가슴을 밀치듯이 때렸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1의 부친에게 전화하여, 경미한 구타사실이 있음을 알려주고 처벌하겠다고 하니까 피해자 1의 부친이 처벌은 원하지 않고 중대장이 교육을 잘 시켜달라고 하였으며, 같은 달 5. 저녁 이등병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 1의 의사를 재차 확인하니 자신은 구타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바 있다. 당시 피해자 1과 부모의 비밀유지 부탁이 있었고,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조치 중이었고, 2차 외박(10. 15)을 갔다 와서 최종진술을 확인하고 대대장에게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외박중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당시 이와 관련한 민원처리는 구두로 하였고, 달리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제출할 자료는 없다.

다) 중대 분대장이 후임병사들에 대해 폭언, 폭행, 과도한 기합, 보고누락 등의 행위에 대해 믿어지지 않으며, 이런 행위가 억압적으로 한 것인지 장난스럽게 한 것인지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잘못이 확인되면 관리소홀에 대해서 상응하는 책임을 느낀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부대에 매일 구타가 있고, 철모로 술을 먹이고, 여자친구를 따먹겠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피해자 1이 결과적으로 가혹행위에 의해 사망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3) ○○○(중위, ○대대 본부중대장)

가) 피해자 1이 2011. 10. 12. 본부중대 2·4종 계원으로 보직 조정되어 대면하게 되었다. 피해자 1은 ○중대에서 얼굴이 어둡고 잘 적응을 하지 못해 ○중대장이 대대장에게 보직조정건의 하여 조치가 이루어졌다. ○○과 2·4종 계원인 ○○○ 병장이 인수·인계 하였고 같은 날 점심시간에 본부중대 인원을 확인하러 참모부 막사에 들려 피해자 1을 격려하였으며 외박이 계획되어 있어 외박계획서를 확인하고 출타자 교육(과도한 음주 자제, 성매매 금지, 대인피해 금지 등)하였다. 병영생활간 분대장이 일일결산하여

특이사항과 환자파악을 하였다. 지금까지 일일결산 시 분대장에게 구타·가혹행위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 임무분담제 분담표는 생활관에 게시되어 있고 매일 20:30 담당구역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당직사령이 청소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나) '전역빵'이나 '생일빵'은 없다. ○○과장이 욕설로 인해 대대장에게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현재 간부들은 폭언이나 욕설을 하지 않는다.

다) 1주일에 1회 '마음의 편지'를 작성케 하며 여단에서 통제하며, 본인이 2011. 10. 14. 휴가인 관계로 새로 전입 온 피해자 1의 대해 생활지도기록부를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고 신상면담을 실시하지 못했다.

4) ○○○(대위, ○대대 ○○과장)

가) 본인은 2011. 1. 12. 대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사들에게 욕설을 하여 대대장으로부터 경고장 및 교육을 받고 현재 과거에 잘못된 점들을 반성하고 있다. 병사가 잘못 했을 시, 선임병이나 분대장에게 교육시키라는 등 내리갈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나) 2011. 10. 12. 피해자가 ○○과로 보직 변경되어 같은 달 14.까지 근무하였는데, ○○과 내에서 욕설 및 구타행위는 없었다.

5) 원사 ○○○(○대대 주임원사)

가) 피해자 1은 2011. 9. 4. ○대대로 전입하여, 본인이 같은 달 5. 개별면담을 하였는데, 여단 주임원사의 심층면담자료를 토대로 'B'급 관심보호대상 병사로 분류하여 대대장에게 보고하여 ○대대로 전속명령을 내렸고, 이후 ○중대로 배치된 이후에는 해당 중대에서 병력을 관리하였다. 전입 당시 면접과정에서 '해리성 기억 상실증' 병력 외에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부대환경관리를 하다 보니 병사들이 작업지시를 많이 한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이 부대는 시설이 노후하고 관리가 미흡하여 시설개선을 위한 작업지시를 불가피하게 한 것이다.

다) 부대 내 CCTV는 무기 탄약고 등 취약지역, 위병소, 보일러실, 총기탄약 불출 안전검사대, 생활통합 막사 복도 등 8개 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대 주임원사로서, 부대 내 가혹행위 등 병영악습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

라. 동료병사 등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1) ○○○(○사단 ○○대대 본부중대 상병)

가) 2011. 10. 1. 외박을 나가기 위해서 같은 날 08:30 경 지휘통제실에 대기 중 피해자 1을 만났다. 외박 교육 영상을 보면서 가볍게 대화하였다.

나) 피해자 1에게 특이한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얼굴에 맞은 흔적은 없었다. 피해자 1은 2011. 10. 1. 08:57경에 외박을 나갔고 본인은 09:02경에 나갔는데 부대 밖에서 피해자 1과 모친이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

2) 이병 ○○○(○대대 ○○중대)

가) 피해자 1은 본부중대 ○중대 소속이었고 본인은 2011. 10. 11. ○○중대에 배치받아 생활관도 달라 피해자와 마주치거나 말해본 적 없다.

나) 자대배치 받은 신병들은 2주간은 일명 '쉘드'라고 하여 아무도 터치하지 않으며 선임에게 청소하고 일을 배우는 기간이라 본인은 구타 등은 당한 적이 없다. 다만, ○○○ 상병과 ○○○ 병장이 휴가 복귀 한 ○○○ 상병을 이유 없이 구타 및 욕설 등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 상병이 ○○○ 이병을 청소를 소홀히 하였다고 물건을 던지고 뺨을 때렸다고 들었다. 또한 ○중대장이 욕설과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를 목격하였고 '전역빵'에 대해선 목격한 것은 없고 들은 사실은 있다.

다) 마음의 편지 등은 분대장이 중대장에게 보고하는 체제이고, 분대장은 병사로 가해자들인 선임들과 친해 묵인되거나 익명성이 보장되기 어려워 아무 소용이 없다.

라) 가해자 4. ○○○ 병장이 피해자 7. ○○○ 이병의 뺨을 때려 부대에서 조사했으나, 피해자인 ○○○ 이병만 전출되고 ○○○ 병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은 구타행위를 부대 자체 내에서 축소하려는 한 예라고 생각한다.

3) 이병 ○○○(○대대 ○○중대)

가) 피해자 1이 2011. 9월 중순경 선임들의 빨래를 하는 것과 얼차려 받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다. 2011. 9월 하순경에는 가해자 1. ○○○ 병장과 가해자 2. ○○○ 병장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고, ○○○ 병장에게 턱 부위를 9대 맞았다고 말했다.

나) 피해자 1이 2011. 10월 초순경 자신의 십자인대를 파열하여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중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였고, 그 후 영내에서 2~3차례 자해를 시도했다고 말하였다.

다) 본인은 구타를 당한 적은 없고 선임들의 의한 욕설은 수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 기사에 난 것처럼 피해자 1이 매일 맞았다거나 철모에 술을 담아서 마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 이병 ○○○(○대대 ○○중대)

가) 2011. 9월 중 20시경 생활관에서 가해자 1. 병장 ○○○이 근무시간을 착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1을 침상 위에서 엎드려뻗쳐를 약 30분간 시킨 것을 본 적이 있다.

나) 가해자 2. 병장 ○○○가 날짜 불상경 피해자 1에게 불침번 근무시간에 졸았다면서 욕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다) 가해자 1. 병장 ○○○이 2011. 9월 중순경 22:10경 소등한 시간에 조국기도문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의 왼쪽 목덜미 부분을 손바닥으로 3회 가격하였고, 며칠 후 체력단련을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4. 이병 ○○○에게 팔굽혀펴기를 40회 시키고 약 5초간 머리박기를 시킨 바 있다.

라) 가해자 1. 병장 ○○○이 2011. 9월 하순경 후임의 외박준비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과 피해자 3. 이병 ○○○을 생활관에서 약 30분간 머리박기를 시켰고 2011. 10월 초순경 09:00경 피해자 4. 이병 ○○○이 졸았다는 이유로 왼쪽 뺨을 몇 대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5) 이병 ○○○(○대대 ○○중대)

가) 본인이 2011. 9월 하순 20:00경 생활관에 들어갔더니 피해자 1이 엎드려뻗쳐를 하고 있었고, 물어보니 가해자 1. 병장 ○○○이 시켰다고 하였다. 가해자 1은 2011. 9월 중순경 근무투입이 늦었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팔굽혀펴기를 시켰고, 일주일 정도 후에도 체력단련을 안 한다는 이유로 팔굽혀펴기를 20회씩 2회 시켰고, 약 5~10초간 머리박기를 시켰다.

나) 가해자 1. 병장 ○○○이 2011. 10. 3. 오전 점호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본인의 왼쪽 목덜미 부분을 손바닥으로 5회 때렸다. 이후 왼쪽 귀에 이명 현상이 일어나 같은 달 7. 외부병원에 진료를 갔더니 의사가 고막이 터졌다고 하여 2주정도 치료받았다.

6) 이병 ○○○(○대대 ○○중대)

본인은 2011. 9월말~10월 초순경 가해자 1. 병장 ○○○이 피해자 1에게 침상위에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본적이 있고 2011. 9월 중순 21:30분경 후임병의 외박준

비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며, 본인과 피해자 2. 이병 ○○○에게 머리박기를 지시하여 약 10초간 실시 후 일어나 앉아 약 10분간 '잘하라'라는 얘기를 들었다.

7) 이병 ○○○(○대대 ○○중대)

가) 본인은 2011. 9월말~10월 초순 20:50경에 생활관에 들어갔더니 피해자 1이 엎드려뻗쳐를 하고 있어 이유를 물으니, ○○○ 병장이 시켜서 약 1시간동안 엎드려있었다고 말했다.

나) 가해자 1. 병장 ○○○이 2011. 9월 하순 07:30경 아침점호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4. 이병 ○○○의 얼굴과 등, 몸을 주먹으로 7대 이상 때리고, 발로 다리를 3~4대 찼으며, 피해자 4가 괴로워했다. 이 때문에 고막이 손상되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 가해자 1. 병장 ○○○이 2011. 10월경 22시경 조국기도문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병 ○○○의 왼쪽 목과 뺨 부위를 5정도 때렸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커서 세게 맞은 것으로 기억한다. 또한 2011. 9월 하순경 점호 후 피해자 1을 포함한 ○중대 소속 이병 5명을 전원 침상에 머리박기를 약 5분 정도 시키는 것을 본 적이 있고, 2011. 9월 하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4, 이병 ○○○에게 팔굽혀펴기를 수십 회 시키고, 일자불상 다른 날은 머리박기를 10분 정도 시켜 이병 ○○○이 무척 힘들어 하고 땀을 뻘뻘 흘렸다.

라) 부대 내에서는 피해자 1이 친구들에게 한 말처럼 매일 맞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선임들이 구타, 욕을 하거나 괴롭히는 일이 발생한 적이 있다.

8) 이병 ○○○(○대대 ○○중대)

가) 2011. 10월 초순경 피해자와 충성마트를 갔다 오고 분리수거장에서 대화를 하였는데 피해자 1이 반바지 활동복을 입고 있어 피해자 1의 우측 다리에 멍이 있는 것이 보여 그 사유를 물어보니, "흡연장에서 테이블 모퉁이에 무릎을 찍었으며,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의가사 전역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 이에 본인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피해자 1은 "계속 군대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으며 십자인대 파열을 하고 싶다"는 말을 계속 하였다. 다른 상황은 자세히 모른다.

9) 이병 ○○○(○대대 ○○중대)

가) 가해자 5. 김○○ 상병이 2011. 10월 초순경 청소가 잘 안됐다고 생활관 후임(박○○ 일병, 정○○ 이병, 김○○ 이병)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12. 임○○ 상병에게 욕설과 장난이 아닌 폭행(주먹으로 팔뚝 때리기)을 많이 하여 임○○ 상병이 많이 힘들어 하였다.

나) 가해자 5. 김○○ 상병이 피해자 9. 김○○ 일병에게 "일을 잘 못하고 융통성이 없다"고 욕설 및 질타를 자주 하였다.

10) 이병 ○○○(○대대 ○○중대)

본인이 2011. 10월 초순경 근무교대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가해자 4. ○○○ 병장이 본인의 뺨을 2대 때렸고 본인이 암기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해자 6. 이○○ 상병이 '머리박기'를 30분 정도 시켰다.

11) 이병 ○○○(○대대 ○○중대)

가) 피해자 1과는 부대 내에 있는 노래방에 같이 간 적이 없고, 피해자 1이 흥얼거리는 노래 소리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 '음대생이 음정·박자를 못 맞춰서 구타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본인과 무관하다.

나) 피해자 1과 중대가 다르고 피해자 1이 부대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피해자 1이 구타당하고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는 것은 피해자 1이 자살한 이후에 처음 들었다. 본인은 부대에 와서 선임들에게 구타를 당하거나 욕설을 당한 적이 없으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구타 등을 한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다.

12) 이병 ○○○(○대대 ○○중대)

가) 가해자 2. ○○○ 병장이 2011. 9월 초순경 피해자 1이 생활관 내의 빨래(선임자 것까지)와, 청소를 못했다는 이유로 욕설(새끼야 등)을 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을 목격하였다.

나) 피해자 1이 2011. 9월 하순경 체력단련 시간에 참고인에게 "생활관에 들어가기 싫다. 차라리 야근, 근무가 편하다"란 말을 직접 얘기한 적이 있고 피해자 1이 2011. 9월 하순경 "의무대 입실하는 자해행위 방법을 알고 있다. 한번 시도했는데 지금 무릎이 많이 부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여 본인이 "곧 생활관 내의 병장들이 전역을 하니 조금만 참아보라"고 조언을 한 적이 있음. 또 피해자 1이 "자기가 자살하면 이 부대는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다.

다) 피해자 1은 하루 일과가 생활관 내의 선임들에게 핀잔으로 시작하여 핀잔으로 끝난다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고 가해자 8. ○○○ 일병이 2011. 9월경 여러 후임들을 손가락으로 몸을 찌르면서 "관등성명 안 대냐, 군기가 빠졌다"고 하여 스트레스를 준 행위를 목격한바 있다.

라) '전역빵'으로 2011. 7월 중순 경 전역하기 전날 밤 모포 뒤집어씌우고 소등하여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을 정한 다음 시작과 함께 20~30초간 무자비하게 발로 밟고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13) 이병 ○○○(○대대 ○○중대)

가) 여단장에게 보내는 '마음의 편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적이 있었다. 그때 본인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절대 불이익이 없다고 해서 '마음의 편지'에 관련자 4. ○○과장의 잘못을 적었는데, 8일 정도 지난 후 ○○과장이 불러서 본인에게 "자기(○○과장)가 욕설, 얼차려, 인격모독 등을 언제 주었냐"고 따졌다. 본인은 익명성 보장을 믿고 썼는데 ○○과장이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얘기하여 충격을 받았다.

나) ○○과장은 수시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에게 폭언을 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본인이 취사병 동기와 똑같은 잘못을 하여도 ○○과장은 동기에게는 잘한다고 하고 본인에게는 "징계를 주겠다. 개념이 없다. 잘라 버리겠다" 등의 식으로 대하였다. ○○과장은 피해자 사망사건 이후로 갑자기 180도 달라져서 본인과 그전에 좋지 않게 보던 병사들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언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전과 같이 대할까 두려웠다. ○○과장이 그 동안 본인에게 한 폭언 등의 내용은 "내 말이 ○같이 들리냐, ○새끼야, ×새끼야, 미쳤냐, 니가 그러고도 호텔조리학과에 다닐 능력이 되냐" 등의 욕설을 하고 후임들 앞에서 비교하며 모욕을 주고 소리를 지르고 얼차려를 하고 "징계를 주겠다. 대대장님에게 보고 드리겠다"는 말을 하여 본인은 감당이 안 된다.

다) 본인은 같은 2011. 10월 초순경 ○○과장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보니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내가 못나서 욕을 먹는가 보구나, 나 같은 사람은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본인 스스로 안경을 부러뜨려 팔목에 자해를 한 적이 있다. 이 일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으며, 보고도 한 적이 없다.

14) 대위 ○○○(○대대 ○○과장)

2011. 9. 9. 대대로 전입이후 첫 당직근무를 같은 달 30. 실시하였다. 아침 점호간

외박자는 같은 해 10. 1. 08:30 이전까지 지휘통제실에 올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 1과 ○○○ 상병을 대면하였다. "출타 장병 영상 프로그램"을 외박자 2명에게 관람케 한 후, 같은 날 후번 근무자인 3중대장에게 08:35경 인수인계를 실시하였다. 피해자 1에게 특이한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얼굴에 맞은 흔적은 없었다.

마. 병사들의 무기명 설문결과

1) 직권조사 과정에서 이병 대상 설문결과 가해자들의 머리박기, 목 부위 폭행, 엎드려뻗침, 폭언, 욕설, 따귀 등 의 피해사실이 확인되었고, 부대 악습(개선요구 사항)으로는 '전투화 슬리퍼 자기가 정리', '공정한 청소구역 분배', '간부 포함 폭언 금지', '장난으로 툭툭 치는 행위', '사적 심부름', '선임 관물대 정리' 등 요구사항이 있었다.

2) 일병 이상 대상 설문결과 피해자에 대하여 여자 선배 면회시 폭행한 사실이 없고, 술을 강제로 먹인 바도 없으며 피해자 측 진술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 하였으며 간부들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3. 관련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 1의 유족 및 동창 등 참고인들의 진술, 가해자들의 진술서 및 조사결과 보고서·문답서, 지휘감독 관련자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참고인 이병 ○○○ 등 ○○사단 ○대대 병사들의 진술서 및 대면조사보고서·설문지, ○○사단 헌병대가 제출한 ○대대 병사들의 설문지, 진술서, '중요사건보고', ○대대가 제출한 '○중대장 조치사항', 피해자의 복무적합도 검사개인결과표(신병교육대), ○대대 병사 면담관찰기록부 및 개인신상기록부, ○대대 징계보고서, ○○○여단 정밀진단결과보고서, 인사분야 여단지침, 구타·가혹행위 금지 관련 규정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기초사실

1) 피해자 1은 2011. 7. 19. 입대하여 같은 해 9. 5. ○○사단 ○대대로 전입하고 같은 달 7. ○중대로 보직 받았다. 피해자 1은 같은 해 10. 1. 및 같은 달 15. 두차례 외박을 나와 선임들의 구타·가혹행위로 군생활이 하기 싫다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얘기

하였고 부대 근무 중에는 자해를 시도하고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동료병사들에게 하였다.

2) 피해자 1의 부친은 2011. 10. 3. ○중대장에게 지인을 통해 구타·가혹행위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으며, ○중대장은 조사결과 경미한 사건으로 확인하여 회신하고 부친의 피해자 1이 보직변경의 요구에 같은 달 12. 보직변경 하였다.

3) 피해자 1은 2011. 10. 15. 두 번째 외박을 나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20:00경 노끈을 찾다가 없어 군화 끈을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 회식을 하다가 같은 달 16. 04:30 친구들과 헤어져 ○○동 소재 ○○중학교에 같은 날 05:00경 혼자 들어가 같은 날 07:50경 목을 매어 사망하였고 이를 학교 경비원이 발견함에 따라 군헌병대의 수사가 개시되었다.

나. 구타·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1) 피해자 1 관련

피해자 1에 대한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해자	일시 및 장소	내 용	관련 증거
병장 ○○○	9월 중 20:00경 1생활관	근무시간을 착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1에게 침상위에서 엎드려뻗쳐를 약 30분~1시간 시킴. 피해자는 팔이 너무 아프고 힘들다. 병원에 입실하고 싶다고 했으며 자살징후가 보였음	참고인 목격진술 가해자 일부시인
	9월 말경	피해자 1에게 총기시건을 잘못하였다고 엎드려뻗쳐를 1~2분 시킴	가해자 진술 참고인 목격진술
	9월 말경 1생활관	야간 점호 후 ○중대 소속 이병(○○○, ○○○,○○○, ○○○,○○○) 5명을 침상에 머리박기 시킴	참고인 목격진술
	9. 28.	피해자 1이 턱 부위를 9대 정도 가격 당했으며 ○○○ 병장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다고 함.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다고 함	참고인 전문진술
병장 ○○○	9월초	피해자 1이 생활관 내의 빨래(선임자 것까지)와 청소를 못했다는 이유로 ○○○ 병장이 욕설(새끼야 등)을 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함	참고인 목격진술
	9. 28.	피해자 1이 암기사항을 못 외워 지적함	가해자 일부시인
	10. 6. 1생활관	피해자 1이 불침번 근무시 졸았다는 이유로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베개를 던짐	참고인 목격진술 가해자 진술
병장	일자 불상	피해자 1의 자잘한 실수로 인해서 자기의 맞선임인 ○○○ 이병,	참고인

가해자	일시 및 장소	내 용	관련 증거
○○○ · ○○○		○○○ 이병이 ○○○ 및 ○○○ 병장에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들에게 너무 미안하여 피해자가 차라리 이 부대를 나가고 싶다는 말을 여러차례 함	목격진술
일병 ○○○	10. 11. 07:00경 대대통합막사 앞	피해자 1이 불침번 후번 근무자를 깨우지 않고 취침을 하여 익일 07:00경 통합막사 앞에서 "너 때문에 근무를 20분 더 섰다, 뭐라고 하고 싶은데 너도 이미 혼났을 것 같아 참는다."라고 혼을 냄	가해자 진술
성명 불상 선임	9. 20.	피해자 1이 선임들의 빨래를 해주는 것과 얼차려 등이 힘들다고 함	참고인 전문진술
	9. 23.~ 9. 24. 흡연장소	피해자 1이 자살하고 싶고 병원입원을 희망한다고 말함	참고인 전문진술
	9월말경	피해자 1이 체력단련 시간에 참고인에게 "생활관에 들어가기 싫다. 차라리 야근, 근무가 편하다"란 말을 직접 얘기함 피해자 1이 9월말경 참고인에게 "의무대 입실하는 자해행위 방법을 알고 있다. 한번 시도했는데 지금 무릎이 많이 부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여 참고인이 "곧 생활관 내의 병장들이 전역을 하니 조금만 참아보라"고 조언을 한 적이 있음. 또 피해자 1이 "자기가 자살하면 이 부대는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함	참고인 진술
	일자 불상	피해자 1은 하루 일과가 생활관 내의 선임들에게 핀잔으로 시작하여 핀잔으로 끝난다면서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함	참고인 진술
	10월 초 흡연장소	피해자 1이 무릎을 보여주며 3차례에 걸쳐 자해했다고 함. 1차는 외박 때 2~3차는 부대에서 했다고 함. ○○○병장이 피해자의 상태를 물어 무릎자해사실과 자살의도가 있다고 말함	참고인 진술
	10월 초경 분리수거장	피해자 1이 반바지활동복을 입고 있어 우측 다리에 멍이 있는 것이 보여 그 사유를 물어보니, "흡연장에서 테이블 모퉁이에 무릎을 찍었으며,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의가사 전역을 할 수 있다"고 말함. 참고인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피해자는 "군대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으며 십자인대 파열을 하고 싶다"는 말을 계속 함	참고인 진술
	10. 10. 14시경 분리 수거장	피해자 1이 "십자인대를 끊어 달라, 아킬레스건을 끊어 달라, 방법을 가르쳐달라. 의무대입실을 하고 싶다. 생활관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였으며 10. 11.~10.14어간 다리를 가리키며 제발 입실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여 조금만 참자라고 함	참고인 진술

2) 다른 부대원 관련

○○사단 ○○○여단 ○대대 병사들에 대한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 관련 피해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해자	피해자	일시 및 장소	내 용	관련 증거
병장 ○○○	이병 ○○○	9월 중순 22:10경 1생활관	가해자는 피해자가 조국기도문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부분을 손바닥으로 5회 가격함	참고인 목격진술 가해자 진술
	이병 ○○○ 이병 ○○○	9월 말경 1생활관	가해자는 ○○○ 이병의 외박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약 30분간 침상에서 머리박기를 시킴	가해자 일부시인
	이병 ○○○	10. 3. 오전 점호시간 1생활관	가해자는 피해자가 점호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등, 몸을 7대 이상 때리고, 발로 다리를 3~4대 가격함. 귀에 이명현상이 일어나 보고 후 2011.10.7. 외부병원에서 고막손상을 치료함	참고인 목격진술 가해자 일부시인
		9월 중순 20:30경 1생활관	가해자는 피해자가 체력단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를 20회씩 2회 시키고 약 10분간 머리박기를 시킴	참고인 목격진술
		9월 중순경 1생활관	가해자는 피해자가 근무투입이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팔굽혀 펴기를 20회 가량 시킴	참고인 목격진술
상병 ○○○	일병 ○○○	일자미상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일을 잘 못하고 융통성이 없다"고 욕설 및 질타를 자주 함	참고인 목격진술 가해자 일부시인
	이병 ○○○	일자미상	가해자는 피해자가 청소를 소홀히 했다고 물건을 던져 맞추고 뺨을 때림	참고인 목격진술
	상병 ○○○	일자미상	가해자는 피해자가 욕설과 장난이 아닌 폭행(주먹으로 팔뚝 때리기)을 많이 하여 피해자가 많이 힘들어 함	참고인 목격진술
	일병 ○○○ 이병 ○○○ 이병 ○○○	10월초	가해자는 피해자들이 10월초 청소가 잘 안됐다고 생활관 후임에게 욕설을 함	가해자 일부시인
상병 ○○○ 병장 ○○○	상병 ○○○	일자미상 본부중대 2중대 생활관	피해자가 휴가복귀 후 주먹으로 가슴, 어깨 등을 침 하루 한번 이상 시발새끼, 미친년,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함	참고인 목격진술 가해자 진술
병장 ○○○	이병 ○○○	10. 14. 8:20경 ○대대 교회 앞	이병 이재일이 불침번 근무 중 취침을 하였다는 이유로 너 꺼져! 그렇게 졸리면 생활관 가서 자."라고 말을 했는데도 대답이 없어 뺨을 2회 구타함	가해자 진술
상병 ○○○	이병 ○○○	10. 1. 오전 생활관	이병 ○○○에게 평상 시 말끝을 흐리거나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야. 이 시발놈아, 시발새끼, 미쳤냐"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를 5초 동안 박으라고	가해자 진술

가해자	피해자	일시 및 장소	내 용	관련 증거
			강요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다시 박으라고 하였는데, 계속 안 박아 주먹으로 머리 옆 부분을 3회 구타하고, 거듭 머리박기를 강요함	
		일자 미상	암기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머리박기를 30분 정도 시킴	참고인 진술
일병 ○○○	이병 ○○○	8월 말경 대대 행정반	이병 ○○○이 선임을 보고 말을 하지 못하는 등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 쳐다 볼 것을 강요하였고 9월 초경 3-4일 동안 위 ○○○의 이름을 3-4번씩 7-8회에 걸쳐 계속 부르면서 관등성명을 말하도록 강요함	가해자 진술
병장 ○○○	일병 ○○○	8월 중순 본부 생활관	피해자가 혼자 밥을 먹고 씻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2회를 때려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힘	참고인 목격진술
일병 ○○○	후임 병사들	9월경	여러 후임들에게 손가락으로 몸을 찌르면서 “관등성명 안대냐, 군기가 빠졌다”고 하여 스트레스를 줌	참고인 목격진술 가해자 진술
○○ 과장	취사 병들	8월경	○○과장이 욕설을 하고 얼차려를 시켜 마음의 편지에 이를 기재하였는데 ○○과장이 취사병들을 불러서 자기가 언제 그랬냐며 누가 썼는지 말하라고 추궁함 ○○과장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에게 폭언을 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함. “내말이 ×같이 들리냐, ×새끼야, ○새끼야, 미쳤냐”등의 욕설을 하고 엎드려뻗쳐를 1시간 시키고 징계를 주겠다고 협박함. 이러한 가혹행위에 자괴감이 생겨 안경을 부러뜨려 자해한 적이 있음	참고인 목격진술
0 중대장	피해자 미상	일자미상	욕설과 물건을 던지는 행위	참고인 목격진술
○중대 소속 대원들	전역자 ○○○	8월경	전역자인 백○○ 병장에게 모포를 씌우고 구타함	참고인 목격진술
본부 중대 소속 대원들	성명 불상 전역자	7월 중순경 본부중대 생활실	저녁 점호 후 전역자에게 모포를 뒤집어 씌우고 불을 끄고 20~30초간 무자비하게 발로 밟고 때렸음	참고인 목격진술
	성명 불상 전역자	8월경 소등 후, 본부 생활실	점호 끝나고, ‘전역빵’이라하여, 본부중대 병사들이 전역자에게 모포를 덮어 씌우고 1분 ~ 30초 동안 주먹과 발로 구타함	참고인 목격진술
	병장 ○○○	9. 28. 본부중대 생활실	본부중대 병사들이 생활실에서 병장 ○○○에게 ‘전역빵’을 실시	대대장 진술
성명 불상 전역자	일병 ○○○	4월~ 6월경	폭언을 하고, 머리, 팔 등을 폭행함	참고인 목격진술

3) 대대장이 제출한 2011. 8. 25.자 '대대장 특별 정신교육' 자료에 의하면, ○○사단 레이더 기지 선임병에 의한 폭행·가혹행위가 확인된 것만 75건이며, ○대대 구타사고 현황과 관련하여, 최초 우발적 구타로 인지되었으나 확인결과 상습적 폭행이었음이 확인된다.

다. 부대 관리 등 관련

1) 신병관리 관련

가) 피해자 1에 대한 신상면담자료에 의하면, 입대 전 피해자 1이 부모와의 불화, 가출사실, 해리성기억상실증 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대대장에게 보호관심사병 'B'급으로 보고되었고, 대대장이 2011. 9. 6.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피해자 1이 전공을 살려 상담병으로 활동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여건을 고려한 후 시행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나) 대대장 이하 간부들은 피해자 1이 신병훈련소에서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2011. 10. 12. 대대병력결산 시 ○중대장은 피해자 1에 대한 부모의 자살충동, 구타·가혹행위 관련 제보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 1이 선임병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힘들어 하고, ○○과 2·4종 업무로 보직변경를 원한다는 취지의 보고만을 하였고, 이에 대해 대대장이 개인면담을 실시하여 보직변경을 승인한 사실이 있다.

다) 대대장은 피해자 1을 보호관심사병 'B'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였으나, 2주 후 잘 적응하는 것 같다고 판단하고, 2011. 9. 22. 'C'급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이번 사망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소속 ○중대장 등 간부, 분대장 등 병사들로부터 피해자 1에 대한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 자해 및 자살 발언 등의 내용을 보고 받지 못하였다.

라) 또한 피해자 1이 여러 차례 자해를 하고 이를 동료병사들에게 말하여 가해자 1도 이를 인지하여 2011. 10월 초순경 ○중대장에게 보고하였다고 하나 ○중대장은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

마) ○중대장은 2011. 10. 3. 군 전역장교 조○○(대위 전역, 피해자 1의 부친의 부탁을 받고 전화)이 전화를 걸어와 "중대 내 구타사실이 있으니 조치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1과 ○중대 이병 4명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 1과 부친이 비밀유지를 원하고, 동료 이병들이 구타·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대대장에게 보고 하지 않았으며 관련 민원사항과 처리내역 등을 별도의 관리하지

않았다.

바) 피해자 1이 2011. 10. 12. 본부중대로 편입되었으나 본부중대장은 피해자 1에 대한 신상면담을 시행하지 않았다.

사) 국방부는 2011. 7. 22. 지시 제11-4010호 '병영생활 행동강령'으로 병 상호간의 명령 및 사적지시 금지, 가혹행위 등을 금지한바 있다.

아) ○○사단의 보호관심병사 선정 및 관리(등급 분류 기준)이 다음과 같다.

구분	A급(특별관리대상)	B급(중점관리대상)	C급(기본 관리대상)
선정기준	• 자살우려자 (자살시도 유경험자) • 진단도구 검사결과 • 특별관리 대상자 • 동성애자 • 사고유발 고위험자	• 결손가정, 신체결함, • 경제적 빈곤자 • 성군기 위반우려자 • 성격장애자 • 구타, 가혹행위 우려자 • 사고유발 위험자	• 입대 100일 미만자 • 허약체질자 • 보호가 필요한 병사 • 특별관심대상에서 등급조정자
면담주기	주 1회 이상	월 2회 이상	월 1회 이상
관리책임	소대장 ~ 대대장 부소대장 ~ 주임원사	중소대장 부소대장, 행정보급관	소대장, 부소대장

2) 마음의 편지 등 소원수리 제도 관련

가) ○○○여단은 자체 지침으로 대대단위에서는 주간단위 병력결산을 시행할 것과 간부의 지휘 하에 병사들을 계급별로 분리하여 설문을 작성하고 이를 밀봉하여 제출받아 검토하도록 하고 '안전활동 추진 평가회의'를 대대는 월 1회, 여단은 분기 1회 실시를 지침으로 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나) 위원회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결과, 상당수 병사들이 현행 마음의 편지 등 소원수리제도가 불만족스럽고, 익명성의 보장이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3) 병력결산, 분대장 제도 관련

가) ○중대장은 중대 병력결산 시 분대장에게 소속 병사의 피해사례를 보고 받은 사실이 없고 가해자 1은 ○중대장에게 피해자 1 등 후임 병사들에 대한 얼차려시 사전에 승인 받거나 사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나) 병분대장이 일일결산을 하여 병사들이 구타·가혹행위에 대해 보고하고 싶어도 선임병들이 주로 가해자이고 이들이 분대장과 동기관계이거나 친분이 있는 경우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다) 얼차려는「육군규정 120」에 의해 분대장급 이상이 승인권자의 감독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사고부대의 경우 병분대장이 승인권자의 감독없이 생활관등에서 임의로 폭행 및 폭언, 머리박기, 엎드려뻗쳐, 팔굽혀펴기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육규 120 제30조 얼차려
3. 얼차려 승인 및 집행 가. 얼차려는 소대장급 이상 지휘자(관), 휴무일에는 당직사관이 승인 할 수 있다. 나. 얼차려의 집행은 분대장급이상이 승인권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며, 공개된 장소(연병장, 복도 등)에서 실시해야 한다.

4) 병영악습 관련

가) 대대장은 간부들이 병사들에게 폭언 등 욕설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장 대위 ○○○에게 2011. 7월 경고장을 발부하였고, 또한 전역한 전 ○○과장 대위 ○○○, 예비군지휘관인 ○○○동대장 5급 ○○○에게 같은 이유로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나) '전역빵'이 2011. 7월, 8월, 9월에 있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대대장은 전역빵이 같은 해 9. 28. 병장 ○○○에게 실시한 것만 인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부대는 야간에는 간부들이 모두 퇴근하고 당직사령 1명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관계로 중대원들이 21:00경 일석점호를 하고, 22:00경 소등하여 취침을 하여야 하나, 생활관에서 아무런 보고 및 승인없이 일명 '전역빵'을 하거나 병(兵) 간 회식을 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및 조치사항

가. 구타·가혹행위 및 지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하여

1) 구타·가혹행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구타·가혹행위 등에 대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 1의 폭행 피해와 철모에 소주를 담아 강제취식 하였다는 부분, 면회 온 여성들에게 성희롱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병사의 피해자 1로부터 들었다는 전언진술 외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나 피해자 1이 당했다고 주장하

는 폭언, 부당한 얼차려,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다수의 목격자들과 가해자들의 진술이 있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가해자 1과 가해자 2는 피해자 1 및 다른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규정 외 얼차려, 폭행 및 폭언 등을 일삼았고, 특히 가해자 1은 부대원들의 고충과 특이사항들을 파악하고 후임병들의 부대적응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분대장임에도 불구하고 부대 내 악습에 대해 개선하지 않고 규정 외 얼차려를 집행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고, 또한 피해자 1의 자해와 자살가능성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중대장에게 늦게 보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가해자 1, 2의 구타·가혹행위가 피해자 1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구타·가혹행위를 한 행위는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대통령령 제21750호)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지휘책임 관련자들의 이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그리고 부실한 신상관리 및 부대관리 행위는 위 같은 「군인복무규율」 제2항의 책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2) 지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하여

가) ○중대장은 피해자 1에 대한 구타·가혹행위, 자살충동에 대해 2011. 10. 3. 인지하고 면담 등을 실시하여 파악하였으나 피해자 1과 부친이 알리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이유로 별다른 조치 및 문서기재, 상부 보고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1의 자해 및 자살의지에 대해 가해자 1이 보고하였다고 진술함에도 전혀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중대의 선임병에 의한 구타·가혹행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후임병들이 선임병의 청소와 빨래까지 도맡아 하는 등의 악습이 위원회의 조사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는 점, 또한 이러한 행위들이 분대장에 의해 조장되고 비호됨에도 식별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중대장으로서의 지휘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대대장은 2011. 6. 3. 부임 후 시설개선, 임무분담제, 신상필벌을 원칙으로 욕설 간부 경고조치, 징계조치 30여건, 포상 30여건을 실시하여 부대 내 악습폐지와 구타·가혹행위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나 여전히 병영생활기저에는 악습과 구타·가혹행위가 잔존했으며 특히 작성된 '마음의 편지'의 내용이 보고되지도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구타·가혹행위 발생 보고가 보고계통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간부관리와 병 관리의 부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은 지휘관들의 행위는 「군인복무규율」 제2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휘관 및 상관의 지도·감독 및 부하의 고충 파악·해결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이는 바, ○○사단장에게 가해자 및 지휘·감독책임자, 추가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결과에 따라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사법처리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사건 발생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관련

1) 사건 발생 원인 분석

첫째, 병영 환경과 문화적 측면의 요인으로, 후방부대인 사고부대의 경우 하사관 등의 초급간부가 적어 병분대장에 의한 병사관리가 중심적으로 이뤄지나 분대장에 대한 교육 등의 관리가 미흡하고 분대장의 얼차려의 집행이 규정과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적 제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선임병은 후임병을 복종에 대상이자 지시대상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관행이 뿌리깊이 남아있다.

둘째, 선임병 및 간부가 병사들에게 일상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고, 선임병들이 청소와 빨래 등 사적인 심부름을 후임병들에게 강요하고, 일명 '전역빵', 암기강요, 사적 통제 등의 악습과 구타·가혹행위가 만연함에도, 이를 간부들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방임하는 등 서로 존중하고, 군 운영 전반이 법치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하다.

셋째, 피해사실에 대한 비밀보장 및 신병보호 등 신뢰할 수 있는 설문, '마음의 편지' 등의 권리구제 체계가 미흡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넷째, 이 사건 피해자 1은 신병교육대 1차 신인성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고 여단에서 B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사고부대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정확한 진단없이 C급으로 상향조정하여 복무부적응자에 대한 식별 노력과 관리가 부실하였던 점 등이 이 사건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판단된다.

2)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위 사건과 같이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수차례에 걸쳐 광범위하고, 반복적이며, 관행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그간 부대 자체적인 병영생활 혁신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식별하지 못하고 예방하지 못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병의 인권보장 등 병영문화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장병상호간, 병상호간 그릇된 인식개선을 위해, 모든 장병은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명예를 온전히 보장 받을 때라야 비로소 군 전력보존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현재의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인권교육을 넘어서서, 자대배치 시, 또한 군 지휘관 임명 시 등 인권의식을 향상하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구타·가혹행위 및 사고예방을 위한 병력결산 및 소원수리제도와 관련하여, ○대대의 상급부대인 ○○○여단은 자체 지침으로 대대단위에서는 주간단위 병력결산을 시행할 것과 시행시 간부의 지휘 하에 병사들을 계급별로 분리하여 설문을 작성하고 이를 밀봉하여 제출받아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나 ○대대는 '주간결산', 및 '일일결산'시 병분대장이 이를 관리하고 계급별로 분리하지 않아 병사들의 자유로운 제언을 위축시키고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사단 등 각 부대에서는 병영부조리 색출을 위해 마음의 편지, 상향식 일일결산, 심층면담, 설문작성 등의 방법을 실행하고 있으나 이의 집행시 병사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자신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표현 할 수 없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바, 이는 일선 부대장의 재량사항으로 위임되어 있고 해당 지침이 명확하지 않는 등 관리의 부실이 있어 보이므로 세부사항을 명문화 하는 등의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병사들의 생활관 생활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병분대장은 「육군규정 120」 및 「병영생활 행동강령」(2011. 7. 22. 발령)에 의해 얼차려의 집행 권한과 명령, 지시권을 부여받은 지휘자의 신분이나 사고부대에서는 병분대장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얼차려를 집행하며 폭행하는 등 사적제제를 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전의 유사한 총기사망사건의 경우에도 병분대장이 구타·가혹행위를 가한 점 등, 병분대장의 권한 남용 및 위법한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병분대장의 선발기준 및 교육을 강화하고 병분대장에게 부여된 얼차려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 원 장주영 위 원 윤남근

20 11직권24, 11진정6530(병합) [군대 내 성추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12. 6. 20. 결정

▌결정사항 ▌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 제00사단 000레이더기지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가혹행위 사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과 육군 제00사단내 격오지 부대 등에 대하여 인권침해행위의 예방적 차원의 부대진단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가해자들은 구타 및 가혹행위 외에도 자신의 신분적 우월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내밀한 신체 부위를 자극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는 사회상규 및 일반인의 입장에서 받아들기 힘든 인격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한 강제추행에 해당되며, 「군인복무규율」 과 「군형법」 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안전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2] 지휘책임자들은 병영 내에서 구타·폭언 등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함에도, 사건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관련된 처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에서는 성(性)군기 위반에 대하여 심의하지 않았고, 가해자 및 지휘감독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진술서 등의 자료를 보존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지휘·감독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헌법」 제12조에서 보호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

「군인사법」 제47조의2(복무규율), 「군형법」 제92조의2(강제추행), 「성추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군인복무규율」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36조(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 근절)·제248조(정의)

▌주 문 ▌

육군참모총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1. 육군 제00사단 000레이더기지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가혹행위 사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육군 제00사단내 격오지 부대 등에 대하여 인권침해행위의 예방적 차원의 부대진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주 문 ▐

I. 직권조사의 배경

가. 육군 00사단 00연대 0대대 000레이더기지(이하 '000레이더기지'라고 한다)에 근무하였던 병사(진정인)가 제대 후, 2010. 3~4월경 위 부대 부기지장 및 선임병사들이 자신을 비롯한 동료병사 6명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성추행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접수 후, 진정인 대면조사, 진정인의 동료 피해자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 성추행 등 피해내용이 신빙성이 있고 그 내용이 중하며, 부대 자체조사에서 단순한 가혹행위로 축소·은폐 가능성이 있고, 부대 내에선 관련자에 대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 따라서, 본 진정사건은 상급부대의 지휘감독이 잘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격오지 부대에서 발생하였고, 성군기 위반 및 가혹행위 등 병영악습이 있을 개연성이 발견되고, 지휘관들의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되어, 2011. 12. 21.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에 제4호 규정에 의거 조사계속 결정을 하고, 진정이 제기된 부분 이외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영역은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II. 직권조사 결과 및 판단

1. 사건개요

가. 피해자

1) 피해자 1 : 유○○(당시 이병, 00사단 00연대 000레이더기지)
2) 피해자 2 : 박○○(당시 이병, 위 같은 소속)
3) 피해자 3 : 안○○(당시 이병, 위 같은 소속)

4) 피해자 4 : 이○○(당시 이병, 위 같은 소속)
5) 피해자 5 : 구○○(당시 이병, 위 같은 소속)
6) 피해자 6 : 전○○(당시 이병, 위 같은 소속)

나. 가해자

1) 가해자 1 : 김○○(당시 하사, 제00사단 00연대 000기지 부기지장)
2) 가해자 2 : 이○○(당시 병장, 위 같은 소속, 2010. 8. 12.부 전역)
3) 가해자 3 : 김○○(당시 병장, 위 같은 소속, 2010. 8. 12.부 전역)

다. 지휘·감독 책임 관련자(진정 당시 2010. 3~ 4월경 현재)

1) 관련자 1 : 중사 최○○(00사단 00연대 0대대 000레이더기지장)
2) 관련자 2 : 중령 고○○(00사단 00연대 0대대 대대장)
3) 관련자 3 : 대령 정○○(00사단 00연대 연대장)
4) 관련자 4 : 소령 김○○(00사단 00연대 인사과장)
5) 관련자 5 : 원사 정○○(00사단 헌병파견대장, 2011.8.31부 전역)
6) 관련자 6 : 중위 최○○(00사단 00연대 인사장교)
7) 관련자 7 : 중사 황○○(00사단 00연대 인사과 인사담당)
8) 관련자 8 : 소령 김○○(00사단 법무참모)

2. 당사자 및 관련자 등의 주장요지

가. 피해자들의 진술요지

1) 피해자 1(진정인, 이병 유○○)

피해자는 2010. 2~4월까지 000레이더기지에서 근무 중 상황실에서 가해자들이 상황실의 청소기(대형) 흡입구 앞 장치를 빼고 호스만 가지고 누우라고 하여 1명은 피해자 1의 배위에 올라가 몸을 제압하고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청소기 전원을 올려서 호스 안으로 성기를 집어넣었다. 짧게는 1분 정도 길게는 5분 정도 하였는데 미친 듯이 저항을 하면 30초 정도 하다가 "참을성이 그것 밖에 없느냐, 군생활 그렇게 할 거냐"면서 구타를 하였다. 구타는 일상화되었고 뺨 때리는 것은 하루에 100여대를 맞은 적도 있다. 어떤 때는 피해자에게 다른 사병 배위로 올라가라고 하고, 후임이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간 적도 있었다.

가해자들이 취침하기 전 피해자들에게 속칭 '알라자세'(엎드려 상태에서 무릎과 팔꿈치를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벌리게 한 후)를 취하게 한 후 뒤를 지나가면서 낭심을 강하게 손으로 가격하는 행위를 10여회 한 적도 있다. 가해자들은 수시로 피해자와 피해자 2와 강제로 싸우게 하고, 콧구멍 사이에 출입증 쇠집게를 꽂아 눈물을 흘리게 하고, 뺨을 수백여회 때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2010. 3월 중순경 가해자 1, 2가 기지 안에서 기르던 개집 근처로 끌고 가 바지를 벗기고 다리를 벌리게 하여 큰 스카치테이프를 이용하여 과자(ㅇㅇ샌드)를 사타구니 근처에 붙이고, 개가 하의 속옷 위를 10여 분 간 핥아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당시 가해자들이 모두 있었으며, 가해자 1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당시 현장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항의하자 가해자 2가 뺨을 수십 차례 때렸다.

가해자 2와 견시초소 근무를 한 적이 많았는데, 가해자 2가 인체의 신비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아 발기를 하게하고 사정하기 직전까지 손으로 애무를 하였으며, 이와 같은 성추행을 2010. 3 ~ 4월 사이에 가해자2로부터 3회 정도 당하였다.

부대 생활이 치욕스럽고 견디기 어려워서 나쁜 생각을 많이 하였다. 자살할 용기가 없어서 자해라도 해서 다른 부대로 가고 싶은 상황에서, 해외파병(아프가니스탄) 지원자 모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당시 부대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원신청을 하였다. 이후 2010. 4월말에 해외파병을 위한 준비부대인 ㅇㅇ국제평화지원단에서 파견 근무 중, 파병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2010. 8월 초에 복귀하여 2010. 11월까지 근무하다 다시 해외파병이 결정되어, 2011. 1. 1. ~2011. 6월말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해외파병근무를 하였고, 해외 파병을 마친 2011. 7월부터 소속부대에 복귀하여 근무를 하다가 2011. 9. 21.에 병장으로 전역을 하였다.

2010. 8월초 해외파병 취소로 원부대로 복귀하여 근무하는 중, 피해자 2가 2010. 8. 17. 대대장에게 '마음의 편지'를 써서 가해자들의 행위를 신고하게 되었고, 대대장이 연대에 보고하여 다음 날 연대에서 사단헌병 파견대장이 조사를 하였으며, 이후 8. 23. 연대 인사과장이 나와서 재조사를 하였다. 당시 조사한 사단헌병 파견대장 및 연대 인사과장은 가해자 1이 더 이상 군대생활을 못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이후에 가해자 1이 연대본부로 가서 군 생활을 계속하였다. 조사를 받을 때도 피해자가 하나하나 재연을 해가면서 조사에 응했는데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대에 있을 때 더 이상 문제 제기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여 전역 후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가해자들에게 당한 당시 기억을 잊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으며, 그 때의 후유증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중에 성기를 보호하기 위한 제스처를 취하고, 악몽에 시달리며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

2) 피해자 2(이병 박ㅇㅇ)

2010. 3~4월경 가해자(1, 2, 3)들이 피해자와 피해자 1(진정인)을 상황실로 불러서 1명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나머지 1명은 잡고 있으라고 시키며 교대로 가혹행위를 하였다. 가해자들이 청소기를 작동시켜 성기가 흡입되도록 하였으며 코, 입, 항문도 흡입되도록 하였다. 한 번 하면 10~20분 정도였으며 고통스럽기도 하였지만 수치심이 컸다. 당시 모두 10회 정도 당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팬티를 벗긴 적도 있었다. 이는 이등병이 다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부대원이 다 아는 내용이다.

2010. 3~4월경에 가해자 1, 2가 피해자 1과 본인을 상황실로 불러서 사무용 의자에 앉혀 청테이프로 팔, 다리, 허리를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야한 생각을 하라, 고추를 흥분시켜 발기시켜라"라고 교대로 성추행을 한 적이 있었다. 사정은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 됐다"고 하여 그만 하였으며 1~2회 정도 한 것 같다.

가해자(1, 2, 3)들이 2010. 3월경 피해자 1의 바지를 벗겨서 성기 쪽 및 엉덩이 쪽에 ㅇㅇ샌드 과자를 테이프로 하나씩 붙여서 개 앞에서 춤추게 하고 엎드리게 하여, 당시 부대에 있던 개에게 핥아 먹도록 유도하였으며, 그 장면을 가해자 1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것을 목격하였다.

가해자 2와 같이 근무를 할 때 심심하면 "인체의 신비"를 보여주겠다면서 성기를 잡고 발기시켜 사정시키려고 한 적이 자주 있었으며, 2010. 3~5월경 생활관에서 가해자(1, 2, 3)들이 후임병들에게 일명 '알라자세'인 무릎을 대고 엎드리게 하고 시선은 하늘을 보게 하여 뒤의 엉덩이 쪽에서 성기를 손등으로 치는 행위를 하였다. 점호시간대에도 하고 낮에도 하였으며 1주일에 2~3회 정도 하였으며, 피해자 1과 서로 어색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억지로 레슬링, 프라이드 등의 싸움을 시키기도 하였다.

주로 가해자 2가 방문출입증 쇠집게를 콧속에 넣어 집고 쇠집게를 흔들고 비비는 행위를 많이 하였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2달 정도 이어졌다. 나중에 본인의 코가 헐고 상처가 생겨 고름과 진물이 나왔으며, 진공청소기로 본인의 코를 빨았을 때 쌍코피

가 나온 이후에는 하지 않았다.

2010. 8. 17.경 대대장에게 '마음의 편지'를 보냈다. 다음 날 사단 헌병 파견대장이 부대에 와서 진술서를 받았다. 당시 인터넷이나 부모에게 말하면 걱정하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또 당시 연대급 처벌을 원하는지 사단급 처벌을 원하는지 문의하여 사단급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으나 연대급 처벌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다. 당시 가해자 1은 잘못을 했는데도 더 좋은 연대로 전출 가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당시 가해자 2, 3은 전역을 하여 아무런 벌을 받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다.

3) 피해자 3(이병 안ㅇㅇ)

2010. 2~5월경 가해자들(1, 2, 3)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 1의 바지를 벗기고 과자를 붙여 개에게 먹이려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당시 박ㅇㅇ 상병에게 들은 적이 있다.

가해자들이 상황실에서 청소기 전원을 켜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 귀, 코, 성기를 흡입시켰다. 피해자는 총 5차례 정도 당했는데 한번 하면 한 10여분 정도였다. 또한 가해자 2는 인체의 신비를 보여주겠다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발기시켰다.

가해자 3은 자신의 질문에 답변을 못하면 뒤통수를 수십 대 때렸으며, 평소 가해자들이 욕을 하거나 때리는 것은 기본이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였다. 또한 속칭 '알라자세'를 취하게 하고 주먹 스냅으로 성기를 때렸고, 피해자 1과 2에게 격투기 같은 억지싸움을 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성추행 및 가혹행위가 과거부터 있었다기보다 가해자 1이 2009. 12. 16. 온 후 2010. 3~4 월경에 주로 일어났고, 헌병 파견대장이 성추행 관련 사실을 조사할 때 피해자 1이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으나, 가해자 1만 연대로 전출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4) 피해자 4(이병 이ㅇㅇ)

2010. 2~5월경 가해자 1 또는 가해자 3이 근무시간만 되면 상황실에서 무릎을 꿇으라 하고 안경을 벗긴 후 귀와 코, 뺨을 자주 때렸다. 1주일에 10회 정도 생활관에서 이등병들에게 알라신을 숭배하라면서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바닥에 댄 후에 고개를 숙이면 뒤에서 주먹으로 성기를 때렸다.

ㅇㅇㅇㅇ 수여식이라는 가혹행위가 있는데 보급품 ㅇㅇㅇㅇ(쵸코바)가 오면 1상자씩

받아서 벽을 보고 있으면 뒤에서 가해자 1과 가해자 3이 양쪽 허벅지를 세게 강타하고, 가해자 2는 표정이 좋지 않은 동료에게 출입증 집게로 코를 집었으며, 마지막엔 ○○○○를 받은 상태에서 활짝 웃으라고 하고 사진을 찍었다.

가해자 1, 2는 2010. 2~5월경 별다른 이유 없이 상황실에서 청소기로 진술인의 입과 코를 2~3회 정도 빨아들였으나, 피해자 1의 경우에는 2010. 2~3월경 가해자 2가 상황실에서 피해자 1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상태에서 청소기로 눈, 코, 귀, 머리, 성기를 빨아들이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또한 가해자들은 피해자 1의 바지를 벗긴 상태에서 엉덩이에 과자를 붙여서 기지 후문에 있는 개한테 다가가 먹을 수 있게 보낸 적이 있고, 빨래집게로 코를 집고, 생활관에서 레슬링을 하자고 자주 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해자 2가 2010. 3월경 상황실에서 청소기로 피해자 2의 코를 빨아들이다가 쌍코피가 났으며, 피가 멈추자 피해자 2의 팬티를 벗겨 성기를 빨아들인 것을 목격하였다. 피해자 3, 5, 6의 경우에는 청소기로 피해를 당한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지만 당시 이등병들이 모여 있을 때 “청소기로 당했다”고 서로 말한 적이 있다.

피해자 2의 마음의 편지 제출 이후, 사단헌병 파견대장 및 연대 인사과장이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피해사례를 제출하였다. 당시 사단 헌병파견대장이 모두 눈을 감으라고 하고 “처벌강도는 어느 정도로 해주었으면 하는가”를 물어보았다. 그리고 사단 헌병파견대장이 “사단급을 원한다에 손, 연대급을 원한다에 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것 같다. 피해자는 연대급 처벌에 손을 들었지만, 당시 피해자 1은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가해자 2, 3이 군대를 전역하였지만 처벌하고 싶다고 말한 것 같으며, 당시 6명 모두가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5) 피해자 5(이병 구○○)

진정내용이 아시다시피 성추행 관련 내용이다. 당시 부대 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너무 힘들며 기억조차 하기 싫어 관련 내용으로 답변하고 싶지 않다.

나. 가해자들의 진술요지

1) 가해자 1(하사 김○○, 000레이더기지 부기지장)

2009. 12. 16.~ 2010. 8. 17.까지 000레이더 부기지장으로 근무하였다. 위 근무 당시 2010. 2월경 피해자 3에게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로우킥, 옆구리 때리기, 뺨때리기 등 장난식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다. 2010. 2~4월경 피해자 3등 5명을 대상으로 ○○○

○(쵸코바) 수여식을 하면서 허벅지를 발로 차고, 빨래집게를 이용 코를 잡은 후 억지로 웃게 하여 사진촬영을 하는 등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같은 해 3~4월경 피해자 3 등 3명을 대상으로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몸을 훑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위 같은 시기 심심하다며 피해자 1, 2에게 상호간에 강제로 몸싸움을 시키고 동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다. 같은 해 3~5월경에는 피해자 6 등 3명을 엎드리게 한 채 손으로 낭심을 친 적이 있으며, 위 같은 시기 피해자 4등 3명을 대상으로 손등 때리기, 귀와 뒤통수 때리기, 무릎을 꿇게 하고 귀·코·입·얼굴 등을 때리기 등 가혹행위를 한 적이 있었다.

진공청소기로 피해자 1, 2, 3, 4에게 몸을 훑는 가혹행위를 평균 2회 정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들의 바지나 속옷을 벗긴 적이 없었고, 가해자 2, 3의 경우에는 바지를 벗기고 한 적은 있지만 팬티를 벗기고 한 적은 없다. 당시 피해자들이 저항을 하였지만 가해자 2, 3에게 잡으라고 한 적도 있고 피해자들이 청소기를 던지면 주워오라고 하였다. 가해자 2가 피해자 1에게 청소기로 몸을 훑은 행위를 본 적이 있는 데, 당시 가해자 2의 지시로 견시초소 근무자였던 피해자 2가 내려와서 피해자 1의 손을 붙잡기도 하고 뒤에서 안기도 하여 피해자 1이 피해자 2에게 "너 미친 것 아니냐"고 하니까 피해자 2가 행동을 멈추자, 가해자 2가 피해자 1을 잡고 바지를 벗겨 진공청소기로 팬티 위를 흡입하였다.

2010. 3월경 상황실에서 가해자 3, 피해자 1이 근무를 하다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진술인이 가해자 3을 상황실에 대기하게 하고 피해자 1을 개집 앞으로 데려 갔다. 피해자 1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순순히 벗지 않아 직접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입은 상태에서 허벅지 뒷부분, 팬티 아래에 ○○샌드 과자를 놓고 그 위에 넓은 스카치테이프를 붙여서 개에게 접근을 해서 개에게 먹으라고 한 적이 있다. 당시 성 군기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받았지만 당시 이렇게 하는 것이 성군기 위반행위인지 몰랐다.

진술인은 부기지장으로서 피해자 1과 3번 정도 상담을 했는데, 피해자 1이 아프가니스탄에 파견가기 전인 2010. 4월말에 진공청소기로 괴롭혀서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여,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으며 그 이후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가해자 2, 3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다.

당시 위와 같은 사항은 기지장이 부대원 면담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을지 모르나 깊이 알지는 못했던 것 같다. 기지장이 청소기로 몸 훑은 얘기를 진술인에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폭행이나 구타를 한 적이 있었냐고 물어 그런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후 2010.

5월 중순경에 부대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였다.

피해자 2가 '마음의 편지'를 보낸 후 2010. 8. 18. 대대장실에서 헌병파견대장에게 1시간 40분 정도 조사를 받았으며 진술조서도 작성한 바 있다.

다. 지휘·감독 관련자들의 진술요지

1) 관련자 1(중사 최ㅇㅇ, 000레이더 기지장)

1999. 2. ~ 2010. 6월 초까지 000기지장으로 근무하였다. 2010. 3 ~5월중에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인 후임병 6명에게 성추행,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보직변경되어 2010. 8월경 대대근무 중, 000레이더기지에서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정도로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다.

기지장 근무 중, 2010. 3월경 가해자 1이 병사들을 뒤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껴안는 등 과격하게 느껴져서 구두로 병사들과 장난하지 말라고 경고를 1회 준 적이 있고, 5월경에는 현 대대장 부임이후 사고예방척결대회, 보고의무서약서 작성 행사를 하고, 병력들에게 면담과정에서 구타 가혹행위 및 애로사항을 물어보았으나 별다른 애로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2010. 3~5월경까지 사건발생 당시 대대 단위 주간단위로 병력결산을 하고, 일일결산시 병 분대장인 가해자 2로부터 아무런 보고가 없었고, 또한 부지기장인 가해자 1, TOD 반장 박ㅇㅇ 중사와 일일결산시에도 아무런 관련 보고가 없었다. 당시 기지장 주관으로 월 1회 마음의 편지와 설문지를 받았고, 대대장, 주임원사, 인사과장 등이 수시로 통상 한 달에 2~4회 순찰하면서 설문을 받기도 하였고, 보호관심병사의 경우에는 기지장이 주 1회 개별적으로 정밀면담을 하고, 일반병사의 경우에는 2주 1회 면담을 하였다.

2010. 8월경 사건발생 이후, 대대장이 기지장 근무 중에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왜 인지를 못하였는지를 물어보아 근무 중, 일일 및 주간결산, 그리고 개별면담을 하였으나 애로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대답하였고, 이로 인하여 별다른 징계나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없다.

기지장으로 근무 중, 병사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안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병사들의 마음을 얻는데 부족했다고 생각된다.

2) 관련자 2(중령 고ㅇㅇ, 00사단 00연대 0대대장)

2010. 3. 24.부터 현재까지 0대대장으로 근무 중이다. 2010. 8. 17. 야간순찰근무 중, 익일 02:00경 000레이더기지 '마음의 편지함'에 노트 1쪽(B4크기)을 찢어 연필로 기재된 마음의 편지의 서두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대장님,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대대장님을 믿기 때문입니다"라고 적혀 있었고, 본문에는 가해자 1의 가혹행위가 심해서 글을 쓴다, 힘들어 동료 병사가 해외파병 지원을 하여 기지를 벗어나려 한다, 청소기로 몸을 훑어 수치심을 느꼈다, 빨래집게로 코를 집어 고통을 준다, 장난을 빙자하여 고통을 주어 힘들고 괴로워하는 전우들이 있다, 그런데 계속 장난을 한다, 문신을 가지고 놀린다, 이런 간부와 같이 근무하기 싫다고 하고, 말미에는 "조치를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당시 기재된 피해내용으로 볼 때, 간부가 포함되어 있고, 기지전체 인원이 해당되어 대대 자체적으로 진단하기에는 신뢰성,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간부에 대한 징계권한은 제한되어 연대에서 조사 및 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핸드폰으로 연대장에게 보고하여, 연대조치를 건의하여 연대장도 이를 받아들였다. 위 마음의 편지는 사단헌병 파견대장 원사 정ㅇㅇ에게 열람시켜 주고, 관련사건 조사가 끝난 뒤 존안문서가 아니어서 2010년 말 또는 2011년 초경 세절 처리한 것 같고, 현재 원본은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대에서는 000기지 대원을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하거나 확인한 사실은 없고, 주기적인 진단활동을 하였을 뿐이고, 주기적인 진단활동에서도 더 이상 언급이 없었고, 병사들의 불만사항도 없었다. 당시 가해자 1의 보직이 변경되었고, 가해병사 2명도 전역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당시 징계처리 결과에 가혹행위와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말이 있어 성군기 위반 사건으로 인지하였는데, 심각한 사항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연대에서 조사하고 징계 처리결과를 통보받았고, 징계서류에 첨부된 가해자 1의 진술서만을 보았고, 피해 병사들의 진술서 및 헌병대 조사기록은 보지 못하였다.

이 사건 이후, 인근 000기지에서 선후임병 간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였다는 것이 부대진단 시에 인지되어 가해자를 징계한 바 있고, 이외 병사들 간에 사소한 구타 가혹행위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모두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다. 본 사건이 안타깝고 이후, 병사들의 고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휘관심을 더욱 기울이겠다.

3) 관련자 3(대령 정ㅇㅇ, 00사단 00연대장)

2009. 11. 17. ~ 2011. 6. 13.까지 00연대 연대장으로 근무하고, 현재 00사단 참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0. 8. 17. 야간순찰근무 중, 익일 02:00경 0대대장으로부터 핸드폰으로 000레이더 기지에서 구타가혹행위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연대에서 조사하여 조치하겠다고 지시하였다. 연대처리 방침을 정한 이유는 보고내용이 청소기로 몸을 훑고, 엉덩이에 과자를 붙이고 개가 먹도록 하고, 장난으로 집게로 몸을 집었다는 것으로, 단순 구타·가혹행위로 보기 어려워 연대 인사 및 헌병수사관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위 보고를 받고 2011. 8. 18. 오전 가해자 1을 호출하고, 인사과장 대리근무자인 소령 김ㅇㅇ에게 가해자 1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000레이더기지에 가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관련자 5에게 전화하였더니 이미 0대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사를 하고 있었다. 인사과장과 사단 헌병파견대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는데, 가해자는 하사 김ㅇㅇ과 전역한 병장 2명이며, 피해자는 6명이었고, 피해내용은 청소기로 몸을 훑고, 과자를 엉덩이에 붙여 개가 먹도록 하고, 빨래집게로 몸을 집고, 엎드리게 한 후 낭심을 '툭툭' 쳤다는 내용이었으며,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치 않고 가해자 1을 타 부대로 전출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위 조사내용으로 볼 때, 형사처벌 사항이 될 것도 같아 사단 법무부에 인사과장이 구두질의 한 결과, 형사처벌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답변이 있어, 인사과장에게 조사내용을 기초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조사보고서는 간사인 인사장교 중위 최ㅇㅇ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인사과장과 헌병파견대장의 보고내용에 의해 중징계하기로 판단한 것이고, 이 사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헌병파견대장의 조사보고서 1쪽이 있었으나 가해자 1의 진술서 외에 다른 자료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 사항에 대해 2010. 8. 20.경 당시 사단장에게 유선으로 지휘보고 하였고, 2010. 8. 24. 징계사실조사결과보고를 확인한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 가해자 1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하고 보직을 변경하였다.

전군에서 가장 넓은 책임지역과 격오지 부대를 관리는 연대장으로서 의혹 없이 조치한다고 하였으나, 세밀한 부분까지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4) 관련자 4(소령 김ㅇㅇ, 당시 인사과장 대리근무자)

2010. 8월 ~ 10월 중순까지 연대 동원과장을 하면서 인사과장을 겸임하였다. 연대장이 2010. 8. 18. 전화로 000기지에서 가해자 1에 의한 구타 가혹행위가 있어서 연대로 호출하였으니 사실확인을 해 보라고 하여, 이 사건을 알게 되었다.

2010. 8. 18. 주간시간에 연대 인사과장실에서 가해자 1에게 확인하니, 청소기를 이용하여 병사들의 낭심 부위를 훑고, 엉덩이와 낭심 주변에 과자를 붙여 개가 먹도록 하고, 엎드린 자세에서 낭심 부위를 '툭툭'치고, 초코바를 선물증정의 방법으로 주면서 뒤에서 허벅지를 발로 차고 구타하는 행위(일명 ㅇㅇㅇㅇ 수여식)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일 저녁 000레이더기지에 가서 기지인원 전원(약 10여 명)을 생활실에 집합시켜 가해자 1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알려주면서 추가로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나 피해내용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마음의 편지 형식으로 익명의 설문형태의 진술서를 받았는데, 가해자 1에게서 확인한 내용 외에 다른 추가 피해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위 익명설문지를 토대로 가해자 1에게 추가 확인하여, 2010. 8. 24. 작성한 사실조사 보고서와 같은 내용으로 가해사실을 특정하였으나, 설문지 및 가해자 1의 진술에는 청소기에 의한 성기흡입, 성기발기 등 성추행 행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의 익명 설문진술서에는 가해자 1에 대한 분리근무를 원하고 처벌에 대한 언급은 없어 처벌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연대장에게 처벌 의사가 없다고 보고한 것이고, 피해자 개개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인 줄 몰라 미숙하게 처리되었다. 당시 피해병사들에 대한 설문형식의 진술서는 가해자 1에 대한 징계조치 후, 업무종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파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2010. 8월말경 법무참모실에 유선으로 전화하여, 000레이더기지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식별되었는데, 사안이 애매하여 문의한다고 하고, 청소기를 이용하여 낭심 주변을 훑고, 엉덩이와 사타구니 쪽에 과자를 붙여놓고 개가 먹도록 하고, 엎드려 상태에서 낭심을 툭툭치는 행위가 있었고, 이외에도 구타 가혹행위가 다수 있었는데, 이 사안을 어느 선으로 처벌을 해야 되느냐고 문의하니 자대징계하면 될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당시 대화 중 법무참모가 먼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느냐고 물어 처벌은 원치 않고 가해자와 근무를 분리해 달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당시 인사장교 중위 최ㅇㅇ이 가해자 1의 진술서, 헌병파견대장으로부터 받은 조사자료를 근거로 사실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징계기록 및 사실조사결과보

고서에는 가해자 1의 진술서 외에는 보존된 관련 자료가 없는데, 이는 징계의결 후 업무가 종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관심을 두지 않아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당시 본 사건을 성추행 등 성군기위반 사건으로 분류하지 않고 악질성 구타 및 신종 가혹행위, 병영부조리로 분류하여 징계조치하고, 징계결과만 사단에 보고하였다. 지휘계통으로 사고보고(참모보고)는 하지 않았다. 연대장은 참모인 인사과장 및 헌병보고가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으로 일치함에 따라 성군기 위반 사건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고, 이를 축소 처리하라는 식의 지시는 없었다. 피해자들의 성추행 피해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때 당시 너무 안일하게 참모조사를 한 것이 안타깝고, 올바른 참모조사를 통하여 건전한 결심을 하도록 보좌하지 못하여 병사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한 책임감을 느낀다.

5) 관련자 5(원사 정○○, 당시 사단헌병파견대장)

당시 00사단 헌병파견대장으로서 2010. 8. 18. 00연대 0대대 사고예방교육을 마치고 설문을 수리하고 있었다. 설문지 내용에는 없으나 자기들 끼리 하는 말 중에서(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단순하게 000레이더 기지가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어 000레이더 기지의 병사 전 병력을 모아놓고 사고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A4 용지를 나누어 주고, 말하고 싶은 것을 글로 쓰라고 하였으나 아무 내용도 없었다. 이후 2차로 폭행, 가혹행위에 대해 쓰라고 하니 1~2명이 썼다. 가해자 1이 청소기로 성추행 비슷하게 하고, 팬티 위에 과자를 붙이고 개한테 핥아먹게 하려고 하였고 장난식으로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피해자들에게 가해자 1에 대해 어떻게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 마지막 란에 작성하라고 하자 가해자 1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고 연대징계하여 타부대로 전출 조치를 해달라는 건의였으며, 당시 전역한 가해자 2, 3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지시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가혹행위 피해를 당했는지를 설명하면서 재현하라고 하자, 당시 구경하던 병사들과 함께 엉덩이에 과자를 붙이는 모습과 기지상황실에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모습을 재현하였는데 당시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과 관련한 구두·서면 진술은 없었다. 이후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 1쪽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당시 가해자 1이 제출한 핸드폰 칩의 동영상 자료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칩에 오류가 났는지 아무 것도 없었다.

2011. 8. 31.부 퇴역하기 전 수사철에 보관하였는데 당시 가해자 1에 대한 형사사건

입건기록이 아니라 단순히 연대장이 지휘권 행사한 징계사유 서류였으며 퇴역 이후 2012년 전·후에 서류철을 폐기하였던 걸로 알고 있다. 진술인과 대대장 등 간부들이 수시로 각 기지 병사들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내무부조리 등에 대해 설문수리를 하여도 은닉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대대장등 대대간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혀 은닉하거나 감추지 않고 연대장에게 지휘보고하고 연대징계하여 중징계처분 및 부사관 부적격자심사 신청하여 장기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6) 관련자 6(중위 최ㅇㅇ, 現 대위 00연대 0대대 00중대장)

2010. 5. ~ 2011. 4월까지 00연대 인사장교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징계심의를 준비하는 담당자인 간사의 업무를 맡은 바 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2010. 8월 경 당시 연대장과 인사과장(대행)이었던 소령 김ㅇㅇ의 지시에 의하여 가해자 1의 징계문서를 작성하고 징계 심의를 준비하였다.

당시 헌병대 파견대장인 원사 정ㅇㅇ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조사한 내용을 2장 정도의 문서로 요약한 것을 넘겨받은 사실이 있다. 며칠 뒤에 인사과장 소령 김ㅇㅇ이 직접 사고 부대를 방문하여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온 것으로 기억하나 당시 어떠한 진술서나 문서를 작성해서 오지는 않았고, 진술인이 그러한 문서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다만 인사과장이 사고부대를 다녀온 뒤로 '헌병대 내용과 조사결과가 동일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위 2가지(헌병대에서 넘겨받은 요약문서, 인사과장의 구두확인)에 의하여 가해자의 행위사실을 확정한 후, 가해자 1을 불러 약 1시간 가량 면담을 하면서 가해사실이 맞는지를 확인하였으나, 행위별로 구체적인 일시, 장소, 피해내용 등을 확인하거나 특정하는 등의 조사는 하지 않았다.

징계심의를 준비하던 중 인사과장 또는 헌병파견대장에게서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말을 전해들은 것으로 기억하나 문서로 작성하거나, 작성된 문서를 본 사실은 없다. 헌병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각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나 그 진술내용이 인사과로 넘어왔는지 여부는 전혀 모르고, 그 진술서를 연대장이나 인사과장이 보았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며, 진술인도 본 사실이 없다. 진술인은 헌병대의 조사요약본을 토대로 징계심의를 준비한 담당자일 뿐, 조사를 하거나 내용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어, 피해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징계심의 서류를 작성하였다.

7) 관련자 7(중사 황ㅇㅇ, 00연대 0대대 인사담당)

2009. 6. 27.~ 2011. 12. 31.까지 0대대 인사담당으로 근무하였다. 2010. 8월경 대대장이 마음의 편지를 통해, 000레이더기지에서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실확인을 위해 기지로 갔다가 헌병파견대장 원사 정ㅇㅇ이 조사하러 기지로 와서 그냥 돌아온 바 있고, 퇴근 시 가해자 1이 대대에 들어와 있었다. 통상 구타 가혹행위 사건 발생 시 중대, 대대, 연대, 사단으로 사고보고를 하고, 사단에서는 지도 및 상급기관에 사고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대대에서 사고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상급부대인 연대 헌병파견대에서 곧 바로 조사를 하였던 관계로 별도 보고서를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대대장이 구두로 연대장과 헌병파견대장에게 사고보고를 하여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문서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가해자 1에 대해 연대에서 징계처리 후,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가 있었으나 진급과 장기복무를 불허하되 단기근무 만료 시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격오지 부대에서는 부기지장과 TOD반장은 상주근무를 하기 때문에 병사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데, 기지장이 없을 때 어떤 사건이 생겨도 보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부대진단 활동을 월 1~2회하고, 기지에 월 4~5번 순찰을 가지만 누군가 말하지 않으면 식별이 어렵다.

8) 관련자 8(소령 김ㅇㅇ 제00사단 법무참모)

2010. 8월 중순 경 00연대 인사과장 소령 김ㅇㅇ으로부터 000레이더기지 가해자 1의 징계 건에 관하여 전화로 질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연대 인사과장이 문의한 가혹행위 사실은 징계기록에 나와 있는 사실이 전부였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징계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들의 진술서, 가해자 1의 진술서 및 문답서, 지휘감독 관련자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위원회의 직권사건 실지조사보고서, 제00사단(제00연대 및 0대대 포함)에서 제출한 가해자 1의 징계기록, 피해자들의 병영생활 지도기록부, 2010년도 000레이더기지 주간병력결산자료, 2010년도 부대안전평가 결과보고, 군인복무규율 계획 보고, 2010~2011년도 0대대 징계서류, 2010년도 000레이더기지 순찰 및 정신교육 현황, 000레이더기지 및 제000레이더기지 병사 설문조사지, 관련 규정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가해자들의 성추행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1) 2010. 3월부터 5월까지 000레이더기지에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성추행 및 가혹행위 사실은 아래의 표와 같다.

가해자	피해자	일시 및 장소	피해내용	관련 증거
가해자들	피해자 1	'10. 3~4월 상황실	가해자들이 상황실에서 수시로 피해자 1의 배 위에 올라가 몸을 제압하고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청소기 흡입호스 안으로 성기를 집어넣어 1~5분 정도 흡입하고, 거부하면 손바닥으로 뺨을 수십 차례 폭행한 행위	피해자진술 참고인목격진술 가해자일부시인
가해자 1, 2		'10. 3월 중순 기지 내 개집근처	가해자1이 피해자 1을 기지 안에 있는 개집 근처로 끌고 가 바지를 벗기고 다리를 벌리게 하여 스카치테이프를 이용하여 ○○샌드를 사타구니 근처에 붙이고, 개가 속옷 위를 10여 분간 핥아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해자1은 자신의 핸드폰으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1이 항의하자 가해자 2가 뺨을 수십 차례 폭행한 행위	피해자진술 참고인목격진술 가해자일부시인
가해자 2		'10. 3~4월 견시초소	가해자2가 신체의 신비를 보여주겠다며 피해자1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발기 하게 하는 등 3회에 걸쳐 성추행	피해자진술
가해자 2	피해자 2	'10. 3~4월 견시초소	가해자 2가 수차례에 걸쳐 인체의 신비를 보여주겠다면서 피해자 2의 성기를 잡고 발기시켜 사정하기 직전까지 애무하는 등 성추행	피해자진술
가해자들	피해자 1, 2	'10. 3~4월 상황실	가해자들이 피해자 1, 2를 상황실로 불러서 1명에게 바지를 벗기기도 하고, 때로는 팬티를 벗기고 나머지 1명은 잡고 있게 한 후, 청소기 흡입 호스에 성기, 코, 입, 항문을 10~20분 정도 10여 차례에 걸쳐 교대로 흡입한 행위	피해자진술 참고인목격진술 가해자일부시인
가해자 1, 2			가해자 1, 2가 피해자 1, 2를 상황실로 불러서 의자에 앉혀놓고 청테이프로 팔, 다리, 허리를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야한 생각을 하라, 고추를 흥분시켜 발기시켜라"라고 1~2회 성추행	피해자진술
가해자들	피해자 1, 2	'10. 3~5월 생활실	가해자들은 피해자 1과 2가 서로 어색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억지로 레슬링, 프라이드 등의 싸움을 하도록 강요	피해자진술 가해자일부시인
가해자 2			가해자 2는 방문출입증 쇠집게를 피해자 1, 2의 콧속에 넣어 집고 흔들고 비벼 폭행하고, 피해자 2의 코가 헐고 상처가 생겨 진물이 나오도록 가혹행위	피해자진술 참고인목격진술 가해자1일부시인
가해자들	피해자	10. 3~5월	가해자들이 청소기 전원을 켜고 피해자 3의 바지와	피해자진술

가해자	피해자	일시 및 장소	피해내용	관련 증거
	3	생활실	팬티를 벗기고 입, 귀, 코, 성기를 총 5차례에 걸쳐 10여분 흡입시키는 등 성추행	
가해자 2		'10. 3~4월 견시초소	가해자 2는 인체의 신비를 보여주겠다면서 피해자3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발기시켜 성추행	피해자진술
가해자 3		'10. 3~4월 생활실 등	가해자 3은 피해자 3이 답변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뒤통수를 수십 회 때렸으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가혹행위	피해자진술
가해자 1, 3	피해자 4	'10. 3~5월 상황실	가해자 1, 3은 근무시간만 되면 수시로 피해자 4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안경을 벗긴 후 귀와 코, 그리고 뺨을 폭행	피해자진술
가해자 1, 2		'10. 3~5월 상황실	가해자 1, 2는 별다른 이유 없이 청소기로 피해자 4의 입과 코를 2~3회 정도 빨아들여 폭행	피해자진술 가해자일부시인
가해자들	피해자들	'10. 3~5월 취침시간 생활관	가해자들이 1주일에 2-3회에 걸쳐 취침하기 전 피해자들에게 무릎과 팔꿈치를 바닥에 닿은 엎드려 상태(일명'알라자세')에서 두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들의 뒤를 지나면서 낭심을 차례로 강하게 손등으로 수시로 폭행	피해자진술 가해자일부시인
			가해자들은 '○○○○ 수여식'을 하면서 1상자씩 받아서 벽을 보고 있으면 뒤에서 가해자 1, 3이 양쪽 허벅지를 세게 강타하고, 가해자 2는 표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출입증 집게로 코를 집는 등 가혹행위	피해자진술 가해자일부시인

2) 위 인정사실 1)과는 달리, 제00사단 00연대 징계위원회 개최 시 가해자 1의 '사실조사 결과보고서'상 징계혐의는 아래와 같다.

① 기지원 병사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로우킥, 옆구리 때리기, 뺨 때리기 등 장난식 폭행, ② ○○○○(쵸코바) 수여식 명목 하에 허벅지를 발로 차고, 빨래집게를 이용 코를 집는 등의 장난식 폭행 및 가혹행위, ③ 업무가 미숙하고 심심하다는 이유로 기지원 5명을 대상으로 진공청소기를 이용 몸을 훑는 등의 가혹행위, ④ 병사 상호간에 강제로 몸싸움을 시키고 동영상을 촬영, ⑤ 기지원 3명을 대상으로 엎드리게 한 채 손으로 낭심을 치는 행위, ⑥ 기지원 3명 대상 손등 때리기 등 장난식 폭행 등이 있다.

3) 피해자 6 및 가해자 중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는 조사 불원(不願) 및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특별한 진술을 받지는 못하였다.

나. 지휘 감독책임 관련자들의 축소·은폐에 대하여

1) 피해자 2가 2010. 8. 17. 피해내용을 기재한 '마음의 편지'를 작성하였고, 이에 관련자 2가 야간순찰근무 중, 익일 02:00경 000레이더기지 '마음의 편지함'에서 이를 발견하고, 연대장인 관련자 3에게 보고하고 연대차원에서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자, 관련자 3은 연대 인사담당자인 관련자 4와 사단 헌병대 파견대장인 관련자 5에게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2) 관련자 4가 2010. 8. 18. 가해자 1을 호출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자 4, 5가 000레이더 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당시 피해자들은 상습적인 구타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성추행 사실, 그리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혔으나, 이들은 관련자 3에게 "가해자는 부기지장 1명과 전역한 병장 2명이고, 피해자들은 소속 부대원 6명이며, 피해내용은 청소기로 몸을 훑고 과자를 엉덩이에 붙여 개가 먹도록 하고, 빨래집게로 몸을 집고, 엎드리게 한 후 낭심을 '툭툭' 쳤다는 것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보고하였다.

3) 관련자 3은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사실관계에 정확한 확인 없이 관련자 4로 하여금 당시 사단 법무참모인 관련자 8에게 형사처벌 여부를 문의하도록 하였고, 관련자 4가 관련자 8로부터 피해자들의 불처벌 의사에 근거하여 형사처벌 사항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이를 관련자 3에게 보고하자, 관련자 3이 2010. 8. 20. 사단장에게 이를 유선으로 단순 구타·가혹행위 사건으로 구두보고 하고, 연대인사 장교인 관련자 6으로 하여금 징계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4) 관련자 6은 당시 관련자 5에게 받은 2장 정도의 요약자료, 관련자 4의 구두 확인 내용을 토대로 가해자 1을 면담하고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5) 관련자 3은 연대징계위원회를 구체적인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자료 및 형사처벌 불원 의사를 적시한 관련 자료의 증빙 없이 가해자 1의 진술에 기초하여, 단순 구타·가혹행위 사건으로 판단하고 가해자 1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조치를 취하였다.

6) 피해자 1, 2, 3, 4는 2010. 8. 18. 사단헌병대 파견대장 및 연대 인사과장 조사 당시 성추행 피해사실을 밝히고 가해자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형사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힌 바 없음에도, 연대장 등 관련 간부들은 관련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해자 1에게 단순 폭행 및 가혹행위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만을 취하고, 가해자 2, 3에 대해서는 2010. 8. 12. 전역되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부대관리훈령」에 의거 성추행·가혹행위의 발생 및 인지경위, 대처상황 등을 사단장 등에게 지휘보고하거나 지휘감독 책임을 묻지 않았다.

7) 2010년 3월에서 5월경까지 사건발생 당시 대대 단위 주간단위로 병력결산을 하였으나 일일결산 시 가해자 2가 병 분대장인 관계로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고, 부지기장인 가해자 1, TOD반장 박○○ 중사와 간부 일일결산 시에도 아무런 관련 보고가 없었으며, 당시 000레이더 기지에서는 기지장 주관으로 월 1회 마음의 편지와 설문지를 받았고, 대대장, 주임원사, 인사과장 등이 수시로 통상 한 달에 2~4회 순찰하면서 설문을 받기도 하였으며, 기지장이 보호관심병사에 대해서는 주 1회 개별적으로 정밀면담을 하고, 일반병사의 경우에는 2주 1회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자 2가 '마음의 편지'를 통해 신고하기까지 관련 피해사실을 관련 지휘 감독책임자인 간부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8)「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상 징계서류는 제59조에 따라 비치·보존 하여야 하나 이 사건 관련자들은 피해자 2가 작성한 '마음의 편지', 피해자진술서 등을 폐기하였다고 하고 있다.

4. 판단 및 조치

가. 가해자들의 성추행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1) 이 사건의 피해내용을 살펴보면, 가해자들이 구타 및 가혹행위 외에도 동성의 남성이 자신의 신분적 우월성을 이용하여 신체의 내밀한 부위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공청소기로 흡입하고, 동물 등에게 핥아 자극하도록 유도하고, 또한 성기를 만지고 잡아 쥐어 발기시키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는데, 이는 사회상규 및 일반인의 입장에서 받아들기 힘든 인격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한 강제추행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성추행 범죄는 그 해악이 깊어 신체에 대한 단순한 물리적 폭행에 따른 피해에 비해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이 크다. 이에 대한 사회적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두어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고, 군인의 경우에는「군형법」제92조 내지 제92조8까지의 관련조항을 두어 엄히 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가항의 1)과 같이, 피해자 1, 2, 3, 4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내용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2010. 3월경부터 5월경 사이 000레이더

기지 근무 중, 강압적인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욕설 및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강요와 협박에 인한 추행을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2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안전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지휘 감독책임 관련자들의 축소·은폐에 대하여

1) 「군인사법」 제47조2(복무규율) 및 「군인복무규율」 (대통령령 제21750호)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또한 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본 사건에서 지휘감독자들은 지휘책임이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인정사실에서 드러난 성추행 및 가혹행위 사건에 대하여 지휘책임자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관련된 처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에서는 성군기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도 않았고, 가해자 2, 3 및 지휘감독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더불어 피해자들의 진술서 등의 자료를 보존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관련자들은 「군인사법」 제47조2, 「군인복무규율」 제15조, 「부대관리훈령」 제236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휘·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여 「헌법」 제10조 후단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피해자들은 「헌법」 제12조에서 보호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조치사항

위 사항을 종합해 볼 때, 가해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중한 인권침해 사실과 지휘감독 책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소홀이 인정되므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휘감독기관인 육군본부에서 소속부대에서 조사하지 못한 전역자 등을 포함한 재조사를 통하여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부대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격오지 부대 등에 대하여 인권침해행위의 예방적 차원에서 부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II.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2. 6. 2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 원 장주영 위 원 윤남근

[별지] 관련규정

1.「군인사법」

제47조의2(복무규율)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군형법」

제92조의2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성추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추행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형법」 제2편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醜業)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로 한정한다), 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 또는 제289조의 이송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및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4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추행범죄로 본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4.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사적 제재의 금지) ①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5.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36조(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 근절) ① "구타"란 고의로 손·발·팔꿈치·머리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막대기·야전삽·총기 등 도구로 타인을 가격하여 통증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가혹행위"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이란 법규에 어긋나는 방법이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방법 등을 말한다. 언어추행은 심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인 언어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심한 심리적 충격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문서 등의 수단을 이용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시행하여야 하며,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을 은닉할 때에는 사고자 및 관련자를 가중처벌 하여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장,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 근절을 위한 장병 의식의 전환에 관한 사항
2. 병영저변의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 유발요인 제거에 관한 사항
3.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병영생활 시설 및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 근절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 근절에 관한 관심을 유도·진작시키기 위한 홍보

제24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군기 사고"란 성을 매개로 한 군 기강 문란, 부대 단결저해, 군 위상 실추를 초래하는 성범죄, 성희롱, 성매매 그 밖에 성군기 위반사고를 말한다.
2. "성범죄"란 「형법」, 「성추행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군형법」,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형벌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건전한 성 풍속을 해하는 행위(강간, 강제추행, 간통, 혼인빙자 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추행, 성매매 등)를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제1호와 관련된 “성군기 위반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별 차이를 이유로 복무·근무평가·근무조건, 사기·복지 등에서 불이익과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다. 성희롱 행위자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강압 등을 가하여 피해자의 신고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그 밖에 성군기 위반사고”란 성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친고죄로서 고소가 없는 경우 등 공소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사고나 그 밖에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한 성관련 사고를 말한다.

21 12직권12, 12진정5275(병합) [육군 제00사단 총기사망사건 및 폭행·가혹행위 직권조사 등] 2012. 12.18. 결정

▌결정사항 ▌

[1]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 제00사단에서 발생한 총기사고 사망자에 대하여 '순직' 대상으로 심사할 것을 권고

[2] 육군 제00사단장에게, 0대대장의 병사에 대한 욕설과 폭행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총기사고 사망자인 피해자 1은 다수의 선임들의 구타·가혹행위 및 일부 후임병들의 막말과 불손한 태도 등에 대하여 제도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였는바, 해당 부대는 구타·가혹행위 방지, 사고예방 관리, 보호관심사병제도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1의 부대생활에서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1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

[2] 대대장의 임무수행 중 욕설 및 일부 장병에 대한 구타는 「군인사법」 및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3] 대대장이 부하들의 동의 없이 간부체력 측정 미달자들에게 벌금을 거출한 행위는 비록 사후에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0조에 유래하는 해당 간부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4] 연대장이 간부들에게 메일을 보내 사고 발생원인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 사안에 대하여, 대대장이 본인에게도 같은 메일을 보내라고 지시한 행위는 소속 해당간부들에게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

「헌법」 제10조·제12조·제18조,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8조·제15조,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36조·제243조

▌ **진정인** ▌ 권○○

▌ **피해자** ▌ 제00사단 00연대 0대대 0중대 故 박○○ 일병(20세)

▌ **피진정인** ▌ 최○○(대대장)

▌주 문 ▐ 1. 육군참모총장에게, 2012. 6. 00. 육군 제00사단 00연대 0대대(이하 '대대')에서 발생한 총기사고 사망자에 대하여 '순직' 대상으로 심사할 것을 권고한다.

2. 육군 제00사단장에게, 0대대장(이하 '대대장')의 병사에 대한 욕설과 폭행 행위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 조치할 것과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사건(12진정0527500)과 관련하여, 총기 사망사고에 대한 대대장(0대대장)의 축소·은폐 제기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

I. 조사의 배경

가. 2012. 6. 00. 육군 제00사단 00연대 0대대에 근무하는 장병이, 부대 내에 총기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전후로 대대장이 소속 부대 장병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심지어 마대자루로 폭행을 가하였으며, 사망자에 대한 상급부대의 진상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축소·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익명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이 진정 건은 익명으로 제기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각하 대상이나, 그 진정 내용에 있어 대대장의 인권침해행위와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그 상당성과 생명권 침해의 발생이라는 중대성 등을 우선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이후, 대대장이 부대내 총기 사망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요지로 진정이 접수되어 이를 본 직권조사와 병합하였다).

II. 조사 결과 및 판단

1. 총기 사망사고 관련

가. 사건개요(12진정0527500, 12직권0001200 병합)

1) 진정인 : 권○○

2) 피진정인 : 최○○(대대장)

3) 피해자 1 : 제00사단 00연대 0대대 0중대 故박○○ 일병(20세)
- 사망일시 : 2012. 6. 00. 05:10
- 사망장소 : 경기. ○○. ○○. ○○리 소재 소속부대 탄약고 초소
- 사망개요 : 피해자 1 故 박○○ 일병이 이병 김○○과 함께 소속부대 탄약고 경계근무 중, 이병이 목에 휴대하고 있던 탄통 하단 열쇠를 가져간 뒤 보통탄 1발을 꺼내 장전한 뒤 자신의 턱 부위에 총구를 대고 발사하여 두부관통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가해병사 현황(피해자 사망 당시 기준임)

- 가해자 1 : 전○○(상병, 00연대 0대대 0중대)
- 가해자 2 : 김○○(병장, 00연대 0대대 0중대)
- 가해자 3 : 조○○(상병, 00연대 0대대 0중대)
- 가해자 4 : 이○○(상병, 00연대 0대대 0중대)

다. 지휘·감독 책임 관련자 현황

- 관련자 1 : 김○○(상사, 00연대 0대대 0중대 행정보급관)
- 관련자 2 : 김○○(중위, 00연대 0대대 0중대 0소대장)
- 관련자 3 : 이 ○(대위, 00연대 0대대 0중대장)
- 관련자 4 : 최○○(중령, 00연대 0대대장)
- 관련자 5 : 서○○(대위, 00연대 0대대 0중대장, 사고 당시 당직자)
- 관련자 6 : 장○○(중사, 00연대 0대대 0중대 부소대장, 당직자)
- 관련자 7 : 김○○(중사, 00연대 0대대 0중대 부소대장)

라.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주장요지

1) 가해자들의 진술

가) 가해자 1(상병 전○○, 22세)

(1) 2012. 6. 00. 부대 총기로 자해 사망한 피해자 1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헌병대 등의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왼쪽 뺨을 때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방탄모 부분을 1회 툭 친 정도이다. 또 뺨을 폭행한 것이 아니고 뺨을 손바닥으로 미는 정도였다. 피해자 1에게 “이 쵸코칩 같이 생긴 놈아 먹어라”라는 말은 한 적도 없다. 악의를 가지거나 고의로 강하게 때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폭행을 한

것은 아니고 장난 식으로 가볍게 치는 정도였으며,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 1에게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외 피해자 1에게 다른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2) 2012. 6. 10. ~ 6. 27. 에 피해자 1에게 자신이 구입한 과자를 허락 없이 먹는다는 이유로 7차례에 걸쳐 "이 새끼야 미쳤구나" 등 욕설과 함께 손바닥과 발로 얼굴부위 등 총 10여대 폭행하고, 피해자 1에게 가벼운 장난 식으로 언어폭력을 하였다.

나) 가해자 2(병장 김○○, 23세)

2012. 5월 중순 ~ 6. 23. 사이에 피해자 1이 후임병사 박○○을 폭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과 팔 부위를 약 10회 폭행하였다.

다) 가해자 3(상병 조○○, 22세)

2012. 6. 26. 점호 전 생활관에서 피해자 1의 팔, 몸 등을 약 10분 간 폭행하였다.

라) 가해자 4(상병 이○○, 22세)

2012. 5. 15. 정기휴가를 출발하는 피해자 1이 사제(私製) 전출화를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사망자 허벅지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마) 기타 부대원의 진술

다수의 선임병들이 친근감 표시 등으로 피해자 1에게 지나친 장난(암바 : 팔 꺾기)과 외모비하(짱구, 쵸코칩 같다 등) 및 신체 접촉(주먹 등으로 툭툭 치는 행위) 행위가 있었으며, 일부 후임병들도 피해자 1에게 막말과 불손한 태도를 보인바 있다.

2) 소속 지휘관들의 부대 운영 관련 진술(육군 제00사단 헌병대 작성 '중요사건보고' 등 참고)

가) 주간단위 설문은 매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2. 4. 9. 이후로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설문 수리과정에서 일부 감독상의 허점이 발생한 아쉬움이 있다.

나) 피해자 1은 부모 등 가족 구성원 문제 등에 대하여 지휘관에게 허위보고를 한 바 있다. 또한, 개인의 2011. 8. 2. 000보충대에서 실시한 복무적합도검사 결과 정신과적 문제가 의심되고 정밀진단이 필요하며 군생활에 어려움과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조기전역이 예측된다는 판정을 받은바 있다.

2011. 8. 13. 제00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실시한 '육군개안안전지표' 진단 결과 1차 우울증, 2차 우울증 가능성으로 판정 받았고, 소속 중대 전입 후인 2012. 3. 15. 'KIDA신인성검사' 결과 "앞으로 군생활에의 부적응이나 사고 가능성이 예측되며 즉각적인 전문가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은 보호관심사병으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3) 대대장의 진술

자살사고가 발생한 6중대에서 2012. 4. 9.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매주 실시하는 설문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병영 부조리는 설문조사에서만 식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대정밀진단이나 간부 면담 등을 통하여 더 많이 식별되며, 0중대의 경우 유격훈련 이후 폭행 가혹행위를 식별하여 전○○ 상병을 징계처리하기도 하였다.

마. 인정사실 및 판단

1) 인정사실

육군 제00사단 총기사망사건 및 폭행·가혹행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보고, 육군 제00사단 중요사건보고(일병, 대대 탄약고 경계근무 중 총기사망), 대대장, 관계인, 참고인 진술서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1은 2012. 6. 00. 05:10경 ○○도 ○○ 소재 제00사단 00연대 2대대 6중대 탄약고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 총기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피해자 1의 총기사망사고 이후 제00사단은 2012. 6. 30. ~ 7. 2. 사고 소대 32명, 대대원 중 피해자 1과 동향인 병사 6명 등 총 38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가해자들 및 부대 선임과 일부 후임병들이 피해자 1에게 행한 구타·가혹행위 사실은 아래와 같다.

구분	조사 내용	관련증거
욕설, 구타·폭행, 가혹행위 등	- 가해자 1이 2012. 6. 10. ~ 6. 27.에 피해자 1에게 자신이 구입한 과자를 허락 없이 먹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이 새끼야 미쳤구나” 등 욕설과 함께 손바닥과 발로 얼굴부위 등을 폭행함. - 가해자 2가 2012. 5월 중순~6. 23. 사이에 피해자 1이 후임병사 박○○을 폭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과 팔 부위를 약 10회 폭행함 - 가해자 3은 점호 전 생활관에서 피해자 1의 팔, 몸 등을 약 10분 간 폭행함. - 2012. 5. 15. 정기휴가를 출발하는 피해자 1이 사제 전출화를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사망자 허벅지 부위를 1회 폭행 - 다수의 선임병들이 친근감 표시 등으로 피해자 1에게 지나친 장난(암바 : 팔 꺾기)과 외모비하(짱구, 쵸코칩 같다 등) 및 신체접촉(주먹 등으로 툭툭 치는 행위) 행위 함. - 일부 후임병(일병 박○○, 임○○, 이○○)들도 피해자 1에게 막말과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등 병 상호간에 위계질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가해자 진술서 - 가해자 징계 관련 서류 - 총기사망사고 관련 제00사단 5부 조사결과보고서 - 부대원 진술서 - 관련자 진술서

라) 총기사망사고 관련 제00사단 5부(인사, 감찰, 헌병, 군수, 교육훈련) 합동조사 이후 관련 가해병사들인 상병 전○○ 등 4명은 영창 등 징계조치를 받았다.

마) 피해자 1은 2011. 8. 2. 000보충대에서 실시한 ‘복무적합도검사’, 2011. 8. 13. 제00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실시한 ‘육군개인안전지표’, 2012. 3. 15. 실시한 ‘KIDA신인성검사’ 결과 “앞으로 군생활에의 부적응이나 사고 가능성이 예측되며, 즉각적인 전문가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은 보호관심사병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바) 피해자 1의 소속 부대는 마음의 편지 등 주간단위 설문을 2012. 4. 9. 이후로 실시하지 않는 등 사고예방진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구 분		계급	성명	징계유형
관련자 4	대대장	중령	최○○	견책(징계유예)
관련자 3	0중대장	대위	이 ○	근신5일(징계유예)
관련자 2	0중대 0소대장	중위	김○○	감봉3월(00사단전출)
관련자 1	0중대 행정보급관	상사	김○○	견책
관련자 5	0중대장	대위	서○○	혐의없음
관련자 6	0중대 부소대장	중사	장○○	근신3일
관련자 7	0중대 부소대장	중사	김○○	견책

사) 피해자 1의 총기 사망사고 관련으로 제00사단 5부 합동조사 이후 관련 지휘관의 징계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판단

가) 이 사건 피해자 1의 2012. 6. 00. 05:10경 총기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제00사단 5부에서는 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자 1이 부대생활에서의 구타·가혹행위를 당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부대의 병영부조리를 조사하여 상기 인정사실 다), 마), 바)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관련 지휘관에 대해서는 인정사실 사)와 같이 징계조치를 하였으며, 관련 병사들은 인정사실 라)와 같이 영창 등의 징계조치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 1의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한 지휘관 및 부대원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총기사고 사망자인 피해자 1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소속 중대에서 다수의 선임들에 의해 지속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일부 후임병사들이 막말과 불손한 태도를 보였고, 구타·가혹행위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한 마음의 편지 등의 부대생활에서의 애로사항 및 고충에 대한 신고에 대한 제도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또한, 피해자 1은 보호관심병사 제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부대 내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방지, 마음의 편지 등의 사고예방 관리, 보호관심사병제도 등의 업무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대에서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1의 부대생활에서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해당부대에서는 「군인사법」 제47조2, 「군인복무규율」 제15조, 「부대관리훈령」 제3장(군기사고 예방)의 제236조(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 근절) 및 제4장의(자살 예방) 제243조(자대복무단계 식별)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군 내 구타·가혹행위 및 자살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엄정히 처리할 지휘·감독의무 및 집행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헌법」 제10조 후단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 1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이에 따라, 향후 피해자 1의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한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개최 시 피해자 1이 국방부 「전공 사상자 처리 훈령」 제3조에 따른 "군내 구타,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병사는 순직처리" 등 적절한 조치와 더불어, 본 사건과 같은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00사단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마음의 편지 등의 사고예방 관리, 보호관심사병사 지정제도 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대대장의 욕설·폭행행위 및 독단적 부대운영 관련

가. 가해자 : 0대대장

나. 피해병사 현황

- 피해자 2 : 강○○(병장, 00연대 0대대 0중대, 현재 전역)
- 피해자 3 : 신○○(병장, 00연대 0대대 0중대, 현재 전역)
- 피해자 4 : 정○○(병장, 00연대 0대대 0중대, 현재 전역)
- 피해자 5 : 정○○(상병, 00연대 0대대 0중대, 현재 0대대 0중대)
- 기타 피해자 : 대대장 부대(0대대) 장병

다. 관련자 현황

소 속	성 명	비 고
육군 제00사단 00연대 0대대	강○○, 김○○, 김○○, 남○○, 박○○, 서○○, 연○○, 오○○, 오○○, 이○○, 이 ○, 전○○, 정○○, 조○○	가나다 순

라. 당사자 및 관련자 등의 주장요지

1) 피해자 진술

가) 피해자 2 : 강○○(병장, 00연대 0대대 0중대, 현재 전역)

피해자 2가 2012. 3월경 방탄모를 쓴 상태에서 대대장이 마대자루를 빼서 방탄모를 세게 1회 때려 마대자루가 부러졌다. 당시 머리가 멍했으며,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이 새끼, 저 새끼' 욕설을 하고 '죽여버린다, 발목 잘라버린다'고 하였다.

나) 피해자 3 : 신○○(병장, 00연대 0대대 0중대, 현재 전역)

2012. 5월경 당시 피해자 3은 완전군장을 착용하고 그냥 서있는 상태에서 대대장이 대빗자루를 부러뜨린 막대기로 위협만 하였으며, 대빗자루로 때렸다는 것은 와전된 것이다. 당시 야광봉(지름 5~6mm, 길이 15cm 정도) 3~4개를 모아 방탄모를 때렸지만 아프지 않았다. 맨주먹 또는 맨손으로 약간 세게 방탄모를 3~4회 때려 머리가 조금 멍한 정도였으나 아프지는 않았다. 당시 대대장이 '이 새끼, 저 새끼, ××놈아' 등의 심한

욕설을 하였다.

다) 피해자 4 : 정○○(병장, 00연대 0대대 0중대, 현재 전역)

대대장은 피해자 4가 2012. 4월경 음주소란으로 대민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대대장실 앞에서 완전군장을 착용하고 엎드려뻗쳐 자세로 약 5분 정도 있게 하였는데, 자꾸 넘어지자 완전군장을 착용한 그대로 머리박고 엎드려뻗쳐 자세로 약 5분 정도 있게 하였으며 또 옆으로 넘어지자 똑바로 하라며 전투화를 신은 발로 군장 뒷부분을 한 번 차는 가혹행위를 하였다.

라) 피해자 5

2012. 4월경 피해자 4와 외박을 나가서 0중대장이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고 같이 저녁 식사와 술을 마신 후 ○○○사우나에서 잠을 잤는데 23:30경 피해자 4가 사우나 업주와 "여탕을 갔냐, 안 갔냐"라는 이유로 다툼을 하여 부대로 복귀하였다. 다음 날 09:00경 대대장이 피해자 4와 본인을 대대장실 앞 진지로 불러 완전군장 상태로 다리를 진지에 올리게 하는 엎드려뻗쳐를 10분 정도 시켰고, 머리를 땅에 박은 엎드려뻗쳐를 7분 정도 시켰다. 당시 대대장이 똑바로 못하냐면서 발로 엉덩이를 한 대씩 가격하였으며 이를 8중대장이 목격하였다. 이후 10:00부터 22:00까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돌았고 피해자 4는 2일을 더 돌았다.

간부 체력측정 미달자에게 1,000원을 거출한 걸로 알고 있으며, 대대장이 마대자루로 방탄모를 쓴 피해자 2를 때리고, 다시 취사장을 가면 발모가지를 잘라 버린다고 얘기하였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또한, 피해자 3이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대대장에게 맞았다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

2) 관련자 진술

가) 관련자 1

대대장이 0중대 김○○ 상사에게 0중대 소대장인 이○○ 중위와 평소 친분 있게 지내고 격을 두지 않고 언행이 불손하다는 이유로 대대장실에서 폭언·욕설을 했다고 들은 적이 있고, 대대장이 0중대 김○○ 중사에게 위 김○○ 상사와 동일한 이유로 대대장실 또는 0중대에서 폭언·욕설을 하였다고 들었다.

대대장이 피해자 2가 성군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취사장에서 마대자루를 부러뜨린 후 방탄모를 쓰게 한 후 세게 내려쳐서 마대자루가 부러졌었다고 들은 바 있고, 간부들 중 체력측정 기준 미달자에게 푸쉬업, 윗몸일으키기 1회당 1,000원씩 걷었다고 들었다.

또한, 대대장이 0대대 간부들에게 인트라넷를 이용해 마음의 편지 메일을 보내라고 하였는데, 대대장이 지원과장·중대장에게 간부들이 보낸 메일 내역을 출력하여 가져오게 지시하여 간부들이 연대장에게 보낸 메일을 출력하여 지원과장·중대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 관련자 2

간부체력 측정은 2012. 5월경에 실시하였다. 측정기준 미달자에 대한 벌금 거출지시는 대대장이 하였는데 간부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중대별 벌금 거출자는 행정보급관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어떤 중대는 총 13명중 00명에게서 00만원 거출하였는데 2~3일 후 당사자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

다) 관련자 3

연대장이 직접 간부들에게 메일을 보내 2012. 6. 00. 0대대 0중대에서 발생했던 총기자살사고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부대의 강·약점,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대대장이 지시에 의해 간부들의 마음의 편지 내용을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간부들의 체력 수준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 중간점검 과정에서 기준 미달자에게 조금 더 자극을 주기 위해 미달한 만큼의 벌금을 거출하였다. 당시 간부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했던 사실은 없었으며, 벌금은 다시 본인에게 돌려주었다.

라) 관련자 4

피해자 4 및 5는 사복착용으로 대대장에게 얼차려를 받은 적이 있으며, 피해자 3은 대대장이 완전군장 착용에 방탄모를 쓴 머리를 맞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대장의 마음의 편지 메일 작성과 관련하여 대대장이 중대장들에게 종합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하여 간부들의 마음의 편지를 취합하여 보고·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마) 관련자 5

김○○ 중사가 이○○ 소위에게 반말조로 대화하는 모습을 본 대대장이 김○○ 중사를 불러 폭언을 하였다. 간부들 체력단련 관련으로 벌금을 걷은 사실이 있다.

훈련 중 피해자 3이 행군 간에 이○○ 소위와 손을 잡고 걷는 등으로 인해 대대장에게 심한 폭언을 들었으며 징계처분을 받았다. 연대장에게 쓴 마음의 편지를 중대장에게 그대로 복사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대대장이 지시하여 중대장이 취합한 걸로 알고 있다.

바) 관련자 6

총기사건 후 연대장의 지시로 마음의 편지에 부대의 강점, 개인고충, 애로사항 등을 작성하여 연대장에 보내고 바로 편지함을 삭제하였다. 메일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지도 않았고 출력한 적도 없다.

사) 관련자 7

간부 체력측정과 관련하여 중대별로 측정기준 미달자의 벌금을 지원과장에게 제출한 걸로 알고 있다.

아) 관련자 8

2012년 7월경 연대장이 각 간부들에게 '마음의 편지'를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어떤 내용의 메일을 보냈는지 물어보거나 출력하여 제출토록 한 사실은 없다.

2012. 5월경 사단 체력검정 실시 2~3주전 대대 자체 간부 체력 검정 연습을 하게 되자, 대대장이 "특급 기준미달자에 대하여 횟수당 1천원씩 벌금을 걷어라"라고 말하였다. 체력검정 연습결과를 체크하여 미달자들에게 1회당 1천원씩 총 00만원 가량을 걷었으나, 대대장이 본인들에게 돌려주라고 하였다. 금전거출 행위가 군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은 당시 알고 있었으나, 체력단련 동기부여 차원에서 실시한 것일 뿐, 사적으로 사용한 바 없다.

0중대 병사들이 외박 간 성군기 위반 문제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대대장이 해당 병사에게 욕설, 폭행, 부당한 얼차려를 부여하였다는 사실을 보거나 들은 적은 없다.

자) 관련자 9

2012. 5~6월 경 사단 체력검정이 실시 약 1주일 전에 대대장을 포함한 대대 전간부가 사열대 앞에 모여 연습을 한 적이 있다. 기준에 미달하면 횟수당 1천원을 걷겠다고 하였는데, 누가 말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본인은 연습이 끝난 후 미달한 만큼의 벌금을 냈고, 당시 돈을 걷으면서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반환해 주겠다는 말도 듣지 못하였으나, 약 1~2일후 돌려받았다.

차) 관련자 10

피해자 1의 자해사망 사건 이후에, 대대장이 간부들을 모이게 한 사실은 있으나,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취지의 발언은 하지 않았으며, '기운 내서 잘해보자'라는 격려 취지의 말을 하였다.

카) 관련자 11

대대장이 병사들에 대하여 머리박기를 시켰다는 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고, 연대장에게 보낸 메일을 다른 간부가 확인한 사실은 없다. 기타 달리 대대장의 부조리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은 없다.

타) 관련자 12

사단 체력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합격해야 한다. 합격은 특급, 1급, 2급, 3급안에 들면 되고, 불합격되면 재검을 받아야 한다.

올해 5월 ~ 6월경 연대장에게 애로 및 건의사항을 메일로 쓰라고 하였던 적이 있었고, 올해 초에는 메일이 아닌 종이에 써서 제출한 적이 있었다. 종이에 쓸 때는 따로 봉투에 봉해서 제출하지 않았고, 중대 행정반 책상에 모아 두면 담당자가 취합하여 대대로 제출하였다.

대대장이 간부나 사병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였다거나 폭언을 하였다는 등의 진정 관련된 내용을 듣거나 보지 못하였다.

파) 관련자 13

2~3개월 전, 연대장에게 애로 및 건의사항을 메일로 쓰라고 해서 썼는데 지원과장이 간부들의 메일을 일일이 확인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체력점검은 특급, 1급, 2급, 3급, 불합격이 있으며 승진점수에 반영된다. 1년에 2회 특정하며 기준에 미달하면 천원을 내야 한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대대장이 하사들의 회식은 올해 7월경으로 기억되며 간부식당에서 했으나 대대장이 별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지 않으며, 자살사건 이후 대대장이 간부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 차원에서 용사들 면담관리를 잘하도록 교육한 적은 있다.

장병들이 간혹 군장을 돌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으나, 대대장이 간부나 병사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보지 못하였다.

하) 관련자 14

2012. 3월경 취사장 내에서 성군기 위반과 금품수수 행위가 식별되었다. 피해자 2가 취사병인데 후임병들로부터 1~2천원 정도 갈취했다는 사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되었고, 선임병의 폭언사실도 확인되었다.

대대장이 피해자 2 등을 대대장실로 불러 완전군장을 시켜 세워 두고, 피해자 2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 해보라고 하여, 피해자 2는 성군기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였지만, 금품은 일부 빌렸는데 곧 갚을 예정이라고 하자, 대대장이 봉걸레 자루로 피해자 2가 쓰고 있는 방탄모를 가격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다. 피해자 2는 1천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성군기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 2는 자체징계를 받고 영창을 다녀왔다.

0중대 행정보급관 김○○ 상사가 대대장실에 불려가서 욕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연대장이 부대자랑이나 건의사항 등을 쓰라고 지시하여 대부분의 간부들이 인트라넷 메일로 작성했는데 대대장이 참모부 소속 지원과장에게도 메일을 한통 보내고 연대장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중대급은 중대장에게 메일을 한통 보내고 연대장에게 보내라고 하였다. 연대장에게 쓴 메일과 동일한 내용의 메일을 중대장이나 지원과장에게 보내라는 것이었고, 메일을 열람한 것은 아니다.

체력측정을 하는데 합격 기준에 미달이면 1회당 1천원을 받았으며, 중대별로 걷어서 모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대장이 총기 자살사고를 은폐하도록 지시하거나 교육한 사실이 없다.

3) 대대장의 진술

연대장 메일 내용 중 특이사항이 있으면 본인에게 보내달라고 중대장에게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연대장에게 보내는 메일과 똑같은 내용으로 대대장에게도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

0중대 김○○ 상사나 0중대 김○○ 중사에게 욕설을 한 적은 없고, 0중대 김○○ 중사를 대대장실로 불러 주의를 주면서 우유를 땅바닥에 던진 사실뿐이다. 0중대장이 이사를 한다며 병사 정○○과 정○○을 데리고 나갔는데 정○○과 정○○이 사우나에서 동네 어른들과 다툼이 있었다. 다음 날 출근하여 보고 받고 사단 '징계의결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병사들에게 얼차려를 주었다.

사단 체력검정을 1주일 남겨 놓고 대대 간부들의 체력점검을 해보니 너무 기준 미달이어서 "기준 미달하는 만큼 돈을 모아서 회식이나 하시죠?"라고 하였는데 실제 돈을 걷었는지를 몰랐으나, 나중에 돈이 걷힌 것을 알고 나서는 돈을 돌려주라고 한 바 있다.

피해자 2에게 봉걸레 자루로 방탄모를 내려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 2의 행위는 징계의결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단체생활에서 용납될 수 있는 도를 넘어선 것이다. 피해자 2에게 사열대 계단 1개 높이로 다리를 올리게 하고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피해자 3에게는 정신 좀 차리라면서 방탄모를 양손바닥으로 덥석 잡은 사실은 있으나 가격한 것은 아니다.

마. 인정사실 및 판단

1) 인정사실

육군 제00사단 총기사망사건 및 폭행·가혹행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보고, 대대장, 관계인, 참고인 진술서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2. 1. ~ 7.까지 제00사단 00연대 0대대장인 대대장이 부대 장병에게 행한 욕설·폭행 및 독단적 부대 운영 관련 사실은 아래와 같다.

인권침해 내용	인권침해 관련 진술 내용	진술자
대대장의 욕설·폭행 등	- 피해자 2가 2012. 3월경 방탄모를 쓴 상태에서 대대장이 마대자루를 빼서 방탄모를 세게 1회 때려 마대자루가 부러졌다. 당시 머리가 멍했으며,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이 새끼 저 새끼' 욕설을 하고 '죽여버린다, 발목 잘라버린다'고 하였다.	피해자2
	- 대대장이 봉걸레 자루로 강○○이 쓰고 있는 방탄모를 가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 - 0중대 행정보급관 김○○ 상사가 대대장실에 불려가서 욕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관련자 1, 5, 14
대대장의 총기사망사고 축소은폐행위	- 대대장과 하사들의 회식은 올해 7월경으로 기억되며 간부식당에서 했으나 대대장이 별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지 않으며, 자살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한 적이 없음. 단지, 자살사건 이후 대대장이 간부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차원에서 병사들 면담관리를 잘하도록 교육한 적은 있다.	관련자 1, 3, 12, 13, 14
	- 대대장이 총기 자살사고를 은폐하도록 지시하거나 교육한 사실 없다.	
간부체력측정 기준미달횟수당 1,000원 거출관련	- 간부들 중 체력측정 기준 미달자에게 푸쉬업, 윗몸일으키기 1회당 1,000원씩 걷었다고 들었다.	관련자 1, 2, 3, 5, 7, 8, 9, 14
	- 5월 간부체력 측정 시 측정기준 미달자에 대한 벌금 거출지시는 대대장이 하였는데 간부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 중대별 벌금 거출자는 행정보급관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어떤 중대는 총 13명중 대부분의 간부들에게 금전을 거출하였고, 2~3일 후 당사자에게 돈을 돌려주었다.	
	- 간부들의 체력 수준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 중간 점검 과정에서 기준 미달자에게 조금 더 자극을 주기 위해 미달한 만큼의 벌금을 거출하였음. 당시 간부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구했던 사실은 없었음. 벌금은 다시 본인에게 돌려주었다.	
	- 간부들 체력단련 관련으로 벌금을 걷은 사실이 있다.	
	- 간부 체력측정과 관련하여 중대별로 측정기준 미달자의 벌금을 지원과장에게 제출한 걸로 알고 있다.	

인권침해 내용	인권침해 관련 진술 내용	진술자
	- 2012. 5월경 사단 체력검정 실시 2~3주전 대대 자체 간부 체력 검정 연습을 하게 되자, 대대장이 특급 기준미달자에 대하여 횟수당 1천원씩 벌금 거출을 지시하였다. 체력검정 연습결과를 체크하여 미달자들에게 1회당 1천원씩 총 00만원 가량을 걷었으며, 약 3일후 본인들에게 돌려주었다. 체력단련 동기부여 차원에서 실시한 것일 뿐, 사적으로 사용한 바 없다.	
	- 2012. 5~6월 경 사단 체력검정이 실시 약 1주일 전에 대대장을 포함한 대대 전간부가 사열대 앞에 모여 연습을 한 적이 있다. 기준에 미달하면 횟수당 1천원을 걷겠다고 하였는데, 누가 말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다. 본인은 연습이 끝난 후 벌금을 냈고, 당시 돈을 걷으면서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약 1~2일후 돌려받았다.	
	- 체력측정을 하는데 합격 기준에 미달이면 1회당 1천원을 받았다. 중대별로 걷어서 모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연대장에게 보낸 메일을 대대장에게도 보내라고 지시	- 연대장이 0대대 간부들에게 인트라넷를 이용해 마음의 편지 메일을 보내라고 하였다. 대대장이 간부들이 보낸 메일 내역을 출력하여 가져오게 지시하여 본인은 연대장에게 보낸 메일을 출력하여 제출한 적이 있다.	관련자 1, 3, 4, 5, 12, 14
	- 연대장이 직접 간부들에게 메일을 보내 2012. 6. 00. 0대대 0중대에서 발생했던 총기 자살사고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부대의 강·약점,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대대장의 지시에 의해 간부들의 마음의 편지 내용을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연대장의 마음의 편지 메일 작성과 관련하여 대대장이 중대장들에게 종합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하여 간부들의 마음의 편지를 취합하여 보고·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연대장에게 쓴 마음의 편지를 중대장에게 그대로 복사하여 준 사실이 있다. 대대장이 지시하여 중대장이 취합한 걸로 알고 있다.	
	- 2012년 5월 ~ 6월경 연대장에게 애로 및 건의사항을 메일로 쓰라고 하였던 적이 있었고, 올해 초에는 메일이 아닌 종이에 써서 제출한 적이 있다. 종이에 쓸 때는 따로 봉투에 봉해서 제출하지 않았고, 중대 행정반 책상에 모아 두면 담당자가 취합하여 대대로 제출하였다.	
	- 연대장이 부대자랑이나 건의사항 등을 쓰라고 지시하여 대부분의 간부들이 인트라넷 메일로 작성했는데 대대장이 참모부 소속의 지원과장에게도 메일을 한통 보내고 연대장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중대급은 중대장에게 메일을 한 통 보내고 연대장에게 보내라고 하였다. 연대장에게 쓴 메일과 동일한 내용의 메일을 중대장이나 지원과장에게 보내라는 것이었고, 메일을 열람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대대장의 욕설·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하여

대대장이 00사단 00연대 0대대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욕설을 하고 일부 장병에게 구타를 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상기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들, 목격자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대대장도 이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대대장이 일부 장병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대대장의 행위는 「군인사법」 제47조의2 및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대대장의 체력측정 관련 금전 거출에 대하여

대대장은 사단 체력검정을 1주일 남겨 놓고 대대 간부들의 체력점검을 해보니 너무 기준 미달이어서 "기준 미달하는 만큼 돈을 모아서 회식이나 하시죠?"라고 하였는데 실제 돈이 걷힌지는 몰랐고, 돈이 걷힌 것을 알고 나서는 돈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직권조사 현장조사를 받은 간부 대부분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대대장이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체력측정 미달자에게 미달 횟수당 1,000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여 미달한 만큼의 벌금을 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대대장이 간부들에게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체력측정 미달자에게 금전을 거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군인복무규율」 제15조(사적제재의 금지) 제1항의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부하직원들의 사전 동의 없이 간부체력 측정 미달자들에게 미달 횟수당 1,000원의 벌금을 거출한 행위는 비록, 사후에 돌려주었다고는 하나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간부들에게 「헌법」 제10조에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연대장에게 보낸 e메일 취합 보고 지시에 대하여

대대장은 중대장들에게, '연대장에게 보내는 e메일 내용 중에 대대장이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나, 가능한 분야에 대한 필수적 내용에 한하여 대대장에게도 미리 인지시켜 줄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나 위원회 직권조사 시 현장조사를 받은 간부 대부분은 상기 인정사실과 같이 대대장이 연대장에 보낸 메일과 동일한 내용을 보내라고 지시하였다는 근거에 의거하여 연대장에 보낸 메일을 출력하여 각 중대에서는 중대장에게, 대대에서는 지원과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취합하여 대대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군인복무규율」 제8조(정직의 의무)는 "군인은 정직하여야 하며,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에는 허위·왜곡·과장 또는 은폐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장의 직근 상급부대 지휘관인 연대장이 직접 간부들에게 메일을 보내 2012. 6. 00. 0대대 0중대에서 발생했던 총기 자살사고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부대의 강·약점,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메일로 수렴하고자 한 사안을 대대장이 본인에게도 같은 메일을 보내라고 지시한 행위는,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해당 간부들에게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대대장의 총기사망사고 축소·은폐 행위에 대하여

대대장의 총기사망사고를 축소·은폐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대대장이 완강히 이를 부인하고 있고, 총기 사망사고로 인한 제00사단 5부의 감찰참모 등 10명이 2012. 6. 30. ~ 7. 2. 대대적으로 조사한 결과, 대대장이 축소 은폐 등을 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직권조사 결과 대대장이 총기사망사고를 축소 은폐하였다는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진정 주장 외 달리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판단된다.

마) 이러한 대대장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의견으로는 피해자 1의 총기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대대장이 기 징계(견책 : 징계유예) 조치를 받았으나, 당시 징계사유에 없는 대대장의 추가로 발견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대대장에게 징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III.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대대장의 욕설·폭행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피해자 1의 총기사고 관련 축소·은폐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 원 양현아 위 원 한위수

[별 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 「군인사법」

제47조의2(복무규율)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군인복무규율」 (대통령령)

제8조(정직의 의무) 군인은 정직하여야 하며,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에는 허위·왜곡·과장 또는 은폐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①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② 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4.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36조(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 근절) ① "구타"란 고의로 손·발·팔꿈치·머리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막대기·야전삽·총기 등 도구로 타인을 가격하여 통증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가혹행위"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이란 법규에 어긋나는 방법이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방법 등을 말한다. 언어추행은 심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인 언어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심한 심리적 충격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문서 등의 수단을 이용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② 국방관서의 장,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시행하여야 하며,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을 은닉할 때에는 사고자 및 관련자를 가중처벌 하여야 한다.

③ 국방관서의 장,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 근절을 위한 장병 의식의 전환에 관한 사항
2. 병영저변의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 유발요인 제거에 관한 사항
3.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병영생활 시설 및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 근절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추행 근절에 관한 관심을 유도·진작시키기 위한 홍보

제243조(자대복무단계 식별) ① 지휘관은 전입신병에 대하여 전입기간 단계별로 집중관리하면서 자살우려자를 포함한 보호·관심병사를 선정한다.

② 지휘관은 각 군별 부대관리주 또는 정밀진단을 위한 각종 기간 등을 활용하여 소속 부대원 신상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한다.

③ 지휘관은 입체적인 신상파악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자살우려자 및 보호·관심병사를 식별한다.

1. 상담 : 지휘관을 비롯하여 주임원사, 자살예방 전문교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등이 간부, 동료, 선·후임 병사, 친구·애인 및 가족 등을 망라하여 실시
2. 상향식 일일결산보고 : 자살징후 인지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보고하되 자살징후 인지 보고시 포상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식별활동 활성화

④ 자살우려자를 식별한 자는 자살우려자 식별 즉시 대대장급 지휘관까지 신속하게 보고하고, 대대장급 지휘관은 전우조를 임명하여 집중 관찰토록 조치하며, 정신과 진료, 비전캠프 또는 그린캠프 입소, 병역심사관리대 등 상급부대로 신속히 분리 조치하는 등 적절한 지휘조치를 취해야 한다.

22 12진정8373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해 상이에 대한 공상 불인정] 2013. 10. 31. 결정

▌결정사항▐

육군참모총장에게, 피해자의 상이구분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해자는 자대 배치 후 선임병들로부터 반복적인 폭언·폭행을 당한 점, 신병교육대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예측을 하였음에도 해당 대대는 피해자를 특별관리하지 않은 점, 부대 지휘관들은 피해자의 고충 호소에도 사실확인 없이 피해자를 비전캠프 등 입소 후 같은 부대로 복귀시킨 점, 피해자에게 달리 자살 기도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는 복무 중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적 압박으로 자해에 이른 것임이 인정되는바, 이는 「헌법」 제10조·제12조가 보장하는 건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그로 인한 후유증은 '공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제12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7조,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3조·제6조

▌진정인▐ 백○○

▌피해자▐ 백△△(진정인의 아들)

▌피진정인▐ 육군참모총장

▌주 문▐ 육군참모총장에게, 피해자의 상이구분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10. 10. 육군 제00사단에 배치된 후 선임병들에게 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당하다가 2010. 12. 18. 소속 부대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현재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다. 이는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임에도, 피진정인은 2011. 자해에 의한 상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전공상(戰公傷) 심사 결과 비(非)공상으로 처리하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1) 제00사단 헌병대로부터 피해자가 자대배치 이후 사고발생 직전까지 선임병 3명으로부터 지속적인 구타와 욕설, 따돌림, 정신적인 가혹행위를 당해 오다가 스스로 목을 매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전공상 심사 결과 비공상으로 처리되어 매월 300만 원에 상당하는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를 자비(自費)로 지출하고 있고, 이에 ○○지방보훈청에 피해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2012. 1. 13. 기각되었다.

2) 사고 직후 선임병인 이○○를 면담하였는데, 이○○가 평소 피부가 희고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를 매우 귀여워하고 좋아했다고 하였고, 사고 직전 피해자에게 강요하여 피해자의 개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성(性)과 관련된 글과 사진을 보면서 놀렸으며, 이후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바로 따라간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중, 피해자의 의식이 일부 돌아온 2011. 8월경 피해자가 이○○ 외 1명으로부터 성폭행(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

3) 사고 직후 피해자가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어 위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사실이 누락되는 등 사건이 축소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료적 진단이 정확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비공상으로 처리되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도 기각된 것이다.

나. 피진정인

육군본부 전공상심사위원회는 2011. 5. 군 검찰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상이구분 심의를 한 결과, 피해자는 내성적 성격 및 선임병들의 잦은 질책, 욕설 등 내무 부조리로 인해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민하다 스스로 목을 매 자해한 것으로, 당시의 전공사상 분류기준에 따라 비공상으로 결정하였다. 2012. 7. 1.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의 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이에 대한 재심사가 가능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소견서, 생활기록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제00사단이 제출한 이○○에 대한 제00사단 보통군사법원 판결문, 소송 및 증거기록(2011고×호), 제00사단 보통검찰부의 이○○, 김○○, 이○○에 대한 폭행 등의 피의사건(2011형제×호) 수사기록, ○○지방검찰청○○지청이 제출한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 조사녹화 CD 사본, 진정인 진술조서, 이○○에 대한 거짓말탐지조사결과 등 수사기록, 국가인권위원회의 피해자 및 진정인에 대한 문답서 및 현장조사보고서, 참고인들에 대한 전화조사 및 문답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인 2009년 징병신체검사에서 1차에는 40㎏ 저체중으로 4급 판정(공익근무요원)을 받았으나, 2차에서 45㎏으로 3급 판정을 받아 2010. 8. 24.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였으며, 입대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나. 육군 제00사단 신병교육대는 현역복무 부적합 정도 측정을 위해 피해자에게 신(新)인성검사를 2회 시행한 결과, 피해자에 대하여 "사고 예측유형상 자살 및 정신장애로 군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조기 전역이 예측"되는 A등급(위험)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면담관찰기록부와 함께 피해자를 육군 제00사단으로 배치하였다.

다. 육군 제00사단 000연대 0대대장은 2010. 10. 12. 피해자가 대대로 전입하였을 때, 신병교육대의 위와 같은 사고예측 기록이 있으나 면접결과 피해자의 성격이 온순하고 내성적인 것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대대장이 관리하는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중대장이 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자로 하향하여 관리하도록 조치하였다.

라. 피해자가 2010. 10. 28. 12중대 ○○소초에 배치된 이후, 선임병인 일병 이○○는 2010. 11. 초순 예비군창고 열쇠를 관물대에 둔 경위에 대한 답변을 잘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를 자신의 이마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때린 사실, 2010. 11. 초순경 장난으로 권투를 하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2회 때린 사실, 2010. 11. 10.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린 사실, 2010. 11. 15. 소총을 생활관에 방치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 2010. 12. 15. 군장검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때린 사실, 2010. 12. 17. 군장검사 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사실이 있다. 또한, 상병 김○○은 2010.

11. 초순 위 예비군 창고열쇠를 관물대에 둔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때린 사실이 있다.

마. 위와 같이 피해자는 자대배치 이후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질책과 놀림, 폭행을 당하여 힘들어 하였고, 평소 표정이 어둡고 허공을 응시하며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등 군복무 부적응 모습을 보였다. 당시 분대장인 병장 금○○는 2010. 11. 초순 일병 이○○와 상병 김○○이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구두경고 조치하였으며, 2010. 11. 19. 피해자로부터 선임병들과의 관계가 힘들다는 고충을 듣고 이를 00중대장 대위 김○○에게 보고하였다.

바. 00중대장 대위 김○○은 ○○소초에 피해자를 배치한 후, 소초 순찰 방문 시 대부분 10분 이내에 복귀하는 등 형식적인 순찰만 하였고, 분대장인 병장 금○○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도 그 경위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군복무 부적응 및 자살우려 병사들에 대하여 인성교육과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인 사단 비전캠프(2010. 11. 22.~12. 3) 및 군단 그린캠프(2010. 12. 6.~12. 10)에 입소시켰다가 다시 ○○소초로 복귀시켜 복무하도록 하였다.

사. 상병 김○○은 2010. 12. 18. 12:30~14:10 피해자와 함께 경계근무를 하던 중 중독성이 강한 게임을 하면 부대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100만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 캐릭터를 처분하라고 강요하였다. 또한, 병장 이○○는 같은 날 16:00경 ○○소초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위와 같은 강요를 받아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 카페'에 로그인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가입한 △△△△ 유저카페, 게임○○ 카페 등에 게시된 성(性)적인 글과 사진을 임의로 열람하였으며, 16:50경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다 먼저 화장실에 간다고 나간 피해자를 1~2분 후 걱정이 된다며 뒤따라 나갔다.

아. 이병 권○○는 같은 날 17:05경 피해자가 화장실 문틈에 활동복 하의 허리끈을 이용하여 목 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소초장 하사 한○○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어 위 한○○ 등 1명이 피해자를 1생활관으로 옮긴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 17:10경 의식불명 상태인 피해자를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다.

자.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1. 1. 5.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되어 민간위탁 치료를 받던 중 2011. 5. 4. 병역면제 처분(의병전역)을 받았고, 전역 후 6개월간 군 병원에서 진료비를 지원받았으나, 전공상 심사 결과 비공상으로 결정된 이후 2011. 11. 4.부터는 자비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인지기능 저하로 보행을 비롯한 모든 일상생활 동작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서,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재활치료 중이다.

차.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은 피해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적 관찰 결과, 피해자의 2010. 12. 18. 자살기도 직전의 정신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사고 당시 폭행, 따돌림, 가혹행위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으며, 그로 인해 자해와 같은 충동적인 행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카. 육군 제○○사단 000연대장은 2011. 3.경 00중대장 대위 김○○에 대하여 피해자와 관련한 지휘감독 소홀로 징계처분(견책)하였고, 육군 제00사단 보통군사법원은 2011. 6. 14. 일병 이○○에게 위 라.항에 전술한 피해자 폭행 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11고×호)하였으며, ○○지방법원(피의자 김○○이 2011. 4. 9. 전역함에 따라 민간검찰에 사건이 이송되어 민간법원에서 판결하였다)은 2011. 10. 14. 상병 김○○이 위 라.항에 전술한 피해자 폭행 사실과 사고 당일 피해자에게 '△△△△' 게임 캐릭터를 처분하라고 강요한 사실에 대하여 상병 김○○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2011고단××××호)하였다.

타. 한편, ○○지방검찰청 ○○지청(피의자 이○○가 2011. 3. 7. 전역함에 따라 민간검찰에 사건이 이송되었다)은 병장 이○○가 2010. 11. 초순 지향사격 자세를 배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부위를 폭행하려고 2회 위협한 사실, 사고 당일 피해자에게 '○○○ 카페'에 로그인하도록 강요하여 성(性) 관련 게시물을 보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현재 수사 중이다.

파. 또한, ○○지방검찰청 ○○지청은 피해자가 ○○소초 근무 중 병장 이○○로부터 20여 회, 일병 이○○로부터 2회에 걸쳐 폭행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2011. 8. 초순 고소를 제기(2011형제××××호)하여, 이를 수사하던 중 2011. 11. 14. 피해자가 피해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가능한 시기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현재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고 재활치료 중이며 신체강직으로 인해 명확한 진술이 어려워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5. 판단

가. 관련규정에 대하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이 연유

되고, 본 조 후단은 이러한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방부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2. 7. 1.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을 통해, 군 복무 중 자해로 인한 사망이나 상이도 공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이거나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자해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는 순직·공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위 훈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의 결정과 다른 권고를 한 때에는 전·공사망에 대한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상이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다[4].

나. 피해자의 상이에 대한 재심사 필요 여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는 입대 전에는 정신과적 문제가 없었으나 자대배치 이후 다수의 선임병들로부터 약 2개월간 반복적인 폭언과 질책, 폭행을 당한 점, 신병교육대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자살 및 정신장애로 인한 사고예측을 하였음에도 대대에서는 피해자를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하지 않은 점, 소속 부대 지휘관들은 피해자가 선임병들과의 관계에 대해 고충을 호소하였음에도 사실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전캠프 및 그린캠프에 입소시킨 후 다시 같은 부대로 복귀시킨 점, 피해자에게 군 복무 중의 어려움 이외에 달리 자살을 기도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현재 일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의 폭행, 따돌림,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는 군 복무 중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감 등 정신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해행위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건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으로서 위 훈령이 정한 공상의 기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육군참모총장에게 피해자의 상이구분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4) 위 훈령은 2014. 3. 12. 개정되어, 상이구분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의 결정과 다른 권고를 한 경우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음(제10조제3항 신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3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 원 장명숙 위 원 한위수

23 12진정8711 [군대 내 가혹행위 및 조치 미흡] 2014. 10. 6. 결정

▌결정사항▐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전공상을 위한 재심사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해자는 선임들의 욕설·폭행, 암기 강요, 내무부조리 및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에 의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전공사상자처리 훈령」상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전공사상자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1691호, 2014. 8. 28)

▌진정인▐ ○○○

▌피진정인▐ 국방부장관

▌주 문▐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전공상을 위한 재심사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군대에서 근무하던 중 선임들의 폭언 및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부대 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투병 중에 있다. 피해자는 선임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하여 상이하였으므로 전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육군본부 중앙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비공상으로 의결된 피해자의 사건과 관련하여, 「전공사상자처리 훈령」(국방부훈령 제1691호, 2014. 8. 28)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전공상 처리 재심사가 가능하다.

다. 참고인의 진술요지

1) ○○○(사건 당시 ○○사령부 ○○○○창 ○○○○대 소속)

참고인은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할 당시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의 가해자이다. 당시 선임들은 거의 매일 후임들을 집합시켜 하루의 잘잘못에 대해 나무랐고, 모든 선임들이 후임들에게 욕설을 심하게 하는 편이었다. 특히 피해자가 잘못을 할 경우 생활관 최고선임은 피해자의 선임들을 혼냈고, 혼난 선임은 다시 피해자를 혼냈다. 피해자 역시 후임이 잘못을 하면 선임들로부터 많이 혼났다.

당시 생활관에는 상병 밑으로는 누워 있지도 못하고 TV시청을 금지하였으며, 부대에서 발생하는 작업은 거의 모두 일병 이하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쉬는 시간도 없었다.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2011. 4. 경에는 특히 작업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건 당시 일병이었던 피해자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가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사건 당시 ○○사령부 ○○○○창 ○○○○대 소속)

참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중대 선임이었으나 의무병이었기 때문에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지는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날 아침에 참고인은 피해자와 잠시 상담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선임에게 경례를 하는 과정에서 자세가 좋지 못하여 선임이 피해자의 자세를 과도하게 교정하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선임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혼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기 얼마 전 대공초소 근무를 할 때, 당직사령이 초소

점검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당직사령은 당시 초소점검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직책 및 임무 등을 물었으나, 피해자가 입대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이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에 당직사령은 피해자를 심하게 혼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무 중에 당직사령에게 지적을 받게 되면 선임들로부터도 심한 갈굼을 당하기 마련이라 피해자 역시 선임들로부터 많이 혼났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참고인들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사령부 헌병대 사건송치기록, ○○사령부 보통검찰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피해자의 전공상 심의표 및 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2010. 12. 20. 입대하여 2011. 1. 28. ○○사령부 ○○○○창 ○○○○대 본부중대에 전입하였으며, 경비소대 소총수로 복무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1. 4. 2. 근무복귀 후 16:35분 경 화장실 출입문 옷걸이에 총기피탈방지끈을 이용하여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 이후 국군○○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다. 최초 검사 소견에는 '신경학적 진찰에서 의식은 명료하나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하고, 자가 발성 불가하여 사지의 중증도의 마비 및 근육의 강직이 관찰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군은 수사결과 별지 1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폭언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일병 ○○○의 초병폭행, 초병모욕, 모욕 등의 피의사실과 일병 ○○○의 초병모욕, 모욕 등의 피의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부친이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가해자들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군의 수사기관에서 부대원 대상으로 설문지 및 면담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별지 2와 같다. 한편, 당시 부대에는 상병 아래로는 누워 있거나 TV시청이 금지되었고, 부대에서 발생하는 작업은 거의 모두 일병 이하에서 처리하는 부조리가 있었다.

라. 피해자는 2012. 11. 22. 육군본부 전공상심사에서 '환자가 부대 내 부조리 상황에서 처해져 있었음은 인정되나, 전공상 분류기준표 2-14-3에서 말하는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이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공상'으로 처리되었다.

마. 2014. 8. 28. 개정된 국방부의 「전공사상자처리 훈령」은 개정 전의 판단 기준이었던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의 요건을 삭제하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

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를 한 경우'에 전공상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상이구분에 있어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이 군의 상이구분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때 재심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판단

부대에 새로 전입 온 신병은 일정기간 동안 일반사회와 다른 군대내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부대 지휘관은 물론 선임들로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입 후부터 약 2개월 동안 병기 제원 등을 암기하지 못하였다거나 후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임인 ○○○과 ○○○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 및 인격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사건 당일에는 선임인 ○○○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대공초소 근무 중 폭행까지 당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치욕스럽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임들로부터 심하게 질책을 받았고 가해자들이 다른 선임에게도 연속적으로 질책당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부대원들이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가 가혹행위에 따른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암기사항 강요, 생활관에서 TV 시청 금지, 부대작업 수행 등 일병이하 계급 병사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부대 분위기 또한 신병으로서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는 선임들의 욕설·폭행, 암기 강요, 내무부조리 및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에 의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전공사상자처리 훈령」 상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의무병역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의무복무자에 대한 관리 및 보호범위는 두터워야 하며 이러한 보호장치가 미흡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과 권리구제는 더욱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직무수행 중에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로 인하여 상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전공상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0. 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영하 위 원 김성영 위 원 이선애

[별지 1] 피해자의 피해내용

1. 일병 ○○○ 관련

가. 2011. 4. 2. 05:00 경 ○○○○창 정문 위병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동반근무 중 영내 교회로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 출입하는 참모장 대령 ○○○(가족동반)이 차에서 내려 "참모장이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수하를 하지 않고 바리케이트를 열어주어 통과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새끼야! 얼마 전에 경계교육 받은 새끼가 왜 신원확인을 하지 않느냐?"라며 욕설을 하였다. 또한 잠시 후 보훈처장 중령 ○○○이 가족 차량 출입을 하였는데, 이때에도 피해자가 재차 신원확인을 하지 않고 통과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조금 전에 지적 받았는데 또 그러느냐?"라면서 5분간에 걸쳐 욕설을 한 후 오른발로 피해자 왼쪽 정강이를 한 대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나. 2011. 2. 중순 20:30경 ○○○○창 ○○○○대 경비소대 3생활관 내에서 피해자가 바닥을 빗자루로 청소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청소를 할 때 한 번에 해야지 왜 쓰레기가 나오게 하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다. 2011. 2. 중순 14:00경 ○○○○창 ○○○○대 경비소대 3생활관 내에서 피해자가 생활관 정리를 하지 않자 "야 씨발년아 생활관 정리를 항상 해야지, 생활관이 왜 이 따위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라. 2011. 3. 초순 19:00경 ○○○○창 ○○○○대 5분대기조 상황대기실 내에서 피해자가 개인임무를 숙지하지 못하자, "야 씨발년아 개인임무도 모르면서 어떻게 임무수행을 하려고 하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마. 2011. 3. 초순 21:00경 ○○○○창 ○○○○대 5분대기조 상황대기실 내에서 피해자가 소화기 들고 뛰는 중 안전고리를 땅바닥에 떨어뜨리자 "씹새끼야 그거 하나 들고 뛰는게 뭐가 힘들다고 떨어뜨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오게 만들고 지랄이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바. 2011. 3. 중순 19:00경 ○○○○창 ○○○○대 경비소대 3생활관 내에서 피해자가 생활관에 오지 않고 5분대기조에만 있다는 이유로 "5분대기조 지원 나갔다고 생활관 일 안하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사. 2011. 3. 말 19:00경 ○○○○창 ○○○○대 경비소대 3생활관 내에서 피해자의 후임병인 ○○○, ○○○가 전혀 군가를 하지 못하고 외우지도 못한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맞후임들 군가도 교육시키지 않고 왜 지랄이야? 뭐가 바쁘다고 군가도 안 알려주냐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아. 2011. 3. 말 19:00경 ○○○○창 ○○○○대 경비소대 3생활관에서 피해자의 후임병인

○○○이 생활관에서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후임병 관리를 똑바로 하라니까 왜 이따위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2. 일병 ○○○ 관련

가. 2011. 3. 5. 15:30 경 ○○○○창 ○○○○대 5분대기조 상황대기실 내에서 피해자가 5분대기조 근무시 근무자가 꼭 알아야 할 M60 제원, 특성을 암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 그냥 편안히 해주니까 개념을 잃어버렸냐?, 너 계급이 이등병 맞냐? 내가 아무 말 안하니까 외울 것 안 외우고 마냥 TV보고 노는 거냐? 그래도 기본은 해야 되는 것 아냐? 나도 처음에는 존나 외웠어. 한번 외우면 다음에 편하니까. 누가 너보고 놀지 말래? 할 것은 하고 쉬어야 될 것 아냐? 내가 우습냐? 캠프 왔냐? 여긴 군대야 밖에서 하던 행동, 생각 다 버려. 너 이미지만 망가진다. 너 때문에 남한테 피해 입히지 마라. 욕먹기 싫으면 알아서 잘 하라고" 등의 욕설과 모욕을 하였다.

나. 2011. 3. 20. 16:00경 ○○○○창 ○○○○대 경비소대 2생활관 내에서 피해자가 생활관에 오지 않고 5분대기조에만 있었다는 이유로 "야 5대기차면 생활관 신경 안 쓰냐? 지원나가니까 존나 편하지? 너 후임들 관리 안하냐? 내가 일일이 군가 가르쳐주고 다 하리? 씨발년아 너가 하는게 뭐냐? 씨발 너가 그렇게 하면 나도 너한테 좆같이 해줄까? 신경 좀 써라 내가 언제까지 하나하나 신경써야 되는데? 벌써부터 그딴 식이면 일병되면 아주 손 놓겠다? 말 좀 해봐 씨발새끼야" 라고 욕설과 모욕을 하였다.

다. 2011. 3. 26. 14:00경 ○○○○창 ○○○○대 경비소대 2생활관 내에서 피해자가 맞후임들에게 임무상태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너 도대체 한 것이 뭐냐? ○○, ○○이 일주일동안 뭐 가르쳤는지 말해봐" 묻자 피해자는 "하루에 한 개씩 군가 가르치고 있다"라고 답하자, 격분하여 "겨우 그거 하나? 와 그게 잘 한 거냐? 정말 대단하구만, 5분대기조라 노느라 바쁘지? 생활관 돌아와서 보자. 그런 정신상태 바꿔 줄 테니까 씨발년아. 야 알겠냐고?"라고 욕설과 모욕을 하였다.

라. 2011. 4. 2. 14:30경 ○○○○창 대공초소 앞에서 피해자의 선임인 이병 ○○○이 ○○○에게 인사를 하고 난 후 피해자가 같은 선임인 일병 ○○○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는데, 피해자가 먼저 ○○○에게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너 지금 뭐하냐? 나랑 장난하냐?"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착각 하였습니다"라고 변명하였다. 이에 ○○○가 "존나 변명하네, 씨발놈이, 죄송합니다 한 마디 하면 될 것을, 너가 못하는데 너 밑에 후임애들한테 뭘 가르치겠냐? 쪽팔리지도 않냐? 답답하다 답답해"라고 말을 한 후 ○○○과 ○○○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이 새끼 아직까지 맞경례도 못해, 진짜 어떡하냐, 답답해 미치겠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과 모욕을 하였다.

마. 2011. 4. 2. 15:00경 ○○○○창 대공초소 앞에서 대공초소 근무 당시 당직사령인 인사과장

소령 ○○○이 피해자에게 신호규정 적발견 호각을 물어보았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야 너 왜 대답 안했냐?"라고 묻자 "알고는 있었는데, 대답을 못했다"라고 답한 것에 격분하여 "그럼 알고 있었는데 왜 대답 안하냐고! 미쳤냐? 너 벙어리야? 알고 있으면 뭐해 대답을 못하는데, 그게 알고 있는 거냐?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물어봐야 돼? 원래 몰랐으면 몰라, 저번에 다 알고 있더니 그 사이 까먹은 거냐? 내가 진짜 널 어떻게 해줘야 되냐? 나중에 후임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씨발 새끼야! 진짜 마지막이다. 제대로 숙지해라 아오..."라고 욕설과 모욕을 하였다.

바. 2011. 4. 2. 15:30 경 ○○○○창 대공초소 앞에서 피해자가 멍하니 저장지역 쪽만 바라보고 있다는 이유로, "너 뭐하냐? 자냐?", "왜 한곳만 바라보고 있냐? 대공초소 부사수 바라보는 방향도 몰라?", "어떻게 근무 나간지 한 달이 넘었는데 그것도 모르냐? 너 진짜 돌았냐? 대공초소근무요령 종이 못 봤냐? 거기에 나와 있잖아! 근무 나갈 기본도 안 되어 있네, 아오, 근무서는 부사수 방향은 막사에서 저장지역이다. 제대로 숙지해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차고 있던 귀마개가 위치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트집 잡아 "귀마개를 어디에 두는 것이 맞을까?"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건빵주머니 속에 넣는 것이 맞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왜 아는데 그렇게 안하고 도대체 왜 거기에 두는 거냐? 씨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맨날 말하지 않냐? 개념은 밥 말아 먹었냐? 돌았냐? 아오... 제발 너 멋대로 행동하지 좀 마라"라고 하는 등 욕설과 모욕을 하였다.

[별지 2] 부대원 대상 설문·면담 조사 결과

1. 사고자는 전입 후 군가, 초병근무수칙, 경계근무요령, 간부와 중대선임의 이름·계급을 외우는데 힘들어 하였고, "생활관을 바꾸면 안되냐?" 라는 요청에 "안된다"라는 답을 듣고 표정이 어두워졌다.
2. 매월 마지막 주말에는 일병 ○○○·○○○가 이등병들을 모아놓고 간부이름, 군가, M60제원, MG50제원 등에 대해 시험을 보고, 성적이 저조한 인원들에게 욕설, 비하 발언을 일삼았으며, 휴식시간을 빼앗았다.
3. 피해자가 근무지에서 잘못 할 경우 근무시간(2시간) 내내 질책하고 복귀 후 다른 선임병들에게 떠벌려 릴레이식으로 질책 당하게 하는 등 힘든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4. ○○○과 ○○○는 평소 피해자를 치욕스럽고 불쌍하다 생각될 정도로 심하게 질책하였다.

24 13진정3558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등 인권침해] 2014. 4. 10. 결정

▌결정사항 ▐

[1] 육군참모총장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순직처리를 위한 재심사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

▌결정요지 ▐

[1] 피해자는 선임병들로부터 폭행 및 암기강요를 당하였다.
[2] 부대 지휘관 및 간부들은 피해자가 막 전입온 신병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인 약 1개월 동안 피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3]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하여 제1차 전공사망심사에서는 '부친의 자살, 부친에 대한 그리움' 등 개인적인 사정이 주요원인이었다고 하나, 피해자 부친의 사망은 2009년에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자살 시점인 2012년과는 상당 기간 차이가 있다.
[4] 피해자의 사망은 사건 직전 1개월간 있었던 급격한 생활의 변화와 그 안에서 지속·반복되어 온 폭행·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우리나라와 같이 의무병역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군 부대의 관리·감독 등의 미비로 인하여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권리구제의 필요성 및 보호범위는 더욱 두터워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10조 제3항

▌진정인 ▐ ○○○(피해자의 고모)

▌피해자 ▐ ○○○

▌피진정인 ▐ 1. ○○○ 2. ○○○ 3. ○○○
4. ○○○ 5. 육군참모총장

▌주 문 ▐ 1. 육군참모총장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순직처리를 위한 재심사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고모이고, 피해자는 2012. 8. 7.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선임병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당하다가 2012. 10. 21. 자살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가. 피해자의 유서 및 수사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병사 9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가해병사 9명 중 2명만 기소하는 등 축소수사 하였다.

나.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자살은 전입 이후 수차례에 걸쳐 발생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2, 3, 4

피진정인들은 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폭행 및 내무부조리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자들을 조사하였고 관련자 9명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의해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였다.

2) 피진정인 5

피해자는 2012. 10. 21. 자살에 의해 사망하여 전공사망자심의위원회에서 일반사망으로 의결되었으나,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의 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순직처리 재심사가 가능하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변사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면담·관찰 기록부, 송치서, 의견서,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 관련 병사 및 간부징계처분장, 전화조사보고, 피해자의 부친 사망신고서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2012. 8. 7. 입대하여 2012. 9. 18. 육군 제○○사단 ○○○연대 ○대대 ○중대 박격포 탄약수로 복무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2. 10. 15.에 상향식일일결산에서 분대장을 통해 중대장에게 아버지 기일이라고 보고를 하였고, 같은 달 17. 진정인이 중대장과의 통화에서 "부친 기일이 맞다."라고 하여 피해자는 같은 달 20. 외박을 나와 유서를 작성한 후 다음 날인 21. 14:34경 ○○○○시 ○○구 ○○동 소재 마트에서 번개탄 및 라이터를 구입하고 같은 날 16:15경 ○○○○시 ○○구 ○○동 ○○-○○에 소재한 다세대주택 반지하 보일러실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가스배관에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선임들 때문에 힘들다', '각종 폭언과 모욕과 간접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부대원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서 수리 등을 통하여 ○○○○사령부 헌병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가 자대배치 이후 사망 전 약 1개월 동안 별지 1의 내용과 같은 지속적인 폭언·폭행 및 암기강요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관심병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인 약 1개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면담은 4차례 정도 진행되었다.

마. ○○○○사령부 헌병단은 2012. 12. 13. 사망원인수사보고서에서 '사망자는 내성적이지만 부대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적응하기도 전에 선임병들로부터 계속되는 폭행과 가혹행위, 폭언과 욕설 등을 받아오다가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삶의 회의를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하였다.

바. 피해자는 육군본부 전공사망심사에서 2013. 2. 21. 사망 분류기준 중 일반사망으로 처리되었다.

사. 피해자의 사망조사보고서에는 피해자의 부친이 자살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전공사망심사에서 일반사망 처리 사유가 군부대내 구타·가혹행위에 의한 것 보다는 '부친의 자살 등 개인적인 사유가 더 큰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견과 '유서에 부친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점 등을 고려시 개인적인 성향과 자유의지에 의한 사망'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부친은 2009년 태국 주차장에서 주차 중에 일반 추락사하였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해자는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의 인권을 침해당한 것이 확인되나, 이에 대하여는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였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조치 및 행정상의 조치를 취한 것이 확인되며 동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함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항 진정요지는 위원회의 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망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약 1개월의 기간 동안 선임병들로부터 정강이나 목 부위 등에 폭행을 당하고, 암기를 강요받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폭언 및 인격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부대 지휘관 및 간부들은 피해자가 막 전입온 신병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인 약 1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필요한 면담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어려움 및 내무 부조리에 대한 심적 부담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군 생활 적응검사에서 '자살의 위험'이 나타나는 등 피해자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 부대의 병력 관리에 있어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하여 제1차 전공사망심사에서는 '부친의 자살, 부친에 대한 그리움' 등 개인적인 사정이 주요원인이었다고 하나, 피해자 부친의 사망은 2009년에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자살 시점인 2012년과는 상당 기간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유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사건 직전 1개월간 있었던 급격한 생활의 변화와 그 안에서 지속·반복되어 온 폭행·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헌병대 사망사건보고서 및 전공사망심사에서는 피해자 부친의 사인을 자살에 의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사망신고서에는 자살이 아닌 추락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의 자살 원인이 부친의 자살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군대 내에서 지속되어 온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피해자는 군대 내에서의 폭행 및 가혹행위와 이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살한 것이 인정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의무병역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군 부대의 관리·감독 등의 미비로 인하여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권리구제의 필요성 및 보호범위는 더욱 두터워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직무수행 중에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바, 순직처리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4. 1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영하 위 원 김성영 위 원 이선애

[별지 1] 피해자의 피해내용

1.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가. 상병 ○○○ 관련

1) 2012. 10. 1.(월) ~ 12.(금) 시간불상경 생활관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타 중대원을 포함 대대원 전원의 이름, 소속, 입대월 등을 물어보고 답하지 못할시 "아직도 못 외웠냐?, 티비 보지 말고 관물대 보면서 외워"라는 등의 말을 하며 3회에 걸쳐 대대인원 현황을 강제로 외우도록 강요하였다.
2) 2012. 10. 초순 시간불상경 생활관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약 9회에 걸쳐 "어떻게 진행되어 가냐?, "여자는 뭐하고 지내냐?, 빨리 연락해 봐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여자를 소개해 달라고 강요하였다.
3) 2012. 10. 15.(월) ~ 19.(금) 시간불상 경 연병장 등지에서 공용화기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투화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5회에 걸쳐 각각 5회씩 걷어차는 등 총 25회의 폭행을 하였다.
4) ○○○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형사입건,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2012. 10. 26. 구속되었으며, 2012. 12. 10. ○○○○사령부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의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병장 □□□ 관련

1) □□□은 2012. 9.말경 암구호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고 경계근무 요령 등을 외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빨리 가서 쳐 외워라"라며 강요하였다.
2) 2012. 9.말 ~ 10. 초순 시간불상경 생활관 등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장난을 목적으로 손날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에 걸쳐 때려 폭행하였으며, 같은 해 10. 12.(금) 피해자가 소개해준 여자에게 애인이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며 손날부위로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에게 2012. 10. 초순경 일일 식단표의 메뉴를 물어보고 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선임은 외우는데 넌 왜 못하냐?"라고 질책하며 약 8회에 걸쳐 식단표 메뉴를 외우도록 강요하였다.
4) □□□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형사입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2012. 10. 26.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군 전역 이후 □□지검 □□지청으로 이송되어 2013. 10. 25. 1심에서 벌금1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4. 3. 7.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다. 상병 △△△ 관련

1) 2012. 9.말 15:00경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임무숙지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총 5회에 걸쳐 침상위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약 1분간 벽면을 바라보고 머리를 흔들게 하는 행위를 지시하였다.

2) 2012. 10. 15. 12:00경 생활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후임 5명에게 공용화기 훈련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약 5분가량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
3) 2012. 10. 17. 12:00경 피해자를 포함한 후임 4명에게 공용화기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들아 너희가 우리 중대라는게 창피해. 씨발 못하면 대답이라도 크게 해야지. 너흰 사람도 아니야, 동물이야."라며 욕설을 하였다.
4) 2012. 10. 16. ~ 19. 사이 21:15경 피해자를 포함한 후임 7명에게 "너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부대가 이렇게 빡빡해졌다. 원래부터 좋았는데 이제부터 너희를 편하게 풀어주지 않겠다"라며 질책하였다.
5) △△△은 위 내용 등이 인정되어 징계위원회 회부 및 2012. 10. 29.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라. 일병 ▽▽▽ 관련

1) 2012. 9. ~ 10. 중순 일자불상경 생활관 및 전투화세척장에서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말 좀 또박또박 해라."라며 질책하였으며, 선임병들이 말할 때 웃는다는 이유로 비꼬며 "웃냐?"라고 하며 혼을 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기간 점심시간에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야 임마 선임들은 일하는데 전화를 쳐하냐?"라며 욕을 하였고, 피해자 포함 이등병 전원에게 식단표를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제 좀 외우자 새끼들아."라며 욕설 및 식단표 암기를 강요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대화 중 계속하여 "죄송합니다. 아닙니다."라는 말만 반복하자 정색하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라는 말 쓰지마라."라고 질책하였고, "□□이(피해자 이름) 눈 소만하겠다. 소 울음소리 흉내내봐."라고 하여 소 울음소리를 내도록 하는 등 인격모독을 하였으며, 피해자 포함 이등병들에게 81mm 제원 및 포에 대한 내용을 외우도록 강요하였다.
2) ▽▽▽는 위 내용 등이 인정되어 징계위원회 회부 및 2012. 10. 29.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마. 일병 ◇◇◇ 관련

1) 2012. 10. 초 일자불상경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대대원과 근무 투입방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이 새끼 너 내일 모레 근무 들어가는데 아직도 모르면 어떻게 하냐?"라며 폭언을 하였고, 총기현황판을 잘못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미쳤냐? 왜 거기다 적냐?" 라며 폭언을 하였다.
2) ◇◇◇는 위 내용 등이 인정되어 징계위원회 회부 및 2012. 10. 29.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음.

바. 일병 ○○○ 관련

1) 2012. 9.말 ~ 10.초 일자불상 경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대대원의 입대월 이름 소속을 못

외웠다는 이유로 "넌 씨발 병신도 아니고, 이딴거 하나 못 외우냐?", "개병신 머리가 멍청하냐?" 등 약 3회에 걸쳐 각각 1회에 5~10분 가량 욕설을 하였다.

2) ○○○는 위 내용 등이 인정되어 징계위원회 회부 및 2012. 10. 29. 휴가제한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사. 이병 ▲▲▲ 관련

1) 2012. 10. 셋째주 일시불상경 당직대에서 본인이 전달사항을 잘못 전달하여 혼나기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원래 전파 받았잖아."라며 책임을 전가시키는 누명을 씌웠다.

2) ▲▲▲은 위 내용 등이 인정되어 징계위원회 회부 및 2012. 10. 29. 휴가제한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아. 이병 ●●● 관련

1) 2012. 10. 19. 16:00 경 사격장에서 고폭탄 사격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방상내피를 챙겨오라 했으나, 다른 방상내피를 가져와 "처음 입은 깔깔이(방상내피)인데, 내꺼 어딨냐고?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2) ●●●은 위 내용 등이 인정되어 징계위원회 회부 및 2012. 10. 29. 휴가제한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자. 병장 ▼▼▼ 관련

1) 2012. 10. 2. ~ 12. 사이 일자불상경 청계산에서 피해자에게 "너 소 닮았어, 소□□" 이라며 인격을 모독하였다.

2) ▼▼▼은 위 내용 등이 인정되어 징계위원회 회부 및 2012. 10. 29. 휴가제한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2. 부대의 지휘·관리체계 관련

가. 대대 인사과장(중위 ◆◆◆) 관련

1) 2012. 9. 17.(월) 대대로 전입 온 피해자에 대한 신인성검사를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다음날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재검사 요망임을 확인하고 중대장에게 알렸으나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2주 후에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전입신병에 대한 인사실무자로서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은 위 내용이 인정되어 2012. 10. 29.「군인사법」제56조(징계사유)의 규정에 따라 견책처분을 받았다.

나. 행정보급관(원사 ▱▱▱) 관련

1) 피해자가 전입 온 직후 최초면담 결과 특이사항이 있음을 확인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하였으나, 이후 병영상담관으로서 관심병사인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인 면담을 하지 않았으며 대대 내 심각한 내무부조리가 있음에도 이를 식별하지 못하였다.
2) ▱▱▱는 위 내용이 인정되어 2012. 10. 29.「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유)의 규정에 따라 견책처분을 받았다.

다. 중대장(대위 ■■■) 관련

1) 피해자가 전입시 군생활적응검사(MAI)에서 '자살의 위험성'이 있어 즉각적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하도록 평가되었으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신병인 피해자가 약 1개월간 군생활을 하는 동안 불과 2~3차례 정도만 면담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면담기록 역시 연대통합행정시스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피해자의 상태를 상급 지휘관 및 타 간부와 공유하지 못하였다.
2) ■■■은 위 내용 일부가 인정되어 2012. 11. 16.「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유)의 규정에 따라 근신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라. 대대장(중령 □ □ □) 관련

피해자의 최초 면담 결과 문제가 있는 병사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따른 조치가 미비하였으며 소속대 병사들 사이 내무부조리가 있었음에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

25 13직권22, 13진정6159(병합) [육군 제○사단 폭행 및 성추행 사건 직권조사] 2014. 5. 1. 결정

▌결정사항 ▐

[1] 국방부장관에게,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부대 파견 의무병의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업무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2]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의 욕설, 폭행 및 가혹행위, 성추행 등의 행위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성추행 행위는 해당부대에 갓 전입온 후임병으로서 선임병의 언행에 강하게 저항하기 어려운 군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 및 보편적인 정서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시킨 점이 인정됨.

따라서, 피진정인 1, 피진정인 2 및 피진정인 3의 행위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제1항 및 「군형법」 제62조, 제92조3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음. 이에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가 전역을 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2] 부대 내에서의 폭행·가혹행위를 방지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마음의 편지' 등에 대한 업무는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해당 부대에서는 이를 소홀한 점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파견 의무병 사이에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이는 「군인사법」 제47조2, 「군인복무규율」 제15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 후단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기본권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임.

따라서, 국방부 차원에서 파견 병력의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업무 매뉴얼 등을 구비하여 향후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참조조문 ▐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형법」 제47조·제92조의3, 「군인복무규율」 (대통령령) 제15조

▌주 문 ▐ 1. 국방부장관에게,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부대 파견 의무병의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업무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제0사단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 11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3.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의 욕설, 폭행 및 가혹행위, 성추행 등의 행위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의뢰한다.

4. 진정요지 1), 2), 3), 5), 7), 8), 9), 11), 12)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4)중 피진정인 3에 대한 부분과 진정요지 6)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이 유 ▐

1. 직권조사의 배경

'피해자가 2012. 10. 초순부터 2013. 4.까지 부대 내에서 부대 선임들로부터 폭언, 폭행 및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정이 제기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초조사결과 의무대의 특성화된 병영악습을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위 진정사건과 병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진정사건 개요

가. 당사자

1) 진정인 : 임○○

2) 피해자 : 임○○

나. 진정요지 : 피해자는 2012. 10. 제0사단 00연대 의무중대 전입 후 약 6개월 동안 선임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욕설, 성추행, 폭행,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1) 2012. 10. 유격훈련 중 피진정인 9는 점심 식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많이 처먹어

라."면서 창피를 주어 피해자가 "말씀이 지나치신 것 아닙니까?"라고 하자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쳤고, 옆에 있던 피진정인 10은 "개념이 없다. 그게 선임에게 할 말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힐책하였다.

2) 2012. 10. 하순경 피진정인 5는 제2생활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저 새끼, 또라이 새끼"라 하고, 피진정인 4, 피진정인 7 및 피진정인 10은 피해자에게 "저 새끼 미친놈 같다.", "개 폐급이 들어왔네" 등 욕을 하였다.

3) 2대대 파견 근무 기간 중에 피진정인 1, 피진정인 2 및 피진정인 3은 피해자에게 모든 업무를 부당하게 시켰고,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2012. 11. 하순경 계단을 쓸다가 넘어져 다리를 다친 이후 지속적으로 다리 상태를 보고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2대대 파견 근무 기간 중에 피진정인 1, 피진정인 2 및 피진정인 3은 업무 미숙과 실수, 흡연, 장시간 샤워 등을 빌미로 머리박기와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성기를 발로 차거나 베개로 때리고, '좆개'(좆같은 개년)라 부르고, 이마에 딱밤을 때리고, 귀를 깨물고, 연병장을 돌게 하고, 다리털을 뭉쳐서 뽑는 '개미'를 하거나 배 밑에 메스를 대는 '블레이드'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비롯한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5) 2013. 1. 중순경 피진정인 4는 약제실에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차고 뒤통수를 1회 때렸고, 피진정인 5와 피진정인 8은 의무생활관에서 피해자를 협박했으며, 피진정인 5는 건조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정도 쳤다. 또한 같은 기간에 병가를 내려 할 때 피진정인 4와 피진정인 10은 피진정인 3이 낸 악의적인 소문을 듣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6) 2013. 2. 2. 피진정인 4는 피해자가 입실생활관에서 22:00 이후에 랜턴을 켜고 책을 보았다는 이유로 다음 날 아침 점호 중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대 때렸다.

7) 진정요지 6) 사건 이후 피진정인 4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피진정인 10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물건을 뒤지고 관찰하도록 하였고, 피진정인 5와 피진정인 6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욕하고 폭행하였고, 피진정인 7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자주 던졌으며, 피진정인 10은 욕을 심하게 하고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소문을 부대 내에 퍼뜨렸다.

8) 2013. 3. 하순경 중대장인 피진정인 14는 피해자의 신인성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 피해자를 상담하였고 이후 피해자, 피진정인 3 및 피진정인 4의 진술서를 받았는데,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면서 진술서를 부당하게 폐기하였다.

9) 2013. 4. 하순경 피진정인 5는 피해자가 예비군 동원훈련 지원을 하던 중에 생활관에 군장을 제대로 놓지 못했다면서 욕을 하고 폭행을 하였다. 그리고 피진정인 9는 피해자에게 환자 현황을 최신화시키지 않았다고 “씨발 새끼”라고 하였다.

10) 2013. 4. 하순경 예비군 동원훈련기간 중 목발을 짚고 예비군 생활관을 청소하는 피해자를 본 예비군들이 피진정인 11에게 “불쌍하다. 왜 청소를 시키냐?”라고 묻자 피진정인 11은 “피해자가 관심병사고, 또라이다.”라고 대답하였다.

11) 피진정인 12는 피해자에게 포상휴가를 보내지 않았고, 피해자가 목발을 짚고 다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말 피해자를 혹한기 훈련에 참여시켰고, 그 이후에도 일반 병사와 같은 생활을 하도록 하고 커피 심부름을 시켰으며, 피해자에게 “목발을 짚고 다니다가 생식기를 목발로 치고 다닐 수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비꼬는 발언을 하였다.

12) 헌병대 수사관인 피진정인 13은 피해자에게 “잘못 진술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거나,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등의 위협을 하여 피해자가 양심에 따라 진술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였고, 성폭력 피해자인 동시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인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로 압박을 가하고, 피진정인 3 및 피진정인 4와 대질을 시킴으로써 2차 피해를 유발하였다.

3. 피진정인, 피조사자, 참고인 현황

별지 기재 2와 같다(피조사자 진술 요지는 별지 기재 3 참조).

4. 관련규정

별지 기재 1과 같다.

5.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 제0사단에서 제출한 피해자 면담기록일지,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관련 서류, 제0사단 00연대 의무중대 징계관련 서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관련 피조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초사실

1) 피해자는 2012. 7.말 입대하여 같은 해 10. 8. 육군 제0사단 00연대 의무중대에 전입한 이후 같은 해 11. 7.부터 다음해 1. 17.까지 2대대에 파견되었다가 복귀하였다. 파견기간 동안 피해자는 피진정인 1, 피진정인 2 및 피진정인 3과 같이 생활하였는데, 피진정인 2는 2012. 12. 12. 타 부대로 전출하였다.

2) 피해자가 파견된 2대대는 2012. 11. 7.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그 기간동안 대대병력 전체가 컨테이너 막사에서 생활을 하였는데, 파견 의무병들은 따로 컨테이너 막사에서 생활하다가 공사 종료 후 수송병, 취사병 등과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였다.

나. 진정요지 1) 관련

피진정인 9는 진정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진정인 10은 선임에게 버릇없는 말을 해서 이를 지적한 발언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이를 목격한 참고인 10은 피진정인 9가 "선임병한테 너무 막말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배를 툭 쳤지만 이를 폭행으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진정인 9와 피해자간에 언쟁이 있었고 피진정인 9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배를 친 것과 피진정인 10이 피해자를 질책하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피진정인 9와 피진정인 10의 언동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진정요지 2) 관련

피진정인 10은 당시 유격훈련이 끝난 다음날이라 새벽까지 행군을 하여 오전 내내 취침을 하였기 때문에 진정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하고, 피진정인 4, 피진정인 5 및 피진정인 7도 진정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진정 주장 외 달리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라. 진정요지 3) 관련

피진정인 1, 피진정인 2 및 피진정인 3은 피해자가 업무숙지를 못하고 실수를 자주하여 업무량이 조금 많은 편이었지만 부대원들이 모두 바쁘게 근무했다고 진술하고,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다리를 다쳤을 때 사단의무대 등에서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00연대 의무중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국군일동병원(2012. 12. 18., 12. 27., 12. 31., 2013. 1. 3)과 국군수도병원(2013. 1. 11.)에서 진료

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진정요지 3)과 관련하여 진정 주장 외 달리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4) 관련

1)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1은 진정 주장 중 머리박기, 엎드려 뻗쳐, '개미'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베개로 성기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피진정인 2는 진정 주장 중 양쪽 다리를 잡고 다리 사이에 발바닥으로 성기를 문지르는 '오토바이'를 하고 피해자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좆개'라고 부른 사실을 인정하며, 피진정인 3은 진정 주장 중 딱밤, 엎드려 뻗쳐, 머리박기, 좆개, 연방장 돌기 등의 폭언 및 가혹행위를 한 것과 장난으로 피해자의 귓바퀴를 깨문 사실을 인정하면서 파견근무 당시 피진정인 3 이외에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도 피해자에게 머리박기, 엎드려 뻗쳐, '개미', 좆개, 연병장 돌기 등의 폭언과 가혹행위를 하고 베개로 성기를 때렸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참고인 1, 참고인 3, 참고인 8, 참고인 9 및 참고인 13은 피해자에 대한 폭언 및 일부 가혹행위를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병실생활을 같이 한 참고인 2는 피해자로부터 진정요지의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 1, 피진정인 2 및 피진정인 3이 피해자에게 욕설, 폭행 및 가혹행위, 성추행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제0사단 00연대 2대대 파견근무 기간에 피진정인 3으로부터 욕설, 폭행 및 가혹행위, 성추행을 당했다며 2013. 6. 12. 제0사단 헌병대에 고소하였는데, 피진정인 3이 2013. 11. 5. 전역하여 해당 사건은 민간검찰로 이송되었고 현재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다) 피진정인 1은 2013. 3. 19. 전역하고 피진정인 2는 2013. 5. 21. 전역한 상태여서 피해자는 2013. 6. 12. 제0사단 헌병대에 피진정인 3을 고소할 당시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에 대하여는 고소하지 않았다.

2) 판단

피진정인들이 위 인정사실 (가)와 같이 한 행위는 해당부대에 갓 전입온 후임병으로서 선임병의 언행에 강하게 저항하기 어려운 군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 및 보편적인 정서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시킨 점이 인정된다.

특히, 강제추행 등 성폭력 행위는 단순한 신체에 대한 물리적 폭행에 따른 피해행위에 비하여 그 피해가 쉽게 회복되기 힘들고 기본권의 침해에 따른 해악이 깊어 사회적 비난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1, 피진정인 2 및 피진정인 3의 행위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제1항 및 「군형법」 제62조, 제92조3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조치의견

가) 피진정인 1 및 2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가 전역을 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3에 대하여

피진정인 3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현재 ○○지방법원에서 재판 진행중에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각하 대상에 해당된다.

바. 진정요지 5) 관련

피진정인 4, 피진정인 5, 피진정인 8 및 피진정인 10은 진정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진정 주장 외 달리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사. 진정요지 6) 관련

피진정인 4는 현재 ○○군사법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 진행 중에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각하 대상에 해당된다.

아. 진정요지 7) 관련

피진정인 4, 피진정인 5, 피진정인 6, 피진정인 7 및 피진정인 10은 피해자에게 욕설 또는 폭행을 하거나 감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진정 주장 외 달리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자. 진정요지 8) 관련

피진정인 14는 2013. 3. 24. 신인성검사 이상 소견이 나온 피해자를 면담한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들의 진술서를 받고 가혹행위와 폭행 등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였으나 피해자의 부친이 전화면담에서 처벌보다 원만한 해결과 긍정적인 마무리를 원하여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을 군인트라넷 '면담 및 관찰기록'에 기록하였기 때문에 부대 전출 시 진술서를 파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면담 및 관찰 기록지'에는 "2대대 파견 당시 여러 가지 문제로 선임병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흡연으로 인해 제재를 당하고, 과도한 장난의 문제가 있었다. 정신과 진료 권유했으나 본인이 절대 가지 않겠다고 함. 피해자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격오지로 파견 희망하고 있으나 다리가 완치되지 않아 5월말이나 6월초에 대위리 중대로 파견보내기로 함. 휴가 복귀하는 행정보급관과 징계 등의 수위를 결정하기로 함" 등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14가 진술서를 폐기하였으나 그 내용을 군인트라넷에 자세히 기록한 것이 인정되므로 피진정인 14의 행위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차. 진정요지 9) 관련

피진정인 5는 2013. 4. 동원훈련 준비 기간중에 물품정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를 포함한 후임병 3명에게 야단을 쳤지만 욕설이나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진정인 9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진정주장 외 달리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카. 진정요지 10) 관련

1) 인정사실

피진정인 11은 예비군들의 "꾀병 아니냐?"라는 질문에 "꾀병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꾀병인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 6은 피진정인 11이 피해자에 대해 "관심병사이고 또라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진정인 11이 피해자 주장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2) 판단

피진정인 11은 피해자의 상관으로서 언행에 모범을 보이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부하 병사인 피해자를 비하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으므로

재발을 방지하고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진정인 11의 행위에 대하여는 주의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타. 진정요지 11) 관련

피진정인 12는 피해자가 국군의무학교에서 받은 것은 포상휴가가 아닌 중대장 표창으로 당시 의무중대에 전입하기 전에 표창장을 받은 피해자 등 5명 모두에게 포상휴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2013. 1. 혹한기 훈련 당시 피해자는 의무중대 잔류인원으로 편성되어 부상이 있는 병사와 유사하게 업무와 식사를 하도록 했을 뿐 그 이후에도 일반병사와 같이 일부 업무를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목발을 짚고 다닐 때 조심하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인권침해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참고인 5는 야외훈련 시에는 인원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행정반에서 전화를 받는 업무를 한 적이 있으나 부대 내 훈련이나 작업 시에는 입실해 있었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눈치가 보여서 분리수거라도 해야겠다"거나 "지금이 가장 바쁜데 입원해 있어서 아무것도 안하니까 선임들이 나를 안좋게 보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진정주장과 피진정인 12, 참고인 6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바,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파. 진정요지 12) 관련

피진정인 13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에게 고소사건에 대한 안내사항으로 성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수치심이 발생할 수 있음과 향후 수사 절차 등을 설명한 것이며,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피해자 부모가 입회한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게 대질조사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나 가해자인 피진정인 3과 피진정인 4가 대질조사를 위해 조사사무실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사무실을 뛰쳐나가서 대질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진정주장 외 달리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하. 파견 의무병 관리감독 개선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근무부대 특성 및 근무방식

- 제0사단 00연대는 1대대, 2대대, 3대대 및 직할중대로 본부·통신·의무·수송·수색전투지원중대를 두고 있다.
- 00연대 직할중대인 의무중대는 중대장(대위 군의관) 외 군의관을 소대장으로 하는 3개 소대로 편제되어 각 소대장이 의무병 2~4명과 함께 각 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 직할중대 의무중대장은 각 대대로 파견된 의무소대의 업무, 병영비리 등에 대하여 상향식 일일결산을 통해 연대장에게 보고한다.
- 파견 의무병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분대장에게 최초로 보고하고, 분대장은 소대장인 파견 군의관에게 보고하며, 파견 군의관은 의무중대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 야간에는 파견된 대대의 당직사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나) 제0사단 00연대 의무중대 부대운영 및 관리감독 관련

(1) 본 진정사건 및 직권조사에서 나타난 피조사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의무중대 본부에서는 파견 의무병들이 소규모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마음의 편지함' 운용에 대한 소요가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파견 군의관은 의무병을 주기적으로 면담하는 시스템이 없고 주간에 의무병을 관리하는 책임범위가 모호하다고 인식하여 의무병을 세세하게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대대장들은 파견 의무병 관리감독 책임이 1차적으로 파견 군의관과 의무중대장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대대장의 책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2) 00연대 의무중대에서는 부대원들이 부대생활에서의 애로사항 및 고충을 신고할 '마음의 편지' 신고함을 설치하지 않았고 '마음의 편지'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00연대 각 대대에서 '마음의 편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파견 병력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3) 제0사단 00연대 의무중대 행정보급관인 피조사자 1은 본 진정 사건 관련으로 연대장으로부터 2013. 7. 11.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의무중대 중대장인 피조사자 3은 국군의무사령관으로부터 2013. 11. 11. 징계(견책)를 받았다. 아울러, 2013. 2.부터 2~3개월 동안 1대대 파견 의무병 사이에 구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여 연대장은 가해자인 선임들에 대해 영창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4) 이와 같이 피조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구체적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면,

파견 군의관이 퇴근한 이후 파견 의무병들에 대한 인수인계 등 구체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고, 파견부대에서도 파견 의무병들에 대한 '마음의 편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점호 등의 관리체계가 미흡한 점이 인정된다.

2) 판단

'마음의 편지' 등의 소원수리제도는 군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합리, 부조리한 상황을 익명으로 청원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구제제도로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군 장병의 인권 보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의무중대에서는 부대원들에게 마음의 편지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고, 마음의 편지함도 없는 관계로 피해자는 본인의 부대생활에서의 애로사항 및 고충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등의 제도적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아울러, 00연대 각 대대에서 파견 의무병 관리 책임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파견 의무병의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부대 내에서의 폭행·가혹행위를 방지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마음의 편지' 등에 대한 업무는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해당 부대에서는 이를 소홀한 점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파견 의무병 사이에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는 바, 이는 「군인사법」 제47조2, 「군인복무규율」 제15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 후단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기본권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 차원에서 파견 병력의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업무 매뉴얼 등을 구비하여 향후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제3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5. 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영하 위 원 김성영 위 원 이선애

26 14직권12, 14직권13, 14진정6513, 14진정6623 등 8건(병합) [군대 구타·가혹행위 및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직권조사] 2015. 11. 11. 결정

▌결정사항 ▌

국방부장관에게, 군대 내 구타·가혹행위 등 병영 악습 개선과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위하여,

[1] 훈련소 입소 시부터 모든 병사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권리구제 방법에 관하여 교육·홍보할 것,

[2] 군병원 입원환자에게도 간병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

[3] 후임병들이 청소, 식사당번, 빨래 등을 전담하는 병영 관행을 개선할 것,

[4] 병사들 간에 '압존법' 위반을 이유로 한 폭행 등의 악습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5] 병사들에게 자유로운 진료나 치료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6] 복무 부적응 또는 정신적 장애 병사와 관련하여, 병역법령 상의 현역복무부적합 기준을 보다 세분화 또는 완화된 내용으로 개정하거나 현행 규정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

[7] 전역 당일 사망한 ○○사령부 제○탄약창 고(故) 이○○에 대하여 전공사망심사를 실시할 것을 각 권고

▌결정요지 ▌

2014년에 군대 내에서 구타·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사건, GOP 총기난사 사건, 군 부적응병사 자살 사건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항에 의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일부 진정사건을 병합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함.. 이는 사고 발생부대의 구타, 가혹행위 등 병영 악습과 보호관심병사제도 운영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참조조문 ▌

「군인사법」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군인사법 시행령」제48조(심신장애인의 전역 등) 및 제49조(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군인사법 시행규칙」제53조(전역 등의 기준), 제54조(적용 범위) 및 제56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병역법」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병역법 시행령」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 변경),「병역법 시행규칙」제97조(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군인복무규율」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부대관리 훈령」제173조(고충상담 및 건의),「전공사상자처리훈령」제2조(적용범위),「국방환자관리훈령」제46조(간병비 지급)

▌주 문 ▐ 국방부장관에게, 군대 내 구타·가혹행위 등 병영 악습 개선과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위하여,

1. 훈련소 입소 시부터 모든 병사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권리구제 방법에 관하여 교육·홍보할 것,
2. 군병원 입원환자에게도 간병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
3. 후임병들이 청소, 식사당번, 빨래 등을 전담하는 병영 관행을 개선할 것,
4. 병사들 간에 '압존법' 위반을 이유로 한 폭행 등의 악습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5. 병사들에게 자유로운 진료나 치료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6. 복무 부적응 또는 정신적 장애 병사와 관련하여, 병역법령 상의 현역복무부적합 기준을 보다 세분화 또는 완화된 내용으로 개정하거나 현행 규정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
7. 전역 당일 사망한 ▽▽사령부 제▽탄약창 고(故) 이▽▽에 대하여 전공사망심사를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 유 ▐

Ⅰ.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 배경

2014년에 군대 내에서 구타·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사건, GOP[5] 총기난사 사건, 군부적응병사 자살 사건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의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일부 진정사건을 병합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사고 발생 부대의 구타, 가혹행위 등 병영 악습과 보호관심병사제도 운영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5) GOP : General Out Post(일반전초), GP : Guard Post(감시초소, 비무장지대 안에 위치),

2. 직권조사 범위

사건번호	조사대상 부대	구분
14직권0001300· 14진정0651300	육군 제○○사단 ○○○포병대대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
14직권0001301	육군 제○○사단 제○○연대	병사 휴가중 동반자살 사건
14직권0001302	육군 제○○사단 ○○중대	제○○사단 독립부대
14직권0001200	육군 제△△사단 △△연대 3대대	GOP 임병장 총기난사사건
14직권0001400	국군▲▲사령부 제▲▲▲여단 ▲▲▲부대 ▲▲함	▲▲함 병사 자살사건
14직권0001500· 14진정0662300	육군 ▽▽사령부 제▽탄약창 2경비중대	▽▽사령부 제▽탄약창 병사 자살사건
14직권0001600	국군▼▼병원 ▼▼중대	국군▼▼병원 병사 구타·가혹행위 사건

II. 부대별 조사 결과

1. 14직권0001300·14진정0651300(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가. 사건개요

1) 14직권0001300

육군 제○○사단 ○○○포병대대 본부포대 선임병인 가해자들이 2014. 3. 초순부터 2014. 4. 6.까지 의무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일병 윤○○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2014. 4. 7. 사망하였다.

2) 14진정0651300

가) 진정인 : 신○○

나) 접수일자 : 2014. 8. 1.

다) 진정내용

윤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방송 내용을 보고 진정을 제기하는 것으로, 가해자들의 심각한 폭행·가혹행위 사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조사를 원한다.

나. 관련자 현황

1) 피해자

故 윤○○(일병)

2) 구타·가혹행위 가해자

가) 가해자 1 : ○○○(병장)
나) 가해자 2 : ○○○(하사)
다) 가해자 3 : ○○○(병장)
라) 가해자 4 : ○○○(상병)
마) 가해자 5 : ○○○(상병)
바) 가해자 6 : ○○○(일병)

3) 지휘·감독 책임 관련자

가) 관련자 1 : ○○○(중령(진), 제○○사단 ○○○포병대대장)
나) 관련자 2 : ○○○(중위, 제○○사단 ○○○포병대대 본부포대장)
다) 관련자 3 : ○○○(상사, 제○○사단 ○○○포병대대 본부포대 행정보급관)
라) 관련자 4 : ○○○(원사, 제○○사단 ○○○포병대대 주임원사)
마) 관련자 5 : ○○○(대령, 제○○사단 포병연대장)

다. 관련규정

별지 참조

라. 인정사실

가해자,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직권조사 현장조사 보고서, 제○○사단 징계 자료, 피해자 사망사건 자료, 국방부 조사본부의 피해자 부검 감정서, 고등군사법원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3. 12. 9. 입대한 후 2014. 2. 18. 육군 제○○사단 포병연대 ○○○ 포병대대 본부포대 의무병으로 전입하였다. 피해자의 선임병인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행동이 느리고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4. 3. 3. 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는 성추행 행위, 가래침 및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핥아 먹게 하기, 잠 안 재우기, 기마자세 강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는 가해자 1, 3, 4, 5의 무차별 폭행에 의해 2014. 4. 6. 16:33경 쓰러져 16:52경 ○○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고 맥박과 호흡이 돌아와 17:10경 국군○○병원 및 ○○○○○병원으로 순차 후송되었다. 18:38 ○○○○○병원 CT 촬영 결과 뇌부종이 확인된 후 의식불명 상태에서 2014. 4. 7. 16:20경 사망하였다.

3) 위 ○○의료원 등의 의무기록 내용을 보면, "의무실에서 냉동음식 먹은 후 갑자기 호흡곤란, 기관 내 삽관 시 기도 및 인후두에 구토 및 음식물 많았다고 함" 등의 기재가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는 이러한 의무기록을 참고하여 2014. 4. 8.~2014. 5. 12.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후 사인을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으로 광범위한 다발성 좌상에 의한 속발성 쇼크를 우선 고려할 수 있으나, 오랜 기간 육체적 및 정신적 가혹행위에 기인한 허탈 혹은 쇼크 상태에서 초래된 위 내용물의 역류 및 흡인이 복합적인 사망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판단하였다.

4) 피해자 유족들은 위와 같이 처음에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추정하도록 하는 자료가 되었던 의무기록지 기재(피해자의 기도에 음식물이 차있었다는 내용)에 대해 사건의 축소·은폐시도 의혹을 제기하고, 2014. 10. 8. 헌병수사관, 법의관, 검찰관, 가해자 2 등을 직무유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하였다. 이 사건은 2015. 3. 27.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재정신청을 하여 현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심리중이다.

5)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적 죄명 : 상해치사), 폭행, 성추행, 가혹행위 등으로 2014. 10. 20. 제○군사령부 군사법원에서 1심 판결을 선고받고, 쌍방 항소에 따라 2015. 4. 9.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았는데(가해자 1 : 징역 35년, 가해자 2 : 징역 10년, 가해자 3, 4, 5 : 징역 12년, 가해자 6 : 벌금 300만원), 2015. 10. 29. 대법원에서 살인죄는 가해자 1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되어 현재 고등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6) 피해자 사망 당시, 본부포대는 의무대가 제3포대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제3포대는 의무대가 본부포대 소속이라는 이유로 서로 의무대에 대한 점호나 순찰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병사들의 군내 부조리, 구타·가혹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마음의 편지함'을 철거하여 소원수리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간부들은 피해자가 의무

대 내에서 지속적인 폭행·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사망사건 이후, 의무대는 본부포대로 이전하여 본부포대에서 관리하고 있다.

7) 피해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제○○사단 ○○○포병대대장 등 지휘감독자 및 관리책임자 등 17명은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고, 그중 4명(관련자 1, 2, 3, 4)은 형사입건되어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국방부는 이 사건 이후 병영 악·폐습 근절을 위한 특별 군기강 확립 대책회의(2014. 4. 11.~4. 15.)를 개최하고, 육군 부대정밀진단(2014. 4. 11.~4. 28.)을 통해 폭행·가혹행위, 폭언·욕설 등 병영 악·폐습 관련자 총 3,919명을 적발하여 조치하였다. 피해자 폭행 사망 사건의 축소보고 의혹에 대하여는 2014. 8.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최초 보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을 보고하지 않은 보고계통 관련자 10명에 대하여 근신, 경고 등의 처분을 하였다.

8) 위원회가 직권조사 현장조사 시 제○○사단 ○○○포병대대 부대원 83명을 면담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피해자가 가해자들로부터 구타·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병사가 22명(26%)이었고, 간접적으로 들은 적 있다는 병사는 9명(11%)에 달하였으나, 이들은 구타·가혹행위를 신고해도 형식적으로 접수되어 개선되지 않는 문제, 제3자 신고의 경우 당사자에게 불리할 수 있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 부대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등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원회에서 2014년 실시한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는, 외부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제도에 대하여 장교와 부사관은 이를 알고 있다는 응답률이 54.8%인데 비하여 병사는 31.1%에 불과하였다.

구분	계	직접목격	간접적으로 들음	목격하지 않음
계	83	22(26%)	9(11%)	52(63%)
입실환자 (2014. 3. 1.~ 4. 6.)	12	9	1	2
제3포대원	26	7	4	15
본부포대원	45	6	4	35

마. 판단 및 조치사항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가해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구타·가혹행위, 부대 지휘관들의 관리감독 소홀과 피해자 사망사건의 축소·은폐 시도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및 징계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었으므로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구타,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병사가 적지 않았음에도 군의 조치를 신뢰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우려하여 이를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군인 권리구제체계에 대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방부 훈령인「부대관리 훈령」제173조 제1항은 고충상담을 할 수 있는 외부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명시하고 있고, 각 부대에서도 부대원 면담, 마음의 편지 등 소원수리제도, 국방 헬프콜 등 각종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병사들이 이러한 권리구제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과 같은 군대내 구타·가혹행위는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로는 국방부장관에게 훈련소 입소 시부터 모든 병사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을 통한 권리구제 방법에 관하여 교육·홍보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14직권0001301(병사 휴가중 동반자살 사건)

가. 사건개요

육군 제○○사단 ○○연대 2대대 소속 병사 2명(상병 이○○, 상병 이○○)이 정기휴가중인 2014. 8. 11. 이○○ 상병의 누나 집에서 목을 매고 동반 자살하였다.

나. 사고자 등 관련자 현황

1) 사고자

가) 사고자 1 : 故 이○○
나) 사고자 2 : 故 이○○

2) 지휘·감독 책임 관련자

가) 관련자 1 : ○○○(중령, 제○○사단 ○○연대 2대대장)
나) 관련자 2 : ○○○(대위, 제○○사단 ○○연대 2대대 ○○중대장)
다) 관련자 3 : ○○○(원사, 제○○사단 ○○연대 2대대 주임원사)
라) 관련자 4 : ○○○(원사, 제○○사단 ○○연대 2대대 중대 행정보급관)
마) 관련자 5 : ○○○(원사, 제○○사단 ○○연대 2대대 중대 전투지원소대장)

다. 인정사실

직권조사 현장보고서, 관련자와 참고인의 진술, 사고자들의 인사기록카드 및 면담·관찰기록, 동반사망사건 수사 자료, 마음의 편지 등 소원수리 실시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사고자 1은 2013. 8. 5. 입대하여 2013. 9. 17. 제○○사단 ○○연대 지원중대에 전입한 후 2013. 10. 3.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 2013. 11. 11. 군무이탈로 헌병대 입창되어 2014. 1. 14. 선고유예를 받은 후 ○○연대 2대대로 전입하였다. 이후 자살충동 및 성정체성 혼란 등으로 부대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신인성검사 결과 '자살·정신장애'가 예측되어 군병원 정신과 진료(사단 1회, ○○병원 3회)를 받고, 사단 비전캠프 및 군단 그린캠프에 입소하는 등 'A급 관심병사'로 관리되었다.

사고자 2는 2013. 8. 13. 입대하여 2013. 10. 11. ○○연대 2대대로 전입하였다. 이후 심한 감정기복과 우울 증세를 호소하였고, 신인성검사 결과 '자살·정신장애'가 예측되어, 군병원 정신과 진료를 8회(사단 2회, ○○병원 6회) 받고, 사단 비전캠프에 입소하는 등 'B급 관심병사'로 관리되었다.

2) 사고자 1은 2014. 6. 26. ~ 6. 27. 후임병(일병 ○○○)에게 "이번 8월 정기휴가를 사고자 2와 함께 나가서 동반자살을 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하였고, 후임병은 관련 내용을 분대장에게 보고하였다. 분대장은 사고자 2에게 이를 확인하였는데 사고자 2가 "그런 마음이 없다."고 답변하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소대장 및 중대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3) 관련자 2는 2014. 7. 10. 사고자들의 정기휴가 신청 일정이 동일한 것을 확인하여, 사고자 2는 2014. 8. 3. ~ 8. 11., 사고자 1은 2014. 8. 17.~ 8. 25.로 휴가일정을 조정하였으나, 사고자 1이 연대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관련자 4에게 휴가를 빨리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몇 차례에 걸쳐 건의하여 사고자 1의 휴가 일정이 2014. 8. 6. ~ 8. 14.로 다시 변경되었다.

4) 이후 사고자들은 정기휴가 중인 2014. 8. 8. 만나 시간을 보내다가 8. 11. 12:15경 사고자 2의 누나 아파트로 가서 함께 목매 자살하였다.

5) ○○○○사령부에서는 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4. 12. 30. 사망원인을 외인사(자살), 직접 사인은 '목맴'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제○○사단은 2014. 11. 10. 사고자들의 자살 및 부대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휘감독 관련자 1~5에 대해

근신, 견책 등의 징계 조치를 하고, 사고자들의 동반자살계획을 인지하고도 개인적 면담만 실시하고 지휘계통으로 보고하지 않은 분대장에 대해 근신 7일의 징계 조치를 하였다.

6) 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부대 선임병들이 사고자들을 괴롭히거나 구타·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만, 사고자 2는 '관물대 정리정돈이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2차례 지적받은 사실이 있었다.

라. 판단 및 조치사항

부대에서 사고자들을 신인성검사 결과에 따라 보호관심병사로 지정하여 관리했던 점, 사고자들에 대하여 사단 비전캠프 및 군단 그린캠프 입소 등의 조치를 취했던 점, 부대 생활 중 사고자들이 선임병 등으로부터 구타·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지휘감독 관련자들이 사고자들의 동반 자살사건 관련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안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치를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14직권0001302(제○○사단 독립부대)

가. 사건개요

제○○사단 ○○○포병대대 의무대 윤일병(故 윤○○) 폭행·가혹행위 사망사건이 지휘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독립공간에서 일어났던 것을 감안하여, 육군 제○○사단 내 이와 유사한 독립부대인 ○○중대의 인권침해 및 병영부조리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나. 조사결과 판단 및 조치사항

위원회가 2014. 9. 17. ~ 9. 18. 현장조사 시 부대원 22명을 면담하고 12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한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대는 부대 화장실 칸마다 설치된 '마음의 편지함'에 볼펜과 용지를 비치하여 병사들이 자유롭게 '마음의 편지'를 쓸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조치 및 관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치를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14직권0001200(GOP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

가. 사건개요

육군 제△△사단 △△연대 3대대 병장 임△△이 2014. 6. 21. 20:10경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투척하고, 총기를 난사하여 동료 부대원 등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나. 사고자 등 관련자 현황

1) 사고자 : 임△△(병장, 제△△사단 △△연대 3대대 11중대 13소초)
2) 피해자 : 하사 △△△, 상병 △△△, 상병 △△△, 일병 △△△, 일병 △△△(이상 사망자), 하사 △△△, 하사 △△△, 병장 △△△, 병장 △△△, 일병 △△△, 일병 △△△, 이병 △△△(이상 부상자)
3) 지휘·감독 책임 관련자(육군 제△△사단)
   가) 관련자 1 : △△△(중위, △△연대 3대대 11중대 13소초장)
   나) 관련자 2 : △△△(대위, △△연대 3대대 11중대장)
   다) 관련자 3 : △△△(중령, △△연대 3대대장)
   라) 관련자 4 : △ △(중사, △△연대 3대대 11중대 13소초 부소초장)
   마) 관련자 5 : △△△(중위, △△연대 3대대 11중대 13소초 前 소초장)
   바) 관련자 6 : △△△(대령, △△연대장)

다. 관련규정

별지 참조

라. 인정사실

제△△사단 GOP 총기사고 관련 사고자, 피해자, 지휘·감독자와 참고인의 진술, 위원회 제△△사단 현장조사 보고서, 제△△사단에서 제출한 징계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사고자는 2012. 12. 17. 입대하여 2013. 1. 31. 육군 제△△사단 △△연대 3대대 전입 이후 A급 관심병사로 분류되었다가, 2013. 11. B급으로 하향조정되어 2013. 12. 22. 전방 GOP 근무에 투입되었다. 사고자는 평소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부대원들과 어울리지 않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아 서먹서먹한 관계였으며, 적극적으로 부대생활을

하지 않지 않아 일부 간부나 동료들은 그를 “슬라임”(물렁물렁하고 약하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의 뜻)의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고 초소에 비하 그림을 그려 놓기도 했다.

2) 사고자는 2014. 6. 21. 20:10경 GOP 소초 근무를 마치고 철수를 위해 통제소에서 대기하던 동료 5명 및 교대근무자 2명을 향해 수류탄을 투척하고, 재차 생활관과 막사 등에 있는 부대원들에게 K-2 총기를 난사하여 동료 부대원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게 하였다.

3) 사고자는 상관살해, 상관살해 미수,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 절도, 군용물 손괴, 군무이탈 죄로 제△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2015. 2. 3. 사형판결을 받고,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2015. 8. 17. 항소기각되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지휘감독자 14명은 부대 지휘감독 소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2014. 10.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으며, 사고자 부대 소초장인 관련자 1은 특수군무이탈, 명령위반 등으로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4) 이 총기난사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병사들은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간병비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 중상자의 경우에도 부모들이 식사와 목욕, 대소변 수발 등의 간병을 하였다. 특히, 병장 △△△과 병장 △△△의 부 △△△은 생업을 중단하고 2014. 6. 입원 당시부터 2015. 1. 18.까지 아들들을 간병하였으며, 하사 △△△의 부 △△△도 생업을 전혀 하지 못한 채 2014. 11. 중순까지 아들을 간병하였음에도 부대 측에서는 간병 가족들에게 국군△△병원 간병인 숙소에서 잠을 자게하고 식사를 제공한 것 외에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5) 국방부의 2014년 이후 장병 환자 간병비 지급 실적은 아래 표와 같은바, “간병비 지급대상은 민간 의료기관 위탁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방환자관리 훈령」 (국방부 훈령) 제46조에 따라,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 중인 환자와 달리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는 대부분 간병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구 분	환자 간병비 지급 실적					
	계		민간위탁병원		국군병원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4년도	46	105,335,630	40	91,294,920	6	14,040,710
2015. 6.말	26	41,734,310	26	41,734,310	0	0

6) 육군 제△△사단 △△연대 3대대는 2013. 12. 22. GOP 투입 당시 전 부대원들에 대한 신인성 검사 후 보호관심병사 A급 41명을 8명으로 조정하고 전체 보호관심병사 중 12명을 GOP에 투입하지 않았으나, 위 총기난사사고 이후 투입된 3대대는 신인성 검사 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식별된 보호관심병사 중 67명(A급 17, B급 28, C급 22)을 'GOP 근무 부적합'으로 판단하여 투입하지 않았다.

7) 국방부는 위 총기난사사고 당시 GOP 병사 인력이 부족하고, 근무 및 시설 환경이 열악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4. 10.부터 GOP 소초별 병사 9명 증원, 면회 여건 보장, GOP 간이판매소 증설, 도로환경 개선, 생활관 현대화, 체육시설 확충, 원격진료 및 응급시스템 보완, 응급후송 전용헬기 조기 전력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위 총기난사사고 이후 보호관심병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급분류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심병사제도'를 폐지하고 2015. 4. 16.「부대관리훈령」(국방부 훈령)을 개정하여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를 도입하였다.

마. 판단 및 조치사항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 총기난사사건 사고자나 지휘감독 자들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었고, 보호관심병사 제도 및 GOP 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사항은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4), 5)항과 같이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병사에 대하여 상해정도에 따라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도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와 달리 간병비가 지급되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는 병사의 건강권과 치료권 보장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에게 군병원 입원환자에 대하여도 부상의 정도에 상응한 간병비 지급을 위하여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거나「국방환자관리 훈령」상의 심의회 심의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5. 14직권0001400(▲▲함 병사 자살 사건)

가. 사건개요

국군▲▲사령부 제▲정보여단 ▲▲▲부대 ▲▲함에서 보수병 업무를 수행하던 일병 최▲▲이 2014. 7. 28. 07:58경 소속함 함미 조명등 거치대에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나. 사고자 등 관련자 인적사항

1) 사고자 : 故 최▲▲(일병)
2) 가해자 : ▲▲▲(병장)
3) 지휘·감독 책임 관련자
   가) 관련자 1 : ▲▲▲(소령, 함장)
   나) 관련자 2 : ▲▲▲(대위, 기관장)
   다) 관련자 3 : ▲▲▲(대위, 부장)
   라) 관련자 4 : ▲▲▲(대위, 갑판사관)
   마) 관련자 5 : ▲▲▲(상사, 보수담당관)

다. 인정사실

관련자 및 부대원 진술서, 참고인 진술, 헌병대 변사사건 기록 및 ▲▲함 폭행 등 피의사건 기록, 사고자 신상관리 경과내역, 사고자 면담 및 관찰 기록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사고자는 2013. 12. 13. 국군▲▲사령부 ▲▲부대 ▲▲함으로 전입한 후, 2014. 1. 초순 11:30경 소속함 승조원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는 과정에서 혼자 흥얼거렸다'는 이유로 가해자로부터 좌측 뺨을 맞았고, 2013. 12. 23.~2014. 4. 초순경 가해자로부터 "여기 깡패 같은 새끼가 앉아 있다. 이 새끼 미친 거 아니야?, 선임 보면 인사 좀 해라. 선임이 우습냐?, 너는 존나 맞아야 돼" 등의 모욕적인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2) 사고자는 피부 등 아픈 부위가 많아 병원진료를 수시로 받았고, 2014. 6. 19. 의무실 군의관의 우울증 의증진료에 따라 ▲▲▲▲의료원 신경정신과에서 총 2차례 정신과 진료 후 항우울제를 처방 받았다. 위 진단에 따라 관련자 1은 사고자를 관심병사 B급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으며, 직별장, 부서장 등에게 집중관리 및 주기적 면담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스스로도 3차례 이상 직접 면담을 실시하였다.

3) 사고자는 2014. 7. 28. 07:24경 함미 쪽 조명등 거치대에 스스로 목을 매었다(이 장면이 함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녹화되었다).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는 2014. 7. 29. 사인을 '불완전의사로서 스스로 목매어 호흡부전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였다.

4) 해군 ▲▲기지사령부의 ▲▲▲대 보통검찰부는 사고자 사망 이후 2014. 7. 28.

~ 8. 18. 부대 내 부조리에 대해 인지수사를 하여 위와 같이 사고자를 폭행하고 모욕한 가해자를 기소하였고, 보통군사법원은 2014. 10. 18.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또한, 국방부▲▲본부 ▲▲사령부는 2014. 11. 사고자 자살 및 부대원 관리 소홀에 따른 지휘감독 관련자 8명에게 근신, 견책 등의 징계조치를 하였다.

5) 가해자가 사고자에게 행한 위 비위 사실 이외에는 부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고 부대에는 일·이등병이 청소와 식사 후 반찬통 및 식기 세척을 전담하고, 후임병사 2~3명이 빨래 등을 전담하며 상병 이상부터는 이러한 업무에서 열외하는 병영 부조리가 있었다.

6) 국방부는 '병영문화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병영저변에 만연된 악성 관행 개선을 위해 부대 전반에 대한 조사와 진단을 실시하였고, 2015년부터 병영생활관 내에서 병사들 간 자체 '룰(Rule)'을 작성하여 생활관별로 스스로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라. 판단 및 조치사항

사고자에 대한 가해자의 폭행·폭언이 그 시점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살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고자의 자살사건 이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지휘감독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별도의 조치를 할 사항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5)항과 같이 후임병들이 부대 내 잡무를 전담하는 관행은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15조가 금지하는 사적 제재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병영 악습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위 인정사실 6)항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군 내부의 병영 악습은 1회성 조사나 진단을 통해 근절될 수 없는 관행적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추이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에게 부대 후임병들이 청소, 식사 당번, 빨래 등을 전담하는 병영악습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14직권0001500·14진정0662300(▽▽사령부 제▽탄약창 병사 자살사건)

가. 사건개요

1) 14직권0001500

피해자 이▽▽는 2012. 10. 5. 자대에 배치된 후 선임들로부터 부대선임 서열 및 근무수칙 암기를 못하고 부대생활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2013. 3.경부터 정신상태가 악화되어 정신질환 증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음에도 부대 측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역 당일 자택(아파트 18층)에서 투신자살하였다.

2) 14진정0662300

가) 진정인 : 이▽▽(피해자의 부)
나) 피해자 : 故 이▽▽
다) 접수일자 : 2014. 8. 5.
라) 진정내용
위 14직권0001500의 취지와 같다.

나. 피해자 등 관련자 현황

1) 피해자

故 이▽▽(상병, ▽▽사령부 제▽탄약창 2경비중대)

2) 구타·가혹행위 가해자(같은 부대 예비역 병장)

가) 가해자 1 : ▽▽▽
나) 가해자 2 : ▽▽▽
다) 가해자 3 : ▽▽▽
라) 가해자 4 : ▽▽▽

3) 지휘·감독 책임 관련자

가) 관련자 1 : ▽▽▽(대령, ▽▽사령부 제▽탄약창장)
나) 관련자 2 : ▽▽▽(대위, ▽▽사령부 제▽탄약창 前 2경비중대장)
다) 관련자 3 : ▽▽▽(대위, ▽▽사령부 제▽탄약창 前 2경비중대장)
라) 관련자 4 : ▽▽▽(중위, ▽▽사령부 제▽탄약창 前 2경비소대장)
마) 관련자 5 : ▽▽▽(상사, ▽▽사령부 제▽탄약창 2경비중대 前행보관)
바) 관련자 6 : ▽▽▽(상사, ▽▽사령부 제▽탄약창 2경비중대 前행보관)

다. 관련규정

별지 참조

라. 인정사실

진정서, 지휘·감독 관련자들 및 참고인 진술, 직권조사 현장조사 보고서, 제▽탄약창에서 제출한 피해자 관련 자료, 제▽▽▽사령부헌병대에서 제출한 피해자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조사 자료, 직권조사 사건 관련 국방부 진술, 국립국어원의 "압존법" 관련 답변자료, ▽▽▽경찰서 및 ▽▽▽소방서의 피해자 사망사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2. 8. 28. 입대 후 2012. 10. 5. 제▽탄약창 제2경비중대로 전입되었고, 신교대 인성검사 시 '자살위험'으로 진단되어 신교대에서부터 군 전역 당시까지 보호관심병사 A급으로 관리되었다.

2) 피해자는 2012. 10. 5. 위 경비중대 전입 이후 선임병들로부터 부대원 70명의 선임서열(계급, 이름, 입대월)과 근무수칙을 2주 이내에 암기할 것을 지시받고 이를 제대로 외우지 못해 선임병들로부터 수차례 욕설을 듣고 구타를 당하였다. 피해자의 전입 초기 1개월간 선임병들이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내무실로 후임병들을 집합시켜 줄을 세워놓고 이등병들의 얼굴과 복부를 돌아가면서 주먹으로 폭행하였는데, 실수가 잦은 피해자는 집중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선임병들은 피해자가 부대 복무기간 동안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수가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폐급"이라고 호칭하였다.

3) 제▽탄약창에서는 위와 같이 신병들에게 부대원들의 선임서열을 암기하도록 하고, 선임병들과 대화를 할 때 대화를 하는 선임병보다 월군번이 낮은 선임병에 대하여 '님'자로 호칭하거나 존댓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압존법' 사용을 지시하고 이에 관해 실수를 하면 군기를 잡는 구실로 삼는 문화가 있었다. 직권조사 대상인 다른 6개 부대에서도 병사들 간에 '압존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4) 피해자는 이등병 때부터 혼자 생각을 많이 하고 낄낄대며 웃었고, 2013. 4.경부터 동기들에게 "자살하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2013. 7.경부터는 자기 물건을 주거나 "우리 아버지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할아버지를 죽였다. 소대장이 자기 애인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등 이상한 말을 하여 피해자 동기들이 간부들에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증세는 전역 당시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2014. 2. 19. 20:00경 혹한기 훈련

시 소대장이 순찰중 손을 넣고 근무하는 점을 지적하자 "씨발새끼야, 계급장 떼고 맞짱 뜨자."라는 폭언을 하고, 2014. 2. 21. 에도 간부의 지시에 불응하면서 "가족을 처형하겠다. 토막살인, 토막살인" 등의 비정상적인 말을 하였으며, 2014. 3. 30. 저녁에는 건물 벽에 3~4회 머리를 찍어 자해하였다. 2014. 5. 15. 13:50경 막사 뒤편 철책에서 월담을 시도하고 2014. 5. 16. 07:52경 군무 이탈하였다가 09:15경 부대 인근 야산에서 체포되었고, 2015. 6. 5. 전역 전 휴가교육 시 중대장이 "두발 정리하고 휴가가라."라고 지시하자 머리로 중대장의 얼굴을 가격하기도 하였다.

5) 피해자의 정신질환적 증세에 관해 부대에서 병원진료 등 조치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은바, 피해자는 현역병의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위해 2014. 2. 21.~2014. 3. 20. 국군▽▽병원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정신의학적 병적 상태로 보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일자	진료 등 조치사항	진료 등 조치 결과
2012. 8. 31.	국군■■병원 정신과 진료	■■사단 신병교육대 귀가대상 여부 확인차 : 양호
2012. 10. 25.	국군▽▽병원 정신과 진료	정신병리 및 현실검증능력 판단장애를 보이지 않음
2013. 3. 14.	▽▽정신보건센터 전문상담 실시	자살에 대한 척도 확인결과 현저히 낮음
2013. 3. 27.	성직자 고충상담/우울증 검사 실시	우울증 판정 결과는 안정수준으로 주변에서 관심 갖고 지켜보면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판단됨.
2013. 4. 3.	병영생활전문 상담관 상담	가정에서 있었던 부모님 다툼문제,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함.
2013. 5. 6.~ 2013. 5. 24.	그린캠프 입소	- 군전문상담관 :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 긍정 왜곡이 있는 편임. - 교육대장 관찰 : 전체적으로 괜찮지만 지적받는 사항 계속 반복됨. - 정신과 군의관 : 군대 오기 전 남아있던 마음속의 분노가 해결되지 못해 군생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며, 자신의 문제를 잘 알고 있어 고치려는 생각이 있으나 노력 부족
2013. 7. 16.	국군▽▽병원 정신과 진료	지능적으로 낮아서 심하면 의병전역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014. 2. 21.~ 2014. 3. 20.	국군▽▽병원 정신과 입원	군의관 소견 : 뚜렷한 정신병리는 관찰되지 않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부주의한 모습이 간헐적으로 관찰됨. 단 이는 정신의학적 병적 상태로 보기 어려움.
2014. 4. 7.~ 2014. 4. 25.	그린캠프 입소	최종 퇴소 의견으로 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 권유

6) 피해자는 전역 당일 집에 도착하여 저녁식사를 마친 후 2014. 7. 10. 22:50경 아파트 18층 자택에서 투신자살하였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 ▽▽▽소방서 119구급활동 일지를 보면, "2014. 7. 10. 22:58경 피해자 아파트 투신 사망 신고를 받고 23:03경 현장 도착하였으며, 경찰 선착으로 확인한 바, 18층 자택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며…무의식, 무호흡, 무맥박, CPR 유보, 심전도 무수축으로 경찰에 인계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이후 ▽▽▽ ▽병원 의사 이▽▽이 사체검안서에 사망일시를 병원 도착시간인 2014. 7. 11. 00:04로 기재하면서,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뜻으로 "도착시간 기준 이전"이라고 표기하였다. 그런데 군은 사체검안서 상 사망일시가 전역일 이후여서 당시 민간인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전공사망심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7) 제▽작전사령부 헌병대는 이 사건과 관련한 병영부조리 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구타, 가혹행위 및 폭언 등의 사항이 있었음을 밝히고 전역한 가해자 10명에 대하여 2014. 9. 5. 관할 경찰서에 형사사건으로 이첩하였으며, 부대 지휘감독 책임자 12명에 대해서는 견책, 보직해임 등의 징계 조치를 하였다.

8) 직권조사 과정에서 제▽탄약창 4경비중대 병사 69명을 대상으로 병영 생활 악습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리갈굼 형태의 서열문화 조성(11명)"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치료받으러 군병원에 가면 꾀병으로 단정짓는 부분에 대한 불만(10명)"이 많았다. 한편, 2013년 위원회에서 실시한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도 훈련병의 28.4%, 일반병사의 31.6%, 입원병사의 46%가 "진료필요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바 있다.

마. 판단 및 조치사항

피해자에 대한 구타·가혹행위 가해자들 및 부대 지휘감독 관련자들에게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형사사건 이첩 및 징계조치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해 위원회가 별도의 조치를 할 사항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대 내 '압존법' 사용을 구실로 한 폭행관행, 진료요청의 자유보장, 정신장애 병사의 현역복무부적합 심사기준, 전공사망심사에 대하여는 개선할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권고하기로 한다.

1) '압존법' 사용과 관련한 폭행 등 관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제▽탄약창에서는 병사들 간 '압존법' 사용이 이에 실수를 할 때 군기를 잡는 구실이 되는 사례가 많았다. 군에서 압존법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

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신병들로서는 단기간에 부대원 전체 선임들의 서열을 암기하고 얼굴을 익히는 것이 쉽지 않으며, 사회에서 오랜 기간 형성된 대화법을 바로 고치기도 어려워 '압존법' 사용이 상당한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병사들 간 괴롭힘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구실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에게 병사들 간에 '압존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괴롭히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자유로운 진료요청 보장시스템 관련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군대 내에서 자유롭게 치료를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 조성되지 못하고 있고, 이는 몸이 아픈 병사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 되어 병사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에게 병사들이 자유롭게 진료를 요청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권고하기로 한다.

3) 병사의 현역복무부적합 심사기준 관련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의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현역복무부적합을 이유로 한 전역이 넓게 인정되나, 병사의 경우는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병역법시행령」 제137호 제1항, 「병역법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현역병의 경우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신체등위가 5급인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6급인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며, 뇌전증·야맹증·정신이상·성격장애 등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5급에는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사인 피해자의 경우는 부대 전입 이후부터 전역 당시까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신질환적 증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사실상 복무부적합이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정신의학적 병적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군병원 정신과 의사의 소견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와 같은 증세나 정도의 정신질환 사례를 예상하여 현역복무부적합 기준을 보다 세분, 혹은 완화된 내용으로 개정하거나 현행 규정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피해자에 대한 전공사망심사 관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군복무 상황 및 병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군인 신분이었던 전역 당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에도 사체검안서 상의 사망일시가 병원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바람에 전역 다음날이 되어 전공사상심사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라면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사망일시, 사망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판정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 고(故) 이▽▽에 대하여 전공사망심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7. 14직권0001600(국군▼▼병원 병사 구타·가혹행위 사건)

가. 사건개요

병장 김▼▼은 2012. 5. 국군▼▼병원 ▼▼▼▼중대에 전입하여 복무 중, 부대 선임인 가해자들에게 2013. 4.~2013. 5.경 구타·가혹행위 및 성추행을 당하였으며, 2013. 7. 6. 목졸림을 당하여 성대가 골절되는 피해를 입었다.

나. 피해자 등 관련자 인적사항

1) 피해자 : 김▼▼(병장)

2) 가해자

가) 가해자 1 : ▼▼▼(병장)

나) 가해자 2 : ▼▼▼(병장)

3) 관련자

가) 관련자 1 : ▼▼▼(중사, 국군▼▼병원 ▼▼중대 수송관)

나) 관련자 2 : ▼▼▼(대위, 국군▼▼병원 ▼▼중대장)

다) 관련자 3 : ▼▼▼(소령, 국군▼▼병원 인사행정과장)

다. 인정사실

피해자 및 가해자, 관련자, 참고인들 진술, 병영생활 부조리 사건 확인 결과,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사실은 아래와 같다.

1) 가해자 1은 2013. 4.~5.경 자신의 진급시험에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돕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알콜성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 등에 수차례 불을 붙이고, 샤워를 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오줌을 싸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

고 엉덩이에 물을 붓는 등의 구타·가혹 행위를 하였으며, 가해자 2는 2013. 7. 6.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15. 7. 15. CT 촬영결과 후두 골절상을 입은 것이 확인되었다.

2) 위 후두 골절상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부모와 가해자 2의 부모는 2013. 8. 8. '가해자는 합의금 2천만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자는 차후 가해자 2에게 민형사상의 법적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며, ▼▼사령부 법무참모부는 2013. 9. 11. 가해자 2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부대에서는 2013. 9. 16. 가해자 2에 대하여 징계(휴가제한 4일) 조치를 하였다.

3) 위원회의 직권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2015. 6. 18. 전화상으로 가해자 1에 대한 수사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2015. 6. 19. 이메일로 가해자 1에 대한 수사나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다시 밝혔다.

라. 판단 및 조치사항

피해자가 가해자 1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불원하고, 가해자 2의 피해자 폭행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양쪽 당사자 부모가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 등이 있었던 바, 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치하지 않기로 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5. 11. 1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 원 윤남근 위 원 최이우

27 14진정691 [군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14. 8. 1. 결정

▌결정사항 ▐

육군 제00사단장에게, 향후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근예비역에 대한 신상면담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군 부대에서의 욕설, 구타·가혹행위는「군인복무규율」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음.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욕설 및 가혹행위는「헌법」제10조 인격권과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피진정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이 영창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한 지휘관들은 부대에서의 폭언 및 구타·가혹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사안으로 경고 등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음.

[2] 그런데, 상근예비역은 현역병과 달리 출·퇴근을 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등 복무환경이 특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무기고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병력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총기관련 사고 발생시 군 내외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 이와 같은 상근예비역의 특성을 감안하면 좀더 세심한 병력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진정이 발생한 부대에서는 현역병과 다른 조건에서 복무하는 상근예비역에 대한 체계적인 병력관리 제도를 구비했다고 보기 어려웠음.

또한, 입대 100일 미만자는 보호관심병사 C급(기본관리 대상)에 해당되고, 부대 및 개인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시 면담이 이루어져야 하나, 부대원 중 전입 면담을 1회 실시한 후 각 7개월, 15개월의 기간동안 면담을 실시한 적이 없고, 전입 면담 후 약 1년의 기간이 지나서야 2회차 면담을 실시하는 등 병력관리를 위한 신상면담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음.

따라서, 진정사건과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00사단에서 상근예비역에 대한 신상면담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임.

▌참조조문 ▐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24077호) 제15조 (사적 제재의 금지)

▌진정인 ▌ ○○○

▌피해자 ▌ 故 ○○○

▌피진정인 ▌ 1. ○○○ 2. ○○○ 3. ○○○
4. ○○○ 5. ○○○

▌주 문 ▌ 1. 육군 제00사단장에게, 향후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근예비역에 대한 신상면담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2013. 7. 30. 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 훈련을 마치고 9. 9. 육군 제00사단 000연대 4대대 본부중대에 배치되어 군 복무를 하던 중 10. 16. 자살하였다. 당시 3명의 부대선임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과 구타를 하였다.

나. 피해자 부대 지휘관들은 부대에서 폭언 및 구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2013. 9. 중순경 총기정리가 미숙하여 피해자에게 “가르쳐 줄 때 똑바로 해라 미친놈아”라고 하고, 10. 초순경 철조망 넝쿨 제거작업이 미숙하여 피해자에게 “병신아 그거밖에 못하냐?”라고 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점심 메뉴를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발목을 1회 찼다.

2) 피진정인 2

2013. 9. 중순경 피해자가 예초기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병신아”라고 하고, 총기방법 교육 시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 본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볍게 툭 쳤다.

3) 피진정인 3

2013. 9. 초순경 피해자의 카톡 댓글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내일 보자”라고 댓글 답변을 보낸 적이 있고, 10. 초순경 예초기 심부름 건으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여 “내가 너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새끼야”라고 말을 하였다.

4) 피진정인 4

2013. 6. 26. 제00사단 000연대 4대대 본부중대장으로 보임하였다. ‘마음의 편지’ 제도는 격주 단위로 실시하면서 부대 구타·가혹행위, 욕설 등의 부조리를 식별하여 조치하고, 병력결산을 통해 부대 부조리 예방 등 병력관리를 하고 있다. 상근예비역은 면담할 기회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역병과 비교 시 면담을 실시한 횟수가 적었지만 상근예비역들과 자주 대화를 하여 소통하려고 하였으며, 대화에서 이상한 점이 식별되면 자세히 면담을 하였다. 피해자의 전입 이후 추석연휴와 연대 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체육활동이 있어서 피해자가 자살 전까지 약 한 달 정도 근무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관찰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은 보름도 채 되지 않았다.

5) 피진정인 5

2012. 6. 8. 제00사단 000연대 4대대장으로 보임하였다. 상근예비역 관리를 위해 점호, 주단위 설문조사, 마음의 편지, 간담회, 체육활동 등을 통해 개인적인 애로사항을 찾아내고 확인하려 하였다. 피해자가 본 대대에서 한 달여 밖에 군 생활을 하지 않았고, 당시는 체육대회 준비와 부대관리 위주로 운영되어서 본인이 판단하기에 개인적으로 힘들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훈련은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육군 제00사단에서 제출한 병사 면담 및 관찰기록일지, 피해자 부대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징계서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현장조사 보고서 등을 종합해 보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2013. 7. 30. 군 입대 후 2013. 9. 9. 육군 제00사단 000연대 4대대 본부중대에 배치되어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15. 부대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인 10. 16. 07:50경 ○○광역시 ○○구 ○○○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사망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군 수사결과 일반 자살사건으로 처리되었다.

나. 상근예비역 상병인 피진정인 1은 2013. 9. 중순경 총기정리가 미숙하여 피해자에게 "가르쳐 줄 때 똑바로 해라 미친놈아"라고 하고, 10. 초순경 철조망 넝쿨 제거작업이 미숙하여 피해자에게 "병신아 그거 밖에 못하냐?"라고 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점심메뉴를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발목을 1회 찼다.

다. 상근예비역 일병인 피진정인 2는 2013. 9. 중순경 피해자가 예초기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병신아"라고 하고, 총기방법 교육 시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 피진정인 2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볍게 툭 쳤다.

라. 상근예비역 상병인 피진정인 3은 2013. 9. 초순경 피해자의 카톡 댓글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내일 보자"라고 댓글 답변을 보낸 적이 있고, 10. 초순경 예초기 심부름 건으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여 "내가 너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새끼야"라고 말을 하였다.

마. 제00사단 헌병대는 피해자 사망에 따라 2013. 10. 16.부터 11. 29.까지 4대대의 장병 40명과 상근예비역 27명을 대상으로 부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등 병영부조리에 대해 수사하고 가해자 및 지휘감독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1〉 본 진정관련 부대의 조치사항

구분	징계사유	징계결과	징계권자(조치일)
피진정인 1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욕설 등	영창 15일	제4대대장(2013. 12. 9.)
피진정인 2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욕설 등	영창 7일	제4대대장(2013. 12. 9.)
피진정인 3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욕설 등	영창 7일	제4대대장(2013. 12. 9.)
피진정인 4	본부중대장으로서 주 단위 설문조사및 주기적인 면담 소홀	경고	연대장(2013. 12. 17.)
피진정인 5	지휘 감독 책임	보직해임	사단장(2013. 11. 10.)

바. 「육군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은 입대 100일 미만자, 허약체질자 등을 보호관심병사에 대한 3개 등급 분류 기준 중 C급(기본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부대 및 개인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시 면담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소속된 본부중대의 상근예비역에 대한 면담 관찰 기록 중 신상면담이 미흡한 병사는 다음과 같다.

〈표 2〉 부대 신상면담 기록(일부)

계 급	성 명	면담관찰 일자 (전입 이후 2013. 10. 16.까지)
일병〈상근〉	김○○(피진정인 2)	2013. 3. 13. 전입 면담 이후 미실시
상병〈상근〉	송○○(피진정인 3)	2012. 7. 11. 전입 면담 이후 미실시
상병〈상근〉	정○○	2012. 7. 23. 전입 면담, 2013. 8. 14. 실시

사. 상근예비역은 「병역법」 제21조에 따라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기본 군사교육훈련 후 상근예비역에 소집되어 기본 군사교육훈련 기간을 포함하여 21개월간 집에서 출·퇴근 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예비군 중대 행정병,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 무기고 관리 등)에 복무하는 제도로서, 거주지와 신체등위, 학력, 연령 등 자질을 고려한 선발순위에 의거 선발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군 부대에서의 욕설, 구타·가혹행위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데,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1, 피진정인 2 및 피진정인 3은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는 「헌법」 제10조 인격권과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이 영창 15일, 피진정인 2 및 피진정인 3이 각 영창 7일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이미 해당 부대에서 위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응분의 처분을 했다고 보여지므로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지휘관들이 부대에서의 폭언 및 구타·가혹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중대장인 피진정인 4는 경고 처분을 받았고, 대대장인 피진정인 5는 보직해임의 문책을 당하였는 바, 이미 해당 부대에서 응분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더하여 피진정인 4 및 피진정인 5에 대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상근예비역은 인정사실 사.와 같이 현역병과 달리 출·퇴근을 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등 복무환경이 특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무기고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병력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총기관련 사고 발생시 군 내외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이와 같은 상근예비역의 특성을 감안하면 좀더 세심한 병력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진정이 발생한 부대에서는 현역병과 다른 조건에서 복무하는 상근예비역에 대한 체계적인 병력관리 제도를 구비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입대 100일 미만자는 보호관심병사 C급(기본관리 대상)에 해당되고, 부대 및 개인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시 면담이 이루어져야 하나, 위 인정사실 바.와 같이 일병 김○○, 상병 송○○에 대해서는 전입 면담을 1회 실시한 후 각 7개월, 15개월의 기간동안 면담을 실시한 적이 없고, 상병 정○○의 경우 전입 면담 후 약 1년의 기간이 지나서야 2회차 면담을 실시하는 등 병력관리를 위한 신상면담을 체계적으로 시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진정사건과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00사단에서 상근예비역에 대한 신상면담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2014. 8. 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영하 위 원 김성영 위 원 이선애

28 15진정2177 [의무소방원 근무시 선임들에 의한 괴롭힘 및 가혹행위] 2015. 11. 11. 결정

▌결정사항 ▐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

[2] ○○소방서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공·사상 심사를 다시 할 것과 피진정인 3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3]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내용을 의무소방원이 근무하는 전국 시·도 소방서에 알려 공유할 것을 권고

[4] 진정요지 다항 중 피진정인 4에 관한 부분은 기각

▌결정요지 ▐

[1] 피진정인 1,2가 의무소방원 복무 중 피해자에 대하여 인정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

[2] 피진정인 3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파악한 이후 이러한 사항을 내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장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

▌참조조문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병역법」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군인복무규율」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10조(상이구분),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제71조(공·사상 심사)

▌진정인 ▐ ○○○

▌피해자 ▐ ○○○

▌피진정인 ▐ 1. ○○○ 2. ○○○ 3. ○○○, 4. ○○○

▌주 문 ▐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한다.

2. ○○소방서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공·사상 심사를 다시 할 것과 피진정인 3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내용을 의무소방원이 근무하는 전국 시·도 소방서에 알려 공유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요지 다항 중 피진정인 4에 관한 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가. 피해자의 의무소방원 최고참 선임인 피진정인 1은 201×. ×.에서 201×. ×. 사이 ○○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생활실 캐비닛에 가두고 문을 잠그거나, 세워둔 뒤 발이나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하고 사타구니에 발을 넣어 고환을 흔들고 누르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나. 피해자의 의무소방원 선임인 피진정인 2는 201×. ×.에서 201×. ×. 사이 ○○소방서 의무소방원 생활실에서 2층 침대 사다리 안에 피해자의 목을 집어넣고 누르거나 피진정인 1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다. ○○소방서 119 생활안전기동대장인 피진정인 3과 ○○소방서장인 피진정인 4는 의무소방원 관리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장난으로 생각하고 했던 것이다. 지금은 위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괴롭힘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과적 증상을 앓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사과하였다.

2) 피진정인 2

2층 침대 사다리 안에 두 번인가 피해자의 목을 집어넣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프다고 해서 직접 해보니 진짜 아파서 다음부터는 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피진정인 1을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막내인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 것이었는데 지금은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3) 피진정인 3

피해자가 복무를 힘들어 하는 사실은 알았으나 201×. ×. 대원들이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아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201×. ×. 경 피해자의 부를 만나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대원들에게 확인한 뒤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피진정인 1, 2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핵심 가해자인 피진정인 1이 제대하였고, ○○소방서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의무소방대원을 징계한 사실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별도 보고는 하지 않고 사고방지 교육에 주력했다.

4) 피진정인 4

201×. ×. ×. ○○소방서장으로 부임한 후 201×. ×.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피해자가 휴가 중 자살기도 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담당자를 불러 피해자의 휴가를 연장하고 병원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이 때 의무소방원들 면담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별다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았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사건 현장조사가 있던 201×. ×. ×.에야 피진정인 3으로부터 피진정인 1, 2의 행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에 대해 처음 보고를 받았다. 피진정인 1, 2의 행위는 요즈음의 시각으로 보면 가혹행위에 해당할 것이며 중간관리자가 그런 내용을 인지했으면 당시 바로 지휘계통에 보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별지 2. 기재와 같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 진술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서, ○○소방서가 제출한 의무소방원 관련 기록, 피해자 치료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 ×. ×.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같은 해 ×. ×.부터 ×. ×.까지 소방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 ×. ○○소방서 의무소방원으로 전입하였다.

나. 피해자의 고교 생활기록부 및 병영생활지도기록부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는 ×. ×. 전입이후 9. 6. 특별외박을 나갈 때까지 내성적인 성격과 업무상의 실수 등으로 선임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 복무에 어려움을 겪었고 기동대장, 동료, 선임 대원들에게 힘들다며 수차례 고충을 호소했었다.

다. 당시 ○○소방서 의무소방원 8명 중 최고 선임병인 피진정인 1은 201×. ×.과 201×. ×. 사이 수차에 걸쳐 후임병인 피해자를 생활실 캐비닛에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잠그기도 하고, 피해자를 세워두고 발이나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거나, 바닥에 눕히고 무릎으로 양팔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김연아가 좋아? 손연재가 좋아?”라고 묻고 피해자가 “김연아가 좋아”라고 답하자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밤에 코를 곤다고 일어나서 있도록 하는 등으로 괴롭혔다.

피해자의 선임인 피진정인 2는 201×. ×.과 201×. ×. 사이 2회 정도 생활실 2층 침대 사다리 안에 피해자 목을 집어넣고 눌러 고통을 주었다.

또한 같은 기간에 피진정인 1, 2는 함께 10여 차례 이상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고환을 흔들거나 누르고, 피해자를 세워두고 TV 프로그램 등을 흉내 내면서 피진정인 1, 2는 때리는 역할을 하거나 총을 쏘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는 맞고 쓰러지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바닥에 포커 카드나 사탕을 집어던진 뒤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히 주워오도록 하는 등으로 괴롭혔다.

라. 피해자는 201×. ×. ×. 1박 2일 특별 외박을 나갔다가 정신과 치료를 위해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 날 ○○소방서장인 피진정인 4 (201×. ×. ×. 부임)는 피해자의 부모를 면담하고는 피해자가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말과 함께, “잦은 실수로 괴롭다.”는 요지의 피해자의 녹취 음성을 듣고, ○○소방서 119 ○○○○○○대장인 피진정인 3에게 의무소방원들 면담을 통해 피해사실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의무소방원들이 피진정인 1, 2의 행위를 대원들 간의 장난이었다

고 생각하여 자세한 내용을 진술하지 않는 바람에 피진정인 4는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청 소방행정과에 피해자의 사안과 관련하여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마. ○○○대학교 ○○○○○병원은 201×. ×. ×. 피해자에 대하여 '적응장애, 사회공포증, 주요 우울증 장애의 단일 에피소드' 등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입원 치료과정에서 6회에 걸쳐 자살을 기도하였고, 아래와 같이 201×. ×. ×. 직권면직된 이후에도 반복적 우울 및 불면, 자살사고 등과 관련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바. 피진정인 4는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의 요청에 따라 201×. ×. ×. ~201×. ×. ×. 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청원휴가를 허가하고, 201×. ×. ×.부터 6개월간 질병휴직 처리한 뒤, 더 이상 복무가 어려워 201×. ×. ×. 피해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정하였다.

사. ○○소방서는 201×. ×. ×. 피해자에 대한 공·사상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 심사요구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병명은 "적응장애, 사회공포증, 주요 우울증 장애의 단일 에피소드" 등이었을 뿐, 이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 1, 2의 괴롭힘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던 관계로 이 내용이 피해자의 증세와 관련되는 행위로 제시되지 않았었다.

아. 한편, 진정인은 201×. ×.경에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듣고 피진정인 3에게 전달하였으나, 피진정인 3은 당시 핵심 가해자인 피진정인 1이 201×. ×. ×. 이미 전역하였고 이전에 의무소방원들을 징계한 사례가 없어 처리방안을 알지 못해 이에 대해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사건 현장조사 당일인 201×. ×. ×.에야 ○○○○과장과 피진정인 4에게 보고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가 의무소방원 복무 중 피해자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1,2는 이제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1은 당시

의무소방원 최고 선임병으로서 그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인정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진정인 1의 행위에 수시로 동참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중하고 이는 모두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3에 대하여

피진정인 3은 의무소방원을 관리하는 119 ○○○○○○○대장으로서 사건 발생 초기인 201×. ×.경에는 의무소방원들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자세히 진술하지 않아 이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알게 된 201×. ×.경에는 이러한 사항을 내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장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피진정인 4에 대하여

피진정인 4의 경우 201×. ×. ×. 부임한 이후 201×. ×.경 피해자의 부모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사실을 전해 듣고는 피해자에 대한 휴가연장 및 피해사실 조사를 지시한 점,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사건 현장조사 시까지 내부적으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해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진정인 4에 대한 진정은 기각한다.

라. 조치내용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위 및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 대한 조치로는,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소방서장에게는 피진정인 3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방서장에게 위와 같은 피진정인 1, 2의 폭행 사실 등 피해자의 질병 원인과 관련된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상 심사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하고, ○○소방서의 감독기관인 국민안전처

장관에게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례를 의무소방원이 근무하는 전국 시·도 소방서에 알려 공유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1. 1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 원 윤남근 위 원 최이우

[별지 2] 참고인 진술요지

1. ○○○(피해자의 동기)

가. 피해자는 소방차량 출동 시 차량 고임목을 빼지 않는 등 업무상 실수가 있었고, 이럴 때 선임들이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렇듯 의무소방원에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었다.

나. 피진정인 1은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생활실 캐비닛에 10~15초 정도 가둔 적이 있고, 201×. ×~201×. ×.경 TV에 김연아와 손연재가 나오자 피해자에게 "김연아가 좋아? 손연재가 좋아?"라고 물은 적이 있으며, 사탕이나 포커 카드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가 빨리 줍도록 시킨 적이 있다.

다. 피진정인 2는 201×. ×.경 생활실 2층 침대 사다리에 피해자의 목을 집어넣고 10~15초 누른 적이 있다.

라. 당시 선임들이 손으로 총 쏘는 시늉을 하면 피해자와 참고인 ○○○이 '으악' 하면서 아픈 시늉을 하며 쓰러지는 시늉을 하였다.

2. ○○○(피해자의 선임)

가. 피진정인 1이 카드를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찾아오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뒤 피진정인 1의 발을 사타구니에 넣고 고환을 누르거나 흔들었으며, 피해자를 눕혀놓고 피해자의 두 다리를 들고 떨면서 '경운기'라고 말하였다.

나. 피진정인 1, 2가 손으로 장난처럼 총 쏘는 몸짓을 하면 후임병들이 뒤로 자빠지는 동작을 취했다.

다. 피진정인 2는 2층 침대 계단에 피해자 목을 넣고 눌렀다.

라. 피해자가 외박 나간 뒤 피진정인 3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해 물었는데, 장난이었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았다.

3. ○○○(피해자의 선임)

가. 피해자는 군 생활을 힘들어 했다. 참고인 ○○○를 찾아와 4~5회 면담하며 "힘들어서 많이 울었다."고 했다.

나. 피진정인 1은 포커 카드를 바닥에 뿌리면서 피해자에게 "드래곤볼이다. 주워 와라."라고 하였고, 피해자를 캐비닛에 넣고 문을 잠그고 1분 정도 두었으며, 피해자를 눕혀놓고 무릎으로 양팔을 눌렀다.

다. 피진정인 2는 피해자를 세워두고 넘어뜨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피진정인 2가 총 쏘는 시늉을 하면 피해자가 쓰러졌다.

라. 소방서에서 처음에 피해자 관련 내용을 물었을 때 대원들은 장난이었다고 생각해서 별 얘기를 안했다. 나중에 피해자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고 대원들이 말하게 된 것이다.

4. ○○○(피해자의 선임)

가. 피해자는 복무중 실수를 많이 했고 이에 힘들다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준 일이 있다.

나.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캐비닛에 들어가게 하고 열쇠로 잠갔다. 피해자가 안에서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렸고, 2~3분 정도 있다가 문을 열었는데, 대원들이 밖에서 웃고 떠들면서 그 장면을 보았다.

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를 눕히고 양팔로 무릎을 누른 상태에서 "김연아가 좋아? 손연재가 좋아?"라고 묻고, 피해자가 "김연아가 좋아"라고 답하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라. 피진정인1, 2는 TV에서 만화나 영화 결투 장면이 나오면 피해자에게 맞는 역할을 시켰고, 피해자를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게 하고 자기들 발을 사타구니에 넣어서 고환을 누르고 흔들었으며, 피해자를 세워놓고 발로 넘어뜨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렸고, 피해자와 ○○○을 겨냥해서 손으로 총 쏘는 시늉을 하면 피해자와 ○○○으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는 동작을 취하게 했으며, 바닥에 카드나 사탕을 던지고 주워오도록 시켰다.

마. 피진정인 2가 2층 침대 계단에 피해자 목을 집어넣고 눌렀다. 피해자가 아프다고 해서 중단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바. 피진정인 1은 코를 곤다는 이유로 참고인 ○○○를 허벅지에 멍이 들 때까지 때렸고, 휴가 가서 핸드폰을 가지고 오라고 한 뒤 내무생활을 못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압수하여 수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전역하는 날 돌려주었으며, 후임인 피진정인 2에게 "○○○는 선임 대접 해줄 필요 없다."고 지시하여 기수열외하였다.

5. ○○○(피해자의 선임)

가. 피해자는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일을 잘하지 못해 선임으로서 꾸짖을 수밖에 없었다. 후임병들이 일을 못하거나 실수하면 선임인 참고인이 소방대에 불려가 꾸중을 들었으므로 후임들을 혼낼 수밖에 없었다.

나.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캐비닛에 넣고 문을 닫았다. 피해자가 안에서 문을 두드렸고, 참고인 ○○○도 밖에서 그 모습을 보았다. 또한,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눕혀놓고 "김연아가 좋아? 손연재가 좋아?"라고 묻고 피해자가 "김연아가 좋아"라고 말하면 손으로 살짝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을 보았다.

다. 피진정인1, 2가 TV 프로그램을 흉내 내면서 피해자와 ○○○을 세워놓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렸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하고 발을 사타구니에 넣어 고환을 누르고 흔드는 모습을 6~7회 보았다.

라. 참고인 ○○○와 피진정인 1, 2 등이 포커 카드를 바닥에 던지고 "드래곤볼 주워 와라."라고 하면 막내인 피해자와 ○○○이 모아서 가져왔다.

마.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에게 "○○○는 선임 대우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피진정인 2가 ○○○를 기수열외한 사실이 있다.

6. ○○○(○○소방서 ○○○○과장)

의무소방원 지도 감독이 참고인의 업무 소관사항이나 참고인은 201×. ×. ×. 전입 왔기 때문에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 피해자 관련 사건을 구두로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의무소방원들끼리 장난을 치는 수준이었다고 들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가 시작된 201×. ×. ×. 피진정인 3으로부터 "적절하지 못한 행위들이 있었다."는 내용을 처음 들었다. 피진정인 3이 피해자의 상황을 인지했다면 과장,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29 15진정7075 [과도한 얼차려로 인한 인권침해] 2016. 7. 20. 결정

▌결정사항▐

국방부장관에게, 얼차려 규정과 기준을 전 군에 전파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해자가 총기 분실을 하였다는 이유로 얼차려를 시행하면서 '얼차려 시행 지침'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얼차려를 가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참조조문▐

「공군 군사교육 예규」 제21조(얼차려 제도), 제22조(얼차려 시행지침) 및 제23조9(얼차려 실시권자 및 결정권자)

▌진정인▐ ○○○

▌피해자▐ ○○○

▌피진정인▐ 1. ○○○
2. ○○○

▌주 문▐ 국방부장관에게, 얼차려 규정과 기준을 전 군에 전파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공군 ○○○○○○○ 훈련을 받던 중 피해자가 생활관에 두었던 피해자의 총기를 다른 병사가 자신의 생활관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총기를 가져감으로써 총기를 분실하였고, 이에 피진정인들은 100여분 동안 변칙적이고 과도한 동기부여(공군에서 표현하는 동기부여는 얼차려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하 '얼차려'라 한다)를 쉬는 시간 없이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피해자에게 얼차려 관련 제반규정을 위반하는 가혹행위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스트레스와 신경계 손상에 따른 질병(길랑바레증후군)으로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다른 중대 훈련병이 생활관 호실을 착각하여 피해자의 총기를 잘못 가져한 것을 확인하고, 약 3분간 훈계를 한 후 5분간 피해자에게 총기를 방치한 채 이동한 잘못에 대하여 직접 얼차려를 실시하였으며, 다른 호실 훈련병이 자신이 속한 소대 훈련병의 총기를 가지고 가는데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5분간 소대원 전체를 대상으로 얼차려를 실시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에게 피해자 및 소대원들에게 얼차려를 주도록 한 후 피해자의 총기를 찾기 위해 생활관 및 타 소대 등을 돌아다녔고, 추후 피진정인 2로부터 약 20~30분 앉았다 일어서기,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등의 얼차려를 부여했다고 보고받았으나 피진정인 2가 어떠한 얼차려를 했는지 지켜보지는 않아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를 통해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피해자가 특기교육 중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대대장이 지휘관에게 보고할 당시 피해자 훈련 동기 10명이 연락이 되어 얼차려 부여 시간이 30분 이내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집총제식 훈련 시간 내내 얼차려를 받았다 하더라도 1시간을 넘지 않았다.

2) 피진정인 2

얼차려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미 전역한 피진정인 2의 연락처 및 주소를 공군○○○○○로부터 확인하고 전화통화 및 방문을 시도하였으나 피진정인 2의 진술은 청취하지 못하였다.

다. 참고인(피해자의 공군○○○○○○○ 훈련동기 5인)의 진술 요약

1) 피해자는 약 20~30분 정도 소대 전체가 얼차려를 받기 이전에도 피해자만 얼차려를 따로 받고 있었고, 쉬는 시간 없이 지속적으로 단체 얼차려를 받았다. 피해자는 소대에서 약간 떨어져서 단독으로 얼차려를 받았으며, 소대 전체 얼차려가 끝난 이후에도 피해자만 별도의 얼차려를 받음으로써 최소 50분에서 최대 90여분 이상의 얼차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얼차려 종류는 팔굽혀펴기, 앉았다 일어나기,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뒤로 취침 앞으로 취침 이외에도 총 들고 팔벌려 높이뛰기 등을 했으며, 피해자는 거의 모든 얼차려를 총을 들고 시행하였고, 엎드려 뻗쳐 후 한 손으로 총 들고 한 다리를 든 상태에서 정지자세 유지하기 등의 얼차려를 받았다.

3. 관련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들의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서, 진정인과 참고인들과의 대화 내용 녹취록, 공군 군사교육 예규 중 얼차려 시행 및 지침 규정, 군의관 소견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3. ○. ○○. ○○○○ ○○시 소재, 공군○○○○○ ○○○○○○○ ○○○○기로 입대하여 ○대대 ○중대 ○소대 소속으로 2013. ○. ○. 훈련을 수료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3. ○. ○. 집총제식 학과를 위해 교육장소로 이동할 무렵 소대장에게 총기 분실을 보고하였고,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얼차려를 부여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피진정인 2에게 피해자와 소대 전체에게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지시한 후 총기를 찾으러 갔으며, 확인 결과 타 중대 훈련병이 피해자의 총기를 들고 간 것을 확인하였다.

다. 공군 군사교육 예규 중「얼차려 시행 및 지침 규정」에 따르면 즉시교정을 위해 엎드렸다 일어서기,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 펴기, 팔벌려 높이뛰기 등을 실시할 수 있고, 1종목 실시 후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여야 하며, 총 3종목까지 실시 할 수 있되 전체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위 총기분실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얼차려를 받았다.

1) 피해자는 앉아 일어서, 팔굽혀 펴기,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뒤로 취침 앞으로 취침, 총들고 양손으로 아래 위로 팔벌려 뛰기, 총들고 유격체조 8번 하기, 엎드려 뻗친 후 한 팔에는 총을 들고 한 다리를 들도록 한 후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기 등 7종목 이상의 얼차려를 받았다.

2)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에게 얼차려 기준을 위반하여 변칙의 방법(총을 들고 얼차려를 실시하도록 하고, 엎드려 뻗쳐를 한 상태로 한 손으로 총을 들게 하고 한 다리를 들도록 하여 고정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다.

3)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소대 전체 얼차려 시간이 약 20~30분 정도로 보이고, 피해자의 경우 소대 전체 얼차려 이전과 이후에도 얼차려를 받았다는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얼차려 총 소요시간은 기준시간인 30분을 초과하였다.

4) 피진정인들은 얼차려 시행 시 피해자에게 쉬는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마. 피해자는 훈련 수료 후 ○○○○학교에서 특기훈련을 받던 도중 길랑바레증후군이 발병하여 2013. ○. ○○. ~ ○○. ○. 약 ○개월 동안 국군○○병원,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4. ○. ○○. 의병전역 하였다.

바. 한편 피해자의 생활관에 잘못 들어가서 피해자의 총기를 가져간 다른 중대 훈련병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각 군 얼차려 관련 규정은 얼차려를 통한 가혹행위와 같은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인격적인 수치심을 받지 않고 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얼차려의 기준을 정립하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도입되었다. 또한 얼차려에 대하여 각 군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도입 시기는 상이하지만 얼차려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당하고 과중한 얼차려 부여는 3군 모두 폭행·가혹행위 범주로 판단하여 각 군 징계규정 및 부대관리 훈령에 따라 간부는 '품위유지 위반' 중 영내 폭행·가혹행위로, 병은 '복종의무

위반' 중 '폭행·가혹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피해자는 총기분실에 따라 얼차려를 받았는데 이는 「공군 군사교육 예규」 제21조 '얼차려 시행 지침' 중 얼차려 종목 및 부과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해자가 총기를 분실한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이 훈련병의 교육훈련의 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얼차려를 부여하였다 하더라고 '얼차려 시행 지침'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은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피진정인 1의 경우 얼차려 종목 및 부과시간 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시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1이 학과 수업시간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책임이 있고, 병사인 피진정인 2에게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지시하면서 이를 현장에서 감독하지 않았던 점, 피진정인 2가 부과한 얼차려를 사후에 보고 받을 당시 얼차려 규정 종목에 없는 종목을 부과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얼차려 기준에 어긋나는 과도한 얼차려 시행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조치로 공군 이외 각 군에서도 규정을 위반한 과도한 얼차려에 대한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수 접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얼차려 규정과 기준을 전 군에 전파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7. 2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정상환 위 원 이은경 위 원 장애순

30 16진정246 [군 수사관의 폭행 및 욕설로 인한 인권침해] 2016. 4. 6. 결정

▌결정사항▐

육군 ○○○○○ 헌병대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헌병대 전 간부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한 행위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와 국방부 훈령 제1787호 제17조 및 제33조,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제23조의 2 등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참조조문▐

「군인복무규율」 제15조, 국방부 훈령 제1787호 제17조 및 제33조, 제23조의 2

▌진정인▐ ○○○

▌피해자▐ 1. ○○○
2. ○○○
3. ○○○
4. ○○○
5. ○○○

▌피진정인▐ ○○○

▌주 문▐ 1. 육군 ○○○○○ 헌병대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헌병대 전 간부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마항은 기각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가. 진정인과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헌병부대의 간부인 피진정인은 2015. 1.부터 2015. 9. 사이 수사과 사무실 등에서 워드 작업 중인 피해자 1의 뒤통수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8회 정도 때렸다.

나. 피진정인은 2015. 1. 경 저녁 점호 도중 내무반 바닥에 물이 고인 상황을 목격하고, 보고 중인 피해자 2에게 "니가 핥아."라고 수회 지시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15. 8. 경 신문 수령 문제로 운영과 계원인 피해자 3을 질책하면서 "야, 이 개새끼야"라고 발언하는 등 약 20분간 욕설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15. 2. 경 피해자 4 등이 헌병대 출입문 앞에서 거수경례를 하자 "이 방위 새끼들 왜 그렇게 경례를 해"라고 모욕적으로 발언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부대 운전병인 피해자 5를 '금붕어, 물고기, 길치, 닭대가리' 등으로 부르며 인격을 모독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1) 피진정인은 위 진정의 원인이 되는 사건 발생 당시 진정인의 상관으로서 평소 말이 거칠었고 여러 사람에게 욕을 많이 하였다. 진정인이 2015. 3.부터 11.까지 헌병대 소대장을 맡아 병사 고충사항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보니 피진정인의 욕설과 관련한 고충이 거의 매달 나왔다. 그래서 설문지 내용을 운영과장 ○○○ 소령과 헌병대장 ○○○ 대령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헌병대장이 이 문제로 전 간부를 모아놓고 교육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2) 피해자 1에 대한 폭행은 다른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당사자를 불러 직접 시연해 보았다. 손바닥으로 살짝 건드리는 동작과 세게 때리는 동작을 보여주고 "어느 쪽이냐?"고 했더니 피해자 1은 '후자'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헌병부대에서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 창피한 일이어서 관리자 등에게 보고하여 자체 시정하고자 하였다.

3) ○○○○○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은 있지만, 헌병대 수사관들만 별도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

나. 피해자

1) 피해자 1 (○○○, 예비역 병장)

피진정인 1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1의 뒤통수를 치면서 “이 개새끼야,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자주 말하였다. 때리는 강도는 그냥 툭 치는 게 아니라 ‘퍽’ 소리가 났고 아프다고 느낄 만한 수준이었다. 때린 횟수는 10회 정도다. 같은 행위가 반복되어 당시 소대장이었던 진정인에게 말했고, 진정인이 상급자에 보고했으나 달라지지 않았다.

2) 피해자 2 (○○○, 예비역 병장)

2015. 1. 경 저녁 점호 시 6명의 분대원이 있었고, 피해자 2가 선임으로 점호 보고를 하였다. 내무반이 건조해서 바닥에 물을 뿌렸는데, 피진정인이 피해자 2에게 “니가 핥아”라고 하였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여러 번 “알았어?”라고 물어,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알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후임들이 다 보는 앞에서 보고자에게 “핥아라.”고 말하는 것이 심하다고 생각했다.

3) 피해자 3 (○○○, 헌병대 현역 근무 병사)

신문 보급소에서 신문을 늦게 배달하는 문제로 몇 차례 피진정인에게 질책을 당하였다. 2015. 8. 수사계 사무실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 3에게 야, 이 새끼야. 신문 수령하면 똑바로 가져와야지 왜 이렇게 가져와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약 10분 정도 사무실에서 선 채로 피진정인의 욕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4) 피해자 4 (○○○, 예비역 병장)

2015. 2. 초 선임 ○○○ 상병과 함께 헌병대 막사로 들어갈 때 ○○○ 상병이 거수경례를 하자 피진정인이 피해자 4와 ○○○ 상병을 향해 “이 방위 새끼들 왜 경례를 그렇게 해”라고 말하였는데 현역병에게 ‘방위 새끼’라고 하는 것은 비하적 표현으로 생각하며 이에 모욕감을 느꼈다.

다. 피진정인

1) 피해자 1에게 꿀밤을 몇 대 준 적은 있으나 뒤통수를 때린 적은 없고, 한두 대씩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1~2회 정도 건드렸다.

2) 저녁 점호 도중 피해자 2에게 바닥에 고인 물을 지적하고 교육한 사실이 있다. 점호 전에 물을 뿌리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교육했다.

3) 피해자 3이 반복적으로 신문 수령을 누락하여 질책한 사실이 있다. '이 새끼, 저 새끼'가 아니라 '임마, 점마'로 기억한다.

4) 피해자 4의 거수경례를 받아주지 않거나 '방위 새끼'라고 말한 기억이 없다. 헌병대장이 병사들 걸음걸이에 대해 지적해서 내가 병사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5) 다른 간부와 말하면서 '길치'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 5를 지목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 5를 가리켜 '닭대가리'라고 말한 기억은 없다.

6) 피진정인의 언행과 관련하여 병사들이 설문지를 작성한 사실, 진정인이 운영과장이나 헌병대장에게 보고한 사실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헌병대장이 일상적인 용어 순화교육을 한 적이 있으나 그것이 피진정인에 대한 교육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헌병대장으로부터 직접 주의를 받거나 교육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군수사령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기억이 있으나 무슨 내용으로 교육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7) 피진정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도 있을 것이다. 장난치면서 꿀밤 때리고 툭툭 친 사실은 인정하며, 그것으로 인해 병사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싶다.

라. 참고인

1) 참고인 1 (○○○, 2015년 당시 ○○○○○ 운영과장)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의 막말, 폭언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들은 사실이 있으나 병사들로부터 직접 듣지는 못하였다. 헌병대장이 2015. 6. - 7. 경 전 간부를 모아놓고 욕설 및 폭언 금지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참고인 1은 이 교육이 피진정인의 폭언 사건 등을 고려한 조치로 생각하였다.

2) 참고인 2 (○○○, 2015년 당시 헌병대장)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의 폭언 등에 대해 보고받고 확인해 보니 사실로 보여 전 간부를 모아놓고 간부의 자질에 대해 교육하였다. 당시 특정 인물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내용으로 보면 피진정인이 충분히 자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피진정인을 따로 불러 주의를 주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며 폭언 문화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참고인 3 (○○○, 예비역 병장)

가) 피진정인은 수시로 피해자 1의 뒤통수를 때렸다.

나) 2015. 1. 경 저녁 점호 시 피진정인이 아주 기분 나쁜 말투로 피해자 2에게 "니가 핥아"라고 하여 점호가 끝난 뒤 피해자 2가 화를 냈고, 내무반 병사들 모두 기분이 나빴다.

3. 관련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해자들, 피진정인, 참고인 진술, 관계인 근무기록, 헌병대 병사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2007. 11.부터 육군 ○○○○○ 헌병대 수사관으로 근무하였고, 피진정인은 2012.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진정인의 상급자로 근무하였다. 진정인은 25년 복무한 뒤 현재 휴직 중이며 2016. 5. 직업보도반 입교 후 2017. 2. 전역 예정이고, 피진정인은 33년 복무한 뒤 2015. 11.부터 직업보도반 입소하여 2016. 5. 31. 전역 예정이다.

나. 피해자들 및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5. 1.부터 9. 사이 수사과 사무실 등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1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통증을 느낄 만한 정도로 때렸고, 2015. 1. 경 당직사관으로 저녁 점호 중 피해자 2에게 바닥에 고인 물을 가리키며 "니가 핥아"라고 말하였고, 2015. 8. 경 신문수령을 하지 못한 피해자 3을 사무실에 세워놓고 10분 이상 "이 새끼, 저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고, 2015. 2. 경 피해자 4 등이 거수경례하는 모습을 보고 "방위 새끼"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다. 진정인은 2015. 3.부터 11.까지 헌병대 병사들을 관리하는 소대장을 맡았고, 이 기간 중 한 달에 평균 1회 정도 소대 병사들의 고충을 무기명 설문 형식으로 제출받아 개별 상담을 실시하고, 이 중 피진정인의 폭행 및 폭언에 대해서는 운영과장과 헌병대장에게 별도 구두 보고하였다.

라. 진정인의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 헌병대장은 2015. 6. 7. 경 헌병대 전 간부를 소집하여 특정 인물을 거론하지 않은 채 자질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피진정인을 직접 불러 훈계한 사실은 없다.

마. 진정인 및 피진정인은 부대 전체 차원의 교육을 수강한 사실은 있으나, 헌병대

수사관에게 특화된 인권교육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5. 판단

가.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같이 한 행위는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와 국방부 훈령 제1787호 제17조 및 제33조,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제23조의 2 등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조치로 육군 ○○○○○ 헌병대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 및 헌병대 전 간부에 대한 인권교육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진정요지 마항은 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정상환 위 원 한태식 위 원 이은경

[별지 1]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2.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사적 제재의 금지) ①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② 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상호간의 존경과 존중) 부하는 상관에 대한 존경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4.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국방부훈령 제1769호, 2015.1.9.)

제17조(병영생활 행동강령) 병영생활 행동강령은 장병 상호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선진 병영문화를 창출함으로써 군 기강이 확립되고 화합·단결된 전투형 군대를 구현하기 위해 전 장병이 병영생활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동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1. 지휘자(병 분대장, 조장 등을 말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외의 병의 상호관계는 명령복종 관계가 아니다.
2. 병의 계급은 상호 서열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지휘자를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 지시를 할 수 없다.
3. 구타·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 모욕을 포함한다) 및 집단따돌림, 성관련 위반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제33조(병영생활의 지도)
① 지휘관 및 상관은 부하의 자율성을 배양하고, 건전한 인격을 수련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 지도를 구실로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31 16진정799 [군 선임장교의 후임장교에 대한 폭행 사건 은폐] 2016. 4. 6. 결정

▌결정사항 ▌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2·3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260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

[2] 육군 제○군단장에게, 피진정인 1을 포함하여 ○○○ 특공연대 소속 간부 전체에 대하여 부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준수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피진정인 선임장교가 새벽에 피해자 후임장교들을 집합시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

[2] 피진정인 부대장이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부기관 및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

▌참조조문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및 제261조(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군인복무규율」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부대관리훈령」 제229조(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

▌ 진정인 ▌ ○○○

▌ 피해자 ▌ 별지 1 기재 목록과 같음

▌ 피진정인 ▌ 1. ○○○, 2. ○○○, 3. ○○○, 4. ○○○

▌주 문 ▌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2·3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260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다.

2. 육군 제○군단장에게, 피진정인 1을 포함하여 ○○○ 특공연대 소속 간부 전체에 대하여 부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준수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다항은 각하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진정인과 피해자는 육군 제○군단 ○○○특공연대 ○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가. 피진정인 2·3은 2015. 6. 5. 01:20 경 진정인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02:00경 진정인을 포함한 후임 장교 피해자 9명(별지 1에 기재한 피해자 1~9, 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영내 독신장교숙소(Bachelor Officers' Quaters, 이하 'BOQ') 2층 휴게실에 집합하도록 명령하였고, 집합한 피해자들을 약 1시간 정도에 걸쳐 나뭇가지가 달린 몽둥이로 위협하고, 휴게실에 있는 의자와 책상, 밖에서 들고 올라온 몽둥이를 피해자들에게 던져 팔과 다리에 상해를 입혔으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들 전체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진정요지 '가'항과 같은 선임 장교에 의한 후임장교 폭행사실을 인지하고도 상급기관 또는 헌병대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부대 내 폭행사고를 은폐하였다.

다. 피진정인 4는 2016. 2. 2. 피해자 7·10을 집무실로 불러 피해자 7·10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검사하고 소대장들의 단체 채팅방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본인에게 보내도록 지시하는 등 휴대전화를 감시하여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의 주장요지(세부적 피해자별 주장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1) 2015. 6. 5. 01:20 경 피진정인 2·3은 피해자 1에게 평소 후임장교인 피해자들이 자신들에게 선임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02:00까지 대대 BOQ 내 휴게실에 피해자들 전원이 집합할 것을 명령하였고, 02:00~03:00까지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모욕행위를 하였다.

2) 2015. 6. 5. 피진정인 1은 위 '1)'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시설점검 확인을 위하여

연대장과 BOQ를 방문하였고, 이후 피진정인 1은 휴게실 기물이 파손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8을 불러 사건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였다.

3) 2015. 6. 5.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3, 피해자들, 참고인을 불러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간부 회의를 열어 사건처리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대체로 피진정인 2·3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지만, 모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4) 피진정인 1은 3일 동안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피진정인 2·3을 BOQ에서 대대 막사로 격리조치 하였으며, 피진정인 2·3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도록 조치하였다.

5) 피진정인 4는 소대장들의 단체 채팅방의 내용을 알고자 피해자 7·10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7은 채팅방 내용이 이미 삭제된 상태였고, 피해자 10은 소대장 채팅방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피진정인 4에게 전송해 주었다. 다만 휴대전화 검열과 관련하여 피해자 7·10이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육군 제○군단 ○○○특공연대 ○대대장)

2015. 6. 5. 연대장과 함께 비품들을 확인하기 위해 BOQ를 방문하여 순찰하던 도중 휴게실 비품들이 깨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8을 불러 상담한 결과 당일 새벽 폭행사건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후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진술서를 쓰도록 하였으나 피진정인 2·3이 진술서에 폭행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구두로 폭행사실을 인정하여 문서로 남겨두지는 않았다. 또한 참모진들과 폭행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하였으나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한 결과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처리방향은 가해자인 피진정인 2·3의 격리조치였고, 일부 인원들의 공개 사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시행하였다. 다만,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병력결산 시 상급부대에 보고하거나 헌병대에 수사의뢰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2) 피진정인 2·3

피진정인 2·3은 2015. 6. 5. 사건 발생 이후 2015. 6. 30. 전역하였고, 피진정인2·3의 폭행 및 모욕행위와 관련한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육군 제○군단 ○○○특공연대가

제출한 병적기록부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와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진정인 2는 전화번호 변경과 주소지 변경, 피진정인 3은 휴대전화 착신 금지, 주소지 변경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불가능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3에 대한 사실관계는 피해자가 제출한 폭행 및 가혹행위 현장 녹음 파일에 대한 녹취록, 피해자 상해 사진, 현장조사를 통한 피해자 및 참고인 면담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다.

3) 피진정인 4

소대장들이 본인 및 대대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여 전체적으로 부대 단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았고, 소대장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직접 보여줘서 이후에도 그러한 대화들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는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피해자10을 본인 집무실로 불러 그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 10에게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

라.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참고인 1 ○○○

참고인 1은 사고 당시 당직사령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2015. 6. 5. 피진정인 2·3으로부터 BOQ 내 휴게실로 집합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집합했으나 당일 당직사관이라고 집합에서 배제되었고 집합 분위기가 좋지 않아 당직부관에게 사태 해결을 부탁하였다. 당일 08:30~09:00경 피해자 1에게 당직 인계를 한 후 행정실에서 피해자 7의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는 모습을 보고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직감했고, 현장에 가보니 기물이 파손되어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

2) 참고인 2 ○○○

참고인 2는 사고 당시 당직부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당시 당직사관이었던 위 참고인 1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가서 피진정인 2·3에게 집합 상황에서의 폭력 행위를 그만두라고 했으며, 상황이 종료되기를 기다렸다가 위 참고인 1에게 상황을 보고했으나 참고인 1은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3) 참고인 3 ○○○

참고인 3은 당시 해당 대대 작전과장으로 복무하였다. 피진정인 1은 BOQ 방문 시

비품이 깨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 8을 불러 폭행 사건 진상을 파악하고, 지휘참모 회의를 열어 처리방향을 논의하였으나 처리방향에 대하여 피해자들 간에 처벌의견 등을 포함하여 이견이 있었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격리조치, 기물변상, 사과를 하도록 조치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3〉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현장조사 면담조사 결과보고서,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들 진술서, 폭행사건 당시 현장 녹음파일, 사건 현장 기물파손 사진, 폭행 또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사진, 폭행사건 관련 가해자·피해자·참고인들 진술서(피진정인 1이 2016. 6. 5. 폭행사건 당일 제출받은 진술서), 독신자 숙소 관리지침 및 운영현황, 위병소 출입기록, 피진정인 1에 대한 징계의결서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5. 6. 5. 01:20 경 피진정인 2·3은 평소 후임장교인 피해자들이 자신들에게 선임 대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1에게 피해자들을 BOQ 내 2층 휴게실에 02:00까지 집합하도록 지시하였고, 이 지시에 따라 해당 장소에 모여 있는 피해자들에게 02:00~03:00 약 1시간에 걸쳐 의자, 몽둥이 등을 던져 위협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가슴과 옆구리를 폭행하고 뺨을 때리며 지속적으로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좆같은 놈들 씨발”, “너 장애인이야”, “지랄하네”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별 폭행 및 상해 피해사실은 아래와 같다.

1) 피해자 1: 피진정인 3으로부터 명치 부위를 폭행당하였고, 피진정인 2가 던진 몽둥이에 맞아 팔 부위에 15Cm 이상의 상처가 생기는 상해를 입었다.
2) 피해자 2: 피진정인 2로부터 가슴 부위를 3~4회 폭행당하였다.
3) 피해자 3: 피진정인 2로부터 팔과 옆구리를 3차례에 걸쳐 발로 가격을 당하였다.
4) 피해자 4: 피진정인 2로부터 오른팔을 3회 발로 폭행당하였고, 가슴을 2회 정도 구타당하였다.
5) 피해자 6: 피진정인 2로부터 발로 복부와 가슴을 2차례에 걸쳐 폭행당하였다.
6) 피해자 7: 피진정인 2로부터 가슴 부위를 3차례 폭행당하였고, 피진정인 2가 던진

휴게실 의자에 팔 부위에 상해를 입었으며, 피진정인 2가 던진 몽둥이에 우측 다리를 맞았다.

나. 피진정인 1은 15:00 경 BOQ 내 휴게실 비품이 손상되어 있는 상황을 보고 피해자 8을 불러 그 사유를 질문하였고, 피해자 8은 새벽에 있었던 집합과 폭행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함으로써 피진정인 1이 사건 당일 폭행사건을 인지하였다.

다. 사건 당일 피진정인 1은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폭행사건 관계자 진술서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단 헌병대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피진정인 1이 보관하고 있었다. 그 중 폭행 가해자인 피진정인 2·3이 작성한 진술서를 살펴본 결과 비품 파손과 관련한 진술만 있을 뿐 폭행 사실에 대한 진술은 없다.

라. 피진정인 1은 연대 등 상급기관에 폭행사건을 보고한 바 없으며, 연대장 주재 하에 열리는 병력결산 시 중요사항 보고과정에서도 폭행 사건을 보고한 사실은 없다. 다만 폭행사고 발생 이후 피진정인 2·3을 피해자들과 격리조치하여 대대 막사 내 간부 연구실에 기거하도록 하였고 2015. 6. 26. 피진정인 2·3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도록 하였다.

마. 2015. 6. 30. 피진정인 2·3은 육군 제○군단 ○○○특공연대 ○대대에서 전역하였다.

바. 2016. 1. 7. 피해자 10은 피해자 1이 소대장 단체 채팅방에서 쓴 메시지를 캡처하여 피진정인 4에게 전송하였고, 2016. 2. 2. 피진정인 4는 피해자 10을 집무실로 불러 휴대전화 내 채팅방을 본 후 피해자 1이 상관을 비꼬고 추진업무 등에 불만 사항을 적은 내용을 캡처하여 보낼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해자 7의 채팅방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7의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7·10은 피진정인 4에 대한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

사. 2016. 2. 29. 제○군단은 피진정인 1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영내 폭행·가혹행위 묵인·방조) 행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견책을 결정하고, 2016. 3. 4. 제○군단장은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폭행 및 상해 관련

2015. 6. 5. 02:00~03:00 경 발생한 폭행사건 현장 녹음파일과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을 살펴본 결과 피진정인 2·3이 물리력과 지위의 우월성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인정사실과 같이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되었다. 우리 위원회는 피진정인 2·3의 행위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를 직접적으로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피진정인 2·3이 이미 전역하여 현재 군인의 신분이 아니므로 피진정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에 피진정인 2·3에 대한 제재조치를 권고할 수 없으므로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폭행 및 모욕 사건 은폐 관련

피진정인 1은 2015. 6. 5. 사고 발생 당일 오후 13:00 경 연대장과 같이 대대 내 BOQ를 방문한 후 BOQ 내 휴게실 비품이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8을 불러 피진정인 2·3의 폭행 및 모욕행위 상황을 인지하였으나 이를 상급 기관 및 헌병대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지휘관 회의 후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진정인 2·3에 대한 격리와 기물 변상 조치를 원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격리 조치 이외에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 1은 피해자 6이 이 사안에 대해 단순폭행 사건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해당하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받은 후에도 이를 상부기관 및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폭행 및 모욕행위 사건을 은폐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제2항, 「부대관리훈령」 제229조, 육군 「징계처리규정」, 「영내 폭행·가혹행위 징계 엄정 처리지시」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고발생 시 차상위 지휘관 보고, 수사의뢰, 징계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묵인·방조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 1의 영내 폭행 및 모욕 사건에 대한 묵인·방조행위에 대하여 육군 제○군단장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보고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기가 사건의 적극적 은폐에 주된 목적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부대 훈련의 차질,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대상자의 성실성을 감안"하여 피진정인 1에게 견책의 징계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본인의 신분과 관련하여 장기복무 전환 등에 있어 불이익 우려로 적극적 처벌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에 비추어 재발방지를 위하여 부대 내 폭행 관련 사고에 대한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연대 내 간부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지휘관의 휴대전화 단체 채팅방 내용확인 관련

피진정인 4는 피해자 7·10의 휴대전화를 통해 소대장들의 단체 채팅방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피해자 10에게는 이를 캡처하여 보내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타인의 대화 내용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확인함으로써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 7·10이 이 사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과 관련한 진정요지는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정상환 위 원 한태식 위 원 이은경

32 16진정1243 [군부대내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2016. 4. 6. 결정

▌결정사항▐

육군 제○○사단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과 본 진정사건 사례를 지휘관들에게 전파·교육하고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의 행위는 비록, 진정인이 병영내 부조리를 일으켜 신상필벌의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부대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엄단하기 위한 행위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하더라도, 얼차려 지시과정에서 종료시간을 명확히 해주지 않았고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지 않아 '얼차려 규정'을 위반하고 과하게 집행함으로써 해당 병사들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감당키 어려운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

▌참조조문▐

「얼차려 시행기준」

▌진정인▐ 김○○

▌피진정인▐ 배○○(육군 제○○사단 ○○포대장)

▌주 문▐ 육군 제○○사단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과 본 진정사건 사례를 지휘관들에게 전파·교육하고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육군 제○○사단 ○○포대 근무 중, 전역을 하루 남겨둔 2016. 2. 17. 야간에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과 '전역빵(전역자 때리기)'을 하였다. 피진정인은 이를 이유로 진정인에 대하여 전역 당일인 2016. 2. 18. 08:30분경부터 16:30경까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 90여 바퀴를 보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가혹행위이며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이 얼차려를 받는 동안 현장을 감독하는 간부가 없었고, 완전군장보행시 총 4km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여, 피진정인은 시간을 정해주지 않고 끝내라고 할 때까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보행하라고 하여 진정인은 결과적으로 규정된 거리의 5배가 넘는 약 22.5km를 보행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얼차려 시행전 기본적인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고 중간에 쉬는 시간도 부여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하였다. 다만, 얼차려를 시행한 본부포대장 임○○은 피진정인의 지시에 의해 시행한 자로 책임이 없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2016. 2. 18. 본부포대장 임○○으로부터 진정인을 포함한 병사들이 전날밤에 일명 '전역빵'행위를 빙자한 상호 폭행사실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받은바, 현역병은 징계처리하고 전역자 3명은 얼차려 후 전역조치 하도록 지시하였다. 얼차려를 직접 시행한 것은 본부포대장인데 얼차려 시행시 본부포대장이 완전군장 보행시간과 방법을 명확하게 부여하지 않아 육군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사후에 확인하였다. 다만, 이는 병영부조리에 대한 신상필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본부포대장이 행정보급관과 함께 얼차려 시작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얼차려 시행 중에도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등을 부여한바 있으므로 감정적 보복행위가 아니다. 본부포대장에게 오전까지만 하고 오후에 귀가하라고 확실하게 지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다. 참고인 박○○(진정인 동기, 같은 피해자)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얼차려가 끝나는 시간도 정해주지 않고 야외 사격장으로 나갔는데 본부포대장을 포함한 간부들이 함부로 이를 멈추게 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피진정인이 14:30경 부대에 복귀하였기에 얼차려를 멈추고 귀가하게 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아무 조치가 없었고, 16:00에 연병장에서 전투체육을 하면서 얼차려를 받고 있는 진정인과 참고인을 보면서도 얼차려 종료를 지시하지 않았다. 결국 16:30경 얼차려를 마치고 17:30경 부대정문을 나왔고, 강원도 ○○에서 19:00 버스로 21:00경 동서울터미널에 도착하였으나 다리도 아프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찜질방에서 취침 후 익일 울산광역시로 귀가하였다. 진정인과 참고인이 아무리 규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얼차려

부여는 도가 지나친 보복행위라고 생각하며 잘못을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결과, 육군규정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강원도 ○○군 소재, 육군 제○○사단 ○○포병대대 본부포대에서 군복무 중 전역을 하루 앞둔 2016. 2. 17. 21:33~21:40간 생활관에서 같이 전역하는 동기2명과 약 12명의 소대원들과 함께 '전역빵(후임병들이 전역자의 양해하에 일시적으로 구타하는 행위)'을 하다가 당직사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이를 보고받고 '부대관리 훈령'상 병영생활 중 구타·가혹행위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진정인 및 '전역빵' 참여자를 징계처리 하도록 본부포대장에게 지시하였고 본부포대장은 진정인 등에게 얼차려를 부여하였다.

다. 진정인은 위 지시에 의해 2016. 2. 18. 08:30~12:00, 13:30~16:30 총 6시간 30분 동안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약 90바퀴를 보행한 사실이 있다. 연병장 1바퀴가 약 250m 정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약 22.5km의 거리에 해당하므로, 완전군장 보행의 경우 1회 1km, 계속 4회(총 4km)이내에서 실시하며 1시간 초과시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육군규정 120(얼차려 규정) 및 별표2 '얼차려시행기준'을 초과하였다.

마. 당일 연병장 노면은 눈이 내린 후여서 물기가 많은 상태였고 얼차려 시행중 현장을 직접 감독한 간부는 없다.

바. 진정인의 동기이며 같은 피해자인 참고인은 전역당일 얼차려가 16:30경 끝난 관계로 울산의 자택으로 당일 귀가하지 못하였다.

4. 판단

가.「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헌법」제12조에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군인이라 하더라도 배제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비춰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비록, 진정인이 병영내 부조리를 일으켜 신상필벌의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부대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엄단하기 위한

행위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하더라도, 얼차려 지시과정에서 종료시간을 명확히 해주지 않았고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지 않아 '얼차려 규정'을 위반하고 과하게 집행함으로써 해당 병사들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감당키 어려운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진정인 및 참고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하면 군의 특성상 피진정인의 지시를 받는 본부포대장은 얼차려를 시행함에 있어 특별히 재량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서 부대관리에 관련된 규정과 전문지식 등을 습득하여 이를 정확하게 이행할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진정인이 본부포대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기를 바라는 점을 참작하여 본 진정사건에서 본부포대장에 대한 조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판단컨대 인권침해 발생에 대한 책임과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과 사례전파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5. 결론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본 진정 건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정상환 위 원 한태식 위 원 이은경

〈붙임〉 얼차려 시행기준

1. 얼차려 실시요령

① 얼차려를 부여하는 자는 피교육자의 병영생활 상태와 체력수준을 고려하여 얼차려 방법과 횟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얼차려를 부여하는 자는 얼차려 시행이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임을 명심하여 피교육생이 얼차려로 인하여 인간적인 수치심을 느끼거나 가혹행위(고통)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얼차려를 부여하는 자는 피교육생이 얼차려를 통하여 정신을 수양하고, 행동을 숙달하며, 체력을 단련했다는 등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육군 전 장병은 규정되지 않은 얼차려를 부여할 수 없다.
※ 얼차려를 집행하는 간부는 가능한 한 얼차려를 받는 병사와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고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지휘통솔 방법임.

2. 얼차려 대상

① 각급부대는 법과 규정, 지침, 지시를 위반한 대상자(병사)중 징계 또는 법적제재의 대상자와 군기 교육대 입소 대상자를 제외한 경미한 위반자에게 얼차려를 부여할 수 있다.(“근신” 처분자 중 얼차려 부과자 포함)
② 각급부대는 구두 교육에 의한 교정을 우선 시행 후 교정이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잘못을 반복할 경우, 교육훈련 시 훈련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 얼차려를 시행할 수 있다.

3. 얼차려 부여절차

① 얼차려 시간 : 일과시간~자유시간 내(08:00~20:00), 1회 1시간 1일 2시간 이내로 실시, * 1시간 초과시 중간 휴식시간 부여
② 승인권자 : 소대장 이상 지휘자(관), 휴무간 대대급 이상 당직사령
* 승인권자는 “집행자, 시기,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한다.
③ 집행권자 : 분대장 이상 간부, 휴무간 당직사관 이상 간부
* 얼차려는 반드시 집행자 감독하에 실시하며, 공개된 장소(연병장, 복도, 부대 사전 등)에서 실시한다.

4. 얼차려 방법

가. 병 교육기관

구 분	1~2주차	3~5주차
팔굽혀펴기	1회 20번 이내, 계속 2회 이내 반복	1회 20번 이내, 계속 3회 이내 반복
앉았다 일어서기	1회 20번 이내, 계속 2회 이내 반복	1회 20번 이내, 계속 3회 이내 반복
개인호 파고 되메우기	1회 20분 이내	1회 20분 이내, 계속 2회 이내 반복
보행	1회 1Km이내(단독군장)	1회 1Km이내(단독, 완전군장) 계속 2회 이내 반복(2Km)
순환식 체력단련	1회 10분 이내	1회 10분 이내, 계속 2회 이내 반복

나. 야전 부대

구 분	일·이병의 얼차려	상·병장의 얼차려
팔굽혀펴기	1회 20번 이내, 계속 4회 이내 반복	1회 20번 이내, 계속 5회 이내 반복
앉았다 일어서기	1회 20번 이내, 계속 4회 이내 반복	1회 20번 이내, 계속 5회 이내 반복
개인호 파고 되메우기	1회 20분 이내, 계속 2회 이내 반복(40분)	1회 20분 이내, 계속 3회 이내 반복(60분)
보 행	1회 1Km 이내 (단독, 완전군장) 계속 3회 이내 반복(3Km)	1회 1Km이내(단독, 완전군장) 계속 4회 이내 반복(4Km)
뜀걸음	1회 2Km 이내(단독군장)	1회 4Km이내(단독, 완전군장)
순환식 체력단련	1회 10분 이내, 계속 3회 이내 반복(30분)	1회 10분 이내, 계속 4회 이내 반복(40분)
특정지역 청소	1일 이내	1일 이내
반성문 작성	1회 500자 이내	1회 500자 이내, 계속 2회이내 반복
참 선	1회 20분 이내	1회 각 20분 이내 계속 2회이내 반복(40분)

33 16진정3653 [학군단 간부의 상습적 폭언 및 폭행] 2016. 7. 20. 결정

▌결정사항▐

육군교육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1] 피해자들과 피진정인들을 분리시키기 바람

[2]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징계조치 및 필요한 법적조치를, 피진정인 2에 대하여는 경고조치 하기 바람

[3] 학군단내 인권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바람

▌결정요지▐

학군단장 및 행정보급관이 학군단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참조조문▐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부대관리훈령」 제229조(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

▌진정인▐ ○○○

▌피해자▐ 1. ○○○
2. ○○○

▌피진정인▐ 1. ○○○
2. ○○○

▌주 문▐ 육군교육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1. 피해자들과 피진정인들을 분리시키기 바람.
2.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징계조치 및 필요한 법적조치를, 피진정인 2에 대하여는 경고조치 하기 바람.
3. 학군단내 인권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바람.

▌이 유 ▐

1. 진정의 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15. 10. 피해자 1에게 전문하사 지원을 해보라고 했으나 피해자 1이 결정을 못했다고 하자 엎드리라고 한 후, 골프채 재질의 지휘봉으로 피해자 1의 엉덩이를 2대 폭행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수시로 피해자 2에게 사적인 출퇴근 및 사적인 용무에 학군단 관용차량으로 운전할 것을 강요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2016. 3. 26. 07:20경 관용차량 열쇠를 피진정인 2가 가지고 있어 피해자 2가 출근차량 지원을 하지 못하자 출근하면서 행정실에 들러 피해자 1, 2에게 "씨발놈들 보자보자 하니까", "좆만한 새끼들 진짜 뒤질라고" 등의 욕설을 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을 만나면 수시로 뒤통수, 정수리, 목, 뺨 등을 기분 나쁘게 때리며 "야 씨방새야! 씹새야! 좆까라" 등 욕설을 하였고, 건물주변에 담배꽁초가 있으면 "다 니가 피운 거다" 하며 귀를 잡아당겼다.

마. 피진정인 1은 2016. 4. 26. 19시경 사적모임에 갈 때 피해자 2가 차량대기를 늦게 하자 "시건방진 새끼야! 영창에 넣어 버릴라", "내가 우습냐 ?"며 욕설을 하였다.

바. 피진정인 1은 2016. 5. 9. 09시경 컴퓨터 받침대 구입과 관련하여 대답이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1의 뺨을 1대 때린 후, 손으로 밀치며 "넌 됐어 새끼야! 이 새끼는 사 주지 마"라며 인격 비하적인 발언을 하였다.

사. 피진정인 2는 피해자 2가 대학에 다니다 입대한 것에 비해 피해자 1이 대학에 다니지 않은 것을 비하하며 "무식한 새끼", "힘만 쎈 새끼" 등 차별적 발언을 하였다.

아. 피진정인 2는 수시로 피해자 1에게 "씹딱다구리 새끼야" 등 폭언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의 주장요지

1) 피해자 1의 주장요지

피진정인 1이 2015. 10. 경 골프채로 때릴 때 본인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본인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고 아프기도 하였다.

피진정인 1이 2016. 5. 9. 본인의 얼굴을 때리는 것이 CCTV에 찍혀있는데, 이 때 피진정인이 때릴 것이 예상되어 얼굴을 살짝 피했고 피진정인이 이어서 본인에게 "너 새끼는 안 사 줘" 하며 밀쳐 낼 때 모욕감을 느꼈다.

피진정인 1에게 1주일에 2회 이상 뒤통수, 뺨 등을 맞았는데 감정이 실린 폭행이 아닐지라도 상습적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생각했으며, 마주칠 때마다 "씹새끼" 등 폭언을 들었다.

2) 피해자 2의 주장요지

피진정인 1은 상습적으로 피해자 1의 뒤통수와 뺨을 때리고, 피진정인 2와 함께 매번 쌍욕을 입에 달고 살고 있으며, 피진정인 2는 피해자 1이 본인 의지로 대학에 가지 않은 상황임에도 대학에 다니다 온 본인에 비하여 무안할 정도로 "무식한 새끼 등" 인격 모독적이고 차별적인 발언을 하였다.

피진정인 1에게 관용차량의 사적운행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2016. 3. 피진정인 2가 관용차량 열쇠를 가지고 있어 아침에 차량지원을 하지 못하자 피진정인 1이 행정실로 와서 "씨발놈들! 개새끼" 등 심한 폭언을 할 때 모욕감을 느꼈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의 주장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생각하며, 때렸다는 표현은 감정이 실린 것일 텐데 그런 것이 아니므로 폭행이라 할 수 없다. 맞은 사람 입장에서 때렸다고 할 수도 있겠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개인차량이 파손되어 날씨가 안 좋은 날 관용차량을 이용한 것이며, 평소 걸어 다니기도 하였다. 모임이 있는 경우라 해도 갈 때만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복귀 시는 이용하지 않았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개인적으로 차량사고도 있었고 하여 당시 피해자 2가 오지 않자 차량 이동 중 사고가 났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쌍놈의 새끼들! 똑바로 해라"라고 했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본인으로서는 친근감의 표현이나, 피해자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맞을 것이고 본인의 무지의 탓이다.

마) 진정요지 마항 관련

피해자 2에게 대기시간을 지시하였는데 피해자 2가 늦게 온 것에 화가 나서 "시건방진 새끼야! 영창에 집어 넣을라" 등 폭언을 했을 수 있으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바) 진정요지 바항 관련

인신공격을 받는 것 같고 손찌검이라는 표현에 당황스럽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하여 밝히면 될 것이다.

2) 피진정인 2의 주장

가) 진정요지 가 ~ 바항 관련

피진정인 1은 특전사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고, 남자끼리 쓰는 육두문자를 가끔 사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야 씹쌔야', '씨방새', '씨발놈들' 등이다. 듣는 사람에겐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겠으나 피진정인 1이 친근해지고자 하는 취지로 보았다.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에게 "이 씨방새야! 밥 먹으러 가자"같은 말을 하고 수시로 툭툭 치기도 했고 귀도 잡아 당겼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구타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에게 전문하사 지원을 제안했는데, 피해자 1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빨리 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피진정인 1이 "이 씨방새야! 할 거야, 안할 거야?"라고 하니까 피해자 1이 "저는 그냥 제대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피진정인 1이 "너는 끝난 거야, 씨방새야"라고 말하고 엎드리라고 한 뒤 골프채를 들었다. "아버지처럼 얘기하는 거야"라고 말하고 2대쯤 때리는 걸 보았다. 피해자 1이 아프다고 말 하지는 않았으나 제3자가 보기에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진정인 1이 소파에 앉아서 컴퓨터 밑에 깔 유리 받침대 캐털로그를 보다가 “다 하나씩 사 줘”라고 하고 피해자 1을 옆으로 불러서 물었는데, 그 때 피진정인 1이 “야! 이 새끼는 사주지 마”라고 말한바 있다. 그 때 폭행이 있었는지는 생각나지 않는다. 본인은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있었던 것 같다.

피진정인 1의 개인 차량이 2월에 눈길에 미끄러져 그 때부터 관용차량을 출퇴근 등에 사용하였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나 ○○○로서 적절히 시정 조치하지 못했다.

피해자 2가 피진정인 1의 출퇴근을 시켜주었는데, 한번은 피진정인 2가 관용차량 열쇠를 보관하고 있어 차량 지원을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 2에게 욕설을 했다고 들었다.

나) 진정요지 사, 아항 관련

피해자 2가 3개월간 교육을 가서 피해자 1이 행정업무를 혼자 담당하였다. 그런 점에서 본인은 피해자 1을 더 좋아하지 피해자 2를 좋아할 이유가 없으며 차별하지도 않았다. 100%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본인의 잘못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자숙하고 있다.

라.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참고인 1

피진정인 1은 특전사에서만 10여년 근무했고 병사들이 아들과 나이가 같다며 친근감의 표현으로 거친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병사들이 잘못한 게 있을 때 욕도 가끔 하고 “야! 씨방새야! 씹새야” 등 표현을 했다.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아는 바 없다.

2) 참고인 2

피해자들이 본인에게 간부들의 거친 말과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이야기한 적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들의 주장, 피진정인들의 주장, 참고인들의 진술, ○○○학교학군단 설치 CCTV영상, 전화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학교학군단은 ○○○ ○○시 소재 ○○대학교 학내에 독립된 2층 건물이며 학군단장인 피진정인 1은 2층에서 근무하고, 행정보급관인 피진정인 2와 피해자 1,

2는 1층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1은 2015. 10. 경 피해자 1에게 '전문하사'를 지원해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1이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자 행정실에서 골프채 샤프트 재질의 지휘봉(길이 약 1m, 두께 1.5.cm)으로 피해자 1의 엉덩이를 2대 때렸다.

다. 피진정인 1은 2016. 2.부터 2016. 6.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운전병인 피해자 2에게 학군단 관용차량으로 본인의 사적인 용무인 출퇴근시에 운전을 하도록 시켰다.

라. 피진정인 1은 2016. 3. 26. 07:20경 행정실에서 피진정인 2가 관용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피해자 2가 출근을 시켜주지 못한 일이 발생하자 피해자 1, 2에게 "씨발 놈들 보자보자 하니까", "좆만한 새끼들 진짜 뒤질라고" 등의 욕설을 하였다.

마. 피진정인 1은 수시로 피해자 1의 뒤통수, 정수리, 목, 뺨 등을 때렸으며 "야! 씨방새야! 씹새야! 좆까라" 등 욕설을 하였고, 건물 주변에 담배꽁초가 있으면 "다 니가 피운 거다"라고 하며 귀를 잡아당겼다.

바. 피진정인 1은 2016. 4. 26. 19시경 사적 모임에 갈 때 피해자 2가 관용차량 대기를 늦게 하자 "시건방진 새끼야! 영창에 넣어 버릴라", "내가 우습냐?"며 폭언을 하였다.

사. 피진정인 1은 2016. 5. 9. 09시경 컴퓨터 받침대 구입과 관련하여 대답이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1의 뺨을 1대 때린 후, 손으로 밀치며 "넌 됐어 새끼야! 이새끼는 사 주지마"라는 욕설을 하였다.

아. 피진정인 2는 피해자 1에게 수시로 "무식한 새끼", "씹딱다구리 새끼"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있다.

4. 판단 및 조치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군인이라 하더라도 제외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가. 피해자들 및 피진정인들,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진정인 1이 수시로 피해자 1에 대해 폭행 및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2에 대해서도 폭언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을 지휘봉으로 폭행하거나 수시로 뒤통수 등 신체를 가격한 행위는 「부대관리훈령」 제226조에서 규정하는 구타·가혹행위로 볼 수 있고,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언을 한 것은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인격적 모독행위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은「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부대관리훈령」제229조 및「군형법」제62조(가혹행위)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1에 대해 징계 및 필요한 법적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피진정인 1이 학군단 관용차량을 출퇴근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진정요지는 군에서 법령 등 위반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다. 한편 진정요지 사, 아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2는 피해자 1에 대한 차별적 발언과 폭언에 대해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참고인 등의 진술로 보아 차별적 발언과 폭언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진정인 2의 행위는 학군단장의 잘못된 언행을 간부들이 여과 없이 따라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학군단내에 잘못된 문화에 익숙해져 그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진정인 2는 피해자 1에 대한 차별적 발언 등으로「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1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 2에 대해서 경고조치할 필요가 있다.

라. 위와 같은 징계·경고 등 필요한 법적조치에 앞서 상급기관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학군단의 특성과 피진정인들과 피해자들의 수직적 업무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피진정인들과의 분리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또한 학군단의 특성상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학군단내 인권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5조 제2항 및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7. 2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정상환 위 원 이은경 위 원 장애순

34 16진정4867/4552/7897(병합) [해병대 선임병의 취식 강요 등 가혹행위] 2016. 12. 27. 결정

▌결정사항▐

[1] 국방부장관에게, 해병대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는 국방인권협의회, 군인권교육협의회에서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권고

[2]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의 병영악습 개선을 위해 국방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그간 인권위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내에 취식 강요 행위 등 병역 악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진단 필요

▌참조조문▐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및 제324조(강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38조(기본권교육 등) 및 제43조(신고의무)

▌진정인▐ 1. ○○○
2. 해병대 제○여단 헌병대 ○○○

▌피진정인▐ 1. 해병대 ○○○ ○○근무대대 ○○○
2. 해병대 ○○○ ○○근무대대 ○○○
3. 전 해병대 제○여단 헌병대 ○○○

▌주 문▐ 1. 국방부장관에게, 해병대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는 국방인권협의회, 군인권교육협의회에서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

2.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의 병영악습 개선을 위해 국방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진정인 1은 피해자 1의 모이고, 피해자 1은 전 해병대 ○○○ ○○근무대대 병사였다. 진정인 2는 해병대 ○여단 헌병대 소속 병사로서 같은 부대 소속 다수 부대원들을 피해자 2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해자 1은 아래 가, 나항의 피해를, 피해자 2는 아래 다항의 피해를 당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구제와 군부대의 책임 등 재발방지를 요구한다.

가. 피진정인 1은 2016. 3.부터 피해자 1에게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가하였으며,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이른바 '해병대 악기바리(이하 '악기바리' 또는 '취식 강요 행위'라고 한다)'를 하였다. 또한 2016. 3. 하순 경 피해자 1의 성기를 만지며 "니 자지 물총"이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성추행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악기바리'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2016. 6. 14. 피해자 1이 전출을 가게 되자 "니 군대생활 꼬일 대로 꼬였다. 상상 이상의 것을 보여 주마." 라는 글씨를 적은 메모지를 피해자가 보도록 하는 등 협박하였다.

다. 피진정인 3은 2015. 9. 경부터 해병대 ○여단 헌병대 소속 다수의 병사들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게 하는 '악기바리'와 가혹행위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의 주장 요지

1) 피해자 1의 주장

가) 피진정인 1은 체중 목표를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음식을 먹이고 수시로 4층에 있는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도록 하였다. 처음 몸무게가 75kg이었는데, 84kg까지 올리겠다면서 "PX에서 많이 먹었다고 밥을 거르면 뒤진다.", "나도 선임에게 이렇게 당해서 살이 쪘다."라고 말하였다.

나) 취식 강요는 선임이 후임에게 관행처럼 했다. 전역한 ○○○이 피진정인 1과 ○○○에게, ○○○이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에게,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과 피진정인 2에게 했다. 피진정인 1은 양쪽 주머니에 초코바를 각각 7개, 9개씩 넣은 뒤 피해자 1에게 "어느 쪽을 먹을 거냐?"고 물어서, 한쪽을 답하면 그걸 다 먹게 했다.

다) 피진정인 1은 2016. 3. 하순 경 생활반에서 내 성기를 만지고 "니 고추를 만질 때마다 병기번호를 불러라."라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병기번호를 복창했고, 다른 날엔 성기를 만지며 "니 자지 물총이지?"라고 말하였고, 샤워장에서 옷을 벗을 때 "와, 니 고추 왜 이렇게 시커먼데"라고 모욕을 주어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또한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의 선임인 피진정인 2의 성기를 만지라고 강요하였고, 피해자 1이 주저하자 "씨발 놈이 선임 말이 말 같지 않니?"라고 욕설을 하여, 어쩔 수 없이 피진정인 2의 성기를 만졌다.

라) 해병대 ○○○○기인 피진정인 1은 7기 아래인 피해자 1에게 계급별 인계사항, 식단표 등의 암기를 강요하였다.

마) 해병대 헌병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1이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부대 내에서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였다. 내가 전출 갈 때 내 메모지에 "니 군 생활 꼬일 대로 꼬였다. 상상 이상의 것을 보여주마. -맞선임-"이라고 적혀 있었다. 피해자 1은 그것이 피진정인 2의 행위라고 생각한다.

바) 피해자 1은 후임에게 악기바리를 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이 후임병을 잡으라고 하여 선임으로부터 배운 대로 후임 병사에게 "예전엔 인계사항, 암기사항, 악기바리 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고, 후임병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느꼈을 수도 있다.

2) 피해자 2(해병대 제○여단 헌병대 소속 다수 병사)의 주장 요지

가) 피진정인 3이 처음엔 빵을 1개씩 주다가 겹쳐서 주고, 다시 햄버거 모양으로 만들어서 주었다. 그래서 12개를 다 먹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잘 모르고 권리구제절차에 대해 교육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진정인 3이 빵을 1개 주고 다 먹기 전에 또 주고, 삼키려고 하면 또 주는 식으로 먹였다. 3개씩 햄버거 모양으로 뭉쳐 3회 먹였다.

다) 피진정인 3이 컵라면을 끓여, 자신은 국물에 밥을 말아먹겠다고 하고, 면은 뚜껑에 담아서 나에게 먹으라 했다. 그러더니 젓가락으로 김치를 주먹 크기만큼 푹 집어서

내 입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잘 모르고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교육받지 못했다.

라) 피진정인 3은 후임에게 먹이면서 괴롭혔다. 초코파이를 좋아하지 않는데 강제로 먹여서 싫었다. 파이에서 마시멜로만 빼서 먹일 때도 있고 통째로 먹일 때도 있었다.

마) 불교 종교행사에 다녀오면서 초코파이를 주었는데 피진정인 3이 그걸 계속 먹여서 구역질을 하고 토했다.

바) 피진정인 3은 한꺼번에 초코파이 같은 빵 3개를 햄버거 모양으로 눌러 한 입에 넣으라고 했다. 빨리 먹다 보니 입이 아팠다.

사) 피진정인 3이 "악기바리 한번 해볼래."라고 말하고 끓인 라면을 1분 안에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컵라면을 10초에 먹으라 했고, 카스타드 1상자(12개)를 1개씩 개봉해서 12개를 다 먹였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 피진정인 1의 주장요지

가) 피해자 1을 건조실로 불러 걷어찬 사실이 있다. 자신도 선임에게 그렇게 당해서 똑같이 한 것이다. 손으로 후임의 성기를 툭 치면서 병기번호를 대라고 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 1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 자신이 선임에게 당했던 것처럼 피해자 1에게 악기바리를 2회 시행하였다. 피해자 1에게 "남기지 말고 먹어라. 해병대 왔으니 악기바리 한번 정도는 당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선임에게 당한 것에 비하면 아주 약한 행위였다.

다) 악기바리는 해병대 관행이었다. 선임이 먹으라고 하는데 남기거나 적게 먹거나 젓가락으로 집어먹으려 하면 선임이 욕을 심하게 했다.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선임이 먹으라고 하면 "감사히 먹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다 먹었다. 자신이 전입 왔을 때 61kg이었는데 악기바리로 계속 먹어서 81kg까지 쪘다. 하루 PX를 4번도 갔고, 중식 때 나온 떡을 18개까지 먹었다. 2015년 추석 때 대통령 특식으로 1인당 넛바 초콜릿 60개가 나왔는데, 선임은 피진정인 1에게 오목을 두자고 했고, 피진정인 1이 이기면 다시 두고 자기가 이기면 3-4개씩 먹으라고 하는 방식으로 2일간 180개를 먹었다.

라) 선임들은 식단표, 기수별 호봉에 따른 제한사항, 군가, 인계사항 등을 다 외우라고 했고, 자신도 피해자 1에게 그렇게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병대

악습을 개선하는데 노력해 주기 바란다.

마) 악기바리 사건 터지고 부대에서 1주일간 제식훈련, 총검술 등을 했는데, 중대 단결활동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군기교육이었다.

2) 피진정인 2의 주장요지

가) 자신이 입대했을 때 이미 선임이 음식을 사서 후임에게 강제로 먹이는 전통이 있었다. 피진정인 1은 "살을 몇 kg까지 찌우겠다. 저녁 안 먹으면 뒤진다."는 말도 했다. 늘 그렇게 지냈고 익숙한 상황이라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나) 전입 때부터 식단표, 서열, 호봉별 제한사항, 군가 등을 외워야했고, 외우지 못하면 선임이 짜증을 냈다. 자신도 후임에게 그렇게 하였고, 암기하지 못하면 화를 냈다.

다) 자신이 피해자 1에게 보복성 메모를 썼다고 하는데 정말 모르는 일이다. 필적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자신이 쓴 것이 아니다.

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었고, 군인의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

3) 피진정인 3의 주장요지

가) 장난으로 후임들에게 음식을 먹인 사실이 있으나 악의적 의도는 없었다. 후임들이 빵이나 과자를 먹다가 흘리면 아까워서 손으로 밀어 넣었다. 대부분 알아서 먹었고, 강제로 먹인 것은 몇 번 되지 않는다. 초코파이 등을 햄버거 모양으로 만들어서 먹인 사실이 있다.

나) 자신도 해병대에 입대해서 선임에게 악기바리를 당한 적이 있다. 한번에 5-6개씩 먹었다.

다) 후임들이 자신에 대해 나쁘게 말해서 생긴 사건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도 후임들의 따돌림으로 군복무 말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라.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참고인 1 ○○○(해병대 ○○○ ○○근무대대)

군가, 식단표, 서열 등의 암기사항이 존재하고, 음식은 주로 선임이 사와서 후임들에게 먹이는데 예의상 다 먹는 관행이 있다.

2) 참고인 2 ○○○(해병대 ○○○ ○○근무대대)

가) 철이 없던 시절에 악기바리를 했지만, 이는 당한대로 똑같이 후임에게 행한 것이다.

나) 군가, 식단표, 호봉별 제한사항, 서열 등을 다 외웠고 외우지 못하면 욕을 먹었다. 과거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3) 참고인 3 ○○○ 원사(해병대 ○○○ ○○근무대대 근무중대 ○○○)

가) 해병대엔 기수가 존재하니까 상하 간 예절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으나, 병사들 상하 간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명령하는 문화는 없어졌다.

나) 예전엔 음식이 많지 않아서 음식으로 장난치는 악기바리는 상상하지 못했다. 이러한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4) 참고인 4 ○○○ 대위(해병대 ○○○ ○○근무대대 ○○○○○)

가) 사건 발생 직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피진정인 1이 가해자면서 동시에 피해자란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진정인 1에게 악기바리를 한 ○○○은 "욕설도 추억이고, 욕을 먹으면 제대 후에도 잘 지낸다."는 주장을 하며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다가 전역하였다.

나) 악기바리 사건 발생 직후 대대장과 의논하여 단결 차원에서 전우애를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피해자를 훈련에서 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듯하여 모두 함께 총검술, 제식훈련 등을 하였다. 군인이므로 오와 열을 맞추는 기본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다. 구보, 큰 목소리 등이 '해병대 DNA'라고 생각해서 땀을 흘린 것이다.

다) 해병대 문화도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해병대 지휘관들도 전문적인 인권교육을 받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5) 참고인 5 ○○○ 중령(해병대 ○○○ ○○○○○○○)

가) 해병대 기수 문화와 병영악습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한동안 악습이 없었다가 변질돼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 병사들이 입대 전부터 SNS나 인터넷을 통해 해병대의 못된 전통을 알고 들어온다. 선임이 PX 가서 음식을 사주면 후임은 '식탐'이 발동해서 많이 먹게 된다. 그러다가 악습이 생각나서 "다 먹어"라고 말하면 후임이 먹게 되는 것이다. 피진정인 1의 경우

자기 돈으로 사서 피해자 1을 먹인 것이므로 악의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다) 전역한 ○○○ 이전부터 인계사항, 암기사항 등을 강요하는 악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악습은 은밀하게 전수되는 경향이 있다. 솔직히 말해서 언제 또 악습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해병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도 많이 바뀌었다. 해병대 스스로 고칠 수 없다면 외부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통해서라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6) 참고인 6 ○○○ 대위(해병대 제○여단 ○○○ ○○○○)

가) 악기바리는 해병대의 오도된 문화라고 생각한다. 해병대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병사가 일부 있다. 피진정인 3도 그런 방식으로 당하면서 보고 배웠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 피해자 2 중 △△△ 병사의 피해사실을 상관에게 늦게 보고한 잘못을 인정하며, 그동안 병사 인권교육을 실시했지만, 병사들이 인권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7) 참고인 7 ○○○ 소령(해병대 제○여단 ○○○○)

가) 참고인 6이 피해자 2 중 ○○○ 병사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 병사들에게 욕설한 사실까지 포함해 서면 경고 조치한 것인데, 경고장에 '보고 지연' 등의 문구를 넣지 않은 것은 과실이다.

나) 병사들의 설문조사나 면담내용에 악기바리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과 관련, 병영악습 확인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해병대 ○○○ 사건 관련

피해자와 피진정인 및 참고인 등의 각 진술, 해병대 ○○○ ○○근무대대 제출자료, 해병 ○사단 헌병대 수사기록, 해병대 ○○검찰부 조치의견, 외래진료 기록지, 2011. 3.과 2011. 9.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각 결정문, 심리상담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인정사실은 아래와 같다.

1) 피진정인 1은 2015. 6. 29. 해병대에 입대(○○○○기)하여 같은 해 8. 28. 해병대 ○○○ ○○근무대대에 전입하였고, 피진정인 2는 2016. 9. 21. 해병대에 입대(○○○○기)하여 같은 해 11. 20. 해병대 ○○○ ○○근무대대에 전입하였다. 피해자 1은 2016. 1. 18. 해병대에 입대(○○○○기)하여 같은 해 3. 17. 해병대 ○○○ ○○근무대대에 전입하였다.

2) 해병대 ○○○ ○○근무대대의 악기바리 관행은 이미 전역한 ○○○ 병장 이전부터 있었고, 피진정인 1은 자신이 선임에게 당했던 방식대로 후임에게 많은 양의 음식을 강제로 먹였으며, 피해자 1은 직접 악기바리를 시도하지 않았으나 후임 병사들에게 악기바리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 2도 선임에 의한 취식 강요가 해병대 관행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암기 강요 등의 가혹행위를 선임에게 당하거나 후임에게 행한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 1, 2 이외 다른 병사도 취식 및 암기 강요 행위를 최근까지 관행적으로 행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된다.

3) 해병대 ○○○은 2016. 4. 19. 해병 ○사단 헌병대에 피진정인 1을 수사 의뢰하였고, 같은 해 5.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진정인 1에 대해 영창 15일을 결정하였으며, 이후 적법성 심사를 거쳐 영창 10일 처분하고 피진정인 1의 소속을 ○○○○대대로 변경하였다.

4) 해병대 ○○○은 최초 사건인지 후 사건이 발생한 근무중대에 대해 병사 설문조사와 부대 진단 등을 시행하여 병영악습 척결 활동의 일환으로 2016. 4. 21.부터 7일간 구보, 총검술, 제식훈련,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였고, ○○근무대대는 병영문화혁신을 위해 같은 달 22.부터 '100일 작전'을 추진하였는데 이 기간 중 금전거출 행위가 적발돼, '작전 실패'로 보고하고, 같은 해 9. 1.부터 다시 '100일 작전'을 시작하였다.

5) 해병대 ○사단 헌병대는 2016. 7. 1. 피진정인 1에 대해 강제추행, 폭행 등의 혐의를, 피진정인 2에 대해서는 협박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6) 해병대 ○사단 ○○검찰부 회신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1과 피진정인 1은 2016. 9. 30. 합의금 2천만 원에 합의하였고, 피진정인 1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벌금 1백만 원으로 약식 기소해 해병대 제○사단 ○○군사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한 피진정인 2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7) 해병대사령부는 2016. 8. 8. 사건, 사고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공문으로 시달하였는데, 해병대 ○○○의 취식 강요 사건'과 관련하여 ○○○에 기관 경고하고, 피해자 1과 가해자인 피진정인 1을 같은 부대로 전보한 ○○근무 대대장에 대해 개인 경고

처분하였다. 또한 ○○근무부대장은 근무중대장, 행정관, 병참소대장 등에 대해 주의장을 발부하였다.

8) 피해자, 참고인 등의 각 진술을 종합할 때 해병대 부대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나 권리구제 체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9)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3. 해병대 ○사단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 직권조사(11직권0000100) 결정문에 빵을 강제로 먹이는 악기바리 행위를 적시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병영악습 개선을 권고하였고, 2011. 9. 해병대 2사단 총기사망사건 직권조사(11직권0001100)에서 많은 양의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악기바리 행위를 확인하였으며, 2015. 11. 윤일병 사망사건 등 7개 부대 직권조사(14직원0001200 등 7건)에서도 국방부장관에게 가혹행위 등 병영악습 개선을 권고하였다. 각 권고에 대해 국방부는 수용 의견을 회신하였다.

나. 해병대 제○여단 사건 관련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 등의 각 진술, 해병대 ○여단 헌병대 인사기록, 해병대 ○여단 헌병대 수사자료, 경고장, 근무일지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진정인 3은 2014. 12. 해병대에 입대(○○○○기)하여, ○여단 헌병대에서 근무하다 2016. 9. 28. 만기 전역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피진정인 3의 후임병이며 현재 ○여단 헌병대에 복무 중이다.

2) 피진정인 3은 전역한 선임으로부터 악기바리를 당하였고, 후임 병사들에게 빵을 햄버거 모양으로 눌러 강제로 먹이는 등의 악기바리를 수시로 하였다.

3) ○여단 헌병대는 수사 진행 중 피진정인 3이 전역하자 2016. 10. 27. 피진정인 3에 대한 위력행사 가혹행위 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서에 이첩하였다.

4) 참고인 6(해병대 ○여단 군기과장)은 2016. 9. 24. 새벽 피해자 2 중 병사 ○○○의 신고내용을 인지하고도 직속상관인 헌병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헌병대장은 이 사실을 포함한 군기과장의 욕설 등을 묶어 서면 경고장을 주었는데, 경고장 문구에 '보고 지연' 사실은 기재돼 있지 않다.

5) 해병대 ○여단 헌병대는 2014년 1회, 2015년 1회, 2016년 2회 병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구타, 집합, 얼차려, 자살 충동, 언어폭력, 따돌림 피해 등에 관한 답변이 지속적으로 제출되었다.

6) 해병대사령부는 2016. 7. 15. 일반명령 제16-4호를 시달하였는데, 여기에 병영악습 및 부조리 척결을 위한 특단 활동으로 교육, 심층면담, 간담회, 발표회, 결의시간, 단결활동 등을 명시하고 있다.

7) 해병대 ○여단 헌병대 2016. 전반기와 후반기 각 1회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병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나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이하 '기본법') 제26조는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기본법 제정 이후 폐지된 「군인복무규율」 에도 관련 조항이 명시돼 있다. 또한 '기본법' 제10조는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는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기본법' 제38조는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헌법」 과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 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 1, 2가 피해자 1에게 가한 악기바리 등 가혹행위, 피진정인 3이 소속 부대원들에 대해 행한 악기바리 등 가혹행위는, 피진정인들이 지위의 우월성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손상하고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굴욕을 주었다는 점에서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 및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 위반 소지가 있고, '기본법' 제26조(폐지된 군인복무규율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해병대 ○○○ ○○대대 근무중대의 경우, 피진정인 1, 2 뿐만 아니라 이미 전역한 병사와 현재 복무중인 병사들 사이에서 악기바리가 최근까지도 관행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 관리 책임자들은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헌병대가 밝히지 못한 병영악습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또한 해병대 제○○여단 헌병대의 경우도, 2014년 이래 설문조사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했거나 목격했다는 답변이 지속되었음에도 해당 부대 지휘관들은 이를 심층 조사하지 못했고, 심지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도 즉시 보고하지 않는 등 헌병대 간부로서 본연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지휘 책임자는 병사를 직접 관리하는 군기과장에게 경고장을 수여하면서 핵심 사항인 '보고 지연' 내용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위 부대들의 지휘감독자들은 악기바리 등 병영악습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피진정인들에 의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그간 국가인권위원회의 거듭된 병영악습 개선 권고와 국방부장관의 권고 수용에도 불구하고 본 건과 같은 사건이 재발된 것은 해병대의 병영악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악기바리 피해자가 시간이 지나면 가해자가 되어 병영악습을 존속시키고 있어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근본적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구나 해병대가 병영 악습을 '중대한 인권침해'가 아니라 '작전' 또는 '군 기강 해이' 개념으로 인식하는 등 군 내부의 자체적 개선은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 등을 종합할 때, 대부분의 병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권리구제 절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조치사항

가. 피진정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책임

본 건과 관련하여 군 검찰에서 피진정인 1을 2016. 10. 12. 약식 기소하고, 피진정인 2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해병대 제○여단 헌병대는 2016. 10. 27. 피진정인 3과 관련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1, 2에 대해서는 기소되거나 수사 중인 범죄 혐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되지만 피진정인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따로 분리하여 위원회가 추가로 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부대 관리감독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책임

진정인이 가해 행위자 외 부대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고, 부대 관리감독자들이 악기바리 등 병영악습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의 인권침해를 초래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해병대 ○○○ ○○대대 근무중대의 경우 지휘책임자들이 이미 경고 등 조치를 받았고, 해병대 제○여단 헌병대의 경우 헌병대장과 군기과장이 2016. 7.부터 해당 부대에 근무하여 병사들의 신상자료 파악이 어려웠다는 점, 군기과장이 이미 경고장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대 관리자들에 대한 별도 조치를 권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재발방지 및 권리구제 교육 관련 실효성 있는 조치 필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 외에도 해병대 ○○○ 및 제○여단 헌병대에 취식 강요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해 병사가 시간이 흐르면 가해 병사가 되는 대물림 현상이 확인되었고, 참고인들은 악습이 현재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해병대의 병영악습 개선을 위해서, 나아가 해병대가 국민의 변화하는 의식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외부 전문기관의 참여 등을 통한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권리구제 절차 등 해병대의 인권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해병대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는 국방인권협의회, 군 인권교육협의회에서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정상환 위 원 이은경 위 원 장애순

개인정보/사생활 자유 침해

1 07진인1960 [부당한 처우에 의한 인권침해] 2008. 12. 10. 결정

○○사단 ○○연대 ○○대대장에게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피해자가 일기이니 읽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일기를 억지로 읽은 것은 피해자의 신상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일기가 매우 사적인 영역을 기록한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점에서 과도하게 개인의 사생활에 간섭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존심을 훼손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7조

▌진정인▐ 한○○

▌피해자▐ 한○○

▌피진정인▐ 1. 윤○○
2. 이○○
3. 오○○
4. 정○○

▌주 문▐ 1. ○○사단 ○○연대 ○○대대장에게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에 대하여는 이를 각 기각한다.
3.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2007. 6. 6. 21:45~21:53경 ○○검문소에서 야간순찰 도중 피해자(진정인의 아들)의 왼쪽 탄창에서 일기장을 꺼내어 전경과 헌병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일기를 소리 내어 읽었으며, 진정인과 같은 중대 소속 전○○, 김○○에게 일기장을 읽도록 지시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2007. 4. 7. 피해자가 ○○검문소로 가는 날 연대본부 상황실에서 성실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다. 피진정인 3은 상황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비공식적으로 자꾸 찾아오면 전방부대로 전출시키겠다고 폭언을 하였다.

라. 피진정인 4는 피해자를 워커 절도범으로 몰았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 피진정인 1(○○○사단 ○연대 ○○대대 ○○중대장 대위 윤○○)

근무지에서 병사들이 MP3를 듣거나 독서를 하는 행위, 담배를 휴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순찰 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탄창 속에 두 번 접은 빨간색 색지 모양의 편지지 같은 것이 있어 여자친구가 생긴 것으로 알고 "편지 온 거야? 쓰는 거야?"라고 피해자에게 묻자 피해자가 "안 됩니다. 일기입니다."라고 대답하였으나 3분 동안 편지 1장 정도를 소리 내지 않고 눈으로 읽었다. 관련 사단규정에 따라 병사들의 신상파악을 위해 수양록을 볼 수 있으며, 다른 병사들은 도로 쪽을 바라보고 근무하고 있어 피진정인 1이 (일기를) 보는 것도 몰랐을 것이다. 또한 상병 전○○ 및 김○○에게 피해자의 일기를 읽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상병 전○○는 피해자에게 피진정인 1이 일기를 읽어도 된다고 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피진정인 2(ㅇㅇㅇ사단ㅇ연대 본부중대 상사 이ㅇㅇ)

피해자가 ㅇㅇ검문소에 갈 때 상황실에서 각서를 제출하도록 한 적이 없으며, 다른 부대로 가는 병사에게 각서를 제출받을 이유도 없다.

3) 피진정인 3(ㅇㅇㅇ사단 ㅇ연대 ㅇㅇ대대 주임원사 오ㅇㅇ)

2007. 5.경 피해자의 아버지인 진정인이 2회 정도 피해자 면회를 와서 검문소에 근무하는 다른 병사들도 부모가 보고 싶을 것이며, 자꾸 면회 오면 근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전방에 보내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은 없다.

4) 피진정인 4(ㅇㅇㅇ사단 ㅇ연대 ㅇㅇ대대장 정ㅇㅇ)

당시 피해자가 관리하던 중대창고에 워커 및 팔각모가 있어 훔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한 것이고, 피해자가 쓰레기통에서 주웠다고 하여 주웠으면 돌려주라고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3. 인정 사실

진정인, 피해자 및 피진정인들의 진술, 2007. 6. 26. 실지조사결과보고서 피해자 진술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이 2007. 6. 6. ㅇㅇ검문소에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탄창 속에 있던 편지지 모양의 메모를 발견하고 꺼내 읽으려 고 하자 피해자가 일기이니 읽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한 장을 소리를 내지 않고 읽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진정인 4는 피해자가 관리하던 중대창고에서 워커 및 팔각모가 발견됨에 따라 부대 내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은 사단규정에 따라 신상파악을 위해 수양록을 읽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신상파악을 위해 피해자의 탄장 속에 있는 편지지 모양의 종이에 쓰여 진 내용을 눈으로만 읽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일기이니 읽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일기를 억지로 읽은 것은 피해자의 신상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일기가 매우 사적인 영역을 기록한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점에서 과도하게 개인의 사생활에 간섭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존심을 훼손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단 ○연대 ○○대대장에게 위와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1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의 주장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진정인의 주장 외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각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4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중대창고에서 워커 및 팔각모가 발견되어 부대 내에서 이루어진 절도사건 조사의 일환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군대 내 절도 관련 조사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1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2 08진인3904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의한 인권침해] 2009. 8. 24. 결정

국방부장관에게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및 해군 학군사관후보생 모집시 최초 응시단계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보안업무규정의 취지에 맞게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을 권고

[1] 신원조사는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하도록 하고, 그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예정자, 비밀취급인가예정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초 지원단계에서부터 모든 응시자들에게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한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로 판단

[2] 또한, 신원조사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신원진술서에서 지원자 본인뿐만 가족사항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장교임용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응시자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31조, 제32조, 「국가정보원법」 (2006. 10. 1.) 제3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제3조의2 제1항

진정인 ○○○

피진정인 국방부장관

주 문 국방부장관에게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및 해군 학군사관후보생 모집시 최초 응시단계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보안업무규정의 취지에 맞게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

1. 진정의 요지

육군 등은 학사장교후보생 선발시 최초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부터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대학졸업에 맞춰 사관후보생 시험에 지원하기 위해 관련 구비서류를 알아보았는데, 해군과 공군의 경우 신원진술서를 필수서류로 요구하고 있었다. 신원진술서 양식에는 신장, 체중, 본인 및 배우자와 부모의 재산, 사회단체 활동이력, 가족 및 친척의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직장명 및 직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국민 불편 해소 방안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정부 행정전산망 이용 대체 응시지원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자기소개서 추가), 신용정보 동의서(합격자에 한해서 제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채용서류 간소화 및 관련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국방부 모병지원센타 2009년 학사장교 후보생 모집 내용 등의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육군의 경우, 학사사관후보생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 신원진술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2009년도 학사사관후보생 획득을 위한 모집 공고에서는 접수시 지원서, 수험표,

자기소개서,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나. 해군의 경우, 학군사관후보생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 신원진술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시 지원서, 서약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학성적표(2학년만 해당), 고교생활기록부(1학년만 해당), 수험표,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 공군의 경우, 공군 사관후보생 지원시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및 별도평가를 거친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및 해군 학군사관후보생의 경우 공군과 달리 최초 지원단계에서부터 모든 응시자들에게 신원진술서를 요구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 및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32조, 제32조에 따라 국정원장 또는 국방부장관, 경찰청장은 위임을 받아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안업무규정」 제31조는 신원조사는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하도록 하고, 그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예정자, 비밀취급인가예정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 장교 선발을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향후 이들이 군대에서 담당하게 될 업무를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응시 지원자가 모두 장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며,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면심사, 신체검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을 하게 되므로 최초 지원단계에서부터 모든 응시자들에게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한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또한, 신원조사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신원진술서에서 지원자 본인뿐만 가족사항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장교임용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응시자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교임용예정자가 아닌 학사장교후보생 지원자에 대하여 최초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부터 일률적으로 신원진술서를 요구하는 것은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필요최소한의 한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로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및 해군 학군사관후보생 모집시 최초 응시단계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보안업무규정의 취지에 맞게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9. 8. 2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최윤희

3 09진인590 [의무사관 후보생 모집 신체검사 시 병력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2009. 10. 26. 결정

병무청장에게 징병 신체검사 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 및 제21조(기록 열람 등)는 개인의 질병이 외부로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개인의 질병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타인이 알게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검 진행자 측 담당자는 개방된 장소에서 실시된 신검장에서 신검자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정신과 전문의의 추가진료를 받으러 오라고 방송함으로써 호명된 당사자의 정신질환관련 질병 가능성을 다수의 동종업종 종사자들에게 누설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19조 및 제21조를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병역법」 제11조, 「의료법」 제19조 및 제21조

▌진정인▐ ○○○

▌피해자▐ 신검 당시 방송을 통해 호명된 신검자 3인

▌피진정인▐ 1. 병무청장
2. 국군의무사령관

▌주 문▐ 병무청장에게 징병 신체검사 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 2는 2009. 2.초 의무사관 후보생 신체검사 시 개인의 질병정보를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신검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2009. 2. 초 피진정인 2가 주관하는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신체검사 과정에서 "○○○, ○○○, ○○○씨는 정신과 전문의의 추가 진료를 받으러 검사장으로 오라."는 방송을 들었다. 당시 개방된 장소에서 한 줄로 선 상태로 신체검사를 받고 있었고, 신체검사를 받던 대상자들은 의대 출신이거나 같은 병원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위의 방송으로 인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 피진정인 2의 주장요지(국군의무사령부 보건과)

2009. 2. 2.부터 같은 해 2. 7.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의무·수의사관 후보생 2,029명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의무·수의사관 입영신체검사의 경우 한정된 시간에 많은 인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야하므로 동선을 줄이기 위해 넓은 공간에 모든 과가 함께 위치하여 있었다. 과별로 독립적인 공간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에는 제한되었으나, 정신과의 경우 가림막을 설치하여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였고, 탈의가 필요한 경우 독립적인 공간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향후 방송을 통해 신검인을 찾을 경우 안내 데스크로 오도록 방송하고, 안내 데스크에서 개인에게 특정과로 가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 주장 및 통화내용, 피진정 기관의 답변, 2009년 의무수의사관 신체검사 진행 사진 등의 관련 자료 등을 살펴보면,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 및 제21조(기록 열람 등)는 개인의 질병이 외부로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개인의 질병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타인이 알게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검 진행자 측 담당자는 개방된 장소에서 실시된 신검장에서 신검자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정신과 전문의의 추가진료를 받으러 오라고 방송함으로써 호명된 당사자의 정신질환관련 질병 가능성을 다수의 동종업종 종사자들에게 누설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19조 및 제21조를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신체검사의 주관기관인 병무청장에게 징병 신체검사 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9. 10. 2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최윤희

[별지] 관련규정 목록

1.「병역법」(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2008.2.29.)

가. 제11조(징병검사)

③ 징병검사는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로 구분한다.〈개정 2006.10.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部位)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임상병리검사)·방사선촬영(방사선촬영)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7.5.17〉

2.「의료법」(법률 제9386호, 일부개정 2009.1.30.)

가. 제19조(비밀 누설 금지)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나.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30.〉

4 09진인2292 [국방부수사단 수사관의 성추행 사건 수사중 개인정보 유출] 2010. 4. 12. 결정

국방부 수사본부 수사단장에게 피진정인에게 '주의' 조치할 것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단 차원의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성폭력피해를 고소한다는 것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라는 시선과 수사과정에서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항을 다시 들추는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용기를 내어 진행하는 사항이므로 피진정인은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가리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인 개인정보를 누출하여 피의자의 모친이 집으로 찾아오는 2차 피해를 야기케 한 것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 17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병역법」 제11조, 「의료법」 제19조 및 제21조

▌진정인▐ ○○○

▌피해자▐ ○○○

▌피진정인▐ 국방부 수사본부 수사단 ○○○

▌주 문▐ 국방부 수사본부 수사단장에게 피진정인에게 '주의' 조치할 것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단 차원의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피해자는 진정인의 자녀이며 학생으로 2009. 4.말 통학중 버스에서 군장교에 의해 성추행을 당하여 이를 신고하였고,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국방부 수사단은 피해자의 주소를 유출하여 가해자 가족이 집까지 찾아오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자신의 딸이 버스안에서 군 장교에 의해 성추행을 당하여 신고하였으며, 피의자인 군 장교를 조사하는 군 수사기관에 의해 진정인 측의 주소가 알려져 피의자의 모친이 합의를 하기 위해 찾아오기까지 하는 등으로 진정인의 딸의 경우는 창피해서 밖에 다니기도 싫을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2009. 4. 28. 06:20경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 야탑동 행 용남고속버스에 탑승했던 피의자 ○○○가 피해자 ○○○가 잠든 틈을 이용 추행하여 2009. 4. 29. 20:45경 피해자의 모 진정인이 ○○경찰서 ○○파출소에 인적불상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2009. 5. 6. 18:45경 ○○발 ○○행 시외버스에 탑승한 피의자를 피해자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됨으로서 군인신분이므로 ○○사단 헌병대를 경유하여 2009. 5. 19.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에 이첩되어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자가 되었다.

2009. 5. 25. 14:15~16:09 동안 피의자를 출석시켜 신문조사 작성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나?'라는 질문시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답변하므로 2009. 5. 23. 피해자의 모친이 제시한 ○○소재 ○○○외과 정신과 의원 및 ○○○병원 발행의 '상해진단서', ○○정신과 의원 발행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제시하여 읽어보게 한 후 다음 질문을 하게 되었고, 이때 피의자는 진단서 상단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소(경기도 ○○○ ○○○)를 암기하였다가, 2009. 6.월 중순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모 ○○○를 통해 합의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였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의자가 찾아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의자에게 요청하여 '앞으로 찾아가지 않겠다.'라는 답변을 받고 진정인에게 알렸으며, 이후 피의자 및 피의자의 모친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 된 것은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해진단서를 읽어보고 답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진단서'와 '심리학적평가보고서'를 제시하여 읽어보게 하였는데 이때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암기하였다가 합의를 위해 모친을 시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자신의 딸이 성추행을 당하여 경찰관서에 고소하였고, 피의자가 군인이므로 국방부 수사단으로 이첩되었으며, 국방부 수사단 ○○○가 2009. 5. 25. 피의자를 수사하면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중 주소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해진단서'와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열람케 되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 측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었을 뿐 아니라, 「군사법원법」 제229조(준수사항)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보호하여 할 수사기관에 의하여 피의자 측이 진정인 측의 집으로까지 찾아오게 하여 진정인의 딸 및 진정인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발생하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성폭력피해를 고소한다는 것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라는 시선과 수사과정에서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항을 다시 들추는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용기를 내어 진행하는 사항이므로 피진정인은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가리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인 개인정보를 누출하여 피의자의 모친이 집으로 찾아오는 2차 피해를 야기케 한 것은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 17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국방부 수사단장에게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0. 4. 1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조국 위 원 김양원

[별지] 관련규정 목록

1.「군사법원법」(법률 제8842호, 일부개정 2008. 1. 17)

가. 제229조 (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8.1.17〉

② 검찰관·군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5 12진정721, 12진정1111(병합) [군대내 스마트폰 앱 점검·삭제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12. 12. 18. 결정

▌결정사항 ▐

[1] 국방부장관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전군에 전파할 것과, 스마트폰 앱 사용 관련 군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알권리가 자의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시행할 것을 권고

[2] 육군참모총장에게, 피진정인 3, 4, 5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앱의 내용이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불온 표현물로 볼 타당한 근거가 없고, 군인이라 하더라도 내면의 양심이나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접근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님.

[2] 피진정인들이 앱 접근을 금지한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반하여 군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였고, 정보의 접근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대통령을 비방하는 앱을 듣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3] 정부비방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앱을 다운로드 또는 검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군인의 법적 의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향후 특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함.

[4] 스마트폰의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검색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직 내 질서 유지라는 공익보다 피해자들이 침해된 사익이 더 크다고 판단

▌참조결정 ▐

헌법재판소 2010. 10. 28. 2008헌마638 결정

▌참조조문 ▐

「헌법」 제17조·제19조·제21조·제37조,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2조·제9조·제13조·제16조의2·제17조·제18조

▌ **진정인** ▐ ○○○○○

▌ **피해자** ▐ ○○군단 및 ○○○부대 소속 군 간부 등

▌피진정인 ▌ 1. 국방부장관
2. 육군참모총장
3. 육군 ○○군단장
4. 육군 ○○○부대장
5. 육군 ○○여단장

▌주 문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에게, 군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군인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본 진정사건의 조사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국방부장관에게,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전군에 전파할 것과, 스마트폰 앱(Application) 사용과 관련하여 군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알권리 등의 기본권이 법적인 근거 없이 지휘관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제한 및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육군참모총장에게, 피진정인 3, 4, 5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가. 육군 ○○군단장인 피진정인 3이 2012. 1. 17. 예하부대에 "종북 사이트 및 정부비방 앱(APP) 삭제 조치(지시)"를 공문으로 시행하고, 해당 앱을 선정한 다음 스마트폰(이하 '폰') 소지자에 대하여 일일이 폰을 열게 한 후 해당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더불어 이 앱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서 형식으로 집행 한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나. 육군 ○○○부대장인 피진정인 4가 2012. 1. 30. '스마트 폰의 종북 애플리케이션 삭제 강조지시' 공문을 예하부대에 시행하고 해당 앱을 선정하여 삭제교육 등을 실시한 것은 군인의 알권리와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다.

다. 육군 ○○여단장인 피진정인 5가 국방 인트라넷에 올려져 있던 "종북 사이트 및 정부비방 앱(APP) 삭제 조치(지시)" 공문의 외부 유출자를 색출한다는 이유로 2012. 2. 16.경 예하부대 모든 간부들로 하여금 스마트폰 통화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삭제복구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스마트폰을 점검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다.

또한, 국방부장관(피진정인 1)과 육군참모총장(피진정인 2)은 본 진정요지 가, 나, 다. 행위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의 주장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3(○○군단장)의 행위 관련

(가) 이○○외 11명

각 대대의 정보장교가 피진정인 3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나서 개인별로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점검하였다. 보안서약서와 스마트폰 점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고, 동의서가 아닌 간부 연명부에 서명하는 경우도 있는 등 구체적인 점검 방법은 대대별로 달랐으나 대체적으로 스마트폰 점검에 협조를 하였고, 특별히 강요는 없었다.

(나) 박○○외 1명

대대 정보장교로부터 피진정인 3의 지시사항을 전해 듣고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던 '나꼼수' 앱을 자진 삭제한 당사자이다. 앱의 삭제를 강요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진정요지 나, 피진정인 4(육군 ○○○부대장)의 행위 관련

(가) 김○○외 5명

친북 성향의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의 점검은 없었다.

(3) 진정요지 다, 피진정인 5(육군 ○○여단장)의 행위 관련

(가) 김○○

군에서 스마트폰을 점검한다는 사실을 친구와 전화통화 중 친구가 앱 삭제지시 공문

을 보여달라고 하여 앱 삭제지시 공문을 2012. 1. 28. 친구가 보낸 성명 불상자에게 전해 준 바 있다.

앱 삭제 지시 공문이 언론에 보도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하였고, 2. 25. ○○여단 작전과에 찾아가 공문유출 사실을 자진신고하였다.

(나) 이○○

2012년 2월 중순경 대대 정보과장으로부터 공문유출과 관련하여 스마트폰 삭제 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니 부대로 복귀하라는 연락을 전화로 받았다. 그러나 당시 개인 사정으로 복귀가 곤란하다고 하니 스마트폰 삭제 복구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었다.

다음 날 부대에 출근하여 피진정인 5의 지시사항이라는 말을 듣고 ○○○에 있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통화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다) 박○○외 7명

각 대대장이 스마트폰 삭제복구 점검과 통화내역 제출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문 유출자가 아니라면 떳떳하게 결백을 입증하자고 설득하여 스마트폰 점검과 통화내역 제출에 동의를 하였고 강요는 없었다.

통화내역 제출은 부대에서 마련한 차량을 타고 인근 통신사 대리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스마트폰은 영외관사에 마련된 별도의 장소에서 PC에 연결하여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여 점검을 받았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 1(국방부장관)

종북 앱과 정부비방 앱의 자진삭제 지시는 피진정인 3과 4의 부대에서만 있었으며, 국방부는 이와 관련하여 해당부대에 사전지시를 하거나 사후 결과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앱 삭제지시의 공문유출자를 색출하도록 피진정인 3과 5.에게 지시한 사실도 없다.

그러나, 전투 시뿐만 아니라 전투준비 단계인 평시에도 지휘관에게 포괄적 지휘재량이 주어져야 하고, 피진정인 3과 4가 종북 앱과 정부 비방 앱을 자진 삭제토록 하였던 조치는 군의 정신전력 보존과 국가안전 보장 및 국토방위 의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고 판단된다.

2) 피진정인 2(육군참모총장)

2011. 11. 15. “인터넷 방송의 ‘나꼼수’ 시청 및 댓글, 핸드폰 벨소리 다운, SNS 등을 통해 군 통수권자 비방에 동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부 장병들이 호기심 때문에 접촉하는 것도 예방해야 하는 등, 종북세력에 대한 우리 장병들의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의 훈시를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훈시의 취지는 최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군 통수권자에 대한 비방’에 군 장병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됨을 우려하여 장병들의 정신전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훈시’는 지휘관이 강조하는 사항으로 업무에 참고하는 개념이고, 이행을 강제하는 ‘지시’와 다르다.

피진정인 3과 4는 군 통수권자에 대한 충성심 및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휘관의 책무로서 위 훈시사항을 일부 참고하여 2012년 1월 중순경 자체적으로 종북 앱 등의 설치여부 점검 및 삭제 등에 대한 조치와 교육을 한 것으로 보이나, 피진정인 3.과 4.를 비롯한 육군의 전 부대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결과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진정인 3과 4의 자체적인 스마트폰 앱 삭제 지시는 「군인사법」 제47조의2 및 동법률 조항의 위임 입법인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 등에 근거한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하거나, 북한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내용의 스마트폰 앱 설치 금지 및 삭제 조치는 정당한 지휘권의 행사로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의 원칙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인 군인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피진정인 3의 지시 이후 ○○군단 참모에 의해서 집행된 보안서약서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확인하는데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의 공문서 유출은 「육군규정 000 징계규정」의 ‘부당한 공문서 유출’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지휘관은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권한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3과 5가 피해자들에게 통화내역서 제출을 요구하고 스마트폰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여 점검한 조치는 군내부의 징계혐의자를 발견하고 군사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며, 피해 당사자들의 사전 동의에 따른 자발적 의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진정인 3(육군 ○○군단장)

2012. 1. 17. 군단 예하 전 부대에 '장병들의 스마트폰 앱을 점검하여 북한을 찬양하거나 정부 및 군 통수권자를 비방하는 스마트폰 앱을 자진 삭제토록 교육하라'는 지시 공문을 하달하였고, 이에 따라 각 부대는 1. 20. 또는 같은 달 27.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행사시 피해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어 관련 스마트폰 앱의 설치여부를 점검하였다.

이는 우리 군단이 최전방 접적부대임을 감안하여 장병들의 올바른 국가관, 대적관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들에게 건전한 군인정신을 갖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며, 이 사건 지시와 관련하여 상급부대나 기관의 지침은 없었다.

공문 유출자 색출은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후, 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과 피진정인 1의 국회 답변의 맥락을 참고하여 본인이 지시한 사항이었고, 공문 유출자를 색출하라는 피진정인 1의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

4) 피진정인 4(육군 ○○○부대장)

2011. 12. 6. 육군 ○○○부대장으로 부임 이후 부대를 진단한 결과 대부분 2,000명이 넘는 군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군인정신이나 군 기강 확립, 보안의식이 취약하여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 대적관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적필승의 정신교육 강화를 추진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2. 1. 7. ○○○ 남측본부와 관련된 ○○닷컴의 기사를 보고 우리 부대원에게도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2012. 1. 27. 부대원들의 보안의식 함양 및 대적관 확립 등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군 통수권자를 비방하거나 북한 찬양 성향의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지 말고, 이미 받은 인원은 자진 삭제를 유도하는 교육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실시됨에 따라 정치적 성향의 앱 및 사이트에 가입하지 말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것도 함께 강조하였다.

공문 제목에 '종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닷컴 보도자료를 첨부하면서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지 관련 앱 전체를 종북으로 간주하여 하달한 것은 아니며, 공문 제목에 '강조 지시'라는 표현은 지휘관 강조사항을 하달할 때 군 내에서 일반적으로 제목에 포함시켜 사용하는 표현으로, 전체 공문의 취지는 보안교육 및 정신교육의 실시가 주된 것이지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위반 시 징계 내지 처벌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표현은 아니다.

5) 피진정인 5(○○여단장)

공문 유출자 색출 지시의 취지를 사전에 개개인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자발적인 동의하에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개인의 사생활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제보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용의 대상자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만 참여해도 의미가 있으니 개인의 동의하에 원하는 인원만 실시하면 된다고 누차 강조하여 동의한 인원만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피진정인과 관계인들이 제출한 진술서와 참고자료, ○○군단과 육군 ○○○부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3(○○군단장)의 행위 관련

1)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1인 국방부장관이 ○○군단의 스마트폰 앱 설치 금지 및 삭제 조치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3.에게 사전 지시를 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진정인 1.은「국군조직법」제8조에 의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나) 피진정인 2인 육군참모총장은 2011. 11. 15. 소속 지휘관들에게 “인터넷 방송의 ‘나꼼수’ 시청 및 댓글, 핸드폰 벨소리 다운, SNS 등을 통해 군 통수권자자 비방에 동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장병들이 호기심 때문에 접촉하는 것도 예방해야 하는 등 종북세력에 대한 우리 장병들의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훈시를 하였다.

다) 피진정인 3인 ○○군단장은 2012. 1. 17. 보안부서, 각 참모 및 예하 지휘관들에게 개인의 동의를 얻어 스마트폰에 종북 사이트 및 정부비방 앱을 설치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삭제하는 등의 조치와 교육을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라) 피진정인 3의 지시에 따라 ○○군단 정보처는 ○○○ 남측본부, North Korea

World, North Korea flag, 김정일 퍼즐의 4종을 종북 앱으로 선정하고, 나꼼수, 애국전선, 스마트 촛불, 시국선언·반FTA, 스마트 통일카드, 가카 퇴임일 카운터의 6종을 정부비방 앱으로 선정하여, 2012. 1. 17.「종북 사이트 및 정부비방 스마트폰 앱(APP) 삭제 조치 (지시)」 공문을 예하부대에 시행하였다.

○○군단 정보처의 통신보안 업무담당자는 2012. 1. 20. "정부비방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관련 글을 게시하지 않겠다", "정부비방 앱(APP)을 다운로드 하거나 검색,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7개 항목의 서약서를 임의로 만들어 예하부대 정보과에 메일로 전송하여 서약서를 집행하도록 하였다.

피진정인 3의 지시공문을 접수한 ○○군단 예하의 5개 사단은 점검 및 이상없음을 보고하였으며, ○○군단 본부, 직할부대 및 3개 여단은 스마트폰을 보유한 부대 간부 2,125명 중 휴가, 파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받지 못한 60명을 제외한 2,065명에게 보안서약서를 집행하였고, 스마트폰을 점검한 결과 ○○연대와 ○○여단에서 '나꼼수' 앱의 자진 삭제가 각 1건씩 있었음을 자체적으로 확인하였다.

2) 판단

가) 스마트폰 앱 삭제 조치

(1)「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유래하는 '알권리'란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모든 정보원(情報源)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위와 같은 '알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제19조), 학문의 자유(제22조) 등 정신적 자유의 핵심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알권리'에 대한 제한은 정신적 자유의 핵심에 대한 제한이 되는 것이므로, 자유 및 권리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 보다 엄격하고 신중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목적 하에서 불가피하게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

(2) 피진정인 1, 2, 3의 행위의 기본권 침해 관련성을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3의 지시는 그 이행의 대상자가 형식적으로는 각 참모 및 예하부대 지휘관들이고 피해자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나, 참모 및 예하부대 지휘관들의 후속 점검 행위와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어떠한 앱을 설치하고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기본권 제한의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2의 훈시는 피진정인 3의 지시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훈시 내용의 이행을 직접 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군의 복무와 관련한 포괄적인 관리·책임 외에 피해자들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진정인 1. 또한 피진정인 2.와 같이 포괄적인 관리·책임 이외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피진정인 3인 ○○군단장의 본 진정사건에서의 지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소위 '불온서적'관련 결정(2010. 10. 28. 2008헌마638)에서 '불온도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내용으로서 군인의 정신전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도서'로 정의한바 위 취지에 따라 보면, ○○○ 남측본부가 제작한 경우와 북한에서 직접 제작하였거나, 북한을 찬양한다고 상당한 정도로 판단되는 4종의 앱은 군인의 정신전력을 저해하는 표현물로서 군인인 피해자들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종북 앱 외에 정부비방 앱으로 선정된 그 이외의 앱은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 2에 의한 불온 표현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해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없고, ○○군단 정보처가 6개의 정부비방 앱을 선정한 사유가 대통령과 정부를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여 비방한다거나 집회·시위 현장의 소식을 알려주거나, 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반대한다는 것인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을 군인인 피해자들이 듣거나 보기만 하여도 군의 정신전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주관적인 우려 외에 실제로 그러한지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군인복무규율」에서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제18조 등)은 군인이라 하더라도 내면에 머무르는 양심이나 가치관의 형성, 투표나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까지 금지하는 규율은 아니므로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는 앱에 대한 군인인 피해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이 사건에서의 정부비방 앱의 선정절차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검토 또는 심의과정 없이 피진정인 3의 지시와 ○○군단 정보처 참모 1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선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규제는 기본권 제한 측면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공익의 달성을 추구하면서도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을 외면한 것으로서 헌법상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북 앱 선정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자의적이며 지나치

게 광범위하여 그 기준이 모호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살펴보아도 정보를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앱을 설치하여 정보를 얻는 것과 정치적 행위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위는 국가원수로서 군 통수권자가 되는 외에 특정정파의 지도자라는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바 대통령을 비방하는 앱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 이를 문제시 삼는 것은 오히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앱은 영외에서 출퇴근 하는 군 간부들의 경우 부대 밖에서 얼마든지 접근 가능하므로 군 내부에서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그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 있다.

결국, 피진정인 3의 지시와 이에 따른 정부비방 앱의 설치 금지 및 삭제 조치는 결과적으로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적용하여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하였고「헌법」제21조에서 유래하는 군인인 피해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나) 스마트폰 보안 서약 행위

(1) 우리「헌법」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명문으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의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한편, 자유민주적 법치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사상의 자유와 법질서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반면, 그에 상응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적 헌법질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내용상 단순히 헌법과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은 국민이 부담하는 일반적 의무를 장래를 향하여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어떠한 가정적 혹은 실제적 상황 하에서 특정의 사유를 하거나 특별한 행동을 할 것을 새로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서약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보안서약서의 내용은 정부비방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정부비방 앱을 다운로드 하거나 검색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금지행위는 피해자인 군인들에게 법률상 주어진 의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일반적 의무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향후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요구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서약서의 집행 방법은 피진정인 3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2012년 1월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행사시 일률적으로 작성토록 하였는바, 이는 군의 특성상 상관의 지시라는 일방적 조치에 기한 것으로 사실상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하여 서약여부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안서약서의 작성요구는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 피진정인 4(육군 ○○○부대장)의 행위 관련

1)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4인 육군 ○○○부대장은 2012. 1. 27. "보안의식 함양 및 대적관 확립 등 부대원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군 통수권자를 비방하거나 북한 찬양 또는 종북 성향의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이미 받은 인원은 삭제토록 교육할 것"과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실시됨에 따라 정치적 성향의 앱 및 사이트에 가입하지 말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전산보안 담당자와 정훈장교는 ○○○ 남측본부, 스마트 촛불, 스마트 통일카드, 나꼼수, 애국전선, 가카 퇴임일 카운터, North Korea flag, 김정일 퍼즐의 8종을 종북 앱으로 선정하고 2012. 1. 30. 피진정인 4의 결재를 받아 「스마트폰의 종북 애플리케이션 삭제 강조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2012. 1. 30. 각 부서장들에게 시행하였고, 각 부서장은 피해자들에게 피진정인 4의 지시사항을 전파·교육하였다.

2) 판단

피진정인 4는 지시의 대상자가 각 부서장이고 지시의 내용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사용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앱을 자진 삭제하도록 유도하라는 것일 뿐,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침해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2. 1.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행사의 결과'보고 문건에 의하면 향후 보완 발전사항으로 종북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건데, 피진정인 4. 역시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스마트폰 점검을 계획하였다가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자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피진정인 4는 지시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스마트폰의 직접 점검 행위만 없었을 뿐, 피진정인 4의 지시 역시 이행의 실질적 내용은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서 특정 앱의 설치 금지와 삭제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고,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앱을 종북 앱에 포함시켜 삭제하도록 조치한 것은 진정요지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최소침해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21조에서 유래하는 피해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 피진정인 5(육군 ○○여단장)의 행위 관련

1) 인정사실

가) ○○여단 ○○대대 김○○은 "종북 사이트 및 정부비방 스마트폰 앱(APP) 삭제 조치" 문건을 2012. 1. 28. 21:00경 친구가 보낸 불상의 민간인에게 전해 주었다.

나) 위 공문이 언론에 보도된 후, 피진정인 3의 지시를 받은 피진정인 5는 공문이 스마트폰으로 촬영되어 유출되었다고 판단하고, 2012. 2. 14. 예하 단장과 대대장이 참석한 지휘관 회의에서 공문유출자의 자진 신고기간을 주었고, 다음 날 오전 경까지 자진 신고자가 없자, 2. 15. 지휘관 회의 시 스마트폰 삭제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점검하고 통화내역을 제출하도록 각 지휘관들에게 지시를 하였다.

다) 피진정인 5의 지시에 따라 2. 15. 13:00경부터 각 대대별로 스마트폰 삭제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2. 16.부터는 피해자들에게 통화내역을 제출토록 하였다.

○○여단에서 2012. 2. 21. 작성한 '스마트폰 검색결과'에 의하면 일반 폰을 제외한 스마트폰 보유자는 725명 중 삭제복구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는 아이폰 보유자이거나 기능고장, 업무출타, 파견, 후송자 등으로 사실상 스마트폰 점검이 불가능한 177명을 제외한 547명이 점검을 받았으며, 개인사정으로 스마트폰 점검에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은 1명이다.

그리고, ○○여단에서 같은 날 작성한 '스마트폰 통화내역 출력결과'에 의하면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폰 보유자 781명 중 타인명의 가입자, 휴가, 파견자, 기타 통화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없거나 제출할 수 없는 간부 126명을 제외한 655명이 스마트폰 통화내역 제출에 동의하고 통화내역을 제출하였고, 통화내역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간부는 없다.

2) 판단

가)「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생활의 자유'란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이고, '사생활의 비밀'은 사생활과 관련된 내밀한 자신만의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보장받는 권리로서, 국가가 개인의 사적 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일정관리, 메모, 인터넷 뱅킹, 이메일뿐만 아니라 사진과 동영상의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폰은 개인의 내밀한 일상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따라 보호되는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스마트폰은 점차 그 기능이 발전함에 따라 군사기밀의 보호와 관련하여 그 사용에 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인 스마트폰에 포함된 내용을 들여다 보기 위하여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나) 스마트폰 삭제점검 및 통화내역 제출의 적법성을 살펴볼 때, 피진정인 5는「군인사법」제58조에 의한 징계권자로서 임의조사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의 동의와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조직의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군의 특성상 군인의 행동은 협조와 동의 관계가 아닌 지시와 이행의 강제성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고, 피진정인 5의 협조요구를 피해자들이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해자들의 동의의 임의성을 전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단의 스마트폰 삭제점검 대상자 548명 중 개인사정이 있었던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동의를 하였고, 통화내역 제출 대상자 중에서는 655명 전원이 동의를 하였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진정인 5가 피해자들로부터 형식적인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는 피진정인 5의 행위에 임의성과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어, 실질적인 기본권 침해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유출된 공문은 육군의 내부지침인「육규 000 군사보안규정」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기 위하여는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문서에 해당하고, 피진정인 5가 징계권의 행사로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은 조직 내부의 질서와 규율의 회복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고, 피해자들의 명시된 의사에 반한 강제조사가 없었던 점은 임의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것이어서 조사방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 5가 피해자들에게 통화내역서를 제출받은 행위의 경우에는 각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피해자들 본인이 발급 받은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통화시간에 대한 기록이고, 이와 같은 기록은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되어야 비로소 통신의 상대방과 내용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진정인 5의 지시를 받은 각 대대장들이 피해자들에게 의심되는 통화 상대방과 이유를 질문 하는 데에만 제한적으로 참고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통화내역 제출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 5가 피해자들에게 스마트폰을 제출받아 삭제 여부를 점검한 행위의 경우에는 단순히 파일의 저장과 삭제기록을 확인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검색하여 그 내용을 PC의 모니터 화면으로 확인한 것으로서, 이는 개인의 내밀한 사진자료 등이 타인에게 직접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이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군사기밀 보호가 아닌 조직 내부의 규율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침해되는 사익이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 5의 스마트폰 삭제 복구 점검행위 부분은 이른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한다.

2012. 12. 1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 원 양현아 위 원 한위수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국군조직법」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①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한다.
제11조(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편제(編制) 또는 작전지휘·감독 계통상의 상급부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소속 부대 또는 소관 기관을 지휘·감독한다.

3. 「군인사법」

제47조의2 (복무규율)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군인복무규율」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지휘관"이라 함은 중대이상의 단위부대의 장과 함정 또는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4.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써 국군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
제9조(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 ①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군인은 군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인은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사회단체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군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순수한 친목단체에의 가입이나 친목활동은 예외로 한다.

제16조의2(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 군인은 불온유인물·도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운반·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대외발표 및 활동) ①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순수한 학술·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일과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정치적 행위의 제한) 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 또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2.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행위
4. 각종 투표에 있어서 어느 한 쪽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
5. 기타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행위

6 12진정8864, 12진정8907(병합) [부사관에 대한 과도한 부채현황 조사] 2013. 7. 5. 결정

▌결정사항▐

육군 제0군사령관에게, 이 사건 사례를 예하 부대에 전파할 것과 소속 부사관들에 대한 부채현황 조사와 관련하여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피진정인은 이메일 및 회의 자리를 통하여 여러 차례 부사관들에게 금융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군대내 상하관계 및 상명하복의 문화에 비추어 강제성이 작용하였음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러한 조사는 피진정인 소속 부대에서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육군 제0군사령부의 다른 예하 부대에서도 실시된 것으로 보임.

[3] 피진정인은 소속 부대 부사관들에 대하여 금전관리에 대한 사전적·정기적 교육이나 개별적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는 등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음에도, 소속 부대 부사관들 각자의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개인 금융정보를 일괄 제출하도록 하여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범죄수사규칙」 제59조

▌진정인▐ 1. ○○○ 2. □□□

▌피진정인▐ △△△

▌주 문▐ 육군 제0군사령관에게, 이 사건 사례를 예하 부대에 전파할 것과 소속 부사관들에 대한 부채현황 조사와 관련하여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제00000교육단 주임원사인 피진정인은 2012. 전임 주임원사에 이어 소속 부대 부사관들에 대하여 과도한 부채현황 조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진정인 등 소속 부대 부사관들

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2012. 11. 16. 육군 제0군사령부 주임원사로부터 부사관들의 부채관리와 관련한 조치를 부탁하는 이메일을 받고 금전적 사고의 예방차원에서 소속 부대 부사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개인 부채현황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전임 주임원사도 2차례 정도 실시한 사항이다. 이후 제출받은 자료는 군통합행정시스템에 입력 후 모두 폐기하였고, 육군 제0군사령부 주임원사에게 위 조사결과 부채 관리 대상자가 1명임을 전화상으로 보고하였으며, 해당 관리대상자와는 면담 및 설득을 통하여 안정적인 부대생활을 위해 저축을 하도록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육군 제0군사령부 주임원사가 피진정인에게 발송한 이메일 사본, 피진정인이 2차례 제00000교육단 부사관에게 보낸 이메일 사본, 부사관 개인저축 및 부채현황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은 2012. 10.부터 육군 제0군사령부 직할 제00000교육단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 16. 육군 제0군사령부 주임원사가 예하 부대 주임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하여 “부사관들의 부채관리와 관련하여 창의적인 식별방법을 강구하여 관리 조치할 것”, “다만, 너무 과도하고 인권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나. 이후 피진정인은 2012. 11. 23. 제00000교육단 소속 부사관들 53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각 개인의 부채현황, 저축현황, 개인월급통장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 개인대출정보조회표 등 금융정보를 제출하라고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채현황 조사’라 한다), 같은 달 28. 13:30 경 부사관 상향식 결산 회의 중 부사관들에게 부채파악 및 금전적

사고 예방을 위해 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해 12. 1. 부사관들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내 아직까지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사관들에 대하여 이를 제출할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위 요구에 따라 소속 부대 부사관들 53명 중 47명이 제출한 개인 금융정보를 군통합행정시스템 상의 '부채현황'에 기재한 뒤, 날짜불상 경 육군 제0군사령부 주임원사에게 "부채관련 관리 대상자가 1명 정도 식별되었다."라고 전화상으로 보고하였다.

라. 위 개인 금융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6명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없었으며, 이 사건 부채현황 조사와 같은 조사가 피진정인의 전임 주임원사에 의하여 2012. 제00000교육단에 최소 2차례 더 실시된 사실이 있다.

4. 판단

가. 이 사건 부채현황 조사의 강제성과 지속성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부채현황 조사에 대하여 피진정인 소속 부대 부사관들 중 6명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없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이메일 및 공식적인 회의 자리를 통하여 여러 차례 부사관들에게 위 금융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주임원사와 소속 부대 부사관들 간의 계급적 상하관계 및 군대 내 상명하복의 문화를 고려할 때 이에 강제성이 작용하였음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은 소속 부대 부사관들의 부채관리와 관련한 육군 제0군사령부 주임원사의 이메일을 받고 이 사건 부채현황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육군 제0군사령부 주임원사에게 보고하였으며, 피진정인이 제00000교육단에 부임하기 이전에도 전임 주임원사가 소속 부대 부사관들에 대하여 2012. 최소 2차례의 부채현황 조사를 실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부채현황 조사는 피진정인 소속 부대에서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육군 제0군사령부의 다른 예하 부대에서도 실시되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나. 사생활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소속 부대 부사관들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임원사로서 피진정인에게는, 부사관들의 금전적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부대생활을 하도록 할 필요, 곧 이 사건 부채현

황 조사를 실시한 목적의 정당성이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는, 피진정인은 소속 부대 부사관들에 대하여 금전관리에 대한 사전적·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거나 개별적인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음에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관행에 따라 강제성을 띠고 소속 부대 부사관들에 대하여 각자의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개인 금융정보를 일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는 목적에 비해 그 수단이 과도하여 진정인 등 소속 부대 부사관들에 대하여「헌법」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다. 조치의견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부대의 관행에 따라 이 사건 부채현황 조사를 실시한 점과 개인 금융정보 미제출자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 사건 부채현황 조사가 육군 제0군사령부 주임원사가 예하 부대 주임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지시로부터 비롯된 것을 고려하여 육군 제0군사령관에게 이 사건 사례를 예하 부대에 전파할 것과 소속 부사관에 대한 부채현황 조사와 관련하여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5.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 원 양현아 위 원 한위수

7 14진정3436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의한 인권침해] 2015. 6. 17. 결정

▌결정사항▐

육군참모총장에게, 일선 부대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례를 소속 예하부대에 전파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대대장인 피진정인이 영외 독신자 숙소에 거주하는 간부들의 도박행위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소속 대대 전체 간부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월급통장 6개월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은 그 방법이 과도하여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함

▌참조조문▐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진정인▐ ○○○

▌피진정인▐ ○○○

▌주 문▐ 육군참모총장에게, 일선 부대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례를 소속 예하부대에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육군 제00사단 00여단 000대대장인 피진정인은 영외 독신자 숙소 간부들의 도박행위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대대 간부들에 대하여 월급통장 6개월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당시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간부가 불법도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익명으로 된 마음의 편지를 받았기에 부대 간부들에게 도박 관련자는 자진 신고하라고 하였지만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간부들의 동의를 구하여 6개월 월급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식별된 2명의 부사관에게 경고조치와 정신교육을 하였다.

다. 참고인의 진술요지

1) 송ㅇㅇ(제00사단 00여단 000대대 0중대장)

2014. 4월경 인접 타 부대에서 부사관 부채 때문에 사고 사례가 있어서 부사관 및 장교들에게 6개월 월급통장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소대장 등 장교는 중대장들이 제출받아 피진정인에게 이상 없다고 구두보고를 하였다.

2) 노ㅇㅇ(제00사단 00여단 000대대 주임원사)

2014. 4월경 제00사단 00여단 000대대 주임원사로 근무할 당시 피진정인의 지휘를 받아서 부사관들에게 동의를 구하여 대대본부 및 각 중대 전체 부사관 약 2/3정도 인원의 월급통장 거래 내역서를 제출받았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육군 제00사단에서 제출한 '2013년도 부사관 월급통장내역서 제출현황'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육군 제00사단 00여단 000대대장인 피진정인(현재 육군본부 ㅇㅇㅇㅇㅇㅇ참모부 ㅇㅇㅇㅇ과 근무)은 2014. 4월경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간부들이 도박을 한다는 내용의 익명으로 된 마음의 편지 제보를 받고 소속 대대의 전체 장교 및 부사관들에게

동의를 받아 월급통장 6개월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대대 간부 2/3이상이 자신의 월급통장 6개월 거래 내역서를 소속 중대장 및 대대 주임원사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2014. 5월경 진정인 외 1인을 도박 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하고 경고조치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이전인 2013. 6월경 육군 제00사단은 육군본부 ○○○○과-496(2013. 5. 16.)호 '장병 사이버 도박행위 근절대책 추진 지시'에 근거하여 전체 부사관 월급통장 내역서를 아래 표와 같이 제출받았다.

〈육군 제00사단 부사관 월급통장 내역서 제출 현황〉

구분	계	00여단	00여단	00여단	포병여단	직할부대
계	1,577	329	249	319	198	482
동의/확인	837	8	234	231	180	184
동의/미제출	1	0	1	0	0	0
부동의	739	321	14	88	18	298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 7. 5. 육군 제0군사령관에게 소속 부사관에 대하여 과도한 부채현황조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고 관행의 개선을 권고(12진정0886400·12진정0890700(병합))한바 있다.

4. 판단

이 사건 대대의 대대장인 피진정인으로서는 영외 독신자 숙소에 거주하는 간부들이 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받은 상황에서 이를 조사하여 도박 행위를 방지하고 군대 내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독신자 숙소 간부들을 대상으로 도박행위 근절 교육을 시키거나, 면담 및 조사를 통하여 문제가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개별적 조언 및 조치 등을 취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음에도, 소속 대대 전체 간부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월급통장 6개월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은 그 방법이 과도하여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이 도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에 의해 이 사건 월급통장 거래 내역서 제출 요구를 한 점, 간부들의 동의를 받아 위 자료를 제출받았고 미제출자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 조치는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육군 제00사단 내에서 2013. 6월경에도 대대적인 월급통장 내역서 제출요구가 있었던 점, 유사사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군대 내에 존재하는 이러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육군참모총장에게,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례를 소속 예하부대에 전파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6. 1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 원 윤남근 위 원 최이우

8 15진정9272 [관심장병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따른 인권침해] 2016. 8. 30. 결정

▌결정사항▐

○군제○○○○○○○대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공공기록물 관리 등과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 1은 관심장병 현황이 포함된 2014년 2월부터 8월까지의 ○○○○ 활동보고 문건을 지속적으로 대국민 공개로 작성하여 왔으나 진정인의 항의 이후 2014. 10. 29. 관리정보를 수정하여 비공개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진정인이 정신질환으로 체크된 문서가 대국민 공개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문서처리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 부대원 모두가 해당 문서 열람이 가능하며, 부대 내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심 장병에 대한 건강정보 등의 비밀 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 개인에 대한 낙인효과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참조조문▐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의료법」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2

▌진정인▐ ○○○

▌피진정인▐ 1. ○○○

2. ○○○

▌주 문▐ 1. ○군제○○○○○○○○대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공공기록물 관리 등과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기각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 11. 10. 예비군 병역처분 변경을 위해 국군○○병원에서 의료기록사본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권리구제를 요청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2014. 2. ~ 2014. 8. 민감정보가 포함된 관심 장병 관련 공문을 비공개 처리하지 않고 대국민 공개로 처리하여 관련 내용이 모두 알려지도록 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2014. 1. 16. 진정인이 청원휴가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청원휴가를 연장하였고, 개인 의료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 및 위임장 없이 군의관에게 내원 소견서를 받았다.

다. 피진정인 2는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없이 피진정인 1에게 의사 소견서를 발부하여 주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은 전 ○군제○○○○○○○○대 ○○○○로 근무하였다. ○○○○ 활동보고는 대개 대국민 공개로 설정하여 작성하다 보니 관심장병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안문을 작성하면서 과거 작성 습관에 따라 관련 문건을 대국민 공개로 처리하는 실수를 범하였다. 2014. 8. 진정인의 항의 이후 관련 문건을 비공개 설정으로 변경 조치하였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2012년부터 민간병원에서 우울 증세로 약물 치료를 받아 오던 진정인이 독신자 숙소에서 약물 과다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 ○○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치료 목적에 의한 청원 휴가 조치를 대행하였으며, 첫 번째 청원휴가 만기일이 도래하여 군의관에게 퇴원 여부를 문의한 결과 입원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 담당 의사 및 진정인의 부모와 상의하여 청원휴가를 연장조치 하였을 뿐 문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의사소견서를 받은 바 없다.

2) 피진정인 2는 전 국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으로 복무하였다. 청원 휴가를 위한 의사 소견서를 발급할 때 규정된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바 없다.

다. 참고인 ○○○(국군○○병원 의무기록담당)의 진술

피진정인 2가 발급한 의사소견서의 경우 국군○○병원 원무과를 거치지 않고 발급된 것이며, 국군○○병원은 제3자 의료기록 발급 시 환자 동의서 및 위임장을 스캔하여 10년간 보관한 뒤 파기하고 있으나 진정인의 의료기록 발급과 관련한 동의서나 위임장은 보관되어 있지 않다. 또한 2014년 초의 경우 국군○○병원에서는 의사가 직접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수도 있었으나 현재는 원무과를 거치지 않고서는 환자의 의무기록이 발급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수정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진술, 참고인 진술, 진정인 외래초진 기록지, 국군○○병원 소견서, ○○대학교병원 입원 경과기록 및 입원사실 확인서,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행 승낙서, 국군○○병원 의무기록 담당자 녹취록, 입·퇴원 확인서, 관심장병 관리 관련 ○○○○ 업무보고, 청원휴가 신청서, 문서관리 정보 수정이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8. 3. 1. ○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08. 5. 26. ~ 2014. 12. 21.까지 ○군 제○○○○○○○○대 ○○○○부 제○○○대에서 복무하였으며, 2015. 4. 30. 전역하였다.

나. 진정인은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13. 12. 24. ~ 2014. 01. 2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4. 1. 7. 자 입원 경과기록을 살펴보면 군대 복무문제로 인해 피진정인 1이 부모와 함께 찾아와 환자에게 면회 동의를 구한 후 면회를 시행하였으며, “부모가 진정인에게 진단서를 요구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4. 1. 7. ○○대학교병원은 진정인의 자필 서명된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행 승낙서에 따라 타병원 진료용으로 초진기록 및 경과기록을 복사하여 피진정인 1에게

발급하였다.

라. 2014. 1. 16. 피진정인 2가 발급한 의사 소견서에는 진정인이 ○○대학교병원 보호병동 입원치료 중으로 진료기록사본 검토 상 추가적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외래초진기록지에는 청원휴가 연장을 위해 피진정인 1이 진료기록 사본을 지참하고 내원하여 의사소견서를 발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진정인의 동의서 또는 위임장은 보관되어 있지 않다.

마. 2014년 2월부터 7개월간 피진정인 1은 ○○○○ 활동 보고(월간 업무 보고)를 통해 진정인의 이름을 적시하여 정신질환자에 체크 후 고위험군으로 표기한 관심장병 현황을 보고하면서 관련 기안문을 대국민 공개로 설정하였다.

바. 2014. 10. 29. 대국민 공개로 설정되어 있던 ○○○○ 활동 보고 문건에 대하여 관리정보를 수정하여 공개 여부를 대국민 공개에서 비공개로 수정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여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분류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피진정인 1은 관심장병 현황이 포함된 2014년 2월부터 8월까지의 ○○○○ 활동보고 문건을 지속적으로 대국민 공개로 작성하여 왔으나 진정인의 항의 이후 2014. 10. 29. 관리정보를 수정하여 비공개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진정인이 정신질환으로 체크된 문서가 대국민 공개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문서처리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 부대원 모두가 해당 문서 열람이 가능하며, 부대 내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심 장병에 대한 건강정보 등의 비밀 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 개인에 대한 낙인효과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군의관 소견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에 대하여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진정인의 휴가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진정인의 아버지가 피진정인 1의 설득으로 의료기록 사본을 제공하였다는 진정인의 진술과 타병원 진료용 목적으로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행 승낙서가 발급된 사실 등에 비추어 진정인의 주장대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건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진정인과 피진정인 2의 주장이 상반되고, 참고인의 진술과 같이 2014년 초 당시에는 국군○○병원의 경우 원무과를 거치지 않고 의사가 직접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 병원에 「의료법」 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그 당시에 피진정인 2가 관련 동의서를 받지 않고 소견서를 발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8. 3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정상환 위 원 이은경 위 원 장애순

[별지] 관련 규정

1.「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016. 3. 29. 개정 , 2016. 9. 30. 시행〉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의료법」제21조 (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2 (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9 16진정3737 [장교 및 부사관 지원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2016. 12. 27. 결정

▌결정사항 ▌

국방부장관 및 국군기무사령관에게, 장교 및 부사관 채용 시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신원조회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중 학교생활기록부는 제외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OO참모총장은 본 건 OO 제137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 시에는 필기시험 응시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당일까지 신원조회서류를 제출토록 하였고, 제138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 시부터는 계획을 수정하여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조회서류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하지만 신원조회서류 제출대상을 1차 합격자로 한정한다 하여도 신원조사의 대상을 공무원임용예정자로 규정하고 있는 「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3항 제1호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최종합격자가 아닌 필기시험 응시자 또는 1차 합격자에게 신원조회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판단

[2]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성적, 출결, 행동특성 등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 기재되어 있어 임용이 확정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큰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총기 등 무기를 다루는 군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윤리관과 투철한 사명감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장교 등 선발에 활용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참조조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국가공무원법」 제38조, 「군인사법」 제9조 및 제10조, 「국가정보원법」 제3조,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26140호, 2015. 3. 11. 시행) 제33조 및 제58조, 「군사보안업무 훈령」 제71조

▌ 진정인 ▌ ○○○

▌ 피진정인 ▌ OO참모총장

▌주 문 ▐ 국방부장관 및 국군기무사령관에게, 장교 및 부사관 채용 시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신원조회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중 학교생활기록부는 제외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OO참모총장은 장교 및 부사관 모집 시 필기시험 응시자 전원에게 신원진술서, 고교생활기록부, 개인신용정보서, 군 복무 당시 상벌내용, 병적증명서 등 신원조회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OO본부는 OO 장교 및 부사관 모집 시 지원자들에게 전형서류 3가지와 신원조회서류 9가지를 요청하고 있다. 이 중 전형서류인 지원서, 학력증명서, 자격요건 관련 서류는 OO본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며, 신원조회 서류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2) 국군기무사령부는「보안업무 규정」제31조,「군사보안업무 훈령」제71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군인 및 군무원, 군 관련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주민등록등본, 고교 생활지도기록부, 개인신용정보서 등 신원조회서류 9종을 수집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58조에 명시된 13개 신원조사 사항과 군 특수성에 따른 충성심·성실성·신뢰성·보안사고 유무 등을 추가하여 총 16개 항목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모집계획(육군·해군·공군),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6. 4. 1. OO참모총장은 OO 제137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 계획을 공고하였다.

나. 학사사관 후보생 필기시험 응시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당일(2016. 5. 28.)까지 공통 구비서류로 전형서류(3종)와 신원조회 서류(9종)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전형서류	2. 신원조회서류
① 현역복무지원서 ② 최종학력증명서 ③ 자격·경력 증명서	① 신원진술서 ② 기본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자기소개서 ⑥ 병적증명서 ⑦ 개인신용정보서 ⑧ 고교생활기록부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다. 진정인은 OO 제137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 계획에 따라 일반전형(필기시험)에 응시하였고, 필기시험 당일인 2016. 5. 28. 해당 서류를 모두 OO사령부에 제출하였다.

5. 판단

가. 기본원칙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인정(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육군 및 해군사관후보생 모집시 최초응시단계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보안업무 규정의 취지에 맞게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을 권고(08-진인-0003904, 2009. 8. 24. 결정)한 바 있으며, 군대 부사관에 대한 과도한 부채현황 조사에 대하여 개인금융정보 제출요구 행위는 인권침해(12-진정-0886400·0890700병합, 2013. 7. 5. 결정)로 판단한 바 있다.

나. 임용예정자가 아닌 사람에게 신원조회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관행의 적절성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 및 「보안업무규정」 제33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 경찰청장은 위임을 받아 신원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보안업무규정」 제33조에 신원조사는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예정자, 비밀취급인가예정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OO참모총장은 본 건 OO 제137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 시에는 필기시험 응시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당일까지 신원조회서류를 제출토록 하였고, 제138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 시부터는 계획을 수정하여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조회서류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하지만 신원조회서류 제출대상을 1차 합격자로 한정한다 하여도 신원조사의 대상을 공무원임용예정자로 규정하고 있는 「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3항 제1호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최종합격자가 아닌 필기시험 응시자 또는 1차 합격자에게 신원조회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판단되므로 모든 전형이 종료된 후 최종적으로 합격한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신원조회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다. 신원조회서류로 고교생활기록부 제출의 타당성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성적, 출결, 행동특성 등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 기재되어 있어 임용이 확정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큰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총기 등 무기를 다루는 군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윤리관과 투철한 사명감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장교 등 선발에 활용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최종 임용예정자에 대하여도 수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정상환 위 원 이은경 위 원 장애순

[별지] 관련 규정

1.「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국가공무원법」

제38조 (채용후보자 명부)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4.「군인사법」

제9조 (임용)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 외에 능력의 실증(實證)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檢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결격사유 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還收)되지 아니한다.

5.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26140호, 2015. 3. 11. 시행)

제33조(신원조사)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③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임용 예정자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
4.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5. 임직원을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341호, 2015. 4. 13. 시행)

제58조(신원조사 사항) 신원조사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임용분야 및 취급업무에 따라 신원조사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등록기준지 및 주소
3. 친교 인물
4. 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
5. 국적 변동 내역
6. 학력 및 경력
7. 가족관계
8. 재산(「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을 포함한다)
9. 범죄경력 및 상벌 내역
10. 인품 및 소행
11. 병역사항(「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포함한다)
12. 해외 거주 사실
13. 그 밖의 참고사항

8. 「군사보안업무 훈령」

제71조(신원조사 기관 및 대상)

① 각급부대의 장은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기무부대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되 ···(중략)··· 의뢰한다.

1. 임관·임용 예정자 및 간부 후보생 선발, 의무·수의·군종·법무사관 등 병적편입예정자
   가.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나. 신원진술서 3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부
   라. 자기 소개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고교 생활지도기록부, 병적증명서, 개인신용정보서 각 1부

10 16진정3851 [일기장 돌려보기 지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2016. 7. 20. 결정

▌결정사항▐

해병대 제○여단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구서작전을 이유로 관물함을 뒤져 압수한 일기장을 생활반장 및 선임들에게 돌려보게 한 행위는「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임

▌참조조문▐

「군인복무규율」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부대관리훈령」제33조(병영생활의 지도), 제47조(병영생활지도의 구분) 및 제48조(병영생활지도권자)

▌진정인▐ ○○○

▌피해자▐ ○○○

▌피진정인▐ ○○○

▌주 문▐ 해병대 제○여단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년 10월 말경 해병대 제○여단 제○○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관물함을 뒤져 진정인의 수첩, 다이어리, 일기장 등을 압수하여 부사관, 선임병, 동기들과 돌려보도록 지시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은 2015. 10. 21. 소통함 내용을 확인하던 도중 경첩 상태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중대장 보고 후 당일 구서작전(병영부조리를 찾아내기 위해 생활관 및 관물함을 샅샅이 찾아내는 것) 지시에 의거하여 소대장 입회하에 병사들의 관물함을 조사하였고, 진정인의 관물함에서 소통함 용지를 찾아낸 뒤 지휘보고 후 추가 조사를 통하여 진정인의 수첩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였다.

2) 이후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스캔하였고, 수첩은 증거인멸 소지가 있어 사건 종결 시까지 보관한 후 진정인에게 압수 자료 일체를 돌려주었으며, 다른 병사들에게 이를 보여준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1) 참고인 1 ○○○

참고인은 진정인과 같이 군복무를 하였으며, 피진정인이 구서작전 후 참고인을 포함한 생활반장들을 불러 일기장을 돌려보라고 하여 진정인의 일기장을 본 사실이 있다.

2) 참고인 2 ○○○

참고인은 진정인과 같이 군복무를 하였으며, 피진정인이 구서작전 후 진정인이 가지고 있는 노트와 일기장 등을 압수하였고, 참고인을 행정관으로 불러 일기를 보라고 하여 본 사실이 있고, 피진정인이 일기를 보여주며, 생활반장들도 모두 봤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여 나중에 이를 확인하니 생활반장들도 모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일기를 보여줘서 모두 봤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 참고인 진술, 진정인에 대한 징계의결서 및 처분서, 징계혐의 관련 일기장 및 메모장 스캔 자료, 진정인이 압수당한 일기장 및 메모장(기록내용 포함) 관련 사진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15. 10. 21. 13:00 경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구서작전을 실시하여 진정인의 관물함에서 내용이 기재된 소통함 용지 4~5장 정도를 발견하였고, 추가로 진정인의 일기 및 수첩에 관련 내용을 확인 후 사건 종결시까지 일기 및 수첩을 압수하였다.

나. 해병대 제○○대 ○○중대장은 2015. 11.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진정인에 대하여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진정인으로부터 압수한 일기장 및 수첩에는 '보복', '생활관 소통함 별도 운영' 등 징계혐의에 해당하는 내용 이외에도 자대생활 일기, 휴가계획 및 휴가기간, 내밀한 사적 내용, 자작시, 특허 및 실용신안 아이디어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진정인과 함께 군 복무한 참고인 1, 2는 피진정인의 지시로 진정인의 일기장을 본 사실이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참고인 1, 2 외 다른 생활반장들에게도 진정인의 일기를 돌려 보도록 지시하여 그들도 일기를 보았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군인복무규율」 제15조 및 「부대관리훈령」 제33조에 따라 병영생활에서의 구타·가혹행위·인격모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위해 같은 훈령 제48조에 의거하여 지휘관의 구서작전 지시를 받아 예고 없는 수시점검을 수행한 것은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일기란 개인의 하루하루의 경험, 생각과 느낌을 적은 글로써 주관적 생각과 양심이 담긴 내면에 대한 솔직한 기록이며,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는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보장받아야 할 영역이다.

라. 비록 피진정인은 생활반장 및 선임들에게 일기장을 돌려보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해병대 전역자 모임에서 진정인이 생활반장들로부터 진정인의 일기를 돌려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확인하여 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진정한 점, 참고인들이 일관되게 피진정인의 지시로 진정인의 일기장을 돌려봤고 이를 발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일기를 타인으로 하여금 돌려보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일기장과 수첩에 기재된 병영 부조리 관련 계획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메모를 스캔할 수는 있다하더라도 진정인의 내밀한 사생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일기장을 생활반장 및 선임들에게 돌려보도록 지시한 것은 진정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7. 2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정상환 위 원 이은경 위 원 장애순

11 16진정6599 [사관생도 사생활 침해 사건] 2016. 12. 27. 결정

▌결정사항▐

○○사관학교장에게, 생도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훈육요원을 의무적으로 초대하도록 하고 이를 통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해자들이 ○○ 장교가 되기 위한 훈육 과정에 있고, 위에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 생도의 신분과 역할에 걸맞지 않는 글들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 학교 측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3인 이상의 단체 대화방에 의무적으로 훈육요원을 초대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

▌참조조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 사관생도 생활규정 제84조

▌진정인▐ 군인권센터

▌피해자▐ ○○사관학교 생도

▌피진정인▐ ○○사관학교장

▌주 문▐ ○○사관학교장에게, 생도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훈육요원을 의무적으로 초대하도록 하고 이를 통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군대 내 인권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피해자인 ○○사관학교 생도(이하 "○○ 생도"라고 한다)들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할 경우 훈육요원을 의무적으로 초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생도들을 처벌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진정을 하였다. ○○생도들이 장차 선진병영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보다 인권친화적인 교육 환경에서 소양을 키우고 배울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주길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의 주장

휴대전화 사용은 아침 일과 시작 전, 저녁 식사시간 전후, 야간 취침 전에만 가능하고 그 외 시간은 휴대·사용이 통제되고 있다.

카카오톡 사용은 생도들의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며, 단체 대화방을 만드는 것을 실질적으로 검열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이다. 생도들은 성인이고 문제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단체 대화방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모든 생도들의 카카오톡을 점검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생도들은, 학과수업 중 소그룹 단위 과제 제출을 요구하는 교수님들이 많은데 과제 수행을 위한 단체 대화방에 일일이 훈육요원을 초대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실제로 생도들끼리 대화방을 만들고 훈육요원을 초대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지시에 대한 복종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는 ○○ 생도로서 스스로 명예감이 훼손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일부 생도들은 카카오톡 점검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는 생도들이 갖추어야 할 가치관·윤리의식 분야와 연관이 있다. 학교에서는 가치관·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건전한 민주시민의식과 민주사회의 가치함양, 군인다운 가치관·윤리의식 내면화, 군내 법규 숙지와 준수,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의식에 필요한 지적·정서적·실천적 소양 습득을 중점으로 하여 교육 및 훈육에 매진하고 있다.

2015년에 일부 생도들의 잘못된 SNS 활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어

'생도 SNS 활용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단체 대화방(건전한 모임, 정보공유, 일상 대화 등이 아닌 타인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운영을 지양하도록 교육하여 생도들이 건전하게 SN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관학교에서는 지휘근무 생도들이 공식적으로 SNS를 활용할 때 사회적 통념이나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주에서 사용하도록, 지휘근무 활동시 운영하는 단체 대화방에 한해서만 훈육요원이 동참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 경우에는 훈육요원을 참여시키지 않는다. 훈육요원을 참여시키지 않고 생도들만으로 구성된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였다 해도 징계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지시는 없다. 이번 진정을 계기로 ○○사관학교에서는 생도 생활이 장차 리더가 되기 위해 수련하는 기간임을 고려하여, 생도 본인은 물론 임관 후 부하들에게도 윤리의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생도들의 SNS 사용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사관학교 생도 생활규정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관학교 생도들은 지휘생도를 제외하고는 생도생활규정에 따라 휴대전화를 기상·아침식사 및 학과출장 준비시간 (06:00~07:30), 점심식사시간(12:00~12:40), 저녁식사 및 체력단련시간(18:00~20:00), 개인 학습·정비시간(21:40~24:00) 이외에는 군장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위반 시 벌점 등의 불이익 처분을 당할 수 있다.

나. ○○사관학교는 생도들이 3명 이상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할 경우 훈육요원을 초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훈육관이 생도들에게 "훈육관이 생도 단체톡방에 날 초대하고 훈육요원이 없는방 없애라고 지시한지 2주가 돼가는데 반응이 없다. 중대장 생도 등이 방 정리하고 훈육요원 초대할 것"이라는 문자로 이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

다. ○○사관학교 측은 '지휘근무를 하는 생도를 대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공식적인 대화방에 한하여 훈육요원을 초대하도록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 11. 15. ○○사관학교에 대한 현장조사 시 면담한 생도 ○○명 모두 '3명 이상 단체 대화방 개설 시 모든 경우에 훈육요원을 초대하도록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중 ○○명의 생도는 이를 사생활 침해로 느끼고 있었고, '위반 할 경우 지시사항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4. 판단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은 이른바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일종이고, SNS는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의 창으로 현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매체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관학교가 사적인 유대감 또는 학과 과제수행 등을 목적으로 생도들이 만든 단체 대화방에, 규율의 주체인 훈육관이나 훈육장교를 의무적으로 초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헌법」이 제17조에서"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3조에서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군인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사관생도도 이러한 기본권이 마땅히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 장교가 되기 위한 훈육 과정에 있고, 위에서 언급한 사건과 같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 생도의 신분과 역할에 걸맞지 않는 글들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 학교 측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3인 이상의 단체 대화방에 의무적으로 훈육요원을 초대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시 내지 관행은 ○○ 생도 3인 이상이 대화시 훈육요원이 동석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피진정인이 지휘근무 생도 등의 공식적인 단체 대화방 외에는 훈육요원을 초대하도록 문서 또는 구두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생도들이 장차 일선 부대에서 선진병영문화를 선도할 자원임을 감안하여 보다 인권친화적인 교육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사관학교장에게 생도들의 SNS 영역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훈육요원을 의무적으로 초대하도록 하여 이를 통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정상환 위 원 이은경 위 원 장애순

[별지] 관련 규정

가.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 사관생도 생활규정 제84조(상용정보통신 장비 보안관리)

① 휴대전화 사용 시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 생도의 교내 휴대전화 반입은 1학기 중간고사 이후부터 가능하다.
2. 교내에서 휴대전화는 기상 후부터 24:00까지 허가된 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
3. 오전·오후 학과, 교양강의, 점호 등 휴대전화 사용이 방해될 수 있는 공식적인 일과 및 행사 시 휴대전화를 휴대할 수 없고, 야간 자습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단,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생도 및 연대 참모급 생도, 문화체육활동 부장생도(문화체육활동시)는 상황전파를 위하여 상시 휴대 가능하나 공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 훈육관의 승인 하 사용할 수 있다.
4. 오전·오후 학과시간과 24:00~06:00까지 휴대전화는 지정된 장소(침실군장함 내부)에 전원을 끈 상태로 위치시킨다.
5. 주요행사 및 군사보안에 위배되는 사항을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6.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전화 예절을 준수한다.
7. 휴대전화 사용이 일과표 준수 등 생도 내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훈육요원 통제하 사용시간 및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2 16진정6661, 16진정6992, 16진정7054, 16진정7056, 16진정7059, 16진정7060(병합) [독신자 숙소 점검으로 인한 사생활의 자유 침해] 2016. 11. 27. 결정

▌결정사항▐

국방부장관에게, 독신자 숙소에 대하여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숙소 내부 검열을 금지하도록 하고, 독신자 숙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들은 자치운영위원회의 자율적 운영에 따른 해결을 강구하도록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독신자 숙소 생활은 내무생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무검사의 대상이 아니며, 군 숙소의 범위에는 독신자 숙소 이외에 기혼자 숙소도 포함되는데, 유독 독신사 숙소만 화재예방 점검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바, 점검 대상자의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독신자 숙소를 점검하는 것은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임

▌참조조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제12조(영내대기의 금지) 및 제13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군 숙소관리 운영규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및 제4조(위원회), 제5조(관계관 임무)

▌진정인▐ 박○○, ○○○센터장

▌피진정인▐ ◎◎◎, □□□, △△△, ○○○, ◇◇◇, ▲▲▲

▌주 문▐

1. 국방부장관에게, 독신자 숙소에 대하여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숙소 내부 검열을 금지하도록 하고, 독신자 숙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들은 자치운영위원회의 자율적 운영에 따른 해결을 강구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2. 16진정0699200·0705400·0705600·0705900·0706000 사건은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2회에 걸쳐 최소 근무 인원을 제외하고 모든 독신자 숙소 내·외부 청소 상태 등을 검열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권리구제를 요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은 해병대 제0사단장으로서 해병대사령부 지시에 따라 초급 간부들의 군 기강 확립 및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자 독신자 숙소의 쓰레기 분리수거 상태, 개인 격실 내 비인가 전열 기구 사용 여부, 노후 교체 비품 소요 및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이는 화재 예방 및 공간 확보의 목적 외에도 비품을 점검하여 교체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2) 독신자 중 근무에 투입되는 최소한의 병력을 제외하고 총 2회에 걸쳐 모든 독신자 숙소 개인 격실을 점검하였고, 독신자 숙소 거주자를 제외한 기혼자 등의 관사 거주자는 제외하였다.

3) 숙소 점검은 숙소의 각 방문 앞 복도에 점검 대상자가 문을 열고 서 있는 상태에서 대상자와 점검자가 같이 방에 들어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었고, 특히 여성 숙소는 사단장과 여성장교가 같이 입회하여 점검함으로써 최대한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 참고인 진술 요약

최소 근무 인원을 제외하고 모든 독신자 간부들이 검열을 받았으며, 관사라고 하지만 퇴근 후 생활을 하는 엄연한 사적인 공간인데 다른 누군가에게 검열을 받아야 하는 것이 불편했고, 검열을 거부할 수 있다고 고지를 받은 적도 없으며, 동의서를 받거나 제출한 바도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해병대 군 숙소 관리 운영규정, 해병대 제0사단의 초급간부 주거실태 점검계획, 초급간부 주거실태 재점검계획, 초급간부 주거실태 재점검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6. 7. 22. 해병대 제0사단 근무행정과는 초급 간부 주거실태 점검계획을 마련하고 개인 격실에 대하여 청결, 정리정돈 상태, 비인가 물품 방치 등을 점검하고, 공용 격실에 대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상태, 전단지 게시 여부, 격실에 대한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겠다고 사단 소속 각 과 및 부대에 통보하였다.

나. 2017. 7. 29. 사단장 이하 참모 및 간부들은 1차 독신자 숙소 점검을 실시하였고, 각 격실 청결 및 비품(보급) 관리, 공용 격실 청결 상태 및 비품 관리 상태, 독신숙소 주변 청결 상태를 점검하였다.

다. 2016. 8. 9. 근무행정과는 해병대 제0사단 소속 각 과 및 부대에 초급 간부 주거실태 재점검 계획 공문을 시달한 후, 2016. 8. 12. 사단장 이하 참모 및 간부들이 2차 독신자 숙소 점검을 실시하였다.

라. 주거실태 점검은 숙소의 각 방문 앞 복도에 점검 대상자가 문을 열고 서 있는 상태에서 대상자와 점검자가 같이 방에 들어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마. 해병대「군 숙소 관리 운영규정」확인점검 일지에는 점검 사항에 공공시설물 손괴여부 확인, 숙소 주변 청결 유지 상태, 숙소 운영요원의 활동, 부수 시설물의 지상안전 저해요인,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 격실에 대한 점검사항은 없다.

5. 판단

가. 기본원칙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0조 제1항은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제13조에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독신자 숙소 점검의 인권침해 여부

피진정인 1은 해병대 제0사단 영외에 마련된 독신자 숙소 0,000실 중 개인 격실을 포함한 0,000실을 입회하여 검열하였다. 피진정인 1은 숙소 점검 시행 계획을 알리면서 점검 내용을 미리 알렸고 해병대 「군 숙소관리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규정된 관계관의 임무에 따라 숙소 확인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하였다고 주장하나, 운영규정에 따르면 군 숙소 관리 점검 대상이 공공시설물 손괴 여부, 숙소 주변 청결, 운영요원의 활동, 놀이터나 정화조 등 부수 시설물의 안전 저해 요인으로 되어 있을 뿐, 숙소 내부에 대한 검열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부사관과 장교가 독신자 숙소에서 생활하는 것은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무생활이 아니므로, 청결 및 정돈상태, 시설·비품 등의 보존·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무검사의 대상자도 될 수 없다.

더구나 피진정인 1은 전열기구 등 비인가 물품에 따른 화재 예방을 숙소 점검의 한 가지 목적으로 주장하였는데, 군 숙소의 범위는 독신자 숙소 이외에 기혼자 숙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화재 예방 차원의 숙소 점검에서 기혼자 숙소를 특별히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퇴근 이후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적 공간을 점검 대상자의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점검한 것은 「헌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조치의 필요성

독신자 숙소 점검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이 약 30여 건이나 되어 본 건과 같은 숙소 점검이 특정 부대에서만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방부 차원에서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독신자 숙소 검열을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영규정에는 군 숙소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자 자치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치 운영위원회에서 건물 및 부수시설 관리·유지를 할 수 있고, 숙소의 입·퇴실이 예정된 경우 비품 손상에 대한 신고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본 건과 같은 숙소 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독신자 숙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해병대 제0사단을 제외하고 ○○○센터가 진정한 사건(16진정0699200·0705900·0705600·0705400·0706000)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2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정상환 위 원 이은경 위 원 장애순

양심의 자유 침해

1 12진정4227 [인격권 침해 등] 2013. 8. 27. 결정

▌결정사항▐

○○훈련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훈련소 훈련과정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시 당사자의 개입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훈련소 감찰부가 훈련 과정을 마친 훈련병들에 대하여 무기명 설문조사를 하는 취지는 훈련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침해나 고충 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기하도록 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의해 인권침해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임에도 직접 하급자를 시켜 피진정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설문답변을 작성한 진정인을 상대로 이러한 설문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는 설문답변 내용이 실제로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했는지 여부를 떠나 위 설문조사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로서 「헌법」제19조가 정한 진정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9조

▌진정인▐ ○○○

▌피진정인▐ ○○○

▌주 문▐ 1. ○○훈련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훈련소 훈련과정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시 당사자의 개입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 나, 라, 마, 바, 사항은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훈련소 소대장인 피진정인은 2011. 8. 25.~2011. 9. 22. 진정인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2011. 8. 30. 진정인이 단체 얼차려를 받던 중 혼잣말로 "아, 씨발"이라고 욕설했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30여분 동안 얼차려를 가하며 질책을 하고, 이후 훈련기간 동안 몇 차례 진정인을 "야, 씨발"이라고 호칭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1. 9. 16. ○○훈련소 훈련과정을 평가하는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분대선임들에게 설문답변 내용을 검열하여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분임별로 앉을 자리를 배치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설문지를 걷도록 하여 누가 쓴 설문지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위 설문지에 피진정인의 욕설 및 강압적인 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썼다는 이유로 현역 분대장을 통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위 설문답변의 내용이 왜곡·과장되었다는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교육훈련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아 행군훈련 시 무거운 짐으로 인해 진정인에게 어깨 부상을 입게 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4명의 분대선임들에게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에 피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지휘관에 대한 칭찬글을 쓰라고 시켰다.

바. 피진정인이 소대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면서 말을 잘 듣고 마음에 드는 훈련병에게 휴대전화를 차별적으로 더 많이 빌려주었다.

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훈련소 생활에 대해 썼다가 친구에게 보내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린 편지를 입수하여 진정인을 훈육실로 불러 욕설과 인격모독을 하였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을 욕설로 호칭했다는 주장에 대하여(진정요지 가항)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단체 얼차려 실시 중 욕설을 한 것은 '상관면전모독죄'에 해당되어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으나, 팔굽혀펴기 10여회를 실시하게 하는 것으로 훈육

하여 선처하였고, 이외 진정인을 포함한 훈련병들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다.

나. 설문조사 시 검열 및 자리배치 관련 주장에 대하여(진정요지 나항)

피진정인은 설문조사 전에 분대선임들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한바 없고 설문장소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설문조사 시 사전에 좌석을 지정하여 훈련병들을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 진술서 제출 강요 주장에 대하여(진정요지 다항)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제출한 설문답변의 내용에 과장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 분대장을 통하여 진술서를 받았다.

라. 교육훈련 차등제 미적용 주장에 대하여(진정요지 라항)

진정인과 함께 훈련을 받은 훈련병들은 징병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고 입소하여 신체적으로 불편한 훈련병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하여 훈련을 실시하였고 차등제를 적용하였다.

마. 칭찬민원 강요 주장에 대하여(진정요지 마항)

피진정인은 분대선임들에게 칭찬민원을 제출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이는 누구의 통제나 강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바. 휴대전화 차등대여 주장에 대하여(진정요지 바항)

피진정인은 소대원 전체적으로 훈련병 본인의 생일, 부모님 생신 등을 파악하여 해당 훈련병에게 피진정인의 휴대전화로 통화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뿐이다.

사. 버린 편지를 입수하여 욕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진정요지 사항)

피진정인은 분리수거 청소담당 훈련병이 갖다 준 진정인의 편지에 피진정인과 분대장에 대한 욕설, 교육훈련의 고충을 토로한 내용이 있어 진정인을 불러 상담하였고, 진정인은 편지 내용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사과하며 스스로 편지를 찢어 버렸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진정인의 동료 훈련병, 분대선임훈련병 등 8명) 진술서, ○○훈련소에서 제출한 참고인(현역 분대장 4명) 진술서, 차등제 실시현황, 설문지 등의 자료에 의하면 각 인정사실과 그에 따른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을 욕설로 호칭했다는 주장에 대하여(진정요지 가항)

1) 진정인은 징병신체검사 4급(공익근무요원 대상) 판정을 받고 ○○훈련소 제○○교육연대 ○중대 ○소대에 입소하여 2011. 8. 25.~2011. 9. 22. 기간 동안 훈련을 받은 훈련병이고, 피진정인은 ○○훈련소 소속 ○○로서 위 소대의 소대장이다.

2) 피진정인은 2011. 8. 30. 경계근무에 대한 야외교육훈련 중 훈련병들에게 단체 얼차려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아,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진정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얼차려를 가하고 질책을 하였으며, 이후 진정인을 부를 때 몇 차례 "씨발"이라고 호칭한 사실이 있다.

3)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훈련병을 교육하는 소대장으로서 적절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나, 진정인이 먼저 훈련 과정에서 욕설을 한 점,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욕설로 호칭한 것이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한다.

나. 설문조사 시 검열 및 자리배치 관련 주장에 대하여(진정요지 나항)

1) ○○훈련소 감찰부 손망실 담당관은 2011. 9. 17. 제○○교육연대 ○교육대 훈련병 831명을 원불교 강당에 모아놓고 훈련과정 평가를 위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대장과 분대장들은 설문장소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문을 마친 뒤 위 감찰부 담당관이 설문지를 일괄 수거하였다.

2) 위 설문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분대선임들에게 설문답변 내용을 검열하여 삭제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려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지정좌석을 배치하여 설문지를 차례로 걷음으로써 누가 쓴 설문지인지를 알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은 위와 같이 감찰부에서 주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설문지를 일괄 수거해 가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조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진정은 사실이 아닌 경우로 기각한다.

다. 진술서 제출 강요 주장에 대하여(진정요지 다항)

1) 위 설문조사 후 ○○훈련소 감찰부는 설문결과를 제○○교육연대장에게 하달하여 후속조치를 요청한바, 위 설문결과 중 "피진정인이 부당한 얼차려를 가하고 욕을 하였으며 차등제를 인정하지 않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이 있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이러한 내용의 설문답변을 제출하였음을 짐작하고, 설문답변 내용에 과장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남겨야겠다는 판단 하에 현역 분대장인 ○○ ○○○에게 지시하여 진정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도록 하였다.

2) 이에 ○○ ○○○는 진정인을 훈육실로 불러 위 설문답변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진술서를 쓰도록 하였는데, 진정인이 계속하여 진정인에게 불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쓴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를 구겨서 던진 사실이 있고, 진정인에게 재차 고쳐 쓰도록 하여 결국 진술서를 제출받았으며, 위 진술서에는 "제 설문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훈련기간 동안 소대장님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의 내용은 과장되었습니다. 30분 투명의자도 제 느낌일 뿐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화가 나고 욱하여서 설문을 과장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훈련소 감찰부가 훈련 과정을 마친 훈련병들에 대하여 무기명 설문조사를 하는 취지는 훈련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침해나 고충 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기하도록 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진정인에 의해 인권침해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임에도 직접 하급자를 시켜 피진정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설문답변을 작성한 진정인을 상대로 이러한 설문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는 설문답변 내용이 실제로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했는지 여부를 떠나 위 설문조사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로서 「헌법」 제19조가 정한 진정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교육훈련 차등제 미적용 주장에 대하여(진정요지 라항)

1)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훈련기간 동안 아래 〈표〉와 같이 소대원들에 대하여 차등제를 적용하였다.

〈표〉 진정인의 훈련기간 동안 차등제 적용현황

구분	계	교육차등제	이동차등제	교육열외	엠블이용
계	67	20	36	5	6
화생방	9	5	2		2
야간행군	14		12	2	
경계	4	1	2	1	
수류탄	6		2	2	2
사격	6		6		
주간행군	16	8	8		
각개전투	12	6	4		2

※ 교육간 일부인원 중복 차등

2) 위와 같이 피진정인은 교육열외는 많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차등제를 실시하였는데, 설사 차등제의 실시 범위가 좁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마. 칭찬민원 강요 주장에 대하여(진정요지 마항)

피진정인은 분대선임들에게 칭찬민원에 대해 언급하며 "훈련 받는 기간 좋은 추억에 대해 표현을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분대선임들은 이러한 피진정인의 말에 강압이나 거부감이 없었다고 진술하는바,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기각한다.

바. 휴대전화 차등대여 주장에 대하여(진정요지 바항)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포함하여 소대 훈련병들에게 피진정인의 휴대전화를 몇 차례 사용하게 한 사실이 있는데, 포상의 의미로 우수 훈련병에게 휴대전화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부분 진정은 기각한다.

사. 버린 편지를 입수하여 욕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진정요지 사항)

피진정인은 2011. 9. 21.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던 훈련병이 진정인이 쓰레기통에

버린 편지를 주워 피진정인에게 주었고 이에 내용을 확인한바, 훈련과정에서의 고충 등을 토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진정인을 훈육실로 불러 상담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욕설과 인격모독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진정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한다.

아. 조치의견에 대하여

이상의 내용으로 살펴본바 조치의견으로는, 위와 같이 설문조사 결과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피진정인이 직접 위 설문내용의 사실관계를 조사함으로써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의 장인 ○○훈련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과 ○○훈련소 훈련과정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시 당사자의 개입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2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 원 양현아 위 원 한위수

종교의 자유 침해

1 08진인480 [종교의 자유 침해] 2008. 7. 17. 결정

육군3사관학교장에게 학사일정 조정 등을 통해 가입교 기간 중에도 사관후보생들이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종교활동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훈련소 내의 시간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자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사관후보생들에게 가입교 기간 중 시간 부족을 이유로 종교행사 참석을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참조조문▐

육군규정 제179, 육군3사관학교 내부 규정 제107 군종업무규정, 사관후보생 규정 제49조

▌진정인▐ ○○○

▌피진정인▐ 육군3사관학교장

▌주 문▐ 육군3사관학교장에게 학사일정 조정 등을 통해 가입교 기간 중에도 사관후보생들이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7. 2. 22.부터 2007. 4. 15.까지 육군3사관학교에서 군의관 후보생으로 훈련을 받았다. 그런데 가입교를 하고 처음 맞이한 일요일인 2007. 2. 25. 종교활동을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훈육대장에게 문의하니 "정식입교 전인 가입교 기간 중에는 종교활동을 할 수 없고, 다음 주부터는 종교활동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진정인은 사관학교의 위 규정 때문에 2007. 2. 25.에 종교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사관후보생 규정상 가입교 시기(입교식 전 4일간)에는 종교행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후보생 과정이 일반 생도과정과 달리 매우 제한된 시간에 진행되며, 가입교 기간 중에 입교식 이후부터 계획되어 있는 제반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입교 기간 중 군의관 후보생의 활동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가입교 1일차 : 입교대상자 등록 및 보급품 지급·교체, 신상명세서 작성 및 두발정리 등

나) 가입교 2일차 : 지휘관 정신교육, 후보생 규정교육, 지휘근무자 선발 및 총기수여식 등

다) 가입교 3일차 : 교육에 필요한 교재 수령, 군가교육, 불침번 등 근무요령

라) 가입교 4일차 : 군대예절, 병영생활요령 교육, 입교식 예행연습, 효도편지 작성 등

2) 육군3사관학교는 사관후보생으로 하여금 참된 신앙생활을 통하여 인생관을 확립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장차 장교로서 군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종교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성과정별로 2일 내지 4일간의 가입교 기간 중에는 가용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군종장교 후보생 외에는 종교활동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3. 관련규정

가. 육군규정

제179 종교업무 규정(제5조 관계관의 임무) 각급 부대 지휘관은 군종장교가 주관하는 종교의(예)식과 종교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병에게 부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학교내규(육군3사관학교 내부 규정)

제107 군종업무규정(제4조 종교행사 참석) 종교행사는 생도, 후보생, 기간장병, 군인

가족, 부대 인근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다.

다. 사관후보생 규정(학교내규 내 사관후보생 관련 규정)

제49조(종교행사) 모든 종교행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일요일 오전 정기 종교행사는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종교행사 참석 시기는 군종과정은 가입교부터, 기타과정은 입교식 이후부터 실시).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진술,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내종교활동에 관한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육군3사관학교에는 3사생도 외에 법무사관, 군의사관, 학사·여군사관, 특수사관, 군종사관, 준사관(기무 등) 후보생들의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군종사관 후보생들을 제외한 다른 후보생들에게는 가입교 기간 중 종교활동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군의관 후보생의 가입교 기간 중 유일한 일요일인 4일차에는 군대예절, 병영생활 요령 교육, 입교식 예행연습, 효도편지 작성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종교행사가 있는 오전에 입교식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입교식 이후부터 모든 후보생들은 매주 종교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나. 2008. 4. 23. 대전에 소재한 국군군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군의관 후보생(수의사) 25명을 대상으로 단체면담을 실시한 결과, 종교 유·무와 관계없이 육군3사관학교 가입교 기간 중 종교활동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매년 1월에 사관후보생들이 가입교하여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3월에 입학식을 실시하는데 가입교 첫 주부터 원하는 생도들은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논산훈련소의 5주훈련과정(현역, 전경, 경비교도대)의 경우 월요일에 입소하며 첫 주 일요일부터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4주훈련과정(보충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의 경우에도 목요일에 입소하여 첫 주 일요일부터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5. 판단

피진정인은 가입교 기간 중 가용시간의 부족으로 군의관 후보생들의 종교행사 참석을 불허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육군규정 제179(종교업무 규정)의 '부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교 기간 중 실시하는 활동내용은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통제가능한 일정이라는 점에서 사관 후보생들의 종교행사 참석이 부대의 임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군종사관 후보생들의 경우 종교행사 참석을 허용하고 있고 국군군의학교에서 군의관 후보생 면담 결과 면담에 참여한 모든 후보생들이 종교활동을 금지할 만큼 교육시간이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육군3사관학교 외 육군사관학교 및 논산훈련소의 경우에는 입소한 첫 주부터 종교행사 참석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가입교 기간 중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종교행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종교활동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훈련소 내의 시간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자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사관후보생들에게 가입교 기간 중 시간 부족을 이유로 종교행사 참석을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학사일정 조정 등을 통해 가입교 기간 중에도 사관후보생들이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1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2 10진정49700 [군대 내 종교행사 참석 강요 등] 2010. 7. 23. 결정

국방부장관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장병들이 무교를 포함하여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군대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본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우리「헌법」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와 정교의 분리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특히 종교의 자유에 기초가 되는 신앙의 자유는 국가가 국민이 종교를 가질 권리 뿐 만아니라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너 나아가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무교의 자유)까지도 넓게 보장해야 함을 의미

[2] 다수의 소속 지휘관들이 1인 1종교 및 종교행사 참여를 강제할 의무규정이 있다는 잘못한 인식을 장병들에게 전달한다거나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TV시청 등 개인여가시간을 제한하고, 심지어는 청소 등 작업을 시키는 불이익을 주고 있고, 진정인이 무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종교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비타협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의 문제사병으로 부당하게 특별 관리해 온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진정기관인 제○군수지원사령부의 이와 같은 장병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부적절한 부대 운영 및 관리행위는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군인복무규율」제30조(종교생활)의 규정을 위반하여「헌법」제20조 제1항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장병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결정(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포함) ▌

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마159

▌참조조문 ▌

「헌법」제20조 제1항 및 제2호,「군인복무규율」제30조(종교생활)

▌ **진정인** ▌ 조○○

▌ **피해자** ▌ 진정인과 소속 부대원들 다수

▌피진정인 ▌ 1. 백○○
2. 김○○
3. 문○○
4. 이○○
5. 박○○

▌주 문 ▌ 국방부장관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장병들이 무교를 포함하여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군대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본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8. 3. 3. 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5. 17. 제○군수지원사령부 제○○정비대대에 전속되어 근무하다 전역하였는데, 복무 당시 사령관인 준장 백○○과 소속 부대 간부들은 이등병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서 무조건 택일하여 믿을 것을 강요하고, 특히 소속 대대장 및 중대장 등 지휘관들은 진정인의 무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였다. 또한 본인이 전역한 이후에도 이와 같은 부당한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는 다른 종교 및 무교를 선택할 종교의 자유와 종교행사의 자율적인 참여라는 「헌법」 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시정개선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기관(제○군수지원사령부)의 주장요지

전임 제○군수지원사령부 사령관인 준장 백○○은 2007년 11월경부터 장병들의 정서안정 및 인성함양을 위해 1인 1종교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종교행사에 적극 참여하

도록 한 바 있으나 현 사령관인 준장 김○○이 부임한 이후에는 일부 예하부대에서 인원 채우기식으로 종교행사에의 참석을 강요하고 있고, 개인별 종교와 무관하게 1인 1종교 참석을 강요한다는 민원이 있어 장병 종교 활동의 여건을 보장하고, 관련 기강을 확립할 것을 지시하여, 현재는 종교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참석을 강요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지조사 시 시행한 설문조사결과, 일부 상당수의 장병들이 아직도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받고 있다고 하니 다시 한번 실태를 파악하고, 지휘관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신상명세서, 개인 신상 정밀진단결과 및 면담기록, 제○군수지원사령부가 제출한 장병종교 활동 여건보장 및 기강확립 강조 지시공문, 장병 종교 활동 현황,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지조사결과보고서 및 군 장병 종교의 자유 관련 인권상황 설문결과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피진정인 1은 2007. 11. 6. 제○군수지원사령관으로 부임하여 장병들의 정서안정 및 인성함양을 위한다는 목적 하에 이등병들에 대하여는 3대 종교를 택일하여 믿도록 하고, 1인 1종교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종교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다가 2010. 1. 31. 전역하였으나, 이후 신임사령관인 피진정인 2가 부임한 이후에는 일부 예하부대에서 종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때, TV시청 및 사이버 지식정보망 이용을 금지하고 작업지시를 하는 등 인원채우기식으로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가 잔존하고, 개인별 종교와 무관하게 1인 1종교 참석을 강요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임수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종교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휘관 또는 간부가 개인적으로 신봉하는 종교를 예하 장병들에게 강요행위를 금지하며, 종교 활동과 무관한 개별행동을 금지하는 '장병 종교 활동 여건보장 및 기강확립 강조 지시'를 하달한 바 있다.

나. 진정인은 2008. 3. 3. 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5. 17. 제○군수지원사령부 ○○정비대대 특수무기지원대에 전속되어 근무하다가 2010. 1. 23. 전역하였고, 위 복무기간 중 진정인의 소속부대 직할 지휘관인 피진정인 3, 4, 5는 진정인에 대한 신상을 관리함에 있어 진정인이 무교를 주장하고 종교행사에 불참하는 것과 관련하여 극단적인 무신론자로써 종교행사에 극심한 비타협적인 성향을 보이며 불참하는 등 반사회적 성향을 보여 병영생활에 있어 주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중 관리한 사실이 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 4. 5. 실시한 제○군수지원사령부 직할부대 장병 650여 명 중 무작위 선정한 98명(이병 27명, 일병 32명, 상병 25명, 병장 14명,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보유자가 44명, 무교가 45명 이었음)에 대한 '군 장병 종교의 자유 관련 인권상황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교생활을 자유롭게 보장받고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하여 장병 16명(16.3%)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간부들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 3대 종교 등 택일하여 믿도록 하고, 무교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상병계급 이하의 장병에 대해서는 종교행사에 강제로 참여시키고 있고, 간부들이 군에는 1인 1종교 의무규정이 있다거나 이등병의 경우에는 정서안정을 위해 종교행사에 참여해야 할 의무 규정이 있다고 교육을 하였다고 밝혔다.

특정 종교를 믿도록 강요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하여는 장병 17명(17%)이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하여는 장병 39명(39.7%)이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고, 그 경위로는 이등병의 경우 전원 참석을 강요받았고, 특히 종교행사 시 참석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참석을 더욱 강요받았다고 대답하였다.

본 건 진정과 같이 이등병의 경우 의무적으로 3대 종교 중 택일하여 믿도록 하고, 무조건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하여 과반이 넘는 장병 53명(54%)이 그런 사실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화기중대 및 수송대대에서 이런 응답이 높게 나왔다.

또한 위원회에 대한 건의사항 및 자유의견 제시부분에 대해서는 당직사관, 소속 대대장 등이 종교 행사 불참 시 TV시청을 금지하고, 청소 및 작업을 시키고, 이등병의 경우에는 1인 1종교를 택할 것과 전원 참석을 강요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하면 "빠졌다."라고 질책을 받았다고 대답하였다.

4. 판단

가. 우리「헌법」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와 정교의 분리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특히 종교의 자유에 기초가 되는 신앙의 자유는 국가가 국민이 종교를 가질 권리 뿐

만아니라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너 나아가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무교의 자유)까지도 넓게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마159)

나. 이 사건 피진정기관인 제○군수지원사령부는 장병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개선하였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2010. 4. 5. 당시까지에도 많은 장병들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고, 특히 이등병 등 하급 장병의 경우에는 특정종교를 믿을 것과 종교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수의 소속 지휘관들이 1인 1종교 및 종교행사 참여를 강제할 의무규정이 있다는 잘못한 인식을 장병들에게 전달한다거나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TV시청 등 개인여가시간을 제한하고, 심지어는 청소 등 작업을 시키는 불이익을 주고 있고, 진정인의 경우에도 군 복무 중 피진정인 3, 4, 5가 개인면담 등을 통한 복무관리를 함에 있어 진정인이 무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종교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비타협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의 문제사병으로 부당하게 특별 관리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인 제○군수지원사령부의 이와 같은 장병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부적절한 부대 운영 및 관리행위는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군인복무규율」 제30조(종교생활)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장병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사건에 대한 조치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군수지원사령부의 지휘관들은 위원회의 실지조사에서, 자체적인 실태파악 및 개선조치를 의사를 피력하였으나, 위 인정사실 및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교의 자유의 보장내용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종교 활동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 및 종교행사에의 불참석까지도 인정하는 신앙의 자유, 그리고 위력 있는 3대 종교 뿐 만 아니라 소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군 지휘관들의 인식개선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이와 같은 문제가 이 사건 피진정기관을 포함하여 군 기관 전체에 관행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국방부장관에게 본 사례를 전파하고 실질적으로 장병들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황덕남 위 원 한태식

언론출판의 자유(알권리) 침해

1 03진인5724, 04직인1(병합) [군공사상자 처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2004. 7. 12. 결정

[1] 육군참모총장에게는 군의 전공사상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공사상자 업무 특히 통지의무를 해태한 실무책임자에 대하여 징계할 것과 이의 통지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 및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에게는 해군 및 공군의 병·변사자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전면 재심사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 사례

[2] 통지의무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그 구조를 요청한 사례

▌결정요지▐

[1] 사망구분이 전사·순직으로 변경되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를 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하였던 바, 군의 전공사상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인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사상자 업무처리의 실무책임자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들인 육군·해군·공군참모총장에게 전공사상자의 유족 등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그 유족 등에 대한 통지의무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에게, 해군 및 공군 창군이후 병·변사 처리된 자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전면 재심사할 것을 권고함

[2]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게, 피진정인 육군참모총장이 피해자에 대한 사망구분을 병사에서 순직으로 변경 결정을 하였으면서도 그 통지를 지연함으로 인해 유족 등이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의한 각종 보상을 받을 권리와 명예에 대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함

▌참조조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9조

▌진정인▐ 문○○

▌피해자▐ 김○○

▌피진정인▐ 육군참모총장 외 2인

▌주 문▐ 1. 군의 전공사상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가. 피진정인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사상자 업무처리의 실무책임자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나. 피진정인들에게, 전공사상자의 유족 등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그 유족 등에 대한 통지의무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다.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에게, 해군 및 공군 창군 이후 병·변사 처리된 자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전면 재심사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게, 피진정인 육군참모총장이 1996. 12.경 피해자 김○○의 남편 故 민○○에 대한 사망구분을 병사에서 순직으로 변경 결정을 하였으면서도 2003. 6.에야 그 통지를 함으로 인한 위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3.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남편 故 민○○에 대하여 1996. 12. 그 사망구분을 병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하였으면서 그 사실을 2003. 6.에야 유족에게 통지함으로써, 피해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훈혜택을 약 6년 반 동안 받지 못하였고,

나.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훈혜택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9조제1항은 부당하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2. 해군 및 공군에 대한 직권조사

2004. 6. 14. 개최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전원위원회에서는 위 진정사건의 심의과정에서 해군 및 공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직권조사 결정을 하였고, 위 조사결과를 위 진정사건과 병합하였다.(이하 해군 및 공군참모총장을 각 피진정인 2 및 3으로 칭한다)

3.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피진정인 1

(1) 그동안 육군본부에서는 군복무중 단순 병·변사 처리되어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가족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만 이를 재심사하여 순직 여부를 결정하여 왔으나, 매년 증가하는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창군이후 병·변사 처리된 45,804명의 자료를 발췌한 후 1989년 개정된 전공사상자처리규정을 적용하여 이중 9,756명을 1996년 및 1997년 4차례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사 및 순직으로 직권변경하였다.

(2) 이러한 사망구분 변경사실은 매화장보고서, 전사자명부 등의 본적 및 주소지 기록 부실, 행정구역 변경 및 유관부서 미협조 등으로 유족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하여 통지하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 대상자 명부 작성·배부, 홍보포스터 작성·배포, 언론홍보 등을 통해 꾸준히 유족에게 통지하였고, 현재 주소지 불명 등으로 미통지된 대상자에 대하여는 인원·예산·시간을 가지고 유족추적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3) 진정사건 피해자의 남편 故 민ㅇㅇ의 경우 1996. 12. 병사에서 순직으로 사망구분을 변경하였으나 유족통지는 못하였다가 유족이 민원을 제기한 2003. 6. 순직처리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진정인 2 및 3

해군·공군본부에서는 최초 사망구분 후 유족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한하여 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재심사하고 있으며 육군본부와 달리 직권으로 일괄 재심사한 사실은 없다.

다. 국방부 OO과장(전공사상자처리규정 개정 담당부서)

(1) 1989. 6. 10. 전공사상자처리규정(국방부훈령)이 개정되었으나, 이 규정의 개정은 〔별표1〕 전공사상분류기준표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명확화한 것일 뿐 실질적 내용까지 변경된 것은 아니며, 특히 공무상 질병사망자는 개정 전 별표기준에 의하여도 순직대상자이다.

(2) 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7조에 의하면 민원제기 시 사망구분을 재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군·공군본부가 육군본부와 달리 직권으로 병·변사자의 사망구분을 재심사하지 않은 것이 현행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4. 관련법령 및 인정사실

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는 국가유공자로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이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조는 "동법에 의한 보상받을 권리는 유족 등이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은 보상금지급(제11조 등), 교육보호(제21조 등), 취업보호(제28조 등), 의료지원(제41조 등), 양로보호(제63조), 양육보호(제64조) 등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해 각종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나. 동법시행령 제9조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유족으로부터 '확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보훈청장 등으로부터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보 시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게 등록신청 및 심사절차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 국방부훈령인 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3조 및 제6조는 사망을 전사, 순직, 사망(일반사망, 변사 및 자살)으로 구분하고, 이 구분을 각군 참모총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별표1의 전공사상자분류기준표는 사망구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제7조는 사망자의 유족이 사망확인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인 제출서류와 병적기록, 매화장보고서 및 영현등록부 등에 의하여 확인·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사망이 확인되거나 구분된 때에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각군 참모총장이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라.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른 구체적 시행절차를 정한 국방부 전공사상자처리규정은 사망구분을 정리하였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주체자로 각군 참모총장을 지정하였다. 그러므로 각군 참모총장은 원칙적으로 "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유족으로부터 확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보훈청장 등이 확인요청을 하면"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게는 지체없이 등록신청 및 심사절차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마. 한편 피진정인 1은 1995.부터 직권으로 창군이래 병·변사자 45,804명의 자료를 발췌·검토 후 1996. - 1997.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총 9,756명을 전사(864명) 및 순직(8,892명)으로 사망구분을 변경하였다.

바. 따라서, 피진정인으로서는 위 사망구분 변경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소재지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망구분 변경 후 오랫동안 해당 유족에게 위 사실을 전혀 통지하지 아니하였는바,

- 1997. 5. 당시 내무부에 일부 유족에 대한 소재지 파악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내무부에서 거부한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 1999. 6. KBS 1TV 방송프로그램인 추적60분에서 이 사안 관련 촬영 협조를 요청하여 문제가 제기되자, 그때서야 향토사단 등을 통해 유가족 소재를 파악하여 802명에게 통지하고 언론홍보, 포스터 배포, 전사·순직자 명부 배부 등 유가족 찾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 위와 같은 조치의 결과, 그동안 2,000여명의 유족에게는 관련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2004. 5. 현재 7,439명(전사 534명, 순직 6,905명)의 유족에게는 위 사실을 통지하지 못한 상태이다.

사. 군복무 중 1968. 6. 18. 뇌막염으로 사망하여 병사 처리된 피해자 김ㅇㅇ의 남편 故 민ㅇㅇ에 대하여는 1996. 12. 5. 제96-10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순직으로 사망구분을 변경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2003. 6. 유족이 민원을 제기하자 그때서야 순직변경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동년 6. 27. 국가보훈처 OO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한 결과 동년 8. 27.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결정되었다.

아. 한편 우리 위원회는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1이 유족 소재지 파악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망구분 변경사실을 통보하지 못하였다는 대상자 중에서 무작위로 16명(고 민ㅇㅇ 포함)을 추출하여 대상자 명부에 기재된 사망당시 본적지로 조회한 결과 12명의 유족 소재가 확인되었고, 유족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4명 중 3명의 경우는 사망당시 주소지가 대상자 명부에 본적지로 오기되어 있었다.

자. 해·공군본부는 육군본부와는 달리 병·변사자의 사망구분을 직권으로 재심사조차 하지 않았으나, 전공사상자처리규정의 별표기준이 정리된 이후 현재까지 해군본부는 52건의 사망확인 민원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이 중 28건의 사망구분을 병·변사자에서 순직으로 변경하였고, 공군본부는 4건의 사망구분을 해군의 경우와 같이 순직으로 변경한바 있는데, 창군이후 1989.까지 병·변사자로 처리된 인원은 해병을 포함한 해군은 총 1,735명, 공군은 총 708명에 이른다.

5. 판 단

가.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르면 해당 유족 등이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 국가보훈처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하나, 가족의 사망구분이 전사·순직으로 변경되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실은 그 유족이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중요한 정보라 할 것이고, 특히 국가유공자예우법 제9조에 의하면 유족이 등록신청한 달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하므로 위 통지 여부 및 시기는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대상자의 사망 당시 본적지로 조회하는 방법 등을 통해 충분히 유족의 소재파악이 가능함에도 피진정인 1은 적극적으로 유족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 1은 언론에 의해 위 문제가 제기된 후에야 언론홍보, 일간지 광고 및 포스터 배포, 대상자 명부 비치 등 유가족찾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1이 취한 조치 내용 중 일간지 광고 및 포스터는 6.25전쟁 전, 사망자 유가족을 찾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본건 관련 유족에 대한 조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방일보 등 군관련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대상자 명부 비치도 해당 유족이 사망구분변경 사실을 알기는 어려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도 관보게재, 인터넷 활용(2004. 5.에야 조치), 방송매체 이용 등 피진정인 1의 적극적인 홍보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 1의 유족 통지를 위한 노력은 매우 미흡하였다고 하겠다.

다. 이처럼 피진정인 1이 피해자 김○○을 포함한 해당 유족에 대한 위 통지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는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령 제9조와 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8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21조의 유족의 명예권 및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 김○○의 경우 피진정인 1의 통지의무 소홀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의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각종 보상을 받을 권리와 명예에 대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라. 또한 관련 사실의 신속한 통지가 유족에게 미치는 중요성, 통지 대상자의 수가 약 1만명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의 방대성, 장시간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발생한 피해 정도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히 위 통지업무 부서의 관리책임자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마. 한편, 전공사상자처리규정의 개정 이후 육군본부는 재심사결과 총 9,756명을 전사·순직으로 변경하였고, 해군·공군본부도 관련 민원 제기 후 상당수의 사망구분을 순

직으로 변경하였으나, 사망과 공무상 인과관계 여부는 시간의 경과 여하에 따라 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기존 병·변사자에 대한 사망구분의 심사가 정확하지 못하여 실제 사망원인과 공무상 인과관계 여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만 사망구분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 온 해군 및 공군본부는 위 병·변사 처리자 중 순직대상자(재심사 결과에 따라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될 수 있는 다수의 사망자) 및 그 유족의 명예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바. 또한 육군본부가 전공사상자처리규정 개정 이후 직권으로 병·변사자 사망구분에 대한 전반적 재심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45,804명 중 21%에 해당하는 9,756명을 전사 및 순직으로 변경 결정한 점에 상기하면, 해당 유족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만 재심사를 하여온 해군 및 공군의 경우에는 전공사상자 심사에 있어서 육군에 비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이어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6. 결 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1에게는 전공사상자 업무(특히 통지업무)의 실무책임자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피진정인들에게는 위 통지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에게는 해군 및 공군의 병·변사자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전면 재심사하도록 조치할 것을 각 권고하기로 하고, 피해자 김ㅇㅇ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47조제1항에 의거 법률구조요청을 하기로 하며,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는 국회의 입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각하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7. 12.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김창국 위 원 박경서 위 원 조미경 위 원 김오섭

위 원 신동운 위 원 정강자 위 원 김덕현 위 원 이홍록 위 원 김만흠

직업의 자유 침해

1 06진인2994 [겸직불허 등에 따른 인권침해] 2007. 5. 28. 결정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계속 휴직명령을 유지하고,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복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 (적극)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계속 휴직명령을 유지하고,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복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

[1] 공무원의 형사사건 기소 시 휴직의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범죄의 직무관련성 및 중대성, 유죄판결의 개연성과 당사자의 계속적 직무수행 시 공정성 훼손 및 위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임. 진정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됨과 동시에 휴직처분을 한 조치에 대하여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제1심에서는 선고유예 제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점, 계속적인 장기휴직으로 진정인이 봉급의 반액만을 지급받음으로 생기는 불이익보다 진정인에 대한 휴직의 계속으로 확보되는 공공의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의 진정인에 대한 계속적인 휴직명령은 「헌법」 제27조제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로부터 연유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2] 진정인은 장기휴직상태에서 봉급의 반액이 지급되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의 처가 ○○○○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사실과 다르고, 설사 진정인이 생계곤란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무죄의 선고를 받을 경우 휴직명령으로 인한 휴직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참모총장이 군 인사 및 복무 관련 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적용하여 진정인의 겸직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써 재량행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참조조문 ▌

「헌법」 제10조, 제15조, 제27조, 「군인사법」 제48조 및 제49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진정인 ▌양○○

▌피진정인 ▌1. ○○참모총장
2. 공군 제○전투비행단장

▌주 문 ▌1.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에게 진정인에 대하여 신속히 복직명령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5. 12. 16. 상관협박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같은 달 28. 병보석으로 석방되어 1심 재판에서 선고유예, 2심 재판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군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바, 위 과정에서 피진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은 진정인이 2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 검찰의 기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휴직 처분을 계속하고 봉급의 반액만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진정인은 위와 같은 휴직처분으로 봉급의 대부분이 감액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어 2006. 4. 18. 운전 및 컴퓨터 업종의 겸직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참모총장이 불허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진정인의 생존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2. 당사자 지위

진정인은 공군 제○전투비행단 소속 하사관으로서 2005. 12. 16. 상관협박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군사법원에서 1, 2심 재판을 거쳐 대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피고인이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겸직신청 허가권을 갖고 있는 ○○참모총장, 그리고 복직명령권을 갖고 있는 소속기관의 장인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이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군인사법」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기소된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는 봉급의 반액만 지급하며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진정인에 대하여 기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휴직명령을 내린 것은 이러한 법 규정에 의한 것이다.

2)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군인복무규율」등 관련 법규에서는 일관되게 군인의 "영리행위 및 겸직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그 직무가 정치적, 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복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정인의 경우, 겸직신청의 주 목적이 휴직기간 중 계속적으로 생계를 위하여 영리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겸직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불허처분 한 것이다.

4. 관련법령

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나. 「군인사법」 제48조 (휴직) ②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9조 (휴직의 기간) ②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 기간으로 한다.

다.「군인사법시행령」 제54조(복직 및 권리회복) ①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되었던 자가 그 휴직의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②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공소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라.「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6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 계속적인 휴직처분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진정인은 2005. 12. 16. 상관협박죄로 기소되어「군인사법」 제48조 제2항 및 제49조 제2항에 의거 동

일자로 휴직발령 된 후, 2006. 3. 8. 보통군사법원 1심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006. 9. 15. 군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재판(2006도6347)계류 중에 있으며, 진정인은 위 같은 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2006. 12. 16. 기소이후부터 현재까지 휴직상태에서 봉급의 50%를 지급받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 및 제4항, 그리고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부사관 등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계속 시까지 휴직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봉급의 반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는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휴직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거나 공소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은 일단 기소된 경우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휴직명령을 유지할 수 있으며,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복직도 가능하고, 봉급의 차액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첫째, 일명 '기소휴직제도'의 취지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공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무나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인 군인에게도 공무담당의 의무를 일시적으로 해제하여 소송담당자로서 공판과정에서 변론 준비 등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헌법상 형사피고인에게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유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소휴직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고,

둘째, 이러한 휴직처분 등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06. 5. 25. 결정 2004헌바12)[6] 및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7]에 비추어

---

6)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직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임용권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성과 특수성을 판단하여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지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범죄나 지극히 경미한 범죄로 기소된 경우까지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헌재결 2006. 5. 25, 2004헌바12)

7) "직위해제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볼 때, 본 건 휴직의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범죄의 직무관련성 및 중대성, 유죄판결의 개연성과 당사자의 계속적 직무수행 시 공정성 훼손 및 위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셋째, 대법원의 「근로기준법」 과 관련한 판결(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8]에서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자가 구속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한 '명령휴직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그 해석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휴직)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구속되어 근로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되어 적용되어야 하며, 구속되어 명령휴직이 내려진 경우라도 후에 구속취소로 석방된 경우에는 명령휴직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진정인이 본 건 상관협박혐의로 기소됨과 동시에 휴직처분을 한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혐의내용 등을 살펴볼 때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제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 당연 퇴직사유가 아닌 선고유예가, 더욱이 제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비록 최종심을 남겨두고 있으나 최종심은 사실심리가 아닌 법률심리인 점 등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현재 진정인이 봉급의 반액만을 지급받음으로 생기는 불이익보다 진정인에 대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9. 9. 17, 98두15412)

8)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휴직근거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불구속 기소된 이상 사용자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명령휴직의 사유 그 자체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가 석방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명령휴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에는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명령휴직규정의 설정 목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라고도 볼 수 없어 위 명령휴직처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대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한 휴직의 계속으로 확보되는 공공의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고, 더 나아가 진정인의 상관협박혐의가 진정인이 부대 내의 내부비리를 국방부 민원실 등에 제보한 사실이 공개되어 관련 상급자로부터 폭언 및 인사 불이익을 받아오다 이러한 폭언을 녹취하여 놓고, 이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공개하거나 고소하겠다고 주장하다 구속 기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의 계속적인 휴직명령은 「헌법」 제27조제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여 「군인사법」 등 관련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이상으로 재량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로부터 연유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 휴직 중 겸직금지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공군 제○전투비행단장 및 공군본부 법무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진정인은 2005. 12. 16. 상관협박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동 일자로 휴직명령을 받았고, 같은 달 28. 병보석으로 석방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06. 4. 20.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에게 위 재판의 최종확정판결 때까지 재활 및 생계를 목적으로 전산 및 운전분야 업종에 대한 겸직허가를 신청하였다.

진정인은 휴직명령 이후 2006. 2. 급여부터 봉급(부사관 ○○호봉) 및 가족수당 등이 50% 감액된 ○○○원을 지급받았고, 2007. 3.에는 다소 증액된 ○○○원을 지급받아 개인소득으로는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205,535원에 못 미치고 있으나, 진정인의 처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므로, 가구 총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위 4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수준임이 확인된다.

위 소속 부대장은 허가권자인 ○○참모총장에게 위 겸직허가에 대한 법령질의를 통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에서 일관되게 군인의 영리행위 및 겸직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진정인의 경우, 휴직기간 중 진정인이 계속적으로 영리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겸직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고, 이에 2006. 6. 23. 진정인에게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겸직허가 불가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

2) 판단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 그리고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공무원의 영리행위 및 겸직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위 「군인사법」의 위임에 따라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제16조는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에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방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장기휴직상태에서 봉급의 반액이 지급되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주장하고 있으나 진정인의 처가 ○○○○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사실과 다르고, 설사 진정인이 생계곤란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무죄의 선고를 받을 경우 휴직명령으로 인한 휴직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어 그 생계의 곤란은 잠정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모총장이 군 인사 및 복무 관련 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적용하여 진정인의 겸직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써 재량행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내용 중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진정인의 소속 기관의 장인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2 06진인1959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2007. 3. 5. 결정

해군 ○전단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1) 2) 3)에 대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직업선택의 자유는 영업행사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개념인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시간적 여유를 부여치 않고 "이발소 폐쇄공지"를 했다면 이는 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치 않고 영업장 폐쇄공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진정인▐ 전○○

▌피진정인▐ 1. 박○○(해군 제○전단 ○전대장, 대령)
2. 석○○(해군 제○전단 ○전대 본부대장, 소령, 現 제○전단)
3. 김○○(해군 제○전단 ○전대 복지담당관, 준위)

▌주 문▐ 군 ○전단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1) 2) 3)에 대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3. 1. 1.부터 2006. 7. 4.까지 피진정부대 이발소를 위탁운영했던 자인데, 피진정인 1)이 부임한 직후인 2005. 12. 29.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시 부인이 면도사로 일하고 있었음에도 새로운 면도사를 채용하는 양해각서를 요구하여 어쩔수 없이 동의하였으나, 신규 면도사 급여를 줄만한 수입이 발생치 않아 자진하여 그만둔 사건이 발생하자 그 책임이 진정인에게 있다며 온갖 스트레스를 주어 결과적으

로 이발소 운영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근거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나. 신규면도사가 자진해서 그만두자 재 채용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피진정인 2) 3)이 일방적으로 이발소 출입문에 "사업정지공고문"을 붙힌 것은 진정인의 영업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1) 박○○ 대령

애초 서비스가 미흡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교체하여 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진정인과 수의계약 하면서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이발소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발소 집기류 개선 및 전문면도사 채용을 요구하는 양해각서를 요구한바 있음. 진정인이 양해각서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진정인과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양해각서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 부대측은 계약을 먼저 해지한바 없고 진정인이 자진해서 그만 둔 것이다.

2) 석○○ 소령

진정인이 새로운 면도사를 채용하겠다고 수차례 약속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어 충분한 시간을 준 후, 계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영업장 일시 폐쇄공고를 한 것일 뿐이다.

3) 김○○ 준위

이발소 영업이 비 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용자가 감소하였고 결국 경영이 악화되자 진정인이 스스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한 후 스스로 그만둔것이며 부대의 조치는 적법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면도사인 부인과 함께 경상북도 ○○시 소재 해군 제○전단내 이발소를 2003. 1. 1.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다가 2005. 12. 29.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3년간 재계약을 한 직후에 진정원인이 발생하여 그만두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계약기간 만료전인 2005. 12. 26. ○전대장으로 부임했고 이후 이발소 환경개선 사업을 한 사실이 있으며, 피진정인 2)는 당시 이발소 운영을 책임지는 본부대장 이었으며 현재는 상급부대인 ○전단 ○○○○○○에서 근무하고 있는자로 진정인과 재계약시 부대원 설문조사를 실시를 근거로 환경개선 및 면도사 채용의 필요성을 보고한바 있다. 아울러 피진정인 3)은 이발소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복지담당관으로 현재 피진정부대에 근무하고 있다.

다. 진정인은 부대측이 자진해서 그만두게 하려고 부인이 면도사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면도사 채용 등을 요구하는 양해각서 서약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대측은 신규계약시 양해각서 이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를 거부하면 되는 것이고 그랬다면 진정인과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진정인은 당시 수입이 매월 250만원 안팎으로 부부가 일해서 한 가족 생계를 유지하기에 적절했는데 새로운 면도사를 채용하면 최소 120~ 1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여 운영상 문제가 있음에도 피진정인측이 신규면도사 채용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 측은 수입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부대원의 영내 이발소 이용을 권장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진정인은 양해각서에 따라 2006. 1. 2. 신규면도사를 채용하였고, 신규면도사는 2006. 2. 21.부로 그만두었다. 그만둔 원인에 대하여 부대측은 진정인이 부인을 다시 데려오려고 신규면도사에게 체육활동으로 수입이 적은 수요일 등은 나오지 마라 등 압력을 가하여 일부러 그만두게 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진정인은 수입이 고작 매월 250만원 정도라 일당으로 5만원 밖에 줄 수 없었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아 그만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인 신규면도사는 조사관과 전화조사시 "당시 하루 손님이 20여명 선이어서 하루 수입이 10여만원 이었기에 진정인이 하루 5만원씩 주어서는 피차 생활이

어려웠고, 주변에서 이발소 수입이 한달 250만원 정도인데 면도사가 절반 이상 가져간다는 등 머리아픈 이야기가 있어 속시끄러워 그만두었으며, 진정인이 나오지 마라고 한 사실은 없으며, 인권위 조사이후 부대측에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여 거부하였으나 피진정인 3)이 문구를 미리 작성하여 찾아와 서명만 해달라 하여 서명한 사실이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하여는 잘 읽어 보지 않았다"고 하며, 본건에 대하여는 "부대측에서 일정부분 진정인에게 보상을 해주고 잘 마무리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바. 신규면도사가 그만둔 후 부대측은 이발소 출입문에 "이발소 폐쇄 공지"를 붙였는데 진정인은 진정서 및 피진정인과 대질조사시 면도사가 그만두고 바로 새로 채용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다음날인 2006. 2. 22. 아침 08:47에 붙였다고 하였고, 이때 조사관이 맞느냐는 물음에 피진정인은 날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고 정인섭 중사가 붙였다가 바로 떼었다고 하였다가, 조사관의 추가진술서 요구공문에는 충분한 기한을 둔 2006. 3. 14. 김민 병장이 붙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폐쇄공지 날짜에 대하여 진정인은 "본 건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날짜 및 시간을 내가 어떻게 잊어버리겠느냐 ?"고 진술하였으며, 피진정인 3)은 "날짜에 의미를 두고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진정인 1)의 기록에 그렇게 되어있어 2006. 3. 14.로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양해각서 요구의 적절성

비록 진정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심껏 일했던 부대내 이발소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 등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원칙에 따라 피진정부대의 요구를 진정인이 수락한 이상 이를 이행할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진정인은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검토해 볼 때 피진정부대가 부대 환경개선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면도사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요구한 행위는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나. 영업장 폐쇄공고의 적법성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5조가 말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수행 내지 행사의 자유

까지 포괄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하고, 여기서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않는 것이다.' 라고 결정(94헌마196)한 바 있다.

위 결정에서도 인정하듯이 직업선택의 자유는 영업행사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개념인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시간적 여유를 부여치 않고 "이발소 폐쇄공지"를 했다면 이는 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 할 것이다.

그 폐쇄공고일에 대하여 진정인은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신규면도사가 그만둔 다음날인 2006. 2. 22. 08:47경 붙였다고 주장하여 조사관이 2006. 12. 8. 실지조사시 2006. 2. 22. 이라는 날짜에 대하여 확인시 피진정인은 이를 부정하지 않았고, 공고문을 붙힌 사람이 정인섭 중사라고 진술하였다가 실지조사 종결 후 조사관의 추가진술서 요구공문에는 2006. 3. 14.이라고 날짜를 번복하여 답변 한 것과, 신규면도사에 대한 참고인 진술서를 피진정인이 직접 문구를 작성해가서 사인만 받아 제출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의 답변은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충분한 시간적여유를 부여치 않고 영업장 폐쇄공고를 한 것으로 보며,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한다.

5. 결론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상대로 영업장 폐쇄공고를 할 때 진정인이 영업장폐쇄사유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개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되는바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5.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환자보호 및 의료조치 미흡

1 05진인3581 [군인의 의료접근권 침해] 2006. 5. 8. 결정

피해자들이 만기 전역 직후 위암으로 사망하는 등 군복무중 의료접근권 침해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적기·적시 진료권을 법령에 명문화하여 보장하고, 진료기록 성실작성 및 보관의무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군병원과 부대 간 그리고 군대내 연속적 진료정보기록 및 공유제도를 구축하고, 민간병원과 원활한 협력진료제도 마련하고 군내 필수의료장비 구비 등 군인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1항 및 2항은 모든 사람의 건강권, 질병발생 시 의료와 간호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적절한 의료접근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국가는 국민들에 대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1. 내지 4.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국가에 의해 의료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방부장관에게 적기·적시 진료권을 법령에 명문화하여 보장하고, 진료기록 성실작성 및 보관의무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군병원과 부대 간 그리고 군대내 연속적 진료정보기록 및 공유제도를 구축하고, 민간병원과 원활한 협력진료제도 마련하고 군내 필수의료장비 구비 등 군인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

진정인 1. 노○○(피해자 故 노○○의 사촌 형)
2. 비상대책위원회(대표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

피해자 1. 故 노○○
2. 박○○
3. 故 김○○
4. 오○○

피진정인 국방부장관

주 문 국방부장관에게 첫째, 적기·적시 진료권을 법령에 명문화하여 보장, 둘째, 진료기록 성실작성 및 보관의무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수립, 셋째, 군병원과 부대 간 그리고 군대내 연속적 진료정보기록 및 공유제도 구축, 넷째,

민간병원과 원활한 협력진료제도 마련, 다섯째, 군내 필수의료장비 구비 등 군인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예비역 병장 피해자 1.은 군복무 중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여 만기 전역 직후 위암으로 사망하였던 바, 동 사건과 피해자 2. 내지 4.의 유사 사건에서의 군대내 의료접근권 침해문제를 조사하여 진상규명하고 대책마련 할 것을 진정한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가. 피해자 1.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는 2차 진료에서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면서 악성 위궤양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조직 검사 시 불충분한 채집으로 인해 이미 발생되어 있을 지도 모를 위암을 진단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3차 진료 군의관은 미흡한 2차 진료기록에 따라 위궤양에 대한 조치만 함으로써 정확한 진단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속 부대에서는 만성 위궤양으로 인식하였던 바, 이에 따라 구보와 근무제한 등 만성위궤양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부대장은 외진환자 등 전체 환자에 대한 일일결산제 실시 등 환자관리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나. 피해자 2.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는 2004.12.31. 내시경 검사 중 피해자의 호흡곤란 호소로 검사를 중단한 후, 추후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종양 진단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판단된다.

소속부대에서 상급 진료기관이 2Km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해자2.가 의무병 5명과 함께 내무반 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군의관과도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본인이 원할 경우 외진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 3.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는 2003.12. 및 2004.1. 총 2차에 걸쳐 시행한 내시경 검사 결과 위궤양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시경검사 소견서는 보관하고 있으나, 2차에 걸친 내시경검사 사진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출력하지 않은 것인지 유실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소속부대에서는 군병원에 2회 외진을 조치하였고, 2004.10. 이후 최고 선임병이었으며 간부들의 신임도 두터워 본인이 원할 경우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었다.

라. 피해자 4.에 대하여

소속부대에서는 내시경 및 초음파 등 진단장비가 없고, 지리적 여건상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외진은 통상 월1회 실시하고 있어 정상적인 진료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관행상 소속부대와 같은 의무대급에서는 검사만을 위한 민간병원 위탁진료는 실시하지 않는 결과, 종양진단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마. 2005.11.1.부터 11.7.까지 진행한 군 의료체계에 대한 점검 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담당 군의관의 잦은 변경으로 전담군의관에 의한 지속적 관찰이 곤란하다. 둘째, 병사들이 주위의 눈치를 보거나 교육·훈련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진료요청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셋째, 진료시설 등 여건이 열악하다. 넷째, 단계별 진료의료체계로 인해 적시에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경험이 부족한 단기군의관들이 진료를 주로 담당하여 정확한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

바. 이번 조사 결과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법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여 '의무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겠다.

3. 인정사실

가. 피해자 1.에 대하여

(1) 소속부대의 조치에 대하여

(가) 피해자 1.은 2003.6.16. 입대하여 ○○사령부 제○탄약창에서 복무하던 중,

2005.4.28. 받은 국군○○병원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 결과에 "위궤양"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다가 2005.6.24. 만기전역 하였고, 전역 약 2주 후 위암 4기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 1.은 같은 해 10.27. 사망하였으며, 유가족의 신청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는 같은 해 11.3. 피해자 1.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였다.

(나) 군 진료기록, 후임병, 의무병, 군의관 등의 진술 및 제○탄약창 제출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1.은 2005.4.25. 소속 중대장에게 같은 해 3.29. 1차 외진시 다리 외 내과진료도 받았음을 보고하였고, 속쓰림 증상을 호소하면서 외진을 건의하였던 바, 군 당국은 이때 피해자 1.의 복통 사실을 최초로 알게 되었다. 동 보고를 받은 소속 중대장은 3일 뒤인 같은 해 4.28. 2차 외진조치를 하였다.

(다) 2차 외진 시 받은 검사결과를 보기위해 3차 외진을 같은 해 5. 13.로 계획하였으나, 같은 달 9일부터 19일까지 피해자 1.의 3년차 정기휴가가 있어 3차 외진 일정을 미루었고, 휴가 복귀 후인 같은 달 27. 국군○○병원에서 3차 외진을 받았다. 당시 피해자 1.이 복무했던 제○탄약창에서는 매주 1회 30 내지 40명 정도가 정기적 외진을 받았다.

(라) 피해자 1.의 아버지 노○○은 부대 측에서 ○○대학교 병원에서의 진료를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중대장 대위 김○○은 노○○의 전화를 받은 점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큰 병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전역 후 민간병원 진료를 받겠다고 하여 ○○대학교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 피해자 1.의 당시 중대장은 노○○으로부터 민간병원 진료요구 전화를 받고 같은 해 6.20. 피해자 1.과 동행하여 임실 소재 ○○내과에 외진조치 하였던 바,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만성 위궤양"으로 진단되었다.

(2) 군병원 진료에 대하여

(가) 이○○은 2005.4.23. 육군대위로 임관하였고, 내과 3년차 군의관 전원이 전역하여 진료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관 이틀 후인 25일 바로 국군○○병원 외래업무 및 병실 입원환자 주치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임관된 지 5일째인 같은 해 4.28. 피해자 1.을 진료하면서 위내시경 검사를 하여 출혈이 심하여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2개 조직을 채집하였고, 다음날 29일 민간전문기관인 ○○○에 검사결과확인을 의뢰하였던 바, "만성위염"으로 결과통보를 받았고, 내시경 소견서에 "다발성 미란 및 궤양"으로, 조직검사 의뢰서에는 "소화불량"으로 기록하였다.

(나) 동 이○○은 외부의 지시 없이 독자적 판단으로 피해자 1.이 전역한 후인

2005.7.20.경 진료기록에 “위암의증”이라고 가필하였다.

나. 피해자 2.에 대하여

(1) 소속부대의 조치에 대하여

(가) 피해자 2.는 2003.1.16. 입대하여 ○기갑여단 ○○○○대대에서 복무하던 중, 2004.12.31. 받은 국군○○병원 상부위장관 내시경, 흉부 X선, 혈액검사 결과 “일단 특이 병변은 없었음” 판정을 받았고, 2005.2.7. 만기전역한 후, 약 6주 후 위암 3기말 판정을 받아 현재 투병중이며, 신청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는 같은 해 12.28. 피해자 2.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였다.

(나) 피해자 2.는 외진을 자주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부대 구성원들의 눈치가 보이고 업무부담 때문에 스스로 가지 않은 것이며, 간부들이 외진을 불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2.의 아버지 박○○은 2003.10. 7.경 군병원 시설을 신뢰하기 힘드니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나 휴가를 줄 것을 군 당국에 요청하였으나, 당시 중대장이 며칠 후 전화로 군의관에게 알아보니 큰 병도 아니고 군에서 다 고쳐주니 걱정하지 말라며 불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중대장이었던 임○○는 이에 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만약에 불허했다면, 본인에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규정상 안 된다고 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군병원 진료에 대하여

(가) 피해자 2.는 2003.10.3.부터 복통, 구토, 어지러움, 흑색대변의 증상이 나타나 국군○○병원에서 상부위장관내시경, 대장조영술 검사를 받았으나, 양 검사결과 정상으로 나와 퇴원하였다. 2004.11.19.부터 식후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흉부X선, 심전도 등의 검사를 받았으나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자, 같은 해 12.31. 대위 정○은 국군○○병원에서 상부위장관 내시경, 흉부X선, 혈액검사를 하였던 바, 흉부X선 및 혈액검사는 “정상” 판정을 하였고 내시경 검사도중 호흡 곤란과 가슴답답증을 호소하여 십이지장 진입 직전에 검사를 중단하였으나 “일단 특이병변은 없었음”으로 판정하여 기록하였다.

(나) 2005.1.21.부터 시작되는 전역휴가 시 본인이 민간병원 진료를 희망하자 대위 김○○은 “지속적인 흉통 호소로 상부 위장관 내시경 및 혈액검사 시행하였으나, 이상소견이 없고 증상 호전되지 않아 정밀진단 要”라고 적은 소견서를 발급하였다.

(다) 제○○○여단 의무중대에 근무하는 김○○ 중위는 군병원 측으로부터 환자에 대하여 추적관리가 필요하다는 기록통보가 없어 재검사를 위한 외진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여단 의무중대 치료반장 설○○은 "여단 의무중대에 있는 검사장비는 10년 이상 된 엑스레이 하나뿐이다"고 진술하였다.

(마) 제○○○여단 ○○○○대대 본부중대 중사 장○○은 2005.9.초 창고정리 및 보존기한이 지난 서류철을 분류하던 중 피해자 2.의 진료기록지와 외진의뢰서를 포함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하는 진료기록지철과 외진의뢰서철을 함께 대대소각장에서 소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3.에 대하여

(1) 소속부대의 조치에 대하여

(가) 피해자 3.은 2003.6.19. 입대하여 육군 ○○사단○○○연대에서 복무하던 중, 같은 해 12.16. 받은 국군○○병원 상부위장관 내시경 결과 "양성 위궤양"으로 판정받아 위궤양 치료를 받다가 2005.6.27. 만기전역 하였고, 전역 약 6주 후 위암 4기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 3.은 같은 해 11.21. 사망하였으며, 유가족의 신청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는 같은 해 11.24. 피해자 3.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였다.

(나) 당시 ○○○연대 본부중대 작전병으로 근무하였던 구○○은 2004년 중반 군수과 인원이 많이 줄어 피해자 3.이 담당해야 할 일은 점점 많아 졌고 야근을 하는 경우도 점점 잦아 졌으며, 이런 환경 속에서 피해자 3.이 자신의 부재로 인한 업무지연, 타인의 부담가중 등을 걱정하여 자주 의무치료를 받으러 가지 못했던 것 같다고 진술 하였다.

(2) 군병원 진료에 대하여

(가)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2003.12.16. 대위 임○○은 피해자 3.에 대하여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위궤양"으로 진단하여 입원 조치하였고, 2004.1. 15. 혈액검사 및 상부 위장관 내시경 재검 결과 위궤양이 흉터만 남고 치유된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달 16. 퇴원 조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두 번의 내시경검사 소견서는 보관하고 있으나 내시경검사 사진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

(나) 당시 ○○사단 ○○○연대 의무중대장이었던 이○○ 대위는 "2005.3.17. 피해자 3.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는 사실을 의무중대 병사에게 유선으로 통보받은

후 역시 유선으로 처방을 하였고, 사단의무대로 와서 진료를 직접 받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3.이 오지 않았다. 같은 달 23. 소화불량으로 사단의무대에 온 피해자 3.을 진료한 후, 당시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 3일간 약을 처방하였고 3일 뒤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 외진을 가자고 하였으나, 3일 후에도 피해자 3.이 역시 오지 않았다. 다음달 4.21. 다시 소화불량과 이로 인하여 식사를 하기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달 22. ○○병원 외진을 가자고 결정하여 사단의무대에서 통합하여 출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연대 의무중대에 근무하였던 상병 박○○은 "2005.4.경에 피해자 3.이 의무중대 치료실을 찾아와 속이 쓰리고 아프다고 호소하여 외진을 권유했으나 며칠 뒤 외진을 갈 예정이니 일단 하루 분만 먹을 약을 달라고 하여, 중대장님께 전화 후 처방을 받아 직접 처방전에 적고 약을 조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4.에 대하여

(1) 소속부대의 조치에 대하여

(가) 피해자 4.는 2003.1.6. 입대하여 ○○방어사령부 본부근무대 에서 복무 하던 중, 같은 해 9.19.부터 소속부대 의무대에서 복통과 복부 불편감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5.3.29. 만기전역 하였고, 전역 약 2개월 후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 4.는 현재 투병중이며, 신청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는 2005. 11.7. 피해자 4.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였다.

(나) 피해자 4.의 아버지 오○○은 피해자 4.가 외진을 건의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겉으로 안 보이는 병이니까 본인 스스로 남들이 꾀병이라고 생각할까봐 참은 것도 있고, 약 먹으면서 통증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니니 사단 의무대 진단대로 장염 정도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고 진술하였다.

(2) 군병원 진료에 대하여

(가) 당시 해군 ○○방어사령부 의무대 내과군의관이었던 최○○은 "○○방어사령부 당시 실정상 혈액검사가 거의 불가능했고 초음파도 장비가 없어서 할 수 없는 실정인 가운데 피해자 4.는 외진을 통한 추가 자세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당시 ○○방어사령부 의무과장 이었던 강○○은 "○○ 외진은 매월 평균 1.5회

수준이며, 평균 3주에 한 번 외진을 의뢰하였다. 진료기록만을 참고하면, 젊은 환자에게 흔히 볼 수 있는 복통의 원인인 급성장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진단하였고 다른 질병이 의심되어 외부진료를 의뢰하거나 권유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췌장암을 진단하는데 필요한 CT는 외진하면 가능했으나, 당시 의무대에 초음파는 도입되지 않았고, 위내시경은 2004.11.27. 설치되었으나 이는 본인에게 확인을 요하는 사항으로 위보다는 장○○로 생각하여 내시경 필요를 못 느꼈거나, 도입은 되었으나 내시경 기종에의 적응과 개인적 복습시간 등을 충분히 갖고 실시하려고 준비하는 기간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최○○ 군의관이 실제로 시행한 첫 내시경 진료는 같은 해 12.28.로 기록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피해자 1.에 대하여

(1) 피해자 1.은 군복무 중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를 받고 "위궤양"이라는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다가 약 3개월 후 위암4기 판정을 받았고,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사망한 자로, 대위 이○○은 국군○○병원에서 2차 진료 시 내시경검사에서 통상 3개 이상의 조직을 채취하는 것과 달리 2개 조직만을 채집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위암을 진단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2개 조직의 채집에 그쳐 표본도 충분하지 않고 조직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시 조직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고, 진료기록에 "위암의증" 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다발성 미란 및 궤양"으로만 기재하여 이후 지속적인 추적·관찰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전역한 피해자 1.이 위암 진단을 받았음을 알게 된 후 임의로 진료기록에 "위암의증"이라고 가필함으로써 「의료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2) 위와 같이 이○○의 행동이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인정되나, 내시경 검사 당시 피해자 1.이 고통을 심하게 호소하였고 출혈이 심한 상황에서 조직검사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계속 시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직검사의 수만으로 진료의 적절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혈에 대해 대응할 장비가 군대내 충분치 않았던 점, 약 2개월 후 임실내과에서도 역시 "만성 위궤양"으로 진단된 점, 통상 40세 이전에는 위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젊은 사람에게 발생하는 위암은 빠르게 진행되어 예후가 나쁘다는 점, 이○○이 내시경을 하던 당시 이미 위암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 진료기록에 애초 “위암의증”이라고 기재하였다 하여도 통상 치료 8내지 12주 후 내시경을 다시 시행하므로, 내시경을 시행한지 단지 4주 경과 되었고 전역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다시 내시경을 시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군대 의료체계 및 제도적 문제점과는 별개로 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3) 위 이○○의 진료기록부 가필에 대한 책임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기본권 침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 2.에 대하여

(1) 피해자 2.는 군복무 중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받고 “일단 특이 병변은 없었음”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 3개월 후 위암 3기말 판정을 받아 현재 투병중인 자로, 대위 정○○ 국군○○병원에서 상부위장관 내시경, 흉부X선, 혈액검사를 하였던 바, 흉부X선 및 혈액검사는 정상판정 하였고, 내시경 검사도중 호흡 곤란과 가슴답답증을 호소하여 십이지장 진입 직전에 검사를 중단하였으나 “일단 특이병변은 없었음”으로 판정하였고, 추후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이미 발생한 위암을 진단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사 장○○은 10년간 보존해야 하는 피해자 2.의 진료기록지철과 외진의뢰서철을 소각함으로써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2) 위와 같이 정○의 행동이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인정되나, 2003.10.8. 받은 내시경과 대장 조영술 검사 결과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위내시경과 대장촬영에서 모두 정상인 경우 더 이상의 검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 2004. 12. 31. 시행한 내시경 검사 도중 피해자 2.가 호흡곤란과 가슴 답답증을 호소하여 내시경을 계속 할 수 없었고 군병원에서 수면내시경을 하기위한 약제나 회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점, 내시경 2주 후 피해자가 전역휴가 시 민간병원 진료를 희망한 점, 통상 40세 이전에는 위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젊은 사람에게 발생하는 위암은 빠르게 진행되어 예후가 나쁘다는 점, 정○이 내시경을 하던 당시 이미 위암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점, 특정 종류의 위암은 위 내시경으로도 진단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대 의료체계 및 제도적 문제점과는 별개로 정○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3) 장○○의 진료기록부 소각에 대한 책임은 기본권 침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 3.에 대하여

(1) 피해자 3.은 군복무 중 내시경 결과 "양성 위궤양" 진단을 받고 1년 6개월 후 만기전역 한 직후 2005. 8. 13. 위암 4기 판정을 받고 사망한 자로, 대위 임○○은 2003. 12. 12. 상부 위장관 내시경을 실시하여 "양성 위궤양"으로 판정하였고, 대위 이○○은 복부 통증을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피해자 3.에게 전화통화 만으로 진료를 하여 투약하였다.

(2) 2003. 12. 16. 받은 내시경 검사 결과 "양성 위궤양"으로 진단되었고 2004. 1. 15. 내시경 재검사 결과 위궤양이 흉터만 남고 치유된 것으로 진단된 점, 추적 위내시경에서 병변이 소실된 위궤양이라면 증상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정밀검사를 시행하지는 않는 것이 관행이라는 점, 이○○ 동행 하에 2005. 4. 22. ○○○의료원에서 내시경 검사 결과 "표재성 위염"으로 진단된 점, 통상 40세 이전에는 위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며 젊은 사람에게 발생하는 위암은 빠르게 진행되어 예후가 나쁘다는 점, 특정 종류의 위암은 위 내시경으로도 진단이 어렵다는 점, 임○○이 내시경을 하던 당시 이미 위암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군대 의료체계 및 제도적 문제점과는 별개로 임○○과 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라. 피해자 4.에 대하여

(1) 피해자 4.는 군복무 중 복통과 복부 불편감 등으로 약제 치료를 받다가 만기전역 2개월 후 2005. 5. 25. 췌장암 판정을 받고 현재 투병 중인 자로, 당시 내과 군의관이었던 최○○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위내시경이나 CT촬영 등을 외부진료 의뢰하거나 권유하지 않았다.

(2) 췌장암은 50세 이전에는 잘 발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비교적 드문 질환으로 조기진단이 어렵다는 점, 진단을 위해서는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이 가장 중요하나 비교적 고가의 검사이고 검사 시 많은 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아니라는 점, 20대 남성에게 설사, 속쓰림의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췌장암 가능성을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점, 최○○이 진료를 하던 당시 이미 췌장암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군대 의료체계 및 제도적 문제점과는 별개로 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마. 군인의 의료접근권 침해여부

(1) 자유로운 진료청구의 어려움

이 사건 피해자 2.는 외진을 자주 가지 않은 것이 간부들의 거부 때문은 아니지만 부대 구성원들의 눈치가 보이고 업무부담 때문에 스스로 가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구○○은 피해자 3.에 대해 일은 점점 많아 졌고 야근을 하는 경우도 점점 잦아 졌으며, 이런 환경 속에서 자신의 부재로 인한 업무지연, 타인의 부담가중 등을 걱정하여 자주 의무치료를 받으러 가지 못했던 것 같다고 진술 하였으며, 참고인 오○○은 겉으로 안 보이는 병이니까 피해자 4. 본인 스스로 남들이 꾀병이라고 생각할까봐 참은 것도 있고, 약 먹으면서 통증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의무대의 진단대로 장염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서 "아프거나 진찰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역병 중 21.5%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예비역의 경우 51.5%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진료시간의 과다소요가 본인과 동료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요 요인이며, 소속부대→대대→연대→사단→군병원으로 나뉘어 있는 후송체계가 신속성을 저해하였고, 주 1회 내지 2회 또는 월 1회의 외래진료일 지정 역시 시기적절한 진료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의무사령부가 2005.7.25. 발표한「국방의무발전 추진계획」에서도 사병의 진료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사병들이 간부 및 선임병의 눈치를 보느라 의료시설 이용을 제한 받고 지정된 외래진료일에만 외래진료가 가능하여 즉각 진료가 불가능 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권위적인 군 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신속히 진료를 청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군인들의 질병이 악화되는 바, 국방부 장관은「국방의무발전 추진계획」의 실현을 위한 법률의 제·개정 과정에서 군인의 적기·적시 진료권 보장을 명문화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하위 시행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2) 진료기록의 변조 및 멸실

피해자 1.에 대한 사건에서 이호경은 진료기록에 병명을 가필하였고, 장○○은 10년간 보관해야하는 진료기록지철과 외진의뢰서철을 소각하였던 바, 정확한 진료기록은 환자에게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고 향후 분쟁 발생시 책임소

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요구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멸실시키는 것은 군인들의 정확하고 책임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방부 장관은 이와 같은 일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군병원과 부대 간 그리고 군대내 체계적 진료정보기록 및 공유제도 부재

환자의 진료기록에는 환자의 상태 및 향후 필요한 점 등에 대해 자세히 기록이 되어야 하고, 군병원의 군의관과 소속부대 군의관이 환자의 상태, 병명, 재검사 등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해야 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군대에는 이와 같은 체계적 진료정보 기록 및 공유제도가 부재하다. 군병원 및 군의무대는 요일에 따라 담당 군의관이 변경되고, 민간병원보다 군의관의 잦은 이동이 있어 진료정보의 자세한 기록 및 공유 제도가 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가 부재하여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연속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4) 민간병원과 원활한 협력진료 제도 부재

피해자 1.에 대한 사건에서 참고인 노○○은 부대 측이 ○○대학교 병원 진료를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고인 김○○은 노○○의 전화를 받은 점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큰 병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 1.이 전역한 후 민간병원 진료를 받겠다고 하여 ○○대학교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등 민간병원 진료를 둘러싼 충돌이 있었다. 역시 피해자 2.에 대한 사건에서 참고인 박○○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나 휴가를 줄 것을 군 당국에 요청하였으나 당시 중대장이 불허하였다고 주장하고, 참고인 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민간병원 진료를 둘러싼 충돌이 있었다.

실태조사에서는 군대에서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거나 있어도 매우 복잡하며, 원하는 시기에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고, 본인 또는 부모 요구가 있을 때 민간병원 이용을 위한 행정절차가 복잡하며, 간부 인솔 하에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민간시설의 자유로운 이용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임상경험이 부족한 단기 군의관 위주로 군 진료인력이 구성되어 있고 비전문 의무병이 진료보조를 수행하며, 일반 대학병원처럼 동일한 진료과목에 대해 원로 교수와 여러 명의 전문의들이 협력하여 판단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고 임상병리경험이 부족한 전문

의가 혼자서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현 상황에서 군병원에 대한 불신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좋은 민간병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군인의 정당한 의료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원거리 군병원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부대인근의 민간병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므로 원하는 군인들은 언제든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활한 협력진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5) 군내 필수의료장비의 부족

피해자 2.에 대한 사건에서 참고인 설○○은 여단 의무중대에 있는 검사장비는 10년 이상 된 엑스레이 하나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4.에 대한 사건에서 참고인 최○○은 당시 실정상 혈액검사가 거의 불가능했고 초음파도 장비가 없어서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동 사건 참고인 강○○은 췌장암을 진단하는데 필요한 CT는 외진하면 가능했으나, 당시 의무대에 초음파는 도입되지 않았고, 위내시경은 2004.11.27. 설치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군이 보유한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도 구형 모델인 경우가 많으며, 수술을 위한 지원 장비나 인원 확보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던 바, 군대내 필수적 의료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군인들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군내 필수의료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5. 결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1항 및 2항은 모든 사람의 건강권, 질병발생시 의료와 간호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적절한 의료접근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 내지 4.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국가에 의해 보호받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의료접근권을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1. 내지 4.는 인간의 존엄성 및 의료접근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8.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조영황 위 원 최영애 위 원 정강자

위 원 김만흠 위 원 이해학 위 원 정인섭

위 원 최금숙 위 원 신혜수 위 원 원형은

[별지] 관계법령

1. 세계인권선언

제25조 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적 시설을 포함하여 자신 및 그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함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유할 권리를 가지며, 실직, 질병, 불구, 배우자의 상실, 노쇠 혹은 기타 불가항력의 사정으로 인하여 생활의 곤궁을 받을 때에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90년 7월 10일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 (조약 제1006호)

제12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a) 사산율과 유아사망율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d)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3.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4. 의료법

제21조(진료기록부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제33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3조(자격정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제21조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중략)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호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중략)

2. 진료기록부 10년

2 06진인989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6. 12. 6. 결정

육군 제○○사단장 및 육군 ○○사령관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 정인 1) 2)에게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GOP 군의관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함을 소견하여 적기·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진정인 1) 2)의 지연조치로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적시·적기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 **진정인** ▌ 황○○(피해자 예)김○○의 외삼촌)

▌ **피해자** ▌ 김○○

▌ **피진정인** ▌ 1. 엄○○(육군 제○○사단 지원중대장, 대위, 現 사단연락장교)
2. 김○○(육군 제○○사단 의무중대장, 대위, 現 교육사 군의관)
3. 박○○(육군 제○○사단 본부중대장, 대위)

▌**주 문**▐ 육군 제○○사단장 및 육군 ○○사령관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 정인 1) 2)에게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04. 7. 21. 피진정부대에 배치되어 GOP 근무중인 2004. 8. 15. GOP대대 군의관이 정신과진료의 필요성을 소견 했음에도 피진정인 1) 2)의 조치부실로 2005. 4. 7. ○○병원 정신과 진료 받기까지 약 7개월이상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못해 의료접근권을 박탈당했고, 2005. 11. 7. 부대 복귀했으나 피진정인 3)이 가혹행위 등을 방치하여 2006. 3. 27. 재입원 해야했으며 2006. 5. 23. 치료도중에 만기 제대하게 된것은 피진정들의 책임임.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음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1) 피해자의 정신과적 병리현상은 고등학교 재학시부터 있었고, 그 원인은 친구의 괴롭힘 등이었으며, 군 복무중 집단 따돌림 등 어떠한 유·무형의 폭력은 없었으며

2) 군내 가혹행위에 의한 정신질환의 발병, 진료조치 소홀 등 부대내 조치가 미흡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3.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에 대한 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4. 5. 24.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교육을 마치고 2004. 7. 21. GOP 부대인 제ㅇㅇ사단 ㅇㅇ연대 지원중대(중대장 대위 엄ㅇㅇ-피진정인 1)에 배치되었다.

나. GOP대대 군의관은 2004. 8. 15. 순회 진료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다며 정신과 치료를 실시할 것"을 피해자의 소대장에게 소견하였고 "정신분열증이 있으며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표출될 경우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이상한 행동을 할 경우 GOP에서 철수시킬 것"을 당부하였다.

다. 소대장 소위 이ㅇㅇ은 2004. 8. 16. 피진정인 1)에게 보고하여 피진정인 1)은 2004. 8. 17. 피해자를 후방 본부소대로 철수시켰으며, 철수당시 소대장은 피진정인 1)에게 정신과 진료를 요청하며 잘 돌봐달라고 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은 2004. 8. 17. 연대군의관(의무중대장 대위 김ㅇㅇ- 피진정인 2)에게 면담을 실시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틱'현상이 있으며 동시에 GOP근무에 기피현상이 있다" "후방에서 안정시키면 괜찮을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정신과 초진까지 약 7개월간 정신과적 치료를 실시하지 않았다.

마.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 대하여 2004. 9. 16. 4.2" 2소대로, 2004. 11. 26. 4.2" 3소대로, 2004. 12. 20에는 다시 본부소대로 보직조정을 하였고 2005. 2. 1~2. 3. 비전

캠프에 입소시키는 등 조치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게하는 등의 지휘조치는 소홀하였다.

바. 피해자는 2005. 4. 7. 에서야 처음으로 국군○○병원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이후 2005. 4. 12. 연대 본부중대(중대장 대위 박○○-피진정인 3)로 부대이동 되어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05. 10. 24. 입원하였다가 2005. 11. 7. 본인희망 등으로 퇴원하였으나 2006. 3. 27. "동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언행을 하는등 상태가 악화되어 2006. 3. 27.~5. 23. '인격장애'로 재입원 하였다.

사. 피해자의 발병원인에 대하여 피진정인 측은 피해자와 면담해보니 "본인이 현재 모습처럼 변한 것은 고등학교 재학 중 안좋은 친구가 괴롭히고, 무시하고, 인격적 모독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정인측은 군 입대전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원인 및 책임은 멀쩡한 아들을 데려가 이렇게 만든 부대측에 있다고 하고 있다.

아. 진정인측은 본부중대 내무생활 중 병장 강지훈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지조사시 강지훈은 "피해자가 7개월정도 선임인데 가혹행위를 어떻게 하냐?" 며 부인한점, 동료 병사들의 진술서등을 살펴볼때 진정인측 주장외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자. 진정인측은 본부중대 행정보급관이 "동료 병사들이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로 영창을 간 병사가 있다"고 말했다고 하나 행정보급관은 진술서에서 "재일이의 주장 때문에 병사들이 영창을 갈 정도로 오해가 있었다,"고 한것이며 영창을 간 병사는 없다고 답변하여, 관련 인사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이유로 영창을 간 병사는 밝혀지지 않는다.

차. 피해자는 국군○○병원 정신과에 입원중인 2006. 5. 23. 만기전역 하였고 제대당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이○○ 신경정신과 진료결과 입원가료가 필요하다 하여 곧바로 경기도 광주시 소재 연세대학교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에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하여 2006. 9. 15. 까지 입원치료 하였으며 월 300만원정도의 치료비 및 부대비용이 부담되어 퇴원하여 경상북도 ○○ 자택에서 월 1~2회 정도의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특별한 차도는 없는 실정이다.

4. 판단

가. 의료접근권 박탈여부

1)「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1항 및 2항은 모든 사람의 건강권, 질병발생시 의료와 간호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적절한 의료접근권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이는 적시, 적기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피해자는 입대전 정신과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자 임에도, 군복무수행 중 정신병을 얻고 입원하였다가 병원에서 만기전역하면서 아무런 혜택 없이 전역하였고 전역한 후에도 민간병원에서 매월 수백만원상당의 치료비까지 부담하며 치료받고 있는 것은

GOP 군의관이 정신과치료가 필요함을 소견하여 적기·적시에 치료를 받을수 있었음에도 피진정인 1) 2)의 지연조치로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적시·적기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진정인이 지목한 참고인 조사, 동료 병사들의 진술서 및 인사기록 등을 살펴본결과 진정인 주장 외 가혹행위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피진정인 3)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치 않고, 피진정인 1), 2)는 대대 군의관 및 소대장의 건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적시·적기에 진료를 받게할 수 있었음에도 피진정인 1) 2)의 지연조치로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적시·적기의 의료접근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주의 및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3 07진인895 [환자방치에 의한 인권침해] 2007. 7. 9. 결정

국방부 장관에게 진정요지 다. 와 관련하여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군의관이 파견·연수시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원환자관리시스템을 보완 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군의관 간의 인수인계 부분은 파견 및 위로 휴가시 대체근무자 지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병원내 특별한 규정도 없다. 이와 같이 군병원내 군의관 인수인계 규정이 없으면 환자가 담당군의관으로부터 방치될 수 있고, 불의의 사고시 군의관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군병원도 민간 대학병원 등에서 보듯이 철저한 인수인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료공백으로 인한 환자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진정인▐ ○○○, 피해자 ○○○의 어머니

▌피해자▐ ○○○

▌피진정인▐ 1. ○○○ (육군 ○○사단 행정보급관, ○○)
2. ○○○ (국군○○병원 정형외과군의관, ○○)
3. ○○○ (국군○○병원 정형외과군의관, ○○, 현 ○○병원)
4. ○○○ (국군○○병원 정형외과군의관, ○○)

▌주 문▐ 1. 국방부 장관에게 진정요지 다. 와 관련하여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군의관이 파견·연수시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원환자관리시스템을 보완 할 것을 권고한다.

2. 나머지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가. 피해자 ○○○는 2005. 7.경 육군 제○○사단 ○○중대 복무 중 허리부상을 입었는데 피진정인 1)이 "꾀병부리지 마라"며 의료조치를 미뤘고, 국군○○병원에서 복귀 후 기브스를 하는 등 정상복무가 불가능한 몸이었는데도 내무생활을 시켰다.

나.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허리수술을 받고 요양차 2006. 3. 8 국군○○병원으로 후송을 갔는데 피진정인 2)가 진료를 제대로 안했고, 진정인과 통화 중 고함을 질렀으며 2006. 3. 17. 복귀시키겠다고 해놓고서 악의적으로 2006. 3. 14. 복귀시켰다.

다. 피해자가 2006. 4. 20. 국군○○병원에 2차 입원하였을시 십자인대 수술을 시행한 피진정인 3)과 후임군의관인 피진정인 4)간에 재활에 관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진정인 4)가 파견기간 등 2달여간 재활치료를 방치시켜 환자의 환부가 경직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피진정인 4)에게 민원을 넣겠다고 하자 "민원 넣으면 외부민간 진료를 불허하겠다." 며 협박하고 고함을 지른 것은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요지 가. 관련

1)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 1) ○○○, 육군 ○○사단 ○○중대 행정보급관의 주장

피해자가 원할 경우 소속부대 의무실에 입실시켰고 피해자에게 잔심부름을 시킨적이 없으며, 부모의 요구에 따라 휴가를 보내고 입원 중에는 위문방문을 하는 등 환자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였으며, 부모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 관련

1)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 2) ○○○, 국군○○병원 군의관의 주장

환자에 대한 면담 및 진료결과 환자 본인이 수술 전보다 호전 되었다 하고, 이미 약 130여일 입원/요망을 한 상태여서 모친에게 전화로 퇴원이유 등을 설명 후 2006. 3. 13. 퇴원 결정하였고, 2006. 3. 17. 부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지 피해자나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일은 없다.

다. 진정요지 다. 관련

1)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 3) ○○○, 국군○○병원 군의관의 주장

2006. 4. 20. 수술 후, 환자에게 직접 재활의 중요성 및 방법을 설명하였고, 2006. 4. 27. 전속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살폈으며 후임 군의관에게도 재활에 대하여 인계하였다. 재활은 환자 자신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3) 피진정인 4) ○○○, 국군○○병원 군의관의 주장

2006. 4. 28. 환자를 인계받아 진료시 재활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육 하였고, 간호장교도 투약시간에 운동 열심히 하라고 교육을 하였으며 진정인이 이미 여러기관에 민원을 넣은 상태여서 외진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파견근무시 타 군의관에게 구두로 인계는 하였으나 인계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있었으면 한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 관련

1) 인정사실

가) 피해자 ○○○는 2005. 5. 2. 대학 재학 중 입대하여 2005. 7. 13. 육군 ○○사단 ○○중대에(이후 자대)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장갑차밧데리 운반작업 중 허리를 다쳤다.

나) 피해자는 휴가를 얻어 민간병원에서 디스크 진단을 받고 자대에 복귀한 후 부대측 허가를 받아 2005. 10. 국군○○병원에 입원했으나 디스크 수술은 입원중인 2006. 1. 26. 민간병원에서 자비로 하였다.

다) 피해자는 민간병원 수술 후 국군○○병원에 복귀하였으나, 병원측은 3개월 이상 입원대상이 안되자 2006. 3. 8. 국군○○병원에 전원을 보냈고, 피해자는 2006. 3. 17.

자대에 복귀한 후 부대내 의무실 등에서 생활을 했고 이때 피진정인인 1)은 진정인에게 피해자가 무릎을 아파함을 전화로 통지 한바 있다.

라)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환자인 피해자에게 내무생활을 정상적으로 시키고 잡다한 심부름 등을 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1)은 환자를 부대의무실에 입실시켰고 환자상태를 살펴 무릎이 아프다고 하는 것을 진정인에게 연락해주니 고맙다고 한적이 있는 등, 피해자에게 배려를 해 주었지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원 소속부대에서 피해자에 대한 의료조치를 미뤘고, 부당하게 내무생활을 시켰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의무대에 입실시킨 점, 피해자의 몸상태를 확인하고 진정인에게 전화로 피해자의 몸상태를 전한 점, 청원휴가를 허락하고 병원 위문 등을 실시한 점 등을 검토해 볼때 환자를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의 주장은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 관련

1)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2006. 1. 21. 민간병원에서 디스크 수술 후 국군○○병원에 복귀하였으나 국군○○병원측은 3개월 이상 입원대상이 안된다며 피해자를 2006. 3. 8. 국군○○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피해자와 면담 및 진료를 통해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음을 확인하고 2006. 3. 15. 자대로 복귀시켰다.

다) 진정인은 이때 피진정인 2)가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인과 전화통화시 “군의관인 내가 정상복귀해도 된다면 되는것이다”라며 고함을 지르고 악의적으로 강제복귀 시켰다고 하나, 피진정인 2)는 진료결과 피해자의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았고, 면담을 해보니 피해자도 몸상태가 좋아졌다고 했으며, 이미 130일 이상 입원/요양중이어서 진정인과 전화통화시 위 사실을 설명 후 자대로 복귀시켰을 뿐, 의사로서 악의적으로 대한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피진정인 2)가 피해자에 대하여 제대로 진료도 안하고 악의적으로 복귀시켰다는 주장은 피진정인 2)가 환자의 상태를 살폈고, 면담을 통하여 부대복귀를 결정한 점, 진정

인에게 퇴원 사유를 설명한 점 등을 검토해 볼때 피진정인 2)가 환자를 방치하고 악의적으로 복귀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의 주장은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 관련

1)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2006. 3. 17. 자대에 복귀하여 생활 중 무릎통증을 호소하여 민간병원에서 무릎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2006. 4. 10. 국군○○병원에 2차 입원하였다.

나) 피해자는 2006. 4. 20. 피진정인 3)으로부터 수술을 받았고, 피진정인 3)은 2006. 4. 27. 부로 국군○○병원으로 전출을 가게 되어, 후임인 피진정인 4)가 환자를 인계하였다.

다) 피진정인 4)는 환자를 인계받은 후 2006. 4. 28. 첫 진료를 하고, 2006. 5. 10 ~ 5. 17. ○○ 미군기지 철조망작업에 1차파견 및 5. 18 ~ 5. 22. 위로휴가를 다녀와 2006. 5. 26. 피해자 치료를 하였고 5. 31 ~ 6. 7. 2차파견 전 환자가 외진을 원하여 2006. 6. 1. 외진을 할수 있도록 조치한 후 6. 7. 복귀하였다. 위 파견 및 위로휴가 기간 중에 동료인 ○○○ 군의관에게 구두로 환자를 인계하고 파견을 갔으나 서류상으로 인수인계를 한 사실은 없다.

라) 군의관 경과기록, 간호기록 등에 의하면 피진정인 4)가 피해자에게 조치한 내용은 2006. 4. 28. 항생주사 종료 및 경구약 처방, 5. 1. 드레싱 교환 및 대퇴근 강화운동 실시 교육, 5. 2. 근력강화운동 통한 재활교육, 대퇴근 강화운동 실시격려, 5. 4. 근력강화운동 실시격려, 5. 11. 대퇴근 강화운동 및 우슬부 관절운동 격려, 5. 18. 관절운동 시행 및 대퇴근 강화운동 시행격려, 5. 25. 환자가 “아파서 못하겠다”하여 자가 관절운동 시행 격려 및 근력강화 도모, 6. 1. 외진허가 등으로 되어있다.

마) 진정인은 피진정인 4)에게 파견기간 중 환자를 방치한 것 아니냐고 전화로 항의하자 외진을 불허하겠다고 협박하고 고함을 질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4)는 피해자가 외부진료 중 임의로 병원을 바꾸고 아무런 연락을 해주지 않고, 부대에 지연복귀까지 한 상태에서 군의관이 비협조적이라고 하여 “임의로 병원을 바꾸고 하면 외진에 협조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했을뿐 일부러 고함을 지른일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의학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보지만 도의적 책임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바) 진정인이 제출한 피진정인과의 전화통화내용 녹음화일에도 피진정인4)가 진정인에게 특별히 욕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 피해자는 국군○○병원 수술이후 재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2006. 6. 19.부터 약 3개월간 ○○대학병원에 외진을 다니다가. 2006. 11. 비전공상으로 전역하였다.

아) 인수인계 규정과 관련 국방부 보건정책팀은 군병원도 민간병원과 동일한 환자관리체계에 의해 운영되므로 이를 규정화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나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 등에서는 담당의사가 출장 등을 신청할 때 대체의사가 지정되지 않으면 출장명령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환자인수인계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2) 판단

피진정인 4)가 파견을 가면서 환자를 방치하였다는 주장은 전임군의관인 피진정인 3)이 이미 피해자에게 재활하라고 교육한 점, 파견 전 환자에게 직접 재활을 교육한 점, 파견기간 중에 간호장교가 환자에게 재활을 교육한 점, 피해자의 요구가 있으면 동료군의관이 진료를 해 줄 수 있는 점, 명령에 의해 파견근무에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 4)가 객관적으로 환자를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다만, 군의관 간의 인수인계 부분은 파견 및 위로 휴가시 대체근무자 지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병원내 특별한 규정도 없다. 이와 같이 군병원내 군의관 인수인계 규정이 없으면 환자가 담당군의관으로부터 방치될 수 있고, 불의의 사고시 군의관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군병원도 민간 대학병원 등에서 보듯이 철저한 인수인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료공백으로 인한 환자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4. 결론

가. 진정요지 제 가.항 및 나.항

진정내용이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할 것을 결정한다.

나. 진정요지 제 다.항

진정인의 주장대로 피진정부대에서 악의적으로 의료조치를 미뤘다던지, 군의관이 환자를 방치하였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으나,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군의관이 파견・연수 등으로 환자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시 임의적으로 환자를 인수인계 한다면 진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적 피해는 한번 발생하면 그 회복이 상대적으

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원환자인수인계 등 환자관리시스템을 보완하여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9.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4 07진인1198 [의료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7. 7. 9. 결정

피해자가 5명의 군의관을 거치면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 병실에서 쓰러지게까지 한 사건에 대하여 군의관 책임 부분은 위원회 조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 국민들이 국방의료 수준에 거는 기대에 못 미치는 행위이며, 환자 후송과정에서 운송수단이 부족하여 후송이 지연된 것은 군인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군내부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 7) 개인의 의료과실 부분은 위원회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1차 의료기관이라 볼 수 있는 대대 및 「급 의무대를 거쳐, 2차 의료기관이라 볼 수 있는 사단의무대, 3차 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군병원에 이르기 까지 5명의 군의관이 진료를 하면서 전부다 내과적 접근만 하고 뇌수막염을 의심하지 못한 것은 오진여부를 떠나 군 의료수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음 따라서 군 의료수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이와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군내부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진정인▐ 최○○, 피해자의 형

▌피해자▐ 최○○ (육군 ○사단 전역후 국군수도병원 체류치료 중)

▌피진정인▐ 1) 권○○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 조교, 병장)/황○○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대위)
2) 양○○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 군의관, 중위)
3) 이○○ (육군 ○사단 ○○연대 군의관, 중위)
4) 남○○ (육군 ○사단 ○○연대 군의관, 중위)
5) 김○○ (육군 ○사단 의무대 군의관, 대위)
6) 윤○○ (육군 ○사단 의무대장, 중령)
7) 이○○ (국군○○병원 내과군의관, 대위)

▌주 문▐ 1. 국방부 장관에게 진정요지 나. 와 관련하여 환자 후송과정에서 운송수단 부족으로 진료가 지연되는 등 의료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과 군의료수준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부대측의 진료지연 주장에 대하여는 기각하고, 군의관 개인책임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가. 피해자는 입대전 특별히 병원에 다닌 경험도 없이 신체건강했고 신체검사 1급으로 2006. 6. 27. 입대하여 피진정기관에서 신병교육 중 결핵 등에 의한 뇌수막염이 발병하였다. 이과정에서 피진정인 1)이 감기 가지고 뭐 그러는냐고 진료를 제한했고, 어렵게 피진정인 2)에게 진료를 받았으나 피진정인 2)가 3차례에 걸쳐 똑같이 감기 처방만 한 것은 오진이다.

나. 피해자는 몸이 아픈 가운데 수료식까지 마치고 ○○연대 ○○중대에 배치된 후에도 열이 계속 나 피진정인 3)을 거쳐 2006. 8. 7. 피진정인 5)에게 외진을 갔는데, 피진정인 5)는 뇌수막염을 발견치 못하고 동년 8. 8. 피진정인 7)에게 후송할 것을 조치한 후 입원을 시켰으나 피진정인 6)이 외진버스 출발전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대로 돌려보냈고, 피해자는 자대에서 다시 열이 나서 피진정인 4)를 거쳐 다시 피진정인 5)에게 갔는데, 피진정인 5)는 응급후송을 하지 않고 2006. 8. 10.이 되어서야 피진정인 7)에게 진료를 받게 하였는바, 이는 오진 및 의료접근권 침해이다.

다. 피진정인 7)은 2006. 8. 10. 진료시, 군병원 전문의이고 기존 의무기록등을 검토하였음에도 뇌수막염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과적 처방만 하다가 환자가 새벽에 쓰러지게 만들어 병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요지 가. 관련

1)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 1) 권○○(육군 ○사단 신병교육대 조교, 병장), 황○○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대위)의 주장

신병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환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열외 시킬 수만은 없는 입장이었고 교육 초기에 환자파악시 피해자가 환자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 조기 식별이 힘들었으며, 4주차부터는 감기몸살을 호소하여 군의관 진료조치 하였고 피해자의 진료신청은 묵살하지 않았다.

3) 피진정인 2) 양○○ (육군 ○사단 신병교육대 군의관, 중위) 진술

신병들은 교육훈련 관계로 보통 일과 후 18:00경 부터 취침 전 20:00전에 진료를 받는데 약 2시간에 50여명의 환자가 찾아와 1인당 3분 이하의 진료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 신병교육대 의료 서비스의 현실이다. 최소 2명의 군의관과 의료기기가 확보된다면 더욱 성심껏 진료할 수 있을 것 같다. 대대급 군의관이 열악한 장비 등으로 뇌수막염을 구분해 내기는 쉽지 않다.

나. 진정요지 나. 관련

1)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 3)이○○ (육군 ○사단 ○○연대 군의관, 중위)의 주장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예하부대 군의관으로서 뇌수막염을 구분하기는 어렵고 사단의 무대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 했으며 성의껏 진료하였다.

3) 피진정인 5)김○○ (육군 ○사단 사단의무대 군의관, 대위)의 주장

뇌수막염때 보이는 뇌수막자극증상, 두통, 의식저하, 백혈구증가증, 저혈압 등 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소견만으로 뇌수막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뇌척수검사를 시행할 만큼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4) 피진정인 6)윤○○ (육군 ○사단 의무대장, 중령)의 주장

당시 지휘관이 아니어서 답변이 곤란하지만, 환자 후송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5) 피진정인 3)남○○ (육군 ○사단 ○○연대 군의관, 중위)의 주장

환자를 보고 상태가 안좋아 바로 사단의무대로 인솔하여 조치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치료적 조치가 아닌 단순 인솔이었다.

다. 진정요지 다. 관련

1)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진정인 7)이○○ (국군○○병원 외과군의관, 대위)의 주장

기본적 데이터 확인결과 뇌수막염 의심할 만한 것 없었고 성의껏 진료중 이었다. 입원 첫날 쓰러졌기 때문에 본인의 과실을 논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3. 관련 법령

생략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 관련

1)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대학재학중 2006. 6. 27. 신체검사 1급으로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연천) 신병교육대에서 2006. 8. 4. 까지 5주간 신병교육을 받았다.

나) 피해자는 교육시작 13일 정도가 지난 2006. 7. 15. 최초로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피진정인 1)등이 "오늘 진료를 안받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만 진료받아라." "머리 아프다고 ? 그러면 대가리 밖아(농담조)"등의 말을 하는 바람에 제대로 진료신청을 하지 못하다가, 2006. 7. 25. 에서야 피진정인 2)에게 첫 진료를 받고 7. 31. 및 8. 2. 2차례에 걸쳐 추가 진료를 받았다.

다) 피해자의 동기생 장○○, 오○○은 "○○이는 혼자 참아내는 성격이었으며 부대내 구타나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문○○은 "○○이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조교들이 농담조로 그럼 대가리 밖아."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왕○○은 "오늘 의무대 안가면 죽을 것 같은 사람만 가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의무대 조교 문○○는 "항상 환자들이 많았고 정해진 시간안에 진짜로 아픈 환자를 치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는 필요한 입장이었고, 2번이상 아프다고 한 환자들은 바로 조치했으며, 우리 기수에서 매일 15~20여명의 환자를 군의관에게 데려갔고 군의관은 환자에게 성의껏 진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군의관 양○○는

“조교에게 너무 많은 환자를 데려오지 말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너무 많은 환자가 찾아오면 정작 아픈 환자 치료시간이 부족하여 어쩔수 없는 조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진정인 2)는 환자에 대하여 3차례 진료시 결핵이나 뇌수막염은 의심하지 못하고 감기 처방만 했으며, “대대급 의무실에 특별한 장비가 없어 뇌수막을 진단 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 “신병교육대 1기수 인원이 200명으로 통상 3개기수 600여명의 병사중 일과 후 취침전 50여명씩 의무실을 찾아와 1인당 3분이하의 진료를 받는게 현실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바) 국립○○원 신경과 전문의 고○○은 “일반 의사라 하더라도 뇌수막염을 구분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신병교육대 군의관 조치의 타당성을 논하기는 어렵다. 다만, 조금 더 빨리 상급의료기관에 보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자문하였고, 환자를 직접진료한 의정부○○병원 유○○ 교수는 “환자의 경과가 비정형적 이어서 군 병원에서 신속한 진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 이라고 자문하였다.

사) 국방부는 “군의관의 오진 여부는 개인 책임을 논하기에 타당하지 않고 법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2) 판단

피진정인 1)이 군의관 진료를 제한했다는 주장은 신병교육을 시키는 교육대 지휘관 및 조교로서 환자를 우대할 수 만은 없는 입장인 점, 한 개 기수에서 매일 15~20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았고 의무대 군의관 1명이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악의적으로 진료를 제한했다고 볼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진정인 2)의 의료 과실 부분은 국방부 및 제3기관 자문결과 의료전문영역에 해당하므로 위원회 조사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 관련

1)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신병교육대에서 완전군장 행군까지 마치고 2006. 8. 4. 신병수료식 후 사단내 ○○연대 ○○중대(이후 ‘자대’로 표기)로 배치되었다.

나) 자대에 배치된 후에도 고열 및 두통이 있어 피진정인 3)에게 진료를 받고 2006. 8. 7. 피진정인 5)에게 외진을 받았으나 피진정인 5)는 위장염 진단을 내리고 다음날인 2006. 8. 8. 상급 의료기관인 국군○○병원 후송처방 및 입실조치를 해 피해자는 2006.

8. 8. ○○병원 후송을 가려 하였으나 버스에 자리가 모자라다는 이유로 후송을 가지 못하고 자대로 복귀하였다.

다) 피해자는 자대에 대기 중 고열로 피진정인 4)에게 진료를 받고 사단의무대에 하루 대기하다가 2006. 8. 10. 에서야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

라) 국립○○원 신경과 전문의 고○○은 "사단 군의관은 장염의증으로 치료하였는데 환자의 당시 상태가 장염으로 볼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2주 이상 지속적인 발열, 오심을 동반하는 두통이 계속 있었다면 이 시기부터는 뇌수막염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고 본다. 여기서 두통의 상태가 중요한데 의무기록에 두통으로만 되어있지 그 정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사단 군의관 조치의 타당성을 논하기는 쉽지 않고 연대급 군의관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2) 판단

피진정인 3) 4) 5)의 의료 과실 부분은 전항의 판단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 판단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각하하나,

피해자가 군병원 후송과정에서 운송수단이 부족하여 자대로 복귀하였다가 이틀 후에서야 후송된 것은 헌법 10조(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의료권 중 적시·적기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한다.

다. 진정요지 다. 관련

1) 인정사실

가) 국군○○병원 이○○ 군의관(피진정인 7)은 2006. 8. 10. 11:09경 환자를 인계받아 폐결핵관련 검사 및 X-ray, 가슴 CT 검사 등을 하고 경과 관찰 중이었으나 피해자는 당일 23:00경 왼쪽 팔과 양 다리에 마비증세를 보이며 병동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나) 피진정인 7)은 20:00경 퇴근하였다가 23:05경 긴급 복귀하여 당직군의관 등과 함께 뇌CT 및 MRI 촬영후 인근 의정부 ○○병원에 협진하였고 ○○병원은 2006. 7. 말경부터 결핵성 뇌수막으로 인해 뇌경색이 진행된 것으로 진단하였다.

다) 피해자는 2006.9.15.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하여 2007.1.18. 장애6급, 보상 3급으로 의가사 전역하였고 이후 6개월간 체류 치료중이다.

라) 국립○○원 신경과 전문의 고○○은 "저나트륨혈증 및 급성위장염 의증으로 치료하고 폐결핵을 포함한 기타 검사를 진행중이었다. 진료기간이 하루 남짓으로 너무 짧아

군의관 조치의 적절성을 논하기는 어렵다.” 고 자문하였고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정부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유○○은 “환자의 질환이 그 원인을 구분하기 어렵고 경과가 비정형적이어서 군 병원에서 신속한 진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고, 군 의무시설을 고려해 볼 때 본 환자와 같이 까다로운 환자를 진료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자문하였다.

마) 국방부 보건정책팀은 군의관 과실 및 오진부분과 관련하여 “군의관의 오진 여부는 개인 책임을 논하기에 타당하지 않고 법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라고 답변하였다.

2) 판단

피진정인 7) 개인의 의료과실 부분은 위원회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1차 의료기관이라 볼 수 있는 대대 및 연대급 의무대를 거쳐, 2차 의료기관이라 볼 수 있는 사단의무대, 3차 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군병원에 이르기 까지 5명의 군의관이 진료를 하면서 전부다 내과적 접근만 하고 뇌수막염을 의심하지 못한 것은 오진여부를 떠나 군 의료수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군 의료수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이와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군내부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5. 결론

피해자가 5명의 군의관을 거치면서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 병실에서 쓰러지기까지 한 사건에 대하여 군의관 책임 부분은 위원회 조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명 일반 국민들이 국방의료 수준에 거는 기대에 못 미치는 행위가 명백하며 더군다나 환자 후송과정에서 운송수단이 부족하여 후송이 지연된 것은 군인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으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진료지연과 관련한 진정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고 군의관 개인책임 부분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할 것을 결정한다.

2007. 7. 9.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5 07진인4881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8. 2. 13. 결정

[1] 국군○○병원장에게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할 때에 대상자에 대한 보호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권침해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2]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할 때에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고, 관련 지침이 군병원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환자를 강박한 때에는 의료진은 환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및 정신적 손상을 예방하여야 하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격리 및 강박의 조치를 취할 때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격리 및 강박 지침이 그대로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위 지침에 정하여진 바대로 활력징후(vital sign)를 매시간 마다 점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이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기 전후에 이를 진정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격리 및 강박의 조치를 시행하면서 위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격리 및 강박 지침상의 환자 보호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제10조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적절하게 진료를 받을 권리인 의료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의료법」, 「정신보건법」, 「격리 및 강박지침」

▌진정인▐ 박○○

▌피진정인▐ 정○○

▌주 문▐

1. 국군○○병원장에게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할 때에 대상자에 대한 보호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권침해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할 때에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고,

관련 지침이 군병원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3. 기타 진정요지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이 2006. 9.경 국군○○병원 정신과에 입원치료 중 장기입원에 동의할 수 없어 피진정인을 위협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48시간 동안 강박(묶어놓는 행위) 및 72시간 동안 격리를 시킨 조치를 취하였다. 피진정인의 이러한 조치는 의료행위가 아닌 처벌을 목적으로 한 불법 감금행위로서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이 2006. 9. 18. 오전 10시경 피진정인에게 "자신은 정상이다. 퇴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여 피진정인은 "심리평가 결과가 나오면 입원연장 여부 등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면담을 마쳤다. 그런데 면담실을 나간 진정인이 병실에서 갑자기 뒤돌아 주먹으로 다른 환자를 보기 위해 뒤따라 나간 피진정인의 얼굴을 2회 정도 가격하고, 빗자루로 피진정인의 가슴을 3~4회 정도 가격하였다.

2) 이에 따라 피진정인은 자신과 간호진 및 의무병에 대한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정인에 대하여 사지 강박 및 격리(강박 48시간, 격리 72시간)의 조치를 취하였다. 피진정인의 이러한 조치는 적절하였으며 환자인 진정인에 대하여 그 밖의 행정적 및 형사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3) 군병원 정신과에 대하여 별도의 격리 및 강박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일반적인 격리 및 강박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격리 및

강박의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환자인 진정인에게, 그 이후에는 진정인의 가족에게 그 이유를 설명했으나 이에 관하여 별도의 기록을 남기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시행일지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고 간호기록 및 군의관 의무기록에 기록을 하였다.

다. 관계인

1) 이○○ (당시 현장목격 간호장교)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폭행한 후 진정제 주사를 맞고 약 2시간이 지나 안정되었고 당일 오후 시간에는 수면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이후에 진정인을 방문하여 면담 및 관찰을 하였다.

2) 국군의무사령관

국군병원에 적용되는 별도의 "격리 및 강박지침"은 없으며, 국군병원도 법정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 및 「정신보건법」 적용을 받아 일반적인 격리 및 강박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대학재학 중 2005. 8. 16. 입대하여 같은 해. 10. 20. 미○사단에 복무하다 2006. 1. 부대훈련시 사복을 착용하고, 부대기를 흔들며 미군에게 "이라크에 가서 죽어버려라"를 영어로 어떻게 말하느냐고 물어보는 등의 언행을 하여 2006. 8. 22. 국군○○병원에서 피진정인에게 진료를 받았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정신분열(의증) 진단을 내리고 2006. 8. 24. 진정인의 모의 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정신과 병동에 입원을 시켰다.

나. 피진정인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정신보건법」 상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할 자격이 있는자이며, 2005. 4. 군의관으로 임관하여 2006. 4.부터 국군○○병원 정신과에 근무 중이다.

다. 피진정인은 2006. 9. 18. 오전 10시경 진정인과 면담을 마친 후 진정인이 자신을 폭행하자 현장에 있던 간호장교와 의무병의 도움을 받아 진정인을 보호실로 데려가 격리(72시간) 및 사지 강박(48시간)을 시행하였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조치 이외에

진정인에 대하여 별도로 행정적(영창등 징계)조치나 형사적(고소)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격리 및 강박지침'을 피진정인이 지키지 않았다는 진정인의 주장과 이를 지켰다는 피진정인의 주장 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적용기준 및 원칙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진료기록 등
자해 또는 타해 위험환자 진정목적 시행	보복성 조치임	원칙에 부합	지속적 폭력 가능성 높아 시행
반드시 주치의 지시에 따라 시행. 불가피성 및 다른 방법이 없는지 재검토 한 후 시행	보복성 조치임	원칙 및 기준에 부합	피진정인은 전문의 이며 주치의 임. 강박은 불가피 했음
시행전과 시행후 그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	들은 것 같기도 함	기본이며 설명했음. 기록을 남기진 않음	기록에 남아있지 않음
체벌방법으로 시행해서는 안됨	체벌성 조치임	병식(자신의 병에 대한 인식)이 없음	시행후 만료기간인 48시간 직전까지 잘못없다고 주장, 강박 해제직전 잘못인정
치료진이나 병동편의를 위해 시행해서는 안됨	치료진 편의위해 시행했음	치료진 안전확보가 필요했음	강박 시행시 이빨로 물려고 함
간호일지에 시행이유, 당시 환자상태 및 방법에 대하여 기록하며, Vital sign을 매1시간 마다 점검하고 혈액순환, 땀 등을 확인하며 이상시 즉시 보고해야함	지키지 않았음	적절히 지켰음	Vital sign 4시간 마다 기록(활력징후 측정표), 간호기록 2시간 ~ 2시간 30분 마다 기록
환자에게 2시간 마다 사지운동을 시켜야 하고, 수시로 대소변을 보게 하고 적절하게 음료를 공급해야함	대체로 인정	적절히 지켰음	간호장교가 대소변 권하고 사지운동 확인함

마. 간호장교는 "환자가 진정제 주사주입 후 약 2시간이 지나 안정 되었고, 당일 오후에는 수면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며, 간호기록에는 "신체저항은 심하지 않다.", "진정되어 있다.", "저항적 행동 관찰되지 않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진정인은 48시간 강박되어 있으면서 취침시간을 제외하고 간호장교가 올 때마다 약 8회에 걸쳐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간호장교는 군의관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요구사항을 보고한 바 없다. 진정인에 대한 간호기록에는 "내일(정해진 시간)까지 억제대 유지될 것을 설명"으로만 기록되어 있다

바. 진정인은 격리 후 24시간이 지난 다음날 아침 피진정인이 찾아와 "어제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잘못한 게 없다"고 답했으며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알아서 하라"고 하며 돌아갔다. 진정인은 또다시 24시간이 지난 다음날 아침에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피진정인의 물음에 대하여 "잘못했다"고 답한 이후 피진정인의 사과요구를 듣고 "사과한다"고 답하였다. 그러자 피진정인은 강박을 풀어주면서 24시간 추가 격리를 지시하고 돌아갔다(이상은 진정인의 진술에 의함). 한편 강박 후 48시간 동안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진료한 내용은 군의관경과기록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판단

가. 진정인에 대한 격리 및 강박행위가 인권침해인지 여부

정신보건법상 '강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46조에 규정하는 '격리'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여 '강박'의 근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박수혁·박영범 공저, 신정신보건법, 2007. 서울시립대학교출판부, 136면). 이러한 격리 및 강박행위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 일종의 '구속'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의사가 격리(강박) 이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정신보건법」 상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군의관이며, 진정인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당했고, 진정인은 계속하여 위해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이후 진정인을 찾아가 면담 등의 진료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취한 격리 및 강박의 조치는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또한 적합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조치가 자신의 폭행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불법감금행위에 해당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할 때의 환자 보호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강박은 환자의 신체운동을 제한하는 행위로 손목이나 발목을 강박대로 묶어 침대 등에 고정시키는 치료행위이므로 환자에게 제2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외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강박한 때에는 의료진은 환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및 정신적 손상을 예방하여야 하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격리 및 강박의 조치를 취할 때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격리 및 강박 지침이 그대로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위 지침에 정하여진 바대로 활력징후(vital sign)를 매시간 마다 점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이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기 전후에 이를 진정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다. 이는 격리 및 강박의 조치를 시행하면서 그 방법 및 환자의 상태 등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정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상황은 관련 지침에 따라 상세히 시행일지 등에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격리 및 강박의 조치를 시행하면서 위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격리 및 강박 지침상의 환자 보호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적절하게 진료를 받을 권리인 의료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1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신혜수 위 원 윤기원

6 08진인167 [의료조치 소홀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08. 8. 7. 결정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육군 ○군작전사령관에게 피진정인 4에 대하여, 육군 ○○중앙군사학교장에게 피진정인 3에 대하여 각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피해자는 소프트볼 연습 중 부상을 입었을 때 및 전기감전 사고를 당했을 때 이병 및 일병으로 갓 진급하여 자신에 대한 의료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계급적 위치가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 3은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료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 4의 경우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이 2007. 4. 16. 추가적인 병가를 신청했을 때 수술을 할 경우가 아니면 추가 병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를 불허하였는데 병사의 경우 병가가 수술의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 점 및 피해자의 부상정도 및 치료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병가의 허용여부를 결정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진정인 4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병가 신청을 불허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한 피해자의 의료접근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진정인▐ 김○○(피해자의 형)

▌피해자▐ 김○○

▌피진정인▐ 1. 민○○
2. 이○○
3. 김 ○
4. 김○○
5. 국군○○병원장
6. 국군○○병원장

▌주 문▐ 1.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육군 ○군작전사령관에게 피진정인 4에 대하여, 육군 ○○중앙군사학교장에게 피진정인 3에 대하여 각각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1, 2에 대한 진정을 기각하고, 피진정인 5, 6에 대한 진정을 각하한다.

▌이 유 ▐

1. 진정의 요지

가. 진정인의 동생인 피해자는 육군 ○군지원사령부 ○○경자동차대대에서 복무하던 2007. 3. 22. 부대 내에서 소프트볼 연습을 하던 중 선임병인 피진정인 1이 던진 야구방망이에 맞아 근육파열이 생기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병원진료를 받았고, 7일간 병가를 얻어 치료를 하였다. 피해자는 병가를 마치고 2008. 4. 16. 부대에 복귀하여 추가적인 병가를 요구하였으나 대대장인 피진정인 4는 수술이 아니면 안 된다며 병가를 불허하여 적절한 수술 및 치료를 받지 못해 현재 대퇴부골화근육염을 앓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은 피진정인 4가 병가를 불허해 수술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다. 행정보급관인 피진정인 2는 당시 수술을 받지 못해 부대에서 요양 중이던 피해자에게 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전기작업을 시켜 감전사고를 당하게 하였다. 감전사고 직후 피진정인 3은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주지 않았고, 진정인 가족들에게 감전사고에 대하여 통보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 3은 피해자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현수를 그냥 안 둔다. 두고 보자.”라고 협박하는 등 무례를 저질렀다. 이에 진정인 측에서는 위의 사실에 대하여 육군본부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피진정인 4는 위 민원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부모를 불러 “피해자 치료에 최선을 다 할 테니 올린 글을 삭제해 달라.”고 하였고 피진정인 3이 사과를 하여 글을 삭제했으나 피진정인 3 및 4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특별히 조치해 준 것이 없다.

마. 국군○○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에 대하여 담당군의관이 오진을 하고 치료를 해태하였으며, 이후 후송된 국군○○병원에서도 치료를 해태하였는데 이는 피진정인 5 및 6의 책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민ㅇㅇ, 같은 부대 선임병, 현재 전역)

부대 체육대회를 위해 소프트볼을 연습하던 중 피진정인 1이 방망이로 공을 치는 순간 뒤에서 공을 집고 있던 피해자가 방망이에 맞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는 서로의 실수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2) 피진정인 2(이ㅇㅇ, 같은 부대 행정보급관)

2007. 7. 19.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선회수 작업을 지시하였다. 안전교육 및 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감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인정한다. 이로 인하여 부대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유예' 처분을 받았다.

3) 피진정인 3(김 ㅇ, 같은 부대 중대장, 현재 ㅇㅇ중앙군사학교에 근무)

소프트볼 연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부대 측에서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2007. 7. 20. 피해자의 어머니가 전화로 불손한 말을 하여 피진정인 3도 무의식적으로 대답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7. 7. 22.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였고 어머니도 이를 받아들여 원만히 합의되었다. 진정인은 소프트볼 사고가 발생한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병원에 가길 원치 않았고 감전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늦은 시간이어서 다음 날 병원에 보내준 것이다.

4) 피진정인 4(김ㅇㅇ, 같은 부대 대대장, 현재 ㅇ군작전사에 근무)

방망이에 의해 부상을 당한 피해자는 부상을 당한 다음 날 205 이동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진료 결과 특이소견이 없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여 2008. 4. 2. 국군ㅇㅇ병원에서 외진을 받았는데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피해자에게 2007. 4. 7. ~ 4. 8. 피해자 부모의 요청에 따라 민간병원 진료를 시켜주었으며, 2007. 4. 9. 국군ㅇㅇ병원 재진료 시 민간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 4. 10. ~ 4.

16.간 병가조치를 해주었다. 피해자는 2007. 4. 16. 부대에 복귀하여 피진정인 4에게 추가로 병가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병가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진정인 측에서 군의관 소견서를 가지고 와서 추가적으로 병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부대 내 가료 및 외진 조치를 해주었다.

2007. 7. 20. 20:00경 피해자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로 받고 2007. 7. 19. 부대 내에서 전기감전사고가 발생했던 것을 인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3에게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전기작업 중 쇼크를 받았으나 사건 당일은 진료시간이 종료된 시점이어서 7. 20. 외진을 실시하였으며, 이동외과 및 국군○○병원 진료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소견이 있어 대대장에게 미보고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5) 피진정인 5(국군○○병원장)

피해자는 2007. 4. 2.부터 2007. 7. 30. 입원하기 전까지 정형외과에 다섯 차례 외래진료를 받았다. 이때 담당군의관은 4명이었는데 외래진료는 담당군의관이 따로 정해지지 않으며 입원 후에는 담당군의관(박○○)이 전문으로 진료하였다. ○○병원 입원 중 약물요법, 물리치료 및 MRI 촬영(2회)을 실시하였으며 피해자의 좌대퇴신경통이 지속되고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 상급병원인 국군○○병원으로 2007. 11. 21. 전원조치하였다. 피해자에 대하여 오진을 하거나 진료를 해태한 사실이 없다.

6) 피진정인 6(국군○○병원장)

피해자는 2007. 11. 21. 군국○○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2007. 12. 28. MRI 촬영을 한 결과 약간 호전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민간병원 교수들에게 자문한 결과 보존적 치료를 더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보호자에게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태였으며, 현재는 민간병원에서 자비로 수술을 받은 상태이다. 당시 군의관 정○○(현재 ○○대 정형외과)는 동료 군의관 및 모교 교수님 등에게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상의하였고 그 결과 모두가 수술적 치료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어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보호자는 수술적 치료를 원해 2008. 2. ○○대 병원으로 외진을 보내주었고 이곳에서도 국군○○병원의 의견과 일치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다. 관계인인 국방부 의료정책과 주장요지

군인의 병가 등에 관한 규정인 '군인복무규율'을 살펴보면 장기복무하사 이상의 군인은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그 병가기간이 한정되지만, 일반 병사는 질병의 정도에 따라 군의관이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조치되는 것으로 굳이 수술의 경우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3.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들에 대한 조사결과, 관계인의 주장요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7. 3. 22. 오후 3시 경 소속부대 내에서 소프트볼 연습을 하다가 피진정인 1이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왼쪽 대퇴부를 맞는 사고를 당하였으나 사고 발생 당일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다음 날 진료를 받았다. 2007. 4. 7. ○○○○병원에서 좌측 중둔근 부분파열, 좌측 둔부 근육내 혈종으로 3주간의 치료 및 관찰을 요한다는 진단과 국군○○병원 외진 결과 7일간의 병가가 필요하다는 소견서에 따라 피진정인 3 및 4에게 병가 허가를 받고 7일간 치료를 받았다. 2007. 4. 16. 부대로 복귀하여 향후 2 ~ 3주간의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민간병원의 소견서를 보여주며 피진정인 4에게 추가 병가를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4는 수술의 경우가 아니면 병가를 허가해 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병사들의 휴가 등에 관한 규정인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20282) 제39조의 4(청원휴가)에 의하면 병사의 경우 는 장기복무이상 하사의 경우와는 달리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30일까지 청원휴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진정인 측은 2007. 4. 17. 피해자는 병가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국군○○병원 군의관(지○○)의 소견서를 발급 받았다. 피진정인 4는 추가적인 병가를 허락하지 아니하는 대신 피해자의 내무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동료병사 장○○를 도움이로 지정하고, 2007. 5. 15.까지 경계근무를 제외시켜 주었다.

다. 피해자는 2007. 7. 19. 행정보급관의 지시에 따라 전기선 제거작업을 하던 중 전기(380V)에 감전되어 뒤로 튕겨 나가는 사고를 당하여 손떨림 증세 등이 있었으나 당일에는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였고 다음 날인 7. 20. 15:00경 205이동외과를 거쳐 국군○○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라. 피해자 어머니는 피해자의 전기감전사고 소식을 2008. 7. 20.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 전해 듣고 피진정인 3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묻기 위해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피진정인 4에게 전화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진정인 4는 사고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진정인 3에게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피진정인 3은 피해자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왜 대대장에게 연락하였느냐?"라고 하였고 서로 "그냥 두지 않겠다."며 언성을 높인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 3의 통화내용에 대하여 피진정인의 어머니가 육군본부 감찰에 민원제기를 하자 2007. 7. 22. 피진정인 4는 피해자의 부모를 부대로 불러 민원내용 중사실이 아닌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며 피진정인 3과의 화해를 주선하여 위 통화내용에 대하여 서로 화해하였다

마. 피해자는 2007. 7. 30.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 2007. 11. 21. 국군○○병원(재활의학과)으로 전원 되었으며 2008. 1. 10. 정형외과로 전과되어 보전적 치료를 받다가 2008. 4. 7.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수술(대퇴부 골화근육염 종괴 절제술)을 받고 재활 치료 중이며 2008. 10. 병장으로 제대할 예정이다.

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본 사건에 대하여 행정보급관의 안전규칙 미준수 등에 대한 책임에 대해 2008. 5. 권고를 하였고, 피진정인 1에 의해 야구방망이에 맞은 사건은 서로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해당 부대는 위 권고를 받아들여 2008. 6. 25. 행정보급관인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견책유예'처분을 하였다.

4. 판단

가. 방망이에 맞은 부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진정인 1이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과실로 인하여 야구방망이에 맞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이 현재 전역하였으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감전사고의 부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대 내 전기작업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작업 감독자의 지휘 아래 안전성을 담보하고 진행했어야 하나 피진정인 2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였다가 위와 같은 감전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

나 소속 부대에서 피진정인 2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징계처분(견책유예)을 하였으므로 이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치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 3의 발언 부분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부분에 대하여는 피진정인 3이 사과를 하여 서로 간에 화해가 이루어졌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 의료접근권 침해 부분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소프트볼 연습 중 부상을 입었을 때 및 전기감전 사고를 당했을 때 이병 및 일병으로 갓 진급하여 자신에 대한 의료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계급적 위치가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 3은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료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의료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 4의 경우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이 2007. 4. 16. 추가적인 병가를 신청했을 때 수술을 할 경우가 아니면 추가 병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를 불허하였는데 병사의 경우 병가가 수술의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 점 및 피해자의 부상정도 및 치료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병가의 허용여부를 결정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된다(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장기복무하사 이상 군인은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그 병가기간이 한정되지만 병사의 경우는 수술에 의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 기간도 30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 4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병가 신청을 불허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한 피해자의 의료접근권(모든 사람이 적기·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는 피진정인 3, 4에 대하여 유사행위 재발장지 차원에서 부대 및 장병의 관리를 필요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진정인은 피진정인 5 및 6이 피해자에 대하여 오진을 하고 치료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은 의료전문영역에 해당되므로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한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 32조 및 제39조,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8. 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7 11진인1151 [군대 내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2011. 5. 4. 결정

[1] OO훈련소장에게,

가. 피진정인 1.에 대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폭언 등의 부적절한 언행과 피해자에 대한 관리부실 및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나. 피진정인 2., 3.에 대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관리부실 및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각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 국방부 장관에게, OO훈련소 지구병원의 민간 의료 조치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과 적정하게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배치할 것을 각 권고

[3] OO훈련소장에게,

가.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위해 상급병원으로의 외진 시 관련 의료기록의 송부를 의무화할 것,

나. 보호관심사병 지정 및 관리와 전우조 활동관리 강화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할 것,

다. 응급환자 발생 시 그 조치 및 진료에 대한 교육과 관련 제반 사항들을 정비할 것을 각 권고

▌결정요지 ▐

[1] 피해자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 하였으나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피해자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9조에 따라 군병원급 군의관의 진료와 진단서가 필요했으나, 지구병원은 위 규정의 군병원에 해당되지 않아 민간병원 진료 허가를 할 수 없었던 점, 둘째,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중이염에 대한 진료를 받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민간 병원에서의 진료를 받으려면 대전병원 군의관의 소견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진정인 1.은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료를 위하여, 대전병원 군의관에게 피해자의 요청사항이나 진료기록 등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이는 바, 위 피진정인은 부주의하게 위와 같이 조치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대전병원 군의관 대위 OOO은 피해자에게 이명 증상에 대한 처방만 하였던 점, 셋째, 피해자가 훈련병 신분으로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일정기간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점, 넷째, 피해자가 총 9회에 걸쳐 중이염 관련으로 군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처방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고통을 호소하며 수회에 걸쳐 자신이 신뢰하는 민간 병원의 진료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원하는 치료 조치를 적시에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

여, 훈련소 생활에 정상적으로 적응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판단

[2]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혼을 내며 폭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동을 하였는바, 이는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을 금지하고, 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3] 피진정인 1., 2., 3.은, 피해자가 질병에 따른 고통과 이에 따른 후속행동으로 군 탈영 등 훈련소 부적응의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신병관리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거듭되는 피해자의 진료요구에 대해 진료를 막으려고 했으며, 같은 해 2. 26. 피해자의 외진 예약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왜곡 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절망감과 상실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망에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4] 피해자가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응급조치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고자 발견 시 적절한 응급조치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한 관련 규정들의 준수와 응급조치 관련 제반 사항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참조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군인복무규율」, 「군사고예방규정」,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에 관한 규정」,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OO훈련소 예규 150

▌진정인▐ 강○○(피해자의 삼촌)

▌피해자▐ 故 ○○○

▌피진정인▐ 1. ○○○
2. ○○○
3. ○○○

▌주 문▐ 1. OO훈련소장에게,

가. 피진정인 1.에 대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폭언 등의 부적절한 언행과 피해자에 대한 관리부실 및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나. 피진정인 2., 3.에 대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관리부실 및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각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국방부 장관에게, OO훈련소 지구병원의 민간 의료 조치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과 적정하게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배치할 것을 각 권고한다.

3. OO훈련소장에게,
   가.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위해 상급병원으로의 외진 시 관련 의료기록의 송부를 의무화할 것,
   나. 보호관심사병 지정 및 관리와 전우조 활동관리 강화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할 것,
   다. 응급환자 발생 시 그 조치 및 진료에 대한 교육과 관련 제반 사항들을 정비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조카인 피해자는 OO훈련소 OO교육연대 O중대 O소대 O분대 소속 훈련병으로, 2011. 2. 27. 11:40경 위 훈련소에서 의사자로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중이염에 대한 군의관의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자, 지휘관들에게 민간병원 진료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소속 소대장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중병이 아닌데도 훈련을 기피할 목적으로 진료를 희망한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면서 혼을 냈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이상 징후를 보이는 피해자 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심한 상실감과 절망에 이르게 되었고, 사망 당일 피해자의 행적관리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책임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원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1) OOO (중사)

가)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속해있는 2소대장으로, 피해자가 중이염의 치료를 원하여 군의관의 진찰을 받게 하였는데, 2011. 2. 18. 간호장교 ○○○과의 통화과정에서, 지구병원 군의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피해자가 민간진료를 희망하며 울면서 떼를 쓴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한 것은 아니고, 약물처방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지구병원 군의관의 소견을 듣게 되었다.

나) 이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피해자에게 '민간병원 진료는 안 되니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권유하고 교육대장에게 보고한 후, 같은 달 21. 피해자를 ○○병원 군의관에게 진료 받게 하였다.

다) 피해자가 계속 떼를 쓰며 훈련에 성실히 임하지 않기에, 병영생활상담관에게 상담을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같은 달 18. 상담을 예약하려고 하였으나, 상담관들이 훈련소에서 다른 사단으로 옮긴 상태라 피해자가 상담을 받지 못하였다.

라) 같은 달 21. ○○병원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고 온 피해자가 "군의관은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훈련 열심히 받겠습니다"라고 본인에게 말하였다. 본인은 숙영 훈련에 참가한 피해자가 탈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분대장들에게 피해자를 10분마다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피해자가 이후 훈련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지적한 적이 있고, 같은 달 24. 피해자가 또다시 외진을 요구하여, 분대장에게 "OOO은 중이염으로 앞으로 다시는 외진 보내지 마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듭 진료를 요구하여 의무대에 보냈다.

바) 같은 달 26. 의무대에서 외진 대상자를 통보하였는데, 피해자는 대상자 명단에 없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떼를 쓰며 외진이 맞다고 주장하여, "왜 자꾸 시키는 대로 안하고 떼를 쓰냐. 똑바로 서! 야! 인마! 이 새끼야! 군의관이 문제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가려고 해. 너 앞으로는 귀 아픈 것으로 외진 갈 생각하지 마!"라고 혼을 내었다. 소대장으로서 본인의 잘못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피해자를 포용하고 부드럽게 대하지 못한 점이 후회스럽다.

2) OOO (대위)

가) 피해자는 평소 활발하고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였으며, 동료들과 장난도 많이 치고 떠드는 등 외향적인 성격이었다.

나) 피해자는 각종 검사결과에서도 모두 정상으로 되어 있었고 평범한 가정환경, 학력,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목할 만한 질병을 앓거나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아,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인원(관리 사병)'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다) 같은 해 2. 20.(일) 부대 순찰을 위해 출근하여 12:00경 4중대 점호장 뒤편 주차장에서 중식 식사집합을 하던 피해자와 면담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진정인에게 "귀가 아프니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다"고 하여 "중대장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병원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과 숙영훈련 및 30km 야간 행군 시 단독군장 및 차등제로 조치를 해주는 방법 밖에 없다. 그리고 혹시 다른 곳이 아픈 곳이 있다면 진료를 가서 조금 과장해서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봐라. 혹시 다른 진단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니"라고 답변하자, 피해자가 재차 "다시 집으로 가서 훈련소로 들어오는 방법은 없느냐"라고 물어 "OO이는 현재 규정상 훈련병이 퇴소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그렇게 못한다. 병원에 가서 잘 진료를 받고 와라"고 이야기하였다.

3) OOO (소령)

가) 2011. 2. 18. 피진정인 1.이 '피해자가 지구병원에 다녀왔는데, 외진을 보내 달라고 떼를 써서 면담을 하였다'고 보고하여, 의무과에 확인한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피진정인 1.이 '월요일에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기로 하였다'고 추가 보고하였다.

나) 입소 초 피해자는 어떠한 특이 사항도 발견되지 않아 관심훈련병으로 선정하지 않았고, 이후 병원 진료 결과도 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 선정하지 않았다. 민간병원 진료는 ○○병원 군의관의 소견이 있어야 보낼 수 있어 피해자를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였으나, 진료 결과 군의관의 특이 소견이 없어 피해자를 민간병원에 보낼 수 없었다.

다. 참고인의 주장

1) OOO, OOO (피해자와 전우조)

가) 2011. 2. 27. 8:15경 아침식사를 하고, 8:45~8:50경 집합하여 75명이 기독교 종교행사에 갔다. 피해자와 같이 이동하여 예배를 드렸고, 예배가 끝난 후 집합하여 인원파악을 한 다음 막사로 돌아왔다.

나) 막사에 도착해서 건물 앞에서 부식을 받으면서 막사로 입장하였고, 부식을 받고 생활관에 복귀했을 때 피해자는 부식을 이미 먹고 있었다. 약 5분쯤 지난 후 우리는 98번(열외)을 제외한 분대에 있는 9명이 "3명을 정해서 쓰레기를 버리자"라고 하여 쓰레

기를 수거했고, 그 이후 피해자를 본 분대원은 없었다.

다) 쓰레기를 버리러 3명이 나간 다음에 OOO과 함께 화장실(우측)로 가서 소변을 보고, "OO이가 안 보이는 것 같다, 찾아보자"고 한 다음, 화장실에서 3소대까지 피해자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OOO 병장(당직 분대장)에게 전우조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적발되었다. OOO이 위 OOO병장에게 'OO이가 안 보여서 찾고 있었다'고 보고를 했지만, 위 OOO병장은 그 의미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참고인들에게 얼차려(엎드려) 기합을 주었다.

라) 분대로 들어와 약 15분 정도 지난 후 위 OOO병장이 피해자를 다급히 찾았고, 참고인들에게 "왜 없어졌는데 보고를 안했냐"고 하여 "아까 보고 했습니다"고 대답하자, "자기가 잘못 이해한 거 같다"고 하였다. 2~3분 쯤 지나 OOO 일병과 위 OOO병장이 피해자의 관물대를 뒤지며 수양록, 편지, 수첩 등을 찾았다.

마) 피해자는 평소에 굉장히 밝은 애였고, 장난기도 많고 웃음이 많은 친구였는데, 언제부턴가 '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의무실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으나 호전이 없었고, 다시 의무실과 지구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했으나 계속 호전되지 않자, 그 때부터 짜증을 내고 힘들어 했다. 피해자는 '힘들어서 유급하고 싶다, 퇴소하고 싶다'고 피진정인 1.과 분대장에게 얘기한 것 같고, 이후 외진을 갔는데 군의관이 '오지마라'고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그 때부터 밝은 모습보다 불만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다.

바) 같은 달 21. 숙영지 훈련 시, 피해자는 "ㅇㅇ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자기는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문제없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사) 같은 달 26. 피해자는, "자기가 외진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통보 없이 피진정인 1.이 취소한 것 같다"고 말하였고, 총검술시간에 피해자와 위 피진정인 1.과 얘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내용은 알 수 없었으나 위 피진정인이 고함치는 것을 보았다.

아) 피해자는 귀가 아픈 2주차 때부터 사망 직전까지, "죽고 싶다, 답답하다, 탈영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같은 분대원들도 훈련받으면서 자주, '힘들고 죽고 싶다, 탈영하고 싶다, 군대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곤 하여, 피해자도 장난으로 말하는 줄 알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자) 피해자는 귀가 아파 진료를 받았지만 좋아지지 않고, "의사는 귀에 이상 없다고

하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귀가 정말 이상이 있어서 그런데"라고 하면서 많이 괴로워했으며, "군대에 와서 아프니까 서럽다", "자대에 가서도 낫지 않을 거 같다"고 생각했고, "제대한 다음에 귀에 장애가 생길 것 같다"고 하면서 답답해했다. 그런 것이 쌓여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정신병이 생겨 자살한 것 같다.

2) OOO(훈련병)

가) 피해자는 활발하고 동기들과 잘 어울렸으며, 장난기가 많은 훈련병이었다. 자신이 아플 때만 낮은 수준의 훈련을 받았고, 다른 때는 성실하게 훈련을 잘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중이염으로 아픈 것보다는 "귀가 멍하고 잘 안 들려 훈련받기 힘들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그 점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나) 피해자는 부대생활 자체가 통제되고 제한적이어서 이로 인한 불만이 있었고, 병원에 가고 약을 먹었으나 차도가 없이 계속 귀가 이상하여 더 큰 병원에 갔으나, 담당 군의관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고 말하였다.

다) 피해자의 전우조에게 들은 말에 따르면, 분대장과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의사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병원에 자꾸 가려하느냐'고 질책하였고, 피해자를 질책할 때 기합을 주거나 구타를 하지는 않았으며, 말로 호통을 치고 훈계하였다고 한다.

라) 피해자 사망 후에 그 경위에 대해 피해자 전우조와 이야기해 보았는데, 피해자가 훈련소 입소 1~2주차에는 굉장히 명랑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의 변화가 있었고, 특히 좋아하다가 갑자기 시무룩해지는 조울증 증세를 보였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하였다.

마) 훈련병 생활 중, 피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제한을 받고 통제받는 상황에 대해 "죽고 싶다"고 한 적이 있고, 또한 귀가 먹먹하고 훈련이 고될 때 "죽고 싶다"는 말을 하곤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전우조인 훈련병에 의하면, 같은 해 2. 21. 야외훈련 시 숙영을 할 때, 피해자와 탈영을 하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훈련을 마치고 곯아 떨어져 하지 못했고, 이후 부대 복귀 후에는 기회가 없었다고 하였다.

바) 이외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나 구타 등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통상 훈련소에서는 아프다고 하면 근본적인 처방이나 치료를 하지 않고 진통제를 주는데, 예를 들어 사랑니가 나서 통증을 호소하면 진통제를 주고, '발치는 자대 배치되어 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다.

3) OOO(최초 발견자)

가) 2011. 2. 27. 사건 당일 11:40경 전우조 중 1명이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여 3명이 같이 화장실에 갔다. 본인은 편지를 쓰려고 벽 쪽으로 향했는데, 배관 철문이 열려 있고 그 사이로 야상(군인들이 입는 겉옷)이 보여 다른 전우조에게 얘기하자, 그 훈련병이 철문을 열고 사망자가 있음을 확인했다. 피해자 발견 당시, 눈보다 약간 위쪽 높이로 피해자의 얼굴이 보였고, 피해자의 눈은 감겨 있었으며 혀가 약간 나와 있었다. 발견할 당시 화장실에서 다른 소리를 듣거나 피해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 곳에 다른 사람이 드나들지는 않았다. 발견하자마자 바로 당직병에게 신고하였고 이후 OOO 소대장이 왔다.

나) 날짜는 모르겠으나 제식 훈련 시 다른 훈련병들은 앉아있는 상태에서,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불러내어 "야! 임마. 외진이 없다는데 왜 자꾸 있다고 하냐"고 혼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4) OOO(사건당일 당직사관)

가) 2011. 2. 27. 9:00경부터 익일 8:00경까지, 1교육대 4중대 당직사관으로 훈련병 등의 인원을 통제하고 시간 계획에 의거 부대 출입을 통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같은 날 9:00경 당직 근무를 시작하여, 10:00경 종교 행사 참여 인원을 파악하고, 10:30경 당직회의를 한 후 막사에 도착하여 중대 당직병 병장 OOO 외 3명에게 회의 결과를 전파한 다음, 3층 배수로 점검을 위해 올라가 정비하던 중인 11:40경, 위 OOO으로부터 '피해자가 화장실에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사고발생보고를 받아 사고 발생을 알게 되었다.

다) 당시 급히 사건 현장인 화장실로 이동해 육안으로 보니, 피해자의 얼굴이 창백하고, 혀가 돌출되어 축 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응급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대장, 교육대장, 소대장에게 휴대전화로 사실을 알렸으며, 위 OOO에게는 연대지휘통제실과 의무실에 연락하도록 지시하였다. 평소 응급구호방법을 소대원들에게 교육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상태로 보아 일체의 미동이 없는 등 사망한 상태로 보여 상황보고를 하고, 사체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대지 않았다.

라) 통상 전우조 활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당시에는 종교행사로 임시전우조로 관리되었고, 기독교 종교행사 참여 인원만이 복귀한 상태로 전체적인 인원파악이 잘 안 되는 등 관리상의 허점이 있었으며, 분대장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행방에 관한 사전보

고를 받지 못했던 바, 당직사관으로 지휘감독 책임은 일정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마)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타나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고, 다만 중이염을 위한 치료문제로 피해자가 담당 소대장, 분대장에게 여러 차례 병원 진료를 요구하면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5) OOO(사건 당일 당직병)

가) 2011. 2. 27. 11:30경 당직 근무 중이었는데, 전우조 3명이 항상 동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중대 2소대 3~4분대 사이 복도에 훈련병 2명(99번과 101번)만이 같이 있어, "전우조 활동을 왜 안하느냐"고 하니까 위 훈련병들이 의기소침하게 우물쭈물 대답하여, 질책을 하고 2~3분간 엎드려뻗쳐 얼 차례를 준 다음, 위 훈련병들에게 '생활관으로 들어가 전우조 활동을 하라'고 하였다. 당시 위 훈련병들로부터 피해자가 없어졌다'거나 '피해자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여, 피해자가 없어진 줄 몰랐고 그래서 피해자를 찾을 생각을 하지 못했으며, 당시 일을 당직사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나) 같은 날 11:38경, 즉 위 훈련병들에게 지적을 하고 약 10분 경과 후, 89, 90, 91 번 훈련병이 화장실에서 전우조 활동(한 명이 용변을 보고 다른 2명은 화장실에서 대기)을 하다 화장실 내 배관부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본인에게 "훈련병 한 명이 거품을 물고 좀 이상하다."고 보고하여 곧 바로 가서 목 맨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후 당직사관에게 보고하러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고, 당직사관과 같이 현장으로 내려가 위치를 알려준 다음에 연대의무실에 전화하였다.

6) OOO(중위)

가) 피해자의 진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11. 1. 31. 연대의무대에 감기 증상으로 내원하여 수액과 감기약, 항생제를 3일치 처방, 당일 가입실 조치하고 다음날인 2. 1. 퇴실 조치

(2) 같은 달 4. 설 연휴 마지막 날로 권기환 중위가 순회 진료함. 해열진통제, 항생제 5일치 처방

(3) 같은 달 6. 일요일로 OOO 중위가 순회 진료함. 이비인후과 외진을 의뢰함, 별도의 처방은 없음

(4) 같은 달 7. 지구병원에서 우이부급성중이염으로 진단받고 5일치 처방

(5) 같은 달 10. 연대의무대에서 감기약과 항생제 3일치 처방

(6) 같은 달 11. 연대의무대에 내원하여 지구병원 외진을 희망하여 외진 의뢰

(7) 같은 달 14. 지구병원에서 중이염으로 5일치 처방
(8) 같은 달 16. 연대의무대에 내원하여 외진 의뢰. 이명 현상이 간혹 있고 통증은 없다고 함
(9) 같은 달 18. 지구병원에서 중이염으로 5일치 처방
(10) 같은 달 21. 국군ㅇㅇ병원에서 이명 진단
(11) 같은 달 24. 감기 증상 호소, 지구병원 외진 희망하여 의뢰

나) 피해자에 대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중이염으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면 의료기록지에 기재하였을 것이다.

다) 피해자가 처음 내원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가입실 조치를 하였고, 일반적으로 입실을 하여 훈련을 받지 못하면 유급될 수 있어,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조치하였다.

라) 피해자가 처방한 약을 잘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연대의무대에 내원하였을 때, 군 의료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거나 민간 진료를 희망하지는 않았다.

마) 같은 달 24. 피해자가 내원하였을 때 피해자에 대한 외진을 의뢰하였는데, 외진 의뢰는 보통 다음날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진료 다음 날에 유격훈련이 있어서 같은 달 26.로 조치된 것으로 기억한다. 같은 달 26.은 이비인후과 외진이 없어서, 의무병이 피해자의 외진 예약을 같은 달 28.로 변경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바) 피해자 사망 당일인 같은 달 27.은 휴무일이었으나, 연락을 받고 12:40경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망 판정을 하였다.

7) OOO(군의관, 대위)

가) 피해자가 2011. 2. 7. 귀가 먹먹함을 호소하여 검사해 보니, 급성비염과 급성중이염이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5일치 약을 처방하였다.

나) 피해자는 같은 달 14. 다시 내원하였으나 진료 결과 육안으로는 특이한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급성비염과 급성중이염은 호전됨에 따라 다시 같은 약을 5일치 처방하였다.

다) 피해자가 같은 달 18. 다시 내원하여 진료를 한 결과, 피해자의 우측 귀에 물이 차 있어 2차 항생제 등을 5일치 처방하였다. 피해자가 '훈련이 힘들다'고 하면서 입원 조치나 상급병원 진료를 희망하여, 피해자에게 "현재의 증상으로는 필요가 없다"고 설명

하였으나 수긍하지 않았고, “그만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아 기간병을 불러 내보냈다. 피해자는 특별히 고통을 호소하거나 울거나 하지는 않았다.

라) 민간병원 진료 의뢰와 관련하여, 영외에 있던 논산병원은 의뢰 권한이 있었으나 영내로 옮겨 지구병원이 된 후에는 그 권한이 없다.

마)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후 진료실 밖에서 울어, 간호장교가 피해자를 진정시켰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다.

8) OOO(간호장교, 대위)

가) 2011. 2. 18. 피해자가 군의관의 진료를 받고 나온 이후 진료실 밖에서 울고 있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달래고 진정시켰는데, 피해자가 “민간병원, 다른 병원으로 보내 달라, 소대장에게 전화를 해 달라”고 하여 상황파악을 위해 OOO군의관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물어보았다. 위 OOO는 ‘피해자는 중이염인데 약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이고, 피해자가 상급병원으로 보내 달라고 하지만 그럴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하였다.

나) 피진정인 1.에게 위 내용을 설명하고, “민간 병원을 가려면 자비로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피해자가 많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꾀병이 아니냐고 물어, “꾀병이라 하기에는 증상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위 피진정인에게 ‘그럴 수도 있겠죠’라고 대답한 사실이 없다.

9) OOO(사건 당일 지구병원 당직 군의관)

가) 사건 당일인 2011. 2. 27. 9:00부터 다음 날 8:30까지 당직이었다. 원래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당직군의관이 현장에 가서 조치한다.

나) 같은 날 13:00경, 사고에 대해 연락을 받았다. 병원으로 연락이 와, 저녁 즈음에 당직 의무병과 구급차가 시신 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

다) 같은 날 20:00경 시신이 병원으로 도착하였고, 검시는 21:00경 시작되어 23:00경 끝났으며, 검시에는 본인과 군과학수사대, 헌병대 등 10~20명이 참석하였다.

10) OOO(지구병원 인사행정과장, 대위)

가) 2011. 2. 27. 12:05경 점심식사 도중, 당직 하사가 전화로 사고 사실을 알려와

해당 사고 발생을 알게 되었다. 바로 구급차가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여분 후 구급차가 돌아왔는데,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현장을 보호해야 하니 구급차는 그냥 돌아가라'고 하여 돌아왔다고 하였다.

나) 사고발생 최초 신고를 받고, 응급실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시켰다. 당직군의관에게는 12:30경 정신과로 찾아가 사후 조치에 대해 얘기하였다.

11) OOO, OOO(간호장교, 대위, 당직)

가) 2011. 2. 27. OOO 대위가 기간병으로부터 12:00경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아, 12:03경 당직군의관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사고 현장으로 구급차를 바로 보냈는데, 운전병과 의무병을 보냈고, 의무병은 응급구조사가 아닌 일반 사병이었다. 너무 경황이 없어 응급구조사나 군의관을 동승시킬 생각을 하지 못했다.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병사를 보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영외에 병원이 있을 때에는 부대에서 환자를 호송하여 병원으로 왔는데, 영내로 병원이 옮긴 뒤에는,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구급차를 보내라'는 것이 지시사항이었다.

12) OOO(지구병원장, 중령)

가) 군병원의 경우 외래 및 입원 환자 진료 위주로 편성되어, 현장 응급구조를 해야 할 응급구조사 등의 인력편성이 빈약하다. 현재 지구병원에는 응급구조사 직으로 편제된 인원이 없다.

나) 119구급대는 24시간 시스템운용을 위해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등으로 인력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구병원도 이러한 응급구조시스템을 확보해야하고, 이를 위한 관계 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다.

다) 교육연대 의무과는 훈련병의 훈련일정을 고려하여 13:00부터 군의관이 근무하는데, 오전에는 군의관이 없어 연대의무과에 진료 공백이 발생한다. 또한 사격훈련장에는 의무부사관이 응급 대기를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인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의 편지 및 메모,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의 진술서, 의무 기록지 및 처방전 등의 의료기록 자료, 훈련일지, 당직근무일지, ○○훈련소 「11년 안전 활동 추진계획」, 부검감정서, 전문의 의견서 등에 따른 인정 사실 및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관련

1) 인정 사실

가) 피해자는 2011. 1. 27. ○○훈련소에 입소하여 ○○교육연대 ○교육대 ○중대 ○소대 ○분대에 배치되었고, 같은 달 31. 연대 의무실에서 감기와 고열(37.8°)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1박 2일 동안 가입실하였으며, 같은 해 2. 4. 연대 의무실에서 '오른쪽 귀가 먹먹하고 소리가 작게 들린다'고 호소하여 5일간 약물 처방을 받았다.

나) 같은 해 2. 6. 피해자는 연대 의무실에서, '귀가 여전히 먹먹하고 안 들리고 답답하다'고 호소하여 지구병원 이비인후과 외진 예약을 받았다.

다) 같은 달 7. 7:30경 피해자는 순찰 중인 피진정인 1.에게 "귀가 먹먹한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물었고, 위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진료는 받았는지, 군의관이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았으며, 피해자는 지구병원에서 이비인후과 군의관 ○○○ 대위에게 중이염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처방을 받았다.

라) 같은 달 10. 피해자는 연대의무실에서, '귀가 여전히 먹먹하고 약이 내일 복용분밖에 없다'고 말하여 3일간 약물 처방을 받았다.

마) 같은 달 11. 피해자는 연대의무실에서, '귀가 먹먹하고 이명 증상이 있으며, 지구병원에서 약을 먹고 차도가 없으면 다시 오라고 하였는데, 어제 진료 받을 때 지구병원 외진을 요청하지 못하여 지구병원 외진을 못 갔다'고 하여 지구병원 이비인후과 외진 예약을 받았다.

바) 같은 달 14. 피해자는 지구병원에서 중이염에 대한 처방을 받았다.

사) 같은 달 16. 피해자는 연대의무실에서, '귀가 여전히 먹먹하고 소리가 잘 안 들려

지구병원 진료를 받고 싶다'고 하여 지구병원 이비인후과 외진 예약을 받았다.

아) 같은 달 18. 11:00경 피해자는 지구병원에서, 중이염에 대한 2차 처방을 받고 훈련이 힘들다며 입원 조치나 상급병원 진료를 희망했으나, 위 서○○ 군의관은 '현재의 증상으로는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 없다'며 피해자를 내보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수긍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며 나가려하지 않자, 위 ○○○는 기간병을 불러 피해자를 내보냈다.

자) 같은 달 21. 11:00경 ○○○ 병장은 피해자를 인솔하여 ○○병원에 갔으나 피해자의 진료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진료의뢰서와 진료메일 등의 환자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 이비인후과 ○○○ 대위는 피해자에게 이명 증상에 대한 약물 7일치를 처방하였다.

차) 같은 달 24. 피해자는 연대의무실에서, 같은 달 26.에 지구병원 이비인후과 외진을 받도록 예약을 받았으나, 연대 의무병은 그 날이 이비인후과 휴진일이어서 피해자의 예약을 같은 달 28.(월)로 변경하였다.

카)「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제9조에 따른 민간진료를 위한 청원휴가 시에는 병원 급 군의관의 진료와 진단서가 필요하다.

타) OO대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인권위가 의뢰한 피해자의 중이염 치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관계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에게 적정한 약물 처방들이 이루어졌다'는 자문 결과를 회신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1차 의료기관인 연대의무실과 2차 의료기관인 지구병원, 3차 의료기관인 ○○병원에 이르기까지, 이비인후과 전문의 2명을 포함한 3명의 군의관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쪽 귀의 통증에 관해 진료와 처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OO대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자문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료기록 검토 결과 피해자에게 적정한 처방이 이루어졌다'는 의견이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치료한 군의관들의 중이염 치료가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군의관들에게 치료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피해자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 하였으나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피해자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제9조에 따라 군병원급 군의관의 진료와 진단서가

필요했으나, 지구병원은 위 규정의 군병원에 해당되지 않아 민간병원 진료 허가를 할 수 없었던 점, 둘째,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중이염에 대한 진료를 받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민간 병원에서의 진료를 받으려면 ○○병원 군의관의 소견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진정인 1.은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료를 위하여, ○○병원 군의관에게 피해자의 요청사항이나 진료기록 등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이는바, 위 피진정인은 부주의하게 위와 같이 조치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병원 군의관 대위 OOO은 피해자에게 이명 증상에 대한 처방만 하였던 점, 셋째, 피해자가 훈련병 신분으로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일정기간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점, 넷째, 피해자가 총 9회에 걸쳐 중이염 관련으로 군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처방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고통을 호소하며 수회에 걸쳐 자신이 신뢰하는 민간 병원의 진료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원하는 치료 조치를 적시에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여, 훈련소 생활에 정상적으로 적응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훈련소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신병 관리 여부 및 폭언 등

1) 인정 사실

가) 2011. 2. 18. 11:00경 지구병원 이비인후과 진료실 밖에서 피해자가 큰소리로 울고 있자,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기간병은 위 병원 간호장교 OOO 대위에게 이를 알렸고, 위 OOO은 큰소리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며 진정시켰다. 하지만, 피해자는 위 OOO에게 '민간 병원에 보내 달라', '피진정인 1.에게 전화를 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OOO은 피해자를 진료한 OOO 군의관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물어본 후 피진정인 1.과 통화하였다. 위 OOO은 피해자가 '큰 병원에 보내 달라, 일반 병원에 보내 달라'고 하면서 울고, 위 OOO가 가라고 해도 가지 않고 버텼으며, 위 OOO의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의 중이염은 경미하고 투약으로도 치료가 충분한 상태라고 위 피진정인에게 설명하였다. 위 피진정인은 위 OOO의 설명을 듣고 꾀병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하에 '꾀병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면담철에 작성하였다.

나) 같은 날 11:00경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OOO 병장에게 '지구병원에서 받은 약은 진전이 없다, 밖에 있는 병원에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퇴소시켜 주면 한달 후에 다시 입대하겠다'고 울면서 요청하여, 위 OOO는 이를 피진정인 1.에게 보고하였고, 같은 날 11:30경 위 병원에 다녀온 피해자를 피진정인 1.이 행정반에서 면담한 후, 그 결과를 피진정인 3.에게 보고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기로 하여, 12:00에

ㅇㅇ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태워 피해자를 보내려고 하였다.

다) 같은 날 11:50경 피진정인 1.로부터 피해자를 ㅇㅇ병원에 인솔하여 다녀오라는 지시를 받은 위 OOO이, 피해자에게 "ㅇㅇ병원에 가자"고 하자, 피해자는 "ㅇㅇ병원에 안가면 안 되냐, 소대장과 면담하고 싶다. 정신과 진료를 받고 싶다"고 하였다.

라) 같은 날 13:00경 피해자는 "일반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ㅇㅇ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여 피진정인 1.과 한참 실랑이하였고, 이후 피진정인 1.이 "피해자가 ㅇㅇ병원을 원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가겠다는 의사를 밝혀, ㅇㅇ병원에 가기로 하였다. 피진정인 1.은, 면담 중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싶다"고 하여,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면담을 시키려고 홈페이지에 접수를 하였는데, 전화로 알아본 결과 상담사 2명 모두 전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마) 같은 달 20. 12:00경 피해자는 피진정인 2.에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다"고 하였고, 위 피진정인이 "민간 병원진료는 군의관의 소견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자, 피해자가 "훈련소를 나갔다가 다시 입대할 수 없냐"고 물어 위 피진정인은 "너는 특별한 질병이 없고 정신과적 문제도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바) 같은 달 21. 19:00경 피진정인 1.은 숙영지 훈련장에서 분대장들에게, "피해자가 탈영할 우려가 있으니 10분마다 잘 있는지 확인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사) 같은 날 숙영지 훈련 시 피해자는, 자신의 전우조인 OOO, OOO에게 탈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제한을 받고 통제받는 것과 귀가 먹먹하고 훈련이 힘든 것 때문에 죽고 싶다"는 말을 동료 훈련병들에게 한 적이 있다.

아) 같은 달 24.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또 다시 외진을 보내달라고 하자, 당시 훈련을 담당하던 분대장에게 "피해자를 다시는 중이염으로 외진 보내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자) 같은 달 26. 11:00경 피진정인 1.은, 분대장 병장 OOO으로부터 피해자가 "지구병원 외진이 잡혀있으니 보내 달라"고 요청한다는 보고를 받고, 연대 홈페이지에서 피해자가 외진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찾아가 예약이 없는데 자꾸 예약되어 있다고 떼를 쓰냐고 물었다. 피해자가 "귀가 아픈데 왜 안 된다고 합니까? 보내 주십시오"라고 거듭 요구하자 설명을 하다가, "왜 자꾸 시키는 대로 안하고 떼를 쓰냐. 똑바로 서!, 야! 인마, 이 새끼야. 군의관이 문제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가려고 해. 너 앞으로는 귀 아픈 것으로 외진 갈 생각하지 마"라고 피해자에게 화를 낸 후, 분대장 상병 OOO에게 자신의 허락 없이 피해자를

의무실에 보내지 말라고 얘기하였다.

차) 같은 달 27. 11:40경 피해자가 생활관 2층 화장실 배관박스에서 목을 매어 있는 것을 훈련병 OOO이 발견하였고, 같은 날 12:45경 연대 군의관 OOO 중위가 사망선고를 하였다.

카) 피해자는 '엄마, 자랑스럽고 듬직한 아들이 되지 못해서 미안해요. 2월 4일부터 귀가 먹먹했는데 아직 안 나았어요. 진짜 불편해서 의무실과 병원 많이 갔는데 이젠 아예 꾀병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식물인간이나 장애인 되면 안락사 해주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원래 없는 셈 해주세요. 정말 미안해 엄마. 사랑해'라는 내용으로 유서 형식의 편지를 썼다.

타) OO훈련소는 「11년 안전 활동 추진계획」의 '존중과 배려의 선진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에서, 비인격적인 대우, 폭언, 무시행위 근절과 일류명품 언어 사용 및 언어폭력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

파) OO훈련소는 「11년 안전 활동 추진계획」 중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보호관심병사'로 지정하여 24시간 동료들에 의한 관리와 지속적인 외진/약물치료를 통한 부대적응 유도 노력,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기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2) 판단

가)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중이염 치료 요청에 대해 군의관의 소견 없이 ○○병원에서 외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서 외진을 받을 때 피해자 의료 기록을 함께 송부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같은 해 2. 18. 지구병원 간호장교 OOO 대위와의 통화 및 ○○병원 군의관 대위 OOO이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내시경으로 진찰한 결과 '별 다른 이상이 없다'는 소견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피해자가 훈련을 기피하려는 의도로 꾀병을 부렸을 것이라 판단하여, 같은 달 21. 숙영지 훈련에서 분대장들에게, "피해자가 탈영할 기미가 있으니 주의하라"고 지시하였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진정인 1.이 피해자를 훈련소 부적응사병으로 판단하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나) 피진정인 1.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같은 달 24. 피해자가 다시 증상을 호소하며 의무실 진료를 요청하자 못 가게 하였고, 같은 달 26. '지구병원 외진 예약이 되어 있다'는 피해자의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거짓말 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혼을 내며 폭언을 하는 등 부적절

한 언동을 하였는바, 이는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을 금지하고, 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 1.은 군의관들에 의해 피해자의 질병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추가 진료, 정신과 상담, 민간병원 진료 및 유급 후 재입소 등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호소가 일반적이지 않고 다회에 걸쳐 반복되며 심리적 불안함과 훈련소 부적응의 징후를 보였으므로, 피해자를 '보호관심사병'으로 지정하여 피해자에게 정신과 상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부모에게 연락 등의 방법을 취하여 피해자의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치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 2., 3.은, 피해자와 피진정인 1.로부터 피해자가 질병의 고통을 호소하며 민간병원 진료를 요청하고, 유급하여 재입소할 것을 바란다는 취지의 호소와 보고를 받고도,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지시를 취하지 않는 등 지휘 간부로서의 지휘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결국 피진정인 1., 2., 3.은, 피해자가 질병에 따른 고통과 이에 따른 후속행동으로 군 탈영 등 훈련소 부적응의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신병관리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거듭되는 피해자의 진료요구에 대해 진료를 막으려고 했으며, 같은 해 2. 26. 피해자의 외진 예약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왜곡 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절망감과 상실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망에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 1., 2., 3.이 피해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신상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와 피진정인 1.의 피해자에 대한 폭언 등의 부적절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방하거나 보호하지 못하였고, 이는 「군인복무규율」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휘관 및 상관의 지도·감독 및 부하의 고충 파악·해결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사건 당일 피해자에 대한 관리 부실

1) 인정 사실

가) 2011. 2. 27. 사고 당일 당직부관이었던 OOO 병장은, 같은 달 21. 숙영훈련 시 피진정인 1.로부터 '피해자가 탈영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관찰 대상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

나) 피해자는 사고 당일 10:30경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고, 11:40경 사고 장소에서 훈련병 OOO에 의해 발견되었다.

다)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의 전우조인 훈련병 OOO, OOO은, 피해자가 없어진 것을 알고 찾다가 위 OOO에게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했으나, 위 OOO으로부터 전우조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얼차려를 받았고, 위 OOO은 피해자를 찾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 OO훈련소는 「2011년 안전 활동 추진계획」에 의거 '안전 활동 8대 중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훈련병의 군무이탈 방지와 전우조 활동 강화를 위해 실시간 병력실셈 체계이행과 전우조 행동 생활화 교육 및 보고체계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2) 판단

가) 사고 당일은 종교 활동이 각 종파별로 이루어져 전우조 활동이 일시 해제되는 등 보다 강화된 전우조 활동 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OOO은 피해자의 전우조인 훈련병 OOO와 OOO으로부터 '피해자가 안 보여 찾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그 임무를 소홀히 하였다.

나) 중사 OOO과 소령 OOO은 사고 당일 당직사관과 당직사령으로서, 1시간 단위로 인원 점검을 하여 유동 병력에 대한 파악을 철저히 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전우조 활동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를 강화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 활동 직후 전우조 활동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다) 하지만, 피해자가 계획적으로 사고 장소에 숨어 있었고, 의도적으로 전우조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고 당일 위 당직근무자들의 근무 행태가 인권침해에 이를 정도로 근무를 해태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대책 수립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피해자에 대한 응급구조 조치 관련

1) 인정사실

가) 2011. 2. 27. 11:40경 위 사고 장소에서 목을 맨 피해자를 처음으로 발견한 훈련병 OOO은, 당직병인 위 OOO에게 피해자가 배관박스 안에 있다는 보고를 하였고,

위 OOO과 당직사관인 위 OOO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혀가 나와 있고 몸이 축 늘어져 있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았다.

나) 같은 날 11:50경 위 OOO은, 위 OOO에게 피해자의 사고 발생에 대해 상부에 어떤 상세한 요청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를 누락한 채 '연대의무실과 연대 지통실에 보고하라'는 지시만을 하였고, 위 OOO은 이에 따라 연대의무실에 사고 발생을 보고하였다.

다) 같은 날 12:00경 지구병원 간호장교 대위 OOO은, 훈련소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전화보고를 받고, 응급구조사가 아닌 일반 의무병을 구급차와 함께 출동시켰다.

라) 당직군의관 OOO와 지구병원 당직 장교 대위 OOO는, 위 OOO으로부터 사고 발생 보고를 받았으나 응급구조인력의 출동에 대해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마) 같은 날 12:12경 연대군의관 OOO은, 의무병 OOO일병으로부터 사망자 발생 전화보고를 받고 사망 장소에 도착하여, 같은 날 12:45경 호흡과 맥박, 사후경직을 판단한 후 피해자에게 사망선고를 하였다.

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8조는 구급차 출동 시 응급구조사의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OO훈련소 예규 150 제4조는 응급환자 후송 및 진료를 위해 군의관 또는 응급구조가 가능한 인력을 편성하여 출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위 OOO과 위 OOO의 진술대로 비록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응급조치 필요 여부 및 사망 여부 판단은 전문의료인이 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군의관에게 조속히 연락하여 전문적인 판단과 조치를 의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구조인력과 함께 앰뷸런스를 출동시켜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 등 응급구조 조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응급사고자를 발견하였을 때 심폐소생술 등 사고자를 소생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초기 응급조치는,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아주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조치이다. 특히 피해자와 같이 정확한 사망시간을 추정할 수 없는 의사자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피해자인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모든 조치가 신속하고 정확히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였을 것이나, 사고 당일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이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이에

근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할 자료가 없어, 위와 같은 상황이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사고 당일 당직근무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응급조치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고자 발견 시 적절한 응급조치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한 관련 규정들의 준수와 응급조치 관련 제반 사항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피해자에 대한 치료 조치 미흡,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과 피해자에 대한 관리 소홀, 사망자 발견 시 즉각적인 의료조치 미흡과 관련하여 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 원 장주영 위 원 윤남근

[별지] 관련 규정

1.「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가. 제3조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제5조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의무) ①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제8조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①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에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위급의 정도에 따라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제48조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21750호)

가. 제25조(고충처리) ①군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 또는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거나 질병 기타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지휘계통에 따라 상담 또는 건의하거나,「군인사법」제5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에 따라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9.9.29]
②제1항의 건의등을 받은 상관이 고충의 청취를 기피하거나 조치가 불만족할 경우 이를 차상급 상관에게 건의하거나 말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③상관은 부하가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하의 고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제35조(군무이탈 사고예방) ①각급지휘관은 군무이탈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입신병들이 조기에 군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실시 및 지도
2. 휴가·외출·외박자에게 출발전 복귀요령과 건전한 영외생활 등에 대한 특별교육
3. 부하장병들의 신상을 명확히 파악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해결방안의 적극적인 모색
4. 정신교육과 군법교육을 실시하여 군무이탈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②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군무이탈자의 조속한 복귀를 위하여 군무이탈자 체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 제36조(자살사고 예방) 각급지휘관은 사병의 자살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전입신병들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활동 강화 및 병영생활에 조기 동화 및 적응할 수 있는 방안 강구
2. 부하장병에 대한 철저한 신상파악으로 자살 우려가 있는 장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집중관찰 및 선도
3. 일직·근무·경계근무·기타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총기 및 실탄관리를 철저히 하여 취약요인의 사전예방
4. 정신교육·인격지도교육을 실시하고 종교활동을 통하여 가치관·인생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선도

4. 「군사고예방규정」 (국방부 훈령 제479호)

제37조(구타 및 가혹행위 사고예방) ①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강력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각급기휘관은 구타 및 가혹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장병 의식교육을 강화하고 사고사례를 수집·전파하여 유사사고 방지에 힘써야 하며, 격오지부대 및 근무 초소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고 상습폭행자의 색출·교정 및 엄격한 음주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일과 후 병력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국방관서의 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지침에 의한 문책기준을 강화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를 은닉할 때에는 사고자 및 관련자를 가중처벌 하여야 한다.

5.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에 관한 규정」 (국방부 훈령 제821호)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타"라 함은 고의로 손·발·팔꿈치·머리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막대기·야전삽·총기 등 도구로 타인을 가격하여 통증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가혹행위"라 함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

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이란 법규에 어긋나는 방법이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방법 등을 말한다.

6.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1158호)

제9조(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의 허가) ① 소속부대의 장(군 병원장을 포함한다.)은 영내의 현역병 등이 민간의료기관 입원·외래 및 검사 등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30조에 따라 개설한 군 병원(국군의무사령부 소속 병원, 해·공군 소속병원,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말한다.)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거친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발행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OO훈련소 예규 150

제4조 응급진료대기 및 응급환자 진료

1. 목적

응급환자 진료 및 응급후송의 공백 방지를 위하여 24시간 진료체계 및 응급후송 대기상태를 확립 유지하여야 한다.

2. 당직 / 후송 근무자 편성

구분	평일(월~금)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시간	17:00 ~익일 08:00 (동계 : 17:00 ~익일 08:30	09:00~ 익일 09:00
편성	• 당직군의관 - 지구병원 및 입소대대 전문의군의관으로 편성 - 연대 / 일반의 군의관은 휴일 순회진료 군의관 편성	
	• 후송담당관 - 훈련소 일반의군의관, 연대 의무부사관으로 편성 ※ 단, 인원부족 / 후송소요 증가등 조정소요 발생시 지구병원장 통제하 조정한다	
	• 기타 - 치과(3), 한방군의관 당직근무 미편성 / 야간진료실시 야간진료(17:00~21:00) : 치과(주2회), 한방과(월1회) 진료일정 판단 / 야간진료 사전 홍보 - 연대별 휴일 순회진료 / 보충교육 의무지원 : 연대군의관/의무부사관 실시	

가. 진료당직근무관(군의관, 간호장교) 복장은 주간 근무복장으로 한다.

나. 당직(후송)군의관은 응급환자 도착 즉시 응급진료를 실시하며, 응급상황 조치 후 환자 처치 및 상태를 지휘통제실에 보고 및 후속조치 한다.

8 11진정2707 [의료조치 소홀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12. 4. 13. 결정

▌결정사항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지원을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

▌결정요지 ▌

[1] 피해자의 지휘간부들은 훈련병 관리 및 관련 지휘보고체계의 부실, 잘못된 판단과 부주의로 응급환자 후송 및 진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의료접근권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2] 또한 군의관 등의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필요한 의료행위를 적기에 받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

[3] 피해자는 훈련 중 병사에 의한 순직으로 처리되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으나, 피해자 유가족의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는 조치된 바 없으므로, 피진정인들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지원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참조조문 ▌

「헌법」 제10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

▌ **진정인** ▌ 임○○

▌ **피해자** ▌ 1. 故노○○ 2. 노○○

▌ **피진정인** ▌ 1. 박○○ 2. 남○○ 3. 양○○ 4. 박○○
5. 정○○ 6. 김○○ 7. 권○○

▌ **주 문**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을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피해자 1. 노○○은 ○○훈련소 훈련병으로 기초군사훈련(2011. 3. 24.~4. 29.)중이던 2011. 4. 22. 19:00경부터 4. 23. 02:10경까지 20km 야간행군 직후 37.9도의 고열로 뇌수막염 증세를 보였으나, 의무실에는 당직 군의관이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의무병이 군의관의 진료 및 처방 없이 임의로 해열진통제만을 처방한 후 소속대로 복귀시키고, 이후 피해자 1.이 2011. 4. 23. 11:00경 기상 후 재차 고열을 호소하였음에도 사전예약 진료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군의관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뒤늦게 상급 의료기관인 지구병원을 경유하여 ○○대학교병원에 후송치료를 받다가 2011. 4. 24. 06:57경 패혈증(의증)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응급환자인 피해자 1.에 대하여 ○○훈련소의 의료시스템 및 환자관리의 부실을 조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와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한 권리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박○○(소령, 00연대 0교육대 교육대장)

본인은 ○○훈련소 0교육대장으로 근무 중이던 2011. 4. 23. 야간행군을 갔다 온 후, 연대 당직사령으로부터 고열로 인해 ○○ ○○병원으로 후송되는 훈련병이 있다는 보고를 받아 처음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이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훈련 중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중대장이나 소대장으로부터 받은바 없다. 피해자가 ○○병원을 거쳐 ○○대학교 병원 후송되는 과정 및 사망사실을 전화로 보고 받았고 이를 상급자인 연대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2) 남○○(대위, 00연대 0교육대 0중대장)

피해자 1.은 2011. 3. 21. ○○훈련소 0교육대에 입소하여 신체검사를 한 다음 3.

24. 0중대로 배속되었고, 평소 0교육대 입소 인원은 700여 명인데 이와 달리 피해자의 기수는 940여명으로 많아, 중대인원이 236명이나 되어 생활관도 17명(통상 14명)이 같이 생활하게 되었는데, 중대 배속 당시 환자 또는 관심 훈련병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사후에 당직일지를 보고 피해자 1이 감기증세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 1.이 소속한 0중대는 훈련일정에 따라 2011. 4. 22. 일과시간에 종합각개전투를 하고, 19:00경부터 4. 23. 02:00경까지 20km 야간행군을 실시하였는데, 행군 전 환자 파악을 할 때, 피해자가 환자라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고, 완주 후에도 환자파악을 하였으나 환자로 보고된 훈련병은 없었으며 특별하게 소대장이나 분대장 등으로부터 피해자 1에 대한 건강상의 문제를 보고 받은 적이 없었다.

당일 훈련병들이 샤워 후 취침하는 것을 확인한 후 04:20경 취침하였고 4. 24. 10:50경 기상하여 당직계통에서 환자를 파악하여 중대원 9명이 연대 의무실을 이용한 것을, 생활관을 돌아보며 정비 상태 등을 확인하고 13:00경 퇴근을 하였는데, 15:04경 중대 당직병으로부터 처음으로 고열로 지구병원에 입실한 훈련병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후, 연대 당직사령으로부터 고열로 지구병원에 입실한 훈련병이 ○○병원으로 후송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고 16:00경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을 뒤따라가면서 17:02경 피해자의 부모인 진정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0교육대장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였으며, ○○대학교 병원관계자가 응급진료를 하였으나 피해자 1이 2011. 4. 24. 06:57경 사망하였다.

피해자 1은 중대 배속 시 매우 건강하고 밝은 훈련병이었으며 ○○대학교병원에서 소대장의 보고에 의해 피해자가 군의관이 없어 해열제 2알만을 먹고 복귀한 것을 알게 되었다.

3) 양○○(중사, 00연대 0교육대 0중대 0소대장)

피해자 1은 체력이 좋았고 항상 웃는 모습에 부지런하고 긍정적이었으며 아픈 곳이 없었다. 2011. 4. 11. 감기증세로 연대 의무실 진료 후 투약 3일 조치를 받은 것을 4. 12. 중대 당직분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았으나 심각한 상황이 아니기에 중대장에게는 별도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

2011. 4. 22. 실시된 20km 야간행군 중 피해자 1.이 아프다는 호소를 한 적 없으며, 별다른 징후를 보고받지 못하였고, 2011. 4. 23. 행군을 마친 후 02:30경 오○○ 분대장이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노○○ 훈련병이 몸살기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여 감기몸살이면 온수로 샤워하면 나아질 것 같아서 피해자에게 “샤워할 수 있겠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가능하다고 하여 샤워를 시키고 곧바로 의무대에 보냈으나, 의무대에 다녀온 오○○ 분대장이 군의관이 없어서 내일 아침에 다시 가기로 했고, 해열제 2알을 피해자에게 먹였다고 보고를 하여, 당시 피해자가 몸살기운이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따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보지는 않았다.

평상시 군의관이 없으면 당직군의관에게 보고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어 당시에도 의무대에서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은 줄 알고 피진정인 2. 중대장 대위 남○○에게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았고, 4. 23. 토요일은 행군 다음 날로 원래는 출근을 안 하는 날인데 중대장이 출근하여 훈련병들을 관리하라고 지시하여 11:00경 출근하여 업무를 보다가 12:30경 퇴근하였다.

2011. 4. 23. 14:40경 당직 분대장이 피해자 1.이 아파서 지구병원에 보냈는데 쇼크 증세가 있다는 전화를 받고 지구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5:00경 병원으로 가는 중, ○○병원으로 후송한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부모에게 전화를 하고, ○○병원 및 ○○대학교 병원에 따라다니며 경과를 지켜보는 등 간호하였다.

당시 육군본부의 ‘신병 교육강화 방안’에 따라 5주 교육 중 전문 과목은 자대에서 교육시키는 쪽으로 변경하고 2~3주 교육과정을 체력검증으로 구성하여 체력단련시간과 야간훈련시간이 늘어났고, 훈련프로그램 일정이 빡빡하여 제대로 교육을 준비시킬 시간이 없으며, 휴식시간이 부족해 훈련병들이 불침번, 경계근무 등에 대해 부담을 가지는 상황인바, 훈련병 입소인원 증가에 따른 지휘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박○○(중위, 00연대 연대군의관)

본인은 2011. 4. 22. 20km 야간행군에 의무지원을 위해 20:00경 행군대열에 참여하여, 4. 23. 02:00까지 행군 중에 탈진하거나 발목 등의 이상이 있는 훈련병들에 대해 조치를 하는 등 진료를 하였고, 행군을 마친 후 연대 의무대로 돌아와 훈련병 3~4명 정도 진료를 하고, 03:00경 퇴근하였다. 당시 뒤늦게 의무실에 도착한 피해자 1.에 대해서는 의무병이 증세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임의로 약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평상시 토요일은 08:30부터 12:30까지 근무하나 4. 23.은 행군 다음 날 비번이어서 오전에 근무하지 않았고, 통상 연대 군의관의 부재 시나 지원요청 시 훈련소 지구병원 군의관으로 순회진료진을 편성하고, 일요일에는 연대군의관(총 7명) 중 1명과 지구병원 2명 중 1명이 당직근무를 한다.

연대군의관 1명이 1일 평균 120~150명 정도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훈련병들은 급한 상태가 아니면 교육을 마치고 저녁식사 이후인 18:00경 연대 의무대를 찾아와 진료를 보고 있는데, 이 시간에 환자진료가 집중되어 환자 1인당 1분 내외의 진료시간을 투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훈련병도 불침번 근무를 하고 토요일 오전에도 체력검증 등 훈련을 하여 피곤이 가중되는 등 훈련병들의 훈련강도는 높아지고, 훈련소 내로 지구병원이 들어옴에 따라 의료인력이 축소되어 상대적으로 의료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5) 정○○(상병, 00연대 본부 중대 소속 의무병)

피해자 1.은 2011. 4. 11. 목이 붓는 등의 감기증상으로 연대 의무실에 진료를 받으러 온 적이 있고, 2011. 4. 23. 03:30경 20km 행군 후 고열 증상으로 인솔병 일병 오○○의 인솔 하에 의무실에 두 번째 방문하였다.

당시 피해자 1의 체온은 37.9도로 같은 증상으로 내원한 훈련병 임○○ 및 강○○의 체온에 비해 높은 온도는 아니어서 응급을 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타이레놀 2알만 처방하여 복용하도록 하고, 아침에 실시하는 순회진료 때 다시 오라고 하고 피해자를 돌려보냈다.

당시 군의관은 02:00경까지 훈련병들의 20km 행군에 동행하여 의무지원을 하고 03:00경 퇴근한 상태였고 피해자의 증상도 긴급한 증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군의관에게 따로 연락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00연대 순회진료는 당초 2011. 4. 23. 09:00부터였으나 피해자 1.이 포함된 0교육대가 20㎞ 야간행군 후 11:00까지 취침을 함에 따라 같은 날 11:30으로 변경되었는데, 같은 날 09:00부터 군의관 박○○, 김○○, 권○○은 순회진료를 실시하였고 11:45경 순회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할 때, 피해자를 포함한 0교육대 진료인원이 늦게 도착하자, 위 군의관들은 진료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진료하지 않고 순회진료를 종료하였다.

당시 피해자 1.이 진료를 받지 못하자 인솔병 정○○ 일병이 피해자의 증상이 고열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요청하여, 피해자의 체온을 측정한 결과 39.7도로, 연대 의무관 중사 안동현의 지시에 따라 앰뷸런스를 불러 지구병원 응급실로 긴급 호송하였다.

6) 김○○, 권○○(중위, ○○훈련소 지구병원 일반군의관)

당시 ○○훈련소 지구병원의 토요일 순회진료 계획에 의거, 2011. 4. 23. 순회진료

군의관으로 편성되어, 편성계획에 의거 00연대 발생 환자들에 대해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진료하려고, 의무병 일병 정ㅇㅇ와 전화 통화를 하였으나, 피해자 1.이 소속한 0교육대가 야간 행군 후 11:00경까지 취침함에 따라 순회진료 시간을 11:30경으로 조정 변경하고, 훈련소 23, 25, 26, 29교육연대 순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한 후, 11:30경 00연대에 도착하여 순회 진료를 시작하였다.

당일 진료예약 인원은 0·0교육대 33명으로 0중대 9명, 0중대 11명, 0중대 9명, 0중대 4명이었으며, 피해자 1. 소속 0중대는 진료예약 인원이 없었다. 이에 진료가 준비된 훈련병 27명에 대해 1차 진료를 마치고 11:45경 돌아가려 할 때, 피해자를 포함한 0교육대 진료인원이 진료시간 경과 후 도착하여, 진료시간 미준수 및 진료시간 경과를 이유로 추가 진료가 필요한 인원은 병원 응급실로 오라고 하고 순회진료를 종료하였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

1) 양ㅇㅇ, 서ㅇㅇ(훈련병, 00연대 0교육대 0중대 0소대 동료)

피해자 1과 같은 동료로 훈련을 받았는데, 피해자는 매우 튼튼하고 밝고 쾌활하며 책임감이 강했으며, 2주차 훈련 중인 2011. 4. 8. 영점사격을 할 때 비가 오고 날씨가 좀 추웠는데, 입고 있던 판초 우의를 벗고 하다 보니 전투복이 젖어 감기가 들었는지 4. 10.경부터 목이 부어 쇳소리를 내며 기침을 많이 하였고 3일분 약을 먹고 목소리는 좋아졌으나 잠을 잘 때면 기침을 심하게 하였다.

중대 훈련병들과 2011. 4. 22. 19:00경부터 4.23. 03:00경까지 20Km 행군을 하였는데, 행군당시 피해자가 부대 복귀 1~2Km 남았을 때, 뒤처져서 다른 훈련병 2명이 뒤에서 밀듯이 같이 데리고 왔고, 생활실로 복귀한 뒤에는 피해자가 군장도 풀지 못하고 침상에 걸터앉아 숨을 헐떡여 분대장에게 보고하여 03:30경 연대 의무대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

2) 오ㅇㅇ(일병, 00연대 0교육대 0중대 0소대 0분대장)

피해자 1은 1분대 소속으로 1분대장인 병장 이ㅇㅇ이 관리해야 하나 말년휴가로 공석임에 따라 2분대장인 상병 이ㅇㅇ와 함께 관리하였는데, 평균 이상의 건강한 체력이었으며 단 한 번도 훈련에서 아프다고 열외를 하거나 차등훈련(질환이 있는 훈련병의 훈련을 좀 더 약하게 실시하는 제도)을 한 적도 없었다.

2011. 4. 23. 02:00 야간행군을 마치고 복귀 후 동료 훈련병으로부터 피해자의 몸

상태가 안 좋다는 보고를 받고 소대장 중사 양○○에게 보고하자, 중사 양○○이 피해자 1.에게 "서서 할 수 있겠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하여 다른 훈련병보다 먼저 샤워를 시키고, 같은 날 03:35경 의무대에 인솔해 갔더니 군의관은 퇴근하고 의무병 정○○가 혼자 있었다. 의무병 정○○는 피해자 1의 체온이 37.9도라며 타이레놀 2알을 피해자에게 복용하도록 하였고, 이때까지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아 피해자를 내무반에 데리고 와서 모포를 덮어주며 취침하도록 하고, 행정반에 가서 소대장에게 "군의관이 없어서 해열제 2알을 먹었고, 37.9도가 나왔으며 오전에 의무실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현재 419기 훈련병들은 체온이 37.3°가 넘거나 의무대진료를 희망하면 무조건 의무대에 보내고 있고, 오전, 오후, 저녁 하루 3회 체온을 측정하고 연대군의관이 없으면, 훈련소 지구병원으로 보내고 있다.

3) 정○○(일병, 00연대 0교육대 0중대 중대행정병)

본인은 중대 행정담당으로 2011. 4. 23. 11:30경 피해자 1 등을 포함하여 중대 훈련병인 환자 9명을 연대 의무실로 인솔하였는데, 같은 날 11:50경 연대 의무실에서 문진서를 작성하던 중 순회 군의관 2명이 진료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철수를 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고 같은 날 12:00경 직접 피해자의 체온을 재어보니 39.2도로 확인되어 의무대 행정실 안○○ 중사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고 나머지 환자를 인솔하여 중대 복귀하였다.

4) 안○○(대위, ○○훈련소 지구병원 응급실 군의관)

피해자 1.이 2011. 4. 23. 12:23경 지구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간호장교 변○○ 대위가 응급실 접수를 받아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때 피해자의 체온은 40도이고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응급실에서 같은 날 12:55경 미온수 마사지를 실시하고 13:11 흉부방사선을 촬영한 뒤 13:41경 다시 체온측정을 해 보니 체온이 40.5도로 고온이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로 결정하여 14:10 병동으로 입실 조치하고, 병실 간호장교에게 고 체온이므로 주의 관찰하도록 하였는데, 14:23 의무병 이 다급하게 불러 병실로 가 보니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경과관찰 중인 같은 날 15:05 피해자가 반응하지 못하고 경련을 일으키는 등 행동 통제가 되지 않아 당직군의관 정○○의 지시에 따라 응급실로 다시 이동조치 하였다가 같은 날 15:40경 ○○병원으로 긴급 호송하도록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내용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 유가족이 제출한 사건기록일지 및 피해자 1. 사망진단서,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의 진술서 및 이들에 대한 위원회의 현장조사결과보고서, ○○훈련소가 제출한 동 훈련소 헌병대 작성의 각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서 및 진술조서, 훈련소 사망사고 관련 의료지원/ 관리체계 조사결과, 사망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및 부검기록, 사건 당시 00연대 0교육대 0중대 근무일지, 피해자에 대한 외래(응급)환자진료기록 및 임상병리 결과자료, 뇌수막염 관련 예방약 투여 및 역학조사 보고서, 2011년 훈련병 관리 및 의료체계 개선 현황, 피해자 사망사건 관련자 징계처리 현황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 1.은 2011. 3. 21. ○○훈련소 입소하여 00연대 0교육대 0중대 0소대로 배속된 훈련병으로, 중대 전입 시 키 173㎝, 몸무게 70㎏의 체구에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고 하였으나, 기초군사훈련 2주차인 2011. 4. 8. 우천 시 영점사격을 할 때, 판초우의를 벗고 훈련을 하여 전투복이 젖은 관계로 4. 4.부터 4. 9.까지 기침이 심한 감기증세를 보여 같은 달 11. 연대 의무실에 진료를 받았으나, 소속 간부인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일병력결산 시 관련 보고 및 환자관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 1.이 2011. 4. 22. 19:00경부터 4. 23. 02:10경까지 실시된 20km 완전군장 야간행군 훈련 중인 4. 23. 00:48~01:00경 행군 중 뒤처져 동료 훈련병 2명이 뒤에서 밀어주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동료 훈련병들의 미보고로 소속 지휘간부들인 피진정인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다. 피해자 1.이 2011. 4. 23. 02:10경 행군복귀 후, 개인정비 중 고열(37.9도)의 증세로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란 상태로 군장도 스스로 벗지 못하고 침상에 기대어 호흡곤란 상태를 보였으나, 피진정인들은 행군복귀 후, 먼저 환자발생 등 의무실 진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훈련병 위○○이 이를 분대장에게, 분대장 일병 오○○은 0소대장 중사 양○○에게 이를 보고하자, 인솔분대장 일병 오○○으로 하여금 온수 샤워시키고 뒤늦게 연대 의무실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라. 피해자 1.이 2011. 4. 23. 03:30경 의무실에 도착했으나 연대 군의관 중위 박○○이 03:00경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의무병 상병 정○○가 소속 군의관에게 아무런 보고 없이 피해자의 체온을 측정한 결과 37.9도로 측정되자 임의로 해열제(타이레놀) 2알을 처방하여 이를 복용시킨 뒤 소속대로 복귀시켰고, 인솔분대장 일병 오○○이 복귀 후, 이를 0소대장 중사 양○○과 당직분대장에게 보고를 하였으나, 중사 양○○은 0중대장 대위 남○○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당직사관은 의무대 진료결과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당직계통(교육대→연대→소)으로 행군환자 보고 시 고열환자 0명, 물집환자 239명으로 사실과 달리 보고하였다.

마. 피해자 1.은 2011. 4. 23. 04:00경 복귀하여 취침하고 11:00경 기상하여 고열 증세를 보이자 피진정인 지휘간부들은 병분대장 일병 정○○의 인솔 하에 같은 날 11:45경 연대 의무대로 보냈으나, 이에 피진정인 군의관은 지정된 진료시간 내에 지연 도착을 하였다는 이유로 진료를 하지 않았고, 환자입원실에서 12:00경 훈련병 이병 김○○이 얼음주머니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0분간 마사지를 하고, 의무병 상병 정○○가 피해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체온(39도~40도), 혈압(90/50), 맥박 120이 측정되자, 같은 날 12:17경 앰뷸런스를 이용하여 ○○훈련소 지구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바. ○○훈련소 지구병원 간호장교 변○○은 2011. 4. 23. 12:23경 피해자가 응급실에 도착하자, 응급실 내의 바이탈 사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체온 40도, 혈압 90/50으로 측정되어 채혈 후 수액투여를 하였고, 같은 날 12:55경 재차 바이탈 사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검사한 결과 체온 39~40도, 혈압 100/50으로 측정되어 피해자에게 미온수 마사지를 실시하였다.

사. ○○훈련소 지구병원 군의관 대위 정○○은 2011. 4. 23. 13:11경 피해자에 대해 X-ray 흉부촬영을 하고, 같은 날 13:41경 체온 40.5도, 혈압 100/50인 상태를 확인하고 같은 날 14:00경 병동으로 이동시켜 관찰실 내에서 수액(생리식염수)을 투여하며 안정을 도모하던 중, 같은 날 14:23경 피해자가 병실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의무병 일병 배○○가 발견하고 간호장교와 함께 부축을 하여 침상에 옮겼다.

아. 피해자는 같은 날 14:30경 C/T(두부) 촬영을 실시한 후, 병실로 이동하여 병실 내 관찰실에 있던 중, 15:05경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침대에 누워있지 않고 수액 공급하는 선을 뽑는 등 정상적인 자기조절이 안 되는 상태가 되어 15:14경 응급실로 전실되었고, 15:25경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WBC, 정상 4,000~11,000개)가 최초 8,900개에서 3,600개로, 혈소판 수치(정상 150,000~400,000개)가 최초 182,000개에서 123,000

개로 떨어지는 등 패혈증이 의심되어 15:28경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자. 피해자는 같은 날 15:42경 ○○도 ○○시 소재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의사 박○○이 진단한 결과, 의식은 있는 상태에서 심한 경련과 고열(39.8도), 그리고 심장박동과 호흡이 빨라 X-ray촬영 및 진정제·해열제 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16:10경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차. 피해자는 같은 날 16:51경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패혈증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뇌척수액을 검사한 결과 염증세포가 42개로 정상수치(5개 이하)보다 높아 위 병원 신경과 전문의 김○○가 뇌수막염으로 판단하고, 스테로이드를 긴급 처방하였으나, 호전이 되지 않고 4. 24. 06:57경 범발성(汎發性) 응고장애와 다발성 장기분전 등 패혈증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카. ○○훈련소 검찰관, 헌병대수사관, 유가족이 함께 2011. 4. 25. 수도병원 영안실에서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군의관 대위 강○○의 집도로 부검을 실시한 결과, 혈액과 뇌척수액에서 시행한 세균검사에서 수막구균이 검출된 점, 전신의 피부와 근육 및 몸 안의 모든 장기들에서 반상출혈과 점상출혈을 포함한 출혈소견이 있는 점, 신장의 모든 사구체 내에서 피브린혈전의 침착이 관찰되는 점, 위 소견들이 패혈증에서 흔히 동반되는 파종성혈 관내응고병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혈액 및 위 내용물의 약물독화화적 검사에서 특기할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기타 사망자 시신의 외표 및 내부검사에서 사인과 연관지울 특기할 기계적 손상 및 외력에 의한 방어 및 억압흔적 등이 관찰되는 않는 점, 사망자가 완전군장 행군(20km)후 생활관에서 고열로 훈련소 지구병원을 경유하여 민간병원 후송치료 중 패혈증(의증)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는 사건 정황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사인을 수막구군 패혈증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망이 범죄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1. 6. 24. 병사(病死)로 내사종결하였다.

타. 피해자에 대한 부검 후, 피해자의 유가족은 헌병대로부터 시체인수증 및 화장동의서를 받고 사체를 인계받아 2011. 4. 26.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같은 날 10:00경 ○○시립화장장에서 화장한 뒤, 유골은 15:00경 국립○○현충원에 안장하여 순직 처리하였다.

파. 이 사건 직후, ○○교육사령관 및 ○○훈련소장은 피해자에 대한 행군 후 환자진료 체계, 지구병원 군의관 순회진료 실태, 훈련병 관리실태 등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하고, 2011. 6. 11. 및 6. 24. 지휘감독소홀 및 보고의무위반 책임을 물어 연대장 대령

김○○에게 경고, 0교육대장 소령 박○○에게 견책, 0중대장 대위 남○○에게 근신 3일, 소대장 중사 양○○에게 감봉 2월의 징계 조치를 하고, 근무태만의 책임을 물어 지구병원 군의관 중위 김○○, 중위 권○○에게 견책의 징계를 하였다. 또한 당일 당직근무병인 병장 유○○에게 보고의무위반 책임을 물어 휴가제한 3일, 연대 의무병 상병 정○○에게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근신 5일의 징계조치를 하였다.

하. ○○훈련소장은 ○○대학교병원으로부터 수막염 발병 경위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예방약 투약권고를 받고, 예방의약품인 항생제를 4. 27. 00연대 훈련병 등 2,184명에 대해 우선복용 조치하고, 2011. 6. 30. 훈련병 관리 및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병력결산 주기를 교육대와 중대 간에는 일일단위로 결산, 보호관심병사에 대한 등급분류를 상향조정, 응급 환자식별 및 대처방법 강화, 개인별 진료여건 보장 및 관리일지 기록 철저, 훈련 복귀 후 훈련병 관리대책 강화, 응급환자 상급병원 후송 등 의료지원 강화대책 등의 관련 의료시스템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5. 판단

이 사건 피해자의 소속 지휘간부들이 피해자에 대한 의료 등의 보호조치를 적절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훈련병 신상 관리 체계에 대하여

피해자의 소속 지휘간부들인 00연대장, 0교육계장, 0중대장, 소대장 등은 피해자가 ○○훈련소 입소 및 중대 전입 당시 건강한 상태여서 특별한 보호관심병사가 아니었고, 훈련 중에도 별도의 건상 상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병 분대장 및 전우조 병사들로부터도 관련 사항을 보고 받지 아니하여 이를 사전에 인지하는 못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가.항~라.항에 의하면,

첫째, 피해자가 2011. 4. 8. 우천상황에서 영점사격을 할 때 전투복이 젖어, 감기증세를 앓았고, 그 당시 많은 훈련병들이 기침 등 관련 증세를 가져 4. 11. 연대 의무실에 진료를 받는 등 건상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으나 일일병력결산 시 이를 파악해 별도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점,

둘째, 피해자가 2011. 4. 22. 19:00경부터 4. 23. 02:10경까지 실시된 20km 완전군장 야간행군 훈련 중인 4. 23. 00:48~01:00경 행군 중 뒤처져 전우조 등 동료 훈련병 2명이 뒤에서 밀어주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동료 훈련병들의 미보고로 위 피진정인들이 이

를 인지하지 못한 점,

셋째, 피해자가 2011. 4. 23. 02:10경 행군 복귀 후, 기력상실 등 고열의 증세를 보였으나, 먼저 환자발생 등 의무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이를 발견한 분대장의 보고를 받고도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 온수샤워를 시키고, 연대 군의관이 퇴근 후인 03:30경 뒤늦게 연대의무실 진료조치를 취하여 적절한 의료조치의 기회를 받지 못하도록 한 점,

넷째, 피해자가 2011. 4. 23. 04:00경 소속대 복귀 후, 소대장은 분대장으로부터 의무병으로부터 해열제만을 복용하고 군의관의 진료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중대장에게 지휘보고 및 지구병원 응급실로 긴급후송하거나, 취침 중 환자상태의 경과를 관찰하는 등 별도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취침하게 하고, 당직계통으로는 행군환자 보고 시 고열환자 0명이라고 사실과 달리 보고하여 소속 중대장 등 지휘관들이 관련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들이 훈련병 관리 및 관련 지휘보고체계의 부실, 잘못된 판단과 부주의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와 ○○훈련소 예규 150호 제4조에 따라 응급환자 후송 및 진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의료접근권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연대 의무대 및 훈련소 지구병원 군의관 진료행위의 적절성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바.항~차.항과 같이 피해자가 2011. 4. 23. 12:23경 ○○훈련소 지구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병원을 경유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응급치료 중 사망하기까지 위 지구병원 간호장교 변○○, 군의관 대위 정○○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진찰 및 경과 관찰 등의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그 진료의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나, 위 인정사실 라.항 및 마.항과 같이 피해자가 행군 복귀 후 고열의 증세를 보이다가 훈련소 지구병원 응급실에 긴급후송 되기까지의 진료행위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연대 군의관 중위 박○○은 2011. 4. 22. 19:00~4. 23. 02:10경까지 야간 행군에 의무지원을 하고, 연대 의무대에 복귀하여 행군 중 발생한 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고, 4. 23. 03:00경 퇴근을 하면서, 의무병인 상병 정○○에게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연락망 등의 조치를 지휘감독을 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둘째, 연대 의무병 정○○는 고열의 상태를 보인 피해자에 대하여 군의관 박○○에게 아무런 보고 없이 임의로 체온을 측정하고 처방약으로 해열제만을 복용시키고 복귀시켜 피해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점,

셋째, 휴일 중 훈련소 지구병원 순회 진료와 관련하여, 군의관 중위 김○○, 권○○은 2011. 4. 23. 당시 일과시간이 12:20경까지로, 그 시간 내에는 순회진료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의무대로 피해자를 비롯한 진료인원이 예정된 진료시간이 15분 지연된 11:45경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진료를 하지 않고 지구병원으로 복귀함에 따라 피해자가 같은 날 12:17경 앰뷸런스를 이용하여 지구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들의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필요한 의료행위를 적기에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피해자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조치의견에 대하여

이 사건 조치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계기관인 ○○교육사령부와 피진정기관인 ○○훈련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파.항과 같이 감찰조사를 통하여 지휘감독소홀, 보고의무위반, 근무태만, 직무유기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 및 행정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였고, 또한 수막염 발병경위에 대한 역학조사 및 예방조치, 훈련병 관리 및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고, 이미 기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가 ○○훈련소 예규 000 제4조(응급진료대기 및 응급환자 진료)의 준수에 대해 전 직원에게 교육할 것과 관련 제반사항들을 정비할 것을 권고(군대 내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사건, 11진정0115100)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 별도의 권고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위 인정사실 타.항과 같이 피해자는 변사사건 조사 후, 훈련 중 병사에 의한 순직으로 처리되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으나, 피해자 유가족의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조치가 된 바 없으므로, 관련 피진정인들을 상대로 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지원을 위한 법률구조요청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1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 원 장주영 위 원 윤남근

9 12진정4916 [군대 내 집단 구타 및 의료조치 미흡 등] 2012. 11. 29. 결정

▌결정사항 ▌

육군 00사단장에게, 피진정인 5·6·7에 대하여 각각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피진정인 8에게 '주의'조치 및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의무기록이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해당 부대의 지휘책임자들은 소위 '생일빵'이라는 악폐습 행위를 예방하지 못하는 등 부대 관리를 소홀히 하고, 관심병사에 대한 신상관리에 미흡하였으며,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2]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와 질병을 입었으나, 부대 지휘관은 피해자의 가족이 요구할 때까지 간단한 치료 외에 다른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최초 진료한 군의관은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피해자의 치료를 적절하게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3]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및 피해자의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권리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

▌참조조문 ▌

「군인사법」 제47조의2(복무규율), 「군인복무규율」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부대관리 훈령」 제15조(정의) 및 제26조(위반자에 대한 처리지침),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별표1

▌ 진정인 ▌ 김○○

▌ 피해자 ▌ 김○○

▌ 피진정인 ▌ 1. 김○○ 2. 유○○ 3. 김○○ 4. 김○○
5. 승○○ 6. 강○○ 7. 김○○ 8. 문○○

▌주 문 ▐ 1. 육군 제00사단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진정요지 나.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5, 6, 7에게 각각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나. 진정요지 라.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8에게 '주의'조치 및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의무기록이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진정요지 가, 다, 마.는 각 기각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가. 피해자는 육군 제00사단 00포병대대 알파포대(이하 '알파포대') 대원으로 군 복무 중이던, 2012. 5. 13. 위 생활관에서 동료인 피진정인 1, 2, 3, 4로부터 일명 '생일빵'이라는 이유로 팔, 다리, 허리, 배 등을 100여대 폭행당하였고, 방탄모로 머리를 5회 정도 폭행당하였다. 이후 피진정인 3은 근무 투입 중인 피해자에게 "왜 절뚝거리냐"면서 군용장비인 진압봉으로 허벅지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나. 포대장(중대장)인 피진정인 5와 대대장인 피진정인 6은 2012. 5. 14. 피해자가 샤워 중일 때 다른 병사가 피해자의 피멍을 보고 이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병원진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사건 발생 약 45일 뒤인 2012. 6. 29.에서야 피진정인 5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구타 피해사실을 알려와, 피해자 부모가 2012. 7. 2. ○○국군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병원진료를 받게 하였다. 이때 피진정인 5, 6 등은 피해자 부모에게 전화로 "팔을 몇 대 맞아 멍이 조금 들었다"라고 하였으며, 피진정인 7은 "머리에 방탄모로 여러 번 맞았는데 함몰은 안 되었다. 사회에 나가면 더 큰 일도 있을 수 있다,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자 하였다.

다. 피해자의 부모는 사단장과 면담하면서, 철저한 수사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부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진정 부대 측은 피해자 부의 전화번호를 가해자 측에 유출하였다.

라. 피진정인 8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후, 병원에 가거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14. 피해자가 물체에 부딪쳐 다친 것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

는데 급급하며 의료조치를 부실하게 하였다.

마. 피진정인 1, 2, 3, 4등은 자체 처분을 받고 피해자에게 "나는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 몸조심해야 된다, 우리 집에는 돈이 많으니까 괜찮다"라는 말을 하는 등 사후 협박까지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련자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의 진술요지

1) 피해자는 2012. 5. 13. 21:00경 알파포대 생활관에서 병사 약 19명이 모여 소위 '생일빵'이라는 명목으로 피진정인 1, 2, 3, 4로부터 약 100대 가량 머리, 양팔, 다리, 등을 15분간 구타당하였다. 피진정인 1은 주먹으로 왼쪽 팔을 20대 가량, 발로는 무릎과 종아리를 20여대 때렸고, 피진정인 2는 주먹으로 오른쪽 팔을 2회, 방탄모로 정수리 부위를 4~5회 때렸으며, 피진정인 3은 주먹으로 좌측 팔을 30대, 발로는 팔과 옆구리 부위를 20여대 폭행하였다. 또한 당일 21:40경 근무투입 중 진압봉(5cm×60cm)으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였다. 피진정인 4는 피해자의 이마에 딱밤을 2회 때렸다.

2) 분대장 상병 홍○○, 병장 김○○ 등 선임병이 피해사실을 보고하지 말라고 하여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못하였으나, 2012. 5. 14. 18:00경 목욕탕에서 샤워 중 다른 포대 병장 조○○가 피해자의 멍자국을 목격하고 당일 당직사령 대위 박○○에게 보고하였고, 2012. 5. 15. 아침 알통구보 시 상병 홍○○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예정되지 않은 위병소 근무를 지시한 사실을 당직사령이 알고, 상의를 탈의시켜 이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다. 2012. 5. 15. 피진정인 5가 출근하여 피해자와 관련 병사를 불러 피해사실 등을 조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3) 사건 발생 이후, 피진정인 5, 6등이 각각 피해자에게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려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 "걱정하실까봐 말하지 말라"라고 한 바 있다. 구타를 당한 후, 머리, 팔, 다리, 무릎, 옆구리 등이 아팠으나, 표면적으로 양팔에 멍자국만 있어, 지휘관이나 간부들에게 별도의 의료조치를 요청하지 않았고, 지휘관들도 의료조치를 취해주지 않아 2012. 7. 2. 국군○○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기 전까지 군의관이나 의무실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군의관인 피진정인 8은 순회진료를 하여 피해자의 상처를 진료하

고 처방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4) 피진정인 1, 2, 3등이 영창을 가기 전 피진정인 2가 피해자에게 와서 "ㅇㅇ아 ㅇㅇ이가 네 집 주소 외웠다, 전화번호도 외웠다, 제대하고 네가 오지 말아야 할 곳은 ㅇㅇ도, △△도, 서울 등이다"라고 협박하였다.

다.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김ㅇㅇ, 당시 같은 부대 병장)의 주장

피진정인 1은 2012. 5. 13. 21:00경 생활관에서 피해자의 생일파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생일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과자를 한가득 넣어준 뒤, 팔뚝을 약 30대 가량 때렸고, 발로 하체부위를 10대 가량 때렸다. 피해자에 대하여 사후 협박을 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 2(유ㅇㅇ, 당시 같은 부대 일병)의 주장

2012. 5. 13. 21시경 소대원들이 PX에서 과자를 사와서 '용서와 화해'시간에 생일파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먼저 "생일빵인데 때려도 되니? 때려도 돼?"라고 묻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6대 정도 때렸고 피해자의 머리를 방탄모로 가볍게 5회 정도 툭툭 친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계속 아프다는 얘기를 하였으나 살려달라는 이야기는 없었다.

3) 피진정인 3(김ㅇㅇ, 당시 같은 부대 일병)의 주장

2012. 5. 13. 21:00경 알파포대 생활관에서 약 20명 가량 모여, 피해자의 생일 축하를 위한 다과를 하였는데, 피진정인 1, 2와 함께 본인도 주먹으로 약 20대를 때렸고 일부 조금 세게 때린 것도 인정한다. 점호가 끝나고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중앙현관에서 근무지 투입 중인 피해자가 선임보다 늦게 준비하여 현관에 걸려 있던 진압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가볍게 치면서 "선임들이 기다리잖아"라고 하였다. 악의로 때린 것은 아니고, 생일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장난스럽게 시작한 것이며, 피해자에 대하여 사후 협박을 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은 없다.

4) 피진정인 4(김ㅇㅇ, 당시 같은 부대 일병)의 주장

피진정인 4는 피해자의 후임병이며, 오른손 중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딱밤 1회 때렸을 뿐이다.

5) 피진정인 5(승ㅇㅇ, 당시 소속부대 포대장, 대위)의 주장

가) 사건인지 및 의료조치에 대하여

2012. 5. 13. 폭행사건 발생 시 휴가 중이었고, 5. 15. 01:30경 당직사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건을 인지하였다. 같은 날 07:00경 출근하여 관련자 및 부대원들을 개별적으로 조사를 했고 13:30경 대대장인 피진정인 6에게 "집단성·고의성이 보이므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보고 하였는데 피진정인 6은 알았다고 하였다. 이후 조치는 대대장의 권한이다.

2012. 5. 14. 연대 군의관 순회진료 시 피해자는 타박상으로 약 처방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팔이 멍들어 있어 확인하니 타박상이라고 하였고 움직이고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대대 의무병에게 진료를 받게 하였으나 관련 약품은 없다고 하여 하사 전ㅇㅇ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바르는 약을 주도록 지시 및 확인하였다. 2012. 5. 16. 아침 피해자의 상태 및 진료사실을 확인하였고 2012. 5. 17 연대 순회진료를 또 받도록 해주었으나 연대 순회진료가 취소된 바 있다. 이후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했으며 2012. 5. 22. 동원훈련 때 연대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한바 이때 군의관은 거의 나았고 이상 없다고 했으며, 피해자도 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말을 하였다.

나) 피해자 가족 통보에 대하여

피진정인 5는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팔 상태 등을 확인하고, 면담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알리지 말아 달라"고 하여 연락을 하지 않았다. 대대장인 피진정인 6이 피진정인 5에게 피해자 부모에게 피해사실 등을 알렸는지 물어보아, "피해자가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다며 알리지 말아 달라고 하여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를 하였고, 대대장이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 2012. 6. 29.경 가해자들이 구속되어, 더 이상 피해자 부모에게 연락이 지연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당일 전화로 통보하였다.

6) 피진정인 6(강ㅇㅇ, 당시 소속부대 대대장, 중령)의 주장

가) 사건인지 및 징계조치에 대하여

2012. 5. 13. 21:00경 포반 생활관에서 생일파티를 하던 중, 피진정인 1, 2, 3, 4가 피해자를 구타한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2012. 5. 15. 13:00경 피진정인 5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철저히 조사해서 규정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2012. 5. 16. 피진정인 5가 "가해병사 3명이 피해자에게 팔, 어깨, 등 부위를 70여회에 걸쳐 주먹과 팔로 폭행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직접 피해자를 면담해 보니 크게 위축된 상태가 아니었고, 큰 통증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2012. 5. 25. 대대장의 권한으로 가해자들에 대하여 영창 15일 조치를 하고, 타 대대로 전출 건의하였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사건의 성격상 헌병대에 수사의뢰 등 형사처벌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 같아 지휘관으로써 책임을 느끼며 연대장인 피진정인 7에게는 2012. 5. 17. e-Mail을 통해 사건발생보고를 하였다.

나) 피해자 가족 통보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은 피진정인 5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의사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부모에게 연락을 원치 않았다고 하여 연락하지 않은 것이다. 2012. 6. 14. 이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영창 적법성 심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사단 법무실에 상신하였는데, 사단 법무실에서 징계조치와 별도로 형사입건하여 2012. 6. 29.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피진정인 5가 같은 날 피해자의 부모에게 폭행 피해사실을 뒤늦게 알려주게 되었다.

다) 피해자 가족의 전화번호 유출에 대하여

피해자 부모는 2012. 7. 2. 사단장 면담 시 가해자 측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를 하였는데도 가해자 측의 전화연락이 와 사단장에게 항의를 하였다고 하여, 경위를 파악해 보니,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중령 이○○이 대대 인사담당관 하사 이○○에게 전화하여 사건경위를 묻고 피해자 측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하사 이○○가 이를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어떤 경위로 피해자 부모의 전화번호가 유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평소 피해자는 생활전반에 이해도가 떨어지고 다른 병사들과의 단체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멘토 간부 및 병사를 지정하고, 소속 포대장으로 하여금 1일 1회 면담관찰하고, 대대장은 월 2~3회 직접 일대일 면담을 하는 등 A급 보호관심병사로 관리해 왔다.

7) 피진정인 7(김○○, 당시 소속부대 연대장, 대령)의 주장

연대장인 피진정인 7은 2012. 5. 25. 대대장 피진정인 6으로부터 병사 3명이 피해자를 집단구타 하여, 가해자들에 대하여 영창 15일의 징계조치를 하고 타 대대 전출을 건의한다는 문서보고를 받았다.

당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분위기가 고조되다 보니 우발적으로 발생

한 것으로 보고 받았고 대대장이 가해병사들에 대하여 최고 징계인 영창 15일로 조치한 다기에 결재를 하였는데, 만약 피해자에 대한 구타사진을 보았으면 더 중하게 처벌하였을 것이다.

2012. 6. 30. 대대장실에서 피해자의 부모 면담 시 본인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방탄헬멧으로 때린 것이 마치 경미하고 향후에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고, 단지 "죄송하다. 관련자는 처벌하겠다"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8) 피진정인 8(문ㅇㅇ, 당시 소속연대 군의관, 중위)의 주장

가) 피해자에 대한 순회진료 여부에 대하여

2012. 5. 14. 순회진료 시 피해자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니 "팔이 좀 아프다"면서 팔을 보여주어, "뭐하다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니 "물건에 부딪쳤다"고 하여 "물건에 부딪힌 것에 비하면 심한데 눌렀을 때 압통은 있느냐?"고 하였고 "압통이 있다"고 대답하여, "움직일 때 아프지 않냐?"고 하니 "심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타박상이 의심된다"고 얘기하면서 아프면 골절의심이니 다시 오라고 하면서 진료를 마쳤다.

나) 피해자 진단서 발급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은 사단 법무참모가 재판과 관련하여 "진단서 양식으로라도 작성하여 제출해 달라"고 하여 진술인이 연대에 들러 피해자의 진단서를 작성한 후, 법무참모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다) ㅇㅇ대대 의무기록 미비 사유

ㅇㅇ대대는 전산 및 PC설비의 미흡으로 인하여 진료 시 eDEMIS system(의무기록시스템)이 지원되지 않고 있고, 당시 훈련기간 중이라 의무기록 작성이 힘들어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 평상시의 의무기록은 연대 eDEMIS를 바탕으로 기록하며 단순한 소독, 파스 배급 등 진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장기간의 훈련 또는 부재 시 및 Tel order인 경우에는 기록을 못한 경우도 존재한다.

다. 참고인 및 관련자의 진술요지

1) 박ㅇㅇ (대위, 제00사단 00연대 00대대 찰리포대장)

2012. 5. 14. 당직사관 근무하던 중, 조ㅇㅇ 병장으로부터 "목욕할 때 보니 피해자의 팔뚝에 멍이 들어 있었다. 생일빵을 맞은 것 같다"라는 쪽지를 전달받고 생활관에 가서

피해자가 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알파포대장 피진정인 5에게 전화를 하여 구타사건 발생 사실을 알렸다.

당일 06:30분경 기상 후 알통구보 시 피해자의 멍을 확인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점호에 나오지 않아서 당직 부관에게 피해자가 근무 투입 중인지 확인해 보라고 한 후, 위병소에 전화를 해보니 근무자가 아닌데도 근무 중이었고, 점호를 끝내고 나서 위병소에 다시 전화해 보았더니 피해자가 근무하지 않고 있어, 점호가 끝나고 하사 전○○, 분대장 홍○○과 피해자를 지휘통제실로 불러서 생일빵이 있었는지 묻고, 피해자의 상의를 탈의시키고 당직부관에게 사진을 찍으라고 하였다. 당일 07:00경 알파포대장이 부대에 들어오므로, 생일빵이 있었던 것 같으니 사실 확인해서 대대장에게 보고하라고 전달하였으며, 분대장 홍○○이 임의로 위병소 근무를 교대시켰다고 피진정인 5에게 얘기해 주었다.

2) 김○○(대위, 00사단 00연대 인사과장)

본인은 2012. 7. 2.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피해자의 병원진료를 위해 국군○○병원에 동행하였는데, 진료 중 피진정인 3의 모로부터 피해자의 부에게 전화가 온 것에 대해 피해자의 부가 매우 불쾌해하면서, 누가 가해자 측에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확인결과 알파포대장 대위 승○○, 인사담당관 하사 이○○는 연락처를 알려 준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며, 가해자의 모에게도 전화하여 확인하였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결국 유출경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3) 이○○(중령, 국방부 ○○과)

참고인은 2012. 6. 29. 경 지인으로부터 동료의 아들이 구속이 되었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일 부대 인사담당관인 하사 이○○에게 전화를 하여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이름을 묻고, 가해자 부모에게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를 하라"는 조언을 해주려고 피해자 부모의 연락처를 물었으나 하사 이○○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 부모에게 연락처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

4) 이○○(하사, 00대대 인사담당관)

2012. 6. 29.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심사 후, 13:23경 국방부 중령 이○○으로부터 부재중 전화 1통과 연락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전화를 하였더니 사건경과에 대해 물어봐서 가해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알려주었는데, 같은 날 13:39경 중령 이○○이 가해자 일병 김○○의 모친 전화번호를 물어보아 알려주었고, 피해자의 이름을 물어보아 알려주었으며, 2012. 7. 3. 10:59경 또 다시 전화하여

가해자 모의 전화번호를 메시지로 요청하여 알려주었고, 또한 피해자 부모의 번호를 요청하여 "피해자의 부모 전화번호는 알려 줄 수 없다"라고 대답해 주었을 뿐, 본인이 피해자의 부모 전화번호를 알려 주지는 않았다.

5) 홍○○(상병, 00대대 알파포대 분대장)

2012. 5. 13. 저녁 피해자의 폭행에 가담한 사람은 피진정인 1, 2, 3, 4였고, 익일 5. 14. 당직은 찰리포대장이었는데, 분대장으로서 긴급하게 보고하여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다음 날 아침에 직속 포대장인 알파포대장에게 보고 하려고 하였다. 5. 15. 기상 후 06:30분에 알통구보를 하는데 피해자 몸의 멍자국을 찰리포대장이 알아볼 것 같아, 피해자를 알통구보 할 때만 20분 정도 위병소 근무를 보냈다. 찰리포대장이 평소 부대원들에게 엄격했으므로 알게 되면 좋지 않을 것 같았고, 직속상관도 아니므로 나중에 알파포대장에게 보고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진술인은 이를 이유로 휴가제한 5일의 징계를 받았다.

6) 설문응답자(익명, 제00사단 00연대 00대대 알파포대 병사 16명)

생일빵 관련 피해사실에 대한 익명 설문 실시 결과 16명 중 4명이 소속 부대 내에서 이 사건 외 생일빵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16명 중 1명은 자신의 생일에 생일빵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현재 병영 내 구타, 가혹행위, 폭언, 욕설 등 병영 부조리가 남아 있다고 답한 인원은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알파포대원 연명부, 피해자 진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문답서), 참고인(관련자) 진술서, 육군 제00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판결문, 제00사단 보통검찰부 폭행사건 발견 보고서, 관련자 진술조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병영악폐습행위보고서, 피해자 진단서 사본, 신인성검사 결과보고서, 소원수리서 접수 및 조치결과 현황, 2012 1/4분기 부대안전평가 결과보고서, 2/4 사단병력결산 보고서, 2012. 1월 병력결산 보고, 피해자 인사기록부 및 면담(관찰)기록부 사본, 최근 1년 간 포대별 징계기록 사본, 징계 관련 기록 사본, 최근 1년 간 사고예방 관련 계획 및 결과 보고서 사본, 피해자 마음의 편지 사본(2012. 3. 5.), 외래진료 의뢰 및 진료결과 회신지, 소견서(○○병원), 진단서(○○병원), 진단서(국군○○병원 대위 최○○, 신경외과), 진단서(국군○○병원 대위 조○○, 정신과), 진단서(국군○○병원 대위 정○○, 정형외과)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2011. 7. 12. 입대하여 2011. 9. 9. 알파포대에 전입하였고, 2012. 1. 5. 실시한 新인성검사에서 부적응 및 '사고예측 관심' 판정을 받아, A급 관심병사로 관리되어 온 바 있다.

나. 피진정인 1은 2012. 5. 13. 21:00경 포대 생활관에서 속칭 '생일빵'이라는 명목으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양팔을 약 40대 가량 폭행하였고, 피진정인 2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팔, 다리를 약 7회 가량 때렸으며, 피진정인 3은 주먹과 팔로 피해자의 양 팔을 약 50대 가량 폭행하였고, 피진정인 4는 피해자의 이마를 오른손 중지손가락으로 1회 폭행하여, 피진정인 1, 2, 3, 4는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군의관 소견)의 치료가 필요한 양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진정인 5는 2012. 5. 15. 조사를 하여 대대장인 피진정인 6에게 발생보고하고, 피진정인 6은 2012. 5. 25.경 연대장인 피진정인 7에게 보고하였으며, 2012. 5.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진정인 1, 2, 3에 대하여 영창 15일의 징계 결정 후, 2012. 5. 29. 제00사단 법무부에 적법성심사를 요청하여, 2012. 6. 14. 적법통보를 받고, 이 과정에서 제00사단 검찰에서 공동상해죄로 인지하여, 2012. 6. 29. 피진정인 1, 2, 3을 구속 기소하였다.

라. 피진정인 5, 6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발생 후, 약 1개월 15일간 피해자의 부모에게 폭행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적절한 의료적 처우에 미흡하였고, 피해자는 2012. 7. 2.경에야 진정인 등 가족들의 요구로 군병원 등을 방문하여 병원 진료를 받게 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2. 7. 2. 국군○○병원에서 '(의증)적응장애' 및 '슬관절대퇴골 원외부 골타박상, 양측 슬관절 연골판의 경한 퇴행 변화 등'의 진단을 받고, 2012. 7. 9. 인천광역시 ○○병원에서 '양측무릎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양측무릎의 내부이상, 내측반달연골' 및 'MRI 상 우측 대퇴골 내과 부위에 골타박상 아직 심한 상태며(이는 구타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임) 양측 무릎부위는 최대한 안정을 요하며 무리한 훈련이나 운동 시 파열위험성이 높은 상태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바. 국방부 ○○ 소속 중령 이○○은 2012. 6. 29.경 피해자의 소속 대대 인사담당관 하사 이○○에게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부모의 연락처를 조회한 바 있고, 2012. 7. 2. 가해자인 피진정인 3의 모가 피해자의 부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있다.

사. 피진정인 8은 연대 군의관으로서 2012. 5. 14. 순회진료 시 피해자에 대해 진료하였으나, 피해자 소속 00대대가 eDEMIS system(의무기록시스템)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피해자에 대한 해당일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로, '물체에 부딪쳐 내원, 골절의 가능성은 낮으므로, 타박상에 준해 치료, 연고제재로 3주 간 치료'라는 내용의 사후 진단서를 2012. 6. 27. 작성하여 검찰 수사관에게 제출하였다.

아. 피진정인 1, 2, 3은 이와 관련 2012. 6. 14. 영창 15일, 피진정인 4는 2012. 6. 28. 휴가제한 5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피진정인 1, 2, 3은 2012. 6. 29. 제00사단 보통검찰부에 의해 기소되어, 2012. 7. 18. 피진정인 1, 3은 각 벌금 2,000,000원, 피진정인 2는 벌금 1,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다.

4. 판단

가. 폭행 행위 및 처벌에 대하여,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구타·가혹행위를 한 행위는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의 인정사실과 같이 가해자들이 각 영창 15일, 휴가제한 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군 수사를 통하여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벌금 2,000,000원 등의 확정 판결이 선고된바, 이 항 피진정인 1, 2, 3, 4에 대한 진정요지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기각한다.

나. 지휘 감독책임 관련자들의 보호조치 미흡에 대하여,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제2항은 '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대관리훈령(국방부 훈령)' 제15조 제1항은 '지휘·감독 책임이란 사건·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지휘·감독 대상 인원의 비위사실 등 과오·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6조 제5항은 '지휘관은 위반사실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첫째, 피진정인 5가 피진정인 6, 7에게 순차적으로 사건 발생보고를 하였다. 이후 가족에 대한 연락 부분은 비록 피해자의 원에 의해 가족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다고 하나 피해자가 A급 관심병사였는바 지휘관의 판단으로 가족연락

을 취했어야 하는 것이 타당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사건 발생 45일 후에야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하여 병원진료가 늦어지고, 의료 및 법률적 대응에서 가족들의 보호와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둘째, 피해자는 2012. 1. 5. 실시한 '신인성 검사'에 의해 이미 A급 관심병사로 지정되어, 매월 부대 안정성 평가와 병력결산 시 '2주 1회 전화통화 등 가정과 연계한 신상관리' 조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2012. 4. 27. 이후 2012. 5. 31.까지의 면담(관찰)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셋째, 가해자들의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상해죄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임에도, 피진정인 5, 6, 7등은 행정처분으로써 징계조치하였다가, 사건 발생 약 1개월이 지나서 사단 보통검찰부가 자체 인지하여 기소한 점 등을 살펴볼 때,

해당 부대의 지휘책임자들이 소위 '생일빵'이라는 악폐습 행위 발생을 예방하지 못하는 등 부대관리를 소홀히 하고, 관심병사에 대한 신상관리에 미흡하였으며,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행위는 「군인복무규율」 등 관련 규정상 책임의무를 소홀히 하여, 「헌법」 제10조 후단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7의 피해자 가족에 대한 발언의 인권침해성에 대하여는 발언 취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주장이 서로 달라 이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은 하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부의 전화번호 유출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해자의 소속 부대 측에서 가해자 측에게 피해자 부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부대 등 관련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참고인 및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유출자를 특정할 수 없어, 이 항 진정요지는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한다.

라. 진료기록 누락 및 적절한 의료조치 등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해자가 폭행 피해 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단서가 허위로 발급되었으며, 피해자가 진단받은 타박상은 물론, 양측 무릎 연골의 퇴행변화, 적응장애가 폭행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당사자 및 관련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타박상 외의 적응장애 및 양측 무릎 연골의 퇴행변화 증세가 가해자들의 폭행에 기인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인과관계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그 직접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최소 3주에서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및 적응장애, 양측 무릎연골의 퇴행 변화의 상해와 질병을 입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가족이 요구할 때까지 피진정인 5, 6, 7 등 부대 지휘관은 타박상에 대한 간단한 치료 이외 다른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아울러, 최초 진료한 군의관 피진정인 8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진료기록을 남기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적시에 적절하게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는 피진정인 8이 「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군보건의료인의 진료기록 작성의무'와 「군의무기록 관리 훈령」(국방부 훈령)상 제대별 의무기록 서식 비치기준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피해자의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가해자의 협박행위에 대하여,

진정인 및 피해자는 폭행 가해자들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을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나 가해자들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군 수사과정에서도 협박 관련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사실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항 진정요지는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29.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 원 양현아 위 원 한위수

[별지] 관련규정

1.「군인사법」

제47조의2(복무규율)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①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② 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부대관리훈령」(국방부 훈령)

제15조(정의) ① "지휘·감독 책임"이란 사건·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지휘·감독 대상 인원의 비위 사실 등 과오·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제26조(위반자에 대한처리지침) ① 지휘자를 제외한 병사 사이에서 명령, 지시를 한 경우나 이를 묵인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한다.
② 구타·가혹행위자는 엄중한 형사처벌과 징계처벌을 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와 경미한 구타·가혹행위도 처벌한다.
③ 집단따돌림(일명 '왕따행위'를 말한다) 등 인격적 모독과 고통을 가한 경우 주모자와 적극가담자는 처벌한다.
④ 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지휘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⑤ 지휘관은 위반사실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

4.「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

서는 아니 된다.

6.「군 의무기록 관리 훈령」

[별표 1] 제대별 의무기록 서식 비치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분	의무기록서식종류	병원급 (이동외과 포함)	사(여)단·함대·전투비행단급 의무실	연대·독립대대급 이하 의무실
진료기록	• 병상일지 표지	o		
	• 퇴원요약지	o		
	• 진단, 처치, 수술기록	o		
	• 외래환자진료기록지	o	o	o
	• 응급실기록지	o	o	o
	〈삭제,이동〉			
	• 입원기록지	o		
	~~생 략~~~~~			

10 13진정4463 [군의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2013. 10. 31. 결정

▌결정사항▐

[1] 국방부장관에게, 군대 내 환자 발생 시 군의관의 신속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

[2] 육군 제○군단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조치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육군 제○○사단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위와 같은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피진정인 1, 2, 3은 피해자가 부대 내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위 제 규정을 위반하고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2] 피진정인 2는 피해자에게 "생긴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으로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참조조문▐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6조

▌진정인▐ ○○○

▌피해자▐ 故 ○○○

▌피진정인▐ 1. ○○○
2. ○○○
3. ○○○

▌주 문▐ 1. 국방부장관에게, 군대 내 환자 발생 시 군의관의 신속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육군 제○군단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조치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육군 제○○사단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위와 같은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 및 라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12. 1. 31. 입대하여 2012. 3. 23. 육군 제○○사단 ○○○기계화보병대대 ○중대로 전입하여 복무하던 중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다가 2013. 6. 17. 사망하였는데, 진정인(군인권센터 소장)은 피해자의 유족과 이와 관련한 상담을 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다.

가. 피진정인 1(대대장), 피진정인 2(중대장), 피진정인 3(소대장)은 피해자가 2013. 1. 7.~2013. 1. 11. 혹한기 훈련을 다녀온 직후 두통이 심하여 외부진료를 요청함에도 피해자를 타 부대에 경계근무 파견을 보내는 등 치료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2는 2012. 여름 피해자가 사격장 보수공사를 하던 중 톱으로 나무를 자르다가 오른 손등을 긁혀 치료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이 새끼야 그런 걸로 안 죽어 하던 거 계속해"라고 말하며 면박을 주었다.

다. 피진정인 2는 자대배치 후부터 무슨 일만 생기면 피해자에게 원인 제공자라며 추궁하고, "생긴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군인에게는 인권이란 없다."라고 하며 모욕하고 무시하였다.

라. 국군○○병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뇌종양인지 여부도 진단하지 못하였고, 국군○○병원에서는 피해자를 기침환자와 같이 입원시켜 결국 피해자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하도록 하는 등 부실하게 진료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육군 제○○사단 ○○○기계화보병대대 대대장)

피진정인 1은 2013. 1. 22. 19:00경 제○여단 경계근무 파견 임무를 수행 중이던 피진정인 2로부터 피해자에게 두통증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민간병원 진료 결과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뇌수막염도 의심해볼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다음날인 2013. 1. 23. 피해자에 대하여 사단 의무대를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2013. 1. 24. 피진정인 2로부터 민간진료를 위해 사전에 계획된 피해자의 휴가를 앞당겨 보내줄 것을 건의 받아 이를 허락하였고, 2013. 1. 26. 피해자가 민간병원 진료결과 뇌종양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2013년 동계 혹한기 훈련(2013. 1. 7.~2013. 1. 11.) 종료 시까지 피해자의 건강과 관련하여 특이한 보고를 받았던 적이 없으며, 대대장으로서 환자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왔다.

2) 피진정인 2(육군 제○○사단 ○○○기계화보병대대 ○중대 중대장)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 2는 2013년 동계 혹한기 훈련 복귀 당일까지 피해자가 아프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가 2013. 1. 14. 생활관을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두통과 오한 증상으로 생활관에서 쉬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2013. 1. 16. 피해자가 침대에 반쯤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 주간 정신교육에 열외하고 쉬게 한 사실이 있으며, 2013. 1. 17. 생활관 순찰 시 피해자의 양손 엄지손가락을 따고 정로환 3알을 주며 건강상태를 확인하였고, 2013. 1. 19. 피해자에게 민간병원 진료를 받게 한 결과, 피해자에게 장염이 의심되며 2~3일 상태가 지속되면 뇌수막염을 의심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위 민간병원 진료 다음날부터 중대원 전체가 제○여단 경계근무 파견을 나가야 했는데, 당시 피해자의 외견 상 특별한 이상이 없어보였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이면 괜찮겠다는 판단 하에 피해자를 위 파견근무에 동행하도록 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 관련

피진정인 2는 2012년 여름 부대차원에서 사격장 보수공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손등을 긁혀 치료를 해달라고 피진정인 2에게 요청한 기억이 없고, 피해자에게 이에 대해 면박을 준 기억도 없다. 한편, 2012. 5.~2012. 6.경 피해자가 늦게 기상하는 등 생활태도가 좋지 않아 이를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변화가 없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생긴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한 적이 있다.

3) 피진정인 3(육군 제○○사단 ○○○기계화보병대대 ○중대 ○소대 소대장)

피진정인 3은 2013. 1. 14. 분대장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몸살기운이 있다는 보고를 최초로 받아, 2013. 1. 15. 피해자가 의무대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였고, 계속 피해자의 경과를 지켜보았으나 차도가 없어 2013. 1. 16. 오후 전투체육시간에 열외하고 생활관에서 휴식하도록 하였으며, 이후에도 피해자의 증세가 나아지지 않고 구토를 하여 2013. 1. 17. 의무대 진료를 받도록 한 뒤, 2013. 1. 19. 민간병원에서 외진을 받도록 한 결과 장염 및 뇌수막염일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제○여단 경계근무 중이던 2013. 1. 21. 피해자의 증세가 심해졌다고 하여 이를 피진정인 2에게 보고하였고, 피진정인 1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3. 피해자를 사단 의무대를 거쳐 국군○○병원으로 후송하였다.

3.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별지 1〉 기재와 같다.

4.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참고인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해당부대 병력에 대한 설문결과, 피해자에 대한 면담 및 관찰기록, 위생차 지원계획 지시 공문, 피해자 관련 의무기록(사단 의무대, 국군○○병원), 피해자의 병상일지(국군○○병원), 현장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인 1(중령)은 육군 제○○사단 ○○○기계화보병대대 대대장이고, 피진정인 2(대위)는 위 같은 대대 ○중대 중대장이며, 피진정인 3(중위)은 위 같은 대대 ○중대 ○소대 소대장이다. 이 사건 이후 피진정인 2는 육군 제○군단 작전처로 전출되어 현재 근무 중이고, 피진정인 3은 전역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2. 1. 31. 입대하여 2012. 3. 23. 육군 제○○사단 ○○○기계화보병대대 ○중대로 전입한 후, 2012. 5.초 탈장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 이외에는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의무실에서 진료 받은 사실이 없었다.

다. 피진정인 3은 2013년 동계 혹한기 훈련(2013. 1. 7. ~ 2013. 1. 11.)이 끝나고 며칠 후인 2013. 1. 14. 피해자에게 두통 증상이 있어 생활관에서 쉬도록 하였다는 소속 분대장의 보고를 받았고, 피진정인 2도 같은 날 생활관을 방문하였다가 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증상을 알게 되었다.

라. 피해자는 2013. 1. 15. 저녁 두통 증상이 지속되어 의무실에 찾아 갔으나, 부대 군의관이 퇴근하여 당직 군의관에게 유선으로 타이레놀과 비페리덴(긴장형 두통에 쓰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마. 피진정인 2, 3은 2013. 1. 16. 피해자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주간 정신교육 및 전투 체육시간에 열외하고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바. 피진정인 2는 2013. 1. 17. 위와 같이 피해자의 증상이 며칠간 계속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중대원 100여명이 집합해 있던 중대 삼거리 복도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몇몇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며 위생차(인분차량) 청소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열외시켰다. 한편, 피진정인 3은 같은 날 분대장으로부터 피해자가 구토를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피해자를 의무실에 가도록 하였으나, 당시 군의관이 퇴근하고 없어 피해자는 타 부대 군의관에게 유선으로 타이레놀과 멕페란(구토를 완화해 주는 약)을 처방받았다. 이후 피진정인 2는 같은 날 21:30경 피해자가 있는 생활관으로 가서 체한 증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일으킨 후 양손 엄지손가락을 따주며 정로환(소화제) 3알을 주었다.

사. 다음날인 2013. 1. 18. 피해자가 다시 구토를 하자, 같은 날 저녁 간부 결산회의(중대 간부들의 일일 회의)에서 피해자를 민간병원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는 2013. 1. 19. 민간병원 진료를 나가기 전 찾아 온 피해자에게 “군의관에게 직접 진료를 받은 적 있으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군의관이 퇴근한 이후 의무대에 방문하여 약만 처방받았다”라고 대답한 것에 대하여, “왜 군의관이 퇴근한 이후에 의무대에 찾아 갔느냐?”라고 말하며 질책한 후, 민간병원인 ○○○○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장염이 의심되며 2~3일 상태가 지속되면 뇌수막염을 의심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 및 약 처방을 받고 복귀하였다.

아. 피진정인 2는 피해자의 위 진료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외견

상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이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 괜찮겠다는 독자적인 판단 하에 병원 진료 바로 다음날인 2013. 1. 20.부터 시작되는 제○여단 경계근무 파견에 피해자를 참여시켰고(피해자는 위 경계근무에 있어 주간에는 위병소 초병으로 근무하고, 야간에는 22:00~23:00 및 02:00~04:00 동안 서서 탄약고를 지키는 업무를 하였다.), 2013. 1. 21. 피해자의 증상이 심해졌다는 피진정인 3의 보고를 받고 이를 2013. 1. 22. 피진정인 1(육군 제○○사단 ○○○기계화보병대대 대대장)에게 최초로 보고하였다.

마. 피진정인 1은 위와 같이 보고를 받은 다음날인 2013. 1. 23. 제○여단 경계근무에 대한 순찰을 실시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사단 의무대를 경유하여 국군○○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국군○○병원 진료 결과, 뇌척수액 검사에는 이상이 없고 경과를 지켜본 후 영상학적 치료를 실시하자는 소견을 듣고 두통약을 처방받아 복귀한 뒤, 대대 의무실에서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았으며, 대대 군의관은 피해자에게 CT 촬영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3. 1. 25.에 예정되어 있던 사단 의무대 및 국군○○병원 외진 명단에 피해자를 올려놓았다.

바. 피진정인 1은 2013. 1. 24. 피진정인 2로부터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한 사실과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가 나가기로 예정되어 있던 휴가를 당겨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이를 허락하여 2013. 1. 25. 피해자가 휴가를 갈 수 있게 조치하였다.

사. 피해자가 휴가를 떠난 다음날인 2013. 1. 26.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로부터 피해자가 민간병원 검사 결과 뇌종양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음을 보고받았다.

자. 피진정인 3은 위 같은 날인 2013. 1. 26. 이후 피진정인 2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몸 상태 이상을 최초로 보고한 2013. 1. 14.부터 휴가를 간 2013. 1. 25.까지의 피해자에 대한 '면담 및 관찰일지' 내용을 일괄 기록하였다.

차. 피해자는 이후 국군○○병원과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2013. 6. 17. 사망하였는데, ○○○○병원 의사 ○○○○이 발행한 사망진단서 상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이며, 직접 사인의 원인은 '뇌수막염', '악성뇌종양'이다.

6.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이 연유

되고, 본 조 후단은 이러한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는 군인의 의료접근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군인 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은 군인 등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등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 훈령인 「국방환자 관리 훈령」 제6조는 소속부대의 장은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소속 간부인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증상을 호소한 때부터 그 경과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피진정인별로 이러한 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우선, 피해자의 소속 소대장인 피진정인 3은 피해자의 증상과 그 경과에 대해 상급자인 피진정인 2에게 보고하고 피해자를 일과에서 열외하여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으로 증상을 호소한 날로부터 며칠 간 그 증상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가 군의관에게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는 국군ㅇㅇ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까지 부대 군의관으로부터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유선으로만 2회 진료를 받았는데, 군 부대와 같이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에서 일과시간에 자유로이 의무실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군의관으로부터 직접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 및 진료 결과를 확인하였다면 바람직했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뇌종양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이후에야 피진정인 2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 대한 '면담 및 관찰일지'를 일괄작성한 점을 고려해보아도 피진정인 3이 당시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기 어렵다.

2) 피진정인 2에 대하여

피해자의 소속 중대장인 피진정인 2도 피해자가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날부터 며칠 간 그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피해자가 군의관에게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주의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군의관이 퇴근한 후 의무대를 방문하여 유선으로만 처방을 받은 것에 대하여 뒤늦게 피해자를 질책하였으며, 피해자의 증상이 시작된 지 8일 후에야 피해자의 상태를 피진정인 1에게 보고하였고, 특히, 민간병원

에서 상태가 지속되면 뇌수막염을 의심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바로 다음 날 독자적인 판단으로 타 부대에 경계근무 파견을 보냈다. 또한, 실제로 일을 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며칠 간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 대하여 위생차 청소작업을 시키려 하였고, 피해자가 뇌종양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이후에야 피해자에 대한 면담 및 관찰일지를 일괄작성하도록 피진정인 3에게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2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기 어렵다.

3) 피진정인 1에 대하여

피해자의 소속 대대장인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증상에 대해 보고를 받은 다음날 피해자가 국군○○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민간병원 진료를 위해 피해자가 일찍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 3의 상급자이자 피해자 소속 대대의 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 2, 3의 적절치 못한 행위에 대하여 관리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피진정인 1, 2, 3은 피해자가 부대 내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위 제 규정을 위반하고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외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진정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피진정인 2의 답변에 의하면, 피진정인 2는 피해자에게 "생긴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으로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국군○○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뇌종양인지 여부를 진단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환자에 대한 진료방법에 관한 사항

은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당시 국군○○병원에서 피해자의 증상에 관한 진료와 함께 추후 영상학적 검사를 하기로 한 것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진료과정에 있어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국군○○병원에서 피해자를 기침환자와 같이 입원시켜 피해자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 및 사망의 원인에 대한 판단 역시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상 폐렴이 사망의 원인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기침환자와 같은 입원실에 입원해 있었던 시점(2013. 5. 1.~2013. 5. 10.경)과 피해자의 사망시점(2013. 6. 17.)이 차이가 나며, 이외 달리 위 병원의 의료적 과실 책임을 물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요지는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이므로 기각한다.

마. 조치의견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묻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데, 피진정인 2의 경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 대하여 경계근무 파견을 보내는 등 그 책임이 가장 크다 할 것이므로, 현재 피진정인 2의 소속기관장인 육군 제○군단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경고조치 하고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조치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이어 피진정인 3의 경우 현재 전역하여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하되, 피진정인 1의 경우 피진정인 2, 3의 상급자로서의 관리 책임을 물어 육군 제○○사단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과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조치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군대 내 진료 소홀로 인한 중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국방부장관에게 군대 내 환자 발생 시 군의관의 신속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3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 원 장명숙 위 원 한위수

[별지 1]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1. ○○○ 대위(국군○○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참고인은 2013. 1. 23. 국군○○병원에 온 피해자를 진료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두통 이외에 신경학적으로 특별한 소견이 없었고, 병원에 걸어서 들어올 정도로 의식 상태가 정상이었으며 말이 어눌하다거나 눈이 안 보이는 증상, 손의 마비 증상 등이 없었다. 민간병원에서 뇌수막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이와 관련된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밖의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한꺼번에 하지는 않으며 두통 증상만을 가지고 MRI 촬영 등을 하는 것은 오히려 과잉진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진료 후 증상이 계속되면 영상학적 검사 등 정밀검사가 필요하니 다시 오라고 하며 타이레놀을 처방하였다.

2. ○○○ 대위(육군 제○○사단 ○○○기계화보병대대 군의관)

참고인은 2013. 1. 23. 피해자가 국군○○병원에 다녀온 후 처음으로 피해자를 진료하여, 신경학적 검사(뇌에 병변이 있는지, 눈을 잘 움직이는지, 손가락으로 목표를 잘 짚는지, 손아귀 힘은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어 경과를 지켜보며 금요일(2013. 1. 25.)에 예정되어 있는 사단 의무대 및 국군○○병원 외진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명단에 올렸다.

3. 국군○○병원 원무과장

피해자가 감기환자와 같이 국군○○병원에 입원한 시기는 2013. 5. 1.~ 2013. 5. 10. 이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2013. 6. 17. 사망한 점을 볼 때, 국군○○병원에서 감염되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고, 또한 피해자의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사망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폐렴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

4. 김○○ 상병

참고인은 2013. 1. 7. ~ 2013. 1. 11. 동계 혹한기 훈련 당시 피해자와 같은 텐트를 사용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얼굴이 창백하였고 몸이 아프다고 하였으며, 혹한기 훈련이 종료되고 며칠 후인 2013. 1. 14. 오전부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며 분대장에게 고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분대장이 피진정인 3에게 보고하여 당일 생활관에 누워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다.

2013. 1. 15.~2013. 1. 16.경 중대원 100여명이 집합해 있던 중대 삼거리 복도에서 피진정인 2가 피해자를 포함하여 몇몇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며 위생차량을 청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2013. 1. 20.부터 피해자는 경계근무 파견을 나가 1시간 30분씩 서서 근무를 해야 했다.

5. 김□□ 상병

참고인은 2013. 1. 20. ~ 2013. 1. 24. 피해자와 한 조가 되어 경계근무를 하였는데, 주간에는 위병소 초병으로 근무하였고, 야간에는 탄약고를 지키는 업무로서 22:00~23:00 및 02:00~04:00 동안 서서 근무하였다. 근무 첫날인 2013. 1. 20. 피해자에게 몸이 아프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으나, 2013. 1. 21. 야간근무 중 피해자가 두통이 있다고 하다가 잠시 후 괜찮아졌다고 하였다. 2013. 1. 22. 야간근무 사이에 피해자가 두통을 호소하여 생활관에서 두피 마사지를 해주었는데 느낌이 좋지 않아 1분도 채 하지 못하였다. 참고인은 체육학을 전공하였고 스포츠마사지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 마사지를 많이 해왔는데, 당시 피해자의 두피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물풍선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별지 2]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군인등이 건강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의료접근권의 보장)

① 군인등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② 군보건의료인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인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은 군인등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등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군인등은 환자진료에 대하여 군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군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등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국방 환자관리 훈령(2012. 6. 11. 국방부훈령 제1418호)

제6조(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

① 소속부대(기관)의 장은 심신장애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 의료시설 또는 민간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는 편제상의 상급부대 또는 지역진료 개념에 따라 지원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휴가, 외출, 외박, 출장 중이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외래진료를 요하는 자는 지원의료기관 이외의 군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정/영창

1 02진인1869 [군영창수감자의 인권침해] 2003. 2. 10.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피진정기관은 ○○규정 14-3 영창관리규정 중 신입감자에 대하여 3일간 독거수용을 시키고 독거기간 중 각종 행동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제14조 제2항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정 내지 삭제한다.

[2] 피진정기관은 영창수감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영창운영실무자 및 관련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3] 피진정기관은 진정인과 위의 내용에 관하여 합의한 후, 그 결과를 2003. 3. 31.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한다.

▌진정인▐ ○○○

▌피진정인▐ ○○○근무지원단 ○○지원부 ○○대대

▌주 문▐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할 것을 권고한다.

1. 피진정기관은 ○○규정 14-3 영창관리규정 중 신입감자에 대하여 3일간 독거수용을 시키고 독거기간 중 각종 행동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제14조 제2항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정 내지 삭제한다.
2. 피진정기관은 영창수감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영창운영실무자 및 관련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3. 피진정기관은 진정인과 위의 내용에 관하여 합의한 후, 그 결과를 2003. 3. 31.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유 ▐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으로 뇌물수수 및 국가기밀누설죄로 2002. 3. 9. 구속되어 ○○○○ 영창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는 바 위 영창의 수감자에 대한 옥외운동제한, 신입감자에 대한 '수감생활 길들이기'라는 명목으로 식사, 실내운동, 용변을 제외한 목욕, 독서 등의 금지, 영창내 감시카메라의 설치를 통한 수감자에 대한 동태감시가 수감자의 인건을 침해한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원하는 진정을 하였다.

2. 인정된 사실

가. 진정인의 주장과 피진정기관의 헌병대장 ○○ ○○○, 교도반장 ○○ ○○○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영창에서는 위 영창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신입감자에 대하여 신입감한 3일동안 '수감생활 길들이기'라는 명목으로 식사, 용변, 실내운동을 제외한 모든 행동을 제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진정인이 수용되어 있던 위 영창에 대한 실질조사결과, 영창내부에 감시카메라 1대, 모니터 3대(헌병대장실1대, 당직대(상황실) 1대, 교도반장실 1대)가 설치되어 있고, 헌병대장실과 당직대에 설치된 모니터는 직접적인 업무관련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또한, 진정인 및 동료 수감자들은 수감자들에 대하여 실내운동만 허용되고 실외운동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진정기관 스스로도 수감자들에 대하여 실외운동은 간부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영창에 수용된 수감자들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조속한 시정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2. 10.

국가인권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 유 현 위 원 조미경 위 원 신동운

2 03진인6349 [시설 및 처우관련 인권침해(육군교도소)] 2004. 2. 27. 결정

형의 선고로 제적된 남자장교에 대하여 군의 보안유지만을 이유로 일반교도소로의 이송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에게 군행형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군행형업무처리지침상 남자장교 수형자는 군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일반교도소로의 이송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군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정보부서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장교 등 구체적인 이송제한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판단치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11조가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에게 군행형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참조조문▐

군행형법 제2조

▌진정인▐ 손○○

▌피진정인▐ ○군교도소장

▌피진정인의 감독기관▐ 국방부장관

▌주 문▐ 1. 국방부장관에게 형의 선고로 제적된 남자장교에 대하여 군의 보안유지를 이유로 일반 교도소로의 이송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군행형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TV시청을 제한하고, 시갑한 채로 면회를 시켰다는 진정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군행형법 규정에 의거 여군수형자/부사관/군무원/병들과 같이 일반교도소로 이송되기를 원하나, 군행형업무처리지침은 남자장교 수형자는 군의 보안유지를

이유로 이송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진정인을 계속 육군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도주경험자라는 이유로 반년이 넘도록 TV시청을 제한하였고, 약 1년 동안 시갑한 채로 면회 등을 실시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조치이다.

2. 당자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행형업무처리지침(군법무 33010-2041, 2003. 1. 22.)상에 "형의 선고로 인하여 제적된 장교는 일반교도소로의 이감대상이나 군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육군교도소에 수용한다." 라는 지침에 의거 현 시점에서는 이송 불가하고 수형자들이 일반교도소로 이송을 희망할 경우 이송가능하도록 지침이 수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3. 인정사실

가. 관련 법규 등

① 군행형법 제2조(교도소등의 설치) 제4항
참모총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형자 또는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이하 "미결수용자"라 한다)를 일반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자 수형자 또는 여자 미결수용자는 일반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 군행형업무처리지침(군법무 33010-2041호, 2003. 1. 22.)
장교수용자 : 형의 선고로 인하여 제적된 장교는 일반교도소로의 이감대상이나 군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육군교도소에 수용한다.

나. 피진정인은 남자장교 수형자도 군행형법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경우 일반교도소/구치소로 이송을 하여야 하나, 군행형업무처리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이송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TV시청을 제한하고, 시갑한 채로 면회를 시켰다는 진정 부분은 진정인이 2003. 11. 15. 취하하였다.

4. 판 단

군행형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제적된 수형자인 병/부사관/준사관/군무원/여군 등은 군검찰관의 형집행지휘로 직접 일반교도소로 이송을 하고 있으나, 남자장교 수형자만 하위 지침인 군행형업무처리지침상에 "군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육군교도소에 수용한다."라고 명시하여 이송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군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정보부서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장교 등 구체적인 이송제한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판단치 아니하고 진정인 등 모든 남자장교 수형자의 의사에 반하여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치침의 내용은 헌법 제11조가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가. 형의 선고로 제적된 남자장교에 대하여 군의 보안유지만을 이유로 일반교도소로의 이송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에 대하여는 국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에게 위 지침의 개정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내용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TV시청을 제한하고, 시갑한 채로 면회를 시켰다는 진정부분은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2. 27.

국가인권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 유 현 위 원 조미경 위 원 신동운

3 05진인2723 [부당한 징벌처분 등] 2006. 1. 23. 결정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 교도소장에게,

1. 피진정인 ○○○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의 조치할 것과,
2. 수용자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관련 법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개·비공개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 수용자로 하여금 불복이 있는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용자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후 동법에 규정된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의무'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진정인에게 불복이 있는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1항(언론·출판의 자유)이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알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

군행형법 제2조

▌ 진정인 ▌ ○○○

▌ 피진정인 ▌ 1. ○○○ (○○교도소 ○○과장, ○○)
2. ○○○ (○○교도소 ○○담당관, ○○)

▌주 문 ▌ 1.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 교도소장에게,

가. 피진정인 ○○○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의 조치할 것과,

나. 수용자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관련 법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개·비공개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 수용자로 하여금 불복이 있는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용자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기타 나머지 다른 진정부분은 이를 각 기각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04. 9. 형평성에 어긋나는 금치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나. 교도소 측은 징벌처분에 대한 진정인의 소송적 방법을 통한 구제시도를 묵살하였다.

다. 교도소 측은 2005. 6. 진정인이 청구한 정보공개신청을 묵살하였다.

라. 진정인에 대한 부당징벌은 교도관 징계와 관련한 보복행위 의혹이 있다.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에 대한 금치30일 처분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결정이 아니다.

2) 부당징계에 대하여 소송적 방법을 통한 구제시도를 묵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정보공개청구는 업무미숙으로 비공개결정 후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설명하였으며, 이후 진정인의 이의신청이 없어 종결하였다.

4) 교도관 징계와 관련하여 보복성 징벌을 주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에 대하여(형평성에 어긋나는 징벌처분)

1)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군○○로 근무시 특가법위반(도주차량, 피해자 사망)으로 징역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형생활 중 2005. 9. 30. 국군의 날 특별가석방(잔형기간 1개월 17일) 대상자 3명에 포함되어 가석방되었다.

나) 징벌조사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은 2004. 9. 13. ○○교도소 징벌심사위원회에서 동료수형자와 싸움, 가혹행위 및 희롱, 수용질서 문란 등 비위혐의로 금치 30일, 행실강급(3급→4급)의 처분을 받았다.

다) 진정인은 동일 건에 대하여 2004. 9. 14.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2004. 10. 21. 실지조사 과정에서 진정을 취하한 사실이 있다.

라) 군행형법 제44조(징벌)에서 금치기간은 2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동 시행규칙 제56조(규율) 및 제57조(징벌양정기준)에 의하면 다른 수용자와 싸움행위, 가혹행위 및 희롱행위는 1월이상 2월이내 금치, 수용질서 문란행위는 1월이내 금치로 규정되어 있다.

2) 판단

진정인에 대한 징벌조사기록과 관련규정상 ○○교도소측이 형평성을 위배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바, 진정인의 주장은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에 대하여(소송적 방법을 통한 구제시도 묵살)

1)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4. 9. 13. 금치처분(30일)을 받은 후 같은 달 14. 징벌처분 부당성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에 필요하다며 각종 법률서적, 청와대, 헌법재판소 등의 주소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

나) 이에 대해 ○○교도소에서는 2004. 9. 20. 진정인을 당시 제○군단 검찰관과 면담토록 하여 검찰관이 진정인에게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교도소 측에 대한 불만사항 등을 안내 상담조치 하였다.

다) 이후 진정인은 부당징벌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더구나 ○○대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누구보다 법률상식이 풍부하므로 ○○교도소 측이 권리구제시도를 묵살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2) 판단

진정인의 주장은 '행형관찰기록' 및 '출원사항처리현황', 당시 검찰관의 '확인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정인의 주장 외 달리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에 대하여(정보공개신청 묵살)

1)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5. 6. 7. ○○교도소의 징벌권 남용, 인권침해 교도관의 경미한 징계처분, 신입소기간 중 기본권 제한, 알권리침해 등의 내용으로 서신을 작성, 인터넷게재(언론사, 포털 싸이트, 환경연합, 법무부 등) 요청내용의 서신을 여동생 앞으로 작성 제출하였다가 서신검열과정에서 적발되었다.

나)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진정인에게 권리구제나 민원처리기관(군 또는 민간기관)에 민원제기 할 것을 권고하고, 인터넷게재를 목적으로 서신발송요구 시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다) 이후 진정인은 2005. 6. 10. 징벌조사자료 일체, 청구인의 서신발송 요구에 대한 교도소 내부 보고자료, 교도관 징계조사자료, 자신의 행장기록카드 등을 정보공개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교도소측은 개인정보보호필요 등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업무담당자인 피진정인 ○○○이 진정인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 하였다.

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교도소에서는 2005. 6. 17. 진정인이 서신발송 불허에 따른 답변을 요청함에 따라 같은 달 30. 소장면담을 실시하고 교도소 입장설명과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전달하였으며, 진정인의 정보공개 요청 건에 대하여는 비공개이유를 설명하고 추가적인 이의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 하였다.

2) 판단

가)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나) ○○교도소 측은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후 동법에 규정된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의무'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진정인에게 불복이 있는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

다)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1항(언론·출판의 자유)이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알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에 대하여(교도관 징계와 관련한 보복행위 의혹)

1) 인정사실

가) ○○교도소에서는 항명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아 수용 중 2004. 5. 25. 집행유예로 출소한 예비역 ○○ ○○○○의 제보로 한겨레21에 언론보도(2004.7.7)와 인권위에 진정(2004.7.9)이 제기되면서, 2004. 8. 2. ~ 8. 5.까지 '수용자관리에 대한 현상진단과 개선책 모색'을 위한 ○○본부 차원의 6부 합동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동 합동조사기간 중 교도대 제○중대 소속 교도관(○○ ○○○○)이 2004. 1. 27. ○○교도소로 이송되어 온 진정인에게 과도한 알몸신체검색 등 부당행위가 있었음이 진정인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다) 이에 ○○교도소에서는 2004. 8.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 교도관(○○ ○○○)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사유로 견책을 심의 결정했고, 징계권자는 다음 날 견책유예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라) 또한, 당시 ○○교도소에서는 부사관 조정계획에 의거 위 교도관 등 9명에 대해 인사조치해 줄 것을 육본에 건의, 2004. 9. 7.부로 제×××보충대(제○군단)로 전속조치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개혁을 단행하였다.

마) 이후 위 진정요지 가.의 기재내용과 같이 2004. 9. 7. 진정인과 동료수형자간 싸움이 발생, 진정인은 2004. 9. 13. ○○교도소 징벌위원회로부터 싸움 및 가혹행위, 희롱혐의로 금치 30일과 행실강급(3급→4급)의 처분을 받았다.

2) 판단

진정인은 자신에 대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이 자신으로 인해 교도관(○○ ○○○○)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보복성징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 부분 진정의 내용은 진정인의 주장 외 달리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가. 진정요지 다.와 관련된 피진정인 ○○○○의 '정보비공개결정 후 미통보' 행위는 업무미숙에 의한 고의성 없는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는 결국 헌법 제21조 제1항(언론·출판의 자유)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진정요지 가. 나. 라.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 2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 김호준 위 원 나천수 위 원 이해학

4 11방문16 [2011년 군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2011. 10. 12. 결정

[1] 국방부장관에게, 군 영창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관련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다음과 같이 권고

가. 수용자 입창 시 신체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

나. 징계수용자 면회 접견 시 교도관 등의 참관 관행을 개선할 것

다. 징계수용자 수용 시 가족통지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받도록 할 것

라. 영창 CCTV 기록 관리를 명확히 할 것

▌결정요지 ▐

[1] 군 영창의 시설 및 수용자 처우에 있어, 수갑보호대, 마스크를 마련하여 수용자 외부 이동 시 초상권 및 사생활 보호, 수용생활 안내 및 권리 고지, 수용자에 대한 경어 사용 등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수용자의 건강검진 등 의료체계 관리, 위원회 현장 시정권고에 대한 전향적 조치 등 전반적으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상당한 노력과 긍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점은 높게 평가

[2] 다만, 신체검사 기준 및 방법, 징계수용자 면회 시 교도관(병) 참관, 징계수용자 가족통지 확인, 영창 CCTV 관리강화 등에 대해서는, 전 군의 영창운영 상의 관행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써, 향후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예방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그 개선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

▌참조조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 (국방부훈령 제1309호), 「헌병작전활동규정」 (육군규정 140호), 「해군구치소 업무규정」 (해군규정 1712호), 「헌병업무규정」 (공군규정 14-1호), 국방부 영창시설기준

▌주 문 ▐ 국방부장관에게, 군 영창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관련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수용자 입창 시 신체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
2. 징계수용자 면회 접견 시 교도관 등의 참관 관행을 개선할 것
3. 징계수용자 수용 시 가족통지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받도록 할 것
4. 영창 CCTV 기록 관리를 명확히 할 것

▮이 유▮

1. 방문조사의 배경 및 조사대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 영창 시설 및 환경, 수용자의 처우 등에 대한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여 피구금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2011. 8. 23.부터 2011. 8. 26.까지 육군○○사령부와 해병대 제○사단 영창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시설현황, 유치실 및 화장실의 규모,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시설 등 물리적 환경과 신체검사, 변호인 등 외부접견교통, 권리고지 및 구제절차, 의료조치, 식사, 종교행사, CCTV 등의 처우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조사·판단의 근거 및 기준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다.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1309호)
라. 「헌병작전활동규정」(육군규정 140호)
마. 「해군구치소 업무규정」(해군규정 1712호)
바. 「헌병업무규정」(공군규정 14-1호)
마. 국방부 영창시설기준

3. 조사결과 및 판단

가. 총평 및 현장개선 사례

1) 시설·환경적 측면

국방부 영창시설기준에 의거, 거실평수, 거실 내 세면대 및 화장실, 냉·난방, 면회실, CCTV, 운동장 등 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육군○○사령부는 별도의 신체검사시설이 없었던 점, 동 사령부와 해병○사단은 거실 내 조도가 낮았던 점, 근본적으로 시설의 노후 및 최초 설계 시 창문크기가 작아 채광 및 환기가 잘 안 되는 점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으나, 대부분 해당기관에서 현장시정 조치를 하고, 이외 구조적인 부분은 시설개보수 및 시설이전 등의 장기계획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전향적인 의사를 밝혔다.

2) 생활·처우적 측면

각 군의 수용자처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 위생, 급식, 면회 및 접견, 운동, 독서, TV시청, 종교생활 등이 적절하게 보장되고 있고, 미결수용자와 징계수용자의 분리수용, 관찰창 및 CCTV, 호송 시 계호 등도 인권적 기준에 비추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육군○○사령부는 신체검사 기준, CCTV 관리대장 기록유지, 의약품 관리대장·수용자 진료대장 유지, 입창사실통보 근거유지(수용자 서명), 외부 화장실 관찰창 높이조정, 징계수용자 면회 시 입회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신체검사 방법 및 징계 입창자에 대한 면회입회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체시정을 하였고, 해병대 제○사단은 거실수용자 현황판 노출,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관리 등 문제점에 대해 자체시정을 하는 등 방문조사 대상기관들이 전향적인 현장 개선 조치를 취하였다.

3) 소결

이번 방문조사 결과, 군 영창의 시설 및 수용자 처우에 있어, 수갑보호대, 마스크를 마련하여 수용자 외부 이동시 초상권 및 사생활 보호, 수용생활 안내 및 권리 고지, 수용자에 대한 경어 사용 등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수용자의 건강검진 등 의료체계 관리, 위원회 현장 시정권고에 대한 전향적 조치 등 전반적으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상당한 노력과 긍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점은 높게 평가된다. 다만, 신체검사 기준 및 방법, 징계수용자 면회 시 교도관(병) 참관, 징계수용자 가족통지 확인, 영창 CCTV 관리강화 등에 대해서는, 전 군의 영창운영 상의 관행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써, 향후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예방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따라 그 개선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개선권고 사항

1) 수용자 입창 시 신체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관련

현행 영창 신체검사관련 규정에 의하면, 입창 시 미결수용자는 정밀신체검사(속옷 탈의)를 하고, 징계수용자는 소란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외표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 및 검사방법에 대한 기준 등 관련 규정이 없다.

통상 미결수용자의 경우, 최초 입창 때는 물론 조사 및 면회 등을 다녀오는 경우에도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고, 징계수용자의 경우, 통상 외표검

사를 하고 있다고 하나 형장기록부에 문신 등 신체특징을 기재하고 있어, 사실상의 간이(외표탈의)의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에서, 그 기준과 방법이 자의적이어서 피수용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각 군 영창 입창 시 신체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징계수용자 면회 접견 시 교도관(병) 참관 관련

현행 군 영창 면회 접견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징계수용자의 가족 면회 및 접견 시에는 교도관(병)이 입회하거나 그 대화내용을 기록, 녹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관행적으로 교도병이 입회하여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징계수용자의 경우, 군 형법 상 피의자 신분으로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증거인멸, 공모 등의 우려가 없어 교도관 등이 입회하여 관찰할 필요가 특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수용자의 외부 접견교통권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관행을 시정하여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징계수용자 면회 접견 시 교도관 등의 참관 관행을 개선할 것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징계수용자 수용 시 가족통지에 관한 본인의사 확인 관련

징계수용자의 대부분은 가족면회가 없는 상황이지만 징계입창이라 하더라도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족통지 제도는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영창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징계수용자 입창 시 가족통지는 본인의 의사를 물어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징계수용자의 의사 확인을 구두로 하고 있어 명확하게 이를 확인할 만한 관련기록을 발견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징계수용자의 경우에는 입창 시 위원회 진정권 고지 확인서와 같이 본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이를 명확히 관리함으로써, 외부접견교통권이 자의적으로 침해되거나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영창 CCTV 관련 기록관리 관련

현행 군 영창의 CCTV 설치 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면, CCTV의 설치목적, 위치, 각도 등에 대한 세부규정은 있으나, 생산된 저장 정보기록에 대한 열람, 공개 등 사후 관리시스템이 미흡하고, 현실에 있어서도 관련 관리대장이 없이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CCTV에 의해 녹화된 수용자의 초상 등 개인정보에 관한 관련기록이 임의로 유출되거나 유실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시스템 정비와 관리대장을 유지하는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군 영창 수용자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군 영창 시설관리 및 수용자 처우와 관련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 원 장주영 위 원 윤남근

[별지] 관련규정

1.「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4조(운동 및 목욕) 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건강 유지에 필요한 운동과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동시간, 목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신체검사 등) ①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도관이 군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할 때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군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신입자 등의 신체 특징 기록 등) ① 소장은 신입자의 키, 용모, 문신, 흉터 등 신체의 특징과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연락처를 제19조에 따른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7조(실외운동) 소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군(軍)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에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군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제99조(신체 등에 대한 검사) 소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군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거실로 돌아오는 군수용자의 신체, 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1309호)

제12조(운동 및 목욕) ① 헌병부대장은 징계입창자에게 실외운동 및 목욕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실외운동은 1일 1시간의 범위내에서, 목욕은 1주 2회 이상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말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영창시 설의 사정을 고려하여 헌병부대장이 그 허용여부 및 시간을 정한다.
③ 기타 실외운동 및 목욕의 구체적 시각·장소·방식 등은 부대의 사정을 고려하여 헌병부대장이 정한다.

제13조(면회) ① 징계입창자는 1일 30분의 범위내에서 외부인과 면회를 할 수 있고, 헌병부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회시간의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제14조(면회 내용의 기록 또는 면회 장소의 참관) ① 교도관 등의 면회내용에 대한 녹화·녹음·기록은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교도관 등의 면회 장소에 대한 참관이 허용된다.
1. 징계입창자가 상습적으로 영창시설내에서의 규율을 위반하였거나 교도관 등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영창 집행 종료 후 징계입창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예정에 있는 경우

제17조(전화통화) ① 징계입창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헌병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인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공중전화(수신자부담전용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
1. 징계입창자의 가족 또는 친족의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입학·휴학·등록·졸업 등 학사행정에 관한 사항과 구직·입사 등 취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전화통화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헌병부대장이 인정하는 경우

5 13진정2071 [영창 내 부당한 처우 등에 의한 인권침해] 2013. 6. 12. 결정

▌결정사항▐

육군 0군단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잘못된 영창관리 관행을 개선할 것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헌병대 영창을 운영할 것 등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들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영창을 운영한 결과, 외부교통권 등 수용자의 권리 미고지, 수용 거실 내 과도한 통제, 실외 운동시간의 미보장, 부당한 서신집필 제한, 모포 미지급 등의 문제에 있어 「헌법」 제10조에 따른 진정인의 건강권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제18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9조·제73조·제74조

▌진정인▐ 김○○

▌피진정인▐ 1. 김○○ 2. 장○○ 3. 오○○

▌주 문▐ 1. 육군 0군단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진정요지 나, 마, 사, 아, 자항 관련 잘못된 영창관리 관행을 개선하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육군 0군단 헌병대 영창을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 다, 라, 바, 차, 카, 타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육군 제00사단 00연대 소속 상근병으로, 2013. 1. 24.~2013. 2. 21. 동안 육군 0군단 헌병대 영창(이하 '이 사건 영창'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있던 중, 이 사건

영창을 관리하는 피진정인1(육군 0군단 헌병대장), 피진정인2(육군 0군단 헌병대 작전과장), 피진정인3(육군 0군단 헌병대 교도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들은 미결 수용자인 진정인을 기결수용자로 지정하고, 계호병들에게 기결수용자로 취급하도록 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영창 입소 시 전화사용 등 외부 교통권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절차에 대하여 안내하거나 고지해 주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들은 아침 및 저녁 점호 시간에 영창에 오지 않고, 진정인이 면담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으며 강압적으로 대하였다.

라. 피진정인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진정인에게 적절한 의약품을 지급하지 않고 핀잔을 주며 정신질환자를 비하하는 취급을 하였다.

마.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거실 내 화장실에 갈 때나 식수를 먹는 등 일상적인 용무를 볼 때에도 계호병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바. 피진정인들은 계호병들이 야간 근무 시 영창 내에서 음식을 섭취하고, 심하게 떠들고 취침을 방해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사. 피진정인들은 계호병들이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수용자들에게 일광욕을 5분만 시키고 거실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아. 피진정인들은 주말에만 편지를 작성할 수 있다며 평일에는 종이와 펜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

자. 피진정인들은 2013. 2월 초순경 3일 동안 이 사건 영창의 보일러가 고장 나 날씨가 추워 진정인이 모포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하였다.

차. 피진정인3은 2013. 2. 10. 과자를 지급하면서 비닐봉지를 주지 않고 식판에 부어 먹도록 하고, 30분 내에 먹지 않으면 버린다고 하였다.

카. 피진정인3은 2013. 2월 초순경 토요일에 면회가 가능한데도 진정인의 모(母)의 면회신청을 개인적인 이유로 제한하였다.

타. 피진정인3은 진정인이 보관 중인 편지를 세절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기결수용자로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당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므로 기결수용자로 생각하고 호칭 등에서 기결 수용자로 취급하였으나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은 없다.

2) 진정요지 나항(외부교통권 등 수용자 권리 미고지)에 대하여

업무 숙지와 경험이 부족하여 진정인이 입창할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권, 외부 접견권 등 수용자의 권리에 관하여 고지해 주지 못했다.

3) 진정요지 다항(교도관 면담권 미보장 및 강압적 대우)에 대하여

업무상 헌병대 교도관이 영창에 상주해 있을 수는 없으나, 평소 출·퇴근 시 영창에 입실하여 특이사항을 확인하였고, 진정인에 대하여 그의 요구에 따라 약을 복용하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배려해 주었을 뿐, 강압적으로 대한 사실이 없다.

4) 진정요지 라항(의료접근권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필요한 약을 제공하고 진료요구 시 의무병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하였으며, 진정인을 정신질환자라고 비하한 사실이 없다.

5) 진정요지 마항(수용거실 내 과도한 통제)에 대하여

계호병 2명이 수용자 관리·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용자가 거실 내 화장실에 갈 때나 물을 먹는 등 간단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계호병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다.

6) 진정요지 바항(계호병의 수용자 취침 방해)에 대하여

계호병들이 야간근무 시 음식을 취식하고 떠들어 수용자들의 취침을 방해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7) 진정요지 사항(실외운동시간 미보장)에 대하여

운동시간에 수용자가 날씨가 추우니 먼저 들어가자고 한 적은 있으나, 계호병들이 추위를 이유로 일찍 거실에 입실시킨 사실은 알지 못한다.

8) 진정요지 아항(부당한 서신집필 제한)에 대하여

진정인이 평일 휴식시간에 서신을 쓰겠다면서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하였으나 당시 규정을 잘못 알고 서신집필은 주말에만 가능하다고 고지하였다.

9) 진정요지 자항(모포 미지급)에 대하여

당시 일반 병력이 사용할 모포 밖에 없어 진정인에게 모포를 지급하지 못했다.

10) 진정요지 차항(부당한 간식지급)에 대하여

피진정인3은 수용자들에게 과자를 지급하며 비닐봉지를 삼키는 등 자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닐봉지를 회수하였고, 당시 개인정비시간을 앞두고 있어 30분 안에 과자를 먹도록 하였다.

11) 진정요지 카항(가족면회 제한)에 대하여

피진정인3은 진정인의 모로부터 면회가 가능하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로 규정상 일요일은 면회가 안 되고 평일 17:00경까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던 것으로, 피진정인3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면회를 임의로 차단한 것이 아니다.

12) 진정요지 타항(부당한 편지 세절)에 대하여

피진정인3은 진정인의 동의로 진정인이 잘못 쓴 편지를 세절하였다.

다.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1) 참고인 박ㅇㅇ 등 4인(진정요지 마항, 수용거실 내 과도한 통제 관련)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3. 4. 4. 현장조사 당시 이 사건 영창에 수용되어 있었던 참고인 박ㅇㅇ 등 4인은 이 사건 영창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용자가 계호병에게 “저 물 좀 먹어도 됩니까?” 라고 하면 계호병이 “대기합니다.”라는 말을 한 후 물을 주고 있고, 수용자가 ”저 화장실 좀 이용해도 됩니까?“라고 말하여 계호병이 “이용합니다.”라고 허락하면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 이외에 거실에서 수용자끼리의 대화를 일체 허락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서 같은 거실의 수용자와 대화를 한 적이 없다.

2) 참고인 김○○(진정요지 카항, 가족면회 제한 관련)

진정인의 모 김○○는 당시 피진정인3에게 진정인에 대한 면회가 가능한지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진정인3과 통화를 하여 주말에는 면회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면조사보고서, 피진정인1, 2의 진술서, 피진정인3의 문답서, 육군 0군단 헌병대가 제출한 영창근무일지, 영창특이사항 기록,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등 권리 고지확인서, 영창처분 통지여부 확인서, 수용지휘서, 영창 보일러 수리 관련 자료, 육군 0군단 영창 준수규율 및 준수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조사결과보고서, 징계입창 수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진정인의 모 김○○에 대한 전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하여 각 진정요지별로 판단한다.

가. 진정요지 가항(기결수용자로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12. 7. 31. 상근병으로 입대하고 육군 제00사단 00연대 0대대 00중대 소총수로 전입하여 근무하던 중, 사기 등 혐의로 2013. 1. 24. 육군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2013. 1. 24. ~ 2013. 2. 21. 이 사건 영창에 수용되었고, 2013. 2. 5. 항소함에 따라 2013. 2. 21. 육군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용자이다.

나) 피진정인1(중령)은 육군 0군단 헌병대장으로서 이 사건 영창 수용자 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고, 피진정인2(소령)는 육군 0군단 헌병대 작전과장으로서 이 사건 영창 수용자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교도장교이며, 피진정인3(중사)은 육군 0군단 헌병대 교도관으로서 교도장교를 보좌하여 이 사건 영창 수용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3은 진정인이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것에 기하여 기결수용자로 오인하

여 이 사건 영창에서 계호병으로 하여금 진정인을 기결수용자로 호칭하도록 하고, 진정인에게도 자신을 기결수용자로 호칭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계호병들이 영창근무일지 등에 진정인을 기결수용자로 기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이 미결 수용자인 진정인을 기결수용자로 잘못 알고 관리한 것에 대한 업무상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이나, 달리 진정인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외부교통권 등 수용자 권리 미고지)에 대하여

1) 인정사실

피진정인3은 2013. 1. 24. 진정인이 이 사건 영창에 입감될 때,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여 계호병들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 말해주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 보장 고지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받았으나, 외부접견·교통권이나 진정권 등 수용자의 권리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해 주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군행형법」'이라 한다) 제17조는 군교정시설의 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신입자와 다른 교정시설에서 이송된 사람에게 접견·서신, 그 밖의 군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과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그 밖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진정인3이 진정인에게 외부와의 접견·교통권 및 진정권 등 수용자의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8조에 따른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다. 진정요지 다항(교도관 면담권 미보장 및 강압적 대우)에 대하여

이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의료접근권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영창근무일지에 의하면, 진정인의 진료 및 의약품 지급 요구에 대하여 의무병이 진료를 하고 군의관에게 지침을 받아 약을 복용토록 한 사실이 확인될 뿐,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마. 진정요지 마항(수용 거실 내 과도한 통제)에 대하여

1) 인정사실

피진정인들은 수용자 관리감독의 방법으로 진정인 등 수용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영창의 거실 내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물을 먹는 등의 일상적인 행동을 할 때 계호병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고, 자체규율을 통하여 수용자 상호 간 대화를 금지하고 있다.

2) 판단

수용자들로 하여금 화장실에 가거나 식수를 먹는 등 기본적 일상행위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도록 하거나 상호대화를 전면금지하는 것은 군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어느 정도 필요하리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쳐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진정요지 바항(계호병의 수용자 취침 방해)에 대하여

이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사. 진정요지 사항(실외운동시간 미보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영창 수용자들에 대하여 공휴일을 제외하고 13:00경부터 14:00경까지 매일 1시간 내에서 일광욕과 실외운동을 하도록 영창일과표를 작성하여 운영하였다.

나) 2013. 2. 1.~2013. 2. 15. 이 사건 영창 영창근무일지에 의하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과 수용자들에 대하여 평균 5분에서 10분 내외의 실외운동 시간을 허용하였다.

2) 판단

가) 「군행형법」 제34조는 군교정시설의 장은 군수용자가 건강 유지에 필요한 운동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는 "군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에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군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이 2013. 2. 1. ~ 2. 15. 동안 진정인을 포함한 모든 수용자들에게 평균 5분에서 10분 내외로 실외운동 시간을 현저히 적게 실시한 것에 관하여 날씨나 기타 실외운동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는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건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아. 진정요지 아항(부당한 서신집필 제한)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들은 0군단 헌병대 영창 거실 내에 집필을 위한 종이 및 필기구를 상시 보관해두지 않고, 수용자가 요청하면 지급하고 사용 후 회수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3은 진정인이 2013. 2. 15.(금) 07:00경 서신 작성을 위해 편지지와 필기구를 요구하였으나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주말에만 서신 작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다음날인 토요일에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육군규정인 「육군본부 헌병작전활동규정」 제69조는 "서신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 또는 휴식시간에 작성하며 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은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그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행형법 시행령」 제73조는 집필용구는 거실의 집필용구 보관함에 보관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이 집필용구를 거실 내에 보관해 두지 않고, 진정인에 대하여 평일 휴게시간 중의 서신집필을 제한한 것은 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 진정요지 자항(모포 미지급)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영창에서는 2013. 2. 13.~2013. 2. 15. 기간 동안 부대 급수장치의 이상으로 보일러 작동이 중지됨에 따라 난방이 되지 않아 영창 내 실내온도가 13~16도로 유지되었고, 이는 그 무렵 평균 실내온도보다 3~4도 가량 낮은 수준이었다.

나) 피진정인3은 2013. 2. 13. 진정인이 거실이 춥다며 모포지급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일반 병력이 사용할 모포 밖에 준비되지 않았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육군 0군단 본부대 보급부서에는 모포 등의 여유분이 있어, 예하부대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하고 있다.

2) 판단

가) 「군행형법」 제22조는 군교정시설의 장은 군수용자의 건강, 계절 등을 고려하여 군수용자에게 건강 유지에 적합한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방부 '영창시설기준'에 의하면, 영창 내 난방을 위해 방열기 및 바닥패널을 설치하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18도~20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보일러 고장으로 이 사건 영창의 실내온도가 위 적정 실내온도보다 낮았던 기간에 진정인이 모포지급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보급부서로부터 모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여유분이 없다며 진정인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는 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차. 진정요지 차항(부당한 간식지급)에 대하여

피진정인3이 진정인에게 과자를 지급하며 비닐봉지를 회수하고 30분의 시간을 정해 놓고 먹도록 한 것은 사고예방 및 영창일과표에 따른 조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조치가 합리성을 상실하였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진정은 인권침해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한다.

카. 진정요지 카항(가족면회 제한), 타항(부당한 편지세절)에 대하여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타. 조치의견에 대하여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조치의견으로는, 진정인 등 이 사건 영창 수용자들에 대한 외부교통권 등 수용자 권리 미고지, 수용거실 내 과도한 통제, 실외운동시간 미보장, 부당한 서신집필 제한, 모포 미지급 등의 문제는 이 사건 영창을 관리 감독하는 피진정인들이 「군행형법」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영창을 운영한 결과로 판단되므로,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장인 육군 0군단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각 경고조치할 것과 위 진정요지 나, 마, 사, 아, 자항 부분 관련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향후 「군행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0군단 헌병대 영창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 원 양현아 위 원 한위수

[관련결정] 2013. 11. 29. 자 [2013년 군 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1. 거실에서의 대화 금지 및 정좌자세 강요 관련

조사결과 육군 제0사단, 제0사단, 제00사단 영창에서는 수용자 상호 간 대화를 금지하고 평소 수용자에게 정좌자세를 유지할 것을 강요하고 있었다.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통제는 그 정도가 지나쳐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영창 수용자에 대한 위와 같은 관행을 개선하고 영창 내 수용자의 행동 제한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징계입창자의 면회 및 전화사용 통제 관행 관련

국방부 훈령인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기준에 관한 훈령」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은 징계입창자는 1일 30분의 범위 내에서 외부인과 면회를 할 수 있고, 이 면회내용에 대한 녹화·녹음·기록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훈령 제17조제1항은 징계입창자는 가족 또는 친족의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헌병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인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징계입창자에 대하여 외부와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문조사 결과 징계입창자에게 면회와 전화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육군 제0사단, 제00사단), 징계입창자의 면회 및 전화사용 시 감청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하는 경우(육군 제00사단), 전화사용 신청서에 '감청에 동의하면서 전화사용을 신청한다'는 표현을 한 경우(공군 제00비행단)가 발견되었다. 이는 위 규정에서 보장된 징계입창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사례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실외운동 시간 보장 및 운동시설 구비 관련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기준에 관한 훈령」 제12조에 의하면, 영창수용자는 기상환경 또는 수용자의 질병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에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실외운동 1시간 중 30분은 미결수용자, 30분은 징계입창자에게 운동시간을 부여(육군 제0군단, 제0사단)하는 등 운동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대부분의 조사대상 영창(육군 제0군단, 제0사단, 제0사단, 제00사단, 제00사단, 해군 제0함대)이 운동시설 또는 운동기구가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다. 영창 내 미결수용자의 경우 수개월 동안 좁은 거실에서 생활하게 되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영창 수용자들에게 운동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적절한 운동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신체검사 시 외부노출 방지를 위한 시설 및 물품 구비 관련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0조는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할 수 있고, 신체를 검사할 때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군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7개 부대 영창(육군 제0군단, 제0사단, 제00사단, 제00사단, 제00사단, 공군 제00비행단)에서는 별도의 신체검사실이 없었고, 가림막 등 외부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물품이 없었다. 영창 수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징계입창자에 대하여 간단한 외표검사만을 실시하는 통상의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나 물품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미결수용자 또는 징계입창자에 대하여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수용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외부 신체 노출을 방지하는 신체검사실이나 가림막 등 시설 및 물품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5. 군수용자기록부 양식상 장애인 비하 용어 개선 관련

조사결과 각 영창에서 사용하는 미결수용자 수용기록부 양식상 수용자의 신체적 특징을 예시하는 용어 중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곰보, 째보, 절름발이, 사팔뜨기)가 있었다. 이는 시설 등에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13방문11 [2013년 군 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2013. 11. 29. 결정

▌결정사항▐

국방부장관에게 군 영창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1. 영창수용자에 대하여 거실 내 대화를 금지하거나 정좌자세를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행동 제한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할 것,
2. 징계입창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 없이 면회 및 전화사용을 통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3. 영창수용자에 대하여 충분한 실외운동 시간을 보장하고 적절한 운동시설을 구비할 것,
4. 신체검사 시 외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물품을 구비할 것,
5. 군 수용자기록부 양식상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개선할 것을 권고

▌참조조문▐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기준에 관한 훈령」 제12조 및 제13조, 제14조, 제17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80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

▌주 문▐ 국방부장관에게 군 영창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1. 영창수용자에 대하여 거실 내 대화를 금지하거나 정좌자세를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행동 제한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할 것,
2. 징계입창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 없이 면회 및 전화사용을 통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3. 영창수용자에 대하여 충분한 실외운동 시간을 보장하고 적절한 운동시설을 구비할 것,
4. 신체검사 시 외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물품을 구비할 것,
5. 군 수용자기록부 양식상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방문조사 및 권고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 영창과 관련하여 시설 및 수용자의 처우

등에 대한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여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2013. 7. 17.부터 2013. 8. 14.까지 총 8개 부대(육군 제○군단, 육군 제○사단, 육군 제○사단, 육군 제○○사단, 육군 제○○사단, 육군 제○○사단, 해군 제○함대, 공군 제○○비행단) 영창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각 조사대상 영창의 냉·난방, 채광·조명, 환기시설 등 물리적 환경과, 신체검사, 실외운동, 외부접견 및 전화사용, 수용자 권리 및 구제절차의 고지, 의료조치, 식사, 종교행사, CCTV 촬영 등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현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위 방문조사 결과, 국방부 '영창시설기준'에 의거 각 시설의 환경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수용자 처우 측면에서도 대부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방문조사 시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영창 측이 많은 부분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거나 향후 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영창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사례 전파가 필요한 부분과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그 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다.

2.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조사결과 및 판단

가. 거실에서의 대화 금지 및 정좌자세 강요 관련

조사결과 육군 제○사단, 육군 제○사단, 육군 제○○사단 영창에서는 수용자 상호간 대화를 금지하고 평소 수용자에게 정좌자세를 유지할 것을 강요하고 있었다.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통제는 그 정도가 지나쳐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영창 수용자에 대한 위와 같은 관행을 개선하고 영창 내 수용자의 행동 제한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입창자의 면회 및 전화사용 통제 관행 관련

국방부 훈령인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기준에 관한 훈령」 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은 징계입창자는 1일 30분의 범위 내에서 외부인과 면회를 할 수 있고,

이 면회내용에 대한 녹화·녹음·기록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훈령 제17조 제1항은 징계입창자는 가족 또는 친족의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헌병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인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징계입창자에 대하여 외부와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문조사 결과 징계입창자에게 면회와 전화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육군 제○사단, 육군 제○○사단), 징계입창자의 면회 및 전화사용 시 감청한다는 내용의 안내를 하는 경우(육군 제○○사단), 전화사용 신청서에 '감청에 동의하면서 전화사용을 신청한다'는 표현을 한 경우(공군 제○○비행단)가 발견되었다. 이는 위 규정에서 보장된 징계입창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사례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실외운동 시간 보장 및 운동시설 구비 관련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기준에 관한 훈령」 제12조에 의하면, 영창수용자는 기상환경 또는 수용자의 질병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군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시간에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실외운동 1시간 중 30분은 미결수용자, 30분은 징계입창자에게 운동시간을 부여(육군 제○군단, 육군 제○사단)하는 등 운동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조사대상 영창(육군 제○군단, 육군 제○사단, 육군 제○사단, 육군 제○○사단, 육군 제○○사단, 해군 제○함대)이 운동시설 또는 운동기구가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다. 영창 내 미결수용자의 경우 수개월 동안 좁은 거실에서 생활하게 되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영창 수용자들에게 운동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적절한 운동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신체검사 시 외부노출 방지를 위한 시설 및 물품 구비 관련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0조는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할 수 있고, 신체를 검사할 때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

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군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7개 부대 영창(육군 제○군단, 육군 제○사단, 육군 제○○사단, 육군 제○○사단, 육군 제○○사단, 공군 제○○비행단)에서는 별도의 신체검사실이 없었고, 가림막 등 외부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물품이 없었다. 영창 수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징계입창자에 대하여 간단한 외표검사만을 실시하는 통상의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나 물품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미결수용자 또는 징계입창자에 대하여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수용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외부 신체 노출을 방지하는 신체검사실이나 가림막 등의 시설 및 물품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마. 군 수용자기록부 양식상 장애인 비하 용어 개선 관련

조사결과 각 영창에서 사용하는 미결수용자 수용기록부 양식상 수용자의 신체적 특징을 예시하는 용어 중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곰보, 째보, 절름발이, 사팔뜨기)가 있었다. 이는 시설 등에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13. 11. 29.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 원 양현아 위 원 한위수

7 15방문7 [2015년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2015. 12. 22. 결정

결정사항

국방부장관에게,

1.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환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2. 순환근무 보장 등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

국군의무사령관에게,

1.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른 입·퇴원 절차를 준수할 것,
2.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환자들의 권익체계 및 생활규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3. 「정신보건법」 관련 교육대상에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소속 의무병을 포함시킬 것, 을 권고

참조조문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기준에 관한 훈령」 제12조 및 제13조, 제14조, 제17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80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

주 문 국방부장관에게,

1.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환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2. 순환근무 보장 등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것,

국군의무사령관에게,

1.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른 입·퇴원 절차를 준수할 것,
2.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환자들의 권익체계 및 생활규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3. 「정신보건법」 관련 교육대상에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소속 의무병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이 유 ▐

1. 방문조사 및 권고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 9. 3.부터 2015. 11. 10.까지 5개 국군병원(○○, ○○, ○○, ○○, ○○)의 정신과 병동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시설과 환경, 종사자와 수용자의 처우, 입·퇴원 관리, 격리·강박 시행, 진정권 보장 등의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방문조사 결과, 각 시설 운영이나 환자에 대한 처우는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방문조사 시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해당병원이 많은 부분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거나 향후 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그러한 조치와 별도로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른 병원들과 사례 공유나 일관된 기준마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2.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조사결과 및 판단

가. 「정신보건법」 규정 준수 관련

「정신보건법」에서는 제23조의 '자의 입원'과 제24조의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구분하여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국군○○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병원에서는 입원하는 환자에 대하여 자의입원 동의서와 보호의무자 입원 동의서를 같이 받는 등 위 두 절차를 혼용하고 있었다.

또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1인의 동의서만 받거나 환자 본인에게도 입원 사유와 법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 청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었다.

위와 같이 자의입원의 경우에도 보호의무자 동의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군대의 특성상 환자의 상태를 보호의무자에게 고지한다는 의미와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 요청시 법규정에 따라 즉시 자대로 복귀시킬 경우 부대 내 사고 발생을 우려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보완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정신보건법」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입원절차를 '자의입원'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구분하고, 각 경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환자와 보호의무자에 대한 의무나 환자의 퇴원청구권 보장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혼용방식은 이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에서는 「정신보건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입·퇴원 절차를 갖추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병동 내 생활 및 행동통제 관련

조사대상 병원들은 환자들에 대하여 병증의 정도나 상태에 따른 권익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구체적인 자율행동 허용범위가 병원마다 다르고, 안경, 책 등의 소지, 낮잠, TV 시청, 침상 대기(2~12시간 동안 침상에 앉아 바른 자세로 대기) 등 병동생활에 관한 규칙도 각자 시행하고 있었다.

「정신보건법」 제45조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군의무사령부는 위 법 규정 취지에 따라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환자들에 대한 권익체계와 병동생활 규칙에 관한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환자 치료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사대상 병원들은 모두 폐쇄 공간에서 생활하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운동요법 및 음악·미술치료 등 여러 가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사 사례비 지급도 어려워 이러한 프로그램이 대부분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거나 국군의무사령부가 타 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환자들의 효과적 치료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 간호장교 및 의무병의 근무 여건 관련

조사결과 국군○○병원을 제외한 4개 병원에서는 정신과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장교가 1명이고, 의무병은 병력자원의 수급과 병원 사정에 따라 2~6명 정도 되었다. 그런데, 간호장교의 경우 간호업무 이외에 입·퇴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의무병 관리 등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환자 간호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사실상 간호보조 인력인 의무병의 경우, 순환근무제(1일 3교대)를 택하고 있는 국군○○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에서는 폐쇄 병동 내에 의무병 내무반을 설치하고, 24시간 맞교대(1일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의무병들은 개인정비 시간이 거의 없이 1개월에 300~400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의무병 수급 상황에 따라 외출이나 휴가도 제한되고 있었다.

폐쇄적 공간에서 환자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하는 간호장교와 의무병의 열악한 근무여건은 당사자뿐 아니라 환자의 치료와 간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방부장관에게 간호장교와 의무병의 순환근무가 가능하도록 간호 인력을 증원하는 등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정신보건법」 및 인권교육 관련

「정신보건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의하면 정신보건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환자의 기본권, 입·퇴원 절차, 처우개선·퇴원청구,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지식·정보 등에 관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에 근무하는 군의관과 간호장교는 법정 교육을 받고 있으나, 의무병들은 실질적으로 정신과 병동에서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장교나 선임들에게서 일부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받을 뿐 「정신보건법」과 관련한 실무교육이나 인권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정신보건법」 관련 교육대상에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소속 의무병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15. 12. 2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 원 윤남근 위 원 최이우

[별지] 관련규정

1.「정신보건법」

제6조의2 (인권교육)

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자의입원)

①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자의로 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환자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29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의 후단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⑨ 제6항 본문에 따라 환자를 퇴원등을 시킨 때에는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조의5 (인권교육)

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환자의 기본권, 입·퇴원 절차, 처우개선·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사례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에 필요한 사항

8 15방문0000701 [2015년 국군교도소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2016. 1. 27. 결정

▌결정사항▐

국방부장관에게 국군교도소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1. 헌병대 및 군 검찰 등의 지적 장애인 조사 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사방법을 적용할 것,
2. 수용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교정교화를 위하여 법무부 및 민간 교정시설과의 이송 체계 협의 등을 추진할 것,
3. 군 교정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정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

국군교도소장에게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1. 수용자의 범죄 유형을 고려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2. 특별관리 수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3. 실내운동과 라디오 청취를 전면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4. 수용자 교정교화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5. 교도관, 교도병에 대한 직무교육 및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
6. 수용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관하여 주기적으로 교도관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수용자에게 진정방법을 공지할 것을 각 권고

▌참조조문▐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기준에 관한 훈령」 제12조 및 제13조, 제14조, 제17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80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

▌주 문▐ 국방부장관에게 국군교도소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1. 헌병대 및 군 검찰 등의 지적 장애인 조사 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사방법을 적용할 것,
2. 수용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교정교화를 위하여 법무부 및 민간 교정시설과의 이송 체계 협의 등을 추진할 것,
3. 군 교정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정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

국군교도소장에게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1. 수용자의 범죄 유형을 고려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2. 특별관리 수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
3. 실내운동과 라디오 청취를 전면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4. 수용자 교정교화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5. 교도관, 교도병에 대한 직무교육 및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
6. 수용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관하여 주기적으로 교도관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수용자에게 진정방법을 공지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 유▮

1. 국군교도소 방문조사 개요

가. 조사개시 결정과 근거

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 침해구제제1위원회의 방문조사 개시 결정(2015. 4. 15.)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의 구금·보호시설 방문조사

나. 조사의 목적

1) 인권침해 예방

2) 군 구금시설의 환경, 처우, 수용자 관리, 기본권 보장, 교육프로그램 등 인권상황을 점검하여 취약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다. 국군교도소 현황

별지 1 기재와 같다

라. 조사범위

1) 국군교도소의 시설, 환경, 처우 등 실태

- 냉·난방, 조명, 침구, 세탁, 운동시설
- 전화사용

2) 교정교화 프로그램 및 교육 점검

- 성폭력 예방교육
- 교도관 및 교도병 직무교육
- 환자 치료 프로그램 현황

3) 인권보호 점검

- 장애인 수용자 인권상황
- 관심 수용자 관리
- 수용자 기본권 보장
- 인권위 진정권 보장

4) 기타

- 국군교도소 고충사항 검토

마. 조사방법

1) 조사단 구성 : 인권위원과 직원,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전문가 등 8인

2) 국군교도소 수용자 109명 중 106명에 대한 설문조사

3) 교도관, 교도병과 수용자 면접조사

4)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 ○군단 헌병대, 국군교도소 제출자료 조사

5) 국군교도소 현황보고 청취 및 현장점검

6) 2회의 현장방문조사(2015. 9. 16.~9. 17., 12. 3.~12. 4.) 결과 지적사항 제시, 국군교도소 및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의견 접수

2. 권고 배경

인권위의 방문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군교도소도 자체 조사와 감찰을 실시하였다. 국군교도소는 이를 토대로 전화사용 제한규정 개선, 인권위 진정 안내문 추가 게시, 수용자 기본권 보호 및 수용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적 장애인 조사방법, 특별관리수용자 관리,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조사결과 및 판단

가. 지적 장애인 조사방법

1) ○○○ 수용자는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입대 후 정신심리검사에서 IQ 62(3급 장애)로 판정되었으며, 2015. 3. 국군교도소 입소 면담에서도 의사소통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수 교도관과 교도병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국군교도소는 가벼운 정신지체로 특별한 문제점이 식별되지 않고, 혼자보다는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게 낫겠다는 이유로 그를 ○○○ 수용자(육군 제○○사단 ○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로서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35년 선고받음) 등과 혼거 수용하였다. 이후 ○○○ 수용자는 ○○○ 등 동료수용자 3명으로부터 수시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했는데, 국군교도소는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인지하지 못하였다.

2) ○○○ 수용자는 2015. 8. 21. 교도관 면담 시 같은 방의 ○○○ 수용자로부터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것을 진술하였다. 이에 국군교도소는 사실조사를 한 후 ○○○ 수용자를 독거실에 분리 조치하고 ○군단 헌병대에 수사의뢰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군교도소와 ○군단 헌병대는 "추가 가해자가 있다"는 일부 수용자들의 진술을 듣고도, ○○○ 수용자가 "다른 사람은 장난이었다."고 했다는 이유로 추가조사를 하지 않았다.

3) 인권위는 2차 현장조사 시(2015. 12. 3.~12. 4.)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전문가 심층면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폭력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기 이전과 이후의 ○○○ 수용자 진술이 크게 달라졌고 그 결과 ○○○ 외에 2명의 수용자로부터 당한 추가 피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국군교도소는 이 내용을 전해 듣고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2015. 12. 16. 추가 가해혐의자 2명을 ○군단 헌병대에 수사의뢰하였다.

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은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5) ○○○ 수용자의 가족으로 어머니와 형이 있는데, 어머니는 지적 장애인이며, 형은 연락이 안 된다. 이에 따라 ○○○ 수용자는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애인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15. 6. 다른 수용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때도 본인의 결정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 수용자를 담당한 ○○○ 교도관은 발달장애인을 면담한 경험이 없고, 장애인의 특성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

6)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지적 장애 3급 수준인 ○○○ 수용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명시된 사법·행정절차 서비스나 정당한 편의 등을 충분히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군 수사기관 등이 지적 장애인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장애특성을 고려한 조사절차와 방법을 숙지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7) 한편, ○○○ 수용자의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어, 1심에서 3년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다.

나. 성폭력 예방 교육

1) 국군교도소 수용자 중 성범죄자 비중은 2013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1년 21명(12%), 2012년 28명(17%), 2013년 45명(25%), 2014년 60명(33.3%), 2015년 55명(35%, 8월 기준)으로 나타난다. 이에 국군교도소는 2015년부터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외부 기관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뢰하였으나, 일부 성범죄 수용자는 교육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교도소에서 교육 참가여부에 대한 의사도 묻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2015. 9. 17. 기준 성폭력치유 프로그램(1회 5강) 교육을 수강한 수용자는 8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외부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교육내용도 수용자들의 성범죄 유형이 다양함에도 1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인권위가 실시한 심층 만족도 조사 결과 대부분의 수용자가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상식적 내용 등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만족도도 낮았다.

2) 따라서, 국군교도소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용을 보강하고 수용자의 성범죄 유형 분석을 기초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었다.

다. 특별관리 수용자 관리 대책

1) ○○○ 수용자는 입소면담 시 집중관리의 필요성이 예상되었음에도 관심수용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군교도소가 교도대 행정예규로 특별관리 대상자 선정기준을 두고 있으나 이 기준이 엄격하여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신장애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 자'를 특별관리대상자 A급으로 명시하여 ○○○ 수용자와 같은 유형의 지적 장애인이 포함되기 어려웠다.

2) 가해자인 ○○○ 수용자가 교도관과 교도병의 눈을 피해 지적 장애인인 ○○○ 수용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음에도 다수의 교도관들은 ○○○ 수용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수였다"고 했고, 수용자 거실은 CCTV 관찰이 제한되어 수용자들이 제보하지 않으면 비리나 가혹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우므로 특별관리 수용자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3) 그런데, 미결 수용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소대 근무일지를 보면, '성기 부위를 얼굴에 흔드는 행위, 수용자 옷에 낙서하는 행위, 발로 걷어차는 행위,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 수용자 얼굴에 썬크림을 많이 바르고 크게 웃는 행위' 등 ○○○ 수용자의 피해정황이 2015. 4. 3.부터 8. 8.까지 이미 수차례 기록되어 있었고, 일부 교도병은 그 피해내용을 교도관에게 보고하였음에도 별도 조치가 없었다고 하였다.

4) 국군교도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관리수용자 관리 개선방안으로, 전담교도관 편성, 독거실 수용, 주기적 상담관리, 국군수도병원 심리검사 의뢰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예규규정과 수용자 관리 현실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조치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조치 외에도, 특별관리 수용자에 대해서는 교도대 예규 「특별관리대상자 기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근무일지, 현장 근무자 의견, 상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다만, ○○○ 수용자의 가혹행위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국군교도소 측이 교도관 1명과 교도병 1명을 각 징계 조치하였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교도소장, 교도대장, 교도중대장 등 3인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서면 경고 하였으므로 별도 조치는 하지 않기로 한다.

라. 수용자 기본권 보장

1) 조사과정에서 수용자들은 포승 및 수갑 과잉 사용, 운동시간 부족, 정좌 강요, 폭언·욕설이나 거실 내 운동 전면제한, 체력단련시간에 돌멩이 줍기나 잡초 뽑기, 라디오 청취불가 등에 불만을 제기하였다.

2) 국군교도소는 호송시의 수갑·포승 사용은 법규에 따라 시행되고 있고, 군 표준일과표에 따라 1시간 이내 실외운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바른 자세 유지는 교육하지만 정좌를 강요하지는 않고 있고, 교도관과 수용자의 폭언·폭행사건은 없었고, 다른 수용자의 안전 및 평온한 수용생활 방해나 민원제기의 등을 고려해 실내운동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며, 연병장에서 수용자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돌멩이 줍기를 하고 있고, 라디오 청취는 불가하지만 TV시청은 평일 3시간, 주말 12시간 보장한다고 답변하였다.

3) 조사결과 수용자들의 불만사항 중 개선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수용자의 하루 운동시간이 1시간 이내이고 날씨나 여건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벼운 운동은 허용하는 것과 수용자의 정보 선택과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라디오 청취 전면제한을 개선하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마. 교정교화프로그램

1) 국군교도소는 2015년부터 교정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2016년 예산은 1,056만원으로 수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교육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다.

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군 수용자에 대하여 교육, 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처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3조와 제54조에서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수용자의 교정과 사회복귀 준비를 위하여 적정예산을 확보하는 등 교정교화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바. 교도병 직무교육 및 인권교육

1) 다수의 교도병이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선임의 경험을 전수받는 형태로 교정업무를 배우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국군교도소에서 작성한 업무지침 성격의 '전

입신병 관리 매트릭스'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국군교도소도 직무수행에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현재 전입신병 교육 차원에서 국군교도소에서 활용 중인 '전입신병 교육 매트릭스' 등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교도관에 대해서도 직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국군교도소 근무일지에는 수용자가 교도병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도 적시되어 있었고, 인권위 면접조사에서 교도관 및 교도병이 수용자에게 명령조로 부하 취급을 하거나 반말로 무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불만이 확인되었다. 현재 국군교도소는 인권교관이 교정교화과장 1명이고, 소속 장병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수용자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 대상자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내용 편성이나 사례별 수시교육 등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 교도소 시설 개선

1) 인권위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군교도소는 1986년 이래 30여년 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야간조명, 냉방, 난방, 침구 상태, 운동시설 등에 대한 수용자들의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2) 국방부는 2018년부터 3년간 164.8억원을 투입하여 교도소 신축 등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별도 권고할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세탁, 침구 등의 경미한 불만 사항은 현재 여건에서도 보완이 가능할 것이므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아. 군·민 협조체계 구축 및 전문성 강화

1) 국군교도소는 군의 유일한 교정시설로서 자체 이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결과 미결, 사병과 장교, 사형수와 단순 범죄자의 구분 없이 일괄 수용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도 다수 수용자들은 국군교도소를 교정시설이라기 보다는 군 복무의 연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군교도소는 2018년 수용동 신축 시 기결 · 미결, 간부 · 병을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르면 군 수용자의 민간교도소 이송은 법무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며 볼 때, 현재 상황에서 국군교도소가 군 교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특성에 맞는 교정행정 수립이나 수용자 유형별 교정교화 실시와 관련하여 민간교도소와 이송시스템 협의를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이다.

2) 교도관 심층면접 조사에 의하면, 국군교도소에 교정 전문가가 부족하고 국방부 내에서 교정업무의 특수성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군교도소는 교정행정 조정 및 통제, 군 교정관련 법률 정비를 위하여 2016년 전반기에 계약직 6급 교도군무원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하나, 국군교도소가 군의 유일한 특수 교정기관이란 점에서 국군교도소의 특성에 맞는 교정행정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는 국방부 내의 교정업무 전문인력 양성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자. 인권위 진정함 설치 및 관리 운영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6조, 제7조에 따르면 수용자에게 인권위에 대한 진정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진정방법을 고지하고, 진정함을 설치 운용(안내문, 용지, 필기구, 봉함봉투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2) 조사결과 진정함은 각 소대, 식당 등 4개소에 설치되어 있다가 조사과정에서 면회대기실 및 전화방에 2개가 추가 설치되었으나 안내문 미비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수용자가 진정서를 제출하려 하자 교도관이 내용을 확인하려 한 사실이 있었으며, 설문조사 시 수용자의 6.6%가 인권위 진정 시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답하였다.

3) 대체적으로는 인권위 진정함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되나 수용자들의 진정권이 방해받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도관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수용자들에게 진정방법을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16. 1. 2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 원 윤남근 위 원 최이우

[별지 1] 국군교도소 현황

1. 국군교도소 설치 법적 근거

가.「국군조직법」 제15조(각 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나.「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군교정시설의 설치)

다.「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군 미결수용실의 설치)

2. 국군교도소의 임무와 기능

가. 임무 : 군 범죄자의 수용 및 수용자 교정교화

나. 기능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형업무수행, 군 범죄자의 수용 및 관리를 위한 시설 제공과 경비, 수용자 교정교화프로그램 시행 및 기술·기능 교육

3. 수용자 현황(2015. 8. 31. 기준)

가. 수용 능력 및 규모

수용능력		수용거실(개소)							
적정	최대	계	1인실	2인실	3인실	5인실	6인실	진정·보호	징벌
118	158	49	18	3	6	8	6	2	6

나. 죄명별

구분	계	군탈	폭행	항명	강도	절도	살인	성범죄	대상관	특가위	기타
계	109	18	9	1	1	2	10	44	3	3	18
미결	75	8	6	1		1	10	34	1		14
기결	34	10	3		1	1		10	2	3	4

다. 죄명별/연도별 추이

구분	계	군무이탈	폭행	강·절도	살인	성범죄	기타
계	850	251	93	55	20	209	222
2015(8.31.)	157	29	29	8	2	55	34
2014	180	37	24	8	9	60	42
2013	177	57	8	14	2	45	51
2012	163	57	18	14	2	28	44
2011	173	71	14	11	5	21	51

라. 형기별

구분	계	1년 미만	1년-1년 6월	1년 6월-2년	2년-6년	6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
계	109	21	25	10	38	11	0	4
미결	75	12	12	10	27	10		4
기결	34	9	13		11	1		

마. 기결수 처우등급별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사형수	모범수
계	34	4	2	4	24	4	

바. 군별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민간인
계	850	792	15	24	19	0
2015(8. 31.)	157	146	4	7	0	0
2014	180	166	2	5	7	0
2013	177	170	1	5	1	0
2012	163	147	6	4	6	0
2011	173	163	2	3	5	0

사. 국군교도소의 특징

〈표〉 민간 교도소와 국군교도소 비교[9)]

구분	민간 교도소	국군교도소
근거 법령	행형법	군 행형법
수용자 유형	기결 중심(94.4%), 민간인 신분	미결 다수(69%), 군인 신분
일반적 수용기간	형량대로 수용	대부분 1년 6월 미만 ※ 사형수는 예외
동일 형태의 타 교도소 이송 여부	수용자 현황, 수용자 상태 등을 고려해 실시	없음
사형수 이송 가능 여부	가능	불가(법무부 반대)
교도관 주요 임무	수용자 계호, 교정교화	수용자 계호, 교정교화, 주둔지 방호, 교육훈련, 부대관리 등
교도병 현황	없음	110명
간부 1인당 관리대상	3.07명	5.56명

9) 국군교도소 수치는 2015. 8. 31. 기준. 민간 교도소는 국군교도소 인근 여주교도소 기준임.

[별지 2] 관련규정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2.10.22] [[시행일 2013.4.23.]]

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의 이송)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면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군수용자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여성 군수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 군수용자에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51조 (군수형자 처우의 원칙)

① 군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 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처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형자의 인성, 행동 특성 및 자질, 뉘우침의 정도, 상벌 실적, 작업 실적 및 교육· 훈련 실적 등을 측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형자의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

제53조 (교육)

① 소장은 군수형자가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54조 (교화프로그램)

① 소장은 군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군수용자 준수사항 등)

① 군수용자는 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라디오방송을 청취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용자는 방송설비 또는 채널을 마음대로 조작·변경하거나 개인적으로 방송 수신 장비를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제71조 (문제행동 예방프로그램)

소장은 군수형자의 죄명·죄질 등을 구분하여 그에 따른 심리측정·평가·진단·치료 등의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국군교도소 교도소 예규

제3조 제5항(특별관리대상자 기준)

구 분	특별관리대상자 기준
A 급	1. 사형수 2. 도주 우려 수용자(음모, 예비 또는 자수) 3. 자살 우려가 있는 수용자 4. 정신장애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 자 5.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자살 등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큰 수용자 6. 상습 규율 위반이 인정되는 수용자(통제 불능 포함) 7. 상습적으로 자해를 하거나 이물질을 삼키는 수용자 8. 수용생활 부적응자에 따른 기타 교도소장이 판단한 자
B 급	1. 사형수(수용생활 적응자) 2. 중형 선고 등 수용생활 적응 곤란하다고 인정된 수용자 3. 징벌 및 규율 위반 행위를 할 우려가 큰 수용자(징벌 2회 이상) 4.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수용자 5. 수용생활 부적응자에 따른 기타 교도소장이 판단한 자
C 급	1. 기구파손, 소란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수용자 2. 조직폭력 수용자 3. 법령 위반/금지물품 반입 등 부조리를 기도하는 수용자 4. 징벌대상자(대기, 계류자, 징벌자 포함) 5. 수용생활 부적응자에 따른 기타 교도소장이 판단한 자

제3편 군 차별행위분야

성별

1 09진차773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 시 여성 및 신장 제한] 2010. 5. 25. 결정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 시 여성에게도 지원자격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피진정인은 공군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 시 여성을 제외한 이유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인력을 확충하도록 되어있고 공사여생도만으로도 공군의 여군 소요인력이 충족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공군 전체 장교(9,246명)에서 여성장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3.7%이고 조종병과에서는 더욱 낮은 비율인 1.1%에 불과함. 그러나 2007년 다른 전투기에 비해 기동성이 뛰어나고 기능과 임무가 복잡하여 고난도의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KF-16 전투기 조종사에 여성이 선발되는 등 공군 여성 조종사들의 기량과 체력, 정신력, 공중 지휘능력 등이 남성 조종사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피진정인도 부인하지 않고 있음.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교정원의 100분의 7까지 여군인력을 확충한다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해당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군 조종장교의 여성 비율을 1%대로 유지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2]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응시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게 되면 남성은 고등학교 전후에 공사 조종분야의 입학기회와 대학졸업 후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여성은 공사 조종분야의 입학기회만 주어져 남성에 비해 조종사로 진출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 공군 조종장교는 다른 병과의 장교에 비하여 군 예편이후 고액 연봉의 민간 항공사 조종사로 재취업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공군 사관후보생 선발이 군필자도 응시가 가능한 모병제인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에 있어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진정인 ▌ 민○○

▌ 피진정인 ▌ 국방부장관

▌주 문 ▐ 1. 피진정인에게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 시 여성에게도 지원자격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가. 국방부는 매년 모집하는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나.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라 함)를 졸업한 조종장교와 학생조종사 중에 신장이 160cm가 안 되는 여성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자격의 신체조건을 162.5cm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선발 시 남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사여생도 만으로도 공군의 여군 소요인력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조종인력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이나「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여성인력의 활용을 강화하고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게 되어 있다. 향후 공사 여생도만으로 충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사를 제외한 타 선발체계에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2) 조종장교의 신장 최저기준을 162.5cm로 제한한 것은 국내 운용중인 전투기의 대부분이 미군 전투기로 이를 조종하는 조종사 선발 시 신체검사에서 확인하는 신장조건이 미국의 기준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조종사 선발 신체검사 시 신장의 기준은 인체 계측학적으로 측정하여 정해져 있는데, 계기판에서 좌석까지

의 거리, 좌석 높이에 따른 시야확보(앉은키가 작을 경우 착륙 시 시야각도가 적어 활주로 시야가 제한됨.), 좌석에서 러더까지의 거리(러더를 최대한으로 밟으려면 다리를 최대한도로 신장시켜야 함.)등을 고려하여 1936년부터 신체크기를 제한하고 있다.

3) 한국 공군 조종사 신체검사 기준은「공군규정 2-84 신체검사」와「공군교범 13-12 공중근무자 신체검사」를 근거로 하고 있다.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교범보다 상위인 신체검사 규정에서는 신장의 일일 변동 폭을 감안하여 "신장에 있어서는 0.5cm, 체중에 있어서는 1kg의 계측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체검사의 판정에 있어 이를 고려한다."는 조항에 따라 조종사 신체검사 시 162cm도 합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생도 선발 신체검사에는 "신체검사 대상자가 만18세 미만일 때에는 성장을 고려하여 신장 2cm, 체중 2kg 미달자에 대해서도 합격으로 하며 신체등급은 미달되는 해당등급으로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생도선발 시 신장 160cm도 합격시키고 있다.

4) 현직 공군 여성 조종사 중 신장이 162.5cm 보다 작은 인원은 2명이 있는데, 이중 1명은 공사 52기로 현재 수송기 조종사이며 비행입과 신검당시 162cm로 공군규정에서 규정한 일일 변동폭 0.5cm을 적용하여 문제없이 선발되었다. 나머지 1명은 공사 57기로 신장이 160cm이고 2009년 임관하여 현재 중등비행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조종사인데, 사관학교 생도 선발당시 정책요원으로 선발된 우수자원으로 생도 3학년 때 공군에서 연구 중인 시력교정술(PRK, photorefractive keratectomy) 허용과 관련하여 연구대상자로 선발되었으며, PRK 시술뒤 항공의학적 검토 후 최종 조종자원으로 선발되었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의 진술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09년도 공군장교(제124기 남·여 사관후보생) 모집계획을 공고하면서 조종장교의 경우 "남자 ○○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제한하였고, 정밀신체검사 항목의 하나로 신장 162.5cm~195cm를 제시하였다.

나. 공군 조종장교의 임무는 일차적으로 전투기(Fighter, F), 수송기(Carrier, C), 헬기(Helicopter, H) 등 기종에 따라 구별된다. 비행단에 근무하는 조정장교의 경우 임무특성에 따라 비상대기, 항공수송,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술훈련을 실시한다. 공

군 조종장교의 기종별 분포현황은 전투기 67%, 수송기 9%, 헬기 7%, 기타(동승조종사) 17%이고 여성 조종장교의 배치는 전투기(통제기 포함) 14명, 수송기 12명, 헬기 5명 등이 있다.

다. 공군 조종장교는 공사 졸업자, 학군사관(學軍士官, ROTC,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사관후보생 등으로 충원되는데, 조종장교의 출신별 분포는 공사 출신 75%, 학군단 8%, 사관후보생 17%이다. 공군 조종사 양성과정은 입문과정, 기본과정, 고등과정 등으로 구분하는데, 입문과정은 훈련기를 활용하여 비행교육 입과 대상자에 대한 적성판단과정으로 운영하고 기본과정은 시계비행을 구비하여 전천후 비행기량을 숙달시키는 과정이며 고등과정은 전천후 비행기량을 구비하고, 기초 전술기량을 숙달시키는 과정이다.

라. 2009. 8. 31. 현재 공군장교는 9,246명으로 남성이 8,904명(96.3%), 여성이 341명(3.7%)이고 그 중 조종장교는 2,816명으로 남성이 2,785명(98.9%), 여성이 31명(1.1%)이다. 2020년까지의 예상 공군장교는 9,405명으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여군장교를 확충하게 되면 662명이 된다.

마. 2010년 현재 공군사관학교 재학생의 성별분포는 전체 재학생 666명 가운데 여학생이 56명으로 8.4%를 차지하고, 공사생도 가운데 여성조종사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31명이며, 2009년 임관자는 훈련중이다.

바. 공군교범 13-12('06. 7. 1) "공중근무자 신체검사"에 의하면 공중근무자는 신장과 체중을 기준으로 Ⅰ, Ⅱ, Ⅲ급으로 구분하되 조종사는 Ⅰ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Ⅰ급의 기준은 신장 162.5cm~195cm(남, 여 무관 단, 여성 정책분야 160cm~195cm), 체중 47kg이상 107kg미만이고, 2009년 공군 제124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 및 2010학년도 공사 신입생 신체검사기준도 이와 동일하다.

5. 판단

가.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 시 남성만을 선발하는 것이 성별에 의한 차별인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공군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 시 여성을 배제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피진정인은 공군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 시 여성을 제외한 이유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인력을 확충하도록 되어있고 공사여생도만으로도 공군의 여군 소요인력이 충족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군 전체 장교(9,246명)에서 여성장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3.7%이고 조종병과에서는 더욱 낮은 비율인 1.1%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7년 다른 전투기에 비해 기동성이 뛰어나고 기능과 임무가 복잡하여 고난도의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KF-16 전투기 조종사에 여성이 선발되는 등 공군 여성 조종사들의 기량과 체력, 정신력, 공중 지휘능력 등이 남성 조종사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피진정인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교정원의 100분의 7까지 여군인력을 확충한다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해당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군 조종장교의 여성 비율을 1%대로 유지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또한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응시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게 되면 남성은 고등학교 전후에 공사 조종분야의 입학기회와 대학졸업 후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여성은 공사 조종분야의 입학기회만 주어져 남성에 비해 조종사로 진출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 공군 조종장교는 다른 병과의 장교에 비하여 군 예편이후 고액 연봉의 민간 항공사 조종사로 재취업기회가 주어진다는 점, 공군 사관후보생 선발이 군필자도 응시가 가능한 모병제인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에 있어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 시 신장 최저기준을 162.5cm로 제한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조건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 시 신장 최저기준을 162.5cm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살펴본다.

피진정인은 전투기 대부분이 미국 전투기인 점을 고려하여 미공군규정의 신장기준을 참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미공군규정의 신장기준은 계기판에서 좌석까지의 거리, 좌석 높이에 따른 시야확보, 좌석에서 러더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인체

계측학적으로 측정하여 정해진 기준이다. 따라서 이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이 공사생도 선발시 만 18세 미만의 자는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장제한 기준에서 2cm 미달인 자도 합격시키고 있다. 공군사관후보생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자들은 더 이상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이 공군 사관후보생 선발 신장 최저기준을 162.5cm로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진정인이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되고, 진정요지 나.항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25.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문경란 위 원 김양원 위 원 장주영

2 11직권20 [해사고등학교의 여학생 입학 제한] 2011. 11. 25. 결정

○○해사고등학교장과 △△해사고등학교장에게 신입생 모집시,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한정하지 말고 여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입생 모집요강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여학생 교육을 위한 해사고등학교 시설 개선 소요예산을 지원할 것과 여학생 입학 허용에 따른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해기사라는 직업이 전통적으로 남성에게 특화되어 있던 업무영역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여학생이 남자 선원이 대다수인 선박에 승선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피할 것이라는 편견으로 교육 대상을 남학생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불과하며, 일반학교에 비해 선택의 폭이 좁은 해양 관련 마이스터고의 특성상 교육기관 선택의 자유 및 여성의 직업선택의 기회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2] 해사고는 여학생의 입학을 위해서는 시설 개선, 외국인 선원 승선에 따른 관리, 해운업체의 여학생 취업기피 현상 등의 여러 문제점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해운단체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성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임. 또한, 단지 여성이 근무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여학생의 입학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

「선박직원법」 제21조, 「국립학교 설치령」 제16조 및 제18조 내지 제19조, 「국립해양계학교졸업자의 복무 및 학비상환규정」 제3조,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932호)」 제7조

▌주 문 ▐

1. 피조사자 1과 2에게 신입생 모집 시,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한정하지 말고 여학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입생 모집요강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조사자 3에게 여학생 교육을 위한 해사고등학교 시설 개선 소요예산을 지원할 것과 여학생 입학 허용에 따른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

1. 직권조사 배경

해사고등학교는 전액 국비로 항해사 및 기관사 등의 해운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로서 그 교육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더욱 공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학 자격을 남학생으로 한정하여 여학생에게는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환경 변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모든 분야에서 남녀 성 역할의 구분이 꾸준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업 또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여학생의 입학을 배제하는 것은 성차별의 소지가 있어 특정 직업에서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차별 개선을 도모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이를 조사하게 되었다.

2. 피조사자 및 참고인의 의견

가. 피조사자

1) ○○해사고등학교장

여학생의 입학을 제한하는 이유는 본교의 교육 목적이 선박에 근무하는 중견 해기사(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면허받은 자로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등을 말한다.)를 양성하는 것인데 여성 해기사를 승선시키는 해운사가 적어 목적 달성의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 설립 당시 남학생만을 수용하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여학생을 수용하려면 기숙사, 화장실 등 학교 건물의 증축 및 보수에 따른 비용과 여학생 기숙사 생활에 따른 추가 관리 업무와 비용의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학생 수용에 따른 시설 보완 등이 이루어지고 학교 설립 주체인 국토해양부 및 한국선주협회 등 해운단체의 여학생 수용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2) △△해사고등학교장

가) 본교의 교육과정은 재학 중 1년간 승선실습을 이수해야 하는데, 1년 중 6개월은 2학년 1학기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실습선에 위탁하여 단체 실습으로, 나머지 6개월은 해운선사의 소속 선박에서 개인 실습을 해야 하는데 각 해운선사에서 여학생의 승선 취업고용을 기피하고 있고, 여학생 스스로도 승선 취업을 꺼릴 것이 분명한 해운산업 및 특수한 선박 근무 환경여건으로 보아 미성년자인 여자고등학생의 해운선사 승선

실습 및 승선 취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나) 또한 본교를 졸업하면 3년간 의무 승선을 해야 하는데 선박의 열악한 환경 등으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미성년자인 여학생이 3년간의 의무승선이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으며, 과거 한국인으로 구성되었던 승무 환경과는 달리 현재 대부분의 선박에는 다국적 선원들이 혼승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 여학생 혼자 선박 승선 생활 시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요소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

다)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등 해운관련단체와 각 해운선사, 국토해양부 등이 대책을 마련하여 위의 문제점을 원만하게 해소한다면, 본교의 생활관, 교실 등의 시설문제, 학생지도 문제 등에 대해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여학생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

가) 해사고등학교는 내항선박 및 주로 6,000톤급 이하의 소형 외항선박에 필요한 초급(4급) 해기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에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국비운영 교육기관인 해사고에 여학생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대할 명분은 특별히 없다.

나) 하지만 수요자인 선사에서는 미성년 여학생의 승선실습 및 여성해기사 승선에 따른 선박시설 개선비용 추가 부담, 외국인 선원 승선에 따른 관리, 생활 및 근무여건 열악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로 여성해기사에 대한 수요가 극히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해사고 여학생 입학 허용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여학생 입학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여학생 교육을 위한 해사고 시설개선 소요예산을 예산당국과 협의하겠다.

나. 관련단체 및 참고인 의견

1) 관련단체

가) ○○○○○○

4급 이하 해기사는 주로 6,000톤급 이하의 소형선박에 승선하는데 선박 내 거주시설 부족과 실습 가능 선박이 제한되어 여학생의 실습과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다. 만약, 여학생의 입학제한이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업체의 취업기피 현상, 현실적인 취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여학생 입학비율은 10% 미만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

해사고등학교의 여학생 입학제한은 남녀 고용평등 등 사회적 추세를 고려할 때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여학생의 선박 승선 시 남성과 별도로 격리된 숙박시설 및 화장실 등 시설설비 확충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이 때문에 해사고생들이 취업하는 중·소형 선사에서는 부담이 되어 채용을 꺼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 ○○○○○○

해운회사는 주로 내항선과 같은 소형선박을 취급하는 회사로 여학생이 승선할 경우 별도의 숙박시설이나 화장실 등 시설 설비 확충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선박 근무 환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여학생 해기사 채용수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해사고등학교 여학생 입학 허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2) 참고인

가) ○○○○○○○

본교 ○○○○은 해기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1991.부터 여학생에 대한 입학이 허용되었으며 현재 여학생 모집인원은 모집정원의 15%이다. 해사대학의 경우 3학년 때 1년간 승선실습을 실시하는데 이로 인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수요자인 선사에서 여성의 승선 취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학생의 경우 졸업 후 승선 의무는 없으며 남학생은 승선근무예비역제도에 의거 3년간 승선근무하면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나) ○○○○○○

1999.부터 여학생 입학을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 여학생 모집인원은 모집정원의 10%이다. 본교를 졸업하면 여학생도 남학생과 동일하게 장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 병과를 선택할 수 있다. 본교의 경우 교육과정에 함정을 타고 군사실습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졸업 후 함선 승선의무는 없으며 최소 5년은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3. 관련규정 (생략)

4. 인정사실

가. 학교 설립 목적 및 운영

1) 해사고등학교는 항해사 및 기관사 등 해양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 및 △△에 설립·운영 중이며 전교생이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이고 입학금, 수업료, 숙식비 등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비운영 교육기관이며 운영주체는 국토해양부이다.

2) ○○해사고등학교는 1977. 8. 30. △△해사고등학교는 1979. 4. 11. 설립되었는데 이들 학교는 학교 설립 이후 현재까지 신입생을 모집함에 있어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 교육과정 및 승선실습

1) 해사고등학교는 '국립학교 설치령' 제16조에 의거 재학 중 1년간 승선실습을 받는데 승선실습은 1년 중 6개월은 2학년 1학기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실습선에 위탁하여 단체실습으로, 나머지 6개월은 해운선사 소속 선박에서 개인 실습을 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 및 한국해운조합 등에서는 숙박시설 및 화장실 등 거주 시설 부족, 미성년 여학생 승선으로 인한 선내 관리 및 외국인 선원 관리 등의 문제점으로 여학생의 승선실습이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2) 최근 2년간 해사고등학교 승선실습자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2010, 2011년도 승선실습자 현황

실습 년도	실습선박	승선정원	실습생 정 원	실습자수		
				계	○○해사고	○○해사고
2010년	한반도호 한우리호	228명 180명	174명 144명	225명	106명	119명
2011년	한우리호	180명	144명	109명	51명	58명

다. 졸업 후 진로 및 복무의무

1) 졸업생의 대부분이 국적외항선, 국내선, 예인선 등에 취업하여 해기사로 승선 근무를 하며 일부는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등 동일계 대학 등에 진학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해사고 졸업생 취업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최근 3년간 해사고 졸업생 취업현황

학교명	졸업년도	졸업생수	취업자수	취업률(%)	진학자수	기타
○ ○ 해사고	2009	177	140	79.1	37	0
	2010	170	138	81.2	22	10
	2011	170	135	79.4	33	2
○ ○ 해사고	2009	226	181	80.1	38	7
	2010	234	203	86.7	30	1
	2011	225	184	81.8	31	10

※ 기타는 현역입대 또는 부사관으로 지원한 경우임.

2) 또한 해사고등학교 졸업자는「국립학교 설치령」(2011. 2. 25. 개정, 대통령령) 제18조(복무의무) 규정에 의거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직무에 복무할 의무가 있으며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비보조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해사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복무 분야 직무는 '국립해양계학교졸업자의 복무 및 학비상환규정'에 선원, 선박검사원, 선박검사관, 운항관리자, 해군,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의 허가 법인체(또는 등록업체),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 해운업무 관련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참고할 만한 학교들의 현황

1) ○○○○○○○○ ○○대학은 해기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1991.에 여학생의 입학이 허용되었다.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3학년때 1년간 승선실습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여학생의 승선 실습과 관련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나 해운선사의 여학생 고용 기피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무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남학생은 승선근무예비역제도에 의한 병역특례로 인해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의무승선 하여야 하나 여학생의 경우 졸업 후 승선 의무가 없다.

2) ○○○○○○○는 1999.부터 여학생의 입학을 허용하였는데 입학 허용 당시 국방과 안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학생 기숙사 및 화장실 시설 설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현재 남학생과 동일하게 장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연합(UN)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0조는 기술교육, 전문교육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해사고등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함에 있어 여학생의 입학을 제한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해사고등학교는 전액 국비로 내항선박 및 6,000톤급 이하의 소형 외항선박에 필요한 4급 해기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학교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원 자격을 남학생으로만 제한하여 여학생의 입학을 배제하고 있다. 동 학교가 여학생의 입학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장래 여학생들이 해기사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여학생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나. 해기사는 선원으로서 일정한 기술과 지식을 가진 선장, 항해사, 기관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해기사라는 직업이 전통적으로 남성에게 특화되어 있던 업무 영역이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여학생이 남자 선원이 대다수인 선박에 승선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피할 것이라는 편견으로 교육 대상을 남학생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해사고등학교 졸업자는 3년간 해양과 관련된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하는데 남학생의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제도에 의한 병역특례로 3년간의 승선 근무를 통해 의무복무를 대체할 수 있으나 여학생은 병역의무가 없으므로 국토해양부가 해양경찰청, 해운업무 관련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도 해양 관련 복무 분야로 지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승선근무 외에도 의무복무로 인정되는 직무 분야를 다양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뿐만 아니라 한국해양대학교에서도 해운선사의 여학생 고용 기피 등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의 선발을 배제하지 않은 점을 볼 때 피조사자들이 여학생의 입학지원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일반학교에 비해 선택의 폭이 좁은 해양 관련 마이스터고의 특성상 교육기관 선택의 자유 및 여성의 직업선택의 기회가 제한되는 불이익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라. 해사고등학교는 여학생의 입학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여학생 교육을 위한 학교 시설 개선, 미성년 여학생의 승선실습 및 여성해기사 승선에 따른 선박시설 개선비용 등이 과도한 부담이라 주장하며, 외국인 선원 승선에 따른 관리, 해운업체의 여학생 취업기피 현상 등의 여러 문제점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등 해운단체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성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단지 여성이 근무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여학생의 입학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소정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한편 국토해양부도 여학생 입학이 불가피하다면 여학생 교육을 위한 시설개선 소요예산을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하였는 바, 선박을 운용하는 해운사에서는 「선박직원법」 제21조(해기사 실습자 실무수습)에 의거 해기사 여성이 선박에 근무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교육당국 및 운영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여학생의 원활한 승선실습 및 취업을 위해 여성이 선박에서 근무하기에 무리가 없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각 해운사에 협조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5.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 원 양현아 위 원 김성영

3 16진정3437 [군장학생 선발 시 여성 배제] 2016. 12. 22. 결정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군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여성의 지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군장학생 선발제도 개선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이 군장학생의 모집단계에서 해군과 공군은 선발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고, 육군의 경우 군장학생 선발대상에 성별의 구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선발공고문의 첨부서류에 '남성 신체등위 기준표'만을 등재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참조조문▐

「헌법」 제32조 제4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및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군장학생규정」 (대통령령)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군장학생의 선발), 제7조(장학금의 지급)

▌진정인▐ 최○○

▌피진정인▐ 국방부장관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군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여성의 지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군장학생 선발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대학교 ○○○○○○○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여성으로, 졸업 후 직업장교로 복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자이다. 진정인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학비마련과 졸업 후 진로의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해 '군장학생 제도'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육·해·공군 모두 남성만을 대상으로 군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어서 지원조차 하지 못하였다.

학업과 진로를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군장학생 선발에 있어 남성만을 선발대상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 없는 차별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군장학생 제도'는 「군장학생 규정」 제1조에 따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맞춤형 획득 제도이다. '군장학생 제도'는 단기복무 장교(학군 2년 4개월, 학사 3년)로 임용된 인원에게 군장학금 수혜기간 만큼의 기간(4년)을 가산하여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서 중기복무 장교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기복무 장교는 직업성이 보장되고, 단기복무 장교는 짧은 복무기간으로 상대적으로 획득이 용이한 반면, 중기복무 장교(7년 내외 복무)는 군 인력운영상 전원 장기복무자로 충원할 수 없어 중도전역(30~33세)하는 자로서 직업성 보장이 제한되는바, 전역 후 취업여건이 열악하여 학비지원 등 금전적 보장 없이는 사실상 획득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일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사이버, 정보통신, 군·치의)와 획득이 어려운 분야(전문의무부사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온 것이다.

또한 전투병과 중기복무 군인은 주로 접적지역 및 상륙훈련, 해강안 경계작전 등의 격오지 근무환경으로 인해 여성 복무가 제한되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여성 선발에 제한을 두었으나, 향후 여군인력 확대, 여군 보직 및 활용성 증대, 가용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일부 여성을 군장학생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심층 검토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주장 및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군장학생 선발제도는 「군인사법」 제62조에 따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일정기간 복무를 조건으로 군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재학기간에 해당하는 군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일반학과 중앙모집과 군사학과 모집의 선발제도로 구분된다.

나.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졸업 후 학사장교로의 임관이 보장되며, 선택에 따라 학군사관제도의 지원이 가능하다. 학사사관후보생은 대학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 양성교육에 16주간 입소한 후 임관하며, 학군사관후보생은 대학 3·4학년 재학 시 군사교육 16주를 이수하고 졸업과 동시에 임관한다. 학사사관후보생은 의무복무기간 3년과 가산복무 4년을 합한 7년을 복무하고, 학군사관후보생은 의무복무기간 2년 4개월과 가산복무 4년을 합한 6년 4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이러한 복무기간은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다.

다. 군장학생 일반학과 중앙모집은 4년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해군과 공군은 선발 공고문에 선발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고, 육군의 경우 군장학생 선발대상에 성별의 구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선발공고문의 첨부서류에 '남성 신체등위 기준표'만을 등재하고 있는 등 여성을 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은 동일하다.

라. 군장학생 군사학과 모집은 학·군협약을 체결한 대학의 군사학과 재학중인 남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마. 예외적으로 2015년 기준 총 28명의 여성이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바, 이 중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육·해·공군) 6명(1인당 970만원),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공군) 5명(1인당 1,000만원)은 학·군협약에 따른 군사학과 모집 방식으로, 의무부사관(육군) 17명(1인당 620만원)은 의무보건계열 전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중앙모집 방식으로 선발되었다.

〈표1. 군장학생 현황 및 장학금 지급현황〉

(단위: 명, 백만원, 2015년 기준)

구분		계/(여성)	신입생/신규선발	재학생(2,3,4학년)
계	인원	3,623(28)	1,056	2,567
	금액	29,142	10,171	18,971
일반학과 (중앙모집)	인원	1,814(17)	598	1,216
	금액	15,708	6,528	9,180
군사학과 (학군협약)	인원	1,809(11)	458	1,351
	금액	13,434	3,643	9,791

※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는 2012년부터,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2015년부터 학·군협약에 따라 남녀구분 없이 재학생을 군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음.

※ 의무부사관의 군장학생 선발은 남녀구분 없이 2014년도부터 시작된 제도로 2014년에는 지원자가 없었고, 2015년에는 17명의 여성이 선발되었음(남성 지원자 없음).

바. 최근 3년간 군장학생 출신 장교 중 전투병과 임관자는 평균 86%, 비전투병과 임관자는 평균 14%이다. 군장학생의 병과 분류는 특수분야를 제외하고는 육군의 경우 별도의 병과 구분 없이 군장학생 선발 후 학사·학군사관 임관절차에서 병과가 분류되며, 해군은 군장학생 모집단계에서 병과를 분류하여 모집하고 있다. 공군은 조종장교로 군장학생을 일괄 모집하고 내부 경쟁방식을 통해 임관 후 조종장교 또는 일반장교로의 복무가 결정된다.

〈표2. 최근 3년간 군장학생 출신 장교임관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전투병과	비전투병과	비고
총계		2,610	2,257(86%)	353(14%)	
2015년	계	940	816(87%)	124(13%)	
	육군	687	588(86%)	99(14%)	
	해군	94	75(80%)	19(20%)	
	해병대	39	33(85%)	6(15%)	
	공군	120	120(100%)	-	
2014년	계	816	711(87%)	105(13%)	
	육군	623	546(88%)	77(12%)	
	해군	73	52(71%)	21(29%)	

구분		계	전투병과	비전투병과	비고
	해병대	22	15(68%)	7(32%)	
	공군	98	98(100%)	-	
2013년	계	854	730(85%)	124(15%)	
	육군	648	548(85%)	100(15%)	
	해군	74	56(76%)	18(24%)	
	해병대	27	21(78%)	6(22%)	
	공군	105	105(100%)	-	

사. 최근 3년간 각 군 사관학교, 학군·학사사관 제도를 통해 임관한 여성장교 중 전투병과 임관자는 평균 38%이며, 비전투병과 임관자는 평균 62%이다.

〈표3. 최근 3년간 여성장교 병과별 임관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전투병과	비전투병과	비고
총계		1,299	500(38%)	799(62%)	
2015년	계	568	213(37%)	355(63%)	
	육군	442	147(33%)	295(67%)	
	해군	45	38(84%)	7(16%)	
	해병대	17	9(53%)	8(47%)	
	공군	64	19(30%)	45(70%)	
2014년	계	404	152(38%)	252(62%)	
	육군	270	100(37%)	170(63%)	
	해군	47	31(66%)	16(34%)	
	해병대	12	7(58%)	5(42%)	
	공군	75	14(19%)	61(81%)	
2013년	계	327	135(41%)	192(59%)	
	육군	194	76(39%)	118(61%)	
	해군	48	39(81%)	9(19%)	
	해병대	13	7(54%)	6(46%)	
	공군	72	13(18%)	59(82%)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 등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특별기본권인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등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차별로 보고, 다만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장학생 제도'는 「군인사법」 제62조에 따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일정기간 복무를 조건으로 군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직업군인으로 취업할 기회를 미리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법령상 성별에 따른 자격요건의 제한을 특별히 두고 있지는 않으며, 군장학생의 선발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군장학생규정」 역시 여성의 지원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인정사실 다.항, 라.항, 마.항과 같이, 피진정인은 사이버, 정보통신, 군·치의와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일반학과와 군사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28명의 여성을 군장학생으로 선발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성의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 진정인이 지원하고자 한 군장학생 일반학과 중앙모집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2015년 기준 선발인원 1,814명 중 별도로 공개모집하는 의무부사관 17명을 제외하고는 여성을 선발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피진정인이 사실상 여성의 군장학생 지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7년 내외의 중기복무를 하게 되는 군장학생 출신 장교는 30~33세 사이에 전역을 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취업여건이 열악한 상황에 노출되게 되고,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 없이는 중기복무 장교의 획득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여성의 군장학생 선발 지원 배제 사유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도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군 또는 학사 등의 중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군인사법」 제7조에 따라 의무복무기간과 군장학금 지원기간만큼의 가산복무를 남성과 동일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7년 내외의 중기복무를 하고 30~33세 사이에 전역을 하게 되는 현실 역시 여성의 경우

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여성 배제에 대한 합리적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진정인은 군장학생 출신 중기복무 장교의 경우 전투병과 위주로 배치하게 되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접적지역 및 상륙훈련, 해강안 경계작전 등 전투병과의 수행이 부적합하므로 여성의 군장학생 선발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군의 특수성 및 인력현황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상 특정 성별을 어느 정도 제한하여 선발할 필요성과 그에 따른 피진정인의 재량을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성별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는 위와 같이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성별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이처럼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허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인정사실 바.항의 군장학생 출신 장교의 임관현황에서 평균 86%의 인원이 전투병과로 임관하고 있는 사실은 전투병과 자원의 획득이 군 인력수급계획상 중요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인정사실 사.항과 같이 최근 3년간 여성장교의 전투병과 임관이 평균 38%에 달하고 있어 전투병과 자원획득을 이유로 여성을 군장학생 선발에서 전면 배제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숙명여대 학군사관후보생들과 성신여대 학군사관후보생들이 각 2012년 하계군사훈련과 2012·2013년 동계군사훈련에서 110개 학군단 중 1위를 차지한 점을 볼 때, 전투병과에 필요한 진정직업자격이 남성에게만 한정된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남성장교의 전투병과 배치비율이 여성장교의 전투병과 배치비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더라도, 평균 14%의 군장학생 출신 장교가 비전투병과에 임관된다는 점을 볼 때, 전투병과 배치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이 군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전면 배제되어야 한다고도 볼 수 없다.

셋째, 피진정인은 '군장학생 제도'가 의무복무기간 외 가산복무를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학 등록금의 지원을 보장받는 시혜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남성만을 대상으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앞서 언급한 남녀 간 군장학생 출신 장교 복무기간의 동일성, 여성의 전투병과 직업자격 적합성 등을 살펴볼 때,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여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군장학생 선발에 있어 여성을 배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군장학생 제도'가 군의 특수성 및 인력현황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성이 군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수준에 비례하여 모집을 실시한다거나, 모집

단계에서 성별의 구분 없이 병과별 모집의 객관적인 지원기준 및 검증의 방법을 통해 진정직업자격 여부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소한의 양성평등에 대한 존중 없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여성이 군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기타 이를 합리화할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피진정인이 스스로 장기적인 여군인력확대계획을 수립하고 각 사관학교의 여생도 모집을 개방·확대하고, 포병·기갑 등의 전투병과도 여성에게 개방하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는 상황과도 상충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군장학생 선발 시 여성의 지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이경숙 위 원 윤남근 위 원 장애순

사회적 신분

1 03진차13, 03진차15(병합) [군복무자의 민간의료시설 이용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권고] 2003. 9. 8. 결정

[1] 하사 등이 휴가기간 중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인지 여부(적극)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9조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사 등이 군복무 때문에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하사 등이 군복무 기간에 포함되는 휴가나 외출·외박기간 중에 접근하기 편리한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진료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제외시키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인정된다.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사 등이 휴가기간 중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진정인▐ 나○○ 외 1인

▌피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병 및 무관후보생이 휴가기간 중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Ⅰ. 검토배경

1. 군복무 예정자인 나○○와 군 복무중인 자녀를 둔 배○○는 군복무자가 휴가기간 중 군병원 이외의 민간의료시설에서 의료조치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및 같은 법 제39조제2항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원칙에 벗어나므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진정들은 국회의 입법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에 의하여 각하되었다.

2.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위 진정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여러 차례 국방부 등에 제기되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검토한 바 있으며,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는 등 사회문제화 되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에 의거, 사회보험제도 및 외국의 사례 등을 살펴 보는 한편, 보건복지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 관련 전문가의 자문의견 등을 들어보고 국민건강보험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다.

Ⅱ. 국민건강보험법상 군복무자에 대한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2호는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병 및 무관후보생(이하 하사 등이라 한다)을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제3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하사 등으로 복무중인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사 등이 휴가기간 중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Ⅲ. 민간의료시설에서의 군복무자 진료

1. 하사 등은 복무 중(휴가·훈련 포함)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군통합병원령에 의거 군 의무시설에서 무료로 진료 받고 있으며, 군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환자 및 응급환자(휴가, 외출, 외박 포함)는 민간병원위탁진료지침에 의거 군 예산으로 민간의료시설에 위탁하여 치료하고 있다.

2. 다만, 휴가, 외출, 외박 중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임의로 인근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하사 등이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Ⅳ. 군의료시설 현황

현재 군병원은 붙임 〈표1〉과 같이 전국적으로 21개가 있으며, 경기도에 5개, 강원도에 4개, 대전·충남에 4개, 부산·경남에 3개, 서울에 2개, 경북에 2개, 광주에 1개가 있다.

Ⅴ. 관계부처 의견

1. 보건복지부 의견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3호의 규정이 하사 등에게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것은 국가의 부담으로 요양을 받는 기간 동안 사실상 건강보험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징병제 하에서 현역사병은 입영일로부터 전역일까지 군의 구성원으로서 24시간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병역법령 및 하부규정의 구속을 받게 되므로, 현역병에 대한 의료보장은 국가의 책임이고, 따라서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소요예산은 국가(국방부)가 부담해야 한다.

나. 대만, 이스라엘 등 징병제 국가도 사병은 의료보험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예방·치료를 위해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보험적용 소요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국가부담분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국방부 의견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3호는 현역병 등 군복무자에 대해 법적인 불이익을 규정한 조항으로써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 제2항의 정신에 위배되며, 국민건강보험은 전국민이 적용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임에도 현역병 등 군복무자에게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Ⅵ. 외국의 사례

외국의 현역병 의료보장은 붙임 〈표2〉와 같이 현역병이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할 경우 지원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며, 징병방식과 보건의료체계에 있어 우리나라와 근본적인 상황이 다른 국가와의 직접 비교는 의미가 없으나, 분명한 것은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현역병은 군 의료체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Ⅶ.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추진

1. 보건복지부는 2003. 5. 29. 당정협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을 2003. 8. 1.~같은 달 20. 기간동안 입법예고 하였다.

2.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현역사병·전투경찰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병역의무자가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에 대해서는 사후에 국방부장관 등 병역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청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지급하도록 하는 제93조의2를 신설하는 것이다.

Ⅷ. 군복무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의 평등권 침해 여부

1. 징집제 국가의 현역병에 대한 의료보장은 국가가 현역병의 경제활동을 인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이들이 실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와 그로 인한 소득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 일반예산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2. 현재 군병원은 21개로서 그 수가 적고, 그 중 경기도에 5개(23.8%), 강원도 및 대전·충남에 각각 4개 (각 19%)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휴가 중인 하사 등이 사실상 군병원을 이용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3.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는 증가되는 데 반하여 군의료시설의 수준은 민간의료시설과 비교할 때 양적·질적으로 떨어진다는 일반적인 인식 등으로 휴가 중인 하사 등이 민간의료시설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4. 이러한 이유로 휴가 중인 하사 등이 군의료시설 이외의 민간의료시설에서 의료조치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높아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5.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9조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사 등이 군복무 때문에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하사 등이 군복무 기간에 포함되는 휴가나 외출·외박기간 중에 접근하기 편리한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Ⅷ. 결 론

따라서 하사 등이 휴가기간 중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사 등이 휴가기간 중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9. 8.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김창국 위 원 박경서 위 원 유 현 위 원 유시춘

위 원 조미경 위 원 김오섭 위 원 이홍록 위 원 신동운

위 원 정강자 위 원 김만흠 위 원 김덕현

2 04진기320 [외국군소속부대 특수임무수행자 등 차별] 2007. 3. 12. 결정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에서 특수임무수행자가 외국군 소속인 경우 그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그 적용기간을 각 군 첩보부대의 창설일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국방부 제4국을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결정요지 ▌

[1]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군' 혹은 '국민'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대한민국의 영토고권 아래에서 적용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군' 혹은 '한국 국민'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진정인이 소속되었던 KLO 부대는 외국군 소속 부대인바,「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제2조 제2호에서 정의된 '특수임무수행자'에서 외국군 소속부대 특수임무수행자를 그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KLO 부대가 동 법률이 보상하고자 하는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도의 입법사안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은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한 경우를 동 법률의 보상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그 보상대상이 되는 특수임무수행 기간에 대하여 1948. 8. 15.부터 2002. 12. 31.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위 법률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인 바, 이러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은 그 하위 시행령에 대하여 실제로 위 기간 사이에 각 군에서 조직되어 특수임무수행자로서 활동한 자들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라는 의미에서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마땅하며, 동 시행령이 이를 벗어나서 임의적으로 특정의 기간을 한정하여 실제로 특수임무수행자로서 활동한 자를 보상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시행령에서 적용기간을 육군, 공군, 해군 첩보부대 창설일만을 기준으로 하여 국방부 제4국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특수임무의 내용 등에 있어서의 본질적 차이가 아닌 단지 각 군별 첩보부대의 창설일 및 운영기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법률의 수혜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헌법」제11조에

규정된, '국방부 제4국' 소속 특수임무수행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참조조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3조

▌진정인▐ 이○○

▌피진정인▐ 국방부장관

▌주 문▐ 1. 피진정인 국방부장관에게 제4국 소속 특수임무수행자가 보상대상에 포함되도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의 진정중 진정요지 '가'항을 각하한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병 및 무관후보생이 휴가기간 중 민간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이라 함)이, '한국인 특수임무수행자' 중, '주한연락처(이하 'KLO'라 함)' 등 외국군 부대 소속 특수임무수행자인 경우를 그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이다.

나.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의 규정상, 1948. 8. 15.부터 1949. 1.까지 국방부 산하에서 존재하였던 특수공작국인 제4국이 위 법의 보상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가 '국방부 제4국'을 그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관하여

한국전쟁 중 KLO 첩보부대원들은 비록 유엔군사령부인 미극동군사령부 산하의 첩보기구 소속이었으나 한국인으로 한국전쟁을 위하여 희생한 것이고 한국전쟁 시 한국군 역시 유엔군사령부에 편입되어 작전지휘를 받았던 것인데, 한국군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군과의 교섭, 보급물자 조달 및 편의제공 역할을 하는 미군 고문관이 KLO 뿐만 아니라 한국육군 첩보부대에 동일하게 배치되었으며, KLO 첩보부대원들의 활동에 있어서는 부대장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운영하였으며, 대원들의 훈련과 임무수행 과정은 매우 혹독하였으나 미극동군사령부는 대원들에 대한 군번, 계급 및 보수나 보상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대원들의 활동내용을 볼 때 실질적으로 한국군 소속인 경우와 다를 것이 없었는바, 외국군 소속인 경우를 특별히 구별하여 보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2) 진정요지 '나'항에 관하여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국방본부 내 '제4국'이라는 첩보본부가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정부 공보처에서 1948년 12월 7일 발행된 관보 제20호에 게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국군 창건사에도 '국방부 안에는 반공 민주군대로서의 정신무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정치(정훈)국을 설치하는 동시에,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도발을 분쇄하기 위하여 제4국(특수공작국)이 설치되어 미국의 OSS부대에 해당하는 특수부대로 창설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어, 그 존재가 명백히 증명되고 있다. 국방부 제4국 소속 대원들이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했고 월급이나 해체 시 특별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던 점은 다른 한국군 소속 특수임무수행자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제4국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의 침해이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관하여

국가가 군 첩보부대를 창설·운영하면서 소속 인원을 모집, 선발하는 과정이 음성적으

로 회유 등에 의해 이루어졌고, 교육훈련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않았으며, 근무 당시 급여 및 수당 등을 미흡하게 지급하였고,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의 유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뿐더러 장기간 이를 은폐하여 정당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던 사실 등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외국군에서 운용한 첩보부대원이 비록 한국인이고 한국전쟁을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그 선발, 훈련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

2) 진정요지 '나'항에 관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에서 법률의 적용기간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는데, 그 위임을 받아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육군, 해군, 공군 첩보부대의 창설일을 기준으로 그 적용기간을 정하였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1948. 12. 7. 발행된 '대한민국정부공보처 관보 제20호'의 내용 중 「국방부직제」가 게재되어 있으며 동 직제 제7조는 '제4국(第四局)은 조사(調査), 방첩(防諜) 및 검찰(檢察)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발간한「건군사」에서는 건군의 역사적 전개를 다루면서 '첩보수집과 검찰기능의 전담기구로 1948년 12월 국방부 내에 제4국(특수공작국)을 설치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2003. 동 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역시 북한의 테러에 의한 국내 교란에 대비한 조직으로 '정부수립 후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정보국이 있었고, 국방부에 제4국이 있었다' 고 기술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관하여

진정인이 소속되었던 KLO 부대가 외국군 소속 부대인 것은 다툼이 없는 바, 「특수

임무수행자보상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된 '특수임무수행자'를 해석함에 있어서 외국군 소속부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군' 혹은 '국민'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대한민국의 영토고권 아래에서 적용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군' 혹은 '한국 국민'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에서는 위 법률의 해석에 따라 외국군 소속부대 특수임무수행자를 그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KLO 부대가 동 법률이 보상하고자 하는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도의 입법사안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관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은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한 경우를 동 법률의 보상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그 보상대상이 되는 특수임무수행 기간에 대하여 1948. 8. 15.부터 2002. 12. 31.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위 법률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인 바, 이러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은 그 하위 시행령에 대하여 실제로 위 기간 사이에 각 군에서 조직되어 특수임무수행자로서 활동한 자들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라는 의미에서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마땅하며, 동 시행령이 이를 벗어나서 임의적으로 특정의 기간을 한정하여 실제로 특수임무수행자로서 활동한 자를 보상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국방부 제4국'의 경우 대한민국정부 공보처 발행 관보 및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1948. 12.부터 1949. 1.까지 국방부 산하에 설치되어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시행령에서 적용기간을 육군, 공군, 해군 첩보부대 창설일만을 기준으로 하여 국방부 제4국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특수임무의 내용 등에 있어서의 본질적 차이가 아닌 단지 각 군별 첩보부대의 창설일 및 운영기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법률의 수혜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국방부 제4국' 소속 특수임무수행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특수임무수행자보상법」에서 특수임무수행자가 외국군 소속인 경우 그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그 적용기간을 각 군 첩보부대의 창설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방부 제4국을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합리적 이유 없어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국방부 제4국' 소속 특수임무수행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12.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안경환 위 원 최영애 위 원 김호준 위 원 정강자 위 원 최금숙

위 원 신혜수 위 원 원형은 위 원 김태훈 위 원 윤기원 위 원 정재근

[별지] 관련 법령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②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정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 첩보부대"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한다.

제3조 (적용기간)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육군 : 1951년 3월 6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2. 해군 : 1949년 6월 10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3. 공군 :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3 13진정8588 [전문하사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 등의 지급배제] 2014. 5. 22. 결정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전문하사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군인 등의 장려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전문하사나 단기복무하사는 같은 하사계급이고 신분이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있어 「군인사법」등 동일한 법령을 적용받는 점, 일선 군부대에서의 복무나 근무형태 등도 동일한 점에 비추어, 서로 다른 보수체계 안에서도 불합리하게 배제되고 있는 수당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함.

[2] 각종 수당 중에서도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과 연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이 수당은 직접 근로에 종사한 대가이거나 실비변상으로서 지급받는 성격의 수당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진정인▐ 한○○

▌피진정인▐ 국방부장관

▌주 문▐ 피진정인에게, 전문하사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군인 등의 장려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단기복무하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하사에 대하여 단기복무하사들에게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교통비, 직급보조비, 야간훈련·당직근무·주말근무·휴일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그 대신 월 30만원의 장려수당과 특수지 근무수당 6만원(전방부대 등에 근무하는 경우)만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단기복무하사는 의무복무기간이 4년으로 별도의 전형에 따라 엄선된 절차를 거쳐 12주의 양성교육을 한 후 임관시키고 있으나, 2008년 병의 연장복무 개념으로 도입한 전문하사는 2주의 신분전환교육만 실시하고 임용하고 있어, 이들은 계급만 하사일 뿐 단기복무하사와는 임용절차, 제도 도입 목적 등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다른 보수체계 및 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전문하사의 복무기간은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수당을 장려수당 하나로 통일한 것이며, 또한, 첨단장비운용 전문직위에 근무하는 전문하사의 경우 월 90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이는 단기복무하사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월 74만원에 비해 더 높으므로 전문하사가 단기복무하사보다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제출자료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08년 사병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전투기술 숙련병 및 첨단장비운용 전문병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병역법」제20조의2에 의한 유급지원병으로서 전문하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전문하사는 유형-Ⅰ(전투·기술 숙련직위)과 유형-Ⅱ(첨단장비운용 전문직위)로 구분되는데, 유형-Ⅰ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현역병사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2년의 의무복무기간 종료 후 2주간 신분전환교육을 실시하고 하사 계급으로 임용하며,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8개월까지의 기간 중 자유로이 복무기간을 선택하여 근무하게 된다. 한편, 유형-Ⅱ는 민간인을 모집대상으로 하고 3년의 복무기간 중에서 병으로서의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하사로 근무한다. 진정인은 위 유형-Ⅰ로서 육군에서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문하사로 1년 근무한 후 2013년에 전역하였다.

나. 단기복무하사는 민간, 현역병사, 군 장학생 등을 모집대상으로 하고 12주의 양성교육을 거쳐 4년간 의무복무를 한다. 위 전문하사와 단기복무하사는 모두 「군인사법」 제6조 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군 부대에서의 복무나 근무형태는 거의 동일하다.

다. 전문하사와 단기복무하사를 3호봉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비교할 때, 본봉은 106만원으로 동일하나, 단기복무하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상여수당(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실비변상의 제수당(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이 월 74만원 추가되어 월 18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반면, 전문하사는 국방부 훈령인 「군인 등의 장려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훈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이러한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2. 제8호에 의한 장려수당으로써 유형-Ⅰ의 경우 월 30만원이 추가되어 월 136만원, 유형-Ⅱ의 경우 월 90만원이 추가되어 월 196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제45조도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계급과 수행업무가 동일한 전문하사와 단기복무하사에 대해 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 서로 다르게 처우하는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피진정인은 전문하사와 단기복무하사는 임용절차, 제도 도입 목적 등이 달라 별도의 보수체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나, 전문하사나 단기복무하사는 같은 하사계급이고 신분이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있어 「군인사법」 등 동일한 법령을 적용받고 있는 점, 일선 군부대에서의 복무나 근무형태 등도 동일한 점, 단기복무하사는 입대 초기에 12주의 양성교육을 이수하여 양성과정에 차이가 있다고 하나 전문하사 유형-Ⅰ의 경우도 현역병사로서 2년의 의무복무를 한 후에 임용되므로 의무복무기간 2년 동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체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보수체계 안에서도 불합리하게 배제되고 있는 수당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문하사는 최소 6개월부터 그 복무기간이 다양하므로 모든 수당을 장려수당으로 통일하여 지급하는 이유도 수긍이 가고, 그러한 장려수당에는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단기복무하사가 지급받고 있는 각종 수당이 전문하사에게도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각종 수당 중에서도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과 연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이 수당은 직접 근로에 종사한 대가이거나 실비변상으로서 지급받는 성격의 수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단기복무하사에게는 시간외 근무로 인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전문하사에게는 그 지급을 배제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이와 같은 차별행위의 개선을 위하여 피진정인에게, 전문하사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군인 등의 장려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5. 2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 원 한태식 위 원 곽란주

용모 등 신체조건

1 06직차6 [성별 및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신입생 모집 시 차별] 2006. 7. 18. 결정

[1] 국군간호사관학교가 간호사관생도 모집요강에서 신입생의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적극)

[2] 국군간호사관학교가 간호사관생도 모집요강에서 신입생의 키 및 몸무게를 각각 "157cm에서 183cm, 45kg에서 72kg"로 제한하고 내반슬을 가진 자를 불합격자로 정한 것이 차별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

[1] 남성이 간호장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모집 자격을 특정 성으로 제한하지 않는 육군본부 간호장교 모집계획을 보더라도 간호장교 직무의 수행이 특정 성에 한정될 필요가 없으며, 개정된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서도 여성으로 입학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국군간호사관학교 신입생의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음.

[2] 국군간호사관학교 신입생의 키 및 몸무게 요건인 "157cm에서 183cm, 45kg에서 72kg"은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육군본부 간호장교의 신체요건인 "여자 신장 155cm이상 184cm미만", "체중은 신장에 따른 체질량 지수로 판정"이라는 요건보다도 더 엄격하여 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고,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심하지 않은 내반슬을 가진 자들은 간호장교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내반슬 자체를 불합격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이는 육군본부 간호장교에 대한 관련 기준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인바, 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함.

따라서 국군간호사관학교가 간호사관생도 모집요강에서 신입생의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고 신입생의 키 및 몸무게를 각각 "157cm에서 183cm, 45kg에서 72kg"로 제한하며 내반슬을 가진 자를 불합격자로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판단되므로,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참조조문 ▌

「헌법」 제11조,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피조사자 ▌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주 문 ▌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모집 시 입학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고, 육군본부 간호장교 채용 조건보다 더 엄격한 키, 몸무게, 내반슬에 대한 제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군간호사관학교 학칙」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

1. 직권조사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여성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로 신입생 자격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인지한바, 위 학교는 일체의 교육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육·해·공군 정예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그 교육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더욱 공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별과 특정 신체조건으로 입학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의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의거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조사자 진술요지

여성으로만 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재 국방부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중이고, 키 157cm에서 183cm, 몸무게 45kg에서 72kg으로 제한하는 것은 군사훈련, 야전 및 전시 간호업무 수행을 위한 체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내반슬이 있는 자를 불합격시키는 것은 체중부하 시 관절 등에 불편감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4. 인정사실

가. 국군간호사관학교는 1951.1. 육군군의학교 간호생도과정이 개설된 후 동년 제1기생 모집을 시작하였고, 1980.1.4. 국군간호사관학교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

며, 2006.6. 기준으로 1학년 84명, 2학년 93명, 3학년 97명, 4학년 97명 총 371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졸업 후 6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두고 있다.

나. 성별 제한에 대하여

2006학년도 제50기 국군간호사관생도 모집요강에 의하면 지원자격을 17세에서 21세의 미혼여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일반대학 간호학과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간호장교를 모집하는 육군본부의 간호장교 2006년도 모집계획에 의하면 지원자격을 남녀 구분하거나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 신체조건 제한에 대하여

(1) 키 및 몸무게

국군간호사관생도 모집요강에 의하면 신체검사기준을 "신장 157cm에서 183cm 사이", "체중 45kg에서 72kg"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기타 신체검사 세부기준을 육군규정 176(건강관리규정) 및 본교 선발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육군본부 간호장교 모집계획에 의하면 신체검사기준을 "여자 신장 155cm이상 184cm미만" 사이, "체중은 신장에 따른 체질량 지수로 판정"하며, 기타 신체검사 세부기준은 육군규정 176 건강관리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2) 내반슬

(가)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은 "내반슬(O형다리)"을 불합격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육군본부 건강관리 규정에 의하면 "206. 반장슬 중 가. 증세가 경미한 경우, 나. 선천성 또는 후천성 또는 외상성인 경우로써 체중 부하시 하체가 불안정하고 힘이 약하며 이학적 소견 등의 객관적 증거가 인정되는 경우"를 각 2급과 3급으로 선발, 정례 및 임관신체검사 합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2006학년도 국군간호사관생도 모집에 응시하였던 한ㅇㅇ는 후천성 내반슬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되었던바, 체격검사보고서에는 "후천성 내반슬. 평가관리실 45(2005.10.06) 불합격급. 내반슬 있으나 육안적으로 변형 심하지 않은 상태로 불안정성 없어 현재 증상은 없는 상태. (육규 176-206-가에 의거 2급이나 상기 판정 근거에 의하여 불합격으로 판정함) 대위 소ㅇㅇ"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등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차별로 보고, 다만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이 사건 사관학교의 신입생 모집이 동법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차별의 예외 사유인 '합리적 이유'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준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일체의 교육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육·해·공군 정예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그 교육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더욱 공평하여야 하는바, 성별, 특정 신체조건에 따라 입학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해당 조건이 학업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혹은 이후 수행하게 될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며,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란 본질적 업무와 부수적 업무를 구분하여 해당 조건이 본질적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 즉 필수적 직무자격요건인 경우를 말한다.

가. 성별 제한에 대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국군간호사관생도 모집요강에서 신입생을 "여성"으로 제한하는바, 정예 간호장교의 업무, 군진간호의 학문적 발전 주도, 학술이론과 응용방법 연구 및 교수라는 임무가 남성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는 육군본부 간호장교 모집계획을 보아도 간호장교의 직무가 여성에 한정될 필요가 없으며, 2004.1.20. 개정된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서도 여성으로 입학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를 정할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신입생을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신체조건 제한에 대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국군간호사관생도 모집요강에서 신입생의 키 및 몸무게를 "157cm에서 183cm, 45kg에서 72kg"으로 제한하는바, 간호장교로서 강인한 체력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러한 체력을 측정하는 척도로 신장 및 몸무게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향후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조사기관인

국군간호사관학교의 키 및 몸무게 요건은 유사 직무라고 할 수 있는 육군본부 간호장교 신체조건인 “여자 신장 155cm 이상 184cm 미만”, “체중은 신장에 따른 체질량 지수로 판정" 조건보다도 엄격하여, 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선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은 내반슬을 불합격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ㅇㅇ의 체격검사보고서에 “육군 176-206-가에 의거 2급이나 상기 판정 근거에 의하여 불합격으로 판정함”이라고 기재 된 것에 근거할 때, 내반슬인 자는 그 정도에 불문하고 불합격 처리되었음이 인정된다.

대한슬관절학회 의견에 의하면 2급에 해당하는 슬관절 간격 2.5cm 미만인 경우 간호장교를 포함한 직업군인 또는 현역사병으로 근무가 가능하고, 3급에 해당하는 슬관절 간격 2.5cm이상 5.0cm미만인 경우도 간호장교를 포함한 직업군인 또는 사병으로 근무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개인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바,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내반슬 정도 및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내반슬 자체를 불합격 기준으로 하여, 육군본부 간호장교에 대한 기준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바, 역시 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결론

따라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모집 시 여성으로 제한하고, 키 157cm에서 183cm 사이, 몸무게 45kg에서 72kg 사이로 제한하며, 내반슬인 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조사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18.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강자 위 원 김만흠 위 원 신혜수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1 04진차300 [학력 및 전과를 이유로 한 채용 시 차별] 2006. 7. 18. 결정

군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전과에 대해 질문한 것은 그 자체로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면접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면접위원들이 사전에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인정되고 면접 시 이루어졌던 질문에 대한 진정인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으로 미루어볼 때 면접에서 진정인이 교도소 수감 여부, 죄명, 전과자의 군무원시험 응시자격 여부 등 전과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됨. 그런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이 사건 진정인의 형은 실효되었으므로 법률에 의해 그 경력조회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이고, 전과자의 군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군사보안적부심사규정」에 의거한 군사보안적부심사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면접시험은 군사보안적부심사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응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면접시험에서 진정인이 지원하였던 용접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전과사실에 대해 질문을 하였던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그 자체로서 진정인을 차별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면접 시 이루어진 진정인의 전과사실에 대한 질문이 진정인의 불합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진정인이 면접시험에 합격하였어도 보안적부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면접시험에서의 차별적 질문이 진정인에 대한 불합격조치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수 있음.

전과사실 외에 자신의 중졸학력이 군무원 임용에서 탈락한 이유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면접관들은 진정인의 최종학력을 인지한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하였으므로 진정인의 학력에 대한 평가가 면접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나 그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면접시험에서 대졸 등 고학력자가 특별히 우대된 정황이 없는바, 그를 인정하기 어려움.

▌참조조문 ▌

「헌법」 제11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 진정인 ▌ 박○○

▌ 피진정인 ▌ ○○참모총장

▌주 문 ▐ 피진정인에게 ○○군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전과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전과자를 차별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

1. 진정 요지

1992년 집행유예 10월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진정인은 2003년과 2004년 ○○군무원 9급 용접직렬 공채시험에 지원하였고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불합격 되었다. 면접과정에서 "교도소는 갔다 왔느냐, 죄명이 뭐냐, 전과자인데 군무원 시험을 칠 수 있느냐, 전과자인데 어떻게 좋은 시험성적을 얻을 수 있었느냐?"는 등 진정인의 전과와 학력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신원조회를 통해 진정인의 중퇴 학력과 집행유예 전과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면접위원들이 이를 이유로 불합격 시킨 것이므로, 학력과 전과에 의한 부당한 차별이다.

2. 피진정인 진술요지

2004년도 ○○군무원 채용시험 9급 용접직렬 전형 2차 면접시험에서 2명은 합격, 진정인을 포함한 2명은 불합격 되었던바, 이들의 불합격 사유는 낮은 면접 점수 때문으로, 진정인의 면접점수는 평균점 7점으로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합격기준인 평균 10점에 미달하여 불합격 처리된 것이다.

2004.5.27. 1차 시험 합격자 전원에 대하여 국군기무부대에 신원조회를 의뢰하였고, 면접시험일인 2004.6.15. 이후인 6.17.에 회신결과를 통보 받았으므로 면접관들은 면접 당시 피면접자들의 전과에 관해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학력에 관하여는 2004년 응시원서에 학력기재란이 있었으나, 2005. 현재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원서부터 학력기재란을 삭제하였고 면접시험 또한 일체의 학력 관련 자료 없이 실시하고 있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4. 인정사실

가.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면접시험은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을 평정요소로 하여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되,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면접시험위원 중 과반수의 위원이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그 해당자를 불합격 처리한다.

나. 2004년도 ○○군무원 채용시험 9급 용접직렬 전형에서는 3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1차 필기시험에서 진정인을 포함한 총 4명이 선발되었고, 2차 면접시험에서 2명이 합격되었고 진정인을 포함한 나머지 2명은 불합격 되었던바, 진정인은 총 5명의 면접 심사위원들에 의하여 평균 7.00점으로 순위로는 3위를 하였으나 평균이 10점 이하이므로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불합격 처리되었다.

다. 당시 면접 대상자 인적사항 및 성적은 다음과 같다.

채용 직급	채용 계획 인원	성명	필기 시험 성적	2차 면접시험		취업 보호 가점	최종 출신학교	신원 조회 결과	최종 선발 여부
				성적	결과				
용접 9급	3명	○○○	74.00	13.20	합격	-	○교육대학교	적격	선발
		○○○	75.00	12.40	합격	-	○○기계공업고등학교	적격	선발
		진정인	84.00	7.00	불합격	-	○○중학교	부적격	탈락
		○○○	74.00	6.80	불합격	-	○산업대학교	적격	탈락

라. 진정인에 대한 면접위원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평정요소	심사위원A			B			C			D			E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1.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V			V			V				V		V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V			V			V			V		V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V			V			V		V				V
4.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V			V		V			V				V
5.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V		V			V				V			V
합 계(점)	6			7			8			7			7		

마. 이 사건 채용절차는 다음과 같은바, 면접시험 이전인 2004.6.5. 이미 면접시험을 주관하는 교육사에 신원조사결과가 전달되었으므로 면접위원들이 면접 당시 진정인의 전과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적 배경이 인정되고, 진정인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면접 시 교도소 수감 여부, 죄명, 전과자의 군무원시험 응시 가능 여부 등 전과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는 진정인의 진술은 사실로 인정된다.

채용 절차	주무부서	일시	비고
1. 채용 계획 공고	○○본부	2004.3.6	
2. 1차 필기시험	진주7개 시·도 교육사에서 실시	2004.5.1	
3. 신원조회의뢰	교육사→기무부대	2004.5.27	1차 합격자 대상
4. 보안적부심사의뢰	기무부대→교육사	2004.6.5	신원조사결과 특이사유 해당자대상(특이사유는 소행불량자로 대부분 전과사실이 있는 자)
5. 면접시험	본부통합	2004.6.15	
6. 신원조사결과송부 (보안적부심사 의결서송부)	기무부대→교육사 (적부만 통보)	2004.6.17	
7. 최종 합격자 명단 본부이송	교육사(인사처)→본부		

바. 2003년, 2004년 당시 ○○군무원 9급 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에 학력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었으나, 응시원서에 학력기재란이 있고, 면접시험 평가표에 최종출신 학교 기록난이 있어 면접관들은 진정인의 최종학력을 인지할 수 있었다.

사.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차 면접시험까지 합격한 자라 하여도 신원조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 「군사보안적부심사규정」 제12조의 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임용되지 않는다.

5. 판단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학력을 이유로 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학력과 전과를 이유로 임용에서 배제하였는지가 문제된다.

가. 학력에 대하여

진정인은 자신의 학력을 이유로 군무원 임용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시 응시원서에 학력기재란이 있고 면접시험 평가표에 최종출신학교 기록난이 있어 면접관들은 진정인의 최종학력을 인지한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하였으므로 면접 과정에 진정인의 학력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나,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대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자가 신원조회 등 다른 결격 요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불합격 처리되었고,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다른 자는 면접시험 1위인 자의 점수와 큰 차이 없이 면접에서 합격 처리된 점,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군무원 9급 용접직렬 공채시험 합격자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의 응시자가 채용된 사례는 없으나 고등학교 졸업자가 매해 각 1명(14.23%), 1명(33.33%), 0명(0%)으로 존재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판단하건대 진정인이 중졸 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불합격 처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참고로, 2005년부터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원서에 학력기재란을 삭제 한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2005년부터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전과에 대하여

진정인은 자신의 전과를 이유로 면접시험에서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고 그 결과 군무원 임용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진정인은 채용절차상 면접위원들이 면접 전에 응시자들의 신원에 대해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면접시험일 이전인 2004.6.5. 기무부대에서 교육사로 보안적부심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이미 진정인의 전과사실이 알려졌음이 확인된바, 면접위원들이 이미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적 배경이 있었음이 인정되며 아울러 면접 당시 이루어진 질문에 대한 진정인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면접 시 교도소 수감여부, 죄명, 전과자의 군무원시험 응시가능 여부 등 전과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는 진정인의 진술은 사실로 인정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은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와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범죄 사실 및 이에 따른 형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 또한 국민으로서 근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이들이 전과자라는 사실만으로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출소 후 직업을 갖고자 하여도 전과자라는 범죄전력으로 인해 사실상 취업 가능성을 상실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가 초래되곤 한다.

범죄 전력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형벌을 마친 후에는 이들의 범죄 전력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는바, 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직무가 고도의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을 가질 것이 요청되고 엄격한 책임 추궁이 요청되며, 해당 직무와 관련이 있어 해당 직무 수행에 악영향을 미침이 명확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한 막연한 위험성에 근거하여 이들의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보장을 목적으로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할 때, 이 사건 진정인의 형은 실효되었으므로 법률에 의해 그 경력조회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인데, 비록 「군사보안적부 심사규정」 제9조 및 제12조가 「국가공무원법」 임용결격사유보다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군사보안적부심사에 의한 군무원 임용 제한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군사보안적부 심사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절차인 면접시험에서 응시자의 전과 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은 진정인이 지원하였던 용접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응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면접시험의 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다만,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할 때 진정인의 전과에 대한 면접과정에서의 질문이 진정인의 불합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구체적 인과관계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이 사건 진정인의 경우 진정인이 면접시험에 합격되었어도 「보안적부심사규정」의 적용결과에 의하여 그 임용이 제한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면접과정에서의 차별적 발언이 곧 진정인에 대한 불합격조치를 가져왔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과정에서 직무수행능력과 관련 없는 전과에 대해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정인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점은 그 자체로서 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바, 피진정인은 응시자의 신원조회 결과가 면접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채용절차를 점검하고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전과 등에 관해 질문하지 않도록 면접 절차를 개선하여 제3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군무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응시자의 범죄전력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18.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정강자 위 원 김만흠 위 원 신혜수

2 12진정7204 [불기소처분 경력을 이유로 한 군무원 채용 불허] 2012. 10. 31. 결정

▌결정사항▐

공군참모총장에게, 향후 군무원 채용 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실효된 전과 또는 보존기간이 도과한 수사경력 등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임용적부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이미 보존기간이 수년이 도과한 수사경력(불기소처분 경력)을 유일한 사유로 들어 진정인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려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되므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참조조문▐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2항

▌진정인▐ ○○○

▌피진정인▐ 공군참모총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군무원 채용 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상 실효된 전과 또는 보존기간이 도과한 수사경력 등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과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임용적부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2년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12. 9. 14. 오전 발표된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었으나, 이후 공군본부로부터 신원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임용

불가 통지를 받았다. 채용 담당자는 그 사유에 대하여 진정인이 16년 전 대학생 시절에 시위에 가담하였다가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16년 전의 불기소처분 경력을 이유로 군무원 채용에서 최종합격 결정을 번복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해 주기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공군 군무원 채용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 결과 '특이점 없음' 또는 「군사보안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1393호, 2012. 2. 13.)」 및 「군사보안 적부심의 규정」 제10조에 따른 보안적부심의 결과 '적격'인 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채용 시에 신원조사 결과에서 특이사항이 있었던 전례가 거의 없어 신원조사 결과가 접수되기 전인 2012. 9. 14. 10:00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2012년 군무원 채용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는 업무상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2012년 군무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후 10여 분이 경과한 2012. 9. 14. 10:10경 신원조사 의뢰자 가운데 '신원특이자(진정인)'가 있음을 인지하고 당일 11:20 경 합격자 명단에서 진정인의 이름을 제외한 후 최종합격자 명단을 재공고하였다. 진정인에게는 임용 절차상 특이사항이 발견되어 최종심의가 필요하므로 일주일 후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진정인에 대한 보안적부심의회가 개최되었으며, 보안적부심의회는 향후 진정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군 조직 및 해당부대에 미칠 잠재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진정인에 대하여 '임용 부적격'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2012. 9. 20. 진정인에게 임용불가를 통지하였다. 보안적부심의회의 결정은 군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보안을 위한 적법한 재량행위라 할 것이며, 군 특수성에 따라 군 간부의 채용에 있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고 하여 그 엄격한 잣대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2년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12. 6. 30. 필기시험 및 2012. 8. 면접시험 등을 거쳤으며, 2012. 9. 14. 10:00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된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위와 같은 최종합격자 명단이 발표된 이후, 공군 본부의 군무원 채용 담당자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진정인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에 특이사항이 있음을 발견하고 당일 11:20 경 최종합격자 명단에서 진정인을 제외하고 최종합격자 명단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공고하였다. 재공고된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공개채용 83명, 특별채용 14명 등 총 97명이며 이들의 임용예정일은 2012. 11. 1.이다.

나. 피진정인은 군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명단을 재공고한 이후 2012. 9. 17.「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제33조 및 제34조,「군사보안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1393호, 2012. 2. 13.)」제73조 제3항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보안적부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심의회는 진정인에 대하여 '임용 부적격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은「군사보안 적부심의 규정」제10조에 근거하여 2012. 9. 20. 진정인에게 '임용불가'를 최종 통지하였다. 동 심의회의 위원장은 공군본부 감찰실장이고 위원은 인사운영처장, 정보지원처장, 법무실장이다.

다. 위 '보안적부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위해 사용된 유일한 자료는 2012. 9. 14.자 진정인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회보서이다. 동 회보서에는 '진정인이 1996. 8. 16. 23:00 ○○대학교 이과건물을 잠입 점거하여 한총련 진군가를 부르고 1996. 8. 20. 5:45 동 건물 옥상에서 경찰에 화염병을 투척하여 전경 이○○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쇠파이프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1996. 12. 26. 기소유예 처분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제6조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수사자료표를 전산자료 등의 형태로 관리하며,「국가정보원법」제3조 제2항 및「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시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다만 동법 제8조의2는 수사경력자료(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의 보존기간은 해당 죄목 법정형에 따라 최장 10년까지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등을 이유로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1996. 12. 26.자 불기소처분을 이유로 군무원 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해당 직무의 수행에 특별히 필요한 성실성, 신뢰성 등의 인적 특성을 임용권자가 요구하는 것은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피진정인이 군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군사 기밀의 취급 등 해당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정인의 과거 수사경력조회 결과 등을 임용여부 결정의 근거자료로 사용한 것 자체는 그 필요성 및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2012. 9. 17. '보안적부심의회'에서 진정인에 대한 임용 부적격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한 유일한 기초자료가 진정인에 대한 국군기무사령부의 신원조사회보서이며, 동 회보서에 기재된 특이사항은 진정인에 대한 1996. 12. 26.자 기소유예 처분 사실뿐이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규정에 의하면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 기록은 해당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최장 10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진정인의 기소유예 처분 사실은 2006. 12. 이후에는 이미 수사자료표에서 삭제되었어야 할 내용이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상 이미 보존기간이 수년이 도과한 수사경력(불기소처분 경력)을 근거로 여타의 다른 자료 없이 이를 유일한 사유로 들어 진정인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려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이 정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3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 원 김성영 위 원 강명득

[별지] 관련 규정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9.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2.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보안업무규정」

제31조(신원조사)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②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임용예정자

제33조(권한의 위임) 국정원장은 신원조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각 조사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8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군무원을 인사발령할 때에 갖추어야 하는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임용 적부심사 등) ① 임용권자는 제9조에 따라 군무원의 임용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임용 추천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서류의 구비 여부, 해당 기관의 정원과 현원, 임용예정자의 임용 자격과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5. 「군사보안업무훈령」 (국방부훈령)

제73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① 신원조사 결과 회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임관·임용예정자 및 진급 대상자는 30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② 신원조사 결과는 대상별로 양식과 방법을 구분하여 회보한다.

③ 신원조사 결과 보안상 유해(보안적부심의 기준상 부적격 및 심의 대상)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별표6「군사보안 적부심의 규정」에 의한 보안적부 심의회에 회부 하여야 한다.[별표 6] 군사보안 적부심의 규정

제10조(임관 · 임용 등 제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로 통보된 자에 대하여는 임관·임용 또는 중요 보직의 제한과 비밀취급 인가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적 지향

1 06진차87 [군대내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2006. 6. 26. 결정

[1] 동성애자 사병인 진정인의 성적 지향 등의 개인 정보가 군부대 내에 유출되어 그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적극)

[2] 전역심사 과정에서 증빙자료로서 진정인에게 동성애자와 키스하는 사진 등을 요구한 것이 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3] 진정인에게 정신과 치료 및 HIV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한 것이 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4] 진정인이 부대원들에 의해 성희롱을 당하였는지 여부(적극)

[5] 「군형법」, 「군인사법시행규칙」,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등의 관련 법규정들이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

[1] 「병 생활지도기록부 작성 및 활용체계 개선(육방침 '04-46호)」에 의하면 병사의 개인정보 관리는 각급 지휘관의 책임 하에 엄격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성적 지향에 관한 정보가 이를 다룰 권한이 있는 자들 외에 광범위하게 유출되어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었음.

[2] 피진정인 정○○은, 진정인의 아버지와 애인을 통해 진정인이 동성애자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를 위한 확증자료로 키스사진 등을 제출하게 하였고 이를 심사자료로 사용하였던바, 이는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함.

[3] 피해자가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정신과 진료와 HIV검사 및 매독검사를 받게 한 것은 동성애자는 일종의 정신적 질환자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사회의 편견에 근거한 차별적 행위로 판단됨.

[4]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진정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미루어볼 때 성희롱이 있었을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5] 「군형법」 제92조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4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별표2] 102번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이므로, 이를 각하함.

이상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피진정인 김○○ 등에 대해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을 받게 할 것을, 피진정인 김○○ 등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을 받게 할 것을 권고하고, 국방부장관에게, 군대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과,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인권보호 지침을 수립

하고 현재 시행 중인 「병영내동성애자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참조조문▐

「헌법」 제17조, 「병 생활지도기록부 작성 및 활용체계 개선(육방침 '04-46호)」

▌진정인▐ 임○○

▌피해자▐ 김○○

▌피진정인▐ 김○○(2005 당시 육군 제○○연대 연대장 재직) 외 15명

▌주 문▐

1. 육군참모총장에게 피진정인 김○○, 동 이○○, 동 김○○, 동 오○○, 동 김○○, 동 정○○에 대해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을 받게 할 것을, 피진정인 김○○, 동 김○○, 동 임○○, 동 안○○, 동 봉○○, 동 정○○, 동 정○○, 동 정○○, 동 이○○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을 받게 할 것을 권고한다.

2. 국방부장관에게 군대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과,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인권보호 지침을 수립하고 현재 시행 중인 병영내동성애자관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3. 이 사건 진정 중 「군형법」, 「군인사법시행규칙」,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관한 부분은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의 진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 김○○는 이하와 같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1) 피진정인 김○○, 동 이○○, 동 김○○, 동 오○○, 동 김○○, 동 김○○, 동 임○○, 동 안○○, 동 봉○○, 동 정○○, 동 김○○, 동 정○○, 동 정○○, 동 정○○, 동 이○○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졌고,

(2) 피진정인 이○○은 전역심사를 이유로 동성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성관계사진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며,

(3) 피진정인 김○○, 동 이○○, 동 김○○, 동 임○○는 동성애자를 정신질환자로 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 차례 군병원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였고, 동 이○○과 동 정○○는 동성애자를 에이즈 고위험군으로 보아 피해자 동의 없이 HIV검사와 매독검사를 실시하였으며,

(4) 피해자 김○○는 동료 부대원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

나. 「군형법」 제92조,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는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법규이므로 국방부장관은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2. 피해자 진술 요지

위 진정 요지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은 다음과 같다.

가. 성적 지향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2005.7.3. 피진정인 정○○과 면담과정에서 동성애자임을 밝힌 후 같은 해 7. 7. ○○병원에 정신과 외진을 받았는데, 외진 시 동 이○○이 부 동행인의 동석을 허용하였고, 같은 해 8. 1.경 동 교육대 분대장 병장 박○○은 별다른 주의 없이 훈련병들 중 일부를 시켜 '부형의견서'를 전달케 함으로써 일부 사병들이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적혀있는 부형의견서를 보게 되었으며, 사병들의 개인기록을 훈련병들이 봉투에 넣도록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2006.1.26. 일병 이○○이 "외진 시 만난 고참이 환자실에 게이가 있는데 남자와 키스하는 사진과 성관계하는 사진을 봤는데 문란했고, 이로 인해 본부 중대가 떠들썩했다."라고 피해자에게 전했던바, 이는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소문이 난 것으로 보인다.

나. 부적합심사 과정에서의 인격권과 평등권 침해

피해자는 2005.8. 중순 경 의무중대장인 피진정인 이○○으로부터 부적합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성애자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고 애인과 키스하는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그 사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증거를 달라고 재차 요청 받았는데, 이는 사실상 성행위 사진 제출을 요구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과 좌절감을 겪어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다.

다. 정신과 진료 및 HIV 검사 등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

피해자는 2005.7. 초순경 ○○교육대 중대장인 피진정인 임○○와 면담을 하였는데 "게이들은 군대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역부적합 심사로 전역할 수 있다."고 하여 동성애자는 전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은 해 7. 7. ○○병원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다. 그 이후 ○○교육대 퇴소 후 다시 정신과 진료를 받으라 하여 첫 정신과 진료 시 괴로워 동 이○○이 외진을 가자고 했을 때는 싫다고 말을 하였으나, 병원진료 당일 동 이○○이 병원에 가자고 하여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갔다가, 동 이○○이 ○○병원 군의관에게 "연대장이 전역심사를 올리라고 하는데 의사소견서가 필요해서 떼려고 왔다."고 말하여 부적합심사를 위한 진료임을 알게 되었다. 군대에서 병원으로 올 때 사전에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하였고 동의한 바도 없는데, 정신과 진료를 받은 후 동 이○○이 "에이즈 검사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는 검사받기 싫었지만 간부가 지시한 것이라 거절하지 못하였다.

라. 부대원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는 2006.2.2.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중대 전원이 영점사격장에 눈을 치우러 갔는데, 성명미상의 병장이 "너 누구냐, 어디서 왔냐?"고 물어 "○○연대 환자실에 입실해 있었습니다."라고 했더니 "임신했다고? 남자새끼가 무슨 임신을 하냐, 애 아빠가 누구냐?"고 하였는데, 당시 현장에 ○○소대 김○○상병이 같이 있었다.

같은 달 3일,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상병 한○○가 피해자에게 와 웃으면서 "자지 위에 손 올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위에 올려놓았고, 당시 이를 본 사람은 없었다.

같은 달 일자 미상경 성명 미상의 상병이 피해자의 자리로 와 피해자 옆에 있는 한○○의 성기를 옷 위로 만졌고, 한○○는 피해자에게 "너도 만지고 싶으면 만져라."고 말하였으며, 당시 내무반 사람들은 옆에서 놀고 있었다.

같은 달 5일 오후 3시에서 4시 경, 전 소대원이 총을 닦고 있는데 병장 노○○가 자신의 총을 위아래로 닦으면서 피해자를 보고 "좋아?"라고 두세 번 물었으며, 당시 노○○의 옆에는 일병 원○○가, 피해자의 옆에는 상병 권○○과 유○○가 총기를 닦고 있었다.

3. 관계법령

가. 군형법

제92조(추행)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나.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 ②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생활이 방종하여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자
2.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자
3. 근무상 또는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게 할 성격의 결함이 있는 자
4. 변태적 성벽자
5. 개인부채를 과다하게 계속하여 가지는 자

다.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①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2급·3급·4급·5급·6급·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과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중략	(중략)			
정신과	102.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성주체성 장애, 성적 선호장애 등)			
생략	(중략)			

4. 인정사실

이 사건 피진정인들과 참고인들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가. 피해자의 복무와 관련한 기초사실

피해자는 2005. 6. 28.부터 30.까지 3일간 ○○보충대에서, 2005. 7. 1.부터 8.4.까지

5주간 ○○사단 ○○교육대에서, 2005. 8. 5.부터 2006. 1. 31.까지 약 6개월 동안 의무중대 환자실에서 지내다가, 2006. 2. 1.부터 2. 5.까지 5일간 자대에서 지냈다.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교육대에 배치되었을 당시 중대장인 피진정인 임○○에게 알렸으며, 이후 ○○교육대 훈련을 마치고 연대에 배치되자마자 바로 의무중대 환자실로 배속되었다. 피해자는 동 의무중대 환자실에서 6개월간 머물면서 특별한 진료나 진찰을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진단명은 '피부병'으로 기재되었다.

나. 성적 지향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1) 2005.7.7. ○○병원 진료 시 동행인의 동석 여부에 대하여

이 진정부분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임○○는 피해자의 첫 번째 외진 시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소대장 또는 부소대장이 동행하였을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고, 동 이○○ 역시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관행상 병사의 상황을 잘 아는 부대간부가 동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당일 피해자 외진 시 제삼자가 동석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2) 사병개인기록 관리 방침

일반 병사에 대하여는 병영생활지도기록부가 작성되고, 보호관심사병에 대하여는 자대에서 병영생활지도기록부 중 '관찰 및 조치사항' 내역을 관심사병 지정해제 될 때까지 계속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기록부에는 병사의 이성교제사항이 기재된다. 병사에 대한 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해 「병 생활지도기록부 작성 및 활용체계 개선(육방침 '04-46호)」에는 '병 생활지도기록부 등'의 작성, 송부체계, 보관 및 폐기, 관리책임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동 기록부의 최초 작성책임은 육군훈련소 및 사단 신병교육대 대대장에게 있으며, 자대 전입 후 기록 및 관리책임은 행정보급관이 전담하고 중대장이 확인하며, 하사이상 전 간부는 해당 소대 및 분대내 병사에 대한 면담 및 관찰결과를 열람 및 기록할 수 있다. 피해자의 생활지도기록부 최초 작성자는 ○○교육대 부소대장인 피진정인 정○○이고, 그 관리책임자는 지휘계통에 있는 소대장 동 봉○○, 부중대장 동 안○○, 중대장 동 임○○, 대대장 동 김○○, 대대장 동 김○○이다.

(3) 성적 지향 정보 및 사진의 유출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진정인 임○○ 면담결과 및 피해자의 생활기록부 기록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

밝힐 수는 없었으나,

(가) 피진정인 오○○이 작성한 관심병사 일지 2005.8.8.과 9. 14.자에는 "피해자가 부형의견서 때문에 동성애자임이 다른 병사들에게 알려졌다고 말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나) 후임 사제담당관 최○○이 작성한 관심병사 일지 2006.1.9.자에는 "본인 성향을 감내하고 복무 중이며, 단지 본인의 여성성이 주변 전우들에게 알려져 손가락질 받고 시선의 대상이 되는 게 두려운 듯하다. 의무중대에 입실하여 의무병들은 모두 알고 있으나 함께 환자실을 사용하는 용사들은 다행히 모르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다) 피진정인 이○○이 "이○○이 동성애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으나 사진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는 말을 동 오○○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관이 피해자의 성행위 사진이 담긴 이메일을 확인한 결과, 2005.10.20.부터 21.까지 이틀에 걸쳐 세 통의 편지가 피해자 김○○ 이름으로 와 있으며, 키스한 사진과 성행위한 사진 등이 있었고,

(마) 피진정인 오○○이 작성한 관심병사 일지 2005.10.25. 자에는 "100일 위로휴가 후 면담 입대 전 또 다른 동성연애자와 성관계를 맺었던 사진이 있다고 하여 ○○에게 동의 후 사진을 2부 출력, 1부는 의견과 같이 사단 부관부에 제출, 1부는 사제담당관이 기타자료와 함께 보관 중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의 성적 지향이 적어도 자대배치 이전인 ○○교육대 시절에 정보관리계통에 있지 아니한 다수 사람들에게 유출되었음이 인정된다.

다. 부적합심사 과정에서의 인격권과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피해자는 8월 중순 경 동성애자임을 입증하여 전역심사를 받고자 키스사진이 든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출하였고, 피진정인 오○○이 이를 확인한 후 출력하여 1부는 연대 인사과에서 보관하고, 2005.9.10. 이전에 1부는 사단 부관부로 보냈으며, 사단 부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피해자에 관한 자료로 이를 보관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한편, 피진정인 김○○, 동 김○○, 동 이○○, 동 김○○, 동 오○○의 진술에 의하면, 관련 피진정인들이 키스사진만으로는 현역 부적합 처리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적합 심사를 받기 위해 피해자가 추가로 성행위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

려고 한다는 말을 휴가 전에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었거나 후에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2005.9.14. 작성하여 사단에 보내는 편지에는 "현역부적합 심사 서류접수 하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키스하는 사진으론 제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고 하시면서 성관계하는 사진이 있냐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그런 사진은 있지도 않고 찍고 싶지도 않지만 이곳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 전역할 수 있다면 휴가를 나가서 찍어오겠습니다."라고 적혀있다. 이 편지는 사단으로 전달되지 않고 피진정인 이○○이 피해자에게 받아 동 김○○에게 보고하였고, 연대에서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아 동 오○○이 보관하였다.

라. 정신과 진료와 HIV 검사 등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는 2005.7.7. 신병교육대에서, 8. 8. 의무중대에서 총 2회 피진정인 이○○에게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두 번째 진료 시 동 정○○의 처방으로 HIV검사와 매독검사를 받았다. 첫 번째 정신과 진료 시에는 동 정○○이, 두 번째 진료 시에는 동 이○○이 진료의뢰 하였다. 동 임○○는 피해자가 동성애자이며 군의관과의 면담을 요청한다는 보고를 받고 동 정○○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면담하게 하였고, 전역심사를 위해 동 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정신과 진료를 의뢰하였으며, 동 이○○ 역시 동성애자는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진료를 의뢰하였다고 진술 하였는바, 피진정인 정○○, 동 이○○ 모두 피해자에게 군대 부적응 사유가 있는지 조사하지 아니한 채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한 정신과 진료만을 행하였다.

또한 동 이○○은 동성애자는 에이즈 고위험군 이라는 생각으로 피해자에 HIV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동 정○○에게 이를 의뢰하였으며, 검사직전이 되어서야 피해자에게 HIV검사임을 말하고 이를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못하자 이를 동의로 간주하여 검사를 받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일 까지 피해자는 HIV 감염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징후도 보인 바 없다.

마. 관련 법규의 성적 소수자 차별 여부에 대하여

(1) 군형법

「군형법」 제92조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1.9.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에서 "군형법(제92조)에 계간이라는 비하적 언어를 사용하는 등 동성애에 대한 편견에 기초하고 있음."이라고 밝힌 후 동 법의 정비를 명시하였으며, 동 법 관련하여 2005.12.26. 제출된 정부발의안과 2004.7.2. 대표발의된 이경재의원안이 국회 법사

위에 계류 중이다.

(2)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4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동 법령의 정비를 2006.1.9. NAP권고안에 명시하였고, 국방부에서도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3)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별표2] 102번에 대하여는 2004.6. 21. 국가인권위원회 제3소위원회에서 기각결정 한 바 있다.

5. 판단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생활의 불가침,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자기정보 통제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도 목적의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일 경우에는 그 수집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가 개인의 성적 지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키스나 성행위 등 은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으며, 만약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우에는 매우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이와 어긋나게 개인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하고 이를 유출시키는 경우, 이로 인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동성애는 개인이 선택할 자유가 있는 성적 지향일 뿐이므로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이성애자에 비해 그 처우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인바, HIV나 매독균의 감염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은 인격권 및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진정 요지들에 대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여부에 대하여

(1) 성적 지향 등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7.3. 피진정인 정○○과의 면담에 제3자를 동행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당시 명시적으로 단독면담을 요청하였고 동 이○○이 이를 거절하였는지는 달리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당시 동 이○○이 ○○교육대에서 작성한 외진 의뢰서를 통해 피해자가 동성애자임을 알면서도 단독 면담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3자와 동석한 채 상담 및 진료를 받게 된 점은 인정되는바, 이는 의사로서 취해야 할 동성애자의 특성과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소홀히 다룬 조치였음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성적 지향이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다수가 복무하고 있는 군 조직의 특성상 확인할 수는 없으나, 「병 생활지도기록부 작성 및 활용체계 개선(육방침 '04-46호)」에 의하면 병사의 개인정보 관리는 각급 지휘관의 책임 하에 엄격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이유로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개인기록을 병사가 취급하게 하였고, 이 사건에서 병사 박○○이 다시 다른 훈련병들을 시켜 개인정보를 다루게 하였던바,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함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혹은 최소한 "○○교육대와 ○○연대에 동성애자 사병이 있으며 그 사병이 의무중대에 있다는 사실"이 지휘정보계통 외의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점, 피해자를 약 6개월 동안 특별한 조치 없이 막연히 피부병이라는 병명을 붙여 의무중대 환자실에 있게 하여 다른 이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만들었다는 점, 참고인 최○○이 작성한 관심병사 일지 2006.1.9. 자를 보면 "의무병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피해자의 성적 지향에 관한 정보가 이를 다룰 권한이 있는 자들 외에 광범위하게 유출되어 피해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었음이 인정된다.

(2) 부적합심사 과정에서의 인격권과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피진정인 정○○이 "키스사진만으로는 동성애자임을 확증할 수 없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점, 동 김○○이 "키스사진을 전역처리 증빙자료로 사용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점, 동 임○○도 "동성애자는 군대에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교육대와 ○○연대 입소 초기에 피해자에게 정신질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한 점 등을 근거로 판단하건대, 관련 피진정인들이 동성애 병사가 발견되는 경우 일응 정신질환의 의학적 소견을 받아 전역시키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먼저 해당 병사가 동성애자인지 확증하려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정○○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애인을 통해 피해자가 동성애자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역심사를 위한 확증자료로 키스사진을 제출하게 하였고 이를 심사자료로 사용하였던바, 이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나아가 성행위 사진에 대해 비록 직접적으로 제출을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하나, 피해자가 성행위사진을 제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김○○이 키스사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전역 여부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동 오○○으로 하여금 동성애자에 부적합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고, 사단부관부에 근무하던 동 김○○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전역이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 오○○, 동 이○○을 통하여 키스사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점, 그 결과 동 이○○이 "동성애자임을 입증하는 것에 키스사진만으로는 안 된다. 다른 사진은 없느냐?"라고 피해자에게 물었으며, 이러한 전체 상황이 피해자로 하여금 '전역심사를 받기 위해 성관계 사진을 요구받았다'고 생각하게 한 점, 동 이○○ 역시 "어떤 사진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나 본인은 무슨 사진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관련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성행위 사진을 찍어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행동을 방조하였고, 결국 관련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3) 정신과 진료 및 HIV 검사 등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관련 피진정인들은, 비록 피해자를 전역시켜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정신질환의 징후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정신과 진료를 의뢰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동성애자는 일종의 정신적 질환자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사회의 편견에 근거한 차별적 행위로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HIV검사 및 매독검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동 이○○과 동 정○○는 피해자에게 에이즈가 의심되는 신체증상이 있는지 판단도 하지 않고, 검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위 검사들을 받게 한 점이 인정된다. 특히 사전 동의 여부와 관련하여, 동 이○○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이○○은 HIV 검사 직전에서야 피해자에게 검사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고 이후 곧바로 의무병에게 검사를 지시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고려한 후 선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당시 직급 상관인 동 이○○의 말을 거부하

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만일 동 이○○과 동 정○○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려고 했다면 피해자의 진료를 담당한 정신과 군의관에게 요청을 하거나 동 정○○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적극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당시 상황과 동 이○○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검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4) 부대원에 의한 성희롱

이 부분과 관련하여, 관련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한 일시와 장소뿐 아니라 성희롱 발언과 행위 내용에 대하여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성희롱이 있을 개연성 자체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군대 내에서의 성희롱이나 성적 폭언을 예방할 교육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의 성적 소수자 차별 여부에 대하여

「군형법」 제92조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4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별표2] 102번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이므로, 각하한다.

6. 권고의 내용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판단에 비추어볼 때에, 이 사건에서 비록 피진정인들이 고의로 피해자를 괴롭히려고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군대 내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보장 지침이 부재한 상태에서 피진정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편견이나 관행적 인식에 기초하여 피해자를 대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이 인정된다.

그 결과 피해자가 주요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끝내 동 사유로 인하여 전역하게 된 점을 볼 때,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향후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유사한 침해 및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관련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권고한다.

가.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

피진정인 김○○, 동 이○○, 동 김○○, 동 오○○, 동 김○○, 동 정○○에 대해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을, 동 김○○, 동 김○○, 동 임○○, 동 안○○, 동 봉○○, 동 정○○, 동 정○○, 동 정○○, 동 이○○에 대해 인권교육을 받게 할 것을 권고하는바, 각 이유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동 김○○은 사병의 개인정보 관리책임 계통에 있는 자로 피해자의 성적 지향에 대한 정보가 유출된 것, 동 김○○과 동 오○○을 통해 피해자의 부적격심사 진행을 이유로 공식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장기간 환자내무반에 배치해 둔 점, 동 김○○과 동 오○○으로부터 피해자 키스사진 제출 보고를 받고 부적합처리 증빙자료로 사용가능한지 알아보라고 지시함으로써 동 오○○으로 하여금 동성애자라는 사유로 전역심사절차를 진행하게 한 것, 동 이○○으로부터 정신과 진료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지시한 것이 그 이유이다.

(2) 동 이○○은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이상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진료를 의뢰한 것, 피해자에게 전역심사를 위해 동성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그것이 성행위 사진임을 암시한 것,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절차 없이 HIV검사와 매독검사를 실시한 것이 그 이유이다.

(3) 동 김○○은 사병의 개인정보관리책임 계통에 있는 자로서,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성적 지향에 대한 정보가 유출된 것, 부적격심사진행을 이유로 현역부적합심사 공식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장기간 환자 내무실에 배치한 것, 휴가 전 피해자가 성행위 사진을 찍어올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이 그 이유이다.

(4) 동 오○○은 사병의 개인정보관리책임 계통에 있는 자로서,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의 성적 지향에 대한 정보가 유출된 것, 부적격심사진행을 이유로 현역부적합심사 공식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장기간 환자내무실에 배치한 것, 동 이○○에게 동성애자임을 확증할 수 있는 추가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행위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한 것이 그 이유이다.

(5) 동 김○○, 동 정○○는 사단부관부에서 현역부적합심사를 다루는 자들로서, 동성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결코 수집해서는 안 되는 성관계사진을 접수, 보관, 검토하였고, 더 나아가 그 신빙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하여 암묵적으로 성행위 사진을 요구하는 것으로 동 오○○, 동 이○○이 받아들이게 하고, 이러한 취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한 것이 그 이유이다.

(6) 동 김○○, 동 김○○, 동 임○○, 동 안○○, 동 봉○○은 모두 사병의 생활기록 관리책임계통에 있는 자들로서, 동성애자 사병의 개인정보 관리소홀과 해당간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미비하였던 것, 동 정○○은 그 직접적 담당자로서 동성애자 사병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그 이유이다.

(7) 동 정○○은 동성애자라는 사유만으로 정신과 외진의뢰를 한 것이 그 이유이다.

(8) 동 정○○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HIV와 매독검사를 실시한 것이 그 이유이다.

(9) 동 이○○은 피해자 진료 시 부대의 동행인이 배석하게 하는 등 동성애자 사병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소홀했던 것이 그 이유이다.

나.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1) 피해자가 자대에 배치되어 복무하면서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군대 내에 성적비하나 모욕, 수치심 자극 발언에 대해 사병들을 각성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대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군복무상 제한 및 차별을 금지하고, 성적 지향에 대한 조사 및 공개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여, 군대내 동성애자에 대해 실태조사하고 이에 기초한 보호정책과 부적합처리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2006.4.1. 자로 시행되고 있는 「병영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의 개정을 권고하는 바, 구체적으로 동성애자의 군복무와 관련해서는 차별과 인권침해의 예방이 핵심사항이므로 첫째, “관리지침”이 아닌 “보호지침”으로 변경할 것, 둘째, “동성애자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 한다.”는 관리지침의 목표를 수정할 것, 셋째, 성적 지향에 대한 조사금지 및 공개금지 원칙에 부합하도록 “인성검사를 통해 동성애 성향 잠재자로 밝혀지면 보호 및 관심병사로 지정·집중관리 하겠다.”는 내용을 수정할 것, 넷째, 개인의 성적 지향을 국가가 개입하여 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이성애자로의 전환 희망 시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7. 결론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위 권고내용과 같이 권고하고, 관련법규에 대한 것은 동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거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6.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조영황 위 원 최영애 위 원 김호준 위 원 정강자

위 원 김만흠 위 원 이해학 위 원 정인섭 위 원 최금숙

위 원 신혜수 위 원 원형은

학력

1 10진정2424 [육군3사관학교 예비장교후보생 모집시 전문대학 출신자 배제] 2010. 7. 29. 결정

육군3사관학교 예비 장교후보생 선발시 전문대학 재학생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군 인사법 시행령」 제8조의 2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

[1] 대학 재학생들이 병 또는 장교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복무형태를 미리 결정할 수 있게 하여 복무형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우수한 장교 자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피진정인이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를 도입한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으나 복무형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은 전문대학 재학생에게도 동일할 것이고 우수한 장교 자원의 조기 확보는 지원 대상자의 요건을 좁히는 것보다 넓힘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2]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제3조(입학자격) 제3호 및 「군 인사법 시행령」 제8조는 육군3사관학교 입학자격 및 생도의 학력 요건을 전문대학 졸업 학력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정시모집과 사전선발의 학력요건을 굳이 달리 정하거나 예비 장교후보생 모집시 특별히 4년제 대학을 우대하거나 전문대학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사전선발제도 시행으로 정시모집 인원은 최종 선발인원의 약 50% 정도가 줄어들어 전문대학 학생들이 육군3사관학교 생도로 선발될 가능성이 종전에 비해 대폭 감소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진정인이 「군 인사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요건을 4년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정함으로써 전문대학 재학생들을 예비 장교후보생 선발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된다.

▌참조조문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 제2조, 제3조, 「군 인사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진정인 ▐ 1. ○○○대학 총장
2. ○○공업대학 총장
3. ○○대학 총장
4. ○○○○대학 학장
5. ○○과학대학 총장
6. ○○대학 총장
7. ○○전문대학 총장

▌피진정인 ▌ 국방부장관

▌주 문 ▌ 피진정인에게 육군3사관학교 예비 장교후보생 선발시 전문대학 재학생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군 인사법 시행령」 제8조의 2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9년도에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를 도입하면서 육군3사관학교에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4년제 대학교 1학년 재학생으로 정하여 전문대학 학생들의 육군3사관학교 진출을 제한하였다. 이는 학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병 복무기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장교 획득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4년제 대학 재학생들이 장교 복무를 선호하면서도 병보다 긴 복무기간 및 장교로 선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대다수가 1, 2학년 재학 중 병으로 입대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교 자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4년제 대학 1,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를 도입하였다.

2) 일정비율의 예비 장교후보생을 조기에 선발하고자 『학군·학사·3사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를 동시에 추진하게 되었고 지원자들의 동일 조건 선발이 가능하도록 4년제 대학생으로 지원자격을 두었다. 전문대학 재학생들은 육군3사관학교 정시모집시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가능하여 전문대학 출신의 육군3사관학교 진출이 전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차별이라 할 수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육군3사관학교는「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공립 특수대학으로 수업연한은 2년이며 같은 법 제3조 제3호 규정에 따르면 입학자격으로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어야 한다.「군 인사법 시행령」제8조 제1의2호 규정에 따르면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나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 정하고 있어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모두 생도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2) 그러나「군 인사법 시행령」제8조의 2(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제1항 및 제2항은 우수한 장교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4년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예비장교후보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때에는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때에는 사관후보생이,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 설치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때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재학 중인 자는 예비 장교후보생에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3) 육군본부는 위 시행령에 근거 2010. 2. 1.「예비 장교후보생 시행 지시(육본지시 제10-1003호)」를 통해 4년제 국내대학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3사 생도과정 예비장교후보생을 모집하도록 하였고, 육군3사관학교는 금년도에 49기 생도 모집정원의 약 50%를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사전 선발할 예정이다.

4) 최근 3년간 육군3사관학교 최종 합격자의 학력(학제)별 인원은 〈표〉와 같다.

〈표〉 최근 3년간 육군3사관학교 최종합격자 분포

기수	총계	4년제 졸업	4년제 재학	2년제 졸업	기타*
45기	580(100%)	1(0.17%)	403(69.4%)	157(27%)	19(3.43%)
46기	580(100%)	2(0.34%)	356(61.3%)	194(33.4%)	28(4.96%)
47기	580(100%)	3(0.51%)	361(62.2%)	186(32%)	30(5.29%)
계	1,740(100%)	6(0.34%)	1,120(64.3%)	537(30.8%)	77(4.4%)

* 기타 : 3년제,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등

5) 이 사건 예비 장교후보생 선발기준에 따라 사전선발을 시행하면 기수별 모집정원이 580명으로 동일할 경우 4년제 국내대학 1학년 재학생 약 290명이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나. 판단

1)「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대학 재학생들이 병 또는 장교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복무형태를 미리 결정할 수 있게 하여 복무형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우수한 장교 자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피진정인이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를 도입한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복무형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은 전문대학 재학생에게도 동일할 것이고 우수한 장교 자원의 조기 확보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좁히는 것보다 넓힘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3)「육군3사관학교설치법」 제3조(입학자격) 제3호 및「군 인사법 시행령」 제8조는 육군3사관학교 입학자격 및 생도의 학력 요건을 전문대학 졸업 학력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정시모집과 사전선발의 학력요건을 굳이 달리 정하거나 예비 장교후보생 모집 시 특별히 4년제 대학을 우대하거나 전문대학을 배제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진정인은 '학군·학사·3사'에 모두 지원 가능한 예비 장교후보생 선발을 위하여 부득이 4년제 대학생으로 지원자격을 둔 것이라고 하나 이는 피진정인의 행정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육군3사관학교 정시모집시 종전과 같이 전문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게도 지원자격이 주어지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전선발제도 시행으로 정시모집 인원은 최종 선발인원의 약 50% 정도가 줄어들어 전문대학 학생들이 육군3사관학교 생도

로 선발될 가능성이 종전에 비해 대폭 감소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4)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군 인사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요건을 4년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정함으로써 전문대학 재학생들을 예비 장교후보생 선발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9.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문경란 위 원 김양원 위 원 장주영

[별지] 관련규정

1.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제2조(수업연한)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3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2.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을 충족할 것

2. 군 인사법 시행령

제8조(응시자의 자격)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이하 "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개정 1971.2.15, 1982.5.29, 1984.7.9, 1994.4.9, 1995.6.17, 2001.3.27, 2005.4.15, 2005.7.27, 2010.6.28〉

1. 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생도는 고등학교졸업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1의2.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는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나 대학에서 2년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
2. 사관후보생은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만으로써 군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나 준사관·부사관으로서 5년이상 군복무경력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3.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은 대학재학중인 자

제8조의2(예비 장교후보생의 선발) ① 각 군은 인력운영상 우수한 장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임용고시를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이하 "예비 장교후보생"이라 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때에 육군 3사관학교의 생도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때에 사관후보생이, 「병역법」 제5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 설치된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때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이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7.30.]

2 12진정1923 [공군 학군사관후보생 과정 모집 시 학교별 학과 제한] 2013. 7. 8. 결정

▌결정사항▐

공군참모총장에게, 공군 학군사관후보생 과정 모집 시 소속 학과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대학 및 학과에 따라 현실적 학력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집단의 입학 당시 학습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가지고 모집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대학 입학 이후 개인적 성취에는 차이가 큰 점에서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우수인재의 확보는 ROTC 선발시험 성적의 반영을 통하여서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신입생의 성적을 기준으로 공군 ROTC 운영 대학 중 △△대학교만 비항공운항학부 재학생을 공군 ROTC 모집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참조조문▐

「병역법」 제57조

▌진정인▐ 진○○

▌피해자▐ 최○○

▌피진정인▐ 공군참모총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공군 학군사관후보생 과정 모집 시 소속 학과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대학교 보건학부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지인인데, 피진정인은 공군 학군사관후보생 과정(이하 'ROTC'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대학교와 □□□□대학교의 경우 모든 학과 학생을 모집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대학교의 경우 비항공학부 재학생은 모집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이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및 관계인 의견

가. 피진정인 주장요지

1) 공군 ROTC 운영대학 선정 시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재학생의 학력수준을 포함한 5개 분야 33개 항목의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있는데, 2013. 3. 현재 ○○○○대학교, △△대학교, □□□□ 대학교 3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다. △△대학교의 공군 ROTC 모집대상은 학부별 재학생의 학력 등을 고려하여 공군과 △△대 간 상호협의 하에 운영 중이다. □□□□대학교는 2013년 공군 ROTC 과정을 신설하였고 선발 대상 학과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해당 과정 이수에 요구되는 학력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따라서 공군 ROTC 운영 대학 및 학과는 공군 장교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대학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공군의 인력획득 정책으로서 재량에 해당하여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2) 공군 ROTC 선발시 1차 평가 항목은 수능성적(20%), 대학성적(40%), 필기시험(40%)으로 구분돼 있고, 수능성적보다 대학성적과 필기시험 배점을 높게 설정한 이유는 대학성적과 필기시험이 선발 당시 가장 최근의 학력점수로서 평가결과 활용에 신뢰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성적은 학부(과)별 평가결과에 의해 선출되므로 같은 학점이라도 학과가 다르면 실제 학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집대상 선정 시부터 모집단위(학과)별 수준 차이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 관계인(△△대학교 총장) 의견

△△대학교 공군 ROTC는 2005. 10. 창설하여 2008. 50명 임관 이후 현재까지 총 230여 명이 장교로 임관되었으며, 2008. 6. 30. 1차로 '학군사관후보생 과정 운영에 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가 개정되었으나 2011. 10.부터 공군본부와 다시 이를 개정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1. 10. 및 2012. 4. 공군본부 실무협의 과정에서 ○○○○대학교와 동일하게 항공학부뿐만 아니라 전 학과 재학생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공군본부에서는 타 학교 공군 ROTC의 적정 학력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발대상 확대를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인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군 ROTC 운영 현황

1) 공군 ROTC는「병역법」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및「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근거하여, 우수한 비행조종사 등 공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1년 ○○○○대학교에 처음 창설한 후 현재까지 약 2,800명이 장교로 임관하였다. 2013년에는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등 3개 대학에서 약 18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 피진정인은 공군 ROTC 운영대학과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각 운영대학이 해야 할 사항으로 전용강의실, 무기고, 전용연병장 등 교육시설 제공, 군사교육 운영 및 학점 운영, 군 장학금 지급, 예비역 교원 및 직원 채용 등 인적 교류를 포함한다. ○○○○대학교는 1971.부터, △△대학교는 2005.부터, □□□□대학교는 2013.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별 2학년 대상 신규 ROTC 모집 현황은 2013. 3. 현재 다음 〈표1〉과 같다.

〈표1〉 대학별 신규 ROTC 모집 현황

대학	총정원	지원자격(정원)	
		조종자원	일반자원
○○○○대학교	80명	항공운항학과 (모집인원은 공군 결정)	전체 학과
□□□□대학교	50명		전체 학과(최대 25명)
△△대학교	50명		항공학부 소속 학과(최대 25명)

나. 공군 ROTC 운영대학 선정 과정과 기준

1) 피진정인은 공군 ROTC 운영대학 선정 시 항공운항학과가 개설된 대학 가운데 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5개 분야 33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학력 및 활주로/관제탑/항공기 확보상태 등의 장비시설 확보 능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평가 세부항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공군 ROTC 운영대학 선정 시 평가항목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대학 경쟁력	① 재학생 충원율 ② 평균 학력수준 ③ 시간강사 비율 ④ 전임강사 1인당 학생수 ⑤ 신입생 충원율 ⑥ 중도탈락 학생 ⑦ 교원 논문실적 ⑧ 학교수준 ⑨ 재학생 평균 학력수준 ⑩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⑪ 졸업생 취업률 ⑫ 학생 1인당 교육비 ⑬ 등록금 의존도
후보생 확보가능성	⑭ 항공관련학과 정원대비 충원율 ⑮ 학군무관후보생 지속확보 가능성
학생의 자질/학력	⑯ 전체 신입생 수능성적 ⑰ 항공운항과 신입생 수능성적 ⑱ 전체 신입생 내신성적 ⑲ 항공운항과 신입생 내신성적 ⑳ 전체 신입생 경쟁률 ㉑ 항공운항과 신입생 경쟁률
장비시설 확보능력	㉒ 학군단 규정시설 확보상태 ㉓ 비품/장비 확보상태 ㉔ 활주로/관제탑/항공기 확보상태 ㉕ 비행교육운영 준비상태
정책적 고려사항	㉖ 학군단 유치의지 ㉗ 안보학과목 개설사항 ㉘ 예비역 교관/행정관 채용내역 ㉙ 안보학교수 채용내역 ㉚ 후보생 예산/복지 지원 ㉛ 안보관련 활동사항 ㉜ 학·군교류 실적 ㉝ 향후 대학 발전계획

2) 피진정인은 2012.에 추가로 ROTC 운영을 희망한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등 3개 대학을 대상으로 위 33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거쳤는데, 비행장의 실습장 활용 방안 등을 감안하여 □□□□대학교와 2013.부터 공군 ROTC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대학교 심사 당시 참조한 학생의 자질/학력 자료는 전체학과 및 항공운항학과의 신입생 수능성적, 내신성적, 경쟁률이었다.

다. 공군 ROTC 학생 선발 방법 및 교육과정

1) 공군 ROTC 학생 선발은 서류, 필기, 신체·인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1차 전형의 평가항목은 대학 성적(40%), 수능성적(20%), 필기시험(40%)으로 이뤄진다.

2) 피진정인은 공군 ROTC 운영대학 중 △△대학교에 대해서만 비항공학부 재학생을 모집대상에서 배제하였다.

3) 공군 ROTC로 선발된 학생들은 교내교육과 입영훈련 등을 통해 군사지식, 정신교육, 군사훈련, 지휘관리 등을 교육받는다. 또한 공군 ROTC 교육과정 수료 후 공군 소위로 임관하는데, 조종자원으로 선발된 항공학부 졸업생은 비행교육 수료 후 조종사로 복무하되 신체검사 불합격자 및 비행교육 미수료자는 일반특기로 분류하고, 일반자원으

로 선발된 비항공학부 출신 또한 일반특기로 분류하여 일반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조종특기자는 15년(장기) 의무복무하고 공군 진급정책에 따라 상위계급 진출 및 정년에 따라 전역하고, 일반특기자는 전공에 따른 특기배정 후 3년(단기) 의무복무를 하며 복무 중 희망하면 연장복무(5년) 및 장기복무(10년)도 가능하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의 사유로 모집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에서는 피진정인이 신입생의 수능성적과 모집단위(학과)별 학력의 차이를 이유로 공군 ROTC 모집 시 △△대학교의 비항공학부 재학생을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진정인은 공군 ROTC 운영대학 선정 및 지원 가능 학과 선정에서 신입생의 수능성적·내신성적·경쟁률 등 학교수준과 학부별 재학생의 학력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공군의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국방 안보면에서 공군의 역할과 고가의 전투기 운영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우수인력 확보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겠으나 대학 입학 이후 개인적 성취는 차이가 큼에도 입학 이전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개인의 성적 그 자체가 아닌 그 개인이 속한 집단(학과)의 평균성적을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더욱 신중을 요한다.

나. 현실적으로 대학 및 학과에 따라 학력 차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특정대학 및 학과 집단의 입학 당시 학습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에 불과한데, 피진정인이 이 지표를 공군 ROTC 모집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집단의 학습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개인의 능력에 대한 기초심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피진정인은 1차 전형 평가항목 중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성적이 모집단위(학과)별 평가결과에 의해 산출되고 같은 학점이라도 학과가 다르면 실제 학력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이 반영하는 대학 성적은 1학년 성적 및 2학년 1학기 성적인데, 보통 대학 1학년의 교육과정은 전공보다는 교양 위주로 편성되고 이에 대한 평가는 학과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특정 과의 모든 학생이 다른 과의 학생들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피진정인은 공군 ROTC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필기시험 성적을 반영하고 있어, 선발시험 제도를 활용하여 우수인재를 확보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감안이 되어야 한다.

다. 피해자가 재학 중인 △△대학교는 정원 50명을 유지하는 선에서 공군 ROTC 일반자원 모집대상 학과를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 학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진정인의 전체 공군 ROTC 인력 현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우수인력의 확보 방안이 공군의 재량에 해당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으로서 행사할 재량의 범위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하는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우수인재를 확보하겠다는 이유로 신입생의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공군 ROTC 운영 대학 중 △△대학교만 비항공운항학부 재학생을 공군 ROTC 모집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6. 위원 김영혜, 홍진표, 윤남근, 곽란주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피진정인이 3개의 공군 ROTC 운영 대학 중 △△대학교에 대해서만 ROTC 모집대상을 전체 재학생이 아닌 항공학부 재학생들로 한정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위원들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가. 공군 ROTC 운영대학 및 모집대상 선정

다수의견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먼저 △△대학교를 공군 ROTC 운영대학으로 선정한 후 모집이나 선발단계에서 비항공학부 재학생을 배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공군 ROTC 운영대학 선정 절차는, 피진정인이 위 인정사실 나항에서와 같은 기준에 따라 대학과 협의하여 그 대학 전체 혹은 일부 학과를 선정하여 운영하기로 한 후 이에 따른 '학군사관후보생 과정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운영대학과 모집대상 선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 〈표2〉와 같이 동일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대학교나 □□□□대학교는 전체학과를, △△대학교는 항공학부를 모집대상으로 하여 공군 ROTC 운영대학을 선정한 것이지, 공군 ROTC 운영대학을 먼저 선정한 후 △△대학교의 경우에만 비항공학부 재학생을 배제한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을 논의한 전원위원회에서 다수의견 측 일부 위원들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피진정인이 △△대학교에 한해 항공학부만을 공군 ROTC 모집대상으로 인정한 것을 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위 규정은 ROTC가 학교단위로 설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와 같이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나. 수능성적과 학과별 학력(學力) 기준

다수의견은 피진정인이 △△대학교의 공군 ROTC 지원자격을 항공학부만으로 한정한 것이, 학생들의 입학 이후의 발전 가능성을 간과한 채 입학 이전의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 자체를 봉쇄하고 특히 학생 개인의 성적이 아닌 그 개인이 속한 집단(학과)의 평균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부당한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 입학 이전의 수능성적 및 내신성적이나 개인의 성적이 아닌 학과 평균 성적 등의 기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공군 ROTC 운영대학을 선정하는 바로 그 기준이므로, 다수의견에 따르면 이 기준 자체가 차별적이라는 것이고 결국 피진정인이 ○○○○대학교와 □□□□대학교를 공군 ROTC 운영대학으로 선정한 것 자체도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진정인의 △△대학교에 대한 공군 ROTC 운영 및 모집대상 선정만을 ○○○○대학교나 □□□□대학교에 비교하여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모순이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학생들의 수능성적, 내신성적 등 학력(學力)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하나로 수긍되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각종 입시나 선발제도의 기준이 되고 있고 ROTC는 저학년인 대학 2학년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공군 ROTC 운영대학 및 모집대상 선정 시,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적용했던 수능성적과 내신성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그 기준이 객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ROTC는 원칙적으로 대학생 개인을 모집대상으로 하지 않고 대학을 단위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군 ROTC 운영대학 선정 시 대학 자체와 학생 수준의 전체적 평가는 당연하고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명확하지는 않으나 위 다수의견이 학력(學力)에 따른 구분 자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는 것이라면 이는 우리 사회의 모든 입시나 선발시험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진정인은 △△대학교를 이 사건 차별판단의 비교대상인 ○○○○대학교 및 □□□□대학교와 달리 취급한 바 없고, 만약 △△대학교의 비항공학부에 공군 ROTC 지원자격을 부여했다면 오히려 자신이 정한 ROTC 운영대학 선정기준을 벗어나 △△대학교만 달리 취급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다. 학력(學歷)과 학력(學力)

다수의견은 이 사건 차별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열거된 '학력'을 적용하여 피진정인이 신입생의 수능성적과 학과별 학력의 차이를 이유로 공군 ROTC 모집 시 △△대학교의 비항공학부 재학생을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에서 열거하는 학력이란 '수학경력, 특정 교육기관의 졸업·이수 여부'의 학력(學歷)을 지칭하는 것으로 통상 학력(學歷)차별이란 고졸, 대졸 등에 따른 차별이 전형적이며, 이른바 학벌(學閥)도 이에 포함시킨다면 특정학교 출신을 우대·배제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진정인이 수능성적, 내신성적 등 학력(學力)차이를 근거로 △△대학교의 비항공학부를 ROTC 선정 및 모집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서 이를 학력(學歷)차별로 보기는 어렵다. 명확하지는 않으나 다수의견이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회를 주지 않고 특정학과에 속한다는 이유로 모집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력(學歷)차별로 본 것이라고 해석하더라도, 피진정인이 △△대학교의 항공학부와 비항공학부를 구분해서 모집대상을 정한 기준은 오로지 학력(學力)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다수의견이 학력(學歷)이라는 차별 사유를 적용한 것은 이 사건의 성격에 부합되지도 않는다 할 것이다.

라. ROTC 운영대학 및 모집대상 선정의 재량

부가적 의견으로, ROTC는 군이 장학금, 교육인력 투입 등 선투자를 통해 대학생 일부를 미리 육성하여 군지휘 인력(장교)으로 활용하고자 운영하는 제도로 일반적인 고용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불합리한 점이 없다면 전문적인 정보와 경험 및 깊은 이해관계를 가진 피진정인이 자기책임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존중되어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ROTC는 군과 해당학교(학생 개인이 아닌)가 자율적인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ROTC 지원자격을 재학생 전체에게 개방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군과 대학 간의 합의로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 결론

위와 같은 논거에 따라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 '차별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임을 이유로 기각하거나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7호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됨을 이유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8.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 원 김영혜 위 원 홍진표

위 원 장명숙 위 원 한태식 위 원 윤남근

위 원 양현아 위 원 김성영 위 원 곽란주

위 원 한위수 위 원 강명득

3 12진정4562 [공군사관학교의 사관생도 학년에 따른 이성교제 금지] 2013. 8. 14. 결정

▌결정사항▐

공군사관학교장에게, 1학년 사관생도에게 생도 상호 간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사관생도 생활규율'의 개선을 권고

▌결정요지▐

사관생도의 교육 목적상 엄격한 규율 및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은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도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1학년 생도에 대해서만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참조결정▐

07진인190(부당한 강제퇴교 형식에 의한 인권침해, 2008. 5. 8.)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7조, 제37조제1항·제2항,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4조

▌진정인▐ ○○○

▌피진정인▐ 공군사관학교장

▌주 문▐ 공군사관학교장에게 1학년 사관생도에 한해 생도 상호 간,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사관생도 생활규율'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공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사관생도인데, 사관생도 생활규율에 1학년 생도 상호 간, 1학년 생도와 상급학년 생도 간의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성교제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강도 높은 처벌을 하고 있다. 상급학년 생도와는 달리 1학년 생도에게만 생도 상호 간의 이성교제를 제한하고 적발 시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요지

가. 사관학교의 1학년 과정은 미래 군 지도자의 기본자질 배양을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절제된 생활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목적의 측면에서 1학년 과정은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시기여서 교육목적 달성에 저해되는 요소들은 배제되어야 한다. 타군 사관학교들도 1학년 생도의 생도 상호 간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 공군사관학교도 동일하다.

공군사관학교에서는 1학년 생도들을 정신적·육체적으로 강인하게 단련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1학년 생도들이 서로 이성교제를 할 경우, 남녀 모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상태에서의 이성교제는 건전한 판단을 흐리게 하여 성군기위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상호 이성교제 중인 1학년 생도를 선배 생도들이 편견을 가지고 대하거나, 1학년 생도를 마음에 두고 있는 선배생도가 교제중인 상대 1학년 생도에게 교육을 빌미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할 여지가 있는 등 1학년 생도과정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나. 사관학교 특성상 학년구분이 매우 엄격하고 학년 간 위계질서가 확고하여 선배생도가 1학년 생도에게 이성교제를 강요할 경우, 1학년 생도가 거부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을 개연성이 있고, 4학년 생도가 1학년 생도와 교제할 경우, 1학년 생도를 지도하는 2, 3학년 생도들이 교육에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 있으며, 훈련 및 지도 주관생도가 1학년 생도와 이성교제를 하게 되면 교제 중인 1학년 생도가 포함된 그룹의 훈련수준을 낮게 하여 정신적·체력적인 측면에서 교육목적상 필요한 요구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다. 이를 규정한 '사관학교 생활규율'의 법적 근거를 찾자면 「사관학교설치법」과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정된 학칙이 법적 근거이다. 「헌법」 제37조제2항의 질서유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관생도의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사관학교가 추구하는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관생도는 일반국민과는 다르게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성교제 등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의 위임으로 학교장은 사관생도에게 교육과 훈육을 실시할 권한이 있고, 이성교제 금지는 훈육의 일환으로 실시

되는 것으로 학교장의 재량에 속한 사안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의견 및 자료,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등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 전문가 자문결과, 진정인 및 피진정인 전화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군사관학교는 국립특수학교로 1949년 개교하여 공군사관생도를 선발하여 공군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기술과 교양을 교육하고 있다. 1997년부터 여자사관생도를 선발하고 있으며 입학자격은 17세 ~ 21세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수업연한은 4년이고, 졸업과 동시에 공군소위로 임관된다. 2012년 기준, 공군사관학교 전체 재학생 630여 명 중 여학생은 50여 명(약 9%)이고, 1학년 사관생도 전체 170여 명 가운데 여학생은 10여 명이다.

나. 공군사관학교 1학년 교육과정은 일반대학의 교과과정과 사관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체육수업과 군사훈련을 강화한 과정이 결합되어 있다. 입학 연초 5주간 기본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생도생활 적응교육으로 생도생활 규정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생도대대에 각 중대가 있으며, 각 중대에 생도대장을 두고 소령급 중대장과 대위급의 훈육관으로 구성된 훈육요원들이 생도들을 지도하고 있다.

다.「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공군사관학교 등 각 학교의 장은 해당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하고, 동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학칙에 상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공사예규 0-000호「사관생도생활규율」에 의하면, 공사생도는 도덕적 한계 내에서 품위 및 명예에 입각한 건전한 이성교제를 할 수 있고, 1학년 생도는 건전한 이성교제에 대한 판단력 형성과 생도생활 적응을 위한 훈육 목적상 생도 상호 간 이성교제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이성교제 사실이 드러나면 생활규율에 따라 생도 자치로 운영하는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훈육요원들로 구성된 훈육회의에서 심의한다. 금지된 이성교제를 하면 1급 규율 위반에 해당하는데 훈육회의 심의 이후 생활분과위원회에서 1급 규율

위반으로 결정되면 생도대장이 처벌을 결정하게 되고, 퇴학의 경우에는 교육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최근 3년간 공군사관학교에서 이성교제 규율 위반행위로 적발한 사례로서는, 2010. 2. 1학년 생도 4명(남생도 1명, 여생도 3명)이 1급 규율위반(상 2명, 중 1명, 하 1명)에 따른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마. 공군사관학교 외 육군사관학교 및 해군사관학교, 미국 공군사관학교의 이성교제 관련 생활규율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

〈표〉 육군, 해군 사관학교 및 미국 공군사관학교 이성교제 관련 규율

구분	관련근거	내 용	처벌현황
육군 사관학교	생도생활예규 제35조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녀 생도 상호 간의 이성교제는 가능 - 영내 근무장병(장교,부사관,군무원,병사)간 - 1학년 생도 상호간 또는 1학년 생도와 타학년 생도 간	• 최근 3년간 4건 • 관련 예규에 의해 처벌
해군 사관학교	생활예규 제26조 및 제27조	• 사관생도 간의 이성교제는 사관생도 교육목적상 제한 • 단, 2·3·4학년 생도의 경우 중대훈육관에게 선보고(구두 또는 서면) 시 가능	• 최근 3년간 사례 없음. • 위반 시 훈육위원회 회부 및 심의
미국 공군 사관학교	AFCWMAN (Air Force Cadet Wing Manual) 36-3501	• 2, 3, 4학년 생도들 간 이성교제는 허용 • 훈련 목적상 문제가 될 경우 이성교제를 피해야 하며, 특히 지휘관계일 경우에는 이성교제 금지 • 이성교제가 불가피할 경우 담당 중대장 및 생도 직속 상관 등에 보고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함. • 어떠한 상황에서도 2,3,4학년 생도들과 1학년생도 사이에 이성교제 금지 • 입교 전 이성교제를 하던 사이일지라도 상급생도들과 1학년생도 사이의 이성교제 금지	-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사관학교의 3금(3禁)제도에 대해 생도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2008. 5. 8. 07진인190, 부당한 강제퇴교 형식에 의한 인권침해) 있고,

헌법재판소는「헌법」제37조제2항 기본권 제한 관련 판례(헌재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에서 "인간이 도덕과 관습의 범위 내에서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이성과 애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의 본질적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이성 간의 애정의 자유도 당연히 헌법상의 보호를 받는다. 이 같은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야 있겠지만, 남녀 간의 내밀한 성적인 자유는 법률에 의한 제한과는 친하지 않은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판시하고 해당 법조항의 위헌을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영외의 장소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퇴학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3. 7. 5. 선고 2013구합2426)에서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 결정하였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는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1학년 생도들의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것이 인권침해인지 여부와 상급생도와 달리 1학년 생도에 한하여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것이 차별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기본권 적용

생도들의 이성교제가 자유의사에 따른 사적인 영역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이에 국가가 제한을 가하고 있는 이 사건에는 개인의 사적 사안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적용할 수 있다.

「헌법」 제37조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는 아니나,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조사대상)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해당된다.

나. 차별 판단

공군사관학교의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의 제한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며, 이것이 인권침해로 볼만큼 과도한 제

한인지를 살펴보면 될 것이다. 그런데, 공군사관학교는 타 학년과 달리 1학년 생도에 한해서만 이러한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동시에 차별행위가 될 수 있는바, 1학년 생도만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여부도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타학년 생도에 비하여 1학년 생도에게만 특별히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피진정기관의 주장이 합리성이 있는지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첫째, 1학년 과정은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들고 미래 군 지도자의 기본자질 배양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절제된 생활이 필요하고 의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는 등 1학년 과정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성교제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군인 입문 단계에서 집중력의 확보와 인내심 배양이 필요한 1학년 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성교제의 절제를 권유할 수는 있겠으나, 강제보다는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 자율적인 존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1학년 생도가 타학년에 비해 나이나 경험차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숙할 수 있으나, 치열한 경쟁을 거쳐 군인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만큼 이성교제 여부와 그로 인해 사관학교 적응 등에 받을 영향에 대한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둘째, 피진정인은 1학년 생도들을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성교제는 성군기위반 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우려에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생도의 일탈에 대한 우려가 1학년 생도에 대한 이성교제의 일률적 제한을 합리화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으며, 자율적 선택에 의한 적극적 훈육방법을 포기할 만큼의 사유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셋째, 피진정인은 사관학교 특성상 학년 간 위계질서가 엄격하여, 상급학년 생도의 1학년 생도에 대한 이성교제 강요, 의도적 배려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사관학교가 생도 상호 간 학년에 따른 구분 및 위계질서가 엄격한 것은 통상적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1학년이 아닌 다른 학년도 상급생의 이성교제 강요 등을 겪을 수 있고, 이런 경우 교내 고충처리 및 교칙에 따라 처분할 일이고, 1학년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고학년의 권위나 위계질서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이성교제에 있어 수평적 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꾸준한 교양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피진정인은 선배생도와 1학년 생도가 이성교제를 할 경우 사적관계가 공적관계에 영향을 미쳐 교육과정에 혼란을 줄 수 있고, 교육 수준의 저하도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이 또한 1학년 생도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1학년 생도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되기 어렵고, 각 중대별로 현역장교인 소속 중대장 및 훈육요원이 실질적 지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도자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를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 기본권 제한 및 위임입법의 한계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한 원칙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만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의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의 준수와 본질적 내용은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인 이성교제의 자유는 개인의 사적인 자유영역에 속하므로 국가권력이 이를 제한할 때는 보다 엄격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최근 사관학교의 특수성을 강조한 생도들의 각종 사생활 제한이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진정기관의 1학년 생도들의 이성교제의 제한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진정인은 사관생도 생활규율이 「사관학교설치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정된 학칙에 근거하고, 「헌법」 제37조제2항의 질서유지의 목적달성을 위해 관련 법률과 헌법의 위임을 받은 학교장 재량으로 사관생도의 기본권은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4조에 '학칙'으로 상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성교제 관련 생활규율은 그 하위규정인 '예규'에 지나지 않아 「사관생도 생활규율」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사관학교에서 생도를 교육함에 있어 엄격한 규율 적용 및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사생활 영역에서의 통제 일변도의 오랜 관행에 대해서는 그 실질적 효과, 시대변화 조응 등의 측면에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생도들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최대한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이 1학년 생도에게만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생도들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그 합리성

이 인정되지 않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는 피진정인에게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8. 14.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 원 김영혜 위 원 강명득

병력

1 11진정3045 [병력을 이유로 한 ROTC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2012. 3. 21. 결정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ROTC 선발시 지원자의 현재 건강상태나 예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수술 병력만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하지 않도록 「육군규정 000 건강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ROTC 선발 신체검사 시 지원자의 과거 수술 전력을 참고하여 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으나, 담낭절제후 증후군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담낭 유무가 소화 작용에 반드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군사훈련 등 육체적 활동이 많은 직무수행과도 상관관계가 없음이 전문의 소견으로 확인됨.

[2] 따라서 담낭절제수술을 받은 경우 담낭절제후 증후군의 발생 가능성과 향후 장교 임무수행에 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건강상태나 예후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미 완치되어 일반인과 동일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진정인을 ROTC 선발에서 불합격시킨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참조조문▐

「육군규정 000」 제62조 및 제65조

▌ 진정인 ▐ 김○○

▌ 피진정인 ▐ 육군참모총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ROTC 선발 시 지원자의 현재 건강상태나 예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수술병력만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하지 않도록 「육군규정 000 건강관리규정」 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ROTC 00기에 지원한 여학생으로 2011. 5. 2. ○○○○병원에서 신체검사

를 받았는데, 신체검사 과정에서 작년에 받은 담낭염 수술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완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해 5. 27. 재검 시 동행했던 ROTC 선임교관이 진정인에게 담낭염 수술 때문에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였으나 이미 완치된 터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같은 해 6. 10. 2차 결과발표에서 불합격하였다. 담낭염 수술병력이 있다고는 하나 이미 완치되었음에도 ROTC 선발에서 불합격시킨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 요지 및 참고인 의견

가. 피진정인 주장 요지

1) 장교는 군대의 기간(基幹)으로 전쟁전문가이자 부대 관리자가 되어야 하고, 교관이자 리더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병사들에 비해 높은 신체 및 체력 수준이 요구된다. 장교 선발은 향후 건강상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적은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장애정도에 따른 신체 등급을 세부적으로 규정·적용하고 있는데, 진정인의 경우처럼 담낭절제수술을 받은 자는 「육군규정 000 건강관리규정」(이하 '육규'라 한다)에 의거 4등급 판정을 받아 불합격 처리된다.

2) 육군본부 군의관의 소견에 의하면, 담낭절제수술을 받은 경우 소수에서 담낭절제증후군(위장관 기능저하, 우상복부 통증, 만성적인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므로, 담낭절제술의 병력이 향후 장교 임무수행에 있어 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한 질병이라도 환자에 따라 상태가 다르고 예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의학의 발전과 수술방식의 변화 등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의학의 특성상 모든 경우를 규정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우나, 향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담낭절제술과 관련한 평가기준표의 개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

나. 참고인(○○○○병원장) 의견

1) 육군 선발 신체검사는 가능한 한 신체 건강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군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그 판정기준은 '육규'를 적용하고 있다.

2) ROTC 선발 신체검사는 '육규'에 명시된 장교 선발 신체검사 기준에 의해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데, 진정인의 경우 담낭절제술로 인해 '육규' 제65조(합격 등위) 및 [별표3] 신체 각과별 요소평가 기준표에 의거 4급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것이다.

3) ROTC 선발신체검사에 참여한 담당의사의 소견을 확인한 결과, 진정인이 받은 담낭절제수술의 경우 수술 이후 소화 기능의 장애가 있을 수 있으나 의학적으로 볼 때 큰 문제는 없으며, 장교로서의 임무수행과도 별 상관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내용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참고인 의견, 대한외과학회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ROTC 제도는 대학생 중 지원자를 선발하여 2년간의 군사훈련을 거쳐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인데, 지원 자격은 학군단이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1,2학년), 여학생(2학년)으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27세인 자이다.

나. 진정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ROTC 00기에 지원하였는데 2011. 5. 2.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및 같은 해 5. 27.에 실시된 재검 결과, 1년 전에 받은 담낭염 절제수술로 인해 4급 판정을 받고 같은 해 6. 10. ROTC 선발에서 불합격 처리되었다.

다. 진정인은 급성 담낭염으로 2010. 3. 4. 응급 복강경하담낭 절제수술을 받았는데 2011. 5. 6.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증명서에는 '수술 후 특이소견 없이 외래 추적 관찰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일상생활 가능. 향후 치료 계획 없음'이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이 기록되어 있다.

라. 피진정인은 담낭절제술을 받은 자의 경우 소수에서 위장관 기능저하, 우상복부 통증, 만성적인 설사 등과 같은 담낭절제증후군이 발생 가능하므로 향후 장교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육규'에 불합격등급인 4급으로 정하였다.

마. ROTC 선발 신체검사는 '육규' 제65조(합격등위) 및 〔별표3〕 신체 각과별 요소평가 기준표에 규정된 장교 선발 신체검사 기준에 의거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데, 위 조항에 따른 신체 각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에 따르면 담낭절제술은 종합체격등위 4급이며, 4급은 장교 선발 시 합격등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 대한외과학회 자문 결과에 따르면, 담낭절제술 후 증후군의 증상은 크게 담낭절제술 후 통증과 담낭절제술 후 설사로 나누어지는데 실제 증후군의 발생률은 5% 정도이

며, 과거에는 개복술로 시행하던 담낭 절제술이 최근에는 95%이상 복강경수술로 진행되고 있는데, 개복술에 비하여 통증이 적고 입원기간도 짧다. 이러한 수술 기법의 발전에 따라 수술 후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감소되었고, 인체 내에서 담낭이 제거되었다 하더라도 소화 작용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며 군사훈련 등 육체적인 활동이 많은 직무 수행에도 어려움이 없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모집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진정인이 ROTC를 선발함에 있어 과거 담낭염 수술 이력을 이유로 진정인을 불합격시킨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ROTC 선발 신체검사는 신체 건강한 우수한 인적 자원을 선발하여 군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므로 지원자의 과거 수술 병력을 참고하여 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담낭절제후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약 5%로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담낭 유무가 소화작용에 반드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군사훈련 등 육체적 활동이 많은 직무수행과도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전문의 소견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담낭절제수술을 받은 소수의 경우에 담낭절제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담낭절제술 병력이 향후 장교 임무를 수행하는데 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인의 현재 건강상태나 예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미 완치되어 일반인과 동일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진정인을 ROTC 선발에서 불합격시킨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히

위원장 김영혜 위 원 양현아 위 원 김성영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결정례집 제1집(2017)

발 행 일 2017년 12월

발 행 인 이 성 호

발 행 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조사총괄과

주 소 (04551)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전화 : 02-2125-9913
팩스 : 02-2125-0921
http://www.humanrights.go.kr

인 쇄 처 리드릭(02-2269-1919)

I S B N ISBN 978-89-6114-594-7 94390
ISBN 978-89-6114-593-0 94390 (세트)

ISBN 978-89-6114-594-7 94390
ISBN 978-89-6114-593-0 94390 (세트)